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의장

람

제1979호 2026.2.23.(월)

차 례

조 례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382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 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383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384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
———— 3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385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5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 고시 제3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울로 96 공동주택 금연구
역 지정 고시
———— 8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42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중1-694호선)사업 실시계획(경미
한 변경) 고시
———— 9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43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23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427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205호선)사업 공사 완료
공고
———— 25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홍보정책과 [032-560-4143]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의장

람

제1979호 2026.2.23.(월)

차 례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439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치법규 일괄 정비 362개 조례 (안) 입법예고 ——— 27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440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치법규 일괄 정비 78개 규칙 (안) 입법예고 ——— 3428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464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 4730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470호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1단계)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 ——— 4733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홍보정책과 [032-560-4143]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26년 2월 23일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382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가목 중 “분구추진단”을 “검단기획재정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환경국 및 경제국”을 “환경국, 경제국 및 검단안전환경도시국”으
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복지국 및 도시주택국”을 “복지국, 도시주택국
및 검단경제보건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26년 2월 23일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383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국·단장”을 “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26년 2월 23일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384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검암도서관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로20번길 20(검암동)
석남도서관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137번길 6-12(석남동)
검단도서관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92번길 18(마전동)
심곡도서관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31(심곡동)
신석도서관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299(석남동)
단봉늘봄도서관	인천광역시 서구 오동로 25(왕길동)
아라누리도서관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2로 20(당하동)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26년 2월 23일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385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상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상인 육성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

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청년상인 육성계획) 구청장은 청년상인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상인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청년상인 육성 시책 및 예산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3. 청년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발전 전략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청년상인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상인 능력 향상을 위한 경영교육
2. 청년상인 창업 컨설팅 및 마케팅 교육
3. 매출 증대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지원
4.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화 및 상품화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

여 청년상인 활동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인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민·관·학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상인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 고시 제2026-3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울로 96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6. 2. 23.

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장

○ 내용

공동주택 명칭	공동주택 소재지	금연구역 지정번호	금연구역 지정범위	금연구역 지정일자
청라제일 풍경채2차 에듀&파크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울로 96	제 94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2026년 2월 23일

※ 금연구역 내 흡연단속 : 2026년 5월 24일부터 실시 (과태료 금액 : 5만원)

○ 내용

-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아파트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2-718-05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6-42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중1-694호선)사업 실시계획(경미한 변경) 고시

도시계획시설 【도로명: 중로1-694호선, 사업명: 경서3구역 지구외 도로(중1-694호선) 개설사업】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경미한 변경)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서구청 도시계획과(☎032-560-4762)에 비치되었으며,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26. 2. 2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166-1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1-694호선)
- 명칭: 경서3구역 지구외 도로(중1-694호선) 개설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 면적(증 81m², 0.3%)

- 당초: 25,966m²

- 변경: 26,047m²

○ 규모: L=656m, B=20m, 교량 1개소(L=155m, B=21m)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명: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307(심곡동, 서구청)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실시계획 인가일 ~ 2027.12.10.(27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따로 붙임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1/4)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명	주소	소유 지분	성명	주소	관리 관계	
계		65필지	67필지			78,007	34,065	25,966	26,047							
소 계		20필지	20필지			19,595	11,365	3,966	4,031							
1	경서동	124-209	124-346	답	답	1,243	4	4	4	홍*경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 *동 ****호		중소기업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 (을지로2가)(삼곡동지점)	근저당권, 지상권설정	경서3
2	경서동	124-211	124-347	전	전	4,757	217	216	217	한*삼	인천 서구 마전동 ***					경서3
3	경서동	124-303	124-303	전	전	626	626	126	126	공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수질하천과)		
4	경서동	124-133	124-133	제	제	500	500	94	94	공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수질하천과)		
5	경서동	124-134	124-134	천	천	906	906	117	117	공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수질하천과)		
6	경서동	124-34	124-345	전	전	2,452	135	133	135	주식회사 *엔테크	인천광역시 서구 파랑로 *, 제*층 제**호		중소기업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 (을지로2가)(주안공단지점)	근저당권, 지상권설정	경서3
7	경서동	124-278	124-278	전	전	143	143	97	97	공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수질하천과)		
8	경서동	124-135	124-135	제	제	105	105	72	72	공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수질하천과)		
9	경서동	124-136	124-136	천	천	186	186	118	118	공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수질하천과)		
10	연희동	428-146	428-146	천	천	4,416	4,416	767	767	국	환경부					
11	연희동	166-26	166-26	천	천	1,166	1,166	304	304	공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수질하천과)		
12	연희동	166-25	166-25	제	제	472	472	155	155	공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수질하천과)		
13	연희동	166-39	166-39	제	제	569	569	188	188	공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수질하천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1/4)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명	주소	소유 지분	성명	주소	관리 관계	
14	연희동	166-40	166-40	천	천	289	289	6	6	공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수질하천과)		
15	연희동	166-72	166-72	답	답	44	44	44	44	공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수질하천과)		
16	연희동	166-64	166-64	답	답	158	158	158	158	공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수질하천과)		
17	연희동	166-19	166-88	답	답	565	563	557	563	공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		
18	연희동	166-55	166-96	답	답	698	680	621	680	공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수질하천과)		
19	연희동	166-68	166-68	답	답	72	72	72	72	공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		
20	연희동	166-63	166-99	답	답	228	114	117	114	공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수질하천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2/4)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명	주소	소유 지분	성명	주소	권리 관계	
		소계	19필지	20필지			22,089	10,636	9,972	9,952						
21	연희동	166-53	166-53	답	답	498	498	81	81	공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수질하천과)	근저당권, 지상권설정	
22	연희동	166-18	166-87	답	답	1,706	1,576	1,570	1,576	공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		
23	연희동	166-17	166-85	답	답	3,936	2,284	2,279	2,284	공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		
24	연희동	428-264	428-264	유	유	240	240	240	240	국	기획재정부					
25	연희동	165-40	165-78	도	도	809	16	17	16	공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	근저당권, 지상권설정	
26	연희동	166-2	166-77	답	답	843	269	273	269	공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		
27	연희동	166-5	166-80	답	답	1,144	315	325	315	공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		
28	연희동	166-6	166-81	답	답	1,286	1,276	1,286	1,276	공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		
29	연희동	166-4	166-79	답	답	790	37	41	37	공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		
30	연희동	166-3	166-78	답	답	2,466	1,128	1,137	1,128	공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		
31	연희동	165-14	165-74	답	답	2,003	356	365	356	공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		
32	연희동	165-22	165-76	답	답	1,188	1,018	1,024	1,018	공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		
33	연희동	168	168-4	답	답	872	36	40	36	공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		
34	연희동		168-5		답		2		2	공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		
35	연희동	165-24	165-77	답	답	2,562	8	8	8	공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2/4)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명	주소	소유 지분	성명	주소	권리 관계	
36	연희동	168-3	168-3	답	답	589	589	589	589	공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		
37	연희동	165-52	165-82	답	답	269	115	115	115	공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		
38	연희동	165-50	165-81	답	답	528	513	489	513	공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		
39	연희동	170-3	170-3	답	답	53	53	53	53	공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		
40	연희동	166-47	166-47	답	답	307	307	40	40	공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수질하천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3/4)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명	주소	소유 지분	성명	주소	권리 관계	
소 계		18필지	20필지			29,928	9,953	9,882	9,953							
41	연희동	166-58	166-98	답	답	168	2	2	2	주택도시 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					
42	연희동	166-73	166-101	답	답	6	4	3	4	공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수질하천과)		
43	연희동	166-54	166-54	답	답	50	50	50	50	공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수질하천과)		
44	연희동	166-74	166-102	전	전	1,887	112	109	112	공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공원조성과)		
45	연희동	166-57	166-97	전	전	49	47	46	47	공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수질하천과)		
46	연희동	166-46	166-46	전	전	69	69	69	69	공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수질하천과)		
47	연희동	산127-9	산127-27	임	임	3,373	2	2	2	공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공원조성과)		
48	연희동	산127-25	산127-29	임	임	34	8	8	8	공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수질하천과)		
49	연희동	산127-24	산127-28	임	임	31	23	25	23	공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수질하천과)		
50	연희동	166-65	166-100	답	답	14	1	1	1	공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수질하천과)		
51	연희동	166-20	166-91	도	도	1,428	653	1,186	653	국	국토교통부					
53	연희동		166-92		도		524		524	국	국토교통부					
52	연희동	166-21	166-93	답	답	16,812	2,898	5,191	2,898	국	기획재정부					
54	연희동		166-94		답		2,318		2,318	국	기획재정부					
55	연희동	166-22	166-95	답	답	284	54	54	54	국	기획재정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3/4)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명	주소	소유 지분	성명	주소	권리 관계	
56	연희동	166-8	166-83	답	답	235	174	184	174	공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		
57	연희동	166-7	166-82	답	답	893	566	548	566	공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		
58	연희동	167	167-2	답	답	1,038	293	287	293	공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		
59	연희동	167-1	167-3	답	답	1,983	1,889	1,858	1,889	공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		
60	연희동	165-13	165-73	답	답	1,574	266	259	266	공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4/4)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명	주소	소유 지분	성명	주소	권리 관계	
소 계		8필지	7필지			6,395	2,111	2,146	2,111							
61	연희동	165-12	165-72	전	전	1,248	980	964	980	공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		
62	연희동	산119-5	산119-12	임	임	404	55	58	55	공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		
63	연희동	산119-7	산119-13	임	임	158	117	152	117	공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		
64	연희동	산122-1	산122-13	임	임	2,658	341	380	341	공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		
65	연희동	산122-8	산122-14	임	임	1,206	443	408	443	공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도로과)		
66	연희동	165-48	165-79	답	답	96	91	88	91	공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		
67	연희동	171-6	171-11	답	답	109	84	86	84	공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		
68	연희동	428-151	-	유	-	516	-	10	-	공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		삭제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조서 (1)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 유 자		비고
						성명	주소	
1	연희동	166-85	비닐하우스		2,016㎡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	
2	경서동	124-136천	한전주	8525Q252 서정간43R16	1	한국전력		본선(STA.0+050)
3	경서동	124-133제	한전주	8525Q352 서정간43R15	1	한국전력		본선(STA.0+077)
4	연희동	161-3도	한전주	8525W361 서정간46R4	1	한국전력		봉수대로(STA.0+223)
5	연희동	161-3도	한전주	8525W351 서정간46R5	1	한국전력		봉수대로(STA.0+172)
6	연희동	161-3도	한전주	8525W342 서정간46R6	1	한국전력		봉수대로(STA.0+136)
7	연희동	산119-4도	한전주	8525W343 서정간46R7	1	한국전력		봉수대로(STA.0+089)
8	연희동	산122-6임	한전주	8525W331 서정간24R17	1	한국전력		봉수대로(STA.0+056)
9	연희동	165-12전	한전주	8525W344 서정간46R7R1R1	1	한국전력		봉수대로(STA.0+629)
10	경서동	124-136천	체신주	-	1	LG U+		본선(STA.0+050)
11	경서동	124-133제	체신주	-	1	LG U+		본선(STA.0+077)
12	연희동	161-3도	체신주	8525W 371	1	LG U+		봉수대로(STA.0+223)
13	연희동	161-3도	체신주	8525 361	1	LG U+		봉수대로(STA.0+189)
13	연희동	161-3도	체신주	8525W 351	1	LG U+		봉수대로(STA.0+117)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조서 (1)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 유 자		비고
						성명	주소	
14	연희동	산119-4도	채신주	8525W 342	1	LG U+		봉수대로 (STA.0+090)
15	연희동	산122-6임	채신주	8525W 343	1	LG U+		봉수대로 (STA.0+050)
16	경서동	124-34전	가로등	근린공원2#3-21	1	서구청		본선(STA.0+023)
17	경서동	124-209답	가로등	경 서3 #1514-우3	1	서구청		본선(STA.0+026)
18	경서동	124-211전	가로등	경 서3 #1514-우2	1	서구청		본선(STA.0+048)
19	경서동	124-211전	가로등	근린공원2#2-1	1	서구청		본선(STA.0+054)
20	경서동	124-211전	가로등	경 서3 #1514-우1	1	서구청		본선(STA.0+070)
21	경서동	124-211전	가로등	근린공원2#2-2	1	서구청		본선(STA.0+073)
22	경서동	124-133제	가로등	태양관 가로등	1	서구청		본선(STA.0+074)
23	연희동	161-3도	가로등	봉수대길 #428-우2	1	서구청		봉수대로 (STA.0+213)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조서 (2)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 유 자		비고
						성명	주소	
24	연희동	161-3도	가로등	봉수대길 #428-우1	1	서구청		봉수대로(STA.0+171)
25	연희동	161-3도	가로등	봉수대길 #428-좌1	1	서구청		봉수대로(STA.0+149)
26	연희동	161-3도	가로등	봉수대길 #428-좌2	1	서구청		봉수대로(STA.0+119)
27	연희동	산119-4도	가로등	봉수대길 #428-좌3	1	서구청		봉수대로(STA.0+091)
28	연희동	산122-6임	가로등	봉수대길 #428-좌4	1	서구청		봉수대로(STA.0+058)
29	연희동	산122-6임	가로등	봉수대길 #428-좌5	1	서구청		봉수대로(STA.0+031)
30	경서동	124-33답	신호등		1	경찰서		본선(STA.0-002)
31	연희동	161-3도	신호등		1	경찰서		봉수대로(STA.0+135)
32	연희동	161-3도	신호등		1	경찰서		봉수대로(STA.0+122)
33	연희동	161-3도	신호등	신호등(보행자)	1	경찰서		봉수대로(STA.0+106)
34	경서동	124-278전	운동기구		1	서구청		본선(STA.0+045)
35	경서동	124-303전	운동기구		1	서구청		본선(STA.0+048)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조서 (2)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 유 자		비고
						성명	주소	
36	경서동	124-304전	운동기구		3	서구청		본선(STA.0+051~0+057)
37	연희동	161-3도	통신맨홀	통신맨홀	1	SK		봉수대로(STA.0+143)
38	경서동	124-33답	가로등맨홀	가로등맨홀	1	서구청		본선(STA.0-002)
39	경서동	124-33답	신호등맨홀	신호등맨홀	1	경찰서		본선(STA.0-003)
40	연희동	161-3도	신호등	신호등맨홀	1	경찰서		봉수대로(STA.0+121)
41	연희동	산119-4도	신호등	신호등맨홀	1	경찰서		봉수대로(STA.0+044)
42	연희동	161-3도	신호등	신호등맨홀	1	경찰서		봉수대로(STA.0+104)
43	연희동	161-3도	신호등	신호등(제어기)	1	경찰서		봉수대로(STA.0+121)
44	경서동	124-211전	가로등	공원등 분전함	1	서구청		본선(STA.0+044)
45	연희동	161-3도	가로등	봉수대길 #428(분전함)	1	서구청		봉수대로(STA.0+162)
46	경서동	124-209답 124-211전	도시가스	도시가스	15m	삼천리		본선(STA.0+015~0+025)
47	경서동	124-209답	상수도관	상수도관	15m	인천광역시		본선(STA.0+010~0+025)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조서 (3)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 유 자		비고
						성명	주소	
48	경서동	124-209답	채신주	광케이블	15m	LG U+		본선(STA.0+010~0+025)
49	경서동	124-209답	광케이블	광케이블	15m	SK		본선(STA.0+010~0+025)
50	연희동	161-3도 산119-4도 산122-6임	광케이블	광케이블	210m	SK		봉수대로 (STA.0+010~0+025)
51	연희동	161-3도 165-48답 165-52답 168-3답 산119-4도 산122-6임	광케이블	광케이블	210m	KT		봉수대로 (STA.0+015~0+223)
52	경서동	124-209답	광케이블	광케이블	15m	KT		본선(STA.0+010~0+025)
53	연희동	124-209답	한전주	지중관로	15m	LG U+		본선(STA.0+008~0+023)
54	경서동	124-209답	보차도난간	보차도(난간)	40m	서구청		본선(STA.0+035~0+067)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6-43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2. 2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느티로51번길 11(경서동)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일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별 도 열 랐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하시거나 서구청 홈페이지(<https://www.seo.incheon.kr>)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6.2.23.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조서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124-54	인천광역시 서구 느티로51번길 11 (경서동)	20260223	느티로의 시작점의 510m지점에서 분기하는 도로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6-427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 1-205호선) 사업 공사 완료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고시 제2025-94호(2025. 5.22.)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시설명: 당하동 소로 1-205호선 해든회차로 조성사업】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6. 2. 2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318-9번지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 칭: 당하동 소로 1-205호선 회차로 조성사업

○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	비고
				결정	금회	결정	기시행	금회		
도로	소로	1	205	11	11	100	84	16	회차로 면적 182.3㎡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연번	성명	주소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심곡동, 서구청)	
2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626	

○ 사업기간: 실시계획 인가일 ~ 2026. 6. 30.

○ 준공일: 2026.1.14.(공사완료보고일)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6-439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치법규 일괄 정비 362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치법규 조례를 일괄 정비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2. 2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치법규 362개 조례를 일괄정비하여 자치입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별도 첨부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3월 16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검단예산재정과, 전화 560-0963, 팩스 560-28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 각 1부.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조례 제정의 목적(제1조)
- 나.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기능과 심사기준(제2조~제4조)
- 다. 위원장의 및 위원의 임기와 직무(제5조~제6조)
- 라. 위원회의 회의 및 간사에 관한 사항(제7조~제8조)
- 마. 수당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9조~제1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2명의 위원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의(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과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임명하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그 밖의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2.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3.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② 구 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감사부서장이 되며, 사무직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구의회에 보고) 위원회는 매년 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공직자윤리법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둔다.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 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5. <생략>

6.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시·군·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시·군·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7.~ 8. <생략>

④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의 자격, 임기, 선임 및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1.~ 5. <생략>

6.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법과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규칙, 대통

령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21조(위임규정)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 정의(제1조~제2조)

나. 구민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제3조)

다. 구민의 협력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제4조~제6조)

라. 인권교육 실시,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제7조~제8조)

마.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9조~제12조)

바. 위원회 심의 의견청취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제13조~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구민"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구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인권침해 시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구민의 협력) 구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구의 인권정책 시행 시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사업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소관부서별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교육)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인권교육을 시행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
2.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 및 민간단체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인권교육 시행 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시책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가 추천한 2인
2. 인권 관련 단체에서 인권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계, 연구기관 및 법조계 등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인권 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업무 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2.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⑥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관련 공무원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민감사관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구민감사관의 역할,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제2조~제4조)
- 나. 구민감사관의 해촉, 책무에 관한 사항(제5조~제6조)
- 다. 제척, 제보사항 처리 등에 관한 사항(제7조~제8조)
- 라. 지원, 수당, 포상,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제9조~제1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민감사관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감사업무 전반에 외부전문가의 구정참여 확대와 열린 감사 운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민감사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민감사관(이하“구민감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구민 불편·불만사항 제보
2. 위험시설·다중이용시설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지역 제보
3. 공무원 등의 비위, 부조리 및 불친절 행위에 대한 제보
4.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검단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감사 및 조사 참여
5.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각종 사업현장 점검 및 개정·시정 의견 제시
6. 지역 현안사업 등의 문제점 및 개선 의견 제시
7. 그 밖의 구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건의

②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의 감사·조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감사 및 조사기법, 근무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구민감사관은 검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검단구에 5년 이상 거주(2026.06.30.까지 서구 거주기간 포함)하면서 구정

발전에 관심이 많은 사람

2.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부패척결에 대한 사명감·정의감 및 신고정신이 투철한 사람

② 구민감사관은 공개모집 또는 동장의 추천으로 선정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구청장이 구민감사관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교부한다.

④ 그 밖에 구민감사관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임기) ① 구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된 구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민감사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구민감사관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그 밖의 질병 등의 사유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구민감사관의 책무) ① 구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2조에서 정한 구민감사관의 역할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구민감사관은 그 지위를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민감사관은 역할수행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감사·조사에 참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척 등) ①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이 감사·조사의 내용과 직접·간접 적으로 관련이 있을 때에는 해당 사건에서 제척한다.

② 수감기관은 구민감사관이 감사와 관련 공정한 감사활동을 수행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구민감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 등 공정한 감사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제보사항 처리 등) ① 구민감사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구정에 관한 사항을 제보 또는 건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이 제보·건의한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부에 등재하여 종결할 때까지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에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관련 기관 및 부서에 이첩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처리사항을 이송 받은 관련 기관 및 부서의 장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보된 내용의 처리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당해 구민감사관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공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연찬회 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구민감사관이 감사·조사 및 주요 건설공사장의 현장방문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 등에 참석한 때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

급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구청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구민감사관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위촉장(제3조제3항 관련)

위 촉 장

(주 소)

(성 명)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민감사관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귀하를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민감사관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청 장

[별지 제2호서식]

서약서(제6조제3항 관련)

본인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관으로 . . . 부터 . . . 까지 실시하는 () 관련 감사 과정에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민감사관으로 참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엄숙히 서약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 1. 본인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세로 감사에 참여하며,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한다.
- 1. 본인은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다.
- 1. 본인은 감사에 참여하여 알게 된 비밀 및 개인정보 등에 대하여 누설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구민감사관의 제보·건의서(제8조제1항 관련)

건명				
구민감사관	성명	(서명)	전화	
	주소			
제보내용(사실내용)				

○

처리방법(처리 의견)

○

상기 사항을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민감사관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보·건의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 제보·건의 주요내용에는 제보 등의 이유, 그 원인의 사실내용, 처리방법에 대한
의견 등을 기재하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별지 제4호서식]

구민감사관의 제보사항 접수부(제8조제2항 관련)

접수 번호	접수일	제보자			관련기관(부서) 이송일/ 관련기관 (부서)명	결재		완료일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제보내용 (요약)		담당자	담당	
					/			
					/			
					/			
					/			
					/			
					/			
					/			
					/			
					/			
					/			

[별지 제5호서식]

구민감사관 제보사항 등 처리부(제8조제4항 관련)

접수번호		접수일시	:	처리일시	:
제 출 자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	)
처리(관련) 부 서		처리방법	서면(), 전화(), 면담(), 기타()		

처리결과 회신내용(요지)☐ 제보 내용

-
-

☐ 처리 및 조치 내용

-
-

처리구분	완결()	처리중()	불가()

관계 법령 발췌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① 감사기구의 장은 회계·보건·환경·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담당자로 본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2026. 7. 1. 검단구 출범으로 인한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목적, 정의, 구청장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3조)

나. 자율해결과 신뢰확보, 이익의 비교형량,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6조)

다. 갈등영향분석,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위원회의 기능,

심의결과 반영,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제11조)

라.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합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갈등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지나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통합과 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충돌을 말한다.
3. "공공갈등관리"란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공공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공공갈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갈등해결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자율해결과 신뢰 확보) ① 공공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공공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율적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중립적 위치에서 당사자 간에 공공갈등이 합리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신뢰회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이익의 비교형량)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 하여 서로 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갈등영향분석) ①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구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지나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에서 추진하는 공공사업의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제15조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은 갈등영향분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갈등의 발생 및 해결 가능성,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절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공시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8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하되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촉직 위원은 갈등예방 및 조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공공갈등조정 및 관리경험이 있는 전문가
2.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변호사, 언론인
3. 인천광역시검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⑥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⑦ 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 ⑧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⑨ 위원이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이 조례를 위반한 때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 ⑩ 위원 중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참여할 수 없다.
- ⑪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갈등관리 업무 소관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추진
2.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공갈등 해결방식의 발굴·활용
3. 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 등 정비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5.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6.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심의결과의 반영)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구청장은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당사자 또는 전문가 등이 정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공공정책 등의 결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갈등조정협의회)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3조(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해당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소속 공무원, 당사자 및 전문가로 한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 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단, 필요시 협의회 구성원 간 합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갈등 사안이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⑥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4조(합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합의 결과 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합의 결과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여서는 아

니 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합의 결과의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갈등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운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을 지정·활용할 수 있다.

1. 갈등조정협의회 참여 등 자문
2.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활용
3.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5.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에 필요한 사항

제16조(비밀유지) 위원회 위원과 협의회의 위원 및 제15조의 전문가 및 전문기관은 공공갈등심의 또는 공공갈등조정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흘리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갈등관리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등)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또는 제12조에 의해 설치된 협의회위원 등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3조(적용대상) ①이 영은 중앙행정기관(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은 이 영과 동일한 취지의 갈등관리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제1조~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제3조~제4조)
- 다.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조치사항(제5조~제6조)
- 라. 실무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제7조~제12조)
- 마. 피해직원 보호 및 관련 직원 불이익 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
(제13조~제14조)
- 바. 허위신고 보호 배제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제15조~1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없음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괴롭힘 관련 신고자와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하 "괴롭힘"이라 한다)이란 직원 간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분청, 직속기관 및 출장소,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4. "피해 직원 등"이란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괴롭힘 행위 금지를

위한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괴롭힘 행위 근절 및 예방을 위하여 감사실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괴롭힘에 관한 신고 상담·접수
2. 괴롭힘 피해자 보호 및 지원
3.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
4. 그 밖에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

제6조(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구청장은 괴롭힘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는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괴롭힘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7조(실무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괴롭힘의 판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3.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에 대한 권고
4. 그 밖의 괴롭힘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변호사, 노무사, 교육자, 심리상담사, 인권전문가, 공무원 대표 등 중에서 5명 이내
2. 인사, 법무, 기간제·공무직, 성희롱·성폭력 분야 담당 공무원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되 중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동일 부서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한 경
험이 있었던 경우

② 피해직원 등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
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
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
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제10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괴롭힘 조사 전 또는 후에 재
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괴롭힘 피해 직원 등 보호)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의 사실 확인 기간에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 직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 직원 등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 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 등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4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구청장은 괴롭힘으로 인한 상담, 조사 및 협력 등을 이유로 관련 직원(피해 직원 등,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 등을 말한다)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신고, 조사, 상담 및 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허위신고) 신고자가 신고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16조(비밀유지) 괴롭힘 사건의 상담·조사·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 처리를 위한 조례안

제정 목적(제1조)

나. 용어의 정의(제2조)

다. 구청장의 책무(제10조)

라.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보상금 지급 등(제4조~제8조)

마. 공익신고보호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제9조~제10조)

바. 공익신고 관련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제11조~제12조)

사. 공익침해행위 다수 발생 분야 대상 환경조성 사업 선정 및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제13조~14조)

아. 공익신고 사무 처리를 위한 사항(제15조~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2항 및 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4항 및 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이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인정된 기업을 말한다.

6.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조성사업”(이하 “환경조성사업”이라 한다)이란 공익침해 취약 분야로 공익신고 처리 시스템 및 신고자 보호 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사업을 말한다.

7. “공익신고 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행하는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보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효과적인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

제4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

다.

제5조(공익신고의 처리)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익신고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 등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공익신고 처리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등이 공익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 처리 결과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내부 공익신고자인 경우에 한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법 제28조에 따른 중복지급금지에 관한 내용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구청장은 공익신고로 현저히 구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3장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제9조(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4.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환경조성사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
7.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4장 우수기업 선정 및 조성사업 지원 등

제11조(우수기업 선정)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의 정관 또는 사규 명시
2. 공익신고 접수·처리업무 담당 부서 및 신고 상담창구 설치
3. 공익신고 접수·처리 절차 등 시스템 구축
4. 임직원 대상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실시
5. 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6. 기타 위원회에서 정한 시책

② 제1항에 의한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우수기업에 대한 홍보 지원 등) 구청장은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 지원 등 기타 우대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환경조성사업 선정) ① 구청장은 공익침해행위가 다수 발생하거나 공익신고가 빈발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주민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과 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구청장은 환경조성사업으로 선정된 분야의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환경조성사업 대상 공익신고 보조금 지급) 구청장은 환경조성사업에 대해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15조(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 ① 구청장은 감사부서의 장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제16조(민간협력)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민간협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운영
2.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 프로그램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한 비용의 지원
3.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
4.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제17조(포상)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구민, 기업 및 단체에게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민원사무처리의 특례) 구청장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은 직장 내 공익신고자등이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렴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청렴 의무에 관한 사항(제1조~제4조)
- 나.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제6조~제7조)
- 다. 예산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제8조~제9조)
- 라. 청렴도 조사 및 청렴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제11조~제12조)
- 마.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여 포상에 관한 사항(제1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렴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직자"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검단구"라고 한다), 출자·출연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

다.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출자·출연기관"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검단구가 설치한 공사·공단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검단구에서 출자·출연한 단체·기관을 말한다.

3. "공직유관단체"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검단구 관할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평가결과 등 실태 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추진목표 및 전략
4.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추진과제
5. 청렴문화 교육 및 홍보계획
6. 그 밖에 구청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시행 등)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실천 운동
3. 공직자 청렴도 진단·평가
4.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설문조사
5.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운영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청렴도 조사) ① 구청장은 주요 대민업무 처리과정에서 부패발생 소지를 예방하고 구민 불만족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내부 조직운영 부패수준인 내부체감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공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렴도 조사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청렴도 조사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및 용역 계약 관리 및 감독 관련 분야

2. 보조금 지원 관련 분야

3. 민원업무 분야

4. 내부체감도 분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무분야 등

⑤ 구청장은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이용되어야 한다.

제12조(청렴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공직자가 청렴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소통 간담회, 청렴캠페인, 청렴민·관협의회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청렴시책 활동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검단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구민들이 청렴도 향상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검단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구청장은 검단구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
직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①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1. 한국은행
2. 공기업
3.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5.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동의·추천·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는 기관·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지정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2. 3.]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2023. 3.

1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생략>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2026. 7. 1. 검단구 출범으로 인한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제1조)

나. 감사청구 주민수(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18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도는 300명,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사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

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제22조제1항에 따라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청구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인명부에 적어야 하며, 청구인의 대표자는 감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해당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⑦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을 한 사람과 제4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⑧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제6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7항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로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청구를 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를 각하하되,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⑨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야 하며, 감사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감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미리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⑩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이 감사를 청구한 사항이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이거나 감사 중인 사항이면 그 기관에서 한 감사 결과 또는 감사 중인 사실과 감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알리겠다는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⑪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 감사 청구를 처리(각하를

포함한다)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⑫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9항에 따른 감사 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그 조치 결과를 지방의회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⑬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2항에 따른 조치 요구 내용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⑭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8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임기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제3조~제4조)
- 나. 회의에 관한 사항(제11조)
- 다. 고충민원의 신청, 고충민원의 조사에 관한 사항(제14조~제15조)
- 라. 고충민원의 각하 등,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제17조~제18조)
- 마.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에 관한 사항(제2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권익 보호·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민원사항 중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 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구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구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시민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4. “소속기관 등”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법령 등에 따라 그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5. “행정기관 등”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직무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두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② 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및 추천에 의해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 한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심신상의 장애,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위원 직책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④ 제3항제3호, 제4호의 경우에는 당사자를 제외한 과반수 위원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구청장이 면직 또는 해촉한다.

제5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6조(겸직금지)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행정기관 등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7조(비밀유지 의무)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8조(직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4조에 따라 신청된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2.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에 의뢰한 사건의 조사·처리
3. 구민들의 권익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각종 활동 수행

4.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내·외 기구·기관들의 교류·협력

5. 그 밖에 위원회 회의의 의결을 거쳐 필요하다고 결정한 활동

제9조(직무관할) 제8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구 및 그 소속기관 등

2.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 출자기관, 출연기관

3.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

제10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 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본인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본인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감정·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본인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직무활동에서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① 직무범위를 각기 달리하여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구정권고, 제도개선 권고, 감사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상호간의 관계) 위원회는 합의제로 운영하며 상호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전문가 자문)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장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등

제14조(고충민원의 신청) ① 누구든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내용
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가 고

충민원 서류를 보류·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그 밖에 고충민원의 접수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고충민원을 접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여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고충민원의 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동일 민원을 제출한 경우
5. 그 밖에 고충민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위원회에서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한 경우

③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제15조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붙여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 및 구청장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에서 고충민원을 조사할 경우에는 구의 관련 부

서에 그 취지를 통보한다.

② 위원회는 고충민원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 또는 관련 대상기관에 대하여 질문하고 현황을 청취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을 직접 조사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관계부서 및 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17조(고충민원의 각하 등) ①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

1.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감사원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구의회에 관한 사항
6. 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7. 기타 위원회에서 조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제18조(시정·권고) 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심의결과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적절한 시정조치와 제도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19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위원회는 제18조에 따라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9조 각 호에 따른 직무관할 대상기관의 직원,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서 개최하는 회의 등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0조(처리결과의 통보)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시정권고 등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감사의 의뢰)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구청장에게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2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위원회는 제18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23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4장 위원회의 운영지원 등

제24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력 및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38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제1조~제2조)
- 나. 신고 방법 및 기한에 관한 사항(제3조~제4조)
- 다. 부조리 신고 접수에 따른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제5조)
- 라. 신고자 및 협조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제6조~제10조)
- 마. 허위신고에 관한 사항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제11조)
- 바. 신고보상금 및 지급 제외·환수에 관한 사항(제12조~제14조)
- 사. 신고자 등의 신분 노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사항(제1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 신고에 대한 처리, 신분보호 및 보상금 지급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조리 신고보상금”(이하 “신고보상금”이라 한다)이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함으로써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2. “공무원 등”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공무원 및 구에서 출자 및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임직원을 말한다. 다만, 임용권을 달리하는 기관의 공무원이 구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시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할 경우에는 행위당시의 재직기관 소속으로 본다.
3. “부조리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으로

구 재정에 손해를 끼친 행위

다.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제3조(신고방법)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구 감사부서에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및 기타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별표 1의 서식에 따라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기한)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행위일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5조(사실조사) ① 감사부서장은 부조리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실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실험·검사·감정 및 전문적인 기술 검토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2. 조사대상자의 장기출장·휴직·장기입원 및 천재지변 등으로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실여부 조사 시 필요한 경우 신고자 및 피신고자로부터 진술서 등 확인조서를 받을 수 있다.

제6조(신고자 비밀보장) ① 감사부서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신분보장) 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장에게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장은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인사부서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신변보호) 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사람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의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그 밖의 관련 부서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보복행위 금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장은 제1항의 통지 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1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허위로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신고보상금 등) ① 신고보상금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보상금 지급은 본인 명의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신고보상금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결정을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조리의 유형, 비위 및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벼운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보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2. 신고보상금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신고보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 여부 확인이 곤란한 사항
2. 제4조의 신고기한이 지나서 신고된 사항
3.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그 밖의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 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4.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
5.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
6.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7. 감사부서 직원이 신고한 사항
8. 그 밖에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사항

제14조(환수) 구청장은 신고보상금을 지급한 후 제13조의 신고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5조(손해배상) 신고자 및 협조자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분노출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직자 부조리 신고서(제3조 관련)

신 고 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전화번호	
	직 위 (직 급)			
피신고인 (부조리행위자)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신 고 내 용				
증 병 서 류				
비 고				
「인천광역시 검단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별표 2〕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기준(제12조 관련)

1. 유형별 지급기준

구분	유 형(지급대상)	지 급 기 준
1	제2조제3호가목 관련	·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 ·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
2	제2조제3호나목 관련	· 추정 또는 환수가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정 또는 환수 가능액의 20% 이내 · 추정 또는 환수가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정 또는 환수 추정액의 10% 이내
3	제2조제3호다목 관련	· 알선·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금액의 10배 이내 · 알선·청탁 행위 신고 : 100만원 이내

2. 지급액의 상한액 기준

위 표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급기준 상한액은 2천만원으로 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에서 균등분할 지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5. ~ 6. <생략>

7.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아. 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의회 동의 및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8조~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의 권한에 속한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 기관

2. “수탁기관”이란 제1호에 따라 민간위탁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 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정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때에는 그 만료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1항 및 2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 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 개요(규모, 지원시설 등)
5. 민간위탁 기간
6. 민간위탁 예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민간위탁적격자 심의위원회 또는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근거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별도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 수준
2. 재정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5. 그 밖에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개모집에 따르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인터넷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제8조(민간위탁적격자 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민간위탁적격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 여부
2. 그 밖에 구청장이 수탁기관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1. 5급 상당 이상의 관계 공무원
2.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세무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4.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경우는 특정 성별(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 및 관계기관 등에 수탁기관 선정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인천광역시 검단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하려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5.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만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이하 “자문 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
4.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등을 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제7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결과가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하며 개인일 경우에는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3. 민간위탁 사무 명칭과 그 내용
4. 민간위탁 기간

5. 민간위탁 예산 및 운영 지원 사항

6. 수탁기관의 의무

가. 조례 및 민간위탁계약서 준수 및 구청장의 처분 등 지시사항 이행

나. 시설, 장비, 비용 등의 위탁받은 목적으로만 사용

다. 위탁받은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담 징수행위 금지

라. 위탁받은 시설의 중·개축 또는 추가 신축의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

마. 위탁받은 사무의 재위탁 금지.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

7. 계약 위반 시의 책임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6조(지도·점검 등)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에 민간위탁한 사무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는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 문서로 수탁기관에 알려야 한다.

⑤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사를 시행해야 한다.

⑥ 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 등을 해야하고, 위법 또는 부당한 위탁사무를 한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도 있다.

제17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 기간·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게 하거나 직접 성과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구 인터넷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제19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제6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알리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안 제2조)

나.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7조)

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기본법」 제4조,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전담부서는 적극행정 업무 담당부서로 하고, 적극행정 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제4조(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법 제75조의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검단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75조의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
2.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영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구청장이 임명하는 관계 공무원은 각 국장, 보건소장, 감사 및 인사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영 제11조제4항부터 제7항에 따라 운영한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행정기본법

제4조(행정의 적극적 추진) ① 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 및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의 적극적 추진 및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구체적인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행정의 적극적 추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적극행정위원회를 둔다. 다만, 적극행정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가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

시를 요청한 사항

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아니한다.

④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⑤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등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본법」 제4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27.>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포함한다. 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적극행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

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임전결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3. 6. 27.>

제5조(의견 제시 요청)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체감사 대상기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감사기구의 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사안이 중대하거나 둘 이상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의견을 제시하

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에게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1.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해당 시·군·구가 소속된 시·도의 감사기구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의 경우(제1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소관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 또는 감사원

제6조(전담부서의 지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적극행정 책임관과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제7조(적극행정 추진사항 평가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의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 7. 27.>

1. 적극 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 7. 27.]

제8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및 업무 여건을 고려하여 적극행정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적극행정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술 또는 환경의 변화로 개선이 필요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치법규를 입안하거나 정비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치법규를 해석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취지를 벗어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12. 27.>

1.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

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
의 장이 자문한 사항

3.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3의2.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4.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②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
회가 같은 항 제2호 또는 이 영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
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1. 7. 27.]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
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 8. 25., 2021. 7. 2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0. 8. 25., 2021. 12. 16.>

1. 시·도의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에 따른 행정부시장·
행정부지사, 부교육감 또는 민간위원

2. 시·군·구의 경우: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또는 민간위원

③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
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감사기구의 장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0. 8. 25., 2021. 7. 27.>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 8. 25.>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0. 8. 25.>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⑥ 위원회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현안을 심의하는 등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위원회(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를 말한다)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7.>

⑦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8. 25., 2021. 7. 27.>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8. 25., 2021. 7. 27.>

[제목개정 2020. 8. 25.]

제11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7. 27.]

제11조의3(위원의 해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

되는 경우

4.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2. 12. 27.]

제12조(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공무원은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직접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8. 25., 2021. 7. 27.>

[제목개정 2020. 8. 25.]

제1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개정 2020. 8. 25.>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8. 25.>

③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적극행정으로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로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공무원을 선정 또는 선발하여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8. 25.>

④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선정 또는 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0. 8. 25.>

제14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20. 8. 25., 2021. 1. 5.>

1.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2.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급
3.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에 따른 성과연봉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부여.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제2항 및 별표 14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대상 인원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인원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4.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따른 특별휴가
5.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6.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가점 부여
7.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단축
8. 그 밖에 희망 부서로의 전보 및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의 우대 조치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거나 대통령표창을 받은 공무원(퇴직 예정 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③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3조에 따라 선발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사상 우대 조치를 이행했는지 점검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15조(징계 요구 등 면책) ①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②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3조에 따른 감사를 받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 등의 처분요구를 하지 않는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없었을 것

④ 공무원이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사전컨설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공무원이 제12조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0. 8. 25.>

⑥ 위원회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른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건의할 수 있다. <신설 2020. 8. 25.>

제16조(징계등 면제) ①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않는다.

② 공무원이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사전컨설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공무원이 제12조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 8. 25.>

④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4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적극행정 추진에 따라 발생한 비위임을 주장할 경우에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고려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징계등 의결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어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제2호의 경우에는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7.>

1.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받아 제16조에 따른 징계등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2.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하여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7.>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 12. 27.>

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을 가진 사람(이하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라 한다)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징

제의결등 요구서의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보내는 경우로서 징계의결등의 대상 행위가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 ombuds만이 징계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해당 징계등 혐의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7.>

제17조의2(적극행정국민신청) ① 법령이 없거나 법령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사람은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신청(이하 “적극행정국민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민원[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4)의 기타민원은 제외한다]의 내용을 거부하는 통지
2. 「국민 제안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민제안이 채택되지 않았다는 통지

② 적극행정국민신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을 통해서 해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적극행정국민신청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견을 첨부하여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적극행정국민신청의 내용을 검토한 후 제5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의견 제시 요청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한 경우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국민신청의 방법·절차·처리기준, 처리결과 통보, 사후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1. 7. 27.]

제17조의3(소극행정 신고) ① 누구든지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제3항에 따른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의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소극행정 신고센터의 운영과 신고사항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1. 7. 27.]

제18조(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이 발생한 경우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9조(소극행정 예방 지원) ①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극행정의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하여 자문하거나 상담, 교육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신설 2021. 7. 27.>

제20조(파견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파견공무원”이라 한다)은 파견 기간 중의 적극행정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파견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② 파견기관의 장은 파견공무원을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 선발한 경우에는 파견공무원의 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원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사상 우대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8. 25.]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청장 취임 후 원활한 구정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5조)

나.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라. 기 타: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에서 위임한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법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이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 사용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 사용내역, 주요 활동 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①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당선인”이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②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④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⑤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시·도: 20명 이내
2. 시·군 및 자치구: 15명 이내

⑥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⑦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수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 ⑧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된다.
- ⑨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을 본다.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기본원칙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나.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0조)
- 다. 위원회의 운영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모든 위원회를 말한다.
2. “담당부서”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구 각종 위원회의 운영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원회 운영에 있어 구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민주성·투명성·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에 대한 자문 또는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안심의 등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높은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설치·운영하는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다른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이 있을 것

② 구청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 및 기능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기한(존속기한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구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가·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6.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7.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위촉 해제 후 비위촉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위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가 추천한 구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의 전문가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④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
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의원에 대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9조(공사 · 용역의 금지)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공사 · 용
역 등에 대하여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
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 ②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구청장은 다른 법령·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원회 회의록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의 명칭
2. 일시 및 장소
3. 참석자 명단
4. 상정 안건 및 결정사항
5. 그 밖의 토의사항

② 공개대상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 심사 전에 해당 위원회의 토론내용이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구민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위원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된 경우와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수당 등) ① 위원회 개최 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참석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서면수당: 서면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3. 심사수당: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건을 받아 사전에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결과물을 제출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②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한 위원에게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및 여비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2. 구의원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단, 구의회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 관리 및 정비)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

3. 위원회의 구성·운영의 변경사항 등

- ②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점검하여 위원회의 통합·폐지 등 정비계획을 세울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하며 연,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된 위원 또는 6년 이상임하여 위촉된 위원은 제7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잔여 임기까지로 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검단구 미래발전 전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변경(제2조)
- 나.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속가능성 평가(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변경) ①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조제3항제4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법 제7조제3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제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②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본전략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수립·변경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3조(인천광역시 검단구 추진계획의 수립·변경)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의 수립·변경을 위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수립·변경된 추진계획 및 설명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4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을 마친 경우 그 점검 결과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조례 제정·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정·개정하려는 조례안을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 전까지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수립·변경하려는 행정계획을 그 수립·변경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토 결과를 확정하고, 그 검토 결과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6조(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의 효율적인 개발·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7조(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속가능성 평가)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 자료·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4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7조제3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에 자료·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지속가능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법 제20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청장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교육, 보건복지, 경제, 환경, 문화, 행정 등 각 분야의 전문가
2. 시민사회단체, 기업 또는 각 기관·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3.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은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 업무 소관 부서의 장을 간사로 둔다.

제15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수당)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지속가능발전 전담부서의 지정)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위탁)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업무의 일부를

민관협력단체,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8조(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기본전략의 수립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9조(추진계획의 수립·이행)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추진상황의 점검)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지방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지방추진계획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4조(법령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국가위원회에 대한 통보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방위원회에 대한 통보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⑥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 받은 법령 또는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생략

⑧ 제6항에 따른 국가위원회의 검토 대상·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위원회의 검토 대상·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국가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군·구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 실정에 맞추어 지방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위원회의 명칭·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6조(지방추진계획의 수립·변경)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추진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민제안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안의 종류 등(안 제3조~제6조)

나. 제안의 제출 및 심의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9조)

다. 제안의 채택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민제안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 전반에 관한 구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받아들이고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구민 제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구민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모 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 등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을 말한다.
2. “채택제안”이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4. “구민”이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 검단구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안의 종류) 제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유제안”이란 과제선정을 자유로이 하여 응모한 제안을 말한다.
2. “공모제안”이란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내용) 제안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편익증진이 가능한 각종 제도개선 방안
2. 행정운영의 능률화 방안
3. 구정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등으로 현저한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는 사항

4. 구 세입증대 방안

5. 그 밖의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제5조(생활공감정책관련 구민제안 공모) ① 구청장은 생활공감정책(구의 시책 등에 있어 조금만 제도를 개선하면 구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구민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년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구민제안을 공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구민제안의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관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제안제도 등 기존의 제도에 따라 이미 채택되었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3.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4. 제안의 실시효과는 있으나 막대한 경비소요, 새로운 문제점 발생 등으로 개선효과가 크지 아니한 것
5. 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제7조(제안의 제출) ① 구민 누구나 구정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관하여 단독 또

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공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안자의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안을 제출하려는 구민은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또는 구청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④ 2명이상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8조(제안의 심의) 접수된 제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무원 제안 규칙」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1. 제안의 채택 및 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
2. 채택제안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심사기준) 제출된 제안의 심사기준은 창의성, 경제성, 효율성, 적용범위, 주민편익증진도 등으로 하며 세부심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채택등급 등) ① 제안의 채택등급은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으로 구분하며, 등급별 인원은 복수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공모제안의 채택) ① 제5조에 따라 제출한 구민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공모기한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제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편·팩스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채택여부 결정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② 공모제안의 채택등급 등은 제10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불채택의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요청된 구민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2조(부상 등) ① 수상자에게는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상의 종류 및 액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안을 제출한 사람 중에서 채택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격려품(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④ 수상 후 타인의 제안사항을 제출한 것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을 취소하고, 상장 및 부상 등을 반환 조치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채택제안의 활용)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상의 종류 및 액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채택된 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 학술기관 및 관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 후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제안”이란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른 행정청(이하 “행정청”이라 한다)에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삭제 <2023. 8. 1.>

3. “채택제안”이란 행정청이 접수한 국민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4. “자체우수제안”이란 행정청이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국방·군사에 관한 제안의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을 말한다)에게 추천한 것을 말한다.

5. “중앙우수제안”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체우수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제5조(국민제안의 제출) ① 모든 국민은 제안 내용의 소관 행정청에 국민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1., 2023. 8. 1.>

② 국민제안을 제출하려는 국민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장애인이 국민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2. 7. 11.>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민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④ 둘 이상 행정청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국민제안의 경우에는 국민제안의 주된 내용의 소관 행정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7. 11.>

제11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행정청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 7. 11.>

② 행정청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

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 7. 11.>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 자치분권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한다.

제4조(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방안
4. 주민참여 실현과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①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계, 지방의회,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 1/3 이상의 개회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해당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하며, 실무담당을 서기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 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1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예산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정책개발
2.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사업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교류협력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의회의 의결 및 교류협력의 체결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가 국내외 도시와 활발한 교류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과 교류협력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지리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2. “친선결연”이란 국내외 도시 간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친선결연에 앞서 친선교류 의사를 표시하는 의향서 등을 상호 교환하는 단계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교류협력의 대상 및 기준)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에 결연 및 교류를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 도시의 자료를 수집하여 결연 및 교류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검토한 후 대상도시를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에 결연 및 교류를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행정 및 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 특성 등의 상호 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협력을 통한 실익의 기대가능성
5. 역사·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협력의 적정성 등

제5조(사전교류) 구청장은 친선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 도시 등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상호교류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의회 의결)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와 친선결연 등을 체결, 변경,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교류협력의 체결) ① 친선결연 등의 체결은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 단체장이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관한 협약서에 합의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친선결연 등의 체결 및 상호방문에 따른 경비 부담은 호혜주의에 따라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 단체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와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교류협력 활동
2. 청소년 인재육성을 위한 교류협력 활동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업간 교류협력
4. 지역 농특산물 및 자원의 교류를 통한 상호실익 증진 도모

5. 우수정책의 홍보 및 정책 공유사업 추진

6. 교류 도시와의 공무원 초청연수 및 교육

7. 재난·재해구호를 위한 의료지원 및 자원봉사자 등의 파견 또는 성금·구호 물품의 지원

8. 그 밖에 구청장이 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검단구가 추진하는 교류협력 사업에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제9조(교류협력의 취소) 구청장은 친선결연 등을 체결한 도시와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단절로 인하여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친선결연 등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협약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협약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련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6. (생략)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 국제기구·행사·대회의 유치·지원

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 9. (생략)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3조(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외교·통상 정책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제교류·협력, 통상·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를 포함한 정부 간 기구, 지방자치단체 간 기구를 포함한 준정부 간 기구, 국제 비정부기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민과 농어촌주민 간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사회를 활성화하고,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농어촌의 부존자원을 유지·발전시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도농교류 촉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9]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여비 지급 구분표(제30조 관련)

해 당 자	지 급 기 준
1. 공무원의 배우자	배우자인 공무원의 여비 지급등급
2. 사립학교의 교원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른 국공립학교 교원의 여비 지급등급을 준용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원·직원	가. 임원: 별표 1 제1호라목의 여비 지급등급 나. 가목 외의 직원: 별표 1 제2호의 여비 지급등급
4. 민간기업체의 임원·직원	공공기관의 임원·직원과 비교되는 직위 및 업무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출장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여비 지급등급
5. 그 밖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	업무의 성격, 동반 공무원의 직위 및 해당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출장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여비 지급등급

인천광역시 검단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공개 대상, 내용,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 다. 표기 방법 및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 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가 주최·출연·보조하는 행사 예산을 사전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실적 보고를 통한 예산집행의 투명화 및 예산 절감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사”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출연·보조하는 행사, 축제, 페스티벌,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을 말한다.
2. “행사 예산”이란 구가 직접 집행하거나 보조사업자 등에 출연 또는 교부한 비용을 말한다.
3. “홍보물”이란 행사진행자가 관련 행사를 직접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다음 각 목의 매체를 말한다.
 - 가. 리플릿 및 팸플릿
 - 나. 홍보용 책자
 - 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제3조(공개 대상) 총 행사 예산이 3억원 이상인 행사를 공개 대상으로 한다.

제4조(공개 내용) 행사 예산의 공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
2. 행사 예산 중 국비 또는 시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재원별 금액 및 비율

제5조(공개 의무) 행사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는 행사 홍보물을 제작할 때 제4조의 내용을 홍보물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를 출연 또는 교부한 경우 사업 예산을 출연·교부받아 집행하는 사람이 이를 대신한다.

제6조(표기 방법) ① 행사 예산의 표기는 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예산사항 표기 위치는 홍보물 전면 우측 상단에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식별이 용이한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③ 예산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 면적의 100분의 5 이상
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 앞표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확인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7조(결과의 반영) 다음 년도에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사가 계획되어 있는 경우, 행사 예산 공개 유무를 다음 년도 해당 행사 관련 예산 심의 시에 고려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목적(제1조)
- 나.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범위(제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4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 3. 5.>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의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 단체 등에 대해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공익에 입각한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나.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 공사, 시설, 운영표지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 라. 표지판의 설치장소, 철거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 마. 비용부담, 관리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이나 단체 등에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의 내·외부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 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지 않는다.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재산처분의 제한 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2. 시설건립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이 완료되어 10년이 경과한 날

②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보조사업자 및 이를 설치하기 위한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별도의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지원표시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으로 구분한다.

②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보조금 지원기관

2. 보조사업의 주요 내용

3. 그 밖에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해야 한다.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 등을 운영하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①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표지판은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장소를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설치 및 표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표지판 등의 철거) ① 표지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가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3.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4. 운영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기간이 끝나 더 이상 운영비를 받지 않게 된 경우

② 시설물 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해야 한다.

제10조(비용부담) 표지판의 설치, 철거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하는 보조금에 그 비용의 일부를 계상할 수 있다.

제11조(관리감독 및 평가)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표지판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표지판의 설치에 이 조례 시행 후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보조사업자부터 적용한다.

관계 법령 발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재산 처분의 제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의 현황을 보고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고받은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4. 11.>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4. 11.>

1.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2. 양도, 교환 또는 대여
3. 담보의 제공

④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1.>

1.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경우
2.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年數)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1.>

1.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지방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중요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3.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통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인천광역시 검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 제안이유

2026. 7. 1. 검단구 출범으로 인한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나. 기금 계정의 구분과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4조)
- 다.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라.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4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한 회계연도 내에서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 구분) 인천광역시 검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
(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 대비 100분의 3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직전 회계연도 이전 3년 평균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구청장이 재정여건을 판단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구청장은 통합기금을 인천광역시 검단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이자) ① 구청장은 국채·공채 이자율 수준, 구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따른 이자율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 계정의 금액 적립에 관한 사항
6.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써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운영 변경사항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위촉직 위원을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기금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부서별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 소관 국장

2. 위촉직 :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

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간사 및 회의록 작성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합기금업무 담당으로 한다.

-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하며, 정보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개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 통합기금업무 담당

-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로의 전출
2. 지방채 원리금 상환

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법예고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예고문 작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예고방법 및 예고기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함에 있어 구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검단구"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미리 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입법예고 대상)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신속한 구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입법내용이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3.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 및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입법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대한 부분이 변경되거나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5조(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주요내용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안의 전문을 함께 게재할 수 있다.

제6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예고문을 검단구 구보와 검단구에서 관리하는 컴퓨터 통신망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되, 필요한 경우 신문·방송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기관의 게시판 및 간행물 등의 게재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해당 입법예고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7조(예고기간) ① 구청장이 입법예고 기간을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할 경우에는 법무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와 협의하고, 특별한 사유로 예고 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법무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다시 하는 경우 긴급히 처리되어야 하는 입법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입법예고의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는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및 이유 등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공청회)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3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입법예고 시 공청회의 개최를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협의 등) 구청장은 입법을 함에 있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의 협의·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① 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22.>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삭제 <2002. 12. 30.>

③ 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행정청에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22.>

④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 10. 22.>

⑤ 입법예고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0. 22.>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자치법규안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공보 외에도 신문, 인터넷,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자치법규안의 주요 내용, 제출의견 접수기관, 의견제출 기간,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0. 20.>

③ 자치법규안에 대한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의 처리 및 그 처리 결과 등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5. 10. 2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5. 10. 20.>

[전문개정 2010. 10. 5.]

인천광역시 검단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4조)
- 나. 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9조)
- 다. 수당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검단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할 구의 규제정비계획서 심사
6. 그 밖의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개선권고) ①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기타 규제개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과반수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조정과 관련 긴급회의를 소집한 경우에는 통지기한과 상관없이 유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제7조(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규제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규제개혁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등)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위원회에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수당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참고인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적용 범위)

③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 등록 및 공표(公表),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보조금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 및 제2조)

나.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및 지방보조사업자 공모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부터 제4조)

다.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신고포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8조부터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가정보육과, 감사실 합의

라. 기 타: 해당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구의 주요 시책 수행상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구청장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구보나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구청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공고에 부합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인천광역시, 또는 구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 인천광역시 또는 구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사업 공모 시 표지판 설치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5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인계·폐지

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등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구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
3. 항공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④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의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의3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영 제21조의2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신고 또는 고발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 결정이 있는 때에는 포상금 지급 여부에 대한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법 제36조의3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부위원장은 기획재정 담당 업무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재정 업무 담당 국장, 총무행정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대표 등

다.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

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라.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마.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장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 위원장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장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심의대상) 법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하도록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요재산 현황(제6조제2항 관련)

자치단체명					
세부사업명					
재 산 명					
유 형					
목적(용도)					
주소	시·도 구분				
	상세주 소				
면적(m ²)					
내역	수량				
	단위				
취득가액(원)		계	국고보조금	지자체부담금	자기부담금
				시도비 : 시군구비 :	
현재가액(원)					
보조금유형					
취득일자					
처분제한기간(일자)					
소유자구분					

포상금 지급 신청서(제7조제1항 관련)

접수번호		접수일자		
① 신청인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②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③ 포상금 지급신청 내용	신고접수 번호	제 - 호		통보서 수령일
	신청금액	포상금 원		
④ 포상금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생년월일	

본인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포상금 결정 통지서(제7조제2항 관련)

포상금 신청 접수번호				
포상금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대상사건	사건명			
	피심인 (피조사인)			
	신고내용			
지급결정 사항	결정일자	년 월 일		
	결정내용	주문	대상자	에게 포상금 원 지급(신청기각)
		이유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우리 구에서 결정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직인)

관계법령 발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①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상 부득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청의 신청서식, 첨부서류, 제출일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모(公募)절차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21조(재산 처분의 제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 재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의 현황을 보고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고받은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4. 11.>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4. 11.>

1.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2. 양도, 교환 또는 대여
3. 담보의 제공

④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1.>

1.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경우
2.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年數)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1.>

1.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지방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중요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3.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통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제36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2.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수령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4. 11.]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1.>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제36조의3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5.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6.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7.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⑧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⑨ 위원은 제7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

의 대상 안전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⑪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선박을 매어두거나 부두에 닿도록 물위에 띄워 만든 구조물을 말한다) 및 부선거(浮船渠: 선박을 건조 또는 수리하거나 선박에 짐을 싣고 부리기 위한 부양식 설비를 말한다)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재산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중요재산의 현재액과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여 갖추어 두고, 반기별로 중요재산의 현황에 해당 중요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과 그 산출내역 및 납부기한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10. 4.>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산정할 때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의 현재액이 시장상황 등을 고려한 현재가치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을 통하여 해당 중요재산의 현재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23. 10. 4.>

제21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사실 관계를 조사한 후 그 처리 결과에 따라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내용을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나 법 제31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 명령이 이루어진 후에 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이나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본문에 따른 포상금(이하 “당초신고포상금”이라 한다)과 달리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당초신고포상금보다 감액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이나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지급할 것
2. 당초신고포상금(500만원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급할 필요가 있는 포상금의 최소 금액(이하 “최소지급액”이라 한다)을 정하고, 당초신고포상금이 최소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최소지급액을 지급할 것. 이 경우 최소지급액은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⑤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0. 4.] [중전 제21조의2는 제21조의3으로 이동 <2023. 10. 4.>]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용어의 정리(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안 제4조 ~ 안 제7조)
- 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운영위원회(안 제8조 ~ 안 제14조)
- 라.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안 제15조 ~ 안 제18조)
- 마. 주민참여예산 교육(안 제1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검단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검단구 관내 사업체 및 공공기관, 비영리 법인·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단체”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

제4조(운영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15일 이상 검단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과정의 주민참여 방법)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각 호의 방법
2. 주민참여예산위원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제6조(의견 제출) 의견을 제출하려는 주민은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절차 등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검단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8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예산참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1.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고, 주민참여예산 교육 과정을 이수한 주민으로서 공개 모집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예산·행정에 대한 전문가로서 주민·사회·직능단체, 기관, 학계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제9조(위원의 위촉·해촉 및 임기) ①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선정기준 및 모집 기간 등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가목의 사람이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제2조제1호나목의 사람이 속하는 사업체 등이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5.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대표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장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검단구 주민참여예산 담당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회의 개최 등) 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개최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개최한다.

1. 구청장의 개최 요구가 있을 경우

2. 위원장이 주민참여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예산편성요구안에 대하여 각 분야별 활동을 담당한다.

③ 분과위원회에는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두고,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3조(지역회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 관련 제안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둘 수 있다.

②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는 해당동에 거주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과 주민자치회 위원, 그 밖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구성한다.

③ 동 주민자치회는 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④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는 관할 동장 책임하에 운영하며, 간사는 해당 동 주민생활지원담당이 된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방향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구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담당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 중 간사 1명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③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겸임한다.

제4장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

제15조(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제안사업의 의견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 반영 사업 결정, 자체사업 예산편성 등 예산 관련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구성) ① 민관협의회는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보건소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및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② 민관협의회는 2명의 공동위원장, 간사 1명을 둔다.

③ 민관협의회 위원장은 구청장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이 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민관협의회 위원장은 민관협의회를 대표하고, 민관협의회 업무를 총괄 한다.

② 간사는 민관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8조(회의 개최) ① 민관협의회 위원장은 검단구의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된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를 개최한다.

② 민관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그 밖의 사항

제19조(주민참여예산 교육)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소양함양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민관협회의의 활동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와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한 위원 등에게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3., 2018. 3. 27., 2021. 1. 12.>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 2018. 3. 27.>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2018. 3. 27.>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3., 2017. 7. 26., 20

18. 3. 27.>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8. 3. 27.>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①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이 조에서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3. 3.>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 3. 3.>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여부 및 운영의 활성화 정도

2. 예산과정에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범위 및 수준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 및 교육 등 지원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3. 3.>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제2~3조)

나.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임기, 직무 및 운영 등(제4~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계 국·실·과·소의 과장급 공무원, 전문분야 교수, 지역주민 중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 구성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해당직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위촉직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회의운영) ①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

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부서 예산담당이 되고,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중기지방 재정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0조(실비보상) 위원회 개최시에는 출석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위원회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의결사항
5.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개정 2014. 5. 28.>

⑩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 5. 28.>

인천광역시 검단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작성,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 다. 재원조달방안의 작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라. 작성부서 및 제출시기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나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의원, 위원회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의장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구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구청장 및 의원 등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

만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이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하여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①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④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고, 재정소요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과약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고,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⑦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구청장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 발행, 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의원 등의 발의 의안의 경우에는 의원 등의 요청에 따라 업무소관부서에서 작성한다.

②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구청장이 발의하는 조례안의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의원 등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회상정안에 붙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청구대상·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78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그에 따른 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9.>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조례·규칙심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규칙의 제출·제정·개정·폐지 및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이장에서 "조례·규칙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규칙안
4. 예산안·결산 등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② 조례·규칙심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지방자치

단체의 부지사·부시장(부지사 또는 부시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부지사 또는 부시장으로 한다.)·부군수·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은 실장·국장 또는 실장·과장으로 한다.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제1항(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 나.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대신하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다. 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의견청취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할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대행한다.

제3조(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

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 시에는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8. 3. 27., 2020.

1. 29.>

1.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포함한다)

2. 재무제표

3. 채권관리 현황

4. 기금운용 현황

5.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6. 지역통합재정통계

7.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

8. 중기지방재정계획

9.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10.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10의2. 제39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및 주민의견서

11.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2.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13.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14.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

15. 지방보조금 관련 다음 각 목의 현황

가. 교부현황

나. 성과평가 결과

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보거나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5.>

④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하여는 제37조의3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신설 2022. 11. 15., 2023. 4. 11.>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2. 11. 15.>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을 공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의회와 시·군·자치구의 경우는 시·도지사에게,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자치구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2. 11. 15.>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시와는 별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세부사업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3., 2022. 11. 15.>

⑧ 제1항, 제2항, 제6항 및 제7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3., 2022. 11. 15.>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하는 경우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공통공시”라 한다)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특수공시”라 한다)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공통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2011. 9. 6., 2013. 3. 23., 2014. 11. 19., 2014. 11. 28., 2017. 7. 26., 2018. 12. 31., 2023. 9. 26.>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주요 재정사업 평가결과
2. 법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
3.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4.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5.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4. 11. 28.>

④ 삭제 <2014. 11. 28.>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4. 11. 28., 2017. 7. 26.>

인천광역시 검단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학술연구용역의 정의, 적용 범위 등 기본사항(제1조~제4조)
- 나.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에 관한 사항(제5조~제11조)
- 다. 학술연구용역 운영에 관한 사항(제12조~19)
- 라. 위원회 수당(제1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술연구용역의 타당성을 확보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용역 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 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책 개발이나 업무 추진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운영 등 학술연구 용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구 본청, 직속 기관을 말한다.
4.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에서 시행하는 모든 학술연구용역에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시비로 시행하는 용역

3. 용역 예정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인 용역
4. 매년 단순·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감염병 방제 등 긴급한 구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관리원칙) 학술연구용역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1. 선정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전문성 확보
2.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및 집행
3.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

제5조(설치 및 기능) 학술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구과제의 필요성, 타당성 및 유사·중복성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수행기간, 용역비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연구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연구 결과의 활용 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술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무책임자 2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검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과 학술용역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할 안건이 제출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2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 중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하여야 한다.

1. 사망,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연 2회 이상 불참 또는 개인적 사유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이득을 취하는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위원으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0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자문·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단체에서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재직한 경우
 -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③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 ② 간사는 용역업무 총괄부서의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용역업무 총괄부서의 담당이 된다.

제12조(용역 집행 실명제) ① 주관부서의 담당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용역실명대상은 주관부서의 장, 담당 및 주무관으로 한다.
- ③ 학술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을 용역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④ 용역과제담당관은 해당 학술연구용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 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용역과제 중복 선정 금지) 용역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학술연구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학술연구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를 선정해서는 안 된다. 다만, 유사한 연구가 이미 수행되었으나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유지)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그 밖의 종사자는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16조(예산편성 등) ① 구청장은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용역사무에 관한 예산을 의회에 승인요구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용역사업의 종합적 관리) ① 용역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의 착수 이후 1회 이상 연구용역 중간점검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에서는 연구용역 진행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용역과제담당관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 성과품을 보관·관리하고, 용역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용역의 활용실태 보고서를 매년 제2차 정례회 이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용역결과의 평가) ① 용역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 종료 후 지체없이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용역과제담당관은 용역결과의 평가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평가결과서를 위원회의 심의안건으로 제출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판정받아야 한다.

제19조(용역결과 공개) ① 용역과제담당관은 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없이 용역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은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적시하여야 한다.

제20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법률 및 소송 고문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설치에 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위촉 및 선발방식에 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다. 직무에 대한 사항(안 제5조)
- 라. 임기 및 해촉에 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 마. 자문료에 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법률 및 소송 고문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와 관련된 각종 쟁송 및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법률 및 소송 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인천광역시 검단구(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구”라 한다.)에 법률고문과 소송고문을 둔다.

제3조(위촉)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법무법인 포함)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내의 법률고문과 6명 이내의 소송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촉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선발방식)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법률 및 소송 고문을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추천에 따른 방식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위촉대상 변호사(법무법인 포함)의 징계정보를 요구하여,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촉을 제한하거나, 위촉하지 아

니할 수 있다.

제5조(직무) ① 법률고문은 구에서 요청하는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 및 그 밖에 법령의 해석·적용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② 소송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헌법재판소 관할심판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행에 관한 사항

2. 구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선임에 관한 사항(범죄사범 제외)

3. 소송사건에 대해 구청장이 요청하는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

③ 소송고문은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제6조(임기) ① 법률 및 소송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법률 및 소송 고문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 위촉기간 중의 자문평가결과와 소송수행실적 및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자문 또는 소송사건 진행 중 위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종결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해촉) 구청장은 법률 및 소송 고문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거나 제5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다음의 사유로 구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 가. 불변기일 지남
 - 나. 소송 당사자측과의 담합
 - 다. 변론기일 불출석 등 무성의한 소송수행
 - 라. 소송수행실적이 매우 저조한 경우
4. 자문평가결과가 매우 저조한 경우
5. 법률 및 소송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자문료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 및 소송 고문에 게 자문료와 소송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료 및 소송비용 등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청렴서약서(제3조제2항 관련)

청 령 서 약 서

나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법률 및 소송 고문으로 위촉됨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하나, 법률 및 소송 고문으로서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검단구의 공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

하나, 법률 및 소송 고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의 부당한 사용, 금품 수수 및 부당한 알선 또는 청탁을 하지 않는다.

하나, 소송 및 법률 고문 재임 중 범죄행위로 인한 형의 확정, 징계처분 등을 받은 경우 사전 통보 및 자진 사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전문, 조례, 규칙 및 예산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안 제5조)
- 나. 번호, 공포방법 및 공포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규칙 및 예산·결산의 공포 또는 고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 조례·규칙 및 예산·결산(이하 "조례·규칙 등"이라 한다)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제3조(조례) ①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적는다.

②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지방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적는다

제4조(규칙) 규칙은 전문에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적는다. 다만, 그 규칙이 인천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제5조(예산 등) 예산·결산 및 예산의 지방자치 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날짜를 기입한 후 구청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제6조(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③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지방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표시하되, 구청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공포방법) ① 조례·규칙 등은 구보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구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② 예산과 결산은 구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로써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공포일) 조례·규칙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구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32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지방의회는 제3항에 따라 재의 요구를 받으면 조례안을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前)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기간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 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한다.

⑦ 제2항 및 제6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공포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의견제출 제외대상 및 의견제출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안 제5조)
- 나. 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다. 의견제출 검토 및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으로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보완사항 및 보완 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구청장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규칙의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신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한 경

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8조(의견의 반영) 구청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구청장은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서식]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서

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3명을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	성명	[]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공동 의견제출	[] 해당	[] 해당되지 않음	대표자 인원 : 명
의견 ※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작성			
참고자료 ※ 필요한 경우 제출,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20조(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① 주민은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그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제3항에 따른 의견의 검토와 결과 통보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나.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 포상 및 성과금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 라. 기 타: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예산낭비의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 ①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2. 구민의 예산낭비신고 및 시정요구, 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4. 그 밖에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 ① 구청장은 제2조의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인천광역시 검단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2조에 따른 공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신고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예산낭비신고 등 시정요구 및 제안하고자 하는 자(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는 검단구 홈페이지, 포털시스템, 우편, 팩스 및 직접방문 등을 통하여

예산낭비신고 등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시정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 등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제안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시정요구 및 제안한 사람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예산낭비 등 심사) ① 구청장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행한다.

제6조(포상 및 성과금 지급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감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는 절감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제48조의2(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자, 재정지원을 받는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계약 또는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그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1항의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에 따라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제48조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48조(예산 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하려면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과 다른 사업에의 사용, 제2항에 따른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7조)
- 나. 납세자보호의 업무 종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37조)
- 다. 납세자보호 업무의 심의 관한 사항(안 제38조~제39조)
- 라. 선정대리인에 관한 사항(안 제40조~제4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2에서 따라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부서"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세무부서의 장"이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고충민원"이란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4.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권리보호요청"이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진행 과정에서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납세자 또는 법 제93조에 따라 납세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납세자보호관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설치)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 외의 조직에 둔다.

②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① 구청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인력 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직급기준: 6급

2. 경력기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이상의 징계 중인 사람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 특별사면·일반사면을 받지 않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 승진임용의 제한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있는 사람은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상 과실로 부득이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지방세 관련 제도 개선 과제 발굴

3. 기한의 연장, 가산세 감면 및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제7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6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영 제51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3.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권한을 세무부서의 장에게 행사한다.

제3장 고충민원

제8조(고충민원 처리준칙)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고충민원의 대상) 고충민원의 대상은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이 그 대상이다.

제10조(고충민원의 대상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 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1. 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 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감사원장·행정안전부장관·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탈세 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이 결정된 사항

6. 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고충민원의 분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처리한다.

1. 구청장이 결정·처분한 사안인 경우
2. 구청장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안인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고충민원의 신청기간) ①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면 법 제38조에 따른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의 대상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첫 날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위원회 심의·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조화·법령 자문 또는 사실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신기한 내에 그 고충 민원의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두 번째 신청에 대해서는 처리 제외됨을 통지하고, 세 번째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2회 이상 신청된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 신청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청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거나 당초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된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한다.

③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하여 이송 받은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5조(신청의 취하) 민원인은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한 세무부서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고충민원의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6조(불이익변경 금지)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에게 고충민원신청 전보다 불리한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불복 제외대상)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법 제89조에서 규정하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4장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제18조(조사기간 연장신청) ① 조사를 담당하는 세무부서의 장이 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려면 납세자보호관에게 조사기간 종료 3일(공휴일·토요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 또는 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범칙사건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 포함)는 조사기간 연장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9조(연장신청에 대한 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제1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연장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세무조사 연장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제20조(세무조사 연기신청) 납세자 또는 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조사연기신청을 하려면 세무조사 연기신청은 조사 개시 3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21조(연기신청에 대한 결정)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20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 신청인이 요구한 기간을 단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5장 권리보호 요청

제22조(권리보호 요청 사무처리 기본원칙) 권리보호 요청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납세자보호관은 법·영 또는 이 조례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권리와 편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하며, 세무부서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23조(고충민원과 구분) ① 권리보호 요청은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고충민원과 구분된다. 다만 신속한 후속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예상되어 긴급히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제2항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으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② 권리보호 요청은 주로 처분을 위한 절차 진행 중 또는 집행이 예정된 경우에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에 제출되는 민원으로 한다.

제24조(요청 대상) ①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은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공무원의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법·영 및 지방세 관계법령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2.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 하는 행위
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과세기간·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② 일반 지방세 행정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소명자료 제출·고충민원·불복청구·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환급·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2.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법·영 및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제25조(권리보호요청 기한) 권리보호요청은 해당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할 수 있다.

제26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권리보호요청은 7일(첫날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실 확인·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조화·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

제6장 납세자권리헌장

제27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① 구청장은 법 제76조에 따라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고시하여 납세자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주어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개정 등 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28조(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을 숙지하고 납세자권리헌장에서 규정하는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개정취지와 내용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소속 공무원에게 징계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장 제도개선 과제 발굴

제29조(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발굴)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세무상담 및 권리보호요청 등에 대하여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법령의 개정 등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민원 발생원인 분석 이외에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찾아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제도개선 과제 관리) 납세자보호관은 제도개선 과제를 분석하여 세무부서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관리한다.

제8장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제31조(업무의 범위) 구청장은 영 제51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제5호까지 업무 이외에도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에 따른 납세자의 기한의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
2. 법 제57조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처리
3.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제25조의2에 따른 납세자의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4.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제32조(기한의 연장신청)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3조(기한의 연장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의견 및 사실 확인 결과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기한의 연장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기한의 연장 신청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제34조(가산세의 감면신청)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5조(가산세의 감면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의견 및 사실 확인 결과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가산세 감면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가산세 감면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제36조(징수유예 등 신청) ①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제25조의2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7조(징수유예 등 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의견, 사실 확인 결과 및 납세담보의 제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1.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제9장 납세자보호 업무의 심의

제38조(안건 심의 등) ① 고충민원 등 심의는 법 제147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한다.

1.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100만원 이상인 안건
2.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39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38조제2항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운영은 법·영에 따른다.

제10장 선정 대리인

제40조(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제41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구청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

조하여야 한다.

- ⑥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2조(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③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④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목적 및 설치 (제1조~제3조)

나. 상담대상, 상담방법 (제5조~제6조)

다. 무료법률상담 변호사 위촉, 해임에 관한 사항(제7조~제8조)

라. 상담처리, 수당지급 등 (제9조,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양질의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로부터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인천광역시 검단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무료법률상담실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위치) 상담실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 내에 설치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상담의 범위) 무료법률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 사건에 관한 사항
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부동산, 세무, 창업 등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제5조(상담대상) ① 상담은 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 기업체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지원대상자
5. 소년·소녀가장 등

제6조(상담방법)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전화·인터넷 온라인 상담을 보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상담은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주 1회 이상으로 하고, 상담수요에 따라 확대·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상담요일과 시간은 근무시간 내에서 상담책임관이 정한다.

제7조(법률상담고문 임명 등) ① 법률상담고문은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등 법률에 따라 법률상담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②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법무행정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상담책임관이 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률상담고문에게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법률상담고문 해임) 구청장은 법률상담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상담요청 등에 불성실할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법률상담고문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발견되는 경우

제9조(상담처리) ①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하여 현장 답변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

② 서면 및 인터넷 온라인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③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시정조치) 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함이 확인된 경우에는 상담책임관은 그 내용을 지적하여 관계 부서·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기관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 또는 결과를 상담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자문) 상담책임관은 상담 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구 고문변호사에게 서면으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2조(비밀누설금지) 법률상담고문 및 관계 공무원은 무료법률상담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담의뢰인의 사생활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의 무료법률상담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① 법률상담고문은 법률상담을 이유로 상담의뢰인으로부터 상

담료를 받거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접 수 번 호		무료법률상담기록부		접 수 일	
.				. . .	
사건구분 (V 표시)		○ 민사(부동산, 금전, 손해배상, 임대차, 경매, 기타) ○ 상사(회사, 유가증권, 보험해상, 창업, 기타) ○ 가사(혼인·이혼, 친자, 상속, 기타) ○ 행정(생활민원, 인허가, 기타) ○ 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 ○ 세무(국세, 지방세, 기타) ○ 건축 상담 ○ 교통사고 상담 ○ 지식정보산업(특허, 실용신안, 기술거래, 기타)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남,여)
	주소			연락처	
	구분	○ 일반국민()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소년·소녀가장() ○ 국가보훈자() ○ 장애인() ○ 기업체() ○ 기타()			
상담할 내용					
법률상담고문의견					
○ 상담으로 종결() ○ 도 움 필 요() ○ 추가회시 필요()		법률상담고문 (인)			

작성요령

- 신청인 인적사항과 상담할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해 주시고, 구분·성별 란은 해당사항에 ○ 하시면 됩니다.
- 상담할 내용이 많으신 경우 뒷면에 추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할 내용

인천광역시 검단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자·출연 기관의 목적 및 정의(제1~2조)

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제3~7조)

다.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심의위원회(제8~9조)

라. 출자·출연 기관의 평가(제10~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자·출연 기관"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검단구"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총괄부서의 장"이란 출자·출연 기관의 제도, 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총괄현황관리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주무부서의 장"이란 소관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지도·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2장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제3조(조직·인력 운영)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

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③ 출자·출연 기관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행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제1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관한 사항은 주무부서 및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8조제2항제3호에 관한 사항은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한다.

제7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

하는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2. 설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한명이 된 때

제3장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제8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법 제6조와 영 제4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검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검단구의회 의원 제외)
2. 구청장이 지명하는 검단구 공무원(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범위)
3. 영 제4조제4항제3호에 따라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총괄부서의 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소집

2. 회의서류 작성 및 보고

3. 회의록의 작성·관리

④ 심의위원회는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 개최 안건 발생 시 제안설명은 주무부서의 장이 한다.

⑥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출자·출연 기관의 평가

제10조(평가의 종류) 구청장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2.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3.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제11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장(검단구 소속 공무원인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서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매년 6월 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 정부·인천광역시 및 검단구 정책,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경영실적 평가 등) ① 구청장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경영진단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 말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이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경영평가는 주무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에 필요한 경우 출자·출연 기

관의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전년도 예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제13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달성정도,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출자·출연기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방공기업·경영평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경영평가단은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경영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평가, 경영 실적 평가, 경영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

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경영평가단은 해당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단 구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의결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 실적 평가,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
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경영지도법인
4.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구청장은 두 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구청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2. 3.>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5조(출자·출연 기관의 지정·고시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주무기관의 장(관계 법령에 따라 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제2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출자·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출자·출연 기관이 설립된 경우: 신규 지정
2. 출자·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통합·폐지·분할 또는 관계 법령의 개정·폐지 등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지정

제6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①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
2. 제9조제4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해임 요구
3.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제외 대상기관의 선정

4.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진단 대상기관의 선정

5. 제3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경영진단 결과 필요한 조치

6. 제30조제4항에 따른 조치 제외기관의 선정

7. 그 밖에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출자·출연 기관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시장·부지사(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부시장·부지사를 말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임직원의 인사 등

제9조(임원) ① 출자·출연 기관에는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다만,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출자·출연 기관별 형태, 특성과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은 법령과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당 기관에 손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④ 주무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원이 제3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출자·출연 기관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가 출자·출연 기관을 대표한다.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성과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과 그 기관의 장의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과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

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국가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4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요청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기관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10 미만이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소유한 주식을 전부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식을 인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해산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립 목적의 달성,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조례나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합병하거나 파산한 경우
3.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에 따라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제30조제1항에 따라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라 해산을 청구하거나 민영화 추진의 대상 기관으로 정하여진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해산되는 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절차와 방법 등은 관계

법령과 해당 기관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절 지도·감독 등

제25조(지도·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출자·출연 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에 위탁한 사업
2.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4장 경영실적의 평가와 공시(公示) 등

제28조(경영실적의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 업무

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이 해당 기관 총 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2.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이상인 기관

3.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미만인 기관 중 제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이상에서 100분의 25 미만으로 변동되는 행위를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
2. 조직·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
3. 전년도 결산서
4. 최근 3년간 경영실적
5. 제1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
6. 그 밖에 경영실적의 평가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0조(경영진단의 실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설립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기관운영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
2. 전년도를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다른 법률에 결손금 등의 보전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연속하여 전년도 대비 수익이 2분의 1 이상 감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경영진단 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선정을 위한 당기 순손실이나 수익을 계산할 때에 전년도를 기준으로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영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진단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그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해당 기관의 임원에 대한 보수·성과급의 삭감과 해임 등의 인사상 조치
2. 사업 규모의 축소, 조직 개편과 인력 조정
3. 기관의 해산 청구나 민영화의 추진
4. 그 밖에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

관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3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기관의 기능을 수행할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독립성과 중립성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관계 법령에 규정된 기관
2.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설립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관
3.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기관의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능조정 등의 대상 기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심의·의결한 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지도·감독 등) 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 11. 29.>

1. 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한 사업
2. 법 제21조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이 대행하는 사업
3.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상환을 보증한 사업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②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서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임직원의 채용, 면직 및 임원의 승진 등에 관한 사항
2. 임금, 성과급,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산의 취득·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

③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출자·출연 기

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는 해당 기관에 출자하거나 출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6. 2.>

제20조(경영실적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경영실적 결과를 매년 8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법 제28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내부·외부 기관의 감사 결과·조치요구사항 및 이행 결과
2.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채무보증에 관한 사항 (제1조~제4조)

나. 보증채무 변경 및 이행에 관한 사항(제5조~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그 밖의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 채무를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게 해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 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라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④ 구가 담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준용한다.

제6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채 무 보 증 신 청 서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주채무자

㉠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사오니 이를 구가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보증채무 내용을 간단히 기술할 것)

2. 내 용

가. 채권자

나. 채무액

다. 이자율 년

라. 상환기간 자 지 (년간)

마. 상환계획

3. 사 유

가. 주채무 발생

나. 구보증이 필요한 사유

다. 채무보증 신청의 근거

라. 기타 참고사항

4. 준수사항

가. 주채무자는 구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구청장은 구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 기타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구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주채무자는 타채무에 우선하여 구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채 무 보 증 승 인 통 지 서

제 호

귀하

인천광역시 김단구청장

㉠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황에 대하여 구가 보증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었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년
5. 상환기간 자 지 (년간)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 근거
11. 기 타
12. 준수사항

가.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구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 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구청장은 구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 그 밖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 및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구청장은 전호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채권자는 구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바. 주채무자는 타채무에 우선하여 구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2. 내 용

- 가. 채권자
나. 채무액
다. 이자율 년
라. 상환기간 자 지 (년간)
마. 상환계획

3. 사유

- 가. 주채무 발생
나. 구보증이 필요한 사유
다. 채무보증 신청의 근거
라. 기타 참고사항

4. 준수사항

- 가. 주채무자는 구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나.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다. 구청장은 구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 기타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 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라. 구청장은 전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마. 주채무자는 타채무에 우선하여 구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채 무 보 증 서 발 급 신 청 서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채권자 ㉠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채무보증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년

5. 상환기간 자 지 (년간)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기 타

10.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구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구청장은 국가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국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채 무 보 증 서

제 호

채권자 귀하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황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년
5. 상환기간 자 지 (년간)
- (구의 동의없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 근거
11. 기 타
12.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구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구청장은 구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구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39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3조(보증채무부담행위 등) 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3항에 따라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내용과 보증을 받으려는 채무의 범위(이하 “주채무”라 한다) 등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채무보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12.>

② 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채무를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채무의 이행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채권자나 채무자는 사업의 내용 또는 보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변경사항이 주채무의 범위 등 그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일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

제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2021. 1. 12.>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채권자, 채무자명 및 상환액 등을 기재한 채무보증신청서를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채무의 이행을 보증한다는 뜻을 담은 서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주채무의 범위와 채권자·채무자가 준수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지급대상자에 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나.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액에 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다. 별도 표창에 대한 사항(안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그 산하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구 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1건당 2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1건당 200,000원 이내
3.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건당 50,000원 이내
4.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1건당 50,000원 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지급액의 6배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별도 표창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소송사건 수행 중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실비변상의 범위 및 금액에 대한 사항(안 제2조~제3조)

다. 지급에 대한 사항(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또는 검단구청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선임하는 증인·참고인·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참고인·감정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제3조(실비변상액) 증인 등의 실비변상액은 사건 계류 중인 법원에 증인 등으로 신청할 때 당해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지급) 증인 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법원에 예납함으로서 증인 등에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보의 발간, 보급 및 그 밖에 구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발행 및 게재사항, 회보 란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4조)
- 나. 게재의뢰, 구보게재 조정, 구보활용 (안 제5조~제7조)
- 다. 발행인, 발행, 배부범위, 배부방법, 게재사항 (안 제8조~제12조)
- 라. 편집위원회 및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장 등의 직무, 임기, 간사, 회의 등 (안 제13조~제19조)
- 마. 자료수집, 주민참여, 명예기자, 수당 등 (안 제20조~제2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보의 발간, 보급 및 그 밖에 구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구보

제2조(발행)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보(이하“구보”라 한다)는 주 1회 발행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발행할 수 있다.

② 구보 발행부서의 장은 구보를 전자적 형태로 전환·발행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게재사항) 구보에 게재하는 사항과 게재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규칙·훈령·예규
2. 고시·공고
3. 회보
4. 상훈 및 사령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회보란) 회보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대통령 지시사항
2. 국무총리 지시사항
3. 장관 지시사항
4. 시장 지시사항
5. 구청장 지시사항
6. 구 방침으로서 하급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7. 구정 주요시책
8. 법령에 따른 면허·인가·승인·단체등록 또는 그 취소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9. 구에서 시행하는 면허시험·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의 합격자 명단

제5조(게재의뢰) 구보게재 의뢰는 해당 부서장 또는 기관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구보 발행부서의 장에게 한다.

제6조(구보게재 조정) 구보 발행부서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규칙으로 구보게재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게재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구보활용) 구보에 게재한 사항은 공문서로의 효력을 가진다.

제3장 구정소식지

제8조(발행인)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정소식지(이하“소식지”라 한다)의 발행인은 구청장으로 한다.

제9조(발행)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제10조(배부범위) ① 구청장은 소식지의 게재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민,

공공기관 및 주민 다중이용시설 등에 배부한다.

② 본청 각 부서 및 동에서는 소식지를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배부방법) ① 소식지는 각 동 통·반장이 무상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우편 등을 이용해 배부할 수도 있다.

② 소식지의 배부방법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12조(게재사항) 소식지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

1. 구정 시책에 관한 사항
2. 구 의회 활동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체육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4. 지역소식 및 미담사례
5. 주민의 참여행정 및 구민의 의견 투고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편집위원회) 소식지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하여 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소식지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게재 내용의 검토 및 배열
3.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소식지 발행부서의 장,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의원 1명, 소식지 발행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제17조(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식지 발행업무 담당이 된다.

제1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내용을 회의록에 작성하여 보존한다.

제20조(자료수집 등) ① 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산하기관, 유관기관 또는 구민으로부터 접수한다.

② 접수된 자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식지에 게재하며 게재된 원고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접수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1조(주민참여 등) 모든 구민은 독자 투고, 이벤트, 퀴즈, 공모전, 설문조사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제22조(명예기자) ① 구청장은 소식지 편집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을 위하여 명예기자를 위촉할 수 있다.

② 명예기자는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구청장은 명예기자가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거나, 명예기자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23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기사 또는 자료를 제공하거나 소식지 제작에 참여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액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원고료 등 지급내역 (제23조제2항 관련)

구 분	원고료 등	비 고
전문기고	- 논평, 수필, 시, 연재소설, 영어 등 · 200자 원고지 10매 이내 : 1편당 100,000원 · 200자 원고지 10매 초과 : 1매당 × 10,000원 - 만화, 만평 등 · 1편당 50,000원	* 원고료 등은 현금, 상품권, 전자상품권, 할인권, 전자할인권, 기념품, 이모티콘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구민참여	- 독자 투고 및 인터뷰 등 참여자 · 1편당 50,000원 - 이벤트, 퀴즈, 공모전, 설문조사 당첨자 · 1명당 30,000원 이내	
명예기자	- 1편당 50,000원	

인천광역시 검단구 인터넷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2026. 7. 1. 검단구 출범으로 인한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등 인터넷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정의(안 제1조~제2조)

나.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15조)

다. 홈페이지 등을 통한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안 제16조~제20조)

라.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에 관한 사항(안 제21조~제2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라. 기 타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인터넷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서비스”란 인터넷을 통해 이용자에게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4.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하며, 소셜미디어 및 그 밖의 인터넷으로 접속 가능한 가상공간을 포함한다.
5. “대표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의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말한다.
6. “부 홈페이지”란 각 부서에서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표 홈페이지와는 별도로 구축한 홈페이지로서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을 총칭한다.

7. “이용자”란 구가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8. “인터넷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구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9. “전자민원창구”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0.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11. “소셜미디어”란 인터넷상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 경험 등을 서로 공유하고 참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온라인서비스를 말한다.
12. “소셜미디어 기자”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장 홈페이지 운영

제3조(인터넷서비스의 효율적 관리) ① 구청장은 구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에 대한 이용실태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관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실태의 조사 결과 이용률이 낮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률 제고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가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또는 운영가치가 낮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서비스의 통합 또는 폐기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인터넷서비스의 유사·중복성
2. 인터넷서비스의 통합 필요성

3. 인터넷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접근 편의성

4. 인터넷서비스의 이용률

5. 그 밖에 인터넷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홈페이지 운영)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구의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문화·관광 등 지역정보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주민 참여유도를 위한 게시판 운영

5. 법령·조례·규칙 등에서 설치대상으로 규정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 권리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구청장은 인터넷서비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시스템 관리부서, 홈페이지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 부서(이하 “담당 부서”라 한다)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 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③ 인터넷서비스는 연중 지속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시스템 관리부서의 장은 인터넷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양한 수준의 정보이용자와 컴퓨터 환경을 고려하여 웹접근성과 웹표준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구정홍보를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 부서를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에 외국어의 번역 및 감수와 홈페이지의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소셜미디어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구정홍보, 이용자와의 소통·공감을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문화·예술·체육·축제·건강 및 생활 등의 지역 정보
3. 주민의견·구정상담 등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야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 시 담당 부서명 등을 표기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정보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관리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관리부서의 장은 자료를 제공받은 후 10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의 양이 과다하거나 처리기간 내에 게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삭제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게시물
3.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게시물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게시물
6.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갖게 하는 게시물,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
8.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게시물
9.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게시물
10. 그 밖에 공익을 방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물 등

제3장 부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제9조(부 홈페이지 구축 시 필수요건) 각 부 홈페이지의 신규 증설은 지양하고, 대표 홈페이지 내 구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별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대표 홈페이지 관리부서의 장과 사전협의 후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한다.

1. 주요내용, 개설이유, 개발환경 및 대표 홈페이지와의 연동 관련 사항 등
2. 부 홈페이지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대표 홈페이지와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기하여 구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유지
3. 불필요한 도메인명 생성은 최대한 지양

4. 관리자페이지와 사용자페이지는 분리하여 개발
5. 관리자페이지는 인가된 인터넷 주소에서만 접근
6. 다양한 수준의 이용자와 컴퓨터 환경을 고려하여 웹 접근성과 웹 표준화를 준수하여 제작

제10조(부 홈페이지운영) ① 부 홈페이지 담당부서의 장은 운영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부 홈페이지 담당부서의 장은 부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자료를 주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③ 부 홈페이지 담당부서의 장은 운영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일·주·월 단위의 방문내역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부 홈페이지가 일정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관리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 부서 간 협의에 따라 부 홈페이지의 폐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4장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민원창구 운영

제11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인터넷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자민원창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 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1. 인터넷 전자민원처리
2. 민원처리의 공개
3. 민원상담

③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3호의 민원상담 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⑤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신청 대상민원은 본인확인과 첨부 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으로 한정하며, 민원 처리절차 및 비용 등에 대하여 해당 창구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⑥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민원 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처리비용을 구청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제12조(민원처리 공개) ① 구청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공개대상민원의 접수·처리과정 및 처리결과를 제11조제2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개되는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민원인과 그 이외의 자에게 달리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 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민원상담기능 제공) ① 구청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상담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상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실명으로 상담등록을 한 민원사항에 한정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민원상담 및 답변을 처리한다.

제14조(구청장과의 대화방 운영)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구정

참여유도와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하여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도록 게시판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게시판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소통민원창구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소통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소통민원창구를 운영할 수 있으며, 소통민원창구는 제11조의 전자민원창구에서 제외된다.

② 소통민원창구는 단순 질의·안내·제안·건의 및 즉시 조치가 가능한 불편사항 신고 등에 한하여 운영하며, 즉시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민원처리결과를 문서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제5장 홈페이지 등을 통한 주민참여

제16조(홈페이지 참여공간 운영) 구청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는 게시판 등 참여공간을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출연료 지급) 구청장은 거주지나 사업장 등의 주소지가 구인 사람이 구 홍보 영상에 출연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출연할 경우 출연료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8조(이벤트 실시) ① 구청장은 주민의 적극적인 구정참여·홍보, 주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이벤트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기념하는

경우

3. 구의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이용활성화를 위한 경우

4. 주민 소셜공간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구민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벤트를 개최하는 경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의 종류, 액면가 등 그 밖에 이벤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벤트 시작 전에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소셜미디어 기자의 운영)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활성화하고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 기자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 기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소셜미디어 기자는 정책홍보와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채택된 원고 등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하거나 자원봉사시간을 인정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소셜미디어 기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및 견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소셜미디어 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야기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갖게 하는 내용을 기사화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20조(포상) 구청장은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를 통해 구정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공무원 등에게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장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

제21조(개인정보 보호)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터넷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시장조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제22조(인터넷시스템의 보안) ① 인터넷시스템 또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시스템 또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고장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

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의 보안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이벤트 경품제공 기준(제18조제2항 관련)

구 분	대 상	방법	제공 액수 한도 (1회당)	횟수/ 제한기준
글·사진·동영상 게시	당첨자/ 참여자	심사/ 추첨	300만원 이하	연 12회 이하
퀴즈 및 게임	정답자	추첨	300만원 이하	연 12회 이하
설문 및 토론	참여자	심사/ 추첨	300만원 이하	연 12회 이하
정기이벤트	당첨자/ 참여자	심사/ 추첨	20만원 이하	주간/월간 정기이벤트
그 외 기타 이벤트	당첨자/ 참여자	심사/ 추첨	200만원 이하	연 12회 이하

[별표 2]

소셜미디어 기자 원고료 등 지급 기준(제19조제4항 관련)

1. 지원 대상: 소셜미디어 기자

2. 지원 내용: 원고료 또는 상품권

3. 지원 횟수 및 금액: 1인 1건당 10만원 이하 현금 또는 상품권

※ 우수 소셜미디어 기자로 선정 시 월 10만원 이하 현금 또는 상품권 지급

관계 법령 발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12조의2(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운영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등을 개선하고 민원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시설과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로서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구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고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통합전자민원창구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④ 민원인이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계법령등에 따라 해당 민원을 소관하는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⑤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 ⑥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신청한 민원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외에 별도의 업무처리비용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⑦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 제5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민원의 범위 및 감면 비율과 제6항에 따른 업무처리비용의 청구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 11.]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시행일: 2023. 9. 15.] 제15조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2023. 3. 1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

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삭제 <2023. 3. 14.>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시행일: 2023. 9. 15.]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세 징수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제3조)
- 나. 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제5조)
- 다.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제6조)
- 라. 매각자산의 인도, 수령, 매각대금 등의 배분, 매각대행 수수료(제9조~제11조)
- 마. 비밀유지 및 배상책임(제15조~제1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세 징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징수 사무 등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 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4조(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103조의4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모집·선정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구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103조의4제1항에 따른 예술품 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②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와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요건과 그 밖에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일간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④ 구청장은 서류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결과 공고일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5조(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① 구청장은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기관을 심사할 때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는 1차 서류심사와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인천광역시 검단구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전문성 및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1차 심사는 체납 징수 업무 담당 부서장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충족하는 사업자를 선정한다.

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 매각업무 수행능력(5

0%)을 평가하여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다.

④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및 회의) ① 구청장은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소관업무 담당국장·예산업무 부서장·자산관리업무 부서장·홍보업무 부서장·세정업무 부서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되,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결정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제8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 ① 전문매각기관이 매각 의뢰받은 예술품등을 3회 이상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또는 1년이 경과하여도 매각이 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매각대행 의뢰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매각재산의 인도) ① 구청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이 보관중인 재산은 매수

인이 대금(수수료 등 포함)을 납부한 때에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 시기는 매수인이 전문매각기관에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로 한다.

제10조(매각대금의 수령) ① 구청장은 매각대금이 결정되거나,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전문매각기관으로부터 매각수수료 등의 명세와 증빙을 받아 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매각대금에서 전문매각기관에 지급해야 할 매각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계좌로 수령하여야 한다.

제11조(매각대금 등의 배분)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수령한 매각대금 등을 배분할 금전으로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97조부터 제103조의2까지에 따라 배분금액 및 배분순위 등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하고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 ① 전문매각기관은 구청장으로부터 매각대행의뢰를 받은 재산의 매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규칙 제73조의8에 의한 수수료를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전문매각기관이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
2.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납세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여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3.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구청장의 직권 또는 전문매각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매각대행 의뢰가 해제된 경우.
4.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압류재산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매수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확인된 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구청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① 구청장은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도, 파산, 휴·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문매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체납, 「조세범 처벌법」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구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 ①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등 매각 대행에 관하

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매각추산가액에 비하여 채납처분비의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2. 예술품 등의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매각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의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구청장은 20일 이내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결과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유지등)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과정에서 직무상 납세자의 과세 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배상책임)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세징수법

제97조(배분금전의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제99조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8.>

1. 압류한 금전
2. 채권·유가증권·무체재산권등의 압류로 인하여 채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
4.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제98조(배분기일의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을 배분하려면 채납자, 제3채무자 또는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배분기일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배분기일을 30일 이내에 연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92조의2제5항에 따라 배분기일을 정하였을 때에는 채납자, 채권신고대상채권자 및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이하 “채납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납자등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닐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9조(배분 방법) ①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채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해서

만 배분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채납액
 2. 교부청구를 받은 채납액·국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 ② 제9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채납액에 충당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금전을 배분하거나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채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채납액과 채권의 총액보다 적을 때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배분이나 제2항에 따른 충당을 할 때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 순위의 착오나 부당한 교부청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채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지방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제100조(국유·공유 재산 매각대금의 배분) 제62조제1항에 따라 압류한 국유 또는 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의 배분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의 매수대금 중 채납자가 아직 지급하지 못한 금액을 지급
2. 채납액에 충당
3. 제1호에 따라 지급하거나 제2호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채납자에게 지급

제101조(배분계산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7조에 따라 금전을 배분할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原案)을 작성하여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채납자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부청구서, 감정평가서, 채권신고서, 배분요구서, 배분계산서 원안 등 배분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열람·복사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102조(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등) ① 배분기일에 출석한 채납자등은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자기의 채권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제101조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납자는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배분계산서 원안이 갖추어진 이후부터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

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배분계산서를 확정하여 배분을 실시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분을 유보한다. <개정 2023. 12. 29.>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내용으로 체납자등이 한 합의가 있는 경우: 정당하다고 인정된 이의제기의 내용 또는 합의에 따라 배분계산서를 수정하여 확정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내용으로 체납자등이 한 합의도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 중 이의제기가 없는 부분에 한정하여 확정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 원안대로 확정

④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분계산서 원안과 같이 배분을 실시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그가 다른 체납자등이 제기한 이의에 관계된 경우 그 이의제기에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12. 29.>

[제목개정 2023. 12. 29.]

제102조의2(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의 취하간주) 제102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배분계산서 중 이의제기가 있어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한 체납자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분계산서 작성에 관하여 심판청구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배분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이의제기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3. 12. 29.]

제103조(배분금전의 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채권에 관계되는 배분금전을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탁하여야 한다.

1.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경우
2.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경우
3. 채납자등이 제102조의2에 따라 배분계산서 작성에 대하여 심판청구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배분금전을 채납자등에게 지급하지 못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배분금전을 예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채납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2. 29.]

제103조의2(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3조에 따라 배분금전을 예탁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예탁금을 당초 배분받을 채납자등에게 지급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을 변경하여 예탁금에 대한 추가 배분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배분계산서 작성에 관한 심판청구등의 결정·판결이 확정된 경우
2. 그 밖에 예탁의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의 추가 배분을 실시하려는 경우 당초의 배분계산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납자등을 위해서도 배분계산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③ 채납자등은 제1항에 따른 추가 배분기일에 제102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경우 종전의 배분기일에서 주장할 수 없었던 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9.]

제103조의4(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 및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매각을 대행하는 예술품등을 매수하지 못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신청절차,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절차 및 예술품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2. 1. 28.]

105조(채납처분 유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채납액에 대하여 채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로 인정될 경우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채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 1. 29., 2007. 1. 26., 2007. 12. 21., 2008. 6. 13., 2010. 3. 22., 2014. 5. 28., 2020. 6. 9.>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급범위, 지급기준, 포상금 지급한도(안 제2조~제3조의 2)
- 나.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구성 등(안 제4조)
- 다. 포상금 지급신청, 포상금 지급(안 제6조~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에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세입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 세입(이하 “구세입”이라 한다)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의하여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검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2항에 따른 특별한 공적없이 체납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기한 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의뢰 결과 배당금을 수령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배당이의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과세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해당 과세물건에 대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4.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5급 공무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2
2.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3.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타 세목의 부과자료에 의한 과표대사 및 타 부서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른 것은 제외)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교부받은 금액의 100분의 10

8.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구세 세원(함께 부과·징수된 세액 포함)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9. 탈루된 세외수입(과징금·이행강제금·과태료·개발이익환수금에 한정)을 발굴하여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② 제1항제4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8호부터 제9호까지의 포상금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체납액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분기 지급액 300만원. 단, 제2조제1항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직 민간인 계약직 포함)중 체납액 징수업무를 전담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월 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5조(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세입징수포상금은 공적심

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 의결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 범위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예산담당과장, 재무과장
2.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대장보관) 구세입 부과징수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보관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신청) ①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3조의 각 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의 결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④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분임징수관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 지급)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9조(환수) ① 구청장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부과취소,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환

수할 금액에 가산(加算)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제6조 관련)

○신청단체:

○신청분기:

(단위 : 원)

징수 월일	징수자		체납자			징수내역				징수 확인	특별 징수 공적 (사유)	포상금 청구 지급액	지급일	본세	가산금	구분
	직급	성명	주소	성명	주민 등록 번호	년도 기분	과세 번호	세목	징수액							

※ “구분”란에는 과년도 체납액 경과연수(1년차, 2년차, 3년차)를 표시

[별지 제2호서식]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제6조 관련)

○신청단체:

○신청분기:

(단위 : 원)

징수 월일	징수자		납세의무자			징수내역				징수 확인	구분	포상금 청구 지급액	지급일	본세	가산금	비고
	직급	성명	주소	성명	주민 등록 번호	년도 기분	과세 번호	발굴 세원	징수액							

※ “구분”란에는 미등기, 탈루·은닉세원, 무단점용, 세정발전, 세입증대 등을 표시

[별지 제3호서식]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제7조제3항 관련)

○신청단체:

○신청분기:

○신청자: (인)

(단위: 건, 원)

구 분		징수기간	건수	금 액			포상금 계산액	포상금 신청액	비고
				합계	본세	가산금			
합 계									
과년도 채납액 징 수	소 계								
	1년차								
	2년차								
	3년차 이상								
숨은 세원 발굴	소 계								
	미등기								
	탈루은닉세원								
	무단점용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	세정발전								
	세입증대								

※ 첨부: 1. 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심사 의결서 사본 1부.

2. 포상금지급신청서, 숨은세원발굴내역(별지 3호서식 부표1, 부표2)

3. 민간인의 경우 구체적인 진술서 및 증빙자료 사본 1부.

[별지 제3호서식 부표1]

포상금 지급신청서

○신청단체:

○신청분기:

(단위: 건, 원)

신청자			징수(세월발굴)액				포상금 계산액	포상금 신청액	거래 은행	계좌 번호	비고
소속 (주소)	성명	주민 등록 번호	건수	합계	본세	가산금					

위와 같이 확인하며 계좌입금 의뢰함

(인)

숨은세원발굴내역

[illegible]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 7. 26., 2020. 12. 29.>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稅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부과·징수에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

2. 자료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

④ 제1항제2호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과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료 제공자 또는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⑦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과 제5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⑧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지방자치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포상금 관련 규정(規程)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9., 2023. 3. 14.>
-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세조합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물품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 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9.>

□ 지방세징수법

제18조(징수촉탁) ① 「지방세기본법」,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의 세무공무원에게 그 징수를 촉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촉탁받은 세무공무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촉탁받은 사무의 비용과 송금비용 및 체납처분비를 부담하고, 징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촉탁한 세무공무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송금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서 체납처분비를 뺀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체납처분비

- ③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에 지방세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에는 징수촉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촉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비용,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기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사유로 법 제25조에 따른 고지유예, 분할고지 또는 법 제25조의2에 따른 징수유예(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그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경우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2. 31.>

③ 법 제25조제5호의 사유로 인한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세액의 납부기한 다음 날 또는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부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 12. 31.>

[제목개정 2020. 12. 31.]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지방세환급금의 계산)①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1.>

1. 착오납부, 이중납부나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그 지방세의 납부일(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의 환급의 경우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 이 경우 지방세가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분할고지로 둘 이상의 납기가 있는 경우와 지방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지방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지방세의 각 납부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에 따라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30조에 따른 세액의 일할계산으로 환급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록일·양도일이나 사용을 폐지한 날. 다만, 납부일이 소유권이전등록일·양도일이나 사용을 폐지한 날 이후인 경우에는 그 납부일로 한다.
3. 적법하게 납부된 지방세의 감면으로 환급하는 경우: 그 감면 결정일
4.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령 또는 조례가 개정되어 환급하는 경우: 그 개정된 법령 또는 조례 규정의 시행일
5.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환급신청이나 신고한 환급세액의 경정·결정으로 환급하는 경우: 그 신고일(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 또는 신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지방세관계법에서 환급기한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기한의 다음 날).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않아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가. 삭제 <2024. 12. 31.>

나. 「지방세법」 제103조의62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다. 「지방세법」 제103조의64제3항제2호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②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이하 이 항에서 “기본이자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납세자가 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후에 납세자에게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본이자율의 1.5배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한다.

③ 법 제6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이란 지방세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법 제62조제3항 각 호의 불복청구 등을 그 기한까지 제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직권으로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 변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 12. 31.]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세 기본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과·징수 권한 위임 및 사무 위탁(제3조~제4조)

나. 서류의 송달 방법(제5조)

다. 교부금전 위탁(제6조)

라. 지방세심의위원회(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세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인천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 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검단구”이라 한다)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검단구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등록면허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검단구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납세고지서별 또는 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금고에 예탁한다.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검단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세부터 적용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7. 26., 2018. 12. 24., 2019. 12. 31., 2020. 12. 29., 2021. 1. 12., 2021. 12. 28., 2023. 12. 29.>

4. “지방세관계법”이란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말한다.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2016. 12. 27.>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적정한 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2017. 7. 26.>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5. 12. 29., 2016. 12. 27.>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위탁·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제151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세조합”이라 한다)의 장(이하 “지방세조합장”이라 한다)에게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위탁받거나 위임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③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 또는 위임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과 제2항에 따라 권한을 재위임

받은 소속 공무원은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9.>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2021. 11. 23., 2024. 12. 31.>

1. 이의신청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나.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하며,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인 경우: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과 자산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2. 삭제 <2024. 12. 31.>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등이 아닐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청구 또는 신청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청구 또는 신청일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대리인을 선정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등과 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93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정, 관리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9.>

제143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그 법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에 따라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하였을 때에는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설치·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 12. 31., 2020. 12. 29., 2023. 3. 14.>

1. 제82조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3.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

보 공개에 관한 사항

5.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에 따른 감치에 관한 사항
6. 「지방세법」 제10조의2에 따른 시가인정액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
7.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따라 예산안에 첨부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관한 사항
8.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조(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 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제12조(서류송달의 방법)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매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14.,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31., 2021. 12. 31.>

1. 오피스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오피스텔의 용도별·층별 지수

나. 오피스텔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1의2. 제1호 외의 건축물: 건설원가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2. 선박: 선박의 종류·용도 및 건조가격을 고려하여 톤수 간에 차등을 둔 단계별 기준가격에 해당 톤수를 차례대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의 합계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선박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나. 급랭시설 등의 유무에 따른 가감산율

3. 차량: 차량의 종류별·승차정원별·최대적재량별·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4. 기계장비: 기계장비의 종류별·톤수별·형식별·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

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기계장비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5. 입목(立木): 입목의 종류별·수령별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입목의 목재 부피, 그루 수 등을 적용한다.

6. 항공기: 항공기의 종류별·형식별·제작회사별·정원별·최대이륙중량별·제조연도별 제조가격 및 거래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항공기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7. 광업권: 광구의 광물매장량, 광물의 톤당 순 수입가격, 광업권 설정비, 광산시설비 및 인근 광구의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서 해당 광산의 기계 및 시설취득비, 기계설비이전비 등을 뺀다.

8. 어업권·양식업권: 인근 같은 종류의 어장·양식장의 거래가격과 어구 설치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어업·양식업의 종류, 어장·양식장의 위치, 어구 또는 장치, 어업·양식업의 방법, 채취물 또는 양식물 및 면허의 유효기간 등을 고려한다.

9.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및 요트회원권: 분양 및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 등을 고려한다.

10.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 종류별 신축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시설의 용도·구조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그 가액에 다시 시설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11.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종류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 가격을 말한다), 거래가격 및 설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 가격에 시설물의 용도·형태·성능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그 가액에 다시 시설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제11호에 따른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하 이 항에서 “시설물”이라 한다)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할 때 그 시설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함께 쓰이고 있는 건축물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 부분의 점유비율에 따라 제1항제11호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나누어 적용한다.

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이의신청인등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신청인등의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② 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1.>

1. 종합소득금액의 경우: 5천만원. 이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

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2. 소유 재산의 가액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재산의 평가 가액 합계액이 5억원. 다만,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지방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

나.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회원권

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②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변경 사항이 있거나 이륜자동차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이륜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륜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를

양수한 소유자가 이륜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한 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를 갈음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 자동차등록령

제5조(등록사무의 관할 등) ① 등록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가 관할한다. <개정 2015. 7. 6., 2021. 11. 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등록사무가 아닌 등록사무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등록관청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 6. 1., 2021. 11. 16., 2024. 6. 18.>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이하 “운수사업용자동차”라 하며, 해당 자동차를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 및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안의 다른 등록관청이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 10. 19.]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법 제77조제9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9. 12. 31., 2003. 1. 2., 2010. 2. 18., 2015. 6. 4., 2021. 8. 27., 2023. 5. 25.>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제2호, 제2호의2, 제4호 및 이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서류로써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제작증(신규로 제작·조립한 이륜자동차에 한한다)
- 2의2. 별지 제72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실측확인서(해당하는 경우에만 한한다)
3. 삭제 <2023. 5. 25.>
4.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 번호사법

제90조(징계의 종류) 번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다섯 종류로 한다.

1. 영구제명
2. 제명
3. 3년 이하의 정직

4.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

[전문개정 2008. 3. 28.]

제91조(징계 사유) ① 제90조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 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이 법에 따라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제2항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9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전문개정 2008. 3. 28.]

□ 세무사법

제17조(징계)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② 세무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취소

2. 2년 이내의 직무정지

3.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4. 견책(譴責)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된 세무사가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6조에 따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④ 해당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계를 할 수 없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가 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계를 명하는 경우 징계사유, 징계내용, 공직퇴임세무사인지 여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징계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무사에 대한 징계를 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세무사, 소속협회 및 국세청장에게 각각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1. 23.>

⑧ 소속협회는 제7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해당 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1. 23.>

⑨ 세무사징계위원회의 구성·운영, 제7항에 따른 통보·공고 및 제8항에 따른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 2021. 11. 23.>.

인천광역시 검단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금고지정 및 지정기준(제2조~제3조)
- 나. 심의위원회 구성 등(제4조~제6조)
- 다. 지정절차 및 지정의 공표와 약정 (제7조~제12조)
- 라. 금고의 중도해지 및 운영 보고(제13조~제14조)
- 마. 협력사업비(제1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고 지정 방법)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인천광역시 검단구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을 실시하여도 한 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한 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금고는 회계의 구분 없이 한 개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해 구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두 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금고 약정 기간은 4년으로 하되, 회계연도 중에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 만료일로 한다.

제3조(금고 지정 평가기준) ① 공개경쟁 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 이용의 편의성

4. 금고 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6. 그 밖의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평가한다.

제4조(금고 지정 심의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2항제2호의 민간전문가는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3.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임명되거나 위촉된 때부터 금고 약정 체결일까지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신분은 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평가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 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 심의·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이 요구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금고 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① 구청장은 금고 지정 방식을 결정한 후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금고 지정에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를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안서를 제출하려는 금융기관에게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9조(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 위원회는 금고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별 배점 부여 기준 등을 확정하고, 해당 평가 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평가표를 작성하여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 결과의 공개) 구청장은 위원회의 평가 결과 중 금고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밖의 평가 결과에 대한 공개의 범위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1조(금고의 지정)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2조(금고 약정) ① 구청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 지정 결과를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와 금고 업무 취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금고 약정서에는 취급 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 준수 의무, 세입 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起債), 배상 및 변상 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의 해지, 약정서 조문 해석, 금고 변경 시 이행사항,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금고 약정의 해지) ① 구청장은 국내·외 금융시장의 혼란 또는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현재의 금고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금고 약정서 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인천광역시 검단구 금고 운영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금고 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금고 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를 평가로, 위원회를 평가위원회로 본다.

제14조(금고 운용 보고) ①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은 일반·특별회계, 기금별 자금 운용 상황, 재무건전성 평가 보고,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

황 등을 상·하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 과목별 금액, 예치 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그 밖에 금고 운영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은 재무건전성의 악화 등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 또는 구청장이 금고 관리를 위하여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협력사업비) ① 구청장은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금고가 전액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협력사업비 총액을 금고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협력사업비를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재정 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지정하는 금고지정 시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체결된 계약은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3조제2항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 고
계		100	
		26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정성)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6점)로 평가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 대손충당금 적립율(건전성)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 (신협, 농수산협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8 18 (6) (5) (6) (1)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자치단체 대출금리 다. 공금예금 적용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마.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	20 7 4 6 1 2	
3. 주민이용의 편의성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라.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실적 및 계획	21 7 5 6 3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등) 구축·운영능력	24 6 8 8 2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구와 협력사업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구와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7 5 2	
6. 기타사항	가. 탄소중립 기여도 - 금융기관별 탈석탄 선언 여부 및 이행계획, 기후금융 국제 이니셔티브 가입여부,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실적 등 비교평가	2 2	

[별표 2]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제3조제2항 관련)**I.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음.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함.
다만, 항목 2(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함.

II.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6점)****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점)**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 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의거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장 최근자료 기준)가 동일한 신용조사 기관일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 기관일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8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1)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2)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5점)
 - (3)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 (4) 대손충당금 적립률 (건전성, 1점)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20점)**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자치단체 대출금리 (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공금예금 적용금리 (6점)

-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1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수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마.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 (2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만기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수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주민이용의 편의성 (21점)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7점)

-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영업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및 관내 ATM 설치 대수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5점)

- 최근 수년간 지방세입금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6점)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 방안, 파업 등 사고 발생시 대책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실적 및 계획 (3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실적 및 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4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점)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 능력 (8점)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8점)

-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 계획(안)과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강화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등) 구축·운영능력 (2점)

- OCR센터 등 수납시스템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7점)**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활동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구와 협력사업계획 (2점)

- 출연금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6. 기타사항 (2점)**가. 탄소중립 기여도 (2점)**

- 금융기관별 탈석탄 선언 여부 및 이행계획, 기후금융 국제 이니셔티브 가입 여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실적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관계 법령 발췌

□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금고 업무의 약정)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금고 업무의 취급능력
2. 주민의 이용 편의
3.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②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10. 30.>

1. 자산총액이 2천500억원 이상일 것
2. 자본총액이 250억원 이상일 것
3.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4.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일 것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금고는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금고로서의 의무와 제3항에 따른 약정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1. 제3항에 따라 약정한 금고 업무 약정기간
2. 금고의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지표
3. 금고 업무 약정기간 전에 금고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고 지정의 세부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

한다. <개정 2017. 7. 26.>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세 감면 조례안

1. 제안이유

2026. 7. 1. 검단구 출범으로 인한 조세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구세 감면 조례의 종류 및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5조)

다. 구세 감면 조례의 보칙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라. 기 타: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세 감면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제1호 후단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25로 한다.

제3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정한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 동안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제나목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7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

면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제나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7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제4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5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6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6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된 토지·건축물·주택(각 용어의 뜻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를 따른다)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제7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① 이 조례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감면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지방세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32조에 따른다.

제9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을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0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구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감면

제12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적용, 효율 및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4조)
- 나. 징수방법 및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다. 수수료 면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제증명의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제증명(이하 “제증명”이라 한다)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액은 별표 1,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다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 다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이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 제증명 등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의 수수료 금액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6조(기납 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하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제7조(수수료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7.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8.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9.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 열람에 대한 열람수수료
10.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11. 개인정보 전산자료를 정정하게 된 사유가 보유기관에 있을 때의 정정 청구
12. 정보공개수수료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비영리의 학술, 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나.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다.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증명,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1. 일반행정분야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 전자민원(인터넷) 신청 시	“	무료	
(2)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필지	800원	
(3) 개별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주택	800원	
(4)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	800원	
(5) 건설공시기성실적증명(물품, 용역)	1통당	300원	
(6) 선급금 정산확인원	“	300원	
(7)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신청	1통당	600원	
2. 문화관광체육분야			
(1) 게임제작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2) 게임배급업 등록신청 수수료	“	20,000원	
(3)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 수수료	“	20,000원	
(4)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	20,000원	
(5)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	20,000원	
(6)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	20,000원	
(7)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수수료	“	20,000원	
(8)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등록·신고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	“	5,000원	
(9) 공연장 등록신청 수수료	“	10,000원	
(10)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5,000원	
(11)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수수료	“	60,000원	
(12)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수수료	“	50,000원	
(13)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수수료	“	30,000원	
(14)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수수료	“	15,000원	
(15)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 신고 수수료	“	30,000원	
(16)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 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	15,000원	
(17)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수수료	“	10,000원	
(18) 영화업 신고 수수료	“	20,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19) 영화업 변경신고 수수료	"	10,000원	
(20)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	"	5,000원	
(21) 영화상영권 등록 신청 수수료	"	20,000원	
(22) 영화상영권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10,000원	
(23)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수수료	"	20,000원	
(24) 비디오물배급업 신고 수수료	"	20,000원	
(25)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신청 수수료	"	20,000원	
(26)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배급업 변경신고 수수료	"	10,000원	
(27)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5,000원	
(28)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 수수료	"	20,000원	
(29)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 수수료	"	20,000원	
(30)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수수료	"	20,000원	
(31)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수수료	"	20,000원	
(32)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변경신고 수수료	"	10,000원	
(33)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수수료	"	10,000원	
(34)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5,000원	
(35)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 교부 수수료	"	4,000원	
(36)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승인 수수료	"	100,000원	
(37)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 사업계획 승인 수수료	"	50,000원	
(38)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수수료	"	30,000원	
(39)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 사업계획 변경승인 수수료	"	20,000원	
(40)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등록신청 수수료	"	50,000원	
(41)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 등록신청 수수료	"	30,000원	
(42)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변경등록 신청 수 수료	"	20,000원	
(43)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10,000원	
(44) 체육시설업의 신고 수수료	"	30,000원	
(45)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수수료	"	10,000원	
3. 부동산중개업분야			
(1)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개인) 수수료	1건당	20,000원	
(2)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법인) 수수료	"	30,000원	
(3)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	"	800원	
(4) 분사무소 설치신고 수수료	"	10,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5)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수수료	"	800원	
(6) 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 인장 등록(등록인장 변경) 신고 수수료	"	무료	
(7)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수수료	"	800원	
4. 농수산업분야			
(1) 낚시어선업 신고 수수료	"	2,500원	
(2)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정치망어업) 수수료	"	9,000원	
(3)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 수수료	"	7,500원	
(4)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어업·종묘채포어업·연승어업·패류채취어업·낭장망어업·각망어업) 수수료	"	5,000원	
(5) 내수면어업 신고 수수료	"	1,000원	
(6)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	5,000원	
(7) 내수면 유해어법(有害漁法)의 사용허가 신청 수수료	"	3,000원	
(8) 비료생산업 등록 수수료	"	30,000원	
(9) 비료수입업 신고 수수료	"	20,000원	
(10)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변경·지분변경) 신고 수수료	"	1,000원	
(11) 어업면허 신청 수수료	"	5,000원	
(12) 어업면허증·관리선사용지정증(어선사용승인증) 재발급 수수료	"	1,000원	
(13)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수수료	"	무료	
(14)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	3,000원	
(15)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	800원	
(16) 어업권(지분) 이전 인가 신청 수수료	"	4,000원	
(17) 어업권 분할 인가 신청 수수료	"	2,500원	
(18) 어업권 변경 인가 신청 수수료	"	3,000원	
(19) 면허사항의 변경신고(주소·성명·대표자·선박명칭) 수수료	"	1,000원	
(20)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 수수료	"	1,000원	
(21)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	"	1,000원	
(22) 어업 휴업(휴업연장) 신고 수수료	"	무료	
(23) 어업재개 신고 수수료	"	무료	
(24) 어업권포기 신고 수수료	"	1,000원	
(25) 어업허가증(신고어업증명서)의 재발급 수수료	"	1,000원	
(26) 근해어업 허가 수수료	"	4,500원	
(27) 연안어업 허가 수수료	"	2,500원	
(28) 구획어업 허가 수수료	"	4,500원	
(29) 종묘생산어업 허가 수수료	"	무료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30) 어업허가 유예 수수료	"	1,500원	
(31) 한시어업 허가 수수료	"	2,000원	
(32) 한시어업 허가연장 수수료	"	2,000원	
(33) 시험어업 신청 수수료	"	2,000원	
(34) 어업신고 수수료	"	1,500원	
(35)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수수료	"	1,500원	
(36)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	1,500원	
(37)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	1,000원	
(38) 허가어업·신고어업의 폐업신고 수수료	"	800원	
(39) 허가어업 휴업 신고 수수료	"	1,000원	
(40) 허가어업 재개 신고 수수료	"	1,000원	
(41) 어구·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신청 수수료	"	3,000원	
(42) 어구·시설물의 철거의무연장 신청 수수료	"	3,000원	
(43) 어업권 등의 보상청구 수수료	"	2,000원	
(44) 입어 재결신청 수수료	"	3,000원	
(45)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 수수료	"	3,000원	
(46)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 수수료	"	4,500원	
(47) 유해어법 사용허가 신청 수수료	"	3,000원	
(48) 수산자원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신청 수수료	"	3,000원	
(49) 수산물가공업 신고 수수료	"	무료	
(50)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 신청 수수료	"	2,000원	
(51)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 신청 수수료	"	1,000원	
(52)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	2,000원	
(53)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	1,000원	
(54) 증서 등의 재발급(어선건조·개조허가서, 허가사항 변경허가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영역서) 수수료	"	1,000원	
(55) 어선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3,000원	
(56)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	800원	
(57) 선박국적증서영역서 발급 수수료	"	무료	
(58) 어획물 운반업 등록	"	5,500원	
(59)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의 교부 또는 재교부	"	500원	
(60) 면허,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건조 허가	"	1,000원	
(61) 면허,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개조 허가	"	5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64) 근해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건조허가(건조발주허가, 변경 허가 포함)	"	1,600원	
(65) 근해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개조허가(개조발주허가, 변경허가 포함)	"	800원	
(66) 어획물운반법에 사용하는 어선의 건조허가(건조발주허가, 변경 허가 포함)	"	2,000원	
(67) 어획물운반법에 사용하는 어선의 개조허가(개조발주허가, 변경허가 포함)	"	1,000원	
(68) 관상어양식업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69) 양식업(해조류양식업·패류양식업·어류등양식업·복합양식업·협동양식업·외해양식업)면허 신청 수수료	"	5,000원	
(70) 내수면양식업 면허신청 수수료	"	9,000원	
(71) 양식업면허증 재발급 수수료	"	1,000원	
(72) 양식업면허, 양식업허가 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변경·지분 변경) 신고 수수료	"	1,000원	
(73) 양식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	3,000원	
(74) 양식업권 포기 신고 수수료	"	1,000원	
(75) 면허사항의 변경신고 수수료	"	1,000원	
(76) 양식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	800원	
(77) 양식업권(지분) 이전인가 신청 수수료	"	4,000원	
(78) 양식업권 분할인가 신청 수수료	"	2,500원	
(79) 양식업권 변경인가 신청 수수료	"	3,000원	
(80) 관리선 사용 지정 및 관리선 사용 승인 신청 수수료	"	1,000원	
(81)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 승인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	"	1,000원	
(82) 관리선 사용 지정(승인)증 재발급 수수료	"	1,000원	
(83) 양식업(육상해수양식업·육상등 내수양식업)허가 신청 수수료	"	4,000원	
(84) 양식업허가증의 재발급 수수료	"	1,000원	
(85) 양식업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	1,500원	
(86) 양식업 변경신고 수수료	"	1,500원	
(87) 양식업 폐업신고 수수료	"	800원	
(88) 시험양식업 신청 수수료	"	2,000원	
(89) 양식시설물 철거의무 면제 신청 수수료	"	3,000원	
(90) 양식시설물 철거의무 연장 신청 수수료	"	3,000원	
(91) 보상청구 수수료	"	2,000원	
5. 공장설립분야			
(1)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1건당	2,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2)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수수료	"	1,000원	
(3)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수수료	"	1,000원	
6. 석유판매업분야			
(1)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2)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 수수료	"	10,000원	
(3)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 신고 수수료	"	10,000원	
(4)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	20,000원	
(5)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	10,000원	
7. 환경분야			
(1)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수수료	1건당	10,000원	
(2)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수수료	"	5,000원	
(3) <삭제>			
8. 보건사회분야			
(1)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2)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	"	10,000원	
(3) 치과기공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양수신고에 한정) 수수료	"	10,000원	
(4)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양수신고에 한정) 수수료	"	10,000원	
(5)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 수수료	"	40,000원	
(6)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수수료	"	100,000원	
(7)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사항 변경 신고(개설장소 이전에 한정) 수수료	"	20,000원	
(8)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사항 변경 허가(개설장소 이전에 한정) 수수료	"	40,000원	
(9)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 수수료	"	40,000원	
(10) 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 수수료	"	100,000원	
(11)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개설장소 이전에 한정) 수수료	"	20,000원	
(12)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신청(개설장소 이전에 한정) 수수료	"	40,000원	
(13)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재발급 수수료	"	800원	
(14) 의료기관·약국(휴·폐업)사실증명	1통당	500원	
(15)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1건당	40,000원	
(16)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개설장소 이전에 한정)	"	20,000원	
9. 도시계획분야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필지당	1,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2) 환지(예정지) 증명	1통당	(컬러 1,500원) 400원	
10. 건설행정분야			
(1)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수수료	1건당	1,000원	
11. 교통행정분야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수수료	1건당	6,000원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 신고 수수료	"	1,500원	
(3)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 신고 수수료	"	1,500원	
(4)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수수료	"	1,500원	
(5)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원	"	1,000원	
12.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1) 주민등록 등본·초본	1통	200원	
(2) 토지(임야)대장	1필지	4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3) 집합건축물대지권등록부	1건	400원	
	20장 초과마다	100원	
(4) 건축물관리대장	1건	400원	
(5) 개별공시지가확인원	1개년필지	600원	
(6)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필지 (컬러불가)	800원	
(7) 세목별 과세증명	1건	600원	
(8) 자동차 등록원부(갑, 을)			
- 관내	1건	200원	
- 관외	1건	200원	
(9) 건설기계등록원부(갑, 을)			
- 관내	1건	400원	
- 관외	1건	1,200원	
(10) 농지원부	1건	800원	
(11) 가족관계등록부			
- 등록사항별 증명서	1건	500원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폐쇄가족관계증명서, 폐쇄혼인관계증명서, 폐쇄입양관계증명서, 폐쇄기본증명서)			
- 제적등본	1건	500원	
- 제적초본	1건	300원	
(12) 검정고시증명서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 성적·합격증명서(국문·영문)	1건	무료	
- 과목 합격증명서	1건	무료	
(13) 초·중·고등학교 증명서			
- 성적증명서(중·고등학교)	1건	무료	
- 졸업증명서(초·중·고등학교)(국문·영문)	1건	무료	
- 학교 생활기록부(초·중·고등학교)	1건	무료	
- 제적증명서	1건	무료	
- 정원외관리증명서	1건	무료	
- 졸업예정증명서	1건	무료	
- 교육비납입증명서	1건	무료	
(14) 한부모 가족증명서	1건	무료	
(15) 장애인 가족증명서	1건	무료	
(16) 수급자 증명서	1건	무료	
(17) 병적증명서	1건	무료	
(18) 부동산 등기부 등본	1통	1,000원	
(19) 어선원부	1건	800원	

[별표 2]

정보공개 수수료(제3조 관련)

공개 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 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로 변환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별표 3]

수수료면제 사실확인 고무인(제7조제2항 관련)

8cm			
위 증명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입니다.		2.5cm	

관계 법령 발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비용 부담)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쇄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 금액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공개할 때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제1항 본문에 따라 정한 수수료 금액의 범위에서 수수료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비용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비용의 감면비율을 정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낸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낼 수 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2. 수입인지(국가기관에 내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4. 5. 28.]

인천광역시 검단구 수입증지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적용, 효율 및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4조)
- 나. 징수방법 및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다. 수수료 면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재무과, 민원봉사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수입증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하여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수입증지요금 계기를 통하여 영수증 형태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이하 “민원처리기기”라 한다)으로 수입증지 납부표시를 인영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의 납부)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4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색채) ① 수입증지의 규격과 색채는 다음 각 호 및 별표 1과 같다.

1. 규격: 가로 27mm 이내, 세로 30mm 이내
2. 색채
가. 수동인증기: 초록색

나.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처리기기: 검은색

② 민원처리기기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각종 증명에는 제1항에 따른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제5조(계기의 사용 및 관리) ① 계기를 사용하여 수입증지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발행기관명
2. 수입증지 요금
3. 발행연월일
4. 계기 고유번호

②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수입증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여 설치기관명·설치장소·계기 고유번호·사용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계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른 수입증지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 수입금은 15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신용카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입증지 발행 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일일전표 등을 첨부하여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결산 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사유로 잘못 발행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잘못 발행된 수입증지 표시 면을 첨부하여 수입증지 발행 금액과 수입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7조(무인발급기 준비금) ① 무인발급기 관리책임자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개시일에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거스럼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을 무인발급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준비금은 세출예산에서 지출하고, 무인민원발급기에 항상 남아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무인민원발급기의 폐기·이전 등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지 않게 된 때에는 준비금을 지체 없이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변상책임) 수입증지 발행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① 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

②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그가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이 망실(亡失)되거나 훼손(毀損)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스스로 사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그 손해가 2명 이상의 회계관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자의 행위가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정도가 같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5조(변상금액의 감면)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31조에 따라 변상금액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그 손해가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를 방지하지 못한 데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회계관계직원의 회계사무의 집행 내용, 손해발생의 원인, 회계관계직원의 과실이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 노력 등 모든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해당 회계관계직원에게 손해액 전부를 변상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회계관계직원이 평소 예산의 절약이나 회계질서의 확립에 기여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9. 3. 25.]

제6조(감사원의 판정 전의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계관계직원이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원이 판정하기 전이라도 해당 회계관계직원에게 대하여 변상을 명할 수 있다.

1.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감독기관(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장
4. 해당 기관(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아닌 경우로서

감독기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의 장

② 제1항의 경우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별·직위별로 위임 한도액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 또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변상명령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변상명령을 받은 회계관계직원은 이의가 있으면 감사원장이 정하는 판정청구서에 의하여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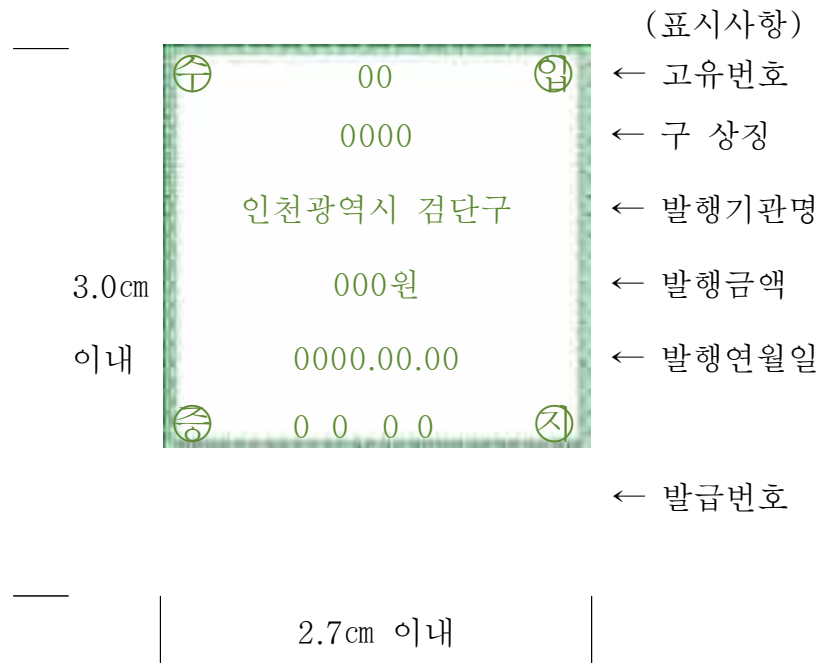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변상명령을 한 자는 감사원이 해당 회계관계직원에게 대하여 변상의 책임이 없다고 판정하거나 제5조에 따라 변상금액을 감면한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이 이미 낸 변상금의 전부 또는 그 차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⑤ 감사원의 판정에 따른 변상명령서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변상명령서가 해당 회계관계직원에게 송달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7조(중앙관서의 장 등의 통지의무)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변상책임이 있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알려야 한다.

[별표 1]

수입증지 규격 및 색채(제4조 관련)

1.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이내, 세로 3.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2. 모양은 테두리가 있는 사각형으로 하고, 구의 특색 또는 상징을 도안으로 넣을 수 있으며, 색채는 초록색으로 한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 및 민원처리기기의 경우 검은색으로 할 수 있다)
3. 표시사항의 위치는 변경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대장

연번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고시일	고시번호	책임자

[별지 제2호서식]

수입증지 수입금 결산대장

[illegible]

※ 첨부 : 일일전표

[별지 제3호서식]

무인민원발급기 준비금 관리대장

연월일	무인민원발급기 고 유 번 호	최초준비금액	세입조치금액	비고	결재		
					담당자	담당	과장

[별지 제4호서식]

수입증지 환매청구서

검단구청장 귀하

성 명			
주 소			
사 유			
환매금액		액면금액	
내 역			
종 별	수 량	액면금액	환매금액
환불은행, 계좌번호 :			
전화번호:			

위와 같이 수입증지를 환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세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세율, 납기(제4조~제6조)
- 나. 주민세 세율 및 신고의무(제7조~제10조)
- 다. 중과대상지역(제11조)
- 라. 도시지역분 세율 및 대상지역 고시(제12조~제1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세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 사무의 위임) 구세의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세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다.

제2장 등록면허세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4조(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5조(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6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장 주민세

제7조(세율) 법 제81조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세율: 법 제81조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세율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세율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5.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변경된 때

제4장 재산세

제11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2016. 12. 27.>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적정한 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2017. 7. 26.>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5. 12. 29., 2016. 12. 27.>

제27조(과세표준) ①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9. 12. 31., 2021. 12. 28., 2023. 12. 29.>

1. 제23조제1호가목·나목 및 라목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의 경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

2. 제23조제1호다목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의 경우: 제1항에 따른 등록 당시의 가액과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 중 높은 가액

④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의 범위 및 그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3. 29., 2011. 12. 2., 2011. 12. 31., 2013. 1. 1., 2013. 3. 23., 2014. 1. 1., 2014. 11. 19., 2015. 7. 24., 2015. 12. 29., 2016. 2. 29., 2016. 12. 27., 2017. 7. 26., 2017. 12. 26., 2019. 8. 27.>

1. 부동산 등기

가. 소유권의 보존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

나. 소유권의 이전 등기

1)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 다만,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 다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로 한다.

다.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1) 지상권: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다만, 구분지상권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사용에 따른 건축물의 이용저해율(利用沮害率), 지하 부분의 이용저해율 및 그 밖의 이용저해율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해당 토지 가액의 1천분의 2로 한다.

2) 저당권(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채권 금액의 1천분의 2

3) 지역권: 요역지(要役地) 가액의 1천분의 2

4) 전세권: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5) 임차권: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

라.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1) 경매신청: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2) 가압류(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3) 가처분(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4) 가등기(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마. 그 밖의 등기: 건당 6천원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제35조(신고납부 등) ①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제25조제2항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새로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은 자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새로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받은 때에 해당 면허에 대한 그 다음 연도분의 등록면허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②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제25조제2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1. 제조·가공 또는 수입의 면허로서 각각 그 품목별로 받는 면허

2. 건축허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면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

④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 1. 1., 2016. 12. 27.>

제81조(세율) ①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12. 29.>

1. 기본세율

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나.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 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 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 4) 그 밖의 법인: 5만원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의 세율을 각각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제84조의3(세율) 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분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6. 12. 27., 2019. 12. 31.>

2. 건축물

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읍·면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도(읍·면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시(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20. 12. 29.>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제목개정 2013. 1. 1.]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7. 12. 26.>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4.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4(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 등) ① 법 제84조의6제2항에 따라 종업원분을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종업원 수, 급여 총액, 세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명세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법 제84조의6제2항에 따라 종업원분을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4. 3. 14.]

인천광역시 검단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등(제1조~제3조)

나. 기부자 예우(제4조~제5조)

다. 기부심사 위원회 역할 및 구성 등(제6조~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 등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예우”란 기부자에게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의 제5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구청장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기부자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 등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 ② 기부금품 등 관련 접수 또는 사용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며 기부자가 원할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기부자 예우) 구청장은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초청
2. 구청장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3. 구보 등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구가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5.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제6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제5조제5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기부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이 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기부금품 등의 접수여부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세부 시행 및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 000 호

기부증서 (제4조제1항 관련)

성명(기관·단체명)

기부금품 :

귀하께서 상기와 같이 사랑과 정성을 담아 보내주신 소중한 기부금품은 우리 사회의 아름다운 변화를 위해 사용되며,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관계 법령 발췌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③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8. 16.>

1.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행정안전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④위원회의 위원에는 민간인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8. 16.>

⑤ 제3항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3. 8. 16.>

⑥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 8. 16.>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차관인 부위원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인 부위원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 세칙)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두는 기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3. 29.>

② 위원장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경우 시·도지사, 시·군·자치구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도의 경우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시·군·자치구의 경우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된다. <개정 2020. 7. 7.>

- ③ 위원은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 ⑥ 시·도 및 시·군·자치구 기부심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무기강 확립(제4조)

나. 휴가관리(제12조~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사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

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 지방자치단체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 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 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으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 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의 복무는 파견받는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는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증(모바일 공무원증 포함)의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 및 제4장의2를 준용한다.

제2장 휴가

제13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4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5와 같이 한다.

제15조(시간외근무 연가 전환) 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 시간의 연가 전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가 5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19조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7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10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5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30일**

④ 「병역법」에 따라 공무원의 직계비속이 입영할 경우 입영 당일 1일의 입영동행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5일의 새내기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을 따른다.

⑥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생일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8항의 육아시간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7항의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⑧ 구청장은 소속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시술 때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6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휴가 일수만큼 남성공무원에게 배우자 동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⑨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성공적인 업무 수행 등 그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선서문(제2조제2항 관련)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별표 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3항 관련)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나. 취업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업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선서를 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업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2. 선서의 방식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로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별표 3]

공직자의 행동률(제5조제2항 관련)

대민 관계	대내 관계
○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 ○ 항상 웃으며 차별없이 대한다. ○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 문의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하게 한다. ○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 민원은 신속, 공정하게 경제부담이 없도록 처리한다. ○ 주민의 존경과 신뢰받도록 개선한다. ○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 ○ 반사회와 새마을운동에 앞장서 참여한다.	○ 시간을 엄수한다. ○ 어려운 동료로 돕는다. ○ 근검 절약한다. ○ 남에게 겸손한다. ○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 ○ 상사는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 ○ 직장환경을 명랑하게 한다. ○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한다. ○ 책을 읽고 인격도야에 힘쓴다. ○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

[별표 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7조제1항 관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2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 5]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4조 관련)**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이 인정되는 자(즉, 호봉 또는 연봉제근무연수 확정 시 공무원 근무경력 외 인정되는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 안 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3일 가산

인천광역시 검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금을 통해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의 조성, 검단구 경제 활성화 도모 및 지역의 자생력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운영 등(안 제2조 ~ 제5조)

나.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안 제6조)

다.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용(안 제7조 ~ 제23조)

다. 공모전 추진 및 수상(안 제2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답례품 공급 등 비용 발생으로 ‘고향사랑기금’ 설치 예정

다. 합 의: 감사담당관, 가정보육과 합의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검단구”라 한다)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답례품 선정(「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품권 및 유가증권 포함)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답례품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
4. 제24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 관련 공모전 심사에 관한 사항
5. 기타 구청장이 답례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위촉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고향사랑 기부업무 부서장
2.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5. 기타 상품·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6. 기타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선정위원회의 운영은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선정위원회의 임기는 답레품의 선정 및 운영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제3조(답레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①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레품 및 답레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레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레품의 보관·상품화·품질관리·배송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검단구 관할 구역 안에 생산·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 공급 및 매출액
5. 답레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7. 지방자치단체 공동브랜드 사용 여부
8. 농수산물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
9.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검단구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판매 여부
10. 기타 답레품 및 답레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답례품의 종류) ① 구청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채취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해당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해당 지역에서 생산·제조한 물품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검단구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제공하는 답례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등) 및 유기식품 등
2.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3.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품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검단구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9.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비율이 50% 이상인 품목
10. 검단구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

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11.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
12. 검단구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13. 기타 구청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운영하는 각종 서비스의 상품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등
2.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답례품의 종류 및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6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본인인지 여부 등의 확인
3.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통지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7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제9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구청장은 고향사랑기금의 일부를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의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 및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고향사랑기금의 일부를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관)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부금 담당업무 부서장
2. 기금출납원: 고향사랑 기부제 담당업무 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
4.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금 관련 공모전 심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나.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다. 기타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은 한 차례만 할 수 있고, 중임할 수 없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 사망,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 회의록은 심의안건 자료 및 서면회의 결과로 대체한다.

⑥ 위원회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 심의를 통해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

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9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20조(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 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위원의 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3조(기금의 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결산보고서 제출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
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4조(공모전) ① 구청장은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답례품 관련 공모전, 기금 관련 공모전 등 각종 공모전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전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상금 또는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구청장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제2조에서 제5조에 따라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우선 답례품의 선정, 공급업체의 공모 등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제11조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제22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부칙 제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성·운용하는 답례품 선정위원회 또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답례품 선정위원회 또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행위로 본다.

④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설치·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설치를 위한 기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기부금의 계좌를 우선 개설하여 예치·관리할 수 있다. 다만, 기금의 설치·기금 계좌의 개설이 된 경우에는 기금 계좌로 관리·운영해야 한다.

제3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에 따른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부칙 제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부터 시작한 것으로 본다.

관계 법령 발췌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 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접수를 제한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것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한 경우
2. 제7조를 위반한 방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제한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 ①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게 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결제·신용카드·전자자금이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4. 2. 20.>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절

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답례품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2.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3. 그 밖에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

③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현금
2.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
3. 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이하 “고향사랑기금”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제3항에 따른 모집·운용 비용 및 제4항에 따른 답례품 제공

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 또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경우 해당 사업 또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개정 2024. 2. 20.>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③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금의 일부(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향사랑기금의 일부를 제9조에 따른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24. 2. 20.>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 2. 20.>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답례품의 선정 방법 및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중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가 선정된 경우 선정결과에 관한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과 답례품 선정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주민자치회 목적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5조)
- 나.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8조)
- 다. 주민자치회 위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19조~제23조)
- 라.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24조~제3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교육과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 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및 권한)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 업무: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의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 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 업무
2. 협의업무: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3. 수탁업무: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4. 주민참여예산의 운영 및 제안 등 동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가 수행하는 기능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

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정될 수 없으며, 해당 동 구의원은 고문으로 참여하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에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3.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사업자등록증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객관적 증명 자료 제출)
4.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소속된 사람

② 제7조제1항제4호에서 기관, 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 법령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한 기관
2. 직능단체: 각종 직업과 직능 또는 직위별로 조직된 단체로 정관, 회원명부, 회의록을 갖추고 최근 6개월 이상 활동내역이 있는 단체
3. 공공단체: 법에 따라 국가의 감독 아래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③ 제23조제1항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위원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며, 제23조제2항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촉된 날부터 2년 동안 위원 자격을 가질 수 없다.

제8조(위원선정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을 위한 절차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동에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동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에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선정을 위한 해당 동 선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주민자치회장

2.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3. 동 주민자치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4. 동 소재 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1명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주민자치회장이 제2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선정위원회 위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주민자치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을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자의 자격 확인

2. 제9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⑤ 선정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제9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 선정위원회에서 공개 추첨하거나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고, 40대 이하가 전체 위원의 15퍼센트 이상 선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 전체 위원 수의 30퍼센트 이하는 해당 동 소재 기관, 단체 등에서 추천하거나 동장이 추천한 사람 가운데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3시간 이상 사전 이수하여야 한다. 단, 기존 주민자치회 위원은 최소 2시간 이상의 보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갈음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 순위를 10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할 수 있다.

⑤ 선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하였거나 제6조의 정수 충원을 위해 신규위촉하는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해당 동 주민자치회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다.

⑧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⑨ 구청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 이내로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 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자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만료 또는 해촉된 날부터 4년 이내에 자치회장으로 호선될 수 없다.

⑤ 자치회장 궐위 시 신임 자치회장 선출 시까지 부회장이 자치회장직을 수행한다.

⑥ 제3항 및 제5항의 자치회장직 직무대행자 선정 세부 방법은 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사무국 또는 간사) ①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사무국을 설치하거나 간사를 선정할 수 있다.

1.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2. 간사는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하거나 검단구 주민 중에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간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간사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30조에 따라 받은 수강료 중 일정금액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 주민 분과위원회 위원은 해당 분과위원회 활동에 한정하여 회의 및 사업에 참여하고 의결권을 가진다.

③ 분과위원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해당 분과위원회의 각종 활동, 사업계획 수립, 결속력 강화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별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동의 다음 연도 자치계획안

4. 주민자치회 사업예산안

5. 그 밖의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많은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참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및 해당 동장은 주민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 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⑧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라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자치계획안에 대한 동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을 제공하거나 경품 제공 등 이벤트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자치계획안의 수립 및 결정) ① 제4조에 따른 주민자치회는 동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자치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자치계획안은 제17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회의의 의결로 입안되며, 주민총회에서 의결로 결정한다.

제16조(자치계획의 내용 등) ① 자치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 계획
2. 마을 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 계획
5. 분과위원회별 사업계획
6. 주민자치회 사업예산안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계획안을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획안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검토 결과 등을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자치계획을 해당 동 주민들이 합의한 공적인 종합계획으로 인정하고, 원활한 실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자치계획의 유효기간은 다음 주민총회 개최 전까지로 한다.

제17조(주민자치회의 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 개최 횟수는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하였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 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 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장학사업) 주민자치회 및 제36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자치협의회는 자체 재원 마련을 통해 장학사업을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협의회의 회의에서 결정한다.

제3장 주민자치회의 위원

제19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자치회 위원은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에 참석한다.

제20조(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21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할 경우에도 제9조의 선정 절차를 따른다.

② 연임을 하여 임기가 종료된 경우 제9조의 위원 선정 절차에 따라 신규위원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9조제7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동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 종료일과 같이 한다.

제22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회 위원은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주민자치회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여, 그 사퇴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2. 제7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의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사유가 구청장에게 발견된 경우

3.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피선거권이 없음이 구청장에게 발견된 경우

4.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구청장에게 발견된 경우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에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남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주민자치회는 그 위원이 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그 위원의 해촉 여부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해촉 여부의 대상이 된 위원은 제3항의 회의에서 의결권 등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해촉을 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주민자치센터

제24조(설치 등) ①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는 동 행정복지센터

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 구역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25조(기능) ①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 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 공부방, 장애인의 여가·문화 등 지역복지 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 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 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 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제2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구청장은 자치센터가 제2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 사전에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또는 인근 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동 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의 재정 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7조(운영)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설치·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원활한 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봉사하는 주민자치회 위원, 자원봉사자 또는 강사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30조제5항에 따라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 금액을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동장과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제4조에 따른 해당 동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되, 제30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주민자치회 위원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2. 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박람회 및 지역 체육대회 참가 지원 및 시상
3.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자치센터별 음악회 및 축제 등 개최 비용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구청장과 동장은 관할 구역 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 하여야 한다.

제28조(자원봉사자) ① 동장과 주민자치회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29조(강사) 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30조(사용료 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의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의 징수범위와 요율, 감면 대상 등의 결정은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정한다.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동장이 징수한 사용료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세입으로 처리하고,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 및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⑤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

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한다.

제31조(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용 희망자가 수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 주민을 우선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제30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32조(주민참여)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할 구역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 또는 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3조(수당)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

- 제34조(보고) ① 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2항에 따라 자치센터 운영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② 동장은 제30조에 따른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해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 제35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동 단위 주민참여예산기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 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동장 및 자치회장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⑤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동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⑥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민자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주민자치협의회)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및 자치센터의 운영·관리 등 상호 필요한 정보교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동 주민자치회 회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협의회 정기회의에 출석한 회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협의회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7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38조(정보공개)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9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30조, 제41조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에 해당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해당 정보를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9조(감독)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40조(보험) 구청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41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밖에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의 위임을 받아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하고, 확정된 운영세칙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잔여기간으로 한다.

[별표 1]

사용료 등 징수범위와 요율 상한선(제30조 관련)

구분 과목		기 준	사용료 등 (범위 내)	비 고
각종 시설 (사용료)	다목적 홀, 회의실 등 (부대시설 포함)	2시간	30,000원	○ 기준시간 초과 사용 시 1시간당 10,000원 추가 산정
각종 프로그램 (수강료)	체력단련실 (헬스장)	1개월	25,000원	○ 과정별 소요되는 재료비는 별도
	취미, 교양, 생활체육 등 강좌	1개월	35,000원	

[별표 2]

사용료 등 감면대상 및 감면액(제30조 관련)

구 분	대 상	감면 비율	비 고
각종 시설 (사용료)	- 정규프로그램(강좌) 운영에 따른 이용 - 관내 직능단체 등의 회의 - 조례 제25조의 자치센터 기능 수행에 적합하다고 동장이 인정하는 경우 - 구에서 주최(주관)하거나 법률 및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행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 그 밖에 동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	
	- 초등학생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및 강좌 - 순수 예술 부문의 창작활동·공연	50%	
각종 프로그램 (수강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 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00%	검단구 주민에 한정하며, 1인당 제한 강좌 수는 동별 프로그램 운영 여건에 따라 정함. ※과정별 소요되는 재료비는 별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주거·교육급여 대상자, 차상위 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인천광역시 검단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다문화가족	50%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①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자치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항

④ 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의회 구성(제3조)

나. 협의회 운영방법(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통합방위협의회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인천광역시 검단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
3.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4. 취약지역 대비책
5. 통제구역 설정
6.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6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의장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의 의장

2.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3. 인천광역시 서부경찰서장
4. 제17보병사단 507여단 1대대장 및 1대대 검단구 지역대장
5. 국군 제317방첩부대 부대원
6. 국가정보원 통합방위담당관
7. 인천광역시 검단소방서장
8. KT 서인천지점 지점장
9. 국가보훈부 인천보훈지청장
10.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동 방위협의회의 위원장의 임기는 동 방위협의회의 임기에 따른다.

④ 의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할 때
2. 장기치료가 필요할 질병 등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또는 활동부진 등으로 협의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고,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총무담당간사: 총무업무담당 과장
2. 민방위담당간사: 안전업무담당 과장
3. 심리전담당간사: 홍보업무담당 과장
4. 작전담당간사: 제17보병사단 507여단 1대대 정작과장, 서부경찰서 경비작전 담당 업무 부서장
5. 정보화담당간사: 서부경찰서 정보보안과장, 제17보병사단 507여단 1대대 보안담당관
6. 예비군담당간사: 제17보병사단 507여단 1대대 동원장교
7. 소방담당간사: 검단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제5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인천광역시 검단구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협의회에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③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이를 정한다.

제7조(지원본부) ① 구청장 소속하에 인천광역시 검단구 통합방위지원본부

(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
8.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

③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④ 지원본부에 두는 상황실의 상황실장은 행정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또한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동원, 건설·수송, 의료·구호, 통신, 보급, 홍보 및 재정분야로 구성한다.

⑤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지원본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청 내에 둔다.

⑥ 지원본부의 구성 및 각 분야별 지원반의 임무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동 지원본부) ① 각 동 소속하에 동 방위협의회 지원본부(이하 "동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동 지원본부는 제7조제2항의 사무를 분장한다.

③ 동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④ 동 지원본부에 두는 상황실장은 동선임자가 되고 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⑤ 동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동장이 되고 동 지원본부는 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둔다.

⑥ 동 지원본부의 구성 및 각 분야별 지원반의 임무는 별표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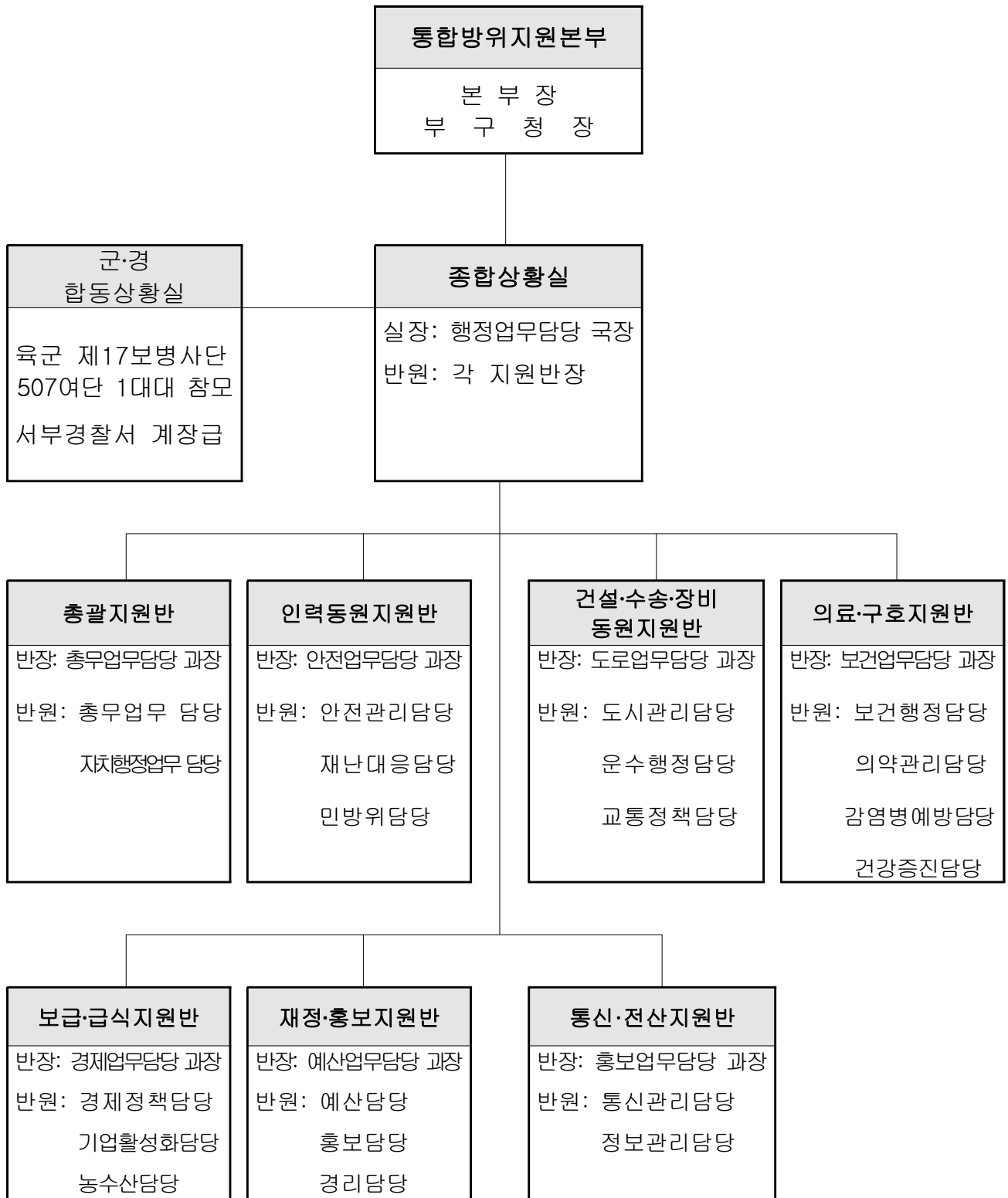
제9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구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체계도(제7조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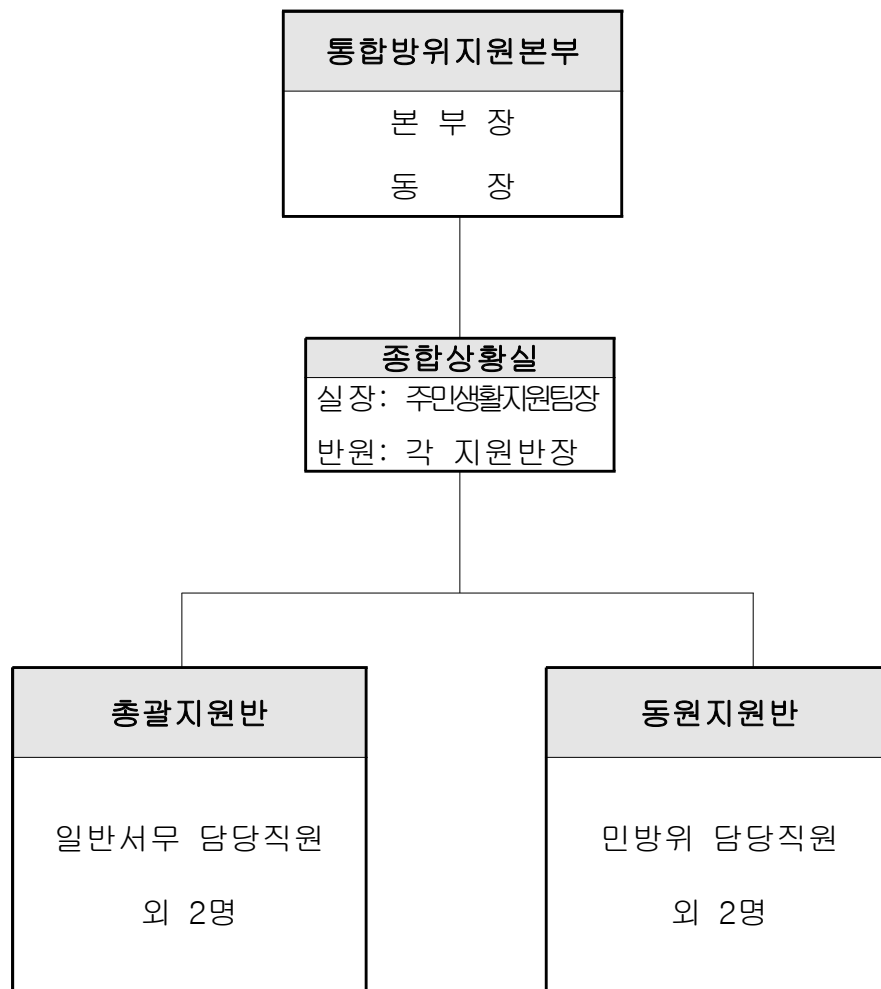
각 분야별 지원반의 임무(제7조 관련)

구 분	임 무
본 부 장 (부 구 청 장)	• 통합방위종합상황실 설치 및 운영 감독 •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대표하고, 사무 관장 및 지휘·감독 • 통합방위지원본부 편성요원 임명 및 위촉 • 소속 행정기관의 통합방위지원본부 지휘·감독 • 각 분야별 지원반의 업무 협조 및 조정·통제 • 상하 인접지원 부서 간 지휘 및 협조체제 유지 • 군·경 정보작전합동상황실과의 협조체제 유지 및 긴급상황 발생시 즉각 지원태세 유지 • 각 분야별 주요지원 및 조치사항 종합
종합상황실(장)	• 각종 상황 파악 유지 및 각 분야별 지원반 활동 조정·통제 • 신속 정확한 경보전파 • 작전부대와 협조 지원요소 파악 및 지원 지시 • 통합작전에 관한 지원대책 수립·시행 및 필요시 통합방위협의회에 건의 • 소속 행정기관의 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 지휘·감독 • 통합방위작전 지원계획 조정·통제 • 군·경 작전상황을 파악 통합방위지원본부에 전파 • 통합방위지원본부 지원상황 군·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 통보 • 총무 3중사태 이후 각 정부 부처의 현황 및 기능 유지
군·경 합동상황실	• 정보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 정보업무 관장 • 신속 정확한 경보발령 및 전파 • 종합상황실에 정보 및 첩보 제공 • 군·경 작전상황 종합 분석·판단 건의 및 조치 • 군 및 경찰작전상황 종합상황실(장)에게 통보 및 협조
총괄지원반(장)	•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관장 • 정기 또는 수시로 운영되는 각종 회의 관장

구 분	임 무
인력동원지원반(장)	• 인력지원 및 병력동원업무 계획 수립·시행, 지원업무 관장 • 예비군, 민방위대의 비상연락망 유지 및 조정 • 실비 변상 및 가료, 구호소요 제기 • 국가동원계획의 인력 및 병력동원 집행 준비 및 지원 • 가용인력 및 병력현황 파악 유지 • 주민통제 업무 관장
건설·수송·장비동원 지원반(장)	• 산업, 건설 및 수송지원계획 수립 및 통합작전 지원차량 소요판단 확보 등 지원업무 관장 • 건설복구 및 수송지원조 편성·운영 • 실비변상 및 회수·반환업무 관장 • 국가동원 계획의 건설 및 수송동원 사항에 대한 집행준비 및 지원 • 민방위 지원대와 연계한 기술인력 확보 및 피해복구 관장 • 차량통제
의료·구호지원반 (장)	• 의료구호 및 후송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업무 관장 • 의료·구호조 편성·운영, 의료시설 및 요원 지정·통제 • 급수 및 방역업무 시행 • 국가동원 계획의 의료동원 집행준비 및 지원 • 사상자에 대한 응급처치 • 작전동원된 예비군이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가료한 경우 진료비 지원
보급·급식지원반 (장)	• 보급 및 급식 지원계획 수립·시행, 작전 동원 병력 급식 및 보급 지원업무 관장 • 보급 및 급식장비 획득 지원 • 국가동원 계획의 공산품 및 농수산물 동원 집행 준비

구 분	임 무
재정·홍보지원반(장)	• 예산지원 계획 수립·시행 •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예산 결산 • 국가동원 계획의 재정동원 집행 준비 • 홍보 및 계몽계획 수립·시행 • 홍보매개체 조정·통제 및 홍보(계몽)반 편성 및 운영 • 국가동원 계획의 홍보매체 동원집행 준비 • 군사작전 홍보지원계획 수립·시행
통신·전산지원반(장)	• 통신지원 계획 수립 시행 및 지원업무 관장 • 통합방위지원본부 통신망 구성 및 운영 • 종합 통신 운영계획 수립·시행 및 감독 • 통신지원조 편성·운영 및 통신시설 가설 복구 • 국가동원 계획의 통신지원 집행 준비 및 지원

〔별표 2〕

동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체계도(제8조 관련)

- 주) 1. 미 편성된 지원반의 임무·기능은 총괄지원반에서 수행
 2. 전시 정부기능 업무(주민통제, 배급, 민방위대 통제 등) 병행

관계 법령 발췌

□ 통합방위법

제5조(지역 통합방위협의회)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시·도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의장은 시·도지사가 된다. <개정 2013. 3. 22.>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③ 시·도 협의회와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도 협의회에 한한다. <개정 2024. 1. 16.>

1.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
2. 통합방위 대비책
3. 을중사태 및 병중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4.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
6.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5. 21.]

제9조(통합방위 지원본부) ①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읍장·면장·동장 소속으로 시·군·구·읍·면·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둔다.

② 시·도 통합방위 지원본부와 시·군·구·읍·면·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라 한다)는 관할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
5. 그 밖에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5. 21.]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민장(區民)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제1조)

나. 대상자(제2조)

다. 심의회 및 위원회 구성 등(제3조~제11조)

라. 장례기간 및 절차 등(제12조~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민장(區民)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구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때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나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회장의 제청으로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구민장(이하 “구민장”이라 한다) 선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정에 따라 이를 구민장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의 명예를 드높이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여 구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
2. 보유 재산의 전액 또는 상당액을 구 발전을 위한 장학기금, 복지사업 기금 등으로 헌납한 사람
3. 재직 중 공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망한 구 소속 공무원 및 검단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제3조(심의회) ① 구민장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그 때마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심의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

직 위원은 구민장 업무 담당 국장, 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사회저명인사 및 각계 주요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장례위원회) 장례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민장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장례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구의 각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사회저명인사, 각계 주요인사 및 고인의 친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장례절차가 종료되면 위원은 해촉 된 것으로 본다.

제6조(위원회의 관장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장례식의 방법, 일시, 장소, 장례기간 및 의식에 관한 사항
2. 장례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장례에 관한 중요사항 등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고문) ① 장례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9조(집행위원) ① 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장 1명과 몇 명의 집행위원을 둔다.

②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장례위원 중에서 장례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관련 부서장이 되며, 장례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관계 행정기관,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장례기간 등) 장례식, 기간, 절차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전가정의례준칙」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장례비용)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14조(조기제양) 구민장의 기간 중에는 구 소속 행정기관과 공공단체는 구기를 조기로 제양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상대상 명시(제2조)

나. 포상절차 규정(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및 기관·단체에 행한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질서상, 청렴상,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공무원 포상은 별도 규칙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드높임에 솔선수범한 경우
4. 새마을운동 또는 대민봉사 활동에 헌신한 사람
5. 사회단체회원으로서 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구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
6.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적이 뚜렷한 사람

제6조(질서상) ① 질서상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범 또는 공헌하여 질서 정착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일반 구민에게 수여한다.

1. 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
2. 공중도덕 준수
3. 상호의 준수 및 거래질서 확립
4. 자연보호운동 및 도시환경 정화
5. 그 밖의 도시질서 확립

② 제1항의 질서상은 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공동포상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포상방법 및 절차등은 유관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청렴상) 청렴상은 구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청렴한 공직자로서 공직윤리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8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4. 새마을사업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제9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사람

제10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및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사람

제11조(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 ①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은 재직기간 25년 이상 공무원 중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된 사람에게 수여한다.

②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 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시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서식까지를 따르되, 제6조에 따른 질서상은 별지 제1호서식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념휘장,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제6조에 따른 질서상 수상자에게는 포상장과 함께 기념휘장,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하고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1. 수상자 사진 민원실 게첩
2. 각종 행사에 초청등을 통한 사기 진작(振作)
3.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간담회 개최
4. 수상자는 1년간 구정 참여기회 부여
5. 그 밖의 수상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포상절차) ① 각급 기관장 또는 실·과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일로부터 15일 전에 포상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의 표창 추천의 경우에는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 또는 구 의회의 추천으로 할 수 있다.

② 포상권자가 구 소속 공무원을 포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적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청렴상 및 상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해당 포상을 추서할 수 있다.

- ④ 단체 및 구민에 대한 포상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한다.

제14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적심의를 위하여

심의회를 구성·운영한다.

-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행정문화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장, 보건소장 또는 실·과장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제2조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제15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 ③ 제6조에 따른 질서상은 연 4회 매분기 익월에 시상하되, 인원은 1회에 본상 1명, 장려상 2명으로 한다.

제16조(포상협의)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포상과 공무원의 포상은 총무과장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17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8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표 창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 명

(표 창 문)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인)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감 사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 명

(표 창 문)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인)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상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 명

(표 창 문)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인)

(별지 제4호서식)

공 적 조 서

(앞면)

※ 전산처리하므로 해당코드(상훈사무 실무지침 참조)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① 성 명	(한자) (원명)											
② 생년월일							③ 군 번(군인의 경우)					
④ 국 적												
⑤ 주 소												
⑥ 직 업						⑦ 소 속						
⑧ 직 위						⑨등급(직급·계급)				⑩(근무기간) (수공기간)		
⑪ 공적요지(50자내외)						⑫ 공적분야코드						
⑬ 추천훈격						⑭ 추천순위						
조 사 자												
⑮ 소 속						⑯ 직 위						
⑰ 직 급						⑱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추천과			직위			년 월 일 성명			직인			

(뒷면)

주요 학 력 및 경 력			
㉑ 년 월 일	㉒ 이 력	㉓ 년 월 일	㉔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			
㉕ 년월일	㉖ 내 용	㉗ 년 월 일	㉘ 내 용
㉙ 공 적 사 항			

(별지 제5호서식)

포 상 대 장

호수	포 상 년월일	포 상 종 별	포 상 기 관	피 포 상 자				포상을하게된 공적개요	기 념 품 또는부상	비 고
				직위 또는 직명	소속 또는 주소	성 별	성 명			

(포상대장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 등재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투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안 제3조)

나. 투표청구 주민수(안 제4조)

다. 청구인 서명부 및 주민투표 청구서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10조)

라.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 운영 등(안 제11조~제17조)

마. 주민투표청구의 처리기간(안 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투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 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4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2분의 1로 한

다.

제5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 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 서명부에 주민투표 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 청구인 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 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 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 서명부에 주민투표 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제6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 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7조(서명 및 청구인 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 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 서명부는 동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 청구서에는 청구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또는 체류지, 생년월일,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9조(청구인 서명부의 열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 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 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 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라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1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구성) ①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심의회의 부의장은 주민투표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성별을 고려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주민투표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심의회의 위촉직 위원은 법 제12조의2제1항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이 종료된 때부터 별도의 조치 없이 자동 해촉된다.

제15조(심의회의 회의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경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심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 담당이 된다.

제18조(처리기간) ① 구청장은 청구인 대표자로부터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

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 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보정을 하계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20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따른다.

③ 제5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을 따른다.

④ 제7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 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을 따른다.

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 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을 따른다.

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을 따른다.

제21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 실시구역 변경	[]신청 []필요없음		
	<변경 사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 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대표자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단구청장 (인)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3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투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5호서식】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명

인천광역시 검단구 읍·면·동(○책중 ○권)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입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3. ○○군·구 및 읍·면·동(○책중 ○권) 란에는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통·리·반으로 작성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명 또는 날인	서명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별지 제6호서식】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첨부서류 : 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관계 법령 발췌

□ 주민투표법

제5조(주민투표권) ①18세 이상의 주민 중 -----

~ 생 략 ~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②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은 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개정 2009. 2. 12.>

제9조(주민투표의 실시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

~ 생 략 ~

②18세 이상 주민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민투표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주민투표청구권자”라 한다)은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 이 하 생 략 ~

제10조(청구인대표자의 선정과 서명의 요청 등) ①주민투표청구권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

~ 생 략 ~

③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

받은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서명요청기간 동안 주민에게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이 제한되는 기간은 서명요청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생 략 ~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 서명(제4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29조 및 제30조에서 같다) 요청,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청구인서명부의 심사·확인 등) ①청구인대표자는 -----

~ 생 략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명은 이를 무효로 한다. <개정 2016. 5. 29.>

~ 생 략 ~

7. 이 법의 위임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식과 절차에 위배되는 서명

~ 생 략 ~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방법 및 서명에 대한 심사·확인 등 주민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의2(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제9조에 따른 주민투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심의회와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생략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2조(투표운동의 제한)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표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 5. 29.>

1. 야간호별방문 및 야간옥외집회

~ 생략 ~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야간호별방문 및 야간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시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확정)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표(제2조 관련)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마전동 금곡동	1	검단동	마전동 1~6,7-1~8,8,9-1~2,10~11, 11-1~2,12~16,17-1~10, 17-12,18,18-1~6,19~20, 20-1~7,21,21-1~3, 21-5~7,22~23,24-1~2, 25,25-1,26-1~10, 27-1~2,28-1,28-3~5, 28-8~15,29,30-1~5, 31~32,33-1~8,34-1~6, 35,35-1~4,36,36-1~8, 37-1~4,38,38-1~2,39~40, 41-1~5,42~43,43-1~10, 44-1~2,44-4~5,45-1~4, 46~47,47-1~11,48~49, 49-1~6,50,50-1,51,51-1~2, 52,52-1~3,53~54,54-1, 54-3~6,55,55-1~9,56, 57-1~6,58-1,59,59-1,60, 60-1,60-2~9,61,61-1~2,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62,62-1~4,63,63-1~2, 64~65,65-1~3,66-1~7,67, 67-1,68,68-1,68-3~5,69, 69-1,70~71,71-1,72,72-1~5, 73,73-1~4,74,75-1~6, 75-10~17,76-1,76-2,77, 77-1~3,78~84,84-1~4, 85-1~4,86-1~2,87-1~5, 88-1~2,89~91,92-1~2, 93,94-1~2,95~97,97-1~2, 98~99,100-1~8,101~104, 105-1~2,106~107,107-1~3, 108~109,109-1~2,110, 110-1,111,112-1~16,113-1, 114,114-1,115-1,115-3, 116,116-1,117,117-1~4, 117-6,1 17-7,118~119, 119-1,120~121,121-1,122, 122-1,123-1~5,124,124-1, 125-1~10,126-1~3,127-1~3, 128,129-1~11,129-13, 129-15~21,130-1~10,131, 131-1,131-3~5,133, 133-1~2,134~135,135-1, 136-1~2,137-1~3,138, 138-1~4,139,139-1,140, 140-1,142,143-1~2, 144-1~2,144-4,145-1~2, 146,146-1~2,147-1~2, 147-6,147-8,~13, 149,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149-1~5,150~151, 151-1~3,152~159, 160-1~6,161-1~3, 162,162-1,163,164-1~2, 165,165-1~4,166-1~2, 167-1~2,168-1~8, 169-1~2,169-4,169-6~8, 169-11~14,170-1~3, 171-1~2,172-1,173-2, 176-1~2,176-4,176-6~9, 176-13~14,177-1~3, 178-1~2,179-1,180, 180-1~6,181-1,181-7, 181-9,182,182-1~3,182-6~13, 183,185~186,186-1, 187~188,188-1,189, 189-1~20,190,190-1~8, 191~193,195-1,196,196-1~2, 197,197-1,198~199,199-1, 200-1~5,201,202-1~8, 203-1~3,204-3,205, 205-1~5,206,206-1~3,207, 207-1,208~209,210-1~4, 211~212,212-1~2,213~215, 215-1,216,216-1,217-1~3, 217-5,218-1~3,219-1~2, 220,221-1~7,222,222-1, 223-1~18,224-1~9, 225~226,226-1~4,227~230, 230-1~2,231,231-1~2,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232~233,233-1,234, 234-1,235,235-1~2, 236-1~3,236-5,237, 237-1~8,238,238-1~9, 239-1~4,240,240-3~10, 241-1~13,242-1~9, 242-11~24, 243-1~4, 243-6~8,244-1~2,244-6, 244-11,245-1~2,246-1~2, 247-1~2,248-1~2,248-4, 249,249-1~22,250,250-1, 251,251-1,252~254, 255-1~3,256~257, 257-1~20,257-22,258, 258-1,259~260,260-1~2, 261~262,262-1~3,263, 264-1~4,265~266,266-1, 267,267-1~3,268-1,268-3, 269,270-1~2,271,271-1~7, 271-8~271-9,272,273-1~5, 273-7~8,273-10~17, 274~277,277-1~2,278, 278-1~4,279,279-1~4, 280-1~8,280-12~20,281, 281-1~2,282-1~5,283-1~9, 284,284-1~2,285-1~15, 286,286-1~9,287-1~12, 287-14~15,287-20~35, 288-1~2,289,289-1~7, 290,290-1~6,290-9~14,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291,291-2~7,291-10~17, 293-2,294-2~8,295,295-1~4, 295-6~8,295-10~14,296-2, 296-4~6,297-3~6,298-2~3, 298-5~7,299-2,299-4~7, 300-2,300-4~6,301-3~8, 301-20~21,301-23~24, 302-1~6,303,304-1~3, 304-5,305-1~3,305-5~6, 306-2,307-1~6,308-1~5, 308-7,308-9~13,311, 311-1,312-1~5,313-1~2, 315,315-1~11,316,316-1~6, 316-12~16,316-19~22, 316-25~31,321-2~3, 321-16~19,326,326-1~4, 327,327-2,328,328-1, 329,329-1~4,330,330-1~4, 332-1~4,333,333-1,334, 334-1~2,334-4~9,335-1, 335-3,335-5~6,336, 336-1~4,337~338, 338-1~6,339~340,342, 342-1~8,344,344-1~3, 347-1,348,348-1~4,350~351 351-1~2,352,352-1, 352-3~13,353,353-1~27, 354-1~3,355,355-1~18, 356,356-1~13,357-1~2, 358,358-1~2,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359-8~10,360,360-1~10, 361-3,362,362-1~14, 363-3~3-5,364-1,365-1, 366-1~7,366-9~24,367, 368-1~2,368-4~13, 369-1~12,370-2,371-2, 373,373-1~14,375,375-1~37, 376,376-1~20,377, 377-1~18,379,379-2~4, 381-1,381-3~6,382~383, 383-2,384,384-1~2,384-4, 385-1~6,386-1~4,387, 387-1,388-1~4,389, 389-1~2,390,390-1~3, 391-1~6,391-8~13, 392-1~4,393,393-1~2, 394-1~2,395-1~2,395-4, 397-1~3,397-6~7, 397-9~11,398,398-1~10, 399,399-1~19,403, 403-4~6,404,404-1~3, 405,405-1,406-1,406-3, 406-6~12,407-1~6, 408-1~3,409,409-1,410, 410-1~5,411,411-2,412, 412-3~5,413-1,414-1, 414-18,414-20~23,416, 416-1~32,417,417-1~15, 419-4~6,420-2~3, 421-3~4,422-1~3,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423-1~2,424-1~6, 425~426,426-1,427~430, 431-1~7, 432~434,434-1~2, 435~438,439-1~4,440-1~4, 441-1~2,442-1~2, 443-1~3,444,444-1~30, 445,445-1~33,446, 446-1~46,447-2~3, 448-2~8,449-2~5, 450-1~8,451-1,452, 452-1~2,453-1~2, 454-1~5,455~456, 456-1~3,457,458-1~2, 458-5~8,459-1,459-2, 459-3,459-4~5,459-7~9, 460-1~,460-5~7,460-9~10, 460-11~15,461-1~2,462-1~3, 652,652-1~16,652-18~22, 653-1,653-3~4,654-1, 654-3,655,655-1~2,657, 657-2~11,658-2,659, 659-4,660-1~3,660-6~7, 660-12~57,661-1~7, 662-1~5,663-1~4, 664-1~3,664-8~18,665, 665-1~4,666~667,667-1, 667-4,667-8~9,667-13, 667-17,667-20, 667-22~25, 668-2,669,670-1,671, 671-1~3,672,672-1~6,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672-8,672-10~13,673, 673-3~4,674,675-1~4, 676-1~2,676-5~10,677,677-1, 678-1~6,678-10~13,678-15, 678-18~21,678-23~25, 678-27~30,678-32, 678-35~40, 679-1,679-3,679-5~6, 679-8~12,680-1~2, 680-4~5,681-1~6,681-8~9, 682~683,683-1~4, 683-8~11,684,684-1~4, 685,685-1~4,685-6,685-8, 685-10~11,685-13, 685-15~24,685-26~33, 685-36~48,686,686-1~5, 686-7~9,686-11~16, 686-18~37,686-39~45, 686-48~50,686-52~53, 686-56,686-60~70, 686-76~84, 686-86~87, 686-89~110, 686-113, 686-118~121,686-127~135, 686-137,686-140~141, 686-144~145,686-147, 686-149,686-151,686-154, 686-155~156,686-157~160, 686-161~165,686-168, 687-2,688-1~2,688-4, 688-7~9, 689-2~3,689-5, 689-7~8,690,690-1~6,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690-8~11,690-13~18, 690-19~44,690-48~50, 690-52~60,690-62, 690-65,690-67,690-69~82, 690-85~87,690-89~98, 690-100,690-103,690-107, 690-109, 690-110~114, 690-117~122, 690-125, 690-127, 690-131~148, 690-150, 690-153~156, 690-158, 690-160, 690-162, 690-164~167, 690-169~170, 690-174, 690-182, 690-189, 690-191~193,690-196~197, 690-203~,207,690-209~210, 690-212~213,690-216~226, 690-228,690-230, 690-232, 690-234~243,690-246~247, 690-251~256,690-258, 690-261~264,690-267~268, 690-270,690-276~277, 690-279,690-281~290, 690-292,690-295~298, 691, 691-2~3,691-5~8, 691-10~12,691-14, 691-16~20,691-22~25, 691-28~30,691-34~43, 692-1~3,692-5,692-8~10, 692-18~31,693-1~13,693-15,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693-19~25,693-28~31, 694-1~2,694-4~8,694-10~23, 694-25~37,695-1~7, 696-1~16,697-1~2, 697-4~26,697-32,697-34, 697-36,697-42~61,698-1~4, 698-6~7,698-9~16,698-19, 698-22,698-24~26, 698-28~31,699-1~3, 699-6~7,699-14,700-1~2, 700-4,702,702-2~5, 703~704,704-1~6,705,705-3, 705-5~16,714,714-2~3, 714-5~7,715,715-1,716, 716-1, 717, 717-1,718~720,720-1~3, 721,721-1, 722-1,723~724, 724-2,724-8, 724-15, 724-17,724-19,724-25~54, 725~726,726-1~4, 727, 727-1~2,728,728-1~9, 729~732,732-1,733~734, 734-1~6,735,735-1, 736~738,738-1~2,738-5, 739~740,740-3,741~753, 753-1,754,754-1~3,755, 755-1,756,756-1~2,757~758, 758-1,759,759-1,760, 760-1~2,762,764,764-1, 765,765-1~2,766,766-1, 767,767-1, 768, 768-1~4,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769~773,773-1,774, 774-1~4,775~787,787-1, 788,788-1~2,789~793, 794-1~2,795,798~810, 810-1~3,811,811-1, 812~814,814-1,815~818, 818-1,819~820,820-1, 821,821-1~2,822, 822-1~2,823,823-1~7, 824~825,825-1~2,826, 826-1~3,827,829~832, 832-1~2,833,833-1,834, 834-1,835~837,837-1~3, 838~842,844~845, 845-1~2,846~849,849-1~3, 850~854,854-1~2,855~860, 860-2,861,861-2,862~863, 863-1,864~867,867-1~3, 878,878-1,879,879-1~2, 880,880-1,881,881-1, 882,882-1,883~884,884-1, 885,885-1,886~892, 산1,산1-2,산2~산3, 산3-1~8,산5,산5-1~4, 산5-6~15,산6,산7-1~5, 산7-7,산7-9~18,산8,산8-1, 산9,산10-1~3,산12, 산14-1~11,산14-13~15, 산15,산16-1~8,산17-1~7, 산18~산20,산20-1~2,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산21~산22,산22-1,산23, 산24-1~2,산24-4~5,산25, 산26-1~3,산27,산28-1~9, 산29,산29-1~2,산30,산30-1, 산31-1~11,산32-1~4, 산33-1,산33-3~4,산33-7~25, 산34-1~5,산35-2,산35-5~7, 산36-1,산37-1,산37-3,산38, 산39-1,산39-3~18,산40, 산40-1~4,산41,산43, 산43-1~7,산43-9~33,산44, 산44-1,산45-1~19,산46, 산46-1~5,산48~산49, 산51-1~8,산52-1~2,산54, 산55-1,산55-3~4,산56-2, 산57~산58,산59-1,산59-3~4, 산60,산60-1~2,산63~산66, 산66-1,산67,산67-1, 산68-1~4,산69~산70, 산70-1~4,산71,산71-1, 산72-1,산72-3~5,산72-7, 산72-9~11,산73,산73-1, 산74,산74-1,산75~산76, 산76-1,산77~산80, 산80-1~4,산83,산83-1~2, 산84~산85,산85-2~33, 산86~산87,산87-1,산89, 산89-1,산90~산91, 산91-4~15,산92-1~15,산93, 산93-1~4,산94,산94-1,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산95,산95-1,산96-1~9, 산97-1,산97-3,산98-1, 산98-3,산99,산99-1~2, 산100,산100-1,산101-1~3, 산101-6,산101-7~8,산102-22, 산102-24~26,산103-2~4, 산103-6,산103-11~16, 산104-1~2,산104-4,산105-1, 산105-3~5,산106-1, 산107-1,산109-1~2, 산110-1~3,산111,산111-1, 산112,산112-1~7, 산112-9~14,산112-17~22, 산113-1~-2,산113-4~5, 산113-7,산113-9~12, 산113-19,산113-21~36, 산114~산115,산117-2~3, 산118,산118-1~2,산119-1~3, 산119-5~6,산119-8~11, 산119-13~15,산119-17, 산120-1,산120-4~8, 산120-10~16, 산121-1~5,산122, 산122-1~2,산123, 산123-1,산124, 산125-1~5,산126-1~2, 산126-4~9,산140-5~7, 산140-15,산140-20, 산140-22,산140-25~26, 산141-3~4,산142-2,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산143-2, 산143-4, 산144-1~2, 산146-1, 산147, 산147-2~6, 산150, 산150-1~3, 산153-2, 산154-2, 산156-2~3, 산157-2~5, 산209-2, 산211-2, 산212-2, 산213-2, 산216~산218, 산218-1, 산219~산220, 산220-1, 산221, 산221-1, 산222~산223, 산223-1, 산224, 산224-1, 산225, 산225-1~2, 산226, 산226-1, 산226-2 금곡동 일원
	불로동 대곡동	1	불로대곡동	- 불로동 일원, 대곡동 일원
	당하동 원당동	1	원당동	당하동 1, 2-1, 2-2, 2-4, 2-5, 2-7, 3-1, 3-5, 3-7, 3-9 ~ 3-12, 4, 4-3, 5, 5-5, 8-1, 12-2, 12-4, 17-6, 17-8, 17-1, 19-1, 21, 53, 54, 57, 57-3 ~ 57-10, 57-13, 60, 60-1, 61, 61-1 ~ 61-6, 61-8 ~ 61-11, 62, 62-1, 62-3, 62-5 ~ 62-13, 62-15, 63, 63-3, 71-6, 71-7, 74, 76-3, 76-4,

				77, 78-1, 78-2, 79-1 ~ 79-11, 79-13, 80, 80-1, 81-1 ~ 81-3, 82-1 ~ 82-3, 83-1, 84-1 ~ 84-5, 85-1, 85-2, 86, 87-1 ~ 87-8, 88, 89-1 ~ 89-5, 89-7 ~ 89-10, 90-1 ~ 90-5, 91-1, 91-2, 92-1 ~ 92-5, 93-1 ~ 93-5, 94-1 ~ 94-3, 95, 95-1 ~ 95-5, 96, 96-1 ~ 96-7, 97 ~ 111, 99-1 ~ 99-5, 102-1, 102-3, 102-4, 112-1 ~ 112-5, 113,113-1, 114, 115, 115-1, 116-1 ~ 116-3, 117-1, 117-3 ~ 117-6, ,118, 118-1 ~ 118-7, 119, 120, 122, 122-1, 122-3, 122-5 ~ 122-7, 123, 123-1, 123-3 ~ 123-5, 125,133-1 ~ 133-3, 188, 214-2, 214-3, 215-1, 215-5, 215-7, 216-2, 216-3, 218, 218-1, 219, 220-1 ~ 220-3, 221-1 ~ 221-4, 223-5 ~ 223-7, 223-12, 223-13, 225 ~ 227, 228-1, 228-3, 229, 229-1, 230-1, 230-3 ~ 230-5, 231-1, 231-3, 233-1 ~ 233-3, 234, 235-1 ~ 235-3, 236, 237, 237-1 ~ 237-9, 237-4 ~ 237-9, 238 ~ 241, 241-1, 243, 247, 248-1, 248-3, 249-1, 250-1, 250-2, 323-1, 323-3, 391, 491-2, 491-3, 626, 626-2 ~ 626-5, 639-1, 639-2 640-1, 640-2, 641, 641-1, 642, 643, 644-2, 645, 645-1, 646-1, 646-3, 650, 651, 652-2, 653-1 ~ 653-5, 654, 654-1, 654-2, 655, 655-1, 655-3, 656-1 ~ 656-3, 659-1 ~ 659-5, 660-4, 661-12, 662-1 ~662-3, 663, 663-2, 664, 665, 665-1 ~ 665-4, 666, 666-1, 666-2, 667 ~ 670, 671-1, 671-4, 671-7 ~ 671-10, 672-1 ~ 672-3, 672-5 ~ 672-8,

				673, 674-1 ~ 674-4, 675 ~ 678, 679-1, 679-2, 679-3, 680-1, 681-1, 681-2, 682, 683-1, 683-2, 684, 685-1, 685-2, 685-3, 686-1 ~ 686-3, 687, 689-1 689-3, 690, 690-1 ~ 690-3, 691-1 ~ 691-5, 692-2 ~ 692-4, 693 693-1 ~ 693-6, 695-1, 695-2, 696-1 ~ 696-7, 697-1 ~ 697-3, 698-1, 699, 699-1 ~ 699-10, 700, 701, 701-1 ~ 701-4, 701-6 ~ 701-18, 702, 702-1, 702-3 ~ 702-7, 703-1 ~ 703-7, 704, 704-1 ~ 704-3, 705-1 ~ 705-6, 706-1 ~ 706-3, 707-1, 707-2, 707-5, 707-6, 708, 708-2, 708-3, 709-2, 710, 710-2 ~ 710-5, 711 ~ 713, 713-2 ~ 713-4, 714-1, 714-2, 715, 716, 716-1, 717, 717-4, 717-5, 718, 719-4, 719-5, 720-2, 720-3, 721-1, 721-4, 722, 724, 724-1, 725-1, 726, 726-1, 726-2, 726-5 ~ 726-8, 726-11 ~ 726-32, 727-2, 727-5 ~ 727-8, 728, 728-1, 728-3, 728-4, 729, 729-2, 729-5, 729-8, 729-9, 730, 730-1, 732, 732-1, 733-1 ~ 733-7, 734-1, 734-4 ~ 734-12, 735-1 ~ 735-8, 735-10 ~ 735-14, 736-1, 736-2, 737-1, 737-2, 738, 739-1, 740-1 ~ 740-5, 740-6, 741-1 ~ 741-9, 742-1, 743-1, 743-5, 743-6, 744, 744-1, 744-2, 744-5, 745-2, 745-3, 746-1, 746-3 ~ 746-9, 747, 747-3, 748-1 ~ 748-3, 748-6, 748-7, 748-9, 749-1 ~ 749-8,

				749-12, 749-13, 749-15 ~ 749-29, 749-31 ~ 749-38, 750-1 ~ 750-3, 750-5, 750-6, 750-10 ~ 750-22, 751-1, 752, 964-16 ~ 964-18, 981-2, 983-3, 984-1, 985-1, 988, 989, 989-1 ~ 989-12, 990, 990-1 ~ 990-4, 991, 996-1, 996-3, 997, 997-1, 998, 1019-1 ~ 1019-5, 1020-1 ~ 1020-9, 1021-1 ~ 1021-8, 1022, 1022-1, 1023, 1023-1 ~ 1023-5 1024, 1025, 1025-1 ~ 1025-11, 1026, 1026-1 ~ 1026-13, 1027-1 ~ 1027-3, 1027-14 ~ 1027-19, 1028-1 ~ 1028-24, 1029-1 ~ 1029-10, 1030-1 ~ 1030-9, 1031, 1031-1, 1032, 1033-1, 1033-2, 1033-3, 1033-5 ~ 1033-10, 1034-1 ~ 1034-4, 1035, 1036-1, 1036-2, 1037-1 ~ 1037-6, 1038-1 ~ 1038-6, 1039-1 ~ 1039-16, 1040, 1040-1 ~ 1040-3, 1042-1 ~ 1042-4, 1043-1 ~ 1043-9, 1044-1 ~ 1044-12, 1045-1 1045-13, 1046-1 ~ 1046-4, 1047-1 ~ 1047-6, 1048-1 ~ 1048-11, 1049 ~ 1061, 1061-1, 1062 ~ 1064, 산41-2, 산48 ~ 산50, 산51-1, 산52, 산53-1, 산54, 산54-1, 산55-4, 산55-5, 산55-11, 산68-1, 산69 ~ 산73, 산74-1, 산74-2, 산75, 산75-1, 산76, 산77-1, 산78, 산79-2, 산80-1, 산81, 산83, 산84, 산85-1, 산87, 산89, 산92-1, 산92-2, 산92-4, 산93, 산93-2 ~ 산93-9, 산94, 산94-2, 산100-5, 산100-6, 산100-9 ~ 산100-12, 산100-15,

				산100-16, 산100-18, 산100-19, 산100-21 ~ 산100-26, 산103, 산103-2 ~ 산103-5, 산104, 산105-5, 산105-7, 산105-9, 산105-13, 산105-17, 산105-20, 산105-26 ~ 산105-29, 산106-1, 산107, 산107-1, 산108-1 ~ 산108-5, 산109-1, 산110-1, 산113-2, 산114, 산114-2 ~ 산114-6, 산115, 산115-2, 산115-3, 산115-5, 산116-3 ~ 산116-5, 산117-1 ~ 산117-3, 산117-6, 산118-1 ~ 산118-4, 산118-6, 산118-10, 산118-12 ~ 산118-14, 산119, 산120, 산120-3, 산120-6, 산122, 산122-2, 산125, 산125-1, 산125-2, 산125-7 ~ 산125-9, 산125-14 ~ 산125-16, 산127, 산127-7, 산129-3, 산132-1, 산132-7, 산135, 산135-3, 산136, 산136-1, 산136-2, 산138-1 ~ 산138-3, 산139-1 ~ 산139-3, 산139-4, 산140, 산141, 산141-1, 산142 ~ 산145, 산145-1, 산145-3 ~ 산145-14, 산147-1 ~ 산147-3, 산147-5, 산147-7, 산147-8, 산147-11, 산149, 산149-1, 산149-2, 산150, 산150-2, 산151-1, 산151-3, 산154-1 ~ 산154-5, 산176, 산177, 산177-1, 산177-7 ~ 산177-9 원당동 567, 567-1, 567-3, 568-3, 568-4, 568-6, 569, 572-8, 573-8, 579-2, 579-3, 599, 599-2, 599-3, 600, 600-1, 600-2, 600-3, 601, 602-1 ~ 602-4, 603-1 ~ 603-7, 604, 612, 612-1, 613, 613-1, 613-2 ~ 613-7, 614, 615, 616, 616-2, 617-1 ~ 617-3, 625-1, 626-1, 626-2, 626-3, 626-5 ~ 626-7, 627-4 ~ 627-6, 627-9(일부),

				628(일부), 636-3(일부), 636-9(일부), 636-14 ~ 636-16(일부), 637-4(일부), 637-5, 637-6(일부), 원당동 639, 640-2, 640-5 ~ 640-6, 640-7 ~ 640-8(일부), 640-9 ~ 640-11, 640-12(일부), 640-13, 640-16 ~ 640-29, 640-32(일부), 641-1, 641-2, 641-5, 641-6, 643-1, 643-8 ~ 643-12, 644, 645, 645-2 ~ 645-8, 648, 648-1, 648-3, 648-4, 649(일부), 652(일부), 653(일부), 654, 654-1, 655, 655-2, 655-3, 656, 656-2 ~ 656-4, 656-6 ~ 656-10, 656-12 ~ 656-15, 656-24 ~ 656-30, 656-32 ~ 656-38, 683-1 ~ 683-4, 735, 736, 736-1~736-4, 737-1, 778-1, 778-4, 778-5, 778-7 ~ 778-10, 782, 782-1, 782-2, 782-4, 782-5, 782-6(일부), 783, 783-3(일부), 784(일부), 784-1 ~ 784-2(일부), 790, 795-1 ~ 795-7, 796-1 ~ 796-19, 797-1 ~ 797-13, 798-1 ~ 798-9, 799-1 ~ 799-6, 800-1 ~ 800-10, 801, 802-1 ~ 802-8, 803-1 ~ 803-13, 804-1 ~ 804-5, 805-1 ~ 805-6, 806-1 ~ 806-7, 807-1 ~ 807-5, 808-1 ~ 808-15, 809, 810-1 ~ 810-14, 811-1 ~ 811-12, 812-1 ~ 812-10, 812-13, 813-1, 813-2, 814-1 ~ 814-12, 815-1 ~ 815-10, 816, 816-1 ~ 816-10, 817-1, 817-5 ~ 817-11, 818-1 ~ 818-6, 819-1, 819-2, 820-1 ~ 820-11, 821-1 ~ 821-14, 822-1 ~ 822-15, 823-1 ~ 823-6, 824-1 ~ 824-14,

				825-1 ~ 825-16, 826-1 ~ 826-3, 827-1 ~ 827-9, 828-1 ~ 828-8, 829-1 ~ 829-10, 830-1 ~ 830-3, 831-1 ~ 831-13, 832-1 ~ 832-11, 833-1 ~ 833-14, 834-1 ~ 834-7, 835-1 ~ 835-10, 836-1 ~ 836-5, 837-1 ~ 837-12, 838-1 ~ 838-14, 839-1 ~ 839-3, 840-1 ~ 840-6, 840-8 ~ 840-11, 841-1 ~ 841-7, 842, 842-1 ~ 842-5, 843-1 ~ 843-6, 원당동 844-1 ~ 844-5, 845-1 ~ 845-9, 846-1 ~ 846-6, 847-1 ~ 847-10, 848-1 ~ 848-7, 848-9, 849, 849-1, 850-1, 850-2, 851-1 ~ 851-6, 852-1 ~ 852-3, 853-1 ~ 853-8, 854-1, 854-2, 854-3 ~ 854-7, 854-9 ~ 854-16, 855-1 ~ 855-7, 856, 856-1 ~ 856-4, 857, 857-1 ~ 857-3, 858 ~ 901, 887-1, 887-2, 산40-4, 산89-4, 산90, 산95-1, 산95-6, 산95-7, 산98-2, 산98-7, 산102-4, 산102-5, 산103-1 ~ 산103-3, 산103-7(일부), 산104 ~ 산106, 산105-1(일부), 산106-1 ~ 산106-3(일부), 산111-7 ~ 산111-8, 산111-10, 산111-12(일부), 산111-30, 산111-32 ~ 산111-33(일부), 산111-34 ~ 산111-35, 산111-43(일부), 산111-45(일부), 산111-47(일부), 산113, 산113-3, 산114, 산114-3, 산116, 산117-1 ~ 산117-4, 산118, 산118-2, 산124, 산125-1, 산125-2, 산125-5, 산125-6, 산126-2, 산126-3, 산135

마전동 당하동 시천동 백석동	1	당하동	마전동 518-7, 520-5, 521-11, 521-13~14, 521-1~5, 521-7~9, 521-21~22, 521-26, 522-1~5, 523, 524, 524-1~3, 524-5, 524-7~9, 524-10~16, 524-18~20, 525-1~3, 526, 526-1~2, 526-4, 526-6~7, 527, 527-1~4, 528, 529, 529-1~2, 529-4, 529-6~11, 530, 530-1, 531, 531-1~2, 532, 532-1~6, 533, 533-1, 534, 534-1~8, 535-1, 535-3~7, 536-1, 536-3~5, 537, 537-1, 538-1, 539, 540, 540-1~7, 540-9~11, 541~543, 543-1, 544, 544-1~3, 545-1~4, 545-6~13, 545-15~17, 545-27~29, 546-1~2, 546-5~6, 616, 616-1, 616-6, 628, 628-4, 629, 629-1~2, 629-4~5, 629-16~17, 629-19, 629-22~28, 710, 710-2~3, 711~712, 산168-1~15, 산169, 산170-4, 산170-8, 산170-13, 산181-1, 산181-14, 산181-17, 산196-1~2, 산196-5, 산196-7, 산196-15, 산196-17, 산196-19~20, 산196-23, 산196-23, 산196-25~29, 산197-1, 산197-5-10, 산198, 산198-1, 산199-1, 산199-3, 산199-5~10, 산200, 산200-1, 산201-1~2, 산202, 산203-1, 산203-3~5, 산204-1~2, 산204-4 당하동 748-4~5, 748-8~9, 750-7, 750-20, 753~757, 759-1~4, 760, 760-1, 761, 761-1~6, 762-1~4, 763, 763-1, 764, 765-1~41, 766~768, 768-1~2, 769, 769-1~2, 770, 770-1~5, 771, 771-1~2, 772, 772-1~7, 773~774, 774-1~2, 775, 775-2~8, 776, 776-1~2, 777, 777-1~6, 778-1~2, 779, 779-1~9, 780~781, 781-1~2, 781-4~7, 781-9, 782-2, 783, 783-2~3, 786, 786-1, 787, 787-1~2, 788, 788-1, 789, 789-1~4,

				789-6, 790~791, 792-1~3, 793~7, 797-1~5, 798, 798-1, 799, 800-3~4, 800-6, 803, 803-1, 805, 805-1, 806~807, 807-1~2, 808-1~2, 809~12, 813-1~2, 814~818, 819-1~2, 819-4~5, 820-1~6, 820-9~12, 821~823, 823-1~3, 824, 827-1~3, 827-5 827-7, 827-9, 828, 828-2~6, 828-8, 828-11, 829-1~2, 829-5~6, 829-9~10, 830, 830-2, 831, 831-1~6, 832-1, 832-4~11, 833-1~3, 834, 834-1~5, 834-8, 834-11~24, 835-1, 835-3~6, 835-9~15, 836-1~3, 836-7~8, 836-11~14, 837, 837-2~4, 838-1~3, 838-5~6, 838-9, 839, 839-6, 840-1, 840-5~6, 840-8, 840-13~17, 841, 841-3, 842-2, 843~844, 844-2~14, 846-1~5, 846-6~8, 847-1~6, 848-1, 848-4, 848-6, 848-8, 849-1~3, 849-6~7, 850-1, 850-4~7, 851, 851-1~3, 851-6, 851-10~12, 851-16~22, 851-29~32, 853-1, 853-5, 854-1, 854-3, 854-5~6, 855, 857-2~3, 858-5, 859, 859-1, 859-4~5, 859-7, 860~863, 863-1, 872-4, 876-1, 876-4~5, 877-2~4, 877-6, 878, 880-5, 880-8, 880-11, 882, 883-5~10, 883-15~18, 883-25, 888-9, 895-1, 910-3~4, 942-20~21, 943, 943-2~3, 943-5, 943-7, 943-14, 943-16~17, 943-25~44, 943-47~54, 943-58~60, 955-4, 955-6, 955-8~12, 955-14~17, 955-20, 955-27, 956-1~28, 957, 957-1~8, 957-10~18, 957-20~23

				957-30~31, 958, 958-1~4, 958-6, 958-8~11, 958-13, 958-17~19, 958-23~26, 958-31~34, 958-39~42, 958-45~46, 958-48, 958-50~58, 958-60~61, 958-64~68, 959, 959-1, 960, 960-1~2, 960-4, 961, 961-1, 962, 962-1~6, 999, 1001, 1001-1, 1002, 1002-1, 1003, 1003-1~5, 1003-9, 1004-1~4, 1005, 1005-1, 1005-4, 1006~1007, 1007-1~2, 1007-5~6, 1019~1020, 1065-1~6, 1066-1~5, 1067-1, 1067-4~5, 1068~1074, 1075-1~9, 1075-21, 1076-1~3, 1077-1~16, 1078-1, 1078-4~8, 1079-1~9, 1080-1, 1080-12~20, 1080-24~28, 1081-1~8, 1082-1~12, 1083-1~16, 1084-1~14, 1085-1~11, 1086-1~10, 1087-1~24, 1088-1~3, 1089-1~11, 1090-1, 1090-6, 1091-1~7, 1092-1~21, 1093-1~6, 1094-1~4, 1095-1~7, 1096-1~4, 1097-1~15, 1098-1~12, 1099-1~4, 1100-1~10, 1101-1~15, 1102-1~5, 1103-1~2, 1104-1~3, 1105-1~4, 1106-1~13, 1107-1~10, 1108-1~12, 1109-1~11, 1110-1~17, 1111-1~8, 1111-10~12, 1112-1~2, 1113-1~6, 1114-1~6, 1115-1~8, 1116~1140, 산101-1, 산102-1, 산102-3~5, 산118-5, 산121-1, 산122-1, 산152-1, 산152-6~8, 산155, 산157, 산160, 산161-1~47, 산161-49~55, 산162-1, 산162-3~39, 산164, 산164-3, 산165, 산170, 산172-1~3, 산172-8~12, 산172-14, 산174-8~9, 산174-13, 산176, 산178-1~4, 산179-1,

				산179-3~6, 산181, 산181-2~3, 산 182, 산182-1, 산183-2, 산183-4~5, 산185-1, 산185-4, 산185-6, 산185-8~9, 산186-3, 산189-4, 산189-7, 산192-1, 산192-3, 산192-8, 산192-10, 산193, 산194, 산195-6, 산196-1, 산196-3~5, 산197-1, 산202-6, 산 203-1, 산203-3, 산211-7, 산213-2, 산213-6, 산213-12, 산214-1, 산217-2, 산217-13, 산217-17, 산218-1~2, 산220-산221, 산221-1, 산221-3, 산221-5, 산222-7, 산225, 산226-1~3, 산228, 산228-1~4, 산230, 산234-8, 산234-44 시천동 일원 백석동 일원
	오류동 왕길동	1	오류왕길동	오류동 일원, 왕길동 일원
	마전동	1	마전동	마전동 463, 463-2~3, 463-7~16, 464, 464-1~2, 464-4~7, 465, 465-1~6, 466-1~9, 467, 467-1~2, 468, 468-1~3, 469-1~21, 470-1~2, 470-4~6, 470-10~15, 470-17~19, 473, 497-1, 497-3, 499, 499-1, 499-3~4, 499-9, 500~503, 503-2, 504, 505-1~3, 506, 506-1, 507, 508-1~4, 509-1~2, 510~512, 512-1~4, 513, 513-1~4, 514, 514-1~2, 515, 515-1~12, 515-14~32, 515-40, 515-42~44, 515-46~47, 516, 516-1~23, 517, 517-1~8, 517-10, 517-16, 518, 518-1, 518-3~4, 520-1, 520-3, 520-6, 626-22~24, 626-42, 628-3, 629-11, 631, 631-1, 632-1, 632-4~23, 639-39~41, 639-47, 639-81~83, 639-85~87, 646, 646-1, 646-3, 646-9, 705-4, 706, 709,

				710-4, 713, 713-1~4, 713-16, 713-19~31, 999-1~25, 1000-1~12, 1001-1~7, 1002-1~18, 1003-1~2, 1004, 1005-1~24, 1006-1~17, 1007-1~11, 1008-1~12, 1009-1~8, 1010-1~5, 1011-1~3, 1012-1~2, 1013~1014, 1015-1~6, 1016-1~10, 1017-1~5, 1018-1~4, 1019, 1020-1~15, 1021-1~7, 1022-1~8, 1023, 1024-1~18, 1025-1~20, 1026-1~7, 1027-1~5, 1028-1~16, 1029-1~2, 1029-5~7, 1030-1~3, 1031-1~6, 1053-1~4, 1054-1~7, 1055-1~3, 1056-1~7, 1057-1~7, 1058-1~5, 1059-1~15, 1060-1~10, 1061-1~9, 1062-1~9, 1063-1~13, 1064-1~5, 1065-1-4, 1066-1~8, 1067~1070, 1075, 1083~1115, 1116-1~2, 1117, 산101-4, 산102-12, 산103-5, 산103-9~10, 산108-1, 산120-17, 산127, 산128, 산128-1~6, 산128-8~13, 산129-2, 산129-4, 산129-11, 산129-14, 산129-17~18, 산129-24~27, 산140-27~28, 산146-8, 산158, 산158-2~4, 산158-9, 산159-1~2, 산159-4, 산159-6~11, 산159-13, 산159-16~18, 산159-20, 산160-13, 산163~산164, 산164-1, 산165-1~4, 산166, 산174-1~2, 산175-1~8, 산175-10~11, 산176-1, 산176-4~5, 산176-10, 산177-1, 산178-1~2, 산178-7, 산179-1~8, 산180-1~8, 산181-6, 산185-7~10, 산186-1, 산186-5~6, 산186-8~10, 산187-1~7, 산188-1, 산188-4, 산194-1~2, 산194-4
	당하동 원당동	1	아라1동	당하동 159, 223-1, 339, 339-1~2, 347, 348-1, 350-1~2, 350-4~7, 350-14~18, 351,

				351-1~6, 402, 1228, 1229, 1229-1~17, 1230, 1231, 1231-1~8, 1232, 1233, 1233-1~4, 1234, 1235, 1235-1~13, 1236, 1237, 1237-1~4, 1238, 1239,. 1240,, 1241, 1241-1~4, 1242, 1243, 1243-1~3, 1244, 1245, 1246, 1246-1~10, 1247, 1248, 1248-1~2, 1249, 1250, 1250-1~2, 1251, 1252, 1253, 1254, 1254-1, 1255, 1256, 1256-1~11, 1257, 1258, 1258-1~12, 1259, 1260,1260-1~12, 1261, 1261-1~12, 1262, 1262-1~9, 1263, 1264, 1264-1~8, 1265, 1266, 1267, 1267-1~5, 1268, 1269, 1269-1~6, 1270, 1271, 1272, 1272-1~9, 1273, 1274, 1275, 1276, 1276-1~3, 1277, 1278, 1278-1, 1279, 1280, 1280-1~11, 1281, 1282, 1282-1~12, 1283, 1284, 1284-1~13, 1285, 1286, 1286-1~18, 1287, 1288, 1288-1~6, 1289, 1290, 1290-1~11, 1291, 1292, 1292-1~11, 1293, 1294, 1295, 1295-1~9, 1296, 1297, 1297-1~11, 1298, 1299, 1299-1~8, 1300, 1300-1~8, 1301, 1302, 1303, 1304, 1304-1, 1305, 1305-1, 1306, 1307, 1308, 1308-1, 1309, 1310, 1310-1, 1311, 1311-1, 1312, 1312-1~7, 1313, 1314, 1314-1~3, 1315, 1316, 1316-1~7, 1317, 1318, 1318-1~9, 1319, 454-1~3, 454-6~7, 455-1~3, 455-5~6, 456-1~17, 456-19, 456-23~31, 457-1~4, 457-6~7, 457-11, 458-1~10, 458-13~15, 459-1, 459-3~4, 459-7~9, 462-6~7, 473-4, 473-6~9, 474-9, 474-12~13, 475-6, 475-8~9, 476-7, 476-9, 477-18, 477-20~21, 478-3~4, 491, 491-1, 491-4~7, 492, 493, 494, 494-1, 494-3~4, 495-3, 495-5, 496, 496-4~5, 497-4~5, 496-4~5, 497-4~5, 594-3~4, 595,

				596-1,597-2, 598-1, 601-1, 602, 603-1, 603-4, 603-6~7, 604, 605-1, 606-1, 607-5~6, 609-2, 609-5~6, 610-1, 610-4~5, 610-7~8, 611-1, 611-3~5, 612-1~8, 613, 613-1~4, 615, 615-1, 616, 616-1, 617-1, 618-1, 619-1, 620, 621-1, 622, 623, 624-1~4, 625-1~8, 625-10~15, 626, 626-1~4, 627, 627-1, 628, 629, 630, 631-1~3, 632, 633-1, 633-6~8, 646-5~7, 648, 648-1, 649-1~4, 650, 650-1, 651, 651-2, 655-1~3, 656-1~3, 658-1~8, 658-18~19, 660-1, 660-6~7, 661-5, 661-16, 661-23~25, 964-28, 966-2, 979-1, 980-1, 988, 991-2, 992, 993, 994, 995, 산28-1, 산29-2~3, 산30-2, 산32-1~2, 산33-1, 산34, 산35-4, 산35-5, 산46-1, 산111-3 원당동 1059, 1059-1~2, 1060, 1061, 1061-1, 1062, 1063, 1063-1~3, 1064, 1065, 1065-1~6, 1066, 1067, 1067-1~29, 1068, 1069, 1069-1~6, 1070, 1071, 1071 -1 ~11, 1072, 1073, 1073-1~3, 1074, 1075, 1075-1~7, 1076, 1077, 1077-1~5, 1078, 1079, 1079-1~3, 1080, 1081, 1081-1, 1082, 1082-1~3, 1083, 1084, 1084-1, 1085, 1086,1086-1~3, 1087, 1088, 1088-1~7, 1089, 1090, 1090-1~4, 1091, 1092, 1092-1, 1093, 1094, 1094-1~6, 2-1, 2-4, 2-5~9, 2-11~15,8, 8-1~3, 10, 10-1~7, 11, 11-2~6,12-2~7, 15-2~8, 16-3~11, 17-2~5, 17-7~9, 25-4, 26-1~5, 26-7~11, 26-14,62-4,62-10, 62-12~13, 62-19~20,288-12~13, 288-17, 288-19~20, 288-22~24, 290-2~5, 291-2, 291-4~5, 292-2~5, 294-2~3, 296-1~2, 297-2~5, 298-1, 298-3, 336-1~3, 336-5, 337, 337-2~4,

				337-6~9, 338-3~4, 339-4~6, 339-9, 363-5, 365-1, 365-3, 365-5, 365-7, 365-9~10, 365-12~13, 366-4~5, 367-10, 375-1, 375-3~4, 375-8, 375-10, 377-1~2, 377-5~7, 377-10, 377-13~14, 377-16, 378-1~7, 379-7, 486-1, 486-6~7, 486-11, 486-23, 486-36~40, 509-2~3, 509-8, 509-11~12, 743-14, 744-1(일부), 745-3, 1036(일부)
	원당동	1	아라2동	원당동 544, 547-1, 547-3~6, 548-2~3, 549, 551-7, 555, 555-3 556-1, 557-2, 557-4, 557-6, 557-10~11, 745-10, 745-12~13, 756-1, 954, 955, 956, 957, 986, 986-1, 987, 987-1~2, 988, 988-1, 989, 989-1~10, 990, 991, 991-1~18, 992, 993, 993-1~14, 994, 995, 995-1~4, 996, 997, 997-1~10, 998, 999, 1000, 1000-1~28, 1001, 1002, 1003, 1003-1~5, 1004, 1005, 1005-1~14, 1006, 1007, 1008, 1008-1~7, 1009, 1010, 1011, 1012, 1013, 1014, 1015, 1016, 1016-1~5, 1017, 1018, 1018-1~3, 1019, 1020, 1020-1~8, 1021, 1022, 1022-1, 1023, 1024, 1025, 1026, 1026-1, 1027, 1028, 1028-1~2, 1029, 1030, 1030-1~12, 1031, 1032, 1033, 1033-1~12, 1034, 1035, 1035-1~5, 1036(일부), 1037, 1038, 1038-1~2, 1039, 1040, 1040-1~5, 1041, 1041-1~14, 1042, 1043, 1043-1~14, 1044, 1045, 1045-1~8, 1046, 1047, 1047-1~4, 1048, 1048-1~11, 1049, 1050, 1050-1~7, 1051, 1052, 1052-1~9, 1053, 1054, 1055, 1055-1~2, 1056, 1056-1~12, 1057, 1058, 3, 3-1~3, 5, 5-1~10, 5-13~16, 6, 6-1~3, 62, 62-6, 62-8~9, 62-16, 62-18, 63, 63-2~11, 65-3~5, 66-2~3,

				67-2, 68-2~3, 69-2~3, 71-2~3, 71-5~7, 73, 73-1~2, 79, 79-1~3, 81-2, 81-4, 81-6, 178-3, 264, 265, 266, 267-1, 271-3, 272, 273, 273-1, 274, 275, 276-1~3, 276-5~8, 277-1, 278-1~2, 278-5, 283-1, 284-1, 285-1~5, 288-1~6, 288-8~10, 329-6~9, 330-8 ~10, 486 486-9, 486-13, 486-31, 486-33~35, 539-38~40, 579-3, 산34(일부), 산35(일부), 산36, 산40-4, 산40-7(일부), 산46-1, 산94, 산95-1, 산95-6~7, 산98-1~2, 산 98-7, 산102-4, 산102-6(일부), 산105-1(일부), 744-1(일부)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7조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行政面)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명칭과 구역(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구역) 인천광역시 검단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제2조 관련)

구 별	명 칭	관 할 구 역
검단구	백석동	- 백석동 일원 - 당하동으로 일부 경정 편입지역 제외 - 백석동 80, 80-11, 80-16, 80-52, 81-10, 산33-6~7, 산34-2, 산34-7~9, 산34-11~12 - 검암동에서 일부 편입지역 포함 검암동 414-41, 414-127, 414-270, 414-282, 414-469, 414-470, 414-471, 414-472
	시천동	시천동 일원
	마전동	- 마전동 일원 - 왕길동으로 일부 경정 편입지역 제외 마전동 625, 660-2, 660-44, 661-2~3, 662-5, 663-1~4, 695-2~7, 696-2~6, 696-8~10, 698-7, 698-22, 698-31, 699-14, 735-5, 740-3, 산160-1, 산156-2~3, 산157-4, 산158-5 - 왕길동에서 일부 경정 편입지역 포함 왕길동 219-18 - 당하동에서 일부 경정 편입지역 포함 당하동 925-21~22, 925-24, 1012-1, 1015-3, 1018-1 - 불로동에서 일부 경정 편입지역 포함 불로동 725-8~9, 751-1 - 당하동으로 일부 경정 편입지역 제외 마전동 498, 498-1, 499-2, 541-1~2, 545-14, 545-18~24, 546-7, 547, 547-1~11, 547-13~16, 548, 548-1, 549, 550-1~5, 553-1, 555-1~2, 556, 556-1~2, 557, 558, 559-8~10, 559-12~14, 559-18, 559-23, 559-26~27, 559-34, 559-42, 582-10~11, 582-18, 582-21~22, 582-24, 582-26, 582-30, 609, 609-1~9, 610, 615, 615-1, 616-2, 616-4~5, 617-3~4, 617-6~7, 710-1, 713-10, 715~717, 산170-18~19, 산171-1, 산171-3~4, 산171-7, 산172, 산172-1~3, 산181-2~4, 산181-10~13, 산181-16, 산182, 산183-1~2, 산184-1~2, 산185-1~3 - 당하동으로 일부 경정 편입지역 제외(169필지) 마전동 518-7, 520-5, 521-1~5, 521-7,~9, 521-11, 521-13~14, 521-21~22, 521-26, 522-1~5, 523, 524, 524-1~3, 524-5, 524-7,

	524-9, 524-11, 524-14~16, 524-18~20, 525-1~3, 526, 526-1~2, 526-4, 526-6~7, 527, 527-1, 529, 529-1~2, 529-4, 529-6~7, 529-9~10, 530, 530-1, 531, 531-1~2, 532, 532-1~6, 533, 533-1, 534, 534-1~8, 535-1, 535-3~6, 536-1, 536-3~5, 537, 537-1, 538-1, 539, 540, 540-1~7, 540-9~11, 541, 542, 543, 543-1, 544, 544-1~3, 545-1~4, 545-6~13, 545-15~17, 545-27~29, 546-1~2, 546-5~6, 710, 710-2~3, 711, 712, 산181-1, 산181-14, 산181-17, 산196-5, 산196-15, 산196-17, 산196-20, 산196-23, 산197-1, 산197-6~9, 산198, 산199-1, 산199-3, 산199-5~6, 산199-9, 산200, 산203-1, 산203-3~5, 산204-1~2, 산204-4, 499-3(일부), 515-32(일부), 710-4(일부), 산180-5(일부), 산185-9(일부), 산194-4(일부)
당하동	- 당하동 일원 - 원당동에서 일부 경정 편입지역 포함(83개 필지) - 원당동 457-1, 461, 461-1, 461-2, 462, 462-1, 462-2, 462-3, 462-4, 462-5, 462-6, 462-7, 462-8, 462-9, 463, 463-4, 463-5, 470, 470-1, 470-3, 481, 481-2, 481-3, 481-6, 481-7, 481-8, 481-9, 482, 482-1, 482-2, 482-3, 482-4, 482-5, 483-1, 483-2, 483-3, 483-4, 483-5, 483-6, 483-9, 483-10, 483-11, 483-12, 483-13, 485-2, 485-3, 485-7, 485-8, 485-9, 485-10, 485-11, 486-21, 486-27, 508, 508-1, 508-2, 508-3, 539-4, 539-5, 539-6, 539-7, 539-11, 539-12, 539-13, 539-14, 539-15, 539-25, 539-26, 539-27, 539-28, 457, 457-2, 463-1, 470-2, 481-5, 483-7, 485-1, 486-20, 486-22, 509-5, 539-2, 539-16, 539-29 - 원당동으로 일부 경정 편입지역 제외(84개 필지) 당하동 188-8, 188-9, 188-10, 188-11, 279-4, 281-5, 313-2, 314-2, 314-8, 314-9, 314-10, 314-11, 314-12, 315-4, 315-8, 319-4, 319-7, 394-1, 394-2, 394-3, 395-1, 397-2, 397-4, 401, 401-1, 401-2, 401-6, 401-7, 401-8, 405-1, 405-2, 407-6, 407-7, 408-2, 409-2, 409-5, 412, 412-1, 412-2, 413, 413-1, 413-2, 413-3, 413-4, 414, 415-6, 964-9, 981, 188-6, 188-12, 188-15, 279-3, 280-6, 281, 281-11, 313-1, 313-4, 313-5, 314-5, 314-7, 315-5, 315-7, 319-3, 319-6, 320-3, 320-4, 340-3, 340-5, 341-3, 341-4, 383-1, 383-2, 388-1, 388-3, 401-5, 410-7, 414-1, 414-2, 414-3, 415, 415-1, 416-1, 964-7, 964-24 - 마전동에서 일부 경정 편입지역 포함(169필지) 마전동 518-7, 520-5, 521-1~5, 521-7~9, 521-11, 521-13~14, 521-21~22, 521-26, 522-1~5, 523, 524, 524-1~3, 524-5, 524-7, 524-9, 524-11, 524-14~16, 524-18~20, 525-1~3, 526, 526-1~2,

	526-4, 526-6~7, 527, 527-1, 529, 529-1~2, 529-4, 529-6~7, 529-9~10, 530, 530-1, 531, 531-1~2, 532, 532-1~6, 533, 533-1, 534, 534-1~8, 535-1, 535-3~6, 536-1, 536-3~5, 537, 537-1, 538-1, 539, 540, 540-1~7, 540-9~11, 541, 542, 543, 543-1, 544, 544-1~3, 545-1~4, 545-6~13, 545-15~17, 545-27~29, 546-1~2, 546-5~6, 710, 710-2~3, 711, 712, 산181-1, 산181-14, 산181-17, 산196-5, 산196-15, 산196-17, 산196-20, 산196-23, 산197-1, 산197-6~9, 산198, 산199-1, 산199-3, 산199-5~6, 산199-9, 산200, 산203-1, 산203-3~5, 산204-1~2, 산204-4, 499-3(일부), 515-32(일부), 710-4(일부), 산180-5(일부), 산185-9(일부), 산194-4(일부)
원당동	- 원당동 일원 - 당하동에서 일부 경정 편입지역 포함(84개 필지) 당하동 188-8, 188-9, 188-10, 188-11, 279-4, 281-5, 313-2, 314-2, 314-8, 314-9, 314-10, 314-11, 314-12, 315-4, 315-8, 319-4, 319-7, 394-1, 394-2, 394-3, 395-1, 397-2, 397-4 401, 401-1, 401-2, 401-6, 401-7, 401-8, 405-1, 405-2, 407-6 407-7, 408-2, 409-2, 409-5, 412, 412-1, 412-2, 413, 413-1, 413-2, 413-3, 413-4, 414, 415-6, 964-9, 981, 188-6, 188-12 188-15, 279-3, 280-6, 281, 281-11, 313-1, 313-4, 313-5, 314-5, 314-7, 315-5, 315-7, 319-3, 319-6, 320-3, 320-4 340-3, 340-5, 341-3, 341-4, 383-1, 383-2, 388-1, 388-3 401-5, 410-7, 414-1, 414-2, 414-3, 415, 415-1, 416-1, 964-7 964-24 - 당하동으로 일부 경정 편입지역 제외(83개 필지) 원당동 457-1, 461, 461-1, 461-2, 462, 462-1, 462-2, 462-3, 462-4, 462-5, 462-6, 462-7, 462-8, 462-9, 463, 463-4, 463-5 470, 470-1, 470-3, 481, 481-2, 481-3, 481-6, 481-7, 481-8 481-9, 482, 482-1, 482-2, 482-3, 482-4, 482-5, 483-1, 483-2 483-3, 483-4, 483-5, 483-6, 483-9, 483-10, 483-11, 483-12 483-13, 485-2, 485-3, 485-7, 485-8, 485-9, 485-10, 485-11 486-21, 486-27, 508, 508-1, 508-2, 508-3, 539-4, 539-5 539-6, 539-7, 539-11, 539-12, 539-13, 539-14, 539-15, 539-25 539-26, 539-27, 539-28, 457, 457-2, 463-1, 470-2, 481-5 483-7, 485-1, 486-20, 486-22, 509-5, 539-2, 539-16, 539-29 - 불로동으로 일부 경정 편입지역 제외(137개 필지) 원당동 627-1~3, 627-9(일부), 628(일부), 629-1~2, 630, 631, 631-1~4, 632, 633, 634-1~6, 635-1~2, 636-1~2, 636-3(일부), 636-4~6, 636-9(일부), 636-10~13, 636-14~16(일부), 637-1, 637-3, 637-4(일부), 637-6(일부), 640-7~8(일부), 640-12(일부), 640-32(일부), 649(일부), 650, 651-1,

		651-3~37, 652(일부), 653(일부), 782-6(일부), 783-3(일부), 784(일부), 784-1~2(일부), 793, 산32, 산33, 산34(일부), 산35(일부), 산40-7(일부), 산102-6(일부), 산103-7(일부), 산105-1(일부), 산106-1~3(일부), 산107-1~2, 산108-1, 산109-1~2, 산110-1, 산111-1~3, 산111-5~6, 산111-11, 산111-12(일부), 산111-13~24, 산111-31, 산111-32~33(일부), 산111-38~39, 산111-42, 산111-43(일부), 산111-45(일부), 산111-47(일부), 산136
	불로동	- 불로동 일원 - 마전동으로 일부 경정 편입지역 제외 불로동 725-8~9, 751-1 - 원당동에서 일부 경정 편입지역 포함(137개 필지) 원당동 627-1~3, 627-9(일부), 628(일부), 629-1~2, 630, 631, 631-1~4, 632, 633, 634-1~6, 635-1~2, 636-1~2, 636-3(일부), 636-4~6, 636-9(일부), 636-10~13, 636-14~16(일부), 637-1, 637-3, 637-4(일부), 637-6(일부), 640-7~8(일부), 640-12(일부), 640-32(일부), 649(일부), 650, 651-1, 651-3~37, 652(일부), 653(일부), 782-6(일부), 783-3(일부), 784(일부), 784-1~2(일부), 793, 산32, 산33, 산34(일부), 산35(일부), 산40-7(일부), 산102-6(일부), 산103-7(일부), 산105-1(일부), 산106-1~3(일부), 산107-1~2, 산108-1, 산109-1~2, 산110-1, 산111-1~3, 산111-5~6, 산111-11, 산111-12(일부), 산111-13~24, 산111-31, 산111-32~33(일부), 산111-38~39, 산111-42, 산111-43(일부), 산111-45(일부), 산111-47(일부), 산136
	대곡동	대곡동 일원
	금곡동	금곡동 일원
	오류동	- 오류동 일원 - 왕길동으로 일부 경정 편입지역 제외 오류동 767-2, 768-2, 768-4, 768-7, 768-10, 865-9 - 왕길동에서 일부 경정 편입지역 포함 왕길동 481-9~11, 482-1~2, 482-4~5, 482-8, 482-10, 483-1~4, 484, 484-1, 485-1~2, 485-5, 510-5~6, 510-12~13, 515-2~3, 519-1~2, 520-1~16, 521-1~2, 521-4~5, 521-10, 536-2~3, 536-9, 536-15, 536-19~20, 536-22, 537-1~2, 537-5, 538, 538-1, 539-1~7, 540, 541, 541-1~5, 541-7, 626, 626-73~74, 627, 628
	왕길동	- 왕길동 일원 - 마전동에서 일부 경정 편입지역 포함 마전동 625, 660-2, 660-44, 661-2~3, 662-5, 663-1~4, 695-2~7, 696-2~6, 696-8~10, 698-7, 698-22, 698-31, 699-14, 735-5, 740-3, 산160-1, 산156-2~3, 산157-4, 산158-5,

		- 오류동에서 일부 경정 편입지역 포함 오류동 767-2, 7 68-2, 768-4, 768-7, 768-10, 865-9 - 오류동으로 일부 경정 편입지역 제외 왕길동 481-9~11, 482-1~2, 482-4~5, 482-8, 482-10, 483-1~4, 484, 484-1, 485-1~2, 485-5, 510-5~6, 510-12~13, 515-2~3, 519-1~2, 520-1~16, 521-1~2, 521-4~5, 521-10, 536-2~3, 536-9, 536-15, 536-19~20, 536-22, 537-1~2, 537-5, 538, 538-1, 539-1~7, 540, 541, 541-1~5, 541-7, 626, 626-73~74, 627, 628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7조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行政面)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율방범활동(안 제3조)

나. 지원대상(안 제4조)

다. 경비지원 등(안 제5조)

라. 지원 절차 등(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동 단위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각 동의 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자율방범활동) ① 방범대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취약지역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신고
2. 청소년 선도·보호
3. 재해·재난 발생시 주민 구호활동 지원
4.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지도
5. 그 밖에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 ② 연합대는 합동 순찰 및 합동 캠페인, 공익사업 등의 협력사업을 주관하고 방법대의 활동을 지원, 지도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법 제4조 및 제12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방법대와 연합대로 한다.

제5조(경비지원 등) ① 구청장은 방법대와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 제14조, 「자율방법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법 활동에 필요원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3. 방법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방법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6. 방법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7. 그 밖에 방법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② 구청장은 방법대 또는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방법대 또는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법대 또는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 절차 등) ① 제5조에 따라 방법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법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자율방법대 및 연합대의 정관
3.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
4.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
5.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
6.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법일지
7. 별지 제5호서식의 방법순찰 등 활동사진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방법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 및 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방법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

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방법대 또는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관할 경찰청장이나 관할 경찰서장에게 정기·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기타 구청장은 방법대 또는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관할 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정산)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방법대 또는 연합대는 매분기별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다음 분기 시작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법대 또는 연합대와 대원에 대해서 법 제11조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대의 예산 지원 및 집행 등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신고) ① 제3조에 따라 자율방범대를 조직하려는 사람은 명칭, 활동 구역, 대표자 및 구성원의 성명 등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자율방범대는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해산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장·면장·동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중앙회·연합회·연합대 설립 등) ①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 단위의 자율방범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및 시·군·구에 시·군·구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중앙회는 경찰청장에게, 연합회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연합대는 경찰서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 연합회 및 연합대(이하 “중앙회등”이라 한다)의 조직·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경비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의 구입, 교육·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가 자율방범활동이나 제10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위한 복장·장비·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2.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방법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경찰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조(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2.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경찰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국가에 헌신·공헌한 검단구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여 검단구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참전유공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헌신·공헌한 인천광역시 검단구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검단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재외동포가 거소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 1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해당되는 참전유공자 중 신청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월 8만원 지급. 다만, 6.25 참전유공자에게는 월 7만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2. 참전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 30만원(시비 20만원 포함)을 지급하며, 제3조에도 불구하고 65세 미만의 사람에게도 지급

할 수 있다.

3.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복지수당 5만원(시비 2만 5천원 포함)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의 범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을 따른다.

4.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 선양 및 계승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급신청) 수당 및 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결정) 구청장은 수당 또는 위로금 지급 신청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가 있는지를 인천보훈지청장에게 확인한 후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정한 사항을 신청인 또는 관련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시기) ① 수당 및 위로금은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을 말한다)에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② 수당은 제3조에 따라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8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다른 시·군·구에서 검단구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제8조(지급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시·군·구로住所를 옮긴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급대상자가 아님에도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환수하며, 환수 방법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고, 위로금 지급 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전등록번호			-							
수당 지급 신청서										
☐ 참전명예수당 ☐ 배우자 복지수당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인천광역시 검단구 (전화번호 :)								
지급	금융기관명					예 금 종 류				
계좌	계좌 번호					예금주 성명				
「인천광역시 검단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제출서류		1. 참전 유공자증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 인 사 항		1. 주민등록 등본 2. 주민등록 초본 3. 국가유공자 확인원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에는 신청인이 제출			
<u>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u>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참전등록번호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참 전 유공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인천광역시 검단구 (전화번호 :)									
	사망일자	년	월	일	사망신고일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참전유공자					금융기관	은행				
	와의 관계					계좌번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제출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와의 관계 및 사망위로금 지급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관계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신청인 명의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 제1~3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 인 사 항	1. 주민등록 등본 2. 주민등록 초본 3. 국가유공자 확인원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에는 신청인이 제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참전등록번호				-								
대리수령인 지정 신청서												
참전명예 수당을 받는 사람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인천광역시 검단구 (전화번호 :)										
	신청사유						대리수령인 지정기간	년	월	부터	년	월
대리 수령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참전유공자 와의 관계						금융기관	은행				
							계좌번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수령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제출서류	1.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대리수령인 명의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 등본 2. 국가유공자 확인원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에는 신청인이 제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관계 법령 발췌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25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획정기준(제3조)

나. 통·반장의 임명 등(제5조)

다. 임무(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전달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동행정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동의 하부조직으로써 통·반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동에는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제3조(획정기준) ① 통은 4개 반부터 8개 반까지로 하고 반은 40가구부터 80가구로 구성한다.

②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은 단지규모 및 도로구조, 자연부락은 구조 또는 형태 등 감안하여 현지시정에 맞도록 통·반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변경 내역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며 통·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인천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통·반장의 임명 등) 통에는 통장을 두고 반에는 반장을 둘 수 있되, 통·반장의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임무) ① 통·반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

행한다.

1. 행정시책의 홍보 및 각종 공지사항 전달
2. 주민의 의견 수렴
3. 지역의 공동 관심사항 및 생활민원의 신속한 해결과 통보
4. 반사회 운영 활성화
5. 사건, 사고, 재난 우려지역, 미담수범사례 및 주민불편사항 통보
6. 저소득층 및 후원자 발굴, 부정수급자 신고, 복지정보 안내 등 복지도우미로서의 역할
7.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평시, 전시 등) 또는 구청 및 구 산하기관의 행정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통장은 관할 통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사람들의 생활상황과 특이사항을 동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① 통장 또는 반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사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통장은 관할 통의 각 반 반사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반장 회의를 소집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구정소식지 등 배포) 통·반장은 반사회 운영의 활성화 및 구정을 주민에게 알리고자 제작하는 검단구 구정소식지 등을 정례 반사회의 시 주민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제9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 ① 동장은 "반사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사회에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처리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건의사항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해결하고 타기관 소

관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동시에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처리사항은 다음 반상회때 반원에게 알려주며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중간상황을 통지한다.

제10조(운영실적의 평가) 동장은 분기별 1회 이상 반상회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지도하고, 우수 통·반장에 대해서는 구청장에게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 ① 통·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통·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편의제공 및 사기진작) ① 통·반장은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통·반장에게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매월 1회 무료로 제공할 수 있으며, 통장의 경우 1세대당 100리터, 반장은 1세대당 120리터를 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통·반 운영 및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 통·반장 표창, 타 시·도 견학 및 교류, 통·반장 체육대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통장이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3조(실비지급 등) 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인 월정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까지 일할계산하여 후불로 지급한다. 다만, 해임 시에는 해임일까지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통·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금품징수의 금지) 통·반장은 통·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임명된 통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行政面)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신설 2021. 4. 20.>

인천광역시 검단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책무(안 제3조)
- 나. 지원(안 제4조)
- 다. 지역협의회 설치 및 구성(안 제5조~제6조)
- 라. 지역협의회 회의 등(안 제1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여 검단구민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응 교육 등을 비롯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역협의회 설치)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협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고 한다)를 둔다.

제6조(지역협의회 구성)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

려한다.

②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 부서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 담당 부서장, 북한이탈주민 다수 거주지역 동장, 관할 교육지원청·관할 경찰서·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의 북한이탈주민 지원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인천하나센터 등의 북한이탈주민 지원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관련 전문가 등

제7조(지역협의회 기능)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회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보궐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 담당이 된다.

제11조(지역협의회 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기가 만료한 때
2. 위원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때
3. 위원이 질병, 장기출장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

된 때

4. 위원이 공익에 반하거나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제14조(비밀엄수의무 등) 협의회 위원은 지역협의회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나 지역협의회에서 정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탁 기관·단체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 및 사업비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 대상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보호·교육·취업·주거·의료 및 생활보호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청년·여성·노인·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한다.

제6조(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①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보호 및 정착지원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에 관한 사항

1의2. 제4조의3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호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의2. 제9조제3항에 따른 수사의뢰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취업보호의 중지 또는 종료에 관한 사항

3의2.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신변보호기간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변보호기간의 연장·종료에 관한 사항

3의3. 제22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재실시 및 신변보호 재실시 기간의 연장·종료에 관한 사항

4.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호 및 정착지원의 중지 또는 종료에 관한 사항
5.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시정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인천광역시 검단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구청 및 동 청사 소재지(제2조 관련)

구분	소재지
검단구청	인천광역시 검단구 당하동 1325, 1325-2, 1325-3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로529번길 14(마전동)
불로대곡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로 814(불로동)
원당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검단구 고산로 24(원당동)
당하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마로167번길 19(당하동)
오류왕길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검단구 봉화로 42(왕길동)
마전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검단구 완정로10번길 14(마전동)
아라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검단구 이음2로 20(당하동)
아라2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검단구 바리미로 23, 4층·5층(원당동)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9조

제9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동은 행정면·행정동(행정동)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사업 등(제3조)

나. 포상(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고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해병전우회에 대한 지원 보조금을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 해병전우회"란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봉사활동"이란 재난·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사업 등)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해병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
2. 재난, 재해 발생시 주민 구호활동
3. 야간방범 순찰 활동 사업
4. 수상 안전사고 예방 사업
5. 해양과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사업
6. 그 밖에 검단구지역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활동에 대한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포상)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해병전우회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해병전우회 및 소속 회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사. 자연보호활동

인천광역시 검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며,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기본이념,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나. 보훈단체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다. 보훈예우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검단구"라 한다)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널리 알리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구민 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과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다.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단체”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와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 장관의 관리·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
5. “보훈복지”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예우 및 지원뿐 아니라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정신적 예우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등 각종 지원을 말한다.

제4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검단구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제5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희생 및 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검단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희생·공헌자의

공훈선양 사업을 통하여 나라사랑 정신을 확산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의 예우 기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조례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를 우선 배려하는 등 필요한 보훈 복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구청장은 검단구의 예우시책 확산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제8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공훈선양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초청하고, 좌석배치 배려 등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소개
5.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6. 보훈관련 기념일 및 계기행사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로 및 격려
7. 국가 또는 검단구 주관의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제9조(보훈단체 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예산을 각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2. 호국정신과 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및 전적지 등

순례

3. 국가보훈대상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
4.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추모 또는 기념행사
5. 국립묘지, 현충탑 참배 및 국립 현충원 지킴이, 환경정화 활동
6. 국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안보교육 사업
7.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사업별 세부내역은 별표와 같다.

제10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9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예산을 지원받은 단체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보훈복지)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복지지원 을 할 수 있다.

1. 검단구와 그 소속기관 및 검단구 지방공기업이 설치하고 관리하는 시설 사용료, 입장료, 주차료 감면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보훈예우수당 등 지급)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서 검단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 당(이하 "수당"이라 한다)과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 및 건강생 활지원수당(이하 "건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와 「인천광역시 검단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당: 매월 8만원 이내
2. 위로금: 1회 20만원 이내
3. 건강수당: 설, 추석에 속한 달 5만원 이내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12조제1항제1호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지급하는 수당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생활보조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수당의 신청) 제12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지급의 결정 및 지급시기) ① 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수당을 신청할 경우에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2조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가 있는지를 인천보훈지청장 등 관계기관·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본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수당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15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하되 실명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며, 수당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④ 다른 시·군·구에서 검단구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제15조(수당지급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다른 시·군·구로 주소를 옮긴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3. 수급권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16조(위로금 신청 등) ① 위로금 신청 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유족이나 가족은 수급권자의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구청장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다만, 구비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② 위로금 지급의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 및 위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8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구청장은 희생·공헌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보훈단체 예산지원에 따른 사업별 세부내용(제9조 관련)

호	사업명	세부내용
3	국가보훈대상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	○ 고령 및 불우회원 위안행사 ○ 보훈병원 위문 행사 ○ 건강관리를 위한 게이트볼 육성 ○ 환자 수송
4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 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추모 또는 기념행사	○ 6.25전쟁 기념 행사 ○ 호국보훈의 달 행사 ○ 천안함 추모식 ○ 보훈단체별 창립 기념행사
5	국립묘지, 현충원 참배 및 국립 현충원 지킴이, 환경정화 활동	○ 현충탑 참배 및 주변 정화사업 ○ 국립묘지 및 현충원 참배 및 지킴이 활동
6	국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 안보 교육 ○ 안보 대회
7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 한 각종 사업	○ 독거노인 가정 방문 및 병문안 ○ 환경정화사업, 환경보호캠페인 ○ 국기게양운동 ○ 청소년 선도 및 범죄예방 활동 ○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 불우이웃돕기 및 나눔 봉사 활동 ○ 재해·재난 교육 및 훈련 ○ 독도 지킴이 활동 ○ 해상 수중 정화 활동

[별지 제1호서식]

보훈예우수당(건강생활지원수당) 지급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남, 여)
	주 소	우편번호 : □□□□□ (전화번호)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인천광역시 검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보훈예우수당(건강생활지원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국가보훈대상자증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1. 주민등록등본 1통	수 수 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대장

지급 일시	지 급 대 상 자				지 급 내 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종 류	은행명	지급계좌
					수 당		
					사망위로금		

관계 법령 발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3. 28., 2011. 9. 15.>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장려수당 지급액에 관한 사항(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고 한다) 별표 9의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 분뇨, 하, 폐수,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구분표

(제2조제1호 관련)

구 분	전 문 의	일 반 의
월 수 당 지 급 액	월 909,000원 이하	월 818,000원 이하

비고: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정한다.

[별표 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의 진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제2조제2호 관련)

등급별 근무년수별	5급(상당)	6급(상당)
5 년 이 상	월 1,312,000원 이하	월 973,000원 이하
4 년 이 상	월 1,306,000원 이하	월 967,000원 이하
3 년 이 상	월 1,300,000원 이하	월 961,000원 이하
2 년 이 상	월 1,295,000원 이하	월 956,000원 이하
2 년 미 만	월 1,289,000원 이하	월 950,000원 이하

비고: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별표 3]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

(제3조 관련)

지 급 수 당	지 급 액
①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200,000원
②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200,000원
③ 하수, 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200,000원

관계 법령 발췌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업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은 별표 9의 지급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별표 9]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 관련)

구분	수당명	지 급 대 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기술 분야	2. 의료 업무 등의 수당	가. 의무·약무·간호직·보건진료 전담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의무·약무·간호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으로서 「의료법」 제2조 제2항 및 「약사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선에 승선·근무하는 공무원	1) 의무직렬 공무원, 보건진료소에 서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및 병원선 승선근무자: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약무직렬 공무원: 월 70,000원 3) 보건진료소 외의 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직렬 및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월 50,000원
특수 행정 분야	8. 장려 수당	라. 위생처리장·하수처리장·쓰레기처리장 등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마. 화장장·화장장관리사무소 등 시체화장 업무를 전담하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바. 공원묘지·납골시설 등 묘지 나 납골시설의 관리·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여비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4조)
- 나. 여비 부담 수령 시 가산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다. 공무원여비규정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요구되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 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 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 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 대상·월 지급 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구청장은 당해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의 각 호를 준용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8조의2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을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로 “동규정[별표]”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이 공무(公務)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일비·숙박비·식비·이전비·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는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여비의 계산) 여비는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여행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5조(여행일수의 계산) 여행일수는 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늘어나는 일수는 여행일수에 포함한다.

제6조(근무지 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여행 시의 여비) 근무지 또는 출장지 외의 곳에 거주하거나 체재(滞在)하는 공무원이 그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직접 여행하는 경우에는 그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그 여비는 근무지 또는 출장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7조(여비의 구분 계산) ① 여행 중 법령이나 계급·직무등급 또는 호봉의 변경 등에 의하여 여비를 구분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이동 중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의 목적지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여행 중 같은 날에 여비를 달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8조(근무지 외의 거주자를 임용한 경우의 여비) 근무지 외의 곳에 거주하는 사람을 임용한 경우에는 공무원 부임(赴任)의 예에 준하여 새로운 직(職)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의2(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①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국외 여행의 운임은 제외한다)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정부구매카드(이하 “정부구매카드”라 한다)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서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 여행자의 숙박비 정산 신청기한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정산 신청을 받은 회계 관계 공무원은 여비의 정산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여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의 특별한 사유와 그 경우의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기준,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⑤ (생략)

제2장 운임

제9조(운임의 구분) ① 운임은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하되, 철도운임은 철도여행에, 선박운임은 수로(水路)여행에, 항공운임은 항공여행에, 자동차운임은 철도 외의 육로여행에 각각 지급한다.

② 국외 여행의 경우 제1항의 운임에는 통행세를 포함한다.

제10조(철도운임의 지급) ① 국내 철도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전철 구간에서 철도운임 외에 전철요금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도운임을 갈음하여 전철요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철요금은 실비(實費)로 지급한다.

② 국외 철도운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철도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 최상 등급의 철도운임
2. 철도운임에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 그 승차에 필요한 실비
3. 공무상의 사유로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이 필요한 경우: 그 실비

제11조(선박운임의 지급) ① 국내 선박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국외 선박운임[부선(桴船) 및 부두(埠頭) 사용료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선박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 최상 등급의 선박운임
2. 선박운임에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 그 승선에 필요한 실비
3. 공무상의 사유로 침대요금이 필요한 경우: 그 실비

제12조(항공운임의 지급) ① 국내 항공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국외 항공운임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③ 공무원이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항공사가 항공기 이용 실적에 따라 적립하는 점수를 말하며, 이하 “공적 항공마일리지”라 한다)를 활용하여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기 좌석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적 항공마일리지만으로 부족한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적 항공마일리지(공무원이 사적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라 사적 항공마일리지를 합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사적 항공마일리지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액하지 아니하고 지급한다.

⑤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복지점수를 사용하는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적 항공마일리지로 전환할 수 있다.

제12조의2 삭제

- 제13조(자동차운임의 지급) ① 국내 자동차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 ② 국외 자동차운임은 실비로 지급한다.

제14조 삭제

- 제15조(운임 지급의 제한) 공용의 차량·선박 또는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3장 일비·숙박비 및 식비

- 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① 국내 여행자의 일비(日費)·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고, 국외 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 및 지급받은 식비(국내 여행의 경우 식비는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국내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여비를 추가로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를 말한다)에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 사용내용이 명시된 증거자료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무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

한다.

④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육지에서 숙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한다.

⑤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식비를 지급한다.

⑥ 삭제

제17조(동일 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의 감액) ① 같은 곳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는 그곳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1에 상당한 액을,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2에 상당한 액을, 6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3에 상당한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다만, 소속 장관은 업무의 성질 또는 지역의 실정에 비추어 본문의 감액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감액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장기체재 기간 중 일시 다른 지역에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 출장기간을 빼고 그 체재기간을 계산한다.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①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에 따른 전용 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으며, 공무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제4장 이전비·가족여비 및 준비금

제19조(이전비의 지급 대상) ① 국내 이전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국내 이전자”라 한다)으로서 전임지(前任地)(제2호의 경우에는 청구사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신임지(新任地)(제2호의 경우에는 신청사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한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다만, 같은 시·군 및 섬 안에서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에게는 국내 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공무원
2. 청사 소재지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

② 국내 이전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부임의 명을 받은 날 또는 청사 이전이 완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신임지 외의 지역으로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할 수 있는 이전비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넘지 못한다.

③ 국외 이전비는 외국으로 부임하는 공무원, 외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근하는 공무원과 외국에서 본국으로 전근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제20조(이전비의 지급) ① 이전비(移轉費)는 별표 5에 따라 지급한다.

② 이전비를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이전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거주지의 변경 및 이사화물의 운송 명세(이동구간 · 이동거리 · 운송비 등을 말한다)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새 근무기관(청사 소재지가 이전된 경우에는 소속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이전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 근무기관과 새 근무기관이 협의하여 전 근무기관이 이전비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전 근무기관에 이전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내 이전자가 부임의 명을 받은 날 또는 청사 이전이 완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1조(국내 가족여비) ① 국내 가족여비는 국내 이전자로서 이전할 때 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직계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동반하거나 이전 후에 가족을 불러 오는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② 국내 이전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부임의 명을 받은 날 또는 청사 이전이 완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전임지 또는 전임지 외의 지역에서 신임지 외의 지역으로 가족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가족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가족여비는 가족 1명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1. 운임과 숙박비: 본인이 여행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
2. 일비와 식비: 본인이 여행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12세 이상인 가족에 대해서는 3분의 2, 12세 미만인 가족에 대해서는 3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④ 제3항에 따라 가족여비를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이전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거주지의 변경 및 운임과 숙박비의 사용명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새 근무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⑤ 이전 후 전임지 외의 지역에서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족을 이전하는 경우의 가족여비는 전임지로부터 신임지에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두 차례 이상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하는 때마다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못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이미 가족여비를 지급받은 공무원이 이전 후 신임지에 그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의 가족여비는 이미 지급한 금액과 합하여 전임지로부터 신임지에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두 차례 이상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하는 때마다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못한다.

⑦ 국내 가족여비의 지급 제한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2조(국외 가족여비) 국외 가족여비는 별표 6의2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취업하여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녀 및 26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국외 가족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정신적·육체적인 장애로 인하여 부모에게 의존하여 동거하는 26세 이상의 자녀로서 소속 장관이 확인하는 자녀와 외국에서 다른 지역 또는 본국으로 전근하는 경우에 출국 시 가족여비를 지급받은 29세 미만의 미혼자녀에 대해서는 국외 가족여비를 지급한다.

제23조(준비금) ① 외국에 부임하거나 국외 출장명령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인

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항목에 대한 준비금을 실비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을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출국 전 또는 출장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준비금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장 퇴직자·사망자 등의 여비

제24조(여행 중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의 여비) ① 부임 도중에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전임지로부터 신임지까지의 전직(前職) 또는 본직(本職)에 상당하는 여비(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족여비는 제외한다)를 지급한다.

② 출장 중에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출장지로부터 전임지 또는 근무지까지의 전직 또는 본직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③ 외국 근무 중에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이 발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귀국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직급·직무등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본인에게는 외국에서 본국으로 전근하는 경우의 예에 준한 이전비를 지급하고, 가족 동반의 경우에는 제2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가족여비를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형사재판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퇴직한 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5조(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의 사무 인계 등을 위한 여비) 사무 인계 또는 잔무(殘務) 정리 등을 위하여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에게 출장을 명한 경우에는 전직 또는 본직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26조(여행 중 사망한 경우의 여비) ① 공무원이 국내 여행 중 사망하였을 때에는 부임인 경우에는 전임지로부터 신임지까지의 전직에 상당하는 여비의 2배액을, 출장인 경우에는 출장지로부터 전임지까지의 전직에 상당하는 여비의 2배액을 각각 그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공무원(제22조에 따라 국외 가족여비를 지급받는 가족을 포함한다)이 외국 여행 또는 외국 근무 중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자의 처리 및 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망자 유족 중 2명 이내의 범위에서 여행지 또는 근무지까지의 여비와 시신 운구비를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여비는 7일의 범위에서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여비를 제9조 및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급하고, 시신 운구비는 실비로 지급하되 사후 정산한다.

④ 제2항의 경우에 근무지에 동반 중이던 가족이 1개월 이내에 귀국한 경우에는 제2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가족여비를 지급한다.

⑤ 외국 여행 중 또는 외국 근무 중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 일시 귀국 또는 제3국으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제9조 및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비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27조(전역한 사람 등의 여비) 생략

제6장 보칙

제28조(여비의 조정)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외국정부 또는 국제연합기구 등으로부터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영에 규정된 여비 중에서 그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③ 2명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 출장목적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조 및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운임(국외 여비는 제외한다)·숙박비 및 식비에 한정하여 상급자와의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여비 지급의 특례) ① 소속 장관은 특별한 사유로 이 영에 따른 여비의 지급액, 지급 방법 또는 정산절차 등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8에 따라 지급하되, 그 지급액 및 지급 대상에 관한 사항은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③ (생략)

④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여행하는 경우의 여비는 별표 4의 나등급에 준하여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소속 장관은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9조의2(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특례) 이 영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여비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여비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제30조(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여비) 공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이 영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 구분은 별표 9에 따른다.

제31조(가산징수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별표1]

여비 지급 구분표(제3조 관련)

구분	해당 공무원
제1호	가.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통상교섭본부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다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나.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차관, 14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치안총감, 소방총감, 중장, 그 밖에 차관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다. 13등급부터 12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 및 10호봉 이상의 검사, 10호봉 이상의 헌법연구관, 치안정감, 소방정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가목 또는 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소장·준장, 고위(감사)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 공무원,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1호

	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라. 11등급부터 9등급까지(국장급만 해당한다)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9호봉 이하의 검사, 9호봉 이하의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치안감·경무관, 소방감·소방준감,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 교육부 본부 및 국가교육위원회의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도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대령·중령, 고위(감사)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2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제2호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별표2]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 000, 그 밖의	25,000

						지역은 70, 000)	

비고: 1. 위 표의 제1호란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와 식비는 실비로 한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별표3]

국외 항공운임 지급 기준표(제12조제2항 관련)

구분	항공운임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실비(1등석)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실비(2등석)

비고: 예산 절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하여 항공운임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며, 재향군인 예우 및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기본이념,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보훈단체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다. 보훈예우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 및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3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재향군인과 단체로 한다.

제5조(예우)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예산의 지원)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운영비 등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재향군인에 대한 추모 또는 기념행사 지원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3. 구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재향군인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
 7. 6·25전쟁 기념행사 지원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9. 단체운영을 위한 장비 및 시설물 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
-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5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6. 4., 2016. 5. 29.>

1. 육군·해군 및 공군의 예비역
2.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소집되어 군복무를 마친 자
3.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장교·준사관(準士官)·부사관(副士官) 및 병(兵) [전문개정 2008. 12. 31.]

제16조(재정) ① 재향군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2026. 7. 1. 검단구 출범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제4조)

나.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제6조)

다. 후생복지심의위원회(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회 사무국(의회 의원 포함)·보건소·동 행정복지센터에 소속된 공무원, 청원경찰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 설계·운영 시 기준이 되는 계산 단위를 말하며,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질병·육아·가사휴직자 제외)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구청장이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무원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구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후생복지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 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후생복지제도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편의시설로 휴게실·구내식당·매점
2. 소속 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실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연수원·휴양소·콘도 등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 우수·효행·장기근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지원
(단, 국외 시찰의 경우 동반 가족 지원 불가)
3.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4. 본인 및 가족이 투병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금 지급
5. 직원의 불의 사고에 대비한 생활 보장을 위한 단체보장보험 지원
6. 공무상 부상 또는 순직 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급
7.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지원과 건강관리 프로그램
램 운영
8. 소속 공무원의 업무능률 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외 연수·체험(배
낭연수) 지원
9.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 친화 활동 지원
10. 야간 교대 근무자나 주말·휴일 근무 대상자에게 매회 간식비 지원
11.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검단
구 공무원 후생복지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사업

제3장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 소속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항목
2. 자율항목 : 소속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는

항목

제9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 생명보험·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구청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11조(복지점수의 사용 한도) 구청장은 필요한 때에 복지 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 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응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복지점수 부여 기준)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수혜 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가족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복지점수를 산출하여야 하며, 이를 소속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복지점수는 기본복지점수와 변동복지점수로 구성한다.

③ 기본복지점수는 소속 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로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은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

다.

- ④ 변동복지점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로 근무연수, 가족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13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移越)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 ③ 연도 중 신규채용·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 ④ 전직·직위해제·면직·해임·과면·휴직·과건(휴직 또는 과건은 제3조2항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4조(복지점수의 정산 및 회계처리) ① 복지점수를 사용한 사람은 소요된 경비를 구청장에게 청구하여 정산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산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구청장은 복지점수의 관리·정산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 운영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장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제16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무원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 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보험계약 및 건강검진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4.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제5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6.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한다.

④ 위원장은 후생복지 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으로, 부위원장은 후생복지 주관 부서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 공무원
2.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2명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0조에 따라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개최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기타

제20조(운영의 위탁 등) 구청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 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2021. 10. 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2021. 10. 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2021. 10. 8.>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5. 5. 18.>

[전문개정 2008. 12. 31.]

인천광역시 검단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학생의 자격(제2조)

나. 추천(제3조)

다. 선발(제4조)

라. 장학금의 지급(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자녀로서 대학생 중 성실하고 재능이 우수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통장 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이면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신입생은 고등학교 최종 학기 성적이 평균 5등급 이상인 사람이거나 검정고시의 경우 시험성적이 평균 75점 이상인 사람
2. 재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이 평점 4.5 만점 기준으로 2.5점 이상인 사람
3. 복학생은 휴학 등으로 인한 직전 학기 성적이 평점 4.5 만점 기준으로 2.5점 이상인 사람
4.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나 구 단위(지방자치단체) 이상 대회에서 3위 내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의 조건을 갖춘 통장의 자녀 한 명에 한정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에서 학비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 전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 및 보조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내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제3조(추천) 동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장 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학교장에게 수혜여부를 확인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순위를 조정하며, 평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장학생 심사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 후 동점자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순위를 조정하되, 학교 간 및 동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1. 생활이 어려운 통장(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통장으로 재직하면서 최근 2년간 수혜이력이 적은 순서
3. 학년이 높은 순서

③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다시 우선 선발될 수 없다. 다만, 장학생의 정원이 미달인 경우, 후 순위로 조정하여 선발될 수 있다.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통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선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6조(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연간 10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금액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장학생 본인에게 지급하거나 해당 통장 또는 가족관계 상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제8조에 따라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다만, 자발적인 휴학 등으로 해당 학년을 마치지 못하고 중단한 경우는 복학 시에 다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정지)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통장이 그 직에서 위촉 해제가 되었을 때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3. 제2조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으로 한다.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검단구 관할에서 선발된 장학생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발된 것으로 본다.

관계 법령 발췌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1. 7. 21.]

인천광역시 검단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안 제3조, 제7조)

나.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안 제4조 ~ 제6조)

다.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안 제8조)

라.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 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4조(구성)

-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 ② 지원단의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 ③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단장을 다르게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 임무)

-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 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

-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활동관리·지원팀
 3.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 ① 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 ② 본부장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④ 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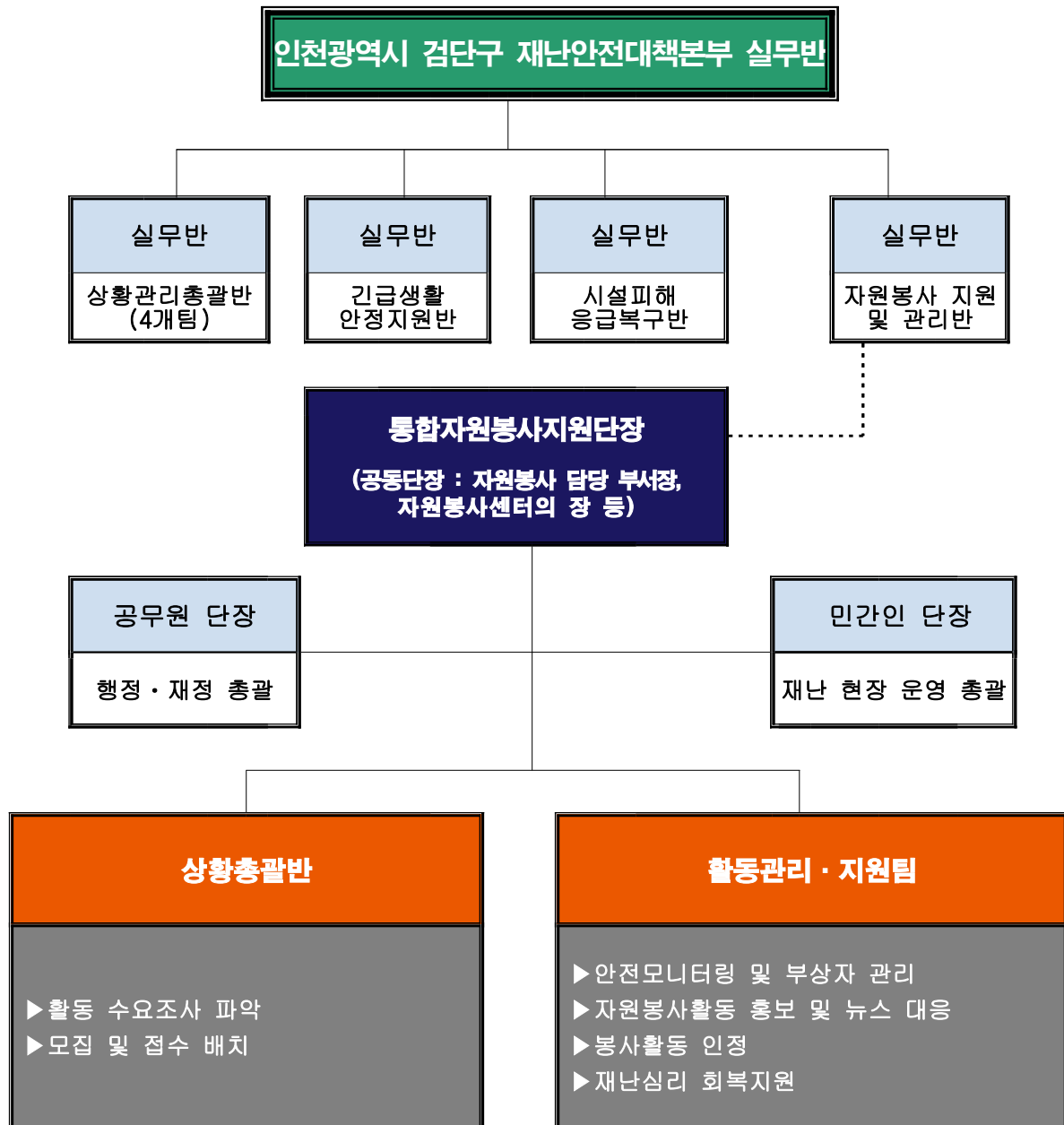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원단 운영 표준 편제(제6조제2항 관련)

[별표 2]

지원단 운영 표준 업무 구성(제6조제2항 관련)

팀 명		직 위	담당 사무
공무원단장		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관련 행·재정 지원사항 총괄 ▶ 기타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운영 관련 사항 지원
민간인단장		검단구자원봉사 센터장	▶ 재난 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운영총괄
실 무 팀	상 황 총괄팀	검단구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팀장)	▶ 재난 현장 자원봉사활동 총괄
		자원봉사 담당부서의 팀장	▶ 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연계 (상황 공유·보고 등)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관련 홍보 총괄
	활동관리 지 원 팀	검단구자원봉사센터 팀장	▶ 자원봉사자 모집·등록·교육·배치 관련 사항 총괄
		검단구자원봉사센터 운영요원1	▶ 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장비 소요 파악 ▶ 재난현장 자원봉사자 안전 관련사항 총괄
		검단구자원봉사센터 운영요원2	▶ 자원봉사자 급·간식 및 편의시설 지원 ▶ 봉사활동 기록 및 피해자 불편사항 접수
		검단구자원봉사센터 운영요원3	▶ 봉사활동 인정(시간 인정, 기부금 확인서 발급 등)

-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팀은 단장이 본부장과 협의하여
직위 및 담당 사무를 정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8.6, 2014.12.30>

② 시·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4.12.30>

③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2014.12.30>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8.6, 2014.12.30>

제17조의2(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

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원봉사자의 모집·등록
2.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운영
3.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재해구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5. 14., 2016. 1. 7.>

1. ~ 3. 생략
4. “구호지원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나. 제29조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

다. 그 밖에 구호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5. “의연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부금품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구호를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6. “모집”이란 서신·광고·인터넷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의연금품을 내도록 타인에게 의뢰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모집자”란 제17조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8. “모집종사자”란 모집자로부터 지시·의뢰를 받아 의연금품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4조의2(임시주거시설의 사용 등) ① 구호기관은 재해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주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이재민등의 구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시설의 지하층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 <개정 2016. 1. 7., 2024. 1. 30.>

1.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4.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시설 중 구호기관이 임산부, 중증장애인, 노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호약자의 구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② 구호기관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미리 해당 시설의 운영기관장 또는 운영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의 운영기관장 또는 운영책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8. 4.]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2026. 7. 1. 검단구 출범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나. 지원범위(안 제5조)

다. 경비의 지원 등(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인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및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근로지원인의 배정,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신청방법 및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게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써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3.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4. 보조공학기기·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경비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2021. 10. 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2021. 10. 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2021. 10. 8.>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5. 5. 18.>

[전문개정 2008. 12. 31.]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8. 17.>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3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설립) ①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09. 10. 9.>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0. 6. 4.>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및 조사·연구
2.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 검사, 직업능력 평가 등 직업지도
3. 장애인에 대한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도
4.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 전문요원의 양성·연수
5.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 및 고용 의무 이행 지원
6. 사업주와 관계 기관에 대한 직업재활 및 고용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의 지도·지원
7. 장애인의 직업적응훈련 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
8.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취업알선 기관 사이의 취업알선전산망 구축

· 관리, 홍보·교육 및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관련 사업

9.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공공기관 및 민간 기관 사이의
업무 연계 및 지원

10. 장애인 고용에 관한 국제 협력

11.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고
용노동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
관의 승인을 받아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제목개정 2009. 10. 9.]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등의 가입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보험의 가입 방식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보험료의 지급과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라.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등의 가입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 및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 따라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공무원) ①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확정일자 부여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당시 업무처리자)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당시 업무처리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1직위 당 100,000,000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주민등록법

제36조(보험·공제 등에의 가입)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의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이나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보험·공제 등에의 가입) 증명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운영·사무처리 등(안 제3조)
- 나. 사무 지원 및 준용(안 제4조)
- 다. 지도 감독(안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구”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운영·사무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의 장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인천광역시 검단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 운영에 관한 중

요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운영에 필요한 사무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 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조(인력 등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인력이나 운영지원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히 기여한 위원에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9조(사무기구) ① 통일자문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보(補)한다. <개정 2010. 5. 20.>

③ 사무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통일자문회의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의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직을 겸하게 할 수 있고,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사무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사무처의 조직 및 직무범위
2.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 및 정원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집회) ①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2년에 한 번 의장이 소집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소집한다.

② 의장은 늦어도 집회일 5일 전에 집회의 일시·장소 및 의안의 제목을 정하여 공고한다.

제29조(지역회의 등) ① 통일자문회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 특별자치도·이북5도 및 재외동포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회의를 둘 수 있고, 시·군·구 및 해외 지역별로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회의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하되 그 지역 출신의 부의장이 주재한다. 다만, 그 지역 출신의 부의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주재한다.

③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지역회의의 회의 결과의 종합에 관한 사항
2. 지역회의의 조직·운영
3. 그 밖에 지역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조(대행기관 등) ① 의장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재외공관으로 한다.

② 의장이 대행기관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의 회의 소집과 지역회의 및 같은 조에 따른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통일자문회의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③ 대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지역회의 또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출신의 부의장 또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위촉) ① 법 제10조제1호 및 제5호의 위원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고, 법 제10조제2호 및 제4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을 사무처장을 거쳐 대통령이 위촉한다. 이 경우 사무처장은 법 제10조제5호의 인사를 위원으로 제청하기 위해 공모 등 국민이 참여하는 방법을 실시할 수 있다.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 지역의
지도급 인사: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이북5도 대표: 이북5도지사
3. 재외동포 대표: 해당 지역 관할 공관장
4. 주요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의 대표급 인사 또는 구성원: 주무관청의
장

② 사무처장이 위원의 위촉을 제청하거나 법 제10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을 추천하는 자가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여성인 위원의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 청년(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인 위원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 되도록 노력하는 등 지역, 성별, 세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③ 법 제10조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 사무처장은 미리 위촉 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관계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지원 및 예우에 관한 사항(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이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및 예우)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한 기관 또는 시설 이용 시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우대상자가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게 관내 보훈관련 행사, 문화·축제행사 등에 우선

하여 초청한다.

제5조(홍보) 구청장은 병역명문가를 구정소식지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구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협조)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의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에 자료 등을 협조요청 할 수 있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운영 및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4조 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의3에 따라 선정된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서 「병역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63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문을 말한다.
2. "병역명문가 가족"이란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3. "병역명문가 대표"란 「병역명문가 선정·취소 기준 및 절차 고시」 별지 제1호서식의 병역명문가 신청서에 가문대표로 기재하여 제출한 사람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안 제3조)

나.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 사업추진 등(안 제5조 ~ 제12조)

다. 자원봉사자 지원(안 제16조 ~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또는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봉사활동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를 둔다.
- ② 자원봉사센터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제6조(센터의 운영)

- ① 구청장은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이 센터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받고

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 등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 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센터의 조직)

-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둔다.
- ②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자원봉사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 ③ 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로 한다.
- ④ 그 밖에 센터의 조직·운영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 ① 센터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선임하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 ② 센터장 선임 시 구청장이 직접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선임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 ③ 구청장이 직접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1년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자 수요기관 및 단체에 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10조(센터의 지원)

- ① 구청장이 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 센터의 행정을 총괄하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이 센터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센터장은 사업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자원봉사 관리) 센터는 자원봉사시스템 등을 통해 자원봉사를 원하는 자를 접수하고 관리할 수 있다.

제12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 ① 센터장은 제10조에 따른 예산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센터는 제2항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

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지도감독)

-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인은 이에 따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③ 지도·감독 시 중대한 사항의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의뢰하여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 ①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학교와 직장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의 지도·육성을 위한 자원봉사 지도자를 둘 수 있다.
- ④ 학교·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제15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 ① 구청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 주간으로 설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제16조(포상 등)

- ① 구청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지속적인 자원봉사 동참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검단구 공공시설물 이용료에 대하여 감면 또는 면제하는 등 사회적 보상과 우대마련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경력인정) 구청장 또는 직장·학교 등 법인·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제18조(보험가입)

- ① 구청장은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센터 및 단체는 등록·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일괄 자원봉사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게, 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실비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 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2.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② 자원봉사센터 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 5. 29.>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제4조(등록) ①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22. 4. 26.>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비영리민간단체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13., 2014. 11. 19., 2017. 7. 26., 2022. 4. 26.>

제4조의2(등록의 말소)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나 특별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6.>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나 특별시의 장은 지체 없이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하고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2. 4. 26.>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나 특별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6.>

[본조신설 2016. 5. 29.]

인천광역시 검단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보조금의 지원(제3조)
- 나. 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제5조)
- 다. 책무(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 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유총연맹조직”이란 한국자유총연맹 검단구지회와 그 회원 단체 (동분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자유총연맹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 검단구지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자유총연맹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 검단구지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유총연맹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경비
2. 자유총연맹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
3. 자유총연맹회원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경비
4. 자유총연맹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5. 그 밖의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비

② 사업별 세부내역은 별표와 같다.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자유총연맹조직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결과를 정산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구청장은 자유총연맹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조(책무) ① 자유총연맹조직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구”라 한다)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집행 시에는 구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에게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자유총연맹(이하 “총연맹”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이나 시설물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총연맹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4. 1.]

인천광역시 검단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안 제3조)

나. 보조금 신청 및 정산(안 제4조)

다. 국·공유시설의 사용(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검단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지원)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바르게살기사업의 추진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 교육 및 훈련 경비
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활성화 또는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국·공유시설의 사용) ①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에 따라 국·공유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사용 중인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에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국유시설·공유시설의 사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시설·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조금의 지원(안 제3조)

나.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 육성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 새마을지회와 그 산하조직(동·통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 및 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
3. 새마을회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
4. 그 밖에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사업별 세부내역은 별표와 같다.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 각 호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결과를 정산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새마을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8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포상)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새마을운동 조직 예산지원에 따른 사업별 세부내용(제3조 관련)

호	사업명	세부내용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 휴경기 경작을 통한 불우이웃 돕기 ○ 사랑의 집 고쳐주기 ○ 사랑의 김장나누기 ○ 사랑의 연탄나누기 ○ 다문화가정 송편빚기 ○ 다문화가정 전통혼례식 ○ 어르신여름챙기기(삼계탕 대접) ○ 청소년 농촌봉사활동

관계 법령 발췌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개인·법인 및 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운영 재원(財源)으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④ 새마을운동조직에는 출연금 또는 특정 목적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새마을운동조직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의 사용·관리 및 적립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검단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수당의 종류 및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여비 및 수당 지급의 제한(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시험수당 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의 종류는 출제수당, 채점수당, 문제선정심의수당, 문제편집·편찬수당, 시험감독수당, 면접·실기채점수당으로 구분하고, 수당에 대한 세부적기준액은 예산(당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범위안에서 정한다.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구 산하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체육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16조)
- 다. 위·수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7조~제2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 라. 기 타: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인천광역시 검단구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건립한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이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는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민간위탁”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조제1호를 말한다.

제3조(체육시설의 기능 및 위치)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기능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사용신청, 허가 등)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인천광역시 검

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성명·사용시설·사용목적·사용기간을 별지서식의 신청서에 명시하여 사용일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이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 신청기일을 줄일 수 있다.

③ 개인이 이용(연습사용, 체력단련 등)코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④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위해 체육분야의 강습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 우선순위)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를 따른다. 단,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은 타지역 주민보다 사용에 있어 우선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인천광역시체육회, 인천광역시 검단체육회,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대회 및 행사
3. 구 소속 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
4. 직장 및 일반동호인 등이 참여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

제6조 (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한다.

② 체육경기를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시설의 관리자는 장애인

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의 체육시설 사용에 있어 시설별로 일정비율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개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인천광역시 또는 구의 행사
2. 시설의 개수·보수 등 시행
3. 시설을 이용 할 때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 (사용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체육시설 사용자 및 관리에 피해를 주는 경우 입장을 거절 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감염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술에 만취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

5. 영리를 목적으로 상거래 행위를 한 사람

6.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제10조 (사용 시간 및 휴관일) ① 체육시설의 사용 시간 및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1. 체육시설의 이용 및 대관: 06:00~22:00

2. 강습 프로그램: 06:00~ 22:00

② 사용기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로 본다.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11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구청장은 제4조 및 별표 1의 사용자에게 별표 3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7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 결정 및 징수방법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 등을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체육시설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체육시설별 활용여건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주차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 및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및 경기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조례로 정하는 행사나 활동은 100분의 80을 감면한다.

③ 비영리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의 구성원은 100분의 30,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록장애인 및 노인은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6.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 ⑤ 수영장 이용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 가임기 여성은 생리적인 현상으로 매월 일정기간 동안 수영장 이용이 불가능함에 따라 수영장 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 ⑥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하여 그린카드로 사용료 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를 감면할 수 있다.
- ⑦ 인천 아이모아카드 소지자 또는 이와 동일한 자격을 갖추고 그 증빙서류를 지참한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 ⑧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로서 체육시설 감면증 소지자(전년도 실적 100시간 이상인 사람)에 한하여 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 ⑨ 중복 감면되는 경우에는 감면 비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13조(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에 따라 납부받은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해야 한다.

1.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가. 사용일 5일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 사용일수 해당금액]
공제 후 반환

2. 월 회비를 납부한 자가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가. 사용개시일 이전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 사용일수 해당금액]

공제 후 반환

3. 일일 사용의 경우 : 당일 사용 취소시 사용 개시 전 전액 반환, 개시 후 반환 없음
4. 납부된 사용료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반환
5. 체육시설 운영자의 귀책으로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2 반환 기준을 준용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 발생이 예고되거나 발생한 경우 전액 반환

제14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의 부대시설에 대한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하도록 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3. 구청장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설의 안전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때

2. 장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③ 전용사용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용자가 수거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손해배상 및 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행사 및 경기 등으로 발생한 사고는 그 행사를 주관하는 자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공동책임으로 한다.

제17조(운영 위탁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운영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구 공단, 체육 관련 단체 또는 민간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방법, 기간, 조건,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2회 이상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재 위탁하는 허가기간은 연장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민간위탁수탁자 선정기준) ① 민간위탁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

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민간위탁수탁자를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전문가 등을 포함한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1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의원, 체육 관계자 및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시기는 공개모집 공고 전까지 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게 필요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① 심사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② 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

되는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척할 수 있다.

③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 할 수 있다.

제21조(지원) 구청장은 제17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수탁자에 대한 권고) ① 수탁자는 지역사회 체육의 활성화 및 전문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21조에 따른 지원금 및 대여 받은 공유재산을 위탁받은 체육시설의 운영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 등을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구청장과 체결한 위탁계약서의 내용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위탁의 철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22조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 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접수번호	검단구 체육시설 사용 신청서				
사용시설					
행 사 명					
사용목적					
사용인원	명				
사용일시	20	년	월	일(요일)	: 부터
	20	년	월	일(요일)	: 까지
기타 요청사항					

위와 같이 검단구 체육시설 대관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 :
주 소 :
전 화 : 휴대폰 :
e-mail주소 :
성 명 : (인)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또는 대표 신분증 사본 1부)
※유의사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설의 안전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때
2. 장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검단구청장 귀하

[별표 1]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립 체육시설(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기 능
마전게이트볼장	인천광역시 검단구 완정로188번길 48(마전동)	- 게이트볼장, 다목적체육관
원당문화체육센터	인천광역시 검단구 고산후로121번길 31(원당동)	-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수영장
불로문화체육센터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로768번1길 3(불로동)	- 다목적체육관, 수영장, 작은도서관, 문화센터
원당게이트볼장	인천광역시 검단구 고산로40번2길 6(원당동)	- 게이트볼장

[별표 2]

인천광역시 검단구 체육시설 사용료(제11조관련)

(단위 : 원)

시설명	구 분			어린이	청소년	성인	비 고
- 원당·블로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사용료	1일 사용		2,000	3,000	5,000	○ 단체라 함은 동일 목적으로 20인 이상이고, 인솔자에 의해 인솔되며 동시에 사용하는 자를 말함. ○ 월회원이라 함은 1개월 단위로 입장하는 자를 말함. ○ 강습회원이라 함은 입회하여 주3회 이상 운영하는 1개월 코스를 수강하는 자를 말함. ○ 샤워장 사용료 포함
		단체		1,500	2,500	4,000	
		월회원		28,000	33,000	42,000	
		강습회원		38,000	44,000	52,000	
- 원당문화 체육센터	체 력 단련실	1일 사용		-	2,000	3,000	○ 강습회원이라 함은 입회하여 주3회 이상 운영하는 1개월 코스를 수강하는 자를 말함. ○ 샤워장 사용료 포함
		월회원			25,000	35,000	
- 원당·블로 문화체육센터	체육관 사용료			700	1,200	1,500	○ 1시간 기준
- 원당·블로 문화체육센터	수강료	체육프로그램	탁구등	30,000	35,000	40,000	○ 주5회(월~금) 운영의 1개월 강습 (1일 1회 1시간, 배드민턴은 1일 1회 2시간 기준) ○ 샤워장 사용료 포함
			배드민턴	33,000			
			에어로빅	33,000			
		문화프로그램		4,000 범위 내			○ 1시간 기준 4,000원 범위 내 ○ 재료비는 별도 본인부담 ○ 4주를 1개월로 봄
- 원당·블로 문화체육센터	대관료	체 육 관		80,000		○ 1회대관은 시행규칙 별표의 조기, 오전, 오후, 야간중 하나를 말하며, 초과사용료는 시간당 1회 사용료에 100분의 50을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 마전게이트 볼장		다목적체육관		5,000		○ 1일 2시간 기준	
비 고		○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물함사용료 월 5,000원 범위내, 열쇠분실 교체료 7,000원, 회원카드재발급수수료 1,000원의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다. ○ 사용료의 할증 및 할인 1) 토·일·공휴일은 사용료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할증할 수 있다. 2) 문화 및 체육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 특성상 수강료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조정가능 3) 2종목 이상 복합프로그램 사용료는 각 프로그램 사용료 합계금액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 4) 3개월이상 장기 이용자의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 5) 사용료의 중복할인은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 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① 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

...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사업, 이용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4조)
- 나. 사용허가 및 사용허가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다. 사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라. 사용료 징수·감면·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0조)
- 마. 시설대관의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바.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검단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복지회관(이하 "검단복지회관"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완정로 92번길 18(마전동)에 둔다.

제3조(사업) 검단복지회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주민의 사회참여 및 복리증진
2. 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도모
3. 주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교양교육
4.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강화
5. 주민의 체육증진 및 후생복지시설 운영
6. 그 밖에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이용대상) 검단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2.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3. 그 밖에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사용허가) ① 검단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다만, 교육수강, 수영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과 동시에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본다.

②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제6조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인천광역시 검단구 체육회 소속 종목별 단체에 한하여 우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시설 대관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대관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우선순위) 검단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이상 경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문화예술 및 체육 행사
2. 체육시설의 경우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7조(사용료) ① 검단복지회관의 사용료는 별표를 따른다. 다만, 2종 이상의 프로그램을 신청한 경우에는 20퍼센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시설 등(대강당, 세미나실, 체육관, 부속설비, 냉·난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교육수강료 및 수영장, 헬스장 입장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8조(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개인이나 단체의 영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다만, 「공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연은 제외)
4.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중지를 연 1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
5. 사용료 체납 및 연 2회 이상 회관 사용 취하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
6.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입장제한) 구청장은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술에 취한 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지닌 자
3. 검단복지회관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4.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자

제10조(사용료 징수) 제5조에 따라 검단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다.

1. 교육수강료, 수영장, 헬스장의 사용료는 신청과 동시에 징수
2. 사용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일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일부터 사용일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당일에 허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사용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료를 제2호의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한 번만 10일의 범위에서 고지서를 재발행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감면) ① 국가와 시 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② 비영리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별표 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수영장, 헬스장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이용료의 30퍼센트를, 등록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 및 다음 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④ 수영장 등록회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수영장 월 사용료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감면한다. 단,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면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 ⑤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하여 그린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 ⑥ 지역 소비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화폐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 ⑦ 인천 아이모아카드 소지자 또는 이와 동일한 자격을 갖추고 그 증빙서류를 지참한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 ⑧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로서 체육시설 감면증 소지자(전년도 실적 100시간 이상인 사람)에 한하여 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 ⑨ 중복 감면되는 경우에는 감면 비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가. 사용일 5일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 사용일수 해당금액] 공제 후 반환, 단 납부한 사용료를 초과하여 공제 불가

2. 월 회비를 납부한 자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가. 사용개시일 이전: 전액반환

나.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 사용일수 해당금액] 공제 후 반환, 단 납부한 사용료를 초과하여 공제 불가

3. 일일 사용의 경우 : 당일 사용 취소시 사용 개시 전 전액 반환, 개시 후 반환

없음

4. 체육시설 운영자의 귀책으로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2 반환 기준을 준용

② 체육시설 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반환한다.

1. 교육수강료의 경우 강의개시 전일까지 수강을 취소 요청한 경우 전액반환하고 강의 개시일 이후 취소 요청한 경우에는 당월까지의 수강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강료를 반환한다.

2. 체육시설 외 시설 등의 사용료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날이 사용예정일 7일 이전이면 납부된 사용료 전액을, 7일 미만이면 위약금 5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

③ 납부된 사용료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반환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 발생이 예고되거나 발생한 경우 전액 반환

제13조(관람료 징수 및 감면) ① 구청장은 공연을 관람하려는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연장의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1. 시설사용이 사용신청 및 허가내용과 반할 때

2.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때
3. 이 조례 또는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5. 제8조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때
6.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15조(시설대관의 범위) ① 검단복지회관의 시설 및 설비 중 대여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대강당, 세미나실, 체육관
2. 부속시설 : 피아노,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및 그 밖의 행사에 필요한 부속기와 냉·난방시설
- ② 구청장은 검단복지회관 자체의 교육일정 및 공연·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관할 수 있다.

제16조(검단복지회관의 임대) 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 ② 임대 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1조,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 ③ 제1항에 따라 임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7조(강사) ① 구청장은 검단복지회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 또는 초청하여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② 강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이라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강사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주의의무)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검단복지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관리) 구청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을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위탁관리에 관한 것 외에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검단복지회관 사용료(제7조와 관련)

1. 시설사용료

(단위 : 원)

구분 시설명	기준	사 용 료		비 고
		공연(영화)	행사	
가. 대강당	오전	30,000	45,000	○ 오전 (09:00~13:00) 오후 (13:00~18:00) 야간 (18:00~22:00) ○ 공연 및 행사연습을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 토요일 오후 및 야간, 공휴일은 당해 기준 사용료의 20%를 가산함 ○ 당초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한 경우, 1시간미만은 20%, 2시간미만은 50%, 2시간이상은 다음회의 100%를 추가징수 ○ 익일의 공연이나 행사준비를 위하여 22:00 이후 사용 시에는 야간사용료의 50%로 함.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의 하나를 말함
	오후	45,000	65,000	
	야간	70,000	90,000	
나. 세미나실	1회	30,000		
다. 체육관	1시간	2층	6,000	
		3층	4,000	
라. 다목적 체육관	1시간	6,000		

2. 부속설비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피 아 노		1대/1회	20,000	○ 조명연출을 필요로 하는 조명에 대해서만 조명료를 징수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함 ○ 공연 및 행사당일연습을 위한 사용시에는 사용료의 50%로 함
음향	마이크 (설비포함)	기본 3개 추가 1개당	10,000 3,000	
	W/L (설비포함)	1일 1개	20,000	
	PIN (설비포함)	1일 1개	30,000	
	MR (AR, BGM)	1회	10,000	
	빔프로젝트	1회	20,000	
조 명		1 시간	20,000	
공 바 톤		1일 1개	10,000	

3. 냉·난방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냉·난방 사용료	대강당	1시간	시설별 시간당 연료 (전기포함) 시가에 1 0%를 가산한 금액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 매시간 초과시 기준 요액의 20%를 가산한 금액
	세미나실	1시간		
	체육관	1시간		

4. 교육수강료

- 수강료 : 1시간 기준 4,000원 범위내(단, 교재비와 재료비는 별도)

5. 수영장, 헬스장 입장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성 인	중 · 고생	초등생이하	
수영	강습 (월이용)	개인	52,000	44,000	38,000	○ 단체라 함은 20인이상이 동일소속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자를 말함. ○ 월 회원이라 함은 1월을 단위로 입장하는 자를 말함 ○ 1일에 1회만 출입하는 기준 금액임.
	자유이용 (월이용)	개인	42,000	33,000	28,000	
	1일이용	개인	5,000	3,000	2,000	
		단체	4,000	2,500	1,500	
헬스	월이용	개인	30,000	20,000		
	1일이용	개인	4,000	2,000		

【 비 고 】

-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물함사용료 월5,000원 범위내, 열쇠분실 교체료 7,000원, 회원카드재발급수수료 추가비용을 실비로 받을 수 있다.

○ 사용료의 할증

- 1) 토·일·공휴일은 사용료의 100분의 30범위 안에서 할증할 수 있다.
- 2) 특화 프로그램은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사용료 별표 제5호의 수영장, 헬스장 입장료 조항에도 불구하고 특성에 따라 강습료를 별도 산정하여 받을 수 있다.

관계 법령 발췌

□ 공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6., 2022. 1. 18., 2023. 8. 8., 2023. 10. 31.>

1.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뮤지컬·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 판매나 선전에 따르는 공연은 제외한다.

제8조(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의 육성을 위하여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에 따라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방역 및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종류, 이용자의 연령 등 체육시설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하게 체육시설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 3., 2021. 5. 18.>

④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 3., 2021. 5. 18.>

[제목개정 2015. 2. 3.]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나.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다.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라.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 마. 문화·예술 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2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시책과 장려)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대상사업 및 보조금 지원)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지원
2.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간 문화예술 교류
3. 각종 문화예술인협회 및 문화예술단체 등 지원·육성
4. 축제 및 그 밖에 지역주민 문화복지 증진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제6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 구청장은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공연장·전시장 등의 문화예술 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및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16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한다.

1. 공동주택 (다만, 1,0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제외)
2. 업무시설
3. 숙박시설
4. 판매시설
5. 위락시설

제7조(미술작품 설치에 관한 통보 등) ① 구청장은 영 제12조제1항조에 따라 미술작품 설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허가, 협의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건축주에게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의 설치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주는 구청장에게 착공 후 90일 이내에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별지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미술작품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접수한 미술작품설치계획서를 인천광역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미술작품 설치 확인 및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미술작품이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 별지 제7호서식의 미술작품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하여 2년마다 정기조사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구민축제 개최)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체성 확립과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구민축제(이하 "축제"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축제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구민의 의견을 결집하고 민간주도의 행사개최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축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축제위원회의 기능) 축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축제와 관련된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2. 구의 이미지 부각과 지역축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3. 전 구민의 참여확대를 통한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 고취에 관한 사항
4. 축제 명칭과 그 내용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축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항

제12조(축제위원회의 구성 등) ① 축제위원회는 축제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구 문화예술 담당 부서 국장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과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과 일시, 장소 등을 서면 또는 구두로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그 밖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4. 축제위원회에서 해촉을 의결할 때

제18조(간사,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담당과장이,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와 관련된 사무를 총괄하며 대외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하며 대내적인 사무를 담당한다.

제19조(고문 및 자문위원의 위촉 등) ① 구청장은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축제운영의 대표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축제위원회의 승낙을 받은 지역의 대표인사와 축제전문가를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인천광역시 검단구 문화원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축제위원회는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전체회의 또는 개별적으로 고문과 자문위원들에게 축제에 관한 의견을 들어 축제 내용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20조(분과위원회) ① 구청장은 축제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결정사항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축제의 종류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축제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제19조제1항의 고문 및

자문위원을 분과위원회에 추가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선출하되,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⑤ 제14조의 규정은 분과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분과위원회”,“위원장”은“분과위원장”으로 본다.

⑥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분과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20조(사업비의 보조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축제위원회의 운영과 축제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축제위원회의 운영과 축제행사 관련 예산 집행사항을 지도·감독한다.

제2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2조(사업계획서 제출 등) ① 축제위원회는 매년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축제 개최 2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축제위원회는 축제 종료 후 사업정산보고서를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축제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개선·보완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축제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23조(협조) 구청장은 축제위원회에서 축제와 관련하여 인력 등 행사진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생활문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행일 2022. 7. 19.]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21. 6. 22.>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4.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19.>

1. 국가 및 시·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군·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도위원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

1. 직종·직급·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2. 관리직 남녀 비율 현황

3. 남녀 직원 근속연수 현황

4. 승진 대상자 중 남녀의 승진 비율

5. 남녀 관리직에 대한 연도별 임용 목표 및 달성 시기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2026. 7. 1. 검단구 출범으로 인해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문화원의 지원·육성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보조금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지방문화원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예산법무과[예산팀 협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경유],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지방문화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지방문화원에 대한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육성 대상 문화원) 지원 및 육성대상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의 인가를 받고,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보조금 지원)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 ② 문화원의 운영비는 문화원 자체 수입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연구·조사·문화행사 위탁) 구청장은 지역문화의 개발과 진흥, 발전 등에 관련된 연구·조사와 문화행사 개최 등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협조 등) 구청장은 문화원으로부터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 협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사업계획서 제출) 문화원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문화원 사무의 검사·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 목적 사용 여부 및 집행상황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문화원에 대하여 관계 장부 열람과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장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도·감독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회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관계규정의 적용)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문화원진흥 관계법령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지방문화원의 설립) ① 지방문화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지방문화원은 특별자치시·시·군 또는 자치구의 행정구역을 그 사업구역으로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하려면 미리 그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 기준) ① 시·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인가할 수 있다.

1. 회비 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제8조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거나 갖추 능력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시설) ①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명위원회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의 2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기능,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7조)

나.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운영, 지명 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다. 의견청취 및 수당과 회의록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명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명위원회(이하 “지명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관할 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주요 사항

제3조(구성)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2항에 따라 두는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지명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명 업무 관련 공무원
2.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지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지명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4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명위원회에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지명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

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명위원회를 대표하고, 지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지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지명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전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 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지명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지명의 조사) ① 제2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지 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 상에 위치한 지면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 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지명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검단구”라 한다)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지명위원회에 출석하는 검단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지명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국가지명위원회 등의 설치) ① 지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3. 2
 3., 2020. 2. 18., 2022. 6. 10.>

1. 지명의 제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지명 관련 법령, 제도 및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할 지역의 지명의 제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 지명위원회를
 두고,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군·구 지명위원
 회를 둔다. <개정 2022. 6. 10.>

③ 국가지명위원회, 시·도 지명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9. 12. 10., 2022. 6. 10.>

④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고, 시·도 지명위원회와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한다. <개정 2019. 12. 10., 2022. 6. 10.>

제91조의2(지명의 결정) ① 시·군·구의 지명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시·군·구 지명위원
 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시·도 지명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지명에 관

한 사항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시·도 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는 대한민국의 영토의 경계와 관련된 지명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지명을 결정(제91조의3에 따라 재심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명결정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지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지명을 제91조의3에 따른 재심의 청구 기간이 도과된 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조에 따른 재심의 청구·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명의 결정·통보 및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3(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 ① 제91조의2에 따라 결정된 지명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91조의2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각각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재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심의를 한 사건에 대해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시 재심의를 청구할 수 없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1조의2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결정한 지명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명결정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은 제91조의2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를 재심의를 청구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재심의 절차를 거쳐 지명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지명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의 절차·방법 및 결과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2(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 9. 19.>

1. 시·군·구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할 것
2.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할 것
 3.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할 것
 4.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사유를 정할 것
 5.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제8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국가지명위원회, 시·도 지명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이하 “지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지명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0조(회의) ① 위원장은 지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지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1조(간사) ① 지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고, 시·도 지명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에는 각각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1. 2. 9.>

② 국가지명위원회의 간사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고, 시·도 지명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각각 임명한다. <개정 2021. 2. 9., 2022. 1. 18.>

제92조(수당 등) ① 국가지명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제93조에 따라 출석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도 지명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4조(회의록) 지명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생활문화 진흥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5조)

나.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다. 생활문화협의회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4조)

라. 생활문화시설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생활문화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에 따라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차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 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동아리”란 생활문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3. “생활문화단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의 예술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구성된 생활문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4. “생활문화시설”이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천광역시 검단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구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소속되거나 거주지를 두고 있는 주민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문화 진흥 주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업예산의 규모와 확보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 문화예술단체, 동호회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 등 시설 지원
2. 동호회 상호간의 네트워크 촉진 사업
3. 문화예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 인력 지원
4. 동호회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이나 공공시설(학교 등)의 운영자가 주민문화예술단체, 동호회에 활동공간을 제공할 경우 구청장은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우수자 등 표창) ① 구청장은 해마다 생활문화 진흥에 기여한 지원대상자(이하 “우수자 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할 수 있다.

1. 관련 주요 대회에서 입상한 경우
2. 국내·외에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위상을 선양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유공자로 인정한 경우

- ② 구청장은 우수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문화 비용의 일부를 우선 지원하거나 그 시설의 사용에 있어 우선할 수 있다.

제9조(설치) 구청장은 생활문화 진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생활문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지원
2. 사업의 평가·연구 및 보고
3. 생활문화 동호회 활동을 위한 시설 운영
4. 동호회 네트워크 운영 및 사회공헌 기회 제공
5.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의원 1명
2. 인천광역시 검단구 문화 관련 업무담당 국장
3. 문화예술단체장 1명
4. 생활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 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생활문화 진흥을 담당하는 부서장이 한다.

제12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 ① 협의회 위원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회의) ① 협의회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협의회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 보존하고 작성된 회의록의 내용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설치) ① 구청장은 주민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의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생활문화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명칭은 지역명(○○)생활문화센터로 한다

2. 위치는 지역별로 필요에 따라 조성

② 구청장은 생활문화시설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등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생활문화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기능)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의 학습, 연습 공간 제공
2. 그 밖의 회의·전시·공연 등을 위한 소통 공간

제18조(이용) ① 제16조의 생활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 등은 구청장에게 사용 신청을 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한다.

② 구청장이 사용 승인한 때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사용제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문화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 보호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그 밖의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의 취소 또는 정지로 인한 사용자의 손실에 대하여는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생활문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행일 2022. 7. 19.]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21. 6. 22.>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4.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19.>

1. 국가 및 시·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군·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도위원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

1. 직종·직급·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2. 관리직 남녀 비율 현황

3. 남녀 직원 근속연수 현황

4. 승진 대상자 중 남녀의 승진 비율

5. 남녀 관리직에 대한 연도별 임용 목표 및 달성 시기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체육시설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사업의 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마.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 라. 기 타: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체육시설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내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을 갖추지 못한 공공체육시설에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을 설치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와 체육시설 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이란 장애인이 보호자로부터 탈의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이 보호자와 함께 출입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체육시설”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장애인과 보호자가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을 이용함에 있어 쾌적하고 편리함과 동시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하고 이를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신규취득 시설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동반 탈의실 설치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 및 지원 계획을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체육시설별 장애인 동반 탈의실 설치 계획

2. 예산 확보 및 지원 계획

3. 신규취득 예정 시설에 대한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의 점검)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사업 추진 현황 및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현황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장애인 복지법

제13조(편의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등 이용편의를 위하여 한국수어 통역 · 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28조(문화환경 정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 체육 활동 및 관광활동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 등을 지원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책무 및 계획 수립(안 제3조~제4조)
- 다.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 및 사무 위탁(안 제5조~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문화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청년의 새로운 문화 창출과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문화예술인”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년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 문화예술 단체”란 청년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설립한 단체(정치, 종교 등의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청년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관련 청년 예술인 또는 청년단체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이나 청년단체, 동호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 제5조의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청년 문화예술 발굴·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청년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조성에 관한 사항
4.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청년 문화예술 관련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고, 관계기관 등에 청년 문화예술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문화예술인이나 청년 문화예술 단체의 기획·창작·교육·공연·홍보 활동 재정 지원
2. 청년 문화예술인이나 청년 문화예술 단체의 기획·창작 공간과 공연·전시 공간 등 문화공간의 확보 및 조성 지원
3. 청년 문화예술인이나 청년 문화예술 단체의 기획·창작 활동 컨설팅 및 모니터링 지원
4. 청년 문화예술인이나 청년 문화예술 단체의 국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 지원

5.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지원
 6. 청년 문화예술 기획 등 청년 문화예술 관련 교육 지원
 7. 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교류 활동 및 지역 문화예술공동체 활성화 지원
 8. 청년 문화예술인의 자립기반 구축 지원
 9. 재난 위기 시 청년 문화예술인이나 청년 문화예술 단체의 구호와 활동 안
전망 구축 지원
 10.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6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 문화예술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17., 2013. 7. 16., 2016. 12. 20., 2018. 6. 12., 2020. 12. 22., 2021. 12. 7., 2022. 9. 27.>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라. 「문학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학관

마.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소외계층이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거나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② 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7.>

제39조(국고보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2. 문화예술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
3.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4.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5.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7. “문화지구”란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의 육성, 특성화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또는 문화자원과 문화적 특성의 보존을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8. “지역문화전문인력”이란 지역문화의 기획·개발·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7조(생활문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나. 위원회 임기 및 의장 등의 임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다. 회의 및 조직구성, 위원회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국민체육진흥법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인천광역시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체육진흥협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검단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의 확보 및 활용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인천광역시 검단구체육회장(이하 “검단구체육회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검단구체육회장이 된다.

③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서 체육전문직 인사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위촉위원은 민간체육인사 1명, 경제계 인사 2명 및 관내 학교장 2명을 포함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장등의 임무) ① 의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의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등)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체육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①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노래연습장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9조)
- 다. 교육이수자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 라. 기 타: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으며, 교육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비대면 온라인 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교육교재)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3.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교육실시 방법) 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구청장이 제3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구청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불참자 통지)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결과 자료 요청)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교육 실시 결과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 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1., 2020. 2. 18.>

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
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3. 8. 8.>

②이 법의 규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협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3. 8. 8.>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권한의 위탁)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업무를 콘텐츠진흥원, 「문화산업

진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08. 2. 29.>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등(제1조~제2조)

나. 지원 및 범위, 지원 신청 및 교부(제3조~제4조)

다. 지도·감독 및 환수(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 및 범위)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스포츠클럽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립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을 교부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충실한 검토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신청하거나 교부하는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은 해당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사업 실적보고서 및 사용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스포츠클럽 지원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게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점검하고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증빙 자료를 포함한 요구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인정된 때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요구를 하고,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환수)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도·감독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

의 예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스포츠클럽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시책을 수립하고 스포츠클럽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스포츠클럽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체육진흥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전문체육·생활체육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검단구체육회 지원 및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라. 기 타: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체육진흥을 도모하여 국민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4. “선수”란 경기단체에서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5. “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말한다.
6.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7.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전문체육의 진흥 및 지원)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지원 및 유지관리

4. 전문체육 관련 대회·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지원

6.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생활체육의 진흥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및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민의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 전개

2. 생활체육대회·행사의 개최 및 국제교류

3. 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과 지원

4.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

6. 체육동호인조직의 전국 및 인천광역시 대회 출전 경비

7.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

8. 수상레저 활성화 사업

9.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검단구체육회를 통하여 검단구체육회 회원단체인 구종목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검단구체육회 지원)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검단구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건비
2.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② 제1항의 상근직원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검단구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인건비·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경우,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44조에 따라 검단구체육회에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및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부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자 징계 요구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정산검사) ① 구청장은 체육진흥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향후 1년간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8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지방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① 체육진흥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 받는 체육단체 등이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
2.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체육단체 예산지원에 따른 사업별 세부내용 (제4조, 제5조 관련)

호	사 업 명	세부내용	비 고
제4조제1항제2호	생활체육대회·행사의 개최	○ 구청장기(배) 종목별 대회 ○ 정서진·아라뱃길 마라톤대회 ○ 구민화합체육대회 ○ 시민생활체육대회 ○ 검단구체육인 체육대회	
제4조제1항제9호	수상레저 활성화 사업	○ 카누체험 교실 운영	
제5조제1항제2호	검단구체육회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	○ 검단구체육회 운영보조 ○ 검단구체육회 차량유지비 지원 ○ 검단구체육회 운영물품 구입 지원 ○ 검단구체육회 워크숍	

관계 법령 발췌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하여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터,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20. 2. 4., 2020. 12. 8.>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12. 8., 2022. 2. 3.>

[전문개정 2016. 2. 3.]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책무 및 계획 수립(안 제3조~제4조)
- 다.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 및 사무 위탁(안 제5조~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인천광역시 검단구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3. “장애인문화예술단체”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조직한 관내에 소재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권장·보호·육성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문화예술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및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적절한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2. 장애문화예술인 공연·전시·창작 등의 활동 지원
3. 역량 있는 우수 장애문화예술인 또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 발굴 및 육성 지원
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6조(위탁)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7.>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공연·전시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6. 20.>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사업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0.>

④ 제2항에 따른 공연·전시 등의 실시 주기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6. 20.>

[본조신설 2008. 1. 17.]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17., 2013. 7. 16., 2016. 12. 20., 2018. 6. 12., 2020. 12. 22., 2021. 12. 7., 2022. 9. 27.>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

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관시설

라. 「문학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학관

마.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소외계층이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거나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② 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7.>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

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5. 27., 2015. 6. 22., 2017. 2. 8.>

② 삭제 <2017. 2. 8.>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2. 8., 2017. 12. 19.>

④ 삭제 <2024. 1. 9.>

- ⑤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2015. 6. 22., 2015. 12. 29., 2017. 12. 19.>
- ⑦ 삭제 <2021. 7. 27.>
- ⑧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24. 2. 13.>
- ⑨ 제1항, 제3항, 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등록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2. 13.>

인천광역시 검단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예술인 복지증진 책무 및 계획 수립(안 제3조~제4조)
- 다.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및 심의위원회(안 제5조~제9조)
- 라. 예술인 복지증진 지원 및 실태조사(안 제10조~제1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술인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① 구청장은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심의위원회) 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

광역시 검단구 예술인 복지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제4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

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

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술인담당으로 한다.

제11조(창작공간 지원)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을 위한 기관·단체 및 3년 이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혹은 전부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계속하여 예술 활동을 한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가. 이 조례의 시행일 이후 인천광역시 검단구

나. 이 조례의 시행일 이전

제13조(문화예술활동 후원)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근로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3., 2023. 3. 21., 2023. 8. 8.>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2의2. “예술 활동 증명 예술인”이란 예술인 중 제3조의2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한 사람을 말한다.
3. “문화예술용역”이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용역을 말한다.
4.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란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6. 2. 3.]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등(제1조~제2조)

나. 장애인체육 진흥의 책무 및 장애인체육 동호회(제3조~제4조)

다. 경비의 지원(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28조, 제29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 활동을 장려·보호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등록된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 2.“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 3.“장애인체육 동호회”란 장애인들이 장애인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구내 장애인의 모임을 말한다.
- 4.“장애인체육 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를 말한다.
- 5.“장애인 우수선수”란 국내 전국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자(단체경기에서 입상한 경우에는 그 단체경기에 참가한 각 선수를 말한다) 또는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를 제외한다)에 파견된 자로서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 6.“장애인체육 지도자”란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체육활동에 참여

하여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7.“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장애인체육 진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장애인체육 단체,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체육 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공공 체육시설의 이용여건 마련
4.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외 교류
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규정된 사업을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다.

제4조(장애인체육 동호회) ①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시 구성 회원의 수는 장애인 10명 이상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

② 장애인체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5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 규정된 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제28조(문화환경 정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 체육 활동 및 관광활동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복지 연구 등의 진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평가 및 장애인 체육활동 등 장애인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관리책임 등 공유재산 총칙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12조)

나.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8조)

다.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사용허가(대부) 및 매각에 관한 사항(안 제19조~제41조)

라. 청사관리 및 공유재산 변상금 등에 관한 사항(안 제42조~제6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라. 기 타: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유재산심의회의(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공무원 부위원장, 민간위원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단, 민간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

간으로 한다)

제4조(심의회 운영)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할 수 있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유재산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③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위·해촉) ① 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교수 또는 조교수 이상
2. 해당 분야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하는 경우
3. 심의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의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회피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심의안건과 관련있는 이해당사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

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3.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3.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4. 제26조에 따른 행정재산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공유재산에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 1억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제8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별지 서식과 같이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등) ① 구청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회계연도별 결산서로 구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

서의 양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 계획

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1조(재산의 집산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산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2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구청장이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 예산의결 전까지 구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의 의결하기 전까지 구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은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 10억원 이상

2. 공유재산의 다음 각 목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 면적

가.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 이상

나.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 이상

제15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4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재산에 한하여야 하며, 토지는 유상사용 허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9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를 따르며,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3장 행정재산

제20조(관리)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 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2조(사용허가)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른 국제기구의 범위는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수의계약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 행정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다.

1.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구청장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자에게 사용허가 하는 경우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에 사용허가 하는 경우

가.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국제기구

나.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3. 영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써 구금고로 지정된 은행에 대하여 사용허가하는 경우

제24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5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 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 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轉貸)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입찰로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구에서 직접 시행한다.

제26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수행 실적 및 관리능력의 평가를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조직, 정원,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전년도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내역서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②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여부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운영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 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제27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9조부터 제42조까지를 준용한다.

제4장 일반재산

제1절 대부

제28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9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게을리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30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32조제3항,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준용한다.

제31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30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 투자기업 등”이라 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구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 지역의 공유재산
5. 구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32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다음 각 항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과 일치하지 않은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 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전용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구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 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기준에 적합한 지

역으로서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할 때

6. 구청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창업가가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7.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마을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8.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제33조(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한다.

제34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32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 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 채취료는 2명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제3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건물 및 부지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

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

1.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text{사용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text{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 \times \frac{\text{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text{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text{사용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 면적} \\ (\text{전용·공용면적 합계}) \\ \text{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times \frac{\text{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text{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④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6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에 따른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

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② 영 제17조제7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영 제17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사용료의 100분의 30
2. 영 제17조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영 제17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③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구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다만,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하지 않는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가. 영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나. 영 제29조 제1항제20호,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익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3. 제21조의2제1호에 따라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를 위해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료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라 8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37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구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38조(수의계약으로 대부계약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또는 검단구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된 생산시설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② 영 제29조제1항제28호의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란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맞닿은 사유지의 소유자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대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9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그 해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부분에 대해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40조(대부료등의 납부기한)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제41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년, 월, 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2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2절 매각

제43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5. 구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②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3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
 2. 구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구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구가 조성한 농공단지, 구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그 밖의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때
- ③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4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구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경우 국가산업 단지 내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 재산
3. 구청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구청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제45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 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에서 일

팔 매각을 할 수 있다.

2.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광역시·도의 시·군 및 세종시의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4.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 토지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5.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6.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7.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8.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써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명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② 영 제38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기업을 검단구로 이전하거나 설립하도록 유치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6항에 의한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경우

제5장 공유임야 관리

제46조(공유임야 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립하여 지방 재정 확충에 이바지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7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6장 청사관리

제48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구·사업소 청사 신축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피위험·신설기관 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49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50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 기구, 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 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51조(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2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 하여야 한다.

제7장 관사관리

제53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구청장·부구청장 또는 그 밖의 소속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4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 구청장 관사
2. 2급 관사 : 부구청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 : 시설관리사·그 밖의 관사 등

제55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구청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6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7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제58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9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정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
3. 보일러 운영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
4. 응접세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
5. 전기요금(1급·2급 관사에 한한다)
6. 전화요금(1급·2급 관사에 한한다)
7. 수도요금(1급·2급 관사에 한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

제60조(사용료의 면제) 제53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임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61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

로 비치하고 제59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62조(인계 인수 등) ① 제58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3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4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은 제54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보칙

제65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의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6조(변상금 징수의 유예) ① 영 제8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 이내로 징수를 미룰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부의무자의 성명과 주소
2. 납부할 변상금의 부과연도, 금액, 납부기한
3. 유예신청 사유와 기간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상금 징수에 대한 유예결정을 하였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납부할 변상금의 부과연도, 금액, 납부기한
2. 징수유예기간

제67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50만원 초과: 6개월 2회 이내 분납
2. 100만원 초과: 1년 4회 이내 분납
3. 200만원 초과: 2년 8회 이내 분납
4. 300만원 초과: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8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의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 이
전등기를 한 재산

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공유재산은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
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69조(합필의 신청)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0조(공유토지의 분필)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
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
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
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여 이를 위한 평가
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 의뢰
한다.

제7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공유재산관리대장 (9-1)

CODE NO :

(토 지)

회 계 명 :

관리자 :	구분	대분류	부속재산	작성일자	부속서류	구분	색인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지적	취득시 : m ²	용도	연혁	현황및상태	유지관리비추가상황		
	현재 : m ²				년도	내용	금액
토지							
등급							
농지							
등급							

인근지과세표준시가							수익상황	권리취득상황		권리변동상황	
년월일	지목	면적	거래시가	임대시가	시가표준액	조사자					
								취득년월일		년월일	
								취득원인		상대방	
								취득금액		변동사항	
								전소유자		관리청	
								등기년월일		가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고	

자산재평가

년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증감 이동상황

년월일	증감사유	증감내용	증액		감액		현재액		등기		기록	대조	비고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대부 및 사용상황

년월일	임대자주소	성명	대부내용	대부목적	계약년월일	대부기간	대부료	기록	대조	비고

공유재산관리대장(9-2)

CODE NO :				(건 물)				작성 자		확 인	
회 계 명 :											
관리자 :	구	대분류		부		부	구 분		색 인		
		중분류			속		등 기 부 등 본				
		소분류					건물관리대장등본				
		세분류					서	배 치 도			
소재지 :	분			산		류					

연 면 적	취득시 : m ²		용 도	연 혁	현황및상태	유지관리비 투자상황		
	현 재 : m ²					년 도	내 용	금 액
건축년월일	년 월 일							
건축 가격	원							
구 조	구성재료							
	지급종류							
	종 수	단 면적						

임 대 상 황		권리취득상황		권리변동상황		수익상황	비 고
소 유 자		취득년월일		년 월 일			
수 량		취득원인		상 대 방			
임대연월일		취득금액		변동사항			
임대기간		전소유자		관 리 청			
		등기년월일		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자산재평가

년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증감 이동상황

년월일	증감사유	증감내용	증 액		감 액		현재액		등 기		기록	대조	비고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대부 및 사용상황

년월일	임대자주소	성 명	대부내용	대부목적	계약년월일	대부기간	대부료	기록	대조	비고

공유재산관리대장(9-3)

CODE NO :

(공 작 물)

회 계 명 :

관리자 :	구분	대분류	부속 및 주 재 산	작성 자 부 속 서 류	구분	확 인	색 인
		중분류				등기부등본	
		소분류				배치도	
		세분류				평면도	
소재지 :							

명칭	구조형식	수량	용도	연혁	현황및상태	유지관리비 투자상황		
						년도	내용	금액

임대상황		권리취득상황		권리변동상황		수익상황	비고
소유자		취득년월일		년월일			
수량		취득원인		상대방			
임대연월일		취득금액		변동사항			
임대기간		전소유자		관리청			
		등기년월일		가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자산재평가

년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증감 이동상황

년월일	증감사유	증감내용	증액		감액		현재액		등기		기록	대조	비고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대부 및 사용상황

년월일	임대지주소	성명	대부내용	대부목적	계약년월일	대부기간	대부료	기록	대조	비고

공유재산관리대장(9-4)

CODE NO :

(임 목 족)

회 계 명 :

관리자 :	구분	대분류		주채산	부속서류	작성 자		확 인	
		중분류				구분	색인		
		소분류				등기부등본			
		세분류				배치도			
소재지 :						평면도			

수종		용도	연혁	현황 및 상태	관리비투자상황
본 수	(본)주				
식재 상황	년월일				
	본 수				
	면 적				
	식재자				

임대상황		권리취득상황		권리변동상황		수익상황	비 고
소 유 자		취득연일일		연 월 일			
수 량		취득원인		상 대 방			
		취득금액					
임대년월일		전소유자		변동사항			
임대기간		등기년월일		관 리 청			
		등기번호					
		등기목적		가 액			

증감 이동상황

년월일	증감사유	증감내용	증 액		감 액		현재액		등 기		기록	대조	비고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자산재평가

년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공유재산관리대장(9-5)

CODE NO :

(선 박)

회 계 명 :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	구 분	대분류	부 속 서 류	구 분	색 인	비 고	확 인
		중분류		등기부등본			
		소분류		배 치 도			
		세분류		평 면 도			

주요설비및속구	용 도		깊 이	m	항해구역	
명 칭	개 수	선 적 항	넓 이	m	최대탑승인원	
		등 록 년 월 일	깊 이	m	착 수 연 월 일	
		등록번호	속 력		준 공 연 월 일	
		신호부자	주기외형		제 조 자	
		신체자료	정격출력		총 톤 수	

유지관리비투자상황			권리취득상황		권리변동상황		비 고
년 도	내 용	금 액	취득년월일		년 월 일		
			취득원인		상 대 방		
			취득금액		변동사항		
			전소유자		관 리 청		
			등기년월일		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증감 이동상황

년월일	증감사유	증감내용	증 액		감 액		현재액		등 기		기록	대조	비고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자산재평가

년월일	재 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공유재산관리대장(9-6)

Code No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				작성 자		확 인		
회계명 :										
종 류						부 속 서 류				
재 산	소재지		지 목							
	면 적	m ²	가 액							
사 용 자	주 소					사 용 목 적				
	성 명		전 화 번 호							
사용기간		부터 까지	갱 신 기 간							
사 용 료		유 상		무 상						
증 감 이 동 상 황	년 월 일	적 요 (증감사유)	증		감		현 재		기록	대조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기타										

공유재산관리대장(9-7)

Code No

(특허권·기타권리)

회 계 명 : 명 칭 :

작성
자확
인

재 산 관 리 관			연월일	방법	금액	소유자	부 속 서 류		연	
중 목		취 득							혁	
등 록 번 호										
증 감 이 동 상 황	년월일	문서 대호	증 감 사 유	증 가		감 소		현재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자 산 재평가	년월일	재평 가액	재평가 차 액	과 표 또는 평 가 액		평가자	기 록	대조	비 고	
대부및 사 용 상 황	년월일	차수자 주소	성 명	내용	대부 기간	대부료	기록	대조	비고	
비 고										

공유재산관리대장(9-8)

Code No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

회 계 명 :

작성 자		확 인	
명 칭			
주 소			
사업내용			
자 본 금			
설립년월일			
비고 (출자 재원등)	기 록	대 조	

주 식 등 종 류					법 인				
1 주 당 액면금액				총지분 금 액					
보관기관				재 산 관리관					
출 자 연 혁	년월일	금 액		변 동 사 유					
년 월 일	적 요 (증감 사유)	증		감		현 재			
		수량	납입 금액	수량	납입 금액	수량	납입 금액		

공유재산관리대장(9-9)

Code No

(부동산신탁수익권)

작성
자확
인

회 계 명

:

신탁종류		수 탁 자	법 인 명			
재 산 관 리 관			대 표 자			
신 탁 계약기간	부터 까지		주 소			
신 탁 계산시기			전화번호			
신 탁 의 목 적						
신탁기간	소 재 지		지 목	수 량	가 격	비 고

2면

증 감 이 동 상 황	년월일	적 요 (증감사유)	증		감		현 재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기 타								

[별표]

청사.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기준(제50조 관련)**1. 본청****가.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단위 : m²)

구 분 기관별	기관장실	부기관장실	실.국장실	실.과장실	담당 또는 계장	직 원
구 본 청	99	38.88	38.88	17.92	7.65	7.2
동 청 사	23	14.80	-	-	7.65	7.2

나. 부속공간 면적(단위 : m²)

실 명		설 계 기 준					비 고
회 의 실 (사용인원)		24명 미만	25~49명	50~99명	100~149명	150~199명	200명이상시 면적 = 0.8㎡×사용인원
		4~2.4㎡/인	2.6~1.5㎡/인	2~1.2㎡/인	1.6~1㎡/인	1.2~0.9㎡/인	
상황실	구	2.64 × (과장급 이상 수 + 동장 수)					
서비스 및 동선 부분	화 장 실	100명 미만	100명~200명		200명 이상		
		0.43㎡ / 인	0.40㎡ / 인		0.33㎡ / 인		
	엘리베이터	(12.87~19.6㎡) × 대수					
식 당		1.63㎡ × 공무원 수 × 0.3					
휴 게 실		2.0㎡ × 공무원 수 × 0.15					
민 원 실		{(6.55㎡×민원담당공무원 수)×1.1} + {(0.13㎡~0.2㎡×민원인 수×0.5)}					민원인 공간확장 가능
숙 직 실	1인	2~3인		4인 이상			
	15.12㎡ / 인	11.52㎡ / 인		8.64㎡ / 인			
자 료 실		(0.3~0.4㎡) × 공무원수					
창 고		0.72㎡/인 ~ 0.85㎡/인					
전 산 실		9.79㎡ × 담당직원 수 × 1.2					
민방위대피시설		개소당 660㎡ 이상					평시 충무시설로 이용

다. 설비관계 면적

(단위 : m²)

실 명		설 계 기 준					
공조 기계실	연 면 적	~3,000	3,000~7,500	7,500~13,000	13,000~18,000	18,000~23,000	23,000~
	연면적대(%)	4.5~7.0	4.0~6.0	3.5~4.5	3.0~4.0	2.5~3.5	2.3~2.8
층장비실	사무공간	500m ²		800m ²		1,000m ²	
	층장비실	6.6m ²		8.4m ²		10.2m ²	
주장비실	사무공간	~1,000	1,000~4,000	4,000~8,000	8,000~12,000	12,000~16,000	
	주장비실	14	37	74	111	149	
	사무공간	16,000~20,000	20,000~24,000	24,000~28,000	28,000~32,000		
	주장비실	186	223	260	297		

라. 공용면적: [(직무면적+부속공간면적+설비관계면적) x 30 ~ 40%]

2. 의회 청사

(단위 : m²)

구 분		실 명	면 적 기 준	비 고	
의 원 실	a	의 장 실	집행기관장실 면적 준용		
		부의장실	집행기관 부기관장실 면적 준용		
		위원장실	집행기관 실·국장실, 실·과장실 면적 준용	구 위원회 수 : 3개	
회 의 실	b	본회의장	의원 수 × 5 + 방청객 수* × 1.5㎡이상		
		회 의 실	의원 수 × 3.3㎡	면적범위내에서 적정한 규모로 분할	
		위원회실	의원 수 × 8.2㎡	위원회 수 : 3개	
부 속 공 간	c	사무국장실	38.88 ~ 64.0㎡		
		사 무 실	직원 수 × 7.2㎡		
		자료실 및 도서실	198 ~ 297㎡		
		대기실	의 원	의원 수 × 2.5㎡	
			기 자	50㎡	
			운전기사	운전기사 수 × 1.8㎡	
	d	휴게실	의 원	의원 수 × 2㎡	
			직 원	직원 수 × 2㎡	
			방청객	방청객 수* × 2㎡	
		당 직 실	2인실 기준 15㎡		
		화 장 실	시 : 45~47㎡ 군 : 36~77㎡ 구 : 44~46㎡		
		기 타	예비실(50㎡)을 1개소이상 확보	창고 / 예비실 등	
연계공간		로비·복도·계단	(a + b + c) × 30~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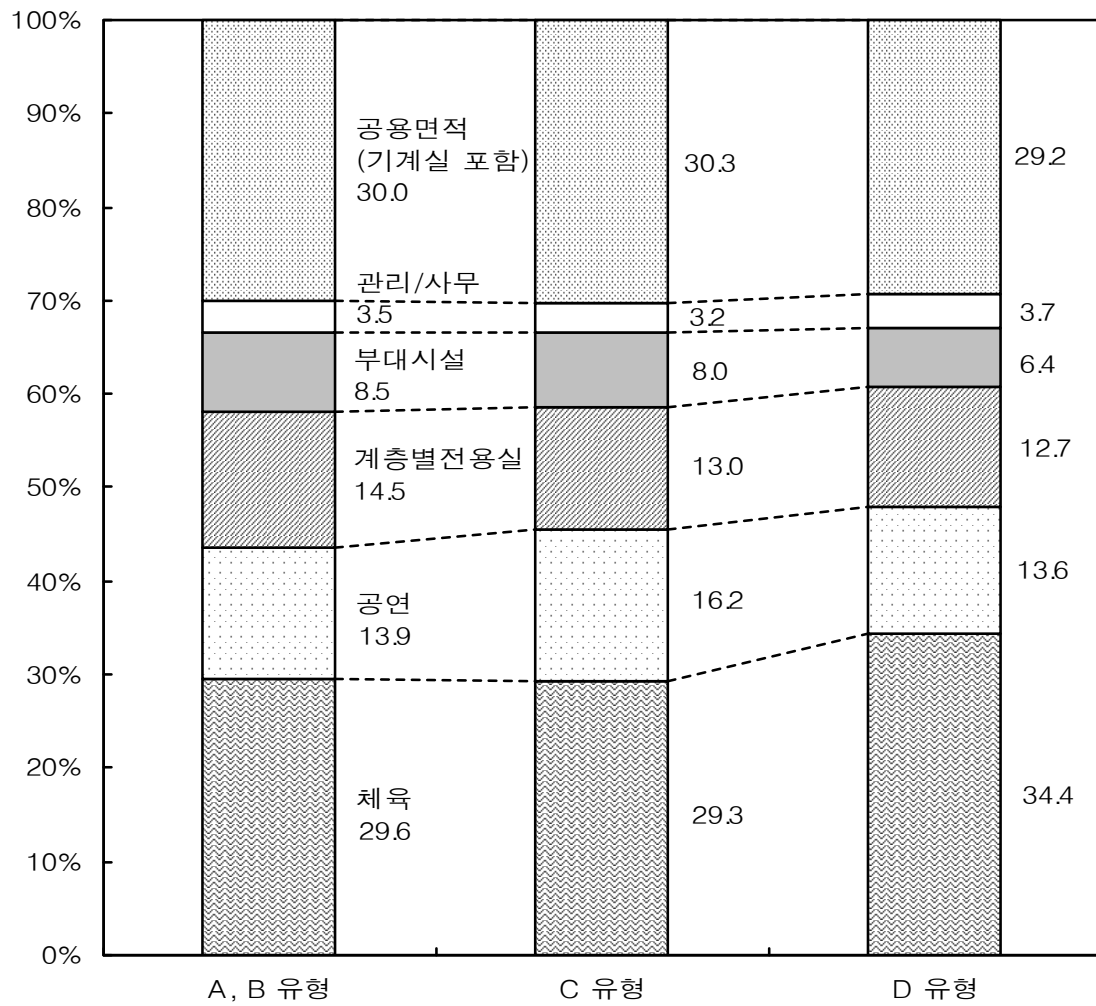
* 방청객 수 = 인구 수 × 0.000015 + 50

3. 종합회관

가. 인구 규모별 설계유형

유형	인 구	수 용 시 설 설 정
A	30-50만명	- 농구, 배구, 핸드볼경기 등을 다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체육관을 주기능으로 하고, 보조기능으로서 600석 규모의 공연장을 마련한다. - 체육시설은 고정석 1,200석 및 가동석 400석의 관람석을 확보하고 대규모 집회 행사시에는 경기장에서 대략 3,8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집회나 행사를 위해서 경기장내에 무대장치를 마련한다. - 600석 규모의 전문적인 공연장을 위하여 무대부대시설 및 분장실, 연습실 그리고 공용공간인 로비, 라운지 등의 시설을 충분히 고려한다. - 각 계층별 전용실 및 공용시설, 식당, 매점, 휴게공간 등의 각종 시설공간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종합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B	15-30만명	- A유형과 대등한 시설을 구비하되 각 공간의 규모면에서 A유형의 약 83% 정도가 되도록 각 실을 계획한다. - 농구, 배구, 핸드볼경기 등을 다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체육관을 주기능으로 하고, 보조기능으로서 500석 규모의 공연장을 마련한다. - 체육시설은 고정석 1,000석 및 가동석 400석의 관람석을 확보하고 대규모 집회 행사시에는 경기장에서 대략 3,0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집회나 행사를 위해서 경기장내에 무대장치를 마련한다. - 500석 규모의 전문적인 공연장을 위하여 무대부대시설 및 분장실, 연습실 그리고 공용공간인 로비, 라운지 등의 시설을 충분히 고려한다. - 각 계층별 전용실 및 공용시설, 식당, 매점, 휴게공간 등의 각종 시설공간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종합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C	10-15만명	- 수용하는 체육성격은 농구 및 배구경기이며 고정식 스탠드의 규모를 다소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공연장 규모는 400석이나 A유형보다 각종 부대시설의 면적이 축소, 조정될 수 있다. - 전체적으로 규모에 따라 각 시설별로 수용개설을 줄이거나, 규모의 축소가 가능하나 규모 축소에 따른 각종 활동의 위축 등은 될 수 있으면 배제될 수 있도록 시설계획을 조정함이 바람직하다.
D	10만 미만	- 배구경기 위주로 체육경기장 규모를 축소할 수 있으며, 공연장의 경우 200석 규모 정도의 소공연 전문 성격으로 마련하여 공연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한다. - 공연 및 체육시설의 면적을 상당부분 감소시키고, 계층별 전용실 및 관리, 사무시설을 수용 인원수에 따라 부분적으로 면적이 조정 가능하나, 대부분의 시설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전체규모가 소규모이나 시민체육이나 전문적인 공연 등으로 이용빈도의 증대와 활발한 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각 유형별 면적 배분비



다. 유형별 면적기준

(단위 : m²)

구 분	A유형 (인구30~50만)	B유형 (인구15~30만)	C유형 (인구10~15만)	D유형 (인구10만미만)	비 고
순 면 적 (Net Area)	6,600	5,494	3,955	2,313	
공용면적(기계실포함)	2,827	2,365	1,724	958	
연면적 (Gross Area)	9,427	7,851	5,679	3,341	·기능별 공간 연결시 발생되는 공용면적은 ±5~10%를 별도로 고려한다. ·주차공간은 제외된 면적임
N / G 비	70.0%	70.0%	69.6%	69.2%	

1) 공연시설

(단위 : m²)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극장	객 석	480	400	320	160
	무 대	290	240	240	120
	연습실	55	55	50	30
	분장실(남,여)	41	35	24	10
	분장실전용화장실	11	9	7	3
	악실 (1)	14	12	10	15
	악실 (2)	14	12	10	-
	소계 ①	905	763	661	338
부속 시설	도구비치창고	216	180	120	40
	도구반입실	33	-	-	-
	영사실	48	40	30	20
	음향실	36	30	30	20
	기기실(무대)	36	30	25	-
	조명실	24	20	20	20
	측벽투광실	12	12	12	-
	방송중계실	12	10	10	-
	소계 ②	417	322	247	100
합계	계 ① +②	1,322	1,085	908	438
	공용부분	881	723	605	292
	합 계	2,203	1,808	1,513	730

2) 계층별 전용시설

(단위 : m²)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아동실	아동실(1)	68	60	30	30
	아동실(2)	68	60	30	-
	부속창고	6	4	4	4
	소계 ⑤	142	124	64	34
청소년실	청소년실(1)	60	50	50	50
	청소년실(2)	40	35	-	-
	소계 ⑥	100	85	50	50
노인실	노인실(남)	60	50	50	30
	노인실(여)	60	50	50	30
	휴게실	36	30	30	-
	주 방	8	6	-	-
	건강상담실	30	24	10	-
	소계 ⑦	194	160	140	60
부녀실	부녀실(1)	120	108	50	50
	부녀실(2)	120	108	50	50
	부녀실(3)	35	35	35	-
	소계 ⑧	275	251	135	100
공용 시설	강의실	75	60	60	60
	회의실(1)	90	70	70	70
	회의실(2)	90	70	70	35
	회의실(3)	70	70	-	-
	회의실(4)	40	35	-	-
	다목적실	174	144	120	-
	주 방	18	14	8	-
	기자재창고	18	14	12	-
	전시코너	36	30	-	-
	소계 ⑨	611	507	340	165
합계	계 ⑤~⑨	1,322	1,127	729	409
	공용부분	712	607	373	220
	합 계	2,034	1,734	1,122	629

3) 부대시설

(단위 : m²)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전시 시설	전시실	216	162	108	54
	작업실	43	35	23	12
	창 고	43	35	23	12
	소계 ⑩	302	232	154	78
도서 시설	도서실	308	257	147	100
	소계 ⑪	308	257	147	100
식당 휴게 시설	식 당	85	70	70	-
	주방 및 창고	38	32	32	-
	휴게실	82	70	46	28
	소계 ⑫	205	172	148	28
합계	계 ⑩~⑫	815	661	449	206
	공용부분	349	283	192	88
	합 계	1,164	944	641	294

4) 체육시설

(단위 : m²)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경기장	경기장	1,344	1,104	714	646
	갱의실(남)	27	21	21	12
	샤워실(남)	27	21	21	12
	갱의실(여)	15	12	12	6
	샤워실(여)	14	12	12	6
	부속실(1)	72	60	40	20
	부속실(2)	48	40	40	30
	대기실	26	22	22	15
	장비실	145	120	75	60
	무대(집회용)	240	200	151	95
	트레이닝실 (소체육실)	120	100	50	-
	소계 ③	2,078	1,712	1,158	902
관람석	관람석	720	600	480	210
	상부발코니	-	-	-	-
	소계 ④	720	600	480	210
합계	계 ③+④	2,798	2,312	1,638	1,112
	공용부분	700	578	410	278
	합 계	3,498	2,890	2,048	1,390

5) 기타시설

(단위 : m²)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사무실	관리사무실	87	72	51	22
	관장실	64	64	64	30
	응접 및 탕비실	26	26	26	26
	소회의실	32	27	20	10
	숙직실	12	10	10	10
	안내인방송코너	12	10	10	-
	직능단체사무실(1)	55	50	50	50
	직능단체사무실(2)	55	50	-	-
	소계 ⑬	343	309	231	148
합 계	계 ⑬	343	309	231	148
	공용부분	185	166	124	80
	합 계	528	475	355	228

4. 보건소

(단위 : m²)

구분		실 명	면 적 기 준
			시 보건소
진료 활동	a	접수 / 수납	13.86
		의무기록창고	10.89
		대기공간	48.00
		약국조제실	13.86
		약국창고	13.86
		일반진찰실	53.46
		치치실	17.80
		치과진찰실	27.54
		치과장비실	2.70
		치과용 암실	2.16
		소독실	8.91
		예방접종실	17.82
		소아놀이실	9.90
		수유실	7.92
		화장실	31.68
		장애인용 화장실	4.86
보건 사업	b	결핵관리실	17.82
		상담실	35.64
		방사선실	81.66
진료 지원	c	임상검사실	65.34
사 무 부 문	d	소장실	33
		전실(탕비실)	9.90
		소회의실	17.82
		사무실	직원 수 × 7.2 m ²
		다목적실	144
		창고	59.4
		여자휴게실	40
		당직실	13.86
		화장실	17.82
설비	e	기계실 및 전기실	66
연계공간		로비·복도·계단	(a+b+c+d+e) × 30~40%

관계 법령 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

료를 감면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그 밖에 공유재산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 본문의 사용허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사용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1.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허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1조(대부기간) ① 일반재산의 대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토지와 그 정착물: 5년
2. 제1호 외의 재산: 1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한 경우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의 범위에서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대부기간은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대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이용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1.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부계약의 갱신 또는 대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5조(대부계약의 해지·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대부한 일반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2.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일반재산을 전대하는 경우
4.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변경한 경우
5.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6. 제3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면 지체 없이 그 권리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그 상대방에게 손실을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재산을 사용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각 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구분과 종류에 따라 소관 공유재산의 등기·등록이나 그 밖의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유재산의 대장(臺帳)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의 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대상 재산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및 조사비용 등을 정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실태조사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2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사용료 등의 귀속)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사용허가 또는 대부의 경우: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
2. 변상금 징수의 경우: 그 변상금의 100분의 50
3. 매각의 경우: 그 매각대금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전년도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소유 공유재산의 관리 실적을 고려하여 시·군·자치구별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4. 관리위탁의 경우: 관리위탁수입의 100분의 20
5. 신탁 또는 위탁관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분양형 신탁과 위탁재산의 분양형 개발: 신탁수입 또는 위탁관리 수입(이하 이 조에서 “수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 나. 임대형 신탁과 위탁재산의 임대형 개발: 수입액의 100분의 50
 - 다. 혼합형 신탁과 위탁재산의 혼합형 개발: 분양형의 경우에는 수입액의 100분의 20, 임대형의 경우에는 수입액의 100분의 50
 - 라. 위탁관리(매각의 경우는 제외한다): 수입액의 100분의 20

②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귀속받은 사용료·대부료·변상금·매각대금·관리위탁수입 또는 수입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유재산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隣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일반입찰,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은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 일단(一團)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3. 청사(廳舍)의 구내재산을 공무원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4.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의 무상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유상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5. 법 제24조제1항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6. 사용허가의 신청 당시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해서 산출한 가격(행정재산 중 일부에 대해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

- 재산 전체의 가격을 말한다)이 1천만원(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7.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8.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 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9.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 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 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10.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 용하는 경우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의 복구 및 구호 목적을 위해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2.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하여 임시로 사용허가를 하 는 경우
 13.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 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 연구기관등”이라 한다)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5.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에 해 당하는 부분에 대해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6. 지방자치단체의 현재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지하에 건물이 아닌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17. 공유재산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에 창업을 위 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 창업 공간(창업보육센터는 제외하며, 이하 “창업공간”이라 한다)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로서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가.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준정부 간 기구를 말한다)

나.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19.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0.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23.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4. 제1호부터 제2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④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자로 한정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 재산의 위치·형태·용도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자로 한정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방법과 우선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정하여 1명 이상에게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하나 이상의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계산,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만원을 말한다.

⑤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허가기간의 연간 사용료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⑥ 제13조제6항에 따라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일수별 또는 시간별 사용료의 계산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⑦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⑧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사용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사용허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사용허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⑩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료 면제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年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식재산(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의 사용료 면제기간은 20년으로 한다.

③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인 그 부지의 사용료를 제1항의 연간 사용료에 합산한다. 다만, 부지 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과 제3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에 합산할 부지 사용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부지의 가액은 최초의 사용허가당시를 기준으로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하며, 사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4.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5.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한다)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⑥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1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한 경우

2. 제13조제3항제21호·제22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한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한 경우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2. 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21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출하는 위탁료는 다음 각 호의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

1. 수입

가. 위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입장료 등 이용료

나.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직접 사용·수익하

는 경우 그가 납부하는 사용료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전대(轉貸)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다. 그 밖에 위탁재산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수입

2. 지출

가.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인건비, 경상경비 또는 수선유지비

나.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세금, 공과금 또는 보험료 등

③ 제1항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④ 법 제27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또는 전대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이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⑤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든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금액과 관리수탁자가 징수할 금액의 계산방법은 계약 전에 정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계산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대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본문, 제2호 및 제3호 본문에 따른 재산가격은 대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1호 단서 및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산가격은 감정평가일부터 3년 이내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첫째 연도에는 측량 또는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토지: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한다. 다만, 하나의 필지로서 그 필지의 주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이거나 위치에 따라 지가(地價)를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 이상의 금액으로 한다.
 2. 주택: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주택가격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
 -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
- ③입찰로 대부하는 경우 첫째 연도의 대부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2차 연도 이후의 기간(대부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대부계약기간 중으로 한정한다)의 대부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본문에 따른 대부료에 제1항 단서에 따른 요율 인하분을 반영하여 산출한 대부료로 한다.
- $$[(\text{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times (\text{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div (\text{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및 재산조성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재산에 대한 전세금을 받는 것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

히 필요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수·시간 또는 횟수별로 해당 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을 대부한 일수·시간 또는 횟수별로 그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 부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간에 대한 대부료는 해당 토지의 가격에 그 공간의 사용에 따라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이하 이항에서 “입체이용 저해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공유재산인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을 일정 기간 사용하는 경우 그 공간에 대한 대부료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대부료에 입체이용 저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⑦ 경작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해당 시·도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작물수입(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⑧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에 공유재산을 창업공간으로 대부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대부료의 최고한도로 할 수 있다.

⑨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만원을 말한다.

제34조(대부료의 조정) 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 연도의 연간 대부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료를 감경받거나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29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대부하는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4. 제29조제1항제14호·제15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조합(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원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부하는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로서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하지 않는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 가.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 나. 제29조제1항제20호·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 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고 있는 타인의 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보아 계산한 대부료의 범위에서 감면한다.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29조제5항제3호에 따른 대부계약의 조건에 따라 대부재산을 대부 받은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4.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못 미치는 건물이 없는 토지의 인접 토지소유자가 1인인 경우 그 토지를 그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6. 「관광진흥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을 입주계획에 따라 정해진 지구에 입주하는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7.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지원 또는 권장하기 위하여 주택 또는 공공이용시설 부지로 사용하게 될 재산을 마을주민에게 매각하는 경우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8.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로 재산의 매각을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9.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가 발생하여 재해복구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10.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11. 주식의 매각을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12. 지방자치단체가 취급하던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포괄하여 이관하면서 이관되는 업무에 제공되고 있던 재산을 이관받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3. 지방자치단체가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

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어린이육영단체에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그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

라.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마.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사. 「전자정부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15.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에 따라 용도가 정해진 토지를 그 정해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해당 도시·군계획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7.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집단복지공장이 직접 사용할 업무용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18. 「농어촌정비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로 조성된 재산을 농어민에게 매각하는 경우

19. 「농어촌정비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해당 사업에 사용할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20. 재공고 일반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21.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를 폐지하는 경우 그 학교재산을 청소년교육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가.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라. 그 밖의 비영리법인

22. 제21호에 따른 도서·벽지 외의 읍·면 지역에 있는 학교를 폐지하고 그 학교재산을 학교법인에 매각하는 경우
23.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2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점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5. 삭제 <2018. 1. 9.>
2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7.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에 둘러싸여 고립된 토지를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8.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29.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30.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설립에 필요한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
31.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유하고 있는 재산을 그 재산을 공유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특별시·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이하, 특별자치시, 도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동(洞)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하, 특별자치시, 도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이고,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32. 사유지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이나 공작물

로서 그 건물이나 공작물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을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3. 지식재산의 내용상 그 실시(「특허법」 제2조제3호, 「실용실안법」 제2조제3호 및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실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3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 2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을 출자한 대상의 주주 등 출자자에게 그 대상의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3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 2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을 출자한 대상 중 주식회사에 그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② 상반된 이해관계인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서 해결하기 극히 곤란한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있는 재산이나 수익계약으로 매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입찰로 매각하여야 한다.

제39조(대금의 납부 및 연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전액(全額)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사용하는 경우 이자는 매수자가 매각재산을 인도받거나 점유·사용을 시작한 때부터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매각대금을 납부할 자가 재해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

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
 2. 전원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과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납부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사업계획이 승인되기 전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투자사업계획이 승인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자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 ③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매각대금의 일시 전액 납부기간은 계약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⑤ 매각대금의 잔액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 제42조(일반재산의 매각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접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일반재산에 대하여 제27조 및 제3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매각기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기준 중 매각가격을 정할 때에는 인건비, 토지 매입비(보상비를

포함한다)와 그 밖에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합한 조성원가를 매각가격의 최저한도로 정하여야 한다.

제49조(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대장은 그 구분과 종류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갖추 두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실태조사 결과 장부상의 지목(地目)과 현재의 이용 상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표(사진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그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이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 공유재산을 선정하고, 해당 공유재산에 대해 1년에 한 번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 현황
2. 주위 환경
3. 이용 현황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제52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개정된 가격”이란 법 제46조에 따라 평가한 가격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에 따른 증감보고서 및 현재액보고서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주민에게 공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1조(변상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 또는 물품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제31조 및 제74조에 따라 계산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지식재산의 경우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등을 말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변상금의 산출 근거를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납부기한은 변상금 납부 통지일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무단점유자(이하 “무단점유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⑤ 삭제 <2022. 4. 20.>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단점유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변상금 납부를 통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1.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변상금을 납부할 것
2. 제1호에 따른 변상금의 납부 이전에 해당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해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것을 시정하였을 것

제84조(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① 법 제84조에 따라 신고된 은닉된 공유재산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는 것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신고자에 대하여 해당 재산가격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은 3천만원을 한도로 하여 은닉된 공유재산의 종류별로 그 보상률과 최고금액을 조례로 정한다.

③ 은닉된 공유재산을 신고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경우 해당 재산가격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제85조(은닉된 공유재산의 자진 반환자에 대한 특례) ① 법 제85조에 따라 은닉된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자진 반환한 자에게 그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자진 반환의 원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방법으로 분할납부하거나 일정 금액을 뺀 후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자진 반환하거나 제소 전 화해로 반환한 경우: 12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거나 매각가격에서 80퍼센트를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한꺼번에 납부
 2. 제1심의 소송 진행 중의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認諾)으로 반환한 경우: 10년 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거나 매각가격에서 70퍼센트를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한꺼번에 납부
 3. 항소 제기 전의 항소권의 포기 또는 항소 제기기간의 경과로 인한 항소권 소멸로 반환한 경우: 8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거나 매각가격에서 60퍼센트를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한꺼번에 납부
 4. 항소의 취하, 항소심의 소송 진행 중의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으로 반환한 경우: 6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거나 매각가격에서 50퍼센트를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한꺼번에 납부
 5. 상고 제기 전의 상고권의 포기 또는 상고 제기기간의 경과로 인한 상고권의 소멸로 반환한 경우: 4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거나 매각가격의 40퍼센트를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한꺼번에 납부
 6. 상고의 취하, 상고심의 소송 진행 중의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으로 반환한 경우: 2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거나 매각가격의 30퍼센트를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한꺼번에 납부
- ② 제1항에 따른 자진 반환의 경우에 그 반환일은 반환하려는 은닉된 공유재산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신청서의 접수일로 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2026. 7. 1. 검단구 출범으로 인한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8조)

다. 주차장 준수 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2조)

라. 주차장 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사”란 인천광역시 검단구 본청, 사업소,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의 업무수행을 위한 건물과 부속시설을 말한다.
2. “관리사무공무원”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각 청사 부설주차장의 관리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출입 직원”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 소속 공무원(청원경찰, 공무원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 및 일정기간 공무로 상시 출근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업무소관 및 주차장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 관리 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 구청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각 청사 주차장의 관리사무를 해당 주차장이 속한 청사 행정기관의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공무원은 해당 주차장을 유지·보수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 및 관리사무공무원은 주차장을 제3자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다만, 위탁관리의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1

항제1호를 준용한다.

④ 구청장 및 관리사무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주차장을 위탁관리할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처리하는 업무 전반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구청장, 관리사무공무원 또는 관리수탁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1. 주차장의 이용시간
2. 주차요금 및 감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차장 이용자 유의사항 등

제4조(주차장 운영시간) 주차장은 24시간 운영하되, 주차요금 징수시간은 토요일·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하고, 평일 09:00부터 19:00까지로 한다. 다만, 청사별 주차 수요, 교통 혼잡, 임시청사 사용 등 여건에 맞게 주차요금의 징수여부와 징수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청사별 주차장 운영시간은 별표 1로 정한다.

제5조(주차요금) 주차장의 이용요금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주차요금 감면) ①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감면대상 차량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으며 방문 목적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주차요금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1. 주차장 입차 후 1시간 이내의 차량
2. 공무수행 관용차량(관용차량을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부착한 차량에 한함)
3. 공적인 업무(구 주관 공식 행사, 회의 등)로 청사를 방문한 차량.
4.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차량
5. 언론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출입기자의 차량
6.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차량

- ② 1시간 초과 주차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1시간 초과 주차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미리 관리자에게 공식적인 공문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거나 관리자가 요구하는 필요한 증빙을 해 주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1시간 초과 주차확인서를 발급한 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1시간 초과 주차확인서 발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그 밖의 주차요금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⑤ 상시 출입 직원이 운전하는 차량에 한정하여 월 정기주차 차량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월 정기주차요금은 1구획당 2만원으로 한다. 다만, 관리자는 주차 수요를 감안하여 정기주차 등록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 ⑥ 월 정기주차요금 계약 시 최초 계약월은 잔여일수로 주차요금을 일할 산정할 수 있다.

제7조(주차요금의 징수방법) 관리자는 제6조에 따라 번호판인식시스템에 계산된 주차요금을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한다.

제8조(징수요금의 관리) ① 관리자는 당일 수납된 주차요금을 시스템에 따라 일일결산하고, 다음날 업무개시 즉시 「인천광역시 검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납입고지서를 작성하여 구금고에 납입 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월 1회 이상 납입된 주차요금을 정산하여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① 관리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96시간 이상 방치차량이 있을 경우 즉시 방치차량 조치보고를 하고 견인 보관소로 이동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견인료 및 보관료는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차량 소유자가 부담한다.

- ② 관리인은 긴급한 상황이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 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즉시 견인 조치할 수 있다.
- ③ 민원업무 등 공적 목적 이외의 사유로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를 제한 또는 차량의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보관소로 이동 조치할 수 있다.

제10조(손해배상 등의 책임) ① 이용자가 주차장 안에서 주차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가해자는 관리자에게 즉시 신고하고 원상복구 또는 피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주차장 안에서 증명할 수 없는 차량의 멸실 또는 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책임소재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주차장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지함.
- 2.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하여야 함.
- 3. 차량 내에 귀중품의 보관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관리자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음.

제12조(주차의 제한 등) ① 구청장 혹은 관리사무공무원은 민원인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시 출입 직원의 차량 및 관용차량에 대하여 주차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 ② 구청장 혹은 관리사무공무원은 민원인의 원활한 민원처리와 효율적인 청사 이용 등 공익목적을 위해 상시 출입 직원의 월 정기주차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본청 상시 출입 직원의 월 정기주차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때에는 인근 공영주차장을 제6조제3항에 따른 월 정기주차요금으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월 정기주차요금의 차액은 일반회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보전한다.

④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을 때
2. 이용자 또는 그 관련자가 주차장 질서를 문란 시킬 때
3. 차량을 이용하여 주차장 안에서 영업행위를 할 때
4.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을 주는 차량을 주차하려고 할 때

제13조(감독 등) ① 구청장 혹은 관리사무공무원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담당공무원 또는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차장 운영에 관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미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변경
2. 조례에 명기된 내용 및 서식의 변경
3. 그 밖에 주차장 관리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③ 관리자는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시간 (제4조 관련)

구분	요금징수 시간		운영시간
	평일	토·일(공휴일)	
구 분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09:00 ~ 19:00	X	24시간

* 요금 징수여부와 징수시간은 각 청사 운영에 대한 관리사무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이 가능함.

[별표 2]

검단구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표 (제5조 관련)

기본 (최초 1시간 이내)	최초 30분까지	이후 매 15분당	1일 최대 요금 (5시간 이상 주차)
무료	600원	300원	6,000원

(별지 제1호서식)

1시간 초과 주차확인서	
No. 부서명 -	
차 량 번 호	
성 명	
초 과 사 유	
주 차 시 간	
담 당 자	과(단,실,관) 팀 직급 성명
확 인 자	과(단,실,관) 직위 성명 (인)
※ 상기 내용, 담당자 기재 및 확인자 날인 이 없을 경우 주차요금 할인을 받을 수 없으니 발급 시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검단구청장	

【 보 관 용 】

1시간 초과 주차확인서	
No. 부서명 -	
차 량 번 호	
성 명	
초 과 사 유	
주 차 시 간	
담 당 자	과(단,실,관) 팀 직급 성명
확 인 자	과(단,실,관) 직위 성명 (인)
※ 상기 내용, 담당자 기재 및 확인자 날인 이 없을 경우 주차요금 할인을 받을 수 없으니 발급 시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검단구청장	

【 민원인 발급용 】

(별지 제2호서식)

발 급 대 장 (1시간 초과 주차확인서)

연번	일 자	차 량 번 호	초과시간	사 유	확인자

인천광역시 검단구 물품관리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관리책임 등 물품 총칙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11조)
- 나. 불용의 결정 등 물품 출납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8조)
- 다. 보관의 구분 및 보관책임 등 물품 보관에 관한 사항(안 제19조~제26조)
- 라. 물품출납사무의 검사 및 인계에 관한 사항(안 제27조~제3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물품관리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부서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및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물품관리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속기관, 동 및

의회사무부서의 장에게 소유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제8조(물품매입등의 요구) 물품의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 부서, 소, 동 및 의회사무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 부서, 소, 동 및 의회사무부서의 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등을 할 수 없다.

③ 본청 물품관리관은 직속기관, 동 및 의회사무부서의 정수물품 구입시에 정수책정 요구서를 제출받아 제1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정한다.

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 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

격, 매입가격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 협의 후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의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구의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장 출납

제12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 가격과 노임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전적가격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15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연도의 동일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16조(불용의 결정)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관리관이 그 결정을 할 수 있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제17조(불용품의 소요조회) ① 구청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이하 “불용품”이라 한다)중 매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일 때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 ② 제16조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기타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제18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16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매각총량
2. 둘 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 동일규격단위의 총량

- ④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 ⑤ 재무관은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⑥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 9월) 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

제19조(불용품의 폐기) ① 제1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3장 보관

제20조(보관의 구분)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공용품의 2종으로 한다.

- ② 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제21조(보관책임) ①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책임을 진다.

제22조(일시보관)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 또는 직속기관, 동 및 의회사무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보관시킬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물품을 일시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3조(물품의 분실·훼손 보고)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분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분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구청장은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25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카드 등록부

4. 도서대장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영 제57조제3항 따른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장부중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제26조(장부의 작성) ①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힌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

제27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장 검사 및 인계

제28조(물품출납사무의 검사)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감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②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

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제30조(물품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28조 및 제29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을 구청장 또는 직속기관, 동 및 의회사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31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2조(인계의 절차) 제31조에 따라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33조(타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직속기관, 동 및 의회사무부서의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2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34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라 인계하여야 한다.

제35조(무상대부) 영 제75조제4호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주민”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6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구 홈페이지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물품의 품종 · 상태 구분

○ 물품의 종류

- (1) 비 품 : 비품이라 함은 그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 (2) 소모품 : 소모품이라 함은 그 성질이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의 구성성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

○ 품종 구분 기준

(1) 비 품

- ①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 ②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물품

(2) 소모품

- ① 한 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예 : 약품, 유류, 수선용 재료 등)
- ②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예 :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 ③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 (예 :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등)
- ④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

○ 물품상태 분류기준

- (1) 신 품 : 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
- (2) 중 고 품 :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
- (3) 요정비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
- (4) 폐 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별표 2]

물품출납이동부의 정리구분

구 분		구 분 내 역
구입	입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양수	수	물품을 양수하는 경우
차용	용	물품을 차용하는 경우
생산	산	내부 또는 외부에서 물품을 제작하는 경우
편입	입	공유재산을 물품에 편입하는 경우
부생	생	물품을 부생하는 경우
양도	도	물품을 양도하는 경우
대여	여	물품을 대여하는 경우
공유재산편입		물품을 공유재산에 편입하는 경우
매각	각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
해체	체	물품을 해체하는 경우
폐기	기	물품을 폐기하는 경우
분실	실	잃어버린 물품을 정리하는 경우
반납	납	사용 중인 물품을 반납하는 경우와 대여한 물품 또는 임차한 물품을 반납하는 경우
관급	급	물품을 관급하는 경우
자연감모	모	자연감모된 물품을 정리하는 경우
관리전환	환	물품관리권을 이동하는 경우
분류전환	환	물품을 분류 전환하는 경우
사용전환	환	동일물품 관리관 산하 분임물품출납원 상호간의 이동
공차	차	물품을 일시적으로 공용 차용하는 경우
무상증여	여	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
기증	증	물품을 기증받는 경우
잡건	건	위의 구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이동의 경우

관계 법령 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전문개정 2008. 12. 26.]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8조(물품관리기준의 설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라 주요 물품의 정수와 사용기준을 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대상 물품의 선정, 정수의 책정 및 배정, 내용기간(耐用期間), 대체성 및 소모감모율 등에 관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수관리대상물품 중에서 정수가 배정된 물품의 구입을 정수관리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의 구입보다 우선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수관리대상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 4. 24.]

제75조(무상 대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또는 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을 정하여 무상으로 소관 물품을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6. 7. 12., 2018. 12. 18., 2019. 7. 2., 2023. 8. 22.>

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원인 경우로 한정한다),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그 물품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려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물품을 해당 위탁 업무에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3.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재해복구 등에 필요한 물품을 대부하려는 경우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주민에게 소관 물품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휴일을 말한다)에 사용할 수 있도록 대부하려는 경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 6. 7.>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전문개정 2010. 12. 9.]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2026. 7. 1. 검단구 출범으로 인한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역할,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4조)
- 나.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공공조달 우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다. 계약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지원 및 기업의 사회적책임 평가 등을 통해 공공조달에 있어 사회적 가치의 구현과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의 사회적기업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협동조합

마.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다목에 따른 마을기업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직접 생산·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한다.

3. “희망기업(사회적약자기업)”이란 기업규모 및 가격 경쟁력 등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의 장애인기업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소기업을 말한다.

4. “사회적 가치”란 좋은 일자리 확대, 취약계층 고용기회 증진,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지역경제 기여, 지역공동체 발전, 사회적 공헌 등과 같이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가치를 말한다.
5. “기업의 사회적책임”이란 사회적 가치에 대한 기업의 이행 책임을 말한다.
6. “공공조달”이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서 계약·협약 등의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역할 및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조달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의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업 경영시 이행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기업의 사회적책임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2. 구 의회사무부서
3. 구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4. 구 소속 공기업 및 산하기관
5. 구 출자·출연기관

② 구로부터 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기관은 공공조달 시 이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우선구매에 관한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이 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공공조달 지침의 이행) ① 구청장은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 제

도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공공조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조달 지침은 사회적경제기업 및 희망기업에 대한 진입
기회의 확대, 노동자의 권리보호, 법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발주부서의
관리·감독 강화 등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내용으로 한다.

③ 발주 및 계약부서 담당자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 제도가 안정
적으로 정착되고 지속 가능하도록 공공조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공공조달 우대) ① 구청장은 사회적 경제기업
과 희망기업에 대하여 입찰참가 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
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간 제
한경쟁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대상과 범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되 사회적경제기업간 제
한경쟁이 가능하고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8조(기업의 사회적책임 평가) ① 구청장은 공공조달 사업수행자 선정 시 계
약내용, 규모, 입찰참가 예상기업 등을 고려하고 입찰참가 기업의 사회적책임
이행여부를 평가하여 가산점 등을 부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입찰참가 기업의 사회적책임 평가방법 및 세부 심사기준을 사업
수행자 선정 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가 기업은 사회적책임 평가의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야 하며 공고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사업수행자 선정결과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내용의 해석이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입찰참가 기업은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
라 작성하고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구청장은 입찰참가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위조·변조 또는 부정행사 되거나 거짓서류인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낙찰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노동자의 권리보호)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노동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노동자의 적정 임금 수준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고, 노동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취지가 반영된 노동자의 권리보호 내용을 확약한 노동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④ 구청장은 필요시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이행 서약서상의 노동자 권리보호 내용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지도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정보의 공개) ① 구청장은 발주계획 및 계약진행 과정을 구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구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② 발주부서가 계약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2026. 7. 1. 검단구 출범으로 인한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위원회 구성, 임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9조)

다.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과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 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으로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 중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로 제한한다. 다만, 보

결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계약심의위원회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계약심의위원회 담당이 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및 영 제108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해서는 영 제107조제6항에 따른다.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5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 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선임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 외 해당 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⑤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⑦ 소위원회별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가 겸임한다.

제8조(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의를 부치는 경우에는 회의를 부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9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영 제106조의2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3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①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영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제14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여비 및 심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0조에 따라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제14조 관련)

구 분		금 액	비 고
계약심의위원회	수 당	100,000원	
	여 비	20,000원	출장 시
주민참여감독자	수 당	20,000원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상·하수도 사업, 마을 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감독 외에 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이하 “주민참여감독자”라 한다)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③ 주민참여감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공사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그 공사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거나 공사계약 이행상의 불법·부당 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독업무 수행에 따른 실비(實費)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⑤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감독범위,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監督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3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3. 8. 6., 2016. 5. 29.>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라. 관련 업체가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3.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계약사무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그 심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제1항제3호의 경우 그 심의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 결과를 입찰 및 계약체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부과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③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감독) ①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개정 2014. 5. 22., 2016. 9. 13., 2024. 5. 7.>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와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등 의무적으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약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책임감리를 하여야 하는 국가유산수리계약
3.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감독을 할 수 없는 도급계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되어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공무원의 수[제1항에 따른 계약 중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정해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監理員)의 수를 말한다]를 그 배치기준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2., 2018. 12. 11.>

③ 제2항에 따라 추가로 드는 감독비용 또는 감리비용은 해당 공사예산 중 낙찰 차액(예정가격과 낙찰금액의 차액을 말한다)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57조(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대표자는 제60조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통장·이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대표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

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독 대상 공사의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감독 대상 공사의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였거나 감리·감독 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수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사로서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4.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건설 관련 단체 또는 건설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감독 대상 공사의 현장이 속하는 동·리의 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 등으로서 대표성과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전문개정 2010. 7. 26.]

제59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 지급)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實費)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 지급기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는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2. 4. 10., 2016. 9. 13.>

1. 마을 진입로 확장·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保安燈) 공사

5. 보도블록 설치공사

6. 도시·군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공원 공사

11.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개정 2016. 9. 13.>

[전문개정 2010. 7. 26.]

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시·도에 설치하는 시·도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와 시·군·구에 설치하는 시·군·구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 5. 22., 2014. 11. 28., 2015. 8. 19., 2016. 1. 15., 2016. 9. 13., 2016. 11. 29., 2018. 12. 11.>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삭제 <2016. 1. 15.>

6.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7.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③ 시·도지사는 시·군·구위원회의 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의 현황을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공할 수 있다.

④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6. 1. 15.>

[전문개정 2010. 7. 26.]

제109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7. 26.]

인천광역시 검단구 건강친화 디자인 공공건축물 관리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도입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나. 공공건축물의 정비 및 정비기준, 추진 시책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 다. 위원회의 구성, 기능, 직무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건강친화 디자인 공공건축물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건강친화 디자인을 도입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건강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친화 디자인”이란 연령, 성별, 국적, 신체능력 등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과 차이를 뛰어넘어 신체활동 실천율을 높이고 가능한 많은 사람의 건강활동을 증진시켜 건강한 사회를 조성·관리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말한다.
2. “공공건축물”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가 신·증축 및 대수선하는 건축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제3조(건강친화 디자인 도입 범위) 건강친화 디자인을 도입하는 건축물 등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 내부시설(출입구·로비·복도·계단·승강기·에스컬레이터 등)
2. 건축물 외부시설(캐노피·옥상 등)
3. 보행표지, 보행로 등

제4조(공공건축물의 정비)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물, 도로, 공원 등의 공공건축물을 정비할 경우에는 건강친화 디자인에 기초하여야 한다.

제5조(정비기준) 건강친화 디자인을 도입·정비할 공공건축물 디자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건강친화 디자인의 추진에 관한 시책 등)

- ① 구청장은 건강친화 디자인의 도입을 위한 종합 추진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② 건강친화 디자인의 적용 범위는 구의 공공건축물로 하고, 연차적으로 민간 건축물까지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 ① 건강친화 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건강친화 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④ 위원은 관계 공무원, 시의원·구의원과 보건의료·사회복지·건축·공공 디자인·도로 등의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인천광역시 검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2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이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공공건축물의 정비기준 및 자문에 관한 사항
 3. 건강친화 디자인 도입 확대 방안에 대한 사항
 4. 건강친화 디자인 도입 민간건축물 지원방안에 대한 사항
 5. 건강친화 디자인 도입에 필요한 학술적 조사 연구 및 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
 6. 건강친화 디자인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7. 그 밖에 건강친화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자문결과 위원회에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 ① 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공건축물 신·증축 용역감독 및 시공감독 담당과장으로 한다.
- ④ 간사는 회의진행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이하 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검단구 건강친화 건축물 디자인 기준(제5조와 관련)

구분	디자인 기준
매일	매일 상시 이용하는 계단 계획(최소 1개 이상)
사용하는	승강기와 같은 다른 이동수단보다 계단을 우선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계단 지정	건물 내 가장 많이 보행하는 통로와 방향을 고려하여 계획
계단 위치 및	건물의 공공공간에 쉽게 접근하도록 계획
가시성	건물입구에서 접근 용이하게 가깝게 설치 승강기에서 접근이 용이한 가까운 곳에 설치 건강활동 내용이 있고 심미적인 계단 공간 창출 계단이 보이는 실내 환경과 계단실은 유리칸막이 또는 열린 공간으로 계획
계단크기	단체,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크기로 계획 다양한 연령이 보행 가능한 계단 경사도 계획
심미적인	예술적이고 독창적인 계단 구성 계단바닥과 벽면은 심미적인 마감재 사용
계단 환경	창문, 음악, 밝은 색, 자연환기 등을 이용하여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계단 환경 창출 조명이 잘 이루어진 계단 환경 계획 유지·관리가 쉽고 안전한 계단 공간 계획
계단 우선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주변 등 잘 보이는 장소에 계단 사용 권장하는 도안 및 포
사용	스터 부착(건강정보, 경고성 메시지 등)
건기 좋은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보행환경 구성
보행 경로	보행경로에 자연광이 비추도록 계획 보행경로에 화장실, 음수대, 벤치 등을 설치하여 도보로 지속시킬 수 있도록 함 건물 안과 건물 주변의 보행경로 정보 제공
승강기와	계단사용이 가능한 사람들은 승강기보다 계단을 우선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승
에스컬레이터	강기가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계획 건물용도에 적합한 범위 내 승강기 사용 층수 제한 에스컬레이터 사용시간 제한
건물 계획	간단히 도보로 이동할 수 있도록 공간 계획 계단, 경사로로 접근 가능한 로비를 2층에 계획 계단, 경사로 주변에 공용 휴게 공간 계획 사람들이 자주 마주칠 수 있도록 공간 계획
운동	건물 내 신체활동을 증진시키는 운동공간 계획 접근이 용이하고 잘 보이는 곳에 운동공간 계획 운동공간에서 외부 모습이 보이도록 계획
장려하는	건물 내 목욕실, 보관함 제공
건축시설	안전한 자전거 보관시설 설치(지하실) 운동공간, 운동시간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판 설치 건물 내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활동 공간 계획
건물외관	주변 환경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도록 다양성을 가미 시킨 저층부(1~2층) 외관 계획 건물 주변의 공원, 열린 공간과 어울리도록 건물형태 계획
및 형태	캐노피, 경량 차양 등을 건물 외관에 설치하여 건물 외부 둘레길 계획

인천광역시 검단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 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2026. 7. 1. 검단구 출범으로 인한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적용대상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 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불임금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구”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 및 용역을 말한다.
2. “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건설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사업이나 건설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건설기계 근로자를 말한다.
4. “도급”이란 원도급·하도급·위탁 그 밖의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5.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원도급자가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6. "원도급자"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7. "하도급자"란 원도급자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8.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건설근로자에게 마땅히 청산하거나 지급해야 함에도 청산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건설기계를 사용하고 지급하지 않은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사업) 이 조례는 구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며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추정가격 1억원 이상 종합공사
2. 추정가격 8천만원 이상 전문공사
3.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및 국가유산수리공사
4.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용역사업(학술용역 제외)
5. 그 밖에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체불임금 발생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본원칙)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교육·홍보를 통하여 체불임금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상생협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원도급자·하도급자의 책무) ① 원도급자·하도급자는 구의 발주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원도급자·하도급자는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구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하도급대금 직불제) ① 구청장은 하도급대금의 지급지연, 어음지급, 이중계약, 체불임금 등의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발주자·원도급자 및 하도급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대상사업에 대하여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원도급자·하도급자는 ‘하도급대금 직불제’ 실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현장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의 지연 및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표준하도급계약서) 구청장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한다.

제9조(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 ① 구청장은 원도급자로부터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받아 하도급 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도급자의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하도급 계약내용 등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 건설공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의 심사를 통하여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공사비가 하도급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선금과 기성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등의 사례가 발견되면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구청장은 사업주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수급인을 관리 하여야 한다.

제11조(임금 등 우선지급 서약서)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사업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계약을 체결할 때 별지 제1호 서식의 임금 등 우선지급 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대가지급의 사전예고 등) ① 구청장은 하도급자 및 건설근로자의 요청이 있거나 하도급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예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관급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대가지급 사실을 예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와 하도급자는 현장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에 안내 현황판을 설치하여 대가지급 사실과 사전예고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신고센터 운영) ① 구청장은 저가하도급, 대금미지급, 임금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 신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하도급 부조리에 대한 시민 신고를 용이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주관부서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하도급 부조리에 대한 신고방법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되, 그 접수 및 처리절차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민원사무 처리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협조관계 구축) 구청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업자 및 지방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

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5조(자료제출) 구청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관급공사 원도급자 및 그 하도급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은 제3조의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임금 등 우선지급 서약서

본사(본인)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와 _____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고 있는 업체(자)로서, 당해 공사의 임금 등(건설기계 임대료 포함)을 체불하지 않고 우선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

업체명 :

대표자 :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분임) 재무관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하도급 부조리 신고서(임금체불 등)

신고자	성명		연락처	(휴대폰)
	주소			
신고방법		방문신고 / 서면신고 / 온라인신고		
하도급 부조리업체	업체명			
	주소			
신고내용 (상담내용)				

※ 건설기계 임대료의 체불일 경우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사업장을 기재한다.

관계 법령 발췌

□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하도급계획의제출) ① 건설사업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확보와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 선정방식 등 하도급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제출받은 하도급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2019. 4. 30.>

② 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발주자가 하도급관계의 공정성과 건설공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 건설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 4. 30.>

[전문개정 2011. 5. 24.]

인천광역시 검단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공개원칙, 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5조)
- 나. 행정정보공표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9조)
- 다. 공개방법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안 제10조~11조)
- 라. 정보공개심의회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2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개대상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대상기관”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구 소속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및 구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하여 처리부서의 장에게 배부하는 등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처리부서”란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정보공개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가. “주무부서”란 주관부서에서 배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주되게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나. “지원부서”란 주무부서에서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를 지원해주는 부서를 말한다.

5.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공개대상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의 주관 및 처리부서 지정) ① 주관부서는 민원총괄부서로 한다.

② 주관부서는 청구내용에 따라 처리부서를 주무부서와 지원부서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청구된 정보가 인천광역시 검단구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에 보존 중인 때에는 처리부서의 장이 기록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문서를 대출받아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 책임관 지정)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생산된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장 행정정보공표제도 등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구청장은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의 공개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수립이 완료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행정정보 공표의 구체적 내용·부서·주기 및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공표방법 및 처리부서) ① 공표대상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구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② 공표대상 행정정보는 처리부서에서 공표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복합적인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정보공개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제8조(그 밖의 공표운영 등)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청장 또는 해당 정보를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처리부서의 장이 정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 ①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법 제9조제1항에 의거하여 세부적으로 작성된 별표 2의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주민과 소속공무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제3장 공개방법 및 비용부담

제10조(공개방법)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한다.

②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에 의한다.

③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해당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전

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르지 아니한 정보공개방법은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정한다.

제11조(비용의 부담) 행정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금액, 징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따른다.

제4장 정보공개심의회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 할 경우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4조(심의회 구성 및 임기)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주관부서의 소속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는 우리 구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그 밖의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16조(심의요청)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심의요청서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정보공개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심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심의회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

의의 내용을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처리부서의 장, 관계 공무원, 정보공개 청구인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원활한 심의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의 정보공개 담당으로 한다.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9조(심의회 의결통지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처리부서의 장은 의결내용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수당 등)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한 자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심의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 또는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청구인·이의신청자 등 이해당사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비밀엄수) 심의회 위원은 심의회 운영상 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에서 해촉된 후에도 또한 같다.

제22조(운영세칙)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행정정보의 공표목록(제6조 관련)

행정정보	공표내용	공표부서	공표주기	공표시기
1. 해당연도 주요업무 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 운영계획	주요업무계획	해당부서	연 1회	1월 중
	예산편성현황	해당부서	연 1회	구의회 의결 후 1개월 이내
	결산내역	해당부서	연 1회	구의회 의결 후 1개월 이내
	기금운용계획 및 현황	해당부서	연 1회	구의회 의결 후 1개월 이내
2.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중장기종합계획서	해당부서	수시	계획수립 후 1개월 이내
	부문별 중장기계획서	해당부서	수시	계획수립 후 1개월 이내
	중요한 기본계획서	해당부서	수시	계획수립 후 1개월 이내
3.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자료	평가결과보고서	해당부서	연 1회	익년도 2월 중
4.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구정의 주요 통계 자료	기본통계자료	해당부서	연 1회	1월 중
5.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지출금액, 일자	해당부서	매월	익월 10일 이내
6. 수의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의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	계약현황	해당부서	매월	익월 10일 이내
7. 계약금액 2천만원이상 공사·용역·물품에 관한 분기별 발주계획	발주현황	해당부서	분기	3월, 6월, 9월, 12월 중
8. 사용료, 수수료 조정계획	사용료조정계획서	해당부서	수시	구의회 의결 후 1개월 이내
	수수료조정계획서	해당부서	수시	구의회 의결 후 1개월 이내
9.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해당부서	수시	집행 후 10일 이내
10.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소음 등 환경 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측정결과	약수터수질검사결과	해당부서	매월	검사결과 통보 후 즉시
	하천 수질검사결과	해당부서	매월	검사결과 통보 후 즉시
	대기오존농도측정결과	해당부서	수시	검사결과 통보 후 즉시
11. 교량, 터널, 지하보도 등 안전진단결과 및 예산집행현황	진단결과 및 예산집행현황	해당부서	반기별	진단 후 1개월 이내
12. 구의회 구정질의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질의 및 답변내용,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해당부서	수시	답변 및 처리결과 후 20일 이내

[별표 2]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내용(제9조 관련)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통계법 제33조)
2.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정전 비공개 (형사소송법 제47조)
3.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과정 · 여부 · 내용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4.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관련문서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3항, 제4항)
다만, 당해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5. 지방세의 부과 관련자료 (지방세기본법 제114조)
가. 납세자가 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
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다만, 당해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6.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 중 공개시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7. 전염병 감염자의 진단 · 검안 및 보호에 참여한 자, 감염자에 관한 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8. 기타 개별 법령에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전산 · 통신장비 운영관련사항 및 보안시스템 구성도, 보안컨설팅 결과 등 공개시 검단구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2. 을지연습, 직장예비군 · 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충무계획, 보안시설,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3. 보안업무와 관련된 비밀문서(대외비, I · II · III 비밀문서)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인감·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주민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전염병 예방, 식품·보건·약사 등의 위생감시, 환경감시, 건축규제 등에 관한 활동사항
3. 에이즈 감염자 관리, 정신질환자·재가 압환자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행정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2.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 있는 정보
3. 수사의뢰 협조 중인 사항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감사·감독·검사 관련 정보〉

1.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2.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 결과 처리관련 서류, 감사결과 문책 및 공무원 징계 의결 사항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 할 수 있는 정보. 다만, 권한행사의 기본방침 및 결과의 기본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

〈시험 관련 정보〉

3.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출제관리,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면접위원 명단, 채점관리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하는 정보. 다만, 직원의 임용에 관한 시험의 수험절차에 관한 정보는 공개

〈규제 및 입찰 관련 정보〉

4. 단체지원(보조금, 사업비) 심사관련 심사위원 명단
5. 인·허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결정통지에 관한 사항
다만, 개별인·허가 신청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 및 결정통지에 관한 문서는 인·허가 종료후 공개가능
6.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사업계획 등의 사항으로써 정당한 이익침해 또는 불이익 정보
7.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 주거공간의 설계도면, 설계·시공상의 노하우 및 건축물의 설계도 등 공개시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8.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가. 입찰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

나. 유자격자 명부 및 입찰예정자의 경영상태 평가서 등 입찰참가 법인·개인·단체 정보

〈인사 관련 정보〉

9. 인사·평정·징계·상훈·승진 등 관련 심의·회의록 및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정보
다만, 인사이동상황, 합의제 행정기관의 위원명부, 서훈·포상 등의 수상자 명단 등은 공개

10. 공무원 등의 임면, 복무, 인사교류, 급여, 연금, 교육훈련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인사에 관한 조사 결과, 통계보고 결과 및 교육·연수 실시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11.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

승인·선정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가.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12. 진행중인 행정심판 관련자료 (답변서 등 증빙서류)

13. 검단구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검단구 조직개편, 직제개편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결정전에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 할 수 있는 정보

14. 공직자윤리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부동산평가위원회, 인사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 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마. 회의시 단서 규정에 의해 비공개로 의결한 사항

15.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공무원의 연구실적 등)

16. 토지수용 재결 진행중인 안건에 대한 감정평가 정보 및 타인의 토지수용 재결 관련 정보 (재결서 및 감정평가서 등)

17. 토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한 보상 정보 (보상가액 및 보상 유무)

18. 기타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가.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

나. 행정 내부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

다. 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 자료 및 내부의 회의 및 의견 교환의 기록 등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개인·법인의 토지거래내역, 부동산중개업자 등록현황(주민등록번호), 자동차 등록 관련 서류, 과태료 등 부과 및 납부내역, 지방세과세증명서, 향측판독적출조서, 주민조회 등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2. 공무원 등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및 사업자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쓰레기 무단투기자 및 방치차량 신고자에 대한 인적사항
5. 수형사실, 한정치산, 금치산, 파산신고 등 수형인명표 기재사항
6.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해 규정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및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2.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3.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도시개발계획과 역세권 개발 등 도시개발계획 입안전의 관련 정보
2. 도시개발사업 지정 제안을 위한 조사 및 협의 등
3. 용지매수계약서 등 공개시 투기목적이나 매점매석 우려가 있는 정보

[별지 제1호서식]

정 보 공 개 심 의 요 청 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처리부서의 장(인)

청 구 인 (이 의 신 청 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생 년 월 일 (법인번호·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연락처(전자우편주소)	
정 보 공 개 청 구 (또 는 이 의 신 청) 내용		
심 의 요 청 구 분	☐ 공개여부 결정곤란 ☐ (청구인·제3자)이의신청 ☐ 정보공개제도운영에관한사항	
심 의 요 청 사 유		
처 리 부 서 검 토 의 건		
기 타 사 항		

첨부 이의신청서 및 기타 관련자료 각 1부. 끝.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청 구 인 (이의신청인)	성 명 (법인명등 및 대표자)		생 년 월 일 (법인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소재지)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전자우편주소															
심 의 안 건																		
심 의 결 과																		
사 유																		
「인천광역시 검단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width: 60%;">위 원 장</td> <td>(서명 또는 인)</td> </tr> <tr> <td>부위원장</td> <td>(서명 또는 인)</td> </tr> <tr> <td>위 원</td> <td>(서명 또는 인)</td> </tr> <tr> <td>위 원</td> <td>(서명 또는 인)</td> </tr> <tr> <td>위 원</td> <td>(서명 또는 인)</td> </tr> <tr> <td>위 원</td> <td>(서명 또는 인)</td> </tr> <tr> <td>위 원</td> <td>(서명 또는 인)</td> </tr> </table>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부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부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회 의 록

				간 사	부위원장	위 원 장	결
							재
일 시				장 소			
참석상황	재적의원	참석	불참	(불참위원)			
심의사항							
심의의결							
※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관계 법령 발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 8. 6.]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22.>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8. 6.][제목개정 2020. 12. 22.]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

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④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은 제3항에 따라 수립된 비공개 세부 기준이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선하여 그 점검 및 개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전문개정 2013. 8. 6.]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

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규모와 업무성격, 지리적 여건, 청구인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소속 상급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공사·지방공단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에서 협의를 거쳐 심의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그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의 위촉 비율을 따로 정하되,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0. 12. 22.>

⑤ 심의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⑥ 심의회의 운영과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8. 6.]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개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3. 8. 6.]

인천광역시 검단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검단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안 제1조)
- 나. 정의(안 제2조)
- 다.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라.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 마. 지원 사항(안 제5조)
- 바.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안 제7조)
- 사. 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를 접수·처리하는 검단구 소속직원을 말한다.
2.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실시하는 전담대응부서를 말한다.
3. “비상대응팀(반)”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 사항) ① 구청장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지원 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폭언, 폭행 등 피해 발생 시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4.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5. 교육 및 연수

6.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조치

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피해 예방과 치료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지원 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폭언, 폭행 등 피해 발생 시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즉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①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팀(반) 구성·운영

4. 녹음전화 설치

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6.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

7.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

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8. 청원경찰·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9. 민원인의 방문목적 외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차단시설(스피드게이트, 출입문 등)

10.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 설치

② 구청장은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

2. 신규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

3.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

4. 인사가점 부여, 희망보직 배려 등 인사우대

5.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

6.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기관차원의 포상, 교육연수

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제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① 구청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기관차원에서 법적대응을 하여야 한다. 다만, 친고죄의 경우, 또는 피해 민원처리담당자가 고소를 원하는 경우, 기관차원에서 고소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팀을 지정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소송 관련 비용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폭언·폭행예방과 상호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등 홍보물 게시
2.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캠페인 실시
3. 구청장이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제10조(위탁운영)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원 기준(제5조제2항 관련)

지 원 구 분	근 거	지 원 한 도	세 부 기 준
심리상담	제5조제1항제1호	상담 연계	
의료비	제5조제1항제2호	예산의 범위 내	1. 병원진료비 2. 약제비
폭언, 폭행 등 피해 발생 시 휴식시간	제5조제1항제3호	2시간 범위 내	
법률상담	제5조제1항제4호	상담 연계	
소송비용	제5조제1항제4호	예산의 범위 내	
교육 및 연수	제5조제1항제5호	예산의 범위 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5조제1항제5호	예산의 범위 내	

[별지 서식]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 신청서(제6조 관련)

신청자	소 속		직 급		성별	남 ☐ 여 ☐
	성 명		연락처			
민원의 내용	건 명					
	민원요지	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				
피해의 내용	피해사실	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				
	입증자료	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				
지원신청 내용	신청내용					
	증빙자료	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				
확인자 (부서장)	직 위					
	성 명	(서명, 날인)				

「인천광역시 검단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관계법령 발췌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 1) 법정민원: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 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 2) 질의민원: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2. ~ 8. 생략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호출장치·보호조치음성안내 등 안전장비의 설치 및 안전요원 등의 배치
 2.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을 방지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의 운영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
 - 가. 폭언·폭행
 - 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소지
 - 다.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중복 민원 제기를 통한 공무 방해 행위
 - 라. 그 밖에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4.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인으로부터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담당자의 분리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5.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치료 및 상담 지원
- 5의2. 폭언·폭행 등 형사처벌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한 민원인에 대한 수사기관에의 고발
- 5의3. 담당자가 제5호의2에 해당하는 민원인에 대한 고소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고소를 위한 행정적·절차적 지원

6.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
7.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1회당 권장 시간 설정. 이 경우 민원별 특성을 고려하여 권장 시간을 달리 설정할 수 있다.
8. 다음 각 목의 경우 전화나 면담의 종료 조치. 이 경우 그 조치 전에 해당 사유를 민원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 가. 전화 또는 면담 중 민원인이 반복적·지속적으로 욕설, 협박 등 폭언을 하거나 모욕, 성희롱(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한 경우
 - 나. 제7호에 따른 권장 시간을 상당히 초과하여 공무를 방해한 경우
 -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과 담당자 간에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하고,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등 소송 수행이나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행정기관의 장은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 제2조제3호나목·다목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인 조례안

1. 제안이유

2026. 7. 1. 검단구 출범으로 인한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공인의 사용 및 각인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5조)

다. 공인의 등록 및 폐기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0조)

라. 공인의 보관 및 날인에 관한 사항(안 제11조~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라. 기 타: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인(직속기관의 장 및 그 기관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보관 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직속기관의 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② 구청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 민원전용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 1과 같이 해당부서 소속과 민원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

④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규격 및 글씨체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징수관, 재무관, 통합지출관, 재산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구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그 원형을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히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각인)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하며, 그 관서명과 직명 다음에는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인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관서명과 함께 회계명을 새긴다.

제6조(공인의 등록·재등록) ①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을 가지고자 하는 기관은 사전에 구청장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공인의 등록·재등록은 구청장이 이를 새겨 교부한다.

제7조(공인대장) ①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인대장을 비치하여 공인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및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따라 문서업무 주관부서에 신청 및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업무 주관부서가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을 관리하며, 정보화 담당부서가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담당부서는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문서업무 주관부서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제2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야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인영의 보존) 구청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 서식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등록일을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공고) ① 구청장은 공인(전자이미지 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구보에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재등록공인의 최초사용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11조(공인의 폐기) 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의 재등록, 기관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공인 폐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폐기공인에 대하여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인대장을 기록정리하여 영구 보존하고, 그 공인을 인천광역시 검단구 기록

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시는 해당기관)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공인의 보관자) ① 공인보관자는 구청장이 따로 지정한다. 다만,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보관자가 된다.

② 공인보관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인보관자로 미리 지정된 자가 그 사무를 대행한다.

제14조(보관 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이하 "공인함"이라 한다)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공인보관자가 공인함을 봉인하여 이중 캐비닛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날인 위치 등) ① 공인은 공인보관자가 문서의 시행문과 임용장·상장 및 각종 증명서등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하되 결재문서와 일치 여부 등을 대조·심사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인은 그 문서를 시행("발행·발급·발신 등을 포함한다)하는 시행기관장 명의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등·초본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

제16조(공인 인영의 색깔)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17조(준용규정) 그 밖에 공인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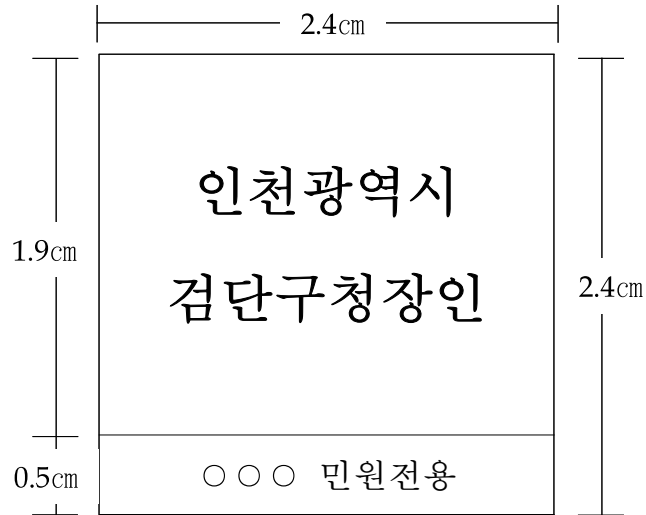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구청장 민원전용 공인 규격 및 표시 방법(제2조제2항 관련)

[별표 2]

공인의 규격 (제4조 관련)

(단위 : cm)

구 분			규격	비고
청 인	합의제기관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기관)		3.6cm 정사각형	
직 인	기 관 의 장 인	2급,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4급,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6급, 7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2.4cm 정사각형 2.1cm 정사각형 1.8cm 정사각형	
	회 계 관 계 직 인	- 징수관, 재무관, 통합지출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및 분임자의 공인 - 출납원 및 분임자의 공인	2.0cm 정사각형 1.8cm 정사각형	

[별지 제1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

수 신
(경 유)

제 목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 (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공 인 명 칭		
종 류		[] 청 인 [] 직 인 [] 특수공인
등록(재등록, 폐기) 사 유		
폐기 대상 공인 처리	폐기 예정일 (분 실 일)	년 월 일
	폐 기 방 법	[] 이 관 []기 타 ()
	폐기한 사람 (분실한 사람)	소 속 : 직 급 : 성 명:
비 고		

발 신 명 의 인

기안자(직위/직급) 서 명		검토자(직위/직급) 서 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 명	
협조자(직위/직급) 서 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 소		/ 홈페이지 주소			
전 화 () 전송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 mm × 297mm 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공 인 대 장

공인 명칭			
종 류	[]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관리부서	
[] 등 록 [] 재등록	(인 영)	등 록 일 (재등록일)	년 월 일
		새긴 날짜	년 월 일
		새긴 사람	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
		최초 사용일	년 월 일
		재 료	
		등록 (재등록)	
		사 유	
		구보 공고	년 월 일 공고 제 - 호
		비 고	
폐 기	(인 영)	등 록 일 (재등록일)	년 월 일
		폐 기 일 (분 실 일)	년 월 일
		폐기 사유	[] 마멸 [] 분실 [] 기타()
		폐기 방법	[] 이관 [] 기타()
		폐기 또는 분실한 사람	소속: 직급: 성명:
		구보 공고	년 월 일 공고 제 - 호
		비 고	

<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전자이미지 공인대장

공인 명칭					
종 류	☐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 등 록 ☐ 재등록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등록일 (재등록일) 등록(재등록)	년 월 일		
		사 유			
		관리부서			
		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	사용 기관(부서)	시스템 명칭	통 보 일	최초 사용일
		비 고			
	폐 기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폐 기 일	년 월 일	
폐 기 사 유					
폐기한 사람			소속:	직급:	성명:
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					
사용 기관(부서)			시스템 명칭	통 보 일	최종 사용일

<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인 영 부

공 인 명	인 영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등록 · 재등록	등록 · 재등록	등록 · 재등록	등록 · 재등록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등록 · 재등록	등록 · 재등록	등록 · 재등록	등록 · 재등록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등록 · 재등록	등록 · 재등록	등록 · 재등록	등록 · 재등록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등록 · 재등록	등록 · 재등록	등록 · 재등록	등록 · 재등록

(B4) 257 mm × 364mm 백상지 150 g/m²

[별지 제5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

수 신
(경 유)

제 목 공인사고 보고

아래와 같이 공인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

1. 사 고 인 영	
2. 사 고 발 생 일 시 (장 소)	년 월 일 ()
3. 사 고 내 용	
4. 사 고 후 의 처 리 전 말	년 월 일
5. 기 타	

발 신 명 의 인

기안자(직위/직급) 서 명 검토자(직위/직급) 서 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 명

협조자(직위/직급) 서 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 소

/ 홈페이지 주소

전 화 () 전송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 mm × 297mm 백상지 80g/㎡

관계 법령 발췌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3조(관인의 종류 및 비치) ① 관인은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행정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

② 각급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인을 가진다.

1.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진다. 다만,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립된 합의제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청인을 가진다.
2. 제1호 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 「정부조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4. 합의제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③ 각급 행정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을 가진다.

제34조(특수 관인) ① 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 등 특수한 증표 발행, 민원업무 또는 재무에 관한 업무 등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관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② 세입징수관, 지출관, 회계 등 재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인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립의 각급 학교에서 사용하는 관인은 교육부장관이, 외교부와 재외공관에서 외교문서에 사용하는 관인은 외교부장관이, 검찰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인은 법무부장관이, 군 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인

은 국방부장관이 각각 그 규격과 등록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35조(규격) 관인의 모양은 별표의 규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6조(등록) ① 행정기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인의 인영을 그 행정기관의 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은 그 행정기관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바로 위 상급기관에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관인을 사용할 수 없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관인을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7조(재등록 및 폐기) ① 행정기관이 분실, 마멸, 그 밖의 사유로 관인을 갱신할 때에는 제36조에 따라 등록한 행정기관에 갱신한 관인을 등록(이하 “재등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이 관인을 폐기할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인대장에 관인 폐기일과 폐기 사유 등을 적고, 그 관인을 제39조에 따른 관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폐기된 관인이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③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관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관인의 인영을 전자 이미지관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제38조(전자이미지관인의 제출 및 관리) ① 둘 이상의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기관장”이라 한다)은 그 행정정보시스템에 전자이미지관인을 전자입력하기 위하여 그 행정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자이미지관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제출한 행정기관의 장은 제37조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37조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행정기관의 장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행정정보시스템에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관인을 전자입력하거나 폐기한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전자이미지관인을 전자입력하거나 삭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기관장이 제37조에 따라 재등록된 전자이미지관인을 제출받아 전자입력하거나 폐기된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할 수 있다.

제39조(공고) 제36조에 따른 등록기관은 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

기하였을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제40조(공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에 관하여는 이 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6조(관인의 재료 등) ① 관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관인의 인영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27조(직인의 사용)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직인은 그 직무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9. 7.>

제28조(관인의 내용) 관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다만, 영 제34조에 따라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관인은 그 업무의 집행 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임을 그 관인의 인면(관인 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29조(등록) ① 행정기관(제3항에 따라 바로 위 상급기관으로서 그 하급기관으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은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관인의 인영을 별지 제7호서식의 관인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별지 제8

호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 이미지관인의 컴퓨터파일은 정보화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영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바로 위 상급기관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0조(재등록 및 폐기) ① 행정기관(제3항에 따라 바로 위 상급기관으로서 그 하급기관으로부터 재등록신청 또는 폐기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은 영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관인대장에 갱신한 관인의 인영 또는 폐기하려는 관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영 제3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폐기하려는 전자이미지관인 또는 재등록하려는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영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바로 위 상급기관에 등록한 관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그 상급기관에 재등록신청을 하거나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전자이미지관인의 관리)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제출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 관리대장에 해당 관인의 인영을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공고의 내용) 관인 등록기관이 영 제39조에 따라 관인을 공고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재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관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능정보화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지능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능정보화책임관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다.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및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4조)

라. 정보문화의 창달 및 정보격차의 해소 등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능정보화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위임된 사항 및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고도화 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정보격차”란 사회적·경제적·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5. “정보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을 말한다.
6.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이란 지능정보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이 지속되어 이용자가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지역주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2장 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제4조(지능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계획 및 인천광역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지능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지능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전년도의 실행계획 추진실적과 당해년도의 실행계획을 인천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담당업무 부서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지능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2.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지능정보화 계획과 연계·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정보기술 아키텍처의 도입·활용
7.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3장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6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구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정보화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정보화할 수 있다.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전자적 민원처리) ①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행정정보의 제공이나 민원사항 처리 등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를 요청하였을 경우 행정정보 공동 이용 서비스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제10조(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등) 구청장은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지능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능정보화사업 추진절차 등 사전협의를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상호연계·공동이용·중복투자방지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당해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지능정보화 교육) ① 구청장은 지역주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원활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교육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를 민간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정보화 교류) 구청장은 타 지방자치단체와 우수 정보시스템 및 프로그램 공동이용이 필요한 경우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공동이용 또는 재개발 사용을 위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와 정보화 교류를 추진할 수 있다.

제14조(유비쿼터스 도시의 추진) 구청장은 도시의 경쟁력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장 지능정보사회의 기반 조성

제15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구청장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주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구청장은 정보 취약계층이 쉽게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을 편하게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보 취약계층에 대하여 정보통신 제품 및 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 제품 및 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시행을 할 수 있다.

제17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구청장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정보보호) ① 구청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전산실에 대하여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제한구역 이상으로 정하여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재난, 재해 등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

하여 비상운영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보화부서에 근무하는 자에게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주요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산기 내에 사용하는 각종 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장소에 소산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⑤ 정보화부서의 보관자료 중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전산정보는 수시로 복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⑥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수시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개인정보의 보호) ① 구청장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서비스 및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4. “지능정보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말한다.

가.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추론·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

나. 데이터(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집·분석·가공 등 처리하는 기술

다. 물건 상호간 또는 사람과 물건 사이에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물건을 이용·제어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

른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마. 무선 또는 유·무선이 결합된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기술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5.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
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
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6. “지능정보사회”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산업·경제, 사회·문화, 행정 등 모
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7. “지능정보서비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

나.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다.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8.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9.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 및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서비스
등 모든 것이 언제 어디서나 연결[이하 “초연결”(超連結)이라 한다]되어 지능
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10.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이란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과 이에 접속되어 이
용되는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설비,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등을 말한다.

11. “정보문화”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사회구성원에 의하여 형성되는 행동방식·가치관·규범 등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12. “지능정보사회윤리”란 지능정보기술의 개발,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이용 및 지능정보화의 추진 과정에서 인간 중심의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개인 또는 사회 구성원이 지켜야 하는 가치판단 기준을 말한다.
13. “정보격차”란 사회적·경제적·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14.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이란 지능정보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이 지속되어 이용자가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15. “정보보호”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변조·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수단(이하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1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기관 및 단체

제3조(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인간의 존엄·가치를 바탕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지능정보사회를

실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리 증진을 추구함으로써 경제 성장의 혜택과 기회가 폭넓게 공유되도록 노력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역기능을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과 개인정보의 보호, 사생활의 자유·비밀을 보장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노력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시책의 추진 과정에서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지원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활용이 인류의 공동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제6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립·확정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공공·민간·지역 등 분야별 지능정보화
3. 지능정보기술의 고도화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과 관련 과학기술 발전 지원
4. 전 산업의 지능정보화 추진, 지능정보기술 관련 산업의 육성, 규제개선 및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등을 통한 신산업·신서비스 창업생태계 조성
5. 정보의 공동활용·표준화 및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
6. 지능정보사회 관련 법·제도 개선
7.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홍보·인력양성 및 국제협력
8.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9. 정보보호, 정보격차 해소, 제51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 역기능 해소,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10.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운용 및 인력 확보 방안
11. 그 밖에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종합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 실적을 점검·분석하여 그 결과를 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다음 해의 실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동으로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 실적 및 실행계획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실행계획을 점검·분석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점검·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그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실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기관 등이 추진하는 지능정보화 사업의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은 제외한다.

⑦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

관의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한 때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의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5조(지역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역량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지역·도시에 대하여 행정·생활·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이하 “지역지능정보화”라 한다)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행정, 재정, 기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지능정보화 및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공공지능정보화 및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34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시책의 마련 등) ① 정부는 지능정보서비스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제공·이용될 수 있도록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구축·

운용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확충·고도화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4조(정보문화의 창달과 확산) ① 국가기관등은 인간의 존엄·가치가 존중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정보문화 창달 및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따른 편익의 보편적 향유
2.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3. 사생활의 비밀·자유와 개인정보의 보호
4. 지능정보화에 따른 정보격차의 해소
5.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과 해소
6.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

②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과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문화 교육과 관련 인력의 양성
2.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홍보
3. 정보문화 교육 콘텐츠의 개발·보급
4.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5. 정보문화의 향유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하여 「유아교육법」 제13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정보문화에 관한 교육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④ 정부는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과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문화의 달을 지정·운영한다.

제46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이하 “지능정보제품”이라 한다)를 설계, 제작, 가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고령자 등이 별도의 보조기구 없이 지능정보제품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능정보제품이 보조기구와 호환될 수 있게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은 지능정보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지능정보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종류·지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른 우선 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검증기준, 검증절차, 구매촉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정보격차해소교육”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해소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 이탈주민
4.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정부는 정보격차해소교육이나 정보격차해소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 및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등)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를 처리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 또는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암호기술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고 암호기술을 이용하여 지능정보서비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 사용되는 “데이터”, “공공데이터” 등의 정의 규정(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4조)

다.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규정(안 제6조)

라.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안 제7조 및 안 제8조)

마.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바. 데이터의 수집·관리 및 제공,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사. 데이터기반행정 주요 추진 분야 및 활성화에 관한 규정(안 제15조 및 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구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2.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데이터기반행정”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와 제3조에 따른 공단,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 및 다른 기관, 법인·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통계 및 데이터를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4. “비식별화”란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구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

제4조(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경제발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누구든지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가 국가안전보장 등의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령이나 이용 조건 등을 지키고, 신의에 따라서 성실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추진체계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① 구청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무
2. 데이터의 종합·조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
3. 데이터의 제공 및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
4. 데이터기반행정 시책 발굴 및 사업별 사전협의·조정·지원 등 총괄 사무

③ 책임관은 소관부서의 실(국)장으로 하며,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소관업무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법」 제7조제1항 및 「공공데이터법」 제8조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5.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7.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8.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필요한 사항

제8조(데이터기반행정 실태조사)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데이터기반행정의 기반 구축

제10조(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① 구청장은 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자료를 수집·관리·이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으로 수집된 자료와 그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구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데이터의 수집·관리) ① 책임관이 데이터기반행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생성·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한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데이터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데이터를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12조(데이터의 제공) ① 구청장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구민의 데이터에 대한 이용권 보장과 민간 활용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

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는 구 홈페이지나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제공한다.

④ 제공되는 데이터의 내용에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나 개인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이를 비식별화하여 제공한다.

제13조(데이터의 품질관리) ① 구청장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데이터의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와 제공 촉진을 위하여 품질진단·평가, 개선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공공데이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품질진단 및 평가 결과에 대해 해당 데이터를 생성·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소통과 협력) ① 구청장은 데이터 및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등을 구민에게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이에 대한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데이터를 활용한 구민과의 소통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데이터의 분석, 데이터 관련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인천광역시 소재 대학, 단체 등과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

제15조(데이터기반행정 주요 추진 분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 중 데이터기반행정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심층적이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분야
2. 특정 계층·지역·분야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
3. 안전사고,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위험성을 제거·예방하거나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분야
4.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
5. 비용 절감이나 처리 절차의 개선 등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16조(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분석 사업
2. 행정·복지·안전·환경·관광·의료·교통·교육분야 등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포럼, 세미나 및 공모전 개최
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5.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교육
6.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데이터의 활용 인식 제고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제17조(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구청장은 소속 직원들의 데이터기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하여 데이터 교육을 실시하고, 데이터의 분석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된 정부, 민간기관 및 단체, 유관기관 등과의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9조(비밀보호를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데이터 관련 사무를 관련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 사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의무를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해서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용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과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 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
 - 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기록물
 -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3.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 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제공”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하고 이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2. 공공데이터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
3. 공공데이터의 관리·제공·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
4.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5.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위한 관련 업무

③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담하는 조직은 제13조에 따른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에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절한 품질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하는 등(이하 “분석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기관 및 단체

제7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제공·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3. 제16조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 총괄 및 지원
4.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2026. 7. 1. 검단구 출범으로 인한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기가구 및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 및 구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및 제5조)

다.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의 위촉, 임기, 의무 및 해촉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교육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검단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위험 등으로 위기에 놓인 구민을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적자원으로 무보수·명예직의 생활업종 종사자 및 지역주민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검단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효과적인 운영에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역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보장급여 등의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 발굴
2.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지역주민 참여 유도 및 정보 공유
3. 위기가구 지원에 필요한 물적·인적자원 연계
4. 그 밖에 동장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

제5조(구성)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동별 위기가구의 특성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동 가능한 인적자원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6조(위촉)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공개모집하거나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7조(임기)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의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활동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해촉) 구청장은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
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거나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지원) 구청장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 수행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 및 연수 등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구청장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활동이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에게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위기가구의 발굴) ① 보장기관의 장은 누락된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가구(이하 이 조에서 “위기가구”라 한다)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호~제2호) 생략

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 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장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제1항과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중대한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입을 위기에 처한 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보장기관에 알리고, 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호 ~ 제25호) 생략

제14조(민관협력) ① 보장기관과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역사회보호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제40조에 따른 시·도사회보장위원회를 말한다)에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 및 그 밖에 사각지대 발굴과 관련한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 등을 포함시켜 운영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내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2026. 7. 1. 검단구 출범으로 인한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4조)

나. 사업자의 책무 및 기부식품 제공 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다. 식품 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과 시행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8조)

라. 식품 등 기부 협조요청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예산법무과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여 기부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공동체 문화 및 나눔 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등"이란 식품과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생활용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고, 식품위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식품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

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등을 준수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면 안 된다.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등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성별, 연령, 건강상태, 가족 구성원 수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운영 방안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감독
4.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보조금 지원)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등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냉동고 등 운영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5.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①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상호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 기관 등을 통하여 기부식품등 제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수시로 대중매체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등 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신고) ①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제3조의2(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사업자에 대한 기부식품등의 조정·배분과 교육 실시 등을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중에서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각각 지정할 수 있다.

제6조(기부식품등의 무상제공) ①제공자 및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기부식품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제7조(국가 등의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인천광역시 검단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2026. 7. 1. 검단구 출범으로 인한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4조)

나.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다. 그밖에 지역사회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 및 이웃 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적용한다.

제5조(지원 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 사례관리 대상 가구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제6조(지원 내용)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
2.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3.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경우에는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관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7조(자원봉사자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서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원봉사센터 또는 관련 사회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사회보장기본법

제2조(기본 이념)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5.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

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6.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법인이 법령에 따라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로서 사회보장 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3조(사회서비스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보장과 제24조에 따른 소득보장이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민간의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자원봉사, 기부 등 나눔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
 2. 사회보장정책의 시행에 있어 민간 부문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
 3. 그 밖에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사회보장에 참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비용의 부담) ①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②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被傭者)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 공공부조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며,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급여”란 제5호의 보장기관이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2. “수급권자”란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수급자”란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지원대상자”란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장기관”이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장기관은 이에 필요한 안내와 상담 등의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 ② 보장기관은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급여대상에서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장기관은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생애주기별 필요에 맞는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투명·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장기관은 사회보장급여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단체·시설이 제공하는 복지혜택 또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보장기관은 국민이 사회보장급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책 및 관련 제도를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보장기관은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이 균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의2(위기가구의 발굴) ① 보장기관의 장은 누락된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가구(이하 이 조에서 “위기가구”라 한다)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공유받은 정보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결과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
2. 자살자가 발생한 가구 또는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2026. 7. 1. 검단구 출범으로 인한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 나. 추진계획 수립, 실태조사(안 제4조~제5조)
- 다. 지원대상, 지원사업(안 제6조~제7조)
- 라. 협력체계 구축, 홍보, 사무의 위탁(안 제8조~제10조)
- 마. 비밀유지 의무(안 제1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교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검단구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생을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 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5.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2. 그 밖에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사업
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복지 지원사업
3.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사업
4. 방문간호서비스 지원사업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지원사업
6. ICT(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지원사업
7.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홍보)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홍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홍보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제3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국민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는 고독사 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하 “고독사위험자”라 한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는 고독사 예방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고독사위험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사업
 2.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사업
 3.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4. 첨단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운영 지원
 5. 고독사 예방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 연계
 6.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7. 방문간호서비스
 8. 그 밖에 시장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 방법, 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군·구 및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1. 제안이유

2026. 7. 1. 검단구 출범으로 인한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 목적(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다. 적용대상 (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복지기관의 장의 역할) ① 사회복지기관의 법인 대표나 시설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복지, 교육지원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기관의 법인 대표나 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신변 및 안전보장,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검단구 지역 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 방향
2. 사회복지사 등의 고충처리 및 회복지원을 위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처우개선 사업)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변 및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2.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사업
 3.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4. 고충처리 및 회복지원을 위한 사업
 5.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교육·훈련 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나.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위원회의 위원의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12조(포상) 구청장은 모범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정의)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사회보장계획(연차별 시

행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군·구 의회의 보고(보고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③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해당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④ 특별자치시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⑤ 시·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제40조에 따른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시·도 의회의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계획을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2021. 7. 27.>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⑦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이하 “지역사회보장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시·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⑧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⑨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3. 21.>

인천광역시 검단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2026. 7. 1. 검단구 출범으로 인한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제정 목적(안 제1조)
- 나.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다.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라. 지원사업 (안 제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 등”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갇생보호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협력)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은 대상자 등이 가정 및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심리적·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2. 자립의지 및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지원
3. 체험활동 및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지원
4.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인천광역시 소재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관련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등에 기여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 의무)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 수행으로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인천광역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지원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인천광역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 등”이라 한다)이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중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협력) 인천광역시민은 대상자 등이 가정 및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 분위기 조성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① 시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 치료 사업
2. 자격증 취득 등 직업훈련·교육
3.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8조(포상)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 의무)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협의체 기구, 대표협의체 구성,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8조)

다. 동 협의체, 동협의체 연합회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라. 위원명단 공개,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의 임기,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제14조)

마. 사무국, 회의, 회의록, 의결사항의 처리,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공청회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20조)

바. 회의수당, 협의체 운영지원,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안 제21조~제2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라. 기 타: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대표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조직으로, 이 조례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의미한다.
3. “전문위원회”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사회보장과 관련된 심의위원회 통합에 따른 전문성을 보완하여 심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5.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6.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자원발굴 및 연계,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조직을 말한다.
7.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란 각 동 협의체 위원장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동 협의체 간 정보공유·연계협력을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구청

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심의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9.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기초연금 이의신청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0.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1.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12. 구청장이 지역보장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협의체 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 제5조(대표협의체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 ③ 임명직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복지담당국장, 보건소장, 복지업무담당 과장, 청년 및 일자리업무 담당 과장, 실무협의체 위원장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중 대표로 선출된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구청 부서장

제6조(전문위원회) ①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자체 지침 또는 규정 등에 따라 의결기능을 부여할 수 있다.

1.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3.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기초연금 이의신청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4.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복지사각지대 구민(실질적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을 말한다.) 우선지원과 선별에 관한 사항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최소 인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 분야 국장으로 한다.

- ③ 전문위원회 위원은 대표협의체 위원과 학계 및 현장 전문가로 위촉하고 관계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⑤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관련된 업무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 ⑥ 각 전문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⑦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 ⑧ 위원이 제7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에서 해촉될 수 있다.
- ⑨ 심의 안건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대표협의체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한다.

제7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위원 중에서 임명 및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 보건의료, 사회보장(고용, 주거, 문화, 교육 등) 해당분야 구청 팀장과 실무분과장 및 동 협의체 연합회 간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구청 담당팀장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의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 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8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실무분과 총무는 실무분과 분과장이 실무위원 중 1명을 지명한다.

④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 공무원(팀장 및 직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 실무 분야별 해당 당연직 공무원의 구성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동 지역사회

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한다.

④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특정 구성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 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5.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⑧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전문자문위원이 필요시 대표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의 추천을 통해 위촉할 수 있으며, 각 동 업무추진에 자문 및 심의하는 업무를 행한다.

⑨ 구청장은 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⑩ 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 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는 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으로 구성하며, 대표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②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의 대표위원장은 호선하고, 간사는 대표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 대표위원장은 대표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되고 간사는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공동사업개발 및 제안

2.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 정보 공유 및 역할 조정, 연계, 협력 도모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연계 협력

제11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7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 명단을 구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실무협의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경우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동 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질병·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5조(사무국)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팀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 팀장 및 직원은 협의체 소속으로, 민간공동위원장이 채용한다.

④ 사무국은 각 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 제2항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협의체 운영 관련 일반 행정업무

4.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16조(회의 등)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회의의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시회의는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대표협의체: 연 4회 이상
2. 실무협의체: 연 6회 이상
3. 실무분과: 연 6회 이상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각 협의체, 전문위원회 및 실무분과가 심의·자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1조(회의 수당) 대표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 동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1.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 3. 21.>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개정 2017. 3. 21.>
- ⑦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 단위로 읍·면·동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읍·면·동에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신설 2017. 3. 21.>
- ⑧ 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7. 3. 21.>

제42조(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 ①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조직, 인력,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등을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보장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기구(이하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라 한다)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②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수급권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종합 안내하고,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신청 등이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③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의 사무 범위,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 3. 21>

인천광역시 검단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2026. 7. 1. 검단구 출범으로 인한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 목적(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다.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라. 지원대상 (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교육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연고자 이거나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 사망자의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하며 사회적 책임의 이행 등을 위해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를 말한다.
2. “무연고 사망자”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검단구”라 한다) 관내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와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등의 사망자를 말한다.
3. “부양의무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를 말한다.
4.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연고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 등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기피·거부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염사,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
2. 사체 검사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포함
3. 장례업체·민간기관·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화장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비용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인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방법) ①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금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으

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5조에 따른 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지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민간기관·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하 “장례수행자”라 한다)을 지정하여 장례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처리한 후 장례처리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원신청 및 장례 처리 결과보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업무의 대행) ①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점검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자 및 장례수행자가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장례 지원업무 대행자가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을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비용환수)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장례수행자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지원 업무 대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장례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환수의 절차·방법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5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장례비를 포함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제6조에서 정한 지원으로 연고자 등이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무연고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등의 사람을 말한다.
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

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공영장례의 기본방향
2. 공영장례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등
3. 공설장례식장 및 사설장례식장에 공영장례를 위한 빈소 확보 방안
4. 공영장례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공영장례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제5조(지원대상자) 시장은 무연고 및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망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인천광역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
3. 제2조제3호에 준하는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
4.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검단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2026. 7. 1. 검단구 출범으로 인한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제정 목적(안 제1조)
- 나.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다.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안 제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사항 인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특성에 맞게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사람에게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긴급지원대상자"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구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긴급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가구구성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한 경우
4.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본인이 포기하거나 자활 사업 참여 거부 등의 이유로 보장 중지된 경우는 제외한다.
 - 가.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 나.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 다.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실직 등 위기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의 사용료가 3개월 이상 체납하거나,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실직 등 위기 사유로 3개월 이상 월세가 체납되어 생계가 어렵고,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이하인 경우
8. 과다 채무에 따른 빚 독촉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주소득자(住所得者)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사례관리 대상자 중 사례회의를 통하여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기관에서 추천하는 경우
12.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관할 경찰서로부터 통보

받은 사람 중 그 피해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동일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3.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이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제2조의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1조의2)

제1조의2(위기상황의 기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4.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5.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의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6.2.]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설치(제3조)

나. 기금의 재원, 기금의 용도, 기금의 관리·운용 등(제4조~제6조)

다. 대상사업, 지원대상, 지원신청 등(제7조~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사업과 자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사회복지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사업"이란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2.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0조에서 정한 사업을 말한다.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말한다.
4. "차상위계층"이란 법 제2조제10호 및 영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기업체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사업 및 자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2. 국·시비 보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자활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7. 기금의 운용 수익금
8.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1. 노인복지사업
2. 자활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노인복지사업기금, 자활기금의 계좌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용도별로 구분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구 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기금의 운용수익금과 출연금 범위에서 집행한다.

④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에서 심의하고,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2장 노인복지사업

제7조(대상사업)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사업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로효친 등 미풍양속 및 전통문화 선양사업
2. 노인의 건강과 여가선용 및 문화탐방 활동지원
3.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및 사회참여 지원
4.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검단구지회 운영지원
5. 그 밖의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8조(지원대상) 제7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검단구지회
2.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단체 및 사업주체

제3장 자활사업

제9조(대상사업)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자활사업단의 사업장 운영을 위한 사업비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4.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전세점포임대 지원 사업
5.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6.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제10조(지원대상) 제9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11조(지원신청) 제10조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9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11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자활사업자금 운영) ① 제9조에 따른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1억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개인창업자는 전세점포 임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대상은 5년 거치 후 5년 내에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전세점포 임대 지원비 지원기간은 1년 또는 2년 단위로 계약하고, 최장 6년까지 연장 할 수 있다.

④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고,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

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⑤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2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⑥ 자활사업단의 사업장 운영을 위한 사업비는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13조제4항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을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1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5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기금 담당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각 사업기

금담당으로 한다.

③ 기금을 기관·단체에 교부하여 집행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자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 집행하여야 한다.

④ 회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기금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용한다.

제18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 12. 30.>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2. 1.]

제18조(직업훈련)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능습득의 지원은 수급자 중 직업훈련이 가능한 사람을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직업훈련을 받도록 하고, 그 훈련에 필요한 준비금·수당·식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 대상자의 규모, 훈련 직종, 대상자 선정기준 등이 포함된 직업훈련의 지원에 관한 계획을 해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훈련 직종의 선정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직업훈련기관, 직업훈련비의 지급 및 훈련자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9. 8.]

제18조의7(자활기금의 적립)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 <개정 2019. 1. 15.>

②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운영을 자활복지개발원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개정 2019. 1. 15.>

③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2. 1.][제18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7은 제18조의11로 이동 <2021. 7. 27.>]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 법 제2조제10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 4. 20.][제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15. 4. 20.>]

제9조(사회복지시설 등의 우선 이용) 보장기관은 제8조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근로활동이나 자활사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

복지시설 등의 보육·간병 또는 보호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1.>

[전문개정 2011. 9. 8.]

제10조(자활사업) ① 자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2. 6. 12., 2015. 4. 20.>

1. 제18조에 따른 직업훈련
 2. 제19조에 따른 취업알선 등의 제공
 3. 제20조에 따른 자활근로
 4.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제시하는 사업장에서의 취업
 5. 「고용정책 기본법」 제3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근로사업
 6.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이하 “지역자활센터”라 한다)의 사업
 7.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하 “자활기업”라 한다)의 사업
 8. 개인 창업 또는 공동 창업
 9. 근로의욕 제고 및 근로능력 유지를 위한 자원봉사
 10.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9호에 따라 생계급여의 조건으로 자원봉사를 제시받은 조건부수급자가 그와 다른 자원봉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원봉사의 내용·기간 및 자원봉사 이행 여부의 확인자 등을 고려하여 그 자원봉사를 생계급여의 조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의 내용 등을 변경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4. 20.>

[전문개정 2011. 9. 8.][제목개정 2015. 4. 20.]

제12조(자활사업의 위탁시행) ① 시장·군수·구청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민간기관·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이하 “자활사업실시기관”이라 한다)에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조건부수급자의 수용능력 등에 관하여 미리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0.>

②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활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조건부수급자의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의견 등을 포함한 자활사업 참가결과를 3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건부수급자가 조건 이행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거부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0.>

[전문개정 2011. 9. 8.]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지원 대상 자활기업)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보장기관이 지원할 수 있는 자활기업은 그 구성원 중 수급자가 5분의 1 이상이면서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3분의 1 이상인 자활기업으로 한다. 이 경우 자활기업이 제32조에 따라 지원을 최초로 요청할 당시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였으나 그 후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면하게 된 사람이 계속하여 구성원으로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산정(算定)한다. <개정 2012. 8. 2., 2019. 2. 8.>

② 보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던 자활기업이 구성원의 변동으로 인하여 지원이 중단됨으로써 자활기업의 존립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성원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5분의 1 이상인 자활기업에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 8. 2., 2015. 4. 20., 2019. 2. 8.>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 7. 16.>

1. 전체 구성원이 5명 이상이고, 전체 구성원의 30퍼센트 이상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일 것
2. 설립 후 만 3년이 경과하였을 것
3. 법인(설립 당시에는 법인이 아니었으나 설립 이후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일 것

[전문개정 2012. 2. 14.][제목개정 2012. 8. 2.]

□ 노인복지법

제2조(기본이념) ①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

③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활기관협의체 설치 및 기능(제2조)

나. 자활기관협의체 위원구성, 직무, 임기(제3조~제5조)

다. 자활기관협의체 운영(제7조~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자활사업 관련 기관의 해당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가능 인원
에 관한 사항
2. 지역특성을 반영한 해당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자활근로 위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활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호에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로 한다.

1. 직업안정기관
2. 「상공회의소법」 제4조에 따른 상공회의소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4제4항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센터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
5. 그 밖에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시설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협의체의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2.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협의체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및 회의록) 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협의체 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협의체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실무자회의) ①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지역자활사업의 추진실적 및 개선필요사항 점검
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 선정
3. 자활대상자의 사전·사후관리
4. 자활지원계획 내용 검토 및 이행사항 점검
5. 제3조제2항 각호의 기관 또는 시설 간 협력체계 구축·운영
6.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 기관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② 실무자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실무자회의의 참석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보장기관 자활업무 관련 담당자 및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2. 동 행정복지센터 자활사업 담당 공무원
3. 자활사업 실시기관 등의 실무자
4. 직업안정기관 실무자

제11조(실비지급)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자활기관협의체)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1호의 직업안정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과 상시적인 협의체계(이하 “자활기관협의체”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②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자활기관협의체(이하 “자활기관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지역자활센터의 장

2.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

가. 직업안정기관

나. 「상공회의소법」 제4조에 따른 상공회의소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4 제4항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센터

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

마. 그 밖에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② 자활기관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4. 20., 2019. 7. 16.>

1. 자활지원사업의 추진실적 및 개선필요사항 점검
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 선정
3. 자활대상자의 사전·사후 관리
4. 자활지원계획의 내용 검토 및 이행사항 점검
5. 제1항제2호 각 목의 기관 또는 시설 간 협력체계 구축·운영
6. 그 밖에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기관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자활기관협의체의 운영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활기관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5. 4. 20.>

[전문개정 2012. 2. 14.]

인천광역시 검단구 의료급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기금제정에 관한 사항(제1조~제2조)
- 나. 기금의 재원 및 존속기한(제3조~제4조)
- 다. 세입 및 세출(제5조)
- 라. 회계공무원의 임명 및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제6조~제7조)
- 마. 수입(제8조)
- 바. 지출(제9조)
- 사. 준용(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예산법무팀, 가정보육과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의료급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교부받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의료급여기금의 합리적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계정)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설정하여 운영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대지급금, 부당이득금, 해당 연도말 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4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세입 및 세출)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급여대상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6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기금담당관은 구의 의료급여업무담당 부서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회계공무원의 사무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관을 둘 수 있다.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8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지방세 고지의 예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전산 고지서로 출력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정내역을 통보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8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지급명령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관리 법률

제25조(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4.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5. 제29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6.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1호의 국고보조금의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급여비용, 대지급에 드는 비용, 제33조제2항에 따른 업무 위탁에 드는 비용 또는 그 밖의 의료급여 업무에 직접 드는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 또는 채신관서예의 예치
2. 국채·공채의 매입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제1조~제2조)

나. 지원대상, 구청장의 책무, 수리업체 지정·운영, 수리비용 지원(제3조~제6조)

다. 지원신청, 환수조치, 비밀준수의 의무, 지도·감독 (제7조~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이동용 보조기기”란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에서 정한 보조기기 품목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이동용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수리업체 지정·운영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전문수리업체(이하 “수리업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지정 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리업체 지정서를 교부한다.

제6조(수리비용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 지원액은 수급자는 20만원, 차상위계층은 15만원 이내로 한정한다.

③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의 범위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임의적으로 장착한 부품, 장비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수리비용중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7조(지원신청) ①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동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정 여부를 확인 후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송부하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 수리업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수리 의뢰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리 의뢰를 받은 수리업체는 수리 완료 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 청구서 및 관련 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비용 청구서와 관련자료 확인 후 수리업체에게 청구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등) 구청장은 지정 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 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급된 비용을 환수하고 수리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3년간 수리비용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지정 수리업체는 지원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및 수리비용 청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 수리업체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장기요양기관 및 요원에 관한 처우개선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제1조~제3조)
- 나.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제4조~제5조)
- 다. 처우개선사업 등(제6조)
- 라.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장기요양기관의장의 책무, 포상(제7조~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계획
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처우개선사업 등)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2.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관리 및 안전확보를 위한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장기요양요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독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노인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공적이 뛰어난 장기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요원을 선정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이하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기요양사업의 표준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1.>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1.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2.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

3.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의2(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에 관한 사항

2. 제52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한다)의 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이하 “수급자”라 한다)의 규모, 그 급여의 수준 및 만족도에 관한 사항

3.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처우 및 규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2.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2.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장기요양요원의 업무범위, 직무상 권리와 의무 등 권익 보호를 위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신설 2024. 1. 2.>

④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4. 1. 2.>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받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4. 1. 2.>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시정신청의 절차, 사실확인 조사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 1. 2.>

[본조신설 2018. 12. 11.]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①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2008. 6. 11., 2009. 12. 30., 2010. 3. 15., 2015. 12. 30., 2018. 5. 29., 2023. 8. 8.>

1. 법 제2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방문요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이하 “요양보호사”라 한다)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 법 제2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방문목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로 한다.

3. 법 제2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방문간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로서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자

나.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경력이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치과위생사(구강위생 업무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법 제23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주·야간보호, 같은 호 마목에 따른 단기보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요양보호사

-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 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
 - 라.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 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물리치료사
 - 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작업치료사
- ②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12. 30., 2010. 3. 15.>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기능(제1조~제2조)

나. 구성, 위원장 등 직무, 위원의 임기(제3조~제5조)

다. 위원의 해촉, 회의 및 원원의 제척*기피*회피, 간사 등(제6조~제8조)

라. 의견의 청취, 수당 등, 시행규칙(제9조~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교육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관련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자료의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위촉위원을 포함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장애인업무담당 국장 및 부서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으로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거주자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구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구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의견의 청취)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 상담업무를 각 동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위원회 개최 시 복지상담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을 제외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장애인복지법

제13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①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 복지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직·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인천광역시 검단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제1조~제2조)

나. 설치·운영, 기능, 운영의 위탁(제3조~제5조)

다. 수탁자선정위원회(제6조~제9조)

라. 지도·감독, 위탁의 해지, 예산 지원, 이용 제한(제10조~제13조)

마. 협력체계, 교육·홍보사업, 의견청취, 비밀 준수, 운영세칙(제14조~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교육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중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람을 말한다.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란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문자해독 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발달장애인과 생활하고 있거나 보호하고 있는 가족 또는 친족을 말한다.
4. “평생교육센터”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해 이 조례에 따라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여 지원하는 센터를 말한다.

제3조(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 사업을 수행하

기 위하여 평생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센터의 위치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관내에 둔다.

③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개설기간은 평생교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④ 평생교육센터의 평생학습 개설강좌 과목, 이용정원 등은 해당 시설의 수용능력, 교육과정의 규모, 특수교육 강사확보 등을 감안하여 평생교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⑤ 평생교육센터 이용대상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주소지를 둔 발달장애인과 인천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발달장애인 각 50퍼센트로 구성한다.

⑥ 평생교육센터의 관리·운영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4조(평생교육센터의 기능) 평생교육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상담 및 사례조사
2.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강좌 운영
3.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정보 관리 및 보호
4. 발달장애인 보호자 교육 및 홍보사업
5. 고도비만, 중복장애 등으로 집중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방안 수립
6. 그 밖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위탁하는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위

탁기간을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설치)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은 교육센터 운영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선정위원회의 구성) 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장애인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장애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인천광역시 검단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선정위원회의 기능)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모집에 따른 수탁자

선정

2. 선정위원회는 각종 위탁신청서류와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심사 및 현장확인과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3.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 사업수행 능력평가 및 심의·의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해당 심의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척된다.

② 안전과 관련 있는 이해당사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시설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90일 이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기간이 종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의 운영, 발달장애인의 보호, 평생교육사업 수행 등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생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수강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의사의 치료가 상시 필요한 이용자인 경우
2. 그 밖에 다른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평생교육센터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을 위하여 보호자·수탁자·발달장애인단체·사회복지시설·교육기관·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홍보사업)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 또는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학생, 일반 구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의견청취)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 운영과 그 밖에 복지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장애인단체, 전문가,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 시행할 수 있다.

제1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평생교육센터 운영 관련 규정을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위탁시설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관계 법령 발췌

□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2021. 6. 8., 2023. 4. 18., 2023. 6. 13.>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3. “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4. “평생교육사업”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5. “평생교육이용권”이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

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6.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이하 “성인 진로교육”이라 한다)이란 성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고 진로를 인식·탐색·준비·결정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진로수업·진로심리검사·진로상담·진로정보·진로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각장애 등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8.>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한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 4. 18.>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8.>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평생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게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교육기본법」 제2조 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기준, 교육제공인력의 요건 등은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구청장의 책무(제3조), 구민의 책무(제4조)
- 나. 노인학대예방위원회에 관한 사항(제5조~제9조)
- 다. 시행계획의 수립(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교육과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②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5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법 제39조의6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노인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노인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2. 노인복지시설의 대표
3.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검단구지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5. 법률전문가
6.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특히 공로가 있는 사람 및 기관·시설 등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1. 노인인권보호 관련 정책제안
 2.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3. 노인학대 예방의 홍보, 교육자료의 제작 및 보급
 4. 노인보호전문사업 관련 실적 취합, 관리 및 대외자료 제공
 5.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관리 및 업무지원
 6.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심화교육
 7. 관련 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8. 노인학대 분쟁사례 조정을 위한 중앙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9.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둔다. <개정 2015. 12. 29., 2020. 12. 29.>

1.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2.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3.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 3의2. 피해노인에 대한 법률 지원의 요청

4.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5.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보관
 6.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7. 노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
 8. 노인학대사례 판정을 위한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9.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노인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제2항에 따른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제3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5. 12. 29., 2016. 12. 2., 2017. 10. 24., 2018. 3. 13., 2018. 12. 11., 2021. 12. 21.>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 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 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1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14.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15.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16.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지복무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목적, 정의, 지원 대상(제1조~제3조)
- 나. 건강보험료 지원 시기, 대상자 결정, 보험료 지급 및 안내(제4조~제6조)
- 다.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 관리 및 예산 확보, 보험료 정산(제7조~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교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저소득층”이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정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의 월 산정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인천광역시 검단(이하 “검단”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층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서부지사(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역 가입자인 세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 경감에 의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이미 의료급여 수급을 받고 있는 세대는 제외한다.

1. 65세 이상 노인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가족 세대
4.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세대

② 제1항의 보험료 지원 관련 세부 선정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지원시기) ① 보험료는 매월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공단은 제3조에 따른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10일 전까지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대상자 결정)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통보된 대상자에 대해 검토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단에서 통보된 기본 자료를 토대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보험료 지급 및 안내)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를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② 공단은 보험료를 지원대상자별로 수납처리하고, 지원대상자에게 검단구의 예산으로 수납되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자 관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대상자별 지급내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 확보)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료 정산) 공단은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급한 보험료 중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하거나 보험료 납부사유 소멸로 지원받은 보험료의 잔여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달 보험료 청구 시 정산하여 차감 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1. 섬·벽지(僻地)·농어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2. 65세 이상인 사람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2호, 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5. 휴직자
6. 그 밖에 생활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② 제77조에 따른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3. 5. 22., 2019. 4. 23., 2023. 5. 19.>

1. 제81조의6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 고지 또는 독촉을 전자문서로 받는 경우
2. 보험료를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보험료 경감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5. 22.>

[제목개정 2013. 5. 22.]

□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2. 30., 2015. 3. 27., 2023. 3. 4., 2023. 8. 8., 2024. 2. 1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4.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6.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8.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10. 그 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② 제1항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의 인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6. 12.]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노인 일자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대한 일자리 창출과 지원으로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검단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연령 및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노인일자리 사업별로 참여 대상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사회활동”이란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성격의 활동을 말한다.
4.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노인일자리 사업 및 지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

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검단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개발·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지원의 기본방향
 2.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사회활동 관련 교육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의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7조(운영 등)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통해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따른다.

제8조(생산품의 우선구매) 구청장은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제9조(예산지원 등)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노인일자리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일자리”란 사회적으로 유용한 가치를 창출하면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으며 건강증진, 사회참여 및 소득증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를 말한다.
2. “노인사회활동”이란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성격의 활동을 말한다.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이란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을 말한다.
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이란 노인에게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소득, 건강 및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5.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 노인”(이하 “노인”이라 한다)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및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개발·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개발·보급사업, 현장의견청취·조사사업, 교육·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인증·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
2.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 개발·지원, 창업·육성, 안전관리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3.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 자리를 알선하는 기관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경우 시니어클럽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상담 및 연계, 정보 제공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의 설립 및 운영
5. 그 밖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⑤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창업에 필요한 재정지원, 상담 및 교육, 정보 제공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노인공익활동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 활동 등을 하면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노인공익활동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공익활동사업에 저소득 노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를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 자격여부
2.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 자격여부 및 수급액
3. 그 밖에 노인공익활동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득의 기준 및 확인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우선지정일자리의 선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서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우선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일자리(이하 이 조에서 “우선지정일자리”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우선지정일 자리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우선지정일 자리 관련 사업을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등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4. 1.]

[시행일: 2025. 10. 2.] 제15조의2

제3장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기반 조성

제17조(노인생산품 판매촉진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노인친화기업·기관, 또는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이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이하 “노인생산품”이라 한다)의 판매·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시회, 박람회, 홍보행사 등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노인생산품 우선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노인생산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참여자 보호)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참여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참여자 보호)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참여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노인 일자리의 활동비를 적정수준으로 지급하도록 노력한다.<신설 2024. 12. 20.>

③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4. 12. 20.>

[시행일: 2026. 1. 1.] 제23조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제1조~제2조)

나. 지원대상자, 지원기준, 지원신청 및 선정(제3조~제5조)

다. 지원제외, 지원회수(제6조~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 고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등급 외(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 B) 판정을 받았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기준)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성인용 보행기는 1인 1대를 지원한다. 다만, 지원한 성인용 보행기가 잦은 고장, 수리 불가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 1대까지 교체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및 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등을 주소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성인용 보행기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성인용 보행기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이나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노인에게는 지원하지 않는다.

제7조(지원회수) 허위, 중복,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때 또는 양도 시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급여방식 및 급여품목) ① 복지용구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복지용구사업소"라 한다)에 의하여 제공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에 대한 복지용구의 급여방식은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입방식 : 수급자가 「구입품목」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
2. 대여방식 : 수급자가 「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당해 제품의 대여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

③ 복지용구 분류체계별 급여품목은 별표 1과 같다.

1. ~3. <삭제> <별표1로 이동>

□ 복지용구 분류체계별 급여품목[별표1]

2. 이동

수급자가 안정적이고 독립적으로 걷거나 이동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보조하거나 이와 관련된 돌봄을 지원하는 목적

가. 이동보조

수급자가 걷거나 전신을 이동하는 것을 보조하거나 이와 관련된 돌봄을 지원하는 목적의 제품

- 1) 성인용 보행기
- 2) 지팡이
- 3) 수동휠체어

나. 이송보조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를 필요한 장소나 위치(침대로부터 휠체어, 휠체어로부터 의자 등)로 이동시키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제품

다. 환경지원

수급자가 안정적으로 걷거나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제품

1) 안전손잡이

2) 경사로(실내용 · 실외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등급판정 등) ①공단은 제14조에 따른 조사가 완료된 때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②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제12조의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한다. <개정 2016. 5. 29.>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노인복지증진의 책임(안 제1조~제2조)
- 나. 노인복지 증진 및 예우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10조)
- 다. 구민의 책무, 예산 등의 지원, 시행규칙(안 제11조~제1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영위 할 수 있도록 노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인복지증진의 책임)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간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한다.

② 구청장은 연간 종합계획 수립 시 사업별 지원대상, 방법, 범위 등을 포함한다.

제3조(노인의 구정참여 지원) ① 구청장은 노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노인 및 노인복지시설 이용노인을 대상으로 주요 구정을 안내 할 수 있다.

제4조(예우)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각종 행사 시 노인을 우선 초청하고 좌석배치 등의 예우를 한다.

제5조(사회참여활동 지원) 구청장은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기회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회참여 제공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지역봉사활동 및 노인일자리 사업
2. 노인대학 및 노인교실

3. 그 밖에 노인문화 · 여가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단체 및 기관 등

제6조(경로식당 운영) ① 구청장은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경로식당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② 경로식당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의 노인들에게는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그 이상의 경제적 능력을 갖춘 노인들에게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

2. 차상위계층 노인

3. 기타 저소득 독거노인

③ 경로식당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는 식사를 배달할 수 있다.

④ 경로식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인 ·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100세이상 노인 지원) 구청장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00세 이상 노인에게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설날, 추석)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경로행사 등) ① 구청장은 노인에게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효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가정의 달, 경로의 달 또는 노인의 날을 기념하여 다음 각 호의 경로행사를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직접 추진하거나 노인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 및 시설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어버이날, 가정의 달 행사

2. 노인의 날, 경로의 달 행사

3. 어르신 화합 한마당 행사

② 제1항에 따른 행사 시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 노인들에게 식사와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차량지원) 구청장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는 노인복지시설 이용 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 정책 시행에 있어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포상할 수 있다.

1. 구 노인복지 행정 또는 노인복지 증진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노인복지 지원 정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효행 우수자로 인정한 사람

② 구청장은 운영 실적이 우수한 경로당을 모범경로당으로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③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구민의 책무) 검단구민은 노인을 공경하고 이를 선양(煽揚)하기 위한 구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 등의 지원)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노인복지증진 사업의 지원대상, 내용, 시기 등 세부기준은 별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재무회계 관계 규정을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원기준표(제12조 관련)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시기
1. 노인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역봉사지도원	활동 실비	매월
2. 노인교실(대학) 운영	수강생	간식, 수학여행 (소풍) 경비	운영 시
3. 노인 무료급식 지원	저소득층	식사 또는 부식	수시
4. 100세 이상 노인 지원	100세 이상 노인	물품, 상품권	설날, 추석
5. 어버이날, 가정의 달 행사	행사참여자	식사, 기념품, 교통 편의	행사 시
6. 노인의 날, 경로의 달 행사	행사참여자	식사, 기념품, 교통 편의	행사 시

관계 법령 발췌 관계 법령 발췌

☐ 노인복지법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

③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노인의 날 등) ①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로 달로 한다.

②부모에 대한 효사상을 앙양하기 위하여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한다.

③ 삭제

④ 범국민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제1조), 정의(제2조), 구청장의 책무(제3조)

나.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보조금 지원 등, 정산 등, 지도·감독 등(제4조~제8조)

다. 결연사업(제9조), 금지사항(제10조), 준용(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예산법무과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경로당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경로당”이란 구에 소재하는 경로당으로서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
2. 경로당 시설 및 환경개선
3.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노인복지단체 및 노인복지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경로당을 폐쇄 또는 보조금 등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③ 경로당은 운영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회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하고, 구청장의 실태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운영비
2. 양곡 구입비
3. 냉·난방비
4. 경로당 생활 물품
5. 경로당 시설물 개수·보수 및 환경개선 사업비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5호의 경우 구립 경로당에 한하며, 150세대 이상이거나 의무단지 공동주택 부설 경로당 및 사립 경로당 등은 제외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를 지원할 때에는 경로당의 시설 규모, 이용 인원, 시설 형태,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건강증진 및 교육·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7조(정산 등) ①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매월 수입·지출 내역을 정산하여 회원에게 공개하고 정산내역은 분기별로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최대한 간소화하여 노인들의 서류작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산 내역 등을 확인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정산내역을 확인한 후, 위반사항이 있을 시 제8조제2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시설 및 회원 관리, 운영비 사용·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2. 경로당 이용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3. 경로당과 관련된 민원 발생 여부 등

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지도·감독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지원을 축소, 중단할 수 있다.

1. 수입·지출 집행 내역 미공개 및 정산 결과 미제출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사용
3. 사행성 유기 행위 조장
4. 경로당 이용의 차별 또는 이용자 권익의 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5.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6. 그 밖에 법령, 조례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9조(결연사업)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경로당 운영 활

성화를 위하여 경로당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금지사항) ① 경로당 시설물 내에서는 야간 숙박을 할 수 없다.

② 경로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의 승인 없이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준용)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노인복지증진의 책임)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간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한다.

② 구청장은 연간 종합계획 수립 시 사업별 지원대상, 방법, 범위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20.3.9.>

제3조(노인의 구정참여 지원) ① 구청장은 노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노인 및 노인복지시설 이용노인을 대상으로 주요 구정을 안내 할 수 있다.

제5조(사회참여활동 지원) 구청장은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기회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회참여 제공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지역봉사활동 및 노인일자리 사업
2. 노인대학 및 노인교실
3. 그 밖에 노인문화 · 여가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단체 및 기관 등

제11조(포상)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 정책 시행에 있어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포상할 수 있다.

1. 구 노인복지 행정 또는 노인복지 증진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노인복지 지원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효행 우수자로 인정한 사람

② 구청장은 운영 실적이 우수한 경로당을 모범경로당으로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③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 8. 3.>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삭제 <2011. 6. 7.>

②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1. 6. 7., 2018. 3. 13.>

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8. 3. 13.>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2. 1.]

제37조의3(경로당에 대한 공과금 감면) ①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는 경로당에 대하여 각각 전기요금·전기통신요금 및 도시가스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수도법」에 따른 수도사업자(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는 경로당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47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 1. 28.>

1.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 60세이상의 자
2. 경로당 : 65세이상의 자
3. 삭제 <2011. 12. 8.>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1. 28.>

③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은 시설별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5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2. 12. 20., 2005. 6. 8., 2005. 10. 17., 2006. 7. 3., 2008. 1. 28., 2010. 9. 1., 2015. 1. 16., 2016. 12. 30., 2019. 7. 5.>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다)
3.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경로당을 제외한다)
4. 사업계획서 1부(경로당은 제외한다)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각 1부

6. 삭제 <2019. 7. 5.>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건물등기부등본·토지등기부등본 및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06. 7. 3., 2008. 1. 28., 2010. 2. 24., 2010. 9. 1., 2016. 12. 30., 2019. 7. 5.>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복

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1999. 8. 25., 2006. 7. 3., 2008. 1. 28., 2016. 12. 30., 2019. 7. 5., 2019. 9. 27.>

제26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7]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제26조제1항 관련)

1. 시설의 규모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이거나 또는 인원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가. 노인복지관 : 연면적 5백 제곱미터 이상

나. 경로당 : 이용정원 20명 이상(섬 또는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10명 이상)

다. 노인교실 : 이용정원 50명 이상

표 2. 시설기준

구분	사무실	서강 및 회의실	강의실 또는 연회실	강의실 또는 강당	복합 강의실	화장실	음식 제공실	비상 구출 대피 시설	계산 또는 홍보실	평가 시설	강제복 입실	휴게실	객실	강제복 입실	기타 부속 시설
노인 복지관	1	1	1	1	1	1	1	1							
경로당						1			1	1					
노인 교실	1					1					1	1			

비 고1. 노인복지관 : 오락실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전자정보의 접근이 가능한 컴퓨터를 설치할 수 있다.2. 노인교실 : 사무실 및 휴게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의실과 겸용할 수 있다.

3. 설치기준

시설의 종류	노인복지관	장르당	노인복합
노인복지관	가. 국공립 노인복지관 : 노인복지시설의 내주 노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내주 또는 내주에 원리 한 구조여야 한다. 나. 민간노인복지관 : 자립노인복지관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립한 노인복지관으로 노인복지관을 배치해야 한다. 다. 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 또는 노인복지시설 명칭을 가진 노인복지관 또는 노인복지관으로 명칭을 가진 노인복지관을 운영하여야 한다.	가. 노인복지관 : 노인복지시설 이하여야 한다.	가. 노인복지관 : 노인복지시설 이하여야 한다.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①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 7. 30., 2007. 12. 13., 2011. 12. 8., 2017. 9. 5.>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2. 법 제3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
정
3. 법 제3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4. 법 제3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5. 법 제3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
6. 법 제39조의19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
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의 부담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 12. 27., 2011.
10. 2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시

설평가의 결과 등 당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
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27., 2012. 8. 3.>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적장애인 등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제1조~제2조)

나. 책무, 예방 계획 수립(제3조~제4조)

다. 지원대상, 추진사업, 예산지원, 협력체계, 시행규칙(제5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적장애인 등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검단구 지적장애인 등 실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적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실종”이란 지적장애인 등이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상태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적장애인 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위치추적기”란 배회감지기 등을 포함한 기기 착용자 위치를 파악하는 제반 전자 장치를 말한다.
5. “시설장애인”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가 필요한 지적장애인 등을 보호하고 실종 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 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실종 예방 대책
2.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당사자 및 보호자 지원 사항
3. 장애인 실종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실종 예방 정책의 시행에 있어 민간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지적장애인 등
2. 검단구지역 시설장애인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위치추적기 지원 사업
2.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3. 실종 경험 지적장애인 등과 보호자에 대한 당사자상담,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
4. 지역 사회 내 민간 복지 자원 발굴 및 연계 등 상호협력 사업
5. 그 밖에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예산 등의 지원)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법인 또는 단체가 장애인 실종 예방 사업에 참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를 수행하기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도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청장은 장애인 실종 예방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장애인복지법

제24조(안전대책 강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락사고 등 장애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비상재해 등에 대비하여 시각·청각 장애인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하여 피난용 통로를 확보하고, 점자·음성·문자 안내판을 설치하며, 긴급 통보체계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범죄(이하 “유기등”이라 한다)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형법」 제271조에 따른 유기 또는 존속유기
 2. 「형법」 제273조에 따른 학대 또는 존속학대
 3. 「형법」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에 따른 약취, 유인, 인신매매, 상해
· 치상, 살인·치사, 수수·은닉 등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의 아동학대범죄
 6. 그 밖에 발달장애인에게 특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 ②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발생 사례가 없는지 소속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에게 관할 지역을 정기적으로 탐문하고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시설 종류, 운영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나. 시설의 위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16조)
- 나. 시설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직업재활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수탁자”라 함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을 말한다.
4. “재위탁”이라 함은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함에 있어 위탁기간 만료 전의 수탁자에게 계속 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시설의 종류) 구가 설치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장애인 근로사업장에 해당한다.

제4조(설치 및 운영목적) 시설은 근로가 가능한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 및 자체 수익을 통해 임금지급이 가능한 자립형 사업장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며 나아가 장애인이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5조(위치) 구가 설치하는 시설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마중1로 12에 둔다.

제6조(시설의 운영) 시설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제7조(시설의 위탁방법)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위탁신청서류 등) 시설 위탁운영 신청자 및 재위탁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선정된 수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탁운영 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재위탁) 신청서
2.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이사 전원 이력에 관한 서류
3. 시설의 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이력서, 학력 및 경력 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4. 시설운영계획서(조직구성, 사업계획, 시설운영)
5.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9조(수탁자 선정) ① 수탁자 선정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② 수탁자 선정 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공신력
2. 재정부담능력
3. 사업수행 능력, 실적, 인력, 기술 등
4. 지역사회와 협력관계 조성능력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들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법인을 수탁자로 선정한다. 단, 동일점수를 획득한 경우에는 위원들의 표결에 의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수탁기간등) ① 수탁자가 선정된 때에는 구청장과 수탁자 간의 위·수탁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위·수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수탁자의 사업실적이 우수하고 성실히 운영하는 등 구청장이 위탁의 갱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공개경쟁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재위탁 의사가 있는 수탁자는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재수탁 여부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제5조의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들이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장애인복지 전문가
2.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및 대표자
3.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구의 장애인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
5. 그 밖에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시설 담당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설의 수탁자 선정 심사
2. 시설의 위탁 갱신 시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위탁관리 능력 평가
3. 운영비 등 비용에 관한 적격성 심사
4. 그 밖에 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

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해임·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때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6조(위원회의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수탁자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시설재산을 운영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위탁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책임있는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시설을 신축·증축·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재산의 권리는 구에 귀속된다.

4. 관계 법령 및 조례에 정한 명령이나 처분,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의 해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7조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점검 및 지도감독에 응하지 않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수탁자가 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5. 수탁자가 위탁취소를 원하는 경우
6.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탁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 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등 일체를 구청장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기구 및 인력)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조직과 직제기준 및 정원의 범위에서 구청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시설운영비) ① 시설운영비는 사업수익금 및 수탁자부담금, 기타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에서 시설운영비를 지원할 경우 시설은 「인천광역시 점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등에 따라 목적과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매 분기마다 정산서를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구에서 정산을 요청할 때에는 즉시 응하여야 한다.

제21조(수익금 사용) ① 수탁자는 시설운영의 수익금을 작업장 내 고용장애인, 비장애인에 대한 급여와 운영유지비에 사용한다.

②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사업참여자 및 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시설운영개선의 재투자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22조(승인) ① 수탁자는 최초 사업운영계획 수립 이후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사업연도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설의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의 경우
3. 수익금 사용에 관한 규정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23조(지도·감독) ①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사항에 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

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점검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수탁자는 성실히 임해야 한다.

제24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시설 및 근로자, 종사자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 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과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 ① 법 제58조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장애인에게 직업훈련 및 근로기회의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제조·가공 시설, 공장, 영업장 및 판매시설을 말한다.<신설 2021. 6. 30.>

②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4와

같이 구분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은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1. 6. 30.>

제42조(시설의 설치·운영기준) 법 제59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08. 11. 5., 2012. 8. 3., 2019. 6. 12., 2020. 1. 3.>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익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익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17. 7. 26.> …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직어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 책무 (제1조~제3조)

나. 충전기 설치 지원계획, 실태조사, 예산지원(제4조~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이 자주 이용하는 곳에 전동보조기기 충전기를 설치하여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동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공공시설 등에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이하 “충전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충전기 설치 지원계획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이동 편의 및 사회참여 활동 증진을 위해 충전기 설치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원 규모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이동 편의를 고려한 버스정류장 인근 도로, 공원, 휴게공간 등
설치장소 확보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충전기 설치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항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충전기 설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제4조 지원계획에 따라 충전기 설치 및 유지 관리
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제1조~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적용범위, 편의시설 설치 등, 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제3조~제6조)

다. 한국수어 활성화, 수어통역센터, 지원 등, 포상(제7조~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와 청각·언어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어를 활성화하여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언어권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각·언어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언어장애인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설치·운영하거나 관리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편의시설”이란 청각·언어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운영되는 자막시스템, 한국수어통역전용 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
4. “자막시스템”이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화면에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한국수어통역전용 스크린”이란 한국수어통역을 전용으로 송출하는 기기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6.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7. “한국수어통역사”란 청각·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하여 한국수어를 국어로, 국어를 한국수어로 통역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8. “수어통역센터”란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설치된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적용한다.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1.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람 등을 위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된 경우에는 관람석 등이 300석 이상인 시설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 등)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언어장애인의 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청각·언어장애인이 접근 또는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자막시스템 또는 한국수어통역전용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설치 대상 시설의 규모에 따라 청각·언어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적당한 크기로 편의시설의 설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원거리 관람석에서도 관람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투·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할 때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한국수어 또는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청각·언어장애인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 ①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행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여 청각·언어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를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 등에서 개최할 경우에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신청에 따라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통역사가 안전하게 한국수어통역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제7조(한국수어 활성화) 구청장은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수어통역센터) 수어통역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다.

1. 청각·언어장애인 상담지도
2. 출장 수어 통역서비스 제공
3. 수어교육, 보급사업, 청각·언어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9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어통역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과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한국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산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포상)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12. 31.>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제16조의2(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장애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주에게 안내 서비스, 한국수어통역 등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2. 3.>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대상시설)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 한국수화언어법

제16조(수어통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이 필요한 농인들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 사법·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정책 등을 발표하는 경우 발표 현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등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하며, 발표 내용을 농인들이 알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수어통역 영상을 공표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들이 구직, 직업훈련, 근로 등 직업 활동 전반에 불이익이 없도록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

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수어통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제62조의2(중앙수어통역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어통역에 관한 정책·제도의 조사, 관련 시설의 운영지침 수립 및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중앙수어통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앙수어통역센터의 설치·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수어통역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을 방지하고, 시설 운영·관리의 연속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시설의 운영 및 관리, 기타 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지)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여가복지시설(이하 “노인여가복지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1. 검단노인복지관: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로502번길 15-1(마전동)
2. 당하노인복지관: 인천광역시 검단구 독정로 57(당하동)

제3조(업무 및 기능)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에 대한 각종 상담
2. 소득보장 및 재가복지 사업
3.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사업
4.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사업
5.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다만,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필요한 사항을 위탁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되, 만료 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따라 위탁 운영을 갱신할 경우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그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⑤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설치) ㉞ 제3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선정위원회의 구성) 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7조(선정위원회의 기능)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

2.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심의·의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선위원이 해당 심의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척된다.

② 안전과 관련 있는 이해당사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이용대상 및 사용료)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대강당, 소강당, 강의실 등 일부시설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일반인에게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사용하거나 시설의 이용을 허가 하였을 때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단체,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와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사용 및 이용제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자의 복지증진에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함
2.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한 모든 재산에 대하여 책임 있는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
3. 수탁자는 보조금 등을 노인여가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에 직접 사용
4. 수탁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내의 시설을 신축·증축·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구에 기부 채납하여야 함(다만, 칸막이 공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시 또는 수탁의사가 없을 시에는 2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함
6.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제12조(위탁의 해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4.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② 위탁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등은 위탁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감독) ① 수탁자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상황에 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점검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의 범위에서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탁기간 만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1]

노인여가복지시설 사용료

(단위: 원)

시설명	기준	사용료	기준시간초과 (시간당)	비 고
대강당	1시간	70,000	20,000	사용 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소강당	1시간	30,000	10,000	
강의실	1시간	30,000	10,000	

관계 법령 발췌

☐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⑤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제1조~제3조)

나. 구민의 책무, 계획의 수립, 실태조사(제4조~제7조)

다. 예산지원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에 장애가 있었거나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5.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로서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할 책무를 지닌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 조사
2.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차별과 인권보장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을 비롯한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5. 여성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폭력피해 여성 장애인을 위한 정책
6.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7.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제4조(장애인 등의 권리와 구민의 책무) 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구민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 전반의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하여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목표, 시책방향
2.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 시책
4.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과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 개발
5.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인권보장 사례
6.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구민 참여 활성화와 지원 방안
7. 정책 및 시책 추진을 위한 행·재정상의 지원방안
8.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전문가 및 장애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제1조~제2조)

나. 책무, 지원대상, 지원사업(제3조~제5조)

다. 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포상, 시행규칙(제6조~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예산법무과[예산팀](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경유)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주소를 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원만히 정착하여 자립생활 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이란 러시아 사할린(이하 “사할린”이라 한다)에 강제 동원되었거나 그곳에서 출생 또는 거주한 한인 및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서 국가의 사할린한인 영주귀국 사업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집중거주 지역의 생활편의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1세대

2. 제1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이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취득 전이라도 구에 거소를 둔 사람이어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인권보호 교육·홍보
2.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3. 구민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상호 간 이해와 소통을 위한 교류
4. 의료기관, 법원 방문 등 언어상 한계 극복에 필요한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
5. 건강생활에 필요한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6. 문화·체육활동 기회 제공
7.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을 방문하는 후세대를 위한 한국어 및 역사·문화 교육
8. 국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 친척 등과 만남의 기회 제공
9.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의 사할린 등에 남아있는 친족 등과의 교류에 필요한 경비 지원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① 구청장은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중 노년층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검단구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쉼터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포상) 구청장은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업무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 등에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적용범위(제1조~제2조)

나. 사전공고, 신청, 계약(제3조~제5조)

다. 사업의 의무, 계약의 해지, 사용료 등, 시행규칙(제6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신문·복권판매대,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자) 및 65세 이상 노인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 주민에게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① 제2항에서 정한 공공시설 내에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타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②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구 및 그 소속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3조(사전공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은 제2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 내에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이를 Green 점단구, 구보 게재 등의 방법으로 사전공고 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제3조에 따른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원하는 자는 구 관내 거주자로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신청서(시설의 장이 정한 소정양식)
2.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 우선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5조(계약) ①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제4조에 따른 계약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장애인 등에게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로 정하되, 동일 순위일 경우 추첨으로 하며, 그 이외는 해당 기관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5년 이내의 기간에서 각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6조(사업의 의무) 제5조에 따라 계약을 받은 자는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하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해당 기관의 장은 설치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에 종사하는

장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6조의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계약을 체결한 장애인 등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
3. 그 밖의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장애인 등이 사망한 경우
5.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

제8조(사용료 등)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우선 계약 순위(제5조 관련)

순 위	장 애 인	노 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	북한이탈주민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70세 이상 노인 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65세 ~69세 노인 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자
3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자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관계 법령 발췌

□ 장애인복지법

제42조(생업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이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하면 그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이 우편법령에 따라 국내 우표류 판매업 계약 신청을 하면 우편관서는 그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위탁 또는 지정 등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접 그 사업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설치 허가권자는 매점·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기 위하여 설치 장소와 판매할 물건의 종류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애인에게 알리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노인복지법

제25조(생업지원)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 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3.>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청소, 주차관리, 매표 등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을 100분의 20 이상 채용한 사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18. 3. 13.>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종류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3. 13.>

[제목개정 2018. 3. 13.]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장은 그 공공시설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0. 17.]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생업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단체의 범위, 매점의 규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는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3. 28.]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생업지원)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

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점의 규모, 운영 및 허가·위탁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2.>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나 위탁을 받은 자는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생업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26.]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제1조), 구청장의 책무(제2조)
- 나.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제3조),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장소(제4조)
- 다.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제5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지역수급계획 (이하 “묘지 등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전문 연구기관 등에 기초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사설봉안시설의 설치장소) ① 영 제18조제1항 별표 3 제2호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하 "종전 법"이라 한다) 시행(1962. 1. 1.) 이전에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된 묘지 내에 있는 분묘를 화장하여 안치할 목적으로 가족 또는 종중·문중 봉안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제1항 각 호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고 지형의 형태 등에 의해 제1항의 각 시설 또는 장소에서 시야로부터 완전 차단되어 가시권 밖에 위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거 설치된 해당시설에는 종전 법 시행 이후 사망한 가족 또는 종중·문중 구성원을 포함하여 안치할 수 있다.

제5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고시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2. 산사태, 침수, 붕괴 등 재해발생 우려 지역으로 항구적인 안전대책이 강구되지 아니한 지역

제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구청장은 묘지 등의 수급계획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需給)에 관한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역수급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지역수급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2024. 9. 20.>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역수급계획 중 지역간 장사시설의 수급조정, 장사시설의 공동설치 및 장사시설에 관한 지역간 갈등조정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2024. 9. 20.>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의 기간·범위·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는 장사시설의 수급(需給)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5. 7. 20., 2016. 1. 28.>

1. 종합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사시설의 수요 변동 추세와 공급 전망
3. 장사시설의 확충계획 및 재정투자계획
4. 장사문화의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5. 지역 간 장사시설의 수급계획 및 관리운영계획
6. 그 밖에 장사정책 및 장사시설 수급 등에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수급계획(이하 “지역수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5. 7. 20., 2016. 1. 28.>

③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수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지역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7. 20.>

1. 지역수급계획의 기본방향
2. 관할 구역의 연도별 출생자 수와 사망자 수 및 그 변동 추세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매장자 수, 화장자 수, 봉안자 수 및 자연장자 수와 그 변동 추세에 관한 사항
4.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존의 장사시설 등의 정비계획 또는 확충계획과 그에 따른 재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11조에 따른 분묘의 일제 조사와 법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지역 간 장사시설의 수급 조정, 장사시설의 공동 설치 및 장사시설에 관한 갈등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
- ④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역수급계획의 수립 지침에 따라 지역수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0.>
- ⑤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가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구역별 장사시설의 수급계획에 대하여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5. 7. 20.>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협의 사항을 확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3. 15.>
-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결과를 다음 종합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된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수급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5. 7. 20.>
-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종합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수급계획의 연도별 추진 실적을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5.

7. 20.>

⑨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받은 지역수급계획의 연도별 추진 실적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법 제36조에 따른 비용의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5., 2015. 7. 20.>

⑩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지역수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 3. 15., 2015. 7. 20.>

제18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과 사설방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 7. 20., 2020. 1. 7.>

제22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④ 법 제17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08. 9. 22., 2010. 3. 9., 2012. 7. 20., 2013. 6. 17., 2014. 7. 14., 2015. 7. 20., 2016. 1. 28., 2017. 5. 29., 2018. 6. 19., 2020. 1. 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가. 화장시설, 방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조성할 수 있는 지역

나.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가족자연장지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의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같은 항 제2호의 상업지역 중 일반상업지역·근린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 및 같은 항 제3호의 공업지역 중 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

2. 다음 각 목의 수변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나.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지역에 공설묘지·법인묘지,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봉안묘·봉안탑·봉안담(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 영 제21조에 따라 법인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자연장지를 새로 설치·조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도로법」 제40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접도구역

4. 「하천법」 제10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하천구역

5.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6.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환경보호구역,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경관보호구역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수목장림을 설치·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수목장림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및 주차장이 산림보호구역 밖에 설치되어 있을 것

6의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채종림등, 시험림 및 특별산림보호구역

7.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국유림. 다만, 자연장지는 보전국유림 내에 조성할 수 있다.

8.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백두대간보호지역

9. 「사방사업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사방지(砂防地)

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군사기밀보호법」 제5조에 따라 설정된 군사보호구역. 다만,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 부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붕괴·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

2. 사설봉안시설

가. 봉안묘

1)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

가)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지는 1개소로 제한하며, 그 면적은 개인봉안묘의 경우 10제곱미터 이하, 가족봉안묘의 경우 3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는 사원·묘지·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는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마)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가)의 면적 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2)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

가)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지는 1개소로 제한하며,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하여야 한다.

나)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는 사원·묘지·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는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마)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가)의 면적 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바) 가)의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지의 면적 중 봉안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화초·수목 등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3)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봉안묘

가)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를

대상으로 설치하려는 봉안묘지는 1개소로 제한하며 그 면적은 5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만, 마)의 시설은 그 봉안묘지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봉안묘는 사원·묘지·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봉안묘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봉안묘는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마)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바)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가)의 면적 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사) 봉안묘지의 면적 중 100분의 2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4)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봉안묘

가) 봉안묘는 사원·묘지·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봉안묘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하

여야 한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그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봉안묘는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마)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한다.

바) 봉안묘지의 면적 중 100분의 2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 봉안당

1) 가족 또는 종중·문중봉안당

가) 「민법」상 친족관계였던 자 또는 종중·문중의 구성원 관계였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여야 한다.

나) 가족 또는 종중·문중봉안당의 연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 가족 또는 종중·문중봉안당은 사원·묘지·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가족 또는 종중·문중봉안당은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그 봉안당 실내에 유골을 안치하여야 한다.

마) 가족 또는 종중·문중봉안당에는 방충·방습·환기 등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도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가.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나.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다. 통행료 징수시설, 도로관제시설, 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시설

라.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

마. 낙석방지시설, 제설시설, 식수대 등 도로에서의 재해 예방 및 구조 활동, 도로환경의 개선·유지 등을 위한 도로부대시설

바. 그 밖에 도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국가도로망”이란 제10조 각 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지방도 등이 상호 유기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도로망을 말한다.

4. “국가간선도로망”이란 전국적인 도로망의 근간이 되는 노선으로서 제10조 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국도를 말한다.

5. “도로관리청”이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으로서 도로의 구분에 따라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토교통부장관

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

6. “도로구역”이란 도로를 구성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제25조에 따라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

7. “도로공사”란 도로의 신설, 확장, 개량 및 보수(補修)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한다.

8. “도로의 유지·관리”란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인 도로관리(경미한 도로의 보수 공사 등을 포함한다) 활동을 말한다.

9. “타공작물”이란 도로와 그 효용을 함께 발휘하는 독, 호안(護岸), 철도 또는 궤도용의 교량, 횡단도로, 가로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 6. 9.>

2. “철도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철도의 선로(선로에 부대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역시설(물류시설·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및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건축설비

☐ 하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4. 1., 2012. 1. 17., 2013. 3. 23., 2020. 6. 9., 2020. 12. 31., 2023. 1. 3.>

2. “하천구역”이라 함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토지의 구역을 말한다.

제10조(하천구역의 결정 등) ①하천관리청은 제7조제6항에 따라 하천의 명칭

및 구간의 지정 또는 지정의 변경·해제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하천구역으로 결정 또는 변경하거나 하천구역을 폐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사업의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인 일자리사업”이라 함은 노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고 시간적 연속성과 공간적 실체를 갖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사업 및 기능)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들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인 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3. 노인 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4.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5. 그 밖에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 ① 구청장은 센터를 운영하되 다만 필요한 경우 운영 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 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구청장이 지정한다.

④ 수탁자가 변경 될 때에는 전수탁자의 인적자원의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한다.

제5조(위탁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위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들이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노인복지 전문가
2. 노인복지시설의 장 또는 대표자
3.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
5. 그 밖에 위원회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6조(위탁심사위원회의 기능) 제5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위탁 사항
2. 위탁 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사항
3. 제10조의 위탁의 취소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7조(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4조에 따라 수탁자로 선정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3조 규정에 따라 노인 일자리 사업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보조금 및 수탁자 자산을 시설관리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3. 센터 운영에 필요한 법령 등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4. 기간만료 또는 사업운영 중 수탁운영 의사가 없을 때에는 종료 3개월 이전

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5. 운영에 관한 회계처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제10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간만료 이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2. 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훼손, 멸실하였을 때
3. 사업목적에 위배된 운영을 하였을 때, 또는 위탁관리 운영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될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 시설과 부대시설 및 모든 장비와 비품 등을 원상 복구하여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 및 실비보상) ① 제4조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일자리사업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제12조(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매년 8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①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를 원하는 자 또는 단

체 등은 신청에 의해 센터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이 될 수 없다.

1. 전염성 질환자 및 정신 질환자
2.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3. 그 밖에 등록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자

제14조(등록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자에 대하여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2.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로 알게 된 공무상 비밀 또는 일자리사업 수요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제15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 및 수탁자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조사 또는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관계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함에 있어서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6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센터 종사자 또는 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일자리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 사망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7조(포상) 구청장 및 센터장은 노인 일자리사업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개발·보급사업, 현장의견청취·조사사업, 교육·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인증·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
2.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 개발·지원, 창업·육성, 안전관리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3.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 자리를 알선하는 기관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경우 시니어클럽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상담 및 연계, 정보 제공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의 설립 및 운영
5. 그 밖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⑤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제1조~제2조)

나. 다른법과의 관계, 구청장의 책무, 우선구매 대상기관(제3조~제5조)

다.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 우선구매 협조요청, 평가 및 포상(제6조~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 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우선구매 대상물품”이란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공사
3. 검단구 의회

제6조(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매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 산품 구매실적, 구매기관의 총 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액 등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 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액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제 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 의 100분의 1.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 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 절차 및 방법에 관하 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조(우선구매 협조요청) 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 공표와 함께 우 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기타 구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단체, 법인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 사회단체보조 업무 수탁기관 등에 대한 평가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제1조~제2조)

나. 책무, 타법 및 조례와 관계, 기본계획 수립·시행(제3조~제5조)

다.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복지단체 보호, 협력체계, 교육 및 홍보(제6조~제9조)

라. 예산지원, 비밀 준수, 시행규칙(제10조~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검단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란 상담, 평생교육, 직업훈련, 여가, 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 시책을 수립하고 발달장애인의 교육프로그램 개발·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를 추진함에 있어 발달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별, 유형별 종합복지서비스

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으로 부담이 경감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및 지원에 관하여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검단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검단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자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을 위하여 보호자·수탁자·발달장애인단체·사회복지시설·교육기관·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홍보사업) 구청장은 복지단체와 협력하여 학생, 주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지원)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

가.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나. 자폐성장래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보호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의 보호자(발달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나.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

다.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이 아닌 사람 중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같은 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라. 성년인 발달장애인 중 나목 및 다목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나목에 따른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35조(장애 유형·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 유형·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재활·의사소통·보행·이동 훈련, 심리상담, 문화·여가 활동 참여 및 가족·자조 모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인천광역시 검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책무, 계획수립, 지원신청, 지원사업, 자립생활실태조사(제3조~제6조)
- 다. 인권 및 자립생활 교육, 자립생활 체험홈, 주거생활의 지원, 시행규칙(안 제7조~제1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결정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보조서비스”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일체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자립생활 체험홈”이란 자립생활 경험이 부족한 중증장애인이 성공적인 자립생활을 목적으로 역량을 강화하며 체계적으로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주거 공간을 말한다.
5. “주거서비스”란 체험홈 설치 운영, 주택 개조사업 지원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구청장은 중증장애인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중증장애인 및 보호자, 그 밖의 관계인은 구청장에게 자립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의 동의(발달장애인의 경우 부모나 성년 후견인, 법적 대리인의 별도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이를 중증장애인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동료 간 상담 및 역량강화 교육
2.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
3. 활동보조서비스
4. 주거편의개선 등을 위한 주거서비스
5. 자립생활 교육 및 기술훈련
6. 중증장애인의 접근권 향상을 위한 이동서비스
7. 중증장애인 가정의 자녀 양육활동
8. 중증장애인 취업에 필요한 교육 및 구직 서비스
9. 중증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 조사 사업
10. 중증장애인 재난예방 및 안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
11.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사업

제7조(자립생활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검단구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로 같음하되 필요한 사항은 추가하여 조사한다.

제8조(인권 및 자립생활 교육) 구청장은 장애인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자립생활지원을 위해 중증장애인과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자립생활 체험홈) 구청장은 시설에서 퇴소한 중증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을 체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주거생활의 지원) 구청장은 자립생활 중인 중증장애인 및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임대아파트 포함)에 편의시설 설치 등 주택개조를 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19.>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수급권”이란 이 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3. “수급권자”란 수급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수급자”란 이 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5. “소득인정액”이란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6.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평가액”이란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실제 소득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연금의 지급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7.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재산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재산 범위,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율, 그 밖에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3. 30.,

2013. 6. 4., 2015. 12. 29.>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제16조 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수급자”란 제9조 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활동지원사업”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수행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자(제6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자의 1촌 이내 직계혈족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 및 그 밖에 수급자의 생계를 책임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6. “활동지원기관”이란 제20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7. “활동지원인력”이란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31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1. 26.]

인천광역시 검단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정의에 관한 사항(제1조~제2조)

나.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사항(제3조)

다. 지원대상 및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제4조~제6조)

라.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제7조)

마.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교육과와 합의

라. 기 타: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의 학교급식을 안전하게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을 따른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품, 「축산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 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표준규격품을 말한다.
3.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라 함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 구입 및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구입비 및 그 밖의 시설·설비비를 말한다.
4.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 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5. “지원대상자”라 함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및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학교급식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지원)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식품비는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검단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로 한다. 다만, 직영급식 실시대상 학교 및 시설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제5조(경비부담 등) ①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는 해당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

② 급식운영비는 해당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및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 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 계획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1. 부구청장 및 학교급식업무 담당 국장
2. 인천서부교육지원청 관련 국장
3. 검단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4. 검단구 관내 영양사 및 조리사 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5.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농·수·축산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검단구 관내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9. 그 밖의 관련 전문가 등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급식지원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검단구 학교급식업무 담당 국장 및 인천서부교육지원청 관련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각 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에 대해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를 보조받은 지원대상자는 우수 농·수·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거나, 시설·설비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으로부터 보조받은 식품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지원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학교급식재료의 생산과 공급, 지원에 따른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단구지역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학교급식법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①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 12. 28.>

1.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급식에 관한 경비 및 식재료 등의 지원
3. 그 밖에 학교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검단구 교육혁신지구의 목적과 역할(제1조)
- 나. 교육혁신운영위원회와 실무협의회 설치 및 운영(제7조, 제9조)
- 다. 민·관·학 협력 및 교육 거버넌스 구축(제2조 제4항, 제3조 제2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인천광역시 검단구 관내 각급 학교 및 학부모, 지역 주민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지역의 교육역량을 향상시켜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검단구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검단구”라 한다) 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령기 청소년을 말한다.
2. “검단구교육혁신지구”란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이라 한다)이 교육혁신지구 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정한 자치구로, 검단구와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지역 교육 공동체로서 검단구 전역을 말한다.
3. “교육혁신지구사업”이란 인천광역시 교육감이 지정한 검단구와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민·관·학 교육 거버넌스”란 교육혁신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등의 제고를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육 관계 기관·단체, 행정기관, 학교가 함께 교육의제 형성, 목표설정,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검단구교육혁신지구는 학생 중심의 교육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한다.

- ② 검단구교육혁신지구는 민·관·학 교육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운영한다.

제4조(교육혁신지구사업의 범위) 검단구 교육혁신지구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교육 혁신 교육과정 지원
2.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지원
3. 인적·물적 교육자원 발굴 및 개발 지원
4. 민·관·학 교육 거버넌스 운영 지원
5. 학생들을 위한 마을방과 후 활동 지원
6. 그 밖에 교육혁신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비용부담) 검단구교육혁신지구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검단구와 교육지원청이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6조(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교육혁신지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교육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검단구와 교육지원청이 교육혁신지구 보조금을 공동으로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인 경우, 교부조건을 동일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검단구 교육혁신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교육혁신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비상설 운영위원회로 둔다.

1. 검단구교육혁신지구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2. 검단구교육혁신지구 발전방향 및 정책제안

3. 교육혁신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관·학 협력 및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혁신지구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③ 위원장은 구청장과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검단구와 교육지원청의 교육 혁신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가. 검단구의회 의원

나. 검단구 초·중·고 학교장

다. 검단구 초·중·고 학부모

라. 검단구 지역사회 관계 기관 대표, 교육전문가 등 지역교육 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

마.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명의 공동간사를 두되,
 간사는 검단구와 교육지원청 교육혁신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⑥ 공동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검단구
 교육혁신업무 소관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운영위원회가 위임한 사항과 실무적인

업무에 대해서 기획하고 조정하는 기구로 실무협의회를 비상설 실무협의회로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공동위원장은 검단구와 교육지원청 교육혁신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⑤ 위원은 검단구와 교육지원청의 교육혁신업무 담당주무관, 학교교원, 학부모, 교육관련 단체 임원 또는 회원, 교육에 관심이 많은 주민 등으로 구성하되, 구청장이 위촉한다.

⑥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조정한다.

1. 운영위원회에서 위임된 안건의 협의 검토
2. 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기획·조정
3. 교육혁신지구 사업의 컨설팅 및 사업 평가 준비
4. 교육혁신지구 사업의 모니터링
5. 그 밖에 교육혁신지구 사업과 관련된 사항

⑦ 실무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명의 공동간사를 두되, 간사는 검단구와 교육지원청 교육혁신업무 소관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⑧ 실무협의회 산하에 필요에 따라 분과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⑨ 실무분과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퇴한 경우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회의 등) ① 운영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소집하고 교대로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회의는 정보교환, 정책제안, 의견수렴 등 공동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촉되는 것으로 한다.

④ 운영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운영위원회와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와 실무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제척, 기피, 회피) 상정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재적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13조(수당 등) 운영위원회와 실무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회의 주관기관의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및 자문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기본이념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독서문화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다. 독서의 날 지정 및 관계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는 구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주민(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한다)의 지식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독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계층별 맞춤형 독서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독서문화 복지를 실현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구 소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가정 및 직장 등에 독서환경을 조성하여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하여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을 장려한다.

③ 구청장은 독서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과 복지시설 등 소외지역의 독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모든 주민에게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독서문화 진흥 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인천광역시장이 수립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토대로 매년 12월 말까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해당연도 독서문화 추진방향과 목표 및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추진과제 선정
2. 추진과제별 세부 실천계획
3.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4.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독서 진흥) ① 구청장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동아리 활성화, 독서아카데미 운영, 독서캠페인 등 독서 진흥을 지속적인 문화운동으로 전개한다.

③ 구청장은 즐겁고 쉬운 독서문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구민들과 작가와의 만남 등을 위한 독서 진흥 공간 또는 장소를 마련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독서 관련 행사 개최 시 참여한 주민에게 관련 자료나 도서관 명칭을 인쇄한 독서 관련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6조(독서의 날 지정) ① 구청장은 구 독서문화 진흥실적 및 구민의 독서문화 우수성을 알리기 위하여 「독서문화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정하는 독서의 달에 독서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매년 독서의 날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독서의 날 행사를 개최할 때에는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단체 및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포상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의 협력) ① 구청장은 연도별 자체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서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독서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구민에게 맞춤형 독서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도서 관련 인적·물적 자원을 민·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책 돌려 읽기” 활동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한다.

제8조(단체의 활동지원)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행정·재정상 조치)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적용범위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4조)

나. 도서관의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8조)

다.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9조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정보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 평생교육의 증진 등 지방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2. "수수료"란 도서관 내에 비치된 자료 및 정보를 복사 또는 인쇄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자료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사용료"란 도서관 내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4. 그밖에 도서관에 관한 용어는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을 따른다.

제5조(업무) 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받

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2장 도서관의 이용

제6조(입장료)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입장의 제한 등)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음주자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관장이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해 입장 금지 또는 퇴장 명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수수료 등) ① 도서관 시설의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1. 시설 사용료 반환은 사용 취소 요청을 신고한 날이 사용예정일의 3일 전일 경우 전액 반환하며 3일 미만인 경우 납부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위약금으로 공제 후 반환한다. 다만, 사용 개시일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 취소 요청을 한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위약금으로 공제 후 사용일수를 제외하고 일할계산으로 반환한다.

2. 사물함 사용료는 사용일수를 제외하고 일할계산으로 반환한다.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나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경우는 전액 반환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단체의 시설사용료는 전액 감면한다.

제9조(사용허가 등)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시설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

3.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경우

제3장 위원회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지역정서 및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각 도서관별로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의원 2명, 관내 문화계·교육계 전문인사, 지역주민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은 가능하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서관 직원으로 한다.

⑧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도서관 운영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도서관 관리 및 운영에 손해를 끼치거나 발전을 방해할 경우

⑩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도서관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⑪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 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에 관한 사항
7. 도서구입에 관한 사항(다만, 희망도서 등 소량의 수시구입은 제외)
8. 그 밖에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보칙

제14조(운영의 위탁)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에 적합

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위탁관리에 관한 것 외에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검단도서관	인천광역시 검단구 완정로92번길 18(마전동)
단봉늘봄도서관	인천광역시 검단구 오동로 25(왕길동)

[별표 2]

수수료 및 사용료

1. 자료복사 수수료

구 분	규 격	금 액		비 고
		흑백	칼라	
자료복사 및 통신정보 인쇄료	A4	40원	80원	1매당
	B4	50원	100원	

2. 시설사용료

구 분	사용시간	금액(원)	비 고
어울림터(소공연장) 및 다목적실	평일·주말 평일: 09:00~22:00 주말: 09:00~18:00	20,000	① 사용금액 : 냉온방 및 방송장비 등 장비사용료 포함 ② 휴관일 제외 ③ 사용시간 1시간 미 만은 1시간으로 계산
		시간당 10,000원씩 가산	

3. 사물함 사용료 : 월 3,000원

관계 법령 발췌

□ 도서관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및 창조기반의 역할수행을 위하여 사서 등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9조(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때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에 우선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국·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하는 경우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명칭 및 위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나. 청소년시설의 업무 및 시설 사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10조)
- 다. 청소년시설 위탁,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경제정책과, 예산법무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활동 등 건전한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을 주 이용대상으로 청소년의 심신수양, 자질함양, 취미개발, 정서함양과 사회봉사의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시설 및 이용시설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는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업무) 청소년시설을 운영 · 관리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청소년 건전문화의 성장지원 및 청소년 복지증진
2. 청소년 심신지원 및 사회교육
3.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개발 · 운영

4. 청소년 고충상담 및 지원

5. 그 밖에 청소년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시설의 사용 등) ① 청소년시설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청소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사용을 희망하는 사람, 이 경우 청소년의 청소년시설 사용에 지장이 없거나 그 사용률이 낮은 시간대에 한한다.

3. 그 밖에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청소년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청소년시설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시설 사용허가) ① 청소년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청소년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사용허가 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사용료를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8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

람에 대하여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사용료 또는 교육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부속설비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허가일부터 사용예정일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하는 날에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와 수영장 사용료 및 교육수강료는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강사)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 또는 초청하여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강사 평가 결과, 그밖의 사유로 강사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 감면비율을 100분의 80 이내에서 감면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 · 주관하는 행사
2. 청소년단체가 설립목적에서 부합되는 행사를 할 경우
3. 관내 초 · 중 · 고등학생의 공식 등록된 동아리의 본래 목적 수행을 위한 활동
4.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30퍼센트,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의 노인은 50퍼센트 범위에서 사용료를 감면한다.

③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하여 그린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수영장 등록회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수영장 월 사용료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한다. 단,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따라 감면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⑤ 지역 소비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 할 수 있다.

⑥ 인천 아이모아카드 소지자 또는 이와 동일한 자격을 갖추고 그 증빙서류를 지참한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⑦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로서 체육시설 감면증 소지자(전년도 실적 100시간 이상인 사람)에 한하여 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등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에 따라 청소년시설 이용자가 납부한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해야 한다.

1. 사용료 및 수강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 사용일수 해당금액] 공제 후 반환

2. 수영장 월 수강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가. 사용개시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 사용일수 해당금액] 공제 후 반환

3. 일일 사용의 경우 : 당일 사용 취소 시 사용 개시 전 전액 반환, 개시 후 반환 없음

4. 납부된 사용료 및 수강료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비자분쟁품목별해결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반환

5.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행사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청소년시설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전액 반환

6. 수영장을 제외한 기타 수강료의 경우 강의개시 전일까지 수강을 취소요청한 때에는 전액
반환하고, 강의 개시 후 취소요청을 한 때에는 그달까지의 수강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
강료를 반환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 발생이 예고되거나 발생한 경우 전액 반환

제12조(셔틀버스 운행) 구청장은 청소년시설 운영 및 공익상 필요한 경우 무료로 셔틀버스
를 운행할 수 있다.

제13조(위탁운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청소
년시설 및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단체에 또는 공기업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
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위탁계약 및 기간) ① 제13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할 경우,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
방법·기간·조건·관리 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제4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모든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위탁받은 청소년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관계 법령 및 조례·규칙에 따른 의무와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청소년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6조(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수탁관리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를 위반한 때
4. 위탁관리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제17조(시설변경 금지) ① 수탁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청소년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특별한 시설을 설치한 경우, 이용허가 및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즉시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제18조(지도감독 등) ①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구청장은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 및 조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감사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제1항의 결과에 따른 관계 규정에 따라 시정지시·계약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업종료 후 지체 없이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보험가입 의무)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사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 고
검단청소년센터	인천광역시 검단구 완정로188번길 3(마전동)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다목에 해당

※ 청소년 시설 운영 특성에 따라 별도의 명칭을 추가할 수 있다.

【별표 2】

청소년시설 사용료 등 (제8조 관련)

1. 시설사용료(청소년수련관에 한정한다)

(단위 : 원)

시 설 명	구분	오전 (09:00-13:00)	오후 (13:00-18:00)	야간 (18:00-22:00)	비 고
공 연 장	공연(영화)	30,000	45,000	70,000	
	행 사	45,000	65,000	90,000	
강의실 등	교 육	시간당 10,000원		시간당 12,000	1실 기준

【 비 고 】

1. 공연장은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 시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를 적용한다.
2. 공연장은 시설사용 허가 시 사용자가 사용시간(오전, 오후, 야간)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사용료를 계산한다.
3. 사용자가 당초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 사용했을 경우, 그 초과시간이 2시간 이상은 다음 회 사용료의 100%를,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이면 다음 회의 50%를, 1시간 미만이면 다음 회의 30%를 추가 징수한다. 또한 22시 이후 사용 시에는 야간사용료의 150%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4.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사용 시에는 해당 기준사용료의 20%를 가산함.

2. 부속설비 사용료(청소년수련관에 한정한다)

(단위 : 원)

부속설비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피아노	아		1회 공연	30,000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함
	노				
무대시설	공		1회 1개	10,000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바				
무대음향	마이크		기본 3개 추가 1개당	10,000 3,000	
	특수마이크	PIN	1일 1개	30,000	
		W/L	1일 1개	20,000	
	M R (A R , B G M)		1시간	10,000	
	L C D 프 로 젝 트		1회 공연	20,000	
무대조명	조 명		1시간	20,000	○ 조명연출을 필요로 하는 조명에 대해서만 조명료를 징수함.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특수효과기	포 그 머 신 (액 별 도)	1회 공연 1대	20,000	
		드라이아이스 (액별도)	1회 공연 1대	10,000	
냉난방	○ 계절에 따른 봄·가을철, 여름철, 겨울철로 구분하여 시설별 시간당 냉난방기 소비전력, 한국 전력 전기요금표 등에 10%를 가산하여 시간당 사용료를 산출함 ※ 봄·가을철(3월~5월, 9월~10월), 여름철(6월~8월), 겨울철(11월~다음해 2월말) ○ 이용 의 이 없도 냉방(6월~8월) 및 난방(11월~2월말) 해당기간에는 냉·난방사용을 원 으로 함 (다만, 기 급변 시 사용자와 의조정 가 함)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 비 고 】

1. 피아노, 무대시설, 무대음향, 무대조명 중 공연(행사) 준비 및 연습 사용 시에는 기준사용료의 50%로 함.
 2. 1시간 단위로 부과하는 무대음향, 무대조명, 냉난방은 당초 허가된 사용시간 초과시 추가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3. 부속설비(무대시설, 대·소도구 등 시설 내 물품 일체) 사용 중 파손 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등 원상복구의 책임이 있음.
3. 교육수강료 : 1시간 기준 4,000원 범위(단, 교재비와 재료비는 별도)

관계 법령 발췌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보험 가입) ① 제9조의2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신고하려는 자, 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청소년활동의 운영 또는 수련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청소년활동 참가자 및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수련시설의 종류 및 보험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품목 및 보상기준) 이 고시에서 정하는 대상품목, 품목별분쟁해결기준,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품목별 내용연수표는 각각 별표 I, 별표 II, 별표 III, 별표 IV와 같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013. 8. 6.>

2.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말한다.

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의2. “안전기준”이란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을 말하며, 안전기준의 분야,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나.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6.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7.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8.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9. “국가재난관리기준”이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체계화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 9의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 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10. “재난관리정보”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상황정보, 동원가능 자원정보, 시설물정보, 지리정보를 말한다.
- 10의2. “재난안전의무보험”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共濟)로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11. “재난안전통신망”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이용하거나 재난현장에서의 통합지휘

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통신망을 말한다.

12. “국가핵심기반”이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등 국가경제, 국민의 안전·건강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을 말한다.

13. “재난안전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형 또는 비정형의 모든 자료를 말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1. 제안이유

2026. 7. 1. 검단구 출범으로 인한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 지원 및 활성화(제3조~제4조)

나. 평생교육 협력 체계 구축(제5조~제16조)

다. 평생학습관과 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제17조~제2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 제14조 및 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 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민의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한다.

③ 구청장은 평생학습 전담부서에 평생교육 관련 사업이 상호연계 및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기관 상호간의 협의·조정·중재 등 총괄 책무를 수행한다.

④ 구청장은 평생교육기관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단체의 사업지원
2.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우수·거점·특화·국비사업 등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성인문해·장애인 등 소외계층 평생교육 사업
5. 주민의 평생교육 참여 촉진을 위한 사업
6. 평생교육 진흥에 관련된 축제·행사 등
7. 평생학습동아리·강사·자원활동가 등 육성 및 지원 사업

② 구청장은 평생교육기관의 평생교육 활동을 지도하고, 평생교육과 관련된 인적자원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설치) ①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협의·심의하고 평생교육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에는 평생교육 기관(시설, 단체) 간의 업무조정 및 협력증진 등을 추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검단구 평생교육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구청장이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의장은 구청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 및 관할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2. 평생교육 전문가
3.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4. 관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③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평생학습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8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는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할 경우
2.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협의회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주재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평생교육기관(시설, 단체)간의 프로그램의 연계와 우수 프로그램 육성
2. 평생교육기관(시설, 단체)간의 정보 교류와 업무 조정
3. 법 제16조 평생학습관 등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은 협의회 소속 기관·단체 등의 실무자와 교육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평생학습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실무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4조(실무위원회의 회의) ① 실무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제척, 기피, 회피)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6조(보상 등) 협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평생학습관 등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구민의 평생학습에 대한 균등하고 질 높은 기회 제공을 위하여 구에는 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법 제21조의3에 따라 동에는 “동 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제18조(평생학습관의 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평생학습도시 정책 개발·연구 및 홍보
2.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2의 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
4.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5. 강사 및 자원봉사자 인력관리·운영
6. 평생교육 관계자, 강사, 동아리에 대한 연수 및 교육
7. 학습동아리 조직과 지원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의 연계 지원
9.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진흥사업 및 문해교육 지원
10. 평생학습계좌제,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결과인정 등의 지원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9조(평생학습센터의 기능)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동별 지역주민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2. 평생교육 종사자·동아리 관리
3. 평생학습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4. 지역주민 평생학습 및 지역사회 참여 활동 상담 등
5. 그 밖에 동별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평생학습관 등의 운영) ① 평생학습관은 구청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천광역시 점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교육 사업과 관련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평생학습관 등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교육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2. 일정한 재정능력을 갖춘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사업자의 지정 요건과 관련한 세부기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학습관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평생학습관에는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직원을 둔다.

제21조(수강료의 징수 등) ① 구청장은 학습관이 관리·운영하는 시설의 사용
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이하 “수강료”라 한다)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의 징수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
여야 하며, 평생교육 강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제22조(수강료 반환) 수강료의 반환은 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3조에 따른다.

제2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24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기관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경비 등을 지원받은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장은 구청장의 자료제출 요
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한 평생교육 관련 경비가 목적 외에 사용된 때
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
하여야 하며, 2년간 평생교육진흥사업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제25조(포상 등)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평생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에게는 표창할 수 있다.

제26조(실비지급)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
으로 모집·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27조(다른 조례의 준용) 평생교육진흥사업에 대한 경비보조 및 관리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8.>

제14조(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① 시·군 및 자치구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군·구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군·구협의회의 의장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군·자치구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 5. 29.>

④ 시·군·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시·군·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 ① 시·도교육감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8.>

② 시·도교육감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8.>

③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14. 1. 28., 2016. 5. 29.>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1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5. 제21조의3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 1. 28.>

제21조의3(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①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읍·면·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8.>

② 제1항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28.]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터넷중독을 예방하고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여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다. 사업 및 전문가 자문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라. 예산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교육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을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인터넷중독”이란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2.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치유 방안
3.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사업) 구청장은 청소년을 인터넷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인터넷 사용 예절 및 문해력 교육
2.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상담·치유 지원
3. 청소년 인터넷중독 치유캠프
4.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
5. 그 밖에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전문가 등 자문) 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터넷중독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교육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단구 청소년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여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육성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구성,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나.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7조, 제9조)
- 다. 회의개최 및 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8조, 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교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유관기관 공무원, 청소년 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제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청소년의 육성발전을 도모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지원

4. 청소년 단체의 육성·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회의 임기는 관련 업무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개최) ① 위원장은 회의를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 소집한다. 다만, 필요시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행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의 품위 손상 등 위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청소년업무 담당이 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청소년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으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나.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등록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다.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7조)
- 라.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1조)
- 마. 작은도서관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예산법무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에 따라 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거리에서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으로서 「도서관법」 제36조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 자료”란 「도서관법」 제3조제2호에 따라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서관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
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
3.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 연계협력 구축사업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주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에 작은도서관의 진흥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작은도서관과 다른 공공도서관 간 자료의 공동이용 등 관내 도서관문화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민간의 후원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5.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 및 운영기준)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
2. 1,000권 이상의 장서 구비
3. 도서관 면적(도서관의 연면적 중 도서관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부분의 합계를 말한다) 33제곱미터 이상의 규모

제6조(등록 등) 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5조의 요건을 갖추고, 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매년 관내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운영 전반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작은도서관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되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에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조성 및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설비비
2. 작은도서관 운영비 및 자료구입비
3. 운영인력 및 자원봉사자 등 지원 인력에 대한 실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작은도서관에 대한 보조금 교부 등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작은도서관 정책의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의 경우 양성 위원비율을 고려하여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위원장은 작은도서관 업무 담당 국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작은도서관 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인천광역시 검단구 시설관리공단 도서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도서관계, 교육계, 문화계 등 관계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작은도서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며,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신청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작은도서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작은도서관 관리 및 운영에 손해를 끼치거나 발전을 저해한 경우

제13조(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육성 및 합리적인 지원을 위하여

법 제12조제1항의 작은도서관 운영실태 조사에 따른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을 선정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4p, 신명조)

제6조(작은도서관의 운영방향) ①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작은도서관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도서관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도서관위원회에 제출하고, 국가도서관위원회는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2021. 12. 7.>

② 시장·군수·구청장 및 「도서관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평가 및 활성화 시책 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기업, 연구·교육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

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12. 7., 2023. 8. 8.>

☐ 도서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8.>

1. “도서관”이란 국민에게 필요한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보존·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교양습득·학습활동·조사연구·평생학습·독서문화진흥 등에 기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

제4조(도서관의 구분) ① 도서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 도서관: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2. 공립 도서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3. 사립 도서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②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공도서관: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

나. 어린이,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

제36조(등록 등) ①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이하 “설립자”라 한다)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서와 도서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공공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국립 공공도서관은 관할 시·도지사나 시·도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 공공도서관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 또는 설치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나 시·도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공도서관의 설립자가 해당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나 시·도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등록증을 반납

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중이 그 시설에서 보존하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검색·이용 및 대출 기능을 갖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권 또는 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로 인정한 시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인정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1. 제안이유

2026. 7. 1. 검단구 출범으로 인한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주시민교육의 목적과 정의(제1조~제2조)

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및 그 내용(제4조~제6조)

다.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제7조~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여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보편적인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구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구민의 민주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하여 공익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학문이나 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 및 관점·의견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민이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구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구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공평하고, 다양하게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사의 양성 등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화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온라인·오프라인 등)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지방분권과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3. 국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검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각급기관·단체의 민주시민교육 관계자
4. 민주시민교육 관련 업무 공무원

④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2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이수증의 발급)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주시민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제14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교류협력 등)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자치구,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2021. 6. 8., 2023. 4. 18., 2023. 6. 13.>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2026. 7. 1. 검단구 출범으로 인한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조사업의 목적 및 범위 (제1~3조)

나.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제4조~제8조)

다. 교육경비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제9조~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예산법무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환경개선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기준액)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보조재원을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예산 중 일반회계로 충당하며, 보조기준액은 회계연도 자체세입액의 0.5퍼센트 이상 보조한다.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학교의 교육 정보화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4조(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각급학교의 보조사업 대상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공무원 : 4명
 2.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2명
 3. 구에 연고가 있는 교육공무원 : 2명
 4. 그 밖에 학교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구에 연고가 있으며, 교육사업에 열의를 가진 사람
-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의장이 된다.

제6조(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본인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

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여건 개선방안 강구
2. 교육여건 개선 경비보조금 신청 사업계획 심의
 - 가. 법령과 예산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
 - 나. 해당 년도 교육여건 개선사업 결정
 - 다. 신청 사업의 보조금 교부 우선순위 결정
 - 라. 보조금액 결정
3.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예산집행 시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안은 서면으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의 사항

제10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보조금 신청 해당 학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위원회에 부의하고, 위원회는 제8조제2호에 따라 심
의한다.

제11조(교부방법) ① 구청장은 위원회를 통한 보조사업 대상이 결정되면 보조금
을 확정하고, 보조사업 대상 및 교부결정 금액을 분명하게 밝힌 교부결정서를
해당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해당 학교의 장은 보조금 교부 확정 통보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
한다.

③ 구청장은 보조대상학교에서 제출된 신청서 등을 검토 후 보조금을 해당 학교
에 교부한다.

제12조(보조금의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3.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
을 때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각급학교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과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사업의 정산)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을 하고 정산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실확인) 구청장은 보조받은 학교가 당초 계획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⑧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8., 2023. 12. 5.>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 9. 17., 2000. 12. 27., 2007. 12. 28., 2023. 12. 5.>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

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00. 12. 27., 2023. 12. 5.>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삭제 <2023. 12. 5.>

[제목개정 2000. 12. 27.]

제4조(보조의 신청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 급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거쳐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거나 보조신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8., 2018. 12. 18.>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보조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해당 학교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8., 2018. 12. 18.>

제5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각급학교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2. 28.>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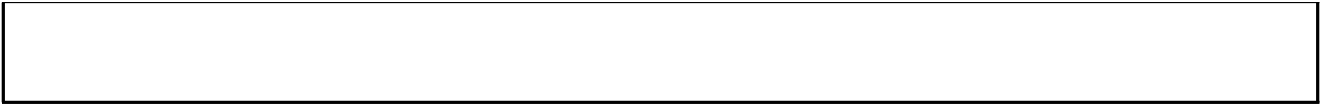
1. 보조금을 교부목적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6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8., 2018. 12. 18.>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8.>

제7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1. 공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립의 유치원의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이 정한 방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2. 사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나. 지원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 중복지원 금지, 환수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교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연령에 해당하는 여성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물품을 말한다.
3. “생리용품 이용권”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기본방향
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소요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4.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의 지원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구청장은 생리용품 지원을 신청한 여성청소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리용품 구입비는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구청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4조와 유사한 지원을 받는 여성청소년에게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단,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환수 및 관리감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경우
2. 생리용품 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3. 목적 외 용도로 생리용품 구입비를 사용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부정수급 및 사용이 발견되었을 경우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 적정지급 여부, 부정수급 등에 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하여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생리용품과 관련한 사회 인식개선 및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 위촉 절차 및 청소년 지도위원 지원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지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지도위원의 임무 및 구성,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제 8조)

다. 증표 교부 및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교육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 위촉 절차 및 청소년 지도위원 지원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청소년 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사람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건전 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과 장려 및 지원
3. 청소년 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6. 극히 어려운 청소년 가정의 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 10명 내·외로 하되 해당 동의 자연 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제6조(증표교부)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7조(지도위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청소년의 활동을 지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 수당, 여비, 연수기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캠페인 활동

2. 청소년 체육 활동

3. 청소년 문화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소년의 유익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8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지도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남은 임기에 관계 없이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제6조 관련)

(앞면)	(단위 : cm)	(뒷면)
청소년 지도위원증 ① ⑤ ② ③ ④ ○○ 읍, 면, 동	0.3 1 4 8.1 0.75 0.75 1 0.3 4.9×7.5	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⑥ (인) 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 기 바랍니다.

0.3	1.7	3.2	0.3	
5.5				

(비고)

1. 청소년 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m²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부터 ⑥까지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 ① 사진(4.9cm×4cm)
 -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 ③ 성명
 - ④ 소속기관명
 -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 ⑥ 발급기관장의 명의 및 직인

관계 법령 발췌

☐ 청소년 기본법

- 제27조(청소년지도위원)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 ②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 ③ 청소년지도위원이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위원 자격을 상실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행정적·교육적 지원(안 제1조~제3조)
- 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안 제4조)
- 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안 제5조)
- 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안 제6조~제7조)
- 마.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사회적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검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협의회가 대행한다.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인력, 예산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센터의 위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대안교육기관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대안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강사수당 및 교재비 등을 포함한다)
2.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사업의 가입비 등 안전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학생의 급식에 필요한 경비
4. 그밖에 구청장이 대안교육기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방법과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제3항의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와의 연계) 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기능,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조직 및 구성, 복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다.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교육과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사회 청소년을 위한 사업

제3조(설치·운영)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관련 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구청장의 처분이나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장비·자료·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조직 및 구성) ① 센터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상담지원팀, 통합지원팀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수행에 적합한 직원(센터장, 팀장 및 팀원을 포함한다)으로 채용·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별표 2(이하 “별표”라 한다)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공개채용하고 채용방법과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③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별표의 자격 요건에 따라 직원을 공개채용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

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제6조(복무) ① 센터의 직원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센터의 장은 센터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근무시간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 직원이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복무사항의 불이행 또는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7조(면직) 구청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면직할 수 있다.

1. 조직의 축소·폐지, 예산의 대폭삭감·미편성으로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2.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 직원과 위원회 위원은 상담,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 사고의 피해보상을 내
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군·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지도·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하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1.>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

을 수행한다. <개정 2019. 3. 19.>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自活) 및 재활(再活)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 ②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두며, 일시보호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생활지도를 하는 직원을 둔다.
- ③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둔다.
- ④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종사자의 자격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2. 4. 19.>

인천광역시 검단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차별금지 및 사업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라. 기 타: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 「교육기본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진로교육법」에 따라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검단구 모든 학생이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창의교육”이란 학생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말한다.
3.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이 직업세계를 포함한 미래사회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추는 방향으로 창의·인성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인성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차별금지) 구청장은 학생과 그 부모의 출신국가·장애여부·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창의·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추진 등) ① 구청장은 창의·인성교육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및 체험 사업
2.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 및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3. 생명안전 체험 사업
4. 학생의 진로 탐색·설계에 필요한 진로교육 사업
5. 기초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6. 그 밖에 창의·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창의·인성교육 지원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지식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에 대한 지원 절차, 정산, 지도감독 등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인성교육진흥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2026. 7. 1. 검단구 출범으로 인한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인문해교육의 목적과 정의(제1조~제2조)

나. 성인문해교육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제5조~제8조)

다. 성인문해교육협의회 설치 및 기능(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성인문해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3조, 제4조, 제10조 및 「평생교육법」 제5조, 제39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갖추지 못한 성인을 말한다.
2. “성인문해교육”이란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성인 대상의 문해교육을 말한다.
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성인문해교육을 지속해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상) 성인문해교육은 문자해득 교육이 필요한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비문해·저학력 성인과 북한이탈주민, 결혼 이주민 또는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성인문해교육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문해력 등 기초생활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한다.

- ② 성인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성인은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③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비문해자 파악을 위한 조사 실시
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육성
4. 성인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5. 성인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지원
6. 성인문해교육 학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교육 행사 지원
7. 그 밖의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를 담당하는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 및 민간 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경비의 보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기관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학습동아리 활동 등
3.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등
4.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이용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성인문해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성인문해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성인문해교육 기관 간 성인문해교육 발전에 관한 협력 사항
3.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협의회 기능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평생교육협의회」에서 대행한다.

제10조(포상) ①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구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2021. 6. 8., 2023. 4. 18., 2023. 6. 13.>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9조(문해교육의 실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해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8.>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제목개정 2014. 1. 28.]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2조(문해교육의 지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6. 30.>

1.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 운영비

2. 문해교육 교재비 및 교구비

3. 문해교육 교원의 인건비 및 연수비 등

② 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4. 6. 30.>

[제목개정 2014. 6. 30.]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청소년의 권리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다. 노동인권 사업 및 민관협의체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라. 노동인권 실태조사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교육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 법을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특성화고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는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소속기관, 교육청, 노동인권 관련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활동, 직업 훈련과 취업준비에 필요한 지원·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청소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근로환경개선 등에 행·재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소년의 권리) ① 청소년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② 청소년은 법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청소년은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근로포기를 통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④ 사용자가 청소년을 해고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청소년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제5조(청소년의 보호) ① 사용자는 법에 따라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겨서는 안 된다.

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강사 양성
2.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
3.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 지원 체계 구축
4.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홍보
5. 청소년을 고용한 사용자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노동인권 관련 부서 및 노동센터 등 전문기관의 협조를 얻어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시행계획) 구청장은 매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8조(민관협의체) 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 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시설, 구의회, 교육청, 노동조합,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전문가, 청소년 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검단구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실태조사 및 점검) 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한다.

②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 환경을 점검·계도하는 ‘청소

년 노동인권지킴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이 노동 인권 상담과 피해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 전화를 둘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우수사업장 선정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을 선정·홍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사업장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노동권이나 그 밖에 권리를 침해하는 사업장은 우대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기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기관·단체 및 관련 부서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2026. 7. 1. 검단구 출범으로 인한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평생교육의 목적과 정의(제1조~제2조)

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제3조~제4조)

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와 장애인 평생교육사업 지원(제5조~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및 「장애인복지법」 제20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 및 사회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책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설정
2.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방안
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준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장애인 평생교육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평생교육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2.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8.>

[본조신설 2016. 5. 29.]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평생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게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기준, 교육제공인력의 요건 등은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장애인 복지법

제20조(교육)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연령·능력·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제1조)

나. 설립 및 정관, 임원, 사업에 관한 사항(제2조~제4조)

다. 재산의 조성 및 운용, 기금의 출연, 운영 경비 등(제5조~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업,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 및 국가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우수인재를 발굴·지원·육성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정관)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장학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장학회의 정관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한다.

제3조(임원 등) ① 장학회 임원의 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회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2명 이하를 포함한다.

③ 장학회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장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예술·체육·기능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지원·육성
3. 우수학생 등 연수 지원사업

4. 그 밖에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재산의 조성 및 운용)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 및 운용한다.

1. 구 출연금
2. 민간 기탁금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6조(기금의 출연)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학회의 장학기금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7조(운영경비 등)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설립초기에 안정적인 장학회 운영을 위하여 구 예산으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 구청장은 장학회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장학회에 파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구청장은 장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10조(승인 등)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에 허가 또는 승인을 요청한다.

1. 정관의 제정·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 증여,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 장기차입 등)
3. 이사장의 임면

4. 그 밖에 장학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1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 ① 장학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학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의 회계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장학회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의장은 장학회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장학회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장학회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장학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14조(운영규정)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정관의 준칙 등) ① 공익법인은 정관에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定數)·임기 및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1.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정관의 기재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제5조(임원 등) ① 공익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 임원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③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⑤ 이사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 12. 12.>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⑦ 이어나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기면 2개월 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⑧ 감사는 이사와 제5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그 중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주무 관청이 추천할 수 있다.

⑨ 공익법인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상근임직원의 수를 정하고 상근임직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제6조(이사회) ① 공익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 의장이 된다.

[전문개정 2008. 3. 14.]

제7조(이사회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공익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공익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이사장이나 이사가 공익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제8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로 밝혀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闕位)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이사가 이사회를 주재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제9조(의결정족수 등) ① 이사회 의사(議事)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③ 이사회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다.

④ 이사회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제10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3.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② 감사는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 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이사가 공익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공익법인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留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14.]

제11조(재산) ① 공익법인의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하며,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5. 29.>

1.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을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는 경우
3. 기본재산의 운용수익이 감소하거나 기부금 또는 그 밖의 수입금이 감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여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이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 관청에 대한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1.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기본재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매도

• 교환 또는 용도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3항제3호에 해당하여 기본재산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 이 경우 직전 편입이 있는 날부터 최소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⑤ 공익법인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전문개정 2008. 3. 14.]

제12조(예산 및 결산 등) ① 공익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익법인은 주무 관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해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산보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공익법인은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다음 해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공익법인의 재산관리, 예산편성,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제13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

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대부(無償貸付)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인천광역시 검단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과 복지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지역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1조~제2조)
- 나. 구청장 책무 규정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4조)
- 다. 1인가구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명시(안 제5조)
- 라.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을 명시(안 제6조~제7조)
- 마.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 및 사무의 위탁을 명시(안 제8조~제9조)
- 바. 1인가구 협력체계 및 홍보·포상을 명시(안 제10조~ 1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교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정책”이란 1인가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기반시설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1인가구 복지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1인 가구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③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시행계획에 지원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1인가구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돌봄 서비스, 비상벨 설치 등 범죄예방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2. 건강 지원 사업
3. 문화·여가 생활 지원 사업
4. 1인가구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5.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3. 제8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협조요청 등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 요청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홍보)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시책을 위하여 홍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홍보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건강가정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행복한 출산·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나.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 저출산 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안 제 5조 ~7조)
- 라.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 8조)
- 마. 저소득 복지대상자 지원 및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1조)
- 바.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교육·홍보·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 12조~1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2025년 예산에 0.15억원 반영되었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행복한 출산·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 대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자”란 부모를 포함한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사실상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으로, 출생아 또는 입양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한 자를 말한다.
2. “저소득 복지대상자”란 출산일 또는 입양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같은 법 제2조제10호 및 각 개별법에 따른 차상위계층(가구원 중 일부만 차상위계층인 경우, 조사대상 가구원에 포함한다),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말한다.
3.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역에서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선불카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및 국민의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저출산 대응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저출산 대응 시행계

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저출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분야별 주요 추진 사업
3. 분야별 세부 추진 계획
4. 그 밖에 저출산 극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저출산 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저출산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저출산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저출산 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
3. 저출산 정책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저출산 정책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저출산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저출산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저출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저출산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3. 저출산 정책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대표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저출산 업무담당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 등에게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저출산 대책 지원) 구청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실시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출산 친화 사업 지원
2. 다자녀 가정 지원(최연소 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가정)
3. 보육지원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환경 구축
4. 그 밖에 저출산 극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저소득 복지대상자 지원) ① 구청장은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계속 양육하는 보호자가 저소득 복지대상자인 경우 출생아 1인당 30만원을 출산축하용품비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한다.

제10조(지원기준)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은 출산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검단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검단구에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양육하는 다음 각 호의 보호자로 한다.

1. 부 또는 모
2. 부모의 사망·이혼 등으로 사실상 영유아를 양육하는 보호자

② 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한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가족관계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 또는 입양을 하였으나 보호자가 출산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현재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지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④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은 영유아 1명당 한 차례만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저소득 복지대상자 출산축하용

품비의 신청 절차,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지원신청)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 신고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검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지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결혼·출산·가족 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구교육은 전문교육기관 및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 정책 추진을 위하여 홍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인구교육을 실시할 경우
2. 저출산 대책을 홍보하기 위해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3. 출산축하물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포상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저출산 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이바지한 유공자
2.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사회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사업체
3. 그 밖에 구청장이 저출산 극복에 공헌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

체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기본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하여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4.>

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4조(시행계획의 평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의 평가를 위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지침에 따라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3월말까

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2026. 7. 1. 검단구 출범으로 인한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시행계획 수립 및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또는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촬영기기 등을 사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性)적 촬영물·영상물 등 디지털 성착취물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 또는 가공하거나 공유, 배포, 소지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를 말한다.
2.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및 정책, 사업 모니터링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시책 및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
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 지원, 인식 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2차 피해방지) 구청장은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의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2차 피해”란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가.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인천광역시 검단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맞벌이·한부모·조손가족 등 가족의 형태가 다양하게 급변하는 속에서 자녀 양육과 부모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하도록 부모교육을 지원하여 건강한 가정의 구현을 통해 구민 행복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 ~ 안 제4조)
- 나.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다. 부모교육의 대상, 내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7조)
- 라. 위탁, 재정지원, 협력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교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부모 역할을 다하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 등의 제공을 통하여 올바른 부모로서의 능력과 자질,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적합한 형태의 부모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모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모교육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 시행계획 수립 시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 부모교육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부모교육의 목표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부모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6.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가족의 건강증진을 통한 건강한 검단구 구현
8.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부모교육의 대상) 부모교육은 가정의 유형이나 혼인 여부 또는 자녀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한다.

제7조(부모교육의 내용 등) 부모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 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
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3. 올바른 부모와 자녀의 역할 및 그 수행 방법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의 교육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 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6.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 교육
7. 그 밖에 올바른 부모 역할에 대한 이해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부모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에 부모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을 실시하거나 부모교육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협력 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부모교육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건강가정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결혼준비교육
2. 부모교육
3. 가족윤리교육
4.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정책사항을 하나의 조례로 묶어 정비하여 저출산 상황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우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다자녀가정”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두 명 이상의 자녀(자녀 중 한 명이상이 미성년인 경우에 한정한다)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추진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우대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가 운영하거나 위탁운영 중인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2. 자녀 양육·보육 및 교육에 관한 지원
3.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4. 문화, 관광, 체육 및 복지 혜택 증진을 위한 지원
5. 보건 및 의료 혜택 확대를 위한 지원
6. 그 밖에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조례에 명시된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6조(우대 및 지원 중단)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7조(중복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청소년부모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4조)
- 나. 지원대상,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 다. 위탁 및 협력업체, 중지,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1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 등의 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을 말한다.

가.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법륜혼 및 사실혼 모두 포함)로 이뤄진 가정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로 이뤄진 가정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구에서 추진하는 가족 관련 정책 및 복지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부모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법률혼 및 사실혼 포함)와 그 자녀로 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 ① 지원대상자 선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지원)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부모의 학업 및 교육비 지원
2. 청소년부모의 생활, 주거, 의료 등 복지 지원 및 청소년활동지원
3.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 절차와 방법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를 구성하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등) ① 구청장은 법률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부가정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그 밖에 부정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의2(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2.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방문건강관리사업 서비스
 3.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
-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2026. 7. 1. 검단구 출범으로 인한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계획 수립 및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또는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여 구민의 편익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공중화장실 등, 민간화장실, 공중위생영업소를 말한다.
2.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
3.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4. “공중위생영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중 숙박업과 목욕장업을 말한다.
5.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6.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중이용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등, 민간화장실, 공중위생영업소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 계획
2. 합동점검반 및 상시점검체계 구축·운영 방안
3. 불법촬영기기의 탐지를 위한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 방안
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불법촬영 점검 장비 지원 사업
2.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
3.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의 점검 요청에 대한 대응 사업
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다중이용시설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검단구”라 한다)에 위치한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간영역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는 법인·단체·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특별관리 대상 다중이용시설의 지정) 구청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제9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①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자체 점검한 경우 불법촬영 점검사항을 표시한 스티커를 제작하여 부착,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공중위생영업소의 점검유도 등) ① 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공중위생영업소를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자체 점검한 경우 불법촬영 점검사항을 표시한 스티커를 제작하여 부착,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신고체계의 마련) 구청장은 구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다중이용시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

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협조)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추진하는 불법 촬영기기의 설치 여부 점검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의 점검자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이동화장실”이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4. “간이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
5. “유료화장실”이란 화장실의 설치·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영유아보육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11조)
- 라.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7조)
- 마. 솔루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8조~제21조)
- 바.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22조~제2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영유아보육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 “보육”, “어린이집”, “보호자”, “보육교직원”이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용어를 말한다.
2. “취약보육”이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육을 말한다.
3. “최초위탁”이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신규위탁 또는 변경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제3조(설치 및 기능) 법 제6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운영 등)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6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2, 제10조의3 및 제11조를 각각 따른다.

제3장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설치 등) ① 법 제1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공립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6조(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및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결정한다.

③ 제2항의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자 선정기준은 규칙 제24조의2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이하 “위·수탁계약”이라 한다)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신청자가 1명(1개 기관)인 경우에는

재공고를 실시하되, 1회에 한해 재공고한다.

제7조(위탁기간) ①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며, 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재위탁은 한 차례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세부심사기준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원장의 위탁계약 가능기간이 정부의 보조금 지급 상한 연령으로부터 5년 미만인 경우
2. 시설의 재건축 등 국공립어린이집의 휴·폐지가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위탁자의 의무) 위탁자(인천광역시 검단구)는 아래의 각 호의 내용을 위탁계약에 포함되도록 수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련 관계 법령,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그 밖에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보고서의 제출 및 구청장의 사전승인이 필요한 사항
3. 관계 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과 교직원 인원 확보에 관한 사항
4. 법 제2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취약보육 우선 실시에 관한 사항
5. 권리의 양도 및 전대,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 변경 등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행사하여야 하는 사항
6.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반환

에 관한 사항

7. 시설 멸실 또는 훼손과 관련한 원상복구 및 복구가 불가능할 때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8. 위·수탁계약 시 재정정보증에 관한 사항

9.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비용 부담,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및 사고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

제9조(교직원 임면) ①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 및 교직원은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원장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임면하며, 그 밖의 교직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수탁자가 임면

2.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가 원장이 되며, 그 밖의 교직원 은 원장이 임면

② 수탁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면보고를 규칙 제11호제1항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원장 및 교직원의 자격기준은 영 제21조에 따른다.

제10조(지원 및 비용부담)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운영 실태에 대하여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부당하다

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지시, 경고, 보육교직원의 해임 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12조(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영유아에게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51조의2 및 영 제2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

3. 그 밖에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③ 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계약만료 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제13조(구성)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보육전문요원, 상담전문요원을 두며, 그 밖에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특수교사(치료사), 컨설턴트, 행정원, 운영요원 등(이하 “그 밖에 직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의 자격 및 직무는 영 제14조에 따른다.

③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는 영 제15조에 따른다.

④ 상담전문요원의 자격은 영 제16조에 따른다.

⑤ 그 밖에 직원의 자격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직원 임면) 이 조례 제14조제1항의 센터장 및 직원은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장: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운영기관의 장이 임면
2. 직원: 센터장이 임면 후 구청장에게 보고

제15조(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영 제13조제1항에 관한 사항
2.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도서 및 장난감 등 대여
3. 부모 소모임 등 양육정보 교류 공간 제공
4. 아이사랑꿈터 운영 및 관리
5. 장난감 수리센터 운영 및 관리

제16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법 제51조의2제3항 및 영 제26조의2제5항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지시, 경고, 임직원의 해임 요구 및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장 솔루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8조(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 라 한다) 관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사고 및 복합적 민원사항 등의 시의적절

한 대응과 피해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발달 지원, 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육솔루션위원회(이하 “보육솔루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육솔루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자문한다.

1. 구 관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등 복합적인 사건·사고의 해결 방안
2. 피해아동의 신체적·정서적 지원 방안
3.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정상화를 위한 보호자 간담회 참석 및 전문가적 의견 제시·지원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9조(구성) ① 보육솔루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보육솔루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육전문가
2. 상담전문가
3. 법률전문가
4. 경찰공무원
5. 아동청소년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등 아동학대 관련 전문의
6. 보육관련 공무원

③ 보육솔루션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보육솔루션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지도·점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20조(임기) ① 보육솔루션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결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21조(직무 및 회의 등) ① 위원장은 보육솔루션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보육솔루션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보육솔루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보조금의 지급 등

제22조(비용의 보조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영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
2.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에 따른 비용
3. 보육교직원 선진지 견학 및 연수비용
4. 영유아 체력단련 및 어린이집 화합도모를 위한 합동운동회 비용
5.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보육의 질적 향상과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구청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센터장 등에게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24조(표창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영유아보육의 질적 향상과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우수한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을 선발하여 표창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의 선발, 표창 및 포상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프로그램 개발) ① 구청장은 영유아 보육과 관련된 시책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위해 영유아의 부모, 보육교직원, 어린이집 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우수제안이나 사례를 공모할 수 있고, 우수자로 선발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모는 구청장이 직접 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6조(심리검사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영유아의 정서적·심리적 안정 및 건강한 보육서비스 제공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육교직원 또는 영유아에게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아동복지법」 제29조에 따른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이미 받

고 있는 지원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원한다.

1. 영유아 보육 업무상 발생한 보육 스트레스로 인하여 보육교직원에게 정서적·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로 인하여 정서적·심리적 피해를 입은 경우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한 국공립어린이집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관계 법령 발췌

□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①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은 보육 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④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전문 컨설팅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기부채납 받거나 무상임차 등 사용계약을 통하여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운영하여야 한다.

...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1. 제안이유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양성평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책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4조)

나.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과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16조)

다. 양성평등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7조~제26조)

라. 양성평등기금에 관한 사항(안 제27조~제3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제3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과 시책 추진

제5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

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성인지 예산서 등 작성) 구청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제7조(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특정성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활동 결과를 평가하여 구민에게 공표할 수 있으며, 양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구정참여의 확대) ①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한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공직 등의 양성평등 추진) ① 구청장은 소속직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리직 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구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계획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직원이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 및 직장 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양성평등한 문화를 조성하여야 한다.

제10조(양성평등 의식의 제고) 구청장은 가정·학교·사회교육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구청장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양성이 동등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복지증진) 구청장은 여성 복지 수요에 호응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경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1. 저소득 한부모 가정·미혼모·가출여성 및 그 밖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 등에 대한 선도·보호사업·복지증진 사업
2. 성·가정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및 그 피해자를 예방·보호하기 위한 사업
3. 성매매방지 및 성매매 피해자 예방·보호에 대한 사업
4. 출산장려에 관한 사업

제13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구청장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

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 범죄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양성평등주간) 구청장은 법 제 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유공자 표창)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 등에 이바지한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매년 시상할 수 있다.

1. 양성평등 및 여성발전 등에 이바지한 유공자·기관·단체
2. 평등부부

제16조(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양성평등 참여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수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2. 구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사업
3.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사업
4.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5. 저소득층지원 기금마련 사업
6. 환경정화활동사업 등 각종 공익사업

제3장 양성평등위원회

제17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양성평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관리·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양성평등정책 관련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양성평등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여성정책 개발 능력이 있는 사람
3.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

책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이 된다.

제20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4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25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세부사항)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양성평등기금

제27조(기금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인권보호,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운용한다.

제28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으로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9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양성평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2. 여성의 사회참여 및 권익·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3. 제1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의 지원
4.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1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구 금고에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② 기금은 구 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양성평등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양성평등업무 담당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22.>

⑤ 기본계획은 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⑥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6. 22.>

제38조(여성의 날 등과 양성평등주간) ① 범국민적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월 8일을 여성의 날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1년 중 1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한다. <개정 2018. 3. 2., 2019. 11. 26.>

②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이 발표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일을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로 한다. <신설 2019. 11. 26.>

③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주간 중 하루를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하고, 같은 날에 성별 임금 통계 등을 공표한다. <신설 2020. 5. 19.>

[제목개정 2020. 5. 19.]

제42조(기금의 설치 등) ⑤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인천광역시 검단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1. 제안이유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정책 관련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나.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1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예산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특정성별영향평가)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제5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4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 총무, 여성정책 등을 담당하는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정책에 관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1. 시행 중인 조례·규칙
2.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매년 반영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③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 3. 27.>

[본조신설 2016. 12. 20.]

[제목개정 2018. 3. 27.]

제13조의2(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3. 27.>

② 지방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2. 3.]

[제목개정 2018. 3. 27.]

인천광역시 검단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차별 없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명시(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규정 (안 제3조)

다.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명시(안 제4조 ~ 제5조)

라.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명시(안 제6조 ~ 제12조)

마.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의견수렴 및 지원사업 수행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포상 규정 명시 (안 제13조 ~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교육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그 밖에 다문화가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복지

증진을 위한 모든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을 전담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 등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관내 다문화가족 및 그 구성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에 반영하고,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연구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관내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 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9. 다문화가족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스포츠 지원
10.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다문화가족 내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사업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방향
2. 다음 각 목의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 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 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 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 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
 - 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시행계획은 제6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설치)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구청장과 다문화가족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문화가족 유관기관의 장
3.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4. 다문화가족관련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5.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상황의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조사, 연구 및 시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경우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6.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운영을 위해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지정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재지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한다.

제13조(포상)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 되는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 개인,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4조(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명시(안 제1조)
- 나. 센터의 설치 및 운영 명시 (안 제2조~8조)
- 다. 위원회 운영 명시(안 제9조)
- 라. 센터 기능·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명시 (안 제11조~제12조)
- 마. 지도감독 및 센터의 지원 명시 (안 제13조~제1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교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설치하는 가족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 등) ① 센터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지역사회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의 통합적 네트워크 제공
4. 지역사회 가족건강생활 문화운동 전개
5. 지역주민의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요조사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
7. 그 밖에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② 제1항의 기능 중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들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시설) 구청장은 센터가 제3조의 기능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상담실, 교육실, 자료실 등의 공간을 확보하고 제반시설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종사자의 수는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건강가정사를 두어야 한다.

제6조(운영) ① 센터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목적과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사업수행능력 및 위탁기간 중 사업평가에 따라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센터를 위탁 할 경우 수탁자는 법 시행규칙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제반사항들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준용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구와 체결한 위·수탁 약정서 및 그 밖에 위탁 운영에 관한 지도점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사업집행 결과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도 또한 같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구에서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수탁자가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수탁자가 가족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4.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5. 그 밖에 수탁자가 의무 및 약정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등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제6조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센터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③ 회의에 출석한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

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강사를 위촉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주민참여)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센터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다.

제14조(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위탁) 2026년 12월 말까지 인천서구가족센터에 한시적으로 공동
위탁하여 운영하며,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위탁서의 내용대로 한다.

관계 법령 발췌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 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건강가정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할 것(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따른 학력 취득과정이나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것

제35조의2(가족센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검단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정의(안 제1조~2조)
- 나. 거주외국인의 지위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4조)
- 다. 지원대상 및 지원의 범위(안 제5조~제6조)
- 라.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안 제7조~제11조)
- 마. 외국인 지원 활성화 방안(안 제12조~제1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 2.“거주외국인”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 3.“외국인 가정”이라 함은 관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 4.“외국인 지원 단체”라 함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거주외국인의 지위) ①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과 동일하게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으로 한다)은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책무) ①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 등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1. 외국인
2.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사람
3. 그 밖에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제6조(지원의 범위) ①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5. 그 밖에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 할

수 있다.

제2장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

제7조(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교육지원청, 경찰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에서 추천한 사람

2.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외국인 지원 활성화

제12조(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외국인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거주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4조(세계인의 날) ①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

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세계인의 날”부터 1주
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구민증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민간단
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단체 등의 포상) 구청장은 구에 거주외국인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
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단체에 대하
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외국인에 대한 표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 할 수 있다.

1. 구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외국인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 그 밖의 외국인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17조(명예구민) 구청장은 구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
예구민으로 예우하고, 「인천광역시 검단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에 따

라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조(목적)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2026. 7. 1. 검단구 출범으로 인한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시행 계획 수립 및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또는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 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 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의 예방·방지와 피해자 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스토킹 예방·방지 및 피해자 등 보호·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 피해자등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 예방·방지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스토킹의 예방·방지와 피해자 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3. 스토킹 피해자 등 심리상담 지원사업

4. 스토킹 피해자 등 법률상담 지원사업

5. 그 밖에 스토킹 예방·방지와 피해자 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스토킹 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하는 바에 따른 성희롱·성매매·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스토킹 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스토킹 예방·방지와 피해자 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단체,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위탁)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톱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령에 따라 정책 대상을 확대하고 경력단절 예방 지원을 강화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시책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구청장·사용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4조)
- 나.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의 종류 및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 다. 업무의 위탁 및 홍보,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해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일부 용어의 뜻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② 그 밖에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다.

2.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7조에 따라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간의 연계체계를 마련,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 및 고용안정 등 국가 및 검단구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과

「인천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추진하는 시행계획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과 이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과 법인 및 관련 단체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2.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 사업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
4. 여성고용업종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사업
5.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사업을 위한 위탁운영기관 및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원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검단구 양성평등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홍보)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 및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기관·단체 등에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 인천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제5조(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 법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인천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7조)

다. 환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교육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를 말한다.
2.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장려금”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검단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남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수급자”란 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검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2.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검단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제4조(지원 기준)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수급

자에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한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6개월간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 기간 만큼 지원하며, 수급자가 지원 기간 중 검단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②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日割計算)한 금액으로 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장려금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 신청) 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려금 지급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급대상자 및 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 (고용센터 발행)

제6조(장려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급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려금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하며, 지원 대상자에게 전화, 문자 전송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7조(장려금의 지급정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

2.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검단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을 가는 등의 사유로 더 이상 검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4. 그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라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수급자가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지급자격의 요건 확인을 위한 질문을 거부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8조(장려금의 환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2. 제7조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이 중단된 기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단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인 및 질문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수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환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수금을 환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④ 장려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9조(대장 관리 등) 구청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

식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에 따라 지원 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②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④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⑤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 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

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4.>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2.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2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3.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6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6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② ~ ③ 생략

[별지 제1호서식]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접수회차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검단구 거주기간																			
	전화번호																			
자녀 성명				자녀 생년월일																
육아휴직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육아휴직 기간을 거짓으로 기재할 시 『인천광역시 검단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조례』 제8조에 따라 환수조치 될 수 있음																		
입금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인천광역시 검단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지원대상자 주소 : 지원대상자의 관계 : 지원대상자 성명 : 서명(날인)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통장사본,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각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대리인 포함)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 등·초본																		
신청인(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

연번	동명	출생(입양)아			지원 대상자			거주 기간 (년 월)	주 소(전화번호)	계좌번호 (은행명)	신청일	육아휴직 기 간	지급일	지급액	비고 환수(중단) 사유 및 일자
		성명	생년월일	출생 순위	관계	성명	생년 월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와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여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4조)

나. 조성계획 수립·실시,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4조)

라.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회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마.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에 관한 사항(안 제16조~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또는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와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주민, 전문가, 관련 기관 및 단체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구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실시 및 평가

제5조(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조성계획

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사업별 추진계획
5. 연차별 추진계획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계획실시 등)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무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성인지적 관점 및 양성평등정책 등의 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있게 추진하여야 하며, 부서 간 협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주민, 공무원,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제3장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제8조(조성사업의 기준)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사회참여 확대
3. 지역사회 안전 증진
4. 가족친화 환경 조성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제9조(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요 정책 수립·결정 과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남성 또는 여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 소속 직원의 보직관리, 승진·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 구청장은 도시공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 공원·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기반시설
 - 가. 이동의 안전성과 편의성
 - 나. 대중교통의 접근성
 - 다.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 라. 여성·가족친화 환경 조성
2. 공공청사, 문화·복지시설 등 공공이용시설
 - 가. 여성·임산부·아동 등의 이용 안전성 및 편의성

나.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다.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제11조(여성·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구청장은 각종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안전 지역 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폭력·위험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실시
3. 폭력예방 및 위험 방지를 위한 관련 시설물 등의 개선·확충

제12조(여성능력개발 및 여성 취업·창업 활성화 지원) ① 구청장은 여성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역량강화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여성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네트워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여성인력을 주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확대 및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구청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구민 역량증진과 가족, 마을, 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공모사업,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의 제안 등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새로운 도시개발 사업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이 여성 친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

제15조(설치) ①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구 양성평등 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5장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운영

제16조(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구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이하 “구민참여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구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 속 성별 불균형 요소 모니터링 및 개선의견 제시

2.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정책 제안
3. 여성친화도시 공모 및 협력사업 참여
4.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 관련 구민 의견수렴 및 홍보
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7조(구성 및 임기) ① 구민참여단은 공개모집 등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에 관심이 있는 구민 중에서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남녀 성별을 고려하여 구
청장이 위촉한다.

② 구민참여단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구민참여단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구민참여단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구민참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
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원에 의한 경우
2. 질병, 장기입원 등으로 참여가 힘든 경우
3.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활동지원 등) ① 구청장은 구민참여단의 활동사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교육, 간담회, 워크숍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참여단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여성친화도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여성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4조(여성친화도시) ①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이하 “여성친화도시”로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여성친화도시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형성과 발전과정에 양성의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개발 방안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여성의 복지 및 생활안전 강화 방안
4. 해당 지방자치단체 여성의 권익 증진 방안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핵가족화로 인해 약화된 가족돌봄 기능을 보완하여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돌봄공동체 조성을 통해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정의(안 제1조~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7조)

라. 품앗이활성화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지도·감독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교육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통해 도시화·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육아 부담을 덜고 가족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을 말한다.
2. "자녀돌봄품앗이"(이하 "품앗이"라 한다)란 이웃들이 자녀를 함께 돌봄으로써 육아 부담을 덜고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는 공동 활동을 말한다.
3. "인천형 공동육아나눔터" (이하 "아이사랑꿈터"라 한다)란 영유아를 키우는 보호자가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돌보며 육아부담을 덜 수 있는 공간으로 인천광역시 가정육아활성화 사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가정육아지원시설을 말한다.
4.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란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에 아이사랑꿈터를 설치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및 「인천광역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제7조에 따라 아파트 관리주체에 지원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녀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부모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사랑꿈터(이하 "공동육아나눔터 등"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공동육아나눔터 등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 등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2.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부모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3.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품앗이 돌봄공동체 구성·운영 및 다양한 활동 수행
4.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활동 촉진을 위한 교구 등 지원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운영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운영의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인력 운용, 예산 집행, 모집·홍보에 관한 사항
3.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품앗이 구성·운영,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

연계방안

5. 그 밖의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운영 위탁 등) ①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품앗이 활성화) ①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품앗이 활성화를 위하여 자발적 참여에 의한 공동체 돌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내에 아이사랑꿈터를 설치할 경우 해당 사업예산의 범위에서 아파트 관리주체에 공동체 활성화 사업 운영

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운영 중인 공동육아나눔터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한 것으로 본다.

관계 법령 발췌

□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이양육 관련 정보 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동육아나눔터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자녀양육지원의 강화)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하여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육, 방과후 서비스, 양성이 평등한 육아휴직제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하여 아동양육지원사업 시책(아이돌보미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양육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관련 법·제도 및 가족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나. 지원계획 및 지원대상,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 다.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 라. 복지시설 및 한부모가족의 날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 마.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제1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예산법무과, 가정교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한부모가족의 자립기반 마련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2. 한부모가족이 사회구성원으로부터 이해와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는 교육 및 홍보와 관련한 사항
3. 한부모가족의 인간다운 생활보장 및 사회참여 지원과 관련한 사항
4.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과 관련한 사항
5.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방향과 추진 절차에 관한 사항
7.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민간부문 활용에 관한 사항
8. 한부모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제4조(한부모가족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5조 및 제5조의 2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가.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나.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다.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라.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마.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

2. 한부모가족 등의 주거지원 및 환경 개선

3. 한부모가족 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4. 한부모가족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권익증진

5. 한부모가족의 직업교육에 필요한 지원

6. 한부모가족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7.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 대한 퇴소자립금 지원

8.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9. 한부모가족 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10. 그 밖에 한부모가족 등의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업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7조(지원의 중지)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한부모가족 등에 대하여 법

제12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2. 한부모가족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지원을 받고 있던 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하였을 때

제8조(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환수)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급여를 받게 한 경우 복지급여를 지급한 구청장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복지 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복지급여를 받게 한 자(이하“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9조(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복지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을 시 출자·출연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장은 청소년 한부모가 입소를 요청하는 경우, 우선하여 입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한부모가족의 날) ① 구청장은 매년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

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 ①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1호의 출산지원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11. 4. 12., 2014. 1. 21., 2018. 1. 16., 2023. 4. 11.>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4. 12., 2014. 1. 21.>
 1.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2.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3.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4.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 ③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14. 1. 21., 2020. 10. 20.>

제12조의4(복지 급여의 거절·변경 등)

-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복지 급여를 신청한 지원대상자가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복지 급여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1.>
-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를 받고 있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1.>

1. 지원대상자가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복지 급여 지급의 정지
2. 지원대상자의 복지 급여 사유가 변경되거나 상실된 경우: 복지 급여의 변경 또는 지급 중지

[본조신설 2012. 2. 1.]

제20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은 청소년 한부모가 입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선 입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12.>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17., 2011. 4. 12., 2014. 1. 21.>
-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설치·운영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받은 날부터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20.>
- ⑤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출산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신설 2011. 4. 12., 2018. 12. 18., 2020. 10. 20., 2023. 4. 11.>
- ⑥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시설 설치·운영 기준, 시설 종사자의 직종(職種)과 수(數) 및 자격기준, 그 밖에 설치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12., 2020. 10. 20.>

[전문개정 2007. 10. 17.]

인천광역시 검단구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제3조)
-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 다.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 라.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안 제6조)
- 마. 행정적·재정적 지원(안 제7조)
- 바.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8조)
- 사. 지도·점검 등(안 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 예방 및 안전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어린이집 통학버스"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나목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검단구"라고 한다)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서 운행되는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운행 종합대책의 기본방향
2.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 현황
3. 어린이집 통학버스 실태조사

4.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 감소대책
5.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운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에 따라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이외에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운행을 위한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사고예방 및 안전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보호 장치 설치 지원사업
2.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사업
3. 그 밖에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안전운행 감독 및 안전시설 기준의 설정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운행 계획 수립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 예방활동 및 안전의식함양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

한 사항

4. 그 밖에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교통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지도·점검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안전에 관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은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에 시정조치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2. 19., 2011. 6. 7., 2023. 8. 8., 2024. 2. 6.>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0. 17.]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2017. 10. 24., 2018. 3. 27., 2020. 5. 26., 2020. 6. 9., 2020. 12. 22., 2021. 10. 19., 2022. 1. 11., 2023. 4. 18., 2023. 10. 24.>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을 제외한다)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유아교육진흥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및 외국인학교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및 교습소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제외한다)

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

아.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자. 「평생교육법」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시·군·구평생학습관

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개정 2014. 12. 30.>

[전문개정 2011. 6. 8.]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① 어린이통학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4. 11. 19., 2017. 7. 26.>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그 자동차는 도색·표지, 보험가입, 소유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7. 7. 26.>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는 한정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 및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도색 및 표지를 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전문개정 2011. 6. 8.]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제51조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제51조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6조제1호, 제160조제2항제4호의2에서 같다)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다만, 좌석안전띠 착용과 관련하여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2018. 3. 27.>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성년인 사람 중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보호

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4. 12. 30., 2020. 5. 26.>

1. 삭제 <2020. 5. 26.>

2. 삭제 <2020. 5. 26.>

3. 삭제 <2020. 5. 26.>

4. 삭제 <2020. 5. 26.>

5. 삭제 <2020. 5. 26.>

④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

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제4항에 따라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하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라 한다)를 작동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16.>

⑥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 동승을 표시하는 표지(이하 “보호자 동승표지”라 한다)를 부착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5. 26.>

⑦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이하 “안전운행기록”이라 한다)을 작성·보관하고 매 분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26.>

[전문개정 2011. 6. 8.]

[제목개정 2014. 1. 28.]

제53조의2 삭제 <2020. 5. 26.>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호자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20. 5. 26.>

②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신설 2014. 1. 28., 2020. 5. 26.>

1. 신규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과 운전하려는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라 동승하려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그 운영, 운전 또는 동승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2. 정기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하여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라 동승한 보호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1. 28., 2020. 5. 26.>

④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28.>

[본조신설 2011. 6. 8.]

[제목개정 2014. 1. 28.]

제53조의4(어린이통학버스의 위반 정보 등 제공) ① 경찰서장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운전하는 사람이 제53조 또는 제53조의5를 위반하거나 제53조 또는 제53조의5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상(死傷)하는 사고를 유발한 때에는 어린이 교육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 경찰서장 및 어린이 교육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해당 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각각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26.>

③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구체적 기준·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5. 26.>

[본조신설 2014. 1. 28.]

제53조의5(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제2조 제23호가목의 유아교육진흥원·대안학교·외국인학교, 같은 호 다목의 교습소 및 같은 호 마목부터 차목까지의 시설에서 어린이의 승차 또는 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

이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5. 26.]

[법률 제17311호(2020. 5. 26.) 제53조의5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 11월 26일까지 유효함]

인천광역시 검단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2026. 7. 1. 검단구 출범으로 인한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나. 지역연대의 설치, 역할,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 다. 지역연대의 구성, 권한과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 라. 지역연대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사항(안 제17조~제20조)
- 마. 지역연대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1조~제2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또는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 2.“아동·여성대상 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말한다.
- 3.“피해자”란 아동·여성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

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여성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구청장은 제4항의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연대의 설치)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

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이하“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5조(지역연대의 역할)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여성과 아동을 위한 안전망 구축
2.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연계와 자원·정보교류 기반 마련
3. 가정폭력,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환경 조성

제6조(지역연대의 기본원칙) ① 지역연대의 기능은 지역 내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특성과 필요를 파악하고, 지역사회 내 인적 물적 제도적 자원을 고려해야 한다.

② 지역연대의 구성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공공기관과 민간의 참여와 연대를 보장해야 한다.

③ 지역연대의 운영은 조직과 의사결정절차에서 구성원의 의견 교환과 합의결정의 합리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2장 지역연대의 구성

제7조(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은 아동·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되,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구”라 한다) 아동·여성 보호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
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예방 관련 기관 또는 시설
3. 아동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4. 청소년상담지원시설
5. 아동 및 가족지원시설
6.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7. 초·중·고등학교, 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
8.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기관
9. 지역주민대표
10. 학계전문가
11.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
되는 사람

③ 운영위원회는 제2항에 규정된 참여기관 및 시설 중 5개 유형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해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에는 제2항제2호, 제3호, 제6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협의·조정한다.

1.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
2. 아동·여성 보호 관련 사업
3. 정보교류체계 관련 사안
4. 지역연대 참여기관 및 시설 간 지역연대 관련업무
5. 사례관리팀 회부사안
6. 제3조4항의 시행계획 관련 사안

제9조(운영위원회 위원장) ① 운영위원회 위원장(이하“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소관 부서 국장에게 위원장직을 위임할 수 있다.

② 공동운영위원장(이하“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규정된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인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장 또는 공동위원장은 구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운영위원장 또는 공동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부위원장은 운영위원장 또는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역연대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 이를 대행한다.

제10조(운영위원의 임기) 운영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

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운영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운영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운영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운영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역연대 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

제12조(운영위원회 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여성정책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연대 사무를 처리한다.

1. 운영회의록 작성·보관
2. 지역연대 참여기관 정보교류체계 관리
3. 운영위원회와 사례관리팀 간의 연락
4. 지역연대 웹사이트 관리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임하는 업무

제13조(공동실무사례협의회의 구성) 지역연대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실무전문가로 공동실무사례협의회를 둔다.

제14조(공동실무사례협의회의 업무) 공동실무사례협의회는 해당 지역연대 및 이에 협력하는 인근 지역연대 관할지역 내 아동·여성대상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관련 개별사안의 개입과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제15조(공동실무사례협의회의 회원) ① 제7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여성아동 보호 및 복지담당 부서장 또는 팀장, 간사, 전문가를 공동실무사례협의회의원으로 한다.

② 공동실무사례협의회의장은 운영위원회의 간사가 겸직한다.

제16조(사무국) ① 공동실무사례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사무국과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 전담인력은 아동·여성폭력 피해자보호 전문가로 임용한다.

③ 사무국 전담인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기초지역연대 일반관리사무
2. 공동실무사례협의회의 운영지원
3. 인근 기초지역연대 지원 및 연락

④ 사무국의 운영은 지역연대 참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사무국 운영에 관한 규칙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제3장 지역연대의 기능과 역할

제17조(협력체계의 구축) 지역연대는 지역사회안전망 협력체계의 구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연대 운영계획의 수립과 이행점검
2. 아동·여성 보호 관련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제18조(위기관리) 지역연대는 아동·여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성폭력·가정폭력 위기·피해 여성·아동 긴급개입구조
2. 성폭력·가정폭력 위기·피해 여성·아동 사례관리 및 후속조치

제19조(예방지원) 지역연대는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2.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안전지표관리

제20조(연구 및 조사) 지역연대는 아동·여성폭력 위기관리와 예방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아동·여성 보호방안 연구
2. 지역 내 아동·여성 위험요인과 특성 조사
3. 지역 내 아동·여성폭력 피해 및 가해실태 조사

제4장 회의운영

제21조(운영위원회 정기회의)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제22조(운영위원회 임시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제23조(운영위원회 회의안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건으로 심의한다.

1. 중앙정부기관 또는 인천광역시로부터 공공전달체계를 통해 하달한 안건
2. 지역연대 참여기관이나 지역 내 기관단체에서 지역현안으로 제시한 안건
3. 지역연대 참여기관이나 지역 내 기관단체 실무자, 지역주민이 지역현안으로 건의한 안건
4. 실무사례협의회에서 제안한 안건

제24조(운영위원회의 성립과 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5조(실무사례협의회 회의운영) 실무사례협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제26조(회의기록과 보고) ① 운영위원회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는 운영위원회 간사가 회의일지를 작성하고 보관한다.

② 실무사례협의회 회의는 사례협의회장이 회의일지를 작성·보관한다.

③ 실무사례협의회장은 회의결과를 운영위원회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서 보고한다.

④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지역연대 참여기관과 의결내용과 관련된 지역내 기관·단체에 통보한다.

⑤ 지역 내 기관·단체나 지역주민이 제기한 안건이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었을 경우 그 회의결과를 해당 기관·단체나 주민에게 통보한다.

제5장 행정사항

제27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9조(필요경비 또는 수당) 구청장은 지역연대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운영위원과 실무사례협의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정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직업훈련 등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서비스 제공
 5. 법률구조 및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공
 6.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7.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8. 피해자와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상담원 등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9. 가정폭력 피해의 특성을 고려한 피해자 신변노출 방지 및 보호·지원 체계 구축
 10.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상담·치료프로그램 제공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등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가정폭력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과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經費)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2.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
 5.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6.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7.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8.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의 삭제지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보호, 피해 회복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2.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법령 정비 및 정책 수립
3.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외국인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운영

4.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법률구조 및 그 밖의 지원 서비스 제공
 5.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6.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감시
- ② 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교육 및 계도와 더불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가 국제적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죄 정보의 공유, 범죄 조사·연구, 국제사법 공조, 범죄인 인도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제1조~제3조)
- 나. 아동학대 예방 계획 수립 등, 아동학대 예방 교육,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제4조~제6조)
- 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제7조~제8조)
- 라.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홍보,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제9조~제11조)
- 마.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등, 간사, 위원의 해촉, 수당 등에 관한 사항(제12조~제19조)
- 바. 지도·감독, 비밀준수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제20조~제2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종합적인 시책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및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5.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학대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

고, 보호, 치료 의뢰 및 상담·조사 등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구청장은 아동복지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조기발견,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범죄 신고의무자 및 구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① 구청장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③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관련 업무량을 고려하여 임용한다.

④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 및 역량강화를 지원하여야

하고,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필요시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제2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 가족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심리검사 및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홍보)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구정소식지 및 각종 언론매체,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성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검단구 관할 교육지원청 관계자
3. 아동관련 기관 및 시설의 종사자, 학부모 대표
4. 지역사회대표 등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5.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간사)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 ② 간사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제20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비밀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과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련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운영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 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28.>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 4. 7.>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신설 2020. 4. 7.>

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0. 4. 7.>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제1조~제3조)
-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제4조~제5조)
- 다. 실태조사 및 사무의 위탁,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제6조~제8조)
- 라.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제9조~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 등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3. “퇴소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4. “자립준비청년 등”이란 자립준비청년과 자립지원대상아동, 퇴소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3.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자립준비청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제5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2025. 4. 1.>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의료 등의 지원

1의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

6.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3. 8. 8.>

1.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3.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8.>

인천광역시 검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회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목적(안 제1조)
- 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안 제2~3조)
- 다. 사례결정위원회 운영(안 제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교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회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회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제2조(설치 및 기능)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 예방위원회의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의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과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 각각 1명 이상 포함한다. 다만, 제7호는 제9조에 따라 아동빈곤예방위원회 기능 수행을 고려하여 위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인천서부교육지원청 또는 인천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소속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람

8.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사례결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②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6조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사례결정위원회에 사후보고 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례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 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회 통합·운영)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아동빈곤예방위원회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3장 아동위원

제11조(아동위원의 구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아동위원의 수는 각 행정복지센터별 1명 이상으로 한다.

③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12조(아동위원의 임기)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아동위원의 역할) 아동위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원조와 지도
3. 아동복지에 관하여 전담 공무원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14조(아동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아동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였을 때
2.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였을 때

제4장 보칙

제1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 업무 담당이 된다.

제16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거나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아동복지법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9., 2021. 12. 21., 2024. 2. 6.>

1.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 4의2. 제16조의4에 따른 재보호조치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5.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6.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7.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

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19.>

제14조(아동위원) ① 시·군·구에 아동위원을 둔다.

② 아동위원은 그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③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④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제1조~제3조)

나. 지원방법, 지원신청, 조사, 대상자 선정 및 통지에 관한 사항(제4조~제7조)

다.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회의(제8조~제11조)

라. 위원의 임기, 해촉, 제척·기피·회피, 수당, 지도·감독,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제12조~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과 18세 이상인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결식우려”란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식·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3. “기준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유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라.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급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마.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바.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사. 위 각 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 인천광역시 검단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제1호 또는 제2호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제4조(지원방법)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당 아동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 급식지원 시설, 아동의 영양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배달을 통한 급식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 등에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① 제3조제1호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구청장에게 급식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요구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급식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급식지원 신청은 직접방문, 전화,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아동 본인, 가족, 이웃 또는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조사 등) 구청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급식지원 형태 및 시기, 급식 신청 가구의 소득요건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자 선정 및 통지)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동 행정복지센터의 조사결과를 최종 확인하여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선정결과 등을 신청자 및 아동에게 통지하고 서비스 이용 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결정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
3. 급식식단 점검 및 보완
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시행
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
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
7.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아동급식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급식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학부모 대표

3.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4.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점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아동복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구의 아동급식업무 담당이 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 대행이 어려울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례회의는 방학기간 전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회의진행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경우
2. 제14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회의 참석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급식업체에 예산이 지원된 경우에는 그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한다.

② 급식업체는 아동급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급식업체가 아동급식 지원예산에 대하여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집행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2. 자살 및 각종 중독의 예방 등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3.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4. 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1.>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아동이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제3호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12. 21.>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급식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할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물가상승률을 계산할 때에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품목별 소비자물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2. 6. 21.>

-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5조 제5항 단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2. 6. 21., 2023. 9. 26.>
- ③ 제2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이나 그 가족 또는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1.>
-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아동이 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 아동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급식지원 대상자 포함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6. 21.>
- ⑤ 제4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1.>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식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 6. 21.>

인천광역시 검단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1조~제3조)
- 나. 돌봄정책의 종합계획 수립 및 돌봄사업 지원, 비용 등 규정(안 제4조~제7조)
- 다. 돌봄 공간의 설치 및 운영과 위·수탁, 안전 등 규정(안 제8조~제10조)
- 라. 아이돌봄협의회 설치, 구성 및 임기 등에 대한 규정(안 제11조~제18조)
- 마. 돌봄 시설 관계자 교육 및 역량 강화, 지도점검 등에 관한 규정(안 제19조~제2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온종일, 온마을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돌봄”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의 아이 돌봄 통합 체계 명칭을 말한다.
2. “돌봄 아동”이란 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초등학생 이하의 아동이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아동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3. “돌봄 아동”이란 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초등학생 이하의 아동이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아동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4. “돌봄 지원”이란 돌봄 아동에게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급식·간식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5. “돌봄 시설”이란 돌봄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구, 기관, 단체, 개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의 돌봄교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돌봄 종합계획 수립) 구청장은 초등학생 이하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추진 목표
2. 돌봄에 관한 재원 조달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돌봄 시설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돌봄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상시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돌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돌봄 사업 지원) 구청장은 돌봄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통합지원 체계 구축 사업
4. 돌봄 민·관 협력과 지역 연계 사업
5.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6. 돌봄 인력 양성 과정 지원 사업
7. 돌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조사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지원) ①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휴식
2. 아동을 위한 문화·예술·체육 등 체험활동
3. 방과 후 급식·간식
4. 학업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보조 활동

5. 감염병 확산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돌봄 아동에 대한 일시·긴급 돌봄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② 구청장은 양질의 돌봄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제7조(돌봄의 우선 제공)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1. 「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돌봄 아동
2. 그 밖에 구청장이 우선적으로 방과 후 돌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아동

제8조(돌봄 시설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설치 시 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공간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2. 초등학생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곳으로 선정
 3.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우선 설치 검토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으로 선정
- ② 지역 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확대하여 아동 돌봄 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돌봄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돌봄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준 및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보험 및 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돌봄 시설 및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

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③ 관계 공무원은 돌봄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아이돌봄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및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아이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돌봄 운영 계획 및 추진사업 심의·자문
2. 돌봄 시설 안전 및 아동보호 협력 체계 구축
3.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
4.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5.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 관계자 공동 교육
6.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12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인천광역시 검단구 관할 경찰서의 아동·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인천광역시 검단소방서의 시설 안전 관리 담당 부서의 장
4. 인천광역시 검단구 관할 교육지원청 돌봄 관련 부서의 장
5. 구 소속 관계 부서의 장
6. 돌봄 시설 운영 대표자
7. 관내 초등학교 재학생의 학부모
8. 그 밖에 아동 돌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는 민·관 협력 돌봄 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추진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임기) 협의회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회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회의 임기는 전임 위원회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협의회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와 그 대행)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해당 협의회 정기 회의를 연 2회 개최할 수 있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하며 간사 1명을 두되, 돌봄 지원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8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돌봄 시설 관계자의 교육 및 역량강화) 구청장은 돌봄 관계자의 전문성 향상 및 우수사례 견학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지도·감독)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예산이 지원되는 돌봄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포상) 구청장은 돌봄 시설 확충 및 민간 협력 돌봄 사업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조(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 15.]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제1조~3조)
- 나. 이용대상 및 사업·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제4조~제7조)
- 다. 위원회 구성·기능 등 운영에 관한 사항(제8조~제13조)
- 라. 구립 지역아동센터 설치·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제14조~제19조)
- 마. 지역아동센터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제20조~제2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예산법무과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구립 지역아동센터(이하 “구립센터”라 한다)”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5.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기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2장 지역아동센터

제4조(사업실행 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그리고 개인 등 법령에 의한 취학 아동의 방과 후 아동교육·복지사업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여건을 갖춘 자는 신고에 의하여 센터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법 제3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한 아동
2.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
3. 한부모·조손·다문화 가정의 아동
4.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6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사업비
2. 센터 종사자 인건비
3. 센터 시설 및 운영비
4.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5. 센터 종사자 교육비
6. 그 밖에 구청장이 센터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3장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제8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업무담당 국장,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 중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3.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5. 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의 장
6.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4.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5.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 평가
6. 구립센터 설치·운영 및 위탁(재위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해임·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때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3조(위원회의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구립 지역아동센터

제14조(설치)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 아동센터(이하 “구립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구립 센터를 설치한 경우에는 직접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공모하여 선정하고, 선정한 수탁자와 위·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③ 구청장이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위탁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인력 및 재정능력
2. 공신력 및 사업 수행능력
3.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실적

- ④ 구립 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검단구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16조(구립 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구립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탁자는 아동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2.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한다.
3. 수탁자는 보조금 및 수탁자산을 시설 관리 및 운영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
4. 수탁자는 시설물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을
준수해야 한다.
6.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협약 및 구청장의 지도·
감독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7. 수탁자는 위탁운영을 계속할 의사가 없을 때에는 3개월 전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제18조(협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장비·비품 및 집기 등을 구에 귀속해야 한다.

제19조(손해배상 등) ① 수탁자가 수탁재산 또는 시설물 등을 고의나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0조(지원금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3. 센터운영에 있어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보조금의 사용잔액이 있는 경우
5. 「아동복지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21조(지도·점검) 구청장은 센터의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재정 및 종사자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해야 한다.

제22조(준용) 센터의 지원과 구립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검단구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아동센터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하여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관계 법령 발췌

□ 아동복지법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2.>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 2016. 3. 22.>

인천광역시 검단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안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할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환경감시 기능을 활성화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포상지급 및 지급제외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다. 포상금 지급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 부서별 예산편성 필요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환경감시 기능을 활성화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검단구”라 한다)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경우로 한다.

② 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은 검단구 관할업무 중 환경법위반행위로서 폐수 무단방류,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오염토양의 투기 및 누출·유출, 악취발생물질의 소각, 사업장폐기물 불법 투기·소각·매립, 대기 및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를 말한다.

제3조(신고방법) ①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려는 자(이하 “신고인”)는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환경오염행위를 자신이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신고인은 육하원칙에 따라 환경신문고(128), 일반전화, 방문, 우편, 인터넷, FAX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접수 및 처리)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신고내용을 접수할 때에는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일시, 위치, 오염행위의 종류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오염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일 때에는 즉시 해당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히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제2조제2항에 따른 환경법령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와 함께 신고인에게 조사결과 등을 알려야 한다.

제5조(포상)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사회복무요원, 단기근로자 등 포함)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국가 등의 환경 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3. 익명·가명 또는 거짓 등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4. 신문·방송에 보도되었거나 기타 간행물 등에 공개된 사항
5.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6.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관하여 신고한 경우
7.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8. 법원에 쟁송(爭訟)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9.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30만원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하나의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이 중복되는 때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③ 동일인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 ④ 포상금 지급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포상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유사한 사항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 ① 포상금의 지급 시기는 환경오염행위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 통보일 또는 법원의 1심 선고일에 해당되는 분기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 불복 등으로 인한 소송 진행 시에는 소송 확정 전까지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 ②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자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 ③ 환경오염행위 신고내용이 고발과 함께 행정처분이 병행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또는 배출부과금·과징금·과태료 부과처분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 ④ 같은 사안에 관하여 다수인이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신고인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되 2명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고, 포상기준의 중복이 있을 때에는 그 중 신고포상금이 많은 1개의 기준을 적용하여 포상한다.

제7조(처리결과의 통지) 구청장은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제8조(신고인의 보호) ①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② 신고·포상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포상금) 환경법위반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수사기관,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2.>

[전문개정 2011. 4. 28.]

[별표]

환경오염행위 등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5조 관련)

1. 행정처분의 포상기준

행 정 처 분 명	포 상 금
허가취소·폐쇄명령, 등록취소 등의 행위금지 명령	30만원
업무정지, 사용정지, 조업정지 등의 행위제한 명령	20만원
경고, 개선·시정 명령	10만원

2. 배출부과금·과징금의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

- 지급률 : 배출부과금·과징금 등 부과액의 100분의 10
- 지급액 : 최고 30만원, 최저 3만원

3. 과태료의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

- 지급률 : 부과되는 과태료의 100분의 10
- 지급액 : 최고 20만원, 최저 3만원

[별지 제1호서식]

환경오염행위 등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연번	신고 일자	신고 방법	신고인		신고내용	처리내용			포상금지급액 (지급일자)	비 고
			성명	연락처		현지 확인일자	조사결과	회신일자		

주) 신고방법은 환경신문고(128), 일반전화, 인터넷, 우편, 직접방문, 기타 등으로 기재

주) 조사결과 란에는 위반법규, 위반내용 등을 기재

364mm×25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환경오염행위 등 포상금 결정서**1. 포상금 지급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2. 포상금 심사내용

포상금 지급의뢰기관		지급의뢰서 접수일자	
신고내용 및 처리결과	신고요지		
	위반내용		
	위반법규		
	처분내역		
포상금 지급기준 금액			

3. 포상금 결정내용

포상금액	
결정사유	

인천광역시 검단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검단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안 제4조)
- 다.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5조)
- 라.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안 제17조)
- 마. 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안 제1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검단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① 구청장은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화학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학안전시행계획은 「인천광역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화학안전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대비·대응역량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지역 내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방안
5.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면 지체없이 인천광역시장 및 관할 지역의 지방환경관서의 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 관계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에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화학안전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제17조에 따른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의 수립·변경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화학물질 담당국장, 재난안전관리 담당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인천검단구 관할 경찰서 화학물질 담당 부서장

나. 인천검단소방서 화학물질 담당 부서장

다. 화학물질 관련 측정 또는 분석업무 담당기관의 장

라. 지방환경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교육행정기관의 담당공무원

마.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바. 화학·환경·보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아. 그 밖에 구청장이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구청장은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비밀누설 등의 행위로 인해 위원회 활동에 위해를 주거나 위원

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의결권 행사 등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대리로 출석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대리참석의 이유 및 취지 등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2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전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①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배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장소 및 참석자 명단
2. 회의안건, 회의내용 및 그 결과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참석위원 중 2분의 1 이상 또는 참석위원 5명 이상의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제14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등 그 밖의 업무 관계자는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서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 구청장은 화학안전시행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화학안전관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이하 “화학물질 조사결과”라 한다) 중에 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고지한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 대응정보 요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3. 화학물질 취급사실이 명백하면서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 화학물질 조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취급시설의 설치현황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제17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① 구청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화학사고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검토하여 필요시 수정하여야 한다.

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훈련 방법 및 시기
2.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정보전달 방법 및 주민 행동요령
3.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장비 등의 동원방법
5. 화학사고 시 주민의 대피방법, 대피장소 및 사고지역으로의 출입통제방법
6. 화학사고 시 피해최소화를 위한 조치·복구 계획
7.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구청장이 정한 사항

③ 구청장은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등) ① 구청장이 법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주민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요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시의 주요 대피장소가 변경된 경우
2. 화학사고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기 위하여 임시로 모이는 장소가 변경된 경우
3. 사고대응계획의 변경으로 주민소산 계획의 변경 필요성이 큰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주민소산 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를 요청 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소산 계획 보완 요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른다.

제19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 ① 구청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즉시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20조(교육·훈련) ① 구청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지방고용노동관서·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비용 지원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

2. 환경·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화학물질관리법

제6조(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성·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2.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
3. 화학물질의 관리현황과 향후 전망
4.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의 시행에 드는 재원조달 방안
5.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한 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계획
6. 화학사고에 대비한 훈련·교육
7.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8.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장비 등의 동원 방법
9. 그 밖에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화학물질관리위원회) ① 기본계획의 수립 등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화학물질 관리업무를 주관하는 환경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관리위원회 위원은 화학·환경·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화학물질 관련 업계의 대표 및 관련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위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그 밖에 관리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1.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한 계획 또는 시책의 수립
· 시행
2.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
성·운영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5.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이행의 확인 및 지원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3조의4(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
역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함된 계획(이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에 관한 사항
2.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등 화학사고와 관련된 복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적정한 계획 수립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지역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거나 관할 소방관서의 장 등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의 장이 화학사고
에 대비·대응하기 위한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제공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공
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절차

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공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3. 31.]

인천광역시 검단구 환경 기본 조례안

1. 제안이유

2026. 7. 1. 검단구 출범으로 인한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기본이념, 기본원칙,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4조)
- 나. 사회 구성원들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8조)
- 다. 환경계획의 수립 등 환경보전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9조)
- 라. 정보의 공개, 구민참여에 관한 사항(안 제20조~제23조)
- 마. 환경보전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24조~제2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환경 기본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는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세대에 계승되도록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며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가능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간다.

③ 구의 모든 시책은 환경보전을 고려하여 수립하고 시행한다.

제3조(기본원칙) 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생활환경, 자연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배려의 원칙
2.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3.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
4.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참여의 원칙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日照), 인공조명, 화학물질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濫獲)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表土)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7. “환경용량”이란 일정한 지역에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대하여 환경이 스스로 수용, 정화 및 복원하여 환경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한다.
8. “환경기준”이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말한다.

제5조(구의 책무) ① 구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을 창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인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수질·토양·해양의 오염방지 등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2. 야생동·식물의 보호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자연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감량에 관한 사항
5.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유해화학물질의 적정한 관리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구의 환경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환경시설의 설치, 조직 및 재정확충에 관한 사항
9. 환경전문인력의 양성과 구민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② 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이송·가공·판매·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과 에너지의 절약 및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오염방지시설을 설치·관리함으로써 지역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구민·민간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①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구의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하며 구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구민은 스스로 환경오염방지에 힘써야 한다.

⑤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학교·민간단체·언론 등의 역할) ① 교육행정기관·학교·학원 등 교육기관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민간환경단체 등은 구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계도,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언론기관은 구민·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시책

- 제9조(환경계획의 수립)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2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 및 해양의 이용 등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현재의 환경영향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와 전망
 3. 환경보전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자원 조달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 ③ 구청장은 환경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환경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⑤ 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계획에 배치되

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구와 사업자, 구민 등은 자연환경과 생태계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고려하여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보전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최대한 보호되어야 한다.
3. 야생동·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구는 공원, 녹지, 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절한 정비와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지역환경기준의 유지·관리) ① 구청장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로 정한 지역환경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을 할 경우에는 지역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환경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3.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환경위해 요인의 예방
4.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배분

제12조(환경기초시설의 설치·관리 등) 구는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

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 구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구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그 밖의 사업을 함에 있어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환경자문협의회 구성) ① 구는 지역환경개선을 위하여 환경자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구청장 또는 부구청장이 되거나,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

④ 위원은 환경보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구의원,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경우에는 어느 한쪽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는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⑥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환경자문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환경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환경 분야의 지역현안 및 분쟁에 관한 사항
3. 각종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는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행사,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 관련자료 제공·조언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환경오염 원인자의 비용 부담)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원인을 야기한 사람은 그 오염의 방지와 오염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환경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구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규제조치) 구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4장 정보의 공개와 구민참여

제20조(정보의 공개)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구민참여)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결정·집행·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 및 민간단체 등이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인 환경오염 감시체제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2조(환경오염 신고포상금 지급) ① 구청장은 환경오염 행위자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환경오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인천광역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따를 수 있다.

제23조(환경교육·홍보) 구는 교육기관, 민간환경단체,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구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되도록 인재의 육성, 자료의 제작·보급 및 구민환경교육 등을 실시한다.

제5장 환경보전에 관한 협력

제24조(국가 및 타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구는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인천광역시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 기술교류 등의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등) 구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

술의 교류 및 국제환경협력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 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에 비추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기후변화 등 지구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함으로써 현 세대의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그 혜택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1. 15.>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 관련 법령이나 조례·규칙을 제정·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며,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공정한 구제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9. 1. 15.>

인천광역시 검단구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대책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 다.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 충돌로 인한 야생조류 부상 또는 폐사 방지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를 말한다.
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 저감 및 차단 목적의 투광성 판재로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
3. “조류 충돌 방지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여 붙이는 충돌 방지 목적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
4. “조류 충돌 방지필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여 붙이는 충돌 방지 목적의 필름 또는 시트지를 말한다.
5. “데칼”이란 데칼코마니(decacomani)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 붙이는 장식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인천광역시 검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

한 공단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

· 출연한 기관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저감대책 실시)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기존의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 충돌을 저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노력하여야 한다.

1. 내구성이 뛰어난 조류 충돌 방지테이프나 필름, 데칼의 부착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감 사업

② 구청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22조 및 제43조에 따른 전략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제1항에 따른 야생조류 충돌 저감사업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련 전문가에게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치 및 대책을 심의·자문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야생조류 충돌 저감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 시설물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5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조류 충돌이 예상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저감 대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구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조사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교류협력 등) 구청장은 야생조류 충돌 저감을 위하여 국가, 인천광역시 및 그 밖의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은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 인공구조물(이하 “인공구조물”이라 한다)로 인한 충돌·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관 인공구조물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6. 10.]

② 환경부장관은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소관 인공구조물에 대하여 충돌방지제품의 사용 등 야생동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인공구조물의 범위 및 설치기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주기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인공구조물의 범위 및 설치기준)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

정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이 충돌·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관리해야 하는 인공구조물(이하 “인공구조물”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이 충돌할 수 있는 인공구조물: 투명하거나 빛이 전(全)반사되는 자재를 사용하여 야생동물의 충돌 피해를 유발하는 건축물, 방음벽, 유리벽 등의 인공구조물

2. 야생동물이 추락할 수 있는 인공구조물: 구조와 자재 등으로 인해 야생동물의 추락 피해를 유발하는 건축물, 수로 등의 인공구조물

② 공공기관등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투명하거나 빛이 전반사되는 자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늬를 적용해야 한다.

1. 선형(線形) 무늬

가. 가로무늬: 굵기는 3mm 이상이고, 상하간격이 5cm 이하여야 한다.

나. 세로무늬: 굵기는 6mm 이상이고, 좌우간격이 10cm 이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무늬(비정형 또는 기하학적 무늬를 포함한다): 무늬의 직경은 6mm 이상이고 무늬사이의 공간은 50cm² 이하여야 하며, 무늬의 상하간격은 5cm 이하이고 좌우간격은 10cm 이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등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 탈출시설: 야생동물이 인공구조물 내부에서 외부로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2. 횡단이동시설: 야생동물이 인공구조물에서 추락하지 않고 횡단할 수 있도록

록 하는 시설

3. 회피유도시설: 야생동물이 인공구조물에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횡단이동을 유도하는 구조를 갖춘 시설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야생동물의 추락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④ 공공기관등은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야생동물의 충돌·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위치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6. 9.]

제7조의3(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실태조사의 대상·주기 및 방법)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자연생태 보전을 위한 보호지역 또는 구역에 설치된 인공구조물에 대해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실태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실태조사의 방법은 별표 3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23. 6. 9.]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3]

야생동물 충돌·추락 실태조사 방법(제7조의3제3항 관련)

1. 조사 항목

조사원은 야생동물 충돌·추락 실태조사 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조사한다.

가. 부상을 입거나 고립된 야생동물 또는 사체(뼈, 털·깃털, 가죽, 허물 등 사체의 일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인공구조물 상 충돌 흔적 또는 추락 흔적(발자국 등을 포함한다)

다. 위험요인

2. 조사 방법

조사원은 야생동물 충돌·추락 실태조사 시 다음 각 목의 조사 방법을 따라야 한다.

가. 조사 대상 지역 내의 인공구조물 혹은 지점을 선정하고 야생동물의 종류에 따라 충돌·추락을 판단할 수 있는 기간과 범위를 정하여 조사한다.

나. 조사 대상 인공구조물 내부 또는 주위를 탐색하여 조사 항목을 확인한다.

다. 도보 및 육안 탐색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안경, 망원카메라 또는 무인감지카메라 등을 활용한다.

라. 최소 2인 1조로 조사한다.

마. 조사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에 위치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사진 촬영기기로 조사 대상 인공구조물을 촬영하여 기록한다.

바. 조사 항목을 발견한 경우 위치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사진 촬영기기를 활용하여 이를 촬영하고 기록한다.

사. 사진 촬영 시 동물의 종류를 구분하기 쉽도록 촬영해야 한다.

아. 청소원·경비원 등 관리자가 있는 인공구조물의 경우 해당 관리자에게 조사 당일 피해 기록에 대한 탐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록한다.

자. 중복 기록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 시 확인한 야생동물의 사체를 현장에서

제거하거나 관리기관에 신고한다.

3. 조사 결과 관리

조사원은 야생동물 충돌·추락 실태조사 시 다음 각 목의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가. 조사자 정보

나. 조사 일시

다. 조사 대상 인공구조물 정보

라. 조사 항목 정보(식별 가능한 야생동물 또는 사체의 종명(種名)과 개체수를 포함한다)

마. 위치 정보

바. 그 밖에 필요한 정보

4. 조사 결과 확인

조사기관은 조사원이 기록한 정보 중 적합하다고 확인된 정보만 활용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5. 공공기관등의 협조

조사원은 현장조사 시 관계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다음 각 목의 협조를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

가. 관할 출입제한구역의 출입

나.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이 야생동물의 충돌·추락 방지를 위해 조치한 인공구조물의 설치·관리 현황

다. 형태, 위험요인 등 인공구조물 관련 자료

라. 청소원·경비원 등 인공구조물 관리자에 대한 탐문조사

마. 그 밖에 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

6. 안전수칙

조사원은 야생동물 충돌·추락 실태조사 시 다음 각 목의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가. 차도 등 보행자 도로가 아닌 도로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경찰 등의 협조를 요청한 후 안전하게 조사한다.

나. 안전조끼, 마스크 등의 안전장비를 착용한다.

다. 부상을 입거나 고립된 야생동물을 구조하거나 사체를 수거하는 경우 질병 감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 라텍스 장갑, 집게 등을 활용해야 하며, 야생동물 또는 사체를 직접 만지지 않는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소음·진동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가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

2. 주요내용

- 가. 공사장 소음 및 미세먼지 상시측정 및 특정장비 사용 제한(제6조, 제10조)
- 나.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제8조, 제9조)
- 다. 생활소음의 측정방법(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진동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가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소음·진동”이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소음·진동을 말한다.
2. “비산먼지”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3. “특정공사장”이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로서 사전신고 대상인 공사장을 말한다.
4. “특별관리공사장”이란 건축물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의 공사장을 말한다.

제3조(구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정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1.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배출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 운영 여부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2. 정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등의 방지활동에 관한 사항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의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의 정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사업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사업공정에 따른 전 과정에서 정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시설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 제6조제2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소음 측정 표지판 및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등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시설 설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주민의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피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시행 전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사전 안내 및 주민과 협의 등 적극적인 민원 해소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5. 사업자는 주민·단체의 정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활동 연구 및 홍보 사업 등의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으로 정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정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구가 시행하는 정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장 소음 및 미세먼지 상시측정) ① 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에 대하여 제반규정 준수 및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저감을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 측정기기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상시 측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음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대상은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0,000 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소음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대상 공사장의 사업자에게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설치위치, 소음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생활소음의 측정방법) ① 생활소음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에 의한다.

② 구청장은 제6조제2항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소음피해의 사전 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부지경계선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도를 측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측정결과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처분 등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73조를 준용한다.

제8조(공사장 비산먼지 억제) ① 구청장은 건축물 해체·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 공사장에 대해 제2항과 제3항의 먼지 저감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공사장 비산먼지 대상 사업장은 공사장 내 차량통행 도로를 우선 포장하고, 건축물 축조 공사장은 건물바닥을 수시로 청소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대상 사업장은 공사장으로부터 도로에 토사유출과 출입차량의 세륜세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사장 출입구에 먼지관리 전담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9조(도로먼지 억제) ①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사업장은 도로굴착공사를 하는 때에는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해 신속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 중에는 물청소차량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②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미만 공사장의 시행자는 공사장 주위를 수시로 물청소하고 토사류가 흩날리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사업장은 도시가스, 상수도·하수도 등 도로 굴착 공사를 할 때에는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가급적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10조(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규칙 제21조의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별표 9의 기계·장비에 대하여 규칙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발생 행위의 분산·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지도점검) 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1. 공사장 등의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에 대하여 저감대책 이행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
2. 아침·저녁 시간대에 특정 장비를 사용하여 지나친 소음을 발생하는 행위
3.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 사용하는 이동소음 발생 행위
4. 그 밖에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로 주민의 정신건강과 쾌적한 주거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제12조(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개선명령 등) ① 구청장은 사업자가 제10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소음 정도가 규제기준을 준수하도록 방음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특정장비사용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소음발생 장비의 사용금지 또는 공사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업자가 제8조 및 제9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방진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자의 환경관리 자율참여) ① 구청장은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에 대하여 사업자가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협약 체결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약 체결 등을 통하여 자율환경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소음·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의한 보고 검사의 면제, 중소기업의 방지시설 자금융자, 각종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3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소음·진동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① 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 구역의 면적이 가장 큰 구역(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 사업의 규모를 길이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길이가 가장 긴 구역을 말한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사업이 걸쳐 있는 다른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⑦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조치를 명하지 않으면 해당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 나. 석면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7조)
- 다. 슬레이트 건축물에 관한 사항 (안 제9조~1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4.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
5. “석면 비산방지”란 제4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해체·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시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

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석면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① 구청장은 구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00제곱미터 미만의 구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5조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석면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제7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결과의 공개)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조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토양·물의 석면농도
4.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슬레이트 처리 등) ① 시행령 제37조 제4항 제1호의 해체·제거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행령 제37조 제4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슬레이트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해체·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해체·제거 및 처리등과 지붕개량 비용을 전액 지원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2조(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구청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 구청장은 건축물의 석면 해체작업을 할 경우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을 둘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슬레이트 해체·제거기준(제10조 제1항)

1. 슬레이트 해체·제거 작업에 참여한 자는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 등을 활용하여 작업복등에 묻은 석면,분진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2. 해체·제거한 폐슬레이트는 폴리에틸렌이나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야 하며, 사람의 왕래가 없는 한적한 장소에 임시 보관할 수 있다.

[별표 2]

슬레이트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제10조 제2항)

1. 수집·운반의 경우

가. 폐슬레이트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나. 폐슬레이트 배출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배출장소까지 운반하여야 한다.

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가목’에 따라 폐슬레이트를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폐슬레이트 운반차량임을 표시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2. 보관·처리의 경우

가. 폐슬레이트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관계 법령 발췌

□ 석면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石綿)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硅酸鹽) 광물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제25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의 사용 실태 및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등을 조사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처리 및 석면의 해체·제거·처리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 ① 법 제2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석면건축물을 관리할 것
2.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에 대하여 6개월마다(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를 말한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

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측정 결과 석면농도가 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수(補修), 밀봉(密封), 구역 폐쇄 등의 조치를 실시할 것. 다만, 학교등의 경우에는 「학교보건법」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전기공사 등 건축물에 대한 유지·보수공사를 실시할 때에는 미리 공사 관계자에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지도(이하 “건축물석면지도”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공사 관계자가 석면건축자재 등을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이 용도변경, 폐업 등으로 제29조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또는 석면건축자재의 철거 등으로 제32조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의 결과
2. 건축물석면지도

2의2. 석면건축물의 용도변경, 폐업 등 증명자료(용도변경, 폐업 등으로

석면건축물이 제29조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3. 석면건축자재의 철거·교체 증명자료(석면건축자재를 철거하거나 교체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또는 불승인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가 제2항에 따른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석면건축물이 용도변경, 폐업 등으로 제29조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건축물의 철거·멸실로 제32조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석면건축물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석면건축물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37조(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특례)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슬레이트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이하 “슬레이트 처리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작업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시·군·구 단위 또는 읍·면·동·리 단위 등으로 묶어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슬레이트 처리등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슬레이트 처리등을 하려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에 따라 석면조사를 실시할 것

2. 슬레이트 처리등을 하려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3조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3의 슬레이트 처리등의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할 것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슬레이트 처리등을 할 수 있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슬레이트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하이고 소유주가 직접 슬레이트를 해체·제거하는 경우

2.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방파제나 다리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제외한다)에서 슬레이트를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

3. 슬레이트를 수집·운반할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산간오지 등에서 슬레이트를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파손된 슬레이트를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석면건축자재의 종류)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면건축자재란 다음 각

호의 건축자재 중 제2조 각 호의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건축자재를 말한다.

1. 지붕재
2. 천장재
3. 벽체재료
4. 바닥재
5. 단열재
6. 보온재
7. 분무재
8. 내화피복재
9. 칸막이
10. 배관재(개스킷, 패킹, 실링 등)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재

제24조(석면건축자재) 영 제32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란 제3조제7호 또는 제8호의 건축자재를 말한다.

제28조(석면건축물의 관리기준)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영 제33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석면의 위해성 정도를 고려하여 보수, 밀봉(密封), 구역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영 제33조제1항제

2호에 따른 조사 및 조치 내용을 정보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지체 없이 기록해야 한다.

③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영 제33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측정하여 그 측정 결과 및 조치 내용을 정보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지체 없이 기록해야 한다. 이 경우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영 제33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2.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이하 “석면조사기관”이라 한다)
3.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

제122조(석면의 해체·제거) ① 기관석면조사 대상인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설비소유주등은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설비소유주등이 인력·장비 등에서 석면해체·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스스로 석면을 해체·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는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기관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이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석면해체·제거업자(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건축물·설비소유주등을 말한다. 이하 제124조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신고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2026. 7. 1. 검단구 출범으로 인한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로 하여금 전용주차구역을 지상에 설치하고 안전시설 및 대응 설비, 점검 방안 마련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 나. 방화구획 설비, 소화 설비, 집수 설비, 냉각소화 장치, 연기배출 설비, 화재 감시 설비 등 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 다. 안전시설의 위치, 상태 등을 점검하고 유지관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시설 지원 및 신속한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3.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5.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및 대응,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6.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

주택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한다. 다만 다른 조례의 범위에서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위임조례는 제외한다.

제5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공동주택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옥외 또는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2. 전용주차구역을 불가피하게 지하주차장에 설치할 경우 직통계단을 피해 주차장 진·출입 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3. 전기자동차와 관련한 화재 예방 안전시설 및 대응 설비 마련
4. 질식소화포, 상방향 방사장치 등 안전시설의 위치 안내 표시물 부착
5. 전기자동차 충전 안내 표시물 부착 또는 설치
6.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 및 과충전 방지 기능이 탑재된 충전시설의 설치
7.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 및 대응 기능 확보
8.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후 시설 점검
9. 그 밖에 공동주택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관계인이 공동주택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격리방화벽, 제연경계벽, 물막이판 등 방화구획 설비
2. 급수배관, 스프링클러, 방수구, 방수기구함 등 소화 설비

3. 배수배관, 집수정 등 집수설비

4. 질식소화포

5. 상방향 방사장치 등 냉각소화 장치

6. 화재감지기 및 연기배출 설비

7.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전용 화재 감시 설비

8. 충전시설 유의사항 및 안전시설 안내 표시판

9. 그 밖에 공동주택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제7조(안전시설의 유지관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설치한 안전시설 등의 위치, 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그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소방서,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외부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략)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
· 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7. (이하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이하 “화재예방정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예방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

재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계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화재예방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태양광자동차”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 10.(이하생략)

제8조의2(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생산·공급·판매 또는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부품의 개발·생산을 위한 연구·조사
3.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 지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 ⑫(이하생략)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은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동충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서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
2. 완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시설

② ~ ⑦(이하생략)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2. ~. 21(이하생략)

제32조(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의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과 방법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방법교육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설물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정된 사람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방법교육 및 안전교육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방법교육: 관할 경찰서장 또는 제89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법인

2.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관할 소방서장 또는 제89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법인

3.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제89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법인

제33조(안전점검)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로 입주자등을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및 사용연수, 세대수, 안전등급, 층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사실을 통보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해당 건축물의 이용 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건축물과 공중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안전점검과 재난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방법,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안전점검을 위한 보유 장비,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관리비용 등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층간소음의 측정·진단에 필요한 비용(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운영 비용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개량, 층간소음 저감재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2026. 7. 1. 검단구 출범으로 인한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충전시설 안정성 강화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편의 등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제어하기 위한 전력공급설비, 충전기, 인터페이스,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3. “급속충전시설”이란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인천광역시 검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출장소, 하부행정기관
 -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치한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단
 -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전기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기본방향
2. 전기자동차 보급계획
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
4.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자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전기자동차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충전기 관련 KS 규격이나 단체표준 규격에 적합하고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사용 승인을 받은 충전시설 구축비
2. 전기자동차와 일반자동차(동종 또는 동급차량)의 최종판매 가격의 차액으로서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단, 신규등록 전기자동차에 한함)
3. 그 밖에 구청장이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시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전기자동차 소유자(해당 소

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5년동안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의 운행과 이용 편의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공영주차장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구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 충전시설 설치
3. 구 공영주차장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주차구획 설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우선구입)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전기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8조(충전시설 보급 확대) ① 구청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을 보급·확대할 수 있다. 다만,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급속 충전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를 위해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공기관에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충전시설 안전성 강화) ① 구청장은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소방설비 설치 등 필요한 방안

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충전시설 설치의무자가 충전 시설 및 충전구역 화재예방을 위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점검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관리·운영 위탁) ① 구청장은 충전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충전시설 등을 관리·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 위탁을 받은 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 등과 관련한 규정을 정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관리·운영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제5조, 제6조, 제7조의4 및 제8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태양광자동차”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7. 삭제
 8. 삭제
 9.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기 위하여 수소를 생산·저장·운송·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부품을 제작·조립하는 기업
 -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또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생산하거나 설치·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업
- 제3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등에 관한 기본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중장기 목표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구개발 및 그 연구개발과 관련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수소연료공급시설 등 자동차 동력원의 보급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의2(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생산·공급·판매 또는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부품의 개발·생산을 위한 연구·조사
3.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 지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매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제11조의3(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국가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제15조(업무의 위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8조, 제8조의2, 제10조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업무

3.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업무의 일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제1호·제1호의2·제3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경

비를 지원받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소유자(해당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라 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⑪ 저공해자동차, 저공해건설기계 또는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저공해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에게 저공해자동차등에 해당함을 인증하는 표지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

1. 제안이유

2026. 7. 1. 검단구 출범으로 인한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구청장,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5조)
- 다. 악취배출사업장 인·허가시 고려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라. 악취대책민관협의회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2조)
- 마.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 제2조를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행정인력 지원과 예산투자 등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악취배출 사업장 및 시설 등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악취대책 민관협의회의 자문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악취배출 사업장 및 시설 현황, 위반 사업장,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 추진 결과 등 관련 정보를 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악취배출 사업장 및 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사업 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 등에서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사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악취배출사업장 인·허가 시 고려) ① 구청장은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인·허가 시 인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장부지 분양, 기업유치를 하려는 경우 악취로 인하여 구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체에 대하여는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장 악취대책민관협의회

제7조(협의회 설치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협의회를 둘 수 있다.

1.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에 관한 사항
2. 악취발생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

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하며 간사는 악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악취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의원 1명을 포함하여 주민대표, 관련전문가, 악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환경단체관계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협의회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협의회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은 협의회를 개최할 때 외부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악취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7. 16.>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지정악취물질”이란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복합악취”란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하여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5. “신고대상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악취배출시설
 - 나.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악취배출시설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며, 악취가 생활환경 및 사람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악취방지에 관한 기술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연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방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음식물의 조리, 동물의 사육, 식물의 재배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21조(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8.>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기술적 지원의 대상,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3. 28.> [본조신설 2012. 2. 1.] [제목개정 2023. 3. 28.]

인천광역시 검단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2026. 7. 1. 검단구 출범으로 인한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의경청취(안 제4조~제5조)

나. 학교환경교육의 지원(안 제6조)

다.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안 제7조~제8조)

라. 재정지원 등(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환경보전 실천 역량을 갖추어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
3. “사회환경교육”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구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

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학교 등의 환경교육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방안
4.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5. 환경교육계획의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의견 청취)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전 전문가, 구민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구청장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4.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종교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3.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실시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고용된 사람에게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1. 환경교육 홍보를 위한 홍보물, 기념품 제공
2. 환경 관련 교육 및 행사 참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장소 등 제공
3. 그 밖에 환경교육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홍보 및 표창)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관별·프로그램별 우수사례 및 그 밖에 환경교육 활동을 발굴·홍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국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라.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4조(책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 ②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환경교육 교과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모든 국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13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국가기관, 군부대, 기업 및 사회·종교 단체 등에서의 사회환경교육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4조(사회환경교육의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사회환경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 ② 사회환경교육의 방법 및 교육시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사회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환경교육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경비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법인·어린이집·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드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0.>

인천광역시 검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 제안이유

2026. 7. 1. 검단구 출범으로 인한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의 책무,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안 제1조~제5조)
- 나. 지역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 다. 지방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7조)
- 라.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에 관한 사항(안 제18조~제2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함으로써 2050년까지 탄소중립 도시의 구현과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업자와 구민 등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관련 정보 공유를 위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기관,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모든 활동에 있어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선도하여야 하며,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가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구가 실시하는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

제7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구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구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零)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제8조제1항에 따른 검단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 및 제40조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관계 전문가 및 기관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의 추진 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3장 인천광역시 검단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10조(검단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검단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 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구 적응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6.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고,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전문가 부족으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당연직위원 : 탄소중립 정책 관련 국장 및 부서장

2. 위촉직위원

가. 인천시 검단구의회에서 추천한 구 의원

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전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

역시 검단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제18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① 구청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실천연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0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생산·소비문화의 확산) ① 구청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재화의 생산·소비·운반 및 폐기의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참여한 구민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등을 활용한 인센티브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여할 수 있다.

제20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법 제67조에 따라 구민의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21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구청장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23조(기후위기 대응사업) 구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환경오염·훼손에 대응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환경의 변화나 자연재해 등으로 농업 등 기존 산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취약 지역 및 계층 등을 중점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24조(포상) 구청장은 기후변화대응과 탄소중립 체계 확립을 위하여 기여한 공이 있는 구민·시민단체·공무원 등에게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사회·교육

· 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개선과 재정투자, 시설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국제협상의 동향과 주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분석하여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사업자 및 국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따라 기후위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영향 예측 등을

추진하고, 국민과 사업자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며, 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책적·기술적·재정적 지원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2026. 7. 1. 검단구 출범으로 인한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소 공급 기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수소산업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공공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소산업”이란 수소의 생산·저장·운송·충전·판매 및 연료전지와 이에 사용되는 제품·부품·소재 및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2. “수소사업”이란 수소산업과 관련된 제품이나 장비의 제조를 영리목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수소사업자”란 수소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연료전지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연료전지와 연료전지 관련 부대설비를 말한다.
5.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송·건물·발전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연료전지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수소경제”란 수소의 생산 및 활용이 국가, 사회 및 국민생활 전반에 근본적 변화를 선도하여 새로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수소를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경제산업구조를 말한다.
7. “수소용품”이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용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소 산업 육성 및 수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수소 공급 기반 조성 및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소충전소 구축 계획
2. 인천광역시 검단구 수소산업의 산업 현황
3. 수소전기차 등 수소모빌리티 보급 활성화
4. 수소산업 및 수소용품 관련 안전관리 계획
5. 그 밖에 수소 공급 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전기차 등 수소모빌리티 보급
2.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수소배관망 구축
3. 수소산업·연료전지의 기반시설 구축
4. 수소사업 관련 서비스 보급의 활성화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출자·출연기관, 대학, 연구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점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수소용품 제조사업 촉진 및 지원) 구청장은 수소용품 제조사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용품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2. 수소용품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3. 그 밖에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업

제7조(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 관련) 법 제36조(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제2항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사회적 공감대 형성) 구청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수소안전관리에 대한 시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산업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해 및 공감대 확산 관련 사업
2.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관련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4. 수소산업의 홍보와 안전을 위한 영상물 제작 및 후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소 산업 육성, 청정수소의 개발·생산·보급 및 수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10.>

② 수소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수소사업자”라 한다)는 수소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개발·사업화 촉진과 수소의 환경친화적인 생산·저장·운송·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사회적 공감대 형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산업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통하여 수소경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해 및 공감대 확산
2. 수소친화적 문화 정착 및 발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
3. 수소와 관련된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4. 수소친화적 문화 정착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육성 및 지원
5. 수소친화적 문화의 향유와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기반 조성
6. 그 밖에 수소산업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인천광역시 검단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2026. 7. 1. 검단구 출범으로 인한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구, 사업자, 구민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제6조)
- 나. 미세먼지 예·경보 및 대기오염 측정망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 다. 미세먼지 영향조사 및 집중관리 구역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 라. 미세먼지 저감 사업 및 구민의 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2조)
- 마. 교육 및 홍보, 시행규칙 (안 제13~제1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μm)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μm)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가. 질소산화물

나. 황산화물

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3.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써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측정 장비를 말

한다.

5. “미세먼지 농도”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의 대기오염 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6. “예보”란 관측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및 기상변화 등을 고려하여 예측한 미세먼지 농도(PM-10, PM-2.5)를 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7. “경보”란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측정된 시간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 이를 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8.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취약계층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구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해당 사업 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운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하고 사업장 환경개선 및 연료 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구청장은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대기오염경보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비상저감조치가 예보·발령되는 때에는 전광판, 구 홈페이지 및 기타 효율적인 방법 등을 활용하여 구민들에게 그 내용을 즉시 전파하여야 한다.

제8조(대기오염 측정망의 설치 운영)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측정망 외에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9조(미세먼지 영향조사 및 연구)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조사 및 연구에 따른 결과를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에 활용하여야 하며,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하 “집중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집중관리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따른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
2. 살수차·진공청소차의 집중 운영
3. 어린이 등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4. 학교 등에 공기 정화시설 설치
5. 수목 식재 및 공원 조성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해제요건, 절차,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에 따른다.

제11조(미세먼지 저감 사업 지원)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미세먼지 피해 저감 시설 설치
2.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한 사업
4. 다중이용시설의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 설치
5. 다중이용시설의 오염도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6.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구민의 참여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립 및 시행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하여 주민 제안 공모를 실시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실천 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 가. 질소산화물
 - 나. 황산화물
 - 다. 휘발성유기화합물
 - 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3.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의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홍보 등을 강화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변국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활동(해당 사업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2026. 7. 1. 검단구 출범으로 인한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

나.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안 제6조)

다. 녹색제품 구매 확산(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녹색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 및 법 시행령 제2조를 따른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 시책의 수립)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제5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

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및 구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
3. 계약특수조건 규정,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3.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제7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② 구청장은 적합한 녹색제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제8조(교육)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제2조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

제9조(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 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녹색제품 정보제공)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조사·수집하여 관내기업,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사·수집에 관한 업무를 관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녹색제품 구매 확산) ① 구청장은 친환경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기업 등의 기관에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기관·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 사업에 필요한 경우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소비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생산자 및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08. 3. 21., 2009. 4. 1., 2010. 1. 13., 2011. 4. 5., 2021. 9. 24.>

1. “녹색제품”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책무) ① 공공기관의 장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시행, 자료조사,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② 사업자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품질향상 및 녹색제품에 사용되는 원료나 부품에 대한 녹색제품의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③ 국민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녹색제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제목개정 2011. 4. 5.]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구매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2012. 2. 1.>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을 수립·공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행계획을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제목개정 2011. 4. 5.]

- 제9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① 공공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집계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제출한 구매실적이 전년도와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취합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5.]

-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등) 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는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2. 2. 1.>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녹색제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운영
 3.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시·도 또는 시·군·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1. 4. 5.]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안 제3조)
- 나. 지하수관리위원회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9조)
- 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7조)
- 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및 부과액 조정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19조~제25조)
- 마. 과태료 처분의 통지 및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26조~제3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예산법무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혹은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제3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소규모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모터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

는 출수장치,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구청장은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이용목적에 적합하면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이하 "수질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하수 수질측정시설로 지정고시 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조 지하수 관측망으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3. 전시 및 그 밖에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 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제5조(지하수관리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 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청장이 회의

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구의회 의원

2. 구 소속 공무원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전문가

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6. 법 제2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협회의 임·직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 및 구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자로 한다.
-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제6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⑧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에 따라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진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례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관리·운영)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운영한다.

제1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예산업무담당부서 국장
2. 분임징수관: 지하수업무담당부서 과장
3. 재무관: 예산업무담당부서 국장
4. 분임재무관: 지하수업무담당부서 과장
5. 채권관리관: 지하수업무담당부서 과장
6. 채무관리관: 지하수업무담당부서 과장
7. 지출원: 경리담당
8. 수입금출납원: 세외수입 담당

9.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경리업무 담당자

10. 물품출납원: 재산관리담당

② 직무위임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제16조(세입)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7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2. 제4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
3. 그 밖에 구청장 및 위원회에서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

제18조(사무취급 예)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19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구역 지하수 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월별 지하수 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③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④ 구청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할 수도사업소의 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채수량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⑤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 이용량을 알 수 없으면 전년도 같은 월의 지

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으면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고장 난 유량계를 지하수개발·이용자로 하여금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제20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감면) ① 구청장은 공익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 감면율 100퍼센트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 감면율 100퍼센트
3. 그 밖에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감면금액이 연간 1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구 홈페이지 등에 감면자, 감면금액, 감면사유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과오납금의 환급) ① 구청장은 납부의무자가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낸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과오납금액을 지하수이용부담금환급금액으로 결정하고 납부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환급 시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여 환급한다.

제22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전산용2)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할 수도사업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절차 및 징수수료 등은 상호협약에 따른다.

제23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 ①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구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부과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세납부대행기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제24조(가산금) 구청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3퍼센트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25조(부과액 조정 신청)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구청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6조(과태료처분의 통지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처분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는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간으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라 함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기간이 끝난 다음날을 말한다.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내용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44조 별표 7의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부과기준에 따른다. 다만,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무거운 처분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부과한다.

제28조(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의견청취 등) ①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제29조(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①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부과권자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인천지방법원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알려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0조(과태료의 강제징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9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26조제3항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강제 징수한다.

제31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준용규정) 지하수이용부담금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위반행위 조사서

1. 대 상 자

가. 법인(상호)명 :

나. 대 표 자 :

다. 법 인 번 호 :

라. 주민등록번호 :

마. 소 재 지 :

바. 연 락 처 : (전화) (팩스)

2. 위반내용

3. 위반사유(육하원칙에 의거 자세히 기술)

200 년 월 일

진술인 : (인)

[별지 제2호서식]

과태료 처분 통지서

시 행 :

수 신 :

제 목 : 과태료 처분 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하수법」 제○조제○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지하수법」 제○조에 따라 금○○○○○○○○원 (₩○○○○)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첨부 : 과태료납부통지서 1부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인)

[별지 제3호서식]

과태료 납부 독촉장				
납 부 의무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체납액				
위 반 사 항				
과태료체납액	금 원 (₩)	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해당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인)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태료 처분내역	부과기준		납부통지서번호	
	고지받은일자		과태료 금액	
	과태료 처분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지하수법」 제41조에 따른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지서

시 행 :

수 신 :

발 신 :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인)

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지하수법」 제41조와 관련입니다.
2. 「지하수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어 통보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	고지일자	과태료금액	
	이의제기일자	이의제기 사유	

첨 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1부.
2. 담당공무원 의견서 1부.

[별지 제6호서식]

[illegible]

관계 법령 발췌

☐ 지하수법

제3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또는 자치구는 관할구역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 및 먹는물 수질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 5. 22., 2024. 12. 31.>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4. 12. 31.>

1.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보조금
2. 제3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및 가산금
- 2의2.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및 가산금 중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지급된 지하수이용부담금 및 가산금. 다만, 특별자치시의 경우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및 가산금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금을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6. 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

7.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과태료

③ 제14조에 따라 예치된 이행보증금이 현금인 경우에는 특별회계에 예탁한다.

④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개정 2021. 1. 5., 2024. 12. 31.>

1. 제5조에 따른 지하수의 조사 및 이용실태 조사

2.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지하수보전구역의 운영

4. 제15조에 따른 원상복구

5. 제16조의3에 따른 오염지하수의 정화작업

6. 제17조에 따른 보조측정망의 설치·운영

7. 제2항제4호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

8. 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의 상환

9. 제33조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의 보전

10.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관리시책 사업의 추진

11.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관리 및 먹는물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⑤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환경부장관에게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2018. 6. 8.>

[전문개정 2011. 5. 30.]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 및 먹는물 수질관리

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31.>

1.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2.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라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한다)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 등록을 한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경우: 시·도지사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제1항 제1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한정한다)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2020. 12. 8., 2021. 1. 5., 2024. 12. 31.>

1. 제8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3. 「수도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을 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4. 「하천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료가 부과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와 규모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1. 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지하수 취수량, 용도 등을 고려하여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샘물등의 취수량을 기준으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 등록을 한 자에게는 먹는샘물등의 수입량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의 3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가. 「지방공기업법」 제21조에 따른 상수도 원가 및 하수도 원가

나.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다.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라. 다음의 물이용부담금을 평균한 금액

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4)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마. 「환경정책기본법」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환경개선사업 중 상수도 및 수질보전 부문의 세출

④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는 취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計測器)를 설치·관리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31.>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세부적인 산정방법, 부과·징수 방법 및 납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24. 12. 31.>

1. 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
2. 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대통령령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4. 12. 31.>

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이나 제6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5. 22., 2013. 8. 6., 2020. 3. 24., 2024. 12. 31.>

⑧ 시·도지사는 제1항제2호 및 제6항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와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징수한 지하수이용부담금 및 가산금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취수정(取水井)이 위치한 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다), 군 또는 자치구에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31.>

⑨ 제1항에 따라 부과·징수된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제30조의2제4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2024. 12. 31.>

[전문개정 2011. 5. 30.]

제30조의4(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받은 자는 부과된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심의 및 그 결과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12. 31.]

제30조의5(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수유예와 분할납부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기한 전에 지하수이용부담

금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내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어 재산에 상당한 손실이 있는 경우
2.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제1호와 제2호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미리 그 사실을 납부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체납액을 지정한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담보변경 등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정당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재산상황이 좋아지거나 다른 사정의 변화로 그 유예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기간, 분할 납부의 횟수, 신청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검사·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시장·군수·구

청장(제3호의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1. 제7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2.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행위의 허가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4.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5.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6. 제29조의2에 따른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되,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제30조의2에 따른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활용하여 수수료 감면에 따른 수질검사 비용의 차액을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에게 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제1항 각 호의 허가·검사·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2. 제1항제3호의 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먹는물로 사용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5. 30.]

제3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

짓으로 신고한 자

2.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위반하여 굴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

3. 제9조의5제4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수질측정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

6.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중지 또는 수질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21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공사를 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

제4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한 자

2. 제9조제1항(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하수 유출 발생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의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 또는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승계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8.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자

9.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0. 제21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11.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또는 지하수정화업의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2. 제31조제1항에 따른 출입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3.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미리 알리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14.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의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전문개정 2021. 1. 5.]

제40조의2(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의5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질검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제41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제39조·제40조 및 제40조의2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2025년 7월 1일 검단구 출범으로 인해 공중화장실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검단구 주민들의 위생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쾌적한 화장실 문화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적용범위 및 설치·관리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4조)
- 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11조)
- 다. 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4조)
- 라. 이동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6조)
- 마. 유료화장실의 신고 및 준수사항(안 제17조~제18조)
- 바.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 자문 요구 및 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19조~제20조)
- 사. 과태료 부과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안전관리시설”이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장치 및 시설을 말한다.

가. 비상벨(비상 상황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

나. 안심스크린(불법촬영을 막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의 빈 공간을 막는 시설)

다. 안심거울(반사경, 미러시트를 설치해 뒷사람의 얼굴 및 행동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심리를 위축시키도록 한 시설)

라. 그 외 CCTV 등 안전관리에 활용되는 각종 시설물 및 기계장치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중 시·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③ 법 제3조제9호에서 “「항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의 여객이용시설등으로서 시·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한 사용환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및 별표에서 정한 것 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을 준용한다.

6.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기준에 따라 출입문 하단부는 빈 공간으로 두되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는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막아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시설의 설치기준)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4항에서 정한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구청장 및 영 제2조제2호의 기관이 설치한 화장실로 한다. 다만,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공중화장실)인 경우 안전관리시설 중 비상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존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등에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관리시설의 개선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탁관리 등)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 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8조(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공중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9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10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화장실의 개방)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3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른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4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5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9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7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및 별표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 및 이용요금의 적정성 등을 검토 후 불합리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준수사항) 제17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2. 제17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9조(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 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지정 또는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1. 공중화장실 등의 수급계획 수립
2. 공중화장실의 설치 또는 개방화장실의 지정
3. 유료화장실 및 이동화장실 설치에 관한 사항
4. 공중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중화장실 등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위원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구청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 1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제3조(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청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1]

과태료 부과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2 이상일 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에 의한다.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 시, 변동 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다. 위반행위회수는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부 과 금 액		
		1차	2차	3차
1.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제1항 제1호			
가.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50	70	100
나.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30	40	50
2.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21조제1항 제2호			
가. 제11조 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		10	20	30
나. 제11조 제4항 설치·관리기준 위반		20	30	40
3.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1조제1항 제3호			
가. 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		20	40	60
나.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10	20	30
4.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때	법 제21조제1항 제4호	10	20	30
5.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	법 제21조제2항	5	10	20

[별지 제1호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전 경 사 진											
소재지						화장실 명칭					
지역구분				설치 년도	관리책임 공무원		소속				
설치 및 관리주체	설치주체						직급				
	관리주체						성명				
관리인		(전화번호 :)				월평균 이용인원					
규모	부지 (㎡)	화장실 면적(㎡)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사용료	
			남	여	장애인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유료	무료
편의시설 내역	세면 시설	난방 시설	냉방 시설	환풍기	화장지 (자동 판매기)	비누	수건 (에어타 올)	탈취제 (방향제)	청소도구함		기타
									내부	외부	
시설관리 내역	년월일	관리사항	금액 (천원)	년월일	관리사항	금액 (천원)	년월일	관리사항	금액 (천원)		

[별지 제2호서식]

유료화장실 ☐ 설치신고서 ☐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상 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시설현황	소재지				관리주체						
	관리인		(전화번호 :)				설치년도				
	규모		부 지 : m ² , 화장실 면적 : m ²								
시설내역	시설내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의시설		세면기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환풍기	화장지		비누		방향제	
						유	무	유	무	유	무
1회 사용료		원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 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검단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수수료	
										없 음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유 료 화 장 실 신 고 필 증									
대 표 자	상 호(명칭)								
	성 명								
	주 소								
관 리 인			(전화번호 :)						
시 설 내 역	시 설 내 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 의 시 설	세면시설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환 풍 기			
		대		대		대			
1회 사용료		원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인									

관계 법령 발췌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22.>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이동화장실”이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4. “간이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
5. “유료화장실”이란 화장실의 설치·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
- ⑥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는 「하수도법」에 따라 처리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8조(공중화장실의 관리) ①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관리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9조(개방화장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설물 또는 업무의 특성상 보안 또는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일반 공중이 출입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방화장실을 설치한 시설물에는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방화장실의 지정 절차,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10조(이동화장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행사 등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 그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10조의2(간이화장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해변, 하천 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악, 해변, 하천 주변 등에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은 호우나 태풍 등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의 오염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11조(유료화장실) ①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

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12. 22.>

④ 유료화장실의 설치·운영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를 수리(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15일 이내에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유료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⑤ 유료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에 관하여는 제7조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및 제8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2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료화장실의 신고 요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2.>

[전문개정 2011. 5. 30.]

제13조(개선명령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가 제7조·제7조의2의 설치기준이나 제8조의 관리기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명령, 폐쇄명령, 철거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15조(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 ① 공중화장실등의 설치·지정 또는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7. 20.>

1. 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수립

2. 공중화장실의 설치 또는 개방화장실의 지정

3. 유료화장실, 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의 설치에 관한 사항

3의2.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 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1조(과태료)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12. 22.>

1. 제6조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설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4항에 따른 표지 부착 의무를 위반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위반한 자

3. 제13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제14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인천광역시 검단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가축분뇨 수집·운반의 대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가금류”란 닭, 오리, 메추리를 말한다.
4.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
5. “주거밀집지역”이란 가구 간의 거리가 건물의 대지경계 또는 건물 외벽으로부터 반경이 최대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5호 이상의 주택이 밀집된 주거지역을 말한다.
6.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중 최근접 인가(人家)의 부지 경계로부터 축사부지(예정포함) 경계(부지 경계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까지 직선거리로서 2,000m 이내 지역

2. 「수도법」 제7조 규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②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는 누구도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3. 개별법에 따라 설치된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된 계류장, 농·축산물 도매시장
4. 농경용 또는 농가의 부업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5마리 이하의 소·돼지·말·젖소·양·사슴·개
5.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정에서 사육하는 애완용 가축(가금류 제외), 방범용 개
6. 제2조제5호 및 제3조제1항제1호의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축사(예정부지)의 부지경계를 시작점으로 하여 100m 이내에 인가가 있는 경우 인가의 동의를 구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7. 그 밖에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외 지역의 가축 사육자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사를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의 환경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일부 기존 가축 사육지 주변이 뚜렷하게 변화되어 가축사육을 계속 존치하는 것이 인근 주민의 환경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은 가축사육을 금지하도록 하

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하천 등 공공수역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3. 인수공통감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4항에 따라 가축사육의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이전(移轉)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한다.

제4조(제한지역의 변경 및 해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제한지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1. 환경부장관 또는 인천광역시장이 가축사육 제한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2. 구청장이 지정·고시한 구역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가축분뇨 수집·운반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기간 및 청소추정량
2.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수집·운반차량의 용량별, 형식별 대수(흡입식 차량 확보, 탈취시설 등 필요한 장비 등 구비)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가축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가축분뇨 처리의 능률향상과 시민편의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허가요건 구비실태
2. 가축분뇨 수집·운반업무 수행의 적정여부 등에 관한 사항
3.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상태
4. 각종 장부의 기록·보존상태
5.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준수사항 등의 이행여부

② 구청장은 가축분뇨처리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축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하여 인력·장비·기타 설비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처리실적 보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실적 등의 매월 내역과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청소하였는지 여부를 반기 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과태료 부과·징수) 구청장은 법 제5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제26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및 비용 부담 등) ① 공공처리시설설치자는 가축분뇨를 직접 수집·운반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제1항제1호의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운반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축산업자로 하여금 스스로 운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농협조합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농협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⑦ 생략

인천광역시 검단구 분노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분노 수집·운반 및 처리 대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분노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라. 처리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경제정책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분뇨수집·운반업자”란 「하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운반하는 영업을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말한다.

제3조(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대행)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으로 허가를 받은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수집·운반차량에 관한 사항(흡인식 차량 확보, 탈취시설 등 필요한 장비 구비 등)

5. 차고지 및 사무실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대행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분뇨 수집·운반업자가 법 제56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법 제5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2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⑤ 폐업지원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⑥ 폐업지원금의 지급 및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폐업지원금을 지원받아 폐업한 자에게는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지하 2층을 포함한 그 아래의 층수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대행자의 가압펌프를 사용하는 시설에만 별표에 따른 지하층 할증료를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에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수수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재력을 상실한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한 경우

제6조(처리실적 보고) 분뇨수집·운반업자는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한 실적 등 그 달의 내역과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청소하였는지 여부를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과태료 부과·징수) 구청장은 법 제8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산정기준(제4조 관련)

구 분		용 량	요 금	비 고
분 뇨		10리터당	720원	수수료에는 1리터당 1원씩의 처리 요금이 포함되어 있음
개인하수 처리시설	기 본	750리터까지	22,600원	
	추 가	100리터당	2,080원	
	지하층 할증료		8%	

관계 법령 발췌

□ 하수도법

제41조(분뇨처리 의무)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2. 2. 1., 2013. 7. 16., 2020. 5. 26.>

②~ ③ 생략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가 그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2020. 5. 26.>

⑤ 생략

제56조의2(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가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56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체사업의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용자알선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지급 및 용자알선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안 제2조)

나. 점용료등의 감면(안 제3조)

다. 점용료등의 저장(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점용료등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을 따른다.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 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② 토석·모래·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징수)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모래·자갈 등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및 점용료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3조 별표2(점용료등 감면기준)의 제6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점용료등산정기준표(제2조 관련)

구 분	산 정 기 준
1. 공작물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3
2. 토지(소하천 등 부지)의 점용	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다. 광업(골재채취를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다만 소하천 등 구역 내의 토석, 자갈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5항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관로 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마.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5 바.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1.5
3. 소하천부속물의 점용	제1항을 준용한다.
4. 유수의 점용	가. 전기사업용수 연액 m^3/sec 당 200,000원 나. 농업용수 $0.05\text{m}^3 \sim 0.5\text{m}^3/\text{sec}$ 까지 연액 10,000원, $0.5\text{m}^3/\text{sec}$ 증가 시마다 10,000원 가산

구 분	산 정 기 준
5.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가. 전년도 10월 중 2회 조사한 토석·모래·자갈 도매가격의 평균치의 100분의 15 나. 가호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의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 상공회의소 및 한국골재협회 등 2개 기관 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 가호 및 나호의 조사는 2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당해 연도에 적용할 사용료를 구청장이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본 결정금액 이하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6. 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 소하천산출물의 채취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5항,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항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7. 기타의 점용 및 사용	전 각항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 비 고

1.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 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 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
3. 점용면적 등이 1평방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면적 등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2]

점용료등산정기준표(제3조 관련)

감 면 대 상	감 면 율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100퍼센트
2. 소하천등의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등 공사관리를 위한 경우	100퍼센트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100퍼센트
4.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100퍼센트
5. 농지개량조합의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100퍼센트
6. 그 밖에 소하천등의 점용 및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이 정하는 비율

[별표 3]

점용료등 조정산식(제4조 관련)

전년대비 증가율	납부할 점용료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10/100+(증가율-10/100)×3/10}]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13/100+(증가율-20/100)×1/10}]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16/100+(증가율-50/100)×6/100}]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19/100+(증가율-100/100)×3/100}]
200퍼센트이상 500퍼센트미만	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22/100+(증가율-200/100)×1/100}]
500퍼센트 이상	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25/100]

인천광역시 검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나.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4~제5조)
- 다.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라. 폐기물의 배출 및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4조)
- 마. 폐기물 수수료 및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22조)
- 바.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23조)
- 사.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24조)
- 아.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2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절한 처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사업장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가정사업계 폐기물"이란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합성섬유, 폐합성수지, 폐플라스틱제품 등과 같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이 금지되는 폐기물로서 따로 구분하여 소각 등 별도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구류, 가전제품류, 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류 등으로 제18조에 따른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품목을 말하며, "폐소형 전자제품 무상수거 품목"이란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건설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되는 폐기물로 공작물의 제거 및 토목·건축 등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7.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생활폐기물 중 제9조에 따라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3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구청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8. "적환장"이란 공중용쓰레기통 또는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이적과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능률적으로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구역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은 제외한다.

② 이 조례는 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에 적용한다.

③ 구청장은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에서 지역의 주민이 생활폐기물을 적환장 등에 이용·보관하였다가 수거를 요구할 경우에는 배출자에게 그 경비를 실비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현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 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이

적(移積)을 위한 적환장을 설치하거나 설치하게 할 때에는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교통장애 여부, 도시 미관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이 폐기물 발생지처리원칙에 입각하여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국토기본법」에 따른 인천광역시종합 계획과, 같은 법 제4조의 인천광역시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구민의 의무) 구민은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 법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은 제4조제 1항의 해당 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 라 한다)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있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하여 수수료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반입수수료의 금액은 고시로 정하며, 환경부령으로 고시한 수수료를 준용할 수 있다.

제2장 폐기물의 배출 및 수집·운반·처리

제7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행계약의 방법·기준, 대행구역, 대행기간 등
2. 수집·운반·처리의 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처리에 사용되는 시설·장비 및 인력에 관한 사항
4. 차고지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공한지 및 위락지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
6. 수집·운반·처리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7. 대행료 지급과 집행에 관한 사항
8.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대행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수거방법은 문전수거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계약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가정사업계 폐기물은 폐합성섬유, 폐합성수지, 폐플라스틱 등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각 목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폐기물 처리시설의 여건, 수거시간대 및 주민불편초래 등을 고려하여 주간작업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자동상차장치 부착, 수집·운반차량 특수성 및 작업형태를 고려하여 2인

이하의 인원으로 작업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 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20:00부터 24:00까지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고, 자동 집하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투입구에 수시로 배출한다. 다만, 50리터 이상 일반용 봉투와 가정사업계용봉투로 배출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무게 이하로 배출하여야 하며, 폐기물 배출밀도는 0.25킬로그램/리터 이하로 제한한다.

가. 일반용봉투 50리터: 13킬로그램

나. 가정사업계용봉투 60리터: 15킬로그램

2. 가정사업계폐기물은 가정사업계용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한 후 배출일시, 배출장소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3. 대형폐기물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스티커 또는 구 홈페이지 등 전산망(이하 "구 지정 전산망"이라 한다)을 통한 신고필증을 배출자가 부착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단, 구 지정 전산망을 통한 신고 시에는 인증번호의 기재를 통해서도 신고필증의 부착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소형전자제품 무상수거 품목은 구청장이 설치한 지정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을 준용하여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하여 처리할 수 있다.

6. 재활용가능자원은 별표 3의1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종류·성상별로 분리·보관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7. 연탄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시간·배출용기·품목별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 설치 및 분리 보관) ①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종류별·성상별 분리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 등은 해당시설의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수집 보관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용기를 별표 3의2의 기준에 따라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3.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형건물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제11조(생활폐기물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배출자에게 제9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9조의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

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게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자원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청결유지 조치) ①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쓰레기 제거조치
2. 주변환경 원상회복 조치
3. 그 밖에 청결유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

제14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기간 만료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3장 폐기물 수수료 및 쓰레기 종량제 실시

제15조(쓰레기봉투의 종류·규격 및 용도)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 가정사

업계용봉투, 공공용봉투로 구분하고, 일반용봉투는 가연성봉투, 불연성봉투, 재사용종량제봉투로 구분한다.

② 쓰레기봉투의 색상 및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주민요구 또는 쓰레기봉투의 가격 인상 시에는 봉투 또는 봉투인쇄 글씨의 색상을 달리할 수 있다.

1. 일반용 봉투의 용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가연성봉투: 유백색으로 하며 생활쓰레기 중 불에 타는 쓰레기를 담는 봉투

나. 불연성봉투: 엷은 녹색으로 하며 생활쓰레기 중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를 담는 봉투

다. 재사용종량제봉투: 유백색으로 하며 상품을 담는데 사용 후 생활쓰레기 중 불에 타는 쓰레기를 담는 봉투

2. 가정사업계용봉투: 황색으로 하며, 일반용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정사업계 폐기물을 담는 봉투

3. 공공용봉투: 엷은 청색으로 하며 도로변 및 골목길 폐기물을 담는 봉투

③ 쓰레기봉투의 규격별 종류는 별표 4와 같다.

④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선형 저밀도·고밀도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탄산칼슘이나 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퍼센트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생분괴성수지는 생분괴성 봉투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가내수공업등 소량의 폐기물 처리 및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장용 폐기물봉투를 제작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수료는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중간처리·최종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16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의 제작) ①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 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할 때는 봉투 앞면에 별표 5에서 정한 예시에 따라 생분해성수지가 30퍼센트 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 구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구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고,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에는 구의 문장, 스티커금액, 배출요령, 처리 업체 연락처 그 밖의 불편사항 신고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 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5조 및 제2항에 따른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6의1부터 별표 6의5까지로 하고,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의 제작규격은 별표 7과 같다. 단, 자동집하시설에 배출되는 쓰레기봉투는 인식 스티커를 추가 부착하여 제작한다.

⑤ 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등 봉괴성 봉투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쓰레기봉투에 광고 등을 게재하여 수익사업 등을 할 수 있다.

제17조(쓰레기봉투등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봉투, 가정사업계용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이하 이 조에서 "쓰레기봉투등"이라 한다)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봉

투판매자에게 일정량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의 경우 구 지정 전산망을 통하여 구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지불중개사업자에게 대금결제 수수료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봉투판매소에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임을 지역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 8과 같은 지정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쓰레기봉투등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쓰레기봉투등의 공급을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쓰레기봉투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구청장은 환경정비를 위하여 청소의 날 운영 및 가로변 청소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용봉투를 동 행정복지센터와 도로환경미화원에게 공급할 수 있다.

제18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 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스티커 판매가격으로 하며 주민 필요에 따라 직접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폐소형 전자제품 무상수거 품목은 수수료를 면제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구 지정 전산망을 통한 신고필

증의 구입 시에는 수수료를 1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쓰레기봉투가격의 산정기준, 쓰레기봉투가격 및 판매 수수료는 별표 9에 따른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는 판매가격에서 별표 9의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부과하고 징수는 지정판매소에서 판매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19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 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해수욕장,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써 구청장이 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써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등산로·유원지쓰레기통 설치·관리규정을 준용하여 다량의 쓰레기 투입·보관과 운반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적재중량톤 1톤 이상인 기계식상차용 롤온박스 및 컨테이너박스 등의 용기(이하 "대형 쓰레기통"이라 한다)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중용 쓰레기통의 설치 및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기관은 등산로·유원지의 출입구로써 행락객의 접근이 쉽고 차량통행

이 가능한 구역에 대형쓰레기통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외의 구역에는 쓰레기통을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관리기관은 등산로·유원지의 지역적 특성 및 계절별 특성, 쓰레기 발생량을 고려하여 위생적으로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관리기관은 쓰레기통으로부터 쓰레기가 바람에 날리거나 오수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밀폐가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관리기관은 쓰레기통의 용량을 충분히 하여 쓰레기가 흘러넘치지 않도록 하고 적기에 수집·운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반용봉투의 무료 제공 등 제18조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에 따른 재력을 상실한 자
2.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자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제공할 때에는 1인당 30ℓ 이내로 공급하여야 하며, 필요 시 봉투구입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에서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수수료의 감면 기준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를 따른다.

제21조(쓰레기봉투 등의 매수) 봉투판매소 또는 배출자가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의 환불을 요청할 경우 판매자는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지불제도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대금결제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한다. 또한, 구로 전입하는 가구에 한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전입신고 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인증스티커를 받아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2조(쓰레기청결 포상금지급) 구청장은 불법투기 등을 신고하여 피신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을 50퍼센트 이내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피신고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어 관할 법원에 과태료 재판이 신청된 경우 및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꽂초, 휴지 등) 투기를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장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영 제38조의4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고,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장 보칙

제24조(업무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수탁할 수 있는 자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다만,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형 폐기물 수수료(제2조, 제18조 관련)

품목	규격	수수료(원)
가스오븐레인지	1m 미만	2,000
	1m 이상	4,000
가스히터	모든규격	5,000
거울	반신거울(소)(1m 미만)	2,000
	반신거울(대)(1m 이상)	5,000
고무통	대	5,000
골프가방	모든규격	5,000
기타(악기)	모든규격	3,000
난로	석유	4,000
다리미판	모든규격	2,000
다용도 수납장	전자렌지, 쌀통용	4,000
돗자리	모든규격	5,000
	마작대자리(2인이상)	10,000
레인지후드	모든규격	2,000
마네킹	반신용(머리 포함)	3,000
	전신용	5,000
문갑(거실장)	모든규격	6,000
	돌문갑	10,000
	유리(부착)문갑	10,000
문짝	목재	4,000
	철재	5,000
문틀	소(높이 1.6m 미만)	3,000
	대(높이 1.6m 이상)	5,000
물탱크(FRP 제외)	2.5톤 미만	30,000
	2.5톤 이상	50,000
바둑판	소(얇은 판)	1,000
	대(두꺼운 판)	2,000
밥상	다과상	2,000
	소(1.2m 미만), 4인용 미만	3,000
	대(1.2m 이상), 4인용 이상	4,000
방충망	소(창문)	3,000
	대(문)	4,000
변기	모든규격	5,000
병풍	모든규격	5,000
보드	모든규격	3,000
부츠	모든규격	3,000
블라인드	쪽당	5,000
빨래건조대, 행거(옷걸이)	모든규격	3,000
빨래판	모든규격	2,000
사무용칸막이(파티션)	모든규격	5,000
서랍장	5단 미만	6,000
	5단 이상(3단양수 포함)	8,000

품목	규격	수수료(원)
	미용실, 금은방용	10,000
세면대	모든규격	5,000
	유아용	3,000
	소파테이블	3,000
	보조소파(스툴)	5,000
소파	1인용(개당)	5,000
	2인용(개당)	6,000
	3인용(개당)	10,000
	4인용(분리불가)	11,000
	4인용(2인용 두개)	12,000
	카우치	10,000
	3.3kg 이하	3,000
소화기	10kg 이하	5,000
	20kg 이하	7,000
수도호스	10미터 당	1,000
	소(1m이하)	3,000
수족관(어항)	중(1.5m이하)	5,000
	대(1.5m초과)	8,000
스탠드벽시계	모든규격	5,000
스키	모든규격	3,000
	6인용 미만(의자 별도)	6,000
	6인용 이상(의자 별도)	7,000
식탁	식탁(돌, 대리석)	10,000
	아일랜드(나무)	10,000
	아일랜드(대리석)	15,000
	소(높이 1.5m 미만)	3,000
신발장	대(높이 1.5m 이상)	6,000
	자전거(플라스틱)	5,000
실내운동기구	스피닝 자전거(금속류)	10,000
	소(1m 미만)	4,000
싱크대	대(1m 이상)	6,000
	상부장(플랜장,후드)	5,000
실링팬(전등)	모든규격	5,000
	소(길이 50cm 미만)	2,000
아이스박스	중(길이 1m 미만)	3,000
	대(길이 1m 이상)	5,000
	중(가로 1.5m 미만)	8,000
안내카운터(데스크)	대(가로 1.5m 이상)	10,000
안마의자	모든규격	10,000
	소(대각선 0.5m 미만)	2,000
액자	중(대각선 1m 미만)	3,000
	대(대각선 1m 이상)	5,000
	소(기내용)	3,000
여행용가방	대(화물용)	5,000
오르간	모든규격	6,000
옥돌자석매트	모든규격	11,000

품목	규격	수수료(원)
온수매트	1인용	9,000
	2인용	10,000
욕조	모든규격	10,000
우산	모든규격	1,000
유리(쪽당)	식탁 및 책상유리	3,000
	대(120cm이상)	5,000
	강화유리(샤워부스 칸막이 등)	10,000
유모차,보행기	모든규격	3,000
유아용 전동차	모든규격	5,000
유아용 카시트	모든규격	4,000
의자	모든규격	4,000
자전거	자전거(유아용)	3,000
	자전거(어린이)	4,000
	자전거(일반)	5,000
장롱(1쪽당)	프레임(틀)	5,000
	너비 90cm 미만	8,000
	너비 90cm 이상 ~ 120cm 미만	10,000
	너비 120cm 이상	11,000
장식장,진열장	소(길이 60cm 미만)	4,000
	중(길이 90cm 미만)	6,000
	대(길이 90cm 이상)	8,000
장판	5m 미만	4,000
	5m 이상	5,000
재봉틀	소	3,000
	대	5,000
전기장판	모든규격	6,000
창문	모든규격	3,000
책상	상판	3,000
	편수(외서랍, 무서랍)	6,000
	양수(양서랍)	7,000
	h형책상(상판,책장,서랍 포함)	10,000
	사무용	10,000
책장(책꽂이)	3단미만	5,000
	3단이상	6,000
천막	가정용	6,000
침대(매트리스)	유아용 침대	3,000
	1인용	8,000
	2인용	9,000
침대매트판	플라스틱1개당	2,000
	나무1개당	5,000
침대머리	모든규격	3,000
침대틀	1인용	3,000
	2인용(권사이즈 포함)	4,000
	유아용 침대	5,000
	2층침대틀	10,000
	돌침대(돌포함)	12,000

품목	규격	수수료(원)
	모텔용	12,000
카펫	소(길이1.5m 미만)	5,000
	중(길이2.5m 미만)	7,000
	대(길이2.5m 이상)	12,000
칼라박스	모든규격	2,000
캐비닛	모든규격	5,000
고양이 타워	소(높이 1.5m 미만)	5,000
	대(높이 1.5m 이상)	10,000
타이어	600mm 이상	5,000
	1,100mm 이상	12,000
탁구대	모든규격	15,000
탁자	10인용 미만	5,000
	10인용 이상	9,000
테니스라켓	개당	1,000
텐트	가정용	2,000
팔레트(나무)	모든규격	5,000
폴더매트	3.3㎡(1평)당	8,000
피아노	전자피아노 소형	6,000
	일반(업라이트), 전자피아노	11,000
	대형(그랜드)	12,000
항아리(화분)	소(40cm 미만)	3,000
	중(70cm 미만)	4,000
	대(70cm 이상)	5,000
협탁(서랍없는)	모든규격	2,000
화장대	가정용	6,000
	업소용	10,000
화환		3,000
환풍기	가정용	2,000
	업소용	3,000
휠체어	모든규격	2,000

※ 상기 이외의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하며,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길이는 긴 면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2]

폐소형전자제품 무상수거 품목(제2조 관련)

연번	품 명	규 격	연번	품 명	규 격
1	가 습 기	모든 규격	17	전 화 기	모든 규격
2	오디오셋트	높이 1m미만	18	전기밥솥	모든 규격
3	카세트라디오	모든 규격	19	보온밥통(솥)	모든 규격
4	다 리 미	모든 규격	20	녹즙(믹서)기	모든 규격
5	선 풍 기	모든 규격	21	토스터기	모든 규격
6	탈 수 기	모든 규격	22	<삭 제>	<삭 제>
7	공기청정기	높이 1m미만	23	컴퓨터 (본체, 모니터, 키보드)	모든 규격
8	청 소 기	모든 규격	24	컴퓨터오락기	모든 규격
9	정 수 기	높이 1m미만	25	노트북컴퓨터	모든 규격
10	전자렌지	모든 규격	26	모 템	모든 규격
11	<u>전기오븐렌지</u>	높이 1m미만	27	TM 캐 너	모든 규격
12	헤어드라이기	모든 규격	28	프린터기	모든 규격
13	에어컨실외기	모든 규격	29	복 합 기	모든 규격
14	<삭 제>	<삭 제>	30	팩시밀리	모든 규격
15	전기히터	모든 규격	31	시계 (전기 및 건전지 사용)	모든 규격
16	VTR/DVD	모든 규격			

[별표 3-1]

분리수거 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제9조 관련)

1. 재활용가능자원 품목별 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가. 골판지류	• 골판지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알루미늄 박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나. 골판지 외 종이류	• 종이팩(살균팩, 멸균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주스팩 등
	•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 책자, 노트, 전단지 등	-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 데 묶어서 배출
	• 기타 종이류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다. 유리병	• 음료수병, 기타 병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꽂초 등 이물질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
라. 금속캔	• 음료·주류캔, 식료품캔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꽂초 등 이물질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 알루미늄 호일은 종량제봉투에 배출
	• 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마.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PET)병	탈라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 다른 유색 플라스틱류와 혼합되지 않게 전용수거함에 배출
바. 합성수지 용기 · 트레이류	·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행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착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 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사. 합성수지 비닐류	· 비닐포장재, 1회용비닐 봉투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 제거하여 배출 - 흘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cm ²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ml 또는 30g 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돛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아. 발포 합성수지	· 스티로폼 완충재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 해당품목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자. 의류 및 원단류	• 면의류 • 기타 의류	-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 - 물기에 젖지 않도록 배출
	• 식물성 섬유(면, 마 등) •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아우레탄 등) • 기타 합성섬유류	
차. 전지류	•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알칼리 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 전지(충전식 포함)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지와 제품이 일체형인 경우 제품 그대로 배출 - 전지가 부풀어 올랐거나 흠집이 났을 경우, (비닐)랩으로 감아 더 이상 외부에서 산소나 수분이 침투되지 않도록 배출 - 전선(회로) 등이 부착되어 있을 경우, 절연테이프 등을 단자에 붙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행정복지센터, 주요 거점에 비치된 전용수거함에 배출
카. 형광등	•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 형광등 분리배출 전용수거함에 배출

2. 재활용가능자원 통합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구 분	품목	세부종류	통합 배출 요령
통합 전용 용기에 투입	종이팩	· 종이팩	- 내용물은 비우고 가급적 물로 행군 후 압착하여 배출
	금속캔	· 철캔, 알미늄캔	-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한 후 플라스틱 뚜껑 등은 분리하여 배출
		· 기타캔류(부탄가스 등)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합성 수지류	· PVC, PE, PP, PS, PSP 재질의 용기, 포장재 등	- 음식물이 묻어 있지 않도록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이나 부착상표 등을 분리 후 배출
		· 기타 플라스틱류	- 이물질질을 제거한 후 배출
따로 배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유리병	· 음료수병, 기타병류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종이류	· 책, 신문지, 상자 등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배출량이 많고 부피가 큰 것은 묶어서 배출 - 골판지상자는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등을 제거하고 압착 후 끈으로 묶는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합성 수지류	· 스티로폼 완충재	- 내용물을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음식물이 묻어 있지 않도록 깨끗이 씻어서 배출
	전지류	· 수은, 망간전지	- 제품에서 분리한 후 인근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전자제품	· 소형가전	- 이물질질을 제거한 후 배출
	형광등	· 형광등	- 인근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비고 1. 전자제품 중 부피가 작은 것은 통합 전용 용기에 배출

2. 유리병은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 분리배출이 가능한 경우 구분하여 배출하거나 별도의 유리병 전용 봉투에 배출
3.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 등에 담아 다른 플라스틱, 유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배출

3. 기타 재활용가능자원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가. 고철류	· 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비철금속(알루미늄, 스텐류 등)	
나. 영농 폐기물류	· 농약용기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 농촌폐비닐	-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다. 소형 가전제품	· 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 등 「쓰레기수거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대형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에 배출 ※ 스탠드는 몸체에서 형광등을 분리하여 배출 ※ 제품에 내장된 전지는 분리하여 배출
라. 전자제품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자동판매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전기정수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믹서,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 이동전화단말기	-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 시 무상으로 역회수 또는 폐전자제품 무상 방문 수거를 통한 회수 -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수거 체계에 따라 배출 ※ 휴대폰은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 시에 해당 대리점을 통하여 배출하거나, 소형가전제품 분리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
마. 타이어	· 소형, 중형, 대형	-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바. 윤활유	· 윤활유(윤활유 용기 포함)	-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비고 1. 혼합재질로 구성된 품목은 최대한 재질별로 분리하여 배출

[별표 3-2]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기준(제10조 관련)**1. 일반쓰레기(종량제봉투) 보관용기**

가. 요구 규격 : 인력 수거가 가능한 범위 내 크기 제한 없음.

나. 구 조 :

(1) 용기 바닥에는 이동 및 고정 가능한 바퀴를 부착할 것.

(2) 빗물 투입과 악취발산 방지를 위한 뚜껑을 부착할 것.

※ 단, 시설물의 규모와 배출량을 감안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재활용가능자원 보관시설 설치기준

가. 요구 규격

- 크 기 : 인력 수거가 가능한 범위 내 크기 제한 없음.

- 품 목 : 종이류(박스류 별도), 병/고철/캔류, 플라스틱류, 무색PET병, 비닐류 등
최소 5개 품목 이상 수거함을 말한다.

- 기 타 : 종이류, 박스류 수거함 빗물 투입 방지 구조

※ 분리수거함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가급적 품목별 그림 또는 모형 등을 용기에
표시하고, 수거 용기 또는 설치장소에 품목별 분리배출 요령 안내 부착

※ 단, 별도 보관장소를 갖추어 내용물을 수시 수거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할 경우
세대수와 무관하게, 각 품목별 하나의 수거함을 한 세트로 묶어 설치할 수 있다.

3. 음식물류폐기물 보관시설 설치기준

가. 요구규격

- 개별수거용기: 2리터, 3리터, 5리터

- 공동수거용기: 60리터, 120리터

- 무선주파수인식(RFID)방식 종량제 기기

나. 구 조

(1) 자동 상차가 가능한 구조일 것.

(2) 공동수거용기 바닥에는 이동이 가능한 바퀴를 부착할 것.

(3) 빗물 투입과 악취발산 방지를 위한 뚜껑을 부착할 것.

2. 보관시설 설치 시 유의사항

- 가.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수거함)은 해당 건물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전량 보관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하며, 폐기물 수거 차량 출입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시설 규모 및 폐기물의 발생 형태 등을 고려하여 분리·보관이 쉬운 위치에 적정 규모의 분리·보관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 다. 부식 및 파손이 잘 되지 않는 금속 재질 또는 내구성 및 내열성이 강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합성수지 재질(FRP 제외)

[별표 4]

쓰레기봉투의 규격별 종류(제15조 관련)

봉투용량(ℓ)	봉투규격(cm) (가로×세로)	종 류
5	26×46.5	일반용봉투(가연성)
	32×41.5	일반용봉투(재사용종량제)
10	33×56.5	일반용봉투(가연성, 불연성)
	36×53.5	일반용봉투(재사용종량제)
20	42×69.5	일반용봉투(가연성, 불연성)
	45×65.3	일반용봉투(재사용종량제)
30	48×78.5	가정사업계용봉투
50	56×91.5	일반용봉투(가연성, 불연성)
		공공용봉투
60	50×97	가정사업계용봉투
75	65×103.5	공공용봉투

※ 비고 : 1. 실제 사용할 쓰레기봉투 제작 시에는 봉투 상단에 봉투 용량에 포함되지 않는 여분을 두어 쓰레기를 담은 후 묶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여분의 길이는 다음 식에 의해 산정하되, 소수 첫째 자리에 반올림한다.

$$\text{여분의 길이(cm)} = \text{가로길이(cm)} / \pi + 5\text{cm}$$

[별표 5]

생분해성수지 함량표시(예)(제16조제2항 관련)

폴리에틸렌(PE)	전 분	지방족폴리에스테르
65%	15±2%	20±2%

[별표 6-1]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제16조제4항 관련)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구의 문장

쓰레기봉투(ℓ)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 배출 시 무게기준 : ○○ℓ, ○○kg 이하로 배출
(무게기준은 50ℓ에만 표기)

1. 이 봉투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중 폐종이류, 나무조각류, 상품포장재 등 가연성(불에 타는)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이 봉투에 불연성(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를 혼합하여 배출할 경우 또는 무게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할 경우(50ℓ:13kg 이하)에는 수거하지 않으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쓰레기는 지정된 배출시간(20:00~24:00)에 배출하시고, 자동집하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투입구에 배출하십시오.
4. 침대, 장롱 등 대형폐기물은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를, 매립 등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운 생활쓰레기는 가정사업계용봉투를 별도로 구입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5. 청결한 가로환경조성 등 자원순환서비스현장 실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문의처: 검단구청 담당부서명(☎ ○○○-○○○○)

	표시사항(품질표시)
 인증마크 인증번호	품 목 : 인증기관 : 인증번호 : 종류/용도 : 용 량 : L 치 수 : (두께*너비*높이) 제 조 자 : 업체명(주소 및 연락처) (공 급 자)

[별표 6-2]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제16조제4항 관련)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구의 문장

쓰레기봉투(ℓ)

-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용 -

※ 배출 시 무게기준 : ○○ℓ, ○○kg 이하로 배출

(무게기준은 50ℓ에만 표기)

1.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중 패각류, 폐전구, 깨진 그릇 등 불연성(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는 이 봉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불연성 쓰레기를 버릴 경우 또는 무게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할 경우(50ℓ:13kg 이하)에는 수거하지 않으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3. 쓰레기는 지정된 배출시간(20:00~24:00)에 배출하십시오.
4. 침대, 장롱 등 대형폐기물은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를, 매립 등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운 생활쓰레기는 가정사업계용봉투를 별도로 구입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5. 청결한 가로환경조성 등 자원순환서비스현장 실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문의처: 검단구청 담당부서명(☎ ○○○-○○○○)

	표시사항(품질표시)
 인증마크 인증번호	품 목 :
	인증기관 :
	인증번호 :
	종류/용도 :
	용 량 : L
	치 수 : (두께*너비*높이)
	제 조 자 : 업체명(주소 및 연락처) (공 급 자)

[별표 6-3]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제16조제4항 관련)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구의 문장

쓰레기봉투(ℓ)

- 가정사업계용 -

※ 배출 시 무게기준 : 60ℓ, 15kg 이하로 배출
(무게기준은 60ℓ에만 표기)

1. 이 봉투는 O O O 또는 O O O에 신고하면 수거합니다.
2. 처리대상 쓰레기(가정에서 발생된 사업계 쓰레기 중 가연성쓰레기): 고무, 가죽류, 섬유류, 폐도배지, 보온재, 폐목재 등
3. 상기 쓰레기를 이 봉투에 버리지 않는 경우 또는 무게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할 경우(60ℓ:15kg 이하)에는 수거하지 않으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청결한 가로환경조성 등 자원순환서비스현장 실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문의처: 검단구청 담당부서명(☎ ○○○-○○○○)

인증마크 인증번호	표시사항(품질표시) 품 목 : 인증기관 : 인증번호 : 종류/용도 : 용 량 : L 치 수 : (두께*너비*높이) 제 조 자 : 업체명(주소 및 연락처) (공 급 자)

[별표 6-4]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제16조제4항 관련)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 재사용 종량제봉투(ℓ) -

1. 상품을 담는데 사용 후 종량제봉투(불에 타는 쓰레기용)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2. 청결한 가로환경조성 등 자원순환서비스현장 실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문의처: 검단구청 담당부서명(☎ ○○○-○○○○)

인증마크 인증번호	표시사항(품질표시) 품 목 : 인증기관 : 인증번호 : 종류/용도 : 용 량 : L 치 수 : (두께*너비*높이) 제 조 자 : 업체명(주소 및 연락처) (공 급 자)

[별표 6-5]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제16조제4항 관련)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구의 문장

공공용 쓰레기봉투(ℓ)

1. 이 봉투는 도로변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자원순환서비스헌장 실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문의처: 검단구청 담당부서명(☎ ○○○-○○○○)

	표시사항(품질표시)
 인증마크 인증번호	품 목 : 인증기관 : 인증번호 : 종류/용도 : 용 량 : L 치 수 : (두께*너비*높이) 제 조 자 : 업체명(주소 및 연락처) (공 급 자)

[별표 7]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모형(제16조제4항 관련)

4cm	구 문 장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배출자보관용)
	바코드인쇄	(₩ 원권)
9.3cm	절 취 선	
	(₩ 원권) (부 착 용)	
9.3cm	■ 대형폐기물 배출요령 ○ 본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는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출 전에 반드시 처리업체에 배출위치, 배출장소, 수거일시 등을 약속한 후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폐기물 처리 ○ 수거일시: 동별 수거일정 표기 ○ 처리업체: 업 체 명 (☎ -) ※ 본 부착용 스티커는 훼손되거나 미부착 시 수거되지 않습니다. 바코드인쇄 기타 문의사항: 각 동행정복지센터 및 검단구청 담당부서명 (☎ -)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절 취 선	
4.7cm	구 문 장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처리업체보관용)
	바코드인쇄	(₩ 원권)
4.7cm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10cm	

※ 종류는 1,000원권, 3,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 4종으로 1,000원권은 파랑색 바탕에 흰글씨, 3,000원권은 초록색 바탕에 흰글씨, 5,000원권은 주황색 바탕에 흰글씨, 10,000원권은 붉은색 바탕에 흰글씨로 한다.

[별표 8]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시(제17조제2항 관련)**쓰레기봉투 판매소**

- 주: 1. 글씨위치는 표시의 하단 접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0분의 1만큼 띄어서 중심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고딕으로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 137), 녹색(DIC: 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 579), 녹색(DIC: 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별표 9]

일반용봉투가격의 산정기준(제18조 관련)

$$\text{봉투가격} = \underbrace{\{\text{봉투단가}(\ell\text{당}) \times \text{봉투규격}(\ell\text{당}) + \text{봉투제작비}\}}_{\text{①} \quad \text{③} \quad \text{⑤}} \times \underbrace{\text{수수료자립도}(0.45\sim 1)}_{\text{②}} + \underbrace{\text{판매수수료}}_{\text{④}}$$

[주]

㉠

㉡

㉢

① 봉투단가(ℓ당) = 수집·운반·처리비(원) ÷ 연간처리량(톤) ÷ 부피환산계수(2.500)

㉠ 수집·운반·처리비(원) = 전년도 1월~10월 비용 + 11월~12월 예상비용

· 기준년도 : 봉투가격 적용년도(T)의 전년도(T-1)

· 수집·운반·처리비 내역 : 수집·운반·처리대행료 또는 직영비, 매립지 반입료, 적환장, 재활용선별
창고등 각종 대행료, 봉투제작비 등

㉡ 연간 처리량 :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 매립지 반입량 : 사업장폐기물, 대형폐기물은 제외

㉢ 부피환산 계수 : 무게단위(톤)를 부피단위(ℓ)로 환산하기 위한 산식

※ 근거 : 환경부 폐정67501-696(94. 9. 8)호 쓰레기종량제시행지침
(93쪽의 폐기물학회보고서 93. 1)

② 수수료 자립도(0.45~1)

④ 판매수수료 = {(ℓ당 처리비용×봉투용량(ℓ)+봉투제작비)×주민부담률}×판매수수료 요율÷(1- 판매수수료 요율)}

⑤ 봉투제작비 = 폐기물봉투 용량별 제작단가

※ 판매수수료, 봉투제작비의 소숫점 단위는 원단위로 최종판매가격의 원단위는 10원단위로 반올림 한다.

가정사업계용 봉투가격의 산정기준(제18조 관련)

$$\text{봉투가격} = \text{처리단가/kg} \times \text{봉투규격} \times 0.6 + \text{봉투제작비}$$

[주]

① 처리단가

○ 정부고시단가 : 225원/kg (발열량3,000kcal ~ 5,000kcal)

② 봉투규격 : 가로 × (세로+묶는 부분) × 두께

③ 통상 무단투기된 가정사업계폐기물 처리 시 처리금액의 60% 수준으로 정함

④ 봉투제작비는 쓰레기봉투 용량별 제작단가를 말함

쓰레기봉투 및 스티커 판매가격(제18조 관련)

구분		규격	판매가격		
			계	판매수수료	판매소 납품가격
봉투	일반용봉투 (가연성, 불연성)	5 ℓ	160원	12원	148원
		10 ℓ	310원	25원	285원
		20 ℓ	620원	49원	571원
		50 ℓ	1,540원	123원	1,417원
	일반용봉투 (재사용종량제)	5 ℓ	160원	12원	148원
		10 ℓ	310원	25원	285원
		20 ℓ	620원	49원	571원
	가정사업계용 봉투	30 ℓ	1,870원	150원	1,720원
		60 ℓ	3,710원	290원	3,420원
스티커	대형폐기물처리용 스티커	1000원권	1,000원	79원	921원
		3000원권	3,000원	237원	2,763원
		5000원권	5,000원	395원	4,605원
		10000원권	10,000원	790원	9,210원

관계 법령 발췌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유통·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

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따른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가. 「형법」 제133조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347조 및

제356조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벌금형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에 한정한다.)

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이하 이 조에서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에서

는 분리·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6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1. ... 생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2의4. ... 생략 ...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2.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4.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례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 14. ... 생략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4(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8과

같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청소차량에 다음 각 목의 장치를 모두 설치·운영할 것
 - 가.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 나.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 다. 청소차량 배출가스가 환경미화원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수직형의 배출가스 배기관[청소차량이 내연기관이면서 압축 또는 압착식 진개(塵芥) 차량이거나 재활용품 전용 저압축형 차량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것
3.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나.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다. 폭염·강추위, 폭우·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인천광역시 검단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관한 사항(안 제4조~제10조)
- 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7조)
- 라.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안 제18조~제2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규정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 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관련부서 또는 기관의 공무원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

치를 통해 지역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기관 및 업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평가대상 기관이 되며, 평가대상 기관이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가 평가대상 업무에 해당된다.

제6조(평가지침)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사전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용역계약 체결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기관에 평가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지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 ① 구청장은 계약이 체결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기관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의 실시) ①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평가대상 기관은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요청 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기관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관련 조사의 현장평가단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② 주민만족도 조사에 있어 조사방법 및 조사원의 구성은 평가지침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현장평가 및 주민만족도 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대행업체 평가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인센티브, 영업구역 축소·조정, 계약참여 배제 등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업체 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등

제12조(구성)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환경국장과 환

경업무 부서장은 당연직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청소·환경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자 3명 이내
2. 청소·환경 관련 시민단체 3명 이내
3. 그 밖에 사회적 덕망이 있는 지역주민 2명 이내

③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와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자원순환팀장으로 한다.

제16조(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대행업체 대표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대행업체 대표는 특별한 사

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구청장은 제6조에서 제10조까지의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된 결과를 생활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에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기관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 ⑦ ... 생략 ...

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2014. 1. 21., 2015. 1. 20., 2020. 5. 26.>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따른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 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야 한다.

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가. 「형법」 제133조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347조 및 제356조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벌금형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에 한정한다.)

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및 납부방법(제3조)
- 나. 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제4조, 제5조)
- 다.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제6조,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 방법 및 납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인천광역시 검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설치납부금액”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조제5항에 따른 설치납부금액을 말한다.
3. “택지등”이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택지등을 말한다.

제3조(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및 납부방법) ① 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및 납부방법은 영 제4조를 따른다.

-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납부금액을 내는 자는 영 제

4조제7항에 따라 설치납부금액을 1년 범위에서 4회까지 나누어 낼 수 있다.

제4조(특별회계의 설치) 영 제4조제10항에 따라 설치납부금액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검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납부금액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4.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제7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2. 영 제4조제8항 및 영 제4조제9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제8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그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5. 17., 2009. 6. 9., 2010. 1. 13., 2010. 7. 23., 2015. 1. 20., 2017. 1. 17.>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5의2.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란 의료폐기물로 인한 감염 등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의료폐기물을 넣어 수집·운반 또는 보관에 사용하는 용기를 말한다.

- 5의3.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6.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중화(中和)·파쇄(破碎)·고형화(固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 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9. “폐기물감량화시설”이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宅地)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생활환경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15. 2. 3., 2020. 6.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특성상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같은 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신설 2020. 6. 9.>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금액을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20. 6. 9.>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3. 8. 13., 2020. 6. 9.>

⑤ 제2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07. 12. 27.]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宅地)”란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0. 12. 8.>

② 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 12. 8.>

③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 12. 8.>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과 접하는 곳에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 또는 준주택(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이라 한다)이 있거나(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주택등을 건축하기 위한 허가나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 중(완료된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로서 주택등이 건축될 예정인 경우
2.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20호(戶) 이상의 주택등이 있거나(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0호 이상의 주택등을 건축하기 위한 허가나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 중(완료된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로서 주택등이 건축될 예정인 경우

④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12. 8., 2023. 12. 19.>

1.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관할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2.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경우
 3.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또는 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에 해당 폐기물을 처리할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이 포함된 경우
 4. 그 밖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택지등에서 발생할 폐기물의 예상량, 주변 폐기물처리시설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⑤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택지등을 개발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내야 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설치납부금액”이라 한다)의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12. 8.>
- ⑥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납부금액을 내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12. 8.>
- ⑦ 제6항에 따른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설치납부금액과 납부기

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납부금액을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8.>

⑧ 제5항에 따른 설치납부금액을 납부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관할 지역에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설치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2. 3. 30., 2014. 2. 11., 2020. 12. 8.>

⑨ 제5항에 따른 설치납부금액을 납부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역에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설치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3. 30., 2014. 2. 11., 2020. 12. 8.>

⑩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2. 3. 30., 2014. 2. 11., 2020. 12. 8.>

[전문개정 2009. 6. 16.]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

제9조의2(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9.]

인천광역시 검단구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 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볍게 걷거나 달리면서 쓰레기를 담은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깨끗한 환경조성과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쓰담달리기”라 함은 외국어 ‘플로깅’을 대체하는 우리말로써, 가볍게 걷거나 뛰는 산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말한다.
2. “쓰담달리기 참여자”라 함은 쓰담달리기 활동에 참여하는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개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쓰담달리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쓰담달리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쓰담달리기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쓰담달리기의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쓰담달리기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효율적인 운영방법
4. 그 밖에 쓰담달리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쓰담달리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 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쓰담달리기 참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쓰담달리기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쓰담달리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쓰담달리기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쓰담달리기 참여자에 대해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자연환경보전법

제5조(자연보호운동)

정부는 모든 국민이 자연보호운동에 참여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단체 등을 지원하고 지역별로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보호운동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다.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인천광역시 검단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인천광역시의 시책에 따른 관할 구역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확보 계획 및 분리보관용기의 보급 설치
3. 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① 구청장은 재활용 가능자원의 효율적 수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품목을 중점수집 대상품목으로 정한다.

1. 종이류
2. 병 류
3. 캔 류(주석·알루미늄 구분)

4. 금속류

5. 플라스틱류

6. 그 밖에 시장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품목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일정 및 방법 등 회수체계를 지역실정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제4조(순환자원 회수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 활성화를 위해 재활용품 거점 수거센터인 순환자원 회수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순환자원 회수센터 운영에 있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구민, 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들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1. 재활용가능자원 품목별 무게 측정 및 관리
2. 재활용가능자원 수거대장 관리
3. 주민참여 홍보 등 관련 업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5년마다 관할지역에 대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 제출 및 승인·변경승인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 및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

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자등
2. 제10조에 따른 사업자
3.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4. 제12조의3에 따른 폐기물배출자
5. 제15조의2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5의2. 제15조의6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6.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7. 제1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8. 제23조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
9. 제25조에 따른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10. 제25조의3에 따른 에너지회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11. 제25조의4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
12. 제25조의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자
13. 제27조에 따른 조합
14. 제28조의2에 따른 유통지원센터

인천광역시 검단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1조~안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저감계획의 수립·시행 및 사용 저감에 관한 사항(안 제4조~안 제5조)
- 라. 자발적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마. 환경우수업소 지정·해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안 제8조)
- 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사.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아.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자.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연간 137백만원 반영 예상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공기관의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1회용품 저감 정책에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교육·홍보·지원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의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로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인천광역시 검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 나.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 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공단
 -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 마.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하며 경제적 유인을 제공·지원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환경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5조(1회용품 사용 저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2.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3.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4.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의 저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 및 재난상황 등 피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다회용품 지원 등에 대한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저감계획에 맞게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환경우수업소 지정 및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

② 제1항의 우수업소 중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지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제8조(우수업소 지원) 구청장은 우수업소를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저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 홍보 및 지원)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1회용품 사용 업소에 다회용품 무상대여 사업

4. 무상대여한 다회용품 회수 및 세척에 관한 사업

5. 다회용품 이용자에 대한 보상 마일리지, 캐시백 등 제공

6.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 가능 자원 등으로 만든 장바구니 등을 제작하여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 등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과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7. 23., 2011. 4. 28., 2014. 1. 21., 2023. 3. 28.>

1. ~ 14. ... 생략 ...

15.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6. ~ 17. ... 생략 ...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23.3.28>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업·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객실이 50실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목욕장업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6. 그 밖에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2023.3.28>

1.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상거래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때에는 고객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3.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8.13>

인천광역시 검단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라.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9조)
- 마. 국내외 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지역사회 내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 보급을 안착하게 이바지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이스팩”이란 비닐봉지 등의 포장재에 물, 고흡수성 수지(SAP, Super absorbent polymer)등의 충전물을 넣은 팩 형태의 보냉재를 말한다.
2.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3. “재사용”이란 재활용 가능 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 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생이용”이란 재활용 가능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이란 재활용 또는 생분해되는 포장재와 충전물을 사용한 보냉재를 말한다.
6. “그린뉴딜”이란 통상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

을 뜻하며, 이는 기존 경제·산업 시스템에 대한 대변혁으로, 저탄소 경제 구조로 전환하면서 기후 위기와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 정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3조(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기본원칙)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그린뉴딜 구현을 목적으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미세 플라스틱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2. 아이스팩 배출 저감을 통해 궁극적으로 인천광역시 검단구가 친환경 자원 순환형 경제·사회 구조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재사용·재생이용 활성화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아이스팩 배출 저감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재사용·재생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시책(이하 “활성화 시책”이라 한다)의 수립·시행을 전담하는 조직을 운영하도록 노력하며 해당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제5조(주민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아이스팩의 사용이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

며, 구가 시행하는 활성화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제6조(활성화 시책의 수립 등) 활성화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활성화 시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활성화 시책의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
3. 주민 의식 증진 관련 교육·홍보 및 주민참여방안
4. 활성화 시책에 필요한 예산 산정 및 재원 조달계획
5. 그 밖에 활성화 시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활성화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관내 아이스팩 배출 및 수거·재활용·재사용·재생이용 등의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와 연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와 연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업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활성화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 일자리 창출, 현물 보상 등
2. 아이스팩 수거·재활용·재사용·재생이용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단체나 개인 등의 발굴·육성·지원 등
3.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을 생산 및 판매, 보급하는 법인·단체나 개인 등의 발굴·육성·지원 등
4. 구와 구 산하 공공기관,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그린뉴딜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5. 그 밖에 활성화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국내외 기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범지구적 이슈로 다뤄지는 아이스팩 배출 저감을 위하여 국내외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교류 및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을 선정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17. 11. 28.>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廢熱)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부산물”이란 제품의 제조·가공·수리·판매나 에너지의 공급 또는 토목·건축공사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건을 말한다.

4. “지정부산물”이란 부산물 중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특히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을 말한다.

5.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6.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재생이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原料)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7의2. “재생원료”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생이용한 원료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에너지회수”란 재활용가능자원에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기준(이하 “에너지회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에너지를 회수(回收)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물질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한다.
- 8의2. “폐자원에너지”란 고형연료제품, 폐기물합성가스 등 폐기물로부터 회수된 에너지 또는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도록 전환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재활용제품”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10. “재활용시설”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는 데에 사용되는 장치·장비·설비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재활용산업”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거나 재활용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業種)을 말한다.
12.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13. “대형폐기물”이란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가전제품 등 개별적으로 계량(計量)을 할 수 있고 품명(品名)을 알아볼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14. “포장재”란 제품의 수송, 보관, 취급, 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나 용기 등을 말한다.
15.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6. “생분해성수지제품”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環境標識) 인증을 받았거나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맞는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17. “재질·구조개선 대상제품”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되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에 특히 필요하고,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구조나 재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조례의 적용 범위 및 기본 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다.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 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배출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 마.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바.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물품 및 보관시설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2조)
- 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아.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자.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7조)
- 차.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에 관한 조치 사항(안 제1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교육과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 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사업장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휴게음식점 중 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과 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

로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을 포함한다)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7.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행하여 판매하는 증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이나 단체 등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⑥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감량의무이행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여야 하며,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전용봉투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 할 수 있다.

②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수수료는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 판매가격, 부피(무게)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 및 충전카드 인출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무게에 의한 경우 킬로그램당 70원, 부피에 의한 경우 리터당 60원으로 하고, 용량별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 2과 같다.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⑥ 수수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및 전용봉투의 종류·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쉽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단,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쉬운 색상으로 하며, 김장철 등 일시적 다량 배출시기에 사용하는 전용봉투를 구분하여 제작·보급토록 하고, 무단투기 및 일시적 음식물 발생에 대비하여 「공공용 음식물봉투(분홍색)」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 효율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 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 무선주파수인식(RFID)방식 종량제 기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다세대주택 등 5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의 일정지역 단위 소규모 공동주택 거주자가 공동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주체를 정하여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구청장에게 그 뜻을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청결 위생관리를 위하여 위탁세척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세척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세척비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생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을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방법 등)

- 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 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 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음식물류폐

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계약서 사본(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발생억제방안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경우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구청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재활용가능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9조제1항 관련)

1. 재활용가능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가. 식품 쓰레기

나. 조리 전, 후의 음식물찌꺼기

2. 음식물류 폐기물로 배출해서는 안 되는 것

구 분	품 목
채소류	- 쪽파, 대파, 미나리 등의 리 - 고추씨, 고추대 - 양파, 마늘, 생강, 옥수수 등의 껍질, 옥수수대
과일류 및 견과류	- 복 아, 구, 감 등 과류의 씨 - 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질 - 호두, 밤, 땅콩, 도토리 등의 딱딱한 껍데기
어패류	- 조개, 소라, 전복, 막, 등 패류의 껍데기 - 게, 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멍게 껍데기 - 생선뼈
곡류	- 보리, 쌀, 콩 등의 왕겨
육류	- 소, 돼지, 닭 등의 털과 뼈다귀
알류	- 계란, 오리알, 메추리 알 등의 껍데기
기타	- 1회용 티백을 포함한 각종 차류의 찌꺼기 - 한약재 및 과일즙 찌꺼기

3.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요령

가.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나.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 등은 행구어 배출

다. 통무, 통호박, 통배추는 원형 그대로 버릴 경우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하나, 잘

계 부수면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 가능

라. 수박, 망고 등 부피가 큰 과일은 잘게 썰어서 배출

마. 비닐, 병뚜껑, 나무젓가락 등 이물질과 패각류, 복어내장, 티백 등 딱딱하거나 유해

하고 포장되어 있어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관계 법령 발췌

□ 폐기물 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의료폐기물은 제25조의2제6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 합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이하 “전용용기”라 한다)만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②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에서는 분리·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⑤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②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에서는 분리·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②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4호는 농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필름·시트류를 재활용하거나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 포장재를 재활용 또는 소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폐기물처리업자

2. 삭제<2011. 9. 7.>

3. 폐기물처리 신고자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5.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전단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같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로부터 회수·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중 전기·전자제품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회수하는 체계를 갖춘 자

6. 삭제<2011. 9. 7.>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자(같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대형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재활용하는 것만 해당한다)

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중 제품·포장재를 스스로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체계를 갖춘 자(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9.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8조의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한다) 중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설치된 집단급식소는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2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이 경우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의 구체적인 산출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다류(茶類)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다음 각 목의 사업장 규모 또는 제외 대상 업종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가. 사업장 규모(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정한다)

나.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 중 일부 제외 대상 업종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5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5.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6.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거나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
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기숙사

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다. 병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산업체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
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식품접객업

제37조(영업허가 등) ④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소유자등,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수산물도매시장”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양곡류·청과류·화훼류·조수육류(鳥獸肉類)·어류·조개류·갑각류·해조류 및 임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매하게 하기 위하여 제17조에 따라 관할구역에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5. “농수산물공판장”이란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림수협등”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이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제43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개설·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2.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란 제69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된 것으로서 농수산물의 출하 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수집·포장·가공·보관·수송·판매 및 그 정보처리 등 농수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구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생활 주변 위험 수목 처리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2조)
- 나. 구청장과 수목 소유주, 구민들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지원 대상과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마. 신청받은 위험수목의 실태조사 방법과 기준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바.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신청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사. 지원 결정의 취소가 가능한 사유들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피해를 예방하고자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 등의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落雷),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또는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추진시책의 마련
2. 추진시책의 수립·시행과 관련한 주민 의견수렴 및 반영
3. 추진시책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위험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모든 구민은 생활주변이나 그 외의 지역에서도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위험수목을 발견하면 신고하는 등 구의 추진시책에 협조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

기 위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목표·방향 및 절차
2. 추진 기간, 수요조사 방법
3.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해 관련기관·전문업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용역을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지) 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제1호, 제11호에 해당하는 곳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은 지원대상지에서 제외한다.

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관리해야 하는 지역
2.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3.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수목을 관리하는 지역
4. 인위적 수목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5. 최근 2년 이내에 처리 지원을 받은 지역
6.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 등 관련 법규 및 인허가조건 등에 의해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인 경우 관련법에 따른 적합한 보완식재 등을 1개월 이내 이행하는 조건으로 지원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처리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인 대형 수목으로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의 제거 및 가지치기

가. 죽은 나무이거나 큰 마른 가지의 낙하가 예상되는 나무

나. 나무줄기 부패, 병충해 피해 등으로 쓰러질 우려가 있고, 해당 수목이 쓰러질 경우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

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 모양이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②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시행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소유자 등 간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정비 대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는 별표 1 위험성 평가 및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산림보호법」 제2조제6의5에 따른 수목전문가(나무병원 등)에게 위험성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신청자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전원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신청자 및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결정 취소 등) 구청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원 결정 등을 취소할 수 있다.

-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신청한 경우
- 2. 위험수목 처리 중 반대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여 처리 및 지원이 곤란한 경우
-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 하는 건물·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 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5. 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 아동센터·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 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

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4) 적절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 아동센터·공동육아나눔터·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

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공간의 구성과 규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다만, 구분소유된 개별 실(室)은 제외한다.

1) 일반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건축물의 일부를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숙사로 사용하는 세대 수로 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2) 임대형기숙사: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실이 20실 이상이고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50퍼

센트 이상인 것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 산림보호법

제2조(정의)

6의5. “나무병원”이란 수목진료 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제21조의9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별표 1]

위험성 평가 및 등급 기준 (제7조 관련)

도복/부러짐 가능성	대상물체 ¹⁾ 의 피해 가능성			
	매우 낮음	낮음	중간	높음
발생임박	보통	보통	높음	매우높음
발생농후	낮음	보통	보통	높음
발생가능	낮음	낮음	보통	보통
발생불가	낮음	낮음	낮음	낮음

지원대상 (위험등급 수준)	처리 내용
낮음(경)	지원 불가대상 (소유자의 모니터링 권고)
보통(중)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 결정
높음(심)	처리 대상으로 처리 시기 유동적으로 적용 가능
매우높음(극심)	즉시 처리 대상

○ 대상물체의 피해 가능성 판단 세부 기준

[위험대상구역 : 위험목을 중심으로 수고의 1.5배 반경 내로 한다.]

- 매우낮음 : 피해대상 물체가 없는 한적한 지역으로 통행량도 거의 없음.
- 낮 음 : 제한적 도로, 도로로 넘어질 우려가 없어 피해 가능성 낮음.
- 중 간 : 도복 수목, 가지 일부가 대상물체에 피해를 줄 수 있고 피해점유율이 빈번한 지역
- 높 음 : 도복 수목, 가지 대부분이 대상물체에 피해를 줄 수 있고 완전히 피해에 대상물체가 노출되어 있으며, 도로나 인도에 위치해 2차 피해 우려 지역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연구자료 제844호, 제2020년 발행) “생활권 수목의 위험성 평가 가이드라인-6.위험등급 구분” 준용

1) 대상물체 : 이동성(보행자, 자동차, 이륜차, 자전거 등), 이동가능성(조형물, 게시판, 야외 탁자, 주차차량, 놀이터 시설 등), 고정성(건물, 공익시설, 구조물 등)으로 분류한다.

[별지 제1호서식]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

지원대상지	주 소					
	소 유 자		연 락 처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연 락 처			
신 청 사 유						
대 상 수 목	연 번	나 무 종 류	나무높이(m)	가슴높이지름(cm)	지 원 내 용	비 고
※ 신청수량이 많을 경우, 추가 별지 작성 ※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기 타 요 구 사 항						

상기와 같이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붙임 대상 위치도 및 현황 사진 1부.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별지 제1호서식 붙임서식]

대상 위치도 및 현황 사진

위 치 도	
전경 사진	근경 사진

[별지 제2호서식]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

- 수 목 위 치 :
- 수종 및 수량 :
- 정 비 사 유 :
- 정 비 내 용 :

상기 본인은 인천광역시 검단구_____소유주로 여름철 태풍, 폭우시 전도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아래 수목에 대하여,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정비(제거, 가지치기 등)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소 유 자 : (인)

연 락 처 :

붙 임 공동소유자 동의서 1부.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붙임서식]

공동소유자 동의서

☐ 공동소유자 동의(전원이 동의하여야 합니다.)

연번	성명	주소(동 호수 명기)	서명(인)	비고
1				
2				
3				
4				
5				
6				
7				
8				
9				
10				

상기와 같이 수목 정비(제거, 가지치기) 신청을 위한 공동소유자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인천광역시 점단구청장 귀하

인천광역시 검단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정원의 조성·진흥 및 정원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정원문화의 육성 및 정원도시 조성(안 제4조~제5조)
- 라. 정원문화의 발전·진흥 등(안 제6조)
- 마. 민간정원의 개방 및 지방정원의 조성·운영 등(안 제7조~제8조)
- 바. 구민참여의 원칙 및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안 제9조~제10조)
- 사. 시민정원사의 양성 및 시민정원사의 활용(안 제11조~제12조)
- 아.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수당(안 제13조~제15조)
- 자. 포상, 준용(안 제16조~제1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정원의 조성·진흥 및 정원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구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소산을 말한다.
3. “구민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며,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4. “지방정원”이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5. “민간정원”이란 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6. “공동체정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공동주택 또는 일
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 공동으로 조성·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7. “정원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유통하거나 이에 필
요한 서비스 등을 통하여 정원문화를 활성화하는 산업으로 조경·화훼 관
련 산업, 정원문화 관련 교육, 국제교류사업, 정원치유 서비스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원
문화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
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원문화의 육성) ① 구청장은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원문화시설 및 정원문화프로그램의 조성·개발·운영의 효율
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정원도시의 조성) ① 구청장은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
고, 구민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6조(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등) 구청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및 정
원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8.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
9. 정원 캠페인의 추진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민간정원의 개방) 구청장은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검단구 내 민간정원을 일반에게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제8조(지방정원의 조성·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산업의 육성을 선도하기 위해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정원을 조성·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방정원 중 검단구의 상징성 및 대표성을 고려하여 국가정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방정원에 대하여 정원 내 식물의 보존·증식 및 시설물의 안전·위생관리 등 정원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방정원 입장료 및 사용료를 별도로 정하여 운영·관리할 수 있다.

제9조(구민참여의 원칙) ①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구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자발적인 구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구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제10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

해 도심 내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구민이 주도하는 공동체정원 조성
2. 구민 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
3.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구민참여 활성화
4.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구민정원사의 양성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구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구민에게 구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정원사 양성·인증 및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교육과정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구민정원사의 활용 등) ① 구청장은 정원 관련 사업에 있어 구민정원사를 선발하여 활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구민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검단구에서 주최하는 정원 관련 사업에 참여할 경우 구민정원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정원문화 진흥을 위해 정원문화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정원문화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구민정원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관련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각계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정원문화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2. 원예, 화훼, 조경, 경관 등 정원 관련 전문가 및 교수
3. 구민정원사
4.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의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임명 또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 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

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구청장은 정원문화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수목원 ·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2016. 12. 2., 2019. 1. 15., 2020. 12. 22., 2021. 4. 13.>

1의2.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

제4조(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② 정원은 조성·운영 주체,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정원: 국가가 조성·운영하는 정원
2. 지방정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운영하는 정원
3. 민간정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운영하는 정원
4. 공동체정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공동주택 또는 일정 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하 “공동체”라 한다)이 공동으로 조성·운영하는 정원

제18조의3(국가정원의 지정 등) ② 산림청장은 제4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정원의 면적, 시설의 종류, 구성요소 및 운영실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정원의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가정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2020. 12. 22., 2021. 4. 13.>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가정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대상 정원의 특성·면적, 식물·시설의 종류 및 운영실적 등 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정원을 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체가 지방정원 및 공동체정원을 조성하려는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제18조의5(정원의 입장료 등) ① 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정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정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4. 13.>

제18조의6(정원의 운영·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원 관리 자동화 기술 등 신기술이 정원의 운영·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13.>

② 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정원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원 내 식물의 보존·증식 및 시설물의 안전·위생 관리 등 정원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인천광역시 검단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검단구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조~2조)

나. 위원회의 구성(제3조)

다. 위원회의 운영(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검단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4. 관할 지역의 주민

④ 구청장은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산림재해업무 담당을 간사로 임명하고,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와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등을 처리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과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안건에는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해당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 of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9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해촉 될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 결과

1. 심의 번호 :

2. 심의 대상지

- (1) 소 재 지 :
- (2) 지정 면적 :
- (3) 피해 유형 :
- (4) 위험 등급 :
- (5) 피해 내용 :

3. 심의 결과

심의 항목	심의결과		
	적정	보완	부적정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			
(2)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수렴 절차의 적정성			
(3)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산사태 안전대책 홍보 및 교육 등의 적정성			
(4)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업 적정성			
(5)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의 적정성			

4. 심의위원 의견

관계 법령 발췌

☐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① 지방산림청장은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산림청장 소속으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거수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거수 등의 보호와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2조)

나. 노거수의 지정(제3조)

다. 노거수등의 보호(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거수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거수등의 보호와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노거수등의 지정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거수등”이란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으로서 특별히 보호 및 보존할 가치가 있는 수목으로 「인천광역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보호·관리하는 수목 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수목을 말한다.
2. “관리부서”란 구청장이 지정한 노거수등을 관리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3. “수목보호기술자”란 「산림보호법」 제21조의4 및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목보호 관련 민간 자격을 취득하고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등록된 기술자를 말한다.

제3조(노거수등의 지정) ① 구청장은 노목, 거목, 희귀목 등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을 노거수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노거수등 대상수목의 소유자와 관리자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노거수등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 등을 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노거수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노거수등으로 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지정목적에 따라 노거수등을 보호·관리하여야 하며, 노거수등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제4조(노거수등의 해제) ① 구청장은 노거수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거수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노거수등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정 노거수등이 수명을 다하여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군사시설 또는 그 밖에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거수등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그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노거수등의 표지) 구청장은 지정된 노거수등이 소재하는 토지에 노거수등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노거수등 유지·관리비용의 지원) ① 구청장은 노거수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운영에 있어서 지원목적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지원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7조(노거수등의 보호) ① 구청장은 각종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와 같이 노거수등에 인접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노거수등의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여 노거수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 도로, 상하수도 시설, 전기·통신시설, 건축 등의 사업행위
2.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분수, 실개천 등의 수경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구청장이 노거수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② 구청장은 노거수등의 생육 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제8조(노거수등의 점검) ① 구청장은 노거수등의 유지, 피해예방 등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후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수목보호기술자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그 진단결과를 노거수등의 보호·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비치) 구청장은 노거수등의 관리와 실태파악을 위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노거수등 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확인점검 및 보호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노거수등 관리대장

지정번호	0000-00	지 정 년 월일		수목명	
본 수		과 명		학 명	
소 재 지 및 위 치		지 목		면 적	m ²
수 령		수고 m	흉 고 나무둘레	수관 직경	m
소 유 자	주소		주소		
	성명		관리자 성명		

지정사유

나무의 특징

연혁 및 전설

기타(해제사유)

※ 현황사진은 별도첨부

[(별지 제2호서식)

확 인 점 검 및 보 호 관 리 대 장

년 월 일	구 분	확인점검 또는 보호관리 조치상황

관계 법령 발췌

☐ 산림보호법

제13조(보호수의 지정·고시) ①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역사적·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이하 “보호수”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수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지정 대상 나무의 소유자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3. 24.>

1. 지정 사유
2. 지정 대상 나무의 소재지
3. 지정 대상 나무의 나무종류, 나무나이, 나무높이, 가슴높이지름, 수관폭(樹冠幅) 등
4.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 대상 나무의 소유자나 지정 대상 나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보호수로 지정·고시하고, 보호수의 소유자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보호수의 지정은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19. 1. 8.]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1장 총칙(안 제1조~제3조)
- 제2장 상품권 발행 및 운영(안 제4조~제11조)
- 제3장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안 제12조~제20조)
- 제4장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사랑상품권 민관운영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안 제21조~제26조)
- 제5장 상품권 활성화 시책 및 지원(안 제27조~제2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해당없음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가정보육과, 감사실 합의
- 라. 기 타: 해당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검단구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구청장 또는 가맹점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2. “가맹점”이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가맹점을 말하며, “상생 가맹점”은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가맹점을 말한다.
3. “부가서비스”란 상품권 플랫폼을 활용하여 제1호의 선불전자 지급수단에

연계된 별도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충전·판매대행점”(이하 “대행점”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판매대행점을 말한다.
5. “운영대행사”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상품권(제3호에 따른 부가서비스를 포함한다)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중층구조인 경우는 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천사랑상품권의 수탁기관으로, 구청장으로부터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6. “중층구조”란 시 조례 제4조에 따라 발행한 인천사랑상품권을 기본으로 하여 상품권(제3호에 따른 부가서비스를 포함한다)을 발행·운영하는 구조를 말한다.
7. “인센티브”란 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적립금, 쿠폰 등의 혜택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품권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제4조(상품권의 발행)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법 제4조제2항부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상품권의 유효기간, 유통지역,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중층구조인 경우에는 시 조례 및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2. 유통지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관할구역(이하 “검단구지역”이라 한다)으로 한다.

3. 1회 충전 권면금액의 최소한도액과 최대한도액은 1만원과 200만원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권면금액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만원과 200만원 범위에서 최소한도액과 최대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지급수단으로 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유통지역 및 권면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고, 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제5조(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 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판매대행 협약을 구청장과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중층구조인 경우 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인천사랑상품권 대행점은 구청장과 상품권 대행점으로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1. 협약기간

2. 판매대행 주요업무 범위

3. 협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품권의 판매대행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매 반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등의 판매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 조례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제6조(가맹점 등록)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층구조인 경우 검단구지역에 소재하는 점포가 시 조례 제7조에 따라 인천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한 때에는 가맹점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7조(가맹점 등록 제한업종) ①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검단구지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해당 사업자의 매출로 잡히지 않는 업종이나 사업체
2. 그 밖에 구청장이 상품권 발행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또는 사업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층구조인 경우에는 시 조례 제8조에 따른다.

제8조(가맹점 등록 취소)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검단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잔액의 환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사용금액의 100분의 60으로 한다. 다만, 중층구조인 경우는 시 조례 제10조에 따른다.

제10조(부가서비스 운영 등) 구청장은 검단구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부가서비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

(부가서비스를 포함한다)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단, 중층구조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 조례 제12조에 따른다.

1.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2. 시스템 유지 보수

제3장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제12조(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중앙부처 또는 인천광역시 보조금
3. 기금 운용 수익금 및 이자
4. 그 밖의 수익금 및 지원금 등

제1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상품권(부가서비스를 포함한다)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제2조제7호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3. 상품권(부가서비스를 포함한다) 가맹점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
4. 상품권(부가서비스를 포함한다) 안내·홍보 등에 필요한 인건비
5.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비용
6. 그 밖에 상품권(부가서비스를 포함한다) 활성화 시책 추진 및 판매촉진에 필요한 비용

제1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구청장은 기금을 인천광역시 검단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단, 중층구조의 경우 인천광역시와 협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구금고 등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기금적립금에서 미리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은 제2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사랑상품권 민관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제17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기능)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2. 중요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25조를 준용한다.

제19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상품권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상품권 담당

② 제1항에 각 호에 따른 회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4장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사랑상품권 민관운영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제21조(민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상품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사랑상품권 민관운영위원회(이하 “민관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민관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부가서비스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17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민관운영위원회 구성) ① 민관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민관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관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상품권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이내
2. 시민사회단체에 소속된 사람

3. 소상공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4. 복지분야 전문가 또는 유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5. 소상공인 지원 관련 공공기관에 소속된 사람
 6. 지역사랑상품권 분야의 전문가
 7. 그 밖에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제3항 후단에 따른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민관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2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5조(민관운영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민관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민관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④ 민관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등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⑥ 민관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상품권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26조(위원의 수당) 제18조, 제25조에 따른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상품권 활성화 시책 및 지원

제27조(인센티브) ① 구청장은 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에서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결제금액의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적립금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상생 가맹점의 활성화를 위해 검단구지역 상생 가맹점에서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제1항의 인센티브와 별도로 결제금액의 100분의 5이내의 범위에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자별 적립금 제공 한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며, 사용자가 법인 및 가맹점인 경우에는 적립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중층구조인 경우에는 시 조례에 따른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각각 적립금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적립금을 제공할 수 있다.

제28조(상품권 활성화 시책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상품권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민이나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각종 시혜성 수당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하는 기업, 공익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비정부기구 등에게 지역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상품권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사 및 이벤트 등에 따른 경품, 시상금 등 지원 및 지급

가. 경품추첨행사

나. 퀴즈이벤트

다. SNS 홍보이벤트

라. 가맹점 방문이벤트

2. 상품권 사용자에게 상품권 사용금액의 일정부분을 할인해 주는 쿠폰 제공

가. 제공대상 : 상품권 사용자

나. 제공방법 : 앱 내 쿠폰으로 제공

다. 제공한도 : 5,000원 범위 내

라. 제한기준 : 월 2회 이하

3. 가맹점(부가서비스를 포함한다)에게 상품권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할인, 수수료 등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4. 가맹점(부가서비스를 포함한다) 홍보에 필요한 마케팅 지원

5. 가맹점(부가서비스를 포함한다) 홍보에 필요한 물품 및 인쇄물 등 구입·제작·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경품 등을 지원하는 경우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⑥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에 상품권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 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경품 등 세부기준(제28조제5항 관련)

구 분	시 기	지급범위	지급방법 및 기준	지급수단
경품 추첨행사	연 1회	전년도 상품권 발행액의 1/10,000 범위	경품권 제공 및 추첨 (상품권 결제액 5만원당 경품권 1매 제공)	적립금 또는 부가서비스 쿠폰
퀴즈이벤트	월 1회	매회 50만원 범위	상품권 관련 퀴즈 출제 및 정답자 추첨 (1회 50명 한정)	부가서비스 쿠폰 (1인 1만원 범위)
SNS 홍보이벤트	월 1회	매회 100만원 범위	카페, 블로그, 인스타 등 홍보이벤트 참여자	적립금 (1인 1만원 범위)
가맹점 방문이벤트	월 1회	매회 100만원 범위	가맹점 방문 및 이벤트 참여자	적립금 (1인 1만원 범위)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물가대책위원회 목적 및 기능(안 제1조~제3조)

나. 지방물가대책위원회 구성(안 제4조~제11조)

다.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운영(안 제12조~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물가 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물가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소속으로 한다.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구단위 물가안정시책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 중 지역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구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공무원 및 물가관련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구의회 의원, 소비자 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구 소속직원은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의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10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물가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물가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심의안건제출) 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필요시 실무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구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골목형상점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골목형상점가 지정(안 제3조~제5조)

다. 골목형상점가 지원(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 등 소상공인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이어야 한다.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제3조에 따른 해당 구역 내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골목형상점가위원회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원) 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동시설,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3. 고객 및 지역 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
4. 상권컨설팅 및 상인교육 프로그램 지원

4의2. 홍보사업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홍보비 지원

가. SNS 서포터즈 운영에 따른 실비, 원고료 등 활동비 지원(별표1)

나. 홍보에 필요한 물품 및 인쇄물 등 구입·제작 지원

4의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사 및 이벤트 등에 따른 물품 등 지원 및 지급(별표2)

가. 홍보물품 지급

나. 퀴즈이벤트

다. SNS 홍보이벤트

라. 상점가 방문이벤트

5.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을 권장할 수 있다.

제7조(사업비 지원 및 정산보고) ①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에게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골목형상점가 상인회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사업내용 및 예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예산을 지원받는 상인회는 사업비 집행 및 정산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골목형상점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경우
2. 제3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사업보조금을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골목형상점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소비자·경제 관련 활동가
3. 유통산업·마케팅·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도시개발·건축·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으며, 당
연직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품위손상 등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을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를(화상회의를 포함한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

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7조(회의록 작성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하며, 정보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개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

SNS 서포터즈 지원 기준(제6조제1항제4호의2가목 관련)

1. 지원대상: SNS 서포터즈
2. 지원내용: SNS 서포터즈 활동비(원고료, 실비)
3. 지원횟수 및 금액

가. 원고료: 1인당 월 20만원 이하

나. 실비: 교통비, 식비

※ 실비 지급기준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공무원여비 조례」에 따른다.

[별표 2]

물품지급 등 세부기준(제6조제1항제4호의3 관련)

구 분	시 기	지급범위	지급방법 및 기준	지급수당
홍보물품 지급	분기 1회	매회 100만원 범위	홍보사업 추진 및 홍보물품 제공	1개당 1만원 범위
퀴즈이벤트	월 1회	매회 50만원 범위	상점가 관련 퀴즈 출제 및 정답자 추첨 (1회 50명 한정)	상점가 이용 쿠폰 또는 기프티콘 (1인 1만원 범위)
SNS 홍보이벤트	월 1회	매회 100만원 범위	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홍보이벤트 참여자	상점가 이용 쿠폰 또는 기프티콘 (1인 1만원 범위)
상점가 방문이벤트	월 1회	매회 100만원 범위	가맹점 방문 및 이벤트 참여자	상점가 이용 쿠폰 또는 기프티콘 (1인 1만원 범위)

인천광역시 검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나. 유통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 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1조)
- 마.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및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5조)
- 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6조~제1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협력”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 인력, 자금, 구매, 판로, 홍보 등의 부문에서 서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8. “전통상점가”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전통상점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2장 지역유통산업의 추진계획 등

제4조(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수립한 인천광역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연계된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업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6.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7.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유지 방안
8.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6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고 주민의 의견수렴 및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 협의된 사항은 추진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5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검단구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의4에 따른 사항
2.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3. 대규모점포 출점계획과 이에 따른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제3장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 등

제6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협의회의 운영 등)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른다.

제8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제9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의3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6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3조의3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유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6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게시판과 검단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법 제13조의3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취소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

2.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5장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

제12조(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등)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등이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2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제6조에 따른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준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수수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제13조(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중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 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의 제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2. 의무휴업일: 매월 공휴일 중 이틀을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4조(등록제한 및 부관 부과)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산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검단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등록을 제한하거나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행정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등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부관을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전통상업지구의 보존활동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이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장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제1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유통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담당으

로 한다.

제1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포상) 구청장은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2. 3.>

1. “유통산업”이란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생략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4. “준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직영하는 점포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다.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제6호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5. ~ 16. 생략

제7조의5(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①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3. 1. 23.]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②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4. 3. 18.>

④ 제3항에 따른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점포의 소재지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여 있는 경우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 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6.>

⑥ 제5항에 따라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16. 1. 6.>

⑦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 1. 6.>

[전문개정 2013. 1. 23.]

[법률 제13510호(2015. 11. 20.) 제8조제1항, 제8조제2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8조제3항,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 11월 23일까지 유효함]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 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②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1. 23.]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려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전통시장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요청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1. 23.]

[법률 제13510호(2015. 11. 20.)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제4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 11월 23일까지 유효함]

제3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① 유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에 각각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 7.

24., 2017. 10. 31.>

1.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소매업자 사이의 영업 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2.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4.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한 분쟁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 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나.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 라.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소비자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매업·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등,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1. 23.]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성별 및 분야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회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7. 22., 2019. 9. 27.>

② 회장은 부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 행정부시장을 말한다)·부군수·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특별자치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9. 9. 27.>

1. 해당 지역에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였거나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3명
2.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3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해당 지역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 나. 해당 지역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다. 그 밖에 대·중소유통 협력업체·납품업체·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4. 해당 특별자치시·시·군·구의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제1호·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7.>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신설 2019. 9. 27.>

[본조신설 2013. 4. 23.]

제4조의3(협의회회의 운영 등) ① 협의회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날짜·시간·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협의회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⑤ 협의회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7.>

1.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의2.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검토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 공동조사연구, 지역유통산업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 4. 23.]

제5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준 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2. 23., 2006. 6. 30., 2009. 10. 14., 2011. 1. 18., 2012. 10. 5., 2013. 4. 23., 2013. 7. 22., 2019. 9. 27.>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건축물면적·매장면적·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사. 재무구조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상권영향평가서

가. 요약문

나. 사업의 개요

다. 상권영향분석의 범위

라. 상권의 특성

마. 기존 사업자 현황 분석

바. 상권영향기술서

사. 삭제 <2019. 9. 27.>

3. 지역협력계획서(지역 상권 및 경제를 활성화하거나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과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지역협력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말한

다)

4.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외의 서류를 말한다)

5. 삭제 <2019. 9. 27.>

② 제1항제2호의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3. 7. 22.>

③ 제1항제3호의 지역협력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은 배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22.>

1. 불공정 경쟁이나 부정 거래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
2. 소비자후생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사업
3. 지역 사업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주거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사업

④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 2. 23., 2006. 6. 30., 2011. 1. 18., 2013. 7. 22., 2014. 8. 13., 2019. 9. 27.>

1. 법인의 명칭, 개인 또는 법인 대표자의 성명, 개인 또는 법인의 주소
2.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 매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변경
3. 업태 변경(대규모점포만 해당한다)
4. 점포의 소재지·상호

⑤ 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하 “대규모점포 등개설자”라 한다)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같은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30., 2011. 1. 18., 2013. 4. 23., 2013. 7. 22.,

2014. 8. 13., 2019. 9. 27.>

1. 점포의 소재지 변경

2.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변경

3. 업태 변경(대규모점포만 해당한다)

⑥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개설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대규모점포등의 개설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뒤쪽에 그 사실을 기재한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변경)등록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개설(변경)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되, 대규모점포 안에 위치하는 준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개설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규모점포의 대규모점포등개설(변경)등록관리대장에도 그 사실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개정 2011. 1. 18., 2013. 4. 23., 2013. 7. 22., 2019. 9. 27.>

⑦ 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 6. 30., 2009. 10. 14., 2011. 1. 18., 2011. 10. 19., 2012. 10. 5., 2013. 4. 23., 2013. 7. 22., 2019. 9. 27.>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4.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5.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⑧ 법 제8조제5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거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리를 말한다. <신설 2016. 7. 27.>

1. 대규모점포의 경우 점포의 경계로부터 반경 3킬로미터
2. 매장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인 준대규모점포의 경우 점포의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
3. 매장면적 330제곱미터 미만인 준대규모점포의 경우 점포의 경계로부터 반경 300미터

[제목개정 2011. 1. 18.]

인천광역시 검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소상공인 지원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소상공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안 제3조~제5조)
- 다.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운영(안 제6조~제1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사업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질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중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에 사업자등록을 둔 자를 말한다.
2. “창업”이란 구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 채무를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소상공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
2.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3.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의 기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에 관한 사항
6. 소상공인으로의 창업(이하 "창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소상공인의 업종별 발전방안
8.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사업 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금, 마케팅 등 경영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교육 및 자문지원
2. 소상공인에 대한 수출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개설 정보 등 특화교육 및
자문지원
3.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마케팅에 관련된 지원
4. 소상공인 간 네트워크 양성에 대한 지원
5. 세무사, 노무사, 법무사 등 관내 자원봉사 전문 자격사를 모집하여 소상공
인에 대한 세무, 노무, 법률 무료상담 및 자문지원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특례보증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
다.

② 구청장은 특별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

결하고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건의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3. 창업 및 기업 경영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촉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제7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 ② 위원회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상공인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갖춰 두어야 한다.
- 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

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시설물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5조)
- 나. 인정시장의 인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11조)
- 다.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안 제15조)
- 라. 임시시장의 개설·신고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안 제19조)
- 마. 상인회 설립 및 등록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 안 제27조)
- 바.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8조, 안 제29조)
- 사.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30조 ~ 안 제39조)
- 아.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40조 ~ 안 제4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운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3. “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개설한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4.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점포의 밀집기준이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운영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점유 토지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를 말한다.
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상권

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6.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소방·가스·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 센터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7.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규칙 제12조에 따라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8.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구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구역) ① 전통시장의 구역은 법 제2조제1호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구청장이 인정한 구역을 말한다.

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새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배치가 상호 격리되지 않은 일단의 구역을 형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시장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5조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에 따라 상인 및 상인조직이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주차장: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소방법」·「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지켜야 한다.

3. 화장실: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 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도로를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황색선으로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상권에 출입하기 위하여 직접 연결되는 도로 및 사실상 상권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는 골목길, 통행로 등을 포함한다.
- ② 구 청장 또는 상인조직·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장 인정시장의 인정

제7조(인정시장의 기준 등) ① 인정시장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운영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 없이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같은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8조(인정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인정시장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을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인정시장으로 고시한 후 인정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인정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9조(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7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10조(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
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11조(인정시장의 인정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및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상인회 대
표자 등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구보와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
다.

제3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제12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
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서로 통합하여 규모의 상
권을 형성함으로써 고객 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 발전을 촉진하
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13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
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4조(상권활성화구역 지정절차) 구청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구청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4장 임시시장의 개설·신고

제16조(임시시장의 개설)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제17조(임시시장의 신고)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구청장은 제외한다)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법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19조(임시시장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신고한 경우
2. 임시시장 신고신청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5장 상인회 설립 및 등록

제20조(상인회의 설립) ① 시장·상권활성화구역·상점가의 상인회(이하“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받아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을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제21조(상인회 정관 등) ① 상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정관”이라 한다)을 따르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 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상인회 등록 등)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20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상인회의 등록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및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상인회 대표자 등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구보와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4조(예산의 지원)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드는 예산의 일부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마친 경우 14일 이내에 정산을 끝내고 구청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5조(서류비치 등)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갖추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 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기산(起算)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27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 상인회는 매년 1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장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② 상인회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제6장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

제28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규칙 제14조에 따라 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 취소 동의의 철회) 토지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생년월일,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등 소유자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제30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구청장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항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의해 구청장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이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물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명서류를 갖춰 두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지방자치단체·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31조(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지켜야 한다.

제33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34조(수익금 사용)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위탁관리하는 수탁자는 수익금을 우선 해당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혁신사업 등 시장활성화 사업 및 시설 유지보수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35조(수익금 정산 등) ① 주차장 등 수탁자는 분기별 1회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② 정산보고서에는 주차장 등 운영에 사용되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직접경비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36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8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갱신기간은 5년 단위로 할 수 있고, 갱신 횟수는 1회로 한정한다.

②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5항을 준수한 자로 한정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39조(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구청장은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옥외광고물 신고 및 허가, 도로점용 등 허가 처리에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

도록 하여야 한다.

제8장 과태료 부과·징수

제40조(과태료 부과·징수)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과태료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제41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야 한다.

제42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보냄으로써 행한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통지서에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처분통지서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이 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은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15일 이내의 기간 안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43조(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2조제2항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44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관할 법원에 알린다.

제4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팩스번호	
	제출기한		년 월 일까지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발 신 명 의

작 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별지 제2호서식]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납부 의무자	성 명	(남 / 여)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 태 료 납 부 통지서 번호				
위 반 사 항				
과 태 료 금 액			당초 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인)				

[별지 제3호서식]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수 시

제 목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통보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와 관련입니다.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

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에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대한 이의제기자	주 소			
단 체 명			주 소	
과태료 처분	과 태 료 납 부 통지일자		과 태 료 금 액	
내 역	부과관청		이의제기 일 자	

관계 법령 발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1., 2013. 5. 28., 2015. 11. 20., 2017. 2. 8., 2017. 7. 26., 2018. 6. 12., 2020. 2. 4., 2020. 2. 11.>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제10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장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장을 인정받은 경우
2.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시장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 8.]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 시장의 기능을 하는 시장(이하 “임시시장”이라 한다)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임시시장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시장·군수·구청장은 제외한다)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1.>

1.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기간 동안 입점상인의 임시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어 긴급하게 시장을 개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지역주민, 인근 지역 농어민, 시장과 상점가의 상인 또는 공공기관·단체가 정하여진 날에 농수축산물, 생활용품 및 중고품 등을 매매·교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대규모 행사에 따라 관람객, 관광객 등을 위한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5. 저소득층, 실업자, 노년층 및 농어민 등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판매장소가 필

요한 경우

제24조의2(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 지원 등) ①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9. 20.>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운영주체, 가입·지원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공제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9. 20.>

[본조신설 2016. 3. 29.]

[제목개정 2024. 9. 20.]

제65조(상인회) ①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② 상인회를 법인으로 설립하려는 경우 상인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1. 4. 20.>

③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2018. 6. 12., 2024. 2. 20.>

1.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
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3. 상인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4.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
5. 상업기반시설 관리업무(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화재나 자연재해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등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

⑤ 상인회는 상인회의 운영 및 제4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회원 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인회의 운영 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⑦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회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필 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8., 2021. 4. 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받은 경우
2. 시장등의 상인이 아닌 자를 대표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3.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하는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
4. 등록된 상인회와 동일한 시장등의 상인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 각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 ⑨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8.>
- ⑩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9. 1. 8.>
- ⑪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9. 1. 8.>
- ⑫ 법인인 상인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1. 8.>[전문개정 2010. 6. 8.]

제67조(시장관리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장에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2024. 2. 20.>

1.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나 자연재해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운영, 청소 및 방법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65조에 따라 설립한 상인회나 상인조직
2. 「민법」이나 「상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한 사업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
4.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공 법인·단체

제7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3. 5. 28.>

1. 제26조의5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한 개별가맹점
2. 제26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환전을 대행한 환전대행가맹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12. 11., 2013. 5. 28.>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 개설신고를 한 자
2. 제69조제2항 각 호의 사람(시장·군수·구청장은 제외한다)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는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 5. 28., 2017. 7. 26.>

[전문개정 2010. 6. 8.]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9조의 2제1항 전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법 제1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역경계도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또는 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려면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초조사서
2. 구역 지정(변경) 승인신청 사유서
3. 소요예산 및 조달계획
4. 구역 지정의 효과

5. 구역경계도

6. 상권활성화사업의 개략적인 내용

7. 상권관리기구 운영계획서

8.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서

9.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동의한 회의록

10. 주민의견서

[전문개정 2010. 6. 30.]

제12조(상인회의 설립과 등록) ①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하며, 회원은 동일 구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다른 상인회의 설립에 중복으로 동의하거나 회원이 될 수 없다.

1.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1점포에 1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3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2분의 1 이상 또는 100인 이상
2.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의 수가 300인 이상 1천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3분의 1 이상 또는 250인 이상
3.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의 수가 1천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4분의 1 이상
4. 시장 및 상점가가 4동 이상의 상가건물(5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건물에 한한다) 또는 4 이상의 구역(5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구역에 한한다)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 갈음하여 상가건물 또는 구역을 각각 대표

하는 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상가건물 또는 구역
을 대표하는 자는 해당 상가건물 또는 구역의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 상인회는 해당 상권활성화구역의 시
장·상점가 및 시장·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상점을 각각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모두 얻어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장·상점가 및 시장·
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상점을 대표하는 자는 해당 시장·상점가 및 시장·
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상점의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음을 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30.>

③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상인회를 등록하려는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상인회 등록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의인 명부
2. 총회 회의록
3. 규약 또는 정관
4. 사업계획서
5. 재산명세서

④상인회는 필요한 경우 규약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상점
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안에 지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 6. 30.>

⑤상인회의 규약 또는 정관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명칭
2. 업무구역

3. 목적

4. 사업내용

5. 총회와 이사회

6. 임원선출방법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⑥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인회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규약 또는 표준정관을 제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⑦제3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⑧시장·군수·구청장은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2. 3.>

7. “상점가”란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상점가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를 말한다. <개정 2018. 1. 30.>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
 2. 상품 또는 영업활동의 특성상 전시·판매 등을 위하여 넓은 면적이 필요한 동일 업종의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이하 이 조에서 “특성업종도소매점포”라 한다)를 포함한 점포가 밀집하여 있다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지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구
 - 가. 가로 또는 지하도의 면적이 특성업종도소매점포의 평균면적에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의 수를 합한 수를 곱한 면적과 용역점포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내일 것
 - 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을 것
 - 다. 특성업종도소매점포의 수가 나목에 따른 점포 수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 [전문개정 2015. 6. 30.]

인천광역시 검단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도·소매업 지정 및 관리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 및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담배소매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 및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실조사 의뢰(안 제4조)

나. 협약체결 등 ~ 의뢰의 취소(안 제5조 ~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신청영업소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를 수행 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실조사 의뢰)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실조사 업무의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2.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할 전담조직과 인력이 없는 경우
3. 관할지역이 광범위하여 직접 사실조사를 하기에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에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 업무를 의뢰 할 수 있다.

③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 의뢰에 관한 절차 또는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의뢰의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한 사실조사 업무를 취소 또는 정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 사유를 문서로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사전에 통보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의뢰의 취소)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실조사 업무의 의뢰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5조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소매인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매인지정신청서에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점포에서 담배소매업만을 하려는 경우에는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을 계산할 때 제8항에 따른 재조사 기간, 제7조의2에 따른 공고 후 신청서 접수기간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기간 등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 단서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서를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 후단에 따라 사실조사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조사결과에 대하여 소매인지정 신청인 또는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4항에 따

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 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를 말한다) 소매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⑦ 제4항 단서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매인지정 신청인 또는 인근 영업소 소매인은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재조사 요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재조사 요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3일 이내에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⑨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하되, 접수순서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⑩ 제9항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는 경우에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으면 제9항 또는 제7조의2에도 불구하고 그 신청인을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지정 대상자가 2명 이상이면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⑪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을 지정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매인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⑫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제3항의 처리기간을 4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지정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⑬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의 지정, 지정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사실을 기록한 대장을 작성·보관하여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3 제2호 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에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기준(제11조제6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기간·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 등이 경미하여 담배판매업 등 담배사업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위반 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담배소매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의 동기·내용·기간·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영업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기간을 늘릴 수 있되, 영업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 법령	영업정지기준	
		1차	2차

가.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1호	3개월	6개월
나. 법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2호	1개월	3개월
다.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3호	2개월	4개월
라.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4호	3개월	6개월
마.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담배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5호	7일	1개월
바.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6호	7일	1개월
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7호	7일	1개월
아.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제7조의3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소매인이 담배진열장 또는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8호	경고	1개월
자.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제8조를 위반하여 소매인이 승인을 받지 않고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8호	15일	1개월

※ 비고: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최근 5년간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제2호 개별기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소매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구청장, 주민, 소유자의 책무 등(제3조~제5조)
- 나.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제6조)
- 다. 반려견 놀이터 설치 운영(제10조)
- 라. 교육 및 홍보 등(제1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예산법무과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 보호”란 반려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는 등, 법 제3조에 의한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적절한 사육·관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반려동물 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반려견 놀이터”란 소유자 등이 동반한 반려견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관

련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참여와 협력) ① 주민은 반려동물 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반려동물 보호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법 제10조에 규정된 동물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 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스트레스·갈증·배고픔·영양불량·부상·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관리하고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⑤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등록 및 외출 시 안전조치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연도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피학대 동물의 구조·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배려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반려동물의 구조·보호)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에 해당하는 유실·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하여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유기동물을 구조할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대학·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반려동물 배려문화 조성)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을 배려하는 문화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반려견 놀이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반려견으로 인한 사회

적 갈등을 완화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관련된 법인,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반려견 놀이터 설치·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주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 가. 포유류
 - 나. 조류
 - 다.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2.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유실·유기동물”이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4. “피학대동물”이란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을 말한다.
5. “맹견”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를 말한다.
 - 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
 - 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6. “봉사동물”이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한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7.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8.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遺棄)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9.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몸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2.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동물이 고통·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

를 입히는 행위

나.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물이나 음식을 강제로 먹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라. 동물의 사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 누구든지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포획하여 판매하는 행위
2.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
3.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4.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

④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절한 길이의 목줄, 위생·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3. 제2호의 행위로 인하여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4항제1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선전하는 행위.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은 제외한다.
3.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

하는 행위

4.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건의 대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4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9조에 따라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실·유기동물
 2.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등으로부터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 ②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보호조치 중인 경우에는 그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등록된 동물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 중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사의 진단과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장 등 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
- ④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도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안 제4조~제5조)
- 다. 착한가격업소 지원(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소로서 가격·위생·품질·서비스·공공성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여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정 및 취소) ① 착한가격업소는 수시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절차의 전반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지침 등을 참조하여, 조례의 목적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5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청결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업소 현황을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및 구 홍보물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구청장은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설치
2.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독·방역 및 위생용품 지원
3. 종량제봉투 및 상·하수도 요금 등의 공공요금 보조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영업자의 협조) ①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관계 공무원 또는 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가격 인상 자제 및 업소 내 위생·청결 등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모니터요원의 운영) ① 구청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를 위하여 모니터요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 모니터요원의 채용·보수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모니터요원의 임무) 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의 지정기준 적격여부 확인
3. 착한가격업소 홍보 캠페인

4. 그 밖의 착한가격업소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유기·유실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관리 등(제4조~제5조)

나. 동물보호센터 위탁 취소(제6조)

다. 소요경비의 지급 및 징수(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유기·유실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기·유실동물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기·유실동물”이라 함은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동물이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보호조치”라 함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함에 있어 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동물보호센터”(이하 “보호센터”라 한다)라 함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유기·유실동물 보호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 또는 구청장과 위탁계약에 의하여 유기·유실동물보호를 위탁받은 자(이하 “위탁보호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동물병원”이라 함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5. “민간위탁”이라 함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보호시설을 갖춘 시설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유기·유실동물에 한하여 적용

한다.

제4조(유기동물의 포획) ① 구청장 또는 위탁보호자가 유기·유실동물을 발견하거나 유기·유실동물의 발견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포획·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위탁보호자가 유기·유실동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유기동물의 보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도로,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주인 없이 나돌아 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유기·유실동물)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포획한 유·유실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센터를 설치 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1. 동물병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하는 동물보호소

3. 축산 또는 수의과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동물보호단체

②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보호한 동물의 종류, 성별, 연령, 특징, 포획장소, 포획시간, 보호장소 등을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7일 이상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포획한 유기·유실동물이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조에 따른 수의사 또는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사(이하 “공수의”라 한다)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진료결과 인수공통전염병 또는 법정가축전염병에

결렸거나 결렸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동물에 대하여는 살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동물을 기증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은 구의 세입으로 하며, 분양 또는 기증을 하는 경우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으로 분양하고, 중성화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보호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유기·유실동물의 보호·관리의 임무를 게을리 하거나 임무수행능력이 없을 때
2. 보호업무에 관한 구청장의 지시에 위반하였을 때
3.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인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소요경비의 지급 및 징수) ① 구청장은 유기·유실동물의 보호·관리에 소요된 경비를 구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경비의 산출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구청장은 유기·유실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공고기간 내에 유기·유실동물의 반환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유기·유실동물을 반환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액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유기·유실동물 보호 소요경비 산출기준

1. 사료급여 기준(1마리/1일)

동물명	체중(kg)	사료급여량(g)
개	1 ~ 3	전용사료 40 ~ 90 또는 통조림 120 ~ 180
	4 ~ 7	전용사료 100 ~ 170 또는 통조림 180 ~ 630
	8 ~ 10	전용사료 170 ~ 220 또는 통조림 630 ~ 670
	10 ~ 20	전용사료 220 ~ 360 또는 통조림 670 ~ 1,110
	20 ~ 30	전용사료 360 ~ 480 또는 통조림 1,110 ~ 1,470
	30 ~ 40	전용사료 480 ~ 600 또는 통조림 1,470 ~ 1,820
	40 이상	전용사료 600 ~ 700 또는 통조림 1,820 ~ 2,200
고양이	1 ~ 2	전용사료 25 ~ 50 또는 통조림 75 ~ 150
	3 ~ 4	전용사료 75 ~ 100 또는 통조림 225 ~ 300
	5 이상	전용사료 120 ~ 140 또는 통조림 360 ~ 420

비고 : ① 위의 기준표를 적용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호소의 관리인 또는 위탁보호자와 협의하여 사료의 종류 및 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기타의 동물에 대한 사료급여 기준은 구청장이 별도로 고시할 수 있다.

③ 사료첨가제, 식염, 기타의 무기물은 동물의 건강상태에 따라 충분한 양을 급여하도록 한다.

2. 위탁보호에 따른 비용 산출기준

① 보호인 수당 : 1일당 정부노임단가 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 노임액의 100분의 25 이내

② 포획인부의 노임 : 1일당 정부노임단가 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 노임액을 적용한다.

③ 사료비 : 위 기준표에 의하여 급여한 사료량의 중급제품 판매가격으로 한다.

3. 기타 비용

가. 안락사처리비: 안락사 처리에 소요된 실비를 지급한다.

나. 사체처리비: 사체처리에 소요된 특정폐기물 처리비용에 의한다.

다. 치료비: 부상 등 치료를 하였을 경우 동물병원 치료비의 실비를 지급한다.

라.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산출 경비에 대하여는 유기·유실동물의 소유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4. 위탁보호에 따른 비용 청구기준(1마리/1일)

동 물 명	체 중(kg)	청 구 내 역				
		전용사료		보호인 수당 (1인/1일)	포획인부 수당 (회/1인)	합 계
		양(g)	금액(원)			
개	1 ~ 3	40	260	6,000	50,420	56,680
	4 ~ 7	100	660	7,000	50,420	58,080
	8 ~ 10	170	1,120	8,000	50,420	59,540
	10 ~ 20	220	1,450	9,000	50,420	60,870
	20 ~ 30	360	2,370	10,000	50,420	62,790
	30 ~ 40	480	3,160	11,000	50,420	64,580
	40 이상	600	3,960	12,600	50,420	66,980
고양이	1 ~ 2	25	160	5,000	50,420	55,580
	3 ~ 4	75	490	6,000	50,420	56,910
	5 이상	120	790	7,000	50,420	58,210

※ 위탁보호에 따른 비용 청구는 사료량, 보호인 수당, 포획인부 수당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기타 비용은 소요된 실비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관계 법령 발췌

□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 수의사법

제17조(개설) ① 수의사는 이 법에 따른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다.

- ② 동물병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아니면 개설할 수 없다. <개정 2013. 7. 30.>

1. 수의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동물진료법인”이라 한다)

4.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5.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제21조(공수의) ① 시장·군수는 동물진료 업무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는 제3호와 제6호의 업무만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2. 11.>

1. 동물의 진료

2. 동물 질병의 조사·연구

3. 동물 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

4. 동물의 건강진단

5. 동물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 관리

6. 그 밖에 동물의 진료에 관하여 시장·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동물진료 업무를 위촉받은 수의사[이하 “공수의(公獸醫)”라 한다]는 시장·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 위촉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2026. 7. 1. 검단구 출범으로 인한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5조)

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16조)

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안 제25조)

라.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안 제26조 ~ 안 제3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검단구 주민의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구에 주소를 가지거나, 구 관내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구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이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5. “마을종합발전계획”이란 마을 일반현황 및 활용자원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주도하여 수립한 마을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말한다.
6. “마을지원활동가”란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활동이 가능하도록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참여를 이끌어 내는 사람을 말

한다.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제6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방향 및 주요 추진방안
2.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의 구성·운영
3.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운영
4.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협의회 구성·운영
5.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문가의 의견을 받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행정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협의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9조(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
3. 마을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 육성
4.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사업
5. 마을 문화·예술 및 전통의 계승발전 사업
6.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역량 강화 교육사업

7.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증진 사업

8.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사업

9. 마을공동시설 개선사업

10.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0조(마을지원활동가 운영) 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마을지원활동가를 둘 수 있다.

② 마을지원활동가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마을공동체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위한 지원

2.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

3. 신규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 마을 자원 발굴 및 관리 지원

4.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5. 그 밖에 마을공동체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마을지원활동가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마을지원활동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마을지원활동가의 선발, 활동비 지급기준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지원신청) ① 주민 또는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등이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중간점검) 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대상 사업에 대하여 진행사항 등을 점검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사업진단 및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인 대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3조(사업비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경우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14조(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매매·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평가·포상) ① 구청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지원비의 교부방법 및 집행 등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제17조(설치 및 기능) ①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마을공동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 및 선정
4.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사업의 지원대상과 범위
5.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분석·평가
6.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사업에 의해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
8. 그 밖에 위원회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담당부서 국장을 포함한 각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주민대표, 마을공동체 만들기 전문가
3.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고, 간사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19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

다. 단, 위원의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촉 해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협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제26조(지원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원활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27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초조사 및 사업의 분석·평가·연구
3.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4.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계획 수립·실행 지원
5.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공모
6. 마을공동체 만들기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7. 마을공동체 만들기 일꾼 발굴 및 육성
8.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교육, 홍보, 세미나, 국내·외 견학
9. 마을공동체 만들기 자원조사·관리
10.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8조(관리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0조(위탁계약 해제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 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31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청년시설의 정의, 운영 방법, 기능 등에 대한 사항(안 제1조 ~ 제4조)
- 나. 운영협의체, 수강료,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10조)
- 다.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자 선정 및 선정 취소, 입주자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제1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상호교류 및 사회참여 확대, 역량 강화, 권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시설”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검단구”라 한다) 내 청년공간, 청년창업지원센터 등 청년과 관련하여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3. “청년공간”이란 청년의 쉼과 도약을 위한 공간으로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청년서비스 제공시설을 말한다.
4. “청년창업지원센터”란 청년들에게 창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반시설(입주공간, 공용공간 등)을 말한다.
5. “입주자”란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입주공간에 대하여 사용허가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① 청년시설의 구분 및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② 청년시설은 지역적 특성,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검단구 내에 설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시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2. 청년시설의 조성 및 운영

④ 구청장은 청년시설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산하 기관을 포함한다.), 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청년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년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청년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기타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4조(기능) 청년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제공과 이벤트 추진

2. 청년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취업·창업 정보 공유와 교육 및 컨설팅

3. 청년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4. 회의, 커뮤니티 활동 등 네트워킹 등을 위한 소통공간 제공

5. 창작, 협업, 전시, 공연 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 공간 제공

6. 예비, 초기 창업자의 발굴·육성 및 입주공간, 공용공간 등의 지원

7. 입주자 모집·선정 및 관리

8. 창업정보 제공 및 컨설팅 지원,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및 경영 지원

9. 그 밖에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협의체 구성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

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년시설 운영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청년시설 사업의 발굴 및 운영에 대한 사항
2. 청년시설 활성화 방안 모색
3. 청년정책 관련 정보 교류
4. 그 밖에 청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주요 사항

② 협의체는 7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청년시설 업무 관련 부서의 장
2.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청년정책위원회”라 한다) 청년위원장
3.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참여단장
4. 청년시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관내 유관기관 실무자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회의는 협의체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⑧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년시설 운영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⑨ 협의체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그 밖에 협의체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프로그램 수강료 등) ① 구청장은 청년시설의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수강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1.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의 지원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구청장은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줄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는 표창할 수 있다.

제7조(수강료 등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다만, 그 밖의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의 예를 따른다.

1. 강의 개시 전일까지 수강료를 납부한 이용자가 수강취소를 한 경우(전액반환)
2. 수강료가 과오납 된 경우
3. 수강신청자가 모집 정원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강사 또는 강의 장소 등의 원인으로 수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제8조(사용허가 등) ① 청년시설의 사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년

창업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청년 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단체가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2. 제1호 이외의 개인 또는 단체가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③ 신청하는 자가 경합할 때는 제2항제1호를 우선한다.

④ 사용신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검단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9조(사용허가의 제한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회질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로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운영·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상업성, 정치성, 종교성이 있는 활동인 경우

제10조(대여) ① 청년시설의 물품 대여는 제8조제2항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한정하며 물품은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대여한 물품은 시설 내에서 운영시간 동안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미디어실의 촬영장비에 대하여 외부 유출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신청서를 작성하고 최대 5일을 대여할 수 있다.

④ 물품 대여신청자가 경합할 때는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1조(변상조치) 사용기간 중에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 및 물품 등을 손상 또는 파괴하거나 분실한 경우 원상복구 및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멤버십 운영) ① 구청장은 청년시설 활성화 및 청년정책의 홍보를 위해 멤버십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멤버십 마일리지 사용은 청년시설 및 청년시설 프로그램에서만 가능하다.

② 멤버십 가입 대상자는 청년으로 한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년정책사업 참여자 등 청년시설 및 청년정책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멤버십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멤버십 가입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1. 멤버십 회원 대상 청년정책 정보

2. 청년시설 행사 및 이벤트 참여 우선권

3. 청년시설 이용에 따른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⑤ 청년정책 및 청년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멤버십 마일리지 적립도가 우수한 청년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13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인식 확산과 청년시설 활성화를 위해 간행물 또는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이벤트에 참여한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홍보 방법 및 홍보 물품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4조(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자 선정)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입주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자 선정의 취소)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었거나 입주승인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입주공간에 장기간 상주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사업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자 지원) ① 입주자의 입주공간 임대료는 무료 또는 유료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입주자의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기본시설 및 장비를 센터 내에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청년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년정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청년시설의 구분과 명칭 및 위치(제3조제1항 관련)

구분	명칭	위치
청년창업지원센터	검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인천광역시 검단구 독정로 77

[별표 2]

청년시설 프로그램 참여자의 지원 기준(제6조제3항 관련)

구분	분야	지원내용	지원횟수 및 금액
청년 공간	역량강화	자립에 필요한 법률상담	1인당 연 5회 미만, 50만원 이내
		역량강화 프로그램	1인당 연 1회 30만원 이내
		청년 강사 양성과정 (강사료, 소모성 물품구입비, 진행비, 홍보비 등)	1인당 연 1회 50만원 이내
	문화·예술 건강	정신건강관련 상담 (화상상담 포함)	1인당 연 4회 미만, 40만원 이내
		문화·예술 프로그램	1인당(건당) 5만원 이내
		건강 프로그램	1인당(건당) 10만원 이내
	네트워킹 및 활동 지원	소모임 활동비 (강사료, 소모성 물품구입비, 진행비, 홍보비 등)	3인 이상을 구성원으로 하는 공동체 팀당 60만원 이내
		모래알 정책실험 프로젝트	프로젝트 당 200만원 이내
		간담회 또는 좌담회 등	식비 또는 다과비 지급 (매식비 기준 단가)
		활동지원 프로그램	1인당(건당) 10만원 이내

[별표 3]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 기준(제12조제4항 관련)

구분	항목		마일리지 범위	1일 제공(사용) 한도	비고
청년 공간	적립	검단구 청년센터 출석	500점 이내	-	1일 1회
		검단구 청년센터 홍보 (공간 및 프로그램)	2,000점 이내	4,000점 이내	
		멤버십 친구 추천	2,000점 이내	4,000점 이내	본인 멤버십 가입 당일 친구추천 인정 불가
		행사 참여	2,000점 이내	4,000점 이내	
	사용	커피 1회 이용권	500점 이내	멤버십 한도 내	
		굿즈 교환	20,000점 이내	20,000점 이내	개당 3,000원 범위 내의 굿즈
		청년참여확대 및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참여	40,000점 이내	40,000점 이내	

[별표 4]

홍보방법 및 홍보수단 등의 세부기준(제13조제2항 관련)

홍보 방법	시기	대상	홍보 물품	지급 기준	제공 액수 한도 (1회당)	
					1인당	총액
공모전	연 2회 이하	참여자	검단구 지역상품권 (경품) 또는 굿즈	수상자 및 참가자	1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온·오프라인 이벤트	연 12회 이하	참여자	검단구 지역상품권 (경품) 또는 굿즈	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홍보이벤트 등 참여자	2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관계법령 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1.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 ④ 생략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년 기본 조례안

1. 제안이유

2026. 7. 1. 검단구 출범으로 인한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3조)
- 나.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참여단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안 제8조)
- 다. 청년정책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라. 청년의 참여 확대 및 능력 개발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안 제19조)
- 마.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 바. 관련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년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청년정책 사업의 개별적 성격,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대상 연령을 다르게 할 수 있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경제·사회·교육·문화적 환경을 마련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는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수행 및 발굴
3.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
4.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안정 방안

라. 청년 문화의 활성화 방안 및 일자리 질 향상

마. 청년의 생활안정과 건강증진 지원

바. 청년의 권리보호 방안

5.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시행할 때에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청년정책위원회)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하여 여러 계층의 사람들로 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변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의 의원 2명
2. 구의 청년지원 등 담당부서 국장 1명
3.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4.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

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 활동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경우
3.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 사퇴할 경우
4.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위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⑧ 정기 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청년정책 업무담당이 된다.

⑩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⑪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청년참여단) ① 구청장은 청년들의 구정참여와 정책 발굴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년참여단(이하 “청년참여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을 공개모집하여 청년참여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청년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청년문화 등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청년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청년

② 청년참여단은 단장 1명과 남·여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단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청년참여단은 청년 의견 수렴과 청년문제 및 청년정책과 관련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함은 물론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 거버넌스의 파트너로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청년참여단에서 제안된 정책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구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청년참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야별 분과를 둘 수 있다.

⑦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단원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단원 활동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경우

3.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단원 스스로 사퇴할 경우

4.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단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⑧ 구청장은 청년참여단 활동에 참여한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구청장은 단원의 능동적인 청년참여단 활동 촉진 및 우수한 청년 정책 제안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캠페인, 워크숍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의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⑩ 그 밖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청년참여단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확대와 권익증진, 그 밖에 청년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참여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의 참여확대와 학습 및 경험의 축적을 지원하는 사업

나. 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의사반영 및 참여보장

다. 사회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청년활동의 촉진 및 활성화 지원사업

라. 구의 전반적인 청년정책 홍보사업, 청년 에디터(서포터즈) 운영에 따른 실비, 원고료 등 활동비 지원(별표 1. 가 기준에 따름)

2.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

나. 취업애로 및 사회·경제·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사업

다. 창의적·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지원

라. 어학 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및 국가공인자격증 시험의 응시 비용 지원사업(별표 1. 나 기준에 따름)

마. 4차 산업혁명 관련 메이커(가상현실, 빅데이터, 3D프린터, 드론, 로봇 등) 교육훈련(별표 1. 다 기준에 따름)

3. 고용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법령에 따른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불일치 해소

나.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서비스 사업

다. 창업 육성을 위한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 창업기반 조성 및 창업 자금

비용 지원(별표 1. 라 기준에 따름)

라. 비정규직 고용차별 개선과 일자리의 질 향상 및 근로환경 개선사업
 마. 그 밖의 청년 미취업자를 위한 인력양성사업 등

4. 주거와 생활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또는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 청년주거안정 및 환경 개선 지원사업
 나. 보건, 안전, 결혼, 보육 등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의 발
 굴 및 해소에 필요한 사업
 다. 부채가 있거나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채무자의 권리
 구제 및 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

5. 청년문화의 활성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사업
 나. 청년의 문화예술의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활동 장려에 필요한 사업
 다. 청년문화 특화 거리·공원의 조성 및 청년문화축제의 개최

6. 권리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환경조성
 나.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홍보 사업

7.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정책 회의, 포럼 및 청년공동체 활성화 워크숍 개최
 나. 청년시설의 설치, 보수·보강 및 시설·환경 개선 지원사업
 다. 청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제10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청년발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경우 청년시설을 설치·운영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청년시설에 대한 세부 운영사항 등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년활동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개인, 단체(기관) 및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캠페인, 프로그램 운영 등의 행정적 지원 및 실비, 활동비 지급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별표 1. 마 기준에 따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① 구청장은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창의적·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청년의 고용확대 및 안정 등) ① 구청장은 법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민간기업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청년고용 지표를 연구·개발하여

시 및 출자·출연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공공구매 등과 연계함으로써 청년고용을 촉진시키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려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에 있는 청년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청년의 주거안정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임차보증금 및 차임의 보조 방안 등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또는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청년의 부채경감 등) ① 구청장은 부채가 있거나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한 금융소비자 교육과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준을 위반한 금융관행에 피해를 입은 청년 채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청년의 생활안정) ① 구청장은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생활안정 지원 방안에는 보건 및 안전, 결혼 및 보육 등의 지원이 포함된

다.

제18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청년의 권리보호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① 구청장은 청년 지원 및 청년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청년기본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청년의 날과 청년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 및 교육·홍보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날을 기념하여 청년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청년 또는 단체에게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라 검단구 청년상을 포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 및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청년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참여한 구성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관련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기업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기업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기관, 기업 및 단체 등에서 금전 또는 그 밖에 재산 등을 제공할 경우 참여자 선정 및 홍보활동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청년정책 활성화 시책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의 권익증진 및 발전을 위하여 청년정책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9조제1항 및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구민들에게 제공하는 등의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별표 1. 사 기준에 따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가. 청년에디터(서포터즈) 지원 기준(제9조제1호 라목 관련)

1. 지원대상 : 청년에디터(서포터즈)
2. 지원내용 : 청년에디터(서포터즈) 활동비(원고료, 실비)
3. 지원횟수 및 금액

가. 원고료 : 1인당 월 10만원 이하

나. 실비 : 교통비, 식비

※ 실비 지급기준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름

나.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기준(제9조제2호 라목 관련)

1.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검단구 거주 청년
2. 지원내용 : 자격시험 응시료 실비(본인부담액)
3. 지원횟수 및 금액 : 당해연도 인천광역시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계획에 따름
4. 자격시험 종류 : 어학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공인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 국가공인민간자격증)

※ 단, 국가공인자격증은 큐넷, 민간정보자격서비스(공인)에서 검색되는 자격증에 한함

다. 4차산업 관련 메이커 교육 훈련 지원기준(제9조제2호 마목 관련)

1.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검단구 거주 청년
2. 지원내용 : 4차산업 분야 교육 훈련비
3. 지원횟수 및 금액 : 1인당 연 1회 350만원 이하

라. 창업 자금 비용 지원기준(제9조제3호 다목 관련)

1. 지원대상 : 3년 이하 초기(예비) 청년창업가 또는 청년창업팀
2. 지원내용 : 사업개발, 마케팅, 운영 등을 위한 초기 창업기반 구축비
3. 지원횟수 및 금액 : 1팀당 월 30만원 이하, 1년간 지원

※ 지원기간은 창업 실적에 따라 1년 추가 지원 가능(총 2년에 한함)

마. 청년 활동 활동비 지원기준(제11조제1항 관련)

1. 지원대상 : 청년, 청년단체,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개인, 단체(기관) 및 법인
2. 지원내용 : 청년 활동 활동비(멘토비, 실비)
3. 지원횟수 및 금액

가. 멘토비 : 1인당 월 10만원 이하

나. 실비 : 교통비, 식비

※ 실비 지급기준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름

바. 협약 내용에 따른 세부기준(제21조제2항 관련)

구분	제공기관	시기	대상	제공방법 및 기준	지급수단	제공 액수 한도(1회당)	
						1인/1팀당	총액
임대료, 체험료, 관람료, 이용료, 숙박료 등	협약기관	협약기간	당첨자/ 선정자	당첨/선정 기준에 따라 당첨/선정된 자	시설물 이용권 또는 실비	월3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 임대료 지원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함

사. 홍보방법 등 세부기준(제22조제2항 관련)

구 분	시기	대 상	지급방법 및 기준	지급수단	제공 액수 한도(1회당)	
					1인당	총액
SNS 이벤트	연 12회 이하	참여자	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홍보이벤트 참여자	지역화폐 또는 굿즈	2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퀴즈 및 게임	연 12회 이하	참여자	청년정책관련 퀴즈 및 게임 참여자	지역화폐 또는 굿즈	2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설문 및 토론	연 6회 이하	참여자	청년정책관련 설문 및 토론 참여자	지역화폐 또는 굿즈	2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 굿즈란 청년이 운영하는 사업장(인천광역시 검단구 소재)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말함

관계 법령 발췌

□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1.>

제7조(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청년발전 및 청년지원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청년의 날을 지정하고, 청년의 날부터 1주간을 청년주간으로 한다. <개정 2023. 3. 21.>

[제목개정 2023. 3. 21.]

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2. 청년정책의 추진목표

3. 청년정책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

4.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5. 청년정책에 관한 기능의 조정

6.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7.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에는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3. 21.>

④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 결정과정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위원회(개별 사건을 다루거나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되는 등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는 제외한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되,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및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3. 21.>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갖춘 청년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제15조의2에 따른 청년인재의 자격을 갖춘 청년을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1.>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청년 참여 현황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1.>

⑤ 국무총리는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청년 참여 현황을 공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1.>

⑥ 국무총리는 청년정책과제의 설정·추진·점검을 위하여 청년정책 전문가와 다양한 청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1.>

제24조의2(청년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을 청년단체 또는 청년발전을 위하여 활동하거나 기여한 법인·단체(이하 “청년단체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및 위

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21.]

인천광역시 검단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2026. 7. 1. 검단구 출범으로 인한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적용범위(안 제1조~제4조)
- 나. 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다.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라.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마. 업무의 위탁, 행·재정 지원, 실적보고, 검사·감독, 재정지원의 취소 중지, 포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업취약계층”이란 학력·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말한다.
3. “청년”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4. “고령자 및 준고령자”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 활동을 촉진하여야 하며, 일자리 창출 정책의 발굴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자리 창출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자리 창출대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목표와 방향
2. 일자리 개발·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종합계획과 조화로운 연도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창출 관련 전문기관·단체, 관내 기업,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2. 지역 특화 맞춤형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의 창업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취업취약계층 및 청년, 여성, 고령자, 준고령자 등 계층별 일자리 창출 사업
5. 일자리 창출 사업의 참여기업에 대한 각종 재정지원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일자리지원센터 운영) ① 구청장은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일자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
2. 구인업체 발굴
3. 채용행사 개최 및 각종 부대행사 진행
4. 취업 컨설팅 및 교육 등 구직자 역량강화 사업
5. 일자리지원센터 홍보
6. 그 밖에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취업지원서비스 홍보의 효율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1인당 3만원 이내의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구직 상담자 및 구인 기업관련자
2. 채용행사 참여 기업관련자 및 구직자
3. 취업 컨설팅 등에 따른 강사 및 교육생
4. 취업지원 사업 참여자
5. 그 밖의 일자리분야 유관 기관 담당자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무 중 일부를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행정·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

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6조에서 정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2.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3. 기업 및 구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관련 정보·교육·홍보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4. 제8조에서 정한 업무의 위탁에 따른 경비와 사업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일자리 창출 지원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등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실적보고 등) 제9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 사업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이 완료된 때
2. 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제11조(검사·감독)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 등에게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업자 등에게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 또는 감독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의 취소 중지 및 반환)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 또는 중지하며, 해당 사업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법령 또는 보조금 지원 조건에 위반 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 시행 이후 사업을 축소한 경우
4. 각종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6. 제12조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 요구를 거부한 경우
7. 그 밖에 자금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별도계정)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 등은 사업 지원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포상)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관·단체·개인을 선정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2026. 7. 1. 검단구 출범으로 인한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검단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나.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회의 개최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8조)
- 다. 관계기관 등의 협조 및 성실히행 의무(안 제10조 ~ 안 제11조)
- 라. 노사민정 협의회 운영에 따른 기타 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안 제1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붙임 참조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 또는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고용심의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미 심의한 경우 협의회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노사민정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을 대표하는 사람

④ 구청장은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같은 수로 위촉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협의회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협의회 업무 담당이 된다.

제7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회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본다.

② 협의회회의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3. 위원이 해당 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회의개최) ① 협의회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가 제2항에 따른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각 2분의 1 이상 출석이 있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⑤ 긴급 사안은 서면으로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협의회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당사자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협의회로부터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 받은 관계 당사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성실히행의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시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구,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12조(의안의 제출)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20일 전까지 노동관련 기관과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토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과 위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관계자에게 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안건의 배부) 협의회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 개최 3일 전에 각 위

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회의 그날에 배부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 및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4. 16.>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1명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 <개정 2012. 4. 16.>

④ 협의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2. 4. 16.>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고용노동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고용심의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미 심의한 경우 협의회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6.>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구성·운영, 하부 협의체 및 사무국의 설치·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 4. 16.>

□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①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역고용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고용심의회로 볼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7조(지역고용심의회) ① 지역고용심의회 심의 사항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고용심의회 의결을 거쳐 지역고용심의회에 시·군·구 고용심의회를 둘 수 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회적경제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2026. 7. 1. 검단구 출범으로 인한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4조)

나. 구매촉진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11조)

라.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마.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로지원 및 판매 활성화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안 제14조)

바. 사회적경제기업 구매실적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회적경제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등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주된 사업소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그 밖에 공유경제, 공정무역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단체, 이 경우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

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하부행정기관
2. 구 의회사무국
3.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단
4. 구에서 조례로 설립하고,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제5조(구매촉진 시책의 추진)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방향
2. 사회적경제기업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한 전략적 시장개발
3.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등에 관한 소비자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민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구매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3월 말까지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매계획의 총구매액에 대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목표율 등
2. 계약 특수조건에 관한 규정, 구매실적 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구매계획의 이행에 드는 예산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구매실적의 공표) ① 구청장은 구매계획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실적을 집계하여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우선구매 등) ① 공공기관 등은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보조금을 받아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하는 단체와 기관에 대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④ 제3항의 계약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9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대상자 선정기준) ① 공공기관 등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회적 가치 등 평가사항을 반영하여 우선구매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사회 활성화 기여도

3. 지역사회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참여 및 공동체 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 실적

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 실적 등

제10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예외)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 하지 않을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5.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경우

6. 그 밖에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않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한 경우

제11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사회적경제에 관한 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정보제공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과 관련한 정보 수집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로지원)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시장개척과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전시·박람회·행사 등 개최, 참가 및 판매장 운영 또는 지원에 관한 사업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유통망 구축, 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에 관한 사업
3. 사회적경제기업의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사업
4.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매 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구에 소재한 공공기관,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기업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른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재화와 용역을 사용·이용하고 홍보하는 체험단 등(체험단이란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을 무료로 지원받아 체험하고 사용 후기를 홍보하기 위해 공개모집에 선정된 사람들을 말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13조제1호에 따라 전시·박람회·행사 등 개최 시 참석자에게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해 홍보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⑥ 구청장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제품을 지원하거나 홍보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제15조(포상)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 및 단체, 개인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 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홍보제품 등 세부기준(제14조제6항 관련)

구 분	시 기	지급범위	지급방법 및 기준	지급수단
전시회, 박람회, 행사 등	개최 시	매회 2만원 범위	방문자 또는 이벤트 참여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1인 2만원 범위)
체험단 운영	운영 시	매회 체험단 1인당 25만원 범위	체험단에 선정된 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1인 25만원 범위)

관계 법령 발췌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①국가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익을 사회적기업의 유지·확대에 재투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을 취할 수 없다.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2. 1.>

[전문개정 2010. 6. 8.]

인천광역시 검단구 생활임금 조례안

1. 제안이유

2026. 7. 1. 검단구 출범으로 인한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생활임금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나. 생활임금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생활임금의 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생활임금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기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써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 ② "생활임금액"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구"라 한다)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생활임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 ③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고시되는 임금을 말한다.
- ④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구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 ⑤ "사용자" 및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 ⑥ "소속 노동자"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직접 고용한

노동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소속 노동자와 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2. 구로부터 그 사무 및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 및 하수급인(「지방자치법」 제117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위임 또는 위탁 받은 사무의 일부를 다시 위임 또는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노동자
2. 지방공무원의 임금체계를 적용하거나 준용하는 구 소속 노동자
3.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인천광역시 검단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노동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생활임금액은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한다.

제6조(생활임금 사전고지 등) ① 구청장은 공공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공고할 때 생활임금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그 노무비의 노임단가가 이 조례에 따라 정한 생활임금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액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
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4. 근로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
5.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 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노동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노동관계법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적용 범위)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2026. 7. 1. 검단구 출범으로 인한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10조)
- 라.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6조)
- 마.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7조~제2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및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고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 소비하는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과 이와 관련된 중간지원조직 등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나. “예비사회적기업”이란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중앙부처장 또는 인천광역시장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육성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다.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 인천광역시에

서 선정하고 중앙부처에서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라.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마. “자활기업”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

바.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역할,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시행)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조직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조직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재정,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조직 및 유관기관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제17조의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사회적기업 등과 관련한 업무부서의 국장 및 복지업무 담당 국장
2. 학계 등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3. 사회적경제조직의 현장 활동가
4.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의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의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또는 법률사무소가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또는 법률사무소가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 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의결 또는 조정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는

경우에 그 사유를 적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사건이 접수되는 즉시 제2항에 따른 제척신청과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을 사건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위원에게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1조(경영지원 등)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 등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도·감독 결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재정지원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13조(교육훈련 지원 등)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위하여 구분청,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등의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구청장은 민간기업 및 단체 등이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민간기업·대학·단체 간 교류·협력 거버넌스의 구축 및 활동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제16조(홍보 등)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한 홍보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제17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육성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계획 수립 지원
2.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지원
3. 사회적경제조직 및 지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4. 사회적경제조직 생산품 및 서비스의 판로지원
5.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원
6. 경영, 노무, 법률, 회계, 마케팅, 브랜드 강화 등 경영지원 활동
7.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심사 및 감독 지원
8. 참여기관 종사자 및 구민 교육·홍보 지원
9.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9조(지원센터의 위탁관리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구 출연기관이나 제18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회적경제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위탁계약 및 기간) ①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및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재위탁을 희망하거나 포기할 때는 계약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재위탁 여부에 대하여 계약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알린다. 또한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이

라도 위탁 운영을 더 이상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과 관련한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계약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조례에서 정한 사항,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된 경우와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설, 장비, 비품 등 구에서 지원한 물품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수탁계약 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센터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교부받았을 때
2. 수탁자가 관련법령 및 조례를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수탁자가 제20조의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5. 수탁자가 제21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6.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3조(위탁의 해지) 위탁계약 기간 중 법령이나 조례의 개폐 및 제정으로 지원센터의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4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운영 실태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종사자의 징계요구, 지원센터의 운영정지·시설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①국가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익을 사회적기업의 유지·확대에 재투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을 취할 수 없다.

제11조(시설비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제16조의2(사회적기업의 날) ① 국가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기업가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7월 1일을 사회적기업의 날로 하며, 사회적기업의 날부터 1주간을 사회적기업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6. 8.]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2026. 7. 1. 검단구 출범으로 인한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5조)

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장애인기업의 우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7조)

라. 구매촉진 및 홍보,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관내기업"이란 주된 사업소가 검단구에 소재한 장애인기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인기업 생산 제품 홍보 및 판매 촉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구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2.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
4. 구 지원금 불법사용 등 공공성 훼손기업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기업
6.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는 등 실질적 운영자가 아닌 사람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업
7. 그 밖에 구청장의 지원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기업

제6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2. 장애인기업의 제품 판로 지원
3.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등 개최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장애인기업의 우대)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 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물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2. 「인천광역시 검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용자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가 시행하는 기업에 대한 시책에 참여하는 경우

제8조(구매촉진) 구청장은 법령에 따라 우선 구매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 또는 제공하는 물품의 구매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홍보)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3.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이나 개인·단체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3. 21., 2022. 10. 18.>

1. “장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2. “장애인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나.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고용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기금의 조성, 용도 등(안 제3조 ~ 안 제5조)
- 나.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수당 및 여비 등(안 제7조 ~ 안 제10조)
- 다. 용자신청, 용자조건 등(안 제13조 ~ 안 제18조)
- 라. 결산 및 보고(안 제2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외 현금(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관리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융자지원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3. “이자차액보전금”이란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대출한 융자금의 이자 중 중소기업을 대신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이자액을 말한다.
4.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이란 재해피해, 환율 및 보호무역 등 대외 수출 환경의 변화, 원자재 가격의 급등, 범유행전염병, 기술유출이나 특허분쟁 등의 산업피해 등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로 일시적으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말한다.

5. “재해피해”란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2조에 따른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50억원 이상 조성하여야 하며 필요 시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구청장과의 협약에 따라 지정된 구금고가 관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정기예금 등으로 관리한다.

③ 중소기업에 대한 기금 용자 규모는 구청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른다.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용자
2. 중소기업에 대한 용자 재원 조성을 위하여 구금고에 예탁
3. 금융기관의 용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4. 중소기업 제품의 기술개발과 판로개척 등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제4호는 전년도 이자수입 범위에서 집행하며, 잉여금 등은 기금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할 수 있다.

③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금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기금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이하 “검단구의회”라 한다) 의원 1명 이내

2. 구 금고 검단구청지점장

3. 신용보증기금 지점장

4. 그 밖에 지역 경제와 관련되는 기관·단체 인사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

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 계획 수립,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 융자 계획 수립 및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기금 운용 계획 수립 및 융자 시기에 맞추어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융자지원 대상) 기금의 융자지원 대상은 구 관내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우대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성 기업
2. 장애인 기업
3. 검단구 이전 기업(이전 발생일 후 1년 이내)
4. 구 기업인상 또는 구민상 수상 기업
5. 구 경제단체 가입기업
6. 고용 기업(당해년도 1인 이상 구 주민 신규 고용기업)
7. 청년 기업
8. 중소기업협동조합
9. 사회적경제조직(사회적마을자활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10. ESG경영 우수 기업
11.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12.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제12조(융자지원 계획의 공고) 구청장은 매년 초에 융자금액 총액, 한도액, 조건, 절차 등 융자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융자지원 신청)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일반자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재해자금)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3. 일반자금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4. 재해자금 사용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5. 재해피해 확인서(별지 제5호서식)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4조(융자지원 대상자 선정) ①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융자지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지원 대상자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융자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융자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융자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융자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대출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융자조건) ① 기금의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5억원 이내에서 기금 사정에 따라 금융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매년 정한다.

② 기금의 대출금리는 일반대출금리보다 3퍼센트 내외로 낮게 정한다.

③ 제2항의 저리융자에 따른 일반대출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이자차액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자차액보전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라 정한다.

⑤ 융자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⑥ 융자절차, 이자불입 또는 상환방법 등은 구청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라 정한다.

제16조(추가융자) 금융기관은 연도 중 수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에서 구청장과 협의하여 추가 융자할 수 있다.

제17조(융자금의 상환) ① 제15조제5항의 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일반 시중은행 연체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② 구청장은 융자지원을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8조(변경사항통보)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그 밖의 기업 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행하였을 때에는 이를 구청장과 금융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사후관리) ① 융자지원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구청장과 금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융자지원 관리 실태조사와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지원 기업의 사후관리 기간은 융자지원 기간으로 한다.

제20조(보고 등) ① 금융기관은 융자상환,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 구청장은 기금 출납을 위하여 기금출납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출납운용관은 기금 업무 담당 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의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결산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서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과,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와 함께 이를 검단구의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일반자금) 신청서

기업 현황	업 체 명				대표자	(한 글)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남 / 여)			
	사업자등록번호 (사업개시일)	(. .)				(연 락 처) 010-			
	본 사	소 재 지				소유구분	자가 / 임차		
		전화번호 (FAX)	()						
	공 장	소 재 지				소유구분	자가 / 임차		
		전화번호 (FAX)	()						
		공장등록여부	등록 / 미등록			면 적	대지 m ² , 건물 m ²		
	종업원수	생산직 명, 사무직 명				주생산품			
	회사홈페이지 (E-mail)	()			연락책임자 (휴대폰)				
기업내용 (백만원)	자산총액			자본총계			부채총계		
	총매출액			수 출 액			부채비율 (%)		
수혜이력	신규(), 1회(), 2회(), 3회 이상()								

대출 현황	신청금액	백만원			대출기간	☐ 2년 (만기일시상환)		☐ 3년 (1년거치 4회 분할상환)		☐ 3년 (균등분할상환)	
	우대기업 (해당사항만 "○")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	검단구 이전기업	검단구 기업인상/ 구민상	검단구경제 단체가입	고용기업 (20)	청년 기업	중소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조직	기타
							고용인원 ()인				
	대출은행	은행 지점			담보 제공 방법	부 동 산 () 신용보증서 () 기 타 ()			대출 금리	%	
	대출 상당 확인	(담보제공방법이 부동산, 기타인 경우) 은행 지점 담당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담보제공방법이 보증서인 경우) 보증금(재단) 지점 담당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융자지원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증명하고, 향후 자금지원 관리 및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청 장 귀하

첨부 서류	1. 일반자금 사용계획서 1부. 2. 최근 결산년도 표준재무제표 1부. 3.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4.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5.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1부. 6. 기타 증빙이 필요한 서류 등

[별지 제2호서식]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재해자금) 신청서

기업 현황	업 체 명				대표자	(한 글)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남 / 여)	
	사업자등록번호 (사업개시일)	(.)				(연 락 처) 010-	
	본 사	소 재 지					
		전화번호 (FAX)	()		소유구분	자가 / 임차	
	공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FAX)	()		소유구분	자가 / 임차	
		공장등록여부	등록 / 미등록		면 적	대지 m ² , 건물 m ²	
	종업원수	생산직 명, 사무직 명		주생산품			
	회사홈페이지 (E-mail)	()			연락책임자 (휴대폰)		
기업내용 (백만원)	자산총액		자본총계		부채총계		
	총매출액		수 출 액		부채비율 (%)		
수혜이력	신규(), 1회(), 2회(), 3회 이상()						

대출 현황	신청금액	백만원	대출기간	☐ 2년 (만기일시상환)	☐ 3년 (1년거치 4회 분할상환)	☐ 3년 (균등분할상환)
	재해구분	☐ 자연재해 ☐ 인적재난 ☐ 사회재난 ☐ 기타()				
	대출은행	은행	지점	담보 제공 방법	부 동 산 () 신용보증서 () 기 타 ()	대출 금리 %
	대출 상담 확인	(담보제공방법이 부동산, 기타인 경우) 은행 지점 상담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담보제공방법이 보증서인 경우) 보증기금(재단) 지점 상담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융자지원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증명하고, 향후 자금지원 관리 및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청 장 귀하

첨부 서류	1. 재해자금 사용계획서 1부. 2. 재해피해 확인서 1부. 3.. 최근 결산년도 표준재무제표 1부. 4.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4.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5.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1부. 6. 기타 증빙이 필요한 서류 등

[별지 제3호서식]

중소기업육성기금(일반자금) 사용계획서

1. 업체개요

○ 회사연혁

년 월 일	주 요 내 용	비 고

○ 대표자 주요경력

년 월 일	주 요 내 용	비 고

○ 주 생산품의 개요

제 품 명	특 성 및 용 도

2. 융자금 세부사용계획

○ 융자금의 사용목적 :

○ 융자금 세부사용 계획

(단위 : 백만원)

지출항목	세부내용(산출내역)	금 액	비 고
원부자재구입			
판매관리비			
세금과공과			
운 반 비			
기 타			
계			

○ 융자금 상환계획(구체적으로)

○ 담보 제공 계획(구체적으로)

[별지 제4호서식]

중소기업육성기금(재해자금) 사용계획서

1. 재해 원인 및 현황

재해구분	☐ 자연재해	☐ 홍수 ☐ 태풍 ☐ 지진 ☐ 폭설 ☐ 기타
	☐ 인적재난	☐ 화재폭발 ☐ 전기가스 ☐ 건물붕괴 ☐ 기타
	☐ 사회재난	☐ 화재폭발 ☐ 건물붕괴 ☐ 교통사고 ☐ 감염병 ☐ 기타
재난의 원인 및 현황		

※ 화재 확인서 등 재해입증서류는 별도첨부

2. 용자금 세부사용계획

(단위 : 백만원)

지출항목	세부내용(산출내역)	금액	비고
원부자재구입			
운반비			
합계			

3. 재해복구 계획 및 방안

복구항목	복구방안	복구일정							
		1차년도				2차년도			
		1/4	2/4	3/4	4/4	1/4	2/4	3/4	4/4

[별지 제5호서식]

재해피해 확인서

1. 피해일시

구 분	내 용
재해발생 일시	년 월 일

2. 재해발생 당시 피해상황

구 분	내 용	
피해상황 설명		
피해상황 사진		

3. 피해금액

구 분	내 용	
피해금액 설명		
피해금액 목록	세부내역	금 액
	합 계	

별첨 : 피해금액에 대한 증빙서류

상기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빙서류 제출과 동시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 감정노동자 권익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사업에 불편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노동환경 계획의 수립(안 제5조)
- 나. 감정노동 권리보장 교육(안 제7조)
- 다. 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조치 등(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감정노동자 권익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을 통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노동 형태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한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검단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검단구의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
3. “감정노동자”란 제2호의 기관·시설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및 「근로기준법」 제2조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감정노동 사용자”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공공기관의 장

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

다. 검단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

라. 공공기관과 공사, 용역 및 그 밖에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

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마. 그 밖의 감정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와 그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를 하는 자

5. “고객”이란 감정노동자와 감정노동 사용자가 제공하는 행정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감정노동자, 감정노동 사용자 및 고객에게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노동환경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이하 “스트레스”라 한다) 및 건강장해 예방과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노동환경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정책 기본 방향, 업무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 추진 목표, 실행계획, 소요 재원
2. 감정노동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감정노동자의 건강장해, 사고 현황 및 그 예방
4.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률 준수 및 고위험 직군 보호
5.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와 증진을 위한 타 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 등 노동자

단체, 사용자단체, 민간 단체, 정부 기관 등과의 협력

6. 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강장애와 사고 현황 및 그 예방에 관한 사항

7. 휴일·휴가 및 노동시간 등 감정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준수에 관한 사항

8. 감정노동자의 인권 보호,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 인식개선

9.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해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구청장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 현황 및 노동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는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감정노동 권리보장 교육)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감정노동 사용자와 감정노동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 소속 감정노동자에 대한 교육은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때는 가이드라인, 모범 매뉴얼의 내용을 포함

하여야 한다.

③ 감정노동 권리보장 교육은 인권, 노동, 젠더, 직업의학 등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감정노동자 권리보장 교육을 감정노동 권리보장 분야의 시민단체, 노동단체 또는 국내외기구 등에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조치 등)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및 잦은 이직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검단구에 있는 공공보건 의료기관이나 심리상담 전문기관에서 감정노동자가 상담 등을 하는 경우 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감정노동 사용자는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 등으로 업무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충분한 휴식권의 보장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감정노동 사용자는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에 따라 치료 및 상담, 법적조치 등을 취한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공공기관별 매뉴얼 작성 의무) ① 공공기관은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감정노동자를 인격 주체로서 배려하는 내용의 기관별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때 기관별 매뉴얼에는 지침을 기본으로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기관별 매뉴얼을 전체 노동자에게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고 감

정노동자에게는 별도 배포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5조 제1항의 시행 원칙에 따라 구청장에게 기관별 매뉴얼의 준수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감정노동 관련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 설정
3.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사항
4.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감정노동 고위험 직군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 위원장 또는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에 필요하여 제안한 사항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감정노동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인권, 노동, 젠더, 직업의학, 노동법 등의 분야 전문가, 이 분야에 소속되어 지식이 있거나 연구,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나. 검단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감정노동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4조(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이하 “권리보호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감정노동 권리보장위원회 결정 사항의 집행
2. 감정노동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
3.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4. 감정노동자 또는 작업장 폭력 피해에 관한 상담과 권리구제 지원
5. 지침 및 기관별 매뉴얼의 작성 검토 및 개선을 위한 연구
6. 감정노동 완화를 위한 직무 여건 개선 정책 연구 및 보급
7. 그 밖에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항

② 구청장은 권리보호센터의 업무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공공보건 의료기관이나 심리상담 등 관련 전문기관에서 감정노동자 상담 및 작업장 내 폭력으로 인한 심리 및 정서 지원 상담 등을 시행하는 경우 이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정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교육의 실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매뉴얼 작성, 휴게시설의 설치, 안내문의 부착 등 감정노동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출자·출연 기관의 지정·고시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주무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제2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출자·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다.

1. 출자·출연 기관이 설립된 경우: 신규 지정
2. 출자·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통합·폐지·분할 또는 관계 법령의 개정·폐지 등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지정

인천광역시 검단구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시행계획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다. 홍보 및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층의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 되도록 하여 에너지이용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복지 사업”이란 「에너지법」 제16조의2에 따른다.
2.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란 「에너지법」 제16조의2에 따른다.
3. “저소득층”이란 제5조에 따른 각 가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저소득층의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시행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홍보 계획
3.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가입 독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검단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

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2. 차상위계층
3.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가구
4. 그 밖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가구

제6조(홍보) 구청장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신청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대상자의 원활한 발굴과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에너지법

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등) ①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이하 “에너지복지 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이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라 한다)에 대한 에너지의 공급
2. 냉방·난방 장치의 보급 등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3. 그 밖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 관련 복리의 향상에 관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복지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3년마다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간이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간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간이조사의 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상품 구매권장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사업에 불편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지역상품 구매 권장(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상품 구매권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와 관내 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때 관내 상공인의 상품을 구매 권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지역상품”이란 제1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상품 구매 권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적용대상 기관)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2.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4. 「인천광역시 검단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② 구로부터 보조금 등을 받는 기관·단체·법인·조합·시설 등은 이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제6조(구매 권장)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구매 권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 권장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 권장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 권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5조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
2. 관내 전문건설업(포장, 실내건축, 도장 등) 업체 정보
3. 용역·서비스·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제8조(지역상품 구매 권장) ① 구청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제5조의 기관에 지역상품 구매 권장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권장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① 구청장은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촉진에 기여한 개인·단체 또는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과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세입(歲入)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포함한다]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중소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2026. 7. 1. 검단구 출범으로 인한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3조)

나. 기술개발 지원, 기업활동 지원 및 해외진출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7조)

다. 우수제품홍보관 운영 및 운영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 제11조)

라. 기업관련 단체지원, 근로자 사기진작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안 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중소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해외진출 등과 관련된 기관(단체) 및 관계 종사자에 대한 보조금(사업비)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경영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기업인”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구”라 한다)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기업 관련 단체”란 기업인들이 상호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사업자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벗어난 기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기술개발 지원)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고,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
2. 지식재산 창출 지원
3. 국제지식재산권 분쟁예방 컨설팅 지원
4. 제품인증획득 지원
5. 중소기업 금형제작 개발지원
6. 그 밖에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5조(기업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고,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지원
2. 맞춤형 입찰정보 서비스 운영
3. 기업정보지는 매월 1회 발송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속한 배부를 위해 모사전송 등의 고속 통신수단을 활용한다.

제6조(해외진출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고,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지원
2.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3. 해외지사화 참가 지원
4. 해외시장조사 참가 지원
5. 외국어 통·번역 및 카탈로그 제작 지원
6. 그 밖에 중소기업이 해외진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7조(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추진할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우수제품홍보관 운영)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의 홍보와 판로개척을 위해 우수제품 홍보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품홍보에 대한 질서유지와 홍보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홍보관 공간에 맞게 우수제품을 전시하고, 전시물품에 대하여 널리 홍보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정홍보매체(인터넷, 구정소식지 등)를 활용하여 기업의 제품 소개나 기업소식 등을 널리 홍보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제8조의 우수제품 홍보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중소기업활동 촉진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중소기업활동 촉진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이하 "검단구의회"라 한다) 의원 2명 이내
2.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등 기업관련 단체 중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소기업활동 촉진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사항
2. 입점기업 선정 심사, 입점기업간 분쟁 조정 등
3. 기타 홍보관 운영사항 심사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2조(기업관련 단체 지원) 구청장은 건전한 기업 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업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관리자 세미나 개최
2. 중소기업 한마음 화합행사 지원
3. 중소기업 근로자·가족 화합 한마당 축제 개최
4. 자동차 무료점검 행사 지원

5. 그 밖에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체간 정보교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근로자 사기진작) 구청장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사기진작, 생산성향상 및 노사화합을 위하여 성실히 근무하는 모범근로자에게 산업시찰 등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구청장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노사화합 및 상생분위기 조성으로 생산성 향상과 근로조건 개선, 일자리 창출 등에 적극 기여한 근로자, 노동조합, 사회공헌 활동 기업, 우수기업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6조(다른 조례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교부·사용·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 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2015. 2. 3., 2016. 1. 27., 2018. 8. 14., 2019. 12. 10., 2020. 10. 20., 2020. 12. 8., 2020. 12. 29.>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인천광역시 검단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에너지이용 주체별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7조)
- 나. 에너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 제12조)
- 다. 부문별 에너지절약 및 이용 효율화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안 제16조)
- 라.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안 제18조)
- 마. 지역에너지 계획수립 및 지역에너지센터 설립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 안 제21조)
- 바. 에너지 복지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안 제2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확립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에너지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는 에너지절약 시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자·구민·구민단체 등과 최대한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구는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여야 한다.

④ 에너지 저소비형 지역구조 전환을 위한 에너지 수요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합리적 에너지 이용과 절약 실천을 위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에너지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다.

제2장 에너지이용 주체별 책무

제4조(구의 책무) ① 구는 구 지역 내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용 활성화를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구는 구민·학교·구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에너지시책에 대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고효율형 에너지 절약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구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에너지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에너지의 이용 등에 있어서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이용 방안의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구민단체의 책무) 구민단체는 구의 합리적 에너지 이용시책 추진 시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에너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8조(설치)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에너지 관련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구 공무원, 검단구의회의원, 전문가, 에너지관련 전문기관이나 협회 및 시민단체 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에너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에너지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조정한다.

1. 에너지 관련 기본 시책의 개발 및 평가
2.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사업 선정 및 타당성 검토
3. 에너지 절약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마련
4. 그 밖에 에너지시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회의)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사

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일시·장소 및 토의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부문별 에너지절약 및 이용 효율화

제13조(공공부문 에너지시책) ①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 및 관리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건물 신축 시(증·개축 포함) 고효율 제품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 사용
3. 대기상태에서 전력소비가 많은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에너지절약 마크가 표시된 제품사용
4. 구가 운영·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조명기구 교체·설치 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5.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관리진단 실시

6. 공공기관의 관용차량을 구입할 경우 경차 또는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자동차 우선 구입

7.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② 구청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공사를 계획·시행함에 있어 신·재생에너지 및 저소비·고효율 에너지 절약형 시설의 이용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산업부문 에너지시책) ① 구청장은 사업자가 에너지 절약형 시설과 설비에 투자하도록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위하여 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제15조(건물부문 에너지시책) ① 구청장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방지·에너지 절약계획의 제출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허가단계에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축물의 개·보수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제16조(수송부문 에너지시책) ① 구청장은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 이용, 승용차 부제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 전용도로의 확대, 자전거주차장 등 자전거이용시설의 확충 및 활성화 정책 등을 꾀하여 자전거 이용이 일상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 등

제17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구민·사업자·구민단체·연구기관이 지속가능한 에너지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경우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에 힘쓰는 구민·공공기관·단체에게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공공기관·단체 등에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여 인센티브 지급, 홍보물품 지원, 에너지 절약 캠페인 등의 홍보·교육 등을 할 경우 홍보물품 제작·배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표창 등)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확립을 위하여 에너지 시책에 기여한 공이 있는 공무원·구민·사업자·시민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6장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에너지 계획수립 및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제19조(지역에너지계획)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하며 종합적인 에너지 이용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지역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국가계획과 광역계획에 연동하여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역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국가계획 등)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3.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6. 미활용 에너지원 개발·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7. 에너지취약지역과 에너지이용소외계층(「에너지법」 제16조의2에 해당하여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과 주민을 말한다.)에 필요한 에너지 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에너지 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에너지센터 설립)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1조(센터의 기능) ①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의 추진
2. 에너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에너지포럼 운영(민·관·기업 포럼)
3. 지역에너지 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다음 각 목의 사업 위탁 또는 직접 수행
 - 가. 에너지절약 방안 마련 및 에너지 이용 합리화

나.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이용·보급사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

다. 온실가스 감축 및 미활용에너지 보급·활용

라. 신재생 에너지기술의 사업화에 따른 지원 및 관리

마. 에너지 관련 국내·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바.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

사. 에너지 교육·홍보 지원 및 관리

아. 그 밖에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

② 센터의 조직·인력·예산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③ 에너지센터는 탄소중립지원센터(「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 1항에 의거하여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와 그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장 에너지 복지사업

제22조(에너지 복지사업) ① 구청장은 에너지취약지역과 에너지이용소외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사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에너지 복지정책 및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태양광사업 등 대체에너지 공급지원 시 에너지취약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전기·액화천연가스(LNG)·액화석유가스(LPG)등 에너지 공급 활성화 지원사업
2.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
3. 에너지 진단 및 효율 향상 지원사업
4. 에너지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5. 에너지취약지역의 전기시설 및 냉·난방시설 등 설치 지원사업
6. 에너지취약지역의 에너지 공급지원 사업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에너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연료”란 석유·가스·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熱源)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4. “에너지사용시설”이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 등의 시설이나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에너지사용자”란 에너지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6. “에너지공급설비”란 에너지를 생산·전환·수송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를 말한다.
7. “에너지공급자”란 에너지를 생산·수입·전환·수송·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7의2. “에너지이용권”이란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사람이 에너지공급자에게 제시하여 냉방 및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8. “에너지사용기자재”란 열사용기자재나 그 밖에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9. “열사용기자재”란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기기, 축열식 전기기기와 단열성(斷熱性) 자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소에너지

나. 연료전지

다.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라.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2. “재생에너지”란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생산 또는 이
용하거나 신·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
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
는 것을 말한다.

5.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
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경영시스템”이란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가 에너지이용 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일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경영활동체제를 말한다.
 2. “에너지관리시스템”이란 에너지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센서·계측장비, 분석 소프트웨어 등을 설치하고 에너지사용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에너지사용을 제어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말한다.
 3. “에너지진단”이란 에너지를 사용하거나 공급하는 시설에 대한 에너지이용실태와 손실요인 등을 파악하여 에너지이용효율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에너지법」 제2조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이하 “공급대상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기본계획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2. 제4조에 따른 협의 결과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이 있을 때
3. 그 밖에 공급대상지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인천광역시 검단구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2026. 7. 1. 검단구 출범으로 인한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4차 산업혁명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 및 사회 전반에 총체적 변화를 일으키는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4차 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을 기반으로 하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교육 등 전반에 융합되어 경제·사회구조에 혁신적 변화를 일으키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기술의 공유·확산 및 산업경쟁력의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4차 산업혁명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4차 산업혁명 촉진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4차 산업혁명의 환경 변화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혁명의 현황 및 성장 전망에 관한 사항
4. 4차 산업혁명의 추진 방향 및 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5. 4차 산업혁명 교육·홍보 등 주민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

6. 4차 산업혁명 촉진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등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4차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조정·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4차 산업혁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자문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변경 및 4차 산업혁명 정책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 및 기관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발굴 및 관련 산업 촉진에 관한 사항
4. 4차 산업혁명 촉진 관련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으로 기관·부서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
6. 4차 산업혁명 계획실행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TF 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4차 산업혁명 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경제·사회 등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사람
2.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업·연구소·공공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경제·사회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조정·자문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조정·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조정·자문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조정·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조정·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심신 쇠약, 해외 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

판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7조 각 호의 사항의 조정·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4차 산업혁명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4차 산업혁명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회의 중에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4조(관계자의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문할 수 있다.

제15조(비밀보호)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위원회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4차 산업혁명 정책 및 기술 관련 정보 제공
2.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3.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창업에 관련된 정보 제공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2026. 7. 1. 검단구 출범으로 인한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ESG 경영 활성화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내 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검단구”라 한다)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산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검단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 나. 「인천광역시 검단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산하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ESG 경영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운영지침 마련과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검단구 ESG 경영 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경영 현황과 추진 방향 및 목표
2. ESG 경영과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의 기본원칙, 운영지침, 실태, 평가 및 관리방안, 우수기관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를 객관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의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ESG 경영 활성화)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업과 기관등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
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3. ESG 경영을 고려한 시책의 평가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제9조(성과평가 및 혜택) ①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 평가를 통해 우수 기관에 인증 부여, 포상, 지원사업 우선 적용 등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2조제3호의 산하 공공기관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8조 제1항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평가를 포함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

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 지방공기업법

제78조(경영평가 및 지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경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에는 지방공기업의 경영목표의 달성도,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고객서비스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기업에 고객 명부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공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평가와는 별도로 사장에 대하여 업무성과 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익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지방공기업(시·도지사의 경우에는 시·군·자치구의 지방공기업으로 한정한다)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 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를 조정하고, 해당 지방공기업에 대한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지방공기업의 평가급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8조의5에 따른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3항에 따른 경영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경우
2. 불공정한 인사운영, 비리 등으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지방공기업의 평가급을 조정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 검단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경영실적 평가 등) ① 구청장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경영진단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 말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자율이 성과계약 이행 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경영평가는 주무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에 필요한 경우 출자·출연기관의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전년도 예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인천광역시 검단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사업에 불편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적용대상(안 제4조)
- 나. 지원계획 수립 등(안 제6조)
- 다. 지원사업(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발생 시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주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노동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필수업무와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검단구”라 한다) 소재 각 업종의 일
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
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재난발생 시 검단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
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검단구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에 관한 사항
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노동자 지정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인천광역시 검단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세부적인 허가요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위해방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의 안전과 구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사업을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제1종 보호시설 및 제2종 보호시설을 말한다.

제3조(허가요건 등)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세부적인 허가요건 등은 [별표]와 같다.

제4조(위해방지) 제3조에 따른 허가요건을 완비하였다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 및 주변여건에 위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별도의 조건을 부여하거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검단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관계 법령 발췌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사업의 허가 등)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허가의 기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7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 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원과 기술적 능력이 없는 경우
3. 연결 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5.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도 갖추지 아니한 경우

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급시설(이하 “공급시설”이라 한다)

을 소유할 것

나. 임차 계약 등에 따라 5년 이상 공급시설을 사용·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다.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려는 경우 그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주체가 건설·관리하는 동안에는 그 사업 주체와 임차 계약 등에 따라 공급시설을 사용·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조(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 ①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다만, 용기 또는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로 가스라이터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경우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액화석유가스 제조만 해당한다)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용기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내용적(內容積) 1리터 미만의 용기 및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는 제외한다]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산업

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탱크에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

다. 소형용기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를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

라. 가스난방기용기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

마.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탱크에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바. 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를 배관을 통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저장탱크에 이송하여 공급하는 사업

2. 가스용품 제조사업: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연소기, 강제혼합식 가스버너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을 제조하는 사업

3.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다만, 소규모 수요자에 대한 집단공급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집단공급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제1조의2에 따른 사업

나.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외의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

1) 70개소 이상의 수요자(공동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전체 가구수가 70가구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70개소 미만의 수요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수요자

4.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용기 판매사업: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사업

나. 용기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판매사업: 다음 1) 및 2)의 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

1) 가목의 사업

2)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탱크의 규모 등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저장설비에 공급하는 사업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경우

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액화석유가스의 제조만 해당한다)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경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설비”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저장탱크, 마운드형 저장탱크, 소형저장탱크 및 용기(용기집합설비와 충전용기보관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저장탱크”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

정 설치된 탱크(선박에 고정 설치된 탱크를 포함한다)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이상인 탱크를 말한다.

3. “마운드형 저장탱크”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원통형 탱크에 흙과 모래를 사용하여 덮은 탱크로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마목에 따른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사업 시설에 설치되는 탱크를 말한다.

4. “소형저장탱크”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

5. “용기집합설비”란 2개 이상의 용기를 집합(集合)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용기·용기집합장치·자동절체기(사용 중인 용기의 가스공급압력이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예비용기에서 가스가 공급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와 이를 접속하는 관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6.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란 액화석유가스의 수송·운반을 위하여 자동차에 고정 설치된 탱크를 말한다.

7. “충전용기”란 액화석유가스 충전 질량의 2분의 1 이상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말한다.

8. “잔가스용기”란 액화석유가스 충전 질량의 2분의 1 미만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말한다.

9. “가스설비”란 저장설비 외의 설비로서 액화석유가스가 통하는 설비(배관은 제외한다)와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10. “충전설비”란 용기 또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설비로서 충전기와 저장탱크에 부속된 펌프 및 압축기를 말한다.

11. “용기가스소비자”란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는 제외한다.

가.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연료용,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공업용 또는 선박용으로 사용하는 자

나. 액화석유가스를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자

12. “공급설비”란 용기가스소비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설비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가. 액화석유가스를 부피단위로 계량하여 판매하는 방법(이하 “체적판매방법”이라 한다)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기에서 가스계량기 출구까지의 설비

나. 액화석유가스를 무게단위로 계량하여 판매하는 방법(이하 “중량판매방법”이라 한다)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기

13. “소비설비”란 용기가스소비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설비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가. 체적판매방법으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스계량기 출구에서 연소기까지의 설비

나. 중량판매방법으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기 출구에서 연소기까지의 설비

14. “불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를 말한다.
15. “방호벽”이란 높이 2미터 이상, 두께 12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구조의 벽을 말한다.
16. “보호시설”이란 제1종 보호시설과 제2종 보호시설로서 별표 1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세부허가요건 등(제3조 관련)

사업의 종류	허가요건 등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1. 사업소부지는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도로폭 16m 이상인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허가받은 용기충전업소가 위해방지 및 안전강화를 목적으로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저장설비는 지하에 설치하고 자동차충전시설의 경우 저장설비의 저장능력은 20톤을 초과하여야 한다. 3. 충전사업장의 대지 및 저장·충전설비는 자가소유 또는 임차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 경우는 등기를 하거나 공증된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한 【별표 4】 제1호가목 1)의 다), 라), 마)에 따른 안전거리의 2배를 적용한다. 5. 변경허가 대상 중 안전강화를 목적으로 동일부지 내에서 노후된 저장설비 또는 가스설비의 위치변경, 저장설비의 용량증가 또는 가스설비의 수량증가 등 시설의 변경시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1. 허가는 전용·준공업지역에 한한다. 다만, 기존 허가받은 업소가 공공사업시행지구내에 포함되어 이전할 경우에는 녹지·관리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다. 2. 용기보관실의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한 【별표 5】 제1호가목에서 정한 기준의 2배를 적용한다. 3. 판매업소 부지는 도로폭 8m 이상인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용기보관실 38㎡이상, 사무실 18㎡, 주차면적 23㎡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업소가 공공사업시행지구내에 포함되어 이전할 경우에는 도로폭 4m 이상인 도로에 접한 부지로 이전할 수 있다. 4. 판매업소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1종 보호시설을 포함한 건축물에 설치할 수 없다. 5. 용기보관실은 「건축법」에 의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설치하여야 한다. 6. 변경허가 대상 중 안전강화를 목적으로 동일부지 내에서 저장설비를 변경할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신규허가 시 판매업소 상호 간 안전거리는 부지경계 기준으로 직선거리 1,000m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사업에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3조)
- 나.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7조)
- 다. 여성경제인 단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기업의 본점이나 공장 또는 연구소가 소재하고 있는 기업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구 여성기업의 임원으로 그 기업의 최고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여성경제인단체”란 구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구 여성기업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제4조(지원활동 등)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성 친화적 업종에 해당하는 분야
2. 여성전문인력의 경제활동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분야
3. 신제품의 개발이나 신기술 도입 등 여성기업의 육성분야
4. 여성 고용창출을 위한 신산업 발굴 분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2.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

제5조(자금지원 우대) 구청장은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경우,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제6조(구매활동 촉진 등) 구청장은 여성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설정 및 구매 시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제7조(기술력향상 및 판로개척 등) 구청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제8조(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 작성) ① 구청장은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를 작성하여 여성기업 지원시책의 기본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여성경제인 또는 여성경제인단체가 구청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1항에 따른 명부등재를 요구할 경우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9조(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구청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기업의 경영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구 관내에 있는 여성경제인단체의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유공자 표창) 구청장은 여성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기업의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사업에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2조)

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와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3조~5조)

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안 제6조~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다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른 소상공인, 「소비자생활 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육성 및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로서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 공동사업의 플랫폼으로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협동조합간의 협력)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관련단체와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도와 각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실시하는 경우에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영지원 등)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교육훈련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판로촉진) 구청장은 검단구 또는 지방공기업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10조(공동사업)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 시장개척

제11조(포상)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및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을 영위하는 자
- 나. 중소기업협동조합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백년소상공인”이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으로서 제16조의 요건을 갖추고, 제16조의2에 따라 지정된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사업승계”란 소상공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 합병, 상속을 통하여 그 소상공인의 영업상의 권리·의무를 다른 자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

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연계기업”이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물적·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5. “연계지방자치단체”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기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상호간 협동에 기반하여 물품·용역·시설 등의 공동구매와 이용, 판매를 자주·자립·자치적으로 수행하는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

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말한다.
2. “연합회”란 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를 말한다.
3. “전국연합회”란 조합과 연합회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를 말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사업에 불편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안 제5조)
- 나.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금융지원(안 제6조)
- 다. 공동사업의 지원(안 제1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2022~2024년 예산에 7.5억원 반영되었음(3년간 분할)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예산법무과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시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형소공인”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공인일 것

나.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으로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도시형소공인의 지원에 관한 시책)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의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통계자료 조사 등) ① 구청장은 지원계획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조사·작성·분석 및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도시형소공인 및 관련 기관과 단체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조사·작성·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 ① 구청장은 도시형 소공인을 양성하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시형소공인 숙련기술 습득과 고도화를 위한 교육
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및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3. 도시형소공인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확대 지원
5. 퇴직근로자 등의 숙련기술 전수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사업

제6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금융지원)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이하 “집적지구”라 한다)에 있거나 집적지구로 이전하는 도시형 소공인에 대하여 자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구청장은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 및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공동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2. 사업장 등에 관한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3. 공동창고, 교육시설,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
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동과 사업장 등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정

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의 설치·보수

5. 그 밖에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발전과 기술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시형소공인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도시형 소공인에 대한 기술정보의 조사 및 제공
3. 도시형소공인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도시형소공인에 관한 일자리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5.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교육·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인력을 지원센터에 두어야 한다.

제9조(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공인 관련 분야의 법인 및 단체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운영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①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작업환경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위해요소를 측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의 지원 대상·한도, 절차 및 사후 관리 등

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공동사업의 지원)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 등 조직화 지원사업
2. 공동사업 수행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법인을 포함한다)와 중소기업과의 연계지원 사업
3. 제품, 디자인의 개발 및 기능 개선 등에 관한 사업
4. 생산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공동장비 등에 관한 사업
5. 구매, 물류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 등에 관한 사업
6. 홍보, 브랜드, 판매장의 설치 등 공동판로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형소공인의 공동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보조금 지원)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사회적 인식의 제고)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도시형소공인과 보유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백년소상공인”이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으로서 제16조의 요건을 갖추고, 제16조의2에 따라 지정된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사업승계”란 소상공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 합병, 상속을 통하여 그 소상공인의 영업상의 권리·의무를 다른 자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도시형소공인의 업종)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의 중분류에 해당하는 영업의 종목(이하 “도시형소공인 업종”이라 한다)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2026. 7. 1. 검단구 출범으로 인한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및 청년기업 지원 사업, 청년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다. 인증절차 및 인증서의 발급 등,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라. 청년기업 인증에 관한 세부 기준 등, 청년기업 제품의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1조)

마. 구매촉진 지원,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 12조~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년기업의 창업 및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할 것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일 것
3.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자로서 경영할 것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청년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검단구 청년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전략
2. 청년기업 지원 사업의 추진 방안
3.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청년기업 지원 사업)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육

성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기업에 대한 자금, 기술 및 창업 공간 등의 지원
2.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청년기업 인증) ①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려는 청년기업은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청년기업 대표자의 나이가 39세를 초과 하더라도 유효기간 동안에는 효력을 인정한다.

제7조(인증 절차) ① 청년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기업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청년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청년기업으로 인증한다.

제8조(인증서의 발급 등) ① 구청장은 청년기업으로 인증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업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청년기업은 대표자나 기업의 소재지 등 인증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인증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 취소) 구청장은 청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도·폐업 그 밖의 사유로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2. 대표자 변경, 기업 소재지 이전 등으로 청년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

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제10조(청년기업 인증에 관한 세부 기준 등) 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기업 인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청년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구청장은 재화나 서비스 등을 구매할 경우에 청년기업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구매촉진 지원) 구청장은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과 구매촉진 협약을 맺을 수 있다.

제13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 사업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 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2015. 2. 3., 2016. 1. 27., 2018. 8. 14., 2019. 12. 10., 2020. 10. 20., 2020. 12. 8., 2020. 12. 29.>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인천광역시 검단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2026. 7. 1. 검단구 출범으로 인한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나. 1인 창조기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1인 창조기업 육성·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설립의 촉진 및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1인 창조기업이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기업으로서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1인 창조기업의 범위) 1인 창조기업의 범위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및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본다.

제4조(1인 창조기업의 인정 제외) 구청장은 1인 창조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인 창조기업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1인 창조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였을 경우
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5조(1인 창조기업 육성·지원 계획) ① 구청장은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 창조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2. 1인 창조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3. 1인 창조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1인 창조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사업 등) 구청장은 1인 창조기업의 성장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지원
2. 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가진 1인 창조기업의 선정 및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3. 1인 창조기업의 사업 중 구청장이 특화시키고자 하는 사업
4. 1인 창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 참가 등의 지원 사업
5. 1인 창조기업의 성공사례 발굴 및 포상,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업

제7조(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단, 지원센터의 명칭은 1인 창조기업의 성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작업공간 및 회의장 제공

2.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경영·법률·세무 등의 상담

3.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운영장비 제공

4.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필요 물품 제공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인 창조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전문성과 의지를 갖춘 창업관련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선정 및 지휘·감독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거나 담당부서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조세에 대한 특례) 구청장은 1인 창조기업에 대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1인 창조기업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중요한 재정지원 사항

3. 1인 창조기업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

4.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자문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1인 창조기업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의원 1명

2. 1인 창조기업 담당 국장

3. 1인 창조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창조산업 각 분야의 전문가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1인 창조기업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결과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장기 출장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부적절한 이해관계 연루 또는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5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자문단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에 입주한 1인 창조기업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창조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6명으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② 자문단은 다음 사항을 자문·지원한다.

1. 지원센터 입주회원 에 대한 정기적인 멘토링
2. 지원센터 입주회원 관리에 따른 주요사항 자문

제17조(예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와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및 자문단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청년 1인 창조기업”이란 39세 이하인 청년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1인 창조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1인 창조기업 인정의 특례)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인 창조기업으로 본다. 다만, 1인 창조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1인 창조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3. 1인 창조기업, 청년 1인 창조기업 등 대상별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1인 창조기업 관련 통계 조사·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육성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기업 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2026. 7. 1. 검단구 출범으로 인한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나. 근무환경 개선, 산업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다. 기업 애로사항의 해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라. 기업체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부패영향평가), 가정보육과(성별영향평가)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기업 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공공시설 및 산업인프라 개선을 도모하고 경영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산학융합지구, 첨단투자지구를 말한다.
2. “공업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3. “산업기반시설”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용수공급시설, 교통·통신 시설, 에너지시설, 유통시설 등 기업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기초적인 시설을 말한다.
4. “관리기관”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관내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기업과 산업기반시설이 적용대상이며,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반시설을 확충·정비하고, 산업단지 재생 및 구조고도화를 지원하는 등 기업환경 개선과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근무환경 개선 지원) ① 구청장은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내 기업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 정비, 근로자 복지 편의시설 지원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인천광역시 및 관계기관의 국비·시비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산업기반시설 정비) 구청장은 경영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산업기반시설 정비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로, 주차장, 대중교통 등 교통·물류 인프라 정비 및 확충
2. 도시미관 정비, 환경 개선
3. 산업 집적화 촉진
4. 그 밖에 산업기반시설 정비 시책

제7조(기업 애로사항의 해결지원) ① 구청장은 협의회, 기업인 간담회, 기업체 현장 방문, 전화·인터넷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 건의 및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업 건의 및 애로사항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추진상황을 점검·관리하는 등 기업 애로사항이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8조(기업체 정비사업 지원) 구청장은 기업 또는 산업단지 관리기관·공업지역

내 협의회를 포함한 기업관련 단체가 자체적으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필요성·공공성·개선효과·고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기업 간 협력 및 교류 지원) ① 구청장은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내 기업들이 상호 협력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간담회, 설명회, 공동 세미나 등 협력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협력·교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단체와의 연계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산업단지”란 제7조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일반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라. 농공단지(農工團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8의2. “스마트그린산업단지”란 입주기업과 기반시설·주거시설·지원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10.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이하 “재생사업지구”라 한다)란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에 따라 산업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주변 지역에 지정·고시되는 지구를 말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란 지식기반산업의 집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8의2. “산학융합지구”란 기업수요에 따라 교육과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학과 기업, 연구소를 집적하기 위하여 제22조의4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세입(안 제3조)

다. 준용(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소득증대사업과 공공시설사업을 말한다.

제3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으로 하고 세출은 제2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 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주변지역”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발전소와 발전원(發電源)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용량 이하의 발전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發電)과 관련이 있는 수계(水系)나 저수지 또는 바다의 인근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을 말한다.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지원사업: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2. 특별지원사업: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과 그 특별자치도·시·군 및 자치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3. 홍보사업: 전력사업(電力事業)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안전관리와 전원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조사·연구 활동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내용, 대상 지역, 시행 기간, 지원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재원과 지원금의 결정) ①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결정기준은 발전소의 종류·규모·발전량과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지원금의 사용) ① 지원금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되는 사업의 종류와 지원금의 한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이면 그 지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면적비율, 인구비율, 발전소로부터의 거리,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한다. 다만, 그 지역의 특수성에 비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 전기사업법

제48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식품진흥기금 설치목적 및 용도 및 운용·관리에 관한 총칙 등(안 제1조~ 안 제6조)
- 나. 식품진흥기금 심의 위원회 설치·운영(안 제7조 ~ 안 제14조)
- 다. 식품진흥기금의 관리·운용(안 제15조 ~ 안 제19조)
- 라. 보칙(안 제2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3항이 정한 영업의 종류로써 법 제37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이 정한 영업의 종류로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법 제82조 및 법 제83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 관리시설 및 위생 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용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4.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5. 집단급식소(위탁에 따라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용자사업
6.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소요경비
7.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8.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용자업무에 관한 사항은 구금고와 협약을 체결하여 기금을 관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정기예금 등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식품진흥기금 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제7조(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식품진흥기금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60퍼센트가 초과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식품진흥기금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구”라 한다) 식품위생관련 담당 과장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는 식품위생관련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품진흥기금 담당이 된다.

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결의 공정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식품위생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4. 그 밖에 개인사정에 따라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회의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용자대상자 및 용자금액
4.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5.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6.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식품진흥기금의 관리·운용

제15조(용자대상) 식품진흥기금의 용자대상은 구 관내에서 법 시행령 제21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구청장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16조(용자대상자 선정) ① 구청장은 기금의 용자신청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용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업소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자대상자를 선정하여 구금고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용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기 용자 대출업소로서 용자금 상환잔액이 있을 때
2. 휴·폐업 중인 업소 또는 6개월 이내에 퇴폐·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④ 구금고는 구청장이 통보한 용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⑤ 대출절차는 구금고가 정하는 금융기관 약정을 따른다.

제1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8조(용자지원사항 보고 등) ① 구금고는 용자지원상황, 그 밖의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금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구금고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19조(회계관계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기금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기금담당으로 한다.

제4장 보칙

제20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금고 또는 기금을 용자받은 자에 대하여 용자금의 사용현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용자금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지도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관계 법령 발췌

□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 3. 13.>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0. 3. 26., 2015. 5. 18., 2016. 12. 2.>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 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용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 4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이 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 한정한다) 상환액의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용자 사업
 - 7의2.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 ④ 기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운용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기금사업) ① 법 제89조제3항제8호에 따라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1. 4. 22., 2014. 7. 28., 2014. 11. 28., 2021. 2. 2., 2024. 7. 23.>

1. 식품의 안전성과 식품산업진흥에 대한 조사·연구사업
2. 식품사고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3. 식중독 예방과 원인 조사, 위생관리 및 식중독 관련 홍보사업
4. 식품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5. 식품위생과식품산업 진흥을위한 전산화사업
6. 식품산업진흥사업
7. 시·도지사가 식품위생과 주민 영양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에 연구를 위탁한 사업

8.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활동에 대한 지원
 9. 제18조제5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
 10.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실 설치 지원
 11.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12. 법 제48조제1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는 영업자와 이를 지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13.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자율지도원의 활동 지원
 1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제6항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지키는 영업자와 이를 지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1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의 지정 및 운영
 1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17.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비용 보조
 1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준하는 것으로서 식품위생, 영양관리 또는 식품산업 진흥 등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2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는 사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해

당 사업의 추진현황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3. 3. 23.>

제62조(기금의 운용)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의 용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계정을 설치할 은행을 지정하고, 지정한 은행에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재무관에게 지출원인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생업소 지원 사업에 대한 기본 계획(안 제1조 ~ 안 제6조)
- 나. 위생업소 심의 위원회 설치·운영(안 제8조 ~ 안 제15조)
- 다. 그밖의 위생업소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준용(안 제 1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등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서 정한 업소를 말한다.
2. “음식문화개선사업”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3. “좋은 식단 실천업소”란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
4. “우수업소”란 모범업소 및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 또는 공중위생서비스 평가결과 위생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말한다.
5.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6. “위생직능단체협의회”란 제5호 위생단체의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위생업소 또는 단체(이하 “위생업소”라 한다)로 한다.

1. 우수업소
2. 좋은 식단 실천업소

3. 그 밖에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지원대상 위생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 시설개선사업
2. 음식문화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
3.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
4. 먹거리 개발 및 브랜드식품화를 위한 지원사업
5. 식품관련업 육성·지원을 위한 국내 선진지 견학
6. 위생직능단체협의회 사업 지원
7.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4조제3호, 제4호,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의 사업으로서 홍보용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위생업소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인천광역시 검단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2.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제8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비율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생업소 지원 관리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생업소 지원 관리업무 담당국장,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의원
2. 위생단체의 임직원
3. 위생분야의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음식문화개선사업 관련 자문 및 행사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의 위생수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회의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회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촉직 위원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5조(수당)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생업소 시설개선 등 지원사업 신청서(제5조 관련)

2484

사 업 계 획 서

업소명(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생년월일	

1. 사 업 명 :

2. 필요자금(실제 필요금액) :

3. 신청금액 :

4. 현황 (규모 · 시설)

가. 규 모 :

나. 시 설 :

5. 사업계획내용

※ 불임 견적서 참조

6. 그 밖의 사항 :

년 월 일

신청인 (인)

불 임 : 견적서 사본 1부

관계 법령 발췌

□ 식품위생법

- 제47조(모범업소의 지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식품접객업소(공유주방에서 조리·판매하는 업소를 포함한다) 또는 집단급식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2016. 2. 3., 2020. 12. 29., 2024. 1. 2.>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모범업소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제22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용자 사업과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2024. 1. 2.>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24. 1. 2.>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모범업소의 지정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2024. 1. 2.>

[제목개정 2024. 1. 2.]

□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을 해당공중위생영업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1., 2008. 2. 29., 2010. 1. 18.>

②공중위생영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생관리등급의 표지를 영업소의 명칭과 함께 영업소의 출입구에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 위생서비스의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소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④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별로 영업소에 대한 위생감시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에 대한 출입·검사와 위생감시의 실시주기 및 횟수등 위생관리등급별 위생감시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 3. 31., 2008. 2. 29., 2010. 1. 18.>

인천광역시 검단구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설치목적 및 음식문화거리 기본 시행계획 수립 등(안 제1조 ~ 안 제5조)
- 나. 음식문화거리 지정 기준 및 신청에 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8조)
- 다. 음식문화거리 사업 지원 종류 및 심의 (안 제9조, 안 제10조)
- 라. 준용(안 제1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관내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를 음식문화거리로 지정 및 조성하여 건전한 음식문화개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 및 “점포”란 「인천광역시 검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상인” 및 “점포”를 말한다.
2. “상인단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 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으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음식문화거리”란 일정 지역 내에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로써, 건전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거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음식문화거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상인단체의 책무) 상인단체는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구청장은 음식문화거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문화거리 지정) ① 음식문화거리는 구청장이 관내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음식문화거리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지정한

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문화거리를 지정할 때에는 거리환경 및 시설, 거리의 역사성, 시민의 이용도,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음식문화거리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내용을 구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기준 등) ① 음식문화거리는 일정 지역에 소재한 음식점(「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말한다)이 40개 이상 집단화(아파트 상가 제외)를 이루어야 하며,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인단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 충족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 등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제8조(지정신청 및 취소) ① 상인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제6조에 따른 음식문화거리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문화거리 지정신청서
2. 해당 예정지구 거리의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3. 상인단체의 명부 및 회칙 또는 정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구청장은 지정된 음식문화거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음식문화거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심각한 위생, 품질 등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3. 구청장이 음식문화거리의 지정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

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음식문화거리 지정을 받은 경우

제9조(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지정된 음식문화거리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사업
2.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
3. 축제 및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등을 위한 홍보사업
4. 종합적인 지원계획에 따른 평가에서 선정된 업소의 종합컨설팅
5. 상인 대상 교육사업
6. 그 밖에 음식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상인단체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상인의 자부담 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심의) 구청장은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정취소, 사업의 지원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인천광역시 검단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정취소, 사업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식문화거리 지정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음식문화특화거리로 지정된 검단먹거리타운에 대해서는 이 조례 따라 지정된 음식문화거리로 본다.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24. 1. 2.]

☐ 식품위생법

제89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營業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 이하생략

제89조(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중간생략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 이하생략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기금사업) ① 법 제89조제3항제8호에 따라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개정 2011. 4. 22., 2014. 7. 28., 2014. 11. 28., 2021. 2. 2., 2024. 7. 23.> ~ 중간생략

6. 식품산업진흥사업 ~ 이하생략

인천광역시 검단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영업장소 범위를 확대하고 영업 자격과 기간 등을 명시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또한 이를 통해 시민들의 이용 편의 증진 및 청년 · 취약계층의 창업 기회 확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2. 주요내용

- 가.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여 규정(안 제2조)
- 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준수사항, 영업신고 표시 규정(안 제7조, 제8조)
- 다.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조치사항 규정(안 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지정 등)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3.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4.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

활한 소통 및 그 밖에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

② 구청장은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 해당 시설·장소의 규모, 영업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영업시간, 영업 구역 및 음식판매자 동차의 수량을 정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장소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 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집단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첨부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2.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해당 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기관과 체결한 해당 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등 도로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4조(영업장소의 지정신청) ①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 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신청서

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에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수익 허가 대상자 모집방법) ① 구청장은 검단구 행정재산을 음식 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② 모집공고는 10일 이상으로 하고 모집공고에는 영업장소, 영업조건, 신청자격, 선정방법 및 허가조건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개추첨 또는 사업계획 평가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등 영업기간 10일 이내의 일시적 영업을 경우 선착순 모집 및 추첨 등 축제 및 행사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제6조(사용·수익 허가 우선대상자 선정기준)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4에 따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급여 수급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5.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② 구청장은 취업취약계층(「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업취약계층을 말한다)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가맹점사업자를 제5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 시설 및 장소 사용계약에 따른 준수사항과 영업 조건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끝나는 즉시营业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영업신고 표시)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營業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營業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구청장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9조(준수사항 등 위반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營業자가 제7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 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7.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8. “임대주택”이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9.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토지의 소유권은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福利施設) 등에 대한 소유권[건축물의 전유부분(專有部分)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이를 분양받은 자가 가지고, 건축물의 공용부분·부속건물 및 복리시설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한다]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말한다.

10. “사업주체”란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다.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11.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제66조에 따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

가. 지역주택조합: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1)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2) 대전광역시·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3) 충청북도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 전라북도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 강원특별자치도

9) 제주특별자치도

나. 직장주택조합: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다. 리모델링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12. “주택단지”란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 가.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 나.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 다.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3.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 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14.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 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15.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16. “기간시설”(基幹施設)이란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지역난방시설 등을 말한다.
17. “간선시설”(幹線施設)이란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둘 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단지를 말한다) 안의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스시설·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포함한다.
18.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19.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 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설치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한 주택을 말한다.
20.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21.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 “건강친화형 주택”이란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실내공기의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23. “장수명 주택”이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
24. “공공택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
 - 가. 제24조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 나.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같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활용하는 택지는 제외한다.
 -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 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같은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행자가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 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 또는 같은 항 제11호에 해당하는 시행자(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가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자.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5. “리모델링”이란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대수선(大修繕)

나.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이 지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의 면적을 말한다)의 30퍼센트 이내(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4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 이 경우 공동주택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공용부분에 대하여도 별도로 증축할 수 있다.

다. 나목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이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 한다).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최대 3개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할 것

2)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조도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을 갓출 것

26.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7.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 가. 제8조 · 제54조 · 제57조의2 · 제64조 · 제88조 · 제91조 및 제104조의 경우: 주택을 공급받는 자
 - 나. 제66조의 경우: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28. “사용자”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29. “관리주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원회의 목적,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3조)
- 나.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10조)
- 다. 수당, 회의록 작성,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안 제1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검단구 분구 시 위원회 예산 수립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적재조사사업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회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안건에 지적재조사사업지구 내의 분쟁 또는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위원회가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

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업무담당이 서기는 지적재조사사업 담당 직원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 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전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회의, 출장 등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에 중요사항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 ① 시·군·구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시·군·구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군·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 여부
2.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3의2.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시·군·구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시·군·구의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지적재조사지구의 읍장·면장·동장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 ⑥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⑦ 시·군·구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그 밖에 시·군·구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원회의 목적, 기능, 구성 등
- 나. 위원장의 직무, 위원 임기, 회의 등
- 다. 회의록 작성 및 보관, 참석수당 등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검단구 분구 시 위원회 예산 수립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검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각각 개별공시지가 관련 심의 시에는 개별공시지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개별주택가격 관련 심의 시에는 개별주택가격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② 위촉 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관할 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2. 감정평가사
3. 세무사
4. 관내에서 3년이상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5. 그 밖에 지역의 부동산가격에 정통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응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람

③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참석위원 중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 또는 위촉 위원 중 관할 세무서의 평가담당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제2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부의안건 담당부서 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부의안건 담당부서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등)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5년간 보관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위원 참석사항

3. 위원발언 요지

4. 심의사항 및 결과

5. 그 밖에 중요사항

제10조(수당) 소속 공무원이 아닌 참석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둔다.<개정 2020. 6. 9.>

1.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원회의 목적,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나.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10조)
- 다. 수당, 회의록 작성,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검단구 분구 시 위원회 예산 수립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설치되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검단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서 규정한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적재조사 측량 시, 현지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지적재조사사업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인천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해당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회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회를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고자 하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의 분쟁 또는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

으로 재직한 경우

- ② 위원회가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업무담당이 서기는 지적재조사사업 담당 직원이 된다.

-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회의, 출장 등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에 중요사항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경계결정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경계결정위원회를 둔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②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정한다.

④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지적재조사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적소관청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지적소관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지적재조사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각 지적재조사지구의 읍장·면장·동장

- ⑤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에는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⑥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⑦ 경계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⑧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 ⑨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⑩ 제9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이유,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할 수 있다.
- ⑪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에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나. 위원장 및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실비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검단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체납처분 중지 결정에 관한 사항
2. 결손처분 결정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개발부담금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세무 업무 담당 과장, 개발부담금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관할 세무서 공무원
2.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 자격을 갖춘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고, 간사는 개발부담금 담당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개발부담금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2.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일정과 의안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의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체납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친족이 관계되어 있는 체납액에 관한 의안의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제9조(실비지급)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23조(결손처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체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0.6.9>

1. 체납처분이 끝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 금액이 체납액보다 부족할 때
2.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
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 가액이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액이 생길 여지가 없는 때
4. 체납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밝혀져 체납액을 징수할 가망이 없는 때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3.23, 2020.2.18>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21조(설치) 법 제23조에 따라 결손처분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관할 시·군 및 자치구에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 8. 20.>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 나. 주소정보시설 제작 비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 제5조)
- 다. 주소정보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11조)
- 라. 손해배상 및 주소정보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 안 제13조)
- 마. 주소정보관련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등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제4항 및 영 제43조제5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 비용과 그 기준일을 구 인터넷 누

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구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구청장은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을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4조(광고의 비용) 구청장이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정하는 광고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료

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는 구청장이 별도로 산정한다.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4. 구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보급
5. 그 밖에 구청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업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 국장으로 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 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구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와 그 대행)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

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출석회의 및 화상회의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발생 시 그 예외를 인정하여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 담당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 결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손해배상 공제가입) 구청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

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주소정보의 홍보·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방위·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위탁) ① 구청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재교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배포
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7.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9. 영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0.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제6호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
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도로명주소법

제16조(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도로명주소 부여)

-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른 도로명, 건물번호 또는 상세주소의 부여에 관하여는 제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1조제3항·제4항, 제13조, 제14조제5항·제6항 및 제15조제1항·제3항을 준용한다.

제27조(주소정보 사용 지원)

- ① 공공기관의 장은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사용과 관련된 산업 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주소정보위원회)

- ① 주소정보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주소정보위원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주소정보위원회를 두며, 시·군·자치구에 시·군·구주소정보위원회를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시·도주소정보위원회 및 시·군·구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에 따른 시·도주소정보위원회 및 시·군·구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1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손해배상 공제 가입, 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3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조례안

1. 제안이유

인간의 가장 기본적 이동수단인 보행이 교통수단 중심의 교통체계로 인해 보도 상 각종 보행 장애물 등으로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에 따라 보행자인 구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권리와 책무 규정(안 제3조, 제4조)
- 다.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규정(안 제5조, 제6조)
- 라.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등 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규정(안 제7조,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생태적·역사적·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3.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본 책무를 수행한다.

1.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2. 보행환경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3.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4.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행권의 확보와 보행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구민의 권리와 협력사항)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 및 협력하며 보행 중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구청장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며 사회적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횡단보도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 표시, 교통섬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 정비
2. 보도 위에 설치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와 철거,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자동차 진입억제 등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 정비
3. 차도·인도에 설치된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6. 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보행자 안전 확보와 보행편의 증진을 위한 보도설치 등 보행환경 증진방안 마련 등

제6조(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① 구청장은 자동차보다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대하게 되어 있거나 도로 유희공간이 많은 도로는 보행자

위주의 친화적 도로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비할 수 있다.

1. 차도 폭 축소 및 보도 폭 확대
2. 교통과 관련된 민원 해소 및 녹지대 조성
3. 보행편의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
4. 아름다운 도로 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

② 구청장은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일정 시간 차량 통행을 제한하여 안정된 보행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에 대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통행방법 등 교통운영체계를 개선할 수 있다.

제7조(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등) 구청장은 보행약자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지하도 및 공공건축물 등의 출입에 필요한 보행약자 편의시설 설치
2. 학교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 통학로와 도로통행 방법 개선·정비

제8조(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구청장은 보행편의시설에 대한 각종 시설물을 상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보행권의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의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및 복리 증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진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장애,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지역적 사정 등에 따라 보행과 관련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보행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설치, 차량의 소통 등 보행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제도 및 사업 등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과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제도 및 사업 등에 따른 편익보다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하여야 한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의 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량 등이 유사한 지역 간에는 보행여건의 격차가 심각하게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보행정책의 수립·추진은 보행자의 안전과 목표지점에서의 접근의 편리성과 함께 삶의 공간으로서의 쾌적성 및 미관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4. 보행권 증진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간에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이 체계적·합리적으로 조성·정비·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안전한 보행환경이 적절히 조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에게 불리하게 책임을 부과하거나 법률을 적용·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를 입은 사람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분할발주 등(안 제5조)

다. 공동수급 등 지역체에 참여 권장(안 제7조)

라. 이행상황 점검(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검단구 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지역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검단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업체 육성과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간담회, 세미나, 교육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에 대한 공동도급과 하도급을 권장하고 그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청장은 지역의 민간건설사업 인·허가시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를 권장하고,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사용 및 지역민 우선고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⑤ 청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업체의 책무) ① 지역업체는 건전한 경쟁을 해야 하며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 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업체는 제3조제3항에 따라 청장의 권장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분할발주 등) ① 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사업으로 한다.

제6조(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청장은 지역업체간 불공정 하도급 근절 및 상생발전을 위하여 추정가격 2억원이상 100억원미만의 종합공사에 대하여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종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2.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3. 그 밖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권장) ① 청장은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이상
2. 지역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업체와의 하도급 비율을 70%이상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산업에 대한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참여 및 하도급 비율 확대

② 청장은 제1항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시행사와 시공사에 대하여 각종 행정의 편의와 우대 등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이행상황 점검) 청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시 지역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2.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3. 지역업체 건설자재 및 장비, 인력 사용에 관한 사항
4. 건설현장의 안전, 품질, 환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모범 건설인 선정·포상) ① 청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를 모범 건설인 및 모범 건설업체로 선정·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모범 건설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서 선정한다.

1. 신기술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지역 건설업체
2.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이 높아 지역 건설산업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건설업체

3. 지역의 자재, 장비 및 인력 사용량을 높여 지역 경기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건설업체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과 육성 지원을 위하여 검단구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건설관련 신기술, 신공법 등의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5. 지역업체의 고충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6.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7. 모범건설인 및 모범 건설업체 포상 선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1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건설, 건축, 회계 등 관련업무 담당부서 3인
2. 구의회 의원
3. 건설산업 관련 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산업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촉 해제·제척·기피 등)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심의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의 심의에서 제척한다.

③ 해당 안전의 당사자가 위원으로써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까지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의결 또는 그 밖에 자료 등에 대하여 보안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보안 각서를 제출 받을 수 있다.

제14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

에도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간사는 회의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고, 회의결과를 요약하여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⑤ 위원회 위원은 업무추진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등 그 밖의 정보를 업무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관련기관 협조요청) 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1. 24., 2015. 8. 19., 2017. 7. 26.>

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써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 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안 제1조)
-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안 제5조)
- 라. 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안 제1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의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보관대"라 함은 자전거주차장·보도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여 자전거 보관에 이용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자전거정비소"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보살피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4. "자전거대여소"라 함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자전거이용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라 함은 자전거 이용 환경 개선과 자전거 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6. "주민자전거"라 함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검단구"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검단구에 거주하는 주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여건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매 5년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할지역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전담부서의 설치)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

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구청장은 공원, 하천,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법 제11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주차장 또는 자전거의 이용이 많은 장소에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여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 하여야 한다.

③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 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④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의 권장에 의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7조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제7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자전거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자전거의 주차요금)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별표”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 제7조에 따라 구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여야 한다.

제11조(주민자전거의 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민자전거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시범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시범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는 자전거보관소 등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전거타기 시범기관으로 학교를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하여는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주민홍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구청장은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10일 이상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이동·보관·매각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5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 구청장은 안전교육장을 설치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전거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단체 등에 대해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 및 공무원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관련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승인과 홍보물 등을 제작·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자전거 주차장 요금표(제10조제1항 관련)

(단위: 원/구획)

구 분	1회주차시 (1시간당)	1일주차권	월(정기권)
주차요금	200	1,000	15,000

관계 법령 발췌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활성화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0. 12. 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로 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국도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14. 1. 14.>

③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활성화계획 중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 1. 3.>

1.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의 기본방향
2. 연도별 활성화계획
3.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제5조의2에 따른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
5. 제5조의2에 따른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의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정비·개선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 인접 지방

자치단체의 자전거도로와 연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읍·면 지역의 국도·지방도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도로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활성화계획이 시·도지사가 수립한 활성화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2. 11. 15.>

[전문개정 2014. 1. 28.]

제11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그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 및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등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 28.]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①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전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보관·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20. 2. 18.>

[전문개정 2014. 1. 28.]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자전거이용시설의 정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자전거횡단도·자전거신호기 및 자전거교통안전표지(자전거의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안내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 및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나 문자 또는 선 등의 노면표지를 말한다)

2.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방호울타리·방호경계턱 등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

3. 자전거의 주차 및 잠금장치를 위한 시설물(이하 “자전거주차장치”라 한다)

4. 자전거 이용자의 휴식소 또는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야영장 등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법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

은 조 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별표 1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② 삭제<2017. 12. 29.>

③ 자전거 주차장에는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4. 28.]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를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이동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그 날부터 14일간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며,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하여 갖추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는 등록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1. 보관한 자전거의 종류·모양·수량 및 제조회사명
 2. 자전거가 방치되었던 장소 및 이동·보관한 일시
 3. 자전거를 보관한 장소
 4. 공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하면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처리된다는 뜻
- 가.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며, 공고 후 1년이 지나면 매각대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

나. 기증,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활용하거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자전거 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보관 중인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매각.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일반재산의 매각의 예에 따르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자전거는 수의계약(隨意契約)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대금은 1년간 보관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한다.

2. 기증

3.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의 활용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자전거나 매각대금을 자전거 소유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성명과 주소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전거의 특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는 등 그 자전거의 소유자가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 지나도록 자전거 소유자가 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매각대금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보관 중인 매각대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된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처분된 자전거가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인 경우에는 처분과 동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4. 28.]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등록) ①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22. 4. 26.>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비영리민간단체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13., 2014. 11. 19., 2017. 7. 26., 2022. 4. 26.>

☐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전문 (생략)

인천광역시 검단구 도로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개설의 목적(안 제1조)

나. 점용허가 대상 및 자격 등(안 제3조~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도로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보행 및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도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도로점용 허가한 도로상 영업시설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상 영업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를 말한다.
2. “가로판매대”란 교통카드의 충전과 판매, 신문, 잡지, 음료, 과자 등의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도로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3. “구두수선대”란 구두를 수선하거나 닦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도로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4. “도로”란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를 말한다.
5. “운영자”란 도로점용허가(이하 “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아 이 처리기준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수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점용허가 장소 및 면적) 점용허가 장소 및 면적은 이 처리기준 시행일 기준의 기준에 허가된 장소 및 면적으로 한다.

제4조(점용허가 갱신) ① 도로점용허가 기간은 다음 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단위로 한다.

② 점용허가 기간 이후에도 시설물을 계속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

로법」에 따른 점용허가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별지 제1호 서식을 첨부하여 점용허가 기간의 만료일 2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 검토 후 제5조에 따른 점용허가 갱신의 제한 사유가 없는 경우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증(이하 “허가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며, 점용허가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 시 별표 1의 허가조건을 허가증과 함께 발급하여 운영자가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점용허가 갱신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4조제3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갱신하지 아니한다.

1. 운영자가 사망한 경우(점용허가권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제외)
2. 점용허가 갱신 신청을 포기한 경우
3. 도로점용료를 체납한 경우다.

제6조(점용허가권자의 자격) 수허가자가 사망, 검단구 외 지역으로의 전출, 수허가자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점용허가권을 양도·양수하려는 자의 자격은 수허가자의 자격 변경일(사망일, 타 지역 전입일, 자격상실일) 현재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주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제7조(점용허가권 양도·양수) ① 점용물의 소유권이 검단구청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수허가자 신분변동으로 점용물을 계속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수허가권을 제 3자에게 양도·양수할 수 없고 허가를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수허가자 자격에 해당하는 직계 존속·비속에 한정하여 한 차례만 양도·양수를 할 수 있다.
2. 양도·양수를 할 때에는 30일 전에 구청장에게 양도·양수 허가를 신청하여 사전허가를(사망은 사후 30일) 받아야 하며, 허가증 등을 갱신하여야 한다.
3. 허가권을 양도한 사람은 우리 구 관내에서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② 점용물의 소유권이 개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수허가자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점용물을 양도·양수 할 수 있다.
2. 점용물의 권리나 의무는 양도·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갱신허가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구청장은 허가증 등을 갱신 처리 한다.
3. 허가권을 양도한 사람은 우리 구 관내에서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제8조(운영자의 행위 금지) ① 운영자는 점용허가로 인한 권리나 의무를 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운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점용허가 장소를 변경할 수 없으며, 점용허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할 수 없다.

③ 운영자는 시설물 운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하며, 구청장은 운영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화공약품, 음란서적·퇴폐서적 및 기구, 불법음반 및 테이프, 그 밖에 법령으로 취급이 금지된 품목을 판매할 수 없다.
2. 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할 수 없다.
3.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훼손할 수 없다.

4. 구청장의 승인 없이 30일 이상 시설물의 운영을 중지할 수 없다.
5. 시설물 외부에 집기 및 상품 등의 물건을 쌓아두거나 판매할 수 없다.
6. 구청장이 승인하지 않은 옥외광고물(간판, 디지털광고물, 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을 설치하거나 게시할 수 없다.
7. 허가증을 시설물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8. 시설물 및 그 주변을 안전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 도시미관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9. 구청장의 행정지시사항을 따르고 관계공무원의 확인과 질문에 응하여야 하며, 운영자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9조(시설물 점검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주민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거나 도시경관을 위하여 시설물의 위치를 조정하거나 교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물관리현황을 전자파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시설물의 운영 상태를 연 1회 정기 점검하고, 수시로 불시 점검하여 관계 법령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운영자에게 변경 등 정리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점용허가 취소) 구청장은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지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위치 조정 및 교체 등을 거부하는 경우
3. 「도로법」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4. 스스로 점용허가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제11조(시설물 철거) 시설물의 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고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라 점용허가 갱신이 아니 되는 경우
2. 제10조에 따라 점용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허 가 조 건

1. 운영자 준수사항

운영자(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사용·수익하는 자)는 시설물 운영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도로점용허가로 인한 권리나 의무를 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나.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도로점용허가 장소를 변경할 수 없다.

다. 도로점용허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할 수 없으며, 연간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라. 구청장이 주민의 보행환경 개선 및 도시경관을 위하여 시설물의 위치를 조정하거나 교체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화공약품, 음란서적·퇴폐서적 및 기구, 불법음반 및 테이프, 그 밖에 법령으로 취급이 금지된 품목을 판매할 수 없다.

바.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할 수 없다.

사.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훼손할 수 없다.

아. 구청장의 승인 없이 30일 이상 시설물의 운영을 중지할 수 없다.

자. 시설물 외부에 집기 및 상품 등의 물건을 일시 적치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차. 구청장이 승인하지 않은 옥외광고물(간판, 디지털광고물, 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을 설치하거나 게시할 수 없다.

카. 도로점용허가증을 시설물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타. 시설물 및 그 주변을 안전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 도시미관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파. 구청장의 행정지시사항을 따르고 관계공무원의 확인과 질문에 응하여야 하며, 운영자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하. 도로점용허가가 갱신되지 않거나 취소된 경우 시설물의 설치자는 시설물을 자진철거하고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2. 도로점용허가 취소

운영자의 다음 위반행위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다.

위반행위	비고
· 도로점용허가로 인한 권리나 의무를 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 ·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점용허가 장소 변경 · 점용허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도로 점용 · 3회 이상 점용료 납부를 촉구하였으나 미납부 · 구청장의 시설물 위치 조정 및 교체 요구 거부	1회 위반 시 허가 취소

[별지 제1호서식]

서 약 서

☐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연 락 처:

☐ 점용장소:☐ 점용면적: m^2

위 본인은 귀청으로부터 도로상 영업시설물을 허가받음에 있어 각종 허가조건(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변상금 부과, 점용허가 취소, 행정대집행 등의 어떠한 행정처분도 이의 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검단구청장 귀하

도로상 영업시설물 관리현황

[illegible]

관계 법령 발췌

□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도로관리청은 승차한 상태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로의 점용 허가를 할 때 해당 시설이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의 장 또는 대상 장소의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3. 4. 18.>

1.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2.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3.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집운영위원회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4. 18.>

④ 도로관리청은 같은 도로(토지를 점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입체적 도로

구역(을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8.>

- ⑤ 제4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4. 18.>

인천광역시 검단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부실공사 방지조례를 제정하여 검단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부실공사 방지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3조)
- 나. 공사감독과 품질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 관리 책임자 지정 및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7조)
- 다. 공사 품질 점검 및 부실공사 발견 시 조치— 관련 기관 협력 및 법적 책임 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 제1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2. “공사감독 공무원”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을 말한다.
3. “부실시공”이란 제1호의 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도서와 계약서, 그 밖에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4. “명예감독관”이란 해당 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자로 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주민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 주민대표를 말한다.
5. “지도·감독”이란 공사 주관 또는 관련 있는 사람이 공사의 설계도서 및 계약서와 일치되게 시공하는지 여부를 현장점검 및 지도·감독함을 말한다.
6. “발주부서”란 제1호의 공사를 추진하는 담당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청장과 그 산하기관장이 발주하는 공사 중 건당 공사비 총액이 1억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제4조(공사시행 통보와 명예감독관의 선정) ①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공사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공사개요, 공사기간, 시공업체, 공사감독공무원 등을 해당 동장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공사착공 전에 명예감독관을 선정하여 구청장에게 통보 위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명예감독관은 2개 이상의 공사에 명예감독관이 될 수 없으며 공사의 이해관계인은 명예감독관이 될 수 없다.

③ 명예감독관은 주민 불편사항 발견 및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등 부실공사를 발견할 경우 공사감독 공무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명예감독관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명예감독관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공사의 준공시
2. 명예감독관의 사퇴 표명시
3. 명예감독관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4. 명예감독관이 감독관으로서의 이권사업에 관련되었을 때
5. 그 밖에 명예감독관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지도·감독사항 보고) 공사감독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1. 명예감독관으로부터 제4조제3항에 따라 공사의 부실 사항을 통보받는 경우
2. 공사 감독 중 설계도서 및 계약서와 상이한 사항이 발견되거나 공사에 대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 또는 중대한 결함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주민설명회 개최) 구청장은 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은 공사비 5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설계발주 전에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 불편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제1호에서 규정한 공사금액 이하의 공사라 하더라도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시공확인) 시공자는 공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사시공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시공자는 공사의 주요공정 시공시에는 시공 2일 전까지 공사감독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 공무원은 제1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실·과장 및 해당동장과 명예감독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입회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통보를 받은 공사주관 실·과장 및 해당동장과 명예감독관은 관계 공무원 입회하에 설계도서 및 계약서와 일치되게 시공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공사감독 공무원은 해당부분을 사진촬영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4. 공사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공사부분은 사진촬영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5. 공사 주관 실·과장 및 해당동장은 제3호의 입회확인 지연 등으로 시공자의 공사 시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9조(부실시공업체의 제재) 구청장은 부실시공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법하도급, 공사 중단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를 적용하여 그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공사표지판의 설치) 구청장은 공사현장에 공사의 시행 및 준공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은 1억원 이상의 공사비가 투자되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공사 구역 중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 기간이 1주일 이상 소요되는 공사는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공사금액이 5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준공검사시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명, 시공업체, 사업개요, 공사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하자보수기간,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을 기록한 공사준공 표지판을 설치하여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1호에 의한 공사안내 표지판은 공사준공 시까지, 제2호에 따른 공사준공 표지판은 공사준공 일로부터 2개월 이내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실명제) 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명, 준공일, 시공회사명, 공사감독 공무원 등의 실명을 표기한 내용을 기록 및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감독자의 업무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이에 따른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도로무단점유자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검단 구민들의 원만한 도로 통행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다. 과태료(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서구청 도로과 25년도 예산에 4억9천만 원이 반영되었음.(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민간용역 / 3명 4개 조 총 12명)

다. 합 의: 가정보육과, 감사실과의 합의(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실시)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도로무단점유자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는 200만원 이하
2.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150만원 이하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 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 제1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도로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도로망의 건설, 관리 및 안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도로를 건설 또는 관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
2.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것
3. 도로의 상태가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
4. 도로 기능과 주변지역의 토지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도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것
5. 지역공동체를 최대한 보전하도록 할 것
6.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이용을 위한 도로교통정보체계를 구축할 것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도(特別市道)·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①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 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도로관리청은 승차한 상태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로의 점용 허가를 할 때 해당 시설이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의 장 또는 대상 장소의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3. 4. 18.>

1.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2.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3.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집운영위원회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4. 18.>

- ④ 도로관리청은 같은 도로(토지를 점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입체적 도로구역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8.>

- ⑤ 제4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4. 18.>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로를 파손하는 행위
2. 도로에 토석, 입목·죽(竹)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3.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117조(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 11. 15.>

1.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
2. 제77조제2항에 따른 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77조제3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운전자에게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운행을 지시·요구하거나 적재된 화물의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

지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적치한 자
3.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4.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
5. 제62조제5항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참여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6. 제76조제6항에 따른 긴급 통행제한을 위반한 자
7. 제96조나 제9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2조제2항 전단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73조제3항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10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관리청이 부과·징수한다.

⑤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

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1. 15.>

1. 차량의 운전자가 차량의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하여 제1항제2호에 따라 차량의 임차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2. 차량의 운전자가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의 지시·요구 또는 사실과 다른 적재화물 중량의 고지에 따라 제77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하여 제1항제3호에 따라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 ⑥ 과태료의 납부방법에 관하여는 제6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각각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로, “점용료”는 각각 “과태료”로 본다.

시행령 제105조(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1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행정청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경우에는 별표 7 제2호가목·나목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2026. 7. 1. 검단구 출범으로 인한 행정공백 및 주민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 및 제3항, 같은법 제114조 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12조 및 제1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기본방향,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4조)
- 나. 위원장등의 직무 및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다. 회의록 및 분과위원회, 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2026년 예산에 3백만원 반영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 및 제3항, 같은법 제114조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12조 및 제1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과 체계적인 관리를 지향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기능) 인천광역시 검단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인천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 및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2.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및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하는 사항
3.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심의
4.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구청장에 대한 자문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2 이상이어야 한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의원

2.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도시계획업무 담당 국장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 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구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5개를 초과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3개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 할 수 없다. 다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및 다른 규정에 따라 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위원회의 위원은 중복 위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위촉된 위원은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4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안건처리는 안건 상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재심의 안건을 포함한다)에 하여야 하며, 반복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2. 질병·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한 때
4.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 제1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③ 제2항의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제5항에 따른 회피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 안건의 심의·자문을 요청한 자는 제2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위원이 제2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유를 소명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 대하여 회의개최일 2일 전까지 회피하여야 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으로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제6조제2항의 재적인원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8조(현지조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찬성이 있을 경우에는
분과위원회 위원 및 소관위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로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행정
기관, 관계공무원 또는 도시계획입안 제안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허용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의 공개) ①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에 따라 위원회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안건 심의종결 후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회, 시의회, 구의회, 감사원, 검찰 등의 요구에 따라 회의록 공개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회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 위원은 회의과정 및 기타 직무수행 상 알게 된
도시계획 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서기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의 심의 업무는 위원회가 의결로 정한다.
-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분과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차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수당등의 지급)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도시계획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공동위원회의 운영)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4조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1.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심의 등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2.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3.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②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에 각각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1.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심의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2.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3.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심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③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⑤ 도시·군계획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에는 제111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제113조의2(회의록의 공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3조의3(위원의 제척·회피)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에 자기가 이해관계인으로 관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14조(운영세칙)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5조(위원등의 수당 및 여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2 이상의 시·군 또는 구에 공동으로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수를 30인까지로 할 수 있다.

②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2 이상의 시·군 또는 구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 당해 시·군·구 지방의회의 의원
2. 당해 시·군·구 및 도시·군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군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 제111조제4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법 제1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5. 7. 1.>
5.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제113조의2(위원의 제척·회피) 법 제113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제113조의3(회의록의 공개) ① 법 제113조의2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심의 종결 후 6개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② 법 제113조의2 본문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법 제113조의2 단서에서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식별 정보”란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제114조(운영세칙)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

1.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임명·위촉·해촉(解囑) 기준
2. 회의 소집 방법,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자문 대상 및 그 업무의 구분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회피에 관한 사항
5.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에 관한 사항
6.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7. 법 제11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별지 제1호서식]

동 의 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의한 인천광역시 검단구 도시계획(도시건축공동)위원으로 위촉(임명)(임기 2년, 20.00.00 ~ 20.00.00)됨을 동의합니다.

- ☐ 성 명 : (인 또는 서명)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무 처 :
☐ 직 위 :
☐ 이 일 주소 :
☐ 전 화 번 호
자 :
사 무 실 :
이동전화 :
☐ 스 :

20 . 00. 00.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청 럽 서 약 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도시계획(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으로 정직
· 공정 · 성실하게 위원회의 자문 · 심의과정 또는 기타 직무를 수행함은 물론,
반부패 · 청렴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자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지도 않겠으며, 이를 어길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고 일체의 민 · 형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00. 00.

☐ 무 처 :
☐ 직 위 :
☐ 성 명 :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인천광역시 검단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 등 허가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구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 활성화 도모
- 나. 우리 구 특성에 부합되는 개발제한구역의 축사, 사육장, 작물채배사 등의 구조, 높이 등 시설기준과 토지형질변경, 조경면적 등의 기준을 마련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시설의 종류와 규모 및 입지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다. 구조 등 추가적인 건축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라. 토지 분할의 허가기준 및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생태하천과와 합의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 등 허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별표2 제1호 및 제3호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토지 분할, 동식물 관련 시설 및 농수산물 관련 시설의 조경과 축사, 사육장, 작물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의 설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시설의 종류와 규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 제5호 나)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동식물 관련 시설 및 규모는 영 별표1 제5호 가목에 따른다.

제4조(입지기준) 영 별표 1 제5호 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축사,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의 입지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해당 토지는 본인 소유 주택의 소재지와 동일한 구 지역이어야 하며 본인 소유의 토지여야 한다.
2. 우량농지(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농지를 말한다.) 또는 지목 상 임야가 아니어야 한다. 다만, 지목 상 임야인 경우에도 항공사진 등의 자료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토지이용상태

가 농지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설치가 가능하다.

3. 새로운 진입로의 설치 및 기존 도로의 확장이 필요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5조(구조 등) 영 별표 1 제5호 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설치하는 축사,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의 구조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표준설계도서로 설치하는 경우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처마 높이는 4미터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는 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

만, 해당 시설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설비 등의 설치로 인해 높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판단하여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콘크리트 구조(철근콘크리트, 철골콘크리트 구조를 포함한다.)가 아니어야 한다.

3.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까지 해당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장비 등 내부시설을 완비하여야 한다.

제6조(추가적인 건축 기준) 구청장은 영 별표 1 제5호 라)에 따라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한 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을 허가 받은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1개 시설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영농계획과 추가적인 건축계획이 부합하여야 한다.

2. 허가받은 용도대로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있는 자여야 한다.

제7조(토지 분할의 허가기준) 영 별표 2 제1호 차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 계획에 포함되는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도록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추가적인 건축 기준) 영 별표1 제5호 가목에 따른 동식물 관련 시설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 관련 시설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조경을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같다)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의 100분의 5 이상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 중에 있거나 허가를 신청 중에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분할 허가 기준(제7조 관련)

1. 목적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한 토지분할 허가 기준을 마련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 및 보전을 하고자 함.

2. 용어의 정의

가. “분할”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1호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나. “택지식”이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다. “바둑판식”이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라. “기획부동산”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또는 개발이 허용되는 범위와 다르게 기획하여 광고 등을 통하여 토지를 분양 또는 판매하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하여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에 해당하는 분할을 하려는 자
- 2)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내용과 다르게 거짓으로 광고하여 부동산 질서를 해치는 자
- 3) 신문, 인터넷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다수에게 분양·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에 해당하는 분할을 하려는 자

3. 분할의 허가 기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분할을 허가할 수 있다.

- 가.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분할할 경우,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에 해당하는 분할이 아닐 것
- 나. 기획부동산(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자를 포함한다)에 따른 분할이 아닐 것
- 다. 하나의 토지에 대하여 분할이 가능한 필지는 1년 내 총 5필지 이하일 것. 다만, 상속 토지에 대하여 상속인의 법적비율에 따른 분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공유지분의 분할허가 기준

토지분할 허가 기준을 회피하고자 공유지분을 법원의 공유물 분할 판결을 받아 분할하는 경우에도 제3호를 적용한다.

관계 법령 발췌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이하 "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0. 4. 15., 2011. 4. 14., 2011. 9. 16., 2013. 5. 28., 2014. 1. 28., 2015. 12. 29., 2019. 8. 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

⑨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규모·높이·입지기준, 대지 안의 조경, 건폐율, 용적률, 토지의 분할,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등 허가나 신고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5. 28., 2018. 12. 18.>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

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0. 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제13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5.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	가) 가목 및 나목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u>가목의 시설의 종류와 규모는 관할구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u> 이 경우 시설의 종류는 가목에서 정하는 시설의 범위에서 정하되, 시설의 규모는 각 시설 면적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다) <u>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축사,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의 구조와 입지기준에 대하여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u> 라) 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은 1가구[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에서 해제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1세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당 1개 시설만 건축할 수 있다. <u>다만, 개발제한구역에서 2년 이상 계속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한 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을 허가받은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계획에 부합하는 추가적인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u>
가. 동식물 관련 시설	

1) 축사

가) 축사(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사슴·개 의 사육을 위한 건축물을 말한다)는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1천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축사에는 33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실을 설치할 수 있고, 축사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관리실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과 부산권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축사의 규모는 상수원, 환경 등의 보호를 위하여 1천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과수원 및 초지의 축사는 1가구당 1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초지와 사료작물재배지에 설치하는 우마사(牛馬舍)는 초지 조성면적 또는 사료작물 재배면적의 1천분의 5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축사의 설치를 허가 할 수 없다.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의 사육이 제한된 지역

② 복구사업지역과 제2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제2조의3제1항제8호의 관리방안이 반영된 지역

③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명령에 관한 업무의 집행 명령을 받은 시·군·구

2) 잠실(蠶室)

뽕나무밭 조성면적 2천제곱미터당 또는 뽕나무 1천800주당 5

3) 저장창고

4) 양어장

5) 사육장

6) 작물 재배사

7) 삭제 <2015.9.8.>

8) 퇴비사 및 발효퇴비
장

9) 육묘장 및 종묘배양장

10) 온실

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소·말 등의 사육과 낙농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유지(溜池)·하천·저습지 등 농업생산성이 극히 낮은 토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평, 우렁이, 달팽이, 지렁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새·곤충
등의 사육을 위하여 임야 외의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
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3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
여야 한다.

가) 콩나물, 버섯, 새싹채소 등의 작물 재배를 위하여 1가구
당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5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
야 한다.

나) 작물 재배사에는 10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작물 재배사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
우에는 관리실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 1)라)② 및 ③의 지역과 임야인 토지에는 설치할 수 없
다.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300제곱미터(퇴비사 및 발효퇴비장
의 합산면적을 말한다) 이하로 설치하되, 발효퇴비장은 유
기농업을 위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5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
여야 한다.

가) 수경재배·시설원예 등 작물재배를 위한 경우로서 1가
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5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
여야 한다.

나) 재료는 유리, 플라스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
하여야 하며, 그 안에 온실의 가동에 직접 필요한 기계설
및 관리실을 66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1지구 등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검단1지구, 검단2지구, 원당지구, 당하지구, 마전지구, 불로지구,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준공 후 잔여 사무를 분구(2026. 7. 1.) 이후에도 검단구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세입 세출 등 (안 제3조~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서구와의 예산 분리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예산법무과,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과,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협조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1지구 등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준공 후 잔여사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1지구 등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시개발사업비”란 검단1지구, 검단2지구, 원당지구, 당하지구, 마전지구, 불로지구, 오류지구(이하 “검단1지구 등”이라 한다)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세입)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1지구 등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 ① 체비지 매각 수입금
- ② 징수청산금 및 정산금
- ③ 보조금
- ④ 기타 수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 ① 사업시행에 따른 지장물건 및 토지 등의 보상비
- ② 이주대책비
- ③ 교부청산금 및 정산금
- ④ 사업 마무리를 위한 공공시설 설치 및 정비

⑤ 기타 관련 사업비

제5조(경리) ①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입에 부족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② 세입, 세출 예산 및 자금관리 등 특별회계의 운영은 지구별로 구분하여 따로 관리한다.

제6조(준용) 특별회계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특별회계를 인수한 날부터 적용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41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

인천광역시 검단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1. 제안이유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를 위하여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적용범위,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정기점검 대상 및 긴급점검 대상,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안 제4조~제6조)

다. 안전진단 대상 및 해체신고 대상,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안 제7조~제9조)

라. 건축물 해체의 허가 및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 빈 건축물의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전 등(안 제10조~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검단구”이라 한다) 내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건설산업

기본법· 제41조에 따른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건축물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점검대상 건축물
4.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소유한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제7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 건축위원회의 자문 결과 구조안전 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건축물

제8조(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20미터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3. 횡단보도
4.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11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법 제40조제2항 및 제4항,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지원센터”라 한다)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를 위하여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

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법인등으로 선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건축물관리법

제1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안전, 화재안전 및 에너지성능 등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2.~4. 생략

②~④ 생략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생략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⑨ 생략

제4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자가 건축물관리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을 지원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및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2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로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이하 “시·군·구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건축물

2. ~ 4. 생략

②·③ 생략

제9조(긴급점검의 실시) ①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생략

2.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③ 생략

제10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①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 6. 생략

7.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 등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제11조(안전진단의 실시) ① 법 제1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략

2. 그 밖에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③ 생략

제21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 2. 생략

3. 그 밖에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제23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법 제3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3. 생략

4. 그 밖에 해체공사감리자가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경우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31조(빈 건축물 정비 절차 등) ① ~ ④ 생략

⑤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1. 제안이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구청장이 집합건물 관리에 감독 업무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됨.

이에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감독대상의 선정, 감독의 실시, 감독사항에 관한 검토, 감독의 중지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7조)

다. 결과의 통보,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분소유권”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3.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말한다.
4. “점유자”란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5.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 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6. “관리인”이란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경우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선임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1조 및 제1조의2에 따른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하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감독대상의 선정)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6조의5에 따라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집합건물 중에서 감독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관리단의 집회 결의나 규약으로 법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
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3. 고소·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4. 사적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5. 다른 기관에서 감독을 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제5조(감독의 실시) ① 구청장은 감독 대상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에 따라 사무에 관하여 보고 받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관리인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구청장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을 이행하지 못 할 경우 그 기간을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감독사항에 관한 검토) ① 구청장은 사무 보고 또는 제출된 자료를 통해 법 제26조의5에 따른 이행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고된 사무 또는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리인에게 자료의 추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감독의 중지 등) ①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그 기한 내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관리인에게 법령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8조(결과의 통보) 구청장은 감독의 결과를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관리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9조(제도개선) 구청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 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6조의5(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 등에 관한 사항
2. 제24조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3.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고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부의 작성·보관 및 증빙서류의 보관에 관한 사항
4.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5. 제32조에 따른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6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의2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회계 감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1의2. 제26조의5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5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59조제3항에 따른 질문 및 문서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자

인천광역시 검단구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총괄 및 공공건축가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또는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또는 X년 예산에 X억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예산법무과[예산팀]과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사항과 그 밖에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건축정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단구 총괄건축가 운영 등)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1조 또는 이에 준하여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지역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건축·도시디자인 관련 주요 공공사업의 총괄조정 등 지역경쟁력 강화 및 지역 현황에 부합한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이하 “검단구 총괄건축가”라 한다)를 위촉·운영할 수 있다.

② 검단구 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검단구 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 건축·도시디자인(「인천광역시 검단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조례」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포함한다.)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검토 및 자문
2. 구청장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및 공간 환경사업의 기획·발주·기본설계에 대한 총괄조정 및 자문
3.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및 사업시행에 관한 기획 및 자문

4. 공공건축 관련 전문가들과 정보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자문

④ 구청장은 검단구 총괄건축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⑤ 검단구 총괄건축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검단구의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⑥ 구청장은 검단구 총괄건축가의 업무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⑦ 검단구 총괄건축가는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문의 기본방향 등 업무처리기준을 검단구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3조(검단구 공공건축가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영 제21조 또는 이에 준하여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지역에 이루어지는 개별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기획 단계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단계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획, 설계 또는 총괄조정 및 관리하는 전문가(이하 “검단구 공공건축가”라 한다)를 위촉·운영할 수 있다.

② 검단구 공공건축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검단구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기획, 설계 또는 공공건축물의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조정·자문
2.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의 기획·설계에 대한 조정 및 자문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사업의 기획·설계에 대한 조정 및 자문

④ 구청장은 검단구 공공건축가의 업무 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인천광역시장의 협조를 받아 인천광역시 공공건축가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제4조(검단구 총괄건축가 및 검단구 공공건축가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검단구 총괄건축가 및 검단구 공공건축가(이하 “민간전문가”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민간전문가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민간전문가의 업무 원칙) ① 민간전문가는 관련 부서장과의 유기적 관계 형성 및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의 고유한 업무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며,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갈등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과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공무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강압적 태도와 지시를 지양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민간전문가와 인천광역시 공공건축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민간전문가의 참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축·도시 또는 조경 관련 기술사(「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를 말한다)
3. 대학에서 건축·도시 또는 조경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②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건축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민간전문가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전문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건축·도시 관련 기획 및 설계 업무에 대한 조정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정책에 대한 자문과 건축민원 업무의 처리
3. 다수의 사업자 또는 설계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및 관리
4. 건축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과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에 대한 기획·설계 등

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전문가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스마트에코시티 구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나.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다. 스마트에코시티 위원회 설치 및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3조)
- 라. 주민협의체 설립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해당없음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예산법무과[예산팀]과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스마트에코시티 구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쾌적한 환경의 살기 좋은 도시를 첨단기술로 주민과 함께 만드는 미래 도시의 비전인 스마트에코시티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스마트에코시티의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다.

1.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생태계 보전과 도시의 공간환경에 활용하며 주민이 도시정책 의사 결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2. 도시의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마을과 도시의 공간환경으로 통합되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에코도시
3. 첨단기술과 생태가 도시의 공간환경에 융합하여 품격 있는 건축과 도시 공간을 만들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융합도시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에코시티”는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축·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고 환경과 사회, 지역경제가 균형발전하며 현세대와 차세대 주민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말한다.
2.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로봇기술, 클라우드, 자율주행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한다.

제4조(주민의 참여와 협력) ① 주민은 누구나 스마트에코시티 정책 결정·집행

· 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주민은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협력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마트에코시티 구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스마트에코시티 정책 결정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가 및 인천광역시의 관련 정책과 연계하여 스마트에코시티 비전을 확대 발전시켜 나간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스마트에코시티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스마트에코시티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스마트에코시티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에코시티의 핵심가치
2. 스마트에코시티의 정책수행의 기본원칙
3. 단계별 정책목표와 추진방안
4. 스마트에코시티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항
5. 그 밖에 스마트에코시티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교육·홍보 등) ① 구청장은 공무원과 주민의 스마트에코시티 정책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에코시티 비전 확산을 위해 홍보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스마트에코시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스마트에코시티 정

책 구현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스마트에코시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업무 담당국장, 환경업무 담당국장, 스마트에코시티업무 담당 국장, 스마트에코시티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2명의 공동위원장,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공동위원장은 구청장과 총괄건축가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구의원
2. 학계, 시민단체, 건축, 도시계획, 경제, 조경, 환경, 문화, 정보통신 분야 등에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또는 주민 등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에코시티 정책에 관한 사항
2. 스마트에코시티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3.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스마트에코시티 정책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마트에코시티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0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구청장이 소집된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스마트에코시티 소관 업무 담당이 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하여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주민협의체의 설립) ① 주민은 스마트에코시티 구현과 도시문제해결에 참여하기 위하여, 일상생활에서의 도시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는 지역 주민 3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인천광역시 검단구 스마트에코시티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 대표는 주민협의체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출된 주민협의체의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 설립 사실의 신고
2. 제5항에 따른 예산 집행 내역 및 사업계획의 보고(제5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주민협의체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주민협의체를 대표하거나 총괄하여 수행하여야 할 업무

④ 주민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활동한다.

1. 일상생활에서의 도시문제 의제화
2. 의제화된 도시문제 해결방안 모색
3. 기타 스마트에코시티 활성화를 위한 활동

⑤ 구청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범위 내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주민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야별, 의제별 분과를 둘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검단구 내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인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복지 증진과 사회적가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안 제1조)
- 나.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5조, 안 제6조)
- 다. 빈집정비의 방법 및 지원,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 제10조)
- 라. 지도·감독(안 제1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내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인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복지 증진과 사회적가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 사용승인·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 등은 제외한다.
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빈집활용”이란 빈집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사회적가치”란 사회, 환경, 경제, 복지, 문화, 교통 등 각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윤리적 가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회, 조합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상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2.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3. 빈집정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계획
5. 빈집활용에 대한 사항
6. 그 밖에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라 주민등록정보, 과세, 수도·전기 사용요금 등의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고, 유관기관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대상 빈집의 확보) ① 구청장은 정비사업 대상 빈집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빈집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대상 빈집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등을 통해 대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빈집정비의 방법) 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1.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
2. 빈집을 개축·증축·대수선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방법
3.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4. 빈집을 철거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
5.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하는 방법

제9조(빈집정비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주민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2. 빈집을 주거·사무·상업공간의 용도나 주민복지 증진과 사회적가치 활성화의 목적을 위한 용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80% 이하 범위 안에서 3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3.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빈집의 활용) ① 구청장은 정비를 끝낸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1.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한부모가족, 장애인, 고령자 및 성별·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2.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년시설
3. 문화예술인 주거·창작공간,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공용텃밭 등 주민복지 증진 또는 사회적가치 활성화를 위한 시설
4.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회적경제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의 사무소
5.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6. 카페, 식당, 점포, 오피스 등의 상업공간, 게스트하우스, 기숙사 등의 공유주택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② 정비를 끝낸 빈집은 제1항에 따른 활용 용도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입주하게 할 수 있다.

1. 주거의 용도로 빈집이 정비된 경우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2. 사무의 용도로 빈집이 정비된 경우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요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홍보) 구청장은 주민에게 빈집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빈집의 활용·관리와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입주·이용자가 제10조에 따른 빈집의 용도대로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3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등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시장·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빈집정비계획 수립 후 1년마다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2.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3.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4.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시장·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지역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빈집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군수등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빈집정비계획에 대하여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등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빈집밀집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
2. 노후·불량건축물이 증가하고 있거나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3. 다른 법령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아니한 지역

⑥ 제5항에 따른 빈집밀집구역 지정 요건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관할 시·도경찰청장 및 시·도 소방본부장은 제5항에 따라 지정된 빈집밀집 구역에서의 안전사고 및 범죄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⑧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빈집등 실태조사) ① 시장·군수등은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하“빈집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시장·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이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빈집 여부의 확인

2. 빈집의 관리 현황 및 방치기간

3. 빈집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 현황

4.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

5. 그 밖에 빈집 발생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군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등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빈집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빈집의 상태 및 위해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빈집의 등급을 산정하여야 한다.

⑤ 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빈집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빈집의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천장재·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

2.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개축·증축·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하는 방법

3.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4. 빈집을 철거한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2026. 7. 1. 검단구 출범으로 인한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나.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안 제3조)

다. 공동주택 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의결 등(안 제8조 ~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지 내의 공동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조를 위하여 필요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주택의 지원 및 대상)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단지 내 공용시설 부분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단지 내 도로 및 그 부속시설 관리, 유지 보수
2. 어린이놀이터 보수
3. 경로당 보수
4. 상·하수도 시설 관리(도로에 매설된 상·하수도시설)
5. 자동화재탐지설비·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의 성능 개선 및 고도화를 위

한 설치 및 보수

6.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공동화장실, 파고라, 단지경계 울타리, 벤치, 체육시설 등)
 7.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
 8. 부설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
 9. 음식물 쓰레기 등 쓰레기 처리시설 및 친환경 시설의 설치·개선
 10. 에너지절약 및 절수 시설의 설치·개선
 11.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 및 관련 시설 설치·개선
 1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안전등급기준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을 받아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여 제8조제2항의 심의를 받은 공동주택
 13.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옹벽 등의 보수
 14.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보안등, 무인택배함 등 단지 내 범죄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 및 보수
 15. 투명한 공동주택 운영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등 자체 운영주체의 회의 공개를 위한 방송장비 설치
 16.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 공동주택
 17.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34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
 2.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준공(사용검사, 승인)일부터 20년이 경과된 주

택에 한한다. 단, 위험정도가 심하여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와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보조금 지원은 준공일부터 20년 이상 된 단지에 한한다. 다만, 공동주택 단지 내 시설물 유지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은 준공일부터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단지도 종합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보조재원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예산 중 일반회계로 충당한다.

② 보조금 지원의 수혜대상은 지원사업 완료 후 10년 이내에 같은 종류의 사업에 지원을 할 수 없다.

제7조(지원의 신청 및 방법) ①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공동주택 보조금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의 명칭 및 위치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사업계획서(설계 내역서 및 사업자 선정방법 포함)
4.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비(자체부담 사업비 포함) 및 산출근거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소유자의 과반이상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8조에 따

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동주택 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보조여부와 보조규모를 결정하고, 결정내용을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사업시행 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사업계획의 수립·집행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대상 및 교부대상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사업내용 및 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4. 보조금의 교부 여부 및 지원비율·금액·방법 결정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토의에 부치는 안건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공동주택업무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예산, 건설, 재난, 건축, 주택관리, 도시개발관련 부서장과, 건축·토목·조경·주택관리·범죄예방 관계 전문가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의 의원 2명을 포함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

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여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 및 의결)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등) 사업비의 보조를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보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 및 조건과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할 때
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16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신청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신청서

공동주택명칭			
공동주택주소	(전화)		
규 모 (동/세대수)		준 공 일	
신청자 주소 (상세 주소)		생년월일	. . .
지 원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업기간			
총 사 업 비			
지 원 요 청 사 업 비		자 체 부 담 사 업 비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입주자대표(회장) (인) 인천광역시검단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공동주택) 또는 입주자 동의서(그 외 공동주택) 2. 사업계획서 3. 견적서 3부(부가가치세 포함)			

관계 법령 발췌

☐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24.>

1.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85조(관리비용 등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층간소음의 측정·진단에 필요한 비용(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운영 비용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2023. 6. 13., 2023. 10. 24.>

인천광역시 검단구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2026. 7. 1. 검단구 출범으로 인한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천광역시 검단구 영구임대아파트단지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여 영구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경감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과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지원대상 (안 제3조)
- 다. 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 (안 제4조)
- 라. 시행규칙 (안 제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공공주택 관리법」 제85조
「인천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 나. 예산조치: 2026년 검단구 예산에 7,895천원 반영함.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 라. 기 타: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관내 영구임대아파트단지의 공동전기 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주체”라 함은 영구임대아파트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 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2. “공동전기요금”이라 함은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단지 내 가로등 포함), 옥내에 설치된 계단 및 승강기 등 저수조, 정화조, 중앙집중식 난방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영구임대 아파트단지 거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리주체가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을 증설하여 전기 요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공용부분 계단 및 복도 등, 관리동 전기요금
2. 승강기 운행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3. 단지 내 산업용 및 보안등 전기요금
4. 중앙집중식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제4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 ① 공동전기요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서식의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신청서를 매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리주체의 지원비용 청구에 대하여 적정성을 확인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동전기요금의 5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단 지 명								
	소 재 지								
	관리사무소 명칭								
	전 화 번 호								
내역	사 용 기 간								
	구 분	보안등 (가로등)	산업용		승강기	복도 및 계단 등	관리동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기타 공동시설
			저수조	정화조					
	개소수								
	전력량								
	신청금액								
	신청금액 합 계								

「인천광역시 검단구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공동전기요금을 지원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년 월 일

○○○○○소장 직인

인천광역시검단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공동전기요금 청구서 및 증빙서류
2.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

210mm×297mm(백상지 150g/㎡)

관계 법령 발췌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인천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제3조(지원대상)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 거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공동전기요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리주체가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을 증설하여 전기요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공용부분 계단 및 복도등, 관리동 전기요금
2. 승강기 운행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3. 단지 내 산업용 및 보안등 전기요금
4. 중앙집중식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제4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 ① 관리주체는 제3조의 지원비용에 대하여 산출근거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청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주체의 지원비용 청구에 대하여 적정성을 확인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전기 요금의 5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1. 제안이유

2026. 7. 1. 검단구 출범으로 인한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 나.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 다.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및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2026년 이후 검단구 예산에 반영 필요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 라. 기 타: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 ①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라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
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홍보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정보제공
3.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교육 실시
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홍보)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인천광역시 검단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충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충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충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2023.10.24>

② 제1항에 따른 충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충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충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충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③ 충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충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충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항에 따른 공동주택 충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0.24, 2024.3.19>

⑤ 공동주택 충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충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입주자등은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24>

1.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 및 사실관계 확인
2. 분쟁의 자율적인 중재 및 조정
3.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층간소음 분쟁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업무

⑧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3.10.24>

1.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원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제21조에 따른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를 위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

다. <신설 2023.10.24>

1. 층간소음의 측정 지원

2.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3.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한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교육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의뢰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⑩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은 제9항에 따라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의 시기·방법 및 비용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0.24>

⑪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들은 관리주체 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3.10.24>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2.>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제3조(충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충간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2026. 7. 1. 검단구 출범으로 인한 「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에 따라 공동주택 등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기능,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나. 위원회의 절차 및 위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10조)
- 다.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2026년 이후 검단구 예산에 반영 필요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 라. 기 타: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에 따라 공동주택 등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에서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조정할 때 적용한다.

제3조(기능)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원활한 공동주택의 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2. 구청장이 공동주택의 민원 해결을 위하여 조정위원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치해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조정위원회의 간사 등) ① 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주택 업무 담당 과장, 서기는 주택관리 업무 담당이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의결서,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공동주택 관리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당사자간 교섭경위서(공동주택관리 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을 신청할 때까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 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한다) 1부

2.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조정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의결서가 작성된 경우 조정위원회는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조정의결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출석요구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조정거부 및 중지)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신청사건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조정의 효력) 제9조제3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 받은 당사자는 조정위원회의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

신청인	공동주택명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피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 교섭 경과의 개요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중

첨부서류	1. 당사자간 교섭경위서(분쟁발생 시부터 신청 시까지의 당사자 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1부 2.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별지 제2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의결서

조정건명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피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신청일자			조정일자	
조정신청 내용				
조정의결 내용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위원장		(서명)	부위원장		(서명)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별지 제3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의결통지서

조정건명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피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신청일자			조정일자	
조정신청 내용				
조정의결 내용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 의결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별지 제4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구서

조정건명				
신청인		피신청인		
분쟁조정 신청내용				
출석 대상자	성명	주소	연락처	비고
				(참고인, 당사자)
출석일자	년 월 일 (00:00)			
출석장소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출석요구하오니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5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거부·중지) 통보서

조정건명				
신청일자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피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분쟁조정 신청내용				
분쟁조정 거부·중지 사유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 사유로 본건의 분쟁조정을 거부·중지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관계 법령 발췌

□ 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지방분쟁조정위원회) ①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할 권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내용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분쟁당사자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해당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소속 공무원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③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2026. 7. 1. 검단구 출범으로 인한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권리와 책무(안 4조)

다. 인권 교육 및 홍보(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인권 증진과 고용 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리 종사자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관리 종사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소장 및 직원, 경비, 미화, 기타 용역근로자 등 각종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 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 등으로 관리 종사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상담, 소송지원,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관리 종사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 등을 말한다.
6. “고용환경 개선”이란 관리종사자의 근무환경에 기본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여, 더 나은 근무여건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과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리 종사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및 입주자 등으로 하여금 관리 종사자에게 기본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권리와 책무) ① 관리 종사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 등은 법 제65조제1항 및 법 제65조의2제3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관리 종사자에게 폭언, 폭행,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5조(지원) 구청장은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주자 등이 기본시설을 설치 및 보수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신청한 지원금
2. 관리 종사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3. 관리 종사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 서비스
4.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홍보·교육 유인물 제작 및 배포

5. 그 밖에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① 구청장은 관리 종사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입주자 등의 폭언, 폭행 등으로 관리 종사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공동주택이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해당 내용을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동주택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관리 종사자와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관리 종사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관리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자에게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입주자등은 제64조제2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8. 10.>

1.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등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2. 폭행,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하여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②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에게 그 위반사실을 설명하고 해당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거나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0.>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실 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를 마치고,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3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등에게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0.>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실 조사 결과 또는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해당 입주자등,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에 따른 보고나 사실 조사 의뢰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 등을 이유로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주택관리업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의2(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 ①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를 말한다)는 「경비업법」 제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수를 지급하고,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2.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④ 경비원 등 근로자는 입주자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0. 20.]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

1. 제안이유

2026. 7. 1. 검단구 출범으로 인한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동주택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감사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나. 감사관 위촉 및 감사 진행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13조)
- 다. 감사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2026년 이후 검단구 예산에 반영 필요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 라. 기 타: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동주택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 대상)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2. 관리주체
3. 관리사무소장
4.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구성원 등

제3조(감사의 요청 등) ①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요청인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된 “감사요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요청인 연명부(별지 제2호서식)”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의 실시여부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감사실시 결정) ① 구청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2.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경우
3.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 개인에 대한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제13조에 따라 처리된 사항과 관련하여 신청된 감사요청서
6.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제3조제1항에 따라 감사 실시 기간 중 다른 공동주택 감사요청서가 접수될 경우 감사실시 결정을 유보할 수 있다.

제5조(사전조사의 실시)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택관리업자 계약기간
2. 관리주체 직원 근무현황
3. 관리사무소장 근무 현황
4.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현황
5. 계약 관련 현황
6.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내역
7.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6조(감사계획 수립)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감사

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및 필요성
2. 감사기간 및 범위
3. 감사반 구성 및 업무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7조(감사반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6조의 감사계획에 따른 감사반을 반장 1명을 포함,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전문 감사관을 위촉하여 반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② 감사반의 반장은 관련 부서장이 되고 반원은 관련 부서 업무 담당자 등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 부서 등 다른 부서 공무원을 포함할 수 있다.

제8조(공동주택 전문 감사관 위촉 등) ① 구청장은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내에서 전문 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조교수·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전문 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촉된 전문 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전문 감사관으로서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2.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9조(감사의 실시) 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에 감사개요를 감사 대상 단지에 감사개시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30일 이내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⑤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보고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감사 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감사 대상 공동주택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감사의 방법) 감사는 감사 대상 공동주택의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장하여 관계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11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 대상 공동

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공정·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감사반원은 단지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⑤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감사결과 통지 및 공개) ① 구청장은 감사 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감사결과 처리) ① 구청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이 필요한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사의뢰·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요청인의 비밀보호) 구청장은 감사 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5조(감사수당) 감사에 참여한 전문 감사관에게는 감사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 감사요청서

대상단지	단 지 명		전화번호 (관리사무소)	
	주 소			
요 청 인 대 표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직 업	
	주 소			
동의인수	동의인수 (동의율)		전체세대수	
감사 대상	※입주자대표회의(그 구성원)의 업무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그 위원)의 업무 등			
감사요청 사항·사유	 ※감사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작성			
기 타	※감사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서명 /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요청인 연명부(입주자등 10분의 2 이상의 동의) 2. 관련 증빙자료(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별지 제2호서식]

요청인 연명부(공동주택 감사 동의)

☐ 단 지 명 :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서명 또는 날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별지 제3호서식]

감 사 결 과 보 고 서

1. 대상단지 : (감사분야 :)
2. 감사기간 :
3. 감사결과 :

연번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 확인서(증거자료 포함) 별첨

4.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20 년 월 일

감사관 직 성명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관계 법령 발췌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2017. 3. 21., 2019. 4. 23.>

1.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24.>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경우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등을 통보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⑧ 관리주체는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고 입주자등의 열람, 복사 요구에 따라야 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법 제9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 10. 22.>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의결
2.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3.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4.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5. 시설물의 안전관리
6.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7.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련업무
8.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업무

② 법 제93조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동별 게시판에는 통보받은 일자, 통보한 기관 및 관계 부서, 주요 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9. 10. 22.>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공개하는 내용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해야 한다. <신설 2019. 10. 22.>

인천광역시 검단구 경관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제6조)
- 나. 경관계획의 내용, 경관사업의 대상 등(제7조, 제9조)
- 다.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제21조)
- 라. 경관위원회 설치·운영 및 심의·자문 대상 등(제22조~제2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 라. 기 타: 심의대상 등 별첨(별표1~4)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경관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시행자”란 경관사업계획서에 대한 경관심의를 거쳐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고 활력이 넘쳐나는 도시경관 형성을 목표로 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책무) 구청장은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경관관리의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고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2장 경관계획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물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2. 경관계획 내용 적정성 여부
3. 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 여부
4.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5.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대한 저촉 여부
6.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7.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로, 광장, 수변 공간 등 공공 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도시시설물 및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4.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5.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경관지구, 미관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 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9.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10. 구민참여를 통한 경관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11. 경관관리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다른 법령과의 법·제도적 연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3.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공청회의 진행, 수당·여비 등의 지급에 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3까지를 따른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장 경관사업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홍보 사업
2.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정비·개선을 위한 경관사업
3. 노후·불량 건축물의 경관개선사업
4.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등) ①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사업의 범위 및 기대효과
2. 경관사업의 추진일정 및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
5. 사업관련 경관계획 자료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4.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5.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11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인천광역시 검단구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영 제9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의견 조정
3. 경관사업 완료 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대상 지역의 구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사업시행자
4.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5.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6. 경관 및 공공디자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협의체는 각 경관사업별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⑤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협의체에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주관 부서의 담당자로 한다.

⑨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2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① 구청장은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관사업시행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행을 위하여 평가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경관협정

제13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4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시범 지역·지구 또는 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기금에 관한 사항
4.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5조(경관협정서 작성)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운영에 관한 사항
4. 경관협정 관련 도서

②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6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운영규정 등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한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의 합의사항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7조(경관협정의 승계자) 협정체결자로서 영 제16조에 따른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승계 내용 및 사유를 기재한 승계동의서
2. 경관협정 내용을 지키기 위한 이행각서
3.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제18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설명서 및 설계도면(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8. 사업계획 관련 자료

② 영 제17조에서 규정한 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① 구청장은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협정체결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행을 위하여 평가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의 경관심의

제20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시시설물 등의 설치 및 보수와 경관개선사업 중 경관심의가 필요하다고 부서장이 인정하는 사업
2.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총 사업비가 20억 원 이상(토지매입비 제외)인 사업

제21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 건축물(단,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서 별표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별표 2에 해당하는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별표 3에 해당하는 연면적 1,000 m² 이상의 건축물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5.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제7조제1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6. 옥외 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② 법 제28조제1항의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와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이 경우 제30조를 따른다.

③ 법 제28조제1항의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14조의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한 개 층 이하로써 연면적 10분의 1 이하로 증축하는 건축물은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관 심의를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경관 심의 결과를 위반하지 아니할 것
2. 건축물 규모의 변경이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건축물 형태, 색채, 마감재 등의 변경이 전체 입면 면적의 10분의 1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4. 공개공지 및 옥외 조경 등의 외부공간계획의 변경이 전체 외부공간 면적의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제6장 경관위원회

제22조 (경관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경관위원회를 둔다.

② 경관 관련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이 경우 제30조를 따른다.

제23조(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대상) ①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구청장이 법 제18조에 따라 경관사업을 위해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구청장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4. 별표 4에 해당하는 사업

②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한 사항
2. 구청장이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3. 사업부서장이 경관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신청하는 사업

제24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영 제26조제9항에서 경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2. 경관위원회의 안건처리는 안건 상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재심의 안건을 포함한다)에 하여야 하며, 반복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경관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경관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처리할 수 있다.
3.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4. 경관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 수립권자, 경관사업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경관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5. 제안자 등은 경관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제안자 등은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경관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영 제25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위원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경관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촉 당시의 직위를 상실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경우

3. 위원이 제26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하거나 직무태만의 경우
6.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7조(수당 등) 경관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영 제26조제9항에서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경관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3. 경관위원회의 경관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소위원회의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경관 소위원회: 법 제21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 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심의
2. 도시디자인 소위원회: 법 제16조에 따른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 법 제26조

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경관심의

3. 그 밖에 경관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제1호 및 제2호 분야 이외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를 따른다.

제29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6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위원회는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공동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주관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를 따른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경관법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원칙) 경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1. 국민이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
2. 지역의 고유한 자연·역사 및 문화를 드러내고 지역주민의 생활 및 경제활동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지역주민의 합의를 통하여 양호한 경관이 유지될 것
3. 각 지역의 경관이 고유한 특성과 다양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적인 경관행정 운영방식을 권장하고, 지역주민이 이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4. 개발과 관련된 행위는 경관과 조화 및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
5.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함과 동시에 새롭게 형성되는 경관은 개성있는 요소를 갖도록 유도할 것
6.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할 것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 지역)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이하 “경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1. 시·도지사
2.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는 제외

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

3.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군(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같다)의 군수

②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군의 시장·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시장·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행정시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공동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요청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16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등은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경관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2. 지역의 녹화(綠化)와 관련된 사업
3.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4.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지닌 경관을 살리는 사업
5.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외의 자는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경관계획을 수립한 시·도지사 등의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등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 또는 승인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시·도지사등이 경관사업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하기 전에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등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경관협정의 체결) ① 토지소유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전원의 합의로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협정의 효력은 경관협정을 체결한 토지소유자등에게만 미친다.

② 일단의 토지 또는 하나의 토지의 소유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그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구역을 경관협정 대상지역으로 하는 경관협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소유자 1인을 경관협정 체결자로 본다.

③ 토지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1인이 경관협정을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 ④ 경관협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1. 건축물의 의장(意匠)·색채 및 옥외광고물(「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를 말한다)에 관한 사항
 2. 공작물[「건축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제27조제4항 및 제28조제3항에서 같다)·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축조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건축설비(「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를 말한다)의 위치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외부 공간에 관한 사항
 4. 토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5. 역사·문화 경관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⑤ 토지소유자등이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경관협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경관협정의 명칭
 2. 경관협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범위
 3. 경관협정의 목적
 4. 경관협정의 내용

5. 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성명·명칭과 주소

6. 경관협정의 유효기간

7. 경관협정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경관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26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하 이 조에서 “발주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 3. 13.>

1. 「도로법」에 따른 도로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시설

3.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4.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기준은 환경 관계 법률에 따른 환경성평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에서 구성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심의 결과를 15일 이내에 해당 경관위원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

제27조(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①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기준은 환경 관계 법률에 따른 환경성평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의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의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주변 지역의 경관 현황에 관한 사항
3. 경관 구조의 설정에 관한 사항
4.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 등 주요 경관 요소를 통한 도시공간구조의 입체적 기본구상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사전경관계획을 수립(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우수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을 요청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기준은 환경 관계 법률에 따른 환경성평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우수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2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이하 이 조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준의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준 완화 요청 및 결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경관위원회의 설치) ①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 소속으로 경관위원회를 둔다. 다만, 경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별도의 경관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가 속한 시·도에 설치된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은 경관 관련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30조(경관위원회의 기능) 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2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 제13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승인

3. 제16조에 따른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

4. 제21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

5. 제26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6. 제2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7.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 심의

8.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이 경관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시·도지사등에만 해당한다.

1.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3. 경관에 관한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31조(경관위원회의 구성·운영)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공디자인 기본 원칙(제3조)
- 나.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제6조)
- 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제8조~제17조)
- 라. 전담부서의 설치 등(제1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 라. 기 타: 심의대상 등 별첨(별표1)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지방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지방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3. “공공시설물등”이란 별표에서 정하는 시설물 등으로서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구, 지방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이 경우 구로 기부채납 예정 사업, 구에서 관리 예정인 사업의 시설물을 포함한다.
4.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공공디자인의 기본 방향, 원칙 및 세부기준을 말한다.
5. “표준디자인”이란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제1항에 따

른 표준디자인을 말한다.

제3조(공공디자인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른다.

1. 공공적 가치와 공공의 이익 구현
2.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도시 정체성과 독창적 이미지 형성
3. 심미성과 쾌적성, 기능성과 안전성 확보
4. 지속가능성 및 친환경성 추구
5. 창의적인 예술성 추구
6.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적용
7. 장애의 유무, 연령,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제한 없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이하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라 한다)
8.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조성하거나 변경 또는 개선(이하 “범죄예방도시디자인”이라 한다)
9.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구민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구민과 협력하여 디자인을 통해 효율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제6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구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개선 및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및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보에 공고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 참여 등) ①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구보에 공고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별표 공공시설물등의 설치 및 디자인 개발에 관한 사항
4. 구로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구가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된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

5.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의·자문을 받은 경우
2. 재해·재난 상황 등 긴급한 설치 및 복구공사가 필요한 경우
3.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으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 없이 사업비의 10분의 1 범위에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4.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품 및 표준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
5. 공공시설물등의 조성·제작 또는 설치에 필요한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6. 공공시설물등의 단순 보수·교체공사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7.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공사, 설계공모 방식 등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③ 위원회 심의 결과 시행에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 사업부서 및 지방공공기관의 장은 디자인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하며, 기본설계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구 및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구의원, 도시·건축·조경·토목·교통·환경·디자인·조명·미술·색채·예술·범죄예방도시디자인·공공조형물·모두를 위한 디자인·영상매체 등의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공공디자인 업무 관련 국장이 수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과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

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忌避)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구성 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8명 이상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이 된다.

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긴급하게 필요한 사안으로 예상하지 못한 상황 발생 등 위원회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여 서면심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업무는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으로 한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위원장으로 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에서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은 소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④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과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 실비
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공공디자인의 진흥 등

제18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법 제17조에 따른 전담부서는 공공디자인 담당
부서로 한다.

② 구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에게 협의할 수 있다.

③ 구 각 부서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전
담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세부 적
용과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각각의 공공시설물등의 종류에 따
른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시 또는 구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
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방공공기관의 장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시 또는
구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지방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20조(공공디자인 시범·공모사업의 시행)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동장 또는 주민 등의 신청을 받아 시범사업을 선정할 수 있으며, 사업의 성격을 고려한 동별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에서 추진하는 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추진방법, 공모방식, 포상 등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공시설물등의 종류 및 심의 대상(제2조 및 제8조 관련)

1. 공공공간

분 류	세부 항목	심의기준
공공공간	공원, 광장(지하광장 포함), 자전거도로,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2. 공공시설물

분 류	세부 항목	심의기준
도로시설물	가로등, 펜스, 불라드, 버스 및 택시 정류장, 외부엘리베이터, 자전거보관대, 방음벽, 교량,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총 사업비 1억 이상
편의시설물	벤치, 파고라, 가로화분대(플랜터), 수목보호덮개, 관광안내소, 음수대, 분수대, 가로판매대, 휴지통, 간이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공급시설물	맨홀덮개, 배전함, 신호등 및 가로등 제어함, 제설함, 소화전, 전화부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3. 공공시각매체

분 류	세부 항목	심의기준
교통관련 시각매체	공공 및 사설안내표지, 주차장안내표지 및 주차요금표지, 버스 및 택시 정류장 표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총 사업비 1억 이상
보행관련 시각매체	보행자안내표지, 지역안내사인, 관광안내표지, 관광안내도, 국가유산 설명표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영상정보 시각매체	대기 오염 전광판, 교통 상황 전광판, 버스정보 전광판, 디지털 영상매체,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환경연출 시각 매체	벽화·슈퍼그래픽, 공사장가설울타리·가설가림막,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비고: 위 표의 총 사업비는 각종 보상비,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사업비로 한다.

관계 법령 발췌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광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광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역계획을 수립하려는 시·도지사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듣고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1.>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 및 광역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별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1.>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광역계획 또는 시·군·구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제9조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변경한다. <개정 2023. 3. 21.>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할 지역의 해당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1., 2023. 8. 8.>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며,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는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1.>

⑥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제5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안내 및 제안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 3. 21.>

[제목개정 2023. 3. 21.]

제9조(지역위원회) ①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및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전담부서의 설치 및 인력의 배치)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립신청(안 제4조~안 제7조)

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안 제8조~안 제11조)

다.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라. 기 타: 건립 신청, 계획, 관리대장 등 별첨(별지 제1~3호 서식)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로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조형시설물(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환경시설물(분수대·폭포 등), 상징조형물(상징탑·기념비·상징물 등)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건립할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건립신청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6.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7.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이 미관에 있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건립 신청) 건립주체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립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에 기부 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공공조형물 건립 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제5조(비용부담) 공공조형물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건립대상 선정기준) ① 공공조형물 건립대상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가치 구현 및 지역 정체성과의 부합
2. 작품성·독창성 및 예술성 구현
3. 장소의 적합성·접근성 및 인근 지역의 조망권 저해요인 여부

② 상징조형물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정하며,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주민 공감도

제7조(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공공조형물의 건립위치 선정 및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상의 출생지·묘소·활동지역·동명 및 가로명 등과 건립대상 인물·사실과의 긴밀성
2.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건립되는 공공조형물 등과의 조화
3. 작품성, 조형성 및 재료의 내구성
4. 규격, 안정성 확보 및 설치 부지 면적의 적정화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공조형물 건립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1.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
2.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
3. 그 밖에 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으로, 위원은 외부위원 8명과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외부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해당 회의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1. 외부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및 공공조형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2. 내부위원은 총괄부서장, 주관부서장 및 도로 및 공원 등 관련 부서장
-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 시 개최한다.

② 회의는 회의 개최 때마다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의무와 제척 등) ① 심의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심의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심의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③ 위 각 호의 사항 이외에 심의신청사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심의위원 본인이 심의기피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심의위원은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12조(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① 제4조에 따른 건립신청서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공공조형물 건립 선정 심의의 공정성과 내실화를 위하여 아이디어심의와 실행심의를 분리하여 할 수 있다.

3.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

4.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건립주체에게 건립신청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5.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준공한 후 주관부서로 준공신청을 하여야 한다.

6. 주관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한다.

② 공공조형물 건립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자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이의신청 등) ①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한 차례에 한정한다.

②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 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 ①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 및 비치한다.

2. 공공조형물 등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한다.

3. 공공조형물 등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을 통하여 관리한다.

② 주관부서는 관할 공공용지 내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 연 1회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해당 공공조형물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는 건립된 공공조형물을 옮겨 설치하거나 철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공공조형물의 활용) ①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				
신 청 자	성명(단체명)		전화	
	주 소		대상자와 의 관계	
건립대상자 (동상인 경우)	성명(한 자)		생년월일	
	생 존 기 간		사망자	
	주요업적개요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건립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동상인 경우) 3. 건립취지 4. 기타 증빙서류				

(별지 제2호서식)

공 공 조 형 물 건 립 계 획 서

1. 사 업 명

2. 추진기간

3. 사업개요

가. 규 모 :

나. 모형 또는 형태 :

다. 재 질 :

4. 작품설명

5. 제 작 자

6. 사 업 비

7. 사업비 조달계획

(별지 제3호서식)

(앞쪽)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명칭		건립일자	
위치 (공공시설명)		형상	
구조			
규격			
건립주체		관리기관	
건립취지			
인물 또는 사실 소개			

(뒤쪽)

동상 · 기념비 · 조형물의 위치(배치)도
동상 · 기념비 · 조형물의 전면사진 (5 " × 7 ")

관계 법령 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1. 4. 20.>

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을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5. 1. 20.]

인천광역시 검단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안 제1조)
- 나. 도시재생위원회 구성·운영(안 제5조)
- 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안 제8조)
- 라. 예산지원 등(안 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검단구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등 보안·방범 시설로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편의시설, 휴게시설, 독서실, 자전거이용대, 무인택배 수취함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공동텃밭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로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도시재생 및 구역 내 주민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제3조(주민의 참여) 검단구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4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역량 강화 및 검단구 도시재생대학 운영
2. 도시재생 우수지역 견학
3. 주민의 적극적인 도시재생사업 참여를 위한 주민협의체 활동 지원
4. 그 밖에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는 지원금의 정산내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도시재생위원회 구성·운영)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 후단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7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센터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소통, 주민협의체 등과의 계획수립 지원 및 자문, 도시재생사업 시행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구청장이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센터의 장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검단구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8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3. 주민참여사업, 협업사업 발굴·운영 및 사업 시행주체 발굴·운영
4. 활성화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과 의사전달 및 행정과 주민과의
가교 역할 및 갈등조정
5. 활성화지역 내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 사회경제적 조직 창업 및 운영 지원

6.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복지센터, 지역문화재단, 지역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7.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8. 현장 발생 문제점, 컨설팅 필요사항 등에 대해 도시재생지원기구에 컨설팅 요청
 9.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10.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
- 제9조(예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관리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센터의 위탁업체 선정, 예산 지원방법, 사업비 정산, 실적 보고,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사업추진협의회)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③ 사업추진협의체의 의장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12조(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의 감면) 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2. 주민의 건강, 안전 및 이익 보장
3.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
4.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목적

②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2. 제7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3. 제11조에 따른 사업추진협의회

4.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5.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6.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업

제13조(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금액의 환수)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융자의 조건) ①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아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절차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과 융자를 받는 자와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도지사 및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4.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구청장등은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위임을 받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③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8. 27.>

1. 계획의 목표

2.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3.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3의2.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 달성을 위한 계획

4. 공공 및 민간 자원 조달계획

5. 예산 집행 계획

6.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 계획

7. 제23조에 따른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정비·개발과의 연계방안과 해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도시경제·산업구조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및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에게 그 사업을 포함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을 받은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0.>

⑦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20.>

제27조(보조 또는 용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하거나 용자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2017. 12. 26., 2023. 5. 16.>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비
 2. 도시재생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3. 건축물 개수·보수 및 정비 비용
 4. 전문가 파견·자문비 및 기술 지원비
 5.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6.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비
 7.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
 8.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역활성화사업 사전 기획비 및 운영비
 9.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
 10.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물건 및 권리 취득에 필요한 비용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제24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또는 용자의

규모·비율 등을 달리 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일반회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4. 1. 7., 2015. 1. 6., 2018. 3. 20., 2023. 6. 9.>

인천광역시 검단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등(안 제5조)
- 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안 제10조, 제11조)
- 다. 사업홍보 등(안 제1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로부터 방어적인 구조로 계획·구성하거나,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에 대한 침입을 포함하는 범죄를 말한다.
4. “침입범죄 위험성 등 평가”란 침입범죄에 대한 피해 여부 및 정도, 인근 피해사례, 침입의 용이성 및 이에 대한 방호시설 구비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5.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및 경보장치 등의 제품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방범문, 방범창 및 잠금·경보장치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구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6. 건축물의 창호 등을 통한 침입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에 적합한 방범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한다.

제4조(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및 기업 등에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에 대한 기준 준수 및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방범시설 등 침입방지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5.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및 제2항의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의 현황 및 추진사업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인천 범죄예방지도 및 범죄 발생 현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적용범위)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3. 구에서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4. 특화거리 조성사업
5.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 시설물 설치사업

제8조(방범시설 등 설치기준 등) ① 구청장은 침입범죄에 대한 피해 여부 및 정도, 인근 피해사례, 침입의 용이성 및 이에 대한 방호시설 구비여부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침입범죄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침입범죄 위험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③ 설치를 지원하는 방범시설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 및 제25조에 따른다.

제9조(사업지원) 구청장은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함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사업 중 사업비(토지매입비 제외) 10억 원 이상

사업 또는 시설

5. 제7조제4호부터 제5호까지 사업 중 사업비(토지매입비 제외) 5억 원 이상 사업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심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마쳐야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기본설계를 마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경관 조례」 제2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경관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추진을 위하여 인천서부경찰서,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협업) 구의 각 부서의 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와 관계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도시경관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홍보)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구 구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15조(포상)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2026. 7. 1. 검단구 출범으로 인한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나. 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6조)
- 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관련 사항(안 제9조~제12조)
- 라.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4~15조)
- 마. 광고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16~19조)
- 바. 공공게시시설의 관리 및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20~21조)
- 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23~24조)
- 사. 수수료에 관한 사항(안 제2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2026년 본예산 편성 시 반영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예산법무과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불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4.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5. 그 밖에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4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②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구청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벽보·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의1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전단의 경우 전단 도안을 수리한 후 별지 제2호의2서식을 전단에 표시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

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정당현수막) ① 정당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8호와 영 제35조의2에 따라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현수막을 설치·표시하는 경우 도시경관과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당은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교통·보행안전 우려 등 사고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안전조치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토지·시설물·점표 등을 사용하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벽면 이용간판 및 옥상간판

2.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제6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 광고물 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7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용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계시대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9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 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다. 해당 지역의 구의회 의원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3. 주민협의회는 위원장은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구청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1. 구청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 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구청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

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인천광역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은 제8조를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12조(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게 우수광고사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장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구청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해야 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 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2항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회의 간사는 옥외광고 관련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

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⑥ 영 제3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시 조례 및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회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 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시설관리공단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7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구청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8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9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 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0조(공공게시시설 관리와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시 조례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이하 "공공게시시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공공게시시설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 등에게 공개경쟁에 의해 심의위원회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의 항목에 의한 평가를 거쳐 공공게시시설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공게시시설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시설기준·선정방법, 공공게시시설의 명칭 수량, 위탁 기간 및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임무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위탁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 또는 구·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에게 위탁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③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및 별지 16호서식의 위탁지정 신청서를 제출 받아 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공공게시시설의 관리 수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수탁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영업장 주소, 위탁한 내용,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수탁자에게 별지 17호서식의 위탁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⑤ 공공게시시설 관리 수탁자는 공공게시시설에 게시할 광고물의 신고 대행 및 신고된 광고물의 게시와 제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공게시 시설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⑥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⑦ 구청장은 공공게시시설 운영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도·점검결과, 공공게시시설 운영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공공게시시설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 협약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지도·감독 결과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6. 그 밖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라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그 사유를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구 게시판에 게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 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 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3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4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구청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 방법·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 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교육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감면 또는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제25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지정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 지정서를 발급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2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시작 전년도 12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22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구청장

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내주어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우와 인천광역시에서 위탁한 교육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6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별표 3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별표 4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 별표 5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세외수입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이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행정기관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허가·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접수·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 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 등이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구청장이 일제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

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안전업무를 위탁한 경우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안전점검 수탁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8조(정비·수거된 현수막, 벽보 및 전단에 대한 보상) 시 조례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현수막, 벽보 및 전단 이외의 현수막, 벽보 및 전단을 정비·수거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3조 관련)

광고물 등	이행강제금
가. 벽면 이용 간판 및 공연간판	
1) 면적 5㎡ 미만	
- 2.0㎡ 이하	20만원
- 2.1㎡ 이상 3.0㎡ 이하	30만원
- 3.1㎡ 이상 4.0㎡ 이하	40만원
- 4.1㎡ 이상 5.0㎡ 미만	45만원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55만원
- 6.1㎡ 이상 7.0㎡ 이하	65만원
- 7.1㎡ 이상 8.0㎡ 이하	75만원
- 8.1㎡ 이상 9.0㎡ 이하	85만원
- 9.1㎡ 이상 10.0㎡ 미만	95만원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110만원
- 12.1㎡ 이상 14.0㎡ 이하	130만원
- 14.1㎡ 이상 16.0㎡ 이하	145만원
- 16.1㎡ 이상 18.0㎡ 이하	165만원
- 18.1㎡ 이상 20.0㎡ 미만	185만원
4) 면적 20㎡ 이상	200만원+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나. 돌출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0㎡ 이하	20만원

- 2.1㎡ 이상 3.0㎡ 이하	30만원
- 3.1㎡ 이상 4.0㎡ 이하	40만원
- 4.1㎡ 이상 5.0㎡ 미만	49만원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55만원
- 6.1㎡ 이상 7.0㎡ 이하	65만원
- 7.1㎡ 이상 8.0㎡ 이하	75만원
- 8.1㎡ 이상 9.0㎡ 이하	85만원
- 9.1㎡ 이상 10.0㎡ 미만	95만원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110만원
- 12.1㎡ 이상 14.0㎡ 이하	130만원
- 14.1㎡ 이상 16.0㎡ 이하	150만원
- 16.1㎡ 이상 18.0㎡ 이하	170만원
- 18.1㎡ 이상 20.0㎡ 미만	190만원
4) 연면적 20㎡ 이상	20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다. 지주 이용 간판 및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1) 연면적 3㎡ 미만	
- 0.5㎡ 이하	30만원
- 0.6㎡ 이상 1.0㎡ 이하	35만원
- 1.1㎡ 이상 2.0㎡ 이하	40만원
- 2.1㎡ 이상 3.0㎡ 미만	48만원
2)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5㎡ 이하	55만원
- 3.6㎡ 이상 4.0㎡ 이하	65만원

- 4.1㎡ 이상 4.5㎡ 이하	80만원
- 4.6㎡ 이상 5.0㎡ 미만	95만원
3)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110만원
- 6.1㎡ 이상 7.0㎡ 이하	130만원
- 7.1㎡ 이상 8.0㎡ 이하	150만원
- 8.1㎡ 이상 9.0㎡ 이하	170만원
- 9.1㎡ 이상 10.0㎡ 미만	190만원
4) 연면적 10㎡ 이상	200만원+연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0㎡ 이하	30만원
- 2.1㎡ 이상 3.0㎡ 이하	35만원
- 3.1㎡ 이상 4.0㎡ 이하	40만원
- 4.1㎡ 이상 5.0㎡ 미만	48만원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55만원
- 6.1㎡ 이상 7.0㎡ 이하	65만원
- 7.1㎡ 이상 8.0㎡ 이하	75만원
- 8.1㎡ 이상 9.0㎡ 이하	85만원
- 9.1㎡ 이상 10.0㎡ 미만	95만원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1㎡ 이상 12.0㎡ 이하	110만원
- 12.1㎡ 이상 14.0㎡ 이하	130만원

- 14.1㎡ 이상 16.0㎡ 이하	150만원
- 16.1㎡ 이상 18.0㎡ 이하	170만원
- 18.1㎡ 이상 20.0㎡ 미만	190만원
4) 연면적 20㎡ 이상 50㎡ 미만	
- 20.0㎡ 이상 25.0㎡ 이하	210만원
- 21.1㎡ 이상 30.0㎡ 이하	230만원
- 30.1㎡ 이상 35.0㎡ 이하	245만원
- 35.1㎡ 이상 40.0㎡ 이하	260만원
- 40.1㎡ 이상 45.0㎡ 이하	280만원
- 45.1㎡ 이상 50.0㎡ 미만	290만원
5) 연면적 50㎡ 이상	300만원 +연면적 5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1) 선전탑, 아치광고물	
- 연면적 5㎡ 이하	30만원
- 연면적 6㎡ 이상 10㎡ 이하	50만원
- 연면적 11㎡ 이상 15㎡ 이하	60만원
- 연면적 15㎡ 이상 20㎡ 이하	70만원
- 연면적 21㎡ 이상	70만원 +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30만원
- 애드벌룬(공) 2개	60만원
- 애드벌룬(공) 3개 이상	80만원+3개를 초과하는 애드벌룬 1개당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1) 시계탑 · 조명탑 · 안내탑 · 일기예보탑	
- 연면적 5㎡ 이하	30만원
- 연면적 6㎡ 이상 10㎡ 이하	50만원
- 연면적 11㎡ 이상 15㎡ 이하	60만원
- 연면적 15㎡ 이상 20㎡ 이하	70만원
- 연면적 21㎡ 이상	80만원+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교통안내소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3) 안내게시판 · 지정벽보판 · 버스승강장 · 택시승강장 · 관광안내도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4) 시 조례에서 인정한 편익시설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 비행선	
- 연면적 10㎡ 이하	150만원
- 연면적 11㎡ 이상	150만원+연면적 1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그 밖의 교통수단	
가) 연면적 3㎡ 미만	
- 1.0㎡ 이하	10만원

- 1.1㎡ 이상 2.0㎡ 이하	20만원
- 2.1㎡ 이상 3.0㎡ 미만	29만원
나)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4.0㎡ 이하	35만원
- 4.1㎡ 이상 5.0㎡ 미만	45만원
다) 연면적 5㎡ 이상	50만원+연면적 5㎡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 이행강제금은 광고물 등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 (광고물 등의 테두리를 말한다)은 포함한다.
- 광고물 등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 등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 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 등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제24조제1항 관련)

종 류	교육시간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및 방법	비 고
신규 교육	6시간	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중 교육을 희망하는 자(종업원을 포함한 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보수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사업자(대표자)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개정 시
행정처분 대상자 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법 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그 밖의 교육	별도 정함	가.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함		

【별표 3】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제26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 등	수수료 ※ 구지역	비고
가. 벽면 이용 간판		
1) 자사광고		
- 면적 6㎡ 이하	4,000원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원	
2) 타사광고		
- 면적 6㎡ 이하	40,000원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나. 돌출간판		
- 연면적 3.5㎡ 이하	20,000원	
- 연면적 3.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 이·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 약국 표지등(1개마다로 한다)	5,000원	
다. 공연간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라. 옥상간판		
- 연면적 10㎡ 이하	40,000원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 는 금액	5,000원	
마. 지주 이용 간판		
- 연면적 10㎡ 이하	20,000원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바.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1개마다로 한다)	20,000원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옥상간판에 준함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m ² 이하	3,000원	
- 연면적 1m ² 초과시 1m ² 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아.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 부에 표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면적 또는 연면적 5m ² 이하	13,000원	
- 면적 또는 연면적 5m ² 초과시 1m ² 마다 더하는 금액	15,000원	
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마다로 한다)		
- 비행선	400,000원	
- 비행기 · 철도차량 · 도시철도차량 · 선박	10,000원	
- 사업용자동차 · 화물자동차 · 자가용 자동차	2,000원	
차.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마다로 한다)	5,000원	
카. 창문 이용 광고물		
-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는 것(1개)	5,000원	
- 목재·아크릴·금속·디지털디스플레이등을 이 용하는 것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타. 현수막		
1) 현수막		
- 10m ² 이하	6,000원	

- 10m ² 초과시 1m ² 마다 더하는 금액	1,500원	
2) 현수막 게시시설		
- 10m ² 이하	10,000원	
- 10m ² 초과시 1m ² 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3) 가로등 현수기(1개)	5,000원	
파. 벽보(50매마다로 한다)	5,000원	
하. 전단(1,000매마다로 한다)	5,000원	
거. 전자게시대(1건)	6,000원	
너. 광고물 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 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등 (단순조명 및 광원이 직접 노출하지 않는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경 우에는 제외하나, 이 경우에도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 우를 포함한다)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 적용(전자게시대는 제외)	

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 등의 규격·사용자재 및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별표 4】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6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등	적용기준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 면적 6㎡ 이하	18,000원
	- 면적 6㎡ 초과 20㎡ 이하	26,000원
	- 면적 20㎡ 초과 1㎡당 더하는 금액	1,000원
나. 돌출간판	- 면적 3.5㎡ 이하	18,000원
	- 면적 3.5㎡ 초과 10㎡ 이하	26,000원
	- 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2,000원
다. 옥상간판	- 면적 50㎡ 이하	27,000원
	- 면적 50㎡ 초과 70㎡ 이하	49,000원
	- 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6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면적 10㎡ 이하	18,000원
	- 면적 10㎡ 초과 20㎡ 이하	26,000원
	- 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000원
마. 애드벌룬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옥상간판에 준함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		
- 벽면에 설치하는 것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 면적 30㎡ 이상 40㎡ 이하	14,000원
	- 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800원
아. 그 밖의 광고물등	-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형광등·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

나.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 가산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가산

2.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

3. 그 밖에 별표 3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

【별표 5】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제26조제1항제3호 관련)

구 분	수수료	비 고
가. 옥외광고사업 신규 등록	15,000원	
나. 옥외광고사업 변경 등록	7,500원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1.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제2호가목에서 법 제3조 또는 법 제3조의2를 위반한 경우로서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한 때(「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2개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나. 제2호가목1)라)·제2호가목2)라)의 소수점 계산에서 $0.0m^2$ 초과 $0.5m^2$ 이하는 $0.5m^2$ 로 $0.5m^2$ 초과 $1.0m^2$ 미만은 $1.0m^2$ 로 계산한다.

다. 제2호 가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장당 또는 개당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하여 부과하며, 여러장 또는 여러개의 불법 광고물을 표시 또는 설치한 경우에는 합계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법 제3조, 제3조의2, 제5조제2항제3호)	법 제20조 제1항제1호			
1) 입간판				
가) 면적 $1m^2$ 이하		14만원	18만원	23만원
나) 면적 $1m^2$ 초과 $2m^2$ 이하		49만원	64만원	84만원
다) 면적 $2m^2$ 초과 $3m^2$ 이하		80만원	105만원	135만원
라) 면적 $3m^2$ 초과하는 면적 $0.5m^2$ 당		80만원+ 8만원을 더한 금액	105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135만원+ 13만원을 더한 금액
2) 현수막				
가) 면적 $3m^2$ 이하		14만원	18만원	23만원
나) 면적 $3m^2$ 초과 $5m^2$ 이하		32만원	42만원	55만원
다) 면적 $5m^2$ 초과 $10m^2$ 이하		80만원	105만원	135만원
라) 면적 $10m^2$ 초과하는 면적 $1m^2$ 당		8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105만원+ 20만원을 더한 금액	135만원+ 25만원을 더한 금액
3) 벽보				
가) 10장 이하		20천원	30천원	45천원

나) 10장 초과 20장 이하		30천원	40천원	55천원
다) 20장 초과 30장 이하		40천원	50천원	65천원
라) 30장 초과		50천원	60천원	80천원
4) 전단				
가)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8천원	장당 10천원	장당 13천원
나)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17천원	장당 22천원	장당 28천원
다) 21장 이상		장당 25천원	장당 32천원	장당 42천원
나.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1의3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다.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2호			
1) 30일 이상 90일 미만			67만원	
2) 90일 이상 180일 미만			117만원	
3) 180일 이상 1년 미만			217만원	
4) 1년 이상			400만원	
라.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마.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2항	25만원	45만원	100만원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① 번 호	광고주(옥외광고업자)						광고물 등의 내용							관리자			⑱ 변 경 사 항	⑲ 비 고
	② 성 명	③ 생 년 월 일	④ 업 소 명	⑤ 전 화 번 호	⑥ 주 소	⑦ 옥외광고업자등록번호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표 시 위 치	⑫ 표 시 기 간	⑬ 광 고 내 용	⑭ 준 공 일 자	⑮ 성 명	⑯ 주 소	⑰ 전 화 번 호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2호의1서식]

옥외광고물 신고필(제3조제2항 관련)



- 현 수 막 : 지름 7센티미터 이상
- 벽보·전단 : 지름 5센티미터 이내
- ※ 다만,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의2서식]

전단신고필증(제3조제2항 관련)

전단신고필

신고번호 : 00-0000

일련번호 : No. 00

. . 까지 00장 배포

인천광역시검단구청장

- 신고번호 : 신고 수리 시 지자체에서 안내하는 번호
- 일련번호 : 신고한 장수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식별 번호
(1번부터 신고한 장수까지 작성)
- 날짜 및 신고한 매수는 별도 입력
 - ※ 일련번호 항목은 공란으로 출력 후 수기로 작성 가능

[별지 제3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인천광역시 검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명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인천광역시 검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원증

규격	가로 6cm x 세로 8cm	바탕색	연녹색	글자	검정색

< 앞 쪽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사원증

사진

(3.5×4.5)

인천광역시 검단구

< 뒤 쪽 >

소속 :
직위 :
성명 :
생년월일 :
자격기한 : 20 . . . ~ 20 .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 검사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직인

[별지 제6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검사구분 []신규 []연장 []변경
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등의 규격
신청일자		검사일자
점검내용		
점검의견		
점검결과 []합격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대장

① 신청 번호	② 신청 일자	신청자			⑥ 광고 물 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	⑦ 광고물 등의 종류	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	⑨ 광고물 등의 규격	⑩ 검 사 일 자	⑪ 검 사 구 분	⑫ 검 사 결 과	검사자			⑬ 비 고
		③ 성 명	④ 업 소 명	⑤ 주 소								⑬ 소 속	⑭ 직 명	⑮ 성 명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8호서식]

제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일련 번호	광고물 종류	표시 내용	수량	보관 연월일	보관 장소	위반장소 · 위치	담당 (취급)자	비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9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반환 청구서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광고물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인천광역시 검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제4항에 따라 위의 광고물 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옥외광고물 등 인수증

인수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광고물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① 번 호	② 일 시	③ 허 가 신 고 번 호	광고주				광고물 등의 내용				⑫ 비 고
			④ 성 명	⑤ 업 소 명	⑥ 전 화 번 호	⑦ 주 소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광 고 내 용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1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제 호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	
수강자	성명
	소속 업소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별지 제12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

[illegible]

210x29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3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 불참신고서

제 호		
신고자	성명	<u>생년월일</u>
	업소명	영업장소재지
	주소	
교육계획	일시	
	장소	
불참사유		

「인천광역시 검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 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인천광역시 검단구 제증명 등 수수료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징수 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직인

[별지 제16호서식]

공공게시시설 관리 위탁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업소명 (단체명)		전화번호	
	영업장소재지			
종업원수			사무실 면적	
「인천광역시 검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신청인(법인·단체)의 자기소개서 1부. 2.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 관련증비서 1부. 3. 인력 및 보유시설·장비 등에 관한 증빙서류 각1부.				수수료 인천광역시검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참조

[별지 제17호서식]

제 호				
공공계시시설 관리 위탁지정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업소명 (단체명)			
	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년)		
위탁내용				
「인천광역시 검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자로 지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직인	

관계 법령 발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 ① 광고물등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군·자치구에 각각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1. 6.>

1. 광고물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광고물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3. 29.]

[제목개정 2016. 1. 6.]

제7조의2(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광고물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 6., 2017. 7. 26.>

1. 광고물등에 관한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광고물 정비 및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주민참여 및 민간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광고물등의 표시 및 설치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

4의2. 제4조의4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가 제출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5. 광고물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의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7.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가등이 하는 옥외광고사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광고물등의 제도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정책위원회의 위원은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 광고물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건축디자인 및 도시디자인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관계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

③ 정책위원회의 조직·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3. 29.]

제1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1. 6.>

1.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2.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3.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전문개정 2011. 3. 29.]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허가 및 신고의 절차)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표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도서 등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이하 “시·군·구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원색사진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도서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 7. 6., 2021. 5. 4.>

1.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2. 광고물등의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시·군·구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관련 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등만 해당한다)
5. 구조안전확인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하려

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5. 4.>

③ 시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현수막·벽보·전단에 대해서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조치로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④ 같은 허가 대상이거나 같은 신고 대상인 광고물과 그 게시시설에 대하여 함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 그 광고물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는 게시시설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10. 10.]

제8조(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등의 표시가 법 제5조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아닐 것
2.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제3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을 준수할 것
3.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전문개정 2011. 10. 10.]

제9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 7. 6., 2021. 5. 4.>

1. 광고물등의 규격

2. 사용자재

3. 광고내용

4. 표시 위치 또는 장소(같은 건물에서의 위치 또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 사항에 관한 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내용만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광고내용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또는 원색도안을 첨부한다. <개정 2015. 12. 31.>

③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본인 또는 법 제10조에 따른 광고물 관리자의 주소 또는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1. 5. 4.>

④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한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현수막(벽면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의 광고내용은 신고 없이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 5. 4.>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7조제2항에 따른 서류 및 도서와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 ⑥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0. 10.]

제10조(광고물등 표시기간의 연장)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표시기간이 1년 이상인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2. 7. 9., 2015. 12. 31., 2016. 7. 6., 2021. 5. 4.>

1. 광고물등의 원색사진(신고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제7조제1항제3호의 서류[자사광고(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에 자기의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광고물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
2. 제3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등으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자가 그 연장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면서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함께 할 수 있다. <신설 2021. 5. 4.>

④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표시기간 연장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했을 때에는 연장된 표시기간이 기재된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새로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 5. 4.>

⑤ 제4항에 따른 연장된 표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작한다. <신설 2021. 5. 4.>

1.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종전의 표시기간 만료일 다음 날
2. 제3항의 경우: 변경허가를 받은 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날

[본조신설 2011. 10. 10.]

[종전 제10조는 제24조로 이동 <2011. 10. 10.>]

제38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건축·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사업자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검사요령,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시·

군·구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10. 10.]

[제40조에서 이동, 종전 제38조는 제36조로 이동 <2011. 10. 10.>]

제43조(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①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은 별표 5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과오납 및 결손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0. 10.]

[제47조에서 이동, 종전 제43조는 제50조로 이동 <2011. 10. 10.>]

제55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8., 2021. 12. 14.>

[전문개정 2011. 10. 10.]

[제46조에서 이동 <2011. 10. 10.>]

인천광역시 검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 제안이유

2026. 7. 1. 검단구 출범으로 인한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안 제1조)
- 나. 기금의 재원 및 용도(안 제2조~제3조)
- 다. 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5조)
- 라. 기금 결산(안 제1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2026년 본예산 편성 시 반영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예산법무과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인천광역시 검단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법 제6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4. 그 밖에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옥외광고물관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금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금 담당 부서의 장

2. 옥외광고와 관련 있는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단,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이어야 한다.)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사람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등)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광고물관리담당이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회계 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옥외광고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옥외광고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현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관계 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를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인천광역시 검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① 시·도지사 및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6. 1. 6.>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개정 2016. 1. 6.>

1.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군·자치구에 배분되는 수익금
2.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6. 1. 6.>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2011. 3. 29.]

[제목개정 2016. 1. 6.]

인천광역시 점단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도시재생,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조성되고 있으나, 명확한 운영기준과 관리주체 부재로 여러 가지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의 사용범위, 운영 절차, 주민참여방식 등을 명확히 하고,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향후 주민주도의 자율적 운영을 유도하고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개선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 시설의 활용도 제고, 갈등 예방, 행정 협력 강화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주요내용

- 가. 정의(안 제2조)
- 나. 사용허가(안 제5조)
- 다. 사용료 징수 및 면제(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경제정책과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복지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공동이용시설”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5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설치한 마을거점(커뮤니티)공간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공동이용시설(이하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는 자를,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수강료”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강좌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대가로 수강생들이 내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기능)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지역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공동체 공간
2. 마을사랑방, 학습·회의 공간, 공연·전시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

민들의 문화·여가활동 공간

3. 그 밖에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업 수행

제4조(관리·운영) ① 구청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의 전부나 일부를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부터 제19조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5조에 따른다.

제5조(사용허가) ①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승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사용자는 매년 운영계획서,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한 후 구청장이 사용권을 지급함으로써 시설의 사용허가가 된다.

④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⑤ 사용자는 사용허가 된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상당액을 변상해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2.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사회질서,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로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3.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 또는 분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4.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5. 기타 사용허가 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을 때
3.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때
4. 허가받은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때
5.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제7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수탁자 또는 사용자에게 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운영상황,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조사·검사·점검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사용허가 조건에 벗어났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 ①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5조에 따라 징수한다.

② 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0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주민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에 따른 공동이용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2. 주민의 건강, 안전 및 이익 보장
3.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
4.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목적

④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에 따른 공동이용 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2.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주민자치회
3. 구청장이 정하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4.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 기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 지원센터

7.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업

제9조(이용료·수강료 등) ① 구청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수강료(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정하는 이용료 등의 징수범위 및 요율은 별표 1과 같다.

③ 구청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 이용자 중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 2와 같다.

④ 이용료 등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⑤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이용시간은 평일 09:00 ~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평일 야간 및 토요일 등에 개방할 수 있다. 다만, 시설관리, 이용자의 안전 및 운영인력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이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마을공동체의 발전 또는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소재한 행정동 내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재료비·교재비를 포함한 이용료 등을 무상으로 할 수 있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소속된 사람

⑦ 제6항제3호의 학교, 기관 및 단체의 범위는 각 호와 같다.

1. 학교 : 「교육기본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초·중·고·대학교 및 각종 학교
2. 기관 : 근거법령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한 기관
3. 단체 :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단체로 정관, 회원명부, 회의록, 최근 6개월 이

상 활동내역이 있는 단체

4. 공공단체 : 법령에 따라 국가의 감독 아래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제10조(이용의 제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특정 종교 활동, 정치적 이용 또는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이용목적에 위반하거나 이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3.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물 유지관리 상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 취지와 목적 등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운영비 등) ① 수탁자 및 사용자는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부담하고 시설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수탁자 및 사용자의 수입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 및 사용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등 자세한 사항은 관리위탁계약서 또는 사용허가 승인서에 명시한다.

③ 사용료 면제를 받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을 지역의 일자리 창출, 지역주민의 복리 및 문화혜택증진,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물 등의 설치) 수탁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수탁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자원봉사자) ① 구청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

자를 적극적으로 모집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호 서식]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공동이용시설 사용승인 신청서			
문서번호		발신일자 20 . . .	
수신처 :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다음과 같이 검단구 주민공동이용시설 사용을 위한 승인을 신청합니다.			
사 용 일 시		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사 용 장 소		주 소 :	
		(건축물 명칭) :	
		시 설 구 분 :	사 용 면 적 :
		(예시: ○층 회의실, 다목적실, 전시실, 갤러리, 공유주방 등)	
사 용 목 적			
예 상 인 원			
신청자	단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		
	등록번호		
	실무 책임자	성 명	
		연락처	
		F a x	
E-mail			
	주 소		
비 고			
1. 사용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합니다. 가. 이용자의 불편 및 시설물 안전에 위반되는 행위 및 물품반입을 하지 않음. 나. 시설 사용 후 사용 이전 상태로 유지시키며, 시설물 훼손 시 즉시 원상복구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함. 다. 목적 이외의 영리적 부대행사를 하지 않음. 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행사참여 예상인원을 초과하지 않음. 마. 사용료 전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함. 바. 사용 신청자는 승인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사용 결과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제출함. 사. 사용 조례 및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추후 사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음. 2.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위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 (인)			

【별표 1】

이용료 등 징수범위와 요율표(제9조제2항 관련)

분 야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이용료 (시설·장비 이용료)	다목적실, 회의실 등	2시간	20,000원 이하 (1시간 초과 1 0,000원)	※ 재료비, 교재비 별도
수강료 (프로그램 수강료)	체력단련실, 각종 강좌 등	1개 프로그램 또는 1 개월	50,000원 이하	

【별표 2】

이용료 등의 감면대상 및 요율(제9조제3항 관련)

구 분	대 상	감면 비율	비 고
이용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 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의상자 1,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100%	
수강료	- 이용료 감면 대상과 동일	100%	재료비 및 교재비 포함

【별표 3】

이용료 등 반환 기준(제9조4항 관련)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이용료		이용일 이전 취소	이미 납부한 이용료 전액
		이용일 이후 (이용일 포함) 취소	반환하지 아니함, 단 미도래한 이용 예정일에 대하여는 전액 반환
수 강 료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교습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 으로 한다.	

관계 법령 발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00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주거환경개선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나.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

제30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내에서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2022.11.15>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2022.11.15>

인천광역시 검단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나. 정의 및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안 제4조)
- 다.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안 제6조)
- 라. 위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세대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바. 65세 이상 노인세대

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아.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2. “화재안심보험”이란 주택 등 주거시설을 대상으로 화재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 피해 발생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공공 또는 민간의 화재보험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상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취약계층이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화재안심보험의 가입대상자 현황, 보장기간, 보장범위·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화재안심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화재안심보험 가입 지원을 위해 민간기업,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민간의 참여와 지원을 적극 유도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으로 한다.

②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예방을 위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소화기 및 화재경보시설 등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
2. 전기, 가스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의 점검 및 차단기, 안전밸브 등 안전부품 설치·교체
3. 청각장애인용 시각표시기능 화재감지기
4. 화재 발생 시 피해 보전을 위한 화재보험 가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안전시설 및 안전용품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은 관할 소방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지원 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이나 친족 또는

통장이 할 수 있다. 또한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6조(지원결정 등) ① 신청서를 받은 동장은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지원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청장이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지원결정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순서를 정하여 동장에게 통보한다.

제7조(위탁)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전기, 가스, 소방 등의 전문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안전취약계층 지원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지원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세대원수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대상자 구분	☐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기 타		☐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정 ☐ 65세 이상 노인 ☐ 북한이탈주민		동 담당
						확 인
지원시설	☐ 소 방	소화기 (개)				
		화재경보시설 (개)				
		청각장애인용 시각표시기능 화재감지기 (개)				
점검시설	☐ 전 기 ☐ 가 스 ☐ 기 타					

「인천광역시 검단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 복지카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계 법령 발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①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이 원활히 수행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26. 7. 1. 검단구 출범)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나. 지역자율방재단의 임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다. 지역자율방재단 소집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라.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 1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부터 제62조까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①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6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에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과 단원을 둔다.

②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시
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라 임명된 방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③ 방재단의 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과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는
제4항에 따른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④ 방재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검단구”
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 등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지
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검단구 외
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자도 단원이 될 수 있다.

⑤ 단원이 되려는 개인은 별지 제2호서식, 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입신청
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신청자가 방재 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단원으로 위촉한다.

제3조(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 ① 영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청장은 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동 방재단의 대표(이하 “동 대표”라 한다)는 해당 동 방재단 단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 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4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방재단의 회의 기록, 행정업무, 비상 연락망 등을 처리하며 회계를 담당한다.

제5조(임원 등의 임기) ① 단장, 부단장, 간사, 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임 및 해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단, 제4호의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자율방재협의회 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3. 단장이 다른 지역 이주 등 대표 자격을 잃을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직무태만 또는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단원이 사망하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단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제2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방재단의 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순찰

2. 법 제45조에 따른 행동 요령 및 대피소 홍보

3. 방재 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비상시 유관 기관과 비상 연락체계 유지 및 주민 대피 유도 및 차량 통제

5. 대피소 및 무더위쉼터·한파쉼터 등 시설 관리

6. 재난지역의 응급복구

7.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 안전 상황실 근무 지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제출

10. 안전 문화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전개

11. 그 밖의 재난 안전 관련 활동 또는 훈련

② 제1항에 따른 방재단의 구체적인 활동 범위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단장은 효율적인 방재단 활동을 위하여 기능별로 반(班)을 나누고, 반별로 활동을 세분할 수 있다.

제8조(방재단의 운영) ① 단원은 방재단 활동을 수행한 후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은 단장은 단원의 방재단 활동을 확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총괄표를 작성해야 한다.

③ 단장은 월 1회 이상 별지 제5호서식의 총괄표를 정리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출된 별지 제5호서식의 총괄표 자료를 향후 방재 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9조(검단구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부단장

2. 동 대표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방재 전문가

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협의회는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0조(소집 등) ① 영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증폭기(앰프) 등의 방송설비를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② 영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산정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및 훈련) ① 영 제62조제3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르며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교육

가. 단장: 연 4시간 이상

나. 단원: 연 1시간 이상

2. 훈련: 연 4시간 이상

② 단원이 방재 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은 해당 연도 민방위 교육 추진 지침에 따른다.

제12조(자문) ① 구청장과 단장은 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영 제64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수당은 매년 회계연도 예산편성 기준 경비 중 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산정한다.

제13조(방재단 활동 지원) ① 단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방재단 활동 계획을 별지 제6호서식의 활동계획서에 따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라 활동계획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하여 활동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방재단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 경비(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등을 말하며, 그 범위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2. 방재단 활동과 관련된 보험가입비(단, 자연 재난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 행사비

4. 단원의 교육·훈련비

5.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6. 그 밖에 방재단 활동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총괄표를 검토하여 해당 단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한다.

④ 단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 등에 대한 비용명세와 증명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출입증) 단원이 방재단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 현장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으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15조(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4 비고 제6호에 따른 보상금(이하 “재해보상금”이라 한다)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재해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재해보상 청구서를 단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방재 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입은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해등급을 확정받은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

③ 제2항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

해야 한다.

1. 요양보상: 의사 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사고 발생 경위서 및 사고 발생 증명서류
2. 장해보상: 의사 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장해증명서류, 사고 발생 경위서 및 사고 발생 증명서류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사고 발생 경위서, 사고 발생 증명서류, 사망진단서 및 장제사실 증명서(장제보상만 해당한다)

제16조(유족의 우선순위 등) ①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②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17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 ① 구청장은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은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고,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급여 수령을 위임한 경우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은 위임하는 사람이 자필로 서명한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제18조(재해보상금의 환수) 구청장은 재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받은 경우는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제15조제1항 관련)

보상등급		보상금 결정 기준	비고
요양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5년분	
장제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3월분	
유족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10년분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	제1급	유족보상금의 100/100	※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제2급	유족보상금의 88/100	
	제3급	유족보상금의 76/100	
	제4급	유족보상금의 64/100	
	제5급	유족보상금의 52/100	
	제6급	유족보상금의 40/100	
	제7급	유족보상금의 20/100	
	제8급	유족보상금의 10/100	
	제9급	유족보상금의 5/100	

비고

1. 요양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비·치료비·수술비·약제비·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2. 장해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등급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3. 장제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4. 유족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5.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임명장(제2조제2항 관련)

임명장

주 소 :

성 명 :

귀하를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자율
방재 단장으로 임명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청 장

[별지 제2호서식]

가입신청서<개인>(제2조제5항 관련)

등록번호 : _____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자격증 또는 기능		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재난 현장경험	※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유사단체 가입여부				
희망 활동내용	※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항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가입신청서<단체>(제2조제5항 관련)

등록번호 : _____

단 체 명			대 표 자	○ ○ ○ (휴대전화)	
주 소				대표전화	
담 당 자	○ ○ ○ (휴대전화)		부서명		
인 원	남 ○○명	여 ○○명	총인원	○○명	
장 비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지원가능	남 ○○명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여 ○○명				
전문분야	※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활동희망분야	※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첨부서류]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항
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붙임]

가입희망 회원명부

[단체명]

연번	성명	성별	생년월일	자격증 및 기능	운전가능 여부	유사단체가입여부	비고
1							
2							
3							
4							
⋮							

[별지 제4호서식]

활동확인서 (제8조제1항, 제10조제4항 관련)

성명	(서명) 또는 (인)		등록번호	※ 별지제2호 또는 제2호의2서식의 등록번호
활동내용	사유	※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방법	※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시간	○○○○년○○월○○일 부터 ~ ○○○○년○○월○○일 까지 (○○시간)		
	장소	※ ○○동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내용	※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확인자 직위 ○○동대표 성명 (서명) 또는 (인) ※ 확인자는 동대표나 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 등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활동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제8조제2항·제3항·제4항, 제13조제3항 관련)

등록 번호	성 명	활 동 상 황		비 고
		횃 수	시 간	
1				
2				
3				
⋮				

1. 등록번호란 ~을 말합니다.
2. 횃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합니다.
3. 자료가 계속 변경되므로 한글이나 EXCEL등으로 관리합니다.
4.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별지 제6호서식]

활동계획서(제13조제1항 관련)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자율방재단]

월 별	주 요 내 용	비 고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 세부사항은 별도로 붙일 수 있습니다.

[별지 제7호서식]

출입증(제14조 관련)

출 입 증	지역자율방재단원증
사 진 (3×4cm)	NO. 000 성 명 : ○ ○ ○ 생년월일 : . .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자율방재단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인) <u>바탕 배경에 검단구 로고 삽입</u>

← 5.5cm →

↑
7.7
cm
↓

[별지 제8호서식]

요양, 장해, 장제, 유족 재해보상 청구서(제15조제2항 관련)**요양 [], 장해 [], 장제 [], 유족 [] 재해보상 청구서**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사고자	소속	전화번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고자와관계	

사고경위 및 요양	사고(사망)일시	
	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1. 화재 【 】 2. 구조 【 】 3. 구급 【 】 4. 기타 【 】	
	요양(진단)병원	요양(진단)부위
	요양(진단)결과	요양기간

청구금액	요양보상	장해보상
	장제 보상	유족보상
	청구금액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제출서류	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임금계좌확인정보 장제·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임금계좌확인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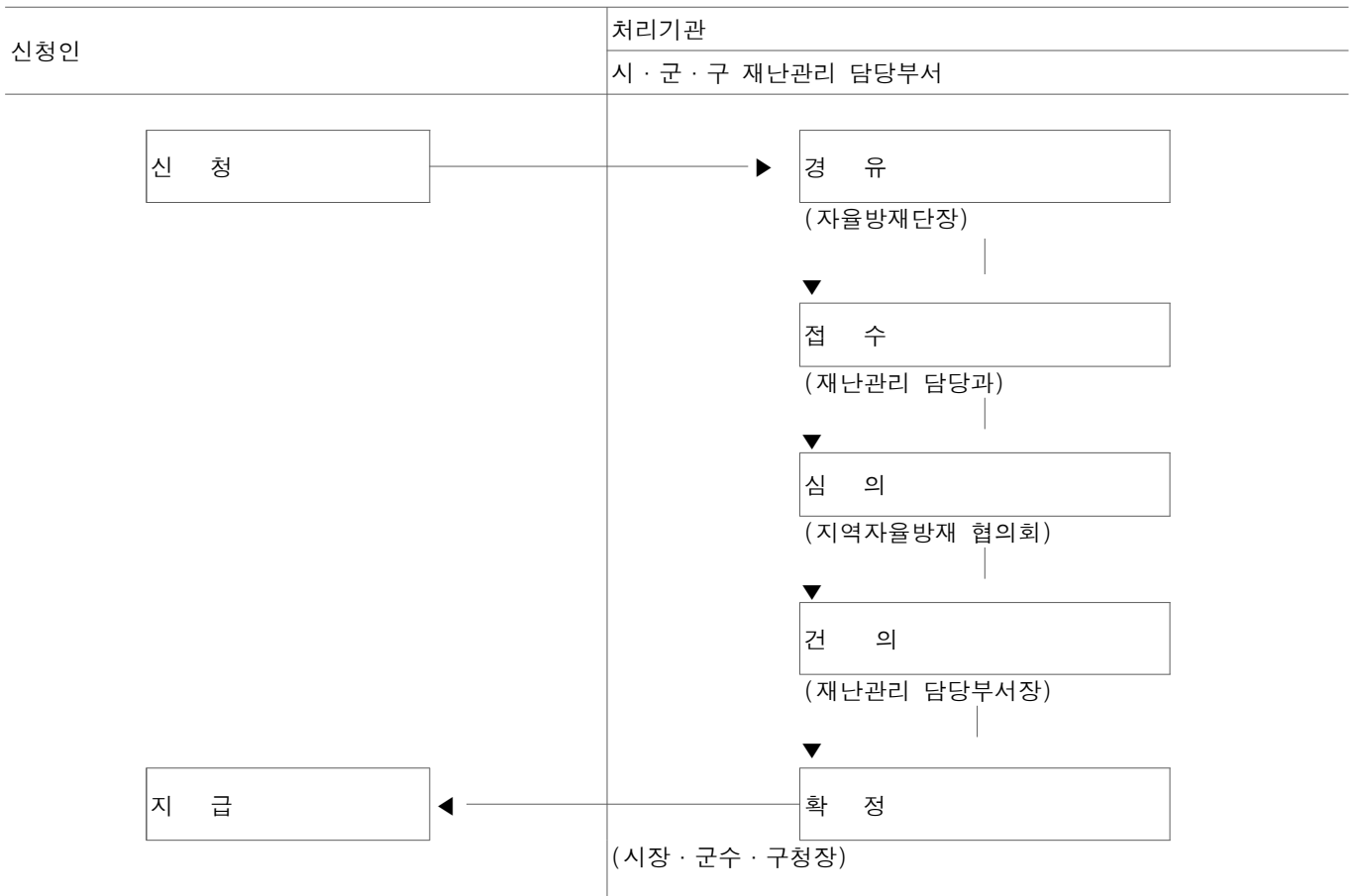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숫자가 가려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별지 제9호서식]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자율방재단

탈퇴 희망 신청서

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89.10.11.
연락처	010-1234-5678	행정동	연희동
주소			
신청사유	ex.) 심신미약 등 개인상 이유로 탈퇴를 희망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관계 법령 발췌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24.>

④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전문개정 2011. 3. 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① 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은 시·군·구 단위로 구성·운영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단위로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안에서 자연재해 예방에 관심이 많으며 조직 구성 및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로 하여금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선도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이하 “지역자율방재단장”이라 한다)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8. 22.]

제61조(소집 등) 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자율방재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6.>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집된 지역자율방재단원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6. 16.>

③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0. 6. 16.>

[전문개정 2012. 8. 22.] [제목개정 2020. 6. 16.]

제62조(교육 및 훈련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역자율방재단원 교육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8. 22.]

인천광역시 검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나. 기금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안 제4조)

다. 기금의 용도 및 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안 제10조)

라. 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기금의 운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되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정적립액”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매년 인천광역시 검단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의무예치액”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3. “사용가능액”이란 법정적립액에서 의무예치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이자 등으로 발생한 운용수입금액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재난의 대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매년 조성된 기금을 인천광역시 검단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가능액은 제6조에 따라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④ 사용가능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제1호에 따른 기금의 공공분야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 제7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4. 재난관련 장비 및 물품 구입
5.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6.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사업
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검단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8.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9. 재난피해시설(검단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10.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11.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12.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13.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발생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14.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15.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이하 “대피명령 등”이라 한다)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용자

16. 영 제74조제2호에 따른 안전조치 비용

17.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용자 등) ①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용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용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용자기금 규모와 용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용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검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민간전문가 3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가 특정 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안전총괄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예산법무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경제정책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도로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건축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가정보육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방재 관련 분야, 기금 등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이 된다.

⑦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구성과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
5.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해당연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 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①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대책본부 기능과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4조)

나. 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다.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13조, 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협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
3. “비상단계”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비·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한 실무반 편성을 통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운영하는 단계를 말한다.
4. “예방”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5. “대비”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 하여야 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훈련, 매뉴얼정비, 비상

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6.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 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7.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8.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인천광역시 검단구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제2장 인천광역시 검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제3조(대책본부 기능)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7. 중앙 및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8. 그 밖에 인천광역시 검단구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대책본부의 구성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에는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두며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본부장: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 되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업무 총괄
 2. 차장: 부구청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
 3. 총괄조정관: 안전교통국장이 되며,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
 4. 통제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수습을 주관하는 국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면서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
 5. 담당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수습주관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
 6. 실무반: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유관 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며, 재난의 수습 업무 수행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 각 호에 따른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재난(자연재난을 말한다)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 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 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① 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비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다.

2. 비상단계

가. 자연재난 비상단계는 경계, 1단계, 2단계~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나. 사회재난의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은 별표 1과 같다.

라. 대책본부 실무반 구성은 별표 8과 같다.

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9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② 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4조제2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10조에 따른 관계 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 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상황판단회의는 발생한 재난의 종류에 따라 관련된 부서의 장,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연락관 등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0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제3장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구성 및 운영

제13조(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한다.

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책본부회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재난·안전 관련 국장 및 과장
2. 기능별 협업부서의 국장 및 과장
3.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을 수습하는 주관 부서의 장이 된다.

⑥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대책본부회의 소집 및 운영) ① 대책본부회의는 본부장이 소집한다.

- ② 본부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두로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
- ③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 ④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검단구 대책본부회의에 배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 ⑤ 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재난상황의 관리

- 제15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 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 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 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
 - 2. 구조·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 상황
 - 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 설치 상황
 - 4. 지역주민 대피 및 대책본부의 수습 상황

5.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사항

④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6조(재난현장 조치) 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관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 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재난상황의 통보 등) 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통보할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방법으로 한다.

제18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재난 예보·경보의 실시 등) ① 본부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이 예보·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 재난안전대책

본부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본부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실무반의 임무(제4조제1항 관련)

1. 자연재난의 경우

구 분	업무와 역할
가. 상황관리 총괄반	1)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팀 가)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나)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다)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라)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마) 주요인사 주재 회의 등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바)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사) 화상회의 준비·운영 아)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2) 상황보고서 작성 팀 가)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나) 주요 인사 종합상황실 방문 시 보고서 작성 다) 피해정보의 수집·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난정보 파악 (1) 태풍·호우: 펌프장 가동, 저류지 확보, 기상변동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2) 대설: 폭설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3) 지진(지진해일): 여진 및 추가지진 발생가능성 등 지진 정보 파악 마) 호우피해정보 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 기관에 제공 바) 인명·재산 피해상황 관리 사)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아)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자) TV 방송 모니터링 차)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3)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팀 가)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개최 나)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관리 다)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라) 대통령·국무총리·중앙대책본부장·수습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마) 비상근무 단계 결정 바)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사)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아) 재난발생지역의 예보·경보 실시 등 의사결정 지원 자)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차)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카)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타)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파) 국가재난관리시스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NDMS) 교육 등 시스템운영 지원
	4) 행정지원팀	주요 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관리
나.협업기능반	1)긴 급 생 활 안정지원반	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 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관리(수용·급식 등) 다)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라)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마)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바)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2) 재 난 현 장 환경정비반	가)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나)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다)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 처리시설 등) 설치·운영의 지도·확인 라) 각 부서, 유관기관 및 동 행정복지센터 복구현황 파악
	3)긴급통신지원반	가)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나)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다)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라) 각 부서, 유관기관 및 동 행정복지센터 복구현황 파악
	4) 시 설 피 해 응급복구반	가) 공공·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나) 공공·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다) 각 부서, 유관기관 및 동 행정복지센터 응급복구현황 파악
	5) 에너지공급 피 해 시 설 기능복구반	가)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및 긴급 복구 상황 파악 나)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다)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라) 각 부서, 유관기관 및 동 행정복지센터 복구현황 파악
	6) 재난수습 홍 보 반	가)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나) 텔레비전·라디오·케이블텔레비전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경보 실시사항 등의 전파 다)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마) 언론발표 준비·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바)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사)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아)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자)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차) 현장, 중앙대책본부, 수습본부, 시·군·구대책본부의 재난수습 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7) 재난관리자 원 지 원 반	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자 원 공동활용시스템 운영 나)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isaster Resources Sharing System: DRSS)가동 다)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라) 장비·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마)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자재로 활용하는 공동활용 행정지도 바)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
8) 교통대책반	가) 재난발생지역 해상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 나) 육상, 해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 다) 교통두절구간(도로, 해상, 항공) 실태 파악 보고 라) 연안여객선, 유도선 운항 통제 실시 마) 해상 및 항공분야 긴급수송 지원 바)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9)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가)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다)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라)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마)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가)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도·확인 나)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다)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라)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11) 사회질서 유 지 반	가)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다)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라)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마)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12) 수색 구조 구 급 반	가) 재난지역 인명 수색, 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나)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다)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라)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마)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다. 관계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지원반		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별 12개 협업 기능·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2. 사회재난의 경우

구 분		업무와 역할
가. 재난상황 총괄반	1) 상황관리 총괄팀	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대통령·국무총리·중앙대책본부장 사고수습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
	2) 수습상황 파악팀	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라) 현장통합지원본부, 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마)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바)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사) 각종 여론·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나. 협업기능반	1) 긴급생활안정지원반	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2) 재난현장환경정비반	
	3) 긴급통신지원반	
	4) 시설피해응급복구반	
	5) 에너지공급과해시설 기능복구반	
	6) 재난수습홍보반	
	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8) 교통대책반	
	9)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11) 사회질서 유지반	
	12) 수색, 구조·구급반	
다.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별 12개 협업 기능·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제4조제2항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검단구 주관부서
1. 교육부	가.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교육지원과
2. 미래창조과학부	가. 우주전파 재난 나. 정보통신 사고 다.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홍보정책과 기획예산과
3. 외교부	가.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안전총괄과
4. 법무부	가.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안전총괄과
5. 국방부	가.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안전총괄과
6. 행정안전부	가. 정부중요시설 사고	안전총괄과
7. 문화체육관광부	가.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문화관광체육과
8. 농림축산식품부	가. 가축 질병 나. 저수지 사고	경제정책과
9. 산업통상자원부	1. 가.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2. 나. 원유 수급 사고 3. 다. 원자력안전 사고(과업에 따른 가동중단을 포함한다) 4. 라. 전력 사고 5. 마.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소관부서 (경제정책과 등)
10. 보건복지부	가. 감염병 재난 나. 보건의료 사고	보건행정과
11. 환경부	6. 가. 수질 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7. 나.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8. 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9. 라.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10. 마. 황사	환경관리과 생태하천과 안전총괄과
12. 고용노동부	11. 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안전총괄과
13. 국토교통부	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나. 고속철도 사고 다.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도로과 교통정책과 안전총괄과

	라. 도로터널 사고 마.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바. 육상화물운송 사고 사. 지하철 사고 아. 항공기 사고 자.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차.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도로과 생태하천과 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과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건축과
14. 해양수산부	가.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나. 조수(潮水) 다.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라. 해양 선박 사고	경제정책과 생태하천과
15. 행정안전부	가.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나. 화재·위험물 사고 다.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라.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마.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지진·화산·낙뢰·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 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도로과 소관부서 (안전총괄과 등) 문화관광체육과 소관부서 (안전총괄과 등) 안전총괄과
16. 금융위원회	가.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경제정책과
17. 원자력안전위원회	가. 원자력안전 사고 나. 인접 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안전총괄과
18. 국가유산청	가. 국가유산 시설 사고	문화관광체육과
19. 산림청	가. 산불 나. 산사태	산림정원과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별표 3]

검단구 대책본부 전결사항

일련 번호	사무내용	업무내용	담당관	통제관	총괄 조정관	차장	본부장
1	복무관리	비상단계 근무명령	○				
		근무자 출장명령·복명	○				
		관계 기관 파견 요구		○			
2	상황관리	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				
		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				
		재대본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			
		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		
		재난 예보·경보 실시		○			
		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				
3	검단구 대책본부 운영상황	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		
		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
4	피해조사 및 복구	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		○			
		피해조사결과 보고				○	
		재난복구계획 수립					○
5	검단구 대책본부 회의	회의 소집	○				
		회의결과 통보			○		
6	특별재난지 역 선포 등	재난사태 선포 여부 판단				○	
		재난사태 선포 건의					○
		특별재난지역선포 여부 검토보고			○		
		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

[별표 4]

준비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8조제1항제1호 관련)

1. 가동기준: 평상시
2. 실무반 편성

차 장	부구청장
총괄조정관	안전교통국장
통제관	재난수습 관련 부서 각 국장
담당관	재난수습부서장
실무반	안전총괄과 공무원과 각 부서에서 파견된 인력이 실무반의 기능을 수행한다.

- 비고: 1. 준비단계는 안전총괄과 소속 직원이 지역대책본부 실무반의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한다.
2. 안전총괄과는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직원을 파견 받아 실무반 근무인력을 보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5]

자연재난 발생 시의 검단구 대책본부 편성기준(제8조제1항제2호 관련)

1. 호우·대설·태풍 시 편성기준

가. 경계단계

본 부 장	구청장		
차 장	부구청장		
총괄조정관	안전교통국장		
통 제 관	재난수습주관 부서 국장		
담 당 관	재난수습주관 부서장		
실 무 반	인 원	총 6+a명	
	반 장	재난안전상황실 팀장 또는 담당	
	1) 상황관리 총괄반	재난정보수집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 재난 총괄부서 2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3명
	2) 협업기능반 (a)	가) 긴급생활안정지원반	· 복지정책과
		나) 재난현장환경생태반	· 자원순환과
		다) 긴급통신지원반	· 정보통신과
		라) 시설피해응급복구반	· 도로과, 건축과, 생태하천과, 산림정원과, 환경관리과, 문화관광체육과
		마)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환경관리과
		바) 재난수습홍보반	· 홍보정책과
		사) 재난관리지원지원반	· 안전총괄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정책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소 보건행정과
		차) 자원봉사지원 및 관리반	· 총무과
		카) 사회질서유지반	· 서부경찰서 (안전총괄과)
		타) 수색·구조·구급반	· 검단소방서 (안전총괄과)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나.비상1단계

본 부 장	구청장		
차 장	부구청장		
총괄조정관	안전교통국장		
통 제 관	재난수습주관 부서 국장		
담 당 관	재난수습주관 부서장		
실 무 반	인 원	총 13+α+β명	
	반 장	안전총괄과장	
	1)상황관리 총괄반	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 상황관리팀	· 재난 총괄부서 3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2명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	· 재난 총괄부서 1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2명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 재난 총괄부서 1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2명
		라) 행정지원팀	· 총무과
	2)협업기능반 (α)	가) 긴급생활안정지원반	· 복지정책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자원순환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 정보통신과
		라) 시설파해 응급복구반	· 도로과, 건축과, 생태하천과, 산림정원과, 환경관리과, 문화관광체육과
		마) 에너지 공급 파해시설 기능복구반	· 환경관리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홍보정책과
		사) 재난관리지원 자원반	· 안전총괄과
		아) 교통 대책 반	· 교통정책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소 보건행정과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총무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서부경찰서 (안전총괄과)
		타) 수색 구조 구급반	· 검단소방서 (안전총괄과)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검단구 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 비상2~3단계

본 부 장	구청장		
차 장	부구청장		
총괄조정관	안전교통국장		
통 제 관	재난수습주관 부서 국장		
담 당 관	재난수습주관 부서장		
실 무 반	인 원	총 18+α+β명	
	반 장	안전총괄과장	
	1) 상황관리 총괄반	가) 재난정보수집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 관리팀	· 재난 총괄부서 3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3명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	· 재난 총괄부서 1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2명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 재난 총괄부서 2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5명
		라) 행정지원팀	· 총무과
	2) 협업기능반 (α)	가) 긴급생활안정지원반	· 복지정책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자원순환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 정보통신과
		라) 시설해충방제반	· 도로과, 건축과, 생태하천과, 산림정원과, 환경관리과, 문화관광체육과
		마) 애치공급파해설 기능복구반	· 환경관리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홍보정책과
		사) 재난관리 자원 지원반	· 안전총괄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정책과
		자) 의료·방역 서비스지원반	· 보건소 보건행정과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총무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서부경찰서 (안전총괄과)
		타) 수색 구조 구급반	· 검단소방서 (안전총괄과)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검단구 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자연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별표 6]

사회재난 발생시의 검단구 대책본부 편성기준(제8조제1항제2호 관련)

1. 편성기준

본 부 장	구청장		
차 장	부구청장		
총괄조정관	안전교통국장		
통 제 관	재난수습주관 부서 국장		
담 당 관	재난수습주관 부서장		
실 무 반	인 원	총 10+ α + β + γ 명	
	반 장	안전총괄과장	
	1)재난상황 총괄반	가) 상황관리총괄팀	· 재난 총괄부서 2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2명
		나) 수습상황과악팀	· 재난 총괄부서 2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3명
	2)협업기능반 (a)	가) 긴급생활안정지원반	· 복지정책과
		나) 재난현장환경정비반	· 자원순환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 정보통신과
		라) 시설·해응복구반	· 도로과, 건축과, 생태하천과, 산림정원과, 환경관리과, 문화관광체육과
		마) 에너지공급과해설 기능복구반	· 환경관리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홍보정책과
		사) 재 난 관 리 자 원 지원반	· 안전총괄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정책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검단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총무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서부경찰서 (안전총괄과)
		타) 수색 구조구급반	· 검단소방서 (안전총괄과)
	재난대응협업반(β)		·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현장지원반(γ)		· 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

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재난대응협업반·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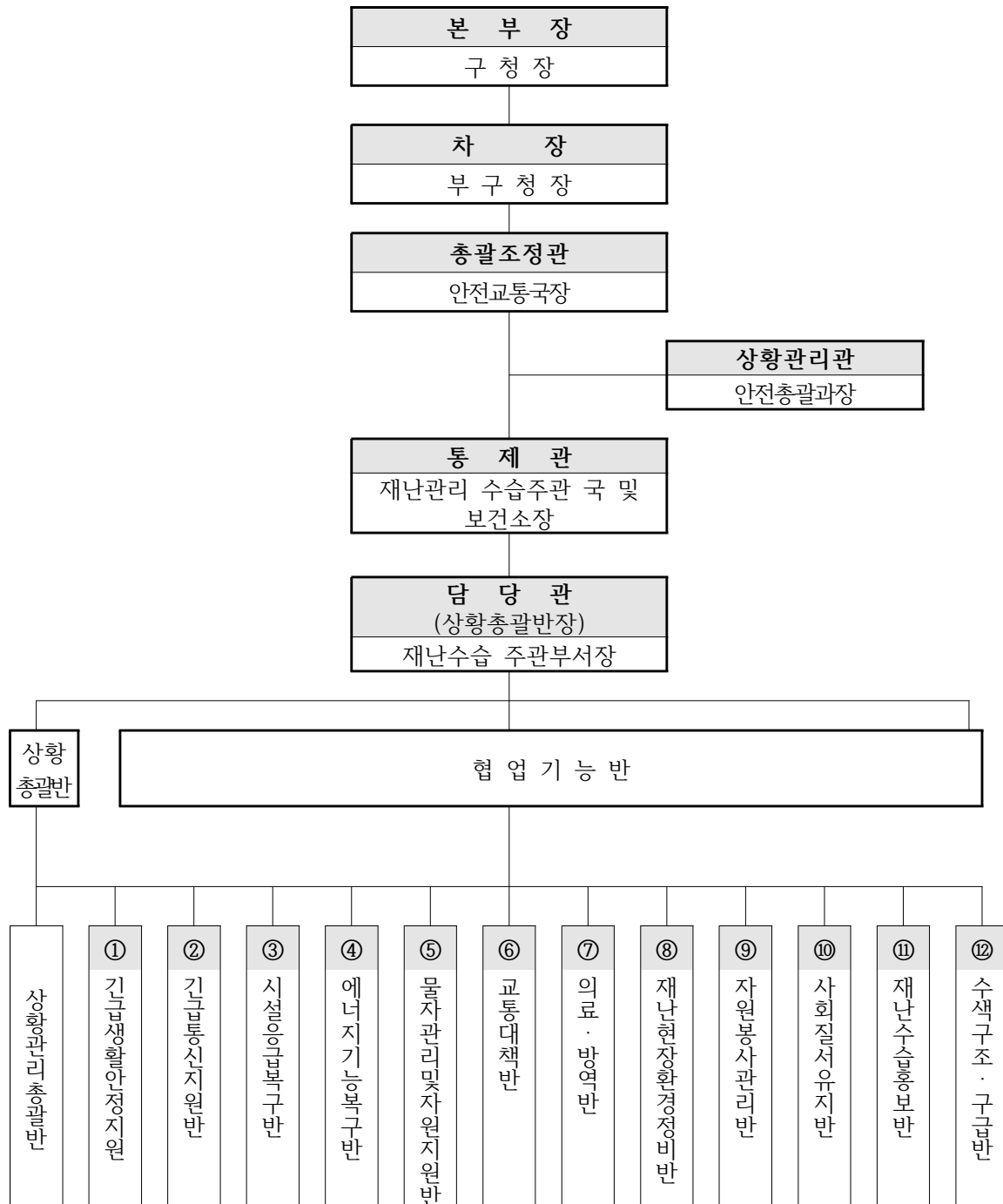
2. 사회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별표 7]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별표 5 및 별표 6 관련)

구분			비상단계 기준
1. 자연재난	풍수해 (태풍·호우·대설·지진·지진해일 및 화산)	1) 경계 단계	가)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로 호우주의보 또는 대설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나) 상황판단회의 결과 검단구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비상 1 단계	가)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로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상황판단회의 결과 검단구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3)비상2~3단계	가)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로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광역적인 태풍경보가 발표된 경우 다) 호우·대설·태풍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사회재난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검단구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별표 8]

검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구성도

관계 법령 발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② 시·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③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6., 2014. 12. 30.>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인천광역시 검단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인천광역시 검단구 안전관리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4조)
- 나.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6조)
- 다. 안전관리위원 및 실무위원의 임기 및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1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재난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고 한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법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구를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인천광역시는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부구청장
2. 재난안전업무 담당 국장
3. 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소방서장
4. 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경찰서장
5. 구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부대의 지역사령관으로서 대대장급
6. 구의 관할구역 교육장
7. 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지역책임자
8. 재난관리에 관한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위원회 및 제6조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구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 회의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이 사전 검토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따른 관계기관 간 협의·조정 할 사항의 검토 및 정리
3. 법 제66조의11에 따라 구에서 개최(주관)하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 심의
4. 그 밖에 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협의·조정 및 검토

② 실무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안전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 및 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직무와 회의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1항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조정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조정위원장”으로, “위원”은 “실무조정위원”으로 본다.

⑤ 실무조정위원회 회의는 제3조에 해당하는 관계기관·단체장, 축제 주관부서장의 요청과 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과 관련하여 회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분야 실무조정위원만을 소집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

(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활용) 위원장은 안전관리에 관한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등은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 관리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게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 요청) ① 위원회등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은 기관·단체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와 실무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간사 1명을 두되, 위원회의 간사는 안전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실무조정위원회의 간사는 안전관리 업무 담당이 된다.

② 위원회등의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위원회등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

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기록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결과의 통보) 위원회등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3조(실비지급) 구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등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위원회등의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등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지역위원회) ①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도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2. 22., 2013. 8. 6., 2014. 12. 30., 2015. 7. 24., 2020. 6. 9., 2024. 1. 16.>

1. 해당 지역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2의2.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의 선포에 관한 사항(시·군·구위원회는 제외한다)
 3.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상급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시·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시·군·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③ 시·도위원회와 시·군·구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 8. 6.>

④ 삭제 <2013. 8. 6.>

⑤ 지역위원회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8. 6.>

[전문개정 2010. 6. 8.]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로서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참여 예상 인원의 규모와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6.>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9. 12. 3.>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은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그 밖에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 또는 해당 기관의 소관 사항에 대한 역할 분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 12. 26.>

⑥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그 밖에 관계 기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안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6.>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및 제5항에 따른 협조 또는 역할 분담의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 2023. 12. 26.>

[본조신설 2013. 8. 6.]

[제66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66조의11은 제66조의13으로 이동

인천광역시 검단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안 제3조)
-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 시설의 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주최”란 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
4. “주관”이란 주최측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실제로 진행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5. “후원”이란 상업적인 목적이나 금전의 대가없이, 행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구”라 한다) 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중 순간 최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1. 구 또는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구 또는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구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연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해 각종 재난과 사고를 예방하고, 각종 재난 등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경찰청, 소방서 등 안전 관리 관련 기관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개요 (일시, 장소, 주최·주관·후원, 주요내용, 출연자, 참여예정인원 등)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제2항 각 호의 사항
3.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4. 옥외행사 장소 및 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통한 안전관리대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행사의 경우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1.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2. 구 및 구의 출자·출연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④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시설의 안전점검) ① 제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옥외행사 실시 1일 전까지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옥외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려는 자가 제5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안전점검 결과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 또는 안전지도를 실시 하여야 한다.

제7조(긴급안전조치)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사 중단 등 긴급안전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 협력)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소방서장 및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 등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피난안내 등 홍보) 구청장은 위급상황 발생 시 행사 참여자 또는 군중에 게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행사 시작 전 피난 안내(음성안내 또는 영상물 상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안전관리요원)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 및 제5조제4항에 따른 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에 따른 배치, 임무 등에 사전 교육을 실시할 것
2. 응급·구조를 위하여 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를 안전관리요원으로 배치할 것
3. 안전관리요원임을 누구나 식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에게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4.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할 것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로서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참여 예상 인원의 규모와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

우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은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그 밖에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 또는 해당 기관의 소관 사항에 대한 역할 분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그 밖에 관계 기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안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 절차 및 제5항에 따른 협조 또는 역할 분담의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②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하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축제의 개요
2. 해당 지역축제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및 관리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다중운집 등에 따른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5.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인천광역시 검단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종합대책 수립(안 제4조)
- 나. 폭염저감시설 확대 설치 등(안 제5조 ~ 안 제7조)
- 다.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홍보 실시(안 제8조)
- 라.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일최고 체감온도가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2.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의 “안전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폭염저감시설”이란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구청장이 지정한 쉼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종합대책 수립) ①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폭염 현황 및 전망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폭염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대책

5. 폭염 안전사고 예방대책

6.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홍보

7.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8. 그 밖에 폭염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폭염저감시설 확대 설치) 구청장은 폭염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폭염 저감시설을 확대 설치할 수 있다.

1. 안개분사, 자동살수시스템, 분수대 등 수경시설

2. 쿨루프 및 쿨페이브먼트 등 열차단재 시설

3. 그늘막

4. 승객 대기시설 에어컨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폭염저감시설

제6조(폭염취약계층 지원)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방문 건강 관리 활동

2. 선풍기 등 냉방용품 지원

3. 지붕 녹화, 건물 옥상 차열페인트 시공

4.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무더위쉼터 운영 지원)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냉방시설 수선, 냉방용품·식수·비상약품 등 확보

2. 무더위쉼터 운영 시간 연장

3.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홍보 실시) 구청장은 구민에게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자연재해대책법

제33조의2(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염피해 예방조직의 정비
2. 지역별 폭염대책 마련
3. 폭염 대비용 자재와 물자의 비축·관리 및 장비의 확보
4. 폭염대책 교육 및 대국민 홍보
5.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 나. 지원대상, 비용, 홍보 등(안 제5조, 안 제6조)
- 다. 협력체계 구축·운영(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방지시설”이란 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막이판, 역류방지 밸브 등을 이용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소상공인 건축물”이란 소기업 중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의 사업자로서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중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 또는 그 외의 업종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과 대비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 및 비용 지원)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주택 및 소상공인 건축물에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지원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정소식지 또는 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구청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 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안 제4조)
- 다. 비용의 지원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안 제6조)
- 라.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다.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마.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차. 그 밖에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2.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자동으로 소화하는 간이형 소화용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시설에 적용한다.

제5조(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용 소화용구
2. 건축물의 가연성 외벽마감 자재를 불연 또는 준불연재로 교체
3. 스프링클러 및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4. 그 밖에 화재예방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제6조(보고·점검)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 대상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안전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을 미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홍보)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①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이 원활히 수행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 나.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 제5조)
- 다. 위원의 임기 및 실무협의회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11조)
- 라. 수당 및 운영세칙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 안 제1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질서 확립과 구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 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인천광역시 검단구를 만들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구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3. “범죄행위란”란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을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3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지역사회 안전 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범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시책 및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한 기관·단체 간 업무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인, 아동, 청소년 및 부녀자의 보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범죄 예방 활동과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안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인천광역시 지방경찰청 인천서부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역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 경찰서장,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의장, 인천광역시 검단 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 인천광역시 검단 담당 소방서장, 검단 담당 우체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협의회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검단구 관내 기관 단체장
2.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단체의 관계자
3.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복지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과 단체장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

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결정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간사) ① 협의회는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천 검단 담당 경찰서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11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 단체의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가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제12조(수당 등) 구청장은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예산지원 등) 구청장은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치안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3조)
- 나. 보험목적물, 지원대상, 보험료에 관한(안 제4조 ~ 안 제7조)
- 다. 가입 홍보,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안 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민이 풍수해·지진재해로 발생하는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풍수해’, ‘지진재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보험료’의 뜻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로 인한 연간 피해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보험목적물) 보험료 지원의 보험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과 시설물 및 그에 부수되거나 포함되는 동산(세입자 동산 포함)으로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공동주택(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
3. 농업용·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

제5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공동주택(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소유자 및 세입자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
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

3. 농업용·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의 소유자

제6조(보험료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제7조에 따라 지원되는 보험료를
제외한 본인 부담 보험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보
험목적물에 실제 거주하는 등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4조의2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규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 위
험에 취약하다고 예상되는 저지대, 지하 및 반지하, 노후, 소규모 등의 건축
물과 시설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 농업용·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포함)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본인 부담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한도)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 대상
의 보험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
원 한도는 행정안전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실무편람에 따른다.

제8조(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홍보)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풍수해·지
진재해보험 가입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여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로 인한 피
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0. 22., 2014. 12. 30., 2024. 2. 13.>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중 태풍·홍수·호우(豪雨)·강풍·풍랑·해일(海溢)·대설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1의2. “지진재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중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이란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3. “보험가입금액”이란 피보험자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서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에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

4. “보험료”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업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5. “보험금”이란 피보험자에게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손해평가”란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사정(査定)하는 것을 말한다.

7. “손해평가인”이란 제16조의2에 따라 손해평가인 자격을 취득한 사람

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7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보험목적물에 실제 거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1., 2022. 1. 4.>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3. 31.>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하려는 보험목적물이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 1. 4.>

[전문개정 2008. 3. 28.]

□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4조(보험료의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금액을 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지원금액을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여 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 지원금액을 받으려는 보험사업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현황서와 운영사업비 사용계획·결산서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4. 4. 23.>

[전문개정 2008. 9. 26.]

인천광역시 검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등(안 제3조 ~ 안 제5조)

나. 제설·제빙작업의 시기(안 제6조)

다. 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차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 "이면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광역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제설·제빙작업"이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 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로써 예시되는 별첨과 같다.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설·

제빙작업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

1)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3시간 이내

2)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다음 날(눈이 밤 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 오전 11시까지

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

2. 시설물의 지붕에 25센티미터 이상 눈이 쌓인 경우에는 즉시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과 시설물 붕괴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과 얼음은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기는 방법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과 얼음은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기는 방법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하는 방법

4.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에는 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기는 방법

②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 차량 및 제설·제빙을 하는 사람(이하 “제설작업자”라 한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관리자는 일몰, 폭풍, 이상 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①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에 매년 11월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은 건축물관리자에게 제설·제빙에 필요한 자재나 도구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①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歩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3조)
- 나. 위험도 평가 실시, 평가단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9조)
- 다. 지원요청, 안전 및 피해보상, 경비지급,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안 제1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에서 지진으로 시설물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 방지와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이란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검단구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말한다.
3.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이하 “위험도 평가단원”이라 한다)이란 건축·토목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검단구”라 한다) 및 인근 지역 거주자 중 위험도 평가단으로 등록하고 위험도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등) ① 위험도 평가는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검단구 관할구역 내 모든 시설물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적용대상에 대한 위험도 평가는 검단구 지역본부장이 실시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해당 시설물의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위험도 평가 실시 등) ① 검단구 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여진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인천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구한 경우

② 검단구 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피해지역 주민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검단구 지역본부장은 지진에 대비하여 사전에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관리 및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해야 한다.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 ① 검단구 지역본부장은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여 위험도 평가 실시를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검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운영해야 한다.

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재난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평가단은 평가단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험도 평가단은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진피해 구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평가반을 둘 수 있다.

④ 검단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관리해야 한다.

1. 「기술사법」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토목 등 직무분야 기술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에 한정한다)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
3. 「건축사법」 제2조에 따른 건축사
4. 검단구 지역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단장과 단원 중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의 평가단원은 제4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으로 검단구 지역본부장이 위촉한다. 단, 특정성별의 평가단원 수가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위험도 평가단원의 등록(말소) 신청서 및 평가단원증은 각각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⑦ 검단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한차례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중앙본부장 또는 시 지역본부장이 개최하는 세미나 또는 워크숍에 참가하거나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위험도 평가단원에 대하여는 검단구 지역본부장이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6조(임기 및 해촉) 평가단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검단구 지역본부장은 평가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평가단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평가단원 본인이 스스로 사임할 경우

제7조(위험도 평가 시기) ① 검단구 지역본부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도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정해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 평가 기간을 검단구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평가단장은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지역
2. 시설물 피해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4.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
5.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평가단장은 지진 피해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③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위험도 평가 실시 전 대상 시설물의 관리자 등에게 위험도 평가의 목적·일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긴급하게 위험도 평가가 필요한 경우 구두(口頭)통지하거나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평가단장은 사전에 계획된 위험도 평가 대상이 아니지만 현장에서 위험도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역대책본부 보고 후 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 내 중요시설의 점검이 필요한 경우 지역대책본부에 긴급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평가단장은 시설물의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대책본부에 보고 후 “1단계 위험도 평가”를 생략하고 “2단계 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⑥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1단계 위험도 평가” 결과는 “위험”, “추가점검 예정”, “사용가능”으로, “2단계 위험도 평가” 결과는 “위험”, “사용 시 유의”, “사용가능”인 단계별 3등급으로 구분하며, 위험도 평가 이후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피해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 및 안내하거나 표지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1단계 위험도 평가 결과가 “추가점검 예정”인 건축물에 한정하여 기존 표지는 제거 후, 2단계 위험도 평가 결과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 표지
2.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 시 유의한 표지
3.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가능 표지
4. 별지 제6호서식의 추가점검 예정 표지

⑦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 결과가 위험·추가점검 예정 등급인 경우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제9조(위험도 평가 결과보고) ① 평가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 평가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보고서를 검단구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결과물 일체를 시 지역본부장을 경유하여 중앙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평가단장은 피해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검단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 최종보고서와 피해시설물 후속조치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해야 한다.

제10조(지원 요청 등) ① 검단구 지역본부장은 신속한 위험도 평가 실시를 위하여 시 지역본부장 또는 인근 시·군·구 지역본부장에게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을 지원 요청할 수 있다.

② 검단구 지역본부장은 시 지역본부장 또는 인근 시·군·구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지원을 요청한 검단구 지역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11조(안전 및 피해보상) ① 검단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경우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검단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활동으로 위험도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2조(경비지급)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위험도 평가단원에게는 그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제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험도 평가단(평가반을 포함한다)의 구성·운영, 위험도 평가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검단구 지역본부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말소) 신청서(제5조제6항 관련)

회원번호		신 청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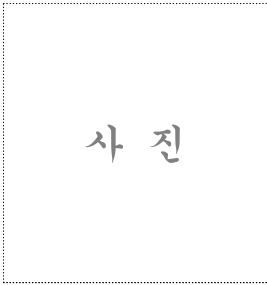
성 명		성 별 남 · 여	생년월일	
소 속		직 급		
주소 : (-)			전화 : ()	
			FAX : ()	
E-mail :				
전문분야 :				
☐ 건축물 ☐ 교량·터널 ☐ 댐·저수지 ☐ 철도 ☐ 원자력시설 ☐ 항만 ☐ 가스·전력·통신 ☐ 기타()				
본인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 말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귀하				

210mm×297mm

[별지 제2호서식]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증(제5조제6항 관련)

< 앞 >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증	
성 명 :	
소 속 :	
주 소 :	
위 사람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임을 증명함.	
인천광역시 검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인)	

120mm×90mm

< 뒤 >

본 단원증을 분실하거나 습득하신 분께서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120mm×90mm

[별지 제4호서식]

위험도 평가 결과

사용 시 유의

이 시설물의 거주 및 출입 시 유의바람.

☐ 평가일시 :

☐ 주의사항 : 000 주의 필요

☐ 점검의견 : 000 조치 시 사용가능

※ 본 위험도 평가결과는 평가시의 상태만을 점검한 결과임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결과입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Tel :

]

120mm×90mm(노랑)

[별지 제5호서식]

위험도 평가 결과

사용 가능

이 시설물은 거주 및 출입이 가능함.

- ☐ 평가일시 :
- ☐ 평가의견 : 000 조치 필요

※ 본 위험도 평가결과는 평가시의 상태만을 점검한 결과임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결과입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Tel :]

120mm×90mm(초록)

[별지 제6호서식]

위험도 평가 결과

추가점검 예정

이 시설물은 거주 및 출입 시 유의바람.

☐ **평가일시 :**

☐ **평가의견 : 000 주의 필요**

※ 본 위험도 평가결과는 평가시의 상태만을 점검한 결과이며,
추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결과입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Tel :]

120mm×90mm(주황)

관계 법령 발췌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 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 ② 제1항에 따라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한 경우 인근 시·도 또는 시·군·구 거주자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 ③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2. 3.>
- ④ 제2항에 따른 지역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

인천광역시 검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재난현장 대응단계에 사항(안 제1조 ~ 안 제3조)

나.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재난현장 상황전파 및 재난지역 주민대피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협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조정 및 지원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재난현장 대응업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전파에서부터 긴급구조 지원, 응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3. “재난현장 수습·복구”란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가 완료된 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의 통제 아래 이뤄지는 사고현장의 수습, 자원 지원, 환경 정비, 의료 지원, 시설 복구, 자원봉사단체 관리 등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5.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이 하는 인명 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대책본부의 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 현장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수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단계로 구분하여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1. 상황전파: 대책본부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는 단계
2. 현장출동: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
3. 긴급구조 지원: 긴급구조 단계에서 가동되는 긴급구조통제단의 현장지휘에 통합지원본부가 협력하는 단계
4. 수습·복구: 재난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재난현장 수습·복구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제2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및 현장책임관 임명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 발생 시 「인천광역시 검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하여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이하 “통합지원본부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며, 통합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태풍, 홍수, 호우, 폭설, 해일,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
2. 화재, 붕괴, 유류·유해화학물질 유출,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
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구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발생

④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제9조에 따른 현장대응반장 또는 현장책임관이 재난현장 대응 활동을 하는 경우 통합지원본부가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제5조(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서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지원 협력이 용이하며, 긴급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직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계획 등 통보) ① 대책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비상연락망 등이 포함된 통합지원본부 운영계획
2. 수습·복구 체계로의 전환 시 인력·장비 재배치 현황 및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통합지원본부의 철수 등 통합지원본부 운영 상 통보할 필요

가 있다고 판단되는 중요사항

3. 그 밖에 대책본부장 또는 통합지원본부장이 관계 기관에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에 실무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반은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등 별표 1 및 별표 2의 표준편제와 주요임무 등을 참고하여 재난 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편성하며, 그에 따른 반별 임무를 수행한다.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과 사고 규모를 판단하여 현장 실무반의 규모를 유동적으로 결정하고 근무자를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실무반 등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대책본부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자원지원 요청에 협조
4. 재난현장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역할분담 및 조정
5. 재난현장 인력·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7. 그 밖에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보급,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사회질서유지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제8조(업무연락관 파견)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긴급구조 활동 시 긴급구조본부에 통합지원본부의 연락관을 파견하여 긴급구조 상황 정보를 수집·분석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수습·복구 시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원활한 협업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업무연락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지원본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9조(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 임명)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재난현장을 총괄·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장대응반장을 임명하려는 경우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단·실·관·과·소의 장을 사고수습총괄부서의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단·실·관·과·소가 둘 이상일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사고현장의 규모를 판단하여 사고 비중에 따라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단·실·관·과·소의 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

를 수행하는 단·실·관·과·소가 없을 경우 안전총괄부서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판단하여 상황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운영한다.

③ 재난현장에 현장대응반을 즉각 투입하기 어려운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은 원활한 통합대응을 위하여 재난지역의 관할 동장을 현장책임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책임관은 현장대응반장의 지휘를 받는다.

④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책임관으로 하여금 통합지원본부의 현장대응반이 가동되기 전까지 현장대응반장의 임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현장대응반장 또는 현장책임관은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통합지원본부장을 보좌하고 재난현장의 사고수습 총괄업무를 수행한다.

제3장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제1절 재난현장 상황전파

제10조(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파 받은 재난상황에 대하여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재난지역 주민대피)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책본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자에게 재난방송 실시
2.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른 민방위 정보 발령

② 제1항에 따른 방송 또는 경보를 통하여 대피명령을 받은 자는 즉시 따라야 한다.

제2절 재난현장 출동

제12조(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현장의 대응·수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와 인력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동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재난현장 대응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한다.

제14조(재난현장의 출동지원) ① 대책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절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원

제15조(긴급구조 지원) 통합지원본부장은 법 제52조제7항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부터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이나 물자 등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현장응급의료소 지원) ① 대책본부장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부터 현장응급의료소(이하 “의료소”라 한다) 설치를 위하여 인력,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소의 장은 부상자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에 관하여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의료소의 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절 재난현장 수습·복구체계 전환

제17조(수습·복구체계로의 전환)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긴급구조 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수습·복구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수습·복구체계로의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긴급대응 수행 결과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8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① 재난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대책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재난현장 통제) 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재난현장 통신망 확보) ① 대책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하여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 법 제37조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자원봉사활동 지원)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동원된 자원 및 인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자원봉사 단체 또는 인력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에서의 작업방법에 대한 교육과 자원·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
3. 작업복 및 작업도구 등 그 밖에 재난현장에 필요한 사항 등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부터 자원봉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을 요청받은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통합지원본부 철수)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와 긴급복구가 완료되고 수습·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현장의 통합지휘가 필요없게 된 경우 제9조에 따른 현장책임관에게 통합지원본부장의 권한을 위임하고 통합지원본부를 철수시킬 수 있다.

제23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제12조에 따른 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
2. 제14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지원
3. 제16조에 따른 현장응급의료소 지원 협조
4. 제19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
5. 제20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 확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② 시·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③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6., 2014. 12. 30.>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인천광역시 검단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 나. 위촉 및 대표단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 제5조)
- 다. 안전보안관의 활동 및 활동 지원 관한 사항(안 제6조, 안 제7조)
- 라. 관리 및 표창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안전보안관”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촉)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4조(교육 및 임기) ① 구청장은 최초로 위촉된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내용은 재난 안전 및 성인지 감수성 내용을 포함한다.

-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의 임기를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대표 및 부대표로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관리 및 위촉해제)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위촉해제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를 원하는 경우
2. 구를 벗어난 주민등록 주소로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9조(표창) 구청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2의2.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신고 활동 장려·지원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6의2.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조정 업무를 관장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과 관련 기관·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설치, 기능, 임기 등(안 제2조 ~ 안 제6조)

나. 위원회 운영 등(안 제8조 ~ 안 제10조)

다. 수당 및 여비(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조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 등”이라 한다)의 협의 요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 항목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자연재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 요청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소집회의를 개최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재적 위원 중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변경 이행 등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중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

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 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8조에 따른 심의 위원 및 제9조에 따라 현지 조사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 ⑫ 생략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조(권한의 위임) ① 생략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을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생략

2.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군·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3. 생략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

[제2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하여 위임받은 권한(이하 “해당 권한”이라 한다)과 관련되는 권한의 범위로 한정한다]을 해당 권한을 위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통보의 접수
3. 법 제6조의4제3항에 따른 확인결과 통보의 접수
4. 법 제6조의5제3항에 따른 공사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요청
5. 법 제6조의5제4항에 따른 조치결과 통보의 접수
6.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④, ⑤ 생략

인천광역시 검단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발생 시 골든타임과 플래시오버 현상 시 대부분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화재예방 환경 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방연마스크 비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마.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해 발생하는 염화수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고 투명한 난연 두건을 통한 안면부 보호와 시야확보가 용이하게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 다.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5.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

육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의 비치 등)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 및 운영을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사회복지시설
3. 의료기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교육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실시하는 안전 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대피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홍보) ① 구청장은 화재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발생시 대피에 관한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을 향상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와 연대할 수 있다.

제6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시설의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23. 5. 1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2. 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16.>

④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4. 12. 30., 2015. 7. 24., 2019. 12. 3., 2024. 1. 16.>

[전문개정 2010. 6. 8.]

인천광역시 검단구 어린이놀이기구 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 나. 적용 범위 및 점검기준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안 제5조)
- 다. 조치 및 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안 제7조)
- 라. 예산지원 및 표창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안 제1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어린이놀이기구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어린이놀이기구"이란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어린이놀이기구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공중위생관리법」, 「도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식품위생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유통산업발전법」, 「의료법」, 「주택법」에 따라 설치·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기구에 적용한다.

제4조(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3조 등 관련법에 따라 관리주체가 구청장인 놀이기구와 관리 주체가 정해지지 않은 놀이기구를 포함한 놀이기구에 대하여 유지·보수 등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기구의 각종 시설물 보수
2. 어린이놀이기구에서 흡연행위 방지
3. 어린이놀이기구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펜스 설치
4. 어린이놀이기구의 각종시설 및 위생점검 지도
5. 어린이놀이기구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6. 어린이놀이시설에는 개나 고양이와 같은 애완동물 동반 금지

7.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물에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에 관한 지원

8. 어린이놀이시설 주변 조경 등 환경미화(인체유해 수목식재 제외)

9. 이용자의 준수사항·주차금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

10.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규정 준수

제5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당해 법령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주체가 점검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

제6조(조치 및 협조요청)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은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민간시설의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는 지적된 사항을 해당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자원봉사활동 등)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놀이시설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 범위 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분담)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분

담하게 한다.

① 안전총괄 관련 업무 담당 부서에서는 매년 어린이 놀이터 안전관리 종합 계획을 수립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업무부서를 지정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놀이터: 공원 관련 업무 담당 부서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 주택 관련 업무 담당 부서
3. 영유아보육시설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 : 가정보육 관련 업무 담당 부서
4. 아동복지시설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 : 가정보육 관련 업무 담당 부서
5. 대규모점포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 : 경제 관련 업무 담당 부서
6. 식품접객업소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 : 위생 관련 업무 담당 부서
7. 목욕장업소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 : 위생 관련 업무 담당 부서

③ 제2항 각 호 이외의 담당업무 부서 지정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의 규정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실태를 매년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2026. 7. 1. 검단구 출범으로 인한 행정공백 및 주민 불편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대규모 사회재난으로 인한 주민피해 발생 시 신속한 구호 복구를 위해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 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결정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안 제4조)
- 다. 지원금액 등의 구상, 구상에 따른 책임 및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안제7조)
- 라. 생활안정지원등의 실시,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안 제9조)
- 마. 지급방법, 환수 및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안 제1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예산법무과[예산팀]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원결정)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구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資力)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

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구청장은 구의 행정적·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 기준)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

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

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

4.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5. 그 밖에 구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 등 기준은 피해상황, 재정 여건,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 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

③ 제1항 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장례비 :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2. 치료비 :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조(지원금액 등의 구상) 구청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

액 등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6조(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구청장이 제5조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도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구청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중복지원 금지) 피해주민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원인제공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 및 장례비·치료비 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등”이라 한다)은 해당 피해주민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② 생활안정지원등을 받으려는 피해주민은 구청장이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구청장은 재난의 성질·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피해주민이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장·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제8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10조(지급방법) 구청장이 제8조제6항에 따라 피해주민에게 생활안정지원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피해주민 명의의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11조(환수) ① 구청장은 제8조제6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등으로 자금이나 물품이 제4조 및 제7조에 위반되어 지원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2조(재원의 확보)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그 밖의 주요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본인 [] 부모 [] 형제 [] 기타()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휴대전화번호	- -

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	-	통신사명	[]KT []SKT []LGU+ []기타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유선전화	()	-	통신사명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세대주 여부		[] 세대주, [] 세대원		가족 수	명 (본인 포함 세대원)	
고등학생 수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도시가스 사용 여부		여 [] , 부 []		가입자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3. 피해내용

피해발생 일시		
피해발생 장소		
인명 피해	신고	[] 사망·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업피해(휴업 [] / 폐업 [] / 실직 [])
	확정	[] 사망·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시설 피해	시설명	① ② ③ ④
	총면적(소유+임차)	① ② ③ ④
	면허·허가·등록 번호	① ② ③ ④
	피해 물량	신고 ① ② ③ ④
		확정 ① ② ③ ④
	피해 구분	① ② ③ ④
	피해 원인	① ② ③ ④
유자신청 여부		[] [] [] []

4. 확인사항

동일세대 신고 여부	여 [], 부 []	내용:
타 시·군·구 피해신고 여부	여 [], 부 []	내용: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활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 용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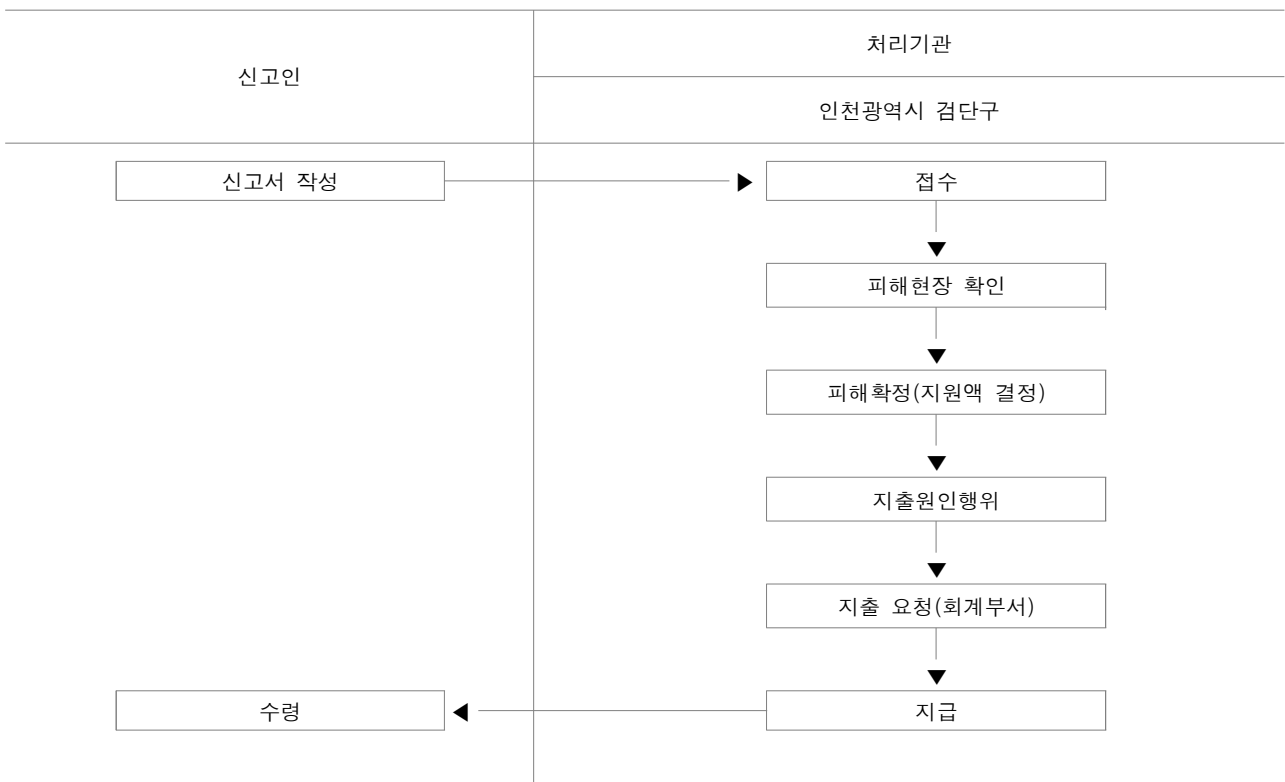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작성 방법

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애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애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처리 절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관계 법령 발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재난의 규모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
2. 재난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3.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역의 범위

③ 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6.>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

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6., 2017. 1. 17., 2024. 1. 16.>

1. 자연재난

2. 사회재난 중 제60조제3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② 제1항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구호 및 재난의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의연금 등으로 충당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도 및 시·군·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2017. 1. 17., 2020. 8. 18., 2023. 5. 16.>

1.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5의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3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 1. 17., 2024. 1. 16.>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8. 6.>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원인이 되는 사회재난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7. 1. 17.>

- ⑦ 제3항 각 호에 따라 지원되는 금품 또는 이를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신설 2017. 1. 17.>

제66조의2(복구비 등의 선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의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66조에 따라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이하 “복구비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제59조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복구계획 수립 전에 미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복구비등을 선지급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피해 물량 등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미리 복구비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 주민의 주(主) 생계수단을 판단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수준에 관한 사항: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
2. 국민연금 가입·납입에 관한 사항: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
3. 국민건강보험 가입·납입에 관한 사항: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④ 제1항에 따른 복구비등 선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선지급의 비율·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 17.]

[중전 제66조의2는 제66조의4로 이동 <2017. 1. 17.>]

제66조의3(복구비등의 반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구비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받은 복구비등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부정한 방법으로 복구비등을 받은 경우
2. 복구비등을 받은 후 그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자는 즉시 복구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반환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본조신설 2017. 1. 17.]

[중전 제66조의3은 제66조의7로 이동 <2017. 1. 17.>]

인천광역시 검단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 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4조)

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조직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지원범위)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2. 각종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에 따른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재정지원 등) 제4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도 및 감독) 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인천광역시 검단

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지방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6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제8조(포상)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적이 있는 우수 의용소방대 및 대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기본방향, 용어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3조)
- 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 일반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 지구별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행위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국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 흔적에 의한 침수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 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그 밖에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

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 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 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留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조례)의 규정에 따라 인가, 허가 등 행정 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별표 1]

침수위험지구 등의 표지판(제6조제1항 관련)

안내판 예시	안내판 설치 요령
자연재해위험지구 (침수위험지구) 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 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인천광역시 검단구 재난안전관리과, T. 000-0000)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침수위선(적색)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 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	○색상: 안내판(어두운 노랑), 글씨(검정), 침수위선(빨강) ○안내판 규격: 가로 1.2m 세로 1m 내외 ○기둥 규격: 지름 10cm로 바닥에 서 안내판 하단까지 2m이상 ○색상: 안내판(어두운 노랑), 글씨(검정), 침수위선(빨강) 기둥은 10cm 간격으로 노랑색과 검정색(예시 참조)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 작할 것 ○재질: 안내판 및 기둥은 철 또는 알 루미늄이나 이와 유사한 재질로 함. ○침수위선 표기: 1cm 두께의 빨강색 으로 기둥에 원형 표시(예시 참조) ○침수흔적 표기: 청색 삼각형과 문자로 표기 (예; ▶ 태풍루사, 2002) ○설치장소: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 서 주민들의 눈에 잘 띄는 곳 ○설치개수: 자연재해위험지구의 범 위를 고려하여 적정량 설치

[별표 2]

붕괴위험지구의 표지판(제6조제2항 관련)

안내판 예시	안내판 설치 요령
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 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인천광역시 검단구 재난안전관리과 T. 000-0000)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안내판 규격: 가로 1.2m 세로 1m 내외 ○기둥 규격: 지름 10cm로 바닥에 서 안내판 하단까지 2m이상 ○색상: 안내판(어두운 노랑), 글씨(검정), 붕괴위험지역 범위(빨강) 기둥은 노랑색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 작할 것 ○재질: 안내판 및 기둥은 철 또는 알 미늄이나 이와 유사한 재질로 함. ○설치장소: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주민들의 눈에 잘 띄는 곳 ○설치개수: 자연재해위험지구의 범위 를 고려하여 적정량 설치

관계 법령 발췌

☐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와 병행하여 그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관한 예방대책이 마련되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0. 22.>.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는 다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보다 우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2.>

③ 제1항에 따른 행위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 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안 제4조)
- 다. 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안 제8조)
- 라. 결과보고(안 제1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검단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 시 상담 및 점검
6.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검단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검단구 관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임기 및 해촉)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공석이 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 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구청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 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구청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에 따라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실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3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안전총괄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관리 업무담당이 된다.

제14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 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 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자료요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예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점검결과, 주요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40조(안전관리전문기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4.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7.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8.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9.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
10.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한국방재협회
11. 「소방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
12.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1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75조(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및 안전 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책무,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4조)
- 나. 이용안전계획의 수립·시행, 사업추진,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무단방치 금지, 안전교육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11조)
- 다. 협력체계 구축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안 제1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에 필요한 거치대, 주차시설,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을 개선하고,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자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구민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관리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위반 근절 사업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시범사업의 실시 등)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단구 관내에 시범지구를 조성하는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 및 제5조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행정·재정·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사업추

진 시 구민 또는 관련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9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이용자들의 안전모 등 안전장비 보관함 설치·운영
2.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정 속도 준수를 위한 조치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및 거치대 설치·운영·관리
4. 이용자의 운행 자격 확인을 위한 조치
5.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6.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지침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7. 이용자 및 예비 이용자들을 위한 운행훈련 및 안전교육
8.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9.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무단방치 금지) ① 누구든지 도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안전교육 등)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개인,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2017. 10. 24., 2018. 3. 27., 2020. 5. 26., 2020. 6. 9., 2020. 12. 22., 2021. 10. 19., 2022. 1. 11., 2023. 4. 18., 2023. 10. 24.>

1. ~ 19. 생략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 ~ 34. 생략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경찰공무원

2. 시장등(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시·군공무원”이라 한다)

②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1항의 경우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

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③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2항에 따라 주차위반 차를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나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의 성명·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⑤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차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가 조치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차위반 차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은 그 차의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한 경우 그 차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그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8.]

- 제36조(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 ①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35조에 따라 견인하도록 한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과 그 밖에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치와 교육을 명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의 담당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6. 8.]

인천광역시 검단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실태조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6조)

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지원금의 반환,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령운전자를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자진반납”이란 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령운전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
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3. 고령운전자 이동 실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서 등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지원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 등의 제작·배부
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전문기관 등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교육)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 체험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7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자진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10만원 이내의 교통비 및 교통 이용수단 이용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지원금의 반환)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제9조(홍보)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② 시·도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 2020. 12. 22.>

1. 제1종 운전면허

가. 대형면허

나. 보통면허

다. 소형면허

라. 특수면허

1) 대형견인차면허

2) 소형견인차면허

3) 구난차면허

2. 제2종 운전면허

가. 보통면허

나. 소형면허

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3. 연습운전면허

가. 제1종 보통연습면허

나. 제2종 보통연습면허

③, ④ 생략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0., 2015. 8. 11., 2016. 1. 27., 2017. 7. 26., 2018. 3. 27., 2018. 12. 24.,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2023. 10. 24., 2024. 2. 13., 2024. 3. 19.>

1. ~ 19. 생략

20.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効)시킬 목적으로 시

- 도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다만, 실효시키려는 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거나 효력정지 기간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21. ~ 23. 생략

② ~ ④ 생략

인천광역시 검단구 교통안전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4조)
- 나.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 교통안전교육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7조)
- 다. 협력체계 구축, 교통지도,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 제1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交通安全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交通安全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交通安全 시설물”이란 사람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을 보조하는 「도로교통법」 제4조에 따른交通安全표지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2. “교통사고”란 「交通安全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를 말한다.
3.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4. “교통봉사단체”라 함은交通安全 봉사활동 및 거리질서계도 등의 활동을 하는 사단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구청장”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交通安全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안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 방향
2.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교통안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 추진실적
2. 시행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3. 다음 각 목을 포함한 교통사고 현황 및 분석
 - 가. 연간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상자 내역
 - 나. 교통수단별·교통시설별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
 - 다.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
 - 라. 교통사고의 분석 및 대책
4. 「교통안전법」 제57조에 따른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노력

제7조(교통안전교육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등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
3. 구민의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에 관한 실천 교육
4.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교통지도) 구청장은 관내 학교 및 보육시설의 장과 교통봉사단체 등에게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주요 횡단보도, 교통안전 취약지역 등에서 교통 지도를 하도록 협조요청 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7조부터 제9조에 따른 교통안전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도로교통법

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관리기준 등) ①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6. 12.>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은 주·야간이나 기상상태 등에 관계없이 교통안전시설이 운전자 및 보행자의 눈에 잘 띄도록 정한다. <신설 2018. 6. 12.>

[전문개정 2011. 6. 8.][제목개정 2018. 6. 12.]

☐ 교통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4. 22., 2011. 6. 15., 2016. 3. 29., 2017. 1. 17., 2018. 3. 27., 2019. 11. 26., 2020. 6. 9., 2023. 7. 25., 2023. 8. 16.>

1. ~ 6. 생략

7.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수단의 운행·항행·운항과 관련된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를 말한다.

8. ~ 10. 생략

제17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① 시·도지사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군·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

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 17.>

③ 시·도지사가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12. 6. 1.>

④ 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교통위원회 또는 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의 심의 전에 주민 및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4. 1. 23.>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및 주민·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2024. 1. 23.>

제57조(교통문화지수의 조사 및 활용) ①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와 관련된 국민의 교통안전의식의 수준 또는 교통문화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수(이하 “교통문화지수”라 한다)를 개발·조사·작성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통문화지수가 공표된 경우, 교통행정기관은 교통문화지수의 결과를 활용하여 교통시설 개선 및 교통문화 향상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4.>

③ 교통문화지수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8. 14.>

[제목개정 2018. 8. 14.]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7., 2014. 1. 14., 2016. 3. 29., 2020. 12. 22., 2022. 1. 18., 2023. 9. 14.>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 8. 생략

인천광역시 검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3조)
- 나. 위원장의 직무 등, 임기, 전문위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간사와 서기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7조)
- 다.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2025년 예산에 참석수당 630천원 반영되었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검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역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사항
2. 지역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심의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 소속 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2. 인천광역시 검단구 소재 경찰서 교통 관련 부서 과장
3.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행정 관련 부서 국장
4. 교통사업자 및 그 조합, 교통 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하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업무 담당이 된다.

-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교통안전법

제13조(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심의) ①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17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2. 6. 1.>

② 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개정 2012. 6. 1.>

③ 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 6. 1.>

[제목개정 2012. 6. 1.]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8조(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 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통안전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1. 8. 19., 2012. 9. 7., 2018. 4. 24.>

② 시·군·구 교통안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

화법」 제10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및 이 영 제6조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0. 1. 7., 2012. 9. 7., 2018. 4. 24.>

[제목개정 2012. 9. 7.]

인천광역시 검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3조)
- 나. 기본계획수립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안 제5조)
- 다. 어린이 안전교육,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요청,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4. “교육시설”이란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초등학교 등과 보육시설을 말한다.
5.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6.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4.5톤 이상을 말한다.
7. “건설기계”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할 경우 설문조사, 간담회 등을 통하여 18세 미만 아동 및 보호자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황
3.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주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에 관한 교통안전과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와 보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통한 초등학교 등 및 보육시설의 자체교육
2. 그 밖에 교통안전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보육시설의 장

에게 어린이의 등·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 ①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이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등의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교통안내 신호원의 배치와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부속물의 설치, 정비, 유지에 관한 사항
4. 공사 중 위해요소 제거에 관한 사항
5. 공사 전·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 시행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요청) ① 구청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등·하교 시간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통행제한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

여 등·하곳길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
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2018. 3. 27., 2021. 10. 19., 2023. 4. 18.>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4. 18.>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④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4., 2020. 12. 22.>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 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4., 2023. 4. 18., 2024. 1. 30.>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횡단보도, 기점(起點) 및 종점(終點)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3의2. 방호울타리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전문개정 2011. 6. 8.][제목개정 2023. 4. 18.]

☐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24., 2012. 3. 21.>

1. 생략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 6. 생략

☐ 초·중등교육법

제38조(목적) 초등학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55조(특수학교) 특수학교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 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6. 7., 2011. 8. 4., 2016. 2. 3., 2017. 3. 14.>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5. 가정어린이집: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6. 협동어린이집: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전문개정 2007. 10. 17.][제목개정 2011. 6. 7.]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어린이집 및 학원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이란 정원 100명 이상의 어린이집을 말한다. 다만, 시장등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어린이집이 소재한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 주변도로 등에 대하여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6. 20.>

②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이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학원 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학원을 말한다. 다만, 시장등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학원이 소재한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인명 미만의 학원 주변도로 등에 대해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3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2. 10. 20.>

[제목개정 2023. 6. 20.]

☐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2019. 8. 27., 2020. 6. 9.>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과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삭제 <2019. 8. 27.>

3.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4.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구분의 세부기준은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5. 24.,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1. 17.>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폐기”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해체하거나 압축·파쇄·절단 또는 용해(鎔解)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설기계사업”이란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및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4. “건설기계대여업”이란 건설기계의 대여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설기계정비업”이란 건설기계를 분해·조립 또는 수리하고 그 부분품을 가공제작·교체하는 등 건설기계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한 모든 행위(경미한 정비행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6. “건설기계매매업”이란 중고(中古) 건설기계의 매매 또는 그 매매의 알선과 그에 따른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신고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7.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이란 폐기 요청된 건설기계의 인수(引受),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기 및 그 등록말소 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8. “중고 건설기계”란 건설기계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를 취득한 때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9. “건설기계형식”이란 건설기계의 구조·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하여 일정하게 정한 것을 말한다.
- ② 건설기계대여업 및 건설기계정비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29.]

☐ 교통안전법

제17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① 시·도지사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군·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

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 17.>

③ 시·도지사가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12. 6. 1.>

④ 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교통위원회 또는 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의 심의 전에 주민 및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4. 1. 23.>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및 주민·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2024. 1. 23.>

제18조(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①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소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시·도교통안전시행계획과 시·군·구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시·도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①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1. 차마(車馬)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2. 차마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3.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
4. 이면도로(도시지역에 있어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하는 것

②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인천광역시 검단구 대중교통 운전자 포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출범하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승객의 편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대중교통 운전자에 대하여 포상 등을 통한 사기진작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나. 포상대상자, 포상권자 및 포상의 종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 제5조)

다. 포상대상자의 자격, 추천, 선정 및 시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대중교통 운전자 포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승객의 편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대중교통 운전자에 대하여 포상 등을 통한 사기진작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 운전자”란 노선버스, 영업용(개인, 법인)택시로 한다.
2. “승객”이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포상대상자) 이 조례에서 정하는 포상대상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구에 소재하고 있는 대중교통을 운전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포상권자) 포상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5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으로 한다.

제6조(포상대상자의 자격)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

1. 승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근무실적이 모범적인 경우
2. 위급상황에서 승객의 안전과 생명을 돌본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에 인정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

제7조(포상대상자의 추천) 포상 대상자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해당부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1. 공공기관의 장
2. 사업장의 대표 및 협회의 장
3. 관련 단체 및 지역주민

제8조(포상대상자의 선정) 제6조에 따른 포상대상자 선정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 제14조에 따른 공적심의회에서 업무를 대행한다.

제9조(시상) ① 구청장은 매 반기 1회 포상하되, 포상의 종류에 따라 표창장 및 감사장을 수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인원은 반기 3명 이내로 하며,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중복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1조(적용) 이 조례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를 적용한다.

제12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개방주차장 지정 및 관리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개방주차장 지정 등(제4조)
- 나. 개방주차장 지정 기준(제5조)
- 다. 위원회 설치 및 기능(제7조)
- 라.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제8조)
- 마. 위원회의 운영(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개방주차장 지정 및 관리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법」 제19조제16항에 따라 개방주차장의 지정, 관리·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주차장”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3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이 무료 또는 유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주차장을 말한다.
2. “소유자등”이란 시설물과 부설주차장을 소유한 자 또는 관리하는 자(소유자의 위임·동의 등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3. “이용자”란 개방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의 운전자와 동승자를 말한다.

제3조(개방주차장 지정 대상 시설물) 「주차장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호나목에 따라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은 공동주택, 종교시설 등을 말한다.

제4조(개방주차장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주차난 해소가 필요한 지역의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개방주차장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개방주차장의 지정 또는 개방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방주차장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과 개방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방주차장 소재지 및 개방기간에 관한 사항
2.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는 주차면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개방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④ 협약사항(기간 연장을 포함한다)을 변경하거나 또는 개방기간 만료 이후 재개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한다.

제5조(개방주차장 지정 기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개방주차장을 유료로 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개방주차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1. 개방하는 주차면(이하 “개방주차면”이라 한다)이 5면 이상일 것
2. 개방주차면을 하루 7시간, 주 5일, 2년 이상 계속 개방할 것
3. 부설주차장의 일부를 개방하는 경우 개방주차면은 일반주차면과 구분될 것
4.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부설주차장의 진출입 구간이 차량의 교행이 곤란한 도로에 접하는 경우
2. 해당 지역의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거나 주차가 원활한 지역의 부설주차장인 경우
3. 주차수요를 해소하기 어려운 외곽지역 또는 미개발지역인 경우
4. 부설주차장 위치, 시설의 구조·설비 등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개방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보조금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개방주차장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소유자등에게 보조·지원할 수 있다.

1. 개방주차장 시설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개방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
3. 개방주차장 운영보전금

② 보조금의 교부 신청·결정·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 외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개방주차장 지정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개방주차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개방주차장 보조금 지원기준 결정
2. 유료로 운영하는 개방주차장의 지정
3. 개방주차장 지정 우선순위 결정(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신청된 경우로 한정한다)
4. 개방주차장 미지정에 따른 이의신청(제2호는 제외한다)
5. 개방주차장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위원장은 개방주차장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주차, 교통, 공동주택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주차, 교통, 공동주택 관련 업무를 하는 행정기관 공무원

3. 주차, 교통, 도시계획, 건축, 주택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고, 이 경우 간사는 개방주차장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이 되고, 서기는 이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0조(관리 및 운영 등) ① 개방주차장은 소유자등이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7호나목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여 개방주차장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은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유료 개방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 1 공영주차장 요금표 3급지 요금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와 소유자등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개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개방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방법으로 개방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와 이용자는 사용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약정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1. 주민 누구나 이용하도록 개방

2.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개방

3. 환승주차장으로 개방

④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개방주차장의 깨끗하고 쾌적한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료 개방주차장의 청소관리 일부를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수입의 처리 등) ① 개방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소유자등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구의 수입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입 범위에서 개방주차장 사용에 따른 보상금을 공동주택의 소유자등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안내표지판 설치) 관리자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이용 안내표지판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안내표지판 규격 등의 통일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직접 설치하고 이를 관리자에게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이용 제한 등)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방주차장 이용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2. 자동차의 규격 및 구조상 주차가 곤란한 경우
3.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
4. 자동차를 이용하여 주차장 안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이용자 또는 관계자가 개방주차장이 속한 시설물(부지를 포함한다)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6.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4조(차량의 이동조치 등) ① 관리자는 개방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법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이동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개방주차장으로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2. 개방주차장의 개방시간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조치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및 제36조를 적용하며, 「인천광역시 건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5조(피해보상 및 손해배상 책임 등) 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 또는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1. 부설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 등에 피해를 입힌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입힌 경우

② 유료 개방주차장 관리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법 제17조제3항을 적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주차장법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4.>

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지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⑤ 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하여 납부된 비용은 노외주차장의 설치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노외주차장(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라 한다)를 주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제4항 후단에 따른 범위에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을 줄여 줄 수 있다.
- ⑧ 시설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은 새로운 소유자가 승계한다.
- ⑨ 제5항과 제7항에 따른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⑩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 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8.>

⑪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설치기준에 적합한 부설주차장이 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존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에게 개정된 설치기준에 맞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⑫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권고를 받은 자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이하 “개방주차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방주차장을 지정하기 위하여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 2. 4.>

⑮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항에 따라 지정된 개방주차장의 위치, 개방시간 및 주차요금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6.>

⑯ 개방주차장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개방시간, 보조금의 지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0. 2. 4., 2023. 8. 16.>

[전문개정 2010. 3. 22.]

[제목개정 2020. 2. 4.]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2024. 1. 9.>

1. 개방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2. 개방주차장의 지정된 개방시간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3.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부설주차장 중 개방주차장이 아닌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 주차장법 시행령

제11조의2(개방주차장 지정 대상 시설물) 법 제19조제1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는 데 동의한 시설물
가.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주택가 등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판매시설, 문

화시설, 체육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나.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시·군 또는 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물

2.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시설물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이하 “관리규약준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27. 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계약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기준

나. 지방자치단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직접 운영·관리하거나 위탁하여 운영·관리하는 방식으로 입주자등 외의 자에게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 1) 입주자등 중 주차장의 개방에 동의하는 비율
- 2) 개방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 3) 주차장의 개방시간
- 4)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개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경찰공무원

2. 시장등(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시·군공무원”이라 한다)

②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1항의 경우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③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2항에 따라 주차위반 차를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나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의 성명·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⑤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차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가 조치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차위반 차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은 그 차의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한 경우 그 차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그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제36조(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 ①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35조에 따라 견인하도록 한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과 그 밖에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치와 교육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의 담당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주차공유 활성화 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
- 나.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안 제6조)
- 다. 주차공유 플랫폼 운영(안 제7조)
- 라. 주차공유 운영 현황의 공개(안 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공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법 주·정차 감소와 주차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통한 경제적·사회적 이익 실현을 도모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공간”이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등 주차가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2. “주차공유”란 주차공간을 사용할 권한을 가진 자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방법으로 주차공간의 사용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3. “주차공유 플랫폼”이란 실시간으로 주차가 가능한 주차공간의 정보를 제공하여 주차공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온라인·오프라인 환경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차공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라고 한다)은 주차공유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민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차공유 활성화 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차공유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4.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주차공유 참여자 등 구민과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주차공유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차공유 활성화 정책 발굴
2. 주차공유 활성화에 필요한 시스템 및 시설물 등 지원
3.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운영
4. 주차공유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
5. 주차공유에 관한 인식개선 및 활성화 등을 위한 홍보 및 교육
6. 그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주차공유 플랫폼 운영) 구청장은 주차공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사업자와 협력하여 주차공유 플랫폼을 개발·운영·제공·활용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주차공유 운영 현황의 공개) 구청장은 주차공유 운영 현황을 종합하여
주차공유 관련 정보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
개 대상, 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적용점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 나. 주차요금 및 감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안 제4조)
- 다. 공영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9조)
- 라. 노상 및 노외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안 제17조)
- 마.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 안 제23조)
- 바. 보조금 및 과징금 등에 관한 사항(안 제24조~안 제3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주차요금의 할인 등 징수금액을 모두 합산한 주차요금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② 공영주차장관리자는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제5조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주차요금)에 대한 100퍼센트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③ 공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1.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
2.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 60퍼센트 감면
3. 자가용승용차 부제 참여차량 : 50퍼센트 감면(단, 월 정기주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 : 50퍼센트 감면
5.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로서 주차요금 감면증표 부착차량: 1일 2시간 이내 100퍼센트 감면(자원봉사활동 매 500시간 초과자에 대하여 시간초과 다음 연도부터 2년간 적용)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50 퍼센트 감면. 다만, 나목 해당하는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은 면제한다.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8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을 부착한 차량
 - 나.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 친화적 자동차
7.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자가운전 차량: 20퍼센트 감면
8. 인천 다자녀가정우대카드 소유자이거나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가구원이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등)를 지참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

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제19조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을 이용한 고객이 시장주차장을 이용한 경우(전통시장에서 발급한 주차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정함): 최초부터 1시간까지 면제

10.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50퍼센트를 감면(여기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란 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필요한 경우 시간제로 공동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1.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부가 탑승한 차량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 100퍼센트 감면

12.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100퍼센트 감면(이 경우 '노상주차장'으로 한정한다)

13.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50퍼센트 감면

② 주차요금을 검단구 지역화폐로 징수할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감면 외에 5퍼센트 범위에서 추가로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역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구청장이 주차요금 감면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공영주차장의 관리) 법 제8조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인원, 장비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주차장관

리에 따른 시설,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주차거부의 금지)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자동차를 이용하여 주차장 안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4.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미납한 경우

제7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적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를 따른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정한다) 표지의 규격은 별표 3에 따르고,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내용 등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적용한다.

③ 노외주차장(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정한다)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주차장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를 따른다.

제8조(하역주차구획의 지정)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은 노상주차장 중에서 해당지역의 교통여건을 참작하여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하역주차구획에서는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하역을 위한 자동차 외의 자동차 주차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주차장 이용 안내 표지판의 규격에 준한 하역주차구획 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차종·제한구역·제한시간·제한사유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구청장이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또는 구·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과 실적이나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부담하여야 할 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할 금액	납부방법
가. 제1항제1호의 법인	위탁자가 정하는 방법	위탁자가 정하는 금액	위탁자가 정하는 방법
나. 제1항제2호 중 비영리공익법인	위탁자가 정하는 방법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 점용료 또는 국,공유재산 대부로 상당액 중 높은 금액	3개월 단위로 선납
가·나 이외의 경우	경쟁입찰	입찰가액	3개월 단위로 선납

제2장 노상 및 노외주차장

제10조(노상주차장의 설치기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는 노상주차장은 도로폭 20미터 미만의 도로로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로폭 20미터 초과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로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조(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①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국토교통부령"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주차수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차량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1. 주거지역 내 인근 주민이나 사업자 및 상근자의 자동차

2.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②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구간, 이용 대상차량, 운영시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전용주차구획 설치구간에는 별표 2의 주차장이용안내 표지판에 준한 전용주차장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용주차구획에서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지정한 주차대상 차량을 지역 여건에 따라 주차구획별로 6개월, 12개월 단위로 이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요금은 별표 1의 급지 구분에 따른 4급지 해당요금과 같으며, 선납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현금, 검단구 지역화폐, 금융기관 등의 발급카드로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위탁하여 관리할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

2. 주차카드를 교부하는 방법

3. 주차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4. 선납주차권을 사용하는 방법

②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

1.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 휴게시간 1시간 이내 주차하는 차량 및 운영시간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차량과 정액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

2.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입차하면서 운전자가 선납을 희망할 경우(운영시간 종료시까지 요금을 선납으로 징수하고 출차 시 실제 주차요금으로 정산한다)

③ 다만, 월정기 주차권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주차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불한다.

1. 주차장의 폐지 또는 운영 중단 등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미사용 기간의 주차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

2. 주차장 이용자가 이사, 이직, 장기출장 및 자동차의 매도, 폐차, 도난 등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지 서식의 주차요금 환불신청서를 제출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 미사용 기간의 주차요금을 일할 계산한 금액의 80퍼센트 환불. 다만, 월정기간 시작 전에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액 환불한다.

제13조(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의 종류 등)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주차장법 시행규

칙」 제6조제4항에서 정한 시설로 하고, 주차장 총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35퍼센트로 한다.

제14조(주차장의 이용제한) ① 구청장은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 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노상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일로부터 10일 이상 경과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장법」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5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를 적용한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④ 너비 6미터 미만 도로에도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써 구청장이 교통정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 법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②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4퍼센트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④ 장애인 전용 주차장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할 것

2. 주차장 바닥면에는 교통약자 전용표시를 할 것

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제17조(배려주차구획의 설치)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기계식 주차구획을 제외한다)가 30대 이상인 노상·노외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을 배려주차구획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배려주차구획의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65세 이상 고령자 중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이를 동반한 사람

③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일반형, 그 밖의 형식의 경우는 확장형으로 한다.

④ 배려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위치
 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4. 장애인 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
- ⑤ 제1항에 따른 주차구획은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한다.

제3장 부설주차장

제18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별표 1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등의 전용주차의 설치기준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0조를 적용하고, 전용 표지는 별표 7과 같다.

제19조(배려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기계식주차구획을 제외한다)가 30대 이상인 부설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을 배려주차구획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이용 대상 및 설치기준 등은 제1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0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의 부지인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2. 해당 시설물이 소재하는 동(행정동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와 같다) 및 해

당 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인천광역시 관할 동 제21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 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라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노외주차장(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구청장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별표 6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무상 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설치 비용으로 납부한 금액을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권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주차장일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유료 공영

노외주차장의 급지 및 요금을 준용한다.

③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 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라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제22조(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 제4항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 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제23조(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기준) 생활숙박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을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을 법정주차대수의 30퍼센트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4조(용자 등) ①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요건을 갖추어 용자를 신청할 경우 자격을 심사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의 범위에서 주차장설치비용의 일부를 용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용자의 범위, 신청자의 자격, 용자의 방법 및 상환조건 등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보조의 대상)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주차장 특별회계로부터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 확보의무가 없는 자가 기존의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또는 연립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2.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변경·보안시설 등을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
3. 학교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변경·보안시설 등을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 (단, 20면 이상)
4.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제26조(보조금의 지원방법) ①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절차, 보조한도 및 그 밖의 보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보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인천광역시 검단구 금고 또는 그 밖의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보조금의 반환) ①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2.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폐쇄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원금과 보조금 수령일부터 반환일까지 법정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계산하여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보조금(이자를 포함한다)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한다.

제28조(과징금 처분) ① 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 결정과 동시에 납부 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급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② 구청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기를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여 징수한다.

③ 영 제17조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9조(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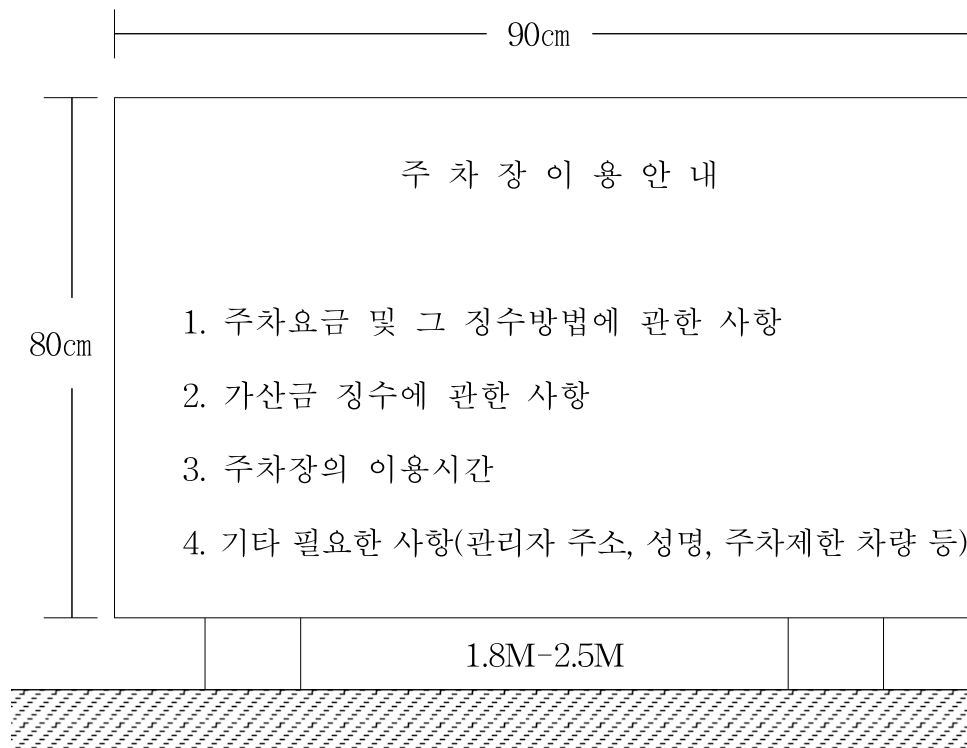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3조제1항, 제11조제4항, 제21조제2항 관련)

구 분	1회 주차권		전일주차권	월정기주차권		
	최초30분까지	최초30분이후 15분당		주간	야간	주야간
1급지	1,000원	500원	10,000원			100,000원
2급지	600원	300원	6,000원	60,000원	30,000원	70,000원
3급지	400원	200원	4,000원			40,000원
4급지	300원	150원	3,000원			30,000원

- 비 고 -

- 주차요금표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 주차장 운영에 따른 적용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되 주차장별 이용자 특성 등 여건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주간: **09:00부터 19:00까지**
 - 야간: **1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 전일주차권 및 월정기주차권은 노외주차장에 한하되, 노상주차장에 대하여는 지역실정 및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장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위임, 위탁 시)가 따로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급지 구분은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난을 참작하여 주차장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위임, 위탁 시)가 정한다.
- 노외주차장과 전일주차가 허용되는 노상주차장에 한정하여 **5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에는 전일요금으로 징수한다.
- 1구획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표준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 구획수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 주차요금의 특례
 - 주차장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위임, 위탁 시)는 인근 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기요금을 기준으로 할증 또는 할인할 수 있으며, 할증 및 할인요금은 각 기준요금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주차장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월정기주차권의 경우, 박차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차장 인근 거주자로 확인된 경우와 월 10대 이상의 다수 계약업소 등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30퍼센트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 주차장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급지를 구분하지 않고 1급지 전일주차권 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회당 정액요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 노외주차장의 야간시간 이용요금은 **50퍼센트** 할인 금액으로 한다.
 -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구청사의 월 정기주차를 제한함으로써 인근 공영주차장을 대체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다.

[별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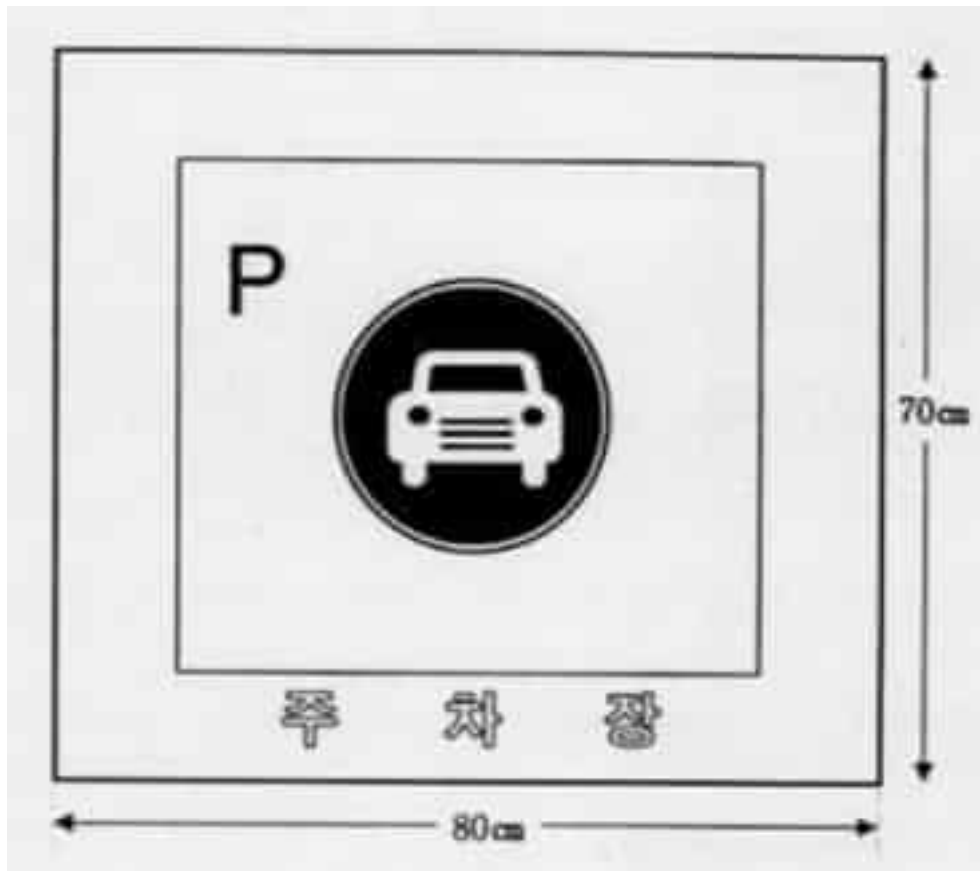
주차장 이용 안내 표지판 (제7조제1항, 제8조3항, 제11조제3항 관련)

- 비 고 -

구 분	재 료	색 채	
		바탕	글씨(고딕)
노상주차장	알미늄판	녹색	흰 색
공영노외주차장	알미늄판	녹색	흰 색

* 색채의 기준색, 허용오차는 도로표지규칙에 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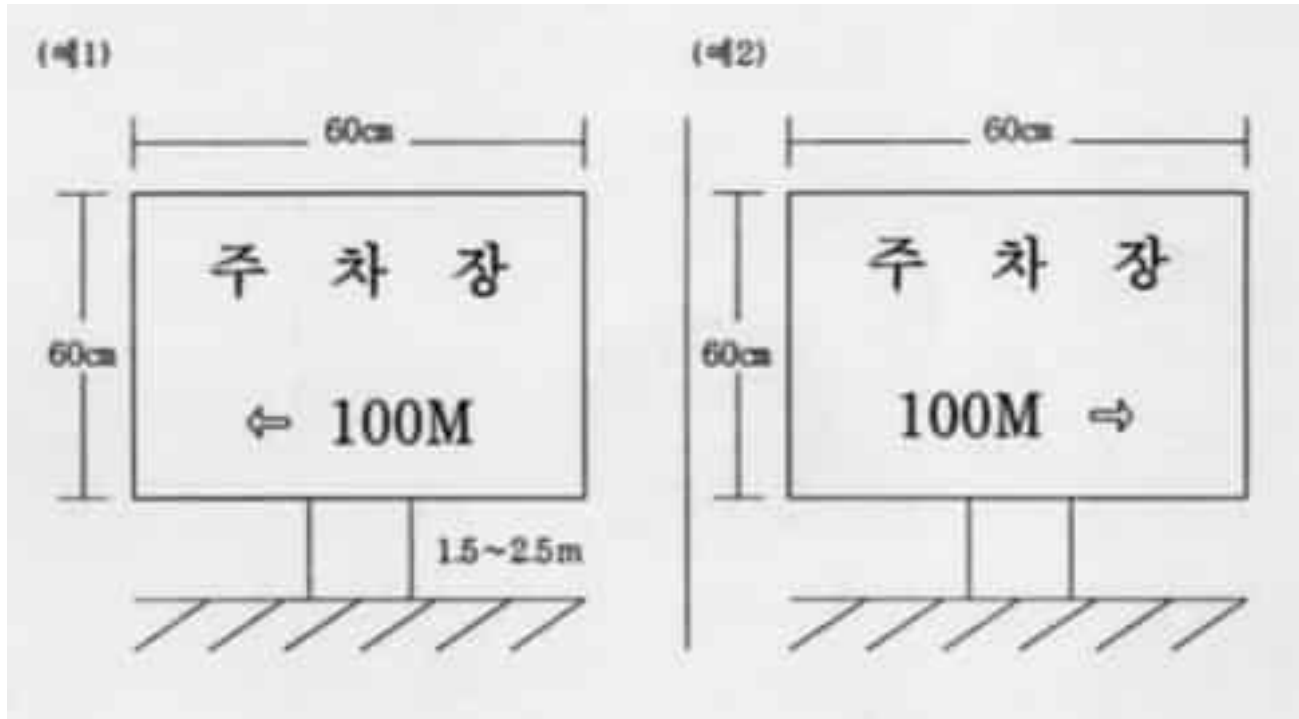
[별표 3]

노외주차장 표시 (제7조제2항 관련)

- 비 고 -

- 재료: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 규격: 내부표지판(가로 300cm × 세로 250cm),
문 자(가로 17cm × 세로 17cm)
- 색채: 외부표지판 - 바탕(청색), 문자(흰색)
내부표지판 - 바탕(흰색), 문자 및 기호(청색)
- 야간에 주차장 위치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문자, 기호 등에는 야광테이프 처리를 하여야 함.

[별표 4]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 표지 (제7조제4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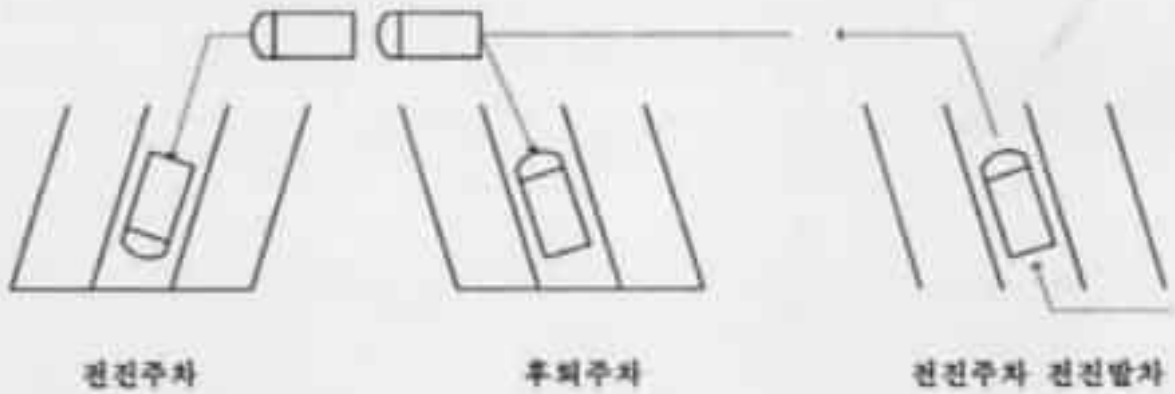
- 비 고 -

- 재 료: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 색 채: 바탕(청색), 문자 및 기호(흰색)
- 설치위치: 노외주차장으로부터 200M 이내로서 주차장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이용가능한 벽면에 부착할 수 있음)

[별표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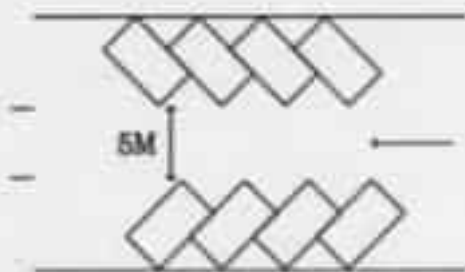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 (제15조제1항 관련)

1. 주차방법 (제15조제1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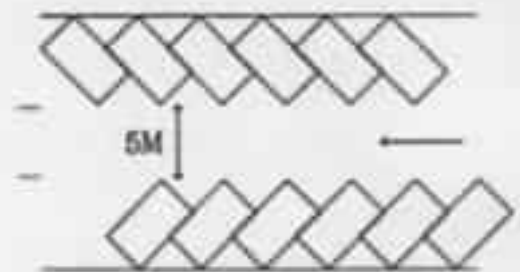


2. 배치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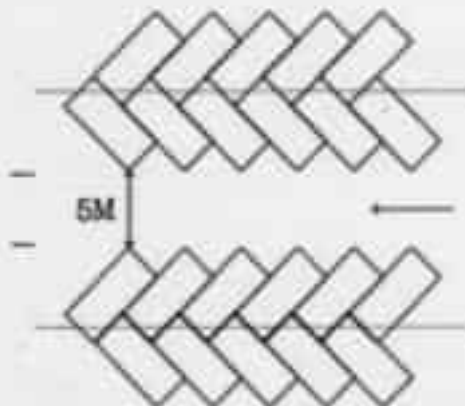
가. 30° 전진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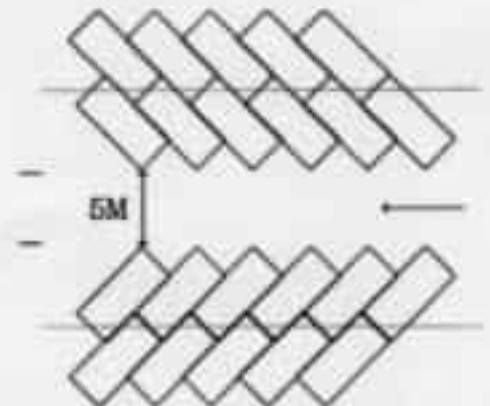
나. 45° 전진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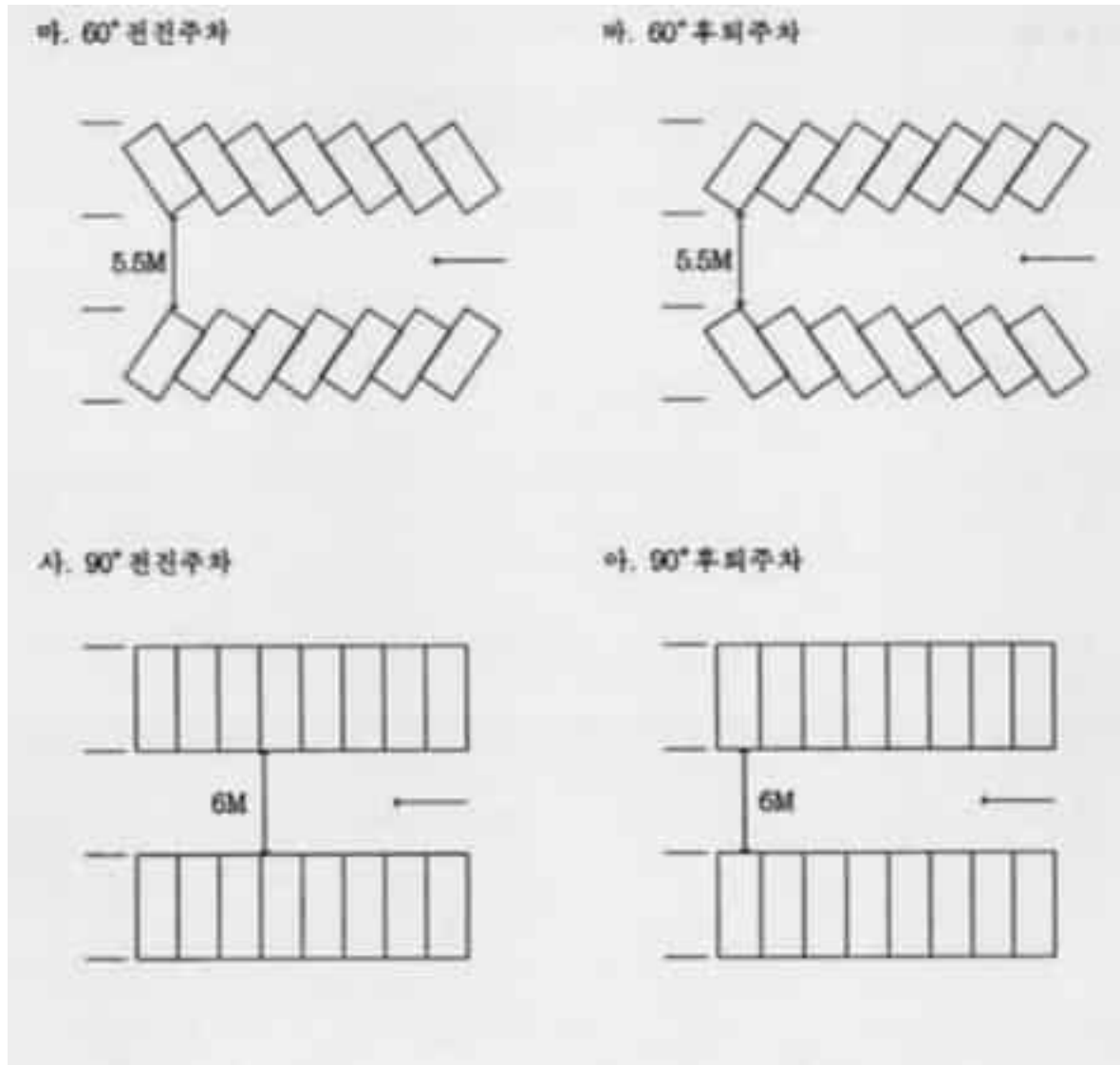


다. 45° 교차주차 (A)



라. 45° 교차주차 (B)





[별표 6]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제21조제2항 관련)

(앞면)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건축물위치:

사 용 자:

사용 기간:

이용주차장: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청 장 (인)

- 비 고 -

· 바탕: 하늘색

· 글씨: 검정색

(뒷면)

주 의 사 항

1. 앞면의 기재사항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이 사용증의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3. 이 사용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재교부해 드립니다.

[별표 7]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제18조 관련)

- 비 고 -

1. 규격

가. 표지판: 40cm × 40cm

나. 휠체어 그림부분: 가로 28cm × 32cm

2. 색채

표지의 색은 청색(바탕)과 백색(휠체어그림)을 사용한다.

3. 방향

휠체어 그림은 원칙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여야 한다.

4. 설치위치

표지의 설치위치는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100cm ~ 120cm)와 휠체어를 탄 사람이 바라보는 곳과의 장애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별지 서식]

주차요금 환불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차량	차량번호		차종		
	감면 항목				
월 정기 이용기간			계약 금액	원	
환불사유					
환불금액	원 ※ 산출근거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월정기 주차권 주차요금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첨부서류 월정기주차권	※ 안내사항 1. 월정기주차권을 등록하신 이용자만 환불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등록된 이용자가 불가피하게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위임 받은 자가 등록이용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환불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2. 환불신청서가 접수된 다음 날부터 일일 정산하여 돌려드립니다. 3. 환불사유는 이사, 이직, 출장 자동차의 매도·폐차·도난 등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말합니다.

관계 법령 발췌

□ 주차장법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①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3. 22.>

② 삭제 <1995. 12. 29.>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22., 2021. 1. 12.>

1. 노상주차장에의 주차로 인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나 그 밖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경우
2. 노상주차장을 대신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노상주차장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④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중 해당 지역의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화물의 하역(荷役)을 위한 주차구획(이하 “하역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 2011. 6. 8.>

[전문개정 1990. 4. 7.]

[제목개정 2010. 3. 22.]

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 ① 노상주차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의 자격과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와 그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 3. 22.]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6. 8., 2024. 1. 9.>

1.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한조치를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4.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5.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6.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 및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스스로 그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4.>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제10조(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한조치와 관계없이 주차할 수 있다. <개정 2011. 6. 8., 2013. 3. 23., 2016. 1. 19., 2020. 6. 9., 2024. 1. 9.>

1. 노상주차장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일시적인 사용 제한
2. 자동차별 주차시간의 제한
3.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지정

② 제1항에 따른 제한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공고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별 주차환경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3호에 따라 전용주차구획을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4. 1. 9.>

[전문개정 2010. 3. 22.]

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 ① 노외주차장은 그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생략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2016. 1. 19.>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제15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주차요금등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6. 1. 19.>

[전문개정 2010. 3. 22.]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지정) ① ~ ③ 생략

④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생략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노외주차장(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라 한다)를 주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제4항 후단에 따른 범위에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을 줄여 줄 수 있다.

⑧ 시설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은 새로운 소유자가 승계한다.

⑨ 제5항과 제7항에 따른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⑩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8.>

⑪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설치기준에 적합한 부설주차장이 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존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에게 개정된 설치기준에 맞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⑫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권고를 받은 자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이하 “개방주차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방주차장을 지정하기 위하여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 2. 4.>

⑮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항에 따라 지정된 개방주차장의 위치, 개방시간 및 주차요금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6.>

⑯ 개방주차장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개방시간, 보조금의 지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0. 2. 4., 2023. 8. 16.>

⑰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설주차장에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을 위한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5. 1. 31.>

제19조의1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 ③ 생략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8.>

⑤, ⑥ 생략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 ⑤ 생략

⑥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수수료 외에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회계로부터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 1. 12.>

⑦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게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

의 대상·방법 및 용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1. 12.>

⑧ 생략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9.>

1. 오지·벽지·섬 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이나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3. 단독주택·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4.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이용 실태,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
5. 대한민국 주재 외국공관 안의 외교관 또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구역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 주택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6. 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7.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

른 승합자동차(중형 또는 대형 승합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의 시설물의 종류·규모를 세분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생략

제10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시설물 준공검사확인증(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할 때에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중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른 범위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사용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납부된 주차장 설치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설

물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할 때의 해당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기준에 따른 징수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시설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주차장의 주차난이 심하거나 그 밖에 그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그 주차장 외의 다른 주차장을 지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무상사용 주차장으로 지정하려는 노외주차장이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인 경우에는 미리 해당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0. 21.]

제17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21. 4. 20.]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1. 생략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 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23. ~ 34. 생략

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관리기준 등) ①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6. 12.>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은 주·야간이나 기상상태 등에 관계없이 교통안전시설이 운전자 및 보행자의 눈에 잘 띄도록 정한다. <신설 2018. 6. 12.>

[전문개정 2011. 6. 8.]

[제목개정 2018. 6. 12.]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① ~ ⑦ 생략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기준) ① 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4. 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인등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 등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감정평가와 담보권의 설정·경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해당 토지의 임대료, 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2018. 3. 20., 2020. 4. 7.>

③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등(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4. 7., 2021. 7. 20.>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할 때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이하 “실무기준”이라 한다)의 제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 또는 단체(이하 “기준제정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0.>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0조에 따른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제정기관에 실무기준의 내용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제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 7. 20.>

⑥ 국가는 기준제정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0.>

□ 한국은행법

제86조(통계자료의 수집·작성 등)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에 필요

한 통화·은행업무·재정·물가·임금·생산·국제수지 또는 그 밖의 경제 일반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작성과 경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3.>

[전문개정 2016. 3. 29.]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①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2021. 8. 10.>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한다)
 3.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 3의2. 「주택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 ⑥ 생략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 ④ 생략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 1 9., 2008. 12. 31., 2012. 2. 1., 2012. 5. 23., 2013. 4. 5., 2015. 12. 1., 2017. 11. 28., 2019. 1. 15., 2019. 4. 2., 2022. 12. 27.>

1. ~ 15. 생략

16. “저공해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

17. ~ 23. 생략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장등의 상인 및 고객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시장이나 상권활성화구역에 있거나 이웃한 것만 해당한다)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대상이 되는 주차장 및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

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6. 8.]

□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2. 22., 2019. 4. 23.>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 12. 생략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2. ~ 13. 생략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세입(안 제2조)

나. 세출(안 제3조)

다. 일시차입(안 제4조)

라. 잉여금의처리(안 제5조)

마. 존속기한(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회계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인천광역시 보조금
4.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5.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6.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
7. 공공예금 이자수입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구청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4. 주차시설의 확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일시차입) ① 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할 수 있다.

제5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적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세입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주차장법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①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3. 22.>

② 삭제 <1995. 12. 29.>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22., 2021. 1. 12.>

1. 노상주차장에의 주차로 인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나 그 밖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경우
2. 노상주차장을 대신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노상주차장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④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중 해당 지역의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화물의 하역(荷役)을 위한 주차구획(이하 “하역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①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설치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3. 22., 2013. 3. 23.>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해당 노외주차장에 화물자동차 또는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 또는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 3. 22., 2024. 1. 9.>

③ 삭제 <1999. 2. 8.>

④ 삭제 <1999. 2. 8.>

⑤ 삭제 <1999. 2. 8.>

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지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

1. 4. 14.>

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하여 납부된 비용은 노외주차장의 설치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노외주차장(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라 한다)를 주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제4항 후단에 따른 범위에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을 줄여 줄 수 있다.

- ⑧ 시설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은 새로운 소유자가 승계한다.
- ⑨ 제5항과 제7항에 따른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⑩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 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8.>
- ⑪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설치기준에 적합한 부설주차장이 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존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에게 개정된 설치기준에 맞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⑫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권고를 받은 자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 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이하 “개방주차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 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방주차장을 지정하기 위하여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 2. 4.>

⑮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항에 따라 지정된 개방주차장의 위치, 개방시간 및 주차요금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6.>

⑯ 개방주차장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개방시간, 보조금의 지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0. 2. 4., 2023. 8. 16.>

[전문개정 2010. 3. 22.]

[제목개정 2020. 2. 4.]

제24조의2(과징금처분) ① 제24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24조에 따른 과징금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①, ② 생략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제6조제1항·제2항(통행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제13조제1항·제3항·제5항, 제14조제2항·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3항, 제21조제1항·제3항, 제22조, 제23조, 제25조제1항·제2항·제5항, 제25조의2제1항·제2항, 제27조제1항·제7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제4항,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10호·제11호·제11호의2,

제50조제3항, 제60조제1항·제2항, 제62조 또는 제68조제3항제5호를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 또는 적재량 측정자료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생략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 나. 모범사업자의 지정 신청, 발급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안 제5조)
- 다. 지정의 유효기간, 지정의 취소 또는 반납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안 제7조)
- 라. 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2. "모범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7조의2 및 이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계획의 수립)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이하 "모범사업자"라 한다) 지정계획 수립 시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또는 구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모범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시행규칙 별표 21의7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

정한다.

제5조(지정 등의 발급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사업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별표에 따른 모범사업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교부한다.

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구청장에게 반납하고 지정증 및 표지판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할 수 있다.

제6조(지정의 유효기간) 모범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의 취소 또는 반납 등) ① 구청장은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법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지정받은 모범사업자가 사업의 폐업, 양도하는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구청장이 정하

는 기간까지 면제

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게 구청장 포상

3. 구 홈페이지 등 홍보 매체를 이용한 홍보 지원

제9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표지판(제5조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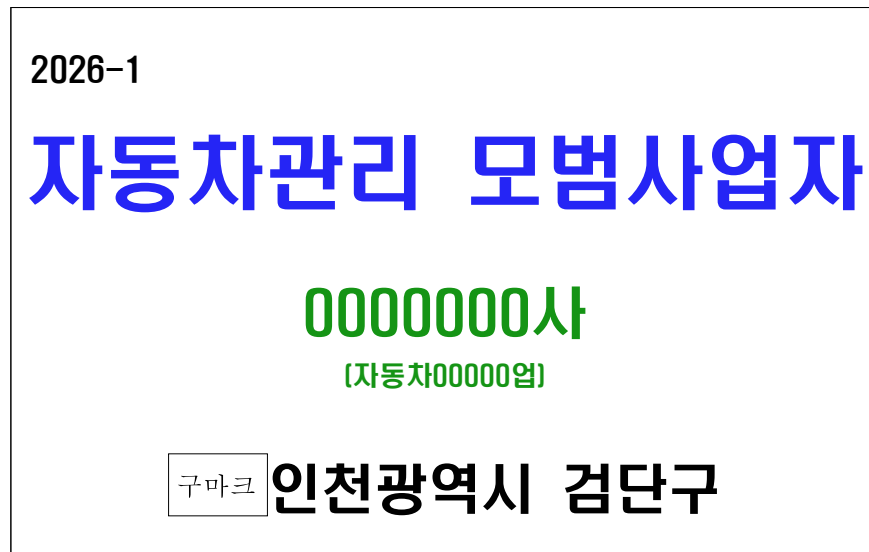
1. 규격 및 재질

가. 규격 : 50cm(가로)×30cm(세로)

나. 재질 : 스테인레스판 실크인쇄

2. 표지판 도안 등

가. 도 안



나. 색상

○ 바탕 : 은회색

○ 글씨 : “자동차관리 모범사업자”는 청색, 상호는 녹색, 그 외는 흑색
다. 그 밖에 인천광역시, 검단구 상징 등의 문양을 넣을 수 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재지정)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지정번호 : 제 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증

- 업체명:
- 대표자:
- 소재지:
- 업종:
- 유효기간 :

위 업소를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직인

[별지 제3호서식]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연번	지정번호	지정일자	상호	업종	대표자	소재지	비고

관계 법령 발췌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모범사업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따라 사업 내용이 우수한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의 절차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모범사업자의 지정 기준 등) ①법 제5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표 21의7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그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모범사업자지정증 및 표지판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0. 2. 18., 2013. 9. 6., 2023. 5. 25., 2025. 4. 2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이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8.>

⑤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9. 6.>

[본조신설 2003. 1. 2.]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소 수가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진료비 및 수수료 종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 제7조)

다.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대상 및 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소 수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소의 진료비와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약가 및 진료재료의 비용을 말한다.
2. "진료수가"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시한 비용을 말한다.
3. "기타수가"란 법에서 정한 비급여 및 타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가를 말한다.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제4조(약가) ① 약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에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소에서 전년도 최근 구매한 단가에 500원을 더한 가격으로 하되, 십원 단위는 절사한다.

제5조(타 법령에 의한 수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수가 및 수수료는 그 법을 적용한다.

제6조(기타수가) ① 제3조 및 제5조를 제외한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수가는 별

표 1을 따른다.

②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환자의 검사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의 보건기관단가 100분의 70으로 산정하되, 십원 단위는 절사한다.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① 진찰, 검사, 방사선진단 등 진료수가 외의 증명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른다.

② 조례에 정함이 없고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방문당 수가를 적용한다.

제8조(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와 진료비를 면제한다.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응급처치
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3. 수해 또는 재해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4.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진료(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등)
5. 무의탁의 진료
6. 국가나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대한 의료지원 중 응급투약 및 응급처치
7. 주민등록이 구에 등재된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진료 및 예방접종으로 법 제44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한하며, B형간염 예방접종, B형간염 항체검사는 제외
8.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법 제44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한한다.)
9. 주민등록이 구에 등재된 다자녀 가정(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

상인 가정을 말한다) 중 15세 이하인 사람에 대한 치면열구전색, 불소도포 사업

② 보건소장은 타 법령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법 제44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한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7. 「인천광역시 검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8.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9.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10.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직기증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는 당일에 납부한다.

제10조(추가징수)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면제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기타수가(제6조 제1항 관련)

종목	기준	수수료	비고
치면열구전색 (치아홈메우기)	1치아당	5,000원	건강보험대상 (제1,2대구치) 치아 제외
불소도포	전체치아	5,000원	
유료접종 (B형간염)	성인	약품의 최근 구매한 단가에 500원을 더한 가격	십원단위는 절사
유료검사 (B형간염항체검사)	전체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내역의 보건기관단가 70% (매년 고시가에 따라 변동함)	십원단위는 절사

[별표 2]

증명발급 수수료 기준(제7조제2항 관련)

구분	기준	수수료	비고
1. 건강진단서	1통	1,000원	
2. 기발급 증명서 재발급	“	500원	
3.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6,000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 단 규칙」 제5조 관련	수수료 50% 감액대상 1. 검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 는 거주자 2. 검단구 관할 구역 내 영업장 에 종사(예정)하는 사람. 다 만, 검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검단구 관할 구역 내 영업장 종사(예정)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예 정) 증명서(별지 제1호서식 또 는 영업장에서 발급하는 재직증명 서 등)를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소장에게 제출
4. 건강진단결과서 재발급	“	300원	
5. 외국인 결핵검진확인서	“	1,000원	

■ [별지 제1호서식]

재직(예정) 증명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재직(예정) 사항	소속(예정) 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장 주소	
영업주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2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신청인)의 재직(예정)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영업주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소장 귀하

안 내 및 유 의 사 항

- 재직(예정) 증명서에 신청인(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영업주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되어 있어야 재직(예정) 증명서로 인정됩니다.
- 영업주는 “(서명 또는 인)”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서명을 하는 경우 자필 서명을 해야 합니다.
-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직(예정)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청할 때는 「형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재직(예정) 증명서는 영업 신고가 되어 있는 영업장만 가능하며, 영업 신고 예정인 영업장은 재직(예정) 증명서 적용이 불가합니다.
-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 2에 따른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 50% 감액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 나. 인천광역시 검단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에 종사(예정)하는 사람. 다만, 검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검단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 종사(예정)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예정) 증명서를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발췌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 2. 3., 2019. 1. 15., 2019. 12. 3.>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 가.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 라.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 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 아. 난임의 예방 및 관리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①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를 본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선별급여에 대해서는 다른 요양급여에 비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 ② 제1항에 따라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이라 한다)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당사자에게

그 초과 금액을 통보하고,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2., 2023. 5. 19.>

③ 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한다. <신설 2016. 3. 22.>

④ 제2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총액 산정 방법,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의 지급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3. 22.>

제45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①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그 계약은 공단과 각 요양기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30일까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양급여비용을 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으로 정한 요양급여비용으로 본다. <개정 2013. 5. 22.>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이 정해지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요양급여비용의 명세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⑤ 공단의 이사장은 제33조에 따른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⑥ 심사평가원은 공단의 이사장이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그 요청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3조(건강진단 실시) ① 이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병원 또는 의원

(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다만, 영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의료인이 해당 영업소에 방문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23. 12. 7.>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료기관은 별지 서식의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3. 12. 7.>

제5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8. 3. 28., 2023. 11. 22.>

인천광역시 검단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제정의 목적(안 제1조)
- 나.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다.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안 제6조)
- 라. 헌혈추진협의회 설치(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구민의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이란 건강한 사람이 자기의 혈액을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수혈할 수 있도록 혈액원에 아무런 대가 없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구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헌혈장려 및 지원”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5. “헌혈추진협의회”란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 구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6. “출자·출연 기관”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헌혈권장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와 법 제6조에 따른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권장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자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장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평가)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의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기관 중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기관에서 혈장 헌혈을 제외한 수혈용 헌혈을 한 자에게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지급
2. 관내 생애 첫 헌혈자 및 다회 헌혈자에게 소중한 생명나눔 활동을 격려하

는 구청장의 감사 서한 발송 및 소정의 기념품 지급

3. 관내에서 헌혈 장려에 특히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한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간행물 등의 매체를 활용한 헌혈 관련 홍보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7조(헌혈추진협의회 설치) ① 법 제4조의6에 따라 구청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2.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헌혈 권장 방안에 관한 사항
3.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 및 대응 방안에 관한 사항
4. 제4조에 따른 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제6조에 따른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헌혈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서부지원교육청, 인천서부경찰서, 관내 군부대, 의료기관, 언론

기관, 민간경제단체, 대한적십자사 등 관련 단체의 장(부득이한 경우 고위관리자)

2. 검단구의회 의원

3.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4.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구민

④ 협의회는 별도로 제7조제2항의 실무 추진을 위해 구성기관 실무 부서장 위주의 헌혈추진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회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9조(협의회의 회의) ① 회의는 연 1회 이상의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회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임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사망·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심의·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협의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공직자 참여유도) 구청장은 공직자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에서 정한 공가 활용 적극 장려
2. 구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헌혈 공가 도입 권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혈액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헌혈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국민의 헌혈을 장려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종전 제4조는 제4조의3으로 이동 <2020. 12. 29.>]

제4조의6(헌혈추진협의회 구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제4조의4에서 이동 <2020. 12. 29.>]

□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헌혈의 권장)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혈액의 수급조절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05. 1. 29., 2008. 2. 29., 2010. 3. 15., 2021. 6. 15.>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제1항에 따른 헌혈권장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혈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공공단체·민간단체 또는 혈액원에 대하여 헌혈권장 등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 1. 29., 2019. 5. 28.>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권장을 위하여 헌혈사상 고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23.

5. 9.>

④ 삭제 <2023. 5. 9.>

인천광역시 검단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난임부부 지원내용(안 제5조)

다. 난임부부 지원중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난임을 극복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 시술비(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지원
2.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의약난임치료비 지원
3.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
4.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난임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중단) 구청장은 난임부부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3.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4.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을 경우

제7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난임부부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 조례에 의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을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경우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모자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모성(母性) 및 영유아(嬰幼兒)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 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2. 22., 2019. 4. 23.>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모성”이란 임산부와 가임기(可妊期) 여성을 말한다.
3.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4.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5. “미숙아(未熟兒)”란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6. “선천성이상아(先天性異常兒)”란 선천성 기형(奇形) 또는 변형(變形)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7.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8. “모자보건사업”이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출

산·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삭제 <2017. 12. 12.>

10. “산후조리업(産後調理業)”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하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11. “난임(難妊)”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12. “보조생식술”이란 임신을 목적으로 자연적인 생식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의료행위로서 인간의 정자와 난자의 채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1. 7.]

제11조(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유산·사산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2015. 12. 22., 2024. 1. 2.>

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 12. 22., 2024. 2. 6.>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이 경우 「한의학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이하 “한방난임

치료”라 한다)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4. 1. 2.>

1. 유산·사산 관련 상담 및 심리지원

2. 유산·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

3. 그 밖에 유산·사산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 1. 7.]

[제목개정 2012. 5. 23., 2015. 12. 22., 2024. 1. 2.]

제11조의2(난임치료의 기준 고시)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한방난임치료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2. 6.>

[본조신설 2015. 12. 22.]

[제목개정 2024. 2. 6.]

제11조의3(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다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다목·마목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

비 및 전문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난임시술 의료기관(이하 “지정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의 기준 및 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3.>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제4항에 따른 위탁, 제5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공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2.]

제11조의4(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 극복, 산전·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사산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이하 “중앙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

1. 산전·산후우울증 관련 검사

2. 난임 극복, 산전·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사산 예방 관련 상담 및 교육

3. 제2항에 따른 권역별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4. 제2항에 따른 권역별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와의 정보 교류 및 협력

5. 난임 극복, 산전·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사산 예방을 위한 조사 및

연구

6. 그 밖에 난임 극복, 산전·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사산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난임 극복, 산전·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사산 예방 관련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권역별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이하 “권역별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담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

④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담센터의 설치·운영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 2.>

[본조신설 2016. 12. 2.]

[제목개정 2024. 1. 2.]

[종전 제11조의4는 제11조의5로 이동 <2016. 12. 2.>]

제11조의5(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지정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2. 22.]

[제11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5는 제11조의6으로 이동 <2016. 12. 2.>]

제11조의6(통계관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극복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현황 및 그에 따른 임신·출산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관리(이하 “통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구통계학적 특성
2. 산과 및 의학적 과거력
3. 난임의 원인
4. 난임시술의 과정 및 임신·출산 등 난임시술의 결과
5. 난임시술로 태어난 출생아의 건강 정보
6.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정보
7. 그 밖에 난임시술의 통계관리에 필요한 자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통계관리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통계관리에 필요한 경우 난임환자를 진단·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난임극복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2.]

[제11조의5에서 이동 <2016. 12. 2.>]

제11조의7(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소 또는 고환 절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인하여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세포의 동결·보존을 통한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의 생식세포 보존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 23.]

[시행일: 2025. 1. 24.] 제11조의7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 기준(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교육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 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다.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합병전의 처분은 양도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법인이 승계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내 용	관 련 법 규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1.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 및 제34조제1항	600만원	1,200만원	2,400만원
2.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한 자	「지역보건법」 제23조 및 제34조제2항제1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3.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29조 및 제34조제2항제2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관계 법령 발췌

□ 지역보건법

제22조(정보의 파기)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출받은 정보 중 서비스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보의 보유기한이 지나면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정보의 파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8.>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또는 의료인은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8.>

제23조(건강검진 등의 신고) ① 「의료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 “건강검진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보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제29조(동일 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각각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4조(과태료) ①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 3. 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 3. 28.>

1.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2.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3. 3. 28.>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나. 위원회의 임무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 다. 위원회의 회의·심의·처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0조)
- 라. 위원회의 수당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지역주민 대표
2.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4. 관계 공무원

5. 학교보건 관계자

6.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제4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임원의 경우는 위촉 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위원의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자문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보건행정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위원회의 심의, 자문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지역보건법

제6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①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단체장을 말한다)이 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해당 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단체장”이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에 따른 행정부시장이나 행정부지사를 말한다. 이 경우 행정부시장이나 행정부지사가 2명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1)부시장이나 행정(1)부지사를 말한다. <개정 2021. 12. 16.>

② 법 제6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공 야간·휴일 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야간·휴일의원 지정 및 지원을 통해 평일 야간, 휴일 등에 의료 서비스의 수급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야간·휴일 병원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공공 야간·휴일 지정 병원과 약국의 지정 및 운영시간을 정함.(안 제4조)

라. 지정된 야간·휴일 병원의 운영실태 조사와 지도·감독에 대해 규정함
(안 제5조)

마.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것을 규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공 야간·휴일 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 따라 공공 야간·휴일 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의 야간·휴일에 발생하는 일차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의료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 야간·휴일 병원”(이하 “야간·휴일 병원”이라 한다)이란 제4조 제1항에 따라 운영되도록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인천광역시 검단구 소재 의료기관을 말한다.
2. “공공 야간·휴일 병원”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중에서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야간·휴일 병원 지정 및 지원을 통해 평일 야간, 휴일 등에 구민이 필요할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야간·휴일 병원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 등에 대한 의료접근성 향상 등을 위하여 야간·휴일 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야간·휴일 병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시간 내에서 운영시간을 정할 수 있다.

1.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2.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당일 자정까지

3. 휴일: 오전 0시부터 당일 자정까지(단, 휴일 전일이 평일인 경우 오전 6시부터 당일 자정까지)

③ 구청장은 공공 야간, 휴일 병원 근처에 있는 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야간·휴일 병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야간·휴일 병원의 지정 및 운영 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관리) ① 구청장은 야간·휴일 병원의 운영실태를 확인·조사할 수 있고, 야간·휴일 병원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조사 결과, 야간·휴일 병원이 지정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거나 부실하게 운영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야간·휴일 병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 관리) 보조금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 생략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1.30, 2011.6.7, 2016.5.29, 2019.4.23, 2020.3.4>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
· 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제33조(개설 등) ①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또는 의원,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20.3.4>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③ 제2항에 따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④ 제2항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하려면 제33조의2에 따른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8.27, 2020.3.4>

1.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2.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급 및 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

하려는 때에도 제3항 또는 제4항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⑥ 조산원을 개설하는 자는 반드시 지도의사(指導醫師)를 정하여야 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개정 2019.8.27>

1. 약국 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

2.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3. 약국과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4.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증축·개축한 건축물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⑧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신설 2009.1.30, 2012.2.1>

⑨ 의료법인 및 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 등"이라 한다)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법인의 정관에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얻어야 한다(의료법인등을 설립할 때에는 설립 허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 경우 그 법인의 주무관청은 정관의 변경허가를 하기 전에 그 법인이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⑩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등은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12.29>

[제목개정 2012.2.1]

[2009.1.30. 법률 제9386호에 의하여 2007.12.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된 이 조 제2항을 개정함]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다. 사업홍보(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여 생명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장기이식법”이라 한다)제4조제1호 각 목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장기이식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 및 인체조직법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과 인체조직법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이하 “장기기증”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

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기증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기증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장기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 사항

③ 구청장은 장기기증 활성화와 사업의 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장기기증의 날 지정·운영) 구청장은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한다.

제7조(사업 홍보) ① 구청장은 장기기증 사업의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구”라 한다) 홈페이지 및 각종 온라인 매체
2. 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3.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역내
4. 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5. 그 밖에 장기기증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기기증 활성화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2. 구가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장기기증 장려 사업에 기여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 15., 2020. 4. 7.>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장·간장·췌장·심장·폐

나. 말초혈(조혈모세포를 이식할 목적으로 채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골수·안구

다. 뼈·피부·근육·신경·혈관 등으로 구성된 복합조직으로서의 손·팔 또는 발·다리

라.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한 것

마. 그 밖에 사람의 내장 또는 조직 중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이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장기등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말초혈 또는 골수의 경우에는 살아있을 때를 포함한다)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등이식대기자”란 자신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장기등을 이식받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살아있는 사람”이란 사람 중에서 뇌사자를 제외한 사람을 말하고, “뇌사자”란 이 법에 따른 뇌사판정기준 및 뇌사판정절차에 따라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정지되었다고 판정된 사람을 말한다.
6. “가족” 또는 “유족”이란 살아있는 사람·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14세 미만인 사람은 제외한다.
 - 가. 배우자
 - 나. 직계비속
 - 다. 직계존속
 - 라. 형제자매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가족 또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친족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 1. 27., 2008. 2. 29., 2010. 1. 18., 2014. 1. 28., 2016. 2. 4., 2018. 12. 11.>

1. “인체조직”이라 함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조직”이라 한다)을 말한다.
 - 가. 뼈·연골·근막·피부·양막·인대 및 건
 - 나. 심장판막·혈관
 - 다. 신체의 일부로서 사람의 건강, 신체회복 및 장애예방을 위하여 채취하

여 이식될 수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조직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특정한 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2의2. “조직기증희망자”란 장래에 사망할 때 조직을 기증할 의사를 가진 사람으로서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2의3. “잠재적 조직기증자”란 유족이 제16조의2에 따른 조직기증지원기관(이하 “조직기증지원기관”이라 한다),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조직기증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을 요청한 사망자,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장기구득기관(이하 “장기구득기관”이라 한다)에 신고된 뇌사추정자 중 가족이 조직기증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을 요청하여 조직기증지원기관으로 연계된 자를 말한다.

3. “조직이식”이라 함은 조직기증자로부터 기증된 안전성이 확보된 조직을 환자의 질환치료 등을 목적으로 이식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조직은행”이라 함은 이식을 목적으로 조직의 관리를 위하여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는 기관을 말한다.

5. “조직관리”라 함은 조직을 채취·저장·처리·보관 및 분배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살아있는 자”·“뇌사자”·“가족” 또는 “유족”의 정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준용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안 제1조)
- 나. 정의 (안 제2조)
- 다.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 (안 제3조)
- 라. 공공심야약국의 관리 (안 제4조)
- 마. 시행규칙 (안 제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약국으로서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 및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심야약국 근무 약사는 약사윤리기준 및 약사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약사법」 제24조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심야시간 및 공휴일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이용 실태를 월별, 분기별, 연도별로 조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은 약국에서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원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①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②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규칙으로 약국의 개설등록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1.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2.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3.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4.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⑥ 제2항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14.3.18.>

제24조(의무 및 준수 사항) ① 약국에서 조제에 종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조제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를 거부할 수 없다.

② 약국개설자(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의료기관 개설자(해당 의료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11>

1. 약국개설자가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약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행위
 2. 삭제 <2024.1.23>
 3.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환자의 요구에 따라 지역 내 약국들의 명칭·소재지 등을 종합하여 안내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4.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제25조제2항에 따라 의사회 분회 또는 치과의사회 분회가 약사회 분회에 제공한 처방의약품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의약품과 같은 성분의 다른 품목을 반복하여 처방하는 행위(그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한 약사의 행위도 또한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와 유사하여 담합의 소지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③ 제2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조제실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3.3.23>
- ④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服藥指導)를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복약지도에 관한 내용을 환자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설명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약지도서의 양식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3.18>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가 적정한 처방건수를 조제하게 하여 제4항에 따른 복약지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1.18>

인천광역시 검단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응급의료 지원내용(안 제3조)

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안 제4조)

라. 응급의료 관리계획 수립 및 평가(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하·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란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 지원내용)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医료를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3. 응급의료 홍보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할 수 있다.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의무 대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설치 권장 대상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인천광역시 검단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설

나.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5조(설치 및 권장) ①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설치비용 지원 시 구청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6조(응급의료 관리계획 수립 및 평가)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선정방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 계획에 따른 사업 결과를 매년 평

가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응급장비의 관리)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에서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응급처치 교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3. 공무원, 보육교사 등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9조(홍보활동)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에 대한 구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 등의 지원 및 설치·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47조의2(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 6. 9., 2011. 3. 8., 2011. 8. 4., 2012. 2. 1., 2016. 3. 29., 2016. 5. 29., 2018. 12. 11., 2019. 12. 3., 2021. 12. 21., 2023. 8. 16.>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구급대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4.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5.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 6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

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

6의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중 실제 운영 중인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춘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응급장비의 양도·폐기·이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6. 12. 2.>

③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 5. 14., 2016. 12. 2., 2021. 12. 21.>

④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시설 등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1.>

⑤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장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5. 14., 2016. 12. 2., 2021. 12. 21.>

제50조(지도·감독)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 등에 대하여 매년 한 번 이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구비현황과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24.>

인천광역시 검단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나. 구민 등의 교육(안 제4조)
- 다.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안 제5조)
- 라. 심폐소생술교육 홍보활동(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서 우리 구 교육이 필요한 구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정지된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뇌로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여 치명적인 뇌손상 및 사망 등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장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 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이다.
3. “응급처치”란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 박동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구민이 적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 등의 교육) 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희망하는 구민은 응급환자의 생

명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검단구”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 및 통장 등은 구청장이 실시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습 효과가 높은 검단구 관내 초·중·고등학생은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생존을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
2.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후관리) 구청장은 당해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7조(심폐소생술교육 홍보활동) 구청장은 주민들에 대한 교육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홍보물 및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안 제1조)

나. 정의 (안 제2조)

다. 구청장 책무 및 구민의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안 제5조)

라. 불용의약품 등 수집 및 운반·처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안 제7조)

마.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 관리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집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배출·수집·보관·운반 및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 관리와 관련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구민의 준수사항) ① 구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服藥指導)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등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발생한 불용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약국, 보건소 등에서 안내를 받은 후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불용의약품 등 수집) ① 구 보건소장이나 구 소재 약국의 약사는 구민의 건강증진 및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거 장소를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을 철저히 수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과 관련 단체는 수집된 폐의약품이 운반·처리될 때까지 위생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제7조(불용의약품 등 운반·처리) ①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을 안전하게 회수·처리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집된 불용의약품 등을 정기적으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에 따라 운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③ 인천광역시 검단구 약사회장은 약국을 통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회수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한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업무의 위탁 및 대행계약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업무수탁자 및 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의 위탁 및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계약)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경우 업무수탁기관 또는 업무대행의료인(이하 "업무수탁자 및 업무대행자"라 한다)과 사전에 업무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지역보건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비용의 보조 또는 실비보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급한다.

제3조(업무수탁자 및 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계약 체결된 업무수탁자 및 업무대행자를 수시로 지도·감독 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지역보건법

제30조(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8.>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하거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8.>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의료인에게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實費)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8.>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8.>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8.>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6.>

1. 법 제4조에 따른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2.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
3. 법 제11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 실험 또는 검사 업무
5. 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업무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6.>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해야 한다.<개정 2023. 9. 26.>

④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비용보조, 실비보조, 그 밖의 업무의 위탁 또는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 9.

26.>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대행하게 한다.

<신설 2023. 9. 26.>

인천광역시 검단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지역보건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거하여, 면역력이 저하된 노년기에 발생 위험성이 증가하는 질병인 대상포진의 발병률 및 합병증 예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고령층에게 예방접종비용을 전액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안 제2조, 안 제3조)
- 나. 비용지원과 지원절차(안 제4조, 안제5조)
- 다. 위탁의료기관 선정과 위탁계약 체결, 위탁의료기관의 해지(안 제6조~안 제8조)
- 라. 백신구입 및 비용상환, 비용청구, 비용지급(안 제9조 ~ 안 제11조)
- 마. 환수조치(안 제12조)
- 바. 예방접종에 대한 피해 보상 안내(안 제1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관계부서와 협의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검단구 지역주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지역주민으로 한다.

제3조(지원기준) 대상포진 백신을 한 번도 접종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1회에 한 정하여 접종을 지원한다.

제4조(비용지원)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의 대상자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절차) ① 대상자가 대상포진 예방접종 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보건소 또는 구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신청을 받은 접종기관은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접종대상자는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하며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인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의료기관 선정) 구청장은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에서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위탁계약 체결)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위탁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위탁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제8조(위탁의료기관의 해지 등) 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의료기관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
2. 위탁계약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기타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

제9조(백신구입 및 비용상환) ① 예방접종 백신은 보건소에서 구매하여 위탁의료기관에 배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접종 비용 상환은 보건복지부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접종 시행비를 위탁의료기관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제10조(예방접종 비용 청구) ①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구청장에게 접종 시행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등을 등록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예방접종 비용의 지급) 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을 청구 받은 때에는 이에 대한 심사 후 예방접종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백신 비 및 시행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제13조(예방접종에 대한 피해 보상 안내) 구청장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 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제14조(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앞쪽)

제1조	계약목적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정기 또는 임시에방접종을 실시한다.			
제2조	“을”	의료기관명		요양기관번호	
		요양기관종별		표시 과목	
		주소(소재지)			
		전화		전자우편주소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면허종별		면허번호	
		의료정보시스템	[] 사용 ※ 사용시 업체명 : _____ [] 미사용		
제3조	위탁계약 조건	별지 뒷면 참조			
제4조	신의성실 및 위탁계약의 해지	-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갑은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을이 제7조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 과실로 인해 예방접종업무가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계약기간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1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갑과 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기관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을> 의료기관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관계 법령 발췌

☐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 가.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 라.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 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2조(건강증진과 의료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연령별 건강상의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을 위한 의료·요양 제도 등을 확립·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에 대한 예방접종업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탁한 기관을 공고해야 한다. <2021. 8. 3., 2023. 8. 18.>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6., 2023. 8. 18.>

1. 예방접종업무의 위탁범위에 관한 사항
2. 위탁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3. 위탁계약 조건에 관한 사항
4.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한 경우의 예방접종 비용 산정 및 비용 상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 1. 6., 2020. 9. 11.>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피해구제급여의 지급 기준 및 범위) 법 제86조의3제3항에 따른 피해구제급여의 지급 기준 및 범위는 별표와 같다.

피해구제급여 지급 기준 및 범위(제7조 관련)

1. 피해구제급여 유형별 지급 기준 및 범위

유형	지급 기준 및 범위
진료비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입원을 하거나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상태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에서 통상적인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 중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부담하는 금액. 다만,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 비용 중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가 부담하는 금액
사망일시보상금	피해구제급여 지급 결정 당시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환산액의 5년치에 해당하는 금액
장애일시보상금	제2호의 장애등급 기준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장애등급 1급: 사망일시보상금 × 1 나. 장애등급 2급: 사망일시보상금 × 0.75 다. 장애등급 3급: 사망일시보상금 × 0.5 라. 장애등급 4급: 사망일시보상금 × 0.25
장례비	피해구제급여 지급 결정 당시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평균임금의 3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

제8조(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 ①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한 사람 및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의 유족은 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급여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 지급되지 아니한 진료비 및 장애일시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 방지를 위해 적기에 예방접종이 필요함. 의료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전액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발병률 감소 및 합병증 예방으로 국민의 건강증진 도모.

2. 주요내용

- 가. 예방접종대상, 예방접종의 실시(안 제3조, 안 제4조)
- 나. 위탁의료기관 선정, 계약체결, 계약해지(안 제5조~안 제7조)
- 다. 예방접종 비용, 위탁 비용상환 신청 및 지급, 비용상환 이의신청(안 제8조~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관계부서와 협의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 방지를 위해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구청장은 예방접종사업의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는 등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예방접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예방접종대상) ①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유족증 소지자
4. 그 밖에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예방접종 대상자는 접종일 현재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으로 한다.

제4조(예방접종의 실시 등) 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매년 1회 접종을 실시함

을 원칙으로 한다.

②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실시하되 관내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예방접종은 예방접종에 대하여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능력을 갖춘 의료인이 접종하며 의료인은 현재 권장되고 있는 예방접종의 접종방법 및 접종하는 백신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의료기관의 선정) 구청장은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만 해당한다) 또는 의원 중에서 예방접종 업무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위탁기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계약 체결)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위탁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위탁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위탁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제7조(위탁계약 해지) 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
2. 제5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어겼을 때
3. 그 밖에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

제8조(예방접종 비용)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수가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백신비와 예방접종 시행비용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제9조(위탁 비용상환 신청 및 지급) ①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구청장에게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이하“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비용상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예방접종 비용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 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하여야 한다. 이때 구청장은 심사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비용상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비용상환 인정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비용 상환액을 지급하기 전 지급불능 사항이 발생 할 경우 위탁의료기관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비용상환 이의신청) 위탁의료기관은 비용상환 불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1조(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의료기관의 장과 체결한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해 체결한 것으로 본다.

관계 법령 발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필수예방접종)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이하 “필수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디프테리아
2. 폴리오
3. 백일해
4. 홍역
5. 파상풍
6. 결핵
7. B형간염
8. 유행성이하선염
9. 풍진
10. 수두
11. 일본뇌염
12. 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3. 폐렴구균
14. 인플루엔자
15. A형간염
16.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7.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18.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아동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25조(임시예방접종)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이하 “임시예방접종”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업무를 위탁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예방접종업무를 위탁)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에 대한 예방접종업무를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탁한 기관을 공고해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및 한방 병원은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예방접종업무의 위탁범위에 관한 사항
2. 위탁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3. 위탁계약 조건에 관한 사항
4.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한 경우의 예방접종 비용 산정 및 비용 상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감염병 등의 각종 질병으로부터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대상지역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안 제6조)

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생해충 등 구제(驅除)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위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위생해충 등”이란 인간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해를 줄 수 있는 바퀴벌레, 파리, 빈대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대상 지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을 시행할 수 있다.

1. 하천변
2. 골목길 등의 위생해충 등 출몰 다발 지역
3. 빗물펌프장, 복개천 하수구 등의 방역 취약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5조(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위생해충 등의 구제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위생해충 등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 동물의 구제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구청장은 구민의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생해충 등 구제를 위한 방역 사업
2. 위생해충 등 구제 관련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사업
3. 위생해충 등 구제 및 조치를 위한 시설물 설치 사업
4. 위생해충 등 구제 용품 관리 및 점검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생해충 등 구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위생해충 등으로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병원 등 관련 기관,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 구청장은 위생해충 등 구제 관련 지원 사업을 일반 구민과 취약 계층 등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7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13.>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9. 쥐, 위생해충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驅除)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제51조(소독 의무)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독은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3. 4., 2023. 6. 13.>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방역기동반의 운영 및 소독의 기준 등)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할 보건소마다 방역기동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독은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13.>

인천광역시 검단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민의 건강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감염병관련 구청장 및 의료인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안 제3조)
- 나. 구민의 권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감염병 비상대책반 구성, 역학조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안 제8조)
- 다. 감염병 관리기관 지정,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안 제11조)
- 라. 감염병환자 관리,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손실보상,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 안 제2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교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민의 건강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염병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5.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6. 그 밖에 법에서 규정한 사업 및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③ 구청장은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 관내(이하 “구 관내”라 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구청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 및 예방·관리·역학조사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권리 등) ① 구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고, 구청장은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의료기관에서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구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구청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감염병 비상대책반 구성)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시행과 감염병 제반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감염병 비상대책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감염병 비상대책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 비상대책반」의 구성과 운영 및 지원 등의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역학조사) ① 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④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구성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예방접종 실시 등) ①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법 제24조제1항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업무를 영 제20조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 등을 진료하는 시설(이하 “감염병 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 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감염병 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 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 관리기관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 등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기간 동안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
2. 격리소와 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 및 운영
-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 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제12조(감염병환자 등의 입소 거부 금지) 감염병 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환자 등의 입소를 거부할 수 없다.

제13조(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 등은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염병 관리기관의 병상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 등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 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 또는 감염병 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2.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4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1. 제1급감염병

2. 제2급감염병 중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수막구균 감염증, 폴리오, 성홍열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증

3. 제3급감염증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증

4.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진찰·격리·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하거나 동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5조(감염병환자 등의 입원 통지) 구청장은 법 제41조에 따른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3.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제1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염병환자 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 가. 일시적 폐쇄

나.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다.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라.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

3.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4.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사용·접수
· 이동하거나 버리는 행위 또는 해당 물건의 세척을 금지하거나 태우거나
폐기처분하는 것

5.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
는 것

6. 일정한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을 막거나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하도
록 명하는 것

제18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손실보상) 구청장은 법 제37조에 따른 의료기관이 감염병 관리시설로
사용됨에 따라 손해를 입은 해당 의료기관의 경영자와 법 제49조제1항제13호
에 따른 소독이나 그 밖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건물의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제20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구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한 경우 구
민에게 즉시 홍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염병 발생 시 상황과 대응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구 홈페이지지

를 통하여 구민에게 신속하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2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13.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제7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①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2의2. 감염병 대비 의료·방역 물품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3의2. 「의료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 종별 감염병 위기 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감염병 정보의 관리 방안

5.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

6.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이나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4조(필수예방접종)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이하 “필수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디프테리아
2. 폴리오
3. 백일해
4. 홍역
5. 파상풍
6. 결핵
7. B형간염
8. 유행성이하선염
9. 풍진
10. 수두

11. 일본뇌염

12.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13. 폐렴구균

14. 인플루엔자

15. A형간염

16.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7.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18.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제37조(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

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및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이하 “감염병관리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치료,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에서의 치료(이하 “시설치료”라 한다) 또는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치료 중인 사람을 다른 감염병관리기관등이나 감염병관리기관등이 아닌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거나, 자가 또는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이송(이하 “전원등”이라 한다)하여 치료받게 할 수 있다.

④ 감염병환자등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따라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치료에 드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자가치료, 시설치료의 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전원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

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3. 버스·열차·선박·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3. 건강진단, 시체 검안 또는 해부를 실시하는 것

4.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수령을 금지하거나 그 음식물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5.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처분(殺處分)에 참여한 사람 또는 인수공통감염병에 드러난 사람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명하는 것

6. 감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이동을 제한·금지하거나 그 물건에 대하여 폐기, 소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7.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 수단, 사업장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의사를 배치하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8.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상수도·하수도·우물·쓰레기장·화장실의 신설·개조·변경·폐지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
 9. 쥐, 위생해충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驅除)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10. 일정한 장소에서의 어로(漁撈)·수영 또는 일정한 우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11. 감염병 매개의 중간 숙주가 되는 동물류의 포획 또는 생식을 금지하는 것
 12.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인·의료업자 및 그 밖에 필요한 의료관계요원을 동원하는 것
 - 12의2.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숙박시설 등 시설을 동원하는 것
 13.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14.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8호 및 제10호에 따라 식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그 사용금지기간 동안 별도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제2호·제6호·제8호·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그 사실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

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장소나 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관리자·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리자·운영자가 그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기정보 또는 방역지침의 변경으로 장소 또는 시설 폐쇄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의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쇄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⑦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역학조사의 내용)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인적 사항
2. 감염병환자등의 발병일 및 발병 장소
3. 감염병의 감염원인 및 감염경로
4.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관한 진료기록
5. 그 밖에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

② 법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인적 사항

2. 예방접종기관, 접종일시 및 접종내용
3.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진료기록
4. 예방접종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

제13조(역학조사의 시기) 법 제18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실시한다.

1.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 가. 둘 이상의 시·도에서 역학조사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
 - 나. 감염병 발생 및 유행 여부 또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 다. 시·도지사의 역학조사가 불충분하였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 가. 관할 지역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나. 관할 지역 밖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 감염병이 관할구역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 다. 관할 지역에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여 그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14조(역학조사의 방법) 법 제18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의 방법은 별표 1의3과 같다

제15조(역학조사반의 구성)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중앙역학조사반을 두고, 시·도에 시·도역학조

사반을 두며,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군·구역학조사반을 둔다.

② 중앙역학조사반은 30명 이상, 시·도역학조사반 및 시·군·구역학조사반은 각각 10명 이상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③ 역학조사반의 반장은 법 제60조에 따른 방역관 또는 법 제60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관으로 한다.

④ 역학조사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법 제60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관 또는 수습역학조사관
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채용된 공중보건 의사
4.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5. 그 밖에 감염병 등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서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역학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역학조사반은 감염병 분야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분야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분야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제16조(역학조사반의 임무 등) ① 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역학조사반

가.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

나. 역학조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의 개발

다. 시·도역학조사반 및 시·군·구역학조사반에 대한 교육·훈련

라. 감염병에 대한 역학적인 연구

마. 감염병의 발생·유행 사례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발생 사례 수집, 분석 및 제공

바. 시·도역학조사반에 대한 기술지도 및 평가

2. 시·도 역학조사반

가. 관할 지역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

나. 관할 지역 역학조사의 세부 실시 기준 및 방법의 개발

다. 중앙역학조사반에 관할 지역 역학조사 결과 보고

라. 관할 지역 감염병의 발생·유행 사례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발생 사례 수집, 분석 및 제공

마. 시·군·구역학조사반에 대한 기술지도 및 평가

3. 시·군·구 역학조사반

가. 관할 지역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나. 시·도역학조사반에 관할 지역 역학조사 결과 보고

다. 관할 지역 감염병의 발생·유행 사례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발생 사례 수집, 분석 및 제공

② 역학조사를 하는 역학조사반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역학조사반원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조사반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역학조사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2(자료제출 요구 대상기관·단체) 법 제18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1. 의료기관

2.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3.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16조3(지원 요청 등의 범위) 법 제18조의4제3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인력 파견 및 물자 지원, 역학조사 대상자 및 대상 기관에 대한 관리, 감염원 및 감염경로 조사를 위한 검사·정보 분석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에 대한 예방접종업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탁한 기관을 공고해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예방접종업무의 위탁범위에 관한 사항

2. 위탁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3. 위탁계약 조건에 관한 사항

4.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한 경우의 예방접종 비용 산정 및 비용 상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감염관리시설 등의 설치 기준 등) ① 법 제36조제3항 및 법 제39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1. 감염병관리시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3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감염병관리기관: 별표 4의2의 기준에 적합한 음압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할 것

나. 300개 미만의 병상을 갖춘 감염병관리기관: 외부와 격리된 진료실 또는 격리된 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할 것

2. 격리소·요양소: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 중 의원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거나 임시숙박시설 및 간이진료시설을 갖추는 것

3. 진료소: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 중 의원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거나 「지역보건법」 제13조에 따른 보건지소일 것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1. 감염병관리시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3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감염병관리기관: 별표 4의2의 기준에 적합한 음압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할 것

나. 300개 미만의 병상을 갖춘 감염병관리기관: 외부와 격리된 진료실 또는 격리된 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할 것

2. 격리소·요양소: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 중 의원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거나 임시숙박시설 및 간이진료시설을 갖추는 것

3. 진료소: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 중 의원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거나 「지역보건법」 제13조에 따른 보건지소일 것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
· 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인천광역시 검단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거주하는 방역취약계층 지원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역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신청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제4조)

나. 방문방역기동반 편성, 위탁, 장비 및 예산의 확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7조)

다.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거주하는 방역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문방역”이란 위생해충 구제 및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검단구 (이하 “검단구”라 한다)에 소재한 대상주택의 실내·외 방역을 말한다.
2. “방역취약계층”이란 사회·경제적 여건 등으로 소독 및 위생해충 구제에 취약한 검단구에 주소를 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세대 및 차상위계층

나. 국가유공자, 장애인(1~3급),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다.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및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려인 세대

3. “대상주택”이란 검단구에 소재한 주택 중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말한다.

제3조(방역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방역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대상주택에 대한 방문방역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방역취약계층의 세대주 및 세대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방문방역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방역 신청은 세대 당 연 2회로 한정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 지원 대상주택에 대한 방문방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방문방역기동반 편성) 구청장은 방문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방문방역기동반을 둔다.

제6조(위탁) 구청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그 업무를 소독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 비치 등) ① 구청장은 방문방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방문방역 접수처리대장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방역약품 관리대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6조에 따라 소독업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하여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 보건소장은 매년 1회 이상 방문방역 운영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방문방역 신청서(제4조 관련)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청 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주택형태	☐ 공동주택 ☐ 단독주택			
해당란에 표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국가유공자, 장애인 (1~3급),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 다문화가족 또는 고려인 세대				
방역희망일시	20 . . . (:)				

「인천광역시 검단구 방역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방문방역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조례 제4조에 따른 정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업무처리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정보의 확인 조화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방문방역 접수처리대장(제8조 관련)

○ 검단구 보건소

방문 방역자 :

(서명)

번호	신청일자	신청자 성명	연락처	주소 (상세하게 기재)	처리		방역확인 (신청자)
					예정일	완료일	
1							
2							
3							
4							
5							
6							
7							
8							
9							
10							

[별지 제3호서식]

방역약품 관리대장(제8조 관련)

○ 품명 :

일자	입 고	사 용	잔 량	약품사용 내역			확인자
				성명	주소	약품 사용내용	

인천광역시 검단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 스트레스, 과로 등으로 인한 질병과 노화로 호르몬의 변화 및 불균형으로 인해 일어나는 우울, 불면, 관절통 등 다양한 증상을 겪는 갱년기 증후군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관리 및 지원사업의 추진을 규정함.(안 제3조~안 제4조)

다. 협력체계 구축 등(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갱년기 증후군”이란 노화 또는 질병으로 인해 성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생기는 심리적·신체적 변화로 발생하는 여러 증상을 말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갱년기 증후군 지원 대상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갱년기 증후군 지원대상자는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갱년기 증후군 관련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2. 갱년기 증후군 관련 심리·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갱년기 증후군 관련 홍보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료기관, 관련 단체나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학업 간 체형 변화와 동시에 스마트폰의 사용 등으로 학생의 체형에 불균형이 증가하고 있어, 불균형 체형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을 통해 검단구 학생들의 균형잡힌 신체발달과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통해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불균형 체형 예방과 바른 체형 유지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함. (안 제3조 및 안 제4조)
- 나. 협력체계 구축 및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예방교육을 위한 사무의 위탁 등을 규정함. (안 제5조 ~ 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교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학생의 불균형 체형 관리를 위하여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함으로써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불균형 체형”이란 학생의 근골격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신체 형태의 불균형 상태(거북목, 굽은 등, 척추측만, 골반 이상, 다리형태 이상 등)를 말한다.
3.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체형 불균형 예방 활동과 체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과 바른 체형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 ① 구청장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노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그 사무의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한 음주청정지역 지정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음주청정구역의 지정 등 (안 제4조)

라. 교육 및 홍보 (안 제5조)

마.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등 (안 제6조)

바. 구민의 참여 등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제8조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일상화를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주청정지역"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대한 교육, 홍보를 포함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음주폐해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3.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4. 버스 정류소·택시 승강장 및 철도 역사 등 공공장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입구에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또는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등) ① 구청장은 관내에서 발행되는 신문·잡지 및 방송·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나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행사에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구민의 참여 등) ① 구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구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⑤ 삭제

⑥ 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

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의2, 제52조 및 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제외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
 가.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한다)

☐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어린이놀이기구”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6. 22.>

어린이놀이기구(제2조 관련)

어린이놀이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 설치된 경우 해당 놀이기구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2.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4.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5.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7.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유아 교육진흥원
8.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9.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10.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1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1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13.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14. 「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15.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해당 건축물 중 주택이 차지하는 세대 수가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에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을 하는 자가 야영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시설
17.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1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19.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20.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 ④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

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 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횡단보도, 기점(起點) 및 종점(終點)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민 영양관리 조례안

1. 제안이유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 나. 시행계획 수립 및 영양관리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 다. 영양·식생활 교육 및 조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안 제8조)
- 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민 영양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균형있는 식생활을 통한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개선 및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양관리 정책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민의 영양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영양관리 목표 및 추진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자원 규모 및 조달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에 대해서는 「국민영양관리법 시행

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6조(영양관리사업) 구청장은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유아, 아동, 청소년, 임산부,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 또는 성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
2. 지역사회에 특화된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사업
3. 영양상담 및 맞춤형 영양정보 제공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영양·식생활 교육)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8조(영양·식생활 조사)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의 영양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 조사
2. 식생활 행태 조사
3. 영양상태 조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양·식생활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관련기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국민영양관리법」

제2조(정의) ①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

②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국민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③ “영양관리사업”이란 국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상담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8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영양·식생활 교육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양·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양·식생활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사업

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제13조(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사회의 영양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조사
2. 식생활 행태 조사
3. 영양상태 조사
4. 그 밖에 영양문제에 필요한 조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8조에 따른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월 말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다음 해 3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내 인구의 급격한 변화 등 예측하지 못한 지역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3조)
- 나.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 걷기사업 추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인센티브 등의 사용 및 제한(안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단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사업”이란 구민의 걷기 실천 동기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구민이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참여자”란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 등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각종 걷기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인센티브”란 걷기 실천 및 걷기 활성화 참여도에 따라 제공하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화폐, 모바일상품권, 문화상품권, 전통시장 상품권, 할인권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육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걷기 좋은 길 발굴 및 지원자원 연계 방안
3. 구민 참여 방안 및 참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
4. 걷기 활성화를 위한 목표량 제시 및 인센티브 지급 기준 등
5. 그 밖에 걷기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걷기사업 추진 및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 구성의 권장
2. 홍보물 제작 및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
3.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4. 걷기 활동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5. 걷기 앱 개발·유지보수·보급 및 연계 활성화
6.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구청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1. 걷기 사업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사업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인센티브 등의 사용 및 제한) ① 참여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화폐, 모바일 상품권, 문화상품권, 전통시장 상품권, 할인권, 지류식상품권, 건강생활실천 관련 홍보물 등으로 교환

2.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 받은 인센티브를 사용할 수 없다.

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구청장이 정한 기간 내에 인센티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제7조(기록·관리) 구청장은 참여자 명부 및 걸음 수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1. 제안이유

2026. 7. 1. 검단구 출범으로 인한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연구역의 지정(제5조)

나.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표시 등(제6조~7조)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예산법무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궁극적으로는 구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 뿐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피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3조(범위)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구”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 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구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및 택시정류소(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지역)
4.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특화거리
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주유소
6. 의료기관, 지하철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지역
7. 「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8.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등. 단, 지정을 위한 세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9.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는 물론 장소와 범위에 대해서도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 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과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내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별도의 흡연구역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장소는 이를 지정할 수 없다.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 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10조(국민의 금연활동 참여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간접흡연 피해방지와 흡연 예방을 위해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모전 개최 결과에 따라 상금, 상패 또는 상장 등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 공모전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

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 ⑥ 생략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제34조(과태료 <개정 2016.12.2.>)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0.5.27., 2016.3.2., 2017.12.30., 2020.12.29.>

1.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
2.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

④·⑤ 생략

인천광역시 검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3조)
- 나. 회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안 제4조)
- 다. 협의회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안 제7조)
- 마.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교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검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기관
2.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및 실천
3. 그 밖에 구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회장은 회원 중에 호선한다.

③ 회원은 학계, 언론계, 체육계 또는 관련 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4조(회원의 임기 및 해촉) ① 당연직 회원이 아닌 위촉직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유관 기관 및 관련 단체 임원의 경우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회원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장의 직무 등) ① 협의회장은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회장은 협의회장을 보좌하며, 협의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협의회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소집)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회원 5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구청장이 요구할 때에 소집한다.

제7조(의결정족수) 협의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보고) 협의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건강증진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건강증진담당이 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인천광역시 검단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회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건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의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지역사회 전문가와 주민에게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건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권익 보호·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 나. 구성, 임기,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안 제5조)
- 다. 방문자문,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안 제7조)
- 라. 위원장의 직무 및 대행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안 제9조)
- 마. 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건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의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지역사회 전문가와 주민에게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건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건강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주민의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사업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건강증진사업 참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건강증진 사업의 발굴 및 건강한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건강증진 사업추진 기관 및 단체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내외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의 의원 1인을 포함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 의료 사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제4조(임기)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의 재임 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
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에 관계 없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할 때
2.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할 때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보직의 변경, 임기만료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
4.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방문 자문) 인천광역시 검단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특정 분야에 국한된 사항으로 전체회의가 불필요한 경우
2. 사업의 특성상 시급을 요하는 경우
3. 기타 위원장이 개별 방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
의는 연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및 대행)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주민건강 자문위원회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주민건강 자문위원회 업무 담당이 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인천광역시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 조례

제10조(시민건강 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시민건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1. 보건·의료 사업과 예산에 대한 사항
2. 건강관리에 관한 정책방향 및 정책의 통합·조정에 관한 사항
3. 건강증진 및 건강한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5.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시민건강생활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시민건강관리 등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천광역시 검단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의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센터를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마련(안 제4조)

나. 지역건강협의체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마련(안 제6조)

다. 지역건강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지역보건기관이다.
2.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고 한다.)”란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주민건강조직, 지역사회의 공공, 민간 부문 자원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 건강 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3.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2장 건강생활지원센터

제3조(명칭 및 위치 등)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설치하는 센터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완정건강생활지원센터,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건강생활지원센터, 인천광역시 검단구 아라건강생활지원센터라 한다.

② 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 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2. 지역 주민 및 지역사회 건강 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지역 주민의 건강생활 수준 및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4.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 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5. 지역사회의 주민건강조직, 지역건강협의체, 실무네트워크 구성 운영 및 지원

제5조(조직 및 인력) ① 센터에는 센터 운영을 위하여 최소 5인 이상의 상근 인력을 배치하며, 센터의 사업 규모, 사업내용에 따라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각 센터에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에 따른 보건의료인을 센터장으로 임용하며,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담당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각 센터에는 「지역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전문 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배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장 지역건강협의체

제6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를 파악하여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각 센터별로 지역건강협의체를 둔다.

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2.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주민건강조직 및 지역사회의 공공, 민간 부문 자원과의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참여를 통한 사업 추진의 효율성 및 다양성 제고
4.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구성) ① 협의체에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으로 한다.

② 의장은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 중에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부의장은 협의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보건소장
2. 건강생활지원센터 담당 부서장
3. 지역 건강 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4. 지역자원 협력 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 1명과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의장의 임무) ① 의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부득이한 경우 서면 회의로 대체 가능)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3조(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의체 운영 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시행할 수 있

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실무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① 지역건강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실행하고 점검하는 실무기구로서 실무네트워크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네트워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제3조제2항 관련)

명칭	위치	관할구역
인천광역시 검단구 완정건강생활지원센터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마로167번길 19 (당하동)	당하동, 마전동, 원당동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건강생활지원센터	인천광역시 검단구 완정로 214 (금곡동)	불로대곡동, 검단동, 오류왕길동
인천광역시 검단구 아라건강생활지원센터	인천광역시 검단구 이음2로 20 (당하동)	아라1동, 아라2동

[별표 2]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기준(제5조제3항 관련)

구분	의사 또는 한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체육지도자	영양사
건강생활지원센터	1	3	1	1

※ 비고

1. 의사 또는 한의사는 축탁 등 비상근으로 배치할 수 있다.
2.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규모, 사업 내용 등 여건에 따라 기준을 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관계 법령 발췌

☐ 지역보건법

제14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사항을 규정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명문화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구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기본계획의 수립,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5조)
- 라. 협력체계 구축,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8조)
- 마. 비밀의 유지,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의료를 말한다.
2. “웰다잉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3. “엔딩노트”란 자신의 가족관계, 병력, 장례절차, 재산관계, 남은 생애에 대한 자신의 의견 및 희망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공책을 말한다.
4. “호스피스의 날”이란 법 제6조에 따른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을 말한다.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문서를 말한다.
6.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란 법 제11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호스

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구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의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2.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
3.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 방안
4.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추진 등) ① 구청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령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현황 조사에 관한 사업
2. 유언장, 엔딩노트 작성 등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
3.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홍보 사업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5.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
6.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원) ① 구청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등록기관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홍보, 교육, 상담 및 주민 접근성 향상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탁)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2026. 7. 1. 검단구 출범으로 인한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제2조)
- 나. 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제4조)
- 다.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제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

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 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활동계획 수립)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금연지도원 현황 및 활동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금연지도원 신청서

신청인	성명 (한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인천광역시 검단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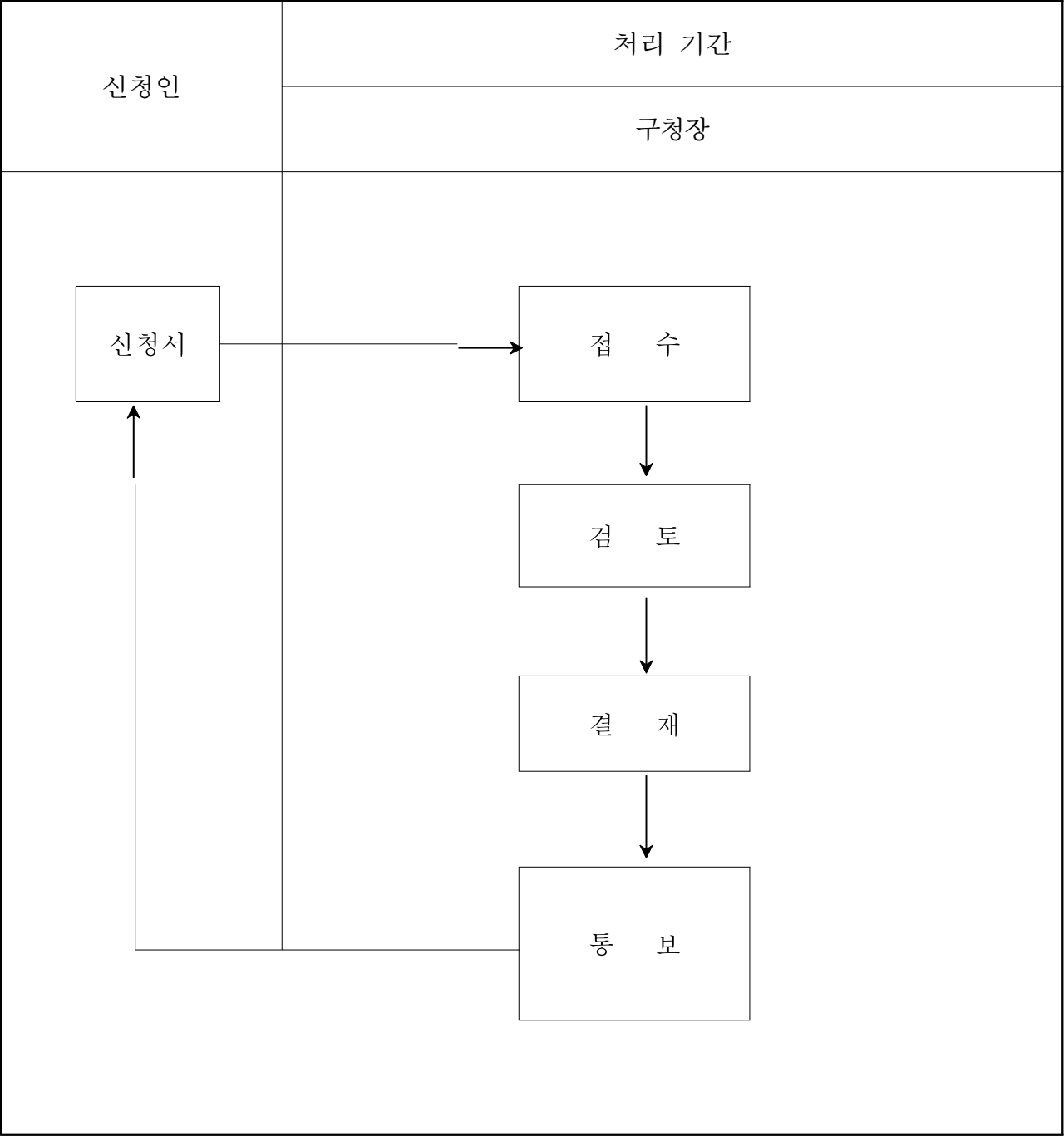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첨부물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별지 제2호서식]

금연지도원 추천서

신청인	성명 (한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사람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제 20 - 호

위 축 장

소속:

성명: (한자)

생년월일:

위축기간:

위 사람을 「인천광역시 검단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제 호

금연지도원증

사 진

3cm×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
내에 촬영한 것)

성 명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60mm×90mm

(색상 : 연파랑)

(뒤쪽)

소 속:

성 명:

생년월일(성별): ()

위 사람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금연
지도원 운영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법에서 정하는 감시·계도 등의 업무를 할 때에는 이 증명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전화번호 : 000-000-0000

주) 지질은 보존용지(1종) 120g/m² or 플라스틱

[별지 제6호서식]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

신청인	성명 (한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재발급 신청사유

위 본인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2조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첨부물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10mm×297mm[백상지 80g/m²]

[별지 제7호서식]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금연 지도원	① 소속(단체명)		② 성명	
	③ 생년월일		④ 전화번호	
	⑤ 주소			
⑥ 출입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⑦ 출입 장소				
⑧ 직무수행범위				
「인천광역시 검단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관계 법령 발췌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금연지도원)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4. 그 밖에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연지도원은 제2항의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려면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금연지도원이 제2항에 따른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때에는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금연지도원은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

는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금연지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
 3. 그 밖에 개인사정,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 ⑧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 및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금연지도원의 자격 등)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3. 17.>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건강·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② 법 제9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 11. 30.>

1. 지역사회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업무
2.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 업무

③ 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는 별표 1의4와 같다.

<개정 2016. 6. 21.>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에 대하여 금연 관련 법령, 금연의 필요성, 금연지도원의 자세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금연지도원에 대한 합동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7. 28.]

[제16조의4에서 이동 <2016. 6. 21.>]

인천광역시 검단구 정신질환자 치료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제1조)

나. 조례 관련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제2조~제3조)

다.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등 구체화(제4조~제6조)

라.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에 대한 준수사항(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정신질환자 치료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2. “응급입원 치료비”란 법 제50조에 따라 자·타해 위험이 큰 인천광역시 검단구 정신질환자(이하 “정신질환자”라 한다)에 대하여 일반 입원절차를 따를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의사·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3일 이내로 입원하는 응급입원 조치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3. “행정입원 치료비”란 법 제44조에 따라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정신질환자의 최적기 치료지원을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진단을 받아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입원시키는 행정입원 조치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4.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란 발병 후 5년 이내의 초기 조현병 등을 진단 받은 정신질환자에게 제공하는 조기집중 치료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5. “외래치료비”란 법 제64조에 따라 정신질환자가 치료중단으로 인한 재발과 재입원을 예방하기 위해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외래상담, 진료 및 약물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정신질환자가 정신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의 자립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월별 한도액, 신청방법 등 정신질환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정신질환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정신질환이 의심되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인정하는 자
2. 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검단구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자
3. 응급입원이 필요한 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질환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지원범위) ①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입원 치료비
2. 행정입원 치료비
3.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4. 외래치료비
5.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정신응급 대상자에 대한 치료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 및 기간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방법) 제5조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정신질환자는 구청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치료비를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른 보호의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준수사항)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지속적인 치료
2.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보건전문요원과 월 1회 이상 상담
3.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프로그램 참여
4.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등에 입퇴원 할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보건전문요원과 사전 상담

제8조(지원중단)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제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진출한 경우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3. 4., 2024. 1. 2.>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제79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비의 경감·보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0조(비용의 부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4조 및 제50조에 따른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21. 6. 8.>

-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안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다. 예방계획의 수립 및 사업시행(안 제4조, 안 제5조)
- 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마. 홍보에 관한 내용을 규정(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청소년 보호법」 제5조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및 위험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구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교육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일반 구민과 오남용 취약계층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7. 4. 18.>

1.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재원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이하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하여 마약류 중독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연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치료감호대상자에 관한 경우로 한정한다)가 종료된 사람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0. 22.>

⑤ 국민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2.>

[전문개정 2023. 8. 16.]

[시행일: 2025. 2. 7.] 제2조의2

제2조의6(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청소년보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자·통신기술 및 의약품 등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 매체물과 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국가 간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환경 감시·고발 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민간의 건의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규제할 때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환각물질)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7. 8. 1.>

1.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2. 제1호의 물질이 들어 있는 시너(도료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기용제를 말한다), 접착제, 풍선류 또는 도료
3. 부탄가스
4. 아산화질소(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주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8.>

1. “주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주정(酒精)[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용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용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한다]

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용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식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담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6. 9.>

1.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2. “저발화성담배”란 담배에 불을 붙인 후 피우지 아니하고 일정시간 이상 내

버려둘 경우 저절로 불이 꺼지는 기능을 가진 담배로서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담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4. 1. 21.]

인천광역시 검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등(제1조~제2조)

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명칭 및 업무(제3조~제4조)

다. 운영의 위탁(제5조)

라. 수탁자의 선정 및 의무(제6조~제8조)

마. 시설의 운영 및 지도 감독, 운영지원(제9조~제11조)

바. 운영의 취소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검단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2.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②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치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관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업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신건강증진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및 조사연구
2. 정신질환자 발견·등록 및 의뢰
3.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극복에 관한 업무
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사업

5. 지역 내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자문
6. 정신질환자 가족교육 및 모임지원
7. 정신질환 예방·정신건강증진·편견 해소 홍보 사업
8. 그 밖에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5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운영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한 후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선정기준)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사업실적
3. 재정 부담능력
4. 책임능력·공신력

제7조(수탁자 선정) ①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다.

제8조(수탁자의 준수사항)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2. 수탁자는 운영비와 수탁자산을 제4조에 따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음
3.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위탁협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
4.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예산·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매년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
5.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음
6.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에 모든 시설물과 그 밖의 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 배상

제9조(시설의 운영)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 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절차, 기준, 지도, 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시달된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의 운영규정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운영과 관련하

여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 업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장부 및 서류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한다.

②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지도 및 점검결과 위탁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 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하게 위배되어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가 구입한 비품·장비는 제외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3. 4., 2024. 1. 2.>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제38조의3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라 한다)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 나. 제15조제6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1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등)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한다.

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운영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계획

인천광역시 검단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치매예방 및 관리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구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위탁운영 및 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1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검단구 치매센터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2. “치매센터”란 치매예방과 치매퇴치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지원·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치매주·야간보호를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치매센터”(이하 “치매센터”라 한다)로 한다.

- ② 치매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되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검단구”라 한다) 관내에 설치한다.

제4조(업무) 치매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2. 치매환자 조사 및 등록관리에 관한 업무
3.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4. 치매조기검진
5. 치매환자 및 가족 방문·관리

6. 치매 주간보호서비스 및 의료서비스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매관리에 관한 업무

제5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치매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사회 전문 의료기관·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위탁연장의 횟수는 두 차례에 한한다.

제6조(수탁자의 선정기준) 구청장은 치매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실적 등
3. 재정적 부담능력
4. 책임능력 및 공신력

제7조(수탁자 선정) ① 제5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응모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치매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치매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치매센터 운영
· 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2. 운영비와 수탁자산을 제4조에서 규정한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불가
3. 관계법령 및 위탁협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 이행
4. 치매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예산·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매년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
5. 치매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노인을 우선으로 하여 모든 시설 및 사업을 관리·운영
6. 위탁운영기간 중에 모든 시설물과 그 밖의 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 배상

제9조(시설의 운영) ① 구청장은 치매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 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절차, 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시달할 수 있다.

-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시달된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의 운영 규정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 업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장부 및 서류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한다.

②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지도 및 점검결과 위탁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제9조의 지도·감독관련 시정명령 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수탁자가 제6조의 선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4.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가 구입한 비품·장비는 그렇지 않다.

제13조(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검단구 물품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치매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8.>

④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업무 종사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치매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치매극복의 날) ①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극복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치매검진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사업(이하 “치매검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치매검진사업의 범위, 대상자, 검진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치매의 검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는 치매검진을 받는 사람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 28.]

제12조의3(성년후견제 이용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매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

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치매환자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3.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침해의 위험이 상당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 후보자로 하여 그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함께 청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의뢰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의 후견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후견제 이용지원의 요건, 후견인 후보자의 자격 및 추천 절차, 후견인 후견사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9. 19.]

제12조의4(경도인지장애진단자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치매로의 진행을 억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개발·보급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 2.]

제1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①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4. 30., 2020. 12. 29.>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6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

6의3.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

6의4.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가족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또는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신청의 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안내할 수 있다. <신설 2019. 4. 30.>

④ 치매안심센터의 시설·인력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한다. <개정 2019. 4. 30.>

[전문개정 2018. 6. 12.]

제18조(비용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2018. 6. 12.>

1. 제10조에 따른 치매연구사업,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제13조에 따른 치매등록통계사업 및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 수행에 드는 비용

1의2.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7조에 따른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

1의3. 제17조의2에 따른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에 드는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

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기준·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기본이념(안 제1조, 안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권리와 의무 등(안 제3조, 안 제4조)
- 다. 예방계획의 수립 및 사업시행(안 제4조~안 제8조)
- 라. 민간단체 지원 및 비밀준수의 의무관한 사항(안 제9조, 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자살에 대한 인천광역시 검단구 차원의 책무와 예방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하며, 자살을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만이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살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의 마련과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수립한 자살예방시행계획을 기초로 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구”라 한다)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조성
2.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3.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① 구청장은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자살예방 및 심리상담 등 사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자살예방과 생명존중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 예방에 관한 구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관내 기관·단체 및 사업주 등은 자살 예방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주민이 자살예방 교육과 상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 되도록 본인과 그 가족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민간단체 지원 등) 구청장은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8., 2019. 1. 15.>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제10조의2에 따른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1. 제안이유

2026. 7. 1. 검단구 출범으로 인한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과 정의 (안 제1조~2조)
- 나. 구청장과 사업자의 책무 (안 제3조~제4조)
- 다. 친환경 현수막 우선 사용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라. 재정 지원 사항 (안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2. 친환경 소재의 종류와 사용 효과 및 재활용에 대한 조사

3.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

4.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법 제5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인천광역시
검단구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과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을 권고하고 촉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제6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제7조(포상 등) 구청장은 친환경 소재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게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계획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유지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과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과의 연계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환경계획과 국토계획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7. 현수막: 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주, 게시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의견제출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 소	
3. 의견		
4. 기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6-440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치법규 일괄 정비 78개 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치법규 규칙을 일괄 정비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2. 2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치법규 78개 규칙을 일괄정비하여 자치입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개정 규칙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별도 첨부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3월 16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검단예산재정과, 전화 560-0963, 팩스 560-28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칙(안) 각 1부.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체감사 규칙안

1. 제안이유

2026. 7. 1. 검단구 출범으로 인한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사대상기관(제3조)

나. 감사의 종류 및 감사주기(제5조)

다. 감사계획의 수립·통보(제7조)

라. 자료제출 요청 등(제10조)

마. 감사결과의 보고 및 처분지시(제12조~제13조)

바. 감사결과의 공개 및 공개기한(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체감사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3조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다른 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감사대상기관) 감사대상기관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소속기관 및 의회사무국,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단, 단체, 법인, 조합, 투자기관 및 구비를 보조받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 한다.

제4조(감사관과 감사담당자) ①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구에 감사관과 감사담당자를 둔다.

② 감사관은 감사부서의 장이 되며, 감사담당자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부서의 장 이외에 따로 감사관을 둘 수 있다.

③ 감사관 및 감사담당자는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별표 제1호 서식에 의한 증표를 소지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감사의 종류 및 감사주기)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일상감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한다.

2. 종합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감사대상사무 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3.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 특정분야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한다.

4. 재무감사는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하여 실시한다.

5. 성과감사는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하여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해 수시로 실시한다.

6. 복무감사는 소속 공무원의 복무의무 위반행위 등을 확인·점검하거나 또는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위하여 실시하며 비노출로 실시한다.

② 종합감사는 2년에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따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실시한다.

④ 복무감사는 구청장의 명령 또는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제6조(감사의 범위) 자체감사의 범위는 그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선택하여 시행하며,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1. 행정시책의 주민생활에 대한 적응성 및 침투상황

2. 행정시책과 그 집행의 효율도

3. 운영계획과 그 집행과의 부합도

4. 공무원의 기강에 관한 사항

5. 법령, 조례·규칙·훈령·고시 및 예규에 관한 사항

6. 지방의회의 의결 및 건의에 대한 조치사항

7. 예산편성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8. 세입의 징수결정 및 수입금 출납에 관한 사항

9. 세출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10.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보관·집행상황

11. 재산과 물품수급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2. 각종 공사집행 및 물품구매 관리에 관한 사항

13. 구세 및 세외수입 과정에 관한 사항

14. 사무관리 개선 및 문서장부에 관한 사항

15. 구 본청과 동·사업소 또는 실·국 상호간 및 관계기관과의 연락협조, 그 밖에 산하기관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6. 사무분담 및 집행방법에 관한 사항

17. 민원서류 처리사항

18. 전회(前回) 감사 지시사항의 개선 조치사항

19. 그 밖의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감사계획의 수립·통보) ①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매년 1월31일까지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기관 및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따로 수립하여 감사개시일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는 때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반 편성) ① 감사반은 감사부서 소속 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감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 소속 공무원이 아닌 감사관이 지명하는 공무원을 감사반에 추가로 편성할 수 있으며 공인 회계사, 건축사, 의사 등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감사에 참여시키거나 협조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9조(감사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현지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게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실시한다.

제10조(자료제출 요청 등)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 등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공무원의 출석, 답변요구

2. 관계서류, 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5. 그 밖의 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는 감사대상기관 및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감사담당자는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 외의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관계공무원과 직원의 출석,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확인서 등 징구)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밝히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답서를 작성한다.

③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질문서를 발급하고 답변서를 받는다.

제12조(감사결과 등의 보고) ① 감사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종료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2. 감사대상기관
3. 감사반 편성 및 감사실시 기간
4. 중점 감사사항
5. 감사대상기관 주요현황 및 감사평가
6. 범죄사실로 인정되는 사항
7. 징계 및 그 밖의 문책자 조서
8. 지적사항 및 처분을 요하는 사항
9. 건의·시정 또는 주의·개선을 요하는 사항
10. 모범이 되는 우수사례 및 그 밖의 특기사항

② 복무감사는 15일 이내에 각각 문서로 지시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감사결과의 처분지시) 감사관은 감사의 결과지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감사결과 보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각각 문서로 지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처분요구에 대한 조치 및 결과보고) 감사대상기관장 등은 감사처분 지시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처분지시대로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범죄 및 망실 훼손 등의 보고) ① 구 산하기관의 장과 구청 각 실·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부서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 직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 사실이 발견된 때
2. 현금·물품·유가증권 및 기타의 재산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및 범위는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감사결과의 공개 및 공개기한) ① 종합감사 등의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감사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감사결과 공개기한은 공개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17조(감사관의 유의사항) ① 감사관은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는 객관성 있는 판단과 사실에 근거하여 위법 부당한 행위의 시정 및 행정능률 향상에 중점 두어야 한다.

③ 감사관은 감사 중에 발견한 긴급·중대한 사실은 즉시 권한 있는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관은 감사 시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을 준용한다.

제19조(운영세칙) 일상감사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면)

NO.	
소 속	
성 명	
생 년 월 일	
감 사	
위 사람은 인천광역시검단구 감사관임을 증명합니다.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청 장 인	

9.3cm

6.8cm

(뒷 면)

주 의
1. 이 증명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감사부서 근무 공무원에 한하여 휴대합니다.
2. 이 증명은 전출 시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3. 이 증명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 발췌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7조(감사기준 등) 감사원은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가 자체감사활동을 할 때에 일반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감사기준 및 감사활동수칙을 협의회회의 협의·조정을 거쳐 감사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감사원규칙]

제33조(세부사항 등) ① 감사원장은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규칙 및 제1항에 따라 감사원이 정한 세부사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자등이 자체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이 규칙의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감사원에 의견을 구할 수 있고, 감사원은 이에 대하여 해석·답변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에 관한 사항(제1조~제2조)

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제3조~제4조)

다.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대상 업무 지정 및 신고 조치
(제5조~제6조)

라.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관리 및 직무관련자의 거래 신고·조치에 관한 사항(제7조~제8조)

마. 가족채용 제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에 관한 사항
(제9조~제10조)

바. 퇴직자 접촉 및 위반행위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사항(제11조~제17조)

사. 이해충돌 방지 교육 및 상담, 자문기구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제19조~제20조)

아. 징계 처분 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징계양정 기준 참작에 관한 사항
(제2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5조 및 영 제31조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을 인천광역시 검단구 소속 공직자(이하 “공직자”라 한다)의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한다.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아목 및 영 제3조제3항에 따라 검단구청장이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년 이내 퇴직 예정인 공직자의 퇴직 후 고용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2. 검단구청 및 그 소속기관 퇴직공직자(임직원)로서 퇴직 전 5년 이내에 영 제3조제2항에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① 공직자가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로부터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당 공직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의견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이 공직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가 구청장인 경우, 부구청장(부기관장이 없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 법 제7조에 따른 조치의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통보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는 신고·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 대해 해당 직무수행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확인·점검해야 한다.

⑥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위한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⑦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제4조 및 제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6조(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업무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득 및 개발 업무 중 구가 사업의 제안자, 지정권자, 승인권자, 사업시행자 등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를 별표1과 같이 지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이 주민 공고·공람, 지구 지정 등의 절차에 따라 대외 공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사업 관련 정보를 소속 공직자에게 분기별로 공지해야 한다.

1. 사업명

2. 사업 지구의 지번 (지도 등을 이용해 위치를 표시)

3. 사업 시행 일정 (사업 절차별 일정을 표시)

제7조(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및 조치) ① 공직자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보유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또는 매매계약 체결일 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8조(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관리) ① 고위공직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을 작

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민간부문 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구청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 받은 내역을 고위공직자의 겸직신고 사항, 선거공보, 기타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을 알 수 있는 자료와 비교하여 누락된 사항이 있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해당 고위공직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구청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① 공직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절차에 관하여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0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① 검단구 소속 공직자는 법 제10조 제2호, 제4호, 제5호 단서에 따라 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 신청을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통보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가 구청장인 경우, 부구청장장(부기관장이 없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한다.

제11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구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부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① 구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사항, 겸직신고 사항, 기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제13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① 검단구 소속 공직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소속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은 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의 사용에 대해 법령·기준으로 정하여 관리한다.

제14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① 검단구 소속 공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하되, 다른 법률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검단구 소속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공직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5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신고·신청의 기록·관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회피·기피·조치·점검·통보·고발·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17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소속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에게 위반사실을 즉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계속 불이행할 경우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부당이득의 환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가 법 제5조의 신고 및 회피 의무 또는 법 제6조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가 법 제13조의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부당이득의 몰수, 환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제19조(위반행위 신고) ① 공직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 별지 제16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공직자가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6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구청장 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21조(이첩·송부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7호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22조(종결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 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첩·송부 받은 신고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8호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23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 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9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제24조(교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25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공직자는 이 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상담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제26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장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구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구성원은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자문기구 구성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하고, 중임을 할 수 있되 연임은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⑤ 자문기구의 회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소집하고, 소집이 예정된 회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자문기구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⑥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제27조(징계양정 기준) 구청장이 법 제26조 및 영 제35조에 따라 법의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이 규칙 별표2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해야 한다.

제28조(과태료) 구청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업무(제6조 관련)

연 번	부동산 개발업무	근거 법률	조항	공공기관의 역할
1	개발제한 구역 해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제4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제8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2	관광지 조성사업	「관광진흥법」	제52조	관광지의 지정
			제54조	관광지조성계획의 수립 관광지조성계획의 승인
3	도시·군관리계 획의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제29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88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4	마을정비구역 에서의 농어촌 정비사업	「농어촌정비법」	제101조	농어촌마을정비계획의 수립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제103조	마을정비구역 지정의 제안
5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	제3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17조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
6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제9조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연 번	부동산 개발업무	근거 법률	조항	공공기관의 역할
			제15조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
7	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조	정비구역의 지정
			제9조	정비계획의 입안
			제50조	사업시행계획 인가
			제52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101조의 3	정비구역 지정권자의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입안권자의 정비구역 지정 신청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정비계획 수립 제안
8	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 지구조성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5조	문화산업단지의 조성 신청
				문화산업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문화산업단지 조성계획의 시행
			제28조의 2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빈집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인가
			제13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29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인가
			제3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10	시장정비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대한 추천 신청
			제35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신청
			제37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11	주택건설사업	「주택법」	제15조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

[별표2]

법 위반행위 관련 징계양정기준(제21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 가 심하고 중 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 가 약하고 경 과실인 경우	참고 기준
법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5조에 따른 신고신청제출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호 하목
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제한금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호 하목
법 제14조에 따른 직 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호 파목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호 파목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호 하목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호 하목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의 비밀 보장 의무 위반 · 같은 법 제21조제 2항에 따라 확정된 보호조치결정 미이행 · 같은 법 제20조의2의 특별보호조치 결정 미이행 · 같은 법 제19조제2항 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등 거부행위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법 제23조에 해당하는 비밀 누설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 어두운 난()은 신고·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신청인	성명	성별
	소속	직위(직급)
	① 담당 업무	
직무관련자 (사적이해관계자)	성명	소속
		[] 개인 [] 법인 [] 단체 [] 공직자
	연락처	② 사적이해관계
	③ 관련 직무	
	④ 직무관련자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뒷 쪽)

작성방법

- ① “담당 업무”는 공직자가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주요 내용을 적습니다.
- ② “사적이해관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른 이해관계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 마.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퇴직한 공직자가 법령(조례·규칙을 포함)·기준(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규정·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에 따라 지휘·감독하였던 실·국·과(이에 준하는 부서를 포함)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2항)
- 아.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① 법령·기준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②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를 제외)를 한 공직자의 거래 상대방(「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 ③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훈령 등 행정규칙이나 기준으로 정하는 자(「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3항)
- ③ “관련 직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신고·신청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 ④ “직무관련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 [별지 제2호 서식]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청인	성명	성별
	주소	연락처
업무 담당 공직자	소속	직위(직급)
	① 관련 직무	
	신청인의 업무 담당 공직자와 관계	
기피 신청사유	[] 업무 담당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있음	
	[]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 기타()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인천검단구청장 귀중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뒷 쪽)

작성방법

- ① “관련 직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공직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 ② “직무관련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 [별지 제3호 서식]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

성명	
소속	
직위(직급)	
관련 직무	
의견	

본인은 수행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checkmark$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통보일			
신고·신청인		성명		신고·신청일			
조치대상		[] 신고·신청인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업무 담당 공직자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관련 직무					
조치결과		[] 신고·신청한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 해당 직무 계속 수행					
		[]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직무 재배정 [] 전보 [] 기타()					
		[] 해당직무 계속 수행 (사유: [] 해당 공직자 대체불가 [] 공익 증진을 위한 직무수행 필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점검자 소속() 직위(직급)() 성명()					
기타 참고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이
한
도

인처검단구청장

(서명 또는 인)

(뒷 쪽)

작성방법

- ① “관련 직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공직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5호 서식]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등에 대한 공정한 직무수행 확인·점검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① 신고· 신청인 등	성명	소속	직위(직급)
신고 유형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확인·점검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② 확인·점검 내용			
③ 확인·점검 결과	[] 특이사항 없음 [] 특이사항 있음 후속 조치 내용 :		

년 월 일

확인·점검자 (서명 또는 인)

(뒷 쪽)

작성방법

- ① “신고·신청인 등”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한 공직자,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를 한 공직자를 적습니다.
- ② “확인·점검 내용”은 신고·신청인 등이 해당 직무를 계속 수행하지 않고 다른 공직자가 해당 직무를 대신 수행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도 해당 직무가 동일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것인지에 대해 확인·점검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예1) 신고·신청인 등의 직무가 ○○건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인 경우, 신고·신청인 등이 아닌 다른 공직자가 해당 직무를 대신 수행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도 나라장터를 이용해 견적서를 제출받고, 최저 입찰자를 선정하였을 것임을 확인·점검
- 예2) 신고·신청인 등의 직무가 ○○계약직을 채용하는 경우, 신고·신청인 등이 아닌 다른 공직자가 해당 직무를 대신 수행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도 기관 홈페이지에 채용 사항을 공고하고, 기관 규칙에서 정한 평정기준 및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라 채용후보자를 선발하였을 것임을 확인·점검
- 예3) 신고·신청인 등의 직무가 ○○허가를 처리하는 직무인 경우, 신고·신청인 등이 아닌 다른 공직자가 해당 직무를 대신 수행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도 법령·기준에서 정한 허가 요건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동일하게 하였을 것임을 확인·점검
- ③ “확인·점검 결과”는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 경우 ‘특이사항 없음’에 체크하고, 직무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경우 ‘특이사항 있음’에 체크합니다. ‘특이사항 있음’에 체크한 경우, 후속 조치 내용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 예1) 신고·신청인 등이 수행한 ○○직무에 대해 추가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자 함(○○월 예정)
- 예2) 신고·신청인 등의 ○○직무 수행에 대해 주의·경고 조치함(○○월 ○○일)
- 예3) 신고·신청인 등의 ○○직무 수행에 대해 ○○ 관련 위법 사항이 발견되어 신고·신청인 등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함(○○월 ○○일)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 [별지 제6호 서식]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 신청서

•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담당 업무	
직무관련자	성명	소속
	연락처	
	② 관련 직무	
	③ 직무관련자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신청하는 조치 유형	[] 직무 대리자 지정 []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직무 재배정 [] 전보 [] 기타()	
신청 사유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뒷 쪽)

작성방법

- ① “담당업무”는 공직자가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주요 내용을 적습니다.
- ② “관련 직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신고·신청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 ③ “직무관련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 [별지 제7호 서식]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서

•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및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소속 공공기관에서의 담당 업무				
부동산 [] 보유자 [] 매수자	성명	신고인과의 관계 [] 본인 []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 [] 배우자 []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			
	주소				
① 보유·매수한 부동산 관련 소속기관의 업무(사업명)					
부동산	유형 [] 토지 (□ 소유권 □ 지상권 □ 전세권 □ 분양권) [] 건물 (□ 소유권 □ 전세(임차)권 □ 분양권)			취득(예정)일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사실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① “보유·매수한 부동산 관련 소속기관의 업무(사업명)”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에 따라 신고인이 소속된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관련 업무(사업명)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 [별지 제8호 서식]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

제출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임용일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근무기간	명칭(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대리, 고문·자문 등

활동기간	기관명(소재지)	주요 업무내용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등

근무기간	업체명(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기타

근무기간	근무처(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에 따라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천검단구청장 귀중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없음 확인서

제출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임용일(임기 개시일)

본인은 위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내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천검단구청장 귀중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서

•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거래자	성명	신고인과의 관계	
	연락처	[] 본인 [] 본인의 직계존속·비속 [] 배우자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 ① 특수관계사업자	
거래상대방	성명	소속	연락처
	[] 개인 [] 법인		
	[] 단체 [] 공직자		
	② 직무관련자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			
거래내용	[] 금전 차용 [] 금전 대부 [] 유가증권 거래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거래금액(이율)		거래원인
	[] 부동산(토지 또는 건축물 등) 거래 [] 기타 재산상 거래		
	계약체결일		거래대상
	거래금액		거래원인
	[] 물품 계약 [] 용역 계약 [] 공사 계약 [] 기타 계약		
	계약체결일		계약사항
	거래금액		거래원인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3471

(뒷 쪽)

작성방법

- ① “특수관계사업자”는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 ② “직무관련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을 “②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요청인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② 외부활동 유형		☐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된 경우는 제외) ☐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외부활동 내용		③ 외부활동 주제			
		④ 외부활동 방법			
		⑤ 외부활동 일시 20 ~ 20		⑥ 일괄신고 월 평균 횟수 : 회 연간 총 횟수 : 회	
		⑦ 사례금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신청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뒷 쪽)

작성방법

※ 본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신청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① “요청인”은 1)공직자에게 지식이나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대가를 지급한 주체 2)공직자가 대리하는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3)공직자가 취임하려고 하는 직위가 속한 기관을 말합니다.
- ② “외부활동 유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외부활동으로서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법 제10조제2호, 제4호, 제5호 중 유형에 체크 표시 합니다.
- ③ “외부활동 주체”는 공직자가 ①에서 선택한 외부활동 유형과 관련한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예) 1) ○○언론사 요청으로 ○○○정책 효과에 대한 자문
2) ○○법인을 대리해 ○○에 관한 소송 수행
3) ○○단체의 단체장으로 취임
- ④ “외부활동 방법”은 공직자가 ③에서 작성한 활동을 수행하는 구체적 방법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예) 1) 서면 자문, 유선 자문 등
2) 관련 자료 제공, 재판 출석 등
3) 단체장으로서의 제반 활동 수행
- ⑤ “외부활동 일시”는 공직자가 ③에서 작성한 활동을 수행하는 일시를 적습니다.
(예) 1) 자문 기간
2) 대리 기간
3) 취임 기간
- ⑥ “일괄신고”는 공직자가 ③에서 작성한 활동을 연간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예) ○○법인에 월 평균 2회씩 1년간 ○○기술 관련 자문을 하는 경우, 연간 총 24회, 월 평균 2회로 작성
- ⑦ “사례금”은 공직자가 ③에서 작성한 활동을 수행하고 지급받은 대가를 작성합니다. 이 때,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속에 별도 기재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2호 서식]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통보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통보일	
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외부활동 유형	[]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된 경우는 제외)				
	[]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② 결과	[] 허가				
	[] 불허가 * 허가하지 않는 사유 :				
기타 참고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0조에 따라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신청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인천검단구청장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① “외부활동 유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외부활동으로서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법 제10조제2호, 제4호, 제5호 중 유형에 체크 표시 합니다.
- ③ “결과”는 허가 또는 불허가를 선택하여 표시하고, 불허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간략하게 적습니다.
(예) 공직자가 신청한 외부활동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것이라 판단됨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채용기관	기관명	채용방법	채용직위(직급)
	채용사유		
채용대상자 (확인인)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정일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① 가족채용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예외 해당 여부	①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예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① “가족채용”의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공사 [] 용역 [] 물품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개인 [] 법인 [] 단체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⑦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⑧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인천검단구청장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서

•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직무관련자 (퇴직자)	성명	연락처	
	현 소속 기관	퇴직 전 소속 기관	
	① 직무관련자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②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		
	일시	사유	
	접촉 사항	유형	비용부담자
	[] 골프 [] 여행 [] 사행성 오락	[] 신고인 [] 퇴직공무원 [] 기타()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① “직무관련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②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을 “①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

•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	연락처
	주인등록번호	
	직업	주소
	신고내용 확인·조사 과정에서 신고인의 신분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 여부 [] 동의 [] 비동의	
법 위반행위자 (피신고자)	[] 개인	
	성명	연락처
	직업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성명	연락처
	직업	
	명칭(법인 또는 단체)	소재지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성명	연락처
	직업	
	명칭(법인·단체 또는 개인)	대표자 성명
	소재지	
위반행위 신고	신고경위 및 이유	
	일시	내용
	장소	
증거자료		

위와 같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인천검단구청장 귀중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신고기관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감독기관 [] 수사기관 [] 감사원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회 신고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분공개 동의 여부 [] 동의 [] 비동의
	이첩·송부 일자	이첩·송부 내용	
위반행위 신고사항	피신고자 성명	피신고자 소속기관	피신고자 연락처
	신고내용		
조사기관 및 조사 결과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관할 법원에 통보 (관할법원:)		
	[] 징계대상으로 징계절차의 진행		
	[] 감사원 또는 감독기관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소속기관에 통보		
[] 수사기관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절차 진행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소속기관에 통보			
조사 결과의 처리이유			
기타 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조사기관

인천검단구청장

(서명 또는 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종결처리 통보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신고인	신고기관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감독기관 [] 수사기관 [] 감사원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회 신고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분공개 동의 여부 [] 동의 [] 비동의
	이첩·송부 일자	이첩·송부 내용
위반행위 신고사항	피신고자 성명	피신고자 소속기관
	피신고자 연락처	신고내용
종결처리	조사기관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감독기관 [] 수사기관 [] 감사원 종결사유 []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신고자가 신고내용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신고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고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종결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조사기관

인천검단구청장

(서명 또는 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고인 (이의신청인)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위반행위자 (피신고인)	성명	직업(소속기관)	연락처
신고사항	일시	장소	
	신고내용		
통보받은 조치사항	통보기관		통보일
	조치내용		
이의신청 경위 및 이유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치사항의 이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상담기록부

상담일시		상담방법	[] 전자우편 [] 전화 [] 방문 [] 기타()
상담신청인	성명	연락처	
	직위(직급)	소속	
상담유형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 직무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가족 채용 제한 [] 고위공직자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기타()		
상담내용			
상담결과			

년 월 일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서명 또는 인)

관계 법령 발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 나.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 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공립 학교
2.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나. 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다. 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장과 교직원
3.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 다.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
- 마.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 바. 중장 이상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 사.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은 제외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 아.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시·도경찰청장
- 자.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 차. 지방국세청장 및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
- 카. 다목부터 바목까지, 아목 및 차목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다만, 라목·마목·아목 및 차목 중 직위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만 해당한다.
- 타.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 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4.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5. “직무관련자”란 공직자가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기준(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말한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6. “사적이해관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마.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아.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7. “소속기관장”이란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26조(징계)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5조(징계기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징계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유형, 비위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세부 징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정 목적 및 용어정의, 적용범위(제1조~제3조)
- 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사항 (제4조~제8조)
- 다. 부당이득의 수수금지에 관한 사항(제9조~제14조)
- 라. 건전한 공직 풍토 조성에 관한 사항(제15조~제17조)
- 마. 위반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제18조~제22조)
- 바. 교육 및 행동강령 운영에 관한 사항(제23조~제2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본청·구의회·직속기관·동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인천광역시 검단구 본청·구의회·직속기관·동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영 제2조제2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3. “금품등”이란 영 제2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무원과 이에 파견된 공무원(공중보건 의사 및 공중방역수의사를 포함한다)에게 적용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지시내용,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으로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종교·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7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협박 또는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구청장 또는 상담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에게 채용 등 인사에 관하여 직접적·간접적으로 부정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9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직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영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
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직자가 아닌 사람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하

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2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도시개발·건설 담당 부서 업무담당자는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투자)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영 제13조의3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영 제13조의3제4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5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같은 사람에게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7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동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가액 범위의 금품 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그 수수 사실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 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7조(골프 및 사행성 오락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골프 종료 후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직무관련자 외의 사람과 골프를 하는 경우에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당 골프장 사용등록부에 반드시 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을 별지 제15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마작·화투·카드 등 사행성 오락(우연

의 결과나 불확실한 승패에 따라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8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써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무원이 제2항에 따라 신고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와 강의 요청 기관·단체의 공문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이

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으로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⑦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월 3회까지로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검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⑧ 공무원은 제7항에 따른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20조(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에 대한 비밀유지) ① 모든 공무원은 다

른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사건이 접수된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제21조(기록 보관·관리) ① 구청장은 제25조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사항, 확인 사항 및 조치 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준용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록을 전자 매체 또는 마이크로 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공무원은 알선·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규칙을 위반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

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구청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구청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징계 등) 제23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공무원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 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

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 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4항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9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 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금품 등을 인도한 사람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한 사람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 ⑥ 행동강령책임관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 등을 인도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⑦ 구청장은 금지된 금품 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 제26조(교육)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공무원 신규임용자, 6급 승진자, 5급 과장급 이상 보직자에게 이 규칙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하여 소속 교육훈련기관에 이 규칙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청렴 관련 교육과정의 이수를 명할 수 있다.

제27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 본청·직속기관·동 행정복지센터의 행동강령책임관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이 규칙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과 위반행위의 신고 접수, 조사처리, 그 밖에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행동강령의 운영 등) 구청장은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1. 사례금 상한액 : 40만원**

단,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 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지 제1호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소명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소명 내용

년			월			일		
소명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상담요청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사유

년			월			일		
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보고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직 급)		
정치인 등 인적사항	성 명		직 책		
	소 속		전화번호		
요구사항					
부당한 근거					
			년	월	일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금품등 수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안·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외부강의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외부강의 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 _____천원(※ 1회 평균 대가 _____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_____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_____천원)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별지 제7호서식]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	반환여부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직급)		
청구금액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품 (물품)				
	수량 (금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금품등 관리대장

[illegible]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소속 및 직위(직급)		연락처	
	주소			
	법안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동의 ☐ 부동의
신고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증거자료 목록	※ 증거자료 첨부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검단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상담유형	[] 방문 [] 전화 [] 기타()
상 담 요 청 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직위(직급)	연락처	

상담 내용

상담 결과

년 월 일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4호서식]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신고서				
신고자	소 속		성 명	
	직급(위)		전화번호	
신 고 내 용				
일 시		장 소		
참석자	※ 소속, 직책, 성명 기재			
비 용 부 담	※ 본인여부, 카드 사용여부 등 기재			
사 유				
비 고				

[별지 제15호서식]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접수·처리대장												
접수		신고자 인적사항			신고내용				결재			비고
번호	일시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일시	장소	참석자	사유	담당자	담당	감사관	

■ [별지 제16호서식]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요구자	성명		직위(직급)		
	소속				

요구받은 사항

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관계 법령 발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①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공직자가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및 효력 등은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징계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령 또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공무원 행동강령

제3조(적용 범위) 이 영은 국가공무원(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의 국가공무원은 제외한다)과 지방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에게 적용한다.

제24조(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2.>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제1항에 따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

령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기관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사무의 인수인계 및 인수인계서 작성에 관한 사항(제3조~제4조)
- 나. 인수인계의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제6조)
- 다. 인수인계서 작성단위에 관한 사항(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 및 보조기관등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 및 보조기관등의 사무인계 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인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구청장

2. 인천광역시 검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부서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3. 소속기관의 장과 과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

4. 구 재무회계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

5. 소속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실·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적용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 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분을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부서장 이상의 사무 인계인수서는 부서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을 경우에는 팀 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 항목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담당관·단·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담당관·단·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담당관·단·과·담당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구청장을 제외함)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 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 검단구 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부서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

항	목
1. 시정방침(전임자)	19. 차량목록
2. 기구조직현황	20. 재고 물품조서
3. 정·현원조서	20-1. 유류 수불조서
3-1. 정·현원표	20-2. 약품 수급조서
3-2. 직급별 정·현원표	20-3. 양곡 수불현계표
4. 사무분장표	20-4. 기타 자재수급조서
5. 역점추진업무목록	21. 비축물자 수급조서
6. 중요지시사항목록(대통령, 총리, 장관, 시장 등)	22. 재산조서
7. 중요 미결업무 조서	23. 채권, 채무조서
8. 공약사업중 미결사업 현황	23-1. 채권조서
9. 요 계속추진대상업무 조서	23-2. 채무조서
10.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	24. 세입세출 예산현계표
11. 소송 계류중인 사항	24-1. 세입예산 현계표
12. 관인, 공인목록	24-2. 세출예산 현계표
13. 보존문서 목록	24-3. 국비세출예산 현계표
14. 비밀소유 현황	25. 세입세출외 현금 수지현계표
15. 서류 및 장부목록	26. 지방교부세 수불현계표
16. 관사 비품목록	27. 적립금 조서
16-1. 관사 비품목록	28. 유가증권 수불현계표
16-2. 사무용 비품목록	29. 보조금 수지현계표
16-3. 도서목록	30. 임시전도자금 수지현계표
17. 중요 소모품목록	31. 당면 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18. 장비목록	3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8-1. 행정장비목록	
18-2. 건설 기타장비목록	

(별지)

사 무 인 계 인 수 서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인계인수서

1. 년 월 일 현재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 인계자 : 전직위	성명	②인
○ 인수자 : 직 위	성명	②인
○ 입회자 : 직 위	성명	②인

(별지 제1호서식)

시 정 방 침

시 정 방 침	세 부 시 행 방 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호서식)

기 구 조 직 현 황

구 분	구 청			동	사 업 소	
	국	실·과	계	계	실·과	계
본 청						
구 청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1호서식)

정현원조서

구분	총원	일반직			별정	기능	고용	전문	기타
		소계	동	사업소					
정원									
현원									
결원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3-2호서식)

직급별정·현원표

기관별 직급별	합 계			구			동			사 업 소		
	정원	현원	결원	정원	현원	결원	정원	현원	결원	정원	현원	결원
합 계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4호서식)

사 무 분 장 표

*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소속실과(계)	직 명	성 명	분 장 사 무	담 당 일 자

* 부서별 사무분장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5호서식)

역 점 추 진 업 무 (목록)

주관부서	건 명	내 용		목 적	현 황	비 고
		시행년도	사업개요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6호서식)

중요지시사항목록

지시				진척상황	주관부서
구분 (지시자)	일자	건명	내용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①

(별지 제7호서식)

중요미결업무조서

소관별	사업내역				추진상황 (진도)	미결사유	예정완료 시기
	소관별	사업량	사업비	시행기간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①

(별지 제8호서식)

공 약 사 업 중 미 결 사 업 현 황

공약 구분	소관 부서	사업명	공 약								미결 사유	금후 처리 방안
			공약자	일시	장소	내용	대상지역 또는주민	소요 예산	내용	진도		
대 민												
대기관												
대 내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9호서식)

요 계 속 추 진 대 상 업 무 조 서

소관부서	건 명	내 용		현 황	계속추진 목적또는 사 유	예 정 완료시기
		시행년도	사업개요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①인

(별지 제10호서식)

기 획 및 현 안 중 인 사 항

소 관 명	건 명	내 용	현재진행상황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 직위 직급 성명 ①인

(별지 제11호서식)

소 송 계 류 중 인 사 항

사건명	사건개요	당 사 자		최 초 제 소		진행상황	소관부서
		원 고	피 고	일 자	관할법원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2호서식)

관 인·공 인 목 록

명 칭	수 량	규 격	재 료	신조또는 개각일자	주용도	관수또는 사용부서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3호서식)

보 존 문 서 목 록

실과명	합 계	영 구	준영구	10년	5 년	3 년	1 년
계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14호서식)

비 밀 소 유 현 황

등급별 실과별	비 밀				대외비	음어자재	비 고
	계	I 급	II 급	III 급			

* 내역은 별도 실과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15호서식)

서 류 및 장 부 목 록

실 과 별	편찬년도	서류장부명	책 수	보관장소	비 고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16-1호서식)

비 품 목 록

1. 관사비품목록(정원수, 장비 등 포함)

* 별도 관사비품 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는 사실대로 작성)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6-2호서식)

2. 사무용비품

* 별도 실과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6-3호서식)

3. 도 서 목 록

소 관 별	총 수 량	비 고
계		

* 명세는 별도 실과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7호서식)

중요소모품목록

실과명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불출량	현재고	과부족	비고
				계	전년이월	수입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장비목록

(별지 제18-1호서식)

행정장비목록

장비명	단위	규격	수량	상태			비고
				신품	중고	사용불가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시는 명세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8-2호서식)

건 설 기 타 장 비 목 록

장비명	단 위	규 격	수 량	상 태			비 고
				신 품	중 고	사용불가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장비대장 미비치시는 실과별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9호서식)

차 량 목 록

차 종	차량번호	취득일자	사용연료	사 용 자	비 고

위와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재 고 물 품 조 서

(별지 제20-1호서식)

유 류 수 불 조 서

유종별	단 위	규 격	수입량	불출량	재고량	용 도	취급부서

*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①인

(별지 제20-2호서식)

약 품 수 급 조 서

실과별	품 명	단 위	규 격	대 장 상 수 량			현재고	과부족	비 고
				수 입	불 출	잔 량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①인

(별지 제20-3호서식)

양 곡 수 불 현 계 표

품 명	단 위	단 량	포장재료	수 량			비 고
				대장상	실재고	과부족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20-4호서식)

기 타 자 재 수 급 조 서

실과명	자재명	단 위	규 격	수 량			보관장소
				대장상	실재고	과부족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21호서식)

비 축 물 자 수 급 조 서

물자명	단 위	규 격	수 량			비축장소	관리부서
			수 입	불 출	잔 량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2호서식)

재 산 조 서

구 분			토 지		건 물		기 타	
			필 지	면 적	필 지	면 적	필 지	면 적
합 계								
공유	소 계							
	행정	계						
		공 용 재 산						
		공 공 용 재 산						
	재산	기 업 용 재 산						
		보 존 재 산						
	재산	잡 종 재 산						
국유	소 계							
	행정	계						
		공 용 재 산						
		공 공 용 재 산						
	재산	기 업 용 재 산						
		보 존 재 산						
	재산	잡 종 재 산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채 권·채 무 조 서

(별지 제23-1호서식)

채 권 조 서

실과명	건 명	채 권				채무자
		금 액	발생일	소멸일자	목적또는사유(조건)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3-2호서식)

채 무 조 서

[illegible]

위 사실을 확인함.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세 입 세 출 예 산 현 계 표

(별지 제24-1호서식)

세 입 예 산 현 계 표

회 계 별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과오반납액	불납결손액	비 고
계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24-2호서식)

세 출 세 액 현 계 표

회 계 별	예 산 액	수 입 액 (세 입) ①	지 출 액 ②	잔 액 ①-②	비 고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26호서식)

지 방 교 부 세 수 불 현 계 표

예 산 과 목			예산액	배 정		집 행		비 고
항	세 항	목		금 액	미수령액	금 액	잔 액	
계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7호서식)

적 립 금 조 서

종 별	금 액	기 간	이 율	통장번호	예금주	예치은행	관리부서
계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8호서식)

유 가 증 권 수 불 현 계 표

권종별	수 입		불 출		잔 고		수입 목적	보관장소및 관리부서
	매 수	금 액	매 수	금 액	매 수	금 액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9호서식)

보 조 금 수 지 현 계 표

보 조 부서별	건 명 (내 역)	예산액	영달액	미수령액	집행액 (보조액)	잔 액	정산액	비 고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0호서식)

임 시 전 도 자 금 수 지 현 계 표

전 도				정 산			지출과목	
일 자	금 액	목 적	출 납 공무원	일 자	금 액	과부족액	세 항	목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①인

(별지 제31호서식)

당 면 주 요 문 제 점 및 조 치 의 건

소 관 부 서	건 명 (내 용)	문 제 점	조 치 의 건	
			인 계 자	주관부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①인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19조(사무인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퇴직할 때에는 소관 사무 일체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4조(사무인계) ① 법 제119조에 따라 퇴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그 소관 사무의 전부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에게 인계해야 한다.

1. 임기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
2.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 그 퇴직하는 날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 사무를 인계받은 경우 그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은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될 때에 지체 없이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관 사무를 인계해야 한다.

제65조(사무인계의 방법) 제64조에 따른 사무인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무인계서에 인계자·인수자 및 참관인이 각각 기명·날인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서류 및 장부의 목록
2. 공유재산·물품·채권·채무 등 재산 목록
3. 예산·회계의 수지현재표(收支現計表: 수입·지출의 현재 상태를 계산한 표) 및 잔액증명
4. 기획 중이거나 시행 중인 중요 사업
5. 그 밖의 주요 사항

제66조(사무인계 시의 참관) ① 사무인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가 끝난 즉시 사무인계서의 흠결 여부를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② 사무인계 시의 참관은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이 참관한다.

1. 결원 등의 사유로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참관할 수 없는 경우
2.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 인계를 받는 경우
3. 제64조제2항에 따라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무인계를 하는 경우

제67조(사무인계서류의 생략) 제65조 각 호의 사항 중 사무인계 당시 갖추어 두고 있는 목록 또는 대장으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목록 또는 대장으로 사무인계서의 해당 부분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뜻을 사무인계서에 적어야 한다.

제68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인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안

1. 제안이유

2026. 7. 1. 검단구 출범으로 인한 계약업무 처리 시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규칙을 마련

2. 주요내용

- 가. 계약심사 대상에 관한 사항(제3조~제4조)
- 나. 계약심사 결과통보에 관한 사항(제6조~제7조)
- 다. 원가분석자문단에 관한 사항(제9조~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인천광역시 검단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계약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 검단구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라 설치된 담당관·단·과·소·동

나.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의회사무부서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와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지방공단

라. 「민법」 제32조 및 개별 법령 등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출연기관 (다만, 50퍼센트 미만 출연기관은 제외한다)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가 아닌 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 다.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해당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의 용역
- 나. 기술용역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 등 건설공사 및 엔지니어링 활동과 관련된 용역 중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의 용역
-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이외의 용역 중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의 용역

3. 물품의 제조·구매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물품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검토를 시행한 사업
- 3. 국·시비 보조사업 및 시 재배정사업 등 「인천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사업
- 4. 사업비의 조정률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제외기간은

제외 결정 후 1년에 한하며, 사업비 산정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외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전년도 평균조정률이 3퍼센트 이내인 발주부서의 사업

나. 전년도 평균조정률이 1퍼센트 미만인 사업

5. 계약심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사업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아니한 사업

나. 천재지변, 긴급 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5일 이내에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사업

다. 상품권, 종량제 규격봉투, 예술품 등과 같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제조·구매 사업

라.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에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발주부서의 장이 계약심사를 요청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인력을 보유한 부서와 협의 또는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는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통보 등)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장이 통보한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재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원가분석자문단) ①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원가분석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하며,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그 밖에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실비지급) ① 자문단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원가분석 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공표)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별지 제1호 서식] 공사계약 심사요청서

[별지 제2호 서식] 기술용역계약 심사요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일반(학술)용역계약 심사요청서

[별지 제4호 서식] 물품구매계약 심사요청서

[별지 제5호 서식] 물품제조(수리)계약 심사요청서

[별지 제6호 서식] 인쇄물계약 심사요청서

[별지 제7호 서식] 인쇄물기획편집계약 심사요청서

[별지 제8호 서식] 설계변경 심사요청서

(별지 제2호서식)

기술용역계약 심사요청서

용역명		요청기관	
용역위치			
용역기간		계약방법	
용역금액	· 총용역비 : 천 원	· 금회용역비 :	천 원
예정원가 작성자	· 담당부서 : · 작성자 : (전화번호)		
○ 용역개요 : 			
○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 1부. 2. 설계내역서 1부.(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과업지시 포함). 3. 1~2항의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 조치된 엑셀변환파일). 4. 인쇄물산출기초 조사서(인쇄물이 있는 경우) 5. 기타 참고자료(방침서, 계획서, 견적서, 등)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재료비, 노무비, 경비 적용근거 등)			

<참고 - 예시1>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

◦ 용역명 :

◦ 용역기간 : 20 . . . ~ 20(개월)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① 인 건 비	책 임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보 조 원			
	보 조 원			
	소 계			
② 경 비	여 비			
	유 인 물 비			
	전 산 처 리 비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회 의 비			
	임 차 료			
	교 통 통 신 비			
	감 가 상 각 비			
	연 구 활 동 비			
	소 계			
③ 순 원 가 (①+②)				
④ 일반관리비 ()%				
⑤ 일반관리비 합산원가 (③+④)				
⑥ 이 윤 ()%				
⑦ 이윤 합산원가(⑤+⑥)				
⑧ 부가가치세				
용 역 비 총 계				

<참고 - 예시2>

학술연구용역 비목별 기초계산서

(해당사항만 기재)

1. 인건비

가. 총 액

구 분	계	기준단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합산금				
		기본노임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상여금	퇴직금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계							

나. 기준단가에 의한 기본노임

구 분	담당과업	종사인원	과업기간(월수)		기준단가 (월단위)	소요금액
			1인당	누계		
책임연구원						
	계					
연구원						
	계					
연구보조원						
	계					
보조원						
	계					
합 계						

※ 담당과업은 연구참여자의 역할에 따라 구분하여 기재할 것

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합산액

(1) 연장근무수당

구 분	연장근무사유	기 간 (일수)	인원 수		시간 수		소요금액	
			1일	누 계	1인1일	누 계	시간당	누 계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구보조원								
보 조 원								
계								

(2) 야간근무수당

구 분	야간근무사유	기 간 (일수)	인 원 수		시 간 수		소요금액	
			1 일	누 계	1인1일	누 계	시간당	누 계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구보조원								
보 조 원								
계								

(3) 휴일근무수당

구 분	휴일근무사유	근무일수	인 원 수		소 요 금 액	
			1일	누 계	1인1일	누 계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구보조원						
보 조 원						
계						

(4) 상여금

구 분	지급대상인원	기본급월액	지 급 율 (연간)	소요금액	
				1인당(월)	누 계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구보조원					
보 조 원					
계					

(5) 퇴직충당금

구 분	지급대상인원	월 기본노임	월 상여금	소 요 금 액	
				1 인 당	누 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계					

2. 여비

가. 국내여비

(1) 출장내역

구 분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인원	출장기간	
				박 수	일 수
책임연구원			명	박	일
연구원			명	박	일
연구보조원			명	박	일
계					

(2) 소요금액

구 분	1인당					누계
	계	숙박비 (박수 × 단가)	일비 (일수 × 단가)	식비 (일수 × 단가)	운임 (일수 × 단가)	
책임연구원		()	()	()	()	
연구원		()	()	()	()	
연구보조원		()	()	()	()	
계						

나. 국외여비

(1) 출장내역

① 출장목적 :

② 출장인원 : 명(책임연구원 : 명, 연구원 : 명, 연구보조원 : 명)

③ 출장지역 :

④ 출장기간 : ~ (박 일)

⑤ 주요일정

일 자	활 동 사 항	비 고

2) 소요금액

구 분	인원수	1 인 당						누 계
		계	항 공 료 (실비계산)	일 비 (일수×단가)	숙 박 비 (박수×단가)	식 비 (일수×단가)	준비금 (기준액)	
책임연구원				()	()	()	()	
연 구 원				()	()	()	()	
연구보조원				()	()	()	()	
계								

3. 유인물비

건 명	인쇄방법 및 내용		규 격	부수	면수	단 가	소요금액
	용지종류	색도, 특수사양 등					
	표지 본문	표지 본문			표지 본문		
	표지 본문	표지 본문			표지 본문		
	표지 본문	표지 본문			표지 본문		
	표지 본문	표지 본문			표지 본문		
계							

※ 옅색인쇄인 경우 별첨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를 작성 첨부

4. 전산처리비

사용품목	규 격	소 요 량	단 가	소요금액
계				

※ 토너 가격 산출시 프린터 및 복사기의 제품명과 기종을 기재할 것

5. 시약 및 연구용재료비

품 명	용 도	소 요 량	단 가	소요금액
계				

6. 회의비

가. 회의개최내역

구 분 (회의명칭)	개최목적	개최회수	참여인원(1회당)			
			계	내부위원	외부위원	방청인
계						

나. 소요금액

구 분	1회당					누계
	계	참석수당 (인원수 × 단가)	발표수당 (인원수 × 단가)	음료식대 (인원수 × 단가)	기 타	
		()	()	()		
		()	()	()		
계						

7. 임차료

임차대상	임차목적	임차회수	소요비용	
			1회당	누계
계				

8. 교통통신비

가. 시내교통비

출장목적	출장인원	출장회수		소요금액	
		1인당	누계	1회당	누계
계					

나. 우편료

우편종류	발송목적	발송건수	소요금액	
			건당	누계
계				

다. 전신전화비

구 분	사 유	소요금액	산출근거
시내전화			
시외전화			
국제전화			
계			

9. 감가상각비

가. 산정금액 :

나. 산출근거 :

< 첨부 >

인쇄물 산출기초조사서

○ 품 명 :

○ 인쇄물내역

1. 수 량 : 부

2. 규 격 :

3. 용 지 : 표지

매, 본문

매

4. 면 수 : 표지

면, 본문

면

5. 인쇄색도 : 표지

도, 본문

도

6. 특수사양 :

7. 기 타 :

○ 산출근거

(단위 : 원)

구 분	산출금액	산 출 근 거	비 고
용 지 대			
조 판 비			
사진제판			
인쇄판료			
인 쇄 비			
제 본 비			
계			
일반관리비			
소 계			
이 윤			
합 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총 계			

물품구매계약 심사요청서

건 명		요청기관	
산출금액	원		
구 매 예정일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기 타			
○ 구매내역 :			
○ 첨부 서류			
1. 산출기초 조사서(가격조사 근거서류 포함) 1부. 2.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사양서 1부.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수입물품의 경우 수입원, 입물품원가계산서(엑셀양식), 기타 시장재고, 유통여부나 참고자료 제시)			

물품구매 산출기초조사서

◦ 건 명 :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산 출 조 사 근 거				산출가격(원)	
								단 가	금액
공급가액									
부 가 세									
합 계									

(별지 제5호서식)

물품제조(수리)계약 심사요청서

건 명		요청기관	
산출금액	원		
제 조 (수 리) 예정일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기 타			
○ 수리목적 :			
○ 첨부 서류 1. 제조원가계산서(일위대가표 포함) 1부. 2. 산출기초조사서(엑셀양식) 1부. 3. 제조(수리) 규격 및 시방서 1부. 4. 1~3항의 전산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수의계약일 경우 수의계약 사유서 제출			

(별지 제6호서식)

인쇄물계약 심사요청서

건 명		요청기관	
산출금액	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예정원가 작 성 자	· 담당부서 : · 작 성 자 : (전화번호)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mm × mm)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g), 내지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 첨부 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1부. 3.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4.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5. 1~3항의 전산파일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참고서식 >

인쇄물 산출기초조사서

◦ 품 명 :

◦ 산출근거

(단위 : 원)

구 분	산출금액	산 출 근 거	비 고
용 지 대			
전 자 조 판 및 편 집 료			
필름출력비			
인 쇄 판 비			
인 쇄 비			
제 본 비			
기 타			
계			
일반관리비			
소 계			
이 윤			
합 계			
공 급 가 액			
부가가치세			
총 계			

※ 경인쇄의 경우 “인쇄비란” 에 산출근거와 산출금액을 표기하고, 산출금액에 부가세만 가산적용.

(별지 제7호서식)

인쇄물기획편집계약 심사요청서

요청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건명					
산출금액	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체	·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 기획편집내역 1. 규격 : 2. 색 도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 첨부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1~3항의 전산화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참고서식 >

인쇄물기획·편집 산출기초조사서

◦ 품 명 :

◦ 산출근거

(단위 : 원)

구 분	산출금액	산 출 근 거	비 고
기획료 또는 디자인비			
전자조판 및 편집료			기획편집 심사에 '전자조판 및 편집료' 를 산정한 경우, 인 쇄물 심사요청서에는 반드시 제외
필름출력비			기획편집 심사에'필 름출력비'를 산정한 경우, 인쇄물 심사 요청서에는 반드시 제외
기타 비용			
계			
일반관리(5%이내)			
소 계			
이 윤(10%이내)			
합 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10%)			
총 계			

(별지 제8호서식)

설계변경 심사요청서

공 사 명		요청기관	
공사위치			
공사기간		계약방법	
계약금액 (최 초)			
설 계 자	· 상 호 : · 대 표 자 :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발 주 처	· 담 당 자 : (전화번호 :)		
○ 설계변경 사유 :			
○ 첨부 서류			

관계 법령 발췌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제1조~제2조)

나. 운영 방향 및 위원회 구성·기능에 관한 사항(제3조~제5조)

다. 청백-e시스템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제6조~제10조)

라. 자기진단 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제11조~제13조)

마.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제14조~제16조)

바. 시스템의 보안 및 사후관리, 평가 등에 관한 사항(제17조~제2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효율성 향상, 공직윤리 문화 정착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구하는 행정책임의 목적과 규정이 각 부서의 공무원들에 의해 적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수단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공직비리 및 행정 능률의 향상을 제고하는 수단을 말한다.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이란 공직비리 사전예방 및 행정효율화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 제도,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내부통제를 실시, 평가, 홍보, 교육 등 소속 구성원에 대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청백-e시스템”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업무처리를 위하여 운영

하고 있는 다수의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비리 및 착오 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자기통제·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청백-e(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이라 말하고, 단일 행정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연계한 비리 및 착오 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자기통제·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청백-e(개별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이라 말한다.

4. “자기진단(Self Check)제도”란 지방자치단체가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착오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에 대하여 자기진단표를 활용하여 담당자, 관리자, 감사자가 사전에 점검하여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5.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직원들의 청렴하고 투철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통하여 부패방지 및 비리예방을 하기 위해 개인 및 부서 윤리활동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6. “상시모니터링”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직원들의 행정업무 처리과정의 위법·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시스템에 의한 자기 확인·점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7. “감사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말한다.

8. “실무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9. “지원부서”란 각 시스템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총괄부서를 말한다.

10. “실무담당자”란 부서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말한다.

11. “실무책임자”란 부서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직상위자를 말한다.

12. “관리자”란 부서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최상위자인 실·과·소·동장 등을 말한다.

제3조(운영방향) ① 자율적 내부통제는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 제도,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에 전담부서 및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자율적 내부통제의 기본 운영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운영 및 시스템 관리
2. 내부통제를 위한 내부통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
3.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관련 자치규칙 제·개정
4. 자율적 내부통제 실적 자체평가 및 환류·제도개선

제4조(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자율적 내부통제 기본 운영방향 제시 등 내부통제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자율적 내부

통제 운영 관련 실장·국장·보건소장 및 감사부서의 장 등으로 하여 총 10명 내외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정책 및 방침 결정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자체평가 및 개선, 인센티브 부여 등 주요사항 심의·결정
3. 그 밖에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발전·개선 방안 등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감사부서에서 담당한다.

⑤ 그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공직자 자기관리 실무위원회를 두고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서울행정정보시스템 등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2.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자기진단 수행 주요부서의 장으로 10명 이내로 한다.

3. 공직자 자기관리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예산, 인사, 회계, 세입, 주요 인허가 업무 부서의 장 등으로 10명 이내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영역 관리 및 자체평가 기준 마련
2. 자율적 내부통제 지침 이행여부 확인 및 평가 실시
3.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 평가실시 및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 제시
4.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 강화방안 강구, 홍보 및 교육방안 제시

④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감사부서에서 담당한다.

⑤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장 청백-e 시스템

제6조(시스템의 운영)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들이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공무원 스스로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 데이터베이스와 그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청백-e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내부통제를 수행함에 있어 청백-e

시스템의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활용하여야 한다.

1. 모니터링 조치대상 목록 및 조치결과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관리
2. 모니터링 조치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통계분석관리
3. 그 밖에 청백-e 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보관리

제7조(업무지정) 구청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 가.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의 수정·갱신 내역 총괄 관리
- 나. 상시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업무부서 통보 등 상시모니터링 업무 전반관리
- 다. 청백-e 시스템 외부 금융권 자료 연계 및 처리를 위한 수수료 처리
- 라. 청백-e 시스템 기반 구축·운영을 위한 행정자치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검단구와의 협약
- 마. 청백-e시스템 사용자, 관리자 권한 총괄 관리
- 바. 청백-e 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체 평가계획 수립, 운영
- 사. 실무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2. 실무부서

- 가.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을 위한 대상 자료관리

나. 청백-e 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한 권한 부여 및 관리

다.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통계관리

라.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확인, 수정, 조치 등

3. 지원부서

가. 청백-e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시스템 운영 지원

나. 전자결재 연계 서버 등 시스템 기반에 대한 운영·관리

다. 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

4. 실무책임자

가. 청백-e 시스템의 업무변경에 따른 권한 설정을 변경 요청하여야 한다.

나.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한 조치사항을 검토 및 확인하여야 한다.

다. 인사이동으로 업무변경될 경우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하여 조치 및 미조치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5. 관리자

가. 청백-e 시스템의 업무변경에 따른 권한 설정을 변경 요청하여야 한다.

나.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하여 처

리독려, 지시사항 입력, 조치결과에 대한 확인 및 승인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 인사이동으로 업무가 변경될 경우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하여 조치 및 미조치 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구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를 위해 청백-e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청백-e 시스템 운영책임자는 실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지원부서의 장은 장애 발생 시 즉시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단에 복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예방행정 프로그램 변경) 구청장은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의 추가·변경·삭제가 필요한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의 관리) ① 전산자료의 신속·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 및 실무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청백-e 시스템 상 자료는 각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주기에 따라 최신 정보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감사부서와 실무부서 및 지원

부서에서는 자료에 대한 최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3장 자기진단(Self-Check) 제도

제11조(자기진단) ① 구청장은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오류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분야를 선정하여 업무처리과정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자기진단 실무부서에서는 자기진단표(Self-Check List)에 따라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관리자는 상호 유기적으로 업무처리과정을 점검확인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기진단제도 자기진단표는 실무부서의 실정에 따라 대상 업무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단, 자기진단 대상업무 및 자기진단표는 실무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12조(업무지정) ① 구청장은 자기진단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정보화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자기진단 업무 분야 선정·관리 및 위원회 지원

나. 실무부서의 자기진단 결과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처리결과 확인 등 조치

다. 연 1회 자기진단제도 운영결과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보고 및 실무부서에 통보

2. 실무부서

가. 실무부서의 장은 자기진단표에 따라 자체 점검을 매분기 실시한다.

나. 실무부서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자기진단이 필요한 대상 업무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감사부서장에게 제출 할 수 있다.

3. 지원부서 : 자기진단 제도 업무처리과정의 전자적인 이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제도개선) ① 실무부서의 장은 자기진단 대상 변경 및 시행상의 문제점 등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도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실무부서의 자기진단제도 개선요구가 있을 경우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제14조(윤리관리) 구청장은 소속 직원 및 부서단위 윤리활동강화를 통한 비리 사전예방 및 깨끗한 공직윤리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윤리활동 운영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1. 공직윤리의식 제고 시책 수립 및 집행

2. 개인별 · 부서별 윤리활동 마일리지 부여 절차 및 방법

3.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소속 공무원 대상 교육계획 수립\

4. 그 밖에 자율적 윤리활동 관련 사항

제15조(시스템 운용) ① 구청장은 소속 직원들의 윤리활동 강화를 위하여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윤리활동 강화를 위하여 실적에 따라 소속공무원들에 대한 공직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각종 시책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업무지정) ① 구청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관리 및 운영 총괄

나.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실무위원회 운영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안건 상정

다. 감사부서의 장은 윤리활동 표준항목을 실무위원회에 보고

라. 실무부서의 윤리활동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

2. 실무부서

가. 실무부서장은 개인별·부서별 윤리활동 결과를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에 입력(단, 징계 등 공무원 신상정보는 감사부서에서 입력)

3. 지원부서

가. 윤리활동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시스템 운영 지원

나. 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개선 요청

제5장 보안 및 사후관리

제17조(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① 구청장은 청백-e 시스템 및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에서 관리되는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청백-e 시스템 및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② 청백-e시스템 및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만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청백-e시스템 및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접근권한에 대한 관리 및 책임은 실무부서장이며, 총괄 관리 및 총괄책임은 감사부서의 장이된다.

④ 구청장은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에 있는 공무원에 대한 신상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권한관리 및 시스템 안전대책) ① 구청장은 청백-e시스템 및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의 업무담당자의 변경,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시스템 사용자 권한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백-e 시스템 및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의 자료를 보

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 정보,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평가) 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청백-e시스템 : 사용자 시스템 사용율, 모니터링 조치율, 세수확보, 비리적발 등

2. 자기진단 제도 : 통제대상 업무량, 비리예방율

3.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 윤리활동 창의성, 개인별·부서별 윤리활동 실적

② 감사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결과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운영상 문제점 파악 및 향후 개선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③ 구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운영 결과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확인·점검을 위한 자료제출요구에 적극 응해야 한다.

제20조(포상) 구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및 성과포상금 지급, 인사가 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21조(제도지원) 구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운영관련 제도개선·지원 등이 필요할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렴상 운영에 관한 규칙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포상대상자 추천기준 등(제1조~제2조)

나. 수상자 선정심의 (제3조)

다. 포상 및 특혜 부여에 관한 사항(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렴상 운영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른 청렴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기준) ① 청렴상 포상 대상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라 실시한 평가 결과 공직윤리 실적이 우수한 사람 중에서 6명 내외로 추천한다.

②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청렴상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칙에 따른 청렴상 수상자는 3년 이내 추천을 제외한다.

제3조(선정심의) ① 청렴상 수상자는 추천받은 6명 내외의 공무원 중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3명 이내로 선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심의하여 청렴상 수상자로 선정한다.

1. 청렴한 공직자로서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
2. 헌신과 봉사정신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3. 그 밖에 반부패·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사람

③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를 따른다.

제4조(포상 등)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르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근무평정시 가점
2. 상금
3. 그 밖의 포상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청 럽 상

(소 속) ○○○○○○

(직, 성명) ○○○ ○○○

위 직원은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
으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으
며, 특히 청렴한 공직자로서 깨끗한 공
직문화 조성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검단구청장

○ ○ ○

인천광역시 검단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안

1. 제안이유

2026. 7. 1. 검단구 출범으로 인한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정책실명제 목적, 정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나. 정책실명제 등록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 정책자료집 발간 및 정책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라. 정책평가 및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안 제7조~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인천광역시 검단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실명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하고, 추진 경과를 관리하며 정책의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책 참여자의 공지를 제고함과 동시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참여자”란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한다.
2. “정책실명제”란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자를 실명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는 정책실명제 담당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1. 주요 구정현안 사항 (구청장 공약사업 등)
2. 10억원 이상의 대규모 공사 또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

4. 조례 및 규칙 등의 제정사항

5. 기타 구의 주요사업 중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관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두를 포함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등록) ① 담당부서에서는 제3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정책실명제 대상 정책을 결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도 1월말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한다.

② 총괄부서에서는 담당부서로부터 받은 정책실명제 대상 정책에 대하여 자체 심사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등록해야 한다.

③ 건물 또는 교량 등과 같은 시설물의 경우는 누구나 잘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물 관리 표식을 실명으로 각인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에서는 정책실명제 등록사항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정책자료집 발간) ① 담당부서에서는 정책집행의 효율성 확보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책의 입안 및 집행과정, 담당자 실명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록하여 발간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정책 추진과정 비망록

2. 계획에서부터 시행, 완결까지 관련된 모든 문서

가. 계획서·보고서·추진계획표·일정표·심사분석결과 등

나. 관련자 및 관련자별 업무분담내용

다. 공청회·세미나 및 관계자회의의 기록

라. 정책·사업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게 된 경위, 관련자 및 관련기록

② 담당부서에서는 발간한 정책자료집을 다음연도 1월까지 총괄부서에 2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정책자료집을 취합하고 매년 2월에 구 기록관에 제출하여 보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관련문서 중 비밀문서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정책자료집을 비밀문서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정책자료집에 수록된 내용 중 정보공개 대상의 판단은 담당부서에서 정보공개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정책 이력관리) ① 담당부서는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사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 지체 없이 총괄부서에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의 변동사항이 통보되면 지체 없이 수정하여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정책평가) ① 총괄부서에서는 매년 1회 해당연도에 종결된 정책실명제 대상 정책에 대하여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자체 평가지표에 따라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또는 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인센티브)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사업 평가에 따른 우수자 및 우수부서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포상 또는 격려할 수 있다.

② 표창 등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② 추진배경			
③ 사업개요			
④ 사업부서		⑤ 담당자	
⑥ 선정기준		⑦ 사업기간	
<그간 주요 추진내용>			
○ 내용 ※ 관련 결재문서의 문서명칭 기재	00.00.00.	○○○ 장관 ○○○ 차관 ○○○ 실장 ○○○ 국장 ○○○ 과장 ○○○ 사무관	
○ 내용	00.00.00.	○○○ 국장 ○○○ 과장 ○○○ 주무관 <관련자> ○○○ 국회의원	

<기재항목>

- ① 정책사업명: 온나라시스템 상의 단위과제 카드명과 정책사업명 일치 권고
- ② 추진배경: 정책의 추진계기 등 발단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
- ③ 사업개요: 사업목적, 추진내용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개괄
- ④ 사업부서: 소속 기관명, 부서명(과 단위) 기재
- ⑤ 담 당 자: 現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 ⑥ 선정기준: 주요 구정현안 / 대규모 공사·예산사업 /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 / 조례, 규칙 등 제정사항 / 기타 보존할 필요 있는 사항
- ⑦ 사업기간: 사업의 시작 및 (예상)종료 시점 기재
 - ※ 그간 주요 추진내용: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 이전 진행되어 온 주요 추진 사항 및 기타 주요내용 등을 기재
 - ※ 일시 및 관련자: 최종결재 날짜 기준으로 내림차순, 결재라인 직급순으로 실명 기재

(별지 제2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부

[illegible]

〈기재항목〉

- ① 등록번호: 정책실명제 관리번호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예 2024-1, 2024-2)
- ② 정 책 명: 사업명을 기재
- ③ 사업부서: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 ④ 답 당 자: 사업 담당자 및 사업 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별지 제3호서식)

시설물 관리 표식

건설공사 및 구조물설치참여자			
구 분	성 명	구 분	성 명
시공회사		현장대리인	
공사감독관		준공검사관	
감리전문회사		책임감리자	
설 계 자			

※ 표시의 크기는 담당부서에서 적절한 크기로 제작

(별지 제4호서식)

정책추진과정 비망록

정 책 명	
추 진 배 경	
추 진 경 과	
관 련 자 및 업무분담내용	
다른 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기 타	
공 개 구 분	
총소요기간 및 예산액	

관계 법령 발췌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정책의 실명 관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②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처리과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자료에 담당부서·담당자·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63조의2(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등 해당 기관의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본조신설 2014. 2. 18.]

제63조의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7.>

1.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4.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5.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자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친 후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실적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4. 2. 18.]

제63조의4(정책실명제 평가) 행정안전부장관은 정책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행정기관의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4. 2. 18.]

제63조의5(정책실명제 세부 규정) 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심의위원회의 구성,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기준 및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본조신설 2014. 2. 18.]

☐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5.10.30)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드높임에 숭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5.1. 8.>
4. 새마을운동 또는 대민봉사 활동에 헌신한 사람(개정 2015.10.30)
5. 사회단체회원으로서 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구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 (신설 2011.4.18)
6.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적이 뚜렷한 사람 (신설 2011.4.18)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약사항 확정 및 실천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나.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다. 평가방법 및 결과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 과정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으로 제5조에 따라 확정된 것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관리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소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관련부서”란 주관부서와 함께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권리와 책무) ① 구민은 구청장의 공약사항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증 및 평가와 관련된 구민의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공약이 구민과의 공적 계약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체계) ①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총괄부서를 공약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에 대한 업무를 조정하며 공약사항별로 주관부서와 관련부서(이하 “주관부서 등”이라 한다)를 지정한다.

③ 주관부서 등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을 공약사업별로 수행하고,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추진·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공약사항 확정) ① 구청장은 취임 후 선거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약사항안이 작성되면 주관부서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약사항 검토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률적 검토

2. 사업의 적정성

3. 임기 내 실천 가능성 또는 임기 내 실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기계획으로의 실천 가능성

4. 사업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③ 총괄부서에서는 제2항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공약사항의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고, 주관부서 등과 협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 보고된 내용을 검토한 후 공약사항을 취임 후 100일 이내에 최종 확정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별로 관리번호를 지정하여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제5조에 따른 공약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실천계획을 세워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세우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

려하여야 한다.

1. 공약사항 취지에 맞는 공약사업 선정

2.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

가. 광범위한 자료, 지식, 경험 등을 활용

나. 전문연구기관 및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반영

다. 서로 상반된 이해관계의 실익에 대한 비교 검토

3.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계획과의 조화와 반영

4. 효율적인 실천방안 마련

5.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또는 해결방안 마련

6.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사업은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재원조달 대책 마련

7.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와 사전협의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실천계획을 종합
· 조정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취임 후 180일 이내에 실천계획으로 확정
하고 이를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실천계획 변경) ① 주관부서 등의 장은 실천계획이 확정된 후에 상황과
여건 등의 변화로 계획을 수정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실천계
획을 변경하고 이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계획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약이행평가단 등 구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변경 여부
를 최종 확정한다.

제8조(추진상황 점검)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의 추진실적을 분기별

로 자체 점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카드를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관리카드에 대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부진 또는 문제 사업,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주관부서 등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① 구청장은 공약사항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은 실천계획의 이행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 추진이 부족한 사업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③ 평가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선출한다.

⑤ 평가단원은 제3항에 따른 정원 범위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활동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구민, 사회단체원, 대학교수 등 공약이행 평가를 성실히 수행하고 구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10조(평가단의 임기)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구청장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 평가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며 평가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

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촉의 해제)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
2.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3조(평가방법 및 결과 등) ① 공약이행 평가는 연 1회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평가단이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약사항 추진에 적극 반영하되,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평가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평가단은 공약이행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전문가 또는 구민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공개) 구청장은 공약사항의 확정, 실천계획, 수정, 변경 및 추진상황, 공약이행 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공약이행 평가에 참석한 평가단원에게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약사항 검토 결과

공약사항																																											
공약내용 (요 약)																																											
검토 결과																																											
관련현황																																											
추진계획 (잠 정)																																											
사업소요액 (단위:백만원)	<table><tr><th>구 분</th><th>계</th><th>국비</th><th>시비</th><th>구비</th><th>기타</th></tr><tr><td>계</td><td></td><td></td><td></td><td></td><td></td></tr><tr><td>1년차</td><td></td><td></td><td></td><td></td><td></td></tr><tr><td>2년차</td><td></td><td></td><td></td><td></td><td></td></tr><tr><td>3년차</td><td></td><td></td><td></td><td></td><td></td></tr><tr><td>4년차</td><td></td><td></td><td></td><td></td><td></td></tr><tr><td>임기 후</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구 분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임기 후					
구 분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임기 후																																											
추진상문제점 및 대안																																											
검토결과	☐ 임기내 가능 ☐ 장기 추진 ☐ 추진 불가																																										
주관부서 (관련부서)	부서명 : 팀명 : 담당자(전화) :																																										

[별지 제2호서식]

공약사항 실천계획

관리 번호		공약명	

담당부서		담 당	(☎)	담당자	(☎)
관련부서		담 당	(☎)	담당자	(☎)

사업성격		사업주체			완료시기		재원조달방안				소요예산
신규	계속	국가	시	구	임기 내	임기 후	자체	보조	기타	비예산	

☐ 사업목표

○

☐ 개 요

○

☐ 연도별 실천계획

연 도	실천계획	추진율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임기 후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임기 후					

☐ 향후추진계획

○

☐ 기대효과

○

[별지 제3호서식]

공약사항 관리카드

관리 번호		공약명	

주관부서		담당	(☎)	담당자	(☎)
관련부서		담당	(☎)	담당자	(☎)

추진사항						소요예산	이행단계	추진율
완료	이행 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부진	미착수	기타			

☐ 사업개요

○

☐ 연도별 추진계획 및 실적

연 도	이행률	달성율	연도별 추진사항
1년차	%	%	
2년차	%	%	
3년차	%	%	
4년차	%	%	
임기 후	%	%	

※ 이행률 : 공약사항 전체기준 추진성과 (민선7기 동안의 성과)

※ 달성률 : 해당 연도별 당초계획 대비 추진성과 (해당 연도 성과)

☐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임기 후					

☐ 그동안 추진사항

○

☐ 문제점 및 대책

○

☐ 향후 추진계획

○

인천광역시 검단구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안

1. 제안이유

2026. 7. 1. 검단구 출범으로 인한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 평가의 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4조)

나. 평가의 대상업무 및 기관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다. 평가의 절차 및 종류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5조)

라.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16조~19조)

마.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0조~2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인천광역시 검단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업무 등"이라 함은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이하 "소속 행정기관"이라 한다), 지방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사항을 말한다.
2. "자체평가"라 함은 구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구 본청,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공기관 등(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시평가"라 함은 주요업무 또는 현안으로 대두되는 사안 등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4. "지방공공기관"이라 함은 구가 설립한 공단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하여 법령·조례 또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평가는 업무등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등을 확인점검·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업무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평가의 대상업무 및 기관

- 제5조(평가의 대상업무) ① 평가의 대상업무는 주요사업 및 주요업무시행계획에 포함된 주요 시책과 사업 등이 된다.
-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국가 또는 시의 위임사무와 보조금 등 각종 지원사업을 평가대상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 제6조(평가의 대상기관) ① 평가의 대상기관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한 구 본청의 각 부서 및 직속기관 등 소속 행정기관으로 한다.
-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공기관을 평가대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제5조제2항에 의하여 평가대상업무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그 범위 안에서 평가대상기관이 된다.

제3장 평가의 절차 및 종류

제7조(주요업무시행계획 등의 작성) ① 구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시달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당해 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가대상기관의 장이 제출한 주요업무시행계획에 대하여 변경·보완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주요업무계획을 변경하여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변경 및 절차) ① 주요업무시행계획의 변경은 최소한에 한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1. 당해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2.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3. 예산의 이용·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②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행계획에 변경사유 및 그 근거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시행계획을 검토하여 자체평가시행계획을 조정하거나 보완한다.

제9조(평가계획의 작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를 평가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해당연도 3월 말까지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기관
3. 평가의 대상 및 범위
4. 평가시기
5. 평가방법(성과측정을 위한 평가지표 포함)
6.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10조(자체평가) ① 구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자체평가는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소관 시행계획의 집행 상황에 대하여 상반기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자체평가 실시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예상될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의 실시결과 및 조치계획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결과, 조치계획 및 상반기 이후 추진사항을 종합하여 하반기 중에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체평가 위원회를 통한 종합적인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⑤ 구청장은 제4항의 종합적인 자체평가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간을 정하여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수시평가) 구청장은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당면주요업무,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기관평가) ① 구청장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당해 기관의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와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 구민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민 만족도에 관한 사항은 업무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성과 등을 별도로 조사·평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합동평가) 구청장은 업무등의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 또는 기관의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의 요청 등) ① 구청장은 업무 등의 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 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연구 등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4장 평가결과의 활용

제16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① 구청장은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6조에 의한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련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

나 점검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해당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평가결과의 예산 등에의 연계·반영 등) ① 구청장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구청장은 구정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업무 등의 평가결과 우수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지원·포상 및 실적 가점, 인사상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장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제20조(평가위원회의 설치)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검단구 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 연도 평가 실시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 대상업무 선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2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본청 소속 실·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

사는 업무평가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21조에 의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평가 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 등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5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계획의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기초하여 당해 정책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주요 정책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자체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5. 자체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체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제18조(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소관 정책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제15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기반의 구축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수당 등) ① 위원회 개최 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참석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서면수당: 서면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3. 심사수당: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건을 받아 사전에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결과물을 제출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②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한 위원에게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및 여비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2. 구의원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단, 구의회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지원 적용범위 등(안 제2조~제5조)
- 나. 소송수행 지원 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9조)
- 다. 위원회 심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3조)
- 라. 지원 취소 등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제1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퇴직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제3조(적극행정지원 심의·의결)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의결한다.

1.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 결정
2. 지원 시기, 범위, 방법 결정
3. 그 밖에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4조(변호인·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 등이 요구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1. 고소·고발 등의 경우 :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 500만 원 이하

2.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5조(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4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받은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인천광역시 검단구청 고문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한다)

제6조(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구청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신청) 이 규칙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서식의 지원 신청서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 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 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수사절차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기타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8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7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기타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고지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즉시 감사부서의 장에게 알려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상정·심의)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9조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7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9조

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지원 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책임관으로부터 심의·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공무원에 관한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 등을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긴급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지원 결정 시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의 제출)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
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 의결서 사본
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5. 기타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이 요청한 서류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3조(보고)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의 취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5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다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제13조제1항은 제외한다)
3.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7조에 따라 지원 신청한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4. 기타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

제15조(변호인 보수의 반환) ① 제14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적극행정 공무원이 행정종합배상공제의 지원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반환 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		
신청인	담당자	소속 : 직 급 : 성 명 :
	담당업무	
신청내용		☐ 변호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변호인 선임 지원
징계의결요구개요	징계의결 요구	
	요구일	관할 징계위원회
징계의결요구사유		
구비서류		☐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 등 입증서류 ☐ 변호인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인천광역시 검단구는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소속, 직급, 담당업무	「인천시 검단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소송수행 등 지원	제10조에 따른 지원 여부 심의·의결일로부터 3년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의 지원에 제한을 받을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민감정보 처리 내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징계의결과 관련한 사항	「인천시 검단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소송수행 등 지원	제10조에 따른 지원 여부 심의·의결일로부터 3년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의 지원에 제한을 받을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신청인	담당자	소속 : 직 급 : 성 명 :		
	담당업무			
신청내용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지원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의견 제출		
사건번호	고소·고발 등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접수일	관할 및 사건번호	접수일	관할 및 사건번호
사건개요				
구비서류		☐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입증서류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인천광역시 검단구는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소속, 직급, 담당업무	「인천시 검단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소송수행 등 지원	제10조에 따른 지원 여부 심의·의결일로부터 3년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의 지원에 제한을 받을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민감정보 처리 내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징계의결과 관련한 사항	「인천시 검단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소송수행 등 지원	제10조에 따른 지원 여부 심의·의결일로부터 3년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의 지원에 제한을 받을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장

연번	신청자		신청일	관할 징계위원회	징계의결 요구 사유	지원 결정일	지원내용	징계결과	지원 취소 · 반환 등	비고
	소속	성명								

【별지 제4호서식】

소송 등의 지원 관리대장

연번	신청자		신청일	사건관할 및 사건번호	사 건 개 요	지원 결정일	지원내용	수사 및 소송결과	지원 취소 · 반환 등	비고
	소속	성명								

관계 법령 발췌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어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제2호의 경우에는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7.>

1.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받아 제16조에 따른 징계등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2.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하여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7.>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 12. 27.>

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을 가진 사람(이하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라 한다)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징계의결등 요구서의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보내는 경우로서 징계의결등의 대상 행위가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 ombudsman이 징계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해당 징계등 혐의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7.>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민제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안의 제출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제안의 심사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제안의 채택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검토 필요)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민제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민제안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의 제출)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민제안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하려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제안에 대해 구민이 접수증 발급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민제안 접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3조(의견조회) 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의 실용성, 창의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 부서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해당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심사기준) 조례 제9조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채택등급의 결정)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제안의 채택등급 결정은 실행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계속성, 적용범위, 주민선호도 등 부문별로 평가하여 종합득점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동점인 경우에는 노력도, 완성도 등을 고려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②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부상) 조례 제12조에 따른 수상자에 대한 부상의 종류 및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채택된 창안의 활용) ① 구민제안 담당업무 부서장은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채택된 창안의 소관 부서장에게 통보하여 이를 활용하도록 한다.

② 채택된 창안의 소관 부서장은 해당 창안을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시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구민제안 담당업무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국민 제안 규정

제5조(국민제안의 제출) ① 모든 국민은 제안 내용의 소관 행정청에 국민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1., 2023. 8. 1.>

② 국민제안을 제출하려는 국민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장애인이 국민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2. 7. 11.>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민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④ 둘 이상 행정청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국민제안의 경우에는 국민제안의 주된 내용의 소관 행정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7. 11.>

제8조(국민제안의 심사) ① 행정청은 제6조에 따라 접수한 국민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해야 한다. <개정 2022. 7. 11.>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② 행정청은 국민제안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별 국민제안 심사위원회(이하 “기관별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14조제3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를 하거나 제15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의 결정을 할 때에는 기관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4. 14., 2022. 7. 11., 2023. 8. 1.>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기관별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전체 구성 인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중 공무원(행정청이 「행정절차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청에 소속된 임직원을 포함한다)이 아닌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 구성해야 한다. <신설 2020. 4. 14., 2022. 7. 11.>

제11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행정청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 7. 11.>

② 행정청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 7. 11.>

[별표 1]

세부심사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배 점 기 준		
	우 수	보 통	미 흡
실행가능성(20)	20~15	14~10	9이하
창 의 성(20)	20~15	14~10	9이하
효율성 및 효과성(20)	20~15	14~10	9이하
계 속 성(15)	15~13	12~10	9이하
적 용 범 위(15)	15~13	12~10	9이하
주민의견(10)	10	9	8
최종평가점수	100점		

※ 단, 심사자 평균점수 70점 미만은 불채택

[별표 2]

부상종류 및 보상금 지급기준

[단위 : 천원]

등 급	인원	보상금	포상	비고
최우수	1	1,000천 원	구청장	채택
우수	1	700천 원	구청장	채택
장려	1	500천 원	구청장	채택
노력	3	200천 원	구청장	채택

※ 심사결과에 따라 등급별 수상자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수상자가 없을 수 있음.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제 안 서

① 제목			
② 제출기관	인천광역시 검단구청		
③ 동일·유사 제안의 다른 기관 제출여부	[] 없음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④ 주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기여도(%)		
⑤ 공동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기여도(%)
⑥ 처리 결과 통보방식	[] SMS (문자 메시지)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	전자우편주소:	
	[] 우편	주소:	
* 제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표창·상금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여부		(년)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민제안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제안자 (서명 또는 인)			
※ 국민신문고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2쪽)

⑦ 현황과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필요성
- 사업에 대한 추진방향
- 타지역 유사 사례 : 해당 유무

⑧ 개선방안

- ☐ 제안의 구체적인 내용 기술
 - 사업의 차별성 또는 독창성
 - 추진전략 및 세부 실행계획 (소요예산 포함, 비예산 가능)
 - 추진 방법 등 실현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⑨ 기대효과

- 마을 주민 생활불편 해소
- 고용 등 경제적 파급효과
- 구민생활 개선, 구민 관심도 제고 등 사회적 파급효과 등

작성 방법

- ① 제안 제목: 제출하려는 제안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한 제목을 적습니다.
- ③ 동일·유사제안의 다른 기관 제출 여부: 동일·유사한 제안을 다른 기관에 제출한 적이 있는지를 판단해 ✓ 표시하고, 있을 경우 제출기관과 제출일시를 적습니다.
- ④ 주제안자: 제안 수립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으로서, 공동 제안자와 기여도가 동일할 경우 제안자 간 합의 를 통해 결정한 후 적습니다.
- ⑤ 공동제안자: 공동으로 제안을 수립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 ⑥ 처리 결과 통보방식: 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통보받을 수단을 결정해 ✓ 표시하고, 표시한 수단의 세부 연락처를 적습니다.
- ⑦ 현황과 문제점: 제안 내용과 관련된 행정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⑧ 개선방안: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⑨ 기대효과: 개선방안을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효과를 적습니다.

210mm×297mm[보존용지 70g/㎡]

[별지 제2호서식]

구민제안 접수증

접 수 구 분	☐ 자유제안 ☐ 공모제안		
접 수 번 호		접수일자	
제 안 제 목			
성 명		주 소	
제안서의 보완사항			
위와 같이 귀하의 구정에 대한 제안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민제안 담당부서¹⁾ 구민제안 담당자 (인)			

1) 검단구청 조직 구성 후 구민제안 담당부서명 기입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무원 제안 규칙안

1. 제안이유

2026. 7. 1. 검단구 출범으로 인한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나. 제안의 제출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8조)
- 다. 제안의 심사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3조)
- 라.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19조)
- 마.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승계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 바. 채택제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21조~2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인천광역시 검단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무원 제안 규칙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계발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구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무원 제안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공무원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 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구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제안자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6. “자체우수제안”이란 구청장이 채택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여 인천광역시장에게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7. “중앙우수제안”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체우수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제2장 제안의 제출 등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의 제안서를 연중 수시로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

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을 실물로 제작한 경우에는 이를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공무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제안의 접수) ① 제출 받은 제안이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② 접수된 제안 중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으면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8조(제안의 보완)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으면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보완기간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3장 제안의 심사

제9조(심사기준 등)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장에게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조회 등) ① 구청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부서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청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 ③ 제1항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불채택제안의 재심) 구청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1조의 관리 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의 결정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3. 제안 실시성과의 평가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사람(이하 “실시자”라 한다)의 기여도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규칙심의회가 이를 대행한다.

-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장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 등

제14조(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으로 구분하고,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제안심사에 참가한 심사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로 결정한다.

③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표창하거나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15조(부상금의 지급) ①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예산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안자와 제10조제3항에 따른 실시자가 다른 아이디어제안의 경우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1. 금상: 하나의 제안당 7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2. 은상: 하나의 제안당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3. 동상: 하나의 제안당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4. 장려상: 하나의 제안당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5. 노력상: 하나의 제안당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② 구청장은 채택되지 아니하거나 창안등급을 받지 못한 채택제안의 제안자

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실적가점부여) 구청장은 금상, 은상, 동상의 제안자에게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2에 따른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2명 이상의 공동제안의 경우 실적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17조(인사상 특전)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출한 공무원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금상: 특별승급(1호봉)

2. 은상 및 동상: 희망부서 전보

② 2명의 공동제안의 경우 주제안자 1명에 한정하여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며, 3명 이상 공동제안의 경우 인사상 특전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제안과 관련하여 다른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8조(상여금 지급)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로써 제안자와 실시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구 수입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5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③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에 이를 반영하여 지급한다.

④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지정한 사람 및 상속인의 순서로 지급한다.

⑤ 인사상 특전을 받은 제안자는 상여금을 지급 할 수 없다.

제19조(그 밖의 보상) ① 구청장은 제안의 전시 등에 필요하여 제안자에게 시험 제품을 제작토록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금상, 은상, 동상의 수상자에게 가족 중 본인 외 1명의 산업시찰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5장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승계 등

제20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승계 및 보상)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성질상 구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특허법」에 따른 직무발명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른 직무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

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6장 채택제안의 사후관리

제21조(관리기간) ① 채택제안은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 부터 2년간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 채택제안이 채택 결정된 후 제22조에 따라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경우 그 수정·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관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22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불채택제안의 활용) 구청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제안을 홍보하여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실시의 권고)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25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채택제안의 소관 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의 실시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소관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 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수입 증대: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④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6조(실시성과의 평가방법) ①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구 수입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려면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는 공제하여야 한다.

②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조건의 개선
5.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7장 보칙

제27조(제안관리기록부) ① 구청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 제안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상여금지급 기준액표(제18조제2항관련)

지 급 대 상		상여금 지급기준액
예산 절감	1,000만원 이하	상여금=예산절감액×30/100
	1,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상여금=(예산절감액-1,000만원) ×20/100+300만원
	1억원 초과	상여금=(예산절감액-1억원) ×10/100+2,100만원
구 수입 증대		수입증대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지급
행정 개선		·수 :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 ·우 :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미 : 500만원 미만

(제1쪽)

(제2쪽)

① 제 안 제 목	
② 제 안 종 류	
③ 개 요	
④ 현 및 문 제 점	
⑤ 개 선 방 안 (개 선 내 용)	
⑥ 기 대 효 과 (개 선 성 과)	■ 성과가 나타난 일자(실시제안) :
⑦ 조 치 사 항	■ 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지원() ■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기관 협의() ■ 기타()

< 작 성 요 령 >

- 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 ② 제안종류 : 아이디어 제안, 실시제안 및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 ③ 개 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 ④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 ⑤ 개선방안(개선내용) : 아이디어·공모제안→개선방안, 실시제안→개선내용 기술
- 해당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 ⑥ 기대효과(개선성과) : 아이디어·공모제안→기대효과, 실시제안→개선성과 기술
- 아이디어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 ⑦ 조치사항 : 해당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기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별지 제2호서식)

재심요청서

수신 :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제안제목 :

접수번호		제안종류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일자	
성명		소속		직급(직위)	

<재심요청 사유>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무원 제안 규칙」 제10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²)

(별지 제3호서식)

(제1쪽)

제 안 추 천 서

수 신 : 인천광역시장

제안제목 :

제 안 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급(직위)		
	기여도(%)			E - m a i l		
	전화번호	(휴대폰 :)		팩스번호		
공 동 제 안 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급(직위)	기여도(%)	
실시자						
제안 심사 결과	창 안 등 급				부 상 금	
	인사상 특전				표창구분	
	추 천 의 건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무원 제안 규칙」 제3조제6호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인)

- 붙임자료 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 (※ 아이디어제안만 해당)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그 밖에 참고자료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²)

(제2쪽)

① 제 안 제 목	
② 제 안 종 류	
③ 개 요	
④ 현 황 및 문 제 점	
⑤ 개 선 방 안 (개 선 내 용)	
⑥ 기 대 효 과 (개 선 성 과)	■ 성과가 나타난 일자(실시제안) :
⑦ 조 치 사 항	■ 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지원() ■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기관 협의() ■ 기타()

< 작 성 요 령 >

- 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 ② 제안종류 : 아이디어 제안, 실시제안 및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 ③ 개 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 ④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 ⑤ 개선방안(개선내용) : 아이디어·공모제안→개선방안, 실시제안→개선내용 기술
- 해당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 ⑥ 기대효과(개선성과) : 아이디어·공모제안→기대효과, 실시제안→개선성과 기술
- 아이디어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 ⑦ 조치사항 : 해당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기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별지 제4호서식)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	
제안제목	
실시기관·부서	
실시자	
실시시기	
실시내용	
기대효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 발생 여부 등)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²)

(별지 제5호서식)

제 안 실 시 평 가 서

수 신 :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제안제목 :

제안종류				관리번호			
채택연도				창안등급			
제 안 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급 (직위)		기여도(%)	
공 동 제 안 자	성명	생년월일		소 속		직 급(직위)	기여도(%)
실시자							
보상	인사상 특전				부상금		
제안 평가	최초실시일자				효과측정기간		
	효 과	구분	·예산절감() · 구 수입증대() ·행정개선()				
		금 액 또는 개선실적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무원 제안 규칙」 제25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소관 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²)

(별지 제6호서식)

(제1쪽)

제 안 관 리 기 록 부					
제안제목					
제안종류				관리번호	
채택연도				창안등급	
제 안 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급(직위)		
	기여도(%)		전화번호		
공동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급(직위)		
	기여도(%)		비 고		
실 시 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급		
	기여도(%)		비 고		
제안개요					
시상 및 보 상	포상종류		인사 특전 부여	종류	
	부상금			일자	
제안실시	실시일자		실시근거		
	실시여부	완전실시 () 일부실시 () 수정실시 () 실시불가 ()			
	실시내용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m²)

(제2쪽)

실시성과 평 가	측정기간	예 산 절감액	구 수입증대액	행정개선 효 과
	~			
	~			
	~			
	~			
상 여 금 지 급	예산절감액		구 수입증대액	
	행정개선 효 과			
	상여금 지급액		지급일자	
권리승계	종 류	특 허 ()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일	
	등록번호		등 록 일 자	

관계 법령 발췌

☐ 지방공무원법

제78조(제안제도) ①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운영 개선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둔다.

②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개정 2015.10.30)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개정 2015.10.30)
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및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사람(개정 2015. 10.30)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2(실적 가산점) ① 임용권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평정 대상기간 중 탁월한 근무실적 또는 공헌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실적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6. 5. 19., 2020. 9. 10.>

② 삭제 <2020. 9. 10.>

[전문개정 2013. 1. 18.]

□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

1. 10. 19., 2024. 11. 12.>

1. “직무발명”이란 국가공무원과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국가공무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국가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국가공무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2. “발명기관의 장”이란 직무발명을 한 당시 그 국가공무원등이 소속된 기관의 장을 말한다.

3.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이란 이 영에 따라 국가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을 말한다.

4.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매각

나.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다.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 「실용신안법」 제28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97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이하 “전용실시권”이라 한다)의 설정 또는 「특허법」 제102조, 「실용신안법」 제28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99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이하 “통상실시권”이라 한다)의 허락

라.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5. “처분수입금”이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또는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6.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국가공무원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6조(직무발명의 국가승계) ① 제5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발명기관의 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국가승계 여부를 결정하고, 국가승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국가공무원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8. 8. 28., 2021. 10. 19., 2024. 11. 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명기관의 장은 신고받은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에 대하여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 간 합의가 있거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국가승계 여부에 대한 통지를 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19.>

③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 국가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 <신설 2021. 10. 19.>

④ 국가승계하는 권리에선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등이 포함된다. <신설 2021. 10. 19., 2024. 11. 12.>

⑤ 삭제 <2024. 11. 12.>

[전문개정 2010. 7. 26.]

[제목개정 2021. 10. 19.]

제16조(등록보상금) ① 특허청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예산 등을 고려하여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4. 11. 12.>

1. 특허권: 각 권리마다 50만원
2. 실용신안권: 각 권리마다 30만원
3. 디자인권: 각 권리마다 2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하여야 한다.

☐ 공무원 제안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7. 26., 2021. 10. 19.>

1. “공무원제안”이란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국가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삭제 <2023. 8. 1.>

3. “채택제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접수한 공무원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4. “자체우수제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국방·군사에 관한 제안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추천한 것을 말한다.

5. “중앙우수제안”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체우수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제3조(공무원 제안 제도의 관장 기관)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 지도·확인·점검, 공무원 제안 제도의 개선 및 중앙우수제안에 관한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17. 7. 26.>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무원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무원제안의 제출 등

제5조(공무원제안의 제출) ① 모든 공무원은 제안 내용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무원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

② 공무원제안을 제출하려는 공무원은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공무원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④ 둘 이상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제안의 경우에는 공무원제안의 주된 내용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공무원제안의 접수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공무원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공무원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4. 14.>

1.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

2.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접수한 공무원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공무원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공무원제안이 우선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안자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제안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4.>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공무원제안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해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제안에 대해서 종결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 4. 14.>

제6조의2 삭제 <2023. 8. 1.>

제3장 공무원제안의 심사 및 우수제안의 결정

제7조(공무원제안의 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접수한 공무원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별 공무원제안 심사위원회(이하 “기관별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13조제3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를 하거나 제14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의 결정을 할 때에는 기관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4. 14., 2023. 8. 1.>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기관별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전체 구성인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 구성해야 한다. <신설 2020. 4. 14.>

제8조(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허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견 조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신에 걸리는 기간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할 때에는 제안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채택제안의 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공무원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 <개정 2023. 8. 1.>

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재심사 요청)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제안이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 증대 등의 성과가 예상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제9조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
2. 제14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무원제안의 재심사 결정 및 실시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2조(공무원제안의 보완·개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무원제안에 대하여 토론,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이하 “국민참여 플랫폼”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해당 공무원제안을 보완·개

선할 수 있다.

1.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인 경우
2. 채택제안 중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의 재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제23조에 따른 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해당 공무원제안을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제11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공무원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2.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을 제12조에 따라 보완·개선하여 실시하려는 경우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공무원제안을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그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안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제안이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후 해당 공무원제안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가 실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4. 14.>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해당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실시내용이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포상을 하거나 부상(副賞)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4. 14.>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해당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실시내용이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다르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제안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 4. 14.>

제14조(자체우수제안의 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우수제안(국방·군사에 관한 제안은 제외한다. 이하 제15조까지 같다)을 결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제15조(중앙우수제안의 심사 및 결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고, 자체우수제안을 추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1. 11. 30.>

1. 제1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자체우수제안을 추천받은 경우
2. 제29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나 교육감으로부터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한 제안을 추천받은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는 경우 심사기준 및 의견 조희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는 때에는 「국민 제안 규정」 제17조에 따른 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제4장 시상 및 보상

제16조(채택제안의 시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개정 2020. 4. 14.>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무원제안 또는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제안(이하 “국민제안”이라 한다)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무원제안 또는 국민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제17조(중앙우수제안의 시상) ① 중앙우수제안의 창안 등급은 금상·은상·

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하며, 각 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시상을 하지 아니한다.

②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에게는 「국가공무원법」, 「상훈법」, 「정부 표창 규정」 또는 「모범공무원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장·포장 수여 또는 표창을 하거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개정 2017. 7. 26., 2023. 8. 1.>

1. 금상: 하나의 공무원제안당 500만원 이상 800만원 이하
2. 은상: 하나의 공무원제안당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3. 동상: 하나의 공무원제안당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4. 장려상: 하나의 공무원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④ 3명 이상이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안자의 수를 고려하여 부상 금액의 상한을 제3항 각 호의 2분의 1까지 높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상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1. 제안자가 지정한 자
2. 상속인

제18조(인사상 특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출한 공무원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국가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

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주제안자 1명만을 특별승급의 대상자로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안자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제29조제1항에 따라 지방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교육감을 말한다)에게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4., 2021. 11. 30.>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결정된 공무원제안이 시행되어 국가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제1항에 따라 특별승급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제안의 실시 실적을 확인하고 특전 부여 대상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제안자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의회의 의장이나 교육감에게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절약하는 등 지방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

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하고, 협의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의 실시 실적을 확인하고 특전 부여 대상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제안자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 4. 14., 2021. 11. 30.>

제19조(상여금의 지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안자와 그 제안을 실시한 공무원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1. 제안 실시로 예산 절감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 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 실시로 행정 업무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 지급액은 제24조에 따른 실시 성과의 측정 결과를 근거로 하되,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20조(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공무원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1. 제안자가 지정한 자
2. 상속인

제21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우수기관이나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0. 4. 14.>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채택제안으로 제1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은 공무원은 제외한다. <신설 2020. 4. 14.>

제22조(보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안의 전시(展示) 등을 위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험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에 든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1. 1. 5.>

제5장 공무원제안의 사후 관리

제23조(관리기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실시 성과의 측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따라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의 증대의 성과가 있는 경

우 그 성과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 업무의 개선 성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
· 우 · 미 · 양 · 가로 측정한다. <개정 2017. 7. 26.>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 및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및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 및 근무조건의 개선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예산 절감 금액 또는 국고·조세수입이 늘어난 금액을 측정할 때에는 회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제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경비를 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시 성과의 측정기간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제25조(확인·점검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의 처리 상황과 운영 실태를 매분기 1회 이상 확인·점검하고, 그 확인·점검 결과 공무원제안의 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0. 4. 14.>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도의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 실적과 공무원제안의 실시 결과 등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0. 4. 14.>

③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을 총괄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매분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서 처리된 공무원제안의 처리 실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 4. 14.>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제안 채택 실적, 채택제안의 실시 실적, 제안자에 대한 시상 및 보상 내용 등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0. 4. 14.>

제6장 공무원제안의 활성화

제26조(공무원제안의 발굴 노력)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원 제안 제도에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무원제안의 접수, 심사 방법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제안자가 공무원제안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참여 플랫폼을 공무원제안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27조(공무원제안 정보의 공동 활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의 심사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이 접수한 공무원제안의 제목, 내용, 제안자, 접수 일시, 채택 및 시상 여부 등 공무원제안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28조(우수한 공무원제안의 확산)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채택한 공무원제안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에 그 공무원제안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1.>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언론매체,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체우수제안이나 중앙우수제안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신설 2022. 7. 11.>

제7장 보칙

제29조(지방공무원에 대한 준용) ① 지방공무원은 이 영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가 행정사무에 관한 제안을 제안 내용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 우수한 제안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회의의 의장 또는 교육감은 채택한 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한 지방공무원의 제안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3. 8. 1.>

제30조(국방·군사에 관한 공무원제안의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국방·군사에 관한 내용의 자체우수제안을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국방·군사에 관한 중앙우수제안의 심사와 채택 여부의 결정 및 시상은

국방부장관이 한다. 이 경우 심사의 기준, 의견 또는 자료 제출, 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시상 등에 관하여는 제15조(같은 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조제1항 및 제8조를 포함한다) 및 제17조를 준용하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방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7. 7. 26.>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결정하거나 포상 등 시상을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부칙 <대통령령 제27764호, 2017.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원제안의 심사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접수된 공무원제안부터 적용한다.

제3조(채택제안의 결정 통지 및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접수된 공무원제안부터 적용한다.

제4조(인사상 특전 및 상여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18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채택된 공무원제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9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채택된 공무원제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제20조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지방공무원의 국가 행정사무 제안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방공무원이 국가 행정사무에 관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국방·군사에 관한 공무원제안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접수된 공무원제안부터 적용한다.

제7조(실시제안에 관한 경과조치) ① 공무원은 종전의 제2조제3호에 따른 실시제안을 2017년 5월 31일까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시제안의 제출방법·접수·심사·채택·포상 및 인사상 특전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국가 승계 및 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조제5호에 따른 채택제안으로서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국유특허권으로 등록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국가 승계 및 보상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24조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3호 중 “「공무원제안규정」”을 “「공무원 제안 규정」”으로 한다.

②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 중 “「공무원제안규정」”을 “「공무원 제안 규정」”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2호 중 “「공무원제안규정」”을 “「공무원 제안 규정」”으로 한다.

③ 예산성과금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공무원제안규정」”을 “「공무원 제안 규정」”으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무원 제안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공무원제안규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0>까지 생략

<101> 공무원 제안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제5호, 제3조,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1호, 제14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21조, 제22조, 제24조제2항제5호,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 제29조제2항·제3항, 제30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02>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615호, 2020. 4.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복 제안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접수되는 반복 제안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모제안의 모집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모집하는 공모제안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무원제안의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실시하는 재심사 및 자체우수제안의 결정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074호, 2021. 10. 19.>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 제안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

정」”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172호, 2021. 11. 30.>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 제안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교육감”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회의 의장이나 교육감”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교육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교육감”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회의 의장이나 교육감”으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대통령령 제32788호, 2022. 7. 11.>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650호, 2023. 8.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 제5조제1항, 제6조의2 및 제9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관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공무원제안의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재심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무원제안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무원제안이 접수된 경우 및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공모제안을 모집 중인 경우에는 제2조제2호, 제5조제1항, 제6조의2 및 제9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총칙(안 제1조~제13조)
- 나. 소송결과의 조치에 대한 사항(안 제14조~제24조)
- 다.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사항(안 제25~제2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과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수행 절차와 업무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송"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구"라 한다) 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당사자나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헌법재판소 관할심판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2. "소송수행자"란 국가소송, 행정소송, 헌법재판소 관할심판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대리인"이란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헌법재판소 관할심판, 직무관련사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서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사건에 있어 대리인을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수행자 등"이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를 말한다.

5. "직무관련사건"이란 구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전출 및 퇴직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하며, 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말한다.

제3조(소송의 주관) ① 모든 소송사건은 소송업무 총괄부서(이하 "소송총괄부서"라 한다)의 장의 지휘, 통제를 받아야 하며 법무담당이 총괄한다.

② 모든 소송사건은 사건 내용을 관장하는 소관 부서(이하 "소송수행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소에서도 담당할 수 있다.

제4조(소송서류의 취급) ① 소송 관계서류를 접수한 문서취급 부서에서는 타 문서에 우선하여 법무담당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② 소송 관계서류가 착오 분류되어 접수된 부서에서는 즉시 법무담당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5조(소송제기의 요청) ① 구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제소이유서 1부
2. 소송 목적물의 표시
3. 소가 및 당사자 표시
4. 경위서
5. 증빙서류
6. 그 밖에 참고사항

② 사업소장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소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제소결정) 소송제기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1. 소의 이익 및 승소 가능성 여부
2. 당사자 적격 여부
3. 증거자료 조사
4. 고문변호사의 의견

제7조(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선임) ① 구청장은 제소·응소 등의 소송수행 결정 시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소속 공무원이 대리인인 경우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민사 합의사건 및 민사소송규칙 제15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민사 단독사건은 소송고문 변호사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본항 전단에 해당하지 않는 민사 단독사건 또는 행정소송은 소속 직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

야 한다.

③ 민사 단독사건(단, 민사소송규칙 제15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건은 제외) 또는 행정소송이라 할지라도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송고문 변호사에게 소송 수행을 위임할 수 있다.

④ 소송위임 또는 수행자지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임장을 교부하거나 수행자 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위임장
2.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위임장
3. 소송수행자: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

⑤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법률적 배상책임이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공제규정에 따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소송대행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소송수행자 등의 직무) ①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변론기일 출석 및 변론
2. 답변서 및 준비서면 작성제출
3. 증거자료 제출
4. 선고내용 특히 가집행 부여 부분에 대한 정확한 보고
5. 그 밖에 위임장이 위임된 사항과 수시로 수임 또는 지시받은 사항

항

6. 제9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소송담당자를 두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송담당자의 직무

②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 상황을 수
시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소송 진행 상황
2. 소송진행상황보고(별지 제7호서식)
3. 소송 진행 중 새로 야기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점
4. 패소 사건에 있어서는 패소의 내용, 원인과 상소에 대한 의견
5. 선고사건 상대방의 상소여부 확인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9조(소송담당자의 지명) ① 구청장은 소송이 제기되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송담당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지명된
소송담당자는 소송업무에 임해야 한다. 다만, 소속공무원이 소송수
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소송담당자는 부서의 담당 공무원(팀장) 중에서 지명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을 함께 지명할 수
있다.

③ 소송담당자에게 지명장(별지 제5호서식)을 교부하고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소송담당자의 직무)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보좌하며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증거 자료의 조사, 수집 및 제출
2. 소송진행상황보고(별지 제7호서식)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담당자는 해당 소송사건 담당에 있어 소송총괄부서의 장의 지시를 받으며 소송업무 수행상 일차적 책임을 진다.

제11조(피소된 소송사건의 착수) ① 피소된 소송사건의 응소 여부는 소장의 면밀한 검토와 관계 증거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준비서면, 답변서 등 소송자료는 사안에 따라 결정 작성하되 사건의 핵심과 쟁점의 입증 또는 반증에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조사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제3자적인 피소사건) 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 직접 구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을 선임 또는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소송수행자 등은 항상 사건내용 및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구와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소송대리인을 선임 또는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수행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반소제기) 피소된 사건에 있어 그 원인 행위가 상대방의 행위

와 합성되어 반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소의 예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장 소송결과의 조치

제14조(선고 결과에 대한 조치) 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 등은 선고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즉시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사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특히 가집행 부여 부분에 대해서는 가집행정지신청 여부를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판결문) 판결문을 접수한 소송수행자 등은 즉시 판결내용을 발췌하여 상소 여부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6조(승소판결에 대한 조치) ① 이행판결 등에 있어서 구가 승소하였을 때에는 즉시 판결주문에 의하여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확정판결 주문에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케된 때에는 즉시 그 비용을 추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추심할 비용액이 소액이거나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기할 수 있다.

제17조(상소)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백히 하여 방침 결정을 득하여야 한다.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산출근거를 정확히 분석하여 불복의 정도와 대비하여 상소하여야 한다.

제18조(응소 및 상소의 포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 응소 및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응소 및 상소하여도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때
2.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될 때

제19조(패소판결에 대한 조치) ① 패소 판결의 이유가 제도의 결함으로 기인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그 시정 및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건 중 그 원인규명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감사부서에 통보하여 그 원인 행위자인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토록 하고 구상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부서에 통보하여 구상토록 하여야 한다.

제20조(구상권 행사) ① 피소사건에 대하여 손해 배상금 지급이 확정되어 대위 변상한 경우, 소송수행부서에서는 그 원인 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사고등 손해배상금 지급이 확실시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늦어도 1심 판결 전에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상권을 행사함이 타당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원인 행위자인 공무원과 그 재정 보증인을 상대로 구상의 소를 제기하고 그 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원인 행위자인 공무원 또는 그 재정보증인이 변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④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포기방침을 득하여야 한다.

제21조(임의 변제) ①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가집행 선고부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 전이라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대방에게 임의 변제할 수 있다.

② 임의변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 임의변제 청구서(별지 제8호서식)
2. 판결문 사본(확정된 사건은 판결확정증명서)
3.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별지 제12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제22조(소송비용 회수) ①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관할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행정소송: 승소 판결(상대방 소취하 등 승소간주 종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송비용 회수·포기 여부를 작성한 검토의견서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하고, 법무부장관의 소송비용확정 승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2. 민사소송: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②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을 통보받은 때에는 소송수행부서에서는 지체 없이 징수 결정하여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납부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소송비용에 관한 담보제공이 있었던 사건이 확정된 후, 구가 소송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담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제23조(소송비용 회수의 포기)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법률 지식의 부족 등의 사유로 구청장 등을 피고로 잘못 지정한 경우
2. 상대방의 경제적 자력이 매우 낮은 경우(다만, 상대방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3.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회수되는 소송비용이 적은 경우
4.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곤란한 경우

제24조(소송결과에 대한 징계 조치)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피소된 사건에 대하여 그 원인을 밝혀 공무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소송사건 수행 중 소송수행자 등으로 지정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구에 불리한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5조(소송수행 유공자에 대한 포상) ① 소송사건 수행에 있어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 또는 표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포상 또는 표창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장 직무관련사건

제26조(수행절차) ① 직무관련사건 업무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건에 한하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필요한 경우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확약서(별지 제10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직무관련사건과 관련한 사건 수행의 처리절차는 소송사건의 처리절차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민사소송 대리인에게는 소송위임장(별지 제1호서식)을 교부하고, 형사사건의 대리인에게는 변호인 선임 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를 교부한다.

제27조(수임료) 직무관련사건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에 대한 수임료 지급기준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법률 및 소송 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와 같다.

제28조(비용회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직무관련사건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에게 지급된 소송비용 일체를 해당 공무원 등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1. 형사사건 :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민사소송 :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직무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해당 공무원등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 비용보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변호인 선임과 관련한 금액은 즉시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소 송 위 임 장

사 건 : 법원 호 「 」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대하여 아래 수임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다음 권한을 수여합니다.

수 임 인 : 변호사 ○○○○

주소

연락처

1. 위 사건의 소송을 위한 일체의 권한 및 공탁 또는 공탁금 청구에 관한 일체의 권한
2. 「민사소송법」 제90조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일체의 권한

년 월 일

위임인 : 피 고 인천광역시 검단구 (인)

(☎)

○○○○법원 귀중

[별지 제2호서식]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1. 사 건 :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2. 당사자

원 고 :

피 고 :

3. 소송대리인 : 인천광역시 검단구 ○○과
○○담당 ○○○, 주무관 ○○○
☎: 000-000-0000, fax: 000-000-0000

위 사건에 원고(피고)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소송대리인으로 인천광역시 검단구 ○○과에 근무하는 ○○담당 ○○○, 주무관 ○○○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아래와 같이 위임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 사건의 소송을 위한 일체의 권한 및 공탁 또는 공탁금 청구에 관한 일체의 권한
2. 민사소송법 제90조 제1, 2항에 관한 일체의 권한

년 월 일

위임인: ○고 인천광역시 검단구 (인)

위 법률상 대표자 구청장 ○○○

○○○○법원 귀중

[별지 제3호서식]

소송수행자 지정서

사 건 : 법원 호 「 」
원 고 :
피 고 :

위 소송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과 ○○○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합니다.

(☎)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법원 귀중

[별지 제4호 서식]

소송대리인 허가원

1. 사 건 : 법원 호 「 」

2. 당 사 자

- 원 고 :

- 피 고 :

3. 소송대리인

- 소 속

- 성 명

위 사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8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별첨 위임장 첨부하여 위임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원고(또는 피고)

인천광역시 검단구

위 대표자 구청장 ○○○

○ ○ ○ ○ 법 원

귀중

[별지 제5호서식]

지명장

소속 :

직명 : 성명 :

귀 직은 금일부터 다음의 소송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인천광역시 검단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10조에 규정된 직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명하여 아래의 소송담당자로 지명합니다.

사건 : 법원 호 「
원고 :
피고 :

년 월 일

인천광역시검단구청장

[별지 제6호서식]

서 약 서

소직은 아래의 소송 사건에 있어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10조에 규정된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만일 본 직무수행에 추호의 고의나 과실을 범할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사 건 : 법원 호 「 」

원 고 :

피 고 :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직 명

성 명

(서명/인)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청 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소 송 진 행 상 황 보 고

사건번호	법원 호		사 건 명	
원 고			피 고	
수행부서	과 팀		소 송 수 행 자	
변론기일			다음기일	
소 송 진 행 상 황				
구 분	출석여부	주 장 사 항		입증방법
원 고				
피 고				
재 판 부 지시사항				
차기진행 예정사항				
소송수행자 의 견				
첨 부				

[별지 제8호서식]

임 의 변 제 청 구 서

청 구 인 (원 고)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위청구인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원고 , 피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 간의 법원 호
사건에 관하여 원고 등의 승소판결 되었으니 다음 금액을 지급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

구분 당사자명	지방법원	고등법원	청 구 금 액		
	원고명	인용액	원 금	이 자	합 계
계					

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청구서 1부 2. 판결문 사본(확정된 사건은 판결확정증명서) 1부 3.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4. 위임장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5.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별지 제9호서식]

각 서

원고 피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간의 법원 호 청구사건
은 동 법원에서 원고등의 가집행 선고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는바 가집행선고 금
원을 귀구로부터 임의 변제받음에 있어 만일 차후의 판결이 변경되거나 확
정된 판결금액의 본 가집행선고 금액 이하로 감축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즉시
귀구에 반환할 것을 서약하고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원고 성명 인

주 소

위 소송대리인 성명 인

주 소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청 장 귀 하

[별지 제10호서식]

확 약 서

소 속 :

직 급(위) :

성 명 :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무원 ○○○는 직무관련 형사사건(민사소송)에서 비용 등의 지출 및 회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상기 본인은 인천광역시 공무원으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민사소송)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법률지원에 동의하며, 같은 규칙 제28조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 일체를 즉시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중

[별지 제11호서식]

변호인 선임신고서

피 고 인 :

(피 의 자)

사건번호 :

사 건 명 :

위 사건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는 변호사 ○○○○

(주소 )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선임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법원 귀중

〈별지〉 피의자가 다수인 경우

1. 성 명 : (서명/인)

주 소 :

관 계 :

2. 성 명 : (서명/인)

주 소 :

관 계 :

3. 성 명 : (서명/인)

주 소 :

관 계 :

4. 성 명 : (서명/인)

주 소 :

관 계 :

5. 성 명 : (서명/인)

주 소 :

관 계 :

[별지 제12호서식]

임 의 변 제 청 구 위 임 장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지방법원	가(합)	호
위 사람에게	고등법원	나	호
	대법원	다	호
	(원고 : 피고 :)		

사건의 판결액 및 동 금액에 대한 이자액의 청구 권한을 위임합니다.

※ 판결액 및 이자액 수령 권한 위임여부

☐ 위임함

☐ 위임하지 않음

(대리인에게 수령권한이 있을 경우에만 대리인의 예금통장으로 수령 가능)

년 월 일

위임인

성명

(서명/인)

생년월일

주소

인천광역시 검단구 법제 사무처리 규칙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자치법규 등 정비안 작성(안 제2장)
- 나. 자치법규 정비안의 처리 절차 등(안 제3장)
- 다. 법령 및 자치법규의 질의·회시(안 제4장)
- 라. 중요문서 심사(안 제5장)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해당없음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인천광역시 검단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법제 사무처리 규칙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치법규의 정비, 자치법규 정비 심의, 중요문서 심사의 절차와 기준, 자치법규 등의 간행 및 배부·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검단구"라 한다)의 조례, 규칙을 말한다.
2. "자치법규의 정비"란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
3. "중요문서"란 훈령, 예규 등 법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제 사무에 관하여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자치법규 등 정비안 작성

제4조(정비안 제출) ① 주관부서장이 자치법규 정비안을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 정비안: 제정·개정 및 폐지이유, 주요내용, 제정·개정·폐지안, 신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에 한함)

2. 관계법령 발췌문: 정비안 관련 법령 및 법규 조문(관계법령이 없을 경우에는 미첨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조치사항

4. 입법예고 및 그 결과에 대한 문서 사본

5. 방침결정문서 또는 상부기관 표준안 공문 사본

6. 승인, 인가, 합의, 협의, 심의 등의 결과 공문 사본

7.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8. 그 밖에 참고자료(타 기관 비교표, 상급 기관 지시 공문, 그 밖에 정비안 관련 서류 등)

제5조(협의·인가) 주관부서장은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따라 다른 기관과의 협조 또는 상급행정기관의 인가·승인·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안에 대한 최종방침 결정 전·후 인가·승인 또는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제6조(심사범위) 주관부서장으로부터 제출된 정비안에 대하여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은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1. 형식적 심사 : 구비서류와 법규의 체제 및 용어의 적합성과 제5조에서 정한 협의·인가 여부, 입법예고 여부의 그 반영 등

2. 실질적 심사 : 정비의 필요성, 상위법령과 저촉, 이미 다른 조례나 규칙으로 규정 되었는지 여부나 다른 자치법규와 균형 및 필요한 선행절차의 이행유무 등

제7조(반려 등)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은 제출된 정비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반려하거나 3일 이내의 보완 기간을 정하여 반려할 수 있다.

1. 정비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명백히 저촉될 경우

2. 필요한 다른 기관의 협의·승인 등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

3.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4. 기타 정비 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정비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법제자료의 지정 정비 등)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은 자치법규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자치법규의 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 기일을 정하여 정비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결과 통보)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은 정비안에 대한 심사결과(별지 제1호 서식)를 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장은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자치법규 정비안의 처리 절차 등

제10조(조례안의 처리 절차) ① 주관부서에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조례안은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고,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은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안을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부의 안건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구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나 출석 답변을 하여야 한다.

③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은 구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을 즉시 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장은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고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은 이를 인천광역시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재의를 요구할 때에는 주관부서장이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의 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 재의요구안을 확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재의요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공포기일을 감안하여 지체없이 이 사항을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례안 및 재의요구안은 주관부서장이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원본 및 필요한 의회제출부수를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의안 원본은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규칙안의 처리절차) ① 주관부서에서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규칙안은 원본을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이송하고, 이를 인천광역시장에게 사전보고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규칙발의안 원본은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공포안 작성) ①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조례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의견이 없을 때에는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이 전문을 붙인 공포문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②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없을 때에는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이 전문을 붙인 공포문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③ 훈령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주관부서장이 원본을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이송하고,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이 구청장 결재를 받아 발령한다. 이 경우 발의안 원본은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공포 및 발령) ①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은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조례, 규칙 공포문 원안에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②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은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한 직후에 공포문을 공보에 게재토록 하며, 동시에 주관부서장에게도 통보한다.

③ 훈령은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발령한다.

④ 구청장이 구보게재 방법이나 게시판 게시 이외에 신문게재나 방송 등을

통하여 공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제14조(주관부서 조치사항) 주관부서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 이전에 관계공무원의 교육, 공포내용에 대한 관련 기관의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법령 및 자치법규의 질의·회시

제15조(질의방법) ① 법령 및 자치법규(이하 이장에서 "법령"이라 한다)의 집행과 관련되어 주관부서장이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이나 상급행정기관에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
 2. 관계법령이나 해석상의 문제(차이)점
 3. 제2호의 문제점에 대한 해석상 견해 차이를 "갑설", "을설" 등으로 구분하여 각 설의 정당성의 근거
 4. 제3호에 대한 질의자가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의견
- ②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이 참고자료의 요구나 보충설명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주관부서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③ 동장 등이 상급행정기관이나 구 본청으로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서류를 갖추어 구 본청 주관부서장에게 질의하여야 한다.

제16조(질의대상) 주관부서장이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질의할 수 있는 법령해석 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한한다.

1. 2개 국·실·과 이상이 관련되어 이론이 대립되는 법령 해석
2. 주관부서 내에서 이론이 대립되는 법령 해석

3. 기타 주관부서에서 처리할 수 없는 법령 해석

제17조(질의문 반려) ①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의문은 반려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에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질의
2. 법령 등에 명백한 규정이 있음에도 관계 규정을 연구 검토하지 않고 질의한 사항
3. 법령해석과 관계없는 구체적인 사실문제에 대한 해결방법, 대책 및 처리절차 등에 대한 질의
4. 문제의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문제 및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 수습책으로 질의하는 사항
5. 민원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질의하는 책임회피적인 질의
6. 이미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의 회시가 있었던 사항에 관한 질의
7. 상급기관의 장의 회시에 관한 단순한 재질의
8.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결과나 재판에 관한 질의
9. 구비서류 보완이나 보충설명 요구에 불응한 질의
10.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외국 법령에 관한 질의
11. 기타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② 동장 등이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한 질의는 구 본청 주관부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케 한다. 다만, 구 본청 주관부서장의 회시가 서로 다른 경우의 질의는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의 의견을 붙여 주관부서장에게 이송한다.

제18조(외부기관 질의) ① 주관부서장이 고문변호사에게 법령해석에 관한 자문을 받고자 할 경우와 상급행정기관장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이 외부기관 질의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요구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반려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장이 상급행정기관의 장이나 고문변호사로부터 회시를 받았을 때에는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그 회시문 사본을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19조(회시) ①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은 주관부서장의 질의에 대하여 제17조의 반려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의견을 회시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장은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의 회시를 참고하여 구의 최종해석을 확정한다.

② 주관부서장이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의 회시를 받지 아니하고 동장 등에 회시할 때에도 사전에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반려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 및 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동장 등에게 질의에 대한 회시를 하여야 한다.

1. 확실한 법적이론과 결론을 열거한 명확한 회시
2. 법령을 인용할 때에는 질의부서에서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
3. 상급기관에 재질의한 결과를 이첩 시달할 때에는 상급기관 회시문을 첨부

제5장 중요문서 심사

제20조(심사대상)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다음 문서는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훈령·예규문서

2. 그 밖에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

제21조(심사·통제방법) ① 주관부서장은 심사대상 문서를 최종결재 이전에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의 심사를 받는다.

② 주관부서장은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의 심사자료 제시, 보충설명 등 요구에 협조하여야 하며,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이 심사한 결과 별도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2조(심사범위)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은 심사문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형식적 심사로 훈령·예규문서는 발령 형식의 적합 여부
2. 실질적 심사로 근거 법령, 자치법규와 저촉여부, 선행절차의 이행 및 실효성 등 내용의 검토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심사 결과 통보

1. 자치법규명	
2. 심사 의견	가. 정비(안)이 타당함 () 나. 정비(안) 중 일부 수정요망 () 다. 정비(안)이 부당함 ()
3. 정비(안)중 수정 또는 부당 사유	

※ 기재요령

○ 심사의견을 2번란 ()안에 ○표시한다

○ 심사의견을 나항 또는 다항일 경우

- 나항일 경우 : 정비(안)중 3번란 기재

- 다항일 경우 : 부당사유 3번란 기재

[별지 제2호서식]

질의문(예시)

1. 현황

사건이 일어난 경위 등 중요사항을 서술하여야 합니다.

(필요시 일지 형식도 가능)

2. 질의요지(질의의 필요성 등 기재)

가. 첫번째 질문

나. 두번째 질문

다.

3. 해석상의 문제점

가. “가문”에 대하여

1) 갑설 :

2) 을설 :

3) ○○설 · 과(사업소, 동) 의견

○○○한 사유로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나. “나문”에 대하여

(생략)

첨부 : 관계법령 발췌서 및 참고자료

[별지 제3호서식]

회시문(예시)

1. 관련문서

2. 질의요지(생략가능)

3. 회시내용

가. “가문”에 대하여

○○○한 사유로 “갑설”이 타당함.

나. “나문”에 대하여

○○○한 사유로 “을설”이 타당함.

인천광역시 검단구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예산성과금 심의에 관한 사항(제1조~제2조)
- 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3조~제9조)
- 다. 자체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예산성과금의 지급·운영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
6. 기타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예산성과금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예산·회계·세무·감사 및 기술분야 공무원과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직 위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
2.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3.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제4조(위촉직 위원) 소속 직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은 4인이내로 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인천광역시 검단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의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과금지급 신청내용의 타당성·실효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예산절약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이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매년 4월 30일까지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의안이 없을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안건심의 등) ①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위원회에 심의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③ 안건을 심의 의뢰한 실·과·소·동장 등 관계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④ 안건의 심의를 한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심의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내용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자체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계획의 수립·시행,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사업의 확정 및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계획서(별지 제4호서식)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받아 자체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③ 자체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

④ 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성과금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구 본청 실·과장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⑤ 회의는 매년 3월 31일까지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제2항에 의한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격려금 형태의 예산성과금 지급)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른 격려금 형태의 예산성과금 지급은 건당 3백만원 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수당등)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13조(준용) ① 자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10조에 규정된 것 을 제외하고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이 규칙에 규정된 것외에 예산성과금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예 산 성 과 금 심 의 의 료 서

심 의 안 건	
심 의 내 용	
관 계 법 조 문	
심 의 사 유	

인천광역시검단구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운영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소·동장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 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심 의 의 결 서

안건							
일시				장소			
의결사항							
심의사항							
참석위원							
직	성명	심의의견	날인 (서명)	직	성명	심의의견	날인 (서명)

(별지 제3호서식)

심 의 위 원 회 회 의 록

안	건	
심 의 요 구 사 항		
회의 개최 사항	일 시	
	장 소	
	참 석	
	불 참	
	심의내용	
	심의결과	

(별지 제4호서식)

지 출 절 약 및 수 입 증 대 계 획 서

(년도)

(○○ 실과소동)

제 목 (사업명)

1. 현황(추진실태)

2. 목표책정

3. 세부추진계획(개선방안)

4. 기대효과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작성 가능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제48조(예산 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하려면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과 다른 사업에의 사용, 제2항에 따른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3조(예산성과금의 지급·운용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예산성과금의 지급·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54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설치) ①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지급의 심사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담당 실장·국장 또는 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9.>

인천광역시 검단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역 심의 절차에 관한 사항(제3조)

나. 용역과제 관리에 관한 사항(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용역업무의 체계적 처리 및 적정성을 기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용역업무 처리에 관하여는 법령 및 그 밖에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심의절차) ①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해당 부서의 장(이하 “용역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검단구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용역과제 심의안을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 안건을 제출한 용역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는 해당 용역계획을 심의하고 용역의 가부(可否)를 결정하거나 용역 계획의 일부를 조정한다.

④ 용역부서의 장은 제출한 심의안건에 대하여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추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예산부서의 장은 심의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용역사업의 종합적 관리) ① 예산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된 용역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

여한다.

② 용역부서의 장은 용역사업 발주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지하여야 한다.

1. 과업지시 및 수행방식의 필요성
2. 관련법령, 규정, 기준 등의 적합여부
3. 그 밖에 용역사업의 발주시행과 관련한 사항

③ 용역부서의 장은 용역사업 발주시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점검하고 보완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1. 과업지시에 따른 단계별 추진사항
2. 발주계획에 명시된 기준이행 여부
3. 그 밖에 용역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④ 용역부서의 장은 용역사업 발주 후 10일 이내에 용역수행 발주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예산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용역부서의 장은 용역사업이 완료되면 20일 이내에 용역사업 수행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예산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예산부서의 장은 용역부서의 장으로부터 용역사업의 발주 및 완료사항이 통보되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용역업무 관리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용역과제 심의안

구 분		주관부서		일련번호	
심의안건					
제안이유					
주요내용	1. 용역개요 2. 용역의 필요성 3. 주요내용(일정별 추진계획, 용역비 산출근거등) 4. 용역관련 의견수렴 및 사전협의사항 5. 문제점 및 기타사항				
관련법령					
기 타 참고사항					

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심의 요구자 : 실,과,소,동장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심의대장

심의번호	심의일자	제출부서	제 목	심의결과	비 고

(별지 제3호서식)

용역사업발주보고서

용역관리번호		용역부서	
용역사업명			
용역추진기간			
용역완료일			
용역비지출금액			
용역추진과정 확인점검사항			
용역성과품내역			
행정자료실 성과품보존	○ 행정자료실 송부일자 : ○ 행정자료실 보관부수 : ※ 행정자료실 미송부 사유(미송부시)		
용역결과 활용계획			

(별지 제4호서식)

용역사업완료보고서

용역관리번호		용역부서	
용역사업명			
용역발주일		용역완료 예정일	
용역계약방식			
용역계약금액			
용역수행업체			
용역수행기간			
기타사항			

(별지 제5호서식)

용역업무관리부

관 리 번 호	용역등록관리			용역추진관리					용역완료관리			비고
	용역 부서	용역사업명	용역 예정금액	발주일	계약 방식	계약 금액	용역 업체	용역 기간	완료일	지출 금액	성과품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심의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안 제3조)
- 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다. 의안제출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해당없음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인천광역시 검단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의장, 부의장 각 1명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의장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4급 이상 공무원인 각 국장 및 보건소장으로 구성한다.

제3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구청장이 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
3. 구청장이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규칙안
4. 예산안·결산안 및 그 밖에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구청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4조(의장의 임무) ① 의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권한 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의 직제 순에 따른 위원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① 심의회에는 의회 담당 및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소관사무 등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특별히 외부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회의운영) 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가 있을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의안은 원안 가결, 수정안 가결, 부결, 심의보류, 재의요구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제7조(의안제출 등) ① 의안은 소관 업무 부서장의 결재를 받은 후 법무 업무의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소장 등이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소관 업무 부서장이 법무 업무의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안은 법제심사 및 그 밖의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소

관업무 부서장이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서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 등은 소관 업무 부서장이 각 회의 절차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에 조례안 등과 필요한 자료(검토의견서·재의요구서·참고자료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안 의결된 조례안 등은 제외한다.

1. 의회에서 조례안 등이 의결되어 구청장에게 이송된 때에는 법무 담당은 즉시 소관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례안 등을 통보받은 부서장은 조례안 등의 적법,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포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재의 요구서를 함께 작성하여야 한다.

⑤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은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법무 업무의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밖의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항제1호에 따라 조례안 등을 통보받은 각 부서장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발의를 제외한 원안 가결 조례공포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법무 담당은 필요 시 관계부서에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 완료 시에는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상정 의안 목록을 작성하고 상정일자를 확정한다.

⑧ 법무 담당은 제출된 의안을 심의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의장, 부의장 및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제안설명) 의안을 제출한 부서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조례·규칙안의 제

정, 개정, 폐지의 취지와 배경 및 의안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9조(합의) 심의회의 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부서 간에 합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미리 간사에게 통지하고 그 국의 주무과장, 주무담당이 대리출석 할 수 있다.

② 대리출석한 사람은 관계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1조(보충설명) 의안에 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심의결과 처리) ① 심의회에서 원안 가결 또는 수정안 가결된 의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의회에 제출할 의안은 구청장의 결재를 얻은 후 의회에 제출
2. 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 등은 공포하거나 재의요구
3. 규칙안은 사전보고 후 공포

② 부결되었거나 심의가 보류된 의안은 이를 보완하거나 행정 여건의 변화가 없는 한 당초 의안 그대로 심의회에 재부의할 수 없다.

제13조(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법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16포인트 신명조, 진하게-----↓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년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의
결
사
항

24포인트 신명조, 진하게 (가운데 정렬)

인천광역시 검단구 ○○○○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규칙, 훈령, 예규 서식도 이 서식을 사용(일반안건은 표지만 준용)

※ 제정의 경우 ○○안, 전부개정의 경우 전부개정○○안, 폐지의 경우 폐지○○안으로 표시

16포인트 신명조, 진하게 -----↓

제 출 자	○○○○실·과
제출년월일	년 월 일

16포인트 신명조, 진하게 -----↓

법무 업무 부서의 심사를 마칩

인천광역시 검단구 -----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p, 신명조, 진하계)

1. 제안이유 (15p, 신명조, 진하계)

해당 자치법규안을 제안하게 된 목적, 추진배경, 개선방향과 기대효과 등을 기재하되, 내용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함.(7~8행을 넘지 않도록 함)

(14p, 신명조)

2. 주요내용

가. ○○○을 △△△으로 변경하여 xxx을 도모함(안 제○○조)

나. 종전의 ○○○은 △△△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xxx하도록 함(안 제○○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또는 직접 작성 또는 별첨

1)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또는 X년 예산에 X억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또는 0부, 0실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14p, 신명조)

-----일부개정조례안 (16p, 신명조)

인천광역시 검단구 -----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4p, 신명조)

ㄱ.

부 칙

(14p, 신명조, 진하게, 가운데 정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4p, 신명조)

신 · 구조문대비표

(16p, 신명조, 가운데정렬)

현행	개정안

24포인트 신명조, 진하게 ---->

실 · 과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

검 토 구 분		유	무
검 토 사 항	1. 관련 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 성별영향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실 · 과별 의견수렴 결과			
협 의 개 요	실 · 과 별	제 출 의 건	검 토 내 용
○ 기간 : ○ 방법 :			
입 법 예 고 결 과			
예 고 개 요	의 건 제 출 처	제 출 의 건	조 치 내 용
○ 기간 : ○ 방법 :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세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해당 의안 또는 관계 법령 등의 해당조문과 함께 명시)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명시)

나. 추계 결과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결과 제시)

다. 재원조달 방안

(재원분담계획을 포함하며, 재원조달 방안을 수립함에 있어 관련 법령이나 제도상의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연도별 비용을 재정부담주체별, 항목별로 표시)

4. 부대의견

(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용추계서의 활용상 한계 등을 제시)

작성자 : △△국 △△ 과장 ○○○

(전문기관 : △△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년)	2차년도 (년)	3차년도 (년)	4차년도 (년)	5차년도 (년)	계
세 입							
△△△△ △△△△ △△△△							
세 출							
△△△△ △△△△ △△△△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국비						
	시비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조정교부금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검단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호에
해당하는지 표시)

3. 미첨부 사유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 제시)

작성자 : △△국 △△ 과장 ○○○

[별지 제2호서식]

제000회 조례 · 규칙 심의회 의안 목록

☐ 총 건 【조례안 건, 규칙안 건, 기타 심의보고 안건 건】

연번	구분 (조례안/ 규칙안/기타)	의안 번호	제출부서	안건명	비고

<작성요령>

- ① 의안번호는 간사가 의안별 소관부서 직제순으로 등재·부여
- ② 목록기재순서는 조례공포안, 조례안, 규칙안 기타안 순으로 등재하고, 등재순서에 따라 심의

[별지 제3호서식]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 규칙심의회 회의록

일 시	20 . . . () [00:00 ~ 00:00]		장 소	
참석상황	재적 인원(명)	참석 인원(명)	불참 인원(명)	불참 - - -
안 건 및 심의결과				
발 언 자	발 언 내 용			비고
부 구 청 장				
0 0 0 국 장				
0 0 0 과 장				
○ 의결내용 - - -				

[별지 제4호서식]

의안 심의 의결서

[제000회 조례·규칙심의회]

의안 번호	건 명	심 의 의 건				비고
		원안가결 (승인)	수정안 가결	보류	부결 (불승인)	
	이 하	여		백		

0000. 00. 00.

심의위원 (서명)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조례·규칙심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규칙의 제출·제정·개정·폐지 및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이 장에서 “조례·규칙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규칙안
4. 예산안·결산 등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② 조례·규칙심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지사·부시장(부지사 또는 부시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부지사 또는 부시장으로 한다)·부군수·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은 실장·국장 또는 실장·과장으로 한다.

③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법률 및 소송 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자문 및 소송대리에 대한 사항(안 제2조~제3조)

다. 자문료 등에 대한 사항(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법률 및 소송 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법률 및 소송 고문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 법률 및 소송 고문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법률 고문에게 자문을 요청하거나, 자문회의가 필요한 경우 법률 고문 운영 담당부서장의 협의를 거쳐 법률고문의 배정을 받아야 한다.

② 자문요청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법률자문에 대한 결과를 회신받거나, 자문회의가 종료된 때에는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문결과 및 평가표를 작성하여 법률 고문 운영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률 고문 운영 담당부서장은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 별지 제2호서식의 사건실적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소송대리)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구”라 한다)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소송대리인

을 선임할 경우 소송 고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소송수행을 위하여 유사사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사건을 배정하도록 노력한다.

③ 구가 심급별 재판에서 패소하여 상소할 때에는 해당사건의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한 소송 고문을 교체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 고문이 아닌 외부변호사(법무법인 포함)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최근 3년 이내에 구에서 퇴직한 공직자가 외부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의 소속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1. 2개 이상의 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과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재정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사건

제4조(자문료 등) ① 법률 고문에게 지급하는 자문료 및 소송 고문에게 지급하는 소송비용은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② 법률 고문에게는 자문평가결과가 우수한 경우 연간 총 자문료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소송 고문이 아닌 외부변호사(법무법인 포함)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소송비용은 별표를 준용한다.

④ 소송 고문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금액을 초과하는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과 일반 관례 등을 참작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건으로서 기준액이 현저히 과소하다고 인정될 때

2. 소송의 승패에 따라 행정 및 재정상의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으로 인정될 때

제5조(위촉현황 공개)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과 그 밖의 관련 법령에 허용하는 범위에서 법률 및 소송 고문 위촉현황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할 경우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소송비용 및 보수지급기준(제4조 관련)

구 분	지 급 기 준		승 소 사 례 금
	내 용	착 수 금	
신청사건	변론이 없는 경우	200,000원	없 음
	변론이 있는 경우	400,000원	
소송사건	2천만원미만 및 무소가사건	700,000원	1. 전부 승소 시 착수금의 150퍼센트 2. 50퍼센트 이상 승소 시에는 전부 승소 시 금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50퍼센트
	2천만원이상 3천만원미만	1,000,000원	
	3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1,500,000원	
	5천만원이상 1억원 미만	2,000,000원	
	1억원이상 2억원미만	2,500,000원	
	2억원이상 3억원미만	3,000,000원	
	3억원이상 4억원미만	3,500,000원	
	4억원이상 5억원미만	4,000,000원	
	5억원이상	4,500,000원	
	상소심	본안소송 착수금 지급금액	
	환송사건	본안소송 착수금의 1/2이내	
형사사건	개인단독사건	2,000,000원	변호인의 특별한 노력으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사건 종결된 경우에는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착수금의 한도로 구청장이 정하는 특별보수지급
	다수관련사건	3,000,000원	
	구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건	4,000,000원	
기 타	1. 인 지 대 2. 송 달 료 3. 검 증 비 4. 감 정 료 5. 기타비용	실 액 실 액 실 액 실 액	
법률자문료	구 분	지 급 기 준	비 고
	자문료	건당 200,000원	자문에 대한 답변을 받은 경우에 한함
	자문회의	1시간 기준 회당 100,000원 (30분 미만 절사)	법률고문 운영 담당부서와 사전협의한 경우에 한함

1. 소가 5억원 이상은 5억원으로 본다.
2. 착수금은 청구취지가 확장될 경우 그 확장된 소가를 기준으로 한다.
3. 수당, 착수금,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4. 착수금은 심급별로 지급하고, 승소사례금은 확정판결 시에만 지급한다.
5. 직무관련사건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 지급기준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자문 결과 및 평가표(제2조제2항 관련)

1. 법률고문 : ○ ○ ○

2. 자문 결과표

자문일자 (회시일자)	문 의 내 용	회 시 내 용	비고

3. 자문 평가표

평 가 항 목					점 수	
1. 자문의 정확성(20점) : 질의내용에 부합하는 자문이 이루어졌는가?						
매우 그렇다(20) 그렇다(16) 보통이다(12) 그렇지 않다(8) 매우 그렇지 않다(4)						
2. 자문의 유용성(15점) : 자문이 업무추진, 의사결정에 유용하였는가?						
매우 그렇다(20) 그렇다(16) 보통이다(12) 그렇지 않다(8) 매우 그렇지 않다(4)						
3. 자문의 적시성(15점) : 자문의 회신기일이 시기적절하였는가?						
회신기일		5일 이내	7일 이내	10일 이내	13일 이내	15일 초과
점 수		15점	12점	9점	6점	3점

4. 법률자문에 대한 기타의견(자유롭게 기술)

5. 자문 난이도 평가 [법률 고문 운영 부서]

평 가 항 목	점 수
o 자문의 난이도(50점) 	

[별지 제2호서식]

사 건 실 적 부

연번	자문일자	자문부서 (문서번호)	담당자	문 의 내 용	회 시 내 용	회시일자	변호사 성명	평가점수

인천광역시 검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법령 등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나. 납세자보호의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2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인천광역시 검단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시중지 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일정기간 동안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일시 보류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지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3. "시정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절차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고충민원

제4조(고충민원서류의 접수) ①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1호서식

고충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접수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이송 받은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5조(고충민원의 연장통지) 납세자보호관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한연장사유, 처리예정기한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고충민원 처리안내) 민원인이 납세자보호관과 상담 후 고충민원을 접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고충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예정기한, 처리절차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7조(세무부서 의견조회)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서류사본을 첨부하여 세무부서의 장에게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의견서를 작성한 후 당초 처분에 관한 서류사본을 첨부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직권시정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열람)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신청내용과 세무부서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회보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사실을 확인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

1. 세무부서 등의 직원 또는 민원인·관련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질문하는 일

2. 세무부서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 또는 민원인·관련인 등이 소지하는 장부·서류·그 밖의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받는 일

3. 그 밖에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및 상황 등을 확인하는 일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과세자료 열람 및 제출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자료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증빙자료의 수집)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접수 시 처리 담당 세무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집할 수 있음을 민원인에게 알리고 고충민원신청서에 서명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빙자료 중 행정기관 발급자료 및 지방세 전산자료 등을 직접 수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빙자료를 직접 수집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민원인에게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처리결과 통지)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제8조(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열람) 및 제9조(증빙자료의 수집)의 과정 등을 거쳐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

으로 명시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고충민원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고충민원 검토결과에 따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38조에 따른 위원회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심의결과를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수용여부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제11조(조사기간 연장신청) 세무부서의 장은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세무조사 기간연장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연장신청 의견청취 등) ①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간 연장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 종료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기간 연장 여부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9조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세무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세무조사 기간연장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연장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기간연장 최종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기간 연기신청) 조례 제20조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기하려고 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라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연기신청 의견청취 등) ① 세무조사연기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접수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의견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16조(연기신청에 대한 결정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1조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통보서를 세무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세무조사 연기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연기 처리결과 통보서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신청인에게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권리보호 요청

제17조(권리보호요청의 접수) ①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신청서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이송 받은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면 별지 제21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8조(권리보호요청의 연장)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7일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처리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절차) ① 권리보호요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제20조 및 제21조의 과정 등을 거쳐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조례 제24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그 수용여부를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를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권리보호요청 처리 협조)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부서의 장의 의견 또는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27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서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에 대한 검토의견과 필요한 자료를 지체 없이 회신하여 권리보호요청이 신속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사실관계 확인)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 요청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 납세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지방세 관계 법령 등에 위반된 조사 및 재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로부터 조례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 또는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재조사(이하 “위반된 조사 등”이라 한다)임을 주장하는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 등을 참고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사전통지서
2. 세무조사결과통지서
3. 조사계획서
4. 조사이력사항
5. 그 밖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② 세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반된 조사 등의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29호서식의 세무조사 관련 자료요구서에 따라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사 착수 전일까지 위반된 조사 등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 착수 전일까지 위반된 조사 등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 까지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일시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무부서의 장은 세무조사 착수를 연기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착수 후 납세자가 위반된 조사 등임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종전의 세무조사사전통지서 등 관련 서류, 정황 및 지방세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하여 납세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해당 세목에 대한 조사의 일시 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세무부서의 장은 세무조사를 일시 중지하여야 한다.

⑥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처리 결과 및 조치사항을 제19조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또한 그 처리결과를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범칙조사, 세수일실·조세포탈의 여지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로서 세무부서의 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조사 착수 또는 조사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일시 중지를 요청하지 않는다.

⑧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세무조사가 일시 중지된 경우에는 중지된 기간만큼 세무조사기간이 연장된다.

제5장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제23조(기한의 연장) ① 조례 제32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별지 제31호서식(납부기한 연장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만료 3일 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기한의 연장 신청사실을 통보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통보 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납부기한 연장 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해당 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3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

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기한의 연장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가산세의 감면) ① 가산세 감면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가산세 감면신청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가산세 감면신청 접수사실을 통보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5조에 따라 가산세 감면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가산세 감면의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5조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결과(승인여부)를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징수유예 등) ① 조례 제36조에 따라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라 징수유예 신청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 신청 접수사실을 통보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통보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부서의 장은 「지방세징수법」 제27조 및 같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 제공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통보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7조에 따라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납세담보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납세자 보호관에게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7조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 여부를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담보의 제공을 위하여 기간 내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담보 제공 받은 후 지체 없이 통보한다.

제6장 선정 대리인

제26조(선정 대리인 신청) 조례 제41조제2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은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제27조(선정 대리인 지정통지) 조례 제41조제3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지정 결과 통지는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다.

제28조(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조례 제41조제6항에 따른 기록·관리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의 기록·관리명세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충민원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성별 (남, 여)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고충내용	※ 작성할 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고충민원의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자	성명		생년월일		위임자와의 관 계	
	주소				전화번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

연번	접수일	납세자			민 원 내 용	처 리 여 부			비고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처리 결과	결과 통지일	처리 기간	

297mm×210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인천광역시 검단구

수신

(경유)

제목 고충민원 처리기한 연장통지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 규칙」 제5조에 따라, 귀하 (귀 법인)가 ○○.○○.○○ 제출한 고충민원의 처리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 (남, 여)
	주소 (영업소)				
당초처리기간		. . .	처리에정기한	. . .	
기한연장사유					

끝.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4호서식]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수신 ○○과장

(경유)

제목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

「인천광역시 검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충민원이 제기되어 귀 부서의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니 ○○.○○.○ ○까지 당초처분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당해 고충의 내용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시정하고 그 결과를 ○○.○○.○ ○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 (남, 여)
	주 소 (영업소)				
고 충 내 용					

붙임 고충민원서 사본 1부. 끝.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청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18.4.18.)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고충민원 의견 및 처리결과 통보

「인천광역시 검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및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 (남, 여)
	신청일자	. . .	처리일자	. . .	
고충내용 (요 약)					
00과 의 견	검토의견				
	처리결과 (직권시정 하였을 경우)				

붙임 고충민원서류 사본 1부. 끝.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청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6호서식]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수신 ○○과장

(경유)

제 목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아래 민원인으로부터 고충민원이 제기되어 「인천광역시 검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귀 부서의 과세자료에 대하여 열람·제출을 요구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 (남, 여)
	주 소 (영업소)		신청일자	. . .	
고 충 내 용					
요 구 자 료					

끝.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청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서식]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수신

(경유)

제목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

귀하(귀 법인)가 ○○.○○.○○ 제출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4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 (남, 여)
	주소 (영업소)				
민원내용					
처리내용					

끝.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청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8호서식]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수신 ○○과장

(경유)

제목 고충민원 검토(의결)결과에 따른 시정요구

「인천광역시 검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통보하오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 (남, 여)
	주소(영업소)				
고충내용					
시정요구 내용					

붙임 고충민원의결서 1부. 끝.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청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9호서식]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수신 ○○과장

(경유)

제목 고충민원 심의결과 통보

「인천광역시 검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아래의 고충민원에 대한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납 세 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 (남, 여)
	주소(영업소)				
고충민원 내용					
의결 내용					

붙임 의결서 1부. 끝.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청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0호서식]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고충민원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통보

「인천광역시 검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권리보호요청 사항에 대한 결과를 통보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 (남, 여)
	주소 (영업소)				
고충내용					
처 리 결 과	수용여부	여 / 부			
	처리사유				

끝.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청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11호서식]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 제출

「인천광역시 검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납 세 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 (남, 여)
	주소(영업소)				
신청 내용	조사대상 세목				
	당초 조사기간	~			
	연장신청 조사기간	~			
	연장신청 사유				

끝.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청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2호서식]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 접수 사실 통보

「인천광역시 검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 접수 사실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기간연장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 (남, 여)
	주소(영업소)				
신청 내용	당초 조사기간	~			
	연장신청 조사기간	~			
	연장신청 사유				

붙임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 1부. 끝.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청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3호서식]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 목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한 의견 송부

「인천광역시 검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 세무조사 연장 신청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 (남, 여)
	주소(영업소)				
신청 내용	당초 조사기간	~			
	연장신청 조사기간	~			
	연장신청 사유				
검토 의견	연장 여부				
	사유				

끝.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청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4호서식]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사항 통보

「인천광역시 검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아래 납세자가 신청한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해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 (남, 여)
	주소 (영업소)				
신청 내용	당초 조사기간	~			
	연장신청 조사기간	~			
	연장신청 사유				
결정 사항	연장 여부				
	사유				
	연장된 조사기간	~			

끝.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청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5호서식]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처리결과 통보

「인천광역시 검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아래 납세자가 신청한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해 그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 (남, 여)
	주소(영업소)				
신청 내용	당초 조사기간	~			
	연장신청 조사기간	~			
	연장신청 사유				
처리 사항	연장 여부				
	사유				
	연장된 조사기간	~			

끝.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청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6호서식]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신청 접수 통지

「인천광역시 검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 접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 (남, 여)
	주소 (영업소)				
접 수 사 항	당초 조사기간				
	연기 신청기간				
	연기 신청사유				

끝.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청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17호서식]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신청에 따른 의견 제출

「인천광역시 검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 (남, 여)
	주소 (영업소)				
연기신청 기간					
○○과 의견					

끝.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청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18호서식]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수신 ○○과장

(경유)

제 목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보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 (남, 여)
	주소 (영업소)				
신청 내용	당초조사기간				
	연기신청기간				
	연기신청사유				
결정 사항	연기여부				
	연기된 조사기간				
	결정사유				

끝.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청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19호서식]

인천광역시 검단구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 처리결과 통보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 (남, 여)
	주소 (영업소)				
신청 내용	당초조사기간				
	연기신청기간				
	연기신청사유				
처리결과					

끝.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20호서식]

권리보호요청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성별 (남, 여)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권리보호 대상	① 요청기관	② 세무조사	③ 세정행정	④ 체납처분
⑤ 권리보호 요청내용	※ 작성할 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합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 와 같이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고충민원의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 자	성명	생년월일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⑥ 첨부서류	1. 예고 통지서 등 주무서서로부터 통지 받은 서류 2. 권리보호요청 내용을 증명하거나 보완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297mm×210mm(백상지 80g/㎡)

[별지 제21호서식]

권리보호요청 접수 및 처리대장

연번	접수일	납세자			요 청 사 유	처 리 여 부			비고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처리 결과	결과 통지일	처리 기간	

297mm×210mm(백상지 80g/㎡)

[별지 제22호서식]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수신

(경유)

제 목 권리보호요청 처리기간 연장통지

귀하가 ○○.○○.○○ 제출한 권리보호요청 신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처리기간이 다음과 같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 (남, 여)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처 리 기 간 연 장	기간연장	당초기간 :		연장기간 :	
	연장 사유				

끝.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청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23호서식]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수신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

귀하가 ○○.○○.○○ 제출한 권리보호요청 신청서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 (남, 여)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처리내용					
처리사유					

끝.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청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24호서식]

인천광역시 검단구

수신 ○○과장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

「인천광역시 검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통보하오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 (남, 여)
	주소(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납세자 권리침해 행위					
시정요구 내용					

끝.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25호서식]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통보

「인천광역시 검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권리보호요청 사항에 대한 결과를 통보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 (남, 여)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처 리 결 과	수용여부	여 / 부			
	처리사유				

끝.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청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26호서식]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수신

(경유)

제 목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

「인천광역시 검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권리보호요청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 (남, 여)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처리결과					
처리사유					

끝.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청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27호서식]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수신 ○○과장

(경유)

제 목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어 귀 부서의 의견 및 자료를 요청하니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 (남, 여)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필요한 자료 명세					

붙임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신청서 1부. 끝.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청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28호서식]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인천광역시 검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을 송부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 (남, 여)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내용					
○○과 검토의견					

끝.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청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29호서식]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수신 ○○과장

(경유)

제 목 세무조사 관련 자료요구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세무조사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오니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 (남, 여)
	주소 (영업소)				
필요한 자료 명세	1 조사대상세목				
	2 조사대상기간				
	3 조 사 사 유				
	4 기 타				

끝.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청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30호서식]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수신 ○○과장

(경유)

제 목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

「인천광역시 검단구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제5항)에 따라 아래 세무조사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니 세무조사를 일시중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 (남, 여)
	주소 (영업소)				
조사기간			조사대상 과세년도		
조 사 반			조 사 유 형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사유					
세무조사 중지기간					

끝.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청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m²)

[별지 제31호서식]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 접수 통보

「인천광역시 검단구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 (남, 여)
	주소(영업소)				
신청내용	기한연장 대상				
	당초 기한 년 월 일까지	연장을 받으려는 기한 년 월 일까지			
	연장 신청 사유				

끝.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청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2호서식]

인천광역시 검단구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납부 기한연장 신청 접수 통보

「인천광역시 검단구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방세 납부기한연장 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 (남, 여)
	주소(영업소)				

납부기한을 연장 받을 지방세의 내용

주요세목	과세물건(대상)	납부기한	세액	신청금액
연장 받으려는 기한	년 월 일까지			
연장 신청 사유				

끝.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3호서식]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의견 통보

「인천광역시 검단구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의견을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 (남, 여)
	주소(영업소)				
의 건	기한연장 대상				
	결정사유				
	연장 기한	년 월 일 까지(일간)			

끝.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청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4호서식]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의견 통보

「인천광역시 검단구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의견을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 (남, 여)
	주소(영업소)				
의견	승인 여부				
	연장 기한	년 월 일 까지(일간)			
	승인(불승인) 사유				
	분납기한 및 금액	횟수	주요세목	분납기한	분납금액
		1회			
		2회			
		3회			

끝.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청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J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5호서식]

인천광역시 검단구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 기한연장 승인 여부 통지

「인천광역시 검단구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귀하 (귀 법인)의 지방세 ()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 (남, 여)
	주소(영업소)				
통지내역	기한연장 대상				
	당초기한				
	승인여부				
	연장 기한	년 월 일 까지(일간)			
	승인(불승인)사유				

끝.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6호서식]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결과 통보

「인천광역시 검단구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 (남, 여)
	주소(영업소)				
의 건	기한연장 대상				
	결정사유				
	연장 기한	년 월 일 까지(일간)			

끝.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청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7호서식]

인천광역시 검단구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신청 접수 통보

「인천광역시 검단구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신청 내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성별 (남, 여)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신청 내용	사유 발생일		
	감면 등을 받으려는 가산세와 관계되는 세목과 부과연월	세	년 월
	감면 등을 받으려는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	가산세	원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구체적으로 작성하며,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기재))		

끝.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8호서식]

인천광역시 검단구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신청에 대한 의견서 제출

「인천광역시 검단구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 (남, 여)
	주소(영업소)				
감면 여부 의견					
감면(감면불가) 사유					
감면 승인할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		가산세		원	
감면할 가산세와 관계되는 세목과 부과내역		세	년도	월	원

끝.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9호서식]

인천광역시 검단구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등의 결과(승인 여부) 통보

「인천광역시 검단구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등의 결과(승인 여부)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 (남, 여)
	주소(영업소)				
감면 여부(승인 여부)					
감면(감면불가) 사유					
감면 승인된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		가산세		원	
감면된 가산세와 관계되는 세목과 부과내역		세	년도	월	원

끝.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0호서식]

인천광역시 검단구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등의 처리 결과 통보

「인천광역시 검단구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등의 승인에 따른 처리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 (남, 여)	
	주소(영업소)				
감면 처리된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		가산세 원			
감면된 가산세와 관계되는 세목과 부과내역		세	년도	월	원
처리연월일		년	월	일	

끝.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1호서식]

인천광역시 검단구

수신 ○○과장
(경유)

제 목 [] 징수유예등 신청 접수 통보
[] 체납처분유예

「인천광역시 검단구 답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방세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성별 (남, 여)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신청 내용	세목	과세연도	과세번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계	지방세	가산금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받으려는 사유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납부기한 및 분납금액						
	횟수	연도	세목	납부기한	분납금액 (A+B)	지방세(A)	가산금(B)
	1회						
	2회						
	3회						

붙임 신청서 사본 1부. 끝.

인천광역시검단구청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m²)

[별지 제42호서식]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 목 [] 징수유예등 신청에 대한 의견 통보
[] 체납처분유예

「인천광역시 검단구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신청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 (남, 여)
	주소(영업소)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 여부 의견					
승인(기각) 사유					

끝.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청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4호서식]

인천광역시 검 단 구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제 목 [] 징수유예등 처리 결과 통보
[] 체납처분유예

「인천광역시 검단구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라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신청에 대한 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 (남, 여)
	주소(영업소)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처리된 세목과 세액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처리연월일		년 월 일			

끝.

인천광역시 검 단 구 청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인천광역시 검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인천광역시 검단구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청구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접수번호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처분내용	<table><tr><td>연도</td><td>기분</td><td>세목</td><td>부과액</td></tr><tr><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r></table>				연도	기분	세목	부과액																
	연도	기분	세목	부과액																				

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이거나 매출액이 3억원 이하 이고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법인일 것
2. 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검단구 선정대리인의 지정을 신청하며, 인천광역시장의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청구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및 부가가치세 다 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소유 재산의 가액	

■ 인천광역시 검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인천광역시 검단구

수신 (신청인)

(경유)

제목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

○ 신청인 : ○○○ 귀하

1. 인천광역시 검단구 선정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귀하가 '00.00.00. 제출한 「인천광역시 검단구 선정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는 (재산·소득요건 미충족)의 사유로 인천광역시 검단구 선정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인천광역시 검단구 선정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귀하가 '00.00.00. 제출한 「인천광역시 검단구 선정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의 신청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인천광역시 검단구 선정대리인을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 선정대리인

성명		자격	
사무실			
연락처	(전화) , (휴대폰)		

2)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지정내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청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 인천광역시 검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

인천광역시 검단구 선정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번호	청구 일자	사건번호	납세자	청구 세액	신청일	지정일	선정대리인	결정 내용	인용 금액

* 결정내용: 인용(직권취소에 따른 각하, 재조사 포함), 기각, 각하

인천광역시 검단구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투자심사위원회의 목적(제1조)

나.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 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

2.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투·융자사업 관련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에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담당이 되고, 서기는 투자심사업무 담당자가 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제37조의2(투자심사) ② 제①항에 따른 투자심사 실시 주체별 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총사업비, 사업의 유형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4. 11.>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보통징수, 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제5조~제6조)
- 나. 세입징수 결과제출 및 세입마감(제11조~제12조)
- 다. 정리보류 등 (제16조)
- 라. 전문매각기관 신청 및 평가 서식(제19조~제20조)
- 마. 압류재산 인수 인계서 및 매각재산 인수증 서식(제21조~제2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세 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구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구세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세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

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보통징수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 ① 부과부서의 장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구세를 과세할 경우 징수원인·세액·소속연도·세입과목·납세의무자·납부기한·납부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부과결정결의서에 따라 부과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과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결정액 통지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그 결정사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제1항의 부과결정을 한 경우 제2항의 수납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유물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공유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소유 지분
2. 상속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상속 지분
3. 공동사업자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공동사업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지분

④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 ① 부과부서의 장은 구세신고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날짜별로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구금고에서 구세 영수필통지서(수납자료 전산화에 따른 전산파일 또는 전산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지받은 경우 세입계좌의 입금금액과 영수필통지서의 집계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1항

의 수납부에 소인을 하여 지체 없이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제2항의 소인된 수납부를 통지받은 경우 그 수납세액에 대해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납부결정결의서에 따라 결정을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납세고지서의 작성) 법 제12조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전산으로 작성하여 출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 장애 등으로 전산 출력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한 납세고지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소인) 징수부서의 장은 구금고에서 영수필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그 수납사항을 소인하여야 한다.

제9조(납기마감 처리) ① 징수부서의 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미수납자료에 대해 체납부를 작성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고, 해당 체납액이 징수·감액 또는 소멸시효 등으로 납세의무가 소멸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지방세 체납액정리표 관리)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지방세 체납액 정리표를 작성하고,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 조치사항과 체납처분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세입징수 결과제출) 구청장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구

세의 세입징수보고서를 매월 작성한 후 구금고로부터 통지된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인천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제출기한은 5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세입마감) ① 구청장은 매년 12월 15일까지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른 징수결정을 끝내야 하고, 납부기한은 해당 연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납기 전 징수 등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매월의 징수부는 다음 달 20일까지 마감하여야 하고, 해당 회계연도의 징수부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감하여야 한다.

제13조(구세 미수납액의 이월) ① 부과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구세에 대하여는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에 그 체납내역 등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구세 체납액은 시효완성정리하고 제1항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 징수부서의 장은 해당 연도에 부과결정한 구세가 해당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해당 연도의 장부는 마감하여야 한다.

제14조(정리보류 등) 법 제106조에 따른 정리보류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리보류 등 결정결의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정리보류표(갑, 을)에 따른다.

제15조(지난 회계연도 정리보류 취소 시 이월액 정리) 해당 연도에서 지난 회계연도의 정리보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부의 해당 연도 조정액란에 정리보류 취소액과 그 취소에 따라 새로 발생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한 금액을 체납액 이월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정리보류의 사후관리) 정리보류를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리보류를 취소하고 압류 등 채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제17조(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심의요청) 구청장이 구세 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심의를 인천광역시장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조례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한다.

제20조(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 조례 제6조제4항의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는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한다.

제21조(압류재산의 인수·인계서) 영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의 인계·인수서는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한다.

제22조(매각재산의 인수증) 조례 제9조제2항의 인수증은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 부과 ☐ 신고납부 ☐ 감액 ☐ 정리보류 ☐ 시효완성정리		결정결의서	
징수관		발의		년 월 일 (인)	
		징수부 등재		년 월 일 (인)	
분임징수관		납·감액 통지 또는 납세 고지서 발부		년 월 일 (인)	
담당		납액 통지 제 호		년 월 일 (인)	
담당자		납기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세입과목	관	세입연도		년도 세입	
		결정내용	지방세 (가산세 포함)	가산금	계
	항				
		결정액			
결정세액		금 원(W)			
납세인원		시 구 번길 외 명			
적요	년도 월 분 세			수납부	(인)
				등재 환급금	(인)
	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				
※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내역서

[illegible]

※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m²)

(부과·신고납부·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 결정액 통지부

[illegible]

3865

[별지 제3호서식]

세입(부과·신고납부·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 결정액 통지서

제 호

수입금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세입을 부과·신고납부·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 결 발의일 : 년 월 일
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입징수관 (인)

세 목 []세 / 세목구분 [] / 구 []

세입연도	세목	세액			납세인원	납부기한	비고
		지방세 (가산세 포함)	가산금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수납부

과세번호	징수결의일	납기일	수납구분			
과세물건	과표액	과세물건지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납세자명	세목	부과금액	감액	정당세액	은행수납일	수납금액

297mm×210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

징 수 부

회계연도: 년도
결의년월: 년도 월분
제 목:
징수세목:

구분			연 간 목 표 액	월 까지 목 표 액	추 경 목 표 액	조정액		징수액		정리보류액		미수액	징수비율			지방세환급금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 계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 계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 계		대년간	대월간	대조정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 계
총 합계																	
현년도 합계																	
	소계																
		○○세															
		○○세															

297mm×210mm(백상지 80g/㎡)

[별지 제6호서식]

세목별 체납액 정리부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비 고				
부과년월-동-번호-기분		부과일	최초기한일	가산기한일	○○세	○○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총액	체납액계
압류사항	가산횟수	물건			가산세	가산세	가산세	가산세	가산세	가산세계	

364mm×25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서식]

○ ○ 이월 체납액 정리부

○○년도 ○ ○기(월)분

(○ ○ 구)

과세 번호	세 목	지방세	지난년도 가산세 총계	가산세												가산세 총누계	수납인	체납자 주소	과세 물건
																		성명(법인명)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11회	12회			주민(법인)등록번호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57mm×364mm(백상지 80g/㎡)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지방세 체납액정리표												
과세물건				전화번호								
				성명								
상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영업장소												
주소	이전 년 월 일											
주소	이전 년 월 일											
주소	이전 년 월 일											
주소												
세목	연도	납기	과세번호	독촉		체납액						합계
				발부일	납부기한	1차	2차	3차	4차	5차	...	
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						체납자 주소지 약도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체납정리보고			처리전망	조사자
담당자	담당	과장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주거 확인 1. 주민등록 유무 2. 거주사실 유무 3. 행선지 4. 전출구분 : 신고, 무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재산 확인 1. 건축물관리대장 유무 2. 토지대장 유무 3. 차량대장 4. 과세구분자료 : 신고, 직권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생활상태 확인 1. 가옥 : 자가, 전세, 월세 2. 생활상황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여부 3. 기타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재조사 확인 위 사실을 재조사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210mm×297mm(백상지 80g/m²)

[별지 제9호서식]

(앞 쪽)

정 리 보 류 표									
결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담당	과장	국장						
체납자	주소				상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과세 번호	연도	기분	납기	세목	세액			과세물건	
					지방세 (가산세 포함)	가산금	계		
조사결과									
구분	조사내용	조사일	조사자						
			직급	성명	서명				
주민등록지 조사									
재산조사									
허가 및 기타사항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조사자		(담당자)	:	(인)	
							:	(인)	
				확인자		(과 장)	:	(인)	
							:	(인)	

※ 1. 지방세가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서식 (갑)]

(뒤쪽)

정 리 보 류 표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1. 주민등록지 및 거주지 조사	
2. 재산조사	
3. 인·허가사항, 그 밖의 재산은닉 여부조사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서식 (을)]

[illegible]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0호서식]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구서					
심의요구번호			심의요구일자		
체납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연락처 :)			
지방세 체납내역(총 체납액 : 원) (단위: 원)					
세목명	납부기한	체납액			정리보류여부
		본세	가산금	계	
체납요지					
심의청구이유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붙임 : 증명서류 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1호서식]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1)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2) 신청 자격

가. 공고일이 속하는 직전 2년 동안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4 제1항에 따른 예술품 등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연평균 회
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 여부	

제출서류

1. 신청자격 입증서류
2. 매각대행 이행계획서(인적·물적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1항제1호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세 징수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검단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자격 입증서류

[별지 제12호서식]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

사업자명							
구분	평가지표	평가배점					평점
		매우 탁월	탁월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전문성 (50)	1. 인적 전문성 - 감정평가인, 현장경매 전문가 보유현황 등	25~21	20~16	15~11	10~6	5~0	
	2. 물적 전문성 - 작품 전시장, 보관장소, 경매장 등 구비 여부 및 규모	25~21	20~16	15~11	10~6	5~0	
매각업무수행능력 (50)	3. 경매 횟수 등 실적 - 현장경매, 온라인 경매 구분 - 국가기관(또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등 포함)로부터 위탁받아 매각대행한 횟수	25~21	20~16	15~11	10~6	5~0	
	4. 기타 수행능력 - 자본금 등 규모 - 1회 경매가능 규모 등	25~21	20~16	15~11	10~6	5~0	
합 계							

심사위원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3호서식]

인천광역시검단구

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

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5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

채납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압류재산의 표시				
압류일		년	월	일
압류에 관계된 채납액				
세목	과세연도	납부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계	지방세 (가산세 포함) 가산금
채납처분비				
합계				

끝.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청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 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별지 제14호 서식]

매각재산의 인수증

(1) 매수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2) 매도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3) 매각재산 :

(4) 대금 납부일 :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세 징수 조례」 제9조에 따라 위 매각재산을 정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매수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검단구청장 귀하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세징수법

제12조(납세의 고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고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액 중 지방세만을 완납한 납세자에게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제106조(정리보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리보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8.>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삭제 <2022. 1. 28.>
4.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시효완성정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2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를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8.>

[제목개정 2022. 1. 28.]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법 제103조의4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한다. <개정 2024. 12. 31.>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03조의4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으로 인정하여 공보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고한 기관

2. 국세청장이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에 따라 관보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고한 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고한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03조의4제1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1.>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의뢰한 경우 매각 대상인 예술품등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4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에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한 때에는 직접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전문매각기관에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예술품등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 발행한 해당 예술품등의 보관

증을 인도함으로써 예술품등의 인도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⑥ 전문매각기관은 제5항에 따라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인수한 때에는 인계
· 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
품등의 매각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다.

[본조신설 2022. 1. 28.]

□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
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
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특별시·광역시
· 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0조(징수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징수관은 매월 세입징수 보고서를 작성하고, 세입 월계표(月計表) 등 참고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금고 업무의 일부대행) ① 금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금고의 책임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금고 업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遞信官署)
3.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 또는 신용사업을 하는 해당 금융기관의 조합원인 법인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고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금고 업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세 기본조례 시행 규칙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류의 송달부 (제5조)

나. 부과의 취소 및 변경(제6조)

다. 환급금의 처리 및 지급대상자(제7조~제8조)

라. 납세담보의 범위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세 기본조례 시행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세 기본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세(이하 “구세”라고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구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세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

로 본다.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구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세 징수조

레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구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구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 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구세는 구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구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시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구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7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373조의2에 따른 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자본시장법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법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반(등기)우편 송달부

[illegible]

210mm×297mm(백상지 80g/m²)

[별지 제2호서식]

송달부(교부)									
과세번호 납세자명 출력순번 과세물건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납부세액	우편번호 연락처	주소	교부장소	수령인			수령 일자	미교부 사유
					성명	납세자 와의 관계	서명		
누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구분	세목	연도/ 기분	납세의무자		송달지	등기번호	반송일자	반송사유	인수자
			성명	주소					

※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 등 서류명을 기재함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년도 기분 세(서류명 기재) 송달불능부

과세 번호	납세의무자 주소		1차송달		재 송 달			공시 송달 일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등기번호	반송일	송달지	반송사유	반송일	

210mm×297mm(백상지 80g/m²)

[별지 제5호서식]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년도 기분(월분) 세를 다음과 같이 취소(경정)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결 재	담당자	담당	과장	국장

부과취소(경정) 내역

세목	연도/ 기분	당초		취소		경정		차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 (주) 1. 지역자원시설세 등 구세에 병기·부과되는 지방세는 구세 취소·경정 시 함께 결정한다.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

[별지 제6호서식]

지방세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

과세 번호	연도/ 기분	납세의무자		주민(법인) 등록번호	세액(본세)					취소· 경정사유
		성명	주소		세목	당초	취소	경정	비고	

※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서식]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

일련 번호	지방세환급 내역										결재			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								결재			지급필통지사항		
	연도 기분	책 호 번호	세목	지방세환급금			환급대상자		과오납 연월일	사유	담 당 자	담 당 자	과 장	조정 연월일	지방세환급가산금			총당	계좌 경정	명령 번호	지급 명령액	담 당 자	담 장	과 장	일자	수령자	대조자 인
				계	본세	가산 금	성명	주 소							지방세 환급금	지방세 환급 가산금	계										
	월계																										
	연도계																										
	총 누계																										

구분	지방세환급금 결의액	총당액	계좌 경정액	지급명령액 ①	반송분 ②	실지급명령액 ③ = ① - ②	지급 및 통지액 ④	차감미지급액 ③ - ④	결재		
전월까지 누계									담당자	담당	과장
당월계											
연도계											
총 누계											

※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백상지 80g/㎡)

[별지 제8호서식]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

환급금 내역	연도/기분(월)	환급금액	합계	OO세	OO세	OO세	OO세
일련번호	연대납세의무자 주소					동의 (서명·날인)	비고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서식]

지방세환급금 총당 결의서

결재		발		의		년		월		일		(인)										
정수관		정		수 부		등		재		년		월		일		(인)						
과장		지		방		세		환		급		금		년		월		일		(인)		
담당		정		리		부		등		재		년		월		일		(인)				
담당자		총		당		통		지		서		발		부		년		월		일		(인)
		통		지		서		번		호		년		월		일		(인)				
총당금액 (금 원) (₩)																						
세 입 항 목	구분	세입 연도	세입과목				환급금 총액	과오납 연월일	환급자													
			관	항	목	과세번호			주소	성명												
	총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총당액 총액)																					
총 당 내 역	구분	세입 연도	세입과목				미납 총액	총당액	납세의무자													
			관	항	목	과세번호			주소	성명												
	총당 후 미수납(총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																					
적요											수납부정리	(인)										

210mm×297mm(백상지 80g/㎡)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세기본법

제58조(부과취소 및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징수가 위법·부당한 것임을 확인하면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제65조(담보의 종류)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6. 토지
7. 보험에 든 등기되거나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7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 ①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할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② 법 제60조제6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충당은 납세자가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로 한정한다. <개정 2019. 12. 31.>

③ 법 제60조제6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충당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충당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과세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세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에 우선
충당할 것
 2. 지방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에 우선
충당할 것
 3. 납세자에게 같은 세목으로 여러 건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과세번호가
빠른 건에 우선 충당할 것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충당할 지방세환급금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먼저 도래하는 것부터 충당하여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충당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방법 등 필요한 사
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
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
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
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금고 업무의 일부대행) ① 금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금고의 책임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금고 업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遞信官署)
 3.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 또는 신용사업을 하는 해당 금융기관의 조합원인 법인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고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금고 업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83조(설립) ① 회원 상호 간의 업무질서 유지 및 공정한 거래를 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를 설립한다.

- ② 협회는 회원조직으로서의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73조의2(거래소의 허가) 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개설 단위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거래소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매매의 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을 말하되, 증권 중 주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2. 회원(거래소시장에서의 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자로서 제387조제1항의 회원관리규정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자의 범위

② 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 7. 31.>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거래소허가 단위별로 1천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운영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 정관, 회원관리규정·증권시장업무규정·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상장규정·공시규정·시장감시규정·분쟁조정규정, 그 밖의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이 호 및 제373조의7에서 “정관등”이라 한다)이 법령에 적합하

고,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며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충분할 것

6.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7. 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9.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

③ 제2항의 허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5. 28.]

인천광역시 검단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 목적(제1조)

나. 심의 및 평가(제3조)

다. 제안서 접수 등 (제4조)

라. 금고변경 및 해지를 위한 심의·평가(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 및 평가)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조례 제3조의 인천광역시 검단구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한 후 심사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이를 집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심사표 제출시 심의위원별로 서명·제출하여야 하며, 조례 제9조에 따른 심사결과 제출서식은 각 호와 같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심의·평가 결과에 의견을 달리하는 위원이 있을 경우 소수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1. 금융기관 제안서 심사결과(별지 제1호서식)

2. 금융기관 심사결과 집계표(별지 제2호서식)

제3조(제안서 접수 등) 금고지정 주관부서에서는 금고지정 경쟁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례 제8조제1항의 공고사항에 따른 증빙서

류를 각각 첨부한 제안서 10부를 접수하고, 접수증(별지 제3호서식)을 교부한 후 심의·평가시까지 봉인하여 보관한다.

제4조(금고변경 및 해지를 위한 심의·평가)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금고변경 또는 해지 결정을 위한 심의·평가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3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기관 제안서 심사결과

인천광역시 검단구 금고 지정 관련 ()의 제안서 심사결과
에 따라, 총점 점(평균 점)을 획득하였음을 「인천광역시
검단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
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
위 원 장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심사결과
(의 견)

첨부서류

금융기관 심사표 및 집계표 각 1부

금융기관 심사결과 집계표

금융기관명 :

심사기준 \ 위원별								합계	평균
총 계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									
- 국내평가기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안정성)									
-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 대손충당금 적립율(건전성)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자치단체 대출금리									
다. 공공예금 적용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마.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									
3. 주민이용의 편의성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라.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실적 및 계획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등)구축·운영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구와 협력사업계획									
6. 기타사항									
가. 탄소중립 기여도									

금융기관 제안서 접수증

제출인	상 호		성 명	
	주 소			
접수사항	접수일자		접수번호	
	접수내역			
	접수기관	인천광역시 검단구	접수자	
비 고				

간 인

금융기관 제안서 접수증

제출인	상 호		성 명	
	주 소			
접수사항	접수일자		접수번호	
	접수내역			
	접수기관	인천광역시 검단구	접수자	
비 고				

관계 법령 발췌

□ 인천광역시 검단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지정기준) ①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인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이용의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6. 기타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평가한다.

제4조(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와 구의원, 구관계 공무원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로 인천광역시 검단구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되, 민간전문가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로 하고,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하며 위원은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위촉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의 위촉·활동

기간은 위촉 또는 임명된 때부터 금고약정 체결일까지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평가한다.

1.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심의위원회는 금융기관 제출자료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심사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지정절차)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금고지정에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계약만료 4개월 전까지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금고지정 세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등의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심의한 후, 그 심사결과를 금고계약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심의위원회가 제출한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금고계약 기간 만료 5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한다.

제8조(금고의 중도해지 등) ① 구청장은 국내·외 금융시장이 혼란 또는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 또는 금고약정서상 해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인천광역시 검단구 금고 운영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관한 사항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를 평가로, 심의위원회를 평가위원회로 본다.

제10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비과세 및 중과세 대상 관리
(제3조~제6조)

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 및 보통징수(제7조~제8조)

다. 주민세 신고 납부 및 보통징수(제9조~제12조)

라. 재산세 과세대장정리 및 비과세 관리, 물납 및 분납(제13조~제15조)

마. 납세관리인(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세대장 비치)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2장 등록면허세

제3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세 조례」 제4조에 따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을 적용하여 등록면허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

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중과세 대상 관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과세물건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중과세 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등기·등록 후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었음에도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예고를 한 후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과체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없이 보통징수 할 수 있다.

제7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한 후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

제9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

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4장 재산세

제13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1호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

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제14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재산세 비과세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물납 및 분납) 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납세관리인)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에 따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7조(대장 등의 관리) 이 규칙에 따른 대장 등을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작성하여 저장한 경우에는 해당 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

(○○동)

접수 번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과세물건	물건의 소재지	당 초 신 고 내 용				수정신고 및 경정·결정 내용					결 재		
	주 소				일자	세목	과세표준	납부세액	일자	세목	과세표준	납부세액	사유	담당자	담당	과 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미색모조 80g/㎡)

[별지 제2호서식]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처리부

(부동산, 기타 - 년 월)

	납부구분	신 고 일	물건종류	과세표준	결정과세표준	적용세율	등록면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가산세				
		등기등록일					허세	가산세						
고지번호	비과세세액	물건의 소재지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등기·등록사유/건수		비 고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3호서식]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

○○ 년도 월분

(○○동)

처리 번호	처리일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등기등록일	물건의 소재지	관련법령	비과세 사 유	비과세		결 재		
		주소	전화번호	과세 표준				등록면허세	지 방 교육세	담당자	담당	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4호서식]

등록면허세(등록) 중과세내역서

고지 번호	납부구분	신 고 일	납기일	물건종류	과세표준	결정과표	적용 세율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가산세	지방교육세	지방교육 세가산세	중과해당일
		등기등록일										중과해당사항
물건의 소재지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등록면허세 합계		
등기·등록 원인			전 화 번 호		비 고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m²)

[별지 제5호서식]

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처리부												
○○년도 ○월분										(○○동)		
접수 번호	신고일	성명(법인명)	주소(소재지)		면허명칭	종·호	면허일	세 액	납부일	결 재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담당자	담당	과 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6호서식]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												
(○○동)												
과세 번호	성명(법인명)	주 소		면허명칭	면허일	종·호	산출세액	가산세	계	결의일	결 재	
		전화 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담당자	담당 과 장

[별지 제7호서식]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동)

접수 일자	사업소명	납 세 의 무 자			사업소 소재지	면적	세율	세액	납부일	결 재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담당	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8호서식]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처리부														
○○연도 ○○월분												((○○동))		
과세 번호	사업소명	납 세 의 무 자			사업소 소재지	면 적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계	결 의 일	결 재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담당	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별지 제9호서식]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동))	
접수 일자	사업 소명	납 세 의 무 자			종업 원수	급여 총액	세 율	세 액	납부일	결 재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담당	과장

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0호서식]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												((○○동))		
과세 번호	사업 소명	납 세 의 무 자			종업 원수	급여 총액	세 율	산출 세액	가산세	계	결의일	결 재		
		성명 (법인명)	주민 (법인) 등록 번호	주소								담당자	담당	과장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1호서식]

(앞면)

건축물 조사표

소유자	전 소 유 자			현 소 유 자			이전일자	이전사유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 소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 소		
구 분	소 재 지		구 조	용 도	신축년도	건축물 연면적	비 고	
세대장								
공 부								
세대장								
공 부								
세대장								
공 부								
세대장								
공 부								
	구 축 물		부 대 설 비		년 월 일 조사자 직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성명 (서명또는 인) 조사자 직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성명 (서명또는 인)			
공 부								
현 황								
비 고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80g/㎡)

(뒷면)

건축물 조사표		
건축물 실측도	면적산출	참고사항
2mm 그래프용지 사용		

[별지 제12호서식]

(앞면)

주택 조사표

소유자	전 소 유 자			현 소 유 자			이전일자	이전사유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 소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 소		
구 분	소 재 지		구 조	용 도	신축년도	주 택 연면적	비 고	
세대장								
공 부								
세대장								
공 부								
세대장								
공 부								
세대장								
공 부								
	구 축 물		부 대 설 비		년 월 일			
공 부					조사자 직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성명 (서명또는 인)		
현 황					조사자 직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성명 (서명또는 인)		
비 고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80g/㎡)

주택 조사표

주 택 실 측 도	면적산출	참고사항
2mm 그래프용지 사용		

210mm×297mm(일반용지 80g/m²)

[별지 제13호서식]

선박 조사표						
전 소유자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전 화	주 소	
현 소유자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전 화	주 소	
선박 현황	소 재 지	종 류	용 도	건조 년도	선박 번호	총톤수
이전일자						
이전사유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4호서식]

항공기 조사표							
전소유자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전 화	주 소		
현소유자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전 화	주 소		
항공기 현황	소 재 지	종 류	용 도		제작 년도	등록 번호	등록일자
	내용연수	제작회사			기 종	최대이륙중량	
이전일자							
이전사유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5호서식]

재산세 비과세 처리부

남도 양도

(음 · 면 · 동)

[illegible]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m²)

〔별지 제16호서식〕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

담당자	담당	과장

(단위 : 원, m²)

[illegible]

※ 작성요령 : 과세대상(건축물, 주택, 토지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일부납부 세액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7호서식〕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

담당자	담당	과장

(단위 : 원)

[illegible]

※ 작성요령 : 과세대상(건축물, 주택, 토지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일부납부 세액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8호서식]

납세관리인 관리대장

담당자	담당	과장

(00 동)

연번	물건소재지	납세의무자			납세관리인			신고사항		직권지정 사항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신고일	신고사유	통지일	처리자

210mm×297mm(일반용지 80g/㎡)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세법

제25조(납세지) ①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12. 27., 2011. 12. 31., 2015. 12. 29., 2019. 8. 27.>

②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12. 29.>

1. 해당 면허에 대한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있는 면허: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
2. 해당 면허에 대한 별도의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없는 면허: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지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지가 국내에 없는 경우에는 면허부여기관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3. 29., 2011. 12. 2., 2011. 12. 31., 2013. 1. 1., 2013. 3. 23., 2014. 1. 1., 2014. 11. 19., 2015. 7. 24., 2015. 12. 29., 2016. 2. 29., 2016. 12. 27., 2017. 7. 26., 2017. 12. 26., 2019. 8. 2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한 해당 세율(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세율을 적

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6천원을, 제1항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11만2천500원 미만일 때에는 11만2천500원으로 한다)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2. 27., 2015. 7. 24., 2016. 12. 27.>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

2.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으로 법인등기를 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신설 2010. 12. 27.>

④ 제2항은 제1항제6호바목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27.>

⑤ 제2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2. 27.>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제1

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제32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 1. 1., 2016. 12. 27.>

제35조(신고납부 등) ①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제25조제2항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새로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은 자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새로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받은 때에 해당 면허에 대한 그 다음 연도분의 등록면허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②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제25조제2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1. 제조·가공 또는 수입의 면허로서 각각 그 품목별로 받는 면허

2. 건축허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면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

④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 1. 1., 2016. 12. 27.>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사업소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② 사업소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③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이하 이 조에서 “납부서”라 한다)를 발송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⑤ 제4항에 따라 납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12. 29.>

⑥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

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 1. 1., 2016. 12. 27., 2020. 12. 29.>

제84조의6(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종업원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4조의2 및 제84조의3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6. 12. 27.>

[본조신설 2014. 1. 1.]

제117조(물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18조(분할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6., 2019. 12. 31., 2023. 12. 29.>

☐ 지방세기본법

제49조(수정신고)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
 2.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그 밖에 특별징수의무자의 정산과정에서 누락 등이 발생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등보다 적을 때
- ②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③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

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2023. 3. 14., 2024. 12. 31.>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

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한 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결정·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12. 2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구를 한 자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같은 항에 따른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청구를 한 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나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8.>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를 한 자에게 관련 진행상황과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 심판청구나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8.>

⑥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5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자가 지방소득세의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03조의18,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를 통하여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특별징수의무자나 해당 특별

징수 대상 소득이 있는 자”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03조의29에 따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제1호 중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나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제2호 중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나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03조의18,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를 통하여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특별징수의무자나 해당 특별징수 대상 소득이 있는 자”로 본다. <신설 2018. 12. 24., 2019. 12. 31., 2021. 12. 28.>

⑦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4., 2021. 12. 28.>

제139조(납세관리인) 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려는 납세자는 지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정한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납세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해당 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제4항에 따라 재산의 사용자·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재산의 사용자·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의 목적 및 정의(제1조 내지 제2조)

나. 조사대상의 선정(제7조~제14조)

다. 세무조사의 범위 및 방법(제15조~제18조)

라. 조사 사후 관리(제3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라. 기 타: 관계법령 변경에 따른 수정사항 반영

인천광역시 검단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여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지방세에 대한 정확한 부과·징수를 위하여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조사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특정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세무공무원을 말한다.
3. “조사책임자”란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일반세무조사”란 특정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 여부, 과세표준 및 세율의 적정 여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정 여부 등(이하 “과세적정성”이라 한다)을 검증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5. “특별세무조사”란 세금을 탈루한 방법이나 규모로 보아 일반세무조사의 방

법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6. “직접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사무소,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이하 “사무소 등”이라 한다)에 출장하여 직접 해당 납세자 또는 그 관련이 있는 자 등을 상대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7. “서면세무조사”란 직접세무조사 이외에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 등으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8. “전부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세무조사대상이 되는 기간에 대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9. “부분세무조사”란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에 대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0. “전산분석”이란 지방세원의 관리를 위하여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상황, 신고내용 등 보유·관리하는 전산자료와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수집하는 과세자료 등에 대한 전산분석 등을 통하여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1. “전자신고”란 과세표준신고서 등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세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신의성실의 원칙: 세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납세자에게 이미 공시한 사항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근거과세의 원칙: 세무조사와 부과권의 행사는 법인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야 하고 이를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조사비례의 원칙: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4. 납세자별 구분조사 원칙: 세무조사는 신고의 성실도와 업종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 세무조사는 해당 지방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 ① 납세자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사업장(지점, 제조장, 직매장, 하치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납세지 관할을 달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조사 시작 전 또는 조사 진행 중에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간 내에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회보할 수 있다.

제7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지방세 세무조사에 관하여 지방세관계법 등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조사대상자 선정) 조사대상자는 지방세에 관한 신고, 납세의 성실도 및 업종 등을 기준으로 일반세무조사대상자와 특별세무조사대상자로 구분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선정기준의 공정성과 타당성 유지)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세무조사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자의 성실신고 존중) 구청장은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1조(일반세무조사 대상자) ① 구청장은 해당 납세자의 세원종합관리상황과 서면신고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자 중 일반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제3항의 직접세무조사 대상은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정기선정 대상 건수가 20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과세표준액 20억 원 이상 부동산 등을 취득한 납세자.
2. 최근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 중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발견된 납세자
3. 제5조의 단서에 따라 인천광역시시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하였으나 인천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선정 결과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납세자

② 제1항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관련 지방세심의위원회 진행은 위원이 세무조사대상자를 식별 할 수 없도록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을 표기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한다.

③ 구청장은 일반세무조사시 서면세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서면세무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2. 자본금이 20억 원 이상인 법인 또는 종업원의 급여총액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5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에 51을 곱한 금액 이상인 경우
 3. 최근 3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4. 3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비과세·감면받은 경우
 5. 그 밖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조사를 의뢰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④ 동일한 납세자에 대한 중복조사방지, 신고납부 풍토 조성, 경제·사회정책의 효율적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평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사대상을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특별세무조사의 대상자) ①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는 탈세정보자료에 의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거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자로 하되, 그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신고·납부,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4.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5. 지방세관계법과 관련된 판례·지침·유권해석 등의 변경으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일반세무조사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탈루유형,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은 별도의 계획과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3조(부분세무조사 대상자) 부분세무조사 대상자는 세원의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 검증으로 조사목적 달성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96조제5항(같은 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88조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위장·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14조(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

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1. 취득가액 3억 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조례 규정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다만, 최근 5년간 취득가액 6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인천광역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에서 영세·성실기업으로 세무조사 유예를 받은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해당 법인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2.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이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의 시공을 하는 경우
3. 「지방세법」 제84조의4에서 규정한 면세점 기준을 초과하는 법인

제15조(중복조사금지) ① 동일한 납세자의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해서는 아니되며, 조사시작 후에도 중복조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한 납세자에 대하여 전부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부분세무조사를 받은 부분은 조사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조사범위 등의 준수)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범위,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을 미리 정하고 조사공무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조사범위 확대의 제한) ① 조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다만, 각 호에 경우에는 사전에 법 제76조제3항의 납세자보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세목 등과 관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조사방법) 세무조사는 조사대상자의 납세성실도 수준, 사업규모, 업종, 과세자료 분석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직접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납세자가 비치, 기장하고 있는 장부 및 그와 관련된 증빙서류(전산조직에 의해 장부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전자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조사와 그 장부의 진실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각종 현황조사, 거래처 또는 현장조사
2. 서면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지방세의 납부 또는 과세의 적정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조사방법을 준용
3. 부분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지방세원의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의 일부의 적정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조사방법을 준용

제19조(조사장소의 한정)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주소·거소·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실시한다. 다만, 해당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조사시간의 제한) 세무조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납세자의 일과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구가 있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일과시간 외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한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 사전통지 생략이유 등을 기재한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세무조사의 연기신청) ① 제21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를 연기 받으려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세무조사를 연기 받으려는 기간
3. 세무조사를 연기 받으려는 사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③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조사 시작 전까지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조사기간) 구청장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20일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사기간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제24조(조사기간의 계산) 조사기간은 조사시작일(최종 자료제출일부터 기산한다) 부터 조사종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조사기간 중 토요일·공휴일 등을 포함한다.

제25조(조사기간연장의 제한) 세무조사를 시작한 후 기한 내에 법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사유가 종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4조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중지기간은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와 관련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제26조(수색, 압수 등의 금지) ①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납세자의 주택 또는 사무실 등을 수색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압수·영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범칙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발견한 경우
2. 비밀장부 등 범칙증거를 발견한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조사공무원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지방세 범칙사건조사로의 전환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장부·서류 등을 압수·영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

호 서식의 압수·영치증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압수·영치목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7조(장부, 서류 등의 예치) ①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탈루혐의에 대한 증거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장부·서류 등을 예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부·서류 등을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예치증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예치목록을 내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부·서류 등의 예치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조사권남용 조사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정당한 절차와 적법한 방법이 아닌 조사편의 등의 수단으로 조사권을 남용한 조사공무원과 조사책임자에 대하여는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조사권 행사의 제한과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① 조사대상 납세자 및 그와 관련된 자에 대한 조사권의 행사는 해당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조사계획수립) ① 구청장은 업무량과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인천광역시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일 납세자에게 중복조사를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1조(조사준비) 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의 시작에 앞서 활용가능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분석, 검토하여 조사대상자에 대한 문제점과 중점조사 사항을 도출하는 조사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신고납부 내용
2. 전산분석 자료
3. 행정기관 자료
4. 그 밖의 정보 및 수집자료 등

② 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여 준비조사서를 작성하고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사책임자는 효과적인 조사업무가 집행되도록 미리 조사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32조(부분세무조사의 실시) 구청장은 납세자의 편의 및 조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또는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33조(조사지휘) ① 모든 세무조사는 조사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실시한다.

② 조사책임자가 장기간 조사지휘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

무를 대리하는 자가 조사책임자가 된다.

제34조(조사의 시작 등)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현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낭독해 주어야 하는 납세자권리현장의 요지와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을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35조(조사내용 보고) 조사공무원은 조사한 사항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조사진행관리) ① 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조사책임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조사하고, 그 조사내용을 복명하여야 한다.

② 세무조사의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선정된 조사대상에 대한 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앞으로 조사할 사항과 새로운 문제점에 대하여 조사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선정된 조사대상이 서면세무조사서 등 자료제출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④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에서 적출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서류를 확보하고, 분쟁의 소지를 미리 예방하여야 한다.

제37조(조사의 종결)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조사책임자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종결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조사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조사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자의 권리구제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제38조(세무조사 결과통지) ① 법 제85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결과를 확정하였을 때에는 조사결과를 확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대상 기간 및 세목
2.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 및 산출근거
3. 법 제49조에 따라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4.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세징수법」 제22조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사결과를 통지하려는 날부터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3.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폐업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4.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5. 법 제88조제5항제2호 단서 및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마친 경우
6.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제39조(과세정보 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보급) ① 조사과정에서 파악되는 각종 과세정보는 “과세자료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과세자료 또는 국세와 관련된 자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장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조사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하여 조사기법사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세무조사 명부 및 자료 관리) ① 구청장은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현황·조사연혁 및 폐업사실 등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중복 세무조사 방지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다음 각 호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대상자
2. 세무조사 기간·내용·추징세액·추징사유·불복내용 등
3. 납세자별, 세목별 세무조사 결과 대장 관리 등 기타 필요한 업무

③ 구청장은 세무조사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최적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41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 ①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구청장이 조사공무원별로 1매씩 발급하고, 퇴직·전출 등의 변동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표를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별표의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조사공무원의 행동수칙****1. 조사공무원의 기본자세**

- 1) 조사공무원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
- 2) 조사공무원은 인격의 도야와 조사기법의 개발을 위하여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 3) 조사공무원은 세정의 최일선 역군으로서 세정의 거울이 됨을 명심하여 항상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공정하고 친절한 자세로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 4) 조사공무원은 권위주의적 언행을 삼가하고 납세자의 권익과 편의를 최대한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세무조사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5) 조사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6) 조사공무원은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고 업무집행과정에서 법령을 무리하게 확대해석하거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사목적과 직접 관계없는 내용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7)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은 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사시작 전에 지켜야 할 사항

- 1)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세무조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야 한다.
- 2) 납세자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사예고 이외에는 조사계획이나 준비조사 내용 등을 조사시작 전에 납세자나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조사계획 수립 후 실지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납세자와 접촉하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조사 진행 중에 지켜야 할 사항

- 1) 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반드시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 조사의 목적, 조사대상 선정이유, 조사기간 및 범위를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 2)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거부하거나 이해를 못할 경우에는 조사의 근거와 한계를 상세히 설명하여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고 그래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에 따라야 한다.
- 3) 세무조사를 시작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보고체계를 통하여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4)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에 의한 조사방법, 조사범위, 조사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 5)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주택이나 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수색·영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제시하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색하지 않고 조사현장에서 발견된 비밀장부나 증빙서류를 납세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았을 때에는 즉시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 6) 조사공무원은 근무시간 중에만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외에 조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관리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7) 조사 진행 중 조사사항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하며, 납세자가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먼저 문제점에 대하여 긍정적인 자세로 검토하여야 한다.
- 8) 납세의무자의 소명내용이 적법하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중하게 사과한 후 이를 솔직하게 받아들여 즉시 시정하여야 하며, 납세의무자의 소명내용이 잘못된 경우에는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잘못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9) 납세의무자의 이견에 대한 충분한 검토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은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 10) 사실관계에 관한 조사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과세근거를 확보하여 추후 불복이나 쟁송을 제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11) 조사공무원은 하루의 조사가 끝나면 납세의무자의 협조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 다음 조사일시를 명확히 예고 하여야 하며, 약속일시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납세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 12) 조사공무원은 지시에 따라 매일 또는 격일로 조사사항을 관리자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앞으로의 조사방향을 지시받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4. 조사를 마칠 때 지켜야 할 사항

- 1) 조사공무원이 조사를 마칠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조사가 종결되었음을 알리고 조사기간 동안 성실히 조사에 협조한 것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하여야 한다.
- 2) 조사공무원은 조사를 마치는 즉시 종결보고를 하고,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3)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리하고 고지하기 전에 조사내용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 해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4) 납세의무자가 조사내용의 통지를 받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어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5)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점은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조사복명 시 세법 등 개정건의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압수·영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 년 월 일) :

「지방세기본법」 제117조에 따라 위 납세의무자에 대한 별첨목록의 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동안 아래와 같이 정히 압수·영치합니다.

영 치 사 유						
영 치 기 관						
영 치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영치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입 회 인	소속		직		성명	
서명날인거부사유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직인

■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압수·영치 목록

일련번호	물건명	수량	제출자	소유자	비고

210mm×297mm [일반용지60g/㎡(재활용품)]

■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예치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첨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동안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

예치사유						
예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입회인	소속		직		성명	

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직인

■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예치목록

일련번호	물건명	수량	제출자	소유자	비고

210mm×297mm [일반용지60g/㎡(재활용품)]

■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지 방 세 서 면 조 사 서

○ 법 인 명 : (인) ○ 대 표 자 : ○ 법인소재지 : ○ 사업년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작 성 자 : (근무부서) (성명) (인) ○ 연 락 처 : ○ e-mail(담당자) :	법인유형 제 조 업 () 건 설 업 () 판 매 업 () 운 송 업 () 기 타 ()	주요목적사업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 재중)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297mm²×210mm², 가로서식)

지방세 서면조사 안내

1. 이 조사서는 법인에 대한 각종 지방세가 정당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므로 각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조사는 서면신고에 의한 조사이므로 “조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대하여는 첨부서류 만으로 입증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여 제출하시고, 첨부된 서류는 □내에 V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년도별 작성(3개년) 및 각 서식 작성시 인천광역시 전체분을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 0000년도부터 0000년도까지 3년분 작성)

※ 작성후 보낼 곳 :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구청

인천광역시 검단구청 세무과 (세무조사 업무담당)

우편번호 : 00000

※ 문의사항 전화 : (032)- FAX) 032-

조사서에 첨부할 서류

○ 공통으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건설업, 제조업, 기타법인 모두 해당)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본점 및 지점사업장)

☐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세무서에 신고한 신고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급여대장,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4)), 유형고정자산명세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 법인소유자산(부동산·시설물·차량·기계장비 등) 계정별 원장(건설업법인의 경우 공사원가명세서상의 회계과목에 대한

계정별원장 포함) 및 보조장을 제출하지 않으시면 서면 세무조사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급공사원가명세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 각 사업연도별 법인 지방소득세 사업장별 신고내역서

※ 첨부된 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별지 제6호서식)

지방세 세무조사 법인명부

(단위 : 원)

[illegible]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세기본법

제83조(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6.>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기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기신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조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그 결과(연기 결정 시 연기한 기간을 포함한다)를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3. 1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연기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신설 2023. 3. 14.>

1. 제2항에 따른 연기 사유가 소멸한 경우
2.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를 긴급히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제1호의 사유로 조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를 시작하기 5일 전까지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연기 사유가 소멸한 사실과 조사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14.>

⑥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시작하거나 제4항제2호의 사유로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12. 24., 2023. 3. 14.>

1.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전통지 사항

나.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다. 그 밖에 세무조사의 시작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4항제2호의 사유로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경우: 조사를 긴급히 시작하여야 하는 사유

[제목개정 2023. 3. 14.]

제84조(세무조사 기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6., 2018. 12. 24., 2019. 12. 31.>

1. 납세자가 장부등의 은닉, 제출지연, 제출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 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지방세 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범칙사건조사로 조사 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4. 천재지변,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6.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 대상자의 세금 탈루 혐의의 해명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5조(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①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 및 세무조사(서면조사를 포함한다)를 마친 날부터 20일(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조사결과를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2020. 12. 29.>

1. 세무조사 내용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그 부분을 제외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조세조약에 따른 국외자료의 수집·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
2. 해당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사실관계 확정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질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20일(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통지한 부분 외에 대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9.>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1., 2020. 12. 29., 2021. 1. 12.>

1.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점검 결과 등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다만, 제150조, 「감사원법」 제33조, 「지방자치법」 제188조 및 제190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 조사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3. 비과세 또는 감면 신청을 반려하여 과세하는 경우(「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비과세 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5.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1.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3. 삭제 <2020. 12. 2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2. 31.>

1. 삭제 <2020. 12. 29.>

2. 범칙사건조사를 하는 경우

3.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법령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5항에 따른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6., 2019. 12. 31.>

1.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거나 일부 채택한다는 결정. 다만,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통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3.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칙(제1조~제3조)

나. 당직근무(제4조~제20조)

다. 비상근무(제21조~제32조)

라. 연락체계의 유지(제33조~제3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소속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직속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구 당직사령 대상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사령"이란 구 및 직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지휘·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당직 보좌관"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여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토요일이 아닌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

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開始)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숙직 근무자에 대하여는 사무에 지장이 없으면 근무 종료일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일직과 숙직근무(재택근무 제외)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10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당직수당) 당직 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60,000원의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제7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 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 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치안 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청소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④ 동의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적어 2명 이상이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 1명이 월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는 때에는 구청장은 그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은 필요한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인당 2주 1회를 초과하는 경우

2. 정상근무 시간외에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

⑤ 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 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에게 재택 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직원 중 일부만 재택근무를 할 경우 제3호의 조치만으로 시행할 수 있

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화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
3.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제8조(재택당직근무) ① 재택당직근무자는 전화민원응대, 업무연락 조치 등 일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신체계를 항상 유지하여야 하며, 화재, 침입자 및 비상근무 등 발생 시에는 관계기관에 신속한 연락 조치 후 사무실에 출근하여 후속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재택당직근무의 신고, 비품수령, 인계는 일반당직과 같다.

③ 재택당직근무자는 당직일지, 이동전화, 실과별 전화번호,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직원소집명부,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를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④ 재택당직근무자의 당직비는 사무실 대기근무 3시간 이상인 경우에 30,000원을 지급한다.

제9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해당 기관의 장이 발령하고 소속 실·과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 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8조의 지역단위 당직사령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근무예정일 5일 전까지 수명자 소속 기관의 동급 직위·직급이상 공무원으로 조정하여 구청장에게 변경 승인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 근무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 근무자는 그 전날 정상근무 시간에 하여야 한다.

② 당직사령(당직책임자)은 제1항의 당직 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 근무 종료시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 근무자간에 인계 인수한다.

③ 당직사령(당직책임자)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근무시간 중 사건·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11조(교대근무) 당직 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전원 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일직 시의 전반 근무시간을 일직개시 시간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13:00부터 일직 종료 시까지로 한다.
2. 숙직 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0:00부터 다음 날 02: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02:00~07:00까지로 하며, 그 밖에 전·후반 구분 없이 전원 근무한다.

제12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사령, 당직보좌관 및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후반 교대에 따라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 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제13조(당직 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 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 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 근무자임을 표시하게 규정된 완장 또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14조(당직 차량의 운영) 인천광역시 검단구 당직업무 부서장은 당직근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제15조(당직 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내외의 방법,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의 확인 점검
2. 경비원과 정상근무시간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확인 감독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 각급기관의 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 점검표를 작성·비치하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각급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결과 그 밖의 당직에 관한 주요상황을 기록하여 당직사령 및 당직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무인전자 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전화민원의 응대

② 당직 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히 조치해야 할 때에는 주무 실·과장 또는 당직업무 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치 않고 다음 당직자가 다음 당직자 또는 익일 문서관리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16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와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구청장, 당직업무 국장 및 부서장에게 급보
2. 청사내에 화재 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내에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당직업무 국장 및 부서장, 예비군중대장에게 급보
2. 무기고 등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 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구청장과 인천광역시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한 경우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 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 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7조(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의 당직 근무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비상소집명부
4.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5. 비상열쇠 보관함
6. 그 밖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 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당직사령) ① 구와 각급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

② 제1항의 당직사령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구의 실·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하며, 이 경우 이외에는 6급 공무원으로 한다.

③ 당직 사령실은 구청의 당직실에 위치하거나 별도로 구청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당직사령은 해당 구역의 특별 지방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9조(당직사령 보좌관) 당직사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당일 구청에 당직보좌관을 지정한다.

제20조(당직 사령의 임무) ① 당직사령은 구와 각급기관의 당직 근무자를 지휘 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 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여부
2. 당직근무상황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구청장 및 인천광역시 당직 총사령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당직 사령실의 비품) 당직 사령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기관간 연락체계도 및 전화번호부
2.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3. 그 밖에 당직사령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제3장 비상근무

제22조(비상소집) ① 당직사령 또는 당직책임자는 근무 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모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 계통에 따라 연락한다.

② 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 다음과 같이 연락한다.

1. 직원 비상소집명부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2. 각급기관은 당직실로 연락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원인을 점검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모든 조치를 취한다.

④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 책임자의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 중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 근무일자를 비롯한 그때까지의 모든 활용 상황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제23조(비상근무의 요령) 각급기관의 장은 평시에 비상근무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

를 갖추어야 한다.

제24조(비상소집 대상자 명부작성) 비상소집 시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각급기관의 장과 당직업무 부서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5조(응소자의 임무)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지정장소에 등록하고 당직 책임자 또는 당직 주무부서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지 못한다.

제26조(비상근무 제외자) 비상근무에 있어서 작업현지요원(현업기관)은 제외할 수 있다.

제27조(비상근무 중의 당직)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고 비상근무 중일 때는 당직근무와 당직사령 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은 정상근무시간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비상근무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반: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제반상황 처리기록유지 접수처리와 연락
3. 연락반: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연락

④ 제3항에 따른 구청의 상황실 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반: 비상근무업무 부서 직원 및 예비군중대본부 요원으로 편성한다.

2. 상황처리반: 비상근무업무 부서 직원과 각 주무실·과 직원으로 편성한다.
3. 연락반: 정보통신업무 부서 통신업무 담당 직원으로 편성한다.
- ⑤ 각 반을 2개 조로 편성하여 교대하여 근무하되 근무자는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 ⑥ 비상근무기간 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제28조(상황실 설치) ① 비상근무 발령 시는 구 상황실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한다.

② 비상근무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전화: ○ ○ ○
2. 치안전화: ○ ○ ○
3. 일반전화: ○ ○ ○
4. 행정전화: ○ ○ ○

제29조(당직사령 보좌관의 임무) 비상시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구청장 및 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 대기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여 자체경계강화, 화재 도난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의 조치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 지체 없이 당직사령 및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 인수하며,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근무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 사령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인계 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3호서식)

나. 비상소집대상자 명단(별지 제4호서식)

다. 비상소집인원 현황(별지 제5호서식)

라. 비상근무현황(별지 제6호서식)

마. 상황처리상황(별지 제7호서식)

바. 비상근무자 명단(별지 제8호서식)

제30조(비상근무보고) ① 비상시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
2. 비상소집 인원현황(별지 제5호서식)
3. 비상근무현황(별지 제6호 서식)

② 당직사령은 비상소집 명령 후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고, 당직 주무부서에서는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순찰조 편성 및 운영) ① 당직사령(당직책임자)은 당직원을 2인 1조 이상 순찰조를 편성하여 매 시간마다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토록 한다.

1. 수위 및 청원경찰 근무지
2. 부구청장 이상이 근무하는 사무실의 외곽
3. 통신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4. 본관 및 별관의 순찰함이 부착된 지역

5. 비상근무 중인 각 실·과 사무실

② 당직사령 및 예비군중대장은 경계근무 중 사고자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구청장 및 인천광역시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제32조(문서연락) 비상근무령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로 한다.

제33조(통신시설) 각급기관의 장은 비상근무령 발령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정하고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 기관과 신속한 통신 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 필요 시 전화기 간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제34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5조(직원 비상소집명부의 정비·보완)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는 때에는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원비상소집명부를 즉시 정비, 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복무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를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6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준하여 각급기관장은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필

요한 세부사항을 제정·운영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보 안 점 검 표

실과명

구분 월일 요일		서류보관상태		청 소 상 태		소 등 상 태		화기단속상태		문단속상태		점검시각 및 점검				결 재
		최 종 퇴청자	당 직 근무자	최 종 퇴청자	당 직 근무자	최 종 퇴청자	당 직 근무자	최 종 퇴청자	당 직 근무자	최 종 퇴청자	당 직 근무자	최종퇴청자		당직근무자		
												시각	성명	시각	성명	

1. 점검사항별로 이상이 있을 때에는 ×표, 이상이 없을 때에는 ○표한다.
2.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본표 이면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별지 제2호서식)

당 직 근 무 일 지

년 월 일 요일
숙 직 일

결 재	총무담당	총무업무부서장

당 직 자	당직명	소 속	직 명	성 명	인	소 속	직 명	성 명	인	문 서 처 리 확 인						
										종류	발 송			접 수	인 계	비 고
											문서번호	수신처	제 목			
지시받은사항					조치사항											
					조치결과확인					특 근 자 현 황						
지시한사항																
보고사항					인계사항	1. 물 품 2. 문 서 3. 기 타										

청 사 내 외 순 찰 점 검 사 항

순찰시간		발견사실 및 처리개요		순찰자	순찰시간	발견사실 및 처리개요		순찰자			
시분부터 시분까지				인	시분부터 시분까지		인				
시분부터 시분까지				인	시분부터 시분까지		인				
시분부터 시분까지				인	시분부터 시분까지		인				
시분부터 시분까지				인	시분부터 시분까지		인				
시분부터 시분까지				인	시분부터 시분까지		인				
시분부터 시분까지				인	시분부터 시분까지		인				
연락사항		연락기관		수화자소속직명		수화자성명		송화자성명		이상유무	
비고											

(별지 제3호서식)

비 상 근 무 일 지

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부터

실 국 과 근 무 책 임 자	근무명	실과명	직 명	성 명	서 명	문 서 처 리 상 황						
	비상근무 제 호	당직사령				종 류	발 송			접 수	인 계	비 고
							문서번호	수신처	제 목			
지시 받은 사항							조치 사항					
지시한 사 항							조치 결과 확인					
보고 사항							인계 사항					

기 관 별 당 직 사 항 기 록

기 관 명	당 직 신고기간	당 직 자	순찰계획	중 요 보 고 사 항		특근자현황	비 고
				보고기간	보 고 내 용		
	외 명	시 분	회	시 분		외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고내용은 당직 중 중요업무 처리부에 별도 기재할 것.

(별지 제4호서식)

비 상 소 집 대 상 자 명 단

Code No ①	성 명 ②	소 속 ③	직 위 ④	주 소 ⑤	비상연락할곳⑥			등 청 시 간 ⑦	동사고내용⑧				비고
					1 차	2 차	파출소		출장	병가	휴가	기타	

- ※ 1. 당직자는 비상소집이 발령되면 비상소집 대상자명단을 정한 장소(근무상황카드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2. 비상소집 대상자는 본인의 ①항을 암기하여야 한다.
 3. ⑤⑥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서무팀에 신고하여 기록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4. 비상소집 발령 시 비상소집 대상자는 최단기간 내 ⑦항에 기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상 소 집 인 원 현 황

구분 시간별	계				구 청				직속기관			
	총 원	사 고	현재원	응소인원	총 원	사 고	현재원	응소인원	총 원	사 고	현재원	응소인원

(별지 제6호서식)

일 일 비 상 근 무 현 황

1. 당직사령 년 월 일 ()

2.

○ 비상근무보좌관 :

○ 조 원 : 명

3. 직속기관(총 명)

기 관 별	총 사 령	근 무 인 원	전 화 번 호	비 고

(별지 제7호서식)

상 황 처 리 상 황

년 월 일 ()

기 관 별	일 시	수 신 처	내 용	비 고
기				
타				

〔별표〕

당 직 근 무 자 편 성

구 분 기관명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외의 경우
구 청	○ 당직사령(과장급) 1명 ○ 당직보좌관(6급공무원) 1명 ○ 당직원 3명 (청원경찰 별도)	○ 당직사령(6급공무원) 1명 ○ 당직원 3명 (청원경찰 별도)
사 업 소 , 동	○ 당직원 1명	○ 당직원 1명

인천광역시 검단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반장의 임명 등(제2조)

나. 통·반장의 해임(제3조)

다. 통·반장의 임기 등(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반장의 임명 등) ① 통장은 해당 통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18세 이상의 책임감이 강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하며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을 동장이 임명한다. 다만, 3회 이상 통장 공개 모집에도 통장이 임명되지 않은 경우 관할 행정동 내에서 동장이 정하는 범위의 해당 통 인근 주민으로 확대하여 임명할 수 있다.

② 반장은 해당 반 관할 구역 내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반원 또는 통장이 추천한 사람을 동장이 임명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통장이 있는 동에서는 만기 30일 전 15일 이상 공고 등을 거쳐 공개모집하되 재공고 시에는 7일 이상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재공고 시에도 추천자 또는 희망자가 없을 때에는 현재 통장을 재임명할 수 있다.

⑤ 해당 통에 통장 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동에 통장임명심사위원회를 두어 심사하고, 위원회 구성·기준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조(통·반장의 해임) ① 동장은 통·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1.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

우

2. 공익에 반하거나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품위를 손상한 경

우

3. 해당 통·반 관할구역 외로 전출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아니한 경
우. 다만,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명된 통장은 모집공고 당시 동장이
정한 범위의 통 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아니한 경
우로 한다.

4. 통·반의 통폐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5. 동장이 소집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에 3개월 이상 불참하는 등 지속적
으로 불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경우

6. 개인의 영리행위를 위해 권한을 남용하였을 경우

7. 동장이 통장활동실적 평가결과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인정된 경우

8. 민·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
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
호가 확정된 때

11. 통·반장이 스스로 그 직의 해임을 희망한 경우

② 제1항제9호 또는 제10호에 따라 해임된 통·반장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서 다시 임명될 수 없고, 제1항제2호 또는 제8호에 따라 해임된 통·반장
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에서 해임일로부터 3년간,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라 해임된 경우에는 해당 동에서 해임일로부터 3년간 다시 임명될 수 없

다.

제4조(통·반장의 임기 등) ①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해당 통장을 임명한 동장이 관할하는 행정동 내에서의 총 재임기간은 9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반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명된 통장은 3회 이상으로 한다.) 공고하여 공개모집하였으나 후보자나 적격자가 없어 신임통장이 임명되지 않은 통에 한정하여 현임통장(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해당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임통장을 선출하기 직전에 통장직을 맡아서 수행하고 있던 통장을 포함한다.)을 재임명할 수 있다.

④ 행정동의 분동 등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동의 명칭변경 및 통·반 조정으로 재임명된 통장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이때, 재임명된 통장의 재임기간 산정은 이전 동에서 재임한 기간을 포함한다.

제5조(통장후보자 신청 공고) ① 동장은 통장을 임명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통장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를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1. 모집 대상 통명
2. 통장 자격기준 및 임무
3. 통장 지원 신청 및 임명절차에 관한 사항
4. 구비서류
5. 접수기간 및 장소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고방법은 별지 제1호서식(제2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으로 한다.)의 공고문을 동 홈페이지와 동 게시판, 해당 통의 주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를 할 수 있다.

④ 후보자 등록 제출 서류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후보자 등록신청·접수) ①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후보자 등록 조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후보자 등록 제한) 동장은 후보자 중 제출 서류를 확인한 결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후보자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조작이나 허위내용이 발견되었을 경우

2. 제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통장임명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동장은 제2조제5항에 따라 통장임명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은 동장, 통장 업무 담당, 통장대표와 동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총 5명으로 한다. 다만, 통장대표가 후보자일 경우 위원은 동장, 통장 업무 담당 및 동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총 5명으로 한다.

③ 동장은 당연직 위원장이 되며, 동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통장 업무 담당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며, 위촉장에는 활동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제9조(위원회 회의·심사) ① 위원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진행하며 후

보자를 심사한다.

② 심사는 지역사회 기여도, 통장 업무수행능력, 면접 평가 등이며, 심사기준 및 배점은 별지 제5호서식의 후보자 심사기준표에 따르며, 해당 통 지역주민의 세대주 동의사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③ 위원은 심사기준표에 따라 평점하고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위원이 제출한 심사표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후보자부터 순위를 결정한다.

④ 후보자가 1명일 경우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후보자 심사를 통장에게 일임할 수 있다.

제10조(심사 결과 통보 및 임명순위) ①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통장임명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통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장은 위원회에서 통보한 결과에 따라 제1순위 후보자를 통장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1순위 후보자를 임명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바로 다음 순위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11조(심사평점 등 공개금지)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과 평점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 회의 전에 평점 등의 공개를 방지하기 위해 별지 제7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을 수 있다.

제12조(통장 임명 절차 등) ① 통장은 위원회에서 통보된 후보자 또는 제2조 제4항에 따른 재임명 대상이 되는 통장, 제4조제3항에 따른 재임명 대상이 되는 통장을 임명한다.

② 통장 임명은 별지 제8호서식의 통장 임명대상자 조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임명장을 교부한다.

③ 동장은 통장 임명사항을 동 홈페이지 또는 동 게시판에 게시한다.

④ 동장은 통장 또는 반장을 임명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통장·반장 등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3조(통장증 발급) ① 동장은 통장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통장증을 발급한다.

② 통장증의 색채는 옅은 하늘색 바탕에 검정색 글씨로 하며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통장증을 발급하거나 회수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④ 통장은 직무수행을 위해 각 가정을 방문할 경우에는 통장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통장증은 통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통장 직무대행) 동장은 통장이 장기출타, 그 밖에 사고로 직무를 3개월 미만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행자를 반장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제15조(반사회 운영) ① 반사회는 정기 및 임시반사회로 구분하며, 정기반사회는 월 1회 매월 25일에 개최하며 당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 또는 다음날에 개최한다.

② 반사회는 반장이 주관하되, 여러 반이 함께 하는 통 반사회는 통장이 주관한다.

③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동장이 반사회 개최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④ 반상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

1. 주민화합과 지역 개발사업 등 공동 관심사에 관한 사항
2.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향
3. 생활 곤란자 등 어려운 이웃돕기에 관한 사항
4. 방법 및 안전을 위한 상호 연락과 신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민 생활 불편해소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⑤ 통장은 반상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민원사항을 처리하며 건의할 사항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동장에게 제출하고 반상회 운영사항을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지침)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임명된 통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며,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직 중인 통장의 임기는 이 규칙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위촉된 통장임명심사위원회 위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동 공고 제 호**통 장 후 보 자 등 록 신 청 공 고**

「인천광역시 검단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5조에 따라 동 통장 후보자 등록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통장이 되고자 희망하는 주민께서는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동 장

1. 후보자 등록대상 : 통장

2. 후보자 등록 신청

가. 신청서 교부(접수)기간 : 년 월 일 ~ 월 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근무시간 내)

나. 신청장소·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제출 (대 나 우 은 가)

다. 자 격

- ① 공고일 기준 해당 통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18세 이상의 사람으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 ② 책임감과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
- ③ 동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성실하게 규정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라. 제 출 서 류

- ① 통장 후보자 등록 신청서 및 이력서 (별지 제2호서식-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② 봉사활동 실적 및 참고자료
 - 봉사활동 : 사회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로 최근 5년 이내의 실적
 - 그 밖에 신망도 평가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언론보도, 구보 등)
- ③ 해당 통 지역주민(세대주)의 통장 후보자 동의서 (별지 제13호 서식-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마. 임명절차 및 방법

-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동장이 임명
- ② 후보자 등록과 관련하여 접수된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③ 면접심사일: 년 월 일(예정)

※ 면접심사일은 지원자 수, 동 행정복지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바. 임 기 : 임명일로부터 3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행정복지센터 032)000-0000으로 문의 바랍니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동 공 고 제 호

통장 후보자 등록 신청 확대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 검단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5조에 따라
 ____동 ____통장 후보자 등록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통장이 되고자 희망하는 주민께서는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동 장

1. 후보자 등록 대상: 통장

2. 후보자 등록 신청

가. 신청서 교부(접수)기간: 년 월 일 ~ 월 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근무시간 내)

나. 신청장소·방법: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제출 (대 나 우 은 가)

다. 자격

- ① 공고일 기준 해당 통 및 관할 행정동 내 동장이 정하는 위의 해당 통 인근
 (통, 통, 통)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18세 이상의 사람으로 봉사정신
 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 ② 책임감과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을 위해 봉사할 능력이 있는 사람
- ③ 동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성실하게 규정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라. 제출서류

- ① 통장 후보자 등록 신청서 및 이력서 (별지 제2호서식-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② 봉사활동 실적 및 참고자료
 - 봉사활동: 자원봉사 인증기관이 인정한 최근 5년 이내의 봉사실적
 - 그 밖에 신망도 평가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언론보도 등)
- ③ 해당 통 지역주민(세대주)의 통장 후보자 동의서 (별지 제13호 서식-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마. 임명절차 및 방법

-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동장이 임명
- ② 후보자 등록과 관련하여 접수된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③ 면접심사일: 년 월 일(예정)

※ 면접심사일은 지원자 수, 동 행정복지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바. 임기: 임명일로부터 3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행정복지센터 032)000-0000으로 문의 바랍니다.

[별지 제2호서식]

통 장 후 보 자 등 록 신 청 서

1. 통 명 : 동 제 통
2. 성 명 :
3. 생 년 월 일 :
4. 주 소 :
5. 직 업 :
6. 주 요 경 력 :

「인천광역시 검단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동 제 통장 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 동장 귀하

구비 서류 이력서, 봉사활동실적, 기타

[별지 제3호서식]

동 통장 후보자 등록조서

연번	성명	나이	성별	주 소	제 출 서 류		
					신청서	봉사활동 증명서	후보자 동의서
					○	○	○

[별지 제4호서식]

위 축 장

인천광역시 검단구 동 로

귀하를 인천광역시 검단구 동 통장 임명
심사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년 월 일 ~ 월 일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동장

[별지 제5호서식]

통장 후보자 심사기준표

심 의 기 준			배점	성명 및 심사결과			비 고
총 점			100				
지역사회 기여도	1. 관할구역(통) 거주기간	가. 5년 이상	10				◦ 주민등록등본 확인
		나. 2년 이상	7				
		다. 2년 미만	5				
		라. 타 관할구역 거주	3				
	2.최근5년간 사회봉사 활동실적	가. 100시간 이상	10				◦ 자원봉사 인증기관이 발행하고 자원봉사 프로 그램을 활용한 확인서만 유효
		나. 60시간 이상	7				
		다. 30시간 이상	5				
		라. 30시간 미만	3				
	3.해당통 지역주민 동의	가. 10% 이상	10				◦ 세대주 동의 (별지 제13호서식)
		나. 5% 이상~10% 미 만	5				
		다. 5% 미만	3				
	업무수행 능력	4. 직업겸직	가. 직업 없음	10			
나. 자유(영)업 종사			7				
다. 직업 있음			3				
5. 행정 관심도(참여)		가. 탁 월	30				◦ 구 및 동 업무내용 파악 등
		나. 우 수	15				
		다. 보 통	5				
면접평가	6. 면 접	가. 탁 월	30				◦ 질문 답변을 통해 확인
		나. 우 수	15				
		다. 보 통	5				

주) 1. 모든 서류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지역사회 기여도」 중 「해당통 지역주민 동의」 사항은 통 여건에 따라 심사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동 통장임명 심사위원 (서명)

[별지 제6호서식]

통 장 임 명 심 사 결 과 서

안 건	동 통장 임명에 따른 후보자 심사		
심의내용	통장후보자 중 적격자를 다음과 같이 심사하여 통장 후보자 순위를 결정함		
순 위	성 명	평 점	비 고
1			
2			
3			
4			
5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동 통장임명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동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동 통장임명심사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과 심사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동 통장임명심사위원

(서명)

동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통 장 임 명 대 상 자 조 서

동

통 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직 업	학 력	경 력 (군경력포함)

[별지 제9호서식]

임명장

인천광역시 검단구 동로

귀하를 인천광역시 검단구 동제 통장으로
임명합니다.

(임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동장

[별지 제10호서식]

통 장 · 반 장 등 록 부

동

결 재			직위	성명	생년월일	주 소	학력	경력	직업	임면일	
동장	팀장	담당자								임명 일자	해임 일자

주) 가로 서식으로 사용

[별지 제11호서식]

통 장 증 발 급 대 장

동

발급 번호	사진	발급 일자	통장 임의 일자	통명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재발급 일자	재발급 사유	회수 일자	회수 사유	결재		
												담당자	팀장	동장

주) 발급번호는 연도별 일련번호 부여(가로 서식으로 사용)

[별지 제12호서식]

통장증 규격 · 제식 및 기재사항

(앞 면)

통 장 증
사 진 (3cm × 4cm)
홍 길 동
○○동 제○○통장

(뒷 면)

제 호
통장의 임무
통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처리합니다. 1. 행정시책의 홍보 및 각종 공지사항 전달 2. 주민의 의견수렴 3. 지역의 공동관심사항 및 생활민원의 신속한 해결과 조례에 관한 사항
소속 : ○○동 제○○통장 임기 : 20 . . - 20 . .
♣ 인천광역시 검단구 00로 000 / Tel. 032)000-0000 ♣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검단구청 통장담당부서 및 관할구역 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직인)

규격 : 가로55 mm × 세로85 mm

[별지 제13호서식]

동 통장 후보자 동의서

연번	세대주 성명	주 소	서 명	비 고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이장 및 통장의 임명)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장 및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동장이 임명한다.

③ 읍장·면장·동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원회 모집 및 자격 확인(안 제3조~제4조)
- 나. 회의소집 및 회의록(안 제7조~제8조)
- 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제27조)
- 라. 강사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8조~제35조)
- 마. 운영세칙(안 제3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징수 및 수강료 집행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2장 주민자치회의 운영

제3조(위원의 모집) 동장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의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에 15일 이상 공고하여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별지 제1호서식)
2. 주민자치회 위원 지원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3.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

제4조(위원의 자격 확인) 동장은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조례 제7조의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그 밖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5조(위원의 관리) 동장은 위원 위촉 및 해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위촉 및 해촉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인적사항 공개) 조례 제9조제8항에 따른 위원 주요 인적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와 동 행정복지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민에게 공개한다.

제7조(회의소집) 동장 또는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이 조례 제17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조례 제17조제5항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공인의 비치)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명의로 공인을 보유할 수 있으며, 공인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한다.

1.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모집에 관한 사항
2. 조례 제9조제8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인적 사항 공고

제3장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제11조(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운영) ①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주민자치, 지역복지, 주민편익, 지역사회진흥 등의 자치 프로그램과 문화여가, 시민교육 등의 문화교실 강좌 프로그램으로 구분한다.

② 각 자치센터는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1개 이상 선정·운영하여야 하며 상반기·하반기 실적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 실적이 부진한 프로그램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폐지할 수 있다.

④ 동장은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수시로 지역주민들의 욕구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주민의 욕구에 적절한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권역별 운영) 자치센터의 강좌 프로그램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전역을 2개 권역으로 임의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제1권역(검단동, 불로대곡동, 원당동, 아라1동, 아라2동)
2. 제2권역(당하동, 오류왕길동, 마전동)

제13조(이용대상 시설범위) 이용대상 시설범위는 자치센터의 기본시설 및 그 부속설비로 한다.

제14조(이용시간) ① 자치센터 시설의 이용시간은 06:00부터 22:00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자치센터 시설관리나 이용주민 안전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조정·운영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이용주민 확대를 위해 새벽·야간 및 주말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자치센터 관리를 위한 운영서식)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리하여야 할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센터 운영일지(별지 제7호서식)
2.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신청서/시설사용승인서, 서약서(별지 제8호서식)
3. 주민자치센터 강좌 프로그램 수강신청서/접수증(별지 제9호서식)
4.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출석부(별지 제10호서식)
5.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접수대장 및 수료자 관리대장(별지 제11호서식)
6. 주민자치센터 수입결의서(별지 제12호서식)
7. 주민자치센터 사용료(수강료) 감면 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
8. 주민자치센터 사용료(수강료) 환불 신청서/환불액 결정 통보서(별지 제14호서식)
9. 주민자치센터 지출결의서(별지 제15호서식)
10. 주민자치센터 회계출납부(별지 제16호서식)
11.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공고(별지 제17호서식)
12. 주민자치센터 시설·장비·물품 관리대장(별지 제18호서식)
13.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 신청서(별지 제19호서식)
14.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관리대장(별지 제20호서식)
15.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활동일지(별지 제21호서식)
16.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명찰(별지 제22호서식)

제16조(보고 등) 동장은 조례 제34조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서식으로 자치센터의 운영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 계획(별지 제23호서식)
2. 주민자치센터 반기별 운영 결과 보고서(별지 제24호서식)

제17조(수강생 모집) ① 프로그램의 내용 및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인원으로 정원을 정하고, 동 홈페이지, 자체 소식지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되 정원 외 접수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11호서식을 활용하여 예비자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최대한 다양하고 많은 주민들이 골고루 자치센터 수강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대기자가 많은 일부 인기 강좌의 경우 수료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수강관리 및 사용신청 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일시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시설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동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장은 정치적 이용 목적 또는 영리추구 목적 및 공익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강좌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강좌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지정된 접수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납부영수증은 접수증으로 갈음한다.

③ 수강생에 대해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별지 제11호서식을 비치하여 관리토록 하고 일정 기간 수료 과정을 끝마친 수료자에 대해서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 자치센터의 동아리 및 자원봉사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19조(수강료 및 사용료 등의 징수) 조례 제30조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의 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료는 자치센터 시설사용 신청과 동시에 징수하며, 징수한 사용료는 구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2. 수강료는 접수 기간 중 선납을 원칙으로 하고, 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 신청과 동시에 현금 또는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로 주민자치회가 징수한다. 다만, 현금으로 징수한 수강료는 주민자치회 명의의 통장에 다음 날까지 입금 처리한다.
3. 수강료 등을 징수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입결의서와 별지 제16호서식의 자치센터 회계출납부를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4.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사용료의 경우는 동장에게, 수강료의 경우는 주민자치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장은 필요한 경우 수강료 감면 신청자에 대한 적합 여부를 확인해 주어야 한다.
5. 동장은 자치센터 사용료에 대한 회계장부를 비치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0조(수강 및 사용신청의 취소) 수강(사용)자가 납부한 수강(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반환한다. 다만, 그 밖의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예에 따른다.

1. 자치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수강료 전액환불)
2. 수강생이 수강을 취소한 경우(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 따라 환불)
3. 자치센터의 공공행사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취소되었을 때
4. 시설 사용예정일 3일 전에 사용취소를 신청하여 동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21조(운영경비의 집행) ①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는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운영경비 사용의 범

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좌 프로그램 강사 수당 지급
2. 자원봉사자 봉사활동비 지급
3.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
4.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장비 구입비
5. 자치센터 시설유지 및 개선비(공공요금 포함)
6. 자치센터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개최 비용 등 자치센터 행사 관련 비용
7. 자치센터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
8. 그 밖에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하는 공익사업으로 조례 제25조의 자치센터 기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주민자치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비(단, 저소득층 지원, 경로 행사 등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받는 사업비 제외)

② 경비의 집행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16호서식의 자치센터 회계출납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30조제5항에 따른 수강료의 수입 및 지출 내역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 내역 공고에 따라 공개한다.

제22조(수당 등의 지급) ①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의 지급 범위는 별표 2 기준에 따른다.

② 자원봉사자 실비 및 강사의 수당은 수강료 징수금액 범위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의 실비수당 및 강사의 수당 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시설 및 물품) 동장은 자치센터 및 주민자치회가 사용 중인 시설과 물품

등을 별지 제18호서식의 시설·장비·물품 관리대장에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① 동장과 주민자치회는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하며 별지 제21호서식 자원봉사자 활동일지 등을 활용하여 자원봉사자의 근무 및 활동 상황 등을 기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자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행정)지원 자원봉사
2. 자원봉사 강사 및 강좌 운영지원 자원봉사
3. 자치센터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② 동장은 자원봉사 모집 홍보물을 게시하고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자원봉사 신청서를 비치하여 수시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또한,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모집된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며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봉사 활동 시 패용할 명찰을 지급한다.

제25조(이용자의 의무) 조례 제31조제2항에 따라 시설에서 사용자가 선량한 이용자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내에서는 정숙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소중하게 사용
2. 이용자는 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임의조작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설관리자의 안내를 받을 것
3. 이용자는 시설·장비 등의 사용 시 물리적인 힘에 의해 장비가 손괴된 경우, 이용자의 부담으로 보수하거나 그 비용을 변상
4. 그 밖에 시설 관리자의 안내·지도 등에 적극 협조

제26조(주민참여) 동장은 조례 제32조에 따라 관내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 주민조직이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이용의 제한) 동장은 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방해가 되거나 안전상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4장 강사관리 및 운영

제28조(강사의 관리 및 운영) 동장은 강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강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수강생 설문조사를 통해 강사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위촉 및 위촉 해제 시 그 변동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강사관련 운영서식) 자치센터 강사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관리하여야 할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센터 강사 지원신청서(별지 제25호서식)
2.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의계획서(별지 제26호서식)
3. 주민자치센터 강사 개인별 이력카드(별지 제27호서식)
4. 주민자치센터 강사관리 대장(강사 Bank 운영) (별지 제28호서식)

제30조(자격요건) 강사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소유자 또는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다고 동장이 인정한 사람

제31조(강사모집) ① 강사는 추천 및 공개 모집할 수 있으며, 강사를 지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동장에게 강사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추천 및 공개모집 등의 방법으로 선정된 강사에 대하여 자격 확인

등 정해진 절차를 마친 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하며 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하되, 강사 만족도 평가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

③ 강사의 수시 위촉은 새로운 강좌의 개설, 강사의 결원 등이 발생한 경우로 하며, 위촉 기간은 위촉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로 하고 위촉 후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한다.

제32조(강사의 의무) 위촉된 강사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프로그램 강의계획서를 정기적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동장 및 주민자치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며 구청장 또는 동장이 실시하는 강사 소양 교육 참여 및 공익을 위한 자원봉사 등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33조(위촉 해제) 동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으로 인한 장기치료 등으로 계속 강의를 어려운 경우
2. 수강 참여 저조, 민원 발생, 강사로서의 품위손상, 그 밖에 불미한 일로 강의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4조(이력관리) 동장은 효율적인 강사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강사 개인별 이력카드를 관리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토대로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강사 관리 대장(강사Bank 운영)을 작성하여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강사의 중복위촉 제한) 구청장은 효율적인 프로그램의 운영 및 강의 수준의 저하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강사 1명이 구 관내 자치센터에서 담당할 수 있는 강좌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36조(운영세칙) 주민자치회는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주민자치회 및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등을 포함하여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1.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회 운영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주민총회와 자치계획에 관한 사항
4. 위원의 위촉 및 해촉의 사유와 정지에 관한 사항
5. 회계 운영과 보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주민자치회 및 자치센터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수강료 환불 범위 기준(제20조 2호 관련)

구 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환불 사유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환불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환불 대상 학습비 (가목에 따라 산출된 환불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환불금액의 산정은 환불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2]

강사수당 지급기준

구 분	기 준	금 액 (범위 내)	비 고
강 사	시 간 당 (1회 1시간)	35,000원	○ 동일 강의 당 지급 한도액: 월 700,000원 ※ 동일 강의: 강사 및 프로그램 내용이 동일 ※ 1시간 초과 강의 시 시간당의 100% 추가 지급 예) 1시간 35,000원 / 1시간 30분 52,500원 2시간 70,000원 / 2시간 30분 87,500원

[별지 제1호서식]

인천광역시 검단구 ○○동 공고 제 호

○○동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안)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참여할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접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근무시간 중에 한정함)

2. 접수장소: ○○동 행정복지센터 (☎ 담당직원 :)

3. 모집인원: ○○명

4. 자격요건: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다.

5. 구비서류

- 주민자치회 위원 지원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또는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
- 해당 동 소재 사업장 종사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6.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

-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른다.

7. 선정방법: 동 위원선정위원회에서 공개 추첨 또는 개별 심사

8. 결과통보: 개별 통보 및 공고

9. 문의사항: ○○동 행정복지센터 (☎)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동장

[별지 제2호 서식]

(앞면)

○○동 주민자치회 위원 지원 신청서

지원자	성명		생년월일	(남 / 여)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E-mail		직업	
	지원사유			
년 월 일		주요 경력 사항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 시, 사업 분과 구성 등에 활용합니다.)		
본인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 시 행정서비스 홍보 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 시 개인정보를 공개합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동장 귀하				

(뒷면)

주민자치회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검단구 주민자치회 위원의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관리되며, 이용기간 종료 시 지체 없이 폐기되며, 관련 업무처리 용도 외에는 절대 이용 및 제공되지 않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 아니오 ☐

1)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에서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상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직업 등
나. 개인정보 수집방법 :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를 통해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일부터 4년까지 주민자치회 위원 사업지원을 위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게 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사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상 주소, 이메일주소, 휴대전화번호, 직업 등 인적사항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자의 본인식별, 연령 및 거주 지역 확인, 사업 안내사항 전달, 통계수집 및 연구, 사업관리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일부터 4년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및 분과위원 위촉 대상에서 제외됨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예 ☐ 아니오 ☐

제공받는 자	인천광역시 등 행정기관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통계수집, 정책 개선 위한 연구 기초자료, 주민자치회 지원사업 정보제공, 위원 상호간 정보제공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 주소, 연락처, 직업, 이메일 주소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주민자치회 위원 임기 중 및 임기 종료 후 2년

20 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주민자치위원 자격 여부

주민자치위원 신청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원의 모집자격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결격사유가 있을 시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확인하였음

20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별지 제3호서식]

(앞면)

○○동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서

피추천인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E-mail		직업	
	관련분야			
추천인	성명 (단체명)			
	전화번호 (자택)		휴대폰	
	추천단체			
추천사유				
년월일		주요 경력 사항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 시, 사업 분과 구성 등에 활용합니다.)		
피추천인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 시 행정서비스 홍보 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피추천인 : (서명 또는 인) 추천인(단체) :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 시 개인정보를 공개합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동장 귀하				

(뒷면)

○○동 주민자치회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검단구 주민자치회 위원회의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관리되며, 이용기간 종료 시 지체 없이 폐기되며, 관련 업무처리 용도 외에는 절대 이용 및 제공되지 않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 아니오 ☐

1)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에서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상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직업 등

나. 개인정보 수집방법 :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 요건 확인 및 운영 관리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를 통해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일부터 4년까지 주민자치회 위원

사업 지원을 위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게 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사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상 주소, 이메일주소, 휴대전화번호, 직업 등 인적사항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자의 본인식별, 연령 및 거주 지역 확인, 사업 안내사항 전달, 통계수집 및 연구, 사업관리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일부터 4년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및 분과위원 위촉 대상에서 제외됨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예 ☐ 아니오 ☐

제공받는 자	인천광역시 등 행정기관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통계수집, 정책 개선 위한 연구 기초자료, 주민자치회 지원사업 정보제공, 위원 상호 간 정보제공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 주소, 연락처, 직업, 이메일 주소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주민자치회 위원 임기 중 및 임기 종료 후 2년

20 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주민자치위원 자격 여부

주민자치위원 신청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원의 모집자격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결격사유가 있을 시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확인하였음

20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별지 제4호서식]

[illegible]

[별지 제5호서식]

인천광역시 검단구 ○○동 공고 제 호

○○동 주민자치회 위원 인적사항 공고

□ 현 황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장	위원	비 고
○○동 주민자치회		명 (남: 명, 여: 명)	

□ 위원별 인적사항

연번	직 위	성명	거주 동	위촉 일자	임기 만료 일자	비고
1	회 장					
2	부 회 장					
3	간 사					
4	감 사					
5	위 원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또는 검단구 ○○동장

[별지 제6호서식]

(표지)

주민자치회 회의록

【제 회 (정기회의, 임시회의)】

☐ 일 시 :

☐ 장 소 :

○○동 주민자치회

(속지)

년 월 ○○동 주민자치회(정기회의, 임시회의)			
회 의 록			
일 시	년 월 일 : ~ :	장 소	
안 건	1. 2. 3.		
☐ 발언내용			
☐ 결정사항			
○ 참석위원 : 명 ○ 불참위원 : 명			
○ 회의록 서명 - 주민자치회장 (서명 또는 인) - 부 회 장 (서명 또는 인) - 간 사 (서명 또는 인)			
비 고	별첨 1. 회의 참석부 및 심의 의결서 2. 기타 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별지 제7호서식]

주민자치센터 운영일지

결 재	담당자	담당

○ 운영일자: 20 년 월 일 요일 (: ~ :)

○ 시설 및 강좌 프로그램 이용 현황

프로그램	운영내용	담당봉사자 서 명
체력단련실	사용자수 명 장비점검 : 정상(), 비정상()	
마 을 문 고	대출자수 명	
강 좌 명	출석인원 명(출석대상 명)	
강 좌 명	출석인원 명(출석대상 명)	
:	:	:

○ 시설이용 현황

구분	총계	성별			시설별					
		계	남	여	계	인터넷방	체력단련실	강당	어학실	...
일계/누계	/	/	/	/	/	/	/	/	/	/

※ 시설별은 동별 시설등을 구분하여 기재

○ 강좌 프로그램 이용 현황집계(월말 작성)

- 기간: 20 . . . ~ 20 . . .

강좌명	총 계		이용자현황											비 고
			성별			참여계층별								
	누계	당일	계	남	여	계	어린이	청소년	주부	남성	노인	기타		

○ 주민자치회, 자원봉사자 등 활동사항

○ 그 밖의 사항(운영상의 특기사항, 보도자료제공, 문제점 등)

※ 운영일지는 일자별로 작성하며, 별도서식이 필요한 경우 위 서식에 준하여 변형 가능

[별지 제8호서식]

(앞면)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 신청서						
사 용 자	성명(단체)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H.P)			
사용목적 및 행사개요	목 적	(참석예정인원 : 명)				
	행사내용 -					
사용일시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일)					
사용시설	기본시설					
	부대시설					
사 용 료	금 원					
사 용 료 납 부	전 액		일 부		전액면제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 ○○동장 귀하						

..... (절 취 선)

시설사용 승인서				
사 용 자	성명(단체)		사용장소	
사용일시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일)			
사 용 료	금 원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시설물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 ○○동장				

서 약 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동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함에 있어, 본인(단체)은(는)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은 물론 이의 위반 시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 합니다.

- 다 음 -

1.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0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동장의 사용승인 조건을 준수한다.
2. 주민자치센터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한다.
3.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어 동장이 시설 사용 결정을 임의 취소 또는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서약자 단체명(성명) :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 ○○동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주민자치센터 강좌 프로그램 수강신청서

(접수번호 :)

신청강좌

수강료

원

※ 조례 제30조제2항 관련 [별표 2] 수강료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 녀

주 소

전화번호

수강기간

20 . . . ~ 20 . . .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 프로그램의 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 ○○동 주민자치회장 귀하

..... (절 취 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접수증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접수증(수강생용)

발급번호

(접수자 : (인))

수강과목

성 명

연락처

수 강 료

금 원

수강기간

20 . . . ~ 20 . . .

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동 주민자치회장(인)

※ 뒷면은 수강료 환불 범위기준(제20조제2호 관련) 기재

(수강증 발급번호 구성 : 20 (년도)-1(발급월)-1(일련번호))

[별지 제10호서식]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출석부

매주 요일 강 사 : (서명)

연번		1	2	3	4	5	6	7	8
성명									
주소									
전화									
학 습 일 자	/								
	/								
	/								
	/								
	/								
	/								
	/								
	/								
	/								
	/								
	/								
	/								
	/								
	/								
	/								
	/								
	/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접수대장 및 수료자 관리대장

[illegible]

[별지 제12호서식]

문서번호	○○동 주민자치센터	호	수 입 결 의 서		
시행일자					
회 장			발	의	. . .
회계책임자			징 수 부 등 재		. . .
협조	동 장		수입 연도	20 년도 수입	
	담 당				
결정액		금 원(금 원)			
납입인원		○○○외 명			
적요	① ○○교실 운영 수입 원 ② ○○교실 운영 수입 원 ③ ○○교실 운영 수입 원 . . .				

[별지 제13호서식]

주민자치센터 사용료(수강료) 감면 신청서

대 상 자	성 명		전화번호 (H.P)	
	주 소			
사용(수강) 기 간				
사용목적 (수강과목)				
감면사유				

위와 같이 귀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강좌)을 사용(수강)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사용(수강)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인천광역시 검단구 ○○동장(주민자치회장) 귀하

[별지 제14호서식]

주민자치센터 사용료(수강료) 환불 신청서

신 청 인	성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직업 (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취소내용	사용신청 취소인 경우 해당 시설명			
	수강료 환불 해당 강좌명			
	전체수강료	학습비 징수기간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반환사유 발생한 그 달의 반환 사유 발생일 ☐ 그 달의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그 달의 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그 달의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세부산출식 =			
취소사유				
환불신청액	금	원		
입금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수강료)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인천광역시 검단구 ○○동장(주민자치회장) 귀하				

..... (절 취 선)

주민자치센터 사용료(수강료) 환불액 결정 통보서

신 청 인		생년월일		
환불결정액	원	결정액 산출내역		
입금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 금액을 환불 결정합니다. 20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동장(주민자치회장) 귀하				

[별지 제15호서식]

지 출 결 의 서

○○ 동 주민자치센터 호							
회계책임자		회 장		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협 조	
				세 출 과 목		담 당 동 장	
발 의	. . .	인	정책	주민자치 센터 운영비	발 의	. . .	인
원인행위부 기 재	. . .	인	단위		지출부기재	. . .	인
계 약	. . .	인	세부		지급 명령 발행부기재	. . .	인
검 수	. . .	인	편성목		지급 명령 번호	제 호	인
금 원(금 원)							
적 요							
채 주	주 소 :				계 좌 입 금		
	상 호 :				은 행 명 :		
	성 명 : 인				계좌번호 :		
영 수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						
비 고							

[별지 제16호서식]

회 계 출 납 부

[료]

연월일	적요	출 납 액(원)			결재		협조	
		수입액	지출액	잔액	회 계 담당자	회 장	담 당	동 장

※ 사용료와 수강료 구분 별도 기록 / 결산은 일계, 월계, 분기계, 반기계, 연계 확행
수입액 : 징수금, 보조금, 사업소득액, 이자 등
지출액 : 센터 및 강좌 운영비, 강사수당, 시설개선비 등

[별지 제17호서식]

○○동 주민자치회 제 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공고

□ 운영개요

- 기 간 : 년 월 ~ 년 월
- 운영장소 :
- 운영프로그램 : (프로그램명) 외 개 교실
- 프로그램강사 : 명

□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 총 괄

전기이월액	수입	지출	잔액	비고

○ 수강료 수입내역

연번	프로그램명	수입금액	산출내역	비고
	계		수강인원×수강료	

○ 수강료 지출내역

연번	지출내역	지출금액	산출내역	비고
	계			
	강사료 등			

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집행내역을 공개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동 주민자치회

[별지 제18호서식]

주민자치센터 시설·장비·물품 관리대장

관리 번호	구입 일시	품 명	규격 (형식)	모델명	용 도	구입가 (천원)	구입처		제조회사		결 재		
							상호	전화	명칭	전화	담당자	담당	동장

[별지 제19호서식]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 신청서

봉사분야		봉사기간	~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주소	E-mail :		
전화		휴대폰	

= 자원봉사자 준수사항 =

1. 자원봉사자는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목표에 동의하며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방침에 적극 협조한다.
2. 자원봉사자는 사회의 봉사자로서 품위를 지켜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3. 특별한 사유로 자원봉사직을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충분한 기간 전에 주민자치센터에 통보하여 후임자 선임에 차질이 없도록 배려한다.
4. 주민자치회장은 자원봉사자가 명예롭게 자원봉사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자 그룹의 자율활동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5. 주민자치회장은 자원봉사자의 신분증명을 위해 명찰을 제공하며 자원봉사자는 직무수행 중 항상 지참, 패용하여야 한다.

본인은 위 사항을 성실히 따르기로 약속하며, ○○동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 참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 ○○동 동장(주민자치회장) 귀하

개인정보 수입·이용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관리대장

[illegible]

※ 봉사분야 : 강사, 시설관리, 프로그램 운영보조,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분류

[별지 제21호서식]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활동일지

결	회계책임자	주민자치회장
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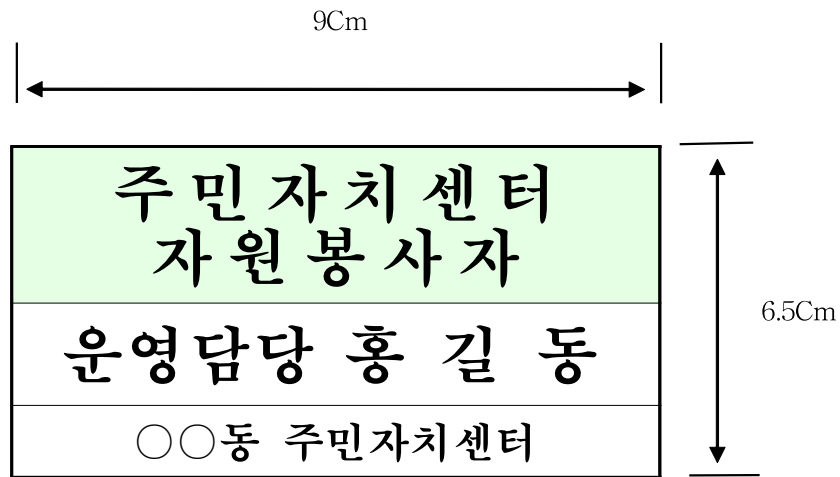
협	담당자	담 당	동장
조		전결	

근무시간	년 월 일(요일)		
근무장소	○○동 주민자치센터		
활동내용			
활동일시	년 월 일(요일), 활동시간(: ~ :)		
성명	장 소	시 간	업무내용

※ 활동일지는 일자별로 작성하며, 별도서식이 필요한 경우 위 서식에 준하여 변형 가능

(별지 제22호서식)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명찰



[별지 제23호서식]

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 계획

자치센터명		회계연도	
작성자		확인자	○○동장(인)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2. 사업개요

3. 소요예산

항목	예산액	산출근거	비고

※ 세부운영계획 별첨

4. 기대효과

5. 기타사항

[별지 제24호서식]

주민자치센터 반기별 운영결과 보고서

자치센터명		회계연도	년도(월 ~ 월)
작성자		확인자	○○동장(인)

1. 총평

2. 운영내용

3. 주요추진사항

사업명	사 업 내 용			추진성과
	시행 기간	소요예산	사업개요	

※ 세부 추진 내용 별첨(입출금통장 사본 포함)

4.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련 수입·지출내역

수입		지출		잔액	비고
금액	수입내역	금액	지출내역		

5. 건의사항

6. 미담 수범 사례

[별지 제25호서식]

주민자치센터 강사 지원신청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자택)			휴대전화번호		
지원분야 (강의가능분야)			지원이유		
E-mail					
자격·면허	자격·면허명	발행처	자격·면허명	발행처	
(사본 첨부)					
년월일	주요 학력 및 경력 사항				

※ 구비서류 : 자격증 사본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강사로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 ○○동 동장(주민자치회장) 귀하

[별지 제26호서식]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의계획서

강 의	일 시	강 의 내 용	비 고
제1강			
제2강			
제3강			
제4강			
제5강			
제6강			
제7강			
제8강			
제9강			
제10강			
제11강			
제12강			
제13강			
제14강			
제15강			

주민자치센터 강사 개인별 이력카드

[illegible]

[별지 제28호서식]

주민자치센터 강사관리 대장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담당강좌	자격 면허	주요 경력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①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자치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항

④ 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검단구자원봉사센터 기구(안 제3조)
- 나. 자원봉사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10조)
- 다. 회계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제17조)
- 라. 정원·인사·보수·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 제20조)
- 마. 공인관리 등(안 제21조 ~ 제2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인천광역시 검단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는 자원봉사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따른다.

제2장 기구

제3조(센터의 기구)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센터의 기구는 센터장, 운영위원회, 1국 2팀을 둔다.

제4조(조직체계) 조직체계는 별표 1과 같다.

제3장 자원봉사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원봉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련 부서 부서장 및 센터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거나,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자원봉사운영 사회단체장 및 자원봉사활동 유경험자 등

2. 대학교수 등 자원봉사 전문가

제6조(운영위원의 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에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7조(운영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운영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할 수 없거나 본인이 사퇴를 원할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반하였을 때

3. 그 밖의 사유로 운영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 사업계획(예산, 결산 등)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 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긴급을 요하는 사안으로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결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에는 회의결과를 기록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하며, 의결사항은 의결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를 두며 간사는 사무국장, 서기는 기획조정팀장이 된다.

제4장 회계 및 재산관리

제12조(수당 등)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운영위원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재원) 센터 유지 및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구 보조금
2. 출연금
3. 재산 및 경영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등

제14조(회계관리) ① 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센터의 회계 관리는 구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자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센터 회계 등에 관하여는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

요시 센터의 사업 및 예산운용에 관하여 자료를 요구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다.

④ 센터 회계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재산 및 물품관리) ① 센터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센터의 재산은 구 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예산) ① 센터장은 다음 연도 센터 운영에 관한 예산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된 예산을 검토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예산 확정 후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확보된 구 예산을 기준으로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재수립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결산)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지출 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각 1부.

2. 재산목록 및 재산증감사유서 1부.

3. 운영위원회 회의록(사본) 1부.

4. 사업실적 보고서 1부.

제18조(보조금의 관리) ① 센터는 보조금을 교부조건과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은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의 내역은 장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신청, 교부,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장 정원·인사·보수·복무관리

제19조(직원의 임용 등) ① 센터의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은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운영요원으로 구분한다.

② 센터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선임하며 사무국장, 팀장, 운영요원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장이 임용한다.

③ 센터장은 제2항에 따라 임용된 사무국장, 팀장, 운영요원에 대하여는 1년에 2회(상, 하반기) 사업실적 및 근무평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성적이 현저하게 낮을 경우 인사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④ 직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 근무 상한연령, 당연 퇴직, 직권 면직의 경우에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센터장의 임기는 근무상한연령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다.

⑤ 직원임용의 선발 자격은 별표 2와 같다.

제20조(승진임용) 상위 직급에 결원 발생 시 별표 2에서 정한 직원의 자격요건이 충족된 직원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와 구청장의 승인으로 승진할 수 있으며, 승진 시 1호봉을 감한다. 단, 사업실적 및 근무평정 실적이 저조한 경우 공개채용으로 한다.

제21조(보수지급) ① 직원의 보수지급일은 지방공무원 보수 지급일로 한다.

② 직원의 봉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센터장은 별정직 5급 상당, 사무국장은 별정직 6급 상당, 팀장은 별정직 7급 상당, 운영요원은 별정직 8급 상당 또는 9급 상당으로 하고 매년 1호봉씩 승급하는 것으로 한다.

③ 직원의 각종 경력인정 부분은 별표 3과 같다.

④ 직원의 수당은 정근수당,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등으로 하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⑤ 직원의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22조(복무) 직원의 출장, 근무시간, 휴가, 정치적 행위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제6장 공인관리 및 기타

제23조(공인)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공인을 제작 관리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원봉사센터장
 2.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작한 직인
- 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며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 ③ 공인의 관리는 센터장이 하며 기타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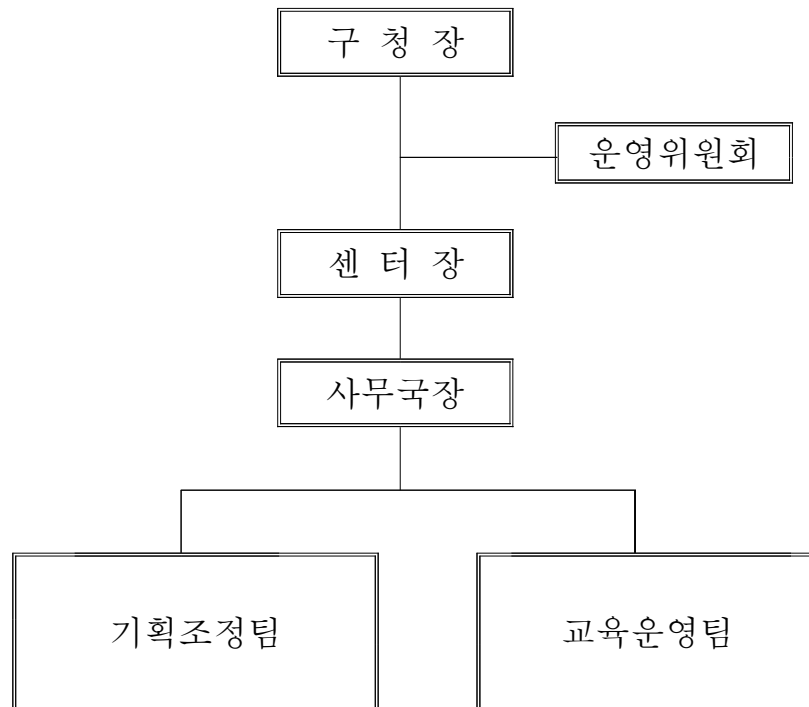
제24조(자원봉사자 관리)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원봉사자 관리지침」을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25조(보험가입) 조례 제18조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자의 결정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여건, 보험단가, 전년도 자원봉사 실적 등을 고려하여 전체 보험가입 대상인원을 확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센터의 조직체계 (제4조 관련)

[별표2] 직원 임용 선발 자격

구분	선발시험		자 격 기 준
	1차	2차	
센터장	서류 전형	면접	○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 자원봉사 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 기관, 시설, 학교, 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5급 이상 퇴직 공무원으로 자원봉사 업무 또는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 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사무 국장	"	"	○ 대학의 학사학위 취득자 중 자원봉사 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6급 이상 퇴직 공무원으로 자원봉사 업무 또는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인천광역시 검단구자원봉사센터에서 7급 상당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팀장	"	"	○ 대학의 학사학위 취득자 중 자원봉사 관련 기관·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소지자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7급 이상 퇴직 공무원으로 자원봉사 업무 또는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인천광역시 검단구자원봉사센터에서 8급 상당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운영 요원	"	"	○ 2년제 대학 졸업 이상인 자로 자원봉사기관·단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 9급 이상 퇴직 공무원으로 자원봉사 업무 또는 사회복지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소지자 ○ 8급 상당 운영요원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자원봉사센터에서 9급 상당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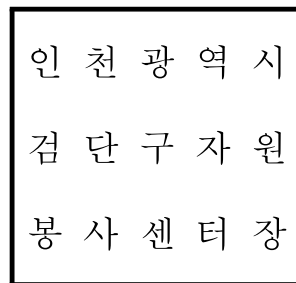
[별표3] 센터 직원의 호봉 산입표

구 분	경 력 산 입 내 용
갑 경력(10할)	- 「지방공무원법」 제2조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군 복무 경력(의무복무기간에 한함) - 시 및 군·구에서 설치한 자원봉사센터 근무경력
을 경력(8할)	- 법령과 조례에 의해 설치된 자원봉사 관련 단체 근무 경력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 「청소년 기본법」, 「장애인 복지법」, 「노인복지법」,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력
병 경력(5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용직으로 근무한 경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 단체 임원으로 근무한 경력

※ 군복무 경력 및 각종 경력인정은 10호봉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기타 제반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한다.

[별표4]

인천광역시검단구자원봉사센터장 직인



○규격 : 가로 2.1cm × 세로 2.1cm

관계 법령 발췌

☐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7조(센터의 조직)

-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둔다.
- ②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자원봉사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 ③ 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로 한다.
- ④ 그 밖에 센터의 조직·운영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 제8조(근무상한연령) ①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60세로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19. 5. 21.>
- ② 지방별정직공무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선발인원(안 제1조~제3조)

나. 특혜(안 제4조)

다. 상여금 지급 및 중지(안 제5조~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소속 부서의 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적심의회 심의를 거쳐 매년 40명 이내로 선발한다.

제4조(특혜) 모범공무원에게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줄 수 있다.

1. 승진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2.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하부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을 구청 결원 시 우선 전입
3. 연 1회 산업시찰 지원. 다만,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상여금지급)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한 수당 금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않는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구 및 구 산하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진출된 때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모범공무원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의 선발과 인사상 특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발대상) ① 제1조에 따른 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

② 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제8조의2(모범공무원 수당)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되,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퇴직하거나 면직되었을 때
2.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았을 때

인천광역시 검단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그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제2조)
- 나. 권한대행(안 제3조)
- 다. 법정대리 및 지정대리(안 제4조~제5조)
- 라. 책임(안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그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각 기관에서는 권한대행이나 직무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권한대행)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구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할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제상의 과 순위에 따른 과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4조(법정대리) ① 구청장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이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국의 직제상 과 순위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4. 실·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실·과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하부 행정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차하급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지정대리) ① 제4조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직위, 직급, 직렬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실·과·소·동 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실·과·소·동장이 해당 실·과·소·동의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할 사람을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할 사람을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한다.

제6조(책임)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 및 직무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직무대리명령서(제5조제4항 관련)

직 무 대 리 명 령 서

1. 피대리직원 :
2. 대리자 직 성명 :
3. 대리기간 :

위와 같이 대리를 명함.

년 월 일

직 성명 ㉠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제12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1. 궐위된 경우
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장·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부지사나 부시장이 2명 이상인 시·도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할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정해진 직제 순서에 따른 공무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학금의 신청(제2조)

나. 추천(제3조)

다. 선발(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 1통
2.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참고 서류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① 장학생 선발 및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장학생 선발 심사기준)에 따르며, 선발한 때에는 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장과 동장을 통하여 장학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금고를 통하여 장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

□ 총점 배분

계	통장 경력	학업성적 또는 특기
100	50	50

□ 통장 경력

근속연수	6년 이상	5년 이상 6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평 점	50	45	40	35	30	25

□ 학업 성적

고등학교 성적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검정고시 성적	100	90	85	80	75
대학교성적 (등급)	4.5 (A+)	4.0 (A0)	3.5 (B+)	3.0 (B0)	2.5 (C+)
기능, 체육 특 기 자	국가 대표급, 장관 표창 이상 수상자	시 대표급, 시장 또는 시교육감 표창 수상자	구 대표급, 구청장 또는 교육지원청장 표창 수상자		
평 점	50	40	30	20	10

- 주) 1. 통장 경력 산정 기준일 : 해당연도 『통장 자녀 장학생 선발계획』 洞통보일 현재
 2. 학생성적 기준 : 표의 점수 및 등급 이상을 범위로 하며 만점 기준은 4.5로 환산
 3. 직전 학기 기준 : 정기학기 기준. 계절학기 등 비정기 학기는 제외.

[별지 제1호서식]**장 학 금 신 청 서****1. 보호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 소 :
- 생년월일 :
- 근속기간 :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년 월)

2. 장학생 인적사항

- 성 명 :
- 학 교 명 :
- 학 년 : 학년 반(학과)
- 생년월일 :
- 성 적 : 성적증명서 첨부

3. 장학생 학업성적

- 1) 대학교 신입생의 경우 고등학교 최종 학기 과목 평균 등급 :
- 2) 대학교 신입생의 경우 검정고시 평균 점수 :
- 3)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 평균 학점 :
- 4) 복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 평균 학점 :

「인천광역시 검단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통장
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인)

인천광역시검단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통 장 자 녀 장 학 생 추 천 서

1. 보호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 소 :
- 생년월일 :

2. 장학생 인적사항

- 성 명 :
- 학 교 명 :
- 학 년 : 학년 반(학과)
- 생년월일 :

3. 확인사항

통장 근속연수	학업성적 또는 특기	학년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기타장학금 수혜여부 (금액기재)	비고

4. 동장의견 :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동장 (직인)

[별지 제3호서식]

장 학 금 지 급 신 청 서

1. 장학생 인적사항

- 성 명 : (남, 여)
- 주 소 :
- 학 교 명 :
- 학 년 : 학년 반(학과)
- 생년월일 :

2. 장학금 신청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3. 제출서류 :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은 년 인천광역시 검단구 통장 자녀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장학생) : 성명 (인)

보호자(통 장) : 성명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검단구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가. 총칙(안 제1조)
- 나. 명예퇴직수당(안 제2조~제8조)
- 다. 조기퇴직수당(안 제9조~제1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2024년에 예산 6억 8천만원 반영되었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명예퇴직수당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자) ① 명예퇴직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신분이 변동된 자는 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

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 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 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일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 퇴직 수당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 공무원

3. 당해 계급 장기재직 공무원

4. 공무원으로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간의 상위계급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

는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3장 조기퇴직수당

제9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이상 20년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안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등)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등)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등)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등)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의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등)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등)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직(계·등)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속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제3조 관련)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명예퇴직예정일
1. 1. ~ 1. 15.	2. 28.
3. 1. ~ 3. 15.	4. 30.
5. 1. ~ 5. 15.	6. 30.
7. 1. ~ 7. 15.	8. 31.
9. 1. ~ 9. 15.	10. 31.
11. 1. ~ 11. 15.	12. 31.

비고 : 1. 2월의 말일이 29일인 경우에는 명예퇴직예정일을 2월 29일로 한다.

2. 해당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자필로 작성하여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신청인 기재란	①소속		③공무원 구분	☐ 일반직	④직(계)급 (호봉)				
	②前소속 (특수경력직 공무원만 기재)			☐ 특정직()		☐ 기능직			
	⑤성명	한 글 한 자	⑥생년월일	(남, 여)					
	⑦주소	□□□-□□□							
	⑧전화번호(주택)			⑨근속기간	년 월	⑩정년일			
소속 기관 기재란	⑪비위·형벌 사항	☐ 있음 ☐ 없음	☐ 비위조사 중 ☐ 수사진행 중 ☐ 형사재판 계류 중 ☐ 징계의결 요구 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⑫정년구분	☐ 연령정년	☐ 계급정년	⑬정년	(세, 년)				
	⑭경력직 퇴직후 특수경력직 퇴직시까지의 경과기간			☐ 별정직 ☐ 계약직 ☐ 고용직	년 월	확인	인사담당관 (인)		
	⑮정년잔여기간 (수당지급대상기간)	년 월 (년 월)	⑯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역						
	⑰비위·형벌 사항 확인	☐ 있음 ☐ 없음	☐ 비위조사 중 ☐ 수사진행 중 ☐ 형사재판 계류 중 ☐ 징계의결 요구 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 부서장 직인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연금·
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
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
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
당을 반납하여야 함.

(뒤 쪽)

● 신청서 작성방법 ●

1. ②란은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당시의 소속기관을 기재함
2. ③란은 해당란(□)에 √ 표시하고, 특정직공무원(교육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종류를 ()에 기재함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당시의 공무원 종류를 기재
3. ④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당시의 직(계)급 · 호봉을 기재함
4. ⑨란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재직기간을 기재하되, 퇴직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5. ⑪란은 신청인이 해당란에 √ 표시하고, 형이 확정된 경우 형 확정일, 형량을 기재함
6. ⑫ ~ ⑰란은 해당기관의 인사담당관 · 연금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이 직접 기재함(⑭란은 특수경력직 근무기관의 인사담당관이 기재)
7.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예정일로부터 정년전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기재하되, 월 단위 이하 잔여기간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음.
8. 비위 · 형벌사항 확인은 이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직접적으로 파악, 확인할 수 있는 소속기관의 해당공무원이 하되(√ 표시), 직급과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함

(별지 제2호서식)

명 예 퇴 직 원

1. 소 속 :

2. 직 위 :

3. 직(계)급 :

4.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기·수시)명예퇴직 하고자 하
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예퇴직 사유(구체적) :

※ 재취업의 경우 대상기관, 직위, 시기(기간) 등 명시

○ 명예퇴직 신청일 :

○ 명예퇴직 희망일 :

※ 명예퇴직 희망일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
제2항에 따른 수시명예퇴직 신청자만 기재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 하

(별지 제3호서식)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소 속		공무원 구 분	☐ 일반직	지급 또는 상당계급 (호봉)	
			☐ 특정직()		
			☐ 기능직		
성 명	(한글)	생년월일	(남, 여)		
	(한자)	주 소	□□□-□□□		
전화번호(주택)		최초임용일	년 월 일	근속기간	년 월
수당청구역			산출내역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
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확인	인사담당	(인)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 부서장 직인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

(별지 제4호서식)

조 기 퇴 직 원

1. 소 속 :

2. 직 급 :

(상당계급)

3.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조기 퇴직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 하

관계 법령 발췌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20년 미만 근속한 사람이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직제와 정원이 개편되거나 폐지된 경우 또는 예산이 감소한 경우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었을 때에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시행규칙)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 또는 의회규칙을 포함한다)으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검단구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의원면직의 제한 및 제한사유의 확인(안 제2조~제3조)

다. 위반자에 대한 문책 및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안 제4조~제5조).

라. 운영세칙(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구청장은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제한 등)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69조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5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의 정도가 「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3제1호에서 규정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 담당 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정발전 유공표창 운영규칙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가(안 제2조)

나. 평가결과에 따른 시상(안 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정발전 유공표창 운영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평가결과에 따라 구정발전에 기여한 기관, 단체, 공무원 및 구민 표창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은 구 본청, 하부행정기관인 동 행정복지센터 및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구정업무 추진 종합평가
2. 상·하반기 주요시책 추진사항 평가
3. 국토대청결 운동 추진 평가
4. 주민등록 업무 종합평가
5. 자연정화 활동 평가
6. 기타 주요업무 추진에 따른 평가

제3조(평가시기)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평가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주요업무 추진평가는 매년 11월 1일 ~ 11월 30일 사이
2. 시책 추진사항은 매년 5월, 11월
3. 기타 평가는 해당부서의 필요에 의하여 실시

제4조(평가반 편성) 각종 평가는 평가 업무 담당 부서 주관하에 실시
하되 필요시 해당부서 담당직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제5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상) ① 각종 평가 결과 우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별표에 해당하는 표창장 및 시상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 및 구민에 대하여는 구청장 표창을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표창시기) 평가결과에 따른 표창시기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구정주요업무 추진 종합평가, 국토 대청결 운동 : 매년 12월 종무식
2. 자연정화 활동 : 매년 10월 행사당일
3. 기타 평가결과에 따른 표창 : 평가실시 익월 월례조회 시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각종 평가에 따른 시상금 지급기준

구 분	대 상	지 급 액	비 고
구청 주요업무추진 종합평가 (동행정 종합평가)	○최 우수 기관	1,000,000원	예산범위내
	○우 수 기관	700,000원	"
	○장 려 기관	500,000원	"
	○노 력 기관	300,000원	"
구청 주요시책추진 평가	○최 우수 기관	1,000,000원	예산범위내
	○우 수 기관	700,000원	"
	○장 려 기관	500,000원	"
	○노 력 기관	300,000원	"
국토대청결 운동 평가	○우 수 기관	700,000원	예산범위내
	○장 려 기관	500,000원	"
	○노 력 기관	300,000원	"
주민등록 업무 종합평가	○최 우수 기관	500,000원	예산범위내
	○우 수 기관	300,000원	"
	○장 려 기관	200,000원	"
자연정화 활동 평가	○최 우수 단체	500,000원	예산범위내
	○우 수 기관	300,000원	"
	○장 려 기관	200,000원	"
	○노 력 기관	100,000원	"
기타 주요업무 추진 평가	○최 우수 기관	500,000원	예산범위내
	○우 수 기관	300,000원	"
	○장 려 기관	200,000원	"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무상황 관리 명시(제4조)

나. 휴가 및 출장 규정 명시(제5조~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을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실·국·과(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팀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 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과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근 무 상 황 부

(부서 : 직급 : 성명 :)

종 별	기간 또는 일시			사 유 또 는 용 무	연락처 (전화번호)	결 재		
	부터	까지	일수 · 시간					

※ 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참·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참·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210mm×297mm 일반용지60g/m²

(별지 제2호서식)

근 무 상 황 카 드

(부서 : 직급 : 성명 :) (앞 면)

일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																
월																
월																

(뒷면)

종 별	기간 또는 일시			사 유 또 는 용 무	연락처 (전화번호)	결 재		
	부터	까지	일수 · 시간					

※ 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참·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참·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210mm×297mm 일반용지60g/m²

(별지 제3호서식)

출 장 신 청 서

결 재					협 조				
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									
직 급	성 명	출 장 목 적		기 간		출장지	서명 또는 날인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이동사항 :									
여 비					정 산				

210mm×297mm 일반용지60g/m²

인천광역시 검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다.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 라. 기 타: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등)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 신청서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 신청서를 검토하여 해당 체육시설의 운영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서를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이용(연습사용, 체력단련 등)하려는 자에게 사용일과 사용시간이 기재된 이용권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자가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부대시설 사용 확인서를 제출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⑤ 체육센터 사용을 취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일 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용허가(변경허가) 신청 및 교부 절차는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 납부 영수증으로 사용허가

(변경허가)서를 대체할 수 있다.

제3조(회원모집) ①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체육·문화분야의 강습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등록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체육시설의 운영 여건에 따라 전산 시스템으로 별도 서식의 회원카드를 제작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 회원의 모집은 강좌별 강사 수 및 시설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경우 회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경우
2. 체육센터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이용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3. 그 밖에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조(강좌의 변경 및 폐강) ① 회원은 본인이 참여하고 있는 강좌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강좌의 변경신청 시 사용료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강좌의 특성에 따라 시간을 변경해야 할 경우 회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④ 구청장은 강좌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폐강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제5조(강사배치) 구청장은 프로그램 운영상 강사를 위촉 또는 초청하여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강사의 위촉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강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긴급히 위촉해야 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사용료의 반환) ① 제4조제4항 및 조례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을 지체없이 반환해야 한다.

② 조례 제13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각 반환한다.

제7조(출입증 발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1. 체육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공무 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발급대장 등 관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이용할 경우에는 별도 서식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변경허가)서 교부대장: 별지 제5호서식
2. 이용권 발급대장: 별지 제6호서식
3. 회원권 발급대장: 별지 제7호서식
4. 출입증 발급대장: 별지 제8호서식

제9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체육시설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그 밖의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시설점검)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은 월 2회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점검일은 체육시설 여건에 따라 별도로 지정한다.

제11조(운영 위탁 신청) 조례 제18조에 따라 체육시설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9호서식의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계약) 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수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위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수탁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을 기한 내에 체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구청장이 특별히 그 계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20일 범위에서 기한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기간 연장) ① 수탁자는 조례 제1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체육시설 관리·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그 결과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에 따른 사업계획서 작성) 조례 제18조에 따라 수탁자는 매년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인천광역시 검단구 체육시설의 사용시간 및 휴관일(제9조 관련)

명 칭	구 분	사용시간	휴관일
마전게이트볼장	조 기 주 간 야 간	06:00 ~ 10:00 10:00 ~ 18:00 18:00 ~ 22:00	명절(설, 추석)연휴, 임시공휴일, 근로자의 날, 그 밖에 보수공사 등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
원당문화체육센터 불로문화체육센터	조 기 오 전 오 후 야 간	06:00 ~ 09:00 09:00 ~ 13:00 13:00 ~ 18:00 18:00 ~ 22:00	매주 일요일, 명절(설, 추석)연휴 정부 및 구청방침에 따른 휴일 그 밖의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날 ※ 수영장 : 토요일 06:00 ~ 17:00
원당게이트볼장	동절기 하절기	09:00 ~ 18:00 08:00 ~ 18:00	매주 일요일 설·추석(당일, 전일, 후일) 임시공휴일, 근로자의 날, 그 밖의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날

[별지 제1호서식]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 신청서(제2조제1항 관련)											
접수번호:											
사 용 자	단 체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법인)				성별 (남/여)			
	주 소				연 락 번 호	전 화 : H P :					
사용시설명											
사용목적 및 행사개요	목 적				사 용 인 원	명					
	행사내용										
사용기간	대관기간	년 월 일	요일	시 분	부터	(시간)	년 월 일	요일	시 분	까지	(일간)
	본행사시간	년 월 일 시	준비시작 시간		년 월 일 시						
시설사용 및 부대시설	☐ 마이크 ☐ 프로 트 ☐ 냉·난방 ☐ 에어로 실 ☐ 세미나실 ☐ 체육관 ☐ 설치시설물()										
산출내역	일금 원정(금)										
사 용 료											
변경사항 (변경허가 신청시)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인천광역시 검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 체 : (성 명) : 주 소 : ○ ○ ○ ○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서(제2조제2항 관련)									
허가번호:									
사 용 자	단 체 (성 명)								
사용목적	목 적								
사용기간	대관기간	년	월	일	요일	시	분	부터	(시간)
		년	월	일	요일	시	분	부터	(일간)
사 용 료	일금	원정(금)							
변 경 사 항 (변 경 허 가 신 청 시)	당초 허가내용				변경 허가내용				
「인천광역시 검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 ○ ○ (인)									

[별지 제4호서식]

인천광역시 검단구 체육시설 시설사용 취하서(제2조제5항 관련)

사 용 자	단 체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주 소			연 락 번 호		
	환불계좌					
시설명						
사용목적 및 행사개요	목 적			사 용 인 원		
	행사내용					
사용기간	사용취하 대관기간				(시간) (일)	
					(시간) (일)	

상기 본인은 위의 체육관 사용을 ()으로 인하여 대관 신청을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 ○ ○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이용권 발급대장(제8조제2호 관련)

번호	성명	연락처	발행일	발행시간	비고

회원권 발급대장(제8조제3호 관련)

[illegible]

[별지 제8호서식]

출입증 발급대장(제8조제4호 관련)

번호	소속	성명	발행일	회수일	비고

[별지 제9호서식]

<u>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제11조 관련)</u>				
신 청 인	성명(대표자명)		생 년 월 일	
	법 인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연 락 처			
	주 소			
위 탁 시 설 명				
위 탁 기 간				
「인천광역시 검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 및 같은 조 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검단구청장 귀하				
첨 부 서 류				
1. 인감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제18조 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0호서식]

체육시설 관리·운영기간 연장신청서(제13조제1항 관련)				
신 청 인	성명(대표자명)		생 년 월 일	
	법 인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연 락 처			
	주 소			
위 탁 시 설 명				
위 기 탁 간	당 초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연 장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연 장 사 유				
「인천광역시 검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관리·운영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관리·운영 위탁 신청 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			

관계 법령 발췌

□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① 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

...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나. 사용신청 및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다. 사용허가 및 허가기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라. 사용료의 감면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마. 시설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바. 강사의 위촉·해제·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3조)
- 사. 기전실 및 수영장 수처리실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8조~제1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신청 및 제출서류)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30일 이전 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복지회관(이하“검단복지회관”이라 한다)이 정하는 상·하반기 정기대관 일정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 일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행사(공연)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법령 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등록증 사본
3. 공연, 행사 계획서 1부. 다만, 계획서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 5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예정일 7일 이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5조에 따라 회관 자체의 공연,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공연, 행사에 대한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

1. 국제문화예술의 교류와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 및 지방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행사
2.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행사
3. 각종 학술세미나, 회의, 교육행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구청장은 제2조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 가능 여부와 사용료 납부 방법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허가 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4조(허가기간의 제한)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 시 1건의 사용신청에 대한 사용허가는 다음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공연·영화 : 15일
2. 행 사 : 3일

②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동일한 공연, 행사, 영화에 대하여는 다시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의 감면 신청) ① 조례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주의의무) 사용자는 회관의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충분한 행사 안내 및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회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8조(양도 및 재대여 금지) 회관의 사용허가 또는 임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대여하지 못한다.

제9조(입장권의 검인 및 정산) ① 사용자가 입장권을 발행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검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입장권은 입장금액,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회관 사용이 끝난 직후 구청장은 사용자 입회하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정산한다.

제10조(시설점검) ① 구청장은 회관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정기 점검을 매주 실시하여 사용자에게는 편의를 제공하고 구민에게는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정기점검일은 매주 월요일로 지정하며 구청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대장을 비치하고 점검책임자와 부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제11조(강사의 위촉)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강사의 임기는 전임강사의 경우에 한한다. 전임강사의 선발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강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긴급히 위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필요시 강좌의 원활한 진행 및 강사의 수요·공급을 고려하여 미리 2명 이상의 강사를 선발할 수 있다.

제12조(강사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직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수강생 모집 시 정원대비 접수율이 60퍼센트 미만으로써 강좌를 지속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과목의 강사
2. 결강, 지각, 강좌진행의 불성실 또는 강사평가 결과 등으로 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사람
3.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사람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구청장의 지시를 위반한 사람

제13조(강사의 책무) 담당강사는 성실한 강좌 운영 및 회원의 적정한 관리와 추가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1. 강좌에 대한 교안, 연간 수업계획 및 수업일지로 작성 보고
2. 강좌 시작과 종료 시각의 정확한 이행
3. 회원 출결상황 관리운영
4. 미등록 회원에 대한 교습 및 개인교습 금지
5. 회원 불만사항 접수 보고 및 대책 강구
6. 교습 시 거친 언행 금지
7. 회원과의 분쟁 발생 시 즉시 상황 보고
8. 결강, 지각 금지 및 부득이한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사전에 회원들에게 고지 후 보충강의 실시
9. 충분한 수업 준비 및 강좌 전후 교구 및 교실 정리정돈
10. 업무 담당자의 정당한 요구에 순응
11. 회원 확보를 위한 홍보
12. 안전사고 방지

제14조(수영 지도강사) 수영 지도강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강습 진행

을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1. 입수 및 비입수 지도를 병행
2. 안전지도 근무자는 정위치에서 바른 자세로 근무
3. 수영장 내 청결유지 및 수영 용구의 보관, 관리 철저
4. 수온, 실내온도, 수질확인 및 보고
5. 수업, 안전지도 담당시간 이외에는 사무실에 정위치하여 회원관리, 교습방법 연찬 및 고정사항 청취

제15조(생활체육 지도강사) 생활체육 지도강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회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근무하여야 한다.

1. 운동 장비의 보관, 관리
2. 회원의 운동자세 교정
3. 회원의 체력에 맞는 운동부하량 부여
4. 회원의 운동상태에 대한 지속적 관찰

제16조(탈의실 근무자의 책무) 탈의실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1. 열쇠 보관함 주변, 탈의실 내부, 샤워장에 대한 청결 유지
2. 사물함 관리, 탈의실 앞 로비 청소
3. 교대 근무시간 준수 및 공백 금지
4. 회원과의 언쟁 금지 및 언쟁 시 즉시 상황 보고
5. 회원 불편사항, 작업상황의 일지 작성 보고

제17조(셔틀버스 운행) ① 셔틀버스 운행자는 차량의 점검·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1. 배차시각 준수 및 난폭운전 금지
2. 정차시간 준수 및 지정시간 이전 통과금지
3. 차량 내·외부 청결 유지
4. 단정한 복장 착용
5. 차량운행일지의 성실한 작성 및 보고
6. 회원과의 분쟁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일지 기재
7. 승·하차 지정장소 준수 운행

② 회관 운영 및 공익상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얻어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제18조(기전실 운영) ① 기전실 근무자는 회관의 상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예방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1. 보일러의 세관, 정비, 청소, 안전점검 이행
2. 냉·온수기의 세관, 정비, 청소, 안전점검 이행
3. 도시가스 정압기실 및 사용시설 계통별 안전점검, 청소
4. 정화조 청소 및 유지 관리
5. 물탱크 청소 및 유지 관리
6. 전기시설 및 비상발전시설에 대한 예방차원의 안전점검 수행 및 저항 측정, 선로 및 시설의 누전 점검
7. 승강기 정기검사, 자체 안전검사 및 일일점검
8. 기타

② 기전실 근무자의 일일점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점검내용을 일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공조실 확인 점검
2. 보일러 드레인 실시
3. 배수펌프 상태
4. 옥상 고가수조
5. 공동구 라인 점검
6. 수·배전시설 및 각종 전기시설
7. 그 밖에 기계, 전기, 건축물 관련 필요한 사항

제19조(수영장 수처리실 운영) 수영장 수처리실 근무자는 수영장의 상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시설 유지관리 및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1. 수영장 수질관리 및 청결 유지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수영조육수의 수질 기준 유지

제20조(자체 운영규정) 조례 제19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은 위탁 사무 처리에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구청장 승인을 얻어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검단복지회관사용신청서

단 체 명		대 표 자 성 명		생 년 월 일		성 별 (남/여)	
단 체 의 소 재 지 또는 대표자 주소	E-MAIL :			연 락 처	사 자		
공 연 , 행 사 의 명 칭							
공 연 , 행 사 의 내 용							
사 용 기 간 및 시 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회 시간)						
행 사 · 안 내 요 원 수				출 연 인 원 수			
				관 램 예 상 인 원 수			
사 용 시 설 및 설 비	기 본 시 설	☐ 대강당					
	부 속 시 설	☐ 조명 ☐ 음향(마이크 추가 개) ☐ 냉·난방 (시간) ☐ 피아노 ☐ 공바톤					
입 장 료							
비 고	첨부 : 1. 행사(공연)계획서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 1부.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행 사(공 연) 계 획 서

공연(행사)장소		공 연 (행 사) 명	
공연(행사)일시		사 전 준 비	
		리허설및무대연습	
		본 (행 사) 공 연	
출 연 예 상 인 원		장비반입	
제출서류 : 1. 행사시 일정표는 2일 전까지 5부 제출 2. 장비반입시 장비목록을 작성하여 행사 2일 전까지 2부 제출 (무대효과기 · 피아노 · 비디오촬영 · 기타 전기 및 무대에 설치되는 모든 장비)			

□ 공연장 부대시설 사용여부

시설물		사용계획(시간)		시 설 물	사용계획(시간)
조 명		공연행사준비		기 타	
		본 행 사			
무 대 음 향	마 이 크 (설비포함)	공연행사준비			
		본 행 사			
	W/L (설비포함)	공연행사준비			
		본 행 사			
	M · R (AR, BGM)	공연행사준비			
		본 행 사			
피 아 노	공연행사준비				
	본 행 사				
공 바 톤					
빔프로젝트					
냉 · 난방					

위 공연(행사)를 위하여 대관규칙 및 무대안전규칙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 행사주체 담당자

■ 검단복지회관 담당자

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별지 제3호서식)

검단복지회관사용변경허가신청서

행사명 (단체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본행사일	년 월 일 월 일 요일(요일간)	사전준비일		년 월 일 월 일 요일			
기본시설 및 부속설비 사용변경 내역							
시설구분			사용시간 및 사용여부		사 용 료		
기본시설 (대강당)	공연(행사) 준비	당 초					
		변경(추가)					
	본 행사	당 초					
		변경(추가)					
부속설비	부대조명	연출조명					
		핀 스포트					
	무대음향	기 본					
		마이크(개당)					
	피아노						
	V. P.						
	M. R.						
	녹 음						
	냉 방						
	난 방						
	공바톤						
	기타사항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검단복지회관사용변경허가서

허가번호	-						
행 사 명 (단체명)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본행사일	년 월 일 월 일 요일(요일 일간)	사전준비일		년 월 일 요일			
기본시설 및 부속설비 사용변경 내역							
시설구분			사용시간 및 사용여부		사 용 료		
기본시설 (대강당)	공연(행사)준비	당 초					
		변경(추가)					
	본 행 사	당 초					
		변경(추가)					
부속설비	무대조명	연출조명					
		핀 스포트					
	무대음향	기 본					
		마이크(개당)					
	피아노						
	V. P.						
	M. R.						
	녹 음						
	냉 방						
	난 방						
	공바톤						
	기타사항	“허가조건” 참조		총 사용료		금_____원정 (₩_____원)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청 장 (인)							

(별지 제5호서식)

검단복지회관 사용허가대장

일련번호	사용허가 일 자	사용기간		사용목적	사용자			사용료	비고
		일자	시간		주소	성명	연락처		

(별지 제6호서식)

검단복지회관사용료감면(면제)신청서

단 체 명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	E-MAIL :		연 락 처	☎			
				H · P			
공연, 행사의 명칭							
공연, 행사의 내용							
사 용 기 간 및 시 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회 시간)			
행사·안내 요 원 수				출 연 인 원 수			
				관람예상인원수			
사 용 시 설 및 설 비	기본시설	☐ 대강당 ☐ 세미나실 ☐ 체육관					
	부속시설	☐ 조 명 ☐ 음향(마이크추가 개) ☐ 냉 · 난방(시간) ☐ 피아노 ☐ 공바톤					
감면(면제) 신청사유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관련 증빙서류 1부							

(별지 제7호서식)

입 장 권 검 인 신 청 서

- 단 체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 행 사 명 :
 ○ 사용시설 :
 ○ 판매기간 :
 ○ 입장권 판매 검인내역

구 분 입장권	검 인		비 고
	수 량	금 액	
계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초 대 권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입장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인)

인천광역시검단구청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입 장 수 입 정 산 내 역 서

○ 단 체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전화 :)

○ 행 사 명 :

○ 사용기간 :

○ 입장권 수입내역

구 분 입장권	검 인		판 매		잔매	정 산 내 역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입 장 수입액	당 초 사용료	추가 사용료
계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초 대 권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입내역을 붙임과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직급 성 명 (인)

입회자 직급 성 명 (인)

확인자 직급 성 명 (인)

(별지 제9호서식)

시 설 점 검 일 지

담당자	주 무	관 장

년 월 일 요일 날씨

분 야 별	점 검 대 상	점 검 결 과	조 치 사 항
건 축	건 축 물 조 경 토목구조물 지하주차장 등		
기 계	냉,온수기 수영장 수처리시설 공조시설 배기 환등		
전 기	메인판넬 선로 누전 상태		
무 대	로프장력 무대 이동 기기 연결부상태		
조 명	콘솔 작동 상태 조명기기 선로상태		
통신음향	음향설비 통신&방송설비		
기 타			

관계 법령 발췌

□ 공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6., 2022. 1. 18., 2023. 8. 8., 2023. 10. 31.>

1.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뮤지컬·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 판매나 선전에 따르는 공연은 제외한다.

제8조(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의 육성을 위하여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에 따라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방역 및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종류, 이용자의 연령 등 체육시설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하게 체육시설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 3., 2021. 5. 18.>

④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 3., 2021. 5. 18.>

[제목개정 2015. 2. 3.]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안전·위생 기준 등) ①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와 임무, 수질 관리, 보호 장구의 구비(具備) 및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수칙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2. 1. 18., 2023. 8. 8.>

②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제1항의 안전·위생 기준에 따른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제2항의 보호 장구 착용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 이용을 거절하거나 중지하게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제1조)
- 나. 장애인 체육단체 등과 장애인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제2조~제3조)
- 다. 우수선수 선발 및 장애인선수 추천, 선수해임(제4조~제6조)
- 라. 선수의 관리 및 훈련, 복무, 경비 지급(제7조~제9조)
- 마. 보수 및 퇴직금(제11조~12조)
- 바.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및 전국체육대회 참가 지원(제13조~제1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 체육단체 등의 육성 및 지원)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장애인체육 단체, 장애인체육 동호회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체육 단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단체)설립인가(등록)증 사본
2. 법인(단체)정관
3. 법인(단체) 재산목록(재산증빙서류 첨부)
4. 사업계획서(운영비부담 및 인력확보계획 포함)
5. 대표자 사용인감
6. 법인(단체)의 최근 1년간 사업실적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장애인체육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3조(장애인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장애인 우수선수(이하 "선수"라 한다)를 발굴·육성하여 장애인체육 진흥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수 육성을 위하여 선수를 선발할 수 있다.

제4조(우수선수 선발) 제3조제2항의 선수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선발하여 임용한다.

1. 전국대회 규모 이상의 경기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선수 또는 국가대표급 실력을 갖춘 선수
2. 장애인 관련 경기종목별 협회 및 연맹 등에 등록된 사람
3. 그 밖에 장애인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제5조(장애인선수 추천) 제4조제3호에 따라 선수를 추천하고자 하는 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1. 이력서
2.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제6조(선수 해임)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발된 선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필요하는 질병 등으로 선수 생활을 할 수 없을 때
2. 경기 또는 훈련을 게을리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때
3. 기량이 현저히 저하되어 선수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
4.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선수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7조(선수의 관리 및 훈련) ① 선수의 관리 및 훈련은 장애인체육 단체(이하 "선수관리단체"라 한다)에서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선수관리단체에서 선수를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 또는 그 밖의 관련 단체

에서 관리할 수 있다.

② 선수 및 선수관리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선수 훈련 상황을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수 및 선수관리단체는 전지훈련 및 대회 참가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일정별 계획서를 작성하여 훈련 및 대회 참가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선수의 복무) ① 선수의 근무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하되, 훈련시간 등을 감안하여 선수관리단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선수는 연간 20일 내에서 연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공가 및 경조사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3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선수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병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훈련 및 경기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은 연간 6개월 이내
2. 훈련 및 경기 이외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은 연간 2개월 이내
3. 병가일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첨부

④ 선수가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을 경우에는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고, 휴가일수는 별표 1과 같다.

⑤ 선수는 휴가 등을 실시하기 전 복무상황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작성, 기재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실시한다.

⑥ 선수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제9조(선수 경비 지급) ① 선수의 훈련 지원 및 선전 장려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훈련복 및 장비, 대회출전 선전장려금 및 입상자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훈련복 및 장비의 지급 신청은 선수 및 선수관리단체에서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대회출전 선전장려금 및 입상자보상금의 지급액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의료보상) ① 선수가 훈련 또는 경기 중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훈련 또는 경기 중 부상에 대비하여 선수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을 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보수 등) ① 선수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연봉제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우수한 선수에 대하여는 2년 이상 장기계약 할 수 있다.

② 월 보수는 연봉액 중 퇴직금을 제외한 금액의 12분의1로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③ 연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

1. 연봉은 별표 3의 점수산정 기준표에 따라 정한다.

2. 등급별 연봉액에 대한 등급결정은 별표 4를 참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에서 매년 결정할 수 있다.

3. 선수가 훈련 및 경기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여 4회 이상 대회에 출전 할 수 없을 때에는 전년도 성적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

제12조(퇴직금) ① 선수가 재직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퇴직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퇴직금은 구 소속으로 임용되어 재직한 기간을 기준으로 총 근무일수를 365일로 나눈 수치에 월 평균보수를 곱한 금액

2. 월 평균보수는 퇴직 전 3개월의 보수 총액을 퇴직 전 3개월의 일수로 나눈 수치에 30을 곱한 금액

② 퇴직자의 퇴직금은 별지 제6호서식의 퇴직금 청구서에 따라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자는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되어야 한다.

③ 퇴직금 지급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퇴직금 청구서 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① 장애인체육 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 시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대회의 개최를 장애인 체육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전국체육대회 참가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구 관내 선수단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특 별 휴 가 일 수

구 분	휴가일수		
	종합우승	단체1위	개인1위
전국규모대회	3	2	1
전국체전	7	4	3
세계대회	10	7	5

[별표 2]

대회출전 선전 장려금 지급액

(단위 : 원)

구 분	국 제 대 회	전국(체전)규모대회	비 고
금 액	선수당 500,000	선수당 80,000	

※ 국제대회 : 올림픽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아시아선수권대회

(각 종목별 공인된 국제대회 등)

대회출전 입상자 보상금 지급액

(단위 : 원)

구 분	1위	2위	3위	비고
국제대회	500,000	400,000	300,000	
전국장애인체전	300,000	200,000	150,000	
전국규모대회	200,000	150,000	100,000	

[별표 3]

점 수 산 정 기 준 표

구분	배점	기 준	비 고
경 력	10	○ 선수단 근무경력(우리구 입단) - 3년이상 : 10 - 2년이상 3년미만 : 8 - 1년이상 2년미만 : 6 - 1년미만 : 4	
경기력	70	○ 최근 1년간 각종대회 입상경력 - 국제대회 단체·개인전 : 1위 40, 2위 30, 3위 20 - 전국체전 단체·개인전 : 1위 30, 2위 20, 3위 15 - 전국규모 단체·개인전 : 1위 18, 2위 15, 3위 13	
복무등	20	○ 복무상황 등 - 근무태도 : 10점(탁월10,우수9,보통8,미흡7,부진6) - 기여도 : 5점(탁월5,우수4,보통3,미흡2,부진1) - 장래성 : 5점(탁월5,우수4,보통3,미흡2,부진1)	

(별표 4)

- 등급별 급여 지급액 기준표

등급별 급여 지급액 기준표				
구분	A(90점이상)	B(80점이상)	C(80점미만)	비 고
선수	<u>32,000,000</u>	<u>28,000,000</u>	<u>24,000,000</u>	

※ 단,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선수에 대해서는 A등급을 적용하여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 급여 기준표는 타지역 장애인엘리트 선수의 연봉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체육 단체 구성 신청서

단 체 명 칭		
신 청 자	법인(단체)명	
	주 소	
	성명(대표자)	
법인(단체) 설립근거		
법인(단체) 설립목적		
단 체 운 영 방 법		
기 타 사 항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체육 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단체)장 직인 인천광역시검단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법인(단체)설립인가(등록)증 사본 2. 법인(단체)정관 3. 법인(단체) 재산목록(재산증빙서류 첨부) 4. 사업계획서(운영비부담 및 인력확보계획 포함) 5. 대표자 사용인감 6. 법인(단체)의 최근 1년간 사업실적		

(별지 제2호서식)

추천서

주 소 : 인천광역시 검단구 동 번지

성 명 : (한 자 :)

주민등록번호 :

상기자는 우수장애인 선수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자이프로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체육진흥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우수 선수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 단체장 직인

인천광역시검단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우수 선수 훈련일지

담당자	체육 업무 담당 팀장	체육 업무 담당 과장	결 재

년 월 일

작성자 : (인)

참석 현황	참석대상	참석인원	불참자	불참자내역				
				계	교육	연가	병가	기타
훈련 내용	시 간		훈련내용			장 소		
특이 사항								

(별지 제5호서식)

훈련복 및 장비구입 신청서

품명	규격	현보유량	소요량		사유	비고
			명수	개수		

위와 같이 훈련복 및 장비구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별지 제6호서식)

퇴 직 금 청 구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퇴 직 년 월 일	
퇴직당시 소속기관	인천광역시 검단구청 (인천광역시 검단구 체육 관련 부서)		퇴직당시직명	
첨 부 : 사직서 1부				
년 월 일				
청구인 : (인)				
접수번호 : 호 접수일자 :				
재직기간 :				
소 속	직 명	근 무 기 간	발 령 청	확인(업무담당)
		. . . ~ . . . (총근무일수 : 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	
○ 지급금액 : 금 원정(금 원)				
○ 퇴직전 : 원		○ 퇴직금 : 원	○ 퇴직금	
월평균 보수		산출액	전환금 : 원	
			납부액	

결	담당자	체육 담당 부서 팀장	체육 담당 부서 과장	체육 담당 부서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재			전 결			

※ 비고 : 청구인은 점선 윗부분만 직접 기입한다.

(별지 제7호서식)

퇴직금 청구서 접수대장

접수번호	소 속	직 위	성 명	퇴직일자	접수일자	비 고

(별지 제8호서식)

근 무 상 황 부

[소속 : 인천광역시 검단구 체육 관련 부서 직 : 성명:]

종 별	기 간 또 는 일 시			사 유 또 는 용 무	연 락 처	결 채		
	부 터	까 지	일 수 시 간			수 명 자	체 육 담 당 팀 장	체 육 담 당 과 장

인천광역시 검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안

1. 제안이유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지방회계법 시행령」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으로 2026.7.1. 검단구의 투명한 회계 운영 및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무위임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4조)

나. 예산집행품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지방회계법 시행령」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수행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무를 겸할 수 있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

②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회의장(이하 “구의회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구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에 따른다.

② 구의회의 경우에는 구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구청장, 국장, 단장·실장·담당관·과장 등에게 각각 예산집행 품의를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 전결처리 규칙」에서 정한 대로 할 수 있다.

1.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2.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3. 봉급·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4. 그 밖의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부서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구의회의 경우에는 구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합의 한도는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제7조(지출의 절차) ① 추정금액 200만원 미만 물건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은 카드구매 건에 한하여 계약서 등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증명서류를 갖추어 일반지출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추정금액 200만원 미만 소모품 구매 시에는 산출기초조사서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구매명세서는 첨부하여야 한다.

③ 추정금액 500만원 미만의 완성된 물건을 카드로 현장에서 구매하는 경우는 계약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증명 자료를 갖추어 검수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한 사람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0조(회계관계공무원 등)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된 회계관계공무원
2. 제1호 이외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국유·공유재산관리, 그 밖에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1조(재정보증관리책임자)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구청장으로 한다.

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그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설정, 갱신, 관계 서류 보관, 이동 통보 등 일반관리업무와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그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임명되었을 때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의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구청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 등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설정한다. 다만, 재정보증관리책임자가 일괄로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보험계약체결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재정보증기간 중에 회계관계공무원이 전출 또는 퇴직 등의 사유로 교체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분으로 납입된 보험료를 후임자에게 승계토록 한다.

제13조(재정보증한도액) ①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재정보증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금액으로 같음한다.

제14조(보험료의 지급)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내용

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넘을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이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때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16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가 회계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해당 구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관리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제2조제1항 관련)

관 직 명	본 청	구의회	제1관서	기타관서·임시관서	동
회계책임관	회계업무담당국장	-	-	-	-
정수관	세입업무담당국장	사무부서장	관서의 장	관서의 장	동장
분임정수관	지방세업무 세외수입업무 주관 단장·실장·담당관·과장	-	세입업무담당과장	-	-
재무관	회계업무담당국장	사무부서	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	동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	회계업무담당과장, 각 단장·실장·담당관·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	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각 과·지소장 (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관서의 장 ·임시관서의 장	-
총괄채권관리관	세입업무담당국장	-	-	-	-
채권관리관	소관 단장·실장·담당관·과장	사무부서장	관서의 장	관서의 장	동장
총괄부채관리관	예산업무담당실(과)장	-	-	-	-
부채관리관	소관 단장·실장·담당관·과장	사무부서장	관서의 장	-	-
총괄기금관리관	예산업무담당실(과)장	-	-	-	-
통합지출관	회계업무담당과장	-	-	-	-
지출원	지출업무담당	의정업무담당	지출업무담당	-	지출업무담당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	세입업무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	세입업무담당	세입업무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	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담당	세입·재무업무담당(자)
일상경비출납원	각 단장·실장·담당관·과장 서무업무담당	-	각 과·지소 서무업무담당	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 담당 또는 서무업무 담당(자)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이 아닌 공무원 (다른기관에서 일상 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지출업무담당자 또는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의 공무원	지출업무담당자 또는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의 공무원	지출업무담당자 또는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의 공무원	서무업무담당 또는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의 공무원	지출업무담당자 또는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의 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 비고
1. 담당: 팀장 등의 6급 이상
 2. 담당자: 6급 이하의 실무 담당자
 3. 지출원: 지출업무담당뿐만 아니라, 재무·회계업무담당까지 지정이 가능함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기타관서(지출원이 없는 관서)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

〔별표 3〕

징수관의 직무위임(제3조제1항 관련)

1. 본청의 경우

가. 법령, 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나.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및 전입금의 징수결정
다.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천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라. 그 밖에 건당 1천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2. 제1관서의 경우

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나.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및 전입금의 징수결정
다.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천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라. 그 밖에 건당 5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별표 4〕

재무관의 직무위임(제4조제1항 관련)1. 본청 (추정금액²⁾ 기준)

구 분	공사 또는 토지매입	제조·용역·물건매입	기 타
재 무 관	3 억 원 초 과	1 억 원 초 과	5 천 만 원 초 과
분 임 재 무 관	3 억 원 이 하	1 억 원 이 하	5 천 만 원 이 하

2. 제1관서 (추정금액 기준)

구 분	공사 또는 토지매입	제조·용역·물건매입	기 타
재 무 관	5 천 만 원 초 과	2 천 만 원 초 과	2 천 만 원 초 과
분 임 재 무 관	5 천 만 원 이 하	2 천 만 원 이 하	2 천 만 원 이 하

※ 집행금액에 관계없이 분임재무관에게 위임 가능한 경우

가.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반환금, 지방채원리금, 대행사업비, 행정재산의 취득에 따른 보상금, 위탁금, 보조금

나. 일상경비의 교부

다. 조달물자의 구매

라.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

2) 추정금액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호)

[별표 5]

회계담당부서[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 관련)

대상경비	합의대상금액(추정금액)			비 고
	회계업무담당 팀장	회계업무담당 과장	회계업무담당 국장	
1. 공사 · 부동산 매입 계약과 관련된 경비	-	건당 500만원 이상 3억원 미만	건당 3억원 이상	
2. 용역 · 물건 제조 · 구매	-	건당 5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건당 1억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건당 50만원 이상	-	
4. 민간위탁경비	전액	-	-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	전액	-	-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전액	-	-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	-	전액	
8. 그 밖에 해당 자치단체에서 정한 경비	-	전액	-	

[별표 6]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제6조 관련)

대상경비	합의대상 금 액
1. 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시비 또는 구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 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구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구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구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이외에도 구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	전 액

관계 자치법규 발췌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회계 처리 등에 관한 사항)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 회계 처리의 통일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 등 국가의 회계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회계 처리에 관한 세부 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② 이 영과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인천광역시 검단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안

1. 제안이유

2026. 7. 1. 검단구 출범으로 인한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위원회의 자격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검단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협상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출받은 제안서를 심사한다.

제3조(평가위원의 자격 등) ①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평가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이 경우 분야별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전공자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6. 시민단체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사업부서 담당자는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평가위원회 구성 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③ 사업부서 담당자는 제안서의 제출자(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순에 따른다.

④ 사업부서 담당자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 평가위원을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에 관하여는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사업부서 업무담당자로 하고, 서기는 사업부서 업무담당자로 한다.

⑦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는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으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

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4. 최근 1년 이내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않거나 사전접촉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의 심사 대상자와 친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평가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사업부서에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입찰 참가자는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평가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사업부서는 기피·회피 대상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에 대한 심사에서 배제해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 사업부서 담당자는 회의에 부칠 안건으로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

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어떠한 설명도 들을 수 없다.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제7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 기준 범위에서 해당 평가를 위해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8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입찰 관련 서류나 입찰공고내용 등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제3조제2항 관련)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전문분야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직 장	직 장 명			직위(직급)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학력사항	취득년월	학 교		학 위	전 공	
경력사항	근무기간	근 무 처		직 위	주요업무	
자격증 보유현황	취득년월	자 격 증 명		인가·관리기관	비 고	
저서 및 논문						
기타사항						

위와 같이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제3조제2항 관련)

[illegible]

(별지 제3호서식)

평가위원 서약서(제4조제7항 관련)

본인은 『 사 업 명 』 수행기관(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확인하며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확인 사항]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사실이 없음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지 아니함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사실 없음
4. 최근 1년 이내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없고 사전접촉한 사실 없음
5. 그 밖의 심사대상자와 친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음

[이행 사항]

1. 제안서 및 평가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것임
2. 제안서 평가에 공정하고 성실히 임할 것임

년 월 일

평가위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 (주관적)

☐ 사업명 :☐ 업체명 :

평가위원	배점	평점(주관적 평가)						최상위
		○항목	○항목	○항목	○항목	○항목	총점	또는 최하위
평균점수								

※ 최상위와 최하위를 제외한 후 평균 산정하며 최상위와 최하위의 평점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씩만을 제외

작 성 자 :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검 토 자 :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의2서식)

입찰가격 및 객관적 지표 채점 집계표

□ 사업명 :

업 체 별	입찰가격평가			기술능력평가 (객관적)		비 고
	입찰금액	배점	평점	배점	평점	

작 성 자 :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검 토 자 :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의3서식)

업체별 총괄 순위표

□ 사업명 :

업체별	평 점				협상대상 순 위
	주관적평점	객관적평점	가격평점	총 점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단순 물품구매는 제외한다)·용역(청소·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한다)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2012. 5. 23., 2013. 3. 23., 2014. 11. 19., 2016. 9. 13.>

② 삭제 <2012. 5. 23.>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를 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 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⑤ 삭제 <2016. 9. 13.>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⑦ 삭제 <2022. 9. 20.>

⑧ 제1항의 평가를 위한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해당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세부 심사 기준 및 절차에 따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2013. 3. 23., 2014. 11. 19., 2016. 9. 13., 2017. 7. 26.>

⑨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1. 9. 15.>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 9. 15.>

⑪ 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⑫ 삭제 <2016. 9. 13.>

⑬ 삭제 <2016. 9. 13.>

[전문개정 2010. 7. 26.]

인천광역시 검단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불용의 결정 등 물품 출납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16조)

다. 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등 검사 및 인계에 관한 사항(안 제17조~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라. 기 타

1)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2)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별첨

인천광역시 검단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본청

물품관리관 - 물품 담당 부서장

물품운용관 - 각 부서장

물품출납원 - 재산관리 담당

분임물품출납원 - 각 부서 주무 담당

2. 의회

물품관리관 - 의회사무부서장

물품출납원 - 주무담당

분임물품출납원 - 담당자

3. 보건소

물품관리관 - 보건소장

물품운용관 - 주무부서 부서장

물품출납원 - 주무 담당

분임물품출납원 - 담당자

4. 동

물품관리관 - 동장

물품출납원 - 주무담당(주무가 없는 동은 물품담당)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속기관에 있어서는 직속기관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사무위임) 조례 제4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위임사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물품의 취득

2. 제16조에 따라 불용물품에 대한 불용결정 및 처분

제4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 매입·수리·제조 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9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④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주관 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에 따라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2조(소모품의 교부) ① 항상 소모하는 물품·우표·수입증지 그 밖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 후 발생품·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부서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관리 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주관 실·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전환 및 양여) ① 물품관리관의 물품을 관리전환(사용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상호 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7조에 따라 소요조회 결과 소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 담당 국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따라 인계인수한다.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준하여 처리한다.

제15조(기록을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할 필요하지 아니한다.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관보·도보·신문·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할 필요가 있는 물품

제16조(불용의 결정) 구청장은 본청 또는 보건소, 동, 의회사무부서의 소속 직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 전결처리 규칙」에 따라 불용 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5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1호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2호서식)
3. 물품카드 등록부 (별지 제13호서식)
4. 도서대장 (별지 제14호서식)

제18조(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사조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물품재고조사등) 조례 제32조에 따라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별지 제1호서식]

물품매입·수리·제조 품의 요구서

건 명:		담당자	담 당	주관 부서장	국 장	부구청장	구청장
부 서		협 조 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 성 목							
통 계 목							
대 분 류 (산출부기)							
아래와 같이 매 입 수 리 제 조 코자 합니다.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 출납원				
물 품 (매 입 · 수 리 · 제 조) 명 세							
물품분류번호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용 도
위 물품을 년 월 일 까지 수 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조 년 월 일 재 무 관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

1. 기증자	주 소					
	성 명			직 업		
2. 기 증 품	품 목	단 위	규 격	수 량	금 액	
3. 기 증 목 적						
4. 사 용 용 도						
5. 기증의뢰일시 및 장 소	일 시			장 소		
6. 물품관리상 필 요 사 항						
7. 기타수리여부 및 예 산 액						

※ 주 : 출납원에게 수령통지서로도 사용

상기와 같이 [기증
수령] 하였습니다.

년 월 일

기 증 자 : 인

수령기관의 장 : 인

[별지 제3호서식]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기 관 명

(전화번호)

불용결정통보서

발신 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장부물품 분류번호	품명	품목의 설명	규격 (기계제 작번호)	단위	수량	장부 가액	취 득 년월일	상태	불용결 정사유	불용결정 년월일	회계명	물품 소재지	보관 관서명	처분 의견	기타 사항

[별지 제4호서식]

불 용 품 폐 기 (해 체) 조 서

① 관련문서번호					
② 장 소					
③ 일 자					
집 행 자	④ 직위·직급		⑤ 성 명	인	
입 회 자	⑥ 직위·직급		⑦ 성 명	인	
⑧ 정부물품 분류번호	⑨ 품 명	⑩ 단 위	⑪ 규 격	⑫ 수 량	⑬ 금 액
⑭ 폐기처분의 방법 또는 해체 이유					
⑮ 해체할때활용가능 부품명세(난이부족할 때는 별첨)					
⑯ 기 타 사 항					

[별지 제5호서식]

물 품 공 차 증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차 용 기 간	상시보관장소	용 도

위 물품을 공차함.

국

과

전용자

직

성명

인

[물 품 출 납 원]

분임물품출납원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청 구 및 출 급 증
(일반회계관서용)

수신 :

①청 구 번 호 :

발신 :

②출급증빙서번호 :

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결 재	주관 부서장	인
년 월 일											분임물품출납원	인
④ 일련 번호	⑤ 정부물품 분류번호	⑥ 품명	⑦ 규격	⑧ 단위	⑨ 청구량	⑩ 용도	⑪ 단가	⑫ 취득금액	⑬ 출 급 량	⑭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물품관리관	⑮			
년 월 일								물품출납원	⑮			
⑯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분 임 물 품	⑮			
년 월 일								출 납 원	⑮			
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확 인 관	⑮			
년 월 일												

주 : 2부작성 사용

청구 및 출급증 기재요령

- ① 청구번호 : 청구부서 분임물품출납원이 부여하고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 ② 출급증빙서 번호 : 물품출급 시에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에 등록된 번호를 기입한다.
- 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 청구일자를 기입하고 날인한다.
- ④ 일련번호 : 생략
- ⑤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 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 ⑥ 품 명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 ⑦ 규 칙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 ⑧ 단 위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 ⑨ 청 구 량 : 분임물품출납원이 청구량을 기입한다.
- ⑩ 용 도 : 주된 사용목적에 기입한다.
- ⑪ 단 가 : 생략
- ⑫ 취득금액 : 취득한 금액을 기입한다.
- ⑬ 출 급 량 : 물품관리관이 출급한 양을 기입한다.
- ⑭ 비 고 : 장부기재사항이나 청구취소 등의 참고사항을 기입한다.
- 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 분임물품출납원의 조사사항을 확인하고 물품관리관이 승인 날인한다.
- ⑯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 분임물품출납원이 날인하고 장부에 기입한다.
- 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 물품관리 관계장표를 정리 후 확인관(물품관리관, 분임물품출납원 등)이 확인한다.

※ 참고사항 :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수령과 동시에 청구 및 출급증 원본을 받아 100매 단위로 물품출납순서에 따라 편철 보관한다.

[별지 제7호서식]

도 서 대 출 대 장

결재		대출 번호	관리 번호	분류 번호	도서 명	차 수 자				대출 기간	독촉 상황	변상 상황	반납 일자	비 고
주관 부서장	분임물품 출납원					소 속	직 명	성 명	인					
										부터 까지				

[별지 제8호서식]

우 표 출 납 부

결 재		연 월 일	적 요	수	급	잔	사용자인
주관 부서장	분임물품출납원						

(주) : (1) 권종별로 계좌를 결정하여 정리한다.

(2) 발송처 발신자는 참고란에 기입한다.

[별지 제9호서식]

반 납 및 인 수 증

(일반회계관서용)

수신 :

①반 납 번 호 :

발신 :

②인수증빙서번호 :

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결 재	부 서 장		인
년 월 일								분임물품출납원		인
④ 일련 번호	⑤ 정부물품 분류번호	⑥ 품명	⑦ 규격	⑧ 단위	⑨ 반 납 수 량	⑩ 반납사유	⑪ 반납품상태	⑫ 인 수 량	⑬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물품관리관	①인		
년 월 일							물품출납원	①인		
⑮ 위 물품을 인수함.							분 임 물 품	①인		
년 월 일							출 납 원			
⑯ 장부기입을 확인함.							확 인 관	①인		
년 월 일										

반납증 및 인수증 기재요령

- ① 반납번호 : 물품을 반납하는 부서의 분임물품출납원이 반납순서에 따라 부여하는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 ② 인수증빙서번호 : 물품을 반납 받을 시 물품수입 시 출급원장에 기입하는 증빙서번호를 기입한다.
- 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 반납일자를 기입하고 날인한다.
- ④ 일련번호 : 생략
- ⑤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 ⑥ 품 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 ⑦ 규 칙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 ⑧ 단 위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 ⑨ 반납수량 : 분임물품출납원이 반납할 수량을 기입한다.
- ⑩ 반납사유 : 반납사유를 간단하게 기입한다.
- ⑪ 반납품상태 : 물품관리조례 제5조 별표1에 의한 상태구분을 기입한다.
- ⑫ 수 량 : 물품관리관이 인수한 량을 기입한다.
- ⑬ 비 고 : 장부금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 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 물품관리관 및 물품출납원이 날인한다.
- ⑮ 위 물품을 인수함 : 인수자 및 담당관(물품출납원)이 날인한다.
- ⑯ 장부기입을 확인함 : 물품관리 관계장표를 기입 후 확인관(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등)이 날인한다.

※ 참고사항 : 청구 및 출급증에 동일한 방법으로 편철 보관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물품 관리전환/무상양여 합의서

① ()을 하고자 하는 기관							
②지방자치 단 체 명		③ 소 관 기관명		④ 회계명			
⑤정부물품분류번호	⑥품명	⑦규격	⑧단위	⑨수량	⑩금액	⑪물품의상태	⑫비고
⑬ (관리전환 무상양여)의 조건							
⑭ (관리전환 무상양여)을 필요로 하는 사유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 인천광역시검단구청장 ①인 물품관리관 직 · 성명 ①인 물품출납원 직 · 성명 ①인							
⑮ () 받고자 하는 기관							
⑯지방자치 단 체 명		⑰ 소 관 기관명		⑱ 회계명			
⑲ ()받은 후		⑳ 물품의 분류					
		㉑ 물품의 용도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 수 관 서 의 장 ①인 물품관리관 직 · 성명 ①인 물품출납원 직 · 성명 ①인							

(주) 2부작성 인계인수기관 1부씩 보관

[별지 제11호서식]

물품수입 및 출금원장

① 물품 관리관	② 수입 증빙서 번호	③ 출급 증빙서 번호	④ 년 월 일	⑤ 회 계 구 분	⑥ 정 리 구 분	⑦ 적 요	⑧ 정부 물품 분류 번호	⑨ 품 명	⑩ 규 격	⑪ 단 위	⑫ 수 입			⑬ 출 급			⑭ 카드 번호	⑮ 정 리 일 자	⑯ 담 당 자 인	⑰ 물품 출납원	
											⑬ 단 가	⑭ 수 량		⑰ 금 액	⑱ 수 량						⑳ 금 액
												⑮ 신 품	⑯ 기 타 상 태 별		⑮ 신 품	⑯ 기 타 상 태 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기재요령

- ① 물품관리관 : 물품의 수입 및 출급에 관한 물품관리관이 확인 날인한다.
- ② 수입증빙서번호 : 수입에 관계된 증빙서 즉 납품서 또는 입고증등에 의한 물품의 증가를 초래하는 증빙서 번호를 기입한다. 단, 반납에 의한 수입시에는 "반0001" 부터 순서대로 기입한다.
- ③ 출급증빙서번호 : 청구 및 출급으로 인하여 물품의 감소가 발생하는 순위의 일련번호로 증빙서 번호를 부여하되, "대"라는 부호를 붙이며, 출급건수의 경험건수에 따라 4~5단계 숫자로 구성된다. (예 :대-0001-88, 1988년도 첫번째 출급증빙서를 의미한다)
- ④ 년 월 일 : 생략
- ⑤ 회계구분 :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명을 기입하고 예산과목 또는 각 관서별 필요에 따른 계정과목등을 기입한다.
- ⑥ 정리구분 : 물품관리조례 제6조 별표 2의 정리구분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 ⑦ 적 요 : 거래상태(부서명, 납품회사명)를 기입한다.
- ⑧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 ⑨ 품 명: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 ⑩ 규 격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 ⑪ 단 위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 ⑬ 단 가 : 생략
- ⑬ 카드번호 : 해당번호의 카드 등록번호를 기입한다.
- ⑭ 정리일자 : 해당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년월일을 기입한다.
- ⑮ 담당자인 : 해당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후 기입담당자가 확인 날인한다.
- ⑯ 물품출납원 : 해당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후 물품출납원이 확인 날인한다.

※ 참고사항

1. 본 서식은 물품출납원이 기록 유지하는 것으로서 물품의 수입과 출급에 관한 사항을 기입하여, 수입과 출급의 원장 및 거래 증빙서등록부의 기능을 겸한다.
2. 여러 품목의 소모품을 일시에 동일분임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할 경우에는
 ⑨품명란에 증빙서에 기입된 맨처음 품목의 품명과 그밖의 품목수를 기입하고
 ⑧정부물품 분류번호 ⑩규격 ⑪단위 ⑬출급란의 기입을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제12호서식]

비 품 출납 및 운 용 카 드

(갑지 전면)

①정부물품 분류번호		②품명		③규격		④단위		⑤회계(계정) 분류		⑥정수		⑦내용 연수		⑧물 품 출납원⑨		⑨물 품 관리관⑩	
⑩ 연 월 일		⑪ 정리 구분		⑫ 단 가		⑬ 수입 (수량/ 금액)		⑭ 출급 (수량/ 금액)		⑮ 재고 (수량/ 금액)		⑯ 운용 (수량/ 금액)		⑰ 물품 출납 원⑱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갑지 후면)

운 용 관 서 별 현 황																
일련 번호	사 용 부서명	정리 구분	수 량	정리 구분	누 계	정리 구분	누 계	정리 구분	누 계	정리 구분	누 계	정리 구분	누 계	정리 구분	누 계	이 기 사 항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을지 전면)

운 용 관 서 별 현 황																
일련 번호	사 용 부서명	정리 구분	수 량	정리 구분	누 계	정리 구분	누 계	정리 구분	누 계	정리 구분	누 계	정리 구분	누 계	정리 구분	누 계	이 기 사 항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을지 후면)

운 용 관 서 별 현 황																
일련 번호	사 용 부서명	정리 구분	수 량	정리 구분	누 계	정리 구분	누 계	정리 구분	누 계	정리 구분	누 계	정리 구분	누 계	정리 구분	누 계	이 기 사 항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비품 출납 및 운용 카드(갑지) 기재요령

- ①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 ② 품 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 ③ 규 격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 ④ 단 위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 ⑤ 회 계 : 일반회계 또는 관계 특별회계명을 기입하고 예산과목 또는
 각 관서별 필요에 따른 계정과목 등을 기입한다.
- ⑥ 정 수 : 물품관리지침에 따라 책정된 정수를 기입한다.
- ⑦ 내용연수 : 물품별 내용연수를 기입한다.
- ⑧ 물품출납원 : 카드 작성 시 직인을 날인한다.
- ⑨ 물품관리관 : 카드 작성 시 직인을 날인한다.
- ⑩ 년 월 일 : 생략
- ⑪ 정리구분 : 물품관리조례 제6조 별표2의 정리구분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 ⑫ 단 가 : 생략
- ⑬ 수 입 : 생략
- ⑭ 출 금 : 생략
- ⑮ 재고(수량/금액) : 보관 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수량 및 금액을 기입한다.
- ⑯ 운용(수량/금액) : 운용중인 물품의 수량 및 금액을 기입한다.
- ⑰ 물품출납원 : 물품출납원의 인을 날인한다.

※ 참고사항

1. 본 카드는 바인더에 편철하거나 상자 또는 철재상자 서랍에 보관 관리
2. 해당 품목의 사용부서가 많아 1매의 카드에 사용부서명을 모두 기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을지 카드를 동시에 사용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카드 등록
 번호에 순서적으로 접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3. 물품고유번호 부여는 중요물품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물 품 관 리 카 드 등 록 부

No. _____

	①등록번호		④ 담당관 인	⑤ 계 인	⑥ 등 록 일 자	⑦ 정부물품 분류번호	⑧ 품 명	⑨ 수 량	⑩ 비 고
	② 비품	③이력 카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물품관리카드 등록부 기재요령

- ① 등록번호 : 소모품관리 및 출납카드,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중요 물품이력카드란에 카드를 발행하는 순서에 따라 각각 별개의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 ④ 담당관인 : 물품관리관이 확인한다.
- ⑤ 계 인 : 담당공무원이 카드와 맞추어 물품관리관 직인으로 날인한다.
- ⑥ 등록일자 : 생략
- ⑦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 ⑧ 품 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 ⑨ 수 량 : 카드 등록 시 비품의 재고량을 기입하며, 중요물품이력카드의 등록 시에는 수량을 기입하지 아니한다.
- ⑩ 비 고 :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 참고사항 : 물품카드의 통제를 위한 등록부로서 물품관리관이 유지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도 서 대 장

결재		수입 년월일	관리 번호	부서명	도서명	저자 또는 발행 기관	출판사	출판 년월일	규격	구입처	가격 비고
부서장	분임 물품 출납원										

[별지 제15호서식]

물 품 검 수 조 서

(전면)

(후면)

품목수량			품목	규격	단위 칭호	단가	계약 상의 수량	전회 까지의 납품 수량	금회 검수량	미 납 량
납 품 자										
계약금액										
계약체결 년 월 일										
납품기한										
검 수 년 월 일		물 품 출납부 등 기								
검수장소		물 품 출납원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								
년 월 일		분 임 납 품 출납원								
검수자 국과직 성명 ㉠										
입회자 국과직 성명 ㉠		㉠								

(주) 두가지 이상 또는 분할납부에 대하여는 후면을 이용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물품검사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물품출납원 소관의 장부와 물품에 대한 검사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하였던 바 그 내역은 별첨과 같음.

년 월 일

검 사 원	직	성명	①인
물품출납원	직	성명	①인
입 회 자	직	성명	①인

(주) 내역은 별첨으로 작성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

인 계				사 무 취 급 구 분	
물 품 명	수 량	금 액	인계 연월일	전 임 자	후 임 자
					연 월 일까지

위와 같이 보고함.

소속기관(의회·소·동)의 장 직 성명

①인

인천광역시검단구청장 귀하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12. 불용물품 처분

라. 불용 대상 및 결정권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 취득 단가가 500만원 이상인 물품
 - 불용 금액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 전결규정으로 결정할 수 있음

2) 물품관리관

- 취득 단가가 500만원 미만인 물품
-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
 - 단,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물품은 제외

16. 물품의 검사

가.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나. 검사방법

- 정기검사
 - 매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실시
- 수시검사
 -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교체된 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 검사대상 물품 및 원칙

- 물품관리대장에 등재된 모든 물품

○ 전자태그 기반 조사를 원칙으로 함

- 다만, 전자태그 미부착 대상물품은 수기 검사 실시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관리책임 등 공유재산 총칙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1조)
- 나.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안 제22조~제24조)
- 다. 공유재산 대장 및 도면에 관한 사항(안 제25조~제32조)
- 라. 청사 및 관사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33조~제3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지정)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공유재산(이하 "구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공유재산 업무 담당 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총괄한다.

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1. 행정재산

가. 본청 - 업무주관 부서장(공공시설관리 부서장)

나. 보건소, 동 - 보건소장, 동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 과장)

다. 의회 - 의회사무 부서장

라. 그 밖의 행정재산 - 사업주관 부서장

2.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 부서장

3. 공유임야 - 임야주관 부서장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은 공유재산 업무 담당 부서

장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구유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② 재산관리관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에게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등록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현황과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 승인 신청)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재분류 또는 재산관리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재산을 인수받을 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1. 재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 2. 토지지용계획확인서
- 3.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제6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1. 물건의 표시
-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경계선) 구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훼손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른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계간의 재산이관 등)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 간에 이관코자 할 경우 또는 같은 회계 안에서 사용목적에 따라 이관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 간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에 사고로 말미암아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히 처리가 필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8조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 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 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

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교환을 필요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4.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6조(교환차액의 납기) 구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 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17조(가격평정) ① 구유재산을 매각, 매수, 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한다.

제18조(인수인계) 구청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 다만, 구청장의 인수인계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제2장 취득 및 처분 등

제19조(등기수속 등) ① 공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확보된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매수신청) ① 단·실·과 및 소·동의 장은 공유재산의 매수가 필요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 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신축, 증축, 개축, 이축, 철거, 이전 또는 모양변경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설명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정리 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장 대장 및 도면

제22조(대장 및 도면 조제)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 관리 및 이동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관리재산 총괄대장

2. 행정재산대장

3. 일반재산대장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처리 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공유재산의 대장에 기재할 가격은 구입한 것은 구입가격, 교환한 것은 교환가격, 수용한 것은 보상금액, 그 밖의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토지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장 최근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산출한 금액
2. 입목죽에 있어서는 시가에 따른 단가에 재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정원수 그 밖의 재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곤란한 것은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으로 한다.
3. 건물 그 밖의 공작물과 선박 그 밖의 동산에 있어서는 건축비·제조비 또는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
4. 주식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 지방채증권과 투자신탁 또는 개발신탁의 수익증권은 납입금액·출자금액 또는 액면금액

제23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공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4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공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말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임차재산) 사유재산을 임차하는 경우에 임차재산 업무주관부서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6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8호 및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27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다.

제28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별지 제11호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2호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3호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4호서식)
5. 교환계약서(별지 제15호서식)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

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 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6. 도면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는 공유재산종합전산망에 입력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0조(대부 및 사용처리부) 각 재산관리관 별지 제18호서식의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1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4조에 따른 토석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다.

제32조(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르고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다.

제4장 청사 및 관사관리

제33조(청사관리) 조례 제48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제34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3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

다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7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4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5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6호서식)를 공유재산 업무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은 닳 재 산 신 고 서

1. 재산의 표시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종목)	면 적 (수량)	현소유자(점유)		비 고
				주 소	성 명	

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 소 :

성 명 : (인)

인천광역시검단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재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서

번호	소 재 지 (구, 동)	지번	지목 (주용도)	면적 (㎡)	현 재 용 도	재산분류사항			변경후 재산관리관 협조의견	변경 사유
						재산 종류	재 산 관리관 변경전	재 산 관리관 변경후		

년 월 일

인계자

소 속

직위

성명

(서명)

인수자

소 속

직위

성명

(서명)

[별지 제3호서식]

구 유 재 산 가 격 평 정 조 서

소재지	지번	지목 (종목)	수량	공 시 지 가		시 가 표준액	대장 가격	감정가격		매매실례		평정가격		비고
				개별	표준지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부서명

평정자 직 성명 (인)

[별지 제4호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 (4-1)

CODE NO :

(토 지)

회 계 명 :

관리자 :	구분	대분류	부속재산	작성일자	부속서류	확인인	색인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지적	취득시 : m ²	용도	연혁	현황및상태	유지관리비추가상황		
	현재 : m ²				년도	내용	금액
토지							
등급							
농지							
등급							

인근지과세표준시가							수익상황	권리취득상황		권리변동상황	
년월일	지목	면적	거래시가	임대시가	시가표준액	조사자					
								취득년월일		년월일	
								취득원인		상대방	
								취득금액		변동사항	
								전소유자		관리청	
								등기년월일		가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고	

자산재평가

년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증감 이동상황

년월일	증감사유	증감내용	증액		감액		현재액		등기		기록	대조	비고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대부 및 사용상황

년월일	임대자주소	성명	대부내용	대부목적	계약년월일	대부기간	대부료	기록	대조	비고

공유재산관리대장(4-2)

CODE NO :				(건 물)				작성 자		확 인					
회 계 명 :															
관리자 :	구	대분류		부 속 재 산		부 속 서 류	구 분		색 인						
		중분류					등 기 부 등 본								
		소분류					건물관리대장등본								
		세분류					배 치 도								
		소재지 :													
연 면 적		취득시 : m ²		용 도	연 혁	현황및상태		유지관리비 투자상황							
							년 도	내 용		금 액					
건축년월일		년 월 일													
건축 가격		원													
구 조	구성재료														
	지급종류														
	종 수		단 면적												
임 대 상 황				권리취득상황				권리변동상황				수익상황		비 고	
소 유 자				취득년월일				년 월 일							
수 량				취득원인				상 대 방							
임대연월일				취득금액				변동사항							
임대기간				전소유자				관 리 청							
				등기년월일				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자산재평가															
년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증감 이동상황															
년월일	증감사유	증감내용	증 액		감 액		현재액		등 기		기록	대조	비고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대부 및 사용상황															
년월일	임대지주소	성 명	대부내용	대부목적	계약년월일	대부기간	대부료	기록	대조	비고					

공유재산관리대장(4-3)

CODE NO :

(공 작 물)

회 계 명 :

관리자 : 소재지 :	구 분	대분류		부 속 및 주 재 산		작성 자 부 속 서 류		확 인	
		중분류					구		분
		소분류					등 기 부 등 본		색 인
		세분류					배 치 도		
							평 면 도		

명 칭	구조형식	수량	용도	연혁	현황및상태	유지관리비 투자상황		
						년도	내 용	금 액

임 대 상 황		권리취득상황		권리변동상황		수익상황	비 고
소 유 자		취득년월일		년 월 일			
수 량		취득원인		상 대 방			
임대연월일		취득금액		변동사항			
임대기간		전소유자		관 리 청			
		등기년월일		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자산재평가

년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증감 이동상황

년월일	증감사유	증감내용	증 액		감 액		현재액		등 기		기록	대조	비고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대부 및 사용상황

년월일	임대지주소	성 명	대부내용	대부목적	계약년월일	대부기간	대부료	기록	대조	비고

공유재산관리대장(4-4)

CODE NO :

(임 목 족)

회 계 명 :

관리자 :	구분	대분류	주채산	작성 자	부 속 서 류	구분 등기부등본 배치도 평면도	확 인	색 인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소재지 :								

수종		용도	연혁	현황 및 상태	관리비투자상황
본 수	(본)주				
식	년월일				
재	본 수				
상	면 적				
황	식재자				

임대상황		권리취득상황		권리변동상황		수익상황	비 고
소 유 자		취득연일일		연 월 일			
수 량		취득원인		상 대 방			
임대년월일		취득금액		변동사항			
임대기간		전소유자		관 리 청			
		등기년월일		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증감 이동상황

년월일	증감사유	증감내용	증 액		감 액		현재액		등 기		기록	대조	비고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자산재평가

년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공유재산관리대장(4-5)

CODE NO :

(선 박)

회 계 명 :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	구 분	대분류	부 속 서 류	구 분	색 인	비 고	확 인
		중분류		등기부등본			
		소분류		배 치 도			
		세분류		평 면 도			

주요설비및속구		용 도		깊 이	m	항해구역	
명 칭	개 수	선 적 항		넓 이	m	최대탑승인원	
		등 록 년 월 일		깊 이	m	착 수 연월일	
		등록번호		속 력		준 공 연월일	
		신호부자		주기외형		제 조 자	
		신체자료		정격출력		총톤수	

유지관리비투자상황			권리취득상황			권리변동상황		비 고
년 도	내 용	금 액	취득년월일		년 월 일			
			취득원인		상 대 방			
			취득금액		변동사항			
			전소유자		관 리 청			
			등기년월일		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증감 이동상황

년월일	증감사유	증감내용	증 액		감 액		현재액		등 기		기록	대조	비고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자산재평가

년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공유재산관리대장(4-6)

Code No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				작성 자				확 인			
회계명 :															
종 류								부 속 서 류							
재 산	소재지			지 목											
	면 적	㎡		가 액											
사 용 자	주 소							사 용 목 적							
	성 명			전 화 번 호											
사용기간		부터 까지		개 신 기 간											
사 용 료		유 상			무 상										
증 감 이 동 상 황	년 월 일	적 요 (증감사유)	증		감		현 재		기 록	대 조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기타															

공유재산관리대장(4-7)

Code No

(특허권·기타권리)

작성
자확
인

회 계 명 : 명 칭 :

재 산 관 리 관			연월일	방법	금액	소유자	부 속 서 류		연	
종 목		취 득							혁	
등 록 번 호										
증 감 이 동 상 황	년월일	문서 대호	증 감 사 유	증 가		감 소		현재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자 산 재평가	년월일	재평 가액	재평가 차 액	과 표 또는 평 가 액		평가자	기 록	대조	비 고	
대부및 사 용 상 황	년월일	차수자 주소	성 명	내용	대부 기간	대부료	기록	대조	비고	
비 고										

공유재산관리대장(4-8)

Code No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

회 계 명 :

주식 등 종 류					법 인	명 칭			
1 주 당 액면금액		총지분 금 액				주 소			
보관기관		재 산 관리관				사업내용			
출 자 연 혁	년월일	금 액	변 동 사 유			자 본 금			
					설립년월일				

년 월 일	적 요 (증감 사유)	증		감		현 재		비고 (출자 재원등)	기 록	대 조
		수량	납입 금액	수량	납입 금액	수량	납입 금액			

공유재산관리대장(4-9)

Code No		(부동산신탁수익권)		작성 자		확 인	
회 계 명							
:							
신탁종류		수 탁 자	법 인 명				
재 산 관 리 관			대 표 자				
신 탁 계약기간	부터 까지		주 소				
신 탁 계산시기			전화번호				
신 탁 의 목 적							
신탁기간	소 재 지		지 목	수 량	가 격	비 고	

2면

증 감 이 동 상 황	년월일	적 요 (증감사유)	증		감		현 재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기 타								

[별지 제5호서식]

구유재산 증·감이동보고서

년 월 일

관리자 직 성명 (인)

회 계 명 :

이동 년월일	코드 번호	재산 종류	구 분	재산소재지				지목 및 종목	용 도	구 조	당초		증		감		증감 사유	등기	
				시 군	읍 면 동	리 가	지 번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구분	일자

(주) ○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일반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임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 기록
○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 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6호서식]

구유재산가격 재평가보고서

관리자 직

년 월 일
성명 (인)

재 산 종 류	구분	재산소재지		지목 및 종목	구 조	수 량	과표 또는 평가액	취 득 년 도	경 과 년 수	재평가액		차 액 (증감)	비고
		법정동	지번							단가	평가액		

- (주) ○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일반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공장으로 구분
- 재산종목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7호서식]

임 차 재 산 대 장

소 재 지			구 동 번지								
임 차 물 건	토 지	지목			건 물	종목			부 속 물	명 칭	수 량
		지적	총면적	m ²		구조					
			임차면적	m ²		건평	전체	m ²			
							임차	m ²			
소유자주소·성명											
차수목적	계약년월일	임차기간	임차요금	요 금 지 급							
				금 액	지급년월일	적 요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별지 제8호서식]

공유재산(유상, 무상) 사용허가서

재산의 표시

신청인 주소

성명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무상) 사용허가신청에 대하여
불임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불임 : 허가조건 1부.

년 월 일

인천광역시검단구청장 (인)

[별지 제9호서식]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 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승인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하게 된 경우
2. 허가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허가 받은 재산의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6. 기타 인천광역시 검단구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0조 (사용허가 취소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인천광역시 검단구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 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인천광역시 검단구가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 81조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결정에 의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공유재산 [] 유상 대부계약서
 [] 무상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하는 자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대부자”라 한다)과 대부받는 자는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 한다.

제1조(대부목적) 이 계약에 따라 대부받는 재산은 _____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2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일간)로 한다.

제3조(대부료) 대부료는 연월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대부료의 납부) 대부받는 자의 대부료 납기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0조에 따르면 납부기한후의 연체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에 따른다.

제5조(대부받는 자의 의무) ① 대부받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② 대부받는 자는 제1항의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③ 대부받는 자는 대부받은 재산과 관련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6조(보험료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대부받는 자는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대부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금지행위) 대부받는 자는 대부받은 재산에 대하여 차후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으며 대부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시설한 대부받는 자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대부받는 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자는 언제든지 대부받는 자와 체결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대부받는 자가 계약 후 년 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에 달성할 수 없다고 대부자가 인정할 때
 3.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때
 4. 대부받는 자가 한국에 주소 또는 거주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5. 대부받는 자가 체납처분·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6. 대부받는 자가 대부자로부터 공유재산의 매수요구를 받고도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대부받는 자가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때
- ② 제1항에 따라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받는 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대부자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부자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9조(배상액 등) 제8조제1항제7호 단서의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대부자가 결정하고 대부받는 자는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대부받는 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 ① 본 계약 기간 중에 대부받는 자가 해제·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자가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제·해지로 인하여 대부받는 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대부자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부재산의 반환)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대부받는 자는 대부자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대부자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대부자가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대부기간의 연장) 대부기간 만료 후에 대부받는 자가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다시 대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변상금의 부담) 대부기간 만료 후에 대부받는 자가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대부받는 자가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대부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대부받는 자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기타) 대부받는 자가 본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 합의하에 대부자가 결정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대부자와 대부받는 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일
예
년

(대부자)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인)

(대부 받는 자)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별지 제11호서식]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년도 관리계획총괄표(11-1)

회계명 :

(단위 : m², 천원)

구 분			년			년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11-2)

회계명 :

(단위 : m², 천원)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주소·성명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 주) (1) 매입과 기타 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록한다.
 (3)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4)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

년도 교환대상재산목록(11-3)

회계명 :

(단위 : m², 천원)

일련번호	재산표시				교환대 상수량	추 정 가 액	교 환 시 기	교 환 사 유	교 환 대상자	비고
	구분	지목	소재지	일단위 수 량						
1건	처 분 취 득									
계	토지	처분 취득								
	건물	처분 취득								
	기타	처분 취득								

주) (1) 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수량 :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m²이고, 교환대상토지가 2,000m²이면 “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수량” 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3)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

년도 매각대상재산목록(11-4)

회계명 : _____

(단위 : m², 천원)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매각대 상수량	과표또는 평가액	매각 시기	매각 사유	매수회장자 성 명	비고
	지목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계	토지								
	건물								
	기타								

주)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의 ○○필지 기재하고 지목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 일단의 수량 : 일단의 토지(1 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3) 매각대상수량 :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4) 과표 또는 평가액 : (3)란의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5) 매각시기 : 매각예정시기를 분기별로 기재한다.

(6) 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년도 양여대상재산목록(11-5)

회계명 : _____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양여대상 수량	과 표 또는 평가액	양여 시기	양여사유 및 근거법령	양수자	비고
	지목	소재지	일단의수량						
계	토지 건물 기타								

주) (1) 양여대상수량 : “양식 7-3”의 주) (2)를 참조하여 착오 없도록 한다.

(2) 양여사유 :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매도자”라 한다)과 시 구 동 번지 거주 ○○○ (이하 “매수자”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매가액) “매도자”는 위 표시 재산을 “매수자”에게 금 원에 매각한다.

제2조(대금의 납부) ① “매수자”는 제1조의 매각대금 중 계약체결일에 계약보증금으로 금 원을 납부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회수	분납금	이 자	납부기일

② “매수자”는 제1항의 대금납부기간 중 대금 잔액에 대하여 연 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서 납부하여야 하며 매각 재산이 건물, 공작물 그 밖에 시설인 때에는 “매도자”가 지정하는 화재 보험회사에 “매도자”를 보험료 수취인으로 재산매각 대금 상당액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매수자”는 제1항의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0조의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매수자”는 계약보증금으로 금 원을 “매도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매도자”는 정히 이를 영수한다.

제4조 ①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분납금을 최초로 납부하는 때에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 일시납의 경우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는 때에 이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매수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할 수 있다.

제6조(권리이전 조치) “매도자”는 계약에 따라 “매수자”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매수자”

가 소유 권이전 등기 등 각종 공부상 권리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금지행위) “매수자”는 재산의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매도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 재산의 전대 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이나 그 밖에 제한물권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제8조(계약해제) ① “매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매도자”는 본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2. 제7조에 위반한 때
 3. 본건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 또는 부실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였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때 이 경우에 매도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제2조에 의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5. 매매계약 체결 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를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6.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하여 공유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한 때
 7.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3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때
- ② “매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제3호의 해제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9조(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제8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매수자”는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로 그 재산을 “매도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매수자”가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매도자”는 기 납부된 대금에서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해약일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0조(어구 해석) “매수자”는 본 계약 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 합의하에 “매도자”가 결정한다.

제11조(분할납부) “매수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 그 대금을 2분의 1이상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가 아니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으며 그 소유권 이전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한다.

제12조(환지예정지의 저촉대지) “매도자”는 구획정리에 따른 환지예정지에 저촉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매수자”는 이에 대한 이익을 “매도자”에게 제기하지 않는다.

제13조(소송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매도자”의 소재지의 각 급 법원으로 한다.

제14조(공과금) “매수자”는 본 계약 체결일 이후에 본 재산에 부과된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며, “매도자”가 본 재산을 “매수자”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매도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매도자”와 “매수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이
인
이

(매도자)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주 소

(매수자)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별지 제13호서식]

공유재산 양여계약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양도자"라 한다)와 양여를 받은 자(이하 "양수자"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양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양도자”는 본 계약을 체결 즉시 “양수자”에게 양여 재산을 인계하고 “양수자”는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양수자”는 양여된 재산을 그 양여 목적에 10년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양도자”는 “양수자”가 양여받은 재산을 10년 이내에 양여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 “양수자”가 10년 이내에 그 사용목적을 변경하였거나 그 용도를 폐지한 때 또는 제3조에 따라 본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양수자”는 본 재산을 즉시 “양도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 “양수자”는 소유권 이전등기시 제2조, 제4조의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 “양수자”가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양도자”의 결정에 따른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양도자”와 “양수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양도자)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인)
(양수자)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별지 제14호서식]

공 유 재 산 매 수 요 구 서

주 소

성 명 귀하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인)

<재산의 표시와 평가액>

재산소재지	지번	재산종별	총수량	대부수량	평가액	비고

귀하가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및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하오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내에 구가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2. 2월 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본 재산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의 허가없이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15호서식]

공유재산 교환계약서

재산의 표시(지번, 지목, 면적)

공유재산

사유재산(국유재산, ○○○ 공유재산)

위 재산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교환자”라 한다)과 사유재산을 공유재산으로 교환하려는 자(이하 “교환대상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교환자”, “교환대상자”는 본 계약체결 즉시 교환재산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2조 “교환자”와 “교환대상자”는 각각 인수할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밟으며 그 등기 절차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각각 부담하기로 한다.

제3조 등기이전에 소요되는 제반서류의 구비를 위하여 “교환자”와 “교환대상자”는 서로 편의를 제공한다.

제4조 “교환대상자”는 본 계약체결 이전의 일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이미 설정된 사권의 말소

나. 제공과금의 지변

제5조 “교환자”와 “교환대상자”는 위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납부할 교환자금이 있으면 그 차액의 납기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다.

제6조 “교환대상자”가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교환자”의 결정에 따른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교환자”와 “교환대상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별지 제16호서식]

행 정 재 산 용 도 폐 지 승 인 신 청 서

1. 재산의 표시

종 별	재산소재지	지목및구조	수량	단가	금액	비 고

2. 재산의 현황

종 별	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			현 용 도	관리상태	연고자 유 무
	년월일	목 적	취득당시가격			

3. 용도폐지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 용도폐지후의 활용방안

5. 소유권 증명

6. 위치도 및 지적도

7. 사진

[별지 제17호서식]

대 부 (사 용 허 가) 신 청 서

- 재산의 표시
 - 소재지
 - 지목(구조)
 - 면적(건물면적)
- 대부(사용)기간
- 대부(사용)목적
- 대부(사용)료 : 귀 구가 정하는 바에 의함
- 대부(사용)조건 : 귀 구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별지 제18호서식]

구유재산대부 및 사용정리부

소 재 지		시		구		동		가(로)			
		읍		면		리		번지			
물건표시	토지	코드번호		건물	번호		기타	명칭		부속 사항	
		지목			종목			구조			
		면적	전 체 m ²		면적	전 체 m ²		수량			
			대부사용 m ²			대부·사용 m ²					
		적 요									
허가 번호	사용목적	계약(갱신) 년월일	기 간				대 부 사 용 료 액	대부·사용료징수		사 용 자	
								금액	징 수 년월일	주소	성명
		년 월 일	자지	년	년	월	일				
		년 월 일	자지	년	년	월	일				
		년 월 일	자지	년	년	월	일				
		년 월 일	자지	년	년	월	일				
		년 월 일	자지	년	년	월	일				
		년 월 일	자지	년	년	월	일				
		년 월 일	자지	년	년	월	일				
		년 월 일	자지	년	년	월	일				
		년 월 일	자지	년	년	월	일				
		년 월 일	자지	년	년	월	일				
		년 월 일	자지	년	년	월	일				

[별지 제19호서식]

토 석 가 격 평 가 조 서

소재지	지번	토석 종류	석재 종류	용도	규격	수량 (A)	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m ²)			평가가격		비고
							매매 실례	사정정통기관		m ² 당 단가 (B)	금액 (A×B)	
								〇〇단체	〇〇조합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 정 자 직 성명 (인)

- (주) 1. 토석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

[별지 제20호서식]

청 사 신 축 계 획 서

· 작성자 :

· 확인자 :

1. 구 청사현황

① 위 치	시 구 동 번지 호				
② 여 건	인 구 수	직원수	수 용 기 관		
	명	(정규)명			
③ 대 지	지 목		소유구분	취득년월일	현재가액
④ 건 물	구 분	본 건물	부속건물		
	건 평				
	구 조				
	건축년도 (내용년한)				
	소유구분				
	현재평가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2. 신축계획

① 위 치	신축사유 :					
② 규모	대지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				
	건물	계	본 관		부 속 건 물	
		㎡	㎡	구조	㎡	구조
③총사업비	계	본 관		부속건물		부대시설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④재원계획	계	교부세		도 비		청사매각대금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⑤주요자재	계	목 재	샷 시	창호재	바닥재	치장및마감재
⑥신축단비	계	건축공사비	냉난방시설비	전기공사비	부대시설비	설계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3. 추진계획(상황)

제 목	추진 일정	추진 상황
1. 부지확보 ○ 매 입 ○ 정 지 2. 건물신축 ○ 설 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착 공 ○ 내부시설 ○ 준 공		

건물전경	평면도

[별지 제21호서식]

관 사 관 리 대 장

(관리번호 :)

위 치		취득일자	
면 적	대 지	구 조	조 충
	건물		
사 용 허 가 내 역			
사 용 자	허 가 일 자	취 소 일 자	비 고

[별지 제22호서식]

관 사 사 용 허 가 신 청 서

1. 사용 신청인(직위)

2. 사용 신청관사의 표시

성명

관사번호	관리번호	소 재 지	면 적		비 고
			대 지	건 물	

3. 사용신청기간 : 20 . . . ~ 20 . . .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 사용 신청을 허가함.

20 . . .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

[별지 제23호서식]

(앞면)

변 상 금 사 전 통 지 서						
대상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전화번호		
⑤ 부과내용						
재 산 의 표 시			점유면적 (㎡)	부과기간	변상금 [예상] (원)	비 고
소 재 지	지 목	지 적(㎡)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불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지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불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인)

_____귀 하

(뒷면)

※ 변상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상당액에 그 재산을 점유한 기간
을 곱한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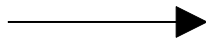
처 리 기 관

점유·사용자

재 산 관 리 청
(위임·위탁을 받은 자 포함)

발 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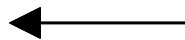
변상금 사전통지



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

제 출

변상금 부과고지



[별지 제24호서식]

변 상 금 사 전 통 지 예 대 한 의 견 서		
변상금 사전통지서의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의견이 있어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항 목	통 지 내 용	의 견
<기타의견>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5호서식]

관 사 입 주 신 고 서

1. 관사소재지 및 번호
2. 입주자 직 성명
3. 입주년월일
4. 가족수(입주)

위와 같이 입주하였기 서약서 첨부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①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별지 제26호서식]

서 약 서

관사소재지 :

번 호 : 제 호 관사

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허가 가족 이외는 동거하지 않는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명도한다.
5.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여하한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 이상 각 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치 않고 즉시 관사를 명도한다.

년 월 일

입주자 직 성명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별지 제27호서식]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을 “위탁자”로 하고, 수탁자인 ○○○ 를 “수탁자”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①이 계약은 "수탁자"가 별지목록 1의 토지위에 별지목록 2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를 분양·처분·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기간중에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신탁기간) ①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자"부터 신탁기간만료일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 전·후에는 지체 없이 분양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의 준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신탁등기) ①"수탁자"는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수탁자"는 신탁건축물이 준공된 때에는 지체없이 건설회사로부터 준공건축물을 인수하고,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준공건축물을 인수한 때에는 준공건축물의 준공도면 등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건물의 건축) ①"수탁자"는 건설회사를 선정하여 건물을 건축하게 한다.

②"수탁자"는 건물의 건축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회사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과의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 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건설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의 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건축건물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내용 및 설계감리계약등 위탁계약에 관하여 금액, 지불방법, 공기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다만, 공적 시설부분의 시공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운용) ①"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사업계획에서 정한 분양금액 및 조건으로 분양·처분할 수 있다.

②신탁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일부를 주차장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임대료 및 기타 조건에 관하여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및 범위에 대하여 수선·보존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에 대하여는 미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 또는 개량등의 관리사무를 "수탁자"가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승낙을 받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사무수임자는 관리사무의 수행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신탁건물에 대하여 "수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차입금 및 기타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선관주의의무) "수탁자"는 신탁건물의 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관리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위탁자"는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8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차입금의 채무 및 제2호와 관련한 상환채무
5.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9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분양하여 발생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기타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10조(수익권) ①"위탁자"는 신탁의 원본·수익 및 기타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③"위탁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위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와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신탁계약의 해지) ①"위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수탁자"가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수탁자"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신탁계약의 종료) ①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2월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위탁자"는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수탁자"가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위탁자"에게 인도한다.

④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하며, 신탁부동산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제13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

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4조(신탁보수) "수탁자"는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공사 기간중과 준공 후에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중의 신탁보수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정하는 특약사항에서 정한 금액을 매연도 계산기일에 기성고를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15조(신탁재산의 비용충당) 신탁재산에서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기타 신탁사무 처리를 위한 모든 비용을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수탁자"는 분양·처분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및 수선비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자금의 차입) ①"수탁자"는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한도액은 일금 만원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고,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수탁자"는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입을 하는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저당권의 설정 및 시기 등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금전의 운용) ①"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과 관련하여 수입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보증금등을 공사대금의 지불, 차입금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9조(신탁사무의 계산) ①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과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중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액이 발생한 때에는 "위탁자"와

협약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신탁기간중에 매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위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손해배상) ①"위탁자"는 "수탁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위탁자"가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협약) ①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약하여 정한다.

②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약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2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위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첨부] 1. 신탁토지내역(별지목록 1) 1부.
2. 신탁건물내역(별지목록 2) 1부.

위탁자 겸 수익자 (갑)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인)

수탁자 (을)

주 소 :

상 호 :

대표자성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관계 법령 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부(寄附)를 받아들일 때에는 기부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기부서와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재산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나 임야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표자가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각 기부자의 성명·주소 및 기부 재산 등을 적은 명세서를 제1항의 기부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대차(轉貸借)사업계획서를 지방자

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대(轉貸)하려는 재산의 표시

2. 전대하려는 재산의 사용·수익의 목적, 방법 및 기간

3. 해당 재산을 전대받아 사용·수익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소

④ 법 제7조제2항 본문에서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상 사용허가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2. 재산 가액(價額) 대비 유지·보수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3. 삭제 <2022. 4. 20.>

4. 그 밖에 지방재정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⑤ 기부를 조건으로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허가를 하기 전에 기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각서를 받아야 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무용차량의 정의(안 제2조)
- 나. 차량 정수 관리에 대한 사항(안 제6조~제15조)
- 다. 차량 운행 관리에 대한 사항(안 제16조~제23조)
- 라. 차량 운전원 관리에 대한 사항(안 제24조~제3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공무용차량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정수"라 함은 차량을 차종·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2. "전용 차량"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른 별표 1의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의전용 차량"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른 별표 1의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업무용 차량"이라 함은 승용차량 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사업용 차량"이라 함은 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화물용 차량"이라 함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특수용 차량"이라 함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자동차 대여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9. “차량관리부서”란 차량 정수를 배정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받고자하는 구 본청의 각 부서, 의회사무국 및 구의 소속 행정기관을 말한다.
10. “차량총괄부서”라 함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1. “정비”라 함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일찍 발견 수리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2. “수리”라 함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13. “차량관리시스템”이란 공무용차량 관리를 위하여 차량 데이터베이스와 처리절차를 통합한 시스템(전산관리)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가 관리·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제4조(기록관리)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차량보유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보유 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1. 차량정수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2. 차량배차신청(승인)서 (별지 제2호서식)

3. 차량유류수불대장 (별지 제3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 (별지 제4호서식)

5. 차량정비대장 (별지 제5호서식)

6.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차량관리시스템 형태로 기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5조(지도·점검등) ①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기관의 차량에 대하여 정비 및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 차량정수관리·운영사항

2. 차량정비관리 사항

3. 공무용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2장 차량정수관리

제6조(차량의 배정대상 등)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차량 관리·운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배정요청) ① 소속기관의 장은 차량정수배정·임시차량정수배정·차종변경 승인·차형변경승인·차량교체승인·차량교환승인(이하 "배정"이라 한다)을 구청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량 배정을 요청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적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차량 총괄부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저공해자동차의 구매비율을 준수한다.

제8조(임차차량의 운용) ① 소속기관의 장은 한시적 조직의 운영 또는 특수업무 추진 등을 위하여 공무용차량이 필요한 경우 임차차량을 운용할 수 있다.
② 임차차량을 운용하려는 소속기관의 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저공해자동차의 임차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정수배정) 구청장이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의한 기준점수를 감안하여 단위행정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 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제10조(배정제한) 구청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절약 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11조(정수번호 부여) 구청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2조(정수대장 정비 등) 구청장은 매년 1월과 7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정수배정·교체승인 협의) ① 구청장은 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기관별 기능과 업무량, 조직규모 등을 종합하여 차량정수를 배정한다.
② 기관의 장이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별표 1의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2.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넘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은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정부 정책상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전용 차량이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제14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구청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 할 수 있다.

1. 기관의 기능이 폐지·축소·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5조(차량의 사전구입금지) 기관의 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아니하고는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미리 구입할 수 없다.

제16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관리 전환·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 정수를 배정 받아야한다

제3장 차량운행관리

제17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① 기관의 장은 공무용차량담당 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용 차량에 한해서는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예외로 한다.

제18조(차량관리방법) ① 기관이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 등은 집중관리부서에서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집중관리부서는 당해 차량의 차량점검·정비·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및 그 밖의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③ 제17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제2차 관리부서는 소관 차량의 관리 및 운행에 책임을 진다.

④ 지방자치단체 소유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안된다.

⑤ 모든 공무용차량은 차량 외부에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 및 의전용 차량 등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무용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공무용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차량 내부에 의무보험 보장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

일 하루 전에 집중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
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0조(배차승인) 집중관리부서에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
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유류구입 등) 기관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
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공공조달유류구매카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22조(유류사용 정산) ① 차량 배차담당 공무원은 차량배차 시 전회지급 유류
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기관의 차량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잔량을
기록하고 배차 당일 주행거리와 유류구매량 및 사용량과 잔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차고운영) ① 기관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대기실, 주차지, 세차장, 정비소 등의 시설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기관의 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 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담당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 관리 등 차고 내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
우 차량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4조(근무시간 후 차량관리) ① 근무시간 이후에는 운전원은 차량을 차고에
입고한 후 차량열쇠를 당직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당직책임관은 차량별 열쇠의 보관상태를 확인하고 당직 중 차량운행 허가 등 선량한 차량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4장 운전원 관리

제25조(근무지침)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26조(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 시 다음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

1. 근무 중 음주행위
2. 운전 중 흡연·식음 및 휴대전화 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
4. 지시없이 담당차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에게 담당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
9.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 배차운행 시간 이외의 운행행위
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12. 산하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
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위치에서의 주차행위

제27조(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 ① 운전자는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

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자는 운행 차량의 구조·기능 이상 등을 확인하고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③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불법으로 주·정차 위반, 제한속도 위반, 전용차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범칙금·벌금 등은 운전자가 책임을 진다.

제28조(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 하여야 한다.

1. 사고 발생일시
2. 사고 발생장소
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4. 사고발생 시의 상황과 사고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그 밖에 조치 및 요구사항

제29조(안전교육 등) 기관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운전원 교류) 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 차량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차량직접운전) 차량관리부서 및 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람은 업무능률 향상과 효율성을 위하여 차량을 배차받아 직접 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운전운행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

며, 그 책임 및 의무 등은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차량점검) ① 공무용차량을 직접 운전할 운행자는 배차받은 차량의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운전 전에 반드시 점검하고 운행 후에는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차량배차실 또는 차량담당 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차량교체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하며, 운행 후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차량반납 시 정비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33조(차량직접운전의 적용지역) 차량직접운전을 적용하는 지역은 검단구 관내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량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4조(차량의 반납) ① 직접운전운행자는 배차시간 내에 운행한 차량을 차량담당 공무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운행한 사실을 차량운행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업무지역 등으로 배차시간 내에 운행한 차량을 반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유선 등으로 운행시간 연장을 받아야 하며, 근무시간 내에 운행을 마치지 못했을 경우 당직 근무자에게 반납하고, 운행한 사실을 차량운행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차량정수관리대장

인천광역시 검단구

1. 차량정수번호 부여부

일련번호	정수번호	승 인		차 명	연 식	승차정원 적재정량	소속기관	용 도	비 고
		문서번호	일자						

2. 기관별 차량정수 등록부

차량소속기관	

정수번호	승인구분	문서번호	차 종	차 명	연 식	원동기 번 호	취득구분	등록번호	용 도	비 고
		승 인 일	차 형	규 격				등 록 일	사용부서	

※ 작성주 : 승인구분 - 정수배정, 교체승인, 차종변경, 차형변경, 이체승인, 정수
삭감 등으로 구분 기재

〔별지 제2호서식〕

차량배차신청서				담당자	담당	과장	결 재
사용일시	20 년 월 일 시 분 부터 20 년 월 일 시 분 까지						
행 선 지							
용 무							
사 용 자							
유류구분			차량번호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인) 차량관리 담당과장 귀하							
*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배차승인서

차량번호		운 전 자	
배차일시	20 년 월 일 시 분 부터 20 년 월 일 시 분 까지		
행 선 지			
용 무			
사 용 자			
유 류		운행거리	
위와 같이 배차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차량관리 담당과장 (인) 귀하			
* 운전자는 운행종료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유 류 수 불 대 장

년 월 일	소 속 기 관	사 용 부 서	운 전 자	차 량 번 호	구분	운행 거리 (Km)	급유량 (ℓ/m³)	사용량 (ℓ/m³)	잔량(ℓ/ m³)	급유금액 (원)

[별지 제4호서식]

차 량 운 행 일 지

운행일자 : 20 년 월 일

						담 당 자	담 당	결
								재

차량		운 행 상 황	전일누계	km	유류수불 현 황	전일잔량	ℓ	
번호			금일운행	km		급 유 량	ℓ	
운 전 자			누 계	km		소 비 량	ℓ	
						잔 량	ℓ	
통 행 구 간			통 행 료					
승 차 자	용무		경유지 및 목적지	시 간		운 행 km	운행 확인	
				출 발	도 착			
비 고								

전 기 · 수 소 차 량 운 행 일 지

운행일자 : 20 년 월 일

		담 당 자	담 당	결 재

차량	운 행 상 황	전일누계	km	총 전 현 황	전일잔량	kw
번호		금일운행	km		총 전 량	kw
운 전 자		누 계	km		소 비 량	kw
					잔 량	kw
통 행 구 간		통 행 료				
승 차 자	용무	경유지 및 목적지	시 간		운 행 km	운행 확인
			출 발	도 착		
비 고						

[별지 제5호서식]

차 량 정 비 대 장

※ 차량번호 :

사용부서 :

일련 번호	정비 일자	차종	차명	정비내역	수량	단가	공임비	부가세	정비금액	정비업체	운행 거리	정비 사유	확인자
1													
2													
3													
4													
5													
6													
7													
8													
9													
10													

[별지 제6호서식]

차 량 정 수 배 정 검 토 조 서

(임시정수배정, 차량교체, 차종·차형변경, 차량교환)

1. 일반현황

가. 기 구 : (설치일 : . .)

나. 정 원 : 명(기관장직급 : 급)

다. 위 치 :

라. 주요업무내용

○

○

2. 기동력 소요 판단

가. 차량보유 대수

차종별	차형별	차명별	차량정수 배 정 일	등 록		배치부서	용 도
				번 호	일 자		

나. 증차사유(정수이체 포함)

※ 작성요령

- ① 기구·정원증가에 따른 증차의 경우는 최근 1년 전에 비교하여 늘어난 기구·정원을 비교설명 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 ② 시설규모의 확장, 새로운 업무의 수임 및 급격한 업무량 및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차의 경우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다. 차량교체(차종·차형변경) 사유

※ 작성요령

- ① 차량의 최단운행기준연한 초과여부를 기재
- ②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총운행거리를 기재(운행거리메타 사진 첨부)
- ③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수리비 총액을 기재
- ④ 차량수리견적 내용을 기재(1급자동차정비공장 수리견적서 첨부)
- ⑤ 사고차량의 경우는 사고일시, 사고장소,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경찰서장 확인서 첨부)
- ⑥ 차종·차형변경 및 새로 교체코자 하는 차량의 선택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⑦ 기타 참고사항

라. 차량교환 사유

- 1)
- 2)
- 3)

마. 예산소요 판단

- 1) 총 소요예산 : 천원
- 2) 차량구입비 : 천원
- 3) 운전원인건비 : 천원(년간기준)
- 4) 차량유지비 : 천원(년간기준)

바. 기타 참고사항

- 1) 지역특수성 :
- 2) 행정구역 :
- 3) 면 적 :

- 4) 가 구 :
- 5) 인 구 :

바. 차량운행 수요

(년간기준)

출 장 업 무 명	차 량 운 행		승 차 인 원			비 고
	회 수	거 리	년 간	월 간	일 일	
계						

※ 사업용 차량은 상기 기재 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 기재

[별지 제7호서식]

보험가입 및 정기검사 현황	
가. 보험 가입내역	
보 험 사	
보험종류	☐ 책임보험 ☐ 종합보험
보장기간	20 . . . ~ 20 . . .
운전연령	
나. 자동차 정기검사 실시내역	
검사업체	
검 사 일	20 . . .
유효기간	20 . . . ~ 20 . . .

[별표 1]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차량관리·운행 기준(제6조 관련)

차 종	차 형	배 정 대 상	차량 관리 · 운행기준
승 용 (전 용)	대형	· 구청장 · 구의회 의장	○ 최단주행거리 : 12만km 이상
	중형	· 부구청장	
승 용 (의전용)	중형	· 구본청	○ 최단운행연한 : 차량을 신규 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 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 12만km 이상
승 용 (업무용)	중형 · 소형 · 경형	· 구본청 · 구의회 · 직속기관 · 하부 행정기관	
승합용, 화물용, 특수용	대형 · 중형 · 소형	· 구본청 · 구의회 · 직속기관 · 하부 행정기관	○ 최단운행연한 : 차량을 신규 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 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 12만km 이상 (승합용 대형 및 특수용은 제외)

비고

1.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정하는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2. 승용(업무용)의 대형 차량을 관리·운행할 수 있는 경우는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승용(전용) 차량을 업무용으로 전환한 경우에 한정한다.

[별표 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제9조 관련)

1. 승용차량 기준정수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	기준 정수	차 형 별		
		대형	중형·소형·다목적형	경형
구 본 청	33대	1대(구청장)	32대	업무 및 사업 특성에 따라 적정 대수 배정
구 의회사무국	2대	1대(의장)	1대	
보 건 소	3대	-	3대	
동 행정복지센터	1대	-	1대	

2. 승합용 차량 기준정수

사 업 별	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통 근 용	가. 통근인원·통근거리·통근시간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 정원 100명당 1대를 기준으로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나. 직속기관 : 대중교통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해당 기관의 기능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기타사업용	각종 설비탑재, 지도·단속공무원 수송, 의정활동 지원 등 특수업무분야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3. 화물용 차량 기준정수

사 업 별	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도로사업용	도로의 연장·도로상태·교통량 및 유지·보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각종단속용	주차관리단속 등 각종 단속·지도 등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중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동행정복지센터용	사업용으로 소형화물차량을 적정대수 배정
그밖의 사업용	사업량 등 사업규모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절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4. 특수용 차량 기준정수

사 업 별	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청 소 용	가. 청소차량은 해당 청소지역의 특수성과 수거·처리의 편의 및 차량운행관리의 경제성과 능률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형·중형·소형 및 압축식·자동식 차량 등을 고루 배정 나. 청소차량의 차형이 고루 배분되지 아니한 기관은 신규 청소차량 정수배정 및 교체 승인 시 이를 조정하여 배정
그 밖의 사업용	사업의 성격, 업무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대수 배정

[별표 3]

차 량 정 수 번 호 부 여

1. 차종별·차형별 분류번호

차 종 별	차 형 별	분 류 번 호
승용차량	○ 대형승용차 ○ 중형승용차 ○ 소형승용차 ○ 경형승용차 ○ 싼형승용차	가1 가2 가3 가4 가5
승합용차량	○ 대형승합차 ○ 중형승합차 ○ 소형승합차 ○ 경형승합차	나1 나2 나3 나4
화물용차량	○ 대형화물차 ○ 중형화물차 ○ 소형화물차 ○ 경형화물차	다1 다2 다3 다4
특수용차량	○ 청소차 ○ 구급차 ○ 분노차 ○ 진료차 ○ 이동수리차 ○ 급수·살수차 ○ 트럭트렉타 ○ 트레일러 ○ 렉카차 ○ 기타 특수차	라1 라2 라3 라4 라5 라6 라7 라8 라9 라11

2. 차량 정수번호 부여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 예 시 】

① 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 구입코자 하는 경우

검단구 - 가 2 - 10

② 대형화물차량을 3번째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검단구 - 다 1 - 3

관계 법령 발췌

□ 물품 관리법

제16조의2(물품의 내용연수) ① 조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중앙관서(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며 관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한 내용연수(耐用年數)를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내용연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 내용연수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관서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내용연수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내용연수를 조정할 수 있다.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 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1의2. “원동기”란 자동차의 구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내연기관이나 전동기 등 동력발생장치를 말한다.

1의3.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1의4. “미완성자동차”란 차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구조·장치를 갖춘 자동차로서 용법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도록 추가적인 제작·조립 공정이 필요한 자동차를 말한다.

1의5. “단계제작자동차”란 미완성자동차를 이용하여 제2호에 따른 운행(용법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이 가능하도록 단계별로 제작된 자동차를 말한다.

2. “운행”이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用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동차사용자”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4. “형식”이란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에 관한 형상, 규격 및 성능 등을 말한다.

4의2. “내압용기”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용기로서 고압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장착하거나 장착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기(용기밸브와 용기안전장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폐차”란 자동차를 해체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파쇄(破碎) 또는 절단하거나 자동차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파쇄하는 것을 말한다.

6.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7. “자동차매매업”이란 자동차[신조차(新造車)와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8.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9.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란 폐차 요청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인수(引受),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0. “사고기록장치”란 자동차의 충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고 전후 일정한 시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또는 기능을 말한다.

11. “자동차의 튜닝”이란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12. “표준정비시간”이란 자동차정비사업자 단체가 정하여 공개하고 사용하는 정비작업별 평균 정비시간을 말한다.

13. “전손(全損) 처리 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자동차로서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다음 각 목으로 분류 처리한 경우를 말한다.

- 가. 도난 또는 분실 자동차로 분류한 경우
- 나. 수리가 가능한 자동차로 분류한 경우
- 다.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차하기로 분류한 경우

14. “자동차경매”란 제60조에 따라 경매장을 개설하여 자동차(신조차와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경매(競賣)의 방식(「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통한 경매를 포함한다)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7.>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매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운영 규칙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의 운영(제4조~제5조)
- 나. 실무종합심의회의 운영(제6조~제9조)
- 다.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의(제10조~제13조)
- 라. 민원처리통보(제14조~제1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운영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 1회방문 처리제”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행정기관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민원인이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기관장의 최종결정”이란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에서도 안 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을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그 적정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행)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의 운영
2. 민원후견인의 지정·운영
3.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4.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의
5. 기관장의 최종결정

제4조(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의 운영) 민원 1회방문 처리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민원처리

담당 부서에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한다.

제5조(민원후견인)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복합민원에 대해 민원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2.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지원
3. 민원문서 보완 등의 지원
4.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의 안내

제6조(심의회 설치) 복합 민원사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관련 부서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관사항을 공동심사, 처리하여 심의의 효율과 시간단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 실무종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7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담당이 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로 한다.

④ 구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를 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심의회가 종료함으로써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8조(심의대상) ① 심의회의 심의대상 민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합민원으로 처리기간이 7일 이상이고 협의대상 유관부서(기관)가 5개 이

상일 경우

2. 사안이 중대하고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심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② 처리주무부서장은 민원 접수 후 48시간 안에 심의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접수 후 3일 안에,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접수 후 5일 안에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심의회 간사) ① 심의회의 간사는 소속 직원 중에서 해당 민원 처리 담당자가 된다.

② 심의회의 간사는 심의서(별지 제1호서식)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 구에서 처리하는 민원사안 중 소관이 불분명한 복합민원이나 협의·조정사항이 필요한 민원 등 제12조의 대상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원처리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위원은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은 제12조의 심의대상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에 구성하며, 해당 민원이 끝남으로써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위원 중에서 직제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심의대상) ①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
2. 법 제35조에 따른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법 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심의
4.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5.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 또는 종결 처리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제13조(위원회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민원처리 업무 담당이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해당 민원처리 담당자가 된다.

③ 서기는 심의안건(별지 제2호서식)과 의결서(별지 제3호서식)를 기록·관

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한다.

제14조(처리진행상황의 통지) ① 구청장은 민원이 접수된 날부터 30일이 지났으나 처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민원인의 명시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완료 예정일 등을 적은 문서를 민원인에게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민원이 접수된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마다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민원의 처리 진행 상황 등이 공개될 것임을 사전에 안내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최종처리결과 통지) 위원회의 심의에서도 안 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구청장의 최종결정을 받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견진술) ① 위원장은 심의회 및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심의회 및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인천광역시 검단구청 소속직원이 위원 또는 참고인인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8조(운영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적용의 예외) 본청 이외 민원사무심사관을 별도로 두는 기관에서는 제6조·제7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3조의 규정을 따로 정하여 이 규칙을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실무종합심의회 심의서

□개 최 일 시 :

□장 소 :

□민원사무명 :

□심 의 안 건 :

적 합	부 적 합	비 고

※해당(적합 및 부적합)란에는 근거 규정 등 사유를 간단명료하게 기술

상기와 같이 심의결과를 제출합니다.

위원회직위 : 소속 : 직 : 성명 : (인)

[별지 제2호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

접수일	. . .			처리기한	. . . 까지(일간)		
구 분	민원명	주 된 소재지 (위 치)	주된 행위 (내용)	관련 부서	근거 법규	저촉 여부	예상되는 문 제 점
주 목 적 민 원							
복 합 민 원							

[별지 제3호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의결서

안전번호				
민원명				
신청자	주소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요안건		심의사항		의결사항
위와 같이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사항을 결정함. 년 월 일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의견

[별지 제4호서식]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민원처리진행상황 통지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의 처리진행상황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명				
접수일		처리 완료 예정일		
민원처리 진행상황				
처리 담당자	소속			
	이름		전화번호	
그 밖의 안내사항				

끝.

인천광역시검단구청장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관계 법령 발췌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 1회방문 처리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원 1회방문 처리제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1. 제2항에 따른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의 설치·운영
2. 제33조에 따른 민원후견인의 지정·운영
3.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한 실무기구의 운영
4. 제3호의 실무기구의 심의결과에 대한 제34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의(再審議)
5. 행정기관의 장의 최종 결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⑤ “복합민원”이란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등에 따라 여러 관계 기관(민원과 관련된 단체·협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부서의 인가·허가·승인·추천·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법정민원을 말한다.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민원실무심의회 설치·운영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제3항제3호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민원실무심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실무심의회 명칭은 해당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이하 “민원실무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가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를 민원실무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에게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부서에 현장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위원장은 민원실무심의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장은 민원실무심의회에 민원인을 참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⑧ 행정기관의 장은 창업·공장설립 등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의 경우에는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는 심의를 생략하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에 직접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37조(민원후견인의 지정·운영)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소속 직원을 복합민원에 대한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2. 민원실무심의회 및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진술 등 지원

3. 민원문서 보완 등의 지원

4.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의 안내

제38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법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2.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3. 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

4.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그 기관의 장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이하 “민원조정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③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그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국장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원 중에서 지명

하고, 위원은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 외부 법률 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거부하는 것으로 결정된 복합민원을 심의·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 기관의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민원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회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의2(다수인관련민원 등에 관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① 민원조정위원회는 다수인관련민원과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된 후 다시 접수된 민원(이하 이 조에서 “다수인관련민원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심의해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다수인관련민원등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을 지도·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본문에 따라 의견 제시를 요청하지 않고,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지명하는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급보다 상위 직급의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의견 제시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시하려는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른 의견 제시 및 심의를 거치거나 제2항 단서에 따른 심의를 거쳐 거부된 다수인관련민원등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로서 법 제2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종결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7. 11.]

제39조(행정기관의 장의 최종결정)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기록관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검단구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록관의 설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기록관 구성 및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5조)

다. 기록관의 생산, 등록, 정리, 이관, 보존,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11조)

라.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제19조)

마. 기록물 폐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제24조)

바.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주요 기록물의 전자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5조~제30조)

사. 기록관 보안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1조~제33조)

아. 열람과 대출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4조~제4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라. 기 타: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기록관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록물”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2. “기록물관리”라 함은 기록물의 생산, 분류, 정리, 이관, 수집, 평가, 폐기, 보존, 공개, 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업무를 말한다.
3. “기록관”이라 함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보존서고 공간, 열람공간, 사무공간, 작업공간, 보존시설 및 장비, 기록관리시스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등을 모두 갖춘 기구를 말한다.
4. “기록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기록관에서의 기록물의 수집, 보존(복제본 제작 및 이중보존매체의 제작을 포함한다), 활용, 이관, 폐기 등 기록관에서 기록물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에 적용되며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구성 및 분장사무

제4조(소속 및 인원구성)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은 기록물관리 총괄부서 소속으로 하며,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요원과 기록물의 정리·기술, 기록정보 관리, 보존업무, 그 밖에 기록물관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부서의 부서장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처리부서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①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소관 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
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4. 기록물 생산현황 취합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
5.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
6. 주요 회의록, 조사·연구·검토서, 비밀기록물, 간행물,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의 관리

7. 미등록 기록물의 수집 및 등록관리
 8.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 폐기 관리
 9. 소관 비공개기록물 및 비밀기록물의 공개 재분류
 10. 기록물 서고 관리
 11. 기록물 정수점검 및 실태조사
 12. 기록물관리 지도·교육·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13. 당해 기관 및 산하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
 14. 중요기록물의 재난대비 계획 수립
 15. 기록관의 시설 및 장비관리
 16. 기록관리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17. 활용대상 주요 기록물의 디지털자료 변환 및 검색·열람 제공
 18. 소관 비전자기록물의 전자화
 19. 보존가치가 높은 준영구 이상 기록물의 보존매체 수록
 20. 소관 기록물의 검색·열람 제공
 21. 정보공개 접수창구
 22. 기록물 편찬·전시·홍보
 23. 소관 기록물에 대한 통계의 작성·관리
 24. 그 밖에 기록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 업무분장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제3장 기록물의 관리

제6조(기록물의 생산) ① 기록관장은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과정과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등록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연구·검토서·회의록 및 시청각기록물에 대한 생산등록·관리 기준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록물의 등록) ① 모든 기록물은 생산·접수한 때에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등록번호가 부여되어 등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에서 직접 수집한 기록물은 기록관의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비전자기록물에 대해서 전자화 방안에 따라 전자화하여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기록물의 정리) ① 기록관장은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에서 생산 완료된 기록물을 매년 2월말까지 공개여부·접근권한 재분류, 분류·편철·확정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년도에 생산 완료된 기록물을 정리하여 그 결과를 5월 31일까지 기록관장에게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록관장은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생산현황 결과를 취합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기록물의 이관) ① 기록관은 처리부서에서 생산 완료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이내에 이관받아야 한다. 다만, 처리부서에서 업무참고 등의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미리 이관연기신청서를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이관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로

부터 10년의 범위 이내에 처리부서에서 업무참고로 활용할 수 있으며, 업무참고 활용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기록관으로 당해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한다.

③ 직제개편, 한시조직의 해산 등의 경우에 기록관장은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부서 간에 기록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승계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물을 기록관에서 이관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록물의 보존) ① 기록관에서 인수한 기록물은 기록물 형태, 처리과 등을 구분하여 서고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록물의 서고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배열방식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③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서고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정수점검 및 상태점검 실시, 항온항습 환경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기록물의 평가) 기록관에서의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 시행하되,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4장 기록물평가심의회

제12조(심의회 설치) 심의회는 법 제27조의2, 영 제43조 규정에 의거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13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심사대상 기록물의 폐기, 재분류 등의 적정성 여부

2. 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의 조정

3. 기타 보존기록물의 폐기, 재분류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심의회 구성 및 위원)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록관장이 되며, 위원은 기록물 심의 대상이 많은 부서의 주무담당 2인과 민간 전문가 2인으로 한다.

③ 민간 전문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전문요원으로 한다.

제15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및 의결 등) ① 위원장은 기록물 평가 및 폐기 등으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서면심의 의결서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심의회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

④ 간사는 별지 제1호 서식 기록물평가심의서,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 심의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⑤ 간사는 심의회가 열리기 1주 전에 위원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전자 우편등으로 보내 미리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경비지급) 민간위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엄수 의무) 위원장 및 위원은 심의회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결과의 공표) 위원장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및 폐기 결정된 기록물 목록을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5장 기록물 폐기

제20조(생산기관 의견조회 및 협의) ① 기록관장은 처리부서와 협의하여 보존기간이 당해연도 폐기대상으로 지정된 기록물을 확인하고 기록물평가심 의서(이하 “심의서”라 한다)를 작성한다.

② 작성된 심의서는 처리부서에 통보하여 폐기여부에 관한 검토, 보류, 기간연장 등의 의견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처리부서에서는 행정증빙 및 업무참고로 폐기의 보류, 보존기간 재책정이 필요한 경우 심의서에 의견을 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록관장은 처리부서에서 제출된 의견을 참고하여 폐기대상 기록물을 심사하고 폐기사유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1조(예비심사) ① 기록관장은 기록물 평가 및 폐기 결정을 하기위한 심의

사항 중 주요사안에 대해서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개최하기 전에 예비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예비심사위원은 전문요원으로 하며, 검토 결과는 심의회 회의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폐기심의 기준) 폐기 심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폐기를 분류하여야 한다.

1. 역사자료로서 보존 가치가 있어 영구 보존할 필요성이 높은 기록물
2. 연도별 업무계획과 추진과정, 추진결과 및 심사분석에 관한 기록물
3. 국민 다수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었던 주요 사건·사고관련 기록물
4. 장기간 존속되는 물건 또는 재산의 관리, 권리, 증빙에 필요한 기록물
5. 개인의 민원증명, 이해분쟁 또는 소송에 제출되어 증거, 보증에 필요한 기록물
6. 징계, 회계법상, 민·형사상 시효, 계약기간, 관계법령상 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7. 중장기계획, 국책사업, 대규모 장기건설사업 등에 대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록물
8. 보존기간이 영구 또는 준영구인 대상기록물 등으로 지속적인 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제23조(주민의견 수렴) 기록관장은 기록물 폐기의 투명성을 위해 심의회에 상정하기 2주 전에 구 홈페이지에 폐기 목록을 공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24조(결과기록의 관리) 기록물 폐기와 관련된 일련의 행위들은 기록물로 보존하여야 하며, 생산된 기록물은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6장 기록물의 전산화관리

제25조(보존시설 및 장비의 확보) ①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영 <별표6>의 기준에 따른 보존시설·장비 및 환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적정한 보존서고 공간 및 작업공간, 열람공간, 사무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활용에 필요한 기록관리시스템 및 열람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26조(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구축) ① 기록관에는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시스템과 관련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기록관리시스템은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및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록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기록물의 생산현황보고, 이관목록의 제출, 주요기록물에 대한 검색·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구축·운영되어야 한다.

제27조(기록관리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보수) ① 기록관장은 기록관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관련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관리시스템 및 관련 장비의 유지보수가 전문성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유지·보수 할 수 있다.

제28조(주요기록물의 전산화) 기록관장은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기록관과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기록물 중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에 대하여 전산화를 추진하여 기록정보의 신속한 검

색·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전산화 기록물의 보존관리) 전산화 기록물은 매체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30조(전자기록물의 백업 및 보존) ①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백업담당자를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백업담당자는 백업진행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백업자료를 도난 및 훼손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분산 보관하여야 한다

③ 백업주기는 변경자료는 매일, 전체 자료는 매월, 중요한 자료의 변환 또는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로 한다.

④ 백업자료의 보관기간은 매일은 1개월, 전체자료는 6개월 보관한다.

제7장 보안관리 및 점검

제31조(보안관리) ①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전산실 및 보존서고를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보안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의 전산실 및 보존서고는 외부인사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관람·견학등 부득이하게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긴급사태 시의 대비)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전산실 및 보존서고에는 화재 또는 천재지변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재난대비시설 및 재난대비계획을 작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33조(점검) ① 기록관의 전산실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전원 및 소화설비 등 시설물에 대한 일일점검

2. 중요 전산자료의 등록관리대장 및 입출력대장의 관리

② 기록관의 서고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보존서고의 각종 전원 및 소화설비 시설물 작동상태와 보존 기록물의
오손여부 및 해충의 발생여부

2. 보존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상황의 점검

제8장 기록물의 대출 및 열람

제34조(열람시간) 기록관의 열람시간은 당일 근무시간의 시작 시부터 종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기록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연장·단
축 또는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5조(열람 및 대출의 자격) ① 기록관의 기록물을 열람 및 대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직원

2. 타 부처 등의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학술연구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기록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② 제1항제2호의 경우 기록관 밖으로의 대출은 금지한다.

제36조(열람 준수사항) ① 열람은 기록관 안에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록물의 훼손·오손 또는 파괴

2. 무단으로 열람실 외부로 반출

3. 복사기 등 기록관 시설의 훼손 또는 파괴

4. 열람실 지역 내로의 음식물 등 반입 행위

5.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열람에 방해가 되는 행위

② 기록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열람 등에 사용되는 용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기록관 보존 기록물의 열람은 기록관 안에서 하여야 하며, 기록물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기록관 열람담당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37조(대출의 한도 및 기간) 기록관의 기록물 대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다.

1. 대출은 공무원의 근무시간 이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기록물의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3. 기록관장은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 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제38조(열람·대출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비밀(대외비를 포함)이 해제되지 않은 기록물을 열람·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2. 당해 기록물과 관련이 없는 자가 열람·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기록물의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4. 기타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정상적인 행정업무의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관보 및 정기간행물 등 이미 공개되어 활용되고 있는 기록물
6. 망실 또는 파손되기 쉬운 기록물인 경우
7. 대출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기록물인 경우

8. 그 밖에 기록물의 성질상 대출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9조(대출 기록물의 전대 금지) 누구든지 대출받은 기록물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기관에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제40조(대출기록물의 반납) ① 기록물을 대출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기록물을 반납하여야 하며, 대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전이라도 지체 없이 대출 기록물을 반납해야 한다.

1. 휴직, 정직, 퇴직, 다른 부처 진출 또는 대출기간을 넘는 휴가, 병가, 장기출장 시

2. 그 밖에 기록관장이 대출기간 전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

제9장 보칙

제41조(기록물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 ① 기록관장은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기록물 관리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처리부서의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2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록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기록물 평가심의서

일 련 번 호	문서 번호	생산 연도	기록물 철 제 목	보존 기간 만료 일	보존 기간	수 량	생산기관		기록관심사		심의 회 의 견
							의견	사유	의견	사유	

[별지 제2호 서식]

기록물 심의의결서

일 시					
장 소					
안 건					
심사내용					
의결주문					
심사위원	직 위	성 명	의결내용		서 명
			가	부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별지 제3호 서식]

기록물 서면심의의결서

일 시					
안 건					
불참사유					
검토의견					
심사위원	직 위	성 명	의결내용		서 명
			가	부	
위 원					

[별지 제5호서식]

보존기록물 열람대장

일련 번호	열람일시	열람자		열람기록물			열람사유
		소속	성명	생산 연도	문서철 관리번호	제 목	

410mm×297mm
(일반용지60g/㎡)

[별지 제6호서식]

기록관 출입자 명부

결 재			소 속	직 급	성 명	용 무	출입일시		비 고
담당자	담당	부서장					부터	까지	

410mm×297mm
(일반용지60g/㎡)

관계 법령 발췌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기록관) ①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기록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특수기록관을 설치·운영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 내에 기록관을 설치할 수 없다.

②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3. 기록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4.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5.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
6.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훈련
7.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협조
8.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제27조(기록물의 폐기) ① 공공기관의 장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 중인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를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록물 폐기의 시행은 민간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물의 폐기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여 감독하는 등 기록물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의2(기록물평가심의회) ① 공공기관의 장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 중인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를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기록물의 이관) ①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처리과에서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한 후 기록물철 단위로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생산·접수된 기록물은 매 1년 단위로 전년도에 생산·접수된 기록물을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한다.

제33조(처리과의 기록물생산현황 통보)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5월 31일까지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에게 전년도의 기록물 생산현황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물 생산현황의 통보는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제20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기록물 및 기록물철 등록정보를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다.

제38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서고관리) ①법 제30조에 따라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보존환경의 유지, 보안대책 및 재난대비 계획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기록물은 기록물 형태, 처리과 등을 구분하여 서고에 배치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배열방식은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이 정한다.

③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보존중인 기록물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주기에 따라 정수점검(整數點檢)과 상태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물의 상태검사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42조(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①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기록관 또는 특수 기록관의 장은 매년 8월 31일까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전 년도의 기록물 생산현황을 통보해야 한다.

제43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평가 및 폐기) ①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보존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생산부서 의견조회,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해당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 소속 기록물관리 전문 요원을 말한다)의 심사 및 제5항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62조(기록물의 재난·보안대책) 법 제30조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출입 인원, 보존시설, 전산장비 및 기록물 등으로 구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대피 우선순위, 근무자 안전규칙 등을 포함하는 기록물 재난대비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안

1. 제안이유

2026. 7. 1. 검단구 출범으로 인한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안 제1조)
- 나. 공인의 보관자 지정(안 제2조)
- 다. 공인의 날인(안 제3조)
- 라. 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안 제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인 조례 시행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의 보관자 지정)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각 기관의 공인별 보관자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인보관자가 사고 및 출장 등으로 공인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따른 직무 대리자가 보관하여야 한다.

제3조(공인의 날인) ①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기관별 전용 구청장 공인은 내부적으로 위임된 사무에 한정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 및 동장민원전용 공인은 민원창구의 즉결 민원에 한정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① 공인을 날인하여야 할 문서로서 규정된 서식에 따라 사용도가 빈번한 문서 및 유사시 발생된 업무수행 대비한 문서로 업무절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에는 사용기간을 정하여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부서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기 전에 문서업무 주관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의 사전날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인

영의 인쇄사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문서업무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그 사용부서의 장은 인쇄현장에 감독 공무원을 입회·감시하게 하여 인쇄물의 유출사고 등을 방지하고,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잔여분을 인수하여 파기하여야 하며, 인쇄물은 인영 매수를 확인한 후 사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공인사전날인(인쇄) 문서수불부(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전날인 또는 인쇄된 문서의 수불상황을 기록유지 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잔량에 대하여 폐기처분 하는 등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5조(준용규정) 그 밖에 공인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인 보관자(제2조제1항 관련)

기관별	공인 종류별	보관자
본청	○ 구청장 직인 ○ 민원전용 구청장 직인 ○ 기타 공인	문서업무 주관부서 담당 소관업무 담당 소관업무 담당
직속기관	○ 해당 기관장 직인 ○ 기타 공인	소관업무 담당 소관업무 담당
동 (행정복지센터)	○ 동장 직인 ○ 민원전용 구청장 직인 ○ 민원전용 동장 직인 ○ 기타 공인	동장이 지정하는 자 동장이 지정하는 자 동장이 지정하는 자 소관업무 담당

[별지 제1호서식]

행정기관명

()

수신자

제 목 : 공인 사전날인 신청

아래와 같이 공인을 사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용 목 적			
2. 관 계 법 령			
3. 수 량	매	4. 사용예정 기 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5. 공 인 명			
6. 비 고			

발신명의 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 mm × 297mm 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행정기관명

()

수신자

제 목: 공인인영 인쇄 신청

아래와 같이 공인의 인영을 인쇄사용 신청합니다.

1. 사 용 목 적			
2. 관 계 법 령			
3. 인 쇄 수 량		4. 인쇄업소 및 대 표 명	
5. 공 인 명		6. 제판규격(cm) (한변의 길이)	원형 () 축소 ()
7. 사 용 기 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8. 반 납 예정일	년 월 일
9. 입 회 자	직 명 성 명		

발신명의 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 mm × 297mm 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공인 사전날인(인쇄) 문서수불부

문서명 :

단위: 매(장)

연월일	적요	수	불	잔	결재		
					담당자	담당	부서장

1. 적요란은 수불내용을 명기할 것.
2. 서손한 경우에는 수불난을 정리하여 소각 처리할 것.

210mm × 297mm 백상지 80g/㎡

관계 법령 발췌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3조(관인의 종류 및 비치) ① 관인은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행정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

② 각급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인을 가진다.

1.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진다. 다만,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립된 합의제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청인을 가진다.
2. 제1호 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 「정부조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4. 합의제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③ 각급 행정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을 가진다.

제34조(특수 관인) ① 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 등 특수한 증표 발행, 민원업무 또는 재무에 관한 업무 등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관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② 세입징수관, 지출관, 회계 등 재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인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립의 각급 학교에서 사용하는 관인은 교육부장관이, 외교부와 재외공관에서 외교문서에 사용하는 관인은 외교부장관이, 검찰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인은 법무부장관이, 군 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인

은 국방부장관이 각각 그 규격과 등록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35조(규격) 관인의 모양은 별표의 규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6조(등록) ① 행정기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인의 인영을 그 행정기관의 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은 그 행정기관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바로 위 상급기관에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관인을 사용할 수 없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관인을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7조(재등록 및 폐기) ① 행정기관이 분실, 마멸, 그 밖의 사유로 관인을 갱신할 때에는 제36조에 따라 등록한 행정기관에 갱신한 관인을 등록(이하 “재등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이 관인을 폐기할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인대장에 관인 폐기일과 폐기 사유 등을 적고, 그 관인을 제39조에 따른 관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폐기된 관인이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③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관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관인의 인영을 전자 이미지관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제38조(전자이미지관인의 제출 및 관리) ① 둘 이상의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기관장”이라 한다)은 그 행정정보시스템에 전자이미지관인을 전자입력하기 위하여 그 행정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자이미지관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제출한 행정기관의 장은 제37조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37조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행정기관의 장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행정정보시스템에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관인을 전자입력하거나 폐기한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전자이미지관인을 전자입력하거나 삭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기관장이 제37조에 따라 재등록된 전자이미지관인을 제출받아 전자입력하거나 폐기된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할 수 있다.

제39조(공고) 제36조에 따른 등록기관은 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

기하였을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제40조(공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에 관하여는 이 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6조(관인의 재료 등) ① 관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관인의 인영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27조(직인의 사용)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직인은 그 직무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9. 7.>

제28조(관인의 내용) 관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다만, 영 제34조에 따라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관인은 그 업무의 집행 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임을 그 관인의 인면(관인 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29조(등록) ① 행정기관(제3항에 따라 바로 위 상급기관으로서 그 하급기관으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은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관인의 인영을 별지 제7호서식의 관인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별지 제8

호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 이미지관인의 컴퓨터파일은 정보화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영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바로 위 상급기관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0조(재등록 및 폐기) ① 행정기관(제3항에 따라 바로 위 상급기관으로서 그 하급기관으로부터 재등록신청 또는 폐기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은 영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관인대장에 갱신한 관인의 인영 또는 폐기하려는 관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영 제3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폐기하려는 전자이미지관인 또는 재등록하려는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영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바로 위 상급기관에 등록한 관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그 상급기관에 재등록신청을 하거나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전자이미지관인의 관리)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제출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 관리대장에 해당 관인의 인영을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공고의 내용) 관인 등록기관이 영 제39조에 따라 관인을 공고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재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관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목적, 설치, 구성(안 제1조~제3조)
- 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위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7조)
- 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 각 호와 제31조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 1명

나. 기타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내

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금품, 향응수수, 불법 로비, 배임, 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직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당연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3. 사전고지 없이 2회 이상 불참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제5조제3항에 위반한 경우

6.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④ 위원 과반수의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및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심사·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을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라 채점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

해야 한다.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이상, 지정 갱신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 지정 갱신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 이 경우 부적격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 ② 간사와 서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 ③ 간사와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회의록 작성

제12조(회의록 비치) 간사 및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

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제10조 관련)

1. 시설,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 기관명 : _____

항목	심사 기준	배점	점수																																											
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 (35점)	1-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제재 처분 이력(20점) - 설치·운영자 및 그 기관에 종사하려는 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등 장기요양기관 운영과 관련된 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 (최근 6년 이내) - 설치·운영자(①, 15점)와 종사자(②, 5점)의 행정제재 처분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 ① 설치·운영자가 운영한 행정제재 처분 이력(1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의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table><tr><th>점수</th><th>사회복지사업법</th><th>노인복지법</th><th colspan="2">노인장기요양보험법</th></tr><tr><td>15점</td><td colspan="4">행정처분 이력 없음</td></tr><tr><td>12점</td><td>개선명령</td><td>경고</td><td>경고</td><td>-</td></tr><tr><td>9점</td><td>시설장 교체 1회</td><td>사업정지 30일 이하</td><td>업무정지 30일 이하</td><td>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td></tr><tr><td>6점</td><td>시설장 교체 2회</td><td>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td><td>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td><td>-</td></tr><tr><td>3점</td><td>시설장 교체 3회 이상</td><td>사업정지 90일 초과</td><td>업무정지 90일 초과</td><td>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td></tr><tr><td>0점</td><td>시설폐쇄</td><td>사업폐지</td><td>지정취소</td><td>-</td></tr></table>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table><tr><th>점수</th><th>노인장기요양보험법</th></tr><tr><td>5점</td><td>행정처분 이력 없음</td></tr><tr><td>3점</td><td>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td></tr><tr><td>0점</td><td>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td></tr></table>	점수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5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12점	개선명령	경고	경고	-	9점	시설장 교체 1회	사업정지 30일 이하	업무정지 30일 이하	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	시설장 교체 2회	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	3점	시설장 교체 3회 이상	사업정지 90일 초과	업무정지 90일 초과	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	시설폐쇄	사업폐지	지정취소	-	점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	0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	20	
	점수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5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12점	개선명령	경고	경고	-																																										
9점	시설장 교체 1회	사업정지 30일 이하	업무정지 30일 이하	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	시설장 교체 2회	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																																										
3점	시설장 교체 3회 이상	사업정지 90일 초과	업무정지 90일 초과	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	시설폐쇄	사업폐지	지정취소	-																																										
점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																																													
0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																																													
	1-2.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5점) - 설치·운영자가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잦은 휴·폐업으로 안정적인 급여제공을 저해한 이력 (최근 6년 이내) - 휴업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전체 급여유형이 휴업일 때 해당 <table><tr><th>점수</th><th>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r><tr><td>5점</td><td>휴·폐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td></tr><tr><td>3점</td><td>휴·폐업 이력이 2회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인 경우</td></tr><tr><td>0점</td><td>휴·폐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12개월 초과한 경우</td></tr></table>	점수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5점	휴·폐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3점	휴·폐업 이력이 2회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인 경우	0점	휴·폐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12개월 초과한 경우	5																																				
점수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5점	휴·폐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3점	휴·폐업 이력이 2회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인 경우																																													
0점	휴·폐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12개월 초과한 경우																																													

	1-3.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10점) - 설치·운영자가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정기·수시 평가 결과의 최초등급으로 확인 - 최근 6년 이내의 정기·수시 평가 결과(최초등급)를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함(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다만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 6점으로 배정 <table><tr><th colspan="3">등급별 점수 환산표</th></tr><tr><td>① A등급(10점)</td><td>② B등급(8점)</td><td>③ C등급(6점)</td></tr><tr><td>④ D등급(4점)</td><td colspan="2">⑤ E등급, 평가제외 등(0점)</td></tr><tr><td colspan="3">⑥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6점)</td></tr></table>	등급별 점수 환산표			① A등급(10점)	② B등급(8점)	③ C등급(6점)	④ D등급(4점)	⑤ E등급, 평가제외 등(0점)		⑥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6점)			10							
등급별 점수 환산표																					
① A등급(10점)	② B등급(8점)	③ C등급(6점)																			
④ D등급(4점)	⑤ E등급, 평가제외 등(0점)																				
⑥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6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	2-1. 운영 규정 계획 수립(4점)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영 규정 및 관련 계획서의 내용 적정성 검토 <table><tr><th colspan="3">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r><tr><td>4점</td><td>매우우수</td><td>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충실하게 마련</td></tr><tr><td>3점</td><td>우수</td><td>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적정하게 작성</td></tr><tr><td>2점</td><td>보통</td><td>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 작성</td></tr><tr><td>1점</td><td>미흡</td><td>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일부 미흡</td></tr><tr><td>0점</td><td>매우미흡</td><td>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매우 미흡</td></tr></table>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4점	매우우수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충실하게 마련	3점	우수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적정하게 작성	2점	보통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 작성	1점	미흡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일부 미흡	0점	매우미흡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매우 미흡	4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4점	매우우수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충실하게 마련																		
3점	우수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적정하게 작성																			
2점	보통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 작성																			
1점	미흡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일부 미흡																			
0점	매우미흡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매우 미흡																			
	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3점) -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 1회 이상 감염병 예방, 노인 인권 보호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직원교육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확인 ① 인권교육(매년4시간이상, 인터넷교육 6시간이상) ② 노인학대 예방교육(1시간 이상) ③ 직원 역량강화 교육 <table><tr><th colspan="3">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r><tr><td>3점</td><td>매우우수</td><td>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충실하게 수립</td></tr><tr><td>2점</td><td>우수</td><td>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적절하게 수립</td></tr><tr><td>1점</td><td>보통</td><td>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 수립</td></tr><tr><td>0점</td><td>미흡</td><td>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미흡하게 수립</td></tr></table>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3점	매우우수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충실하게 수립	2점	우수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적절하게 수립	1점	보통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 수립	0점	미흡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미흡하게 수립	3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3점	매우우수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충실하게 수립																			
2점	우수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적절하게 수립																			
1점	보통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 수립																			
0점	미흡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미흡하게 수립																			
	2-3. 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3점) - 이용자 고충 처리, 고충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이용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적정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 ① 장기요양급여를 계약한 이용자에 대한 고충처리 지침 ② 수급자의 상해 등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 가입 <table><tr><th colspan="3">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r><tr><td>3점</td><td>매우우수</td><td>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충실하게 수립</td></tr><tr><td>2점</td><td>우수</td><td>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적절하게 수립</td></tr><tr><td>1점</td><td>보통</td><td>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수립</td></tr><tr><td>0점</td><td>미흡</td><td>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미흡</td></tr></table>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3점	매우우수	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충실하게 수립	2점	우수	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적절하게 수립	1점	보통	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수립	0점	미흡	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미흡	3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3점	매우우수	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충실하게 수립																			
2점	우수	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적절하게 수립																			
1점	보통	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수립																			
0점	미흡	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미흡																			

	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2점) - 시설 입소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확인 ① (시설급여 제공기관) 의료서비스 질 개선 노력 ② (재가급여 제공기관) 통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 노력 <table><tr><th colspan="3">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r><tr><td rowspan="3">시설급여 (의료서비스 질 제고)</td><td>2점</td><td>계약의사 지정 및 간호사(RN) 배치</td></tr><tr><td>1점</td><td>계약의사 지정 또는 간호사(RN) 배치</td></tr><tr><td>0점</td><td>해당없음</td></tr><tr><td rowspan="3">재가급여 (통합재가 서비스 기반 마련)</td><td>2점</td><td>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를 포함한 4종 이상 급여 제공</td></tr><tr><td>1점</td><td>주야간보호, 방문요양을 포함한 2~3종 급여제공</td></tr><tr><td>0점</td><td>1종 급여 제공</td></tr></table>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시설급여 (의료서비스 질 제고)	2점	계약의사 지정 및 간호사(RN) 배치	1점	계약의사 지정 또는 간호사(RN) 배치	0점	해당없음	재가급여 (통합재가 서비스 기반 마련)	2점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를 포함한 4종 이상 급여 제공	1점	주야간보호, 방문요양을 포함한 2~3종 급여제공	0점	1종 급여 제공	2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시설급여 (의료서비스 질 제고)	2점	계약의사 지정 및 간호사(RN) 배치																			
	1점	계약의사 지정 또는 간호사(RN) 배치																			
	0점	해당없음																			
재가급여 (통합재가 서비스 기반 마련)	2점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를 포함한 4종 이상 급여 제공																			
	1점	주야간보호, 방문요양을 포함한 2~3종 급여제공																			
	0점	1종 급여 제공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	3-1.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5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충실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 <table><tr><th colspan="3">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r><tr><td>5점</td><td>매우우수</td><td>계획서, 위원회 구성 등 충실하게 작성</td></tr><tr><td>4점</td><td>우수</td><td>계획서, 위원회 구성 등 적절하게 작성</td></tr><tr><td>3점</td><td>보통</td><td>계획서, 위원회 구성 등 작성</td></tr><tr><td>2점</td><td>미흡</td><td>계획서, 위원회 구성 등 일부 미흡</td></tr><tr><td>0점</td><td>매우미흡</td><td>계획서, 위원회 구성 등 매우 미흡</td></tr></table>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5점	매우우수	계획서, 위원회 구성 등 충실하게 작성	4점	우수	계획서, 위원회 구성 등 적절하게 작성	3점	보통	계획서, 위원회 구성 등 작성	2점	미흡	계획서, 위원회 구성 등 일부 미흡	0점	매우미흡	계획서, 위원회 구성 등 매우 미흡	5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5점	매우우수	계획서, 위원회 구성 등 충실하게 작성																			
4점	우수	계획서, 위원회 구성 등 적절하게 작성																			
3점	보통	계획서, 위원회 구성 등 작성																			
2점	미흡	계획서, 위원회 구성 등 일부 미흡																			
0점	매우미흡	계획서, 위원회 구성 등 매우 미흡																			
	3-2.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8점)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 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 수립 및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정상 운영 가능한지 확인 <table><tr><th colspan="3">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r><tr><td>8점</td><td>매우우수</td><td>계획서 충실히 작성 및 인건비 비율 적정</td></tr><tr><td>6점</td><td>우수</td><td>계획서 적절하게 작성 및 인건비 비율 적정</td></tr><tr><td>4점</td><td>보통</td><td>계획서 有, 인건비 비율 적정</td></tr><tr><td>0점</td><td>미흡</td><td>계획서 및 인건비 비율 미흡</td></tr></table> ※ 인건비 비율 판단 : 보건복지부 고시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여부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8점	매우우수	계획서 충실히 작성 및 인건비 비율 적정	6점	우수	계획서 적절하게 작성 및 인건비 비율 적정	4점	보통	계획서 有, 인건비 비율 적정	0점	미흡	계획서 및 인건비 비율 미흡	8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8점	매우우수	계획서 충실히 작성 및 인건비 비율 적정																			
6점	우수	계획서 적절하게 작성 및 인건비 비율 적정																			
4점	보통	계획서 有, 인건비 비율 적정																			
0점	미흡	계획서 및 인건비 비율 미흡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5점) - 장기요양기관 전체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시에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활용하였는지를 확인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 <table><tr><th colspan="2">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r><tr><td>5점</td><td>모든 종사자와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 체결</td></tr><tr><td>0점</td><td>일부 종사자의 근로계약이 표준근로계약서로 체결이 안 된 경우</td></tr></table>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5점	모든 종사자와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 체결	0점	일부 종사자의 근로계약이 표준근로계약서로 체결이 안 된 경우	5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5점	모든 종사자와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 체결																				
0점	일부 종사자의 근로계약이 표준근로계약서로 체결이 안 된 경우																				
	4-2. 건강관리 및 고충 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5점) -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과 건강관리 등을 위한 운영 계획 마련 여부를 확인	5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5점	매우우수	계획서 충실하게 작성				
	4점	우수	계획서 적정하게 작성				
	3점	보통	계획서 작성				
	2점	미흡	계획서 일부 미흡하게 작성				
	0점	매우미흡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매우 미흡하게 작성				
5. 자체 심사항목 (10점)	5-1. 대표자 또는 시설장의 장기요양기관 운영 또는 장기요양 요원으로 근무한 경력(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의 운영 또는 근무한 경력의 합으로 산출					5	
	점수	운영 또는 근무경력					
	5점	5년 이상					
	4점	4년 이상 5년 미만					
	3점	3년 이상 4년 미만					
	2점	2년 이상 3년 미만					
	1점	2년 미만					
	5-2.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서비스 등 자원 활용 계획(2점) -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획 마련					2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2점	우수	계획서를 적정하게 작성				
	0점	미흡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작성				
	5-3. 안전관리 규정 수립여부(3점) - 시설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소방안전설비 등 안전에 관한 사항					3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3점	매우우수	규정을 충실하게 작성				
	2점	우수	규정을 적정하게 작성				
	1점	보통	규정 작성				
	0점	미흡	규정을 작성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작성				
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	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20점) - 면접 심사를 통해 설치·운영자(대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사업 운영 계획 적절성 등을 확인					20	
	확인 내용 및 배점						
	4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					
	4점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					
	4점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점	인력 및 재정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4점	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총점	점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성명 (서명)	

2. 복지용구

□ 기관명 : _____

항목	심사 기준	배점	점수																																											
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 (35점)	1-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제재 처분 이력(20점) - 설치·운영자 및 그 기관에 종사하려는 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등 장기요양기관 운영과 관련된 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 (최근 6년 이내) - 설치·운영자(①, 15점)와 종사자(②, 5점)의 행정제재 처분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 ① 설치·운영자가 운영한 행정제재 처분 이력(1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의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table><tr><th>점수</th><th>사회복지사업법</th><th>노인복지법</th><th colspan="2">노인장기요양보험법</th></tr><tr><td>15점</td><td colspan="4">행정처분 이력 없음</td></tr><tr><td>12점</td><td>개선명령</td><td>경고</td><td>경고</td><td>-</td></tr><tr><td>9점</td><td>시설장 교체 1회</td><td>사업정지 30일 이하</td><td>업무정지 30일 이하</td><td>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td></tr><tr><td>6점</td><td>시설장 교체 2회</td><td>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td><td>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td><td>-</td></tr><tr><td>3점</td><td>시설장 교체 3회 이상</td><td>사업정지 90일 초과</td><td>업무정지 90일 초과</td><td>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td></tr><tr><td>0점</td><td>시설폐쇄</td><td>사업폐지</td><td>지정취소</td><td>-</td></tr></table>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table><tr><th>점수</th><th>노인장기요양보험법</th></tr><tr><td>5점</td><td>행정처분 이력 없음</td></tr><tr><td>3점</td><td>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td></tr><tr><td>0점</td><td>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td></tr></table>	점수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5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12점	개선명령	경고	경고	-	9점	시설장 교체 1회	사업정지 30일 이하	업무정지 30일 이하	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	시설장 교체 2회	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	3점	시설장 교체 3회 이상	사업정지 90일 초과	업무정지 90일 초과	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	시설폐쇄	사업폐지	지정취소	-	점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	0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	20	
	점수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5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12점	개선명령	경고	경고	-																																										
9점	시설장 교체 1회	사업정지 30일 이하	업무정지 30일 이하	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	시설장 교체 2회	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																																										
3점	시설장 교체 3회 이상	사업정지 90일 초과	업무정지 90일 초과	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	시설폐쇄	사업폐지	지정취소	-																																										
점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																																													
0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																																													
	1-2.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5점) - 설치·운영자가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잦은 휴·폐업으로 안정적인 급여제공을 저해한 이력 (최근 6년 이내) - 휴업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전체 급여유형이 휴업일 때 해당 <table><tr><th>점수</th><th>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r><tr><td>5점</td><td>휴·폐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td></tr><tr><td>3점</td><td>휴·폐업 이력이 2회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인 경우</td></tr><tr><td>0점</td><td>휴·폐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12개월 초과한 경우</td></tr></table>	점수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5점	휴·폐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3점	휴·폐업 이력이 2회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인 경우	0점	휴·폐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12개월 초과한 경우	5																																				
점수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5점	휴·폐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3점	휴·폐업 이력이 2회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인 경우																																													
0점	휴·폐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12개월 초과한 경우																																													

	1-3.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10점) - 설치·운영자가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정기·수시 평가 결과의 최초등급으로 확인 - 최근 6년 이내의 정기·수시 평가 결과(최초등급)를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함(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다만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 6점으로 배정 <table><tr><th colspan="3">등급별 점수 환산표</th></tr><tr><td>① A등급(10점)</td><td>② B등급(8점)</td><td>③ C등급(6점)</td></tr><tr><td>④ D등급(4점)</td><td>⑤ E등급, 평가제외 등(0점)</td><td></td></tr><tr><td colspan="3">⑥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6점)</td></tr></table>	등급별 점수 환산표			① A등급(10점)	② B등급(8점)	③ C등급(6점)	④ D등급(4점)	⑤ E등급, 평가제외 등(0점)		⑥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6점)			10							
등급별 점수 환산표																					
① A등급(10점)	② B등급(8점)	③ C등급(6점)																			
④ D등급(4점)	⑤ E등급, 평가제외 등(0점)																				
⑥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6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	2-1. 운영 규정 계획 수립(10점) - 장기요양기관 운영 계획에 따라 복지용구사업소의 제품안내, 유통, 사후 관리에 관한 계획 마련 등 적정성 확인 <table><tr><th colspan="3">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r><tr><td>10점</td><td>매우우수</td><td>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충실하게 마련</td></tr><tr><td>8점</td><td>우수</td><td>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적정하게 작성</td></tr><tr><td>6점</td><td>보통</td><td>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 작성</td></tr><tr><td>4점</td><td>미흡</td><td>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일부 미흡</td></tr><tr><td>0점</td><td>매우미흡</td><td>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매우 미흡</td></tr></table>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10점	매우우수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충실하게 마련	8점	우수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적정하게 작성	6점	보통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 작성	4점	미흡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일부 미흡	0점	매우미흡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매우 미흡	10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10점	매우우수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충실하게 마련																		
8점	우수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적정하게 작성																			
6점	보통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 작성																			
4점	미흡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일부 미흡																			
0점	매우미흡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매우 미흡																			
	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2점)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연1회 이상 노인 인권보호 관련 직원교육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확인 ① 인권교육(매년4시간이상, 인터넷교육 6시간이상) ② 노인학대예방교육(1시간이상) <table><tr><th colspan="3">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r><tr><td>2점</td><td>우수</td><td>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적절하게 수립</td></tr><tr><td>0점</td><td>미흡</td><td>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미흡하게 수립</td></tr></table>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2점	우수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적절하게 수립	0점	미흡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미흡하게 수립	2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2점	우수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적절하게 수립																			
0점	미흡	계획서 및 매뉴얼 구비 서류가 미흡하게 수립																			
	2-3. 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8점) - 이용자 고충 처리, 고충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이용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적정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 <table><tr><th colspan="3">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r><tr><td>8점</td><td>매우우수</td><td>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충실하게 수립</td></tr><tr><td>6점</td><td>우수</td><td>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적절하게 수립</td></tr><tr><td>4점</td><td>보통</td><td>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수립</td></tr><tr><td>2점</td><td>미흡</td><td>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일부 미흡</td></tr><tr><td>0점</td><td>매우미흡</td><td>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매우 미흡</td></tr></table>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8점	매우우수	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충실하게 수립	6점	우수	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적절하게 수립	4점	보통	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수립	2점	미흡	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일부 미흡	0점	매우미흡	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매우 미흡	8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8점	매우우수	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충실하게 수립																			
6점	우수	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적절하게 수립																			
4점	보통	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수립																			
2점	미흡	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일부 미흡																			
0점	매우미흡	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매우 미흡																			

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적절성 (5점)	3-1.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3점)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 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 수립 등 장기요양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확인	3																	
	<table><tr><th colspan="3">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r><tr><td>3점</td><td>매우우수</td><td>계획서가 충실하게 작성</td></tr><tr><td>2점</td><td>우수</td><td>계획서가 적정하게 작성</td></tr><tr><td>1점</td><td>보통</td><td>계획서 작성</td></tr><tr><td>0점</td><td>미흡</td><td>계획서 미흡하게 작성</td></tr></table>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3점	매우우수	계획서가 충실하게 작성	2점	우수	계획서가 적정하게 작성	1점	보통	계획서 작성	0점	미흡	계획서 미흡하게 작성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3점	매우우수	계획서가 충실하게 작성																	
2점	우수	계획서가 적정하게 작성																	
1점	보통	계획서 작성																	
0점	미흡	계획서 미흡하게 작성																	
	3-2. 직원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2점) -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과 건강 관리 등을 위한 계획 마련 여부를 확인	2																	
	<table><tr><th colspan="3">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r><tr><td>2점</td><td>우수</td><td>계획서가 모두 적정하게 작성</td></tr><tr><td>0점</td><td>미흡</td><td>계획서가 일부 미흡하게 작성</td></tr></table>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2점	우수	계획서가 모두 적정하게 작성	0점	미흡	계획서가 일부 미흡하게 작성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2점	우수	계획서가 모두 적정하게 작성																	
0점	미흡	계획서가 일부 미흡하게 작성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4-1.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8점)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등에 따라 복지용구를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매월 정기상담 실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상담 담당자를 지정하였는지 확인 ※ 대여제품은 반드시 정기상담을 실시	8																	
	<table><tr><th colspan="3">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r><tr><td>8점</td><td>매우우수</td><td>계획서 충실하게 작성</td></tr><tr><td>6점</td><td>우수</td><td>계획서 적정하게 작성</td></tr><tr><td>3점</td><td>보통</td><td>계획서 작성</td></tr><tr><td>0점</td><td>미흡</td><td>계획서 미흡하게 작성</td></tr></table>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8점	매우우수	계획서 충실하게 작성	6점	우수	계획서 적정하게 작성	3점	보통	계획서 작성	0점	미흡	계획서 미흡하게 작성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8점	매우우수	계획서 충실하게 작성																	
6점	우수	계획서 적정하게 작성																	
3점	보통	계획서 작성																	
0점	미흡	계획서 미흡하게 작성																	
	4-2.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8점) -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매뉴얼 작성여부 - 소독에 필요한 용구(소독액, 소독장비 등) 및 보호장구 구비여부 - 소독방법이 '위탁' 또는 '자체+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여부* * 소독방법이 '자체·위탁' 또는 '위탁'인 경우에 한함	8																	
	<table><tr><th colspan="3">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r><tr><td>8점</td><td>매우우수</td><td>매뉴얼, 용구, 장비 충실히 마련 (위탁시설 : 증명서류 완벽히 구비)</td></tr><tr><td>6점</td><td>우수</td><td>매뉴얼 용구, 장비를 적정하게 마련 (위탁시설 : 증명서류 적정하게 구비)</td></tr><tr><td>4점</td><td>보통</td><td>매뉴얼, 용구, 장비를 마련 (위탁시설 : 증명서류 구비)</td></tr><tr><td>2점</td><td>미흡</td><td>매뉴얼, 용구, 장비가 있으나 미흡 (위탁시설 : 증명서류 미흡)</td></tr><tr><td>0점</td><td>매우미흡</td><td>매뉴얼, 용구, 장비를 마련하지 않는 사업소 (위탁시설 : 위탁서류가 없음)</td></tr></table>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8점	매우우수	매뉴얼, 용구, 장비 충실히 마련 (위탁시설 : 증명서류 완벽히 구비)	6점	우수	매뉴얼 용구, 장비를 적정하게 마련 (위탁시설 : 증명서류 적정하게 구비)	4점	보통	매뉴얼, 용구, 장비를 마련 (위탁시설 : 증명서류 구비)	2점	미흡	매뉴얼, 용구, 장비가 있으나 미흡 (위탁시설 : 증명서류 미흡)	0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8점	매우우수	매뉴얼, 용구, 장비 충실히 마련 (위탁시설 : 증명서류 완벽히 구비)																	
6점	우수	매뉴얼 용구, 장비를 적정하게 마련 (위탁시설 : 증명서류 적정하게 구비)																	
4점	보통	매뉴얼, 용구, 장비를 마련 (위탁시설 : 증명서류 구비)																	
2점	미흡	매뉴얼, 용구, 장비가 있으나 미흡 (위탁시설 : 증명서류 미흡)																	
0점	매우미흡	매뉴얼, 용구, 장비를 마련하지 않는 사업소 (위탁시설 : 위탁서류가 없음)																	

	4-3.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4점) - 복지용구 전시·체험·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및 복지용구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 구비 여부 확인 <table><tr><th colspan="3">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r><tr><td colspan="3">① 복지용구 전시·체험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보관 중인 대여품을 많이 쌓아 두는 등 대여품의 훼손이 우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 (23.1㎡ X 2배 이상) 확보</td></tr><tr><td colspan="3">- 소독 전 제품들과 대여 준비 중인 제품은 한 공간에 보관할 수 없음 ※ 세정·소독 전의 제품과 세정·소독 후의 제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td></tr><tr><td colspan="3">- 복지용구 생산, 공급업체(생산공장 또는 도매상 등)에서 직접 대여품 회수·배송 등을 수행하는 경우는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지 않아도 가능</td></tr><tr><td colspan="3">② 제품 수불부대장(입고, 출고, 수리중), 제품 A/S 대장 등</td></tr><tr><td>4점</td><td>매우우수</td><td>①,② 모두 충실하게 마련</td></tr><tr><td>3점</td><td>보통</td><td>①,② 모두 마련</td></tr><tr><td>2점</td><td>미흡</td><td>① 또는 ② 중 한 가지는 미흡</td></tr><tr><td>0점</td><td>매우미흡</td><td>①,②가 모두 매우 미흡함</td></tr></table>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① 복지용구 전시·체험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보관 중인 대여품을 많이 쌓아 두는 등 대여품의 훼손이 우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 (23.1㎡ X 2배 이상) 확보			- 소독 전 제품들과 대여 준비 중인 제품은 한 공간에 보관할 수 없음 ※ 세정·소독 전의 제품과 세정·소독 후의 제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			- 복지용구 생산, 공급업체(생산공장 또는 도매상 등)에서 직접 대여품 회수·배송 등을 수행하는 경우는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지 않아도 가능			② 제품 수불부대장(입고, 출고, 수리중), 제품 A/S 대장 등			4점	매우우수	①,② 모두 충실하게 마련	3점	보통	①,② 모두 마련	2점	미흡	① 또는 ② 중 한 가지는 미흡	0점	매우미흡	①,②가 모두 매우 미흡함	4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① 복지용구 전시·체험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보관 중인 대여품을 많이 쌓아 두는 등 대여품의 훼손이 우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 (23.1㎡ X 2배 이상) 확보																														
- 소독 전 제품들과 대여 준비 중인 제품은 한 공간에 보관할 수 없음 ※ 세정·소독 전의 제품과 세정·소독 후의 제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																														
- 복지용구 생산, 공급업체(생산공장 또는 도매상 등)에서 직접 대여품 회수·배송 등을 수행하는 경우는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지 않아도 가능																														
② 제품 수불부대장(입고, 출고, 수리중), 제품 A/S 대장 등																														
4점	매우우수	①,② 모두 충실하게 마련																												
3점	보통	①,② 모두 마련																												
2점	미흡	① 또는 ② 중 한 가지는 미흡																												
0점	매우미흡	①,②가 모두 매우 미흡함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20점) - 면접 심사를 통해 설치·운영자(대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사업 운영 계획 적절성 등을 확인 <table><tr><th colspan="2">확인 내용 및 배점</th></tr><tr><td>5점</td><td>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td></tr><tr><td>5점</td><td>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td></tr><tr><td>5점</td><td>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td></tr><tr><td>5점</td><td>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td></tr></table>	확인 내용 및 배점		5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	5점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	5점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5점	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																		
확인 내용 및 배점																														
5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																													
5점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																													
5점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5점	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총점				점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성명 (서명)																														

[별표 2]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기준(제10조 관련)

1.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복지용구 제외)

□ 기관명 : _____

항목	심사 기준	배점	채점																																			
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 (40점)	1-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20점) - 설치·운영자 및 그 기관에 종사하려는 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등 장기요양기관 운영과 관련된 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 (유효기간으로 최근 6년 이내) - 설치·운영자(①, 15점)와 종사자(②, 5점)의 행정제재 처분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 ① 설치·운영자(대표자)의 행정제재 처분 이력(1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이 받은 행정처분중 가장 중한 처분(가장 낮은 점수)을 적용	20																																				
	<table><tr><th>점수</th><th>사회복지사업법</th><th>노인복지법</th><th colspan="2">노인장기요양보험법</th></tr><tr><td>15점</td><td colspan="4">행정처분 이력 없음</td></tr><tr><td>12점</td><td>개선명령</td><td>경고</td><td>경고</td><td>-</td></tr><tr><td>9점</td><td>시설장 교체 1회</td><td>사업정지 30일 이하</td><td>업무정지 30일 이하</td><td>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td></tr><tr><td>6점</td><td>시설장 교체 2회</td><td>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td><td>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td><td>-</td></tr><tr><td>3점</td><td>시설장 교체 3회 이상</td><td>사업정지 90일 초과</td><td>업무정지 90일 초과</td><td>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td></tr><tr><td>0점</td><td>시설폐쇄</td><td>사업폐지</td><td>지정취소</td><td>-</td></tr></table>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점수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5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12점	개선명령	경고	경고	-	9점	시설장 교체 1회	사업정지 30일 이하	업무정지 30일 이하	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	시설장 교체 2회	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	3점	시설장 교체 3회 이상	사업정지 90일 초과	업무정지 90일 초과	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	시설폐쇄	사업폐지	지정취소	-
	점수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5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12점			개선명령	경고	경고	-																															
	9점			시설장 교체 1회	사업정지 30일 이하	업무정지 30일 이하	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			시설장 교체 2회	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																															
	3점			시설장 교체 3회 이상	사업정지 90일 초과	업무정지 90일 초과	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			시설폐쇄	사업폐지	지정취소	-																															
	②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table><tr><th>점수</th><th>노인장기요양보험법</th></tr><tr><td>5점</td><td>행정처분 이력 없음</td></tr><tr><td>3점</td><td>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td></tr><tr><td>0점</td><td>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td></tr></table>	점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	0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																														
점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																																					
0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																																					
1-2. 설치·운영자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15점) - 설치·운영자가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정기 평가 결과의 최초등급으로 확인 - 평가회피의 경우 최저 점수군으로 분류 - 지정 유효기간(6년) 내 평가결과를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함(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유효기간 내 평가결과 1회의 경우(평가대상인데 평가받지 않은 경우 제외) 평가등급을 점수로 변환하여 그대로 반영	15																																					

	<table><tr><th colspan="3">등급별 점수 환산표</th></tr><tr><td>① A등급(15점)</td><td>② B등급(12점)</td><td>③ C등급(9점)</td></tr><tr><td>④ D등급(6점)</td><td colspan="2">⑤ E등급, 평가이력 없음(미실시, 거부 등)(0점)</td></tr></table>	등급별 점수 환산표			① A등급(15점)	② B등급(12점)	③ C등급(9점)	④ D등급(6점)	⑤ E등급, 평가이력 없음(미실시, 거부 등)(0점)																	
	등급별 점수 환산표																									
	① A등급(15점)	② B등급(12점)	③ C등급(9점)																							
	④ D등급(6점)	⑤ E등급, 평가이력 없음(미실시, 거부 등)(0점)																								
1-3.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5점) - 설치·운영자가 지정유효기간(6년) 동안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잦은 휴·폐업으로 안정적인 급여 제공을 저해한 이력을 확인 - 휴업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전체 급여유형이 휴업일 때 해당 - 휴업(①, 2점)과 폐업(②, 3점) 이력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 ① 휴업이력(2점) <table><tr><th>점수</th><th colspan="2">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r><tr><td>2점</td><td colspan="2">휴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이하인 경우</td></tr><tr><td>1점</td><td colspan="2">휴업 이력이 2회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인 경우</td></tr><tr><td>0점</td><td colspan="2">휴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12개월 초과한 경우</td></tr></table> ② 폐업이력(3점) <table><tr><th>점수</th><th colspan="2">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r><tr><td>3점</td><td colspan="2">폐업 이력 1회 이하</td></tr><tr><td>2점</td><td colspan="2">폐업 이력 2회</td></tr><tr><td>0점</td><td colspan="2">폐업 이력이 3회 이상</td></tr></table>	점수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2점	휴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이하인 경우		1점	휴업 이력이 2회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인 경우		0점	휴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12개월 초과한 경우		점수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3점	폐업 이력 1회 이하		2점	폐업 이력 2회		0점	폐업 이력이 3회 이상		5	
점수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2점	휴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이하인 경우																									
1점	휴업 이력이 2회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인 경우																									
0점	휴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12개월 초과한 경우																									
점수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3점	폐업 이력 1회 이하																									
2점	폐업 이력 2회																									
0점	폐업 이력이 3회 이상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2-1. 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4점) - 기관의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한 환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table><tr><th colspan="3">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r><tr><td>연간 사업계획</td><td>연간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다.</td><td>2점</td></tr><tr><td rowspan="2">정기평가</td><td>사업계획에 따른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td><td>1점</td></tr><tr><td>평가결과를 기관 운영에 반영하고 있다</td><td>1점</td></tr></table>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연간 사업계획	연간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점	정기평가	사업계획에 따른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1점	평가결과를 기관 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1점	4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연간 사업계획	연간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점																							
	정기평가	사업계획에 따른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1점																							
평가결과를 기관 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1점																								
2-2. 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2점) -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감염병 예방, 노인 인권 보호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직원교육을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① 인권교육(매년 4시간 이상) ② 노인학대 예방교육(1시간 이상) ③ 직원 역량강화 교육(안전사고, 감염병,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등) ※ ①, ②번은 필수 교육으로 2개 중 1개 미실시의 경우 '교육실시' 항목 0점 부여 <table><tr><th colspan="3">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r><tr><td>교육실시</td><td>종사자에 대한 공식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td><td>1점</td></tr><tr><td>교육지원</td><td>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보수교육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td><td>1점</td></tr></table>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교육실시	종사자에 대한 공식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점	교육지원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보수교육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1점	2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교육실시	종사자에 대한 공식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점																								
교육지원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보수교육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1점																								
2-3. 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6점) - 수급자 고충 처리, 고충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이용자 인권 보호와 고충 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적정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	6																									

	3-2.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8점) - 기관이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무상태 관리를 통해 투명한 회계운영과 책임성 있는 재정운영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 회계운영(①, 4점)과 재정운영(②, 4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① 회계운영(4점) <table><tr><th colspan="2">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r><tr><td>회계담당자의 지정, 신원보증보험 가입, 관련 교육 실시 등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다.</td><td>2점</td></tr><tr><td>수입·지출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td><td>2점</td></tr></table> ② 재정운영(4점) <table><tr><th colspan="2">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r><tr><td>예결산서가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정기적으로 공개되고 있다.</td><td>2점</td></tr><tr><td>급여비 및 본인부담금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수납 및 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td><td>2점</td></tr></table>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회계담당자의 지정, 신원보증보험 가입, 관련 교육 실시 등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다.	2점	수입·지출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	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예결산서가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정기적으로 공개되고 있다.	2점	급여비 및 본인부담금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수납 및 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2점	8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회계담당자의 지정, 신원보증보험 가입, 관련 교육 실시 등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다.	2점																			
수입·지출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	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예결산서가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정기적으로 공개되고 있다.	2점																			
급여비 및 본인부담금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수납 및 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2점																			
	3-3.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4점) - 기관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시설관리의 기준 및 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 - 재해예방(①, 2점)과 안전관리(②, 2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① 재해예방(2점) <table><tr><th colspan="2">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r><tr><td>재해발생에 대비한 매뉴얼 및 지역 비상연락체계를 마련하고 있다.</td><td>1점</td></tr><tr><td>재해발생에 대비한 보험과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td><td>1점</td></tr></table> ② 안전관리(2점) <table><tr><th colspan="3">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r><tr><td rowspan="2">입소형</td><td>안전관리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관련 교육을 받고 있다.</td><td>1점</td></tr><tr><td>안전 점검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td><td>1점</td></tr><tr><td>방문형</td><td>시설장이 종사자, 수급자(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td><td>2점</td></tr></table>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재해발생에 대비한 매뉴얼 및 지역 비상연락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1점	재해발생에 대비한 보험과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1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입소형	안전관리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관련 교육을 받고 있다.	1점	안전 점검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	1점	방문형	시설장이 종사자, 수급자(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점	4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재해발생에 대비한 매뉴얼 및 지역 비상연락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1점																			
재해발생에 대비한 보험과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1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입소형	안전관리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관련 교육을 받고 있다.	1점																		
	안전 점검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	1점																		
방문형	시설장이 종사자, 수급자(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점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9점) - 장기요양기관 전체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시에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활용하고, 적정한 급여수준을 준수하였는지 확인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 ※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은 연도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Ⅱ 참고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옹구 기관은 기본 점수로 부여 - 고용계약(①, 2점)과 급여수준(②, 7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① 고용계약(2점)	9																		

	<table><tr><th colspan="2">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r><tr><td>표준근로계약을 사용하고 있다.</td><td>1점</td></tr><tr><td>표준근로계약의 주요 사항을 준수하고 있다.</td><td>1점</td></tr></table> ② 급여수준(7점) <table><tr><th colspan="2">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r><tr><td>인건비지출비율을 적정하게 준수하고 있다.</td><td>4점</td></tr><tr><td>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체계와 내역을 제공하고 있다.</td><td>2점</td></tr><tr><td>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td><td>1점</td></tr><tr><td colspan="2">※ 인건비 비율 판단 : 보건복지부 고시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여부</td></tr></table>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표준근로계약을 사용하고 있다.	1점	표준근로계약의 주요 사항을 준수하고 있다.	1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인건비지출비율을 적정하게 준수하고 있다.	4점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체계와 내역을 제공하고 있다.	2점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1점	※ 인건비 비율 판단 : 보건복지부 고시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여부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표준근로계약을 사용하고 있다.	1점																		
표준근로계약의 주요 사항을 준수하고 있다.	1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인건비지출비율을 적정하게 준수하고 있다.	4점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체계와 내역을 제공하고 있다.	2점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1점																		
※ 인건비 비율 판단 : 보건복지부 고시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여부																			
	4-2.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7점) - 장기요양기관이 종사자의 건강관리와 복리후생,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 -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①, 3점)과 고충처리(②, 4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①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3점) <table><tr><th colspan="2">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r><tr><td>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td><td>1점</td></tr><tr><td>종사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td><td>2점</td></tr></table> ② 고충처리(4점) <table><tr><th colspan="2">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r><tr><td>종사자 고충처리 절차 및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td><td>2점</td></tr><tr><td>종사자 인권보호와 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td><td>2점</td></tr></table>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1점	종사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종사자 고충처리 절차 및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2점	종사자 인권보호와 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점	7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1점																		
종사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종사자 고충처리 절차 및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2점																		
종사자 인권보호와 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점																		
5. 설치·운영자 심층 평가 (12점)	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12점) - 면접심사를 통해 설치·운영자(대표자)의 제반 규정 준수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기관 운영 실적 등을 확인 -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응답하고,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점수 부여 ※ 심사간소화군 및 기본심사군에서 대면심사를 면제할 경우 기본점수(12점) 부여 ※ 심층심사군 대상기관이 심사위원회에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제출된 소명자료 및 지자체 담당자의 의견서로 대면심사 갈음 ①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4점) <table><tr><th colspan="2">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th></tr><tr><td>행정처분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td><td>2점</td></tr><tr><td>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td><td>2점</td></tr><tr><th colspan="2">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경우)</th></tr><tr><td>평소 제반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td><td>2점</td></tr><tr><td>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td><td>2점</td></tr></table>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2점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경우)		평소 제반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2점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2점	12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2점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경우)																			
평소 제반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2점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2점																		

	②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4점) <table><tr><td colspan="2">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기관 평가 결과 E등급 또는 미실시·거부</td></tr><tr><td>장기요양기관평가에서 미흡했던 점(미실시·거부의 경우 사유)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td><td>2점</td></tr><tr><td>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td><td>2점</td></tr></table> <table><tr><td colspan="2">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기관 평가 결과 A~D등급</td></tr><tr><td>장기요양기관평가에서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또는 우수한 점을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td><td>2점</td></tr><tr><td>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td><td>2점</td></tr></table> ③ 기타 기관 운영실적(4점) <table><tr><td colspan="2">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d></tr><tr><td>귀 기관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지역에 기여하기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td><td>1점</td></tr><tr><td>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어떠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td><td>1점</td></tr><tr><td>수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td><td>1점</td></tr><tr><td>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관리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td><td>1점</td></tr></table>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기관 평가 결과 E등급 또는 미실시·거부		장기요양기관평가에서 미흡했던 점(미실시·거부의 경우 사유)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2점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기관 평가 결과 A~D등급		장기요양기관평가에서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또는 우수한 점을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2점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귀 기관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지역에 기여하기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1점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어떠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1점	수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1점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관리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1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기관 평가 결과 E등급 또는 미실시·거부																									
장기요양기관평가에서 미흡했던 점(미실시·거부의 경우 사유)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2점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기관 평가 결과 A~D등급																									
장기요양기관평가에서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또는 우수한 점을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2점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귀 기관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지역에 기여하기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1점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어떠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1점																								
수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1점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관리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1점																								
총점	점																								

※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성명

(서명)

2. 재가장기요양기관(복지용구 제외)

□ 기관명 : _____

항목	심사 기준	배점	채점																																											
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 (40점)	1-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 처분이력(20점) - 설치·운영자 및 그 기관에 종사하려는 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등 장기요양기관 운영과 관련된 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 (유효기간으로 최근 6년 이내) - 설치·운영자(①, 15점)와 종사자(②, 5점)의 행정제재 처분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 ① 설치·운영자(대표자)의 행정제재 처분 이력(1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이 받은 행정처분중 가장 중한 처분(가장 낮은 점수)을 적용 <table><tr><th>점수</th><th>사회복지사업법</th><th>노인복지법</th><th colspan="2">노인장기요양보험법</th></tr><tr><td>15점</td><td colspan="4">행정처분 이력 없음</td></tr><tr><td>12점</td><td>개선명령</td><td>경고</td><td>경고</td><td>-</td></tr><tr><td>9점</td><td>시설장 교체 1회</td><td>사업정지 30일 이하</td><td>업무정지 30일 이하</td><td>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td></tr><tr><td>6점</td><td>시설장 교체 2회</td><td>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td><td>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td><td>-</td></tr><tr><td>3점</td><td>시설장 교체 3회 이상</td><td>사업정지 90일 초과</td><td>업무정지 90일 초과</td><td>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td></tr><tr><td>0점</td><td>시설폐쇄</td><td>사업폐지</td><td>지정취소</td><td>-</td></tr></table>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table><tr><th>점수</th><th>노인장기요양보험법</th></tr><tr><td>5점</td><td>행정처분 이력 없음</td></tr><tr><td>3점</td><td>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td></tr><tr><td>0점</td><td>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td></tr></table>	점수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5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12점	개선명령	경고	경고	-	9점	시설장 교체 1회	사업정지 30일 이하	업무정지 30일 이하	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	시설장 교체 2회	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	3점	시설장 교체 3회 이상	사업정지 90일 초과	업무정지 90일 초과	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	시설폐쇄	사업폐지	지정취소	-	점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	0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	20	
	점수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5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12점	개선명령	경고	경고	-																																									
9점	시설장 교체 1회	사업정지 30일 이하	업무정지 30일 이하	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	시설장 교체 2회	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																																										
3점	시설장 교체 3회 이상	사업정지 90일 초과	업무정지 90일 초과	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	시설폐쇄	사업폐지	지정취소	-																																										
점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																																													
0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																																													
1-2. 설치·운영자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15점) - 설치·운영자가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으로부터 받은 정기 평가 결과의 최초등급으로 확인 - 평가회피의 경우 최저 점수군으로 분류 - 지정 유효기간(6년) 내 평가결과를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함(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유효기간 내 평가결과 1회의 경우(평가대상인데 평가받지 않은 경우 제외) 평가등급을 점수로 변환하여 그대로 반영 <table><tr><th colspan="2">등급별 점수 환산표</th></tr><tr><td>① A등급(15점)</td><td>② B등급(12점) ③ C등급(9점)</td></tr><tr><td>④ D등급(6점)</td><td>⑤ E등급, 평가이력 없음(미 실시, 거부 등)(0점)</td></tr></table>	등급별 점수 환산표		① A등급(15점)	② B등급(12점) ③ C등급(9점)	④ D등급(6점)	⑤ E등급, 평가이력 없음(미 실시, 거부 등)(0점)	15																																							
등급별 점수 환산표																																														
① A등급(15점)	② B등급(12점) ③ C등급(9점)																																													
④ D등급(6점)	⑤ E등급, 평가이력 없음(미 실시, 거부 등)(0점)																																													

	1-3.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5점) - 설치·운영자가 지정유효기간(6년) 동안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잦은 휴·폐업으로 안정적인 급여 제공을 저해한 이력을 확인 - 휴업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전체 급여유형이 휴업일 때 해당 - 휴업(①, 2점)과 폐업(②, 3점) 이력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 ① 휴업이력(2점) <table><tr><th>점수</th><th colspan="2">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r><tr><td>2점</td><td colspan="2">휴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이하인 경우</td></tr><tr><td>1점</td><td colspan="2">휴업 이력이 2회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인 경우</td></tr><tr><td>0점</td><td colspan="2">휴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12개월 초과한 경우</td></tr></table> ② 폐업이력(3점) <table><tr><th>점수</th><th colspan="2">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r><tr><td>3점</td><td colspan="2">폐업 이력 1회 이하</td></tr><tr><td>2점</td><td colspan="2">폐업 이력 2회</td></tr><tr><td>0점</td><td colspan="2">폐업 이력이 3회 이상</td></tr></table>	점수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2점	휴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이하인 경우		1점	휴업 이력이 2회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인 경우		0점	휴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12개월 초과한 경우		점수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3점	폐업 이력 1회 이하		2점	폐업 이력 2회		0점	폐업 이력이 3회 이상		5	
	점수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2점	휴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이하인 경우																									
	1점	휴업 이력이 2회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인 경우																									
0점	휴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12개월 초과한 경우																										
점수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3점	폐업 이력 1회 이하																										
2점	폐업 이력 2회																										
0점	폐업 이력이 3회 이상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2-1. 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4점) - 기관의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한 환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table><tr><th colspan="3">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r><tr><td>연간 사업계획</td><td>연간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다.</td><td>2점</td></tr><tr><td rowspan="2">정기평가</td><td>사업계획에 따른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td><td>1점</td></tr><tr><td>평가결과를 기관 운영에 반영하고 있다</td><td>1점</td></tr></table>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연간 사업계획	연간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점	정기평가	사업계획에 따른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1점	평가결과를 기관 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1점	4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연간 사업계획	연간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점																								
정기평가	사업계획에 따른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1점																									
	평가결과를 기관 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1점																									
2-2. 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2점) -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감염병 예방, 노인 인권 보호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직원교육을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① 인권교육(매년 4시간 이상) ② 노인학대 예방교육(1시간 이상) ③ 직원 역량강화 교육(안전사고, 감염병,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등) ※ ①, ②번은 필수 교육으로 2개 중 1개 미실시의 경우 '교육실시' 항목 0점 부여 <table><tr><th colspan="3">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r><tr><td>교육실시</td><td>종사자에 대한 공식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td><td>1점</td></tr><tr><td>교육지원</td><td>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보수교육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td><td>1점</td></tr></table>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교육실시	종사자에 대한 공식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점	교육지원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보수교육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1점	2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교육실시	종사자에 대한 공식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점																									
교육지원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보수교육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1점																									
	2-3. 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6점) - 수급자 고충 처리, 고충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이용자 인권 보호와 고충 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적정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 - 수급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 마련·실행하고, 관련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	6																									

	<table><tr><th colspan="3">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r><tr><td rowspan="2">인권보호 및 고충처리</td><td>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계획과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td><td>1점</td></tr><tr><td>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가 운영되고 있다</td><td>1점</td></tr><tr><td rowspan="3">개인정보 보호</td><td>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계획과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td><td>1점</td></tr><tr><td>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활동이 업무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td><td>1점</td></tr><tr><td>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있다</td><td>2점</td></tr></table>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	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계획과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1점	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가 운영되고 있다	1점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계획과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1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활동이 업무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1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있다	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	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계획과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1점																							
	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가 운영되고 있다	1점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계획과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1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활동이 업무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1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있다	2점																							
	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4점) -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공계획과 기록, 점검 및 조정 활동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 특히,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감염병 및 위험 발생 예방, 대응활동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 서비스 관리(①, 2점)과 감염병 및 위험관리(②, 2점)를 각각 확인·계산하여 합산 ① 서비스 관리(2점) <table><tr><th colspan="3">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r><tr><td colspan="2">수급자의 개인별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있다</td><td>1점</td></tr><tr><td colspan="2">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td><td>1점</td></tr></table> ② 감염병 및 위험 관리(2점) <table><tr><th colspan="3">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r><tr><td rowspan="2">입소형</td><td>감염병 관리 지침이 있으며, 정기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td><td>1점</td></tr><tr><td>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td><td>1점</td></tr><tr><td rowspan="2">방문형</td><td>종사자에게 수급자 감염관리를 위한 격리방법 등 정보 제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td><td>1점</td></tr><tr><td>수급자(보호자)에게 감염 예방을 위한 안내를 하고 있다.</td><td>1점</td></tr></table>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수급자의 개인별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1점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1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입소형	감염병 관리 지침이 있으며, 정기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1점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1점	방문형	종사자에게 수급자 감염관리를 위한 격리방법 등 정보 제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점	수급자(보호자)에게 감염 예방을 위한 안내를 하고 있다.	1점	4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수급자의 개인별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1점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1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입소형	감염병 관리 지침이 있으며, 정기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1점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1점																							
방문형	종사자에게 수급자 감염관리를 위한 격리방법 등 정보 제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점																							
	수급자(보호자)에게 감염 예방을 위한 안내를 하고 있다.	1점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3-1.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4점) -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따라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충실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 - 운영위원회 구성(①, 2점)과 실시(②, 2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① 운영위원회 구성(2점) <table><tr><th colspan="3">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r><tr><td colspan="2">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td><td>1점</td></tr><tr><td colspan="2">운영에 필요한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td><td>1점</td></tr></table> ② 운영위원회 실시(2점) <table><tr><th colspan="3">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r><tr><td colspan="2">운영과 관련된 회의를 직원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td><td>1점</td></tr><tr><td colspan="2">회의 결과를 기관 운영에 반영하고 있다.</td><td>1점</td></tr></table>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1점	운영에 필요한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1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운영과 관련된 회의를 직원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1점	회의 결과를 기관 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1점	4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1점																							
운영에 필요한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1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운영과 관련된 회의를 직원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1점																							
회의 결과를 기관 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1점																							

	3-2.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8점) - 기관이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무상태 관리를 통해 투명한 회계 운영과 책임성 있는 재정운영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 회계운영(①, 4점)과 재정운영(②, 4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① 회계운영(4점) <table><tr><th colspan="2">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r><tr><td>회계담당자의 지정, 관련 교육 실시 등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다.</td><td>2점</td></tr><tr><td>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을 관리하고 있다.</td><td>2점</td></tr></table> ② 재정운영(4점) <table><tr><th colspan="2">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r><tr><td>예결산서를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있다.</td><td>2점</td></tr><tr><td>급여비 및 본인부담금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수납 및 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td><td>2점</td></tr></table>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회계담당자의 지정, 관련 교육 실시 등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다.	2점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을 관리하고 있다.	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예결산서를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2점	급여비 및 본인부담금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수납 및 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2점	8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회계담당자의 지정, 관련 교육 실시 등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다.	2점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을 관리하고 있다.	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예결산서를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2점																			
급여비 및 본인부담금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수납 및 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2점																			
	3-3.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4점) - 기관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시설관리의 기준 및 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 - 재해예방(①, 2점)과 안전관리(②, 2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① 재해예방(2점) <table><tr><th colspan="2">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r><tr><td>재해발생에 대비한 매뉴얼 및 지역 비상연락체계를 마련하고 있다.</td><td>1점</td></tr><tr><td>재해발생에 대비한 보험 또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td><td>1점</td></tr></table> ② 안전관리(2점) <table><tr><th colspan="3">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r><tr><td rowspan="2">입소형</td><td>안전관리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관련 교육을 받고 있다.</td><td>1점</td></tr><tr><td>안전 점검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td><td>1점</td></tr><tr><td>방문형</td><td>시설장이 종사자, 수급자(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td><td>2점</td></tr></table>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재해발생에 대비한 매뉴얼 및 지역 비상연락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1점	재해발생에 대비한 보험 또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1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입소형	안전관리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관련 교육을 받고 있다.	1점	안전 점검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	1점	방문형	시설장이 종사자, 수급자(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점	4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재해발생에 대비한 매뉴얼 및 지역 비상연락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1점																			
재해발생에 대비한 보험 또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1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입소형	안전관리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관련 교육을 받고 있다.	1점																		
	안전 점검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	1점																		
방문형	시설장이 종사자, 수급자(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점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9점) - 장기요양기관 전체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시에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활용하고, 적정한 급여수준을 준수하였는지 확인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 ※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은 연도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II 참고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옹구 기관은 기본 점수로 부여 - 고용계약(①, 2점)과 급여수준(②, 7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① 고용계약(2점) <table><tr><th colspan="2">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r><tr><td>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td><td>1점</td></tr><tr><td>표준근로계약의 주요 사항을 준수하고 있다.</td><td>1점</td></tr></table>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	1점	표준근로계약의 주요 사항을 준수하고 있다.	1점	9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	1점																			
표준근로계약의 주요 사항을 준수하고 있다.	1점																			

	② 급여수준(7점) <table><tr><th colspan="2">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r><tr><td>인건비지출비율을 적정하게 준수하고 있다.</td><td>4점</td></tr><tr><td>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체계와 내역을 제공하고 있다.</td><td>2점</td></tr><tr><td>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td><td>1점</td></tr><tr><td colspan="2">※ 인건비 비율 판단 : 보건복지부 고시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여부</td></tr></table>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인건비지출비율을 적정하게 준수하고 있다.	4점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체계와 내역을 제공하고 있다.	2점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1점	※ 인건비 비율 판단 : 보건복지부 고시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여부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인건비지출비율을 적정하게 준수하고 있다.	4점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체계와 내역을 제공하고 있다.	2점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1점														
※ 인건비 비율 판단 : 보건복지부 고시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여부															
	4-2.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7점) - 장기요양기관이 종사자의 건강관리와 복리후생,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 -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①, 3점)과 고충처리(②, 4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①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3점) <table><tr><th colspan="2">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r><tr><td>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td><td>1점</td></tr><tr><td>종사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td><td>2점</td></tr></table> ② 고충처리(4점) <table><tr><th colspan="2">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r><tr><td>종사자 고충처리 절차 및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td><td>2점</td></tr><tr><td>종사자 인권보호와 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td><td>2점</td></tr></table>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1점	종사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종사자 고충처리 절차 및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2점	종사자 인권보호와 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점	7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1점														
종사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종사자 고충처리 절차 및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2점														
종사자 인권보호와 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점														
5. 설치·운영자 심층 평가 (12점)	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12점) - 면접심사를 통해 설치·운영자(대표자)의 제반 규정 준수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기관 운영 실적 등을 확인 -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응답하고,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점수 부여 ※ 심사간소화군 및 기본심사군에서 대면심사를 면제할 경우 기본점수(12점) 부여 ※ 심층심사군 대상기관이 심사위원회에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제출된 소명자료 및 지자체 담당자의 의견서로 대면심사 갈음 ①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4점) <table><tr><th colspan="2">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th></tr><tr><td>행정처분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td><td>2점</td></tr><tr><td>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td><td>2점</td></tr></table> <table><tr><th colspan="2">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경우)</th></tr><tr><td>평소 제반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td><td>2점</td></tr><tr><td>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td><td>2점</td></tr></table>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2점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경우)		평소 제반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2점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2점	12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2점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경우)															
평소 제반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2점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2점														

3. 복지용구

□ 기관명 : _____

항목	심사 기준	배점	채점																																											
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 (40점)	1-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 처분 이력(20점) - 설치·운영자 및 그 기관에 종사하려는 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등 장기요양기관 운영과 관련된 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 (유효기간으로 최근 6년 이내) - 설치·운영자(①, 15점)와 종사자(②, 5점)의 행정제재 처분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 ① 설치·운영자(대표자)의 행정제재 처분 이력(1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이 받은 행정처분중 가장 중한 처분(가장 낮은 점수)을 적용 <table><tr><th>점수</th><th>사회복지사업법</th><th>노인복지법</th><th colspan="2">노인장기요양보험법</th></tr><tr><td>15점</td><td colspan="4">행정처분 이력 없음</td></tr><tr><td>12점</td><td>개선명령</td><td>경고</td><td>경고</td><td>-</td></tr><tr><td>9점</td><td>시설장 교체 1회</td><td>사업정지 30일 이하</td><td>업무정지 30일 이하</td><td>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td></tr><tr><td>6점</td><td>시설장 교체 2회</td><td>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td><td>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td><td>-</td></tr><tr><td>3점</td><td>시설장 교체 3회 이상</td><td>사업정지 90일 초과</td><td>업무정지 90일 초과</td><td>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td></tr><tr><td>0점</td><td>시설폐쇄</td><td>사업폐지</td><td>지정취소</td><td>-</td></tr></table>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table><tr><th>점수</th><th>노인장기요양보험법</th></tr><tr><td>5점</td><td>행정처분 이력 없음</td></tr><tr><td>3점</td><td>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td></tr><tr><td>0점</td><td>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td></tr></table>	점수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5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12점	개선명령	경고	경고	-	9점	시설장 교체 1회	사업정지 30일 이하	업무정지 30일 이하	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	시설장 교체 2회	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	3점	시설장 교체 3회 이상	사업정지 90일 초과	업무정지 90일 초과	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	시설폐쇄	사업폐지	지정취소	-	점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	0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	20	
	점수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5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12점	개선명령	경고	경고	-																																									
9점	시설장 교체 1회	사업정지 30일 이하	업무정지 30일 이하	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	시설장 교체 2회	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																																										
3점	시설장 교체 3회 이상	사업정지 90일 초과	업무정지 90일 초과	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	시설폐쇄	사업폐지	지정취소	-																																										
점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																																													
0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																																													
1-2. 설치·운영자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15점) - 설치·운영자가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정기 평가 결과의 최소등급으로 확인 - 평가회피의 경우 최저 점수군으로 분류 - 지정 유효기간(6년) 내 평가결과를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함(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유효기간 내 평가결과 1회의 경우(평가대상인데 평가받지 않은 경우 제외) 평가등급을 점수로 변환하여 그대로 반영 <table><tr><th colspan="3">등급별 점수 환산표</th></tr><tr><td>① A등급(15점)</td><td>② B등급(12점)</td><td>③ C등급(9점)</td></tr><tr><td>④ D등급(6점)</td><td colspan="2">⑤ E등급, 평가이력 없음(미실시, 거부 등)(0점)</td></tr></table>	등급별 점수 환산표			① A등급(15점)	② B등급(12점)	③ C등급(9점)	④ D등급(6점)	⑤ E등급, 평가이력 없음(미실시, 거부 등)(0점)		15																																				
등급별 점수 환산표																																														
① A등급(15점)	② B등급(12점)	③ C등급(9점)																																												
④ D등급(6점)	⑤ E등급, 평가이력 없음(미실시, 거부 등)(0점)																																													

	1-3.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5점) - 설치·운영자가 지정유효기간(6년) 동안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잦은 휴·폐업으로 안정적인 급여 제공을 저해한 이력을 확인 - 휴업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전체 급여유형이 휴업일 때 해당 - 휴업(①, 2점)과 폐업(②, 3점) 이력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 ① 휴업이력(2점) <table><tr><th>점수</th><th colspan="2">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r><tr><td>2점</td><td colspan="2">휴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이하인 경우</td></tr><tr><td>1점</td><td colspan="2">휴업 이력이 2회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인 경우</td></tr><tr><td>0점</td><td colspan="2">휴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12개월 초과한 경우</td></tr></table> ② 폐업이력(3점) <table><tr><th>점수</th><th colspan="2">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r><tr><td>3점</td><td colspan="2">폐업 이력 1회 이하</td></tr><tr><td>2점</td><td colspan="2">폐업 이력 2회</td></tr><tr><td>0점</td><td colspan="2">폐업 이력이 3회 이상</td></tr></table>	점수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2점	휴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이하인 경우		1점	휴업 이력이 2회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인 경우		0점	휴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12개월 초과한 경우		점수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3점	폐업 이력 1회 이하		2점	폐업 이력 2회		0점	폐업 이력이 3회 이상		5	
	점수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2점	휴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이하인 경우																									
	1점	휴업 이력이 2회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인 경우																									
0점	휴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12개월 초과한 경우																										
점수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3점	폐업 이력 1회 이하																										
2점	폐업 이력 2회																										
0점	폐업 이력이 3회 이상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2-1. 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4점) - 기관의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한 환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table><tr><th colspan="3">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r><tr><td>연간 사업계획</td><td>연간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다.</td><td>2점</td></tr><tr><td rowspan="2">정기평가</td><td>사업계획에 따른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td><td>1점</td></tr><tr><td>평가결과를 기관 운영에 반영하고 있다</td><td>1점</td></tr></table>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연간 사업계획	연간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점	정기평가	사업계획에 따른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1점	평가결과를 기관 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1점	4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연간 사업계획	연간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점																								
정기평가	사업계획에 따른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1점																									
	평가결과를 기관 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1점																									
2-2. 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2점) -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감염병 예방, 노인 인권 보호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직원교육을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① 인권교육(매년 4시간 이상) ② 노인학대 예방교육(1시간 이상) ③ 직원 역량강화 교육(안전사고, 감염병,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등) ※ ①, ②번은 필수 교육으로 2개 중 1개 미실시의 경우 '교육실시' 항목 0점 부여 ※ 시설장 등 종사자의 직무교육(공단 주관 교육 등)에 관한 기록 및 관리사항 확인 <table><tr><th colspan="3">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r><tr><td>교육실시</td><td>종사자에 대한 공식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td><td>1점</td></tr><tr><td>교육지원</td><td>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보수교육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td><td>1점</td></tr></table>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교육실시	종사자에 대한 공식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점	교육지원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보수교육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1점	2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교육실시	종사자에 대한 공식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점																									
교육지원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보수교육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1점																									
	2-3. 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6점) - 수급자 고충 처리, 고충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이용자 인권 보호와 고충 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적정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 - 수급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 마련·실행하고, 관련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	6																									

	<table><tr><th colspan="3">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r><tr><td rowspan="2">인권보호 및 고충처리</td><td>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계획과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td><td>1점</td></tr><tr><td>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가 운영되고 있다</td><td>1점</td></tr><tr><td rowspan="3">개인정보 보호</td><td>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계획과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td><td>1점</td></tr><tr><td>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활동이 업무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td><td>1점</td></tr><tr><td>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있다</td><td>2점</td></tr></table>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	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계획과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1점	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가 운영되고 있다	1점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계획과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1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활동이 업무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1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있다	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	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계획과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1점																
	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가 운영되고 있다	1점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계획과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1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활동이 업무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1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있다	2점																
	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4점) -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공계획과 기록, 점검 및 조정 활동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 특히,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감염병 및 위험 발생 예방, 대응활동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 서비스 관리(①, 2점)과 감염병 및 위험관리(②, 2점)를 각각 확인 계산하여 합산 ① 서비스 관리(2점) - 구입제품에 대해서는 제공할 때, 대여제품에 대해서는 최초 제공할 때, 회수할 때, 대여기간 중 매월 작성·제공하였는지와 보호자의 서명(유선시 생략)을 받았는지 확인 - 대여제품은 최소 3개월에 1회 이상 수급자를 방문하여 작성·제공하고 있는지 확인 <table><tr><th colspan="2">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r><tr><td>복지용구를 판매·대여하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서명을 받고 있다.</td><td>1점</td></tr><tr><td>수급자에게 복지용구 급여제공기록지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td><td>1점</td></tr></table> ② 감염병 및 위험 관리(2점) - 위탁 소독의 경우 계약서를 통해서 위탁소독기관을 파악하여 그 기관의 표면오염도 측정결과 값을 반영 <table><tr><th colspan="2">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r><tr><td>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 매뉴얼을 비치하고 있으며, 소독에 필요한 용구 및 보호장구를 구비하고,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td><td>1점</td></tr><tr><td>최근 실시한 소독사업소 점검 결과 표면오염도 측정 결과가 적합하다.</td><td>1점</td></tr></table>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복지용구를 판매·대여하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서명을 받고 있다.	1점	수급자에게 복지용구 급여제공기록지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1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 매뉴얼을 비치하고 있으며, 소독에 필요한 용구 및 보호장구를 구비하고,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1점	최근 실시한 소독사업소 점검 결과 표면오염도 측정 결과가 적합하다.	1점	4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복지용구를 판매·대여하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서명을 받고 있다.	1점																	
수급자에게 복지용구 급여제공기록지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1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 매뉴얼을 비치하고 있으며, 소독에 필요한 용구 및 보호장구를 구비하고,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1점																	
최근 실시한 소독사업소 점검 결과 표면오염도 측정 결과가 적합하다.	1점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3-1. 복지용구 관리(4점) - 복지용구 전시·체험이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대여품의 훼손이 우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23.1㎡×2배 이상)을 확보, 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 • 소독 전 제품과 대여 준비 중인 제품 한 공간에 보관 불가 • 세정·소독 전의 제품과 후의 제품 별도 보관 • 복지용구 생산·공급업체(생산공장 또는 도매상 등)에서 직접 대여품 회수·배송 등을 수행하는 경우 별도 공간을 확보하지 않아도 가능 - 복지용구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와 기록을 확인(제품 수불부대장, 제품 A/S대장 등)	4																

	<table><tr><th colspan="2">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r><tr><td>복지용구 전시·체험·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td><td>2점</td></tr><tr><td>복지용구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를 구비하고 있으며, 충실히 작성하고 있다.</td><td>2점</td></tr></table>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복지용구 전시·체험·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2점	복지용구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를 구비하고 있으며, 충실히 작성하고 있다.	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복지용구 전시·체험·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2점								
복지용구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를 구비하고 있으며, 충실히 작성하고 있다.	2점								
3-2.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8점)	- 기관이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무상태 관리를 통해 투명한 회계운영과 책임성 있는 재정운영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 회계운영(①, 4점)과 재정운영(②, 4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8							
① 회계운영(4점)									
[재가노인복지시설]									
<table><tr><th colspan="2">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r><tr><td>회계담당자의 지정, 신원보증보험 가입, 관련 교육 실시 등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다.</td><td>2점</td></tr><tr><td>수입·지출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td><td>2점</td></tr></table>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회계담당자의 지정, 신원보증보험 가입, 관련 교육 실시 등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다.	2점	수입·지출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	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회계담당자의 지정, 신원보증보험 가입, 관련 교육 실시 등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다.	2점								
수입·지출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	2점								
[재가장기요양기관]									
<table><tr><th colspan="2">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r><tr><td>회계담당자의 지정, 관련 교육 실시 등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다.</td><td>2점</td></tr><tr><td>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을 관리하고 있다.</td><td>2점</td></tr></table>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회계담당자의 지정, 관련 교육 실시 등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다.	2점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을 관리하고 있다.	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회계담당자의 지정, 관련 교육 실시 등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다.	2점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을 관리하고 있다.	2점								
② 재정운영(4점)									
[재가노인복지시설]									
<table><tr><th colspan="2">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r><tr><td>예·결산서가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정기적으로 공개되고 있다.</td><td>2점</td></tr><tr><td>급여비 및 본인부담금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수납 및 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td><td>2점</td></tr></table>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예·결산서가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정기적으로 공개되고 있다.	2점	급여비 및 본인부담금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수납 및 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예·결산서가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정기적으로 공개되고 있다.	2점								
급여비 및 본인부담금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수납 및 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2점								
[재가장기요양기관]									
<table><tr><th colspan="2">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r><tr><td>예·결산서를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있다.</td><td>2점</td></tr><tr><td>급여비 및 본인부담금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수납 및 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td><td>2점</td></tr></table>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예·결산서를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2점	급여비 및 본인부담금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수납 및 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예·결산서를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2점								
급여비 및 본인부담금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수납 및 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2점								
3-3.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4점)	- 기관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시설관리의 기준 및 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 - 재해예방(①, 2점)과 안전관리(②, 2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4							
① 재해예방(2점)									
<table><tr><th colspan="2">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r><tr><td>재해발생에 대비한 수급자 배상관련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td><td>2점</td></tr></table>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재해발생에 대비한 수급자 배상관련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재해발생에 대비한 수급자 배상관련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2점								
② 안전관리(2점)									

	<table><tr><th colspan="2">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r><tr><td>시설장이 종사자, 수급자(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td><td>2점</td></tr></table>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시설장이 종사자, 수급자(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시설장이 종사자, 수급자(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점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9점) - 장기요양기관 전체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시에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활용하고, 적정한 급여수준을 준수하였는지 확인 ※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팔히 명시 ※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은 연도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Ⅱ 참고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로 부여 - 고용계약① 2점과 급여수준② 7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① 고용계약(2점) <table><tr><th colspan="2">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r><tr><td>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td><td>1점</td></tr><tr><td>표준근로계약의 주요 사항을 준수하고 있다.</td><td>1점</td></tr></table> ② 급여수준(7점) <table><tr><th colspan="2">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r><tr><td>인건비지출비율을 적정하게 준수하고 있다. (복지용구의 경우 기본점수 부여)</td><td>4점</td></tr><tr><td>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체계와 내역을 제공하고 있다.</td><td>2점</td></tr><tr><td>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td><td>1점</td></tr></table>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	1점	표준근로계약의 주요 사항을 준수하고 있다.	1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인건비지출비율을 적정하게 준수하고 있다. (복지용구의 경우 기본점수 부여)	4점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체계와 내역을 제공하고 있다.	2점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1점	9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	1점															
	표준근로계약의 주요 사항을 준수하고 있다.	1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인건비지출비율을 적정하게 준수하고 있다. (복지용구의 경우 기본점수 부여)	4점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체계와 내역을 제공하고 있다.	2점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1점																
	4-2.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7점) - 장기요양기관이 종사자의 건강관리와 복리후생,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 -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①, 3점)과 고충처리②, 4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로 부여 ①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3점) <table><tr><th colspan="2">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r><tr><td>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td><td>1점</td></tr><tr><td>종사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td><td>2점</td></tr></table> ② 고충처리(4점) <table><tr><th colspan="2">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h></tr><tr><td>종사자 고충처리 절차 및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td><td>2점</td></tr><tr><td>종사자 인권보호와 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td><td>2점</td></tr></table>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1점	종사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종사자 고충처리 절차 및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2점	종사자 인권보호와 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점	7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1점																
종사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종사자 고충처리 절차 및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2점																
종사자 인권보호와 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점																
5. 설치·운영자 심층 평가 (12점)	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12점) - 면접심사를 통해 설치·운영자(대표자)의 제반 규정 준수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기관 운영 실적 등을 확인 -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응답하고,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점수 부여 ※ 심사간소화군 및 기본심사군에서 대면심사를 면제할 경우 기본점수(12점) 부여 ※ 심층심사군 대상기관이 심사위원회에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제출된 소명자료 및 지자체 담당자의 의견서로 대면심사 갈음	12															

	①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4점) <table><tr><td colspan="2">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td></tr><tr><td>행정처분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td><td>2점</td></tr><tr><td>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td><td>2점</td></tr><tr><td colspan="2">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경우)</td></tr><tr><td>평소 제반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td><td>2점</td></tr><tr><td>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td><td>2점</td></tr></table> ②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4점) <table><tr><td colspan="2">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기관 평가 결과 E등급 또는 미실시·거부)</td></tr><tr><td>장기요양기관평가에서 미흡했던 점(미실시·거부의 경우 사유)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td><td>2점</td></tr><tr><td>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td><td>2점</td></tr><tr><td colspan="2">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기관 평가 결과 A~D등급)</td></tr><tr><td>장기요양기관평가에서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또는 우수한 점을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td><td>2점</td></tr><tr><td>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td><td>2점</td></tr></table> ③ 기타 기관 운영실적(4점) <table><tr><td colspan="2">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td></tr><tr><td>귀 기관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지역에 기여하기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td><td>1점</td></tr><tr><td>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어떠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td><td>1점</td></tr><tr><td>수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td><td>1점</td></tr><tr><td>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관리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td><td>1점</td></tr></table>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2점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경우)		평소 제반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2점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기관 평가 결과 E등급 또는 미실시·거부)		장기요양기관평가에서 미흡했던 점(미실시·거부의 경우 사유)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2점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기관 평가 결과 A~D등급)		장기요양기관평가에서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또는 우수한 점을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2점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귀 기관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지역에 기여하기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1점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어떠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1점	수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1점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관리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1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2점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경우)																																				
평소 제반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2점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기관 평가 결과 E등급 또는 미실시·거부)																																				
장기요양기관평가에서 미흡했던 점(미실시·거부의 경우 사유)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2점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기관 평가 결과 A~D등급)																																				
장기요양기관평가에서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또는 우수한 점을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2점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귀 기관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지역에 기여하기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1점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어떠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1점																																			
수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1점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관리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1점																																			
총점	점																																			

※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성명

관계법령 발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18. 12. 11., 2020. 3. 31.>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20. 3. 31.>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공단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8. 12. 11., 2020. 3. 31., 2020. 12. 29., 2024. 1. 2.>

1.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
2.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그 기관에 종사하려는 자가 이 법,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노인복지법」 등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
3.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계획
4.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수, 치매 등 노인성질환 환자 수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

5.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때 지체 없이 지정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18. 12. 11.>

⑤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중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로서 간호사를 둔다. <신설 2018. 12. 11.>

⑥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1.>

제32조의3(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6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제32조의4(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32조의3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지정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지정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갱신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에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갱신이 지정 유효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심사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정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갱신 심사를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그 내용의 통보 및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37조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⑥ 그 밖에 지역별 장기요양급여의 수요 등 지정 갱신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 2.>

[본조신설 2018. 12. 1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1., 2014. 2. 14., 2016. 11. 7., 2019. 6. 12.>

1. 일반현황·인력현황 및 시설현황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3.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② 법 제31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말한다. <개정 202

0. 9. 29., 2025. 2. 28.>

1. 재가급여를 제공하려는 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시설 및 인력
2. 시설급여를 제공하려는 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시설 및 인력
3. 법률 제15881호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간주되는 재가장기요양기관: 별표 1의3에 따른 시설 및 인력

③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9. 6. 12.>

1.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소속의 관계 공무원 1명
2.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이내

④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에 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상담할 수 있으며,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신설 2019. 6. 12.>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심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19. 6. 12.>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의 결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9. 6. 12.>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

회의 구성·운영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신설 2019. 6. 12., 2020. 9. 29.>
[제11조에서 이동 <2008. 6. 11.>]

제24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기준 등) ① 법 제32조의4에 따라 지정의 갱신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공단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1., 2010. 9. 1., 2014. 2. 14., 2015. 12. 31., 2016. 11. 7., 2019. 6. 12., 2021. 6. 30.>

1.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 대표자 또는 그 기관의 종사자가 법 제37조 및 제37조의5와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노인복지법」 등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
2. 제23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3. 제38조제1항에 따른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4.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
5.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6. 삭제 <2019. 6. 12.>
7. 삭제 <2019. 6. 12.>
8. 삭제 <2019. 6. 12.>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과 공단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6. 12.>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 갱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제2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을 “지정 갱신”으로 본다. <개정 2019. 6. 12.>

④ 삭제 <2019. 6. 12.>

[제목개정 2019. 6. 12.]

[제12조에서 이동 <2008. 6. 11.>]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시설의 운영 및 관리, 기타 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검단구√조례√√제√√√√√√√√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따른다.

제3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인력개발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와 자체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4조(직원의 임면) ① 직원(센터장 포함)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센터장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면하며, 그 밖의 직원은 자체 운영규정에 따라 센터장이 임면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센터장은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가 구청장과 협의하여 임면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1년 연임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을 면직시킬 수 있다.

1.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정신상의 질병 또는 국외여행 등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센터 운영 및 직무수행 등에서의 위법, 부당, 부적절 행위 등으로 센터장으로서 부적격 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직원신분보장) ①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원액의 증감과 직제개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원 증감 및 직제 조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의 근무상한연령은 65세로 하고, 그 밖의 직원은 60세로 한다.

제6조(자격요건) 센터 직원(센터장 포함)의 자격기준은 별표 1의 각 직급별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조직체계 및 정원) 센터의 조직체계 및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센터장은 센터 직원의 인사 및 징계의 공정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자체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9조(보수 등) ① 센터 직원의 보수지급일은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로 한다.

② 센터 직원의 보수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노인 일자

리 전담기관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10조(복무) 센터 직원의 출장, 근무시간, 휴가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자체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11조(재원) 센터 운영 및 노인 일자리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보조금
2. 그 밖의 수익금 등

제12조(회계관리) ① 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② 센터의 회계 관리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자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같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센터 회계 등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며 필요시 센터의 사업 및 예산운영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검사 할 수 있다.

④ 센터 회계에 관하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및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제13조(물품의 관리) ① 센터장은 물품관리 직원을 지정하여 물품의 취득, 보관, 폐기 등에 대해 장부를 갖춰 두고 전반사항을 관리한다.

② 물품 및 장비관리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보조금 관리) ① 센터장은 보조금의 교부조건과 목적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 지출내역은 장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등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

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자료요구 및 검사) 센터장은 구청장이 센터 사업 및 예산운용에 관하여 자료를 요구할 때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결산) 센터장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의록과 사업실적보고서, 재산목록 및 재산증감 사유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0조의 첨부서류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공인)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공인을 제작·관리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직인
 2.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장 직인
 3. 그 밖에 자체 운영규정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작한 직인
- 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며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 ③ 공인의 관리는 센터장이 하며 그 밖의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운영규정) 센터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조직운영 및 인사관리, 복무관리, 문서관리 등에 관한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하며, 운영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운영위원회) ①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시설에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 1. 26.>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12. 1. 26.>

1. 시설의 장
2. 시설 거주자 대표
3.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4. 시설 종사자의 대표
5.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1.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 26.>

[전문개정 2011. 8. 4.]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8. 3.>

②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8. 3.>

1. 3개 이내의 시설일 것

2. 같은 시·군·구에 있을 것

3. 모두 거주시설이거나 모두 거주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가. 거주시설: 거주자 정원이 20명 미만일 것

나. 거주시설이 아닌 시설: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의 특성, 이용자 수,

시설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4. 9. 6.>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 8. 3.>

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4. 9. 6., 2008. 3. 3., 2010. 3. 19.>

[제목개정 2012. 8. 3.]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시설의 장) ① 시설의 장은 상근(常勤)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 1. 26., 2017. 9. 19., 2017. 10. 24., 2021. 12. 21.>

1. 제19조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9까지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③ 시설의 장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21. 12. 21.>

[전문개정 2011. 8. 4.]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3조(회계연도) 법인 및 시설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종료한다. <개정 2012. 8. 7., 2015. 12. 24.>

제4조(회계연도 소속구분) 법인 및 시설의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 및 부채의 증감·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개정 2012. 8. 7.>

제5조(출납기한) 1회계연도에 속하는 법인 및 시설의 세입·세출의 출납은 회계 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2. 27., 2012. 8. 7., 2015. 12. 24.>

[제목개정 1998. 1. 7.]

제6조(회계의 구분) ① 이 규칙에서의 회계는 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이하 “법인회계”라 한다), 시설의 운영에 관한 회계(이하 “시설회계”라 한다) 및 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이하 “수익사업회계”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 해당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시설회계 및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시설의 회계는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로 한다.

[전문개정 2012. 8. 7.]

제6조의2(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회계처리) ①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는 컴퓨터 회계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 8. 7.>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
서 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를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 8. 7.>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인 또는 시
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시스템을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12. 8. 7., 2015. 12. 24., 2018. 3. 30.>

④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는 법인 및 시설과 보조
금을 받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시
설(이하 “노인장기요양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컴퓨터 회계프로그
램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증한 표준연계모듈이 적용된 정보시스템 또는 제
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재무·회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및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 8. 7., 2018. 3. 30.>

⑤ 제1항에 따른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른 회계장부를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8. 7.>

[본조신설 2005. 7. 15.]

제21조(수입 및 지출사무의 관리) 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법인과
시설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②법인의 대표이사과 시설의 장은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①법인과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다만,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입원과 지출원은 각각 그 법인의 대표이사과 시설의 장이 임면한다.

제23조(회계의 방법) 회계는 단식부기에 의한다. 다만, 법인회계와 수익사업회계에 있어서 복식부기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3. 12. 27.]

제24조(장부의 종류) ①법인 및 시설에는 다음의 회계장부를 둔다.

<개정 1998. 1. 7.>

1. 현금출납부
2. 총계정원장
3. 삭제 <2012. 8. 7.>
4. 재산대장
5. 비품관리대장
6. 삭제 <2009. 2. 5.>
7. 삭제 <1998. 1. 7.>
8. 삭제 <1998. 1. 7.>
9. 삭제 <1998. 1. 7.>

10. 삭제 <1998. 1. 7.>

11. 삭제 <1998. 1. 7.>

12. 삭제 <1998. 1. 7.>

②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제10조에 따른 예산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회계장부(해당 회계연도 1월부터 6월까지의 회계장부를 말한다)를 해당 회계연도 8월 15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8. 3. 30., 2020. 1. 7.>

③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제19조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회계장부(해당 회계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부터 6월까지의 회계장부를 말한다)를 해당 회계연도의 다음 연도 8월 15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1. 7.>

④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장부는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부터 별지 제28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09. 2. 5., 2018. 3. 30., 2020. 1. 7.>

☐ 인천광역시 검단구 물품관리 조례

☐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0조(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 ①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단식부기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4호부터 제23호까지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고, 소규모

시설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17호의 서류(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21호까지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3. 12. 27., 1998. 1. 7., 2012. 8. 7., 2015. 12. 24., 2019. 9. 27., 2020. 1. 7.>

1. 세입 · 세출결산서
2. 과목 전용조서
3. 예비비 사용조서
4. 재무상태표
5. 수지계산서
6. 현금 및 예금명세서
7. 유가증권명세서
8. 미수금명세서
9. 채고자산명세서
10. 그 밖의 유동자산명세서(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유동자산 외의 유동자산을 말한다)
11. 고정자산(토지 · 건물 · 차량운반구 · 비품 · 전화가입권)명세서
12. 부채명세서(차입금 · 미지급금을 포함한다)
13. 각종 충당금 명세서
14. 기본재산수입명세서(법인만 해당한다)
15. 사업수입명세서
16. 정부보조금명세서

17.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을 포함한다)

18. 후원금 전용계좌의 입출금내역

19. 인건비명세서

20. 사업비명세서

21. 그 밖의 비용명세서(인건비 및 사업비를 제외한 비용을 말한다)

22. 감사보고서

23. 법인세 신고서(수익사업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5호의4서식까지·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제6호부터 제17호까지의 서류는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에 따르고, 제19호부터 제22호까지의 서류는 별지 제20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다만,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첨부해야 하는 제1항제19호의 인건비명세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5. 7. 15., 2012. 8. 7., 2018. 3. 30., 2020. 1. 7.>

[제목개정 2020. 1. 7.]

☐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인 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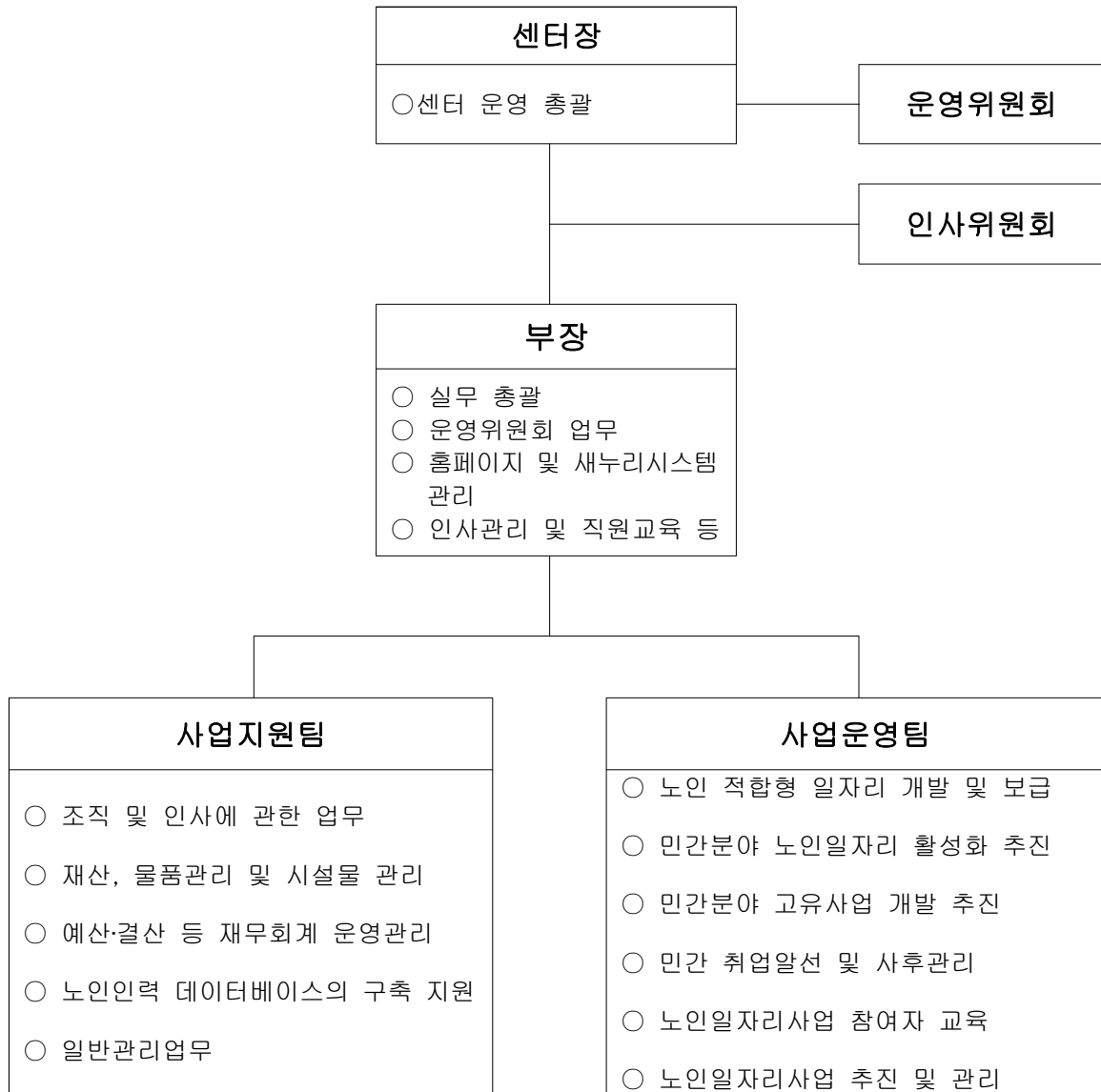
[별지 제1호서식]

구 분	자 격 기 준
센터장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름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공통지침)에 의한 부적격자는 미채용
부장 <1급>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을 소지하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사회복지업무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또는 수행기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7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과장 <2급>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을 소지하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또는 수행기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5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대리 <3급>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을 소지하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또는 수행기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주임 <4급>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 소지자

※ 단 3,4급 직원 중 회계담당자를 채용 할 때에는 회계관련 자격 및 경력을 추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시행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조직체계(제7조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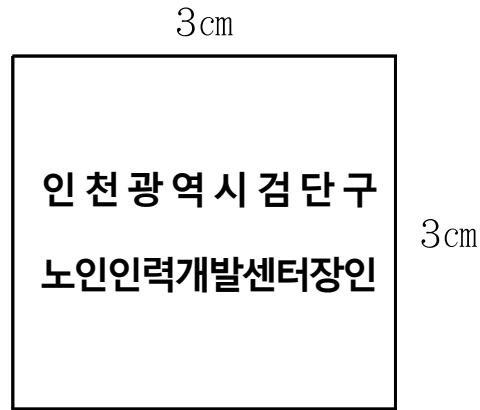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직급별 정원(제7조 관련)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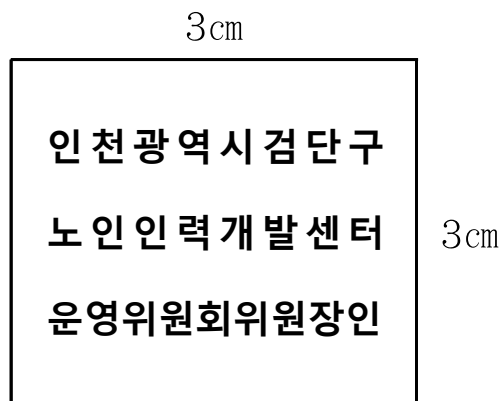
구 분	계	센터장 (시설장)	일 반 직			
			부장 (1급)	과장 (2급)	대리 (3급)	주임 (4급)
검단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직급 및 정원)	5	1	1	1	1	1

[별지 제3호서식]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인력개발센터장인(제17조 제1항 제1호 관련)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장인(제17조 제1항 제2호 관련)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여 행정 공백을 방지하고, 시설 운영·관리의 연속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시설의 운영 및 관리, 기타 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지시설운영)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업 및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복지시설을 운영한다.

1. 사무실, 식당, 상담실, 강당, 프로그램실, 화장실
2. 물리치료실 또는 건강증진실, 비상재해대비시설
3. 그 밖에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노인복지증진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3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구청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별표의 부대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사용료를 지정기일 내에 구금고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제4호에 해당될 때에는 50퍼센트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2.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3. 허가 사용일 30일 전에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4. 허가 사용일 15일 전에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제4조(사용자의 설비 및 변상책임) ① 사용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사용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기간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설비는 원상복구 전에 구청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 등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구청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부터 20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공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위탁 공고(별지 제1호서식)는 일간신문 또는 구보, 구청 지정게시판,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구정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신청) 조례 제3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위탁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위탁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2. 사업계획서

3. 해당년도 세입세출예산서 및 전년도 수입·지출 계산서 각 1부
4. 사회복지시설 위탁관리실적(해당이 있는 경우만 제출)
5. 대표자(시설장) 이력서
6. 법인정관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7. 종사자 확보계획서(종사자별 업무분장사항 포함)

제7조(위탁운영자 선정) ① 구청장은 조례 제3조에 따라 위탁신청이 있을 때에는 노인복지사업 실적과 수행능력 등을 종합 검토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적격법인을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결정통지(별지 제3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협약등)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수탁결정통지를 받은 수탁자는 지정 기일 내에 구청장과 위탁관리운영협약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자체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규정을 협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연장 및 해지) ① 조례 제3조에 따라 위탁운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1조에 따라 수탁자가 수탁해지를 희망할 경우 위탁해지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구청장의 견을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12조에 따라 구청장이 위탁운영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에

정 2개월 전에 수탁자에게 위탁협약해지통지(별지 제6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 및 임대)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수탁자로 지정된 자가 직접운영 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시설 또는 장비를 임대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일부 시설을 임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임대를 받은 자도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임대기간은 구청장과 협약한 수탁기간 범위로 하여야 하며, 사용료 산출과 사용료 납기지연으로 인한 가산금 부과, 임대기간 연장 허가는 반드시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의 부과는 납기 다음 날부터 날 수대로 계산하되, 납부 전일까지 연리 12퍼센트의 가산금을 부과한다.

제11조(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지방세법」,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 시설의 사용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의거 사용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고 제○호

노인여가복지시설 위탁관리 운영에 따른 수탁자 모집공고 (안)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여가복지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종합 노인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자를 공개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다 음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 시 설 명 :

○ 소 재 지 :

○ 규 모 : 대지 m^2 , 연면적 m^2

○ 위탁내용 :

○ 신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접수장소 :

2. 위탁운영 신청 참가자격 :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 법인으로서 노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노인여가시설 직원배치기준과 운영기준을 준수할 능력이 있을 것.

3.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년 ○월 ○일(:) 노인복지관 대강당

4. 참가자 제출서류

가. 위탁신청서 (소정양식)

나. 사업계획서

다. 해당연도 법인 세입세출예산서 및 전년도 수지계산서 각 1부

라. 사회복지시설 위탁관리실적(해당이 있는 경우만 제출)

마. 대표자(시설장) 이력서

바. 법인정관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사. 종사자 확보계획서(종사자별 업무분장사항 포함)

5. 문의처 및 기타사항

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단구청 문의(☎ -)

나. 신청서는 우편접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를 일체 반환하지 않음.

[별지 제2호서식]

위 탁 신 청 서

1. 시설명 :

2. 신청자 기재사항

법 인 명		법인구분	시설(), 지원()
허가기관		허가일자	
허가번호		법인목적사업	
대표이사 성 명		대표이사 생년월일	
대표이사 주소			
법인 현소재지			
재정상태	동산 : 원, 부동산 : 원		
사회복지사업 실적	노인복지(○년○월), 영유아보육(○년○월), 아동복지(○년○월), 장애인복지(○년○월) 모자복지(○년○월), 정신보건(○년○월), 부랑아복지(○년○월), 사회복지관(○년○월)		

3. 제출서류

가. 사업계획서

나. 해당연도 세입세출예산서 및 전년도 수지계산서 각 1부

다. 사회복지시설 위탁관리시설(해당이 있는 경우만 제출)

라. 대표자(시설장) 이력서

마. 법인정관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바. 종사자 확보계획서(종사자별 업무분장사항 포함)

4. 약정사항

가. 수탁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 지정기일내에 입주하여야 함.

나. 관계법령 및 조례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

○년 ○월 ○일

위와 같이 검단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위 법인 대표자 (인)

인천광역시검단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수탁결정통지서

시설명 :

수탁자 성명 :

주소 :

귀 법인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우리 구와 협약하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내에 협약을 하지 않을 경우 수탁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
주하겠습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검단구청장 (인)

[별지 제4호서식]

위탁관리운영협약서(안)

[재산의 표시]

소재지 :

건 물 :

위 표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위탁운영 협약함에 있어 위탁자 인천광역시검단구청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탁자 000(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약정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위탁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관리기간) ① "갑"은 위 표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을"에게 위탁하고, 위탁기간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로 한다.

②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을"의 연장신청을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위탁사업의 범위·운영) ①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기본사업
2. 재가복지사업
3.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4. 경로식당
5.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
6. 노인일자리사업
7. 그 밖에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을”은 사업에 대하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성실히 운영하여야 하며, 정치활동, 영리목적, 종교활동, 사행성활동, 그 밖에 “갑” 이 금지하는 활동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이용자 및 종사자의 인간존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재산의 범위·관리) ① “갑”은 사업운영에 따른 다음 재산을 “을”에게 위탁관리하게 한다.

○ 재산의 표시

시설명	소재지	시설규모		비고
		대지면적(㎡)	연면적(㎡)	

② “을”은 0000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갑”의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변경 또는 훼손하지 못한다.
2. 위탁권을 구청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임대할 수 없다.
3. 위탁권을 채권의 담보로 할 수 없다.
4.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도박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5. “갑”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손해를 가하였을 때는 “을”은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거나, “을”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④ 화재, 도난, 가스사고 등 “을”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을”의 손해에 대하여는 “갑”은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5조(위탁관리보조) ① 위탁관리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한다.

② “을”은 위탁관리에 관한 정산보고를 매분기 말 “갑”에게 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방법) ① “을”은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연간 사업계획서 및 운영예산서 등을 작성하여 “갑”의 사전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설 및 직제, 인사 및 보수기준 등 운영전반 사항은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은 “갑”의 사전승인 또는 지시를 받아 운영한다.

제7조(안전관리 책임) “을”은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시설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필요시 보험에 가입하

여야 한다.

제8조(민·형사상의 책임) "을"은 사업의 운영 중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및 도의상 모든 책임을 지며, 이 약정에 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제9조(지도·감독) "갑"은 사업의 운영 및 재산관리 전반에 관한 지도·감독을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하여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해지) ① "갑"은 "을"이 이 약정사항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운영기간 중이라도 이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협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지통보) "갑"과 "을"은 어느 일방의 사정으로 이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원상회복) "을"이 퇴거할 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하여 "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입주 시의 상태로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시행일) ① 사업시행일은 0000년 00월 00일로 정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에 사업을 아니 할 때에는 그 수탁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4조(자체운영규정) "을"은 목적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협약일부터 30일 이내 "갑"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인원 등의 승계)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원은 시설장이 운영기준에 따라 공개채용 운영하되, 현재 근무 중인 직원은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약정의 해석) 이 약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약정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의사에 따른다.

부칙

이 협약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날인하고,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협약일자 : 0000년 00월 00일

갑(위탁자) : 인천광역시검단구청장 (인)

을(수탁자) : 법인대표자 (인)

[별지 제5호서식]

위 탁 해 지 신 청 서				
수탁자 기재사항	시설명			
	법인명		위탁기간	
	소재지		입주년월일	
해지신청자			퇴거예정일	
해지사유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운영계약을 해지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수탁자 : (인) 인천광역시검단구청장 귀하				

※ 이 신청서는 퇴거 예정 2개월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위탁협약해지통지서

시설명 :

수탁자 성명 :

주소 :

귀 법인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협약해지를 통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퇴거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검단구청장 (인)

[별표]

노인여가복지시설 시설사용 부대비용

부대비용	대상시설	기준시간	비 고
냉·난방기 사 용 료	대강당, 소강당, 강의실	1시간	가. 시간당 연료비(전기 포함)는 시가로 계산하며, 기준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료비는 시가에 1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냉방은 6월부터 8월까지로 하며, 난방은 11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로 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10조(시행규칙) 이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노인복지법
☐ 사회복지사업법
☐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검단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건강보험료 지원 목적(제1조)
- 나.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 결정(제2조)
- 다. 건강보험료 지급 및 관리(제3조~제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험료 지원 대상자 결정)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서부지사(이하 “공단”이라 한다)는 매월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납기 10일 전까지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보험료 지원대상자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 대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 보험료 지원대상자로 결정한다. 단, 소득 및 자산상황 조사 시 부양의무자는 제외한다.

③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 대상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단에 결정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3조(보험료 지급) 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총 금액을 매월 보험료 납기일 이전까지 공단으로 일괄 지급한다.

제4조(대상자 관리) 구청장은 제2조에 의한 지원대상자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대장 또는 전산자료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1. 섬·벽지(僻地)·농어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2. 65세 이상인 사람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2호, 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5. 휴직자
6. 그 밖에 생활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② 제77조에 따른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3. 5. 22., 2019. 4. 23., 2023. 5. 19.>

1. 제81조의6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 고지 또는 독촉을 전자문서로 받는 경우
2. 보험료를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보험료 경감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5. 22.>

[제목개정 2013. 5. 22.]

□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2. 30., 2015. 3. 27., 2023. 3. 4., 2023. 8. 8., 2024. 2. 1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4.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6.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8.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10. 그 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② 제1항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의 인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6. 12.]

□ 인천광역시 검단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규칙으로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서관 이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12조)

나. 도서관 시설의 이용 및 자료의 사용에 관한 사항(안 제13~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시간)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1. 자유열람실: 09:00~22:00
2. 자료실: 09:00~18:00

제3조(휴관일)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다만, 법정 공휴일과 겹치는 일요일은 휴관함
2. 매주 월요일로 하고, 도서관별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인근 도서관의 휴관일과 중복되지 않도록 다른 요일을 휴관일로 정할 수 있다.
3. 도서의 정리·점검, 시설정비, 관내 전염병에 의한 학교 휴교령 조치에 의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한 날

제4조(회원가입) ① 도서관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시 소재 직장에 재직하는 사람

3. 시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사람

4. 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

②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과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회원증을 재발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홈페이지를 통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거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절차를 거친 후 제1항의 자격을 증빙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학생증, 청소년증, 그 밖에 공공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
2.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신분증을 제시할 수 없는 미성년자) 1부.
3. 재직증명서(시 소재 직장에 재직하는 사람)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

④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제3항에서 요구하는 행정정보의 경우 회원가입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원의 자격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회원증 발급 및 사용) ① 도서관은 제4조에 따른 회원가입 및 회원증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회원증을 발급 받은 사람은 자료대출 시 반드시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나 대여를 할 수 없다.

제6조(회원의 자격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취소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해 본인이 회원 탈퇴를 신청한 경우
2. 자료를 대출절차에 의하지 않고 도서관 밖으로 가지고 가는 경우
3. 자료를 오손·훼손하거나 분실하고도 3개월 이내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
4. 대출도서 반납을 1년 이상 연체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취소된 회원의 정보는 즉시 파기하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소된 경우 취소일부터 1년이 경과된 후 파기한다. 취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서를 반납하거나 변상한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복원할 수 있다.

제7조(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본인 명의의 회원증을 사용한다.
2. 도서관 내에서 이용하는 자료는 도서관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않는다.
3. 도서관 내에서는 흡연, 음주, 잡담, 수면 등 타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도서관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는다.
5. 대출받은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수 없다.
6. 도서관 내에서 성착취물, 도박,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으며, 도서관 내 정보기기로 불법 소프트웨어 및 동영상을 내려받고 설치하거나, 악성 코드를 배포하지 않는다.
7. 다른 사람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 스토킹, 지속적인 응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지 않으며, 사전 동의 없이 다른 사람

의 신체를 불법촬영하지 않는다.

8. 절도, 폭력, 협박, 무단침입 등 법령 위반 행위를 하지 않는다.

9. 그 밖에 관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이용자가 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은 이용자가 제1항을 위반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제8조(대출정지) 대출받은 도서를 기한까지 반납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반납일부터 연체일 수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제9조(자료대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으로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상호대차, 단체대출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공무원이 공무수행상 필요로 하는 경우

② 대출자가 1회에 청구할 수 있는 자료의 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는 10권 이내로 한다.
2. 비도서 자료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대출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도서관에서 특정 목적의 관내 열람자료로 지정한 자료
2. 정기간행물 및 신문
3. 그 밖에 구청장이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1조(대출 기간) ① 자료의 대출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대출: 15일 이내

2. 단체대출: 1년 이내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시설의 사용허가)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르면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교부한다.

② 시설 사용료 부과 기준은 시간당 단위로 한다.

③ 조례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 정당이나 개인의 정치활동 및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상업적 행위, 과외 및 영리행위 등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
4. 친목회, 향우회, 송년회, 졸업식 등 일반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13조(자료 복사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1. 열람이 금지된 자료
2.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3. 저작권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4.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14조(위탁 자료)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탁 자료의 목록을 별지 제5호서식에 작성하여 구청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5조(기증 자료) 개인 및 기관·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절한 자료만을 선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자료부에 등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6조(도서회수 불능처리) 대출받은 회원과 가족이 도서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전출 및 해외이주 또는 행방불명되어 도서회수(반납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적처리 한다.

제17조(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 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관계 법령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한 목록을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자체운영규정) 조례 제14조에 따른 위탁관리 시 수탁기관은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자체운영규정을 정하여 구청장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도서관 회원가입 신청서

회원번호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남/여)
	주소		
	학교 또는 직장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법정대리인	성명	휴대전화번호	

절취선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립 도서관 회원에 가입하고자 신청합니다.

이
의
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00도서관장 귀하

첨부서류	1.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여권, 공무원증, 그 밖에 공공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 2. 현주소 미기재 신분증 제시자, 미성년자 :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 등본

대출번호		카드수령확인	

유의사항

1.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대출도서는 1회 10권 이내입니다.
3. 대출기간은 15일 이내입니다.
4. 회원증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대리 대출은 불가합니다.
5. 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 시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해야 합니다.
6. 대출한 자료가 연체되었을 경우 연체된 일수 만큼 대출이 정지됩니다.
7. 온라인 본인인증을 거치지 않은 경우 책임음 서비스 등 서비스에 제한이 있습니다.

검단구립도서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인천광역시 검단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회원 가입 및 서비스 이용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회원약관 동의 (필수 사항)

회원이입에 대하여 <※ 홈페이지 회원가입 “이용약관” 항목>※을 준용합니다.

※ 위의 회원약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회원가입이 불가합니다.

☞ 홈페이지 회원가입 이용약관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 사항)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휴대전화, 제2연락처), 자택주소	도서관 회원 서비스 이용 (도서 대출, 거점형 서비스 이용 등)	2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수집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사항)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제공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국립중앙도서관(책임음서비스)	도서관 회원의 책임음 서비스 이용	이름, 주소, 우편번호, 생년월일, 대출자번호, 연락처, E-mail	책임음 서비스 탈퇴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도서 연체 안내 등 SMS 발송 수신(선택 항목)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이름, 연락처(휴대전화, 제2연락처)	도서 연체 안내 등 SMS 수신	2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도서 연체 안내 등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수신할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정보주체가 만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항목

☞ 정보주체가 만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본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회원탈퇴 신청서

회원번호		제적일자	
성명		생년월일	
탈퇴사유			

- 도서관은 회원 탈퇴를 요청하거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 및 이용기간이 종료한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고 있습니다.
- 본인은 도서관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대출 받은 도서를 분실 또는 훼손할 경우에는 변상의 책임(미성년자는 보호자가 책임)을 이행할 것을 동의하며, 위와 같이 회원 탈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만 14세 미만의 경우) 보호자

신청인과의 관계 :

성명 : (서명)

인천광역시검단구청장 귀하
(○○ 도서관)

비고

1. 대리 작성으로 인한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사오니 신분확인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신분확인서류는 신분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본으로 변동사항 확인용이며 확인 후 돌려 드립니다.

[별지 제3호서식_앞면]

()도서관 시설 사용 신청서

		접수번호	도서관에서 작성
단 체 명 (단체/개인)		대 표 자 (신청자)	
사용장소	☐ 배움터1 ☐ 배움터2 ☐ 어울림터	연 락 처	
사용일시	년 월 일 : ~ :	이용인원	남 명 여 명
사용목적			
사 용 료			
검단구 구립도서관 시설 사용 동의서 사항을 확인했으며, 상기와 같이 도서관 시설을 이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인천광역시검단구청장 귀하 (○○ 도서관)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목적 : 도서관 시설 사용에 따른 연락 및 확인, 이용자 성별 통계 구축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단체명, 성명, 연락처, 성별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1년
- 동의 거부 시 불이익 : 시설 사용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 의 ☐ 동의안함

[별지 제3호서식_뒷면]

()도서관 시설 사용 동의서

본인은 검단구 구립도서관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의 사용규칙을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 ☐ 사전 신청 정보와 실제 사용 내용은 동일하여야 하며 특히 영리, 종교, 정치적 목적 등 시설사용 허가 범위를 벗어난 경우 즉시 취소된다.
- ☐ 시설 내 기자재를 허가 없이 사용하지 않으며, 사용 후에는 담당자의 확인을 받는다.
- ☐ 이용자 부주의로 집기류, 장비 등을 훼손할 경우 이를 즉시 변상한다.
- ☐ 시설 내 물품을 임의로 반출하지 않으며, 사용 후에는 원상태로 복구한다.
- ☐ 시설 내 음식물 반입 및 섭취, 흡연·음주를 하지 않는다.
- ☐ 시설 사용 인원은 사용장소 적정 인원 범위 내에서만 사용한다.
- ☐ 사용 예약 후 사전 취소 없이 임의로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시설 사용에 제한받는 것에 동의 제기하지 않는다.
- ☐ 이용 중 부주의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고, 도서관에 법적(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으며,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한다.
- ☐ 사용 공간 특성에 맞게 사용할 것이며 다른 도서관 이용자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소음 발생, 쓰레기 정리 등)
- ☐ 이용시간 종료 5분전 정리 후 퇴실하며, 이용시간을 준수한다.

위 구립도서관 시설 사용 동의서에 동의하며, 미준수 시 시설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신청 대표의 동의는 이용자 모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별지 제4호서식]

()도서관 시설물 사용 허가서

(허가번호 :)

단 체 명			
대 표 자 (신 청 자)		연 락 처	
사 용 장 소	☐ 배움터1 ☐ 배움터2 ☐ 어울림터		
사 용 일 시	. . . : ~ . . . :		
사 용 인 원			
사 용 목 적			
사 용 료	일금 원 (₩)		
허 가 조 건	1. 대관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합니다. 2. 도서관에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 시설물 사용을 취소 또는 사용정지 할 수 있습니다. 3. 시설물 사용종료 후 주변 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검단구청장 (○○ 도서관)			

[별지 제6호서식]

도 서 기 증 목 록

[illegible]

인천광역시 검단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제1조~제2조)
- 나. 식재료공급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제3조)
- 다.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제4조)
- 라. 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사항 등(제5조~제1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교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인천광역시 검단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의 범위) 「인천광역시 검단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의 범위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학교와 유치원 및 보육시설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제3조(식재료공급자의 의무) 식재료 공급자는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지원대상기관에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의 공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취지에 맞는 식재료를 공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신청)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 학교급식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지원신청서와 지원신청기관의 해당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접수받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접수된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인천

광역시검단구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원신청한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대상기관의 선정,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 품목 선정, 지원규모 등을 심의·의결한다.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의 사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학교급식 실태, 지원신청에 따른 산출근거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되, 학교급식지원업무 담당이 된다.

제9조(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계획 확정)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의 학교급식 지원금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계

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무)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확정된 지원계획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인천광역시 교육청 교육감, 보육시설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지원계획을 통보받은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인천광역시 교육청 교육감은 관내 지원대상기관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지원계획을 통지한다.

③ 지원계획을 통지받은 지원대상기관은 지원계획으로 통지된 예산 지원계획 범위 안에서 예산회계 관련규정 등에 의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구입 사용하되, 식재료 공급자에게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공급확인서를 발부함과 동시에 사본은 분기별로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급확인서를 발부받은 식재료 공급자는 지원대상기관이 발부한 공급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지원대상기관에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한다.

제12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기관에 당해연도 사업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시 또는 분기별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기관은 학교급식 지원계획 금액의 범위 안에서 식재료 공급확인서와 식재료공급자의 공급비용 지급신청서를 확인하여 월별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학교급식 식재료비는 조례 제2조에 따른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함에 따른 추가 발생경비(차액)에 한해서 지원한다.

④ 제1항의 보조금 교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에 의한다.

제13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 및 관계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학교급식법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①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 12. 28.>

1.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급식에 관한 경비 및 식재료 등의 지원
3. 그 밖에 학교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안

1. 제안이유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제4항에 의거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복지심의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칙으로 제정하여 운영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구성 및 임기,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다.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교육과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2.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이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라 한다)

2. 인천광역시 검단구 관할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3.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가.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나. 「초·중등교육법」 제2호에 따른 학교의 장

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관할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라. 보건소의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

마.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

바. 인천광역시 검단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사. 보호관찰소의 장

아. 그 밖에 청소년전문가, 청소년지도자, 법률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제4조(임기) ① 구청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필수연계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에 따라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

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 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검단구 청소년안전망 담당 공무원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전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연중 4회(반기별 각 2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시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통합사례회의 운영)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기청소년 발굴, 위기 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 수립, 지역유관기관 연계, 긴급대응 등 통합 사례관리를 진행하기 위해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사례회의는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 등 통합 사

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10조(회의록)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출석발언) 위원장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자, 또는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지급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 통합사례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② 심의위원회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3. 23.>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1. 3. 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3. 23.>

[제목개정 2021. 3. 23.]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안

1. 제안이유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포상금의 신고대상, 방법 및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다. 포상금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교육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청소년 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1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한한다.

제4조(신고방법 등) ①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서면 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의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에 판결 또는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6개월 이전부터 포상금 지급일까지 계속하여 검단구(검단구 설치 전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해당 지역을 포함한다)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4. 동일 신고인이 해당 연도에 3건을 초과하여 신고할 경우

제6조(지급)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포상금 지급 기준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신고 접수대장

연 번	신 고 인			신 고 내 용			처 리 결 과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또는 업소명	주 소 또는 위 치	위반행위	처리일시	처리내용

[별표 1]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 (제3조 관련)

위 반 행 위	지급액 (전당)
1. 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0만원
2. 법 제30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우는接客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0만원
3. 법 제30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0만원
4.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20만원
5.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	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6. 법 제30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 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10만원
7. 법 제30조제5호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10만원
8. 법 제30조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10만원
9. 법 제30조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10만원
10. 법 제30조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10만원
11. 법 제30조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10만원
12.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
13.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
14.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5만원
15.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금지의무 를 위반한 행위	5만원
16. 기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	5만원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포상금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거래은행		계좌번호	
신고사항	신 고 일			
	신고기관			
	피신고인 (위반자)	성명 또는 업소명		
		주소 또는 위치		
	신고내용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관계 법령 발췌

☐ 청소년보호법

제49조(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2.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3.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고자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청소년시설 사용,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5조)

다. 셔틀버스 운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청소년시설 위탁운영 신청 및 첨부서류, 예산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신청 · 취하 등)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시설 사용을 취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 취하원을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일시설에 대한 사용신청이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를 따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각급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주관하는 행사
3.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사

③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시설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시설의 적정한 유지 관리를 위하여 조례 · 규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3조(사용료 감면신청)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감면신청서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반환신청)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를 돌려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환 신청서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등 수입금 조치)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 등 수입금은 수납일 다음날까지 인천광역시 검단구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셔틀버스 운행) 조례 제12조에 따라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운행자는 차량의 점검·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1. 배차시각 준수 및 난폭운전 금지
2. 정차시간 정차 및 지정시간 이전 통과금지
3. 차량 내부와 외부 청결 유지
4. 단정한 복장 착용
5. 차량운행일지의 성실한 작성 및 보고
6. 회원과의 분쟁 발생시 즉시 보고 및 일지 기재
7. 회원여부 확인 및 선별적 승차 금지
8. 승·하차 지정장소 준수 운행

제7조(위탁운영 신청 및 첨부서류) 조례 제13조에 따른 시설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서를 작성,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영계획서(수입 및 지출서 포함)
2. 청소년단체 등록증(법인의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3.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4.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입·지출 계산서 포함)
5. 대표자 사용인감계(법인은 법인 인감계)

6. 최근 3년 간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실적
7. 직종별 종사자의 확보 및 배치계획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8조(예산 및 운영결산 보고) ① 수탁자는 시설 운영의 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말 9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상황을 매 월말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연간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다음 해 1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청소년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시 설 명				
신 청 인	주 소			
	성 명 또 는 대 표 자 명		생년월일	
	단 체 명		전 화	
내 용	사 용 시 설 명			
	사 용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	명 (일반 명, 청소년 명)		
	성 별 현 황	명 (남자 명, 여자 명)		
	사 용 료 구 분	[일 반] [감 면]		
	변경신청내용			
	변경신청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변경신청사유			
	사 용 요 금			
	첨 부	행사계획서 1부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구비서류 : 행사계획서				

(뒷면)

이 용 자 준 수 사 항

1. 관계법령,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국가행사 또는 관리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을 취소, 정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현수막, 현판 등 설비는 사전신고,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 조치하여야 합니다.
 5. 모든 시설, 설비, 물품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6. 시설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7. 시설사용 승낙 후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신고하여야 합니다.
 8. 시설은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므로 청소년 또는 타 사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 ※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소년시설 사용을 취소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시설 사용 취하원				
시 설 명				
신 청 인	주 소			
	성 명 또 는 대 표 자 명		생년월일	
	단 체 명		전 화	
내 용	사 용 시 설 명			
	사 용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	명 (일반 명, 청소년 명)		
	사 용 료 구 분	[일 반] [감 면]		
	취 하 시 설 명			
	취 하 신 청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취 하 사 유			
	납부한 사용료			
	첨 부	증빙자료 1부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취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취하원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청소년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				
시 설 명				
신 청 인	주 소			
	성명 또는 대표자명		생년월일	
	단체명		전화	
내 용	사용인원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료			
	감면신청액			
	감면사유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구비서류 : 사용료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5호서식】

청소년시설 위탁(수탁) 운영 신청서				
시 설 명				
신청자	법인(단체)명			
	주 소	법인(단체) 등 록 번 호		
	대표자 성명	전 화 번 호		
법인(단체)설립근거		설 립 일 자		
재 산	계 : 백만원 (동산 백만원, 부동산 백만원)			
위탁운영관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탁관리목적		위탁운영면적		
세부운영계획	별지작성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인천광역시검단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법인(단체)현황 : 설립인가(등록)증 사본, 법인(단체) 등기부등본, 법인(단체) 기본재산현황, 수익사업현황 2. 수련시설 운영계획서 : 사업계획서, 운영인력 확보계획, 세입·세출예산서 3. 대표자 사용인감계(법인은 법인 인감계) 4. 운영비 부담계획 5. 최근 3년 간 법인(단체)의 청소년 사업실적 등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안

1. 제안이유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에 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 과징금 부과에 대한 재량권 남용방지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감경대상 및 감경기준(안 제2조)
- 나. 감경제외대상(안 제3조)
- 다. 감경신청 및 감경절차(안 제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의 감경대상, 감경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대상 및 감경기준) ①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과징금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별표 11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기준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③ 감경요건이 두 개 이상 해당될 경우 부과 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중 하나만 적용한다.

제3조(감경제외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결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
2. 위반일부터 2년 이내에 법을 1회 이상 위반하여 처분된 경우
3. 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체납자

제3조(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위반자에게 과징금부과 처분을 할 때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한다.

②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내에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빙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조에 따라 감경처리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처리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결정서를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별 표 1]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에 대한 감경을 적용기준

위 반 행 위	과징금액	위반 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률		
		50%	30%	감경 제외
1.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한 경우	위반횟수마다 제조업자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판매 등 금액이 1만원 미만	판매 등 금액이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	판매 등 금액이 3만원 이상
2.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	위반횟수 마다 1,000만원	매체물 수량이 10개 미만	매체물 수량이 10개 이상 30개 미만	매체물 수량이 30개 이상
3.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 제4호 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	위반횟수마다 주류 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	공통기준 적용 [별표2]	판매액이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판매액이 10만원 이상
4.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 제4호 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 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경우	위반횟수마다 100만원	판매액이 1만원 미만	판매액이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	판매액이 3만원 이상
5.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고용기간이 6개월 이상
6.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 나목 1)·2)·4)·5)·6)·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고용기간이 6개월 이상
7.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출입인원이 5인 미만	출입인원이 5인 이상 10인 미만	출입인원이 10인 이상
8.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위반횟수마다 300만원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한함		
9.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 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반횟수마다 300만원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한함		
10.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	위반횟수마다 1,000만원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한함		

[별표 2] 공통기준: 감경 50% 적용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등 확정처분을 받은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저소득 모·부자 보호대상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5.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
 6. 만 65세 이상의 고령
 7.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장기구호대상자
 8. 희귀·난치성 질환자로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과 그 가족
 9. 만 15세 미만 청소년(다만, 청소년출입금지 및 고용금지업소에서 행한 위반은 제외)
 10. 위협, 폭행, 강박 및 사기에 의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 *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11호 나항을 적용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단,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50/100을 초과할 수 없음)

■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업소명 (전화번호 :)		
	위반일자	행정처분일자	위반내용

감경 사유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감경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 소 명 (소재지)				
	위반일자		위반내용		
감경 처분	감경사유				
	감경내용	당초부과액 : 감경부과액 : 감 경 사 유 :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3조에 따라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청 장

■[별지 제3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처리 관리대장

감 경 처분일	업소명	인적사항			위반일자 및 내용	감경사유	감경금액 (천원)
		성명	생년월일	주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관계 법령 발췌

□ 청소년 보호법

제54조(과징금)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8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5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영업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한다.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②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1과 같다.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7조(의견제출) ①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② 당사자등은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등이 말로 의견제출을 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진술

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안 제2조)
- 나. 판매자 준수사항, 폐업 등 신고 및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6조)
- 다. 쓰레기봉투 공급 및 대금납부(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쓰레기봉투 판매소지정) ① 쓰레기봉투 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쓰레기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판매소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판매소 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판매소 신청을 받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확인한 후 적합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판매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1. 쓰레기봉투 판매소 접수대장(별지 제3호서식)
2.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제3조(판매자 준수사항) ① 제2조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쓰레기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정비 및 판매가격표 게시
2. 쓰레기봉투 판매지정서 및 표시판을 소비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
3. 불법 쓰레기봉투의 진열 및 판매금지
4. 쓰레기봉투의 낱장 판매의 거절금지

5. 소비자의 반품요청 시 즉시 판매가로 반환조치
6. 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1주일 판매예상량 이상의 물량 확보
7. 그 밖의 행정지시사항

② 판매자는 구청장이 지정한 곳에서 쓰레기봉투를 매수하여야 한다.

제4조(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상호 및 명의를 변경하고 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판매소의 폐업·휴업 등의 신고)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폐업 또는 휴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판매소 폐업·휴업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판매소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2. 구청장이 규정한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위반하여 판매하는 경우
3. 쓰레기봉투 매점매석 행위 등 봉투 수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4.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쓰레기봉투등 공급 및 대금납부) 「인천광역시 검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제3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등의 공급을 위탁받은 자는 판매소로부터 쓰레기봉투 등의 구입을 신청받고, 판매대금을 징수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내에 구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 마감시간 이후의 판매대금은 다음 날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쓰레기청결 포상금 지급방법) 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접수된 신고서는 민원사무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출장복명서
2. 과태료부과통지서 사본
3. 신고자명의 통장사본

② 쓰레기청결 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20퍼센트로 하며, 지급기일은 과태료 부과일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제9조(관련장부의 작성 등) ① 구청장은 쓰레기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일반용 쓰레기봉투 수불부(별지 제10호서식)
2. 일반용 쓰레기봉투 판매소 공급대장(별지 제11호서식)
3. 가정사업계용 쓰레기봉투 수불부(별지 제12호서식)
4. 가정사업계용 쓰레기봉투 공급대장(별지 제13호서식)
5.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수불부(별지 제14호서식)
6.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판매대장(별지 제15호서식)

② 구청장은 매월 은행 납입금과 공급실적을 정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의 쓰레기봉투 등의 공급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쓰레기봉투 등의 실적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다음달 2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별지 제9호서식부터 제15호서식까지의 작성과 관리는 전산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쓰레기봉투 무료지급) 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무료지급 대상자는 주민등

록등본상의 세대원에 한하되, 동거인은 제외한다. 다만, 이혼한 모가 자녀를 부양할 경우는 제외한다.

② 구청장은 대상자에게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고 수불 상황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쓰레기봉투 무료지급은 매월 말일까지 대상자에게 지급하며, 직접 수령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 기준

구 분	기 준
일반판매소	일반판매소는 슈퍼, 잡화상 등 인근 주민이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장소로 지정한다.
구내판매소	1. 구내 판매소는 3층 이상의 고층건물, 공공기관, 대형소매점(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종합소매업으로서 100㎡ 이상의 매장을 보유한 슈퍼마켓·편의점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물의 상주인원 또는 이용인원이 상시 공동으로 이용하는 장소에 지정한다. 2.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 등을 참작하여 동일 시설물 내부에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임시판매소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에 지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상호			판매소전화번호	
판매소주소				
판매소구분				

「인천광역시 검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 약도 1부	수수료
	없음

제 호

쓰레기봉투 판매지정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상호			
판매소주소			
판매소구분			

「인천광역시 검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청 장 (인)

[illegible]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관리대장

(동)

지정번호	상 호	판매소주소	성 명	전화번호	비 고

(별지 제5호서식)

쓰레기봉투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신고서

판매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상호	
	판매소 주소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인천광역시 검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청 장 귀 하

구비서류: 1.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수수료
	없 음

쓰레기봉투 판매소 (휴업 · 폐업) 신고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상호		판매소 주소	
사유			
휴업일 경우			
휴업기간			

「인천광역시 검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휴업 · 폐업)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판매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판매소 지정서(폐업인 경우에 한함)	수수료
	없음

(별지 제7호서식)

쓰레기봉투 등 판매대금 영수증(판매소 교부용)

영 수 증 (공급자 보관용)							
판매소번호				상 호			
성 명				전 화 번 호			
영업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판 매 내 역							
종류	수량(매)	단가(원)	금액(원)	종류	수량(매)	단가(원)	금액(원)
			합 계			원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담당자 인수자	
년 월 일							
○○○○○○○장							
전화번호: 000-0000 팩스번호: 000-0000 계좌번호: (00은행)							

영 수 증 (판매소 보관용)							
판매소번호				상 호			
성 명				전 화 번 호			
영업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판 매 내 역							
종류	수량(매)	단가(원)	금액(원)	종류	수량(매)	단가(원)	금액(원)
				합 계		원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담당자	
년 월 일 ○○○○○○○장							
						인수자	
전화번호: 000-0000							
팩스번호: 000-0000							
계좌번호: (00은행)							

(별지 제8호서식)

무 단 투 기 적 발 신 고 서

신 고 자	성 명 (한 자)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은 행 명 (계좌번호)	은행 ()		
위 반 자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반일시		위 반 내 용	
	위반장소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위반자에 대해서 위와 같이 신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청 장 귀 하

첨부: 현장 사진 및 증거물

(별지 제9호서식)

쓰레기봉투등 판매실적 보고

(단위: 매/원)

구 분			수량매수	판 매 실 적		판매잔량	비고
				수 량	금 액		
일 반 용	총 계	금 월					
		전월누계					
		누 계					
	5ℓ	금 월					
		전월누계					
		누 계					
	10ℓ	금 월					
		전월누계					
		누 계					
	20ℓ	금 월					
		전월누계					
		누 계					
	50ℓ	금 월					
		전월누계					
		누 계					
가 정 사 업 계	총 계	금 월					
		전월누계					
		누 계					
	30ℓ	금 월					
		전월누계					
		누 계					
	60ℓ	금 월					
		전월누계					
		누 계					
대 형 폐 기 물 처 리 스 터 커	총 계	금 월					
		전월누계					
		누 계					
	1,000원권	금 월					
		전월누계					
		누 계					
	3,000원권	금 월					
		전월누계					
		누 계					
	5,000원권	금 월					
		전월누계					
		누 계					
	10,000원권	금 월					
		전월누계					
		누 계					

(별지 제10호 서식)

일반용 쓰레기봉투 수불부

월/일	인 수 량					공 급 량					잔 량					결 재		
	계	5ℓ	10ℓ	20ℓ	50ℓ	계	5ℓ	10ℓ	20ℓ	50ℓ	계	5ℓ	10ℓ	20ℓ	50ℓ			
/																		
/																		
/																		
/																		
/																		
/																		
/																		
/																		
/																		
/																		
/																		

일반용 쓰레기봉투 판매소 공급대장

월/일	판 매 소		판 매 량										결 재		
	상 호	성 명	계		5 ℓ		10 ℓ		20 ℓ		50 ℓ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															
/															
/															
/															
/															
/															
/															
/															

(별지 제12호서식)

가정사업계용 쓰레기봉투 수불부

월 / 일	인 수 량			공 급 량			잔 량			결 재		
	계	30ℓ	60ℓ	계	30ℓ	60ℓ	계	30ℓ	60ℓ			
/												
/												
/												
/												
/												
/												
/												
/												
/												
/												
/												
/												
/												
/												
/												

(별지 제13호서식)

가정사업계용 쓰레기봉투 공급대장

월 / 일	신 청 인		관 매 량						수거 확인	결 재		
	주 소	성 명	계		30 ℓ		60 ℓ					
			매수	금 액	매수	금 액	매수	금 액				
/												
/												
/												
/												
/												
/												
/												
/												

대형 폐기물처리 스티커 수불부

월 / 일	신 청 인			품목	규격	수수료	스티커 관리번호				결 재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1,000원권	3,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			
/													
/													
/													
/													
/													
/													
/													
/													
/													
/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판매대장

월 / 일	1,000원권			3,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			결재		
	총인수량	판매량	잔량	총인수량	판매량	잔량	총인수량	판매량	잔량	총인수량	판매량	잔량			
/															
/															
/															
/															
/															
/															
/															
/															
/															
/															

쓰레기봉투 무료지급 수불부

[illegible]

관계 법령 발췌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유통·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당사자등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3.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의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제2조)

나. 특별회계의 준용(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관직 지정) ① 「지방회계법」 제46조 및 제47조, 「인천광역시 검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특별회계 징수관: 특별회계업무담당국장
2. 특별회계 분임징수관: 특별회계업무담당과장
3. 특별회계 재무관: 특별회계업무담당국장
4. 특별회계 분임재무관: 특별회계업무담당과장
5. 특별회계 채권관리관: 특별회계업무담당과장
6. 특별회계 부채관리관: 특별회계업무담당과장
7. 특별회계 지출원: 특별회계업무담당
8. 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 특별회계업무담당
9. 특별회계 물품출납원: 특별회계업무담당

② 「지방회계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직무위임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지방회계법

제4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분임자(分任者)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7조(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 및 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을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의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의 목적(안 제1조)

나. 음식물류폐기물 분리 배출 지역 및 일시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3조)

다. 수수료의 면제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물품에 관한 사항(안 5조~9조)

마. 음식물류폐기물 공동배출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 지정) 「인천광역시 검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전 지역으로 한다.

제3조(배출일시 및 장소)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일시 및 장소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의 계절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배출일시 및 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면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례 제10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2.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자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필증을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월 10리터 이내로 공급하여야 하며, 필요 시 납부필증 구입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등)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이하 “전용봉투”라 한다)의 규격 및 제작사양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의 제작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한 쓰레기봉투 지정 판매소에서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색상, 규격, 제작 및 사용방법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 납부필증은 전용수거용기의 용량에 따라 분류하고 종류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별도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납부필증의 종류 및 제작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구청장은 납부필증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납부필증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할 때나 수거가 필요할 때마다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7조(납부필증의 검수 및 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납부필증 스티커의 제작업체

에서 납부필증을 납품받을 때 제작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후 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납부필증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 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납부필증, 전용봉투 및 개별용기의 공급 및 판매) ① 구청장은 납부필증 등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납부필증 판매소로 지정한다.

③ 구청장은 납부필증 판매소에 판매수수료에 해당하는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는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9조(납부필증 판매자의 준수사항) ① 납부필증 판매자는 납부필증을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주민편의를 위하여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의 충분한 확보
2. 불법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의 진열 및 판매 금지
3.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의 교환 및 환불
4. 그 밖의 행정지시사항

② 납부필증 판매와 관련하여 제1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지정판매소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공동배출 신청자의 이행사항)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동배출 신청서 제출
2.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 준수 및 전용수거용기 관리

3. 구청장이 정하는 수수료의 납부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시간 및 배출장소 등(제3조제1항 관련)

1. 개별용기 배출

구 분	배 출	수 거
<u>요일(횟수)</u>	일, 화, 목/월, 수, 금(주3회)	월, 수, 금/화, 목, 토(주3회)
시 간	20:00~24:00	00:00~ <u>12:00</u>
장 소	주택 및 업소 문전	주택 및 업소 문전

2. 공동용기 배출

구 분	배 출	수 거
<u>요일(횟수)</u>	제한 없음	월, 수, 금/화, 목, 토(주 3회)
시 간	제한 없음	00:00~ <u>12:00</u>
장 소	전용수거용기 설치 장소	전용수거용기 설치 장소

[별표 2]

1.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제작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재질: 플라스틱(PP, HDPE)

2. 규격

종류(주 용도)	내부용량 (ℓ)	구 조	비고
단독주택및 소규모 사업장	<u>2</u>	- 뚜껑과 몸체 일체형 - 운반·이동용 손잡이 부착 - 손잡이 달린 거름망 내부용기 탈·부착 - 용량은 내부용기에 의함	
	3		
	5		
공동주택용	60	- 뚜껑과 몸체 일체형 - 운반·이동용 손잡이 및 바퀴 부착 - 기계식 상차 가능	
	120		

주1) 배출량에 따라 용량을 선택하여 사용 가능

3. 외부 표시사항(뚜껑, 몸체): 기관명과 문장, 용기의 종류 및 용량, 주의사항, 배출자
기재난 등2.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의 규격(제5조제1항 관련)

구 분	20ℓ
봉투규격 (가로×세로,Cm)	42×69.5

※ 봉투규격은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을 포함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제작사양(제5조제1항 관련)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구의 문장

쓰레기봉투(20 ℓ)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
(김장쓰레기)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내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문의처 : 검단구청 자원순환과 (☎000-0000)

검단구 시설관리공단 (☎000-0000)

공급원 : 단체표준품질인증승인번호와 품질인증표시

제조원 : 업체명(☎ -)

※ 글씨체는 명조체로 하고 글씨색은 봉투색과 대조되는 색을 사용

[별표 3]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납부필증의 제작기준(제6조제2항 관련)

구 분	규 격	색상	표 시 사 항	비고
<u>2ℓ</u>	<u>가로 70mm</u> <u>세로 45mm</u>	<u>노랑색</u>	기관명과 문장, 표시용량, 주의사항, 제작일련번호 및 전자인식부호(바코드) 등	
3ℓ	가로 70mm 세로 45mm	분홍색		
5ℓ	가로 70mm 세로 45mm	파랑색		
60ℓ	가로 90mm 세로 65mm	초록색		
120ℓ	가로 90mm 세로 65mm	보라색		

[별표 4]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필증, 전용봉투 및 개별용기판매수수료(제8조제3항 관련)**1. 납부필증,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 판매가격**

- ☐ 「인천광역시 검단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별표 3의 규정에 따른다. 단, 전용수거용기 판매가격은 조달가+판매수수료로 하며, 원단위는 절사한다.

2. 납부필증,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 공급가격

- ☐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 공급가격 = 판매가격 - (판매가격 × 판매수수료율)
※ 소수점이하 올림
- ☐ 전용수거용기 공급가격: 조달가(매년 1월 1일 조달청 판매금액)

3. 납부필증,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 판매수수료율

구분	규격	판매가격(원)	공급가격(원)	판 매 수수료율(%)	비고
납부필증	<u>2ℓ</u>	조례 “별표3”	판매가격 - (판매가격 × 판매수수료율)	<u>7</u>	
	3ℓ			7	
	5ℓ			7.5	
	60ℓ			7	
	120ℓ			7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20ℓ			7	
전용수거 용기	2ℓ	조달가+판매수수료	조달가	<u>10</u>	
	3ℓ			10	
	5ℓ			10	

[별지 제1호서식]

음식물류폐기물 공동배출계획(신규, 변경, 취소)신청서

단체명(주택명)				총세대수			
				신청세대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주택형태		연립(), 다세대(), 다가구(), 기타()					
신고내용	신규·취소						
	변경	당초			변경		
공동보관용기 (60ℓ)		개	설치 장소	1. 2. 3.			
수수료 납부방법		수거가 필요할 때마다 배출용기 용량에 따른 납부필증 부착					

「인천광역시 검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공동배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주민동의서 1부.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 (서명)

주소 :

전화번호 :

인천광역시검단구청장 귀하

관계 법령 발췌

□ 인천광역시 검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여야 하며,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⑥ 수수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및 전용봉투의 종류·재질) ②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③ 다세대 주택 등 5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의 일정지역 단위 소규모 공동주택 거주자가 공동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주체를 정하여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구청장에게 그 뜻을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 검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쓰레기봉투 판매소지정) ①쓰레기봉투 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인천광역시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쓰레기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판매소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판매소 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판매소 신청을 받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확인한 후 적합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판매소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1. 쓰레기봉투 판매소 접수대장(별지 제3호서식)
2.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인천광역시 검단구 동물장묘업 시설 기준 규칙안

1. 제안이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허가영업의 시설 및 인력기준) 제2호라목 6)에 따라 우리 구 동물장묘업의 시설기준을 명확하게 정하여 구민의 쾌적하고 편안한 삶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나. 동물장묘업에 관한 기본 원칙(안 제4조)
- 다. 동물장묘업 시설 기준(안 제5조)
- 라. 소각·건조대상(안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동물장묘업 시설 기준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허가 시 구민의 쾌적하고 편안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동물장묘업의 시설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동물장묘업”이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영업을 말한다.

1.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2.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및 동물수분해장시설
3.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검단구”라고 한다) 관할 구역 내의 동물장묘업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동물장묘업에 관한 기본원칙) 동물장묘업을 운영하는 자(이하 “동물장묘업자”라 한다)는 동물장묘시설의 운영과정에서 오염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동물장묘업 시설 기준) ① 구청장은 동물장묘업 허가 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별표 10에 해당하는 시설 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라목6)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 배기구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시설 설치

2. 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감지한 결과를 6개월 이상 자동 기록 저장하는 시설 설치
3. 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의 배기구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인지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전광판 설치
4. 화장로의 개수는 동물화장시설당 2기 이하로 설치. 다만, 신도시 개발로 인한 인구수 증가 및 원도심, 농업 지역 등 다양한 지역의 혼재로 계획적인 도시 정비가 필요한 검단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체 화장로의 개수는 7기 이하로 한다.

제6조(소각·건조대상) ① 동물장묘업 시설에서 소각·건조할 수 있는 대상은 동물사체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화장로 속에는 화학합성섬유, 고무, 비닐제품, 스티로폼, 플라스틱, 합성수지 등 환경오염 발생물질 및 그 작동오류나 폭발 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휴대전화, 배터리, 병 등의 금속·유리·탄소제품을 포함한다)을 넣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동물보호법

제69조(영업의 허가) ① 반려동물(이하 이 장에서 “동물”이라 한다. 다만, 동물장묘업 및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설동물장묘시설의 경우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로 한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동물생산업
2. 동물수입업
3. 동물판매업
4. 동물장묘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허가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 법 제69조제3항에 따른 허가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

허가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39조 관련)

1. 생략

2. 개별 기준

가. ~ 다. 생략

라. 동물장묘업

1)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은 장례 준비실과 분향실을 갖추어야 한다.

2)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및 동물수분해장시설

가) 동물화장시설의 화장로는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완전히 연소할 수 있는 구조로 영업장 내에 설치하고, 영업장 내의 다른 시설과 분리되거나 별도로 구획되어야 한다.

나) 동물건조장시설의 건조·멸균분쇄시설은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완전히 건조하거나 멸균분쇄할 수 있는 구조로 영업장 내에 설치하고, 영업장 내의 다른 시설과 분리되거나 별도로 구획되어야 한다.

다) 동물수분해장시설의 수분해시설은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완전히 수분해할 수 있는 구조로 영업장 내에 설치하고, 영업장 내의 다른 시설과 분리되거나 별도로 구획되어야 한다.

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및 동물수분해장시설에는 연소, 건조·멸균분쇄 및 수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매연, 분진, 폐수 또는 악취를 방지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마) 영 별표 3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해야 한다.

3) 냉동시설 등 동물의 사체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은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야 하고, 유골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판이 붙어 있어야 한다.

5) 1)부터 4)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장묘업 시설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6)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1)부터 5)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화장로의 개수(個數) 등 동물장묘업의 시설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점단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안

1. 제안이유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도·소매업 지정 및 관리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 및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담배소매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 및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안 제2조)
- 나. 소매인의 지정기준(안 제3조)
- 다. 부적합한 장소(안 제4조)
- 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면적측정 방법(안 제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제7조의3제4항 및 제11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한다.

1.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2. 공고방법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의 공고 시기는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부터 18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소매인의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시

설물 내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제6호의 경우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건축물 외부로 직접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점포는 제1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에 따른다.

1. 역, 공항,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 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내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 내부에 출입구가 있는 영업장
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③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담배영업소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담배영업소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지정된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부적당한 장소) ① 제3조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매인 지정을 할 수 없다.

1.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장소
2.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 할 수 있는 영업장

3. 무인점포 등 대면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업장

4. 그 밖에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담배자동판매기의 경우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로 정하는 장소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규제하는 장소에 대하여도 설치를 제한 할 수 있다.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면적측정 방법) ①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은 기존 영업소의 외벽과 신규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에 따른 보행자통행방법 등을 고려하여 최단거리로 측정해야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내부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한다.

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중앙선이 없는 도로, 그 밖의 이면도로에서는 같은 법 제10조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영업소간 거리 측정 방법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제3조제2항제4호의 연면적과 층수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⑤ 제3조제2항제6호의 매장면적은 적법한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한다.

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 계산대(뒷공간 포함),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계단, 승강기,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및 그 밖에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제6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되 제2조를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10. 규칙 제103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매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5년간 종전의 거리제한 규정을 적용하되, 1회에 한정한다.

1. 폐업신고로 신규지정 접수 공고하는 경우(단, 해당 주소지의 폐업영업소에

한하여 종전 거리제한 및 지정기준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3.2.27.>

2. 관할구역 내에서 영업소 위치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단, 위치변경을 하고자 하는 곳의 인근 영업소가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아 지정된 영업소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 이 규칙 시행 전 지정신청을 한 자(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시행일에 진행 중인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이 규칙 시행 전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단서규정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구청장에게 휴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규칙(2023.2.27. 규칙 제10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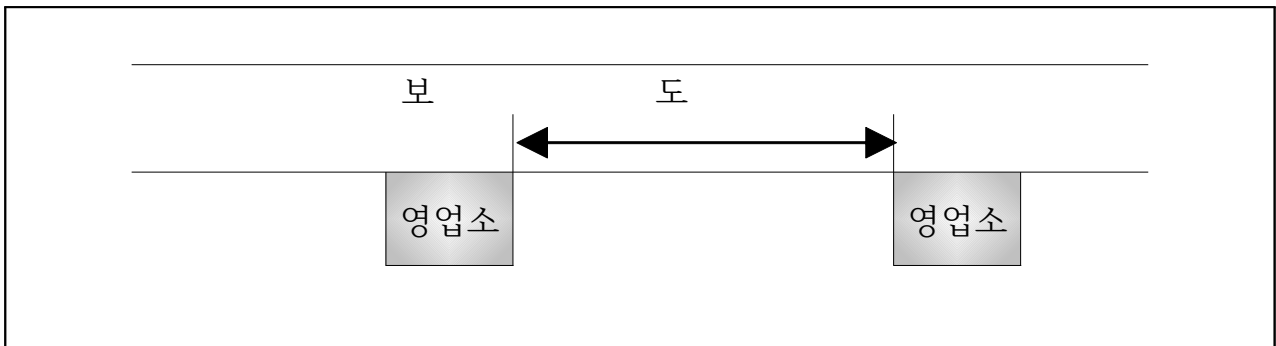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의 기준(제5조 관련)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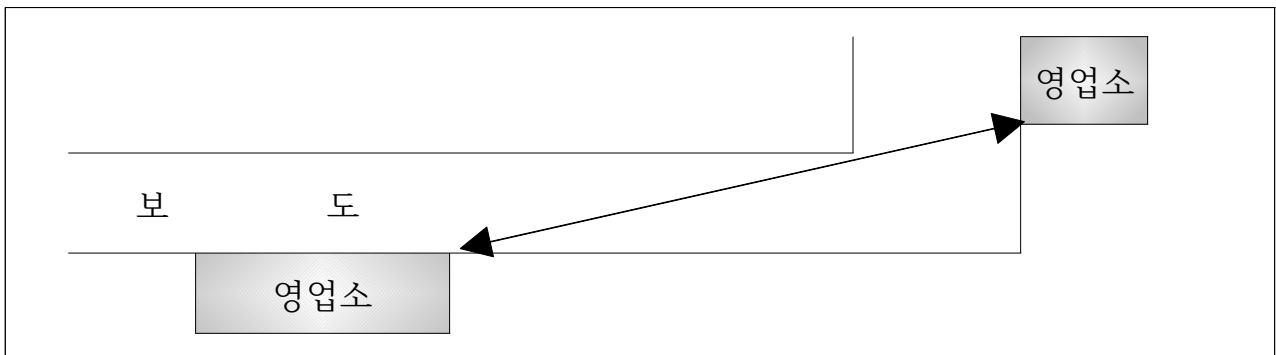
소매인 영업소(점포)간 거리측정은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본문·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물 지하 또는 지상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1층 출입구(영업소와 최단거리)중양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거리측정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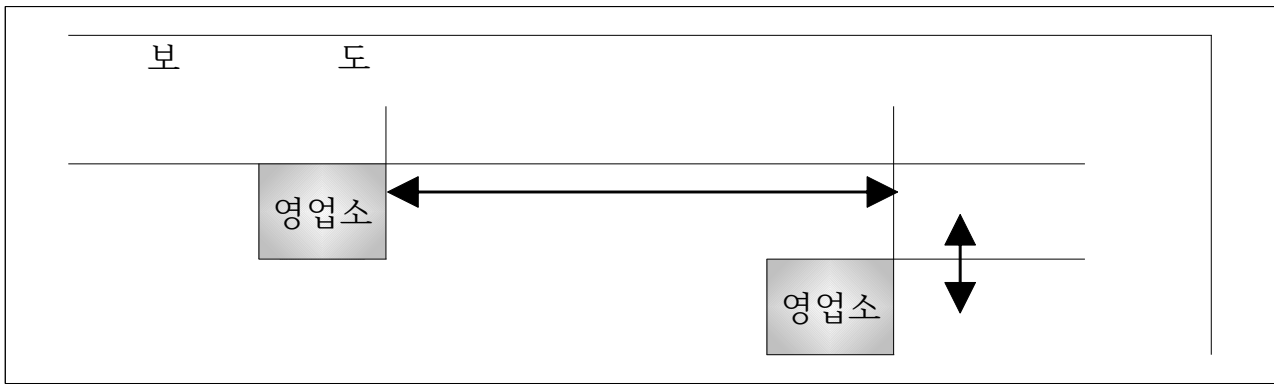
1) 보도의 같은 편에 있는 영업소간 거리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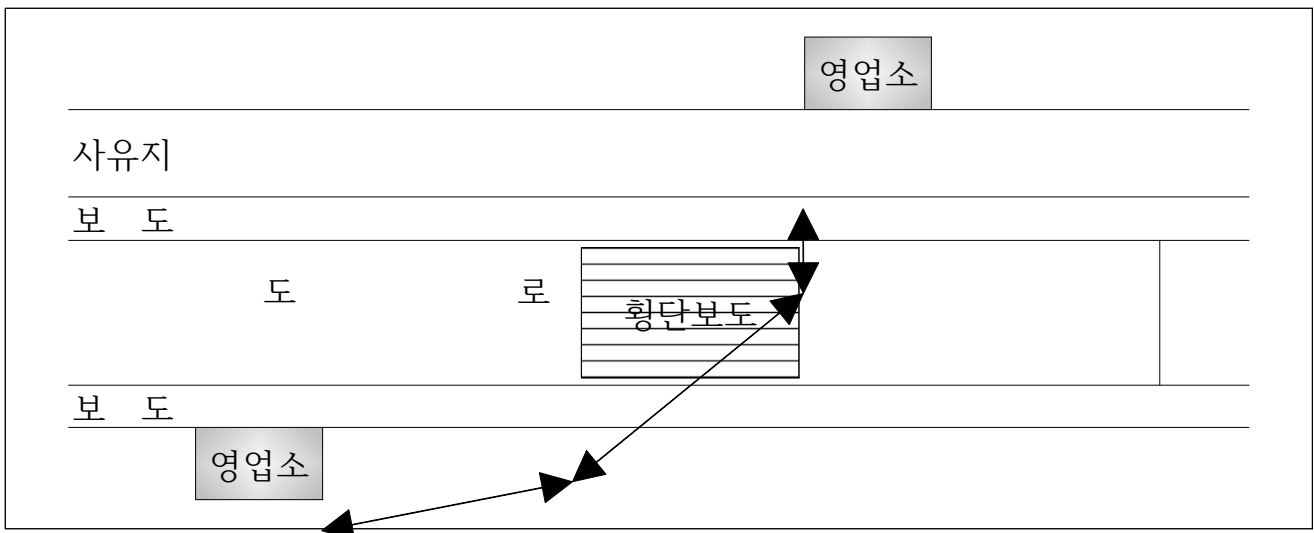
2)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바깥쪽에 위치한 영업소간 거리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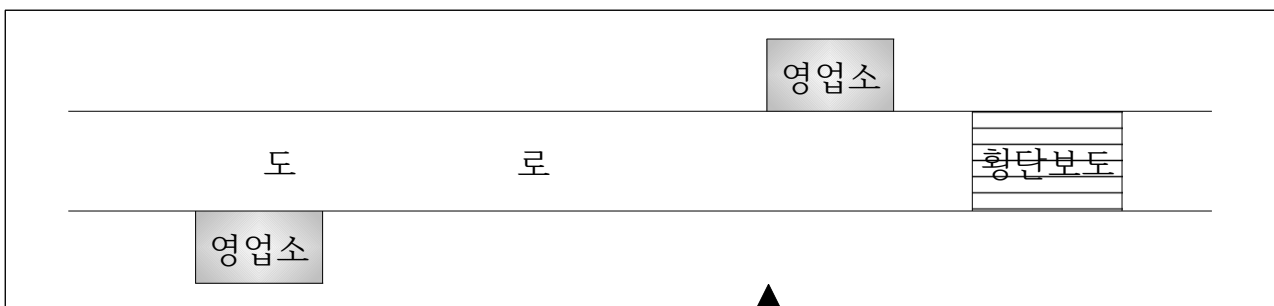
3)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안쪽에 위치한 영업소간 거리측정



4) 사유지인도와 보도가 있는 점포간 거리 측정



5)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영업소간 거리측정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지방권자의 판단과 결정에 의한다.

관계 법령 발췌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한 후 소매인 지정신청을 접수하고,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한다.

1.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3.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공고에 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되, 지정신청의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7조의3(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3. 그 밖에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로서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

②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2.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장 및 장소의 범위, 영업소 사이의 거리 및 해당 거리의 측정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소매인지정의 취소 등) ①법 제17조제1항제7호 단서에서 “미달하게 된 사유가 당해 소매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시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도로형태가 바뀔에 따라 제7조의3에 따른 영업소 간 거리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삭제
3. 그 밖에 소매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법 제17조제2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30일 이상을 말한다. 다만,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어 제14조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완성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규칙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한다.

1. 소매인이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2. 소매인이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에 촬영된 영상

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3. 소매인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⑤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항 제

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소매인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⑥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3 제2호 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에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기준(제11조제6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기간·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 등이 경미하여 담배판매업 등 담배사업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위반 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담배소매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의 동기·내용·기간·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영업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기간을 늘릴 수 있되, 영업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 법령	영업정지기준	
		1차	2차
가.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1호	3개월	6개월
나. 법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2호	1개월	3개월
다.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3호	2개월	4개월
라.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4호	3개월	6개월
마.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담배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5호	7일	1개월
바.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6호	7일	1개월
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7호	7일	1개월
아.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제7조의3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소매인이 담배진	법 제17조제2항제8호	경고	1개월

열장 또는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한 경우			
자.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제8조를 위반하여 소매인이 승인을 받지 않고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8호	15일	1개월
※ 비고: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최근 5년간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제2호 개별기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소매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시행규칙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골목형상점가 목적(안 제1조)
- 나. 골목형상점가 지정 세부기준(안 제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 세부기준) 「인천광역시 검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이라 함은 밀집도의 기준으로 별표의 비율을 충족해야 한다.
2.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이란 소상공인 점포들이 입점해 있는 점포 면적을 말한다.
3. 30개 이상 점포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의 등록 제한업종 중 사행성, 청소년 유해업소, 담배 및 주류 도매업 등 관련 법과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은 제외한다.
4. 도로를 사이에 둔 인접상권의 경우에는, 도로폭이 50미터 이상이면 분리된 상권으로 인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1개의 상권으로 본다.

제3조(지정 신청서 및 첨부서류) ①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 구성되어야 한다.

②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정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조례 제4조제1호에 따른 소상공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지정서 발급)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지정 변경 신청) 지정 후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9. 10.>

등록 제한업종(제9조의16제1항 관련)

표준산업분류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
46107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331	주류 도매업
46463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6492	귀금속 도매업
46722	귀금속광물 도매업
47231	주류 소매업
4764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59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전자상거래 소매업
47993	다단계 방문판매
5621	주점업
58122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개발 및 공급업
63999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71531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7639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8462	연금업
855	일반교습학원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221, 91222, 91229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	기타 gambling 및 베팅업
9612	증기탕 및 안마시설소
96999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별표]

면적당 점포수(제2조제1호관련)

구분	기본	1.5배	2배	A배
면적	2,000㎡	3,000㎡	4,000㎡	2,000㎡ × A
점포수	30개	45개	60개	30개 × A

[별지 제1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골목형 상점가 개요	골목형상점가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 별지 기재 가능)			
	규모	영업장 총면적: m ² , 점포 수: 개		
	상점가 외부형태	☐ 상가건물형 상점가 ☐ 가로형 상점가		
상점가 건물구조	상점가 건물형	층 :	층 (지하 :	층, 지상 :
	가로형	건물수 :	개	층)

상인 조직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사무실)	전화번호 (사무실)
	설립일	회원 수

편의시설 (※ 해당하는 경우 기재)	공동화장실: 개, 공동주차장: m ² , 기타:

「인천광역시 검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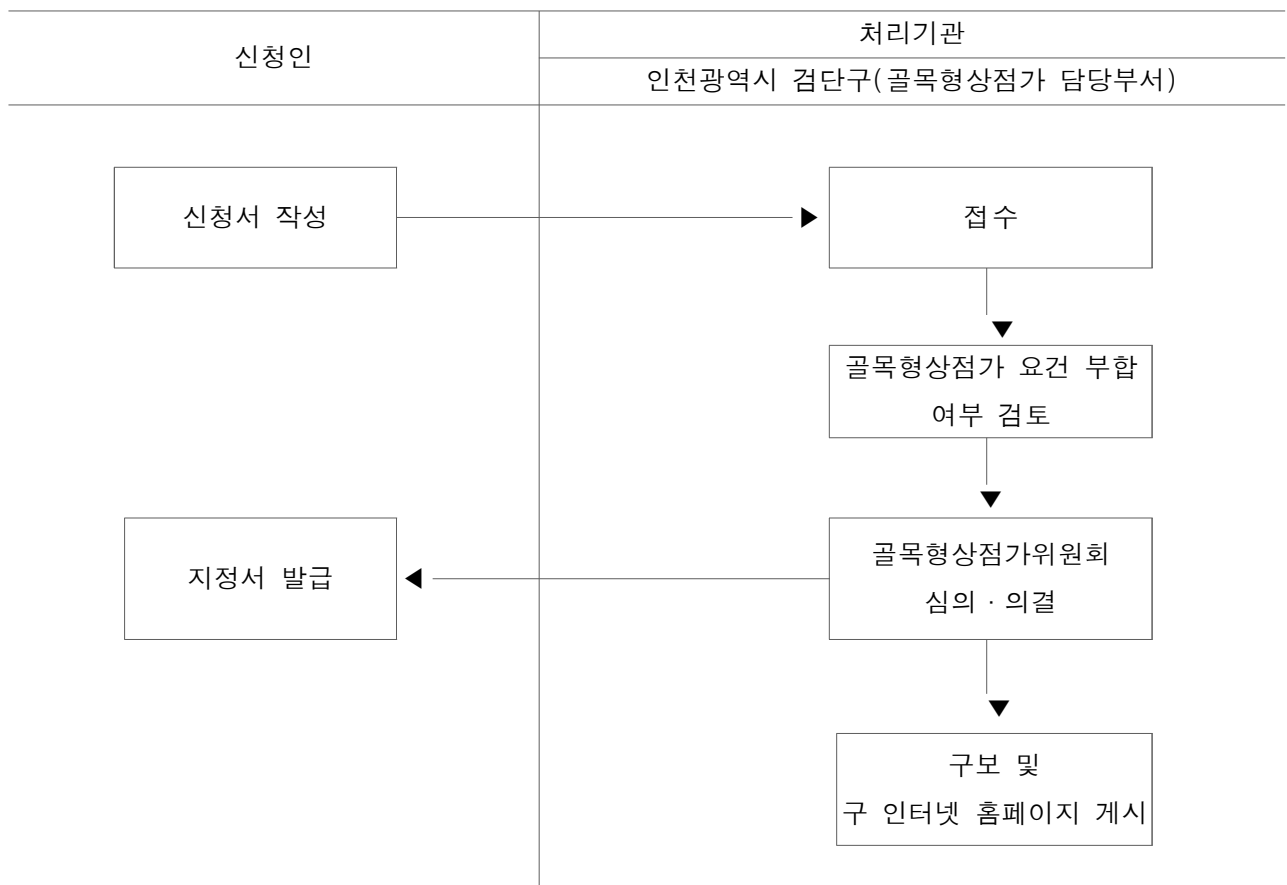
첨부서류	1.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에 대한 상인 동의서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받으려는 구역 안의 상인 명부 1부 5.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받으려는 구역 안의 상인 소상공인 확인서 각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2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동의서

(※ 상인회명)가 (※ 상점가구역)을

「인천광역시 검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점 포 명				
② 점 주				
③ 생년월일				
④ 주 소				
⑤ 업종 및 면적	업종		면적	m ²
⑥ 연 락 처	점 포			
	휴대폰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1. 골목형상점가명:

2. 대 표 자 성 명 :

3. 소 재 지 :

4. 규 모 : 영업장 총면적 m², 점포수 개

「인천광역시 검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직인

[별지 제4호서식]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골목형 상점가 개요	골목형상점가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개설일	
	규모	영업장 총면적:		㎡, 점포 수: 개	
	업종별 점포 수				
신고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인천광역시 검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인천광역시 검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영업시간의 제한 및 의무휴업일 추진 시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인천광역시 검단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영업시간 제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2. 의무휴업일: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

② 조례 제13조제1항 단서를 적용받고자 하는 대규모점포 등은 신청일 이전 연간 총매출액과 해당 농수산물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과세증명서 등을 말한다)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증빙 서류를 제출한 대규모점포 등이 그 다음 년도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대규모 재난·재해의 발생으로 생필품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 할 때

에는 한시적으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유보(留保)할 수 있다.
제3조(처분의 사전통지) 구청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명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②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들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성과분석(안 제4조)
- 나. 변경신고 및 변경승인(안 제5조)
- 다. 융자금의 조기회수(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자의 범위) ① 업체별 융자한도 및 대출 기간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② 융자지원을 받은 기업은 융자금의 전액 상환 시까지 재융자를 받을 수 없다.

제3조(실적서 제출 등)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금 지원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회사 가동상황 등을 매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실적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중점 점검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정상 가동 여부
2. 지원 자금 적정사용 여부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성과분석)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점검 후 점검 결과에 대하여 성과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변경신고 및 변경승인) ① 선정업체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1. 상호

2. 공장 소재지

3. 대표자(법인 기업의 대표이사 변경과 상속에 의한 개인기업의 대표자 변경에 한한다)

4. 대출조건(대출금액, 대출 기간 등)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 신고 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변경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2.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사유가 발생한 업체에 대하여는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변경 신고 또는 변경 승인 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 촉구 또는 경고할 수 있다.

제6조(선정취소) 선정된 기업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행 촉구 또는 시정요구와 경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 개시 또는 경매 절차 개시 통지를 받은 자

3. 휴·폐업 중인 자로서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4. 담보 제공(신용보증서 포함)이 불가능하며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5. 기타 계획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융자금의 조기회수) 융자지원을 받은 기업이 제6조 규정에 따라 선정이 취소되었을 경우 또는 융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출기간에도 불구하고 융자금의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 회수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변경 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대출금액		
	대출기간		
	대출은행		
	대출신청기한		

「인천광역시 검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 제안이유

2026. 7. 1. 검단구 출범으로 인한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청년기업 인증, 청년기업 인증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안 제3조)

다. 인증서의 발급 등, 인증서의 수정발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안 제5조)

라. 유효기간의 만료 및 재인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년기업 인증)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청년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이 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청년기업 인증방법)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청년기업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청년기업 인증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사본

② 구청장은 청년기업 인증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년기업 현장실사 결과서에 의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실사 후 청년기업 인증을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청년기업 인증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인증서의 발급 등) ① 구청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인증한 청년기업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년기업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인증 발급번호는 인증관리대장에 작성 후 인증 순서에 따라 부여한다.

제5조(인증서의 수정발급) ① 인증서를 발급받은 청년기업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수정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업체명이 변경된 경우
2.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3. 주업종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기업의 대표자가 수정발급을 요청한 경우,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의 현지 재실사를 거쳐 인증서를 수정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정발급한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인증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6조(유효기간의 만료 및 재인증) ① 구청장은 청년기업 인증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만료 사실을 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청년기업은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부터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고, 재인증한 경우에는 종전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유효기간을 재산정하여 인증서에 기재한다.

③ 재인증에 따른 절차는 제4조에 따른다.

제7조(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청년기업 []인증
[]변경인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업종
	대표자	형태 [] 법인 [] 개인	
	주소 (전화번호:)		

주생산품목

사업개시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청년기업의 []인증 []변경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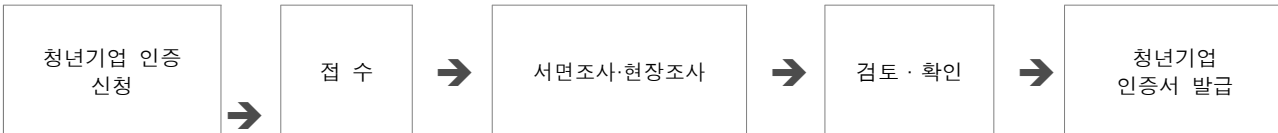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검단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인증 신청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사본 2. 변경인증 신청의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별지 제2호서식〕

청년기업 현장실사 결과서

현장실사일	년	월	일		
신청인	기업명			대표자	
	주소				
	[우]				
	설립(개업)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청년대표자 취임일		생산품목		업종(표준산업분류)
세부의견					
조사결과	적격[], 부적격[]				

현장실사자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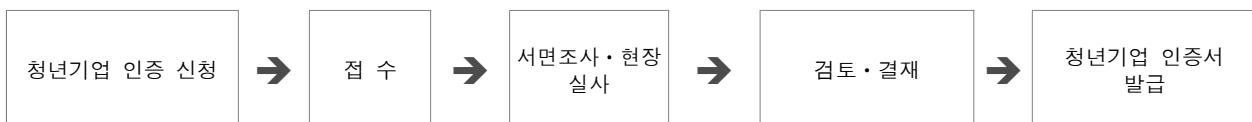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청년기업 인증을 위한 현장조사 실시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별지 제3호서식〕

발급번호: 제 호

청년기업 인증서

1. 기 업 명:
2. 사업자(법인)등록번호:
3. 주 업 종:
4. 대 표 자:
5. 주 소(본점):

<지점현황>

000지점:

유효기간: . . ~ . . .

위 기업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청년기업에 해당함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검단구청장

직인

* 대표자의 변경 등으로 청년기업의 요건에 맞지 않게 되는 등 조례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이내라도 청년기업의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검단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 조례 제3조의 특별회계 세입, 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재무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업무 담당 국장
2.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업무 담당 과장
3. 지출원 및 수입금출납원: 재무·회계·지출업무담당
4. 분임지출원 및 분임수입금출납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담당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안

1. 제안이유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인천광역시 검단구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대한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인천광역시 검단구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근거 법률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시설기준 적용특례 적용 대상 및 제외 범위(안 제3조~제4조)
- 다. 업종별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영업신고 관련 사항(안 제6조)
- 마. 업종별 시설기준 특례 규정(별표)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담당관, 가정보육과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말한다.
2.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으로 한정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영업을 하려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4조(적용제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개인 및 일반단체 등에서 사적인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 행사 또는 대회인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5조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제6조 따라 정한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시설기준) ① 제3조에 따른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별표 1
2. 식품접객업: 별표 2

② 제1항의 시설은 건축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6조(영업신고 등) ① 제3조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전시 또는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2. 영업장 배치도면 1부.

② 이 규칙을 적용받아 영업할 경우 그 행사기간에만 기간을 정하여 조건부로 영업신고를 수리한다.

③ 구청장은 영업신고 처리 시 영업시간 및 영업장소 등에 대한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으며, 영업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적용특례(제5조제1호 관련)

1. 영업장

가. 영업장은 전시장 및 행사장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나.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식품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작업장

가. 작업장은 먼지 등 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에서 발생한 오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물을 사용하지 않고 식품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1명의 영업자가 같은 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 등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작업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의 위생적 제조·가공·판매를 위한 냉장 및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냉장 및 냉동이 필요하지 않거나 식품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다만, 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인근에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2]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제5조제2호 관련)

1. 영업장

- 가. 영업장은 전시장 및 행사장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 나.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 다.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라. 영업장 내 손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설·설비 또는 기구 등을 설치해야 한다.

2. 조리장

- 가. 조리장 바닥은 먼지 등 이물이 날리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조리장 내에서 발생한 오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나.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리·세척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조리장 직선거리 10m이내에 위생적인 세척시설이 있는 경우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 조리장에는 음식물의 재료(원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도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다만, 수도관과 직접 연결하지 못할 경우 1일의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식수탱크를 갖추어야 한다.)

관계법령 발췌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과 같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시설기준) 제2호 사목

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5)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또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시설기준) 제2호 사목(시설기준) 제8호 가목 5)에 가)

5)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가)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15., 2011. 3. 30., 2013. 3. 23., 2013. 12. 30., 2016. 1. 22., 2017. 12. 12., 2021. 12. 30., 2022. 6. 7., 2023. 7. 25.>

1. 생략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3. ~ 7. 생략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바.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 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9. 생략

☐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3. 30., 2013. 3. 23., 2015. 2. 3.>

1.~3. 생략

4. “전시시설”이란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의 개최에 필요한 시설과 관련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6. 생략

인천광역시 검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설치목적(안 제1조)
- 나. 용자사업(안 제2조 ~ 안 제6조)
- 다. 식품진흥 기금의 세부 사용범위(안 제7조)
- 라. 용자 사후관리 등(안 제8조 ~ 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자신청) 인천광역시 검단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용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기금 용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시설개선 용자사업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시설개선 용자사업 이행확약서(별지 제3호서식)
4.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3조(우선순위) 「인천광역시 검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위를 따른다.

1. 식품제조업소 및 식품가공업소
2. 모범음식점
3. 좋은식단실천 우수업소
4.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업소
5. 식품접객업소
6. 건강기능식품업소

제4조(용자대상자 실태조사) 조례 제16조에 따른 용자신청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용자결정 통보)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기금용자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용자조건 및 용자금액 등을 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용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용자한도 및 상환조건)

① 업종별 용자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업소 및 식품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2.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상기의 용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1천만원 이내
3.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2,000만원 이내
4.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업소 : 시설개선자금 및 도입자금 3억 이내

② 용자금의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자금액이 2천 5백만원 이상 : 1년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2. 용자금액이 2천 5백만원 미만 : 3년 균등 분할 상환

③ 시설개선자금의 용자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을 따른다.

④ 구청장은 용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전이라도 용자금 잔액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설개선자금을 용자받은 후 3개월(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업소인 경우 6개월) 이내에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거나 용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용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영업장 폐쇄)된 경우
3.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다만,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하여 채무승계가 인정된 경우를 제외한다)
4. 모범음식점이 시설개선자금을 용자받은 후에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제7조(기금의 사용범위) 조례 제5조의 사업에 사용되는 기금의 범위는 기금의 기본적립 기금으로 5억원까지 조성한 후 그 이자금액을 포함한 기본적립기금 이상의 조성금액 범위에서 익년도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제8조(대출금리) 기금의 대출금리는 별표를 적용한다.

제9조(시설개선 완료신고 및 현지확인) 시설개선 자금을 용자받은 업소는 시설개선이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시설개선 완료신고서(별지 제6호서식) 및 기타 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담당 공무원은 시설개선 완료확인 현지조사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 구청장은 용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기금용자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용자대상자심의서 등) 조례 제7조에 따라 간사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용자대상자심의서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회계공무원 근무기간 명세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조성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규칙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별표】

용자조건 및 범위

1. 응 자 조 건

(단위 : 천원)

구 분	대출한도	이자율 (%)	대출 기간	상환방법	담보 조건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50,000	2%	4년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은행 여신 규정 준수
화 장 실 개 선 자 금	10,000	1%	3년	3년 분할상환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20,000	2%	3년	3년 분할상환	
식품제조업소 및 식품가공업소 시 설 개 선 자 금	50,000	2%	4년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업소 시설개선자금 및 도입자금	300,000	2%	4년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2. 용자범위

-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영업시설개선 자금
 - ※ 단, 유흥주점, 단란주점은 조리장 및 화장실 시설개선외의 경우만 가능
- 화장실 개선자금 :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화장실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로서
 용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1천만원 범위내 가능
-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모범음식점 지정을 받은 업소로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영업시설개선 자금
- 식품제조업소 및 식품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 개보수 또는
 위생시설 장비구입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업소 시설개선자금 : 위생시설향상을 위한 시설 개보수 또는 증설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도입자금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지정 받을 목적으로 시설
 개보수 자금

【별지 제1호서식】

식 품 진 흥 기 금 용 자 신 청 서																								
신 청 인	①대 표 자 성 명		②생년월일																					
	③업 소 명		④전 화 번 호																					
	⑤주 소 (소 재 지)		⑥사업자등록 번 호																					
사업체규모	⑦영업장총면적	m ²	⑧자 산 총 액	천원																				
대 상 업 종	⑨업 종	· 식품접객업소 · 모범음식점 · 식품제조가공업소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지정업소 및 도입준비업소 · 기 타(화장실)																						
자 금 용 자	⑩실소요 금액	⑪용자신청금액	⑫ 비 율 (⑪/⑩)																					
신 청 내 역			%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검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용자를 신청합니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신청서류확인</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지 정 은 행</td> </tr> <tr> <td style="width: 15%;">담당자</td> <td style="width: 15%;">담 당 과 장</td> <td style="width: 15%;"></td> <td style="width: 15%;">은행명 (자점명)</td> <td style="width: 40%;"></td> </tr> <tr> <td></td> <td></td> <td></td> <td>대 출</td> <td>가능, 불가</td> </tr> <tr> <td></td> <td></td> <td></td> <td>확인자</td> <td>(인)</td> </tr> </table> 신청인 (인) (인)					신청서류확인			지 정 은 행		담당자	담 당 과 장		은행명 (자점명)					대 출	가능, 불가				확인자	(인)
신청서류확인			지 정 은 행																					
담당자	담 당 과 장		은행명 (자점명)																					
			대 출	가능, 불가																				
			확인자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		1. 시설개선용자 사업계획서 1부. 2. 시설개선 용자사업 이행확약서 1부. 3. 영업허가(신고)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각1부.																						

【별지 제3호서식】

시설개선 용자사업 이행확약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식품진흥기금 용자계획에 따라 영업장
시설개선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용자 받을 본인은 다음사항을 준수 하겠습니다.

1. 개선자금을 용자받은 후 ☐ 3개월 이내에 영업시설을 개선하겠으며
☐ 6개월
용자금은 지정된 사업 이외의 다른용도에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 다음의 경우에는 귀청에 사전신고 및 용자금의 전액을 지체없이 상환하겠습니다.
 - ① 시설개설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용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② 용자받은 업소가 폐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경우
 - ③ 채무승계를 하지 아니한 영업자 지위승계의 경우
(단, 영업자 지위승계시 가족일 경우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모범음식점이 지원자금을 용자받은 후에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 된 경우.
3. 영업장 시설개선 완료후 15일 이내에 시설개선완료신고서를
귀청에 제출하겠습니다.
4. 사업수행상 제반사항에 대하여 귀청의 지시 및 정책에 적극 호응
하겠습니다.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귀청의 어떠한 행정조치나 당해 금융
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용자금의 회수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용자신청업소 현지조사서				
용자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업소현황	업소명		허가번호	
	업종		허가일자	
시설규모	대지		건물규모	
	영업장면적	m ²	구조	
기타(좋은식단 실천여부등)				
조사자의견	(사업의 타당성 등 구체적 기재)			
	[첨부] 시설개선 전 사진			
위와 같이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용자신청자에 대하여 현지 조사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소속 직 성명 (인) 담 당 : 소속 직 성명 (인)				

【별지 제6호서식】

시 설 개 선 완 료 신 고 서					
신고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대출일자			대출금액		
용자 및 상환조건	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연 %)				
용자금의 용도	영업장 및 위생시설 시설개선 (), 화장실시설개선()				
시 설 개 선 내 역					
공 사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개월)				
개선시설명					
착 공 일 자	년 월 일				
미착공시 사유	* 구체적으로 기재				
완 공 일 자	년 월 일				
시공업체명					
인천광역시 검단구 식품진흥기금 용자지침에 의거 사업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첨 부 서 류	1. 시설개선 완료사진(규격: 3×4cm) 2. 공사계약서 등 기타 증빙서류				

(뒷면)

시설개선 완료후 사진(완료일 :)

(업 소 전 경)

(개 선 완 료 시 설)

※시설개선별 구체적(명칭별)으로 작성

【별지 제7호서식】

시설개선 완료확인 현지조사서

1. 용자업소 현황

군·구	업 종	업 소 명	대출자	소 재 지	용자용도	용자금액
						원
						원

2. 시설개선 추진사항

구 분	착공일자	공사완료일	공사비 총액
식품접객업			
식품제조가공업			
화 장 실			

3. 시설개선 이행사항

구 분	시설개선 유무		미 이 행 사 유 (*구체적으로)
	이 행	미이행	
식품접객업			
식품제조가공업			
화 장 실			

인천광역시점단구 식품진흥기금 용자지침에 의거 시설개선 완료확인을 위하여
현지조사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담당자)	직급 :	성명 :		(인)
(담 당)	직급 :	성명 :		(인)
확인자(과 장)	직급 :	성명 :		(인)

【별지 제8호서식】

관리번호 제 호			
식품진흥기금 용자 사후관리 카드			
영업신고번호		업 종	
업 소 명		전 화 번 호	
대 표 자		<u>생 년 월 일</u>	
소 재 지			
시설규모(면적)	총면적 : m ² / (영업장: m ² , 조리장: m ² , 화장실: m ²)		
모범음식점지정	유 · 무	지 정 일	
용 자 신 청 일		신 청 금 액	
대 출 일 자		대 출 금 액	
상 환 기 간	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	용 자 용 도	
식 품 진 흥 기 금 시 설 개 선 이 행 실 태 점 검 사 항			
구 분	점검일자	점검결과	점검자(직,성명)
개 선 전			
개 선 후			
금융기관명	담당부서	담 당 자	전화번호

【별지 제9호서식】

용 자 대 상 자 심 의 서

1.신청업소 현황

신고번호	업 종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생년월일	연락처
신청일		공사소요액	총 백만원 (* 신청액 : , 자부담 :)			

2. 용자대상자 선정 확인사항

시 설 개 선 용 자 심 의 내 용	심의결과
1. 휴·폐업 여부	
2. 용자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퇴·변태영업행위 행정처분 여부	
3. 용자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2회이상 영업정지 행정처분 여부	
4. 용자한도액을 용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었는지 여부	

3. 신청서류 확인사항

신청서류	사실확인	적	부
1. 식품진흥기금용자신청서			
2. 시설개선용자사업계획서			
3. 시설개선용자사업이행확약서			
3. 공사견적서			
4. 영업허가(신고)증사본			
5. 사업자등록증사본			

20__년 월 일

심의위원장 (실·과장) 직 성명 (인)
 심 의 위 원(주무담당) 직 성명 (인)
 심 의 위 원(실무담당) 직 성명 (인)

【별지 제10호서식】

식품진흥기금 회계공무원 근무기간명세서

담당업무	부 서 명	직 위	직 급	성 명	근무기간	현근무처

※ 담당업무 : 기금운용관, 기금지출원, 담당공무원으로 구분 기재

※ 현근무처 : 보직변경의 경우 현재 근무하는 부서 또는 팀명 등 구체적 기재

※ 작성기준일 : 지침 시달 시부터 적용하여 지속적으로 연계관리

관계 법령 발췌

□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 3. 13.>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0. 3. 26., 2015. 5. 18., 2016. 12. 2.>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 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용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4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이 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 한정한다) 상환액의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용자 사업
 - 7의2.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 ④ 기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운용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기금사업) ① 법 제89조제3항제8호에 따라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1. 4. 22., 2014. 7. 28., 2014. 11. 28., 2021. 2. 2., 2024. 7. 23.>

1. 식품의 안전성과 식품산업진흥에 대한 조사·연구사업
2. 식품사고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3. 식중독 예방과 원인 조사, 위생관리 및 식중독 관련 홍보사업
4. 식품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5. 식품위생과식품산업 진흥을위한 전산화사업
6. 식품산업진흥사업
7. 시·도지사가 식품위생과 주민 영양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에 연구를 위탁한 사업

8.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활동에 대한 지원
 9. 제18조제5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
 10.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실 설치 지원
 11.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12. 법 제48조제1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는 영업자와 이를 지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13.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자율지도원의 활동 지원
 1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제6항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지키는 영업자와 이를 지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1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의 지정 및 운영
 1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17.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비용 보조
 1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준하는 것으로서 식품위생, 영양관리 또는 식품산업 진흥 등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2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는 사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해

당 사업의 추진현황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3. 3. 23.>

제62조(기금의 운용)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의 용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계정을 설치할 은행을 지정하고, 지정한 은행에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재무관에게 지출원인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음식문화거리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 (안 제1조, 안 제2조)
- 나.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행계획 수립) 「인천광역시 검단구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음식문화거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2. 사업의 목표 및 추진계획
3. 관련 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음식문화거리 지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조(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심의)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단체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문화거리 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문화거리 지정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음식문화거리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음식문화거리 지정 심의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음식문화거리 지정 신청을 한 상인단체 대표자에게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음식문화거리 지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음식문화거리 지정 심의기준(제3조제3항 관련)**□ 항목별 기준**

항 목	심 의 기 준	배 점
음식점 40개소 이상 집단화	• 예정지구에 소재한 음식점은 40개소 이상 집단화가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 40개소 이상: 16점 - 50개소 이상: 18점 - 60개소 이상: 20점	20
자치기구 (상인단체) 구성 운영	• 관할 구청 또는 세무서에 등록된 번영회, 상인단체 등 자치기구가 있다. - 운영기간 1년 미만 또는 미등록: 6점 - 운영기간 1년 이상 : 8점 - 운영기간 2년 이상 : 10점	10
상인단체 등록 음식점 수	• 상인단체 등록 음식점 수는 40개소 이상이어야 한다. - 40개소 이상: 6점 - 50개소 이상: 8점 - 60개소 이상: 10점	10
음식문화거리 신청 동의여부	• 예정지구 거리 상인회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	10
거리의 환경	• 거리는 쾌적하고,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다.	10
거리의 특색	• 거리를 대표할 수 있는 특화된 음식이 있다.	10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의 적정성	• 건전한 음식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내용 및 사회 공헌, 주민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30
	가. 국가 정책에 따른 건전한 음식문화 조성 방안의 적정성	
	나. 주민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자체 계획 수립 여부	
	다. 주민 친화 및 사회 공헌 방안의 적정성	

비고.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말한다.

□ 심의 기준

- 항목별 득점 비율은 6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 심사자의 전체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음식문화거리 지정 신청서(제3조제1항 관련)

신청인 (상인단체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주소		전화번호	
	단체명			

신청사항	음식문화거리명	
	위치(소재지)	
	예정지구 거리 음식점 수	
	예정지구 거리 상인 수	
	신청 동의한 상인 수	

「인천광역시 검단구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상인단체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상인단체 동의서(사업비 자부담 동의 여부 포함)
- 상인단체의 회칙(정관) 및 명부(업종, 업소명 포함)
- 음식문화거리 예정 위치도(입구 점포 및 출구 점포 표시 및 직선거리 기재, 음식점 위치 표시)
-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서(신청 배경 및 목적, 활성화 계획 등 서술)

[별지 제2호서식]

음식문화거리 지정 관리대장(제3조제4항 관련)

거 리 명		신청당시 업소수	
위 치 (소재지)			
지정일자		지정번호	
상인단체 대표자명		전화번호	
기 타 (변동·참고사항)			
음식문화거리 사진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24. 1. 2.]

☐ 식품위생법

제89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营业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 이하생략

제89조(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중간생략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 이하생략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기금사업) ① 법 제89조제3항제8호에 따라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개정 2011. 4. 22., 2014. 7. 28., 2014. 11. 28., 2021. 2. 2., 2024. 7. 23.> ~ 중간생략

6. 식품산업진흥사업 ~ 이하생략

인천광역시 검단구 도로관리 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칙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심의회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나. 도로관리심의 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다.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1년 예산에 0.014억원 반영되었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인천광역시 검단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도로관리 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관내 도로에 시행하는 각종 도로굴착사업을 사전에 심의·조정하여 도로굴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적절한 도로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로법 시행령」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도로관리 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 검단구 도로관리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따른다.

제3조(심의조정대상) 심의회의 심의·조정 대상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굴착공사로 한다.

제4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로관리심의회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관리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로관리청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
2.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소속 직원
3. 토목·도시계획·교통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5.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제5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도로굴착 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대책
3. 도로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4.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도로굴착관련 중복굴착 시행방지 및 조정
7. 제1호부터지 제6호까지 외의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제6조(소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에 부의할 안전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내용 및 기술적인 검토를 위하여 소심의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 소심의회 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안전에 대한 실무자로 구성하되 필요시 주요 지하시설물 관리자도 포함할 수 있다.

제7조(회의소집 및 운영) ① 심의회는 매 분기 초에 소집한다. 다만, 1/4분기는 2월 중에 소집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가 도로굴착사업을 심의·조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설명을 들어야 하며, 특히 규칙 제5조제4호에 따른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조정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④ 심의회는 도로굴착사업을 심의·조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로

부터 자료를 제출케 하거나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심의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도로굴착 사업계획서를 매분기 초에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설계도면,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와의 협의결과, 교통소통대책, 사후관리계획(사업시행자가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인 경우에 한함)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조정 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심의·조정한 결과를 도로굴착 관련기관 및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조정사항 준수) 도로굴착 관련기관의 장은 심의회에서 심의·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안건
3. 참석위원(서명필)
4. 심의조정 내용

제12조(현지조사) 심의회는 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 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도로법 시행령

제62조(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등) ①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거나 대행시킨 경우에는 그 수임자 또는 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제63조에서 같다)에 도로관리심의회(이하 “관리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도로굴착이 수반되는 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
3. 도로굴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제63조(관리심의회 구성) ① 관리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관리심의회 위원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로관리청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고속국도: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이하 “한국도로공사”라 한다)의 상임이사 중 한국도로공사의 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일반국도: 지방국토관리청장
3. 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의 도로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특별시장·광역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

4. 시도·군도·구도: 해당 특별자치시·시·군 또는 자치구의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

③ 관리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로관리청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
2.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소속 직원
3. 토목·도시계획·교통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5.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관리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인 관리심의회의 위원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본다.

제64조(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준용) ① 관리심의회의 위원장·부위원장의 직무 및 직무 대행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② 관리심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③ 관리심의회 위원의 해임·해촉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④ 관리심의회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등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 “위원회”는 각각 “관리심의회”로, “심의·의결”은 각각 “심의·조정”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관리청”으로 본다.

제65조(관리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관리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관리심의회가 제6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조정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굴착공사시행자 및 해당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제66조(소심의회) ① 관리심의회는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등을 심의·조정할 안전대책소심의회와 도로의 중복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시기 등을 심의·조정할 중복굴착소심의회(이하 “소심의회”라 한다. 이하 같다)를 둘 수 있다.

② 소심의회 위원장은 관리심의회 위원장이 겸하고, 소심의회 위원은 관리심의회 위원 중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소심의회에는 제63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소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관리심의회가 위임한 사항 중 소심의회 심의·조정을 거친 사항은 관리심의회 심의·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67조(관리심의회 등의 운영세칙)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심의회 및 소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1. 제안이유

2026. 7. 1. 검단구 출범으로 인한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종합계획 수립(안 제1조~제2조)

나. 지원제외(안 제3조)

다. 보조금 교부(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합계획 수립)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 및 지원시기
2. 홍보 및 신청절차
3. 집행 및 정산 방법

제3조(지원제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수목구입, 식재사업 및 전지사업
2. 물품의 신규구입 및 일상적인 운영비
3. 지원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4.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전면 도색
5.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아파트
7. 그 밖의 공동주택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 사업

제4조(사업의 조사 선정)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택관리 담당 부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각 사업 관련 부서의 장에게 현장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현장조사를 의뢰받은 부서의 장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와 공사 대상물량 및 공사비 산출의 적정 여부 등을 조사하여 주택관리 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주택관리 담당 부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 및 공동주택관리주체(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를 선정 한 후 지원대상에 대해 통보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는 입주민에게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자의 계약) ① 지원대상자가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다. 다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공사계약 결정 및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5일 전에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등에 공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단지별 관리규약 규정에 따른다.

제6조(보조금 교부)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단, 조례 제4조제2항제12호에 따른 긴급 보수·보장이 필요한 공동주택(부대시설 포함)은 총사업비의 7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사업의 결정을 통지받은 지원대상자는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보조금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공사 집행 및 정산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또는 대표자 명의(비의

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통장으로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제8항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다만, 두 기관이 위탁관리자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위탁자로 선정된 기관은 지정 기일까지 인천광역시 검단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위탁결정은 무효로 하며 바로 다음 순위자와 별도 계약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 위탁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액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소규모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거주자는 안전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위탁관리자는 안전점검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서

2. 안전점검결과보고서

⑤ 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에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안전점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지원대상자는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자체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원대상자는 지원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잔액이 발생한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목적, 사용여부 및 보조금의 집행 상황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관계 장부 열람과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장하여 확인 및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확인 및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기준

(제6조 관련)

□ 연간 보조금 지원 상한금액

총 사업비	지 원 기 준		비 고
	의무관리	임의관리	
7백만원 이하	전 액	전 액	
7백만원 초과~ 2천만원이하	총사업비 x 75/100범위내	총사업비 x 85/100범위내	
2천만원 초과~ 3천만원이하	총사업비 x 70/100범위내	총사업비 x 80/100범위내	
3천만원 초과~ 4천만원이하	총사업비 x 65/100범위내	총사업비 x 75/100범위내	
4천만원 초과~ 5천만원이하	총사업비 x 60/100범위내	총사업비 x 70/100범위내	

※ 총사업비가 5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단지별 보조금은 의무관리 단지는 3천만원, 임의관리 단지는 3천5백만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교부 신청서														
신청인	공동주택 단 지 명					동 수								
	주 소					세 대 수								
	연 락 처	집 또는 사무실 : 핸드폰 :				사용검사일 (준공일)								
신 청 내 용														
구 분	사 업 개 요			보조금 결정		소요 예산 (단위 : 천원)								
	사 업 명	착 공 예정일	완 공 예정일	통보액	산출비 율 (%)	계	보조금 신청액	자 체 부담액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인천광역시검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보조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은 행 명</th> <th style="text-align: center;">계 좌 번 호</th> <th style="text-align: center;">예 금 주</th> </tr> </thead> <tbody> <tr> <td style="height: 40px;"></td> <td></td> <td></td> </tr> </tbody> </table> 20 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장 : (인)									은 행 명	계 좌 번 호	예 금 주			
은 행 명	계 좌 번 호	예 금 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보조금 입금통장 사본(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 공동명의) ※ 소규모 단지로 인해 공동명의 통장이 없을 시는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2. 공사 전·중·후 사진														

[별지 제2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정산서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계 획				사 업 집 행			반 납 액 ① - ③
	사 업 명	계	① 보조금 교부액	② 자 체 부담액	계	③ 보조금 집행액	④ 자 체 부담액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인천광역시검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제1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공동주택 명 :

입주자대표회장 :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공사내역서 및 관련 도면
- 사업실적보고서(붙임3-1)
- 준공검사조서(붙임3-2)
- 준공계(시공자 작성)
- 지출증빙서류(계좌이체 통장사본 등/대표자통장)
-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사업 추가서류
 - 설치검사 신청서와 설치검사 합격증, 안전검사기관이 발급한 안전인증서,
 -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증서 등

관계 법령 발췌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8. 1. 3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6. 8. 31., 2020. 12. 8.>

③ 시·도지사는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1. 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2. 법 제70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17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을 법 제8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이하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라 한다)에 위탁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32조에 따른 방법교육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관할 경찰서장 또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32조에 따른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관할 소방서장 또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 안

전교육을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20. 12. 1.>

⑨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64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를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한다.

⑩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단체,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 제안이유

2026. 7. 1. 검단구 출범으로 인한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보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다. 보상금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2026년 본예산 편성 시 반영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예산법무과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시행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중 보상금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현수막, 벽보, 전단의 정비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

② 접착제를 사용하여 완전 접착된 벽보의 경우 인천광역시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지역, 장소의 벽보를 정비하였을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대상) 현수막, 벽보, 전단의 정비보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검단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20세 이상의 자로 한다.
- ② 검단구의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각 동사무소 및 관내에 지회를 두고 활동하는 민간단체

제5조(보상금 신청절차) ① 제3조제1항의 정비보상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정비한 광고물과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거주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동장은 신청내용과 광고물 종류, 수량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정비보상금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상금 지급시기)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동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보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불법옥외유동광고물 정비보상금 신청 및 지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당해 보상금을 15일 이내에 신청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고 지급결과를 통보해 주어야 한다.

제7조(보상금지급 제외) 현수막, 벽보, 전단의 정비보상금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비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검단구 관내 지역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정비한 경우
2. 정비·철거 실적을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
3. 1인당 1일 보상금 지급액이 30,000원을 초과할 경우.
4. 1인당 월 보상금 지급액이 500,000원을 초과할 경우
5. 예산이 소진 될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일반광고물의 정비보상금 지급기준

광고물 종류	면적(크기)	단위	지급액	비 고
현수막	대형(5㎡이상)	면	1,000원	
	소형(5㎡미만)	면	500원	
	깃발형 현수막	개	300원	
벽보	21cm×30cm초과	매	4,000원	100매 기준지급
	21cm×30cm이하	매	2,000원	100매 기준지급
전단지	규격제한 없음	매	2,000원	500매 기준지급

[별표 2]

접착제를 사용한 광고물의 정비보상금 지급기준

광고물 종류	면적(크기)	단위	지급액	비 고
벽보	21cm×30cm초과	면	500원	1매 기준지급
	21cm×30cm이하	면	250원	1매 기준지급

관계 법령 발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국가와 시·도의 지원 및 시·군·자치구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 나. 기금의 확보 및 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안 제4조)
- 다. 용자의 조건 및 용자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10조)
- 라. 장부의 비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해당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②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단, 인천광역시 검단구 재난

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리 3~5퍼센트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사람(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수탁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제6조(융자신청) ①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부 신청 시 보증인의 자격에 대하여는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제7조(대상자 선정통보) 구청장은 융자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융자결정 통지서를 신청인과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금의 상환) 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 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5. 융자를 받은 사람이 인천광역시 검단구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구청장은 지체 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반환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로 상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구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11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4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5호서식)
3.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용자금 사용계획서

1. 용자신청인

- 주 소:
- 성 명: (인) (전화번호 :)
- 생 년 월 일:

2. 재산보유 및 소득상황

- 재산현황(자가,전세,월세,기타): 원
- 월 소 득: 원
- 기 타:

3. 용자금 사용계획

- 시설물 현황
 - 위 치:
 - 용 도:
 - 면 적:
- 자금구분:
- 세부내역:

4. 자금상환계획

5. 용자금의 반환

용자금을 「인천광역시 검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용자목적 외에 사용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용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융자결정 통지서

1. 융자대상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재난 위험시설	시설명			
	위치			
	조치내용	()정밀안전진단 등 ()긴급대피, 이주		

2. 융자결정내용

자금 용도	총사업 (이주)비	융자 신청액	융자 결정액	융자조건		대출취급 기관
				대출기간	이자	
	만원	만원	천원	년거치 년상환	변동금리 %	

비고) 1. 연체이율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2. 융자신청자는 융자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3.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조기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별지 제4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단위 : 원)

일 자			적 요	수입액	지출액	잔 액	결 재			
년	월	일					담당자	출납원	담당 과장	기 금 운용관

[별지 제5호서식]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

(단위 : 원)

일 자			적 요	수입액	지출액	잔 액	결 재		
년	월	일					담당자	출납원	담당 과장

[별지 제6호서식]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

□ 증식기금계좌 : 금융기관명 - , 계좌번호()

(단위 : 원)

일 자			적 요	회 차	불입액	잔 액	결 재		
년	월	일					담당자	출납원	담당과장

[별지 제7호서식]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

(단위 : 원)

금 용 기관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탁금액	예치기간				결 재		
			예치일	만기일	예치기간	이율(%)	담당자	출납원	담당 과장

[별지 제8호서식]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

(단위 : 원)

금 용 기관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탁금액	예치기간				이 자 수입액	비고	결 재		
			예치일	만기일	예 치 기 간	이 율 (%)			담당자	출납원	담 당 과 장

관계 법령 발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①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안 제2조)

나. 세입(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 제46조, 제47조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 교통, 주차업무 담당 국장
2. 분임징수관: 교통, 주차업무 담당 과장
3. 재무관 : 교통, 주차업무 담당 국장
4. 분임재무관: 교통, 주차업무 담당 과장
5. 채권관리관: 교통, 주차업무 담당 과장
6. 부채관리관: 교통, 주차업무 담당 과장
7. 지출원: 주차행정담당
8. 분임지출원: 주차행정담당
9. 수입금 출납원 : 주차행정담당

② 직무위임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3조(세입) ① 조례 제2조에 따른 세입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세입에 대한 법령의 위반 여부 또는 소속연도와 세입과목의 착오 여부를 조사 후 세입과목, 납입할 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를 적은 문서로 납부의무자에게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이 제1항에 따라 세입의 징수 결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수입금출납원에게 징수결정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출납원은 세입금을 수납한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징수관에게 수납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④ 체납처분절차 및 과오납의 처리는 「지방회계법」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지방회계법

제4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분임자(分任者)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7조(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을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나. 업무의 위탁 및 대행계약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다. 업무수탁자 및 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위탁 또는 업무대행의 요청)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소장은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또는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상업무 및 자격, 시설·장비, 그 밖의 필요사항 등을 기재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3조(업무수탁 또는 업무대행의 신청) ①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보건소 지역보건의료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이력서(업무대행의 경우에 한정한다)
2. 면허·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제2조에 따라 보건소장이 면허 또는 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3. 업무수탁 또는 업무대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보유확인서(제2조에 따라 보건소장이 시설 및 장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구비서류 외에 추가 서류를 요구하거나 자격 등의 제한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업무위탁 또는 업무대행의 계약)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업무수탁자 또는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계약서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1. 업무의 위탁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업무 위·수탁계약서
2. 업무의 대행의 경우: 별지 4호서식의 구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업무대행계약서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업무수탁자 또는 업무대행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업무수탁자 또는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당초 체결된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일 2개월 전까지 해지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받은 사무 또는 대행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업무수탁자의 귀책 사유로 수탁사무 또는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관계 법령 및 조례 또는 이 규칙에 따른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위탁받은 사무 또는 대행 업무 수행에 관한 구청장의 정당한 지시 또는 협조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경우
5. 예산 형편상 계약 이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제6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 업무대행경비는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의료사업의 수탁신청서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		
위탁받고자 하는 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의료사업의 업무를 수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신청서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생년월일	
주	소	(☎)		
대행하고자 하는				
업 무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의료사업의 업무를 수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업무 위·수탁계약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수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의료인 ○○○(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소의 보건의료업무 위·수탁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위·수탁업무) 이 계약에 따라 “갑”으로부터 “을”이 위탁받는 업무(이하 “수탁업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2.

제2조(계약기간) 이 계약의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비용의 보조) ① “갑”은 “을”에게 업무대행경비를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업무대행경비를 지급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 징수한다.

제4조(의무) ① “갑”은 “을”이 수탁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을”은 수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실히 하여야 하고, 업무수행과 관련한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업무와 관련한 구청장 및 보건소장의 지시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③ “을”의 위탁업무에 대한 개시일과 종료일은 계약기간으로 한다. 다만, “갑”의 요청이 있을 경우와 “을”의 요청을 “갑”이 수용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제5조(보고 등) ① “갑”은 “을”에게 업무수행에 대한 경과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지체없이 정확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수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지도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갑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구비서류에 거짓이 있을 때

②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수탁에 관한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이 계약과 관련한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수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④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수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지도점검을 불응하거나, 고의로 방해·기피한 때

제7조(보험가입) ① “갑”이 “을”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을”은 “갑”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보험의 피보험자는 “갑”으로 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서의 해석) 이 계약서의 해석에 대하여 “갑”과 “을”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 년 월 일

갑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서명)	(인)
을 기관명		
소재지	(서명)	(인)
대표자		

[별지 제4호서식]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업무대행계약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의료인 ○○○(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인천광역시 검단구보건소의 의료업무 대행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대행업무) 이 계약에 의하여 대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 2.

제2조(계약기간) 이 계약의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 ① “갑”은 “을”에게 업무대행경비를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업무대행경비를 지급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 징수한다.

제4조(의무) ① “갑”은 “을”의 진료행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을”은 의료법의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한 구청장 및 보건소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을”의 업무대행일과 업무대행시간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따른다.

제5조(업무대행의 장소) “갑”은 “을”에게 업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보건소 내에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갑”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구비서류에 거짓이 있을 때
- ②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본 계약과 관련한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 ③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 ④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지도점검을 불응하거나, 고의로 방해·기피한 때

제7조(보험가입) ① “갑”이 “을”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을”은 “갑”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보험의 피보험자는 “갑”으로 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서의 해석) 이 계약서의 해석에 대하여 “갑”과 “을”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 년 월 일

갑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서명) (인)

을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서명) (인)

관계 법령 발췌

□ 지역보건법

제30조(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8.>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하거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8.>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의료인에게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實費)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8.>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8.>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8.>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6.>

1. 법 제4조에 따른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2.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
3. 법 제11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 실험 또는 검사 업무
5. 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업무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6.>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해야 한다.<개정 2023. 9. 26.>

④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비용보조, 실비보조, 그 밖의 업무의 위탁 또는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 9. 26.>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구

축·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대행하게 한다. <신설 2023. 9. 26.>

인천광역시 검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안

1. 제안이유

2026. 7. 1. 검단구 출범으로 인한 행정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제2조)

나.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제3조)

다. 공모전(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예산법무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검단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인천광역시 검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7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 방법은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표시한다.

1. 금연(흡연)구역 및 범위
2. 도면
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제4조(공개공지등 금연구역의 지정) ① 조례 제5조제1항제8호에 따른 공개공지등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개공지등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공개공지등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2.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에 제1호에 따른 소유자 명

부에 있는 소유자 2분의 1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공개공지등 도면에 관한 서류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서류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게 해당 결과를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조례 제5조제1항제8호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검단구”라고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공개공지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검단구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해당 공개공지등의 명칭 및 소재지

2. 금연구역 지정범위

3.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④ 공개공지등의 금연구역 지정 해제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공모전) ① 구청장은 흡연예방을 위한 공모전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모전에 입상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또는 상품권, 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응모작을 수상작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며, 부정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수상작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일반적 지식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독창적인 의견, 고안, 창작물 등을 정당한 승인이나 출처표시 없이 활용하는 표절 행위

2. 존재하지 않는 연구결과, 거짓으로 만든 근거자료 등을 응모작의 내용에 포함하는 위조 행위

3. 다른 공모전에 제출한 응모작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응모작을 제출하는 중복응모 행위
4. 그 밖에 제1호부터 3호까지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흡연예방을 위한 공모전의 공고에서 정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제2조 관련)

1. 공원

가. 규격 및 재질

1) 구조 : 지주에 표지판 전후 양면(또는 단면) 부착구조(세로형)

1) 규격 : 60×180×15cm(W×H×D)

2) 재질 : 자연숙성목

나. 도안요령

1) 내용구성

가) 타이틀(금연공원) 표시

나) 금연픽토그램 표시

다) 금연구역 조성목적,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 표시 : “이 공원은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곳에서 흡연할 경우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이 구역에서는 금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금연구역 경계(도면 및 금연구역 범위) 표시

마) 인천광역시 검단구 심볼마크 표시

2) 글씨체 : 국문-HY올림도B, 윤고딕350

3) 색상

가) 바탕색 : 공원색(DIC 644)

나) 타이틀/문구 : 백색, 노랑색(Pantone 109)

다) 금연 픽토그램 : 적색(DIC 199), 백색, 검정



2. 기타구역

가. 어린이놀이터

- 1) 규격 : Ø45cm
- 2) 재질 : PVC 5mm, 실사출력, UV코팅
- 3) 도안예시



나. 학교절대정화구역

- 1) 규격 : Ø45cm
- 2) 재질 : PVC 5mm, 실사출력, UV코팅
- 3) 도안예시



다. 버스정류소

- 1) 규격 : Ø45cm
- 2) 재질 : PVC재질, 실사출력, UV코팅
- 3) 도안예시



라.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 1) 규격 : Ø45cm
- 2) 재질 : PVC 5mm, 실사출력, UV코팅
- 3) 도안예시



마. 공동주택

- 1) 규격 : Ø45cm
- 2) 재질 : PVC 5mm, 실사출력, UV코팅
- 3) 도안예시



바. 흡연구역

- 1) 규격 : 24cm×15cm(W×H)
- 2) 재질 : UV코팅 유포지 실사출력
- 3) 도안 예시



3. 공통사항

가. 표시방법

- 1)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및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2) 안내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 한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설치방법

- 1) 안내표지판은 다음의 장소 중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한다.
 - 가) 지정된 구역의 입구 및 출구 등을 중심으로 구민들의 이동이 잦은 지역
 - 나) 구민들이 흡연을 위하여 자주 찾는 지역
 - 다) 그 밖에 금연구역임을 알릴 필요가 있는 지역
- 2) 표지판, 벽면 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때에는 주변 환경의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
- 3) 눈·비·바람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게 철폐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다. 관리기준

- 1) 「인천광역시 김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이 변경 또는 해제된 때에는 안내표지판을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한다.
- 2) 안내표지판 등의 색이 바래어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에는 즉시 교체한다.
- 3) 안내표지판이 훼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개공지등 금연구역 지정[] · 해제[] 신청서

신청인	① 성명		② 생년월일	
(대표자)	③ 전화번호		④ 주소	
⑤ 대상지역	⑥ 명칭(지역명)			
	⑦ 소재지			
	⑧ 연면적(m ²)			
⑨ 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	찬성		반대	
⑩ 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	찬성		반대	
「인천광역시 검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신청시 제출서류	1. 해당 공개공지등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2. 소유자 명부에 있는 소유자 2분의 1이상 금연구역 지정(해제)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동의서) 3. 해당 공개공지 및 대지의 도면에 관한 서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공개공지등 금연구역 지정[] · 해제[] 동의서

건 물 명

소 재 지

공개공지등이 속한 대지 금연구역 []지정 · []해제 신청을 위하여
소유주의 동의여부를 조사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범위

공개공지등이 속한 대지

공개공지등 금연구역 []지정 · []해제 신청에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소유주 성명	찬성	반대

「인천광역시 검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위 사항을 소유주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6-464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분야별 전문가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관심과 응모 있으시기 바랍니다.

2026. 2. 2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모집인원 : ○○명

2. 모집분야 : 총 9개 분야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환경, 방재, 문화, 농림, 정보통신

3. 위촉기간 : 2026. 4. 1. ~ 2028. 3. 31.(위촉일로부터 2년)

4. 기 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령 등에서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5. 응모자격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의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가.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해당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자

(단, 대학의 추천을 받은 자는 강사급 이상)

나. 모집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다. 모집분야 관련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및 건축사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라. 모집분야 관련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 수행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특급기술자
- 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해당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이상인 자
- 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5년 이상 경력자
- 사. 해당 분야에서 5급 이상의 공무원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아. 그 밖에 모집 분야의 심의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거나,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업무수행 능력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6. 제출서류

- 가. 공개모집 지원서 및 이력카드 1부.
- 나. 기타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 공개모집 지원서 및 이력카드 : 인천광역시 서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에서 내려받기 가능

7. 모집기간 및 접수처

- 가. 접수기간 : 2026. 2. 23. ~ 3. 9.까지(15일간)
- 나. 접 수 처 : 서구청 도시계획과(4층)
-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 전자우편(e-mail) 접수 가능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서구청) 4층 도시계획과(우 22726)
 - 이메일 : tgyh9388@korea.kr
- ※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접수된 지원서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편 및 전자우편(e-mail) 접수자는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8. 심사 및 통지 : 자체심사 후 위촉대상자 개별 통지

9. 기타 참고사항

-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지원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나. 해당 분야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동일인이 우리 구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5개 초과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3개를 초과하여 중복위촉 될 수 없습니다.
- 라. 위원회 명단이 우리 구의 방침에 따라 소속과 성명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 마.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합니다.
-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도시계획과(전화 032-560-4764)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6-470호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1단계)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일원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1단계)」이 완료되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에 따라 종전토지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여 아래와 같이 확정·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26. 2. 2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명: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1단계)
2.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
3. 공고기간: 2026. 2. 23. ~ 2026. 3. 3.
4. 지적공부 폐쇄 및 확정 내역

토지 소재지		종전 토지(폐쇄)		확정 토지(신규)		비고
구	법정동	필지 수	면적(㎡)	필지 수	면적(㎡)	
서구	가정동	1,239	341,399.6	44	340,593.2	감 806.4㎡
계		1,239	341,399.6	44	340,593.2	감 806.4㎡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지번별조서 참조

5. 지적공부 확정일: 2026. 2. 23.
6. 열람장소: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
7. 문의사항: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032-560-4824)로 문의

종전토지 지번별조서

□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1단계

연번	소재지	토지내역			비고
		지번	지목	면적(㎡)	
합계		1,239필지		341,399.6	
1	가정동	5-55	대	136.0	
2	가정동	5-56	대	153.0	
3	가정동	5-69	대	144.0	
4	가정동	5-90	대	334.0	
5	가정동	5-97	임	50.0	
6	가정동	5-113	임	160.0	
7	가정동	5-157	대	21.0	
8	가정동	5-158	대	127.0	
9	가정동	5-159	도	51.0	
10	가정동	5-161	대	73.0	
11	가정동	5-162	도	50.0	
12	가정동	5-163	임	104.0	
13	가정동	5-164	도	45.0	
14	가정동	5-165	대	110.0	
15	가정동	5-166	임	137.0	
16	가정동	5-167	대	96.0	
17	가정동	160-3	대	363.0	
18	가정동	160-6	도	8.0	
19	가정동	160-14	잡	590.0	
20	가정동	160-19	대	304.0	
21	가정동	160-26	답	92.0	
22	가정동	160-27	답	412.0	
23	가정동	160-28	답	34.0	
24	가정동	160-29	잡	3.0	
25	가정동	160-30	잡	51.0	
26	가정동	160-31	잡	48.0	

종전토지 지번별조서

□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1단계

연번	소재지	토지내역			비고
		지번	지목	면적(㎡)	
27	가정동	160-32	잡	39.0	
28	가정동	160-33	잡	54.0	
29	가정동	160-34	잡	366.0	
30	가정동	160-35	대	59.0	
31	가정동	160-36	잡	139.0	
32	가정동	160-37	잡	25.0	
33	가정동	161-18	도	1,343.0	
34	가정동	161-19	도	859.0	
35	가정동	163-3	도	494.0	
36	가정동	163-4	대	336.0	
37	가정동	163-11	도	50.0	
38	가정동	163-12	대	60.0	
39	가정동	163-13	대	177.0	
40	가정동	163-14	대	187.0	
41	가정동	163-15	대	5.0	
42	가정동	163-16	대	9.0	
43	가정동	163-20	대	611.0	
44	가정동	163-21	대	2,568.0	
45	가정동	163-22	도	3.0	
46	가정동	163-23	도	268.0	
47	가정동	163-24	대	313.0	
48	가정동	163-25	대	3.0	
49	가정동	163-26	대	5.0	
50	가정동	167-1	대	234.0	
51	가정동	167-2	대	361.0	
52	가정동	167-4	대	17.0	
53	가정동	167-7	대	377.0	

종전토지 지번별조서

□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1단계

연번	소재지	토지내역			비고
		지번	지목	면적(㎡)	
54	가정동	167-8	대	351.0	
55	가정동	167-9	대	9.0	
56	가정동	167-10	대	249.0	
57	가정동	167-11	도	415.0	
58	가정동	167-12	도	2.0	
59	가정동	167-13	대	127.0	
60	가정동	167-14	대	70.0	
61	가정동	167-15	대	115.0	
62	가정동	167-16	대	52.0	
63	가정동	168	대	298.0	
64	가정동	168-1	답	74.0	
65	가정동	168-2	답	64.0	
66	가정동	169-2	대	282.0	
67	가정동	169-3	대	182.0	
68	가정동	169-4	전	2.0	
69	가정동	169-5	도	36.0	
70	가정동	169-6	대	134.0	
71	가정동	169-7	대	110.0	
72	가정동	169-9	대	151.0	
73	가정동	169-10	대	152.0	
74	가정동	169-11	대	182.0	
75	가정동	170-2	전	372.0	
76	가정동	170-8	전	6.0	
77	가정동	170-11	천	6.0	
78	가정동	170-12	천	1.0	
79	가정동	170-16	전	4.0	
80	가정동	171-1	대	271.0	

종전토지 지번별조서

□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1단계

연번	소재지	토지내역			비고
		지번	지목	면적(㎡)	
81	가정동	171-3	대	264.0	
82	가정동	172-4	대	138.0	
83	가정동	172-7	대	137.0	
84	가정동	172-8	대	129.0	
85	가정동	172-9	대	164.0	
86	가정동	172-10	대	164.0	
87	가정동	172-11	대	139.0	
88	가정동	172-12	전	156.0	
89	가정동	172-13	도	51.0	
90	가정동	172-16	도	1,513.0	
91	가정동	173-24	대	2.0	
92	가정동	173-25	대	6.0	
93	가정동	173-26	대	9.0	
94	가정동	176-2	잡	3.0	
95	가정동	176-3	대	321.0	
96	가정동	177-2	대	291.0	
97	가정동	177-9	대	151.0	
98	가정동	177-12	대	151.0	
99	가정동	177-21	전	215.0	
100	가정동	177-22	대	1.0	
101	가정동	177-23	도	66.0	
102	가정동	177-24	도	44.0	
103	가정동	177-25	도	24.0	
104	가정동	177-26	대	86.0	
105	가정동	177-27	대	59.0	
106	가정동	177-28	대	147.0	
107	가정동	177-29	전	2.0	

종전토지 지번별조서

□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1단계

연번	소재지	토지내역			비고
		지번	지목	면적(㎡)	
108	가정동	178-4	전	69.0	
109	가정동	178-5	전	30.0	
110	가정동	181-2	중	1.0	
111	가정동	181-3	도	50.0	
112	가정동	182	대	212.0	
113	가정동	182-1	도	36.0	
114	가정동	183	대	145.0	
115	가정동	183-1	도	94.0	
116	가정동	183-2	대	148.0	
117	가정동	183-3	대	135.0	
118	가정동	184-1	대	555.0	
119	가정동	184-5	대	129.0	
120	가정동	184-6	대	182.0	
121	가정동	184-13	대	254.0	
122	가정동	184-16	도	25.0	
123	가정동	184-18	도	37.0	
124	가정동	184-19	대	132.0	
125	가정동	184-20	대	25.0	
126	가정동	184-21	대	460.0	
127	가정동	184-22	대	3.0	
128	가정동	184-23	대	536.0	
129	가정동	184-24	대	531.0	
130	가정동	184-26	대	157.0	
131	가정동	184-27	대	87.0	
132	가정동	184-28	대	75.0	
133	가정동	184-29	대	30.0	
134	가정동	184-30	도	3.0	

종전토지 지번별조서

□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1단계

연번	소재지	토지내역			비고
		지번	지목	면적(㎡)	
135	가정동	184-31	전	142.0	
136	가정동	184-32	전	40.0	
137	가정동	184-33	전	28.0	
138	가정동	184-34	도	4.0	
139	가정동	185-11	대	138.0	
140	가정동	185-12	대	210.0	
141	가정동	185-14	대	1.0	
142	가정동	185-15	대	43.0	
143	가정동	185-16	대	51.0	
144	가정동	185-17	대	47.0	
145	가정동	185-18	대	13.0	
146	가정동	185-19	대	9.0	
147	가정동	185-20	대	74.0	
148	가정동	185-21	대	77.0	
149	가정동	185-22	도	21.0	
150	가정동	185-23	도	158.0	
151	가정동	185-24	도	150.0	
152	가정동	186	대	130.0	
153	가정동	186-1	대	161.0	
154	가정동	186-2	도	20.0	
155	가정동	187-2	대	182.0	
156	가정동	187-3	도	280.0	
157	가정동	187-4	도	6.0	
158	가정동	188-3	대	1.0	
159	가정동	188-5	대	51.0	
160	가정동	188-6	대	164.0	
161	가정동	188-7	대	6.0	

종전토지 지번별조서

□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1단계

연번	소재지	토지내역			비고
		지번	지목	면적(㎡)	
162	가정동	188-8	대	18.0	
163	가정동	189-1	대	354.0	
164	가정동	189-3	전	814.0	
165	가정동	189-5	대	91.0	
166	가정동	189-10	대	2.0	
167	가정동	189-14	도	4.0	
168	가정동	189-15	대	262.0	
169	가정동	190-3	대	133.0	
170	가정동	190-4	도	18.0	
171	가정동	192-1	대	156.0	
172	가정동	195	대	142.0	
173	가정동	196-2	도	7.0	
174	가정동	196-3	대	301.0	
175	가정동	196-7	대	227.0	
176	가정동	196-8	전	362.0	
177	가정동	196-9	전	79.0	
178	가정동	196-10	전	1.0	
179	가정동	197-1	대	143.0	
180	가정동	197-5	대	171.0	
181	가정동	197-10	대	137.0	
182	가정동	197-11	대	143.0	
183	가정동	197-12	도	10.0	
184	가정동	197-13	도	18.0	
185	가정동	197-14	도	144.0	
186	가정동	197-15	도	28.0	
187	가정동	197-16	전	8.0	
188	가정동	197-17	대	40.0	

종전토지 지번별조서

□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1단계

연번	소재지	토지내역			비고
		지번	지목	면적(㎡)	
189	가정동	197-18	대	59.0	
190	가정동	197-19	도	24.0	
191	가정동	197-20	도	137.0	
192	가정동	197-21	대	33.0	
193	가정동	197-22	대	68.0	
194	가정동	197-23	대	44.0	
195	가정동	197-24	대	132.0	
196	가정동	198-3	대	198.0	
197	가정동	199-1	전	271.0	
198	가정동	200-1	대	753.0	
199	가정동	200-2	대	1,804.0	
200	가정동	200-4	대	2,655.0	
201	가정동	203-26	대	3,410.0	
202	가정동	205-4	대	24.0	
203	가정동	264-15	전	1.0	
204	가정동	264-16	대	252.0	
205	가정동	264-17	대	78.0	
206	가정동	269-3	전	5.0	
207	가정동	270-2	전	110.0	
208	가정동	270-3	전	11.0	
209	가정동	271-6	전	1.0	
210	가정동	271-7	전	128.0	
211	가정동	272-6	전	8.0	
212	가정동	272-14	전	402.0	
213	가정동	272-15	전	300.0	
214	가정동	272-16	전	453.0	
215	가정동	272-17	전	492.0	

종전토지 지번별조서

□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1단계

연번	소재지	토지내역			비고
		지번	지목	면적(㎡)	
216	가정동	272-18	전	5.0	
217	가정동	272-19	전	7.0	
218	가정동	273-24	전	30.0	
219	가정동	280-1	대	565.0	
220	가정동	280-2	대	648.0	
221	가정동	280-4	대	426.0	
222	가정동	280-5	도	301.0	
223	가정동	280-12	전	11.0	
224	가정동	280-13	전	17.0	
225	가정동	280-14	대	15.0	
226	가정동	282	대	635.0	
227	가정동	283-1	대	685.0	
228	가정동	283-2	도	215.0	
229	가정동	283-3	전	2.0	
230	가정동	283-5	도	3,234.0	
231	가정동	283-7	전	1.0	
232	가정동	284-4	도	136.0	
233	가정동	284-22	대	266.0	
234	가정동	284-23	대	201.0	
235	가정동	284-24	대	563.0	
236	가정동	284-25	대	175.0	
237	가정동	284-26	대	172.0	
238	가정동	284-27	대	138.0	
239	가정동	284-30	대	207.0	
240	가정동	284-31	대	245.0	
241	가정동	284-32	대	229.0	
242	가정동	284-35	도	151.0	

종전토지 지번별조서

□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1단계

연번	소재지	토지내역			비고
		지번	지목	면적(㎡)	
243	가정동	284-36	대	263.0	
244	가정동	284-37	대	159.0	
245	가정동	284-38	대	159.0	
246	가정동	284-39	대	159.0	
247	가정동	284-40	대	417.0	
248	가정동	284-41	대	225.0	
249	가정동	284-42	대	116.0	
250	가정동	284-47	대	228.0	
251	가정동	284-49	대	153.0	
252	가정동	284-50	대	283.0	
253	가정동	284-51	대	257.0	
254	가정동	284-52	대	168.0	
255	가정동	284-54	대	120.0	
256	가정동	284-55	대	141.0	
257	가정동	284-57	대	351.0	
258	가정동	284-58	대	110.0	
259	가정동	284-59	대	114.0	
260	가정동	284-60	대	274.0	
261	가정동	284-61	대	278.0	
262	가정동	284-62	대	166.0	
263	가정동	284-64	대	132.0	
264	가정동	284-65	대	201.0	
265	가정동	284-72	대	313.0	
266	가정동	284-73	대	60.0	
267	가정동	284-74	대	115.0	
268	가정동	284-75	대	235.0	
269	가정동	284-76	대	203.0	

종전토지 지번별조서

□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1단계

연번	소재지	토지내역			비고
		지번	지목	면적(㎡)	
270	가정동	284-77	대	107.0	
271	가정동	284-78	대	242.0	
272	가정동	284-79	대	105.0	
273	가정동	284-81	대	121.0	
274	가정동	284-82	대	164.0	
275	가정동	284-83	대	94.0	
276	가정동	284-84	대	273.0	
277	가정동	284-85	대	168.0	
278	가정동	284-86	대	201.0	
279	가정동	284-87	대	213.0	
280	가정동	284-88	대	132.0	
281	가정동	284-89	대	182.0	
282	가정동	284-95	대	204.0	
283	가정동	284-96	대	204.0	
284	가정동	284-97	대	99.0	
285	가정동	284-98	도	81.0	
286	가정동	284-110	대	387.0	
287	가정동	284-130	대	197.0	
288	가정동	284-176	도	69.0	
289	가정동	284-177	대	192.0	
290	가정동	284-178	대	181.0	
291	가정동	284-180	도	56.0	
292	가정동	284-181	대	173.0	
293	가정동	284-182	대	202.0	
294	가정동	284-188	대	101.0	
295	가정동	284-189	대	119.0	
296	가정동	284-190	대	95.0	

종전토지 지번별조서

□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1단계

연번	소재지	토지내역			비고
		지번	지목	면적(㎡)	
297	가정동	284-191	대	179.0	
298	가정동	284-192	대	249.0	
299	가정동	284-193	대	186.0	
300	가정동	284-194	대	192.0	
301	가정동	284-216	대	181.0	
302	가정동	284-217	대	176.0	
303	가정동	284-219	도	112.0	
304	가정동	284-220	대	170.0	
305	가정동	284-221	대	164.0	
306	가정동	284-222	대	183.0	
307	가정동	284-223	대	187.0	
308	가정동	284-224	대	164.0	
309	가정동	284-225	대	160.0	
310	가정동	284-244	대	157.0	
311	가정동	284-245	대	156.0	
312	가정동	284-246	대	151.0	
313	가정동	284-247	대	151.0	
314	가정동	284-248	대	214.0	
315	가정동	284-249	대	177.0	
316	가정동	284-250	대	220.0	
317	가정동	284-251	대	167.0	
318	가정동	284-258	대	180.0	
319	가정동	284-259	대	121.0	
320	가정동	284-260	대	123.0	
321	가정동	284-261	대	11.0	
322	가정동	284-262	대	9.0	
323	가정동	284-263	대	158.0	

종전토지 지번별조서

□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1단계

연번	소재지	토지내역			비고
		지번	지목	면적(㎡)	
324	가정동	284-264	대	158.0	
325	가정동	284-265	대	158.0	
326	가정동	284-267	대	138.0	
327	가정동	284-268	대	131.0	
328	가정동	284-269	대	131.0	
329	가정동	284-271	대	136.0	
330	가정동	284-272	대	136.0	
331	가정동	284-274	대	101.0	
332	가정동	284-275	대	117.0	
333	가정동	284-276	도	81.0	
334	가정동	284-277	대	184.0	
335	가정동	284-278	대	99.0	
336	가정동	284-279	대	98.0	
337	가정동	284-280	대	118.0	
338	가정동	284-281	대	227.0	
339	가정동	284-282	대	203.0	
340	가정동	284-285	대	103.0	
341	가정동	284-286	대	137.0	
342	가정동	284-287	대	102.0	
343	가정동	284-288	대	109.0	
344	가정동	284-292	대	143.0	
345	가정동	284-293	대	132.0	
346	가정동	284-294	대	138.0	
347	가정동	284-304	대	123.0	
348	가정동	284-308	대	111.0	
349	가정동	284-309	대	43.0	
350	가정동	284-310	대	181.0	

종전토지 지번별조서

□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1단계

연번	소재지	토지내역			비고
		지번	지목	면적(㎡)	
351	가정동	284-311	대	203.0	
352	가정동	284-320	대	120.0	
353	가정동	284-321	대	120.0	
354	가정동	284-322	도	90.0	
355	가정동	284-323	대	104.0	
356	가정동	284-324	대	131.0	
357	가정동	284-325	대	110.0	
358	가정동	284-326	대	121.0	
359	가정동	284-327	도	56.0	
360	가정동	284-328	도	67.0	
361	가정동	284-329	대	148.0	
362	가정동	284-330	대	145.0	
363	가정동	284-331	도	9.0	
364	가정동	284-342	대	161.0	
365	가정동	284-343	대	186.0	
366	가정동	284-344	대	137.0	
367	가정동	284-345	대	156.0	
368	가정동	284-349	도	55.0	
369	가정동	284-350	대	17.0	
370	가정동	284-351	대	110.0	
371	가정동	284-352	대	159.0	
372	가정동	284-353	대	115.0	
373	가정동	284-356	대	105.0	
374	가정동	284-357	대	17.0	
375	가정동	284-358	대	428.0	
376	가정동	284-360	도	435.0	
377	가정동	284-361	대	404.0	

종전토지 지번별조서

□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1단계

연번	소재지	토지내역			비고
		지번	지목	면적(㎡)	
378	가정동	284-363	대	212.0	
379	가정동	284-364	대	120.0	
380	가정동	284-365	대	201.0	
381	가정동	284-366	대	143.0	
382	가정동	284-369	대	103.0	
383	가정동	284-370	대	112.0	
384	가정동	284-371	대	108.0	
385	가정동	284-372	대	136.0	
386	가정동	284-373	도	30.0	
387	가정동	284-374	대	36.0	
388	가정동	284-378	대	44.0	
389	가정동	284-379	대	150.0	
390	가정동	284-380	대	97.0	
391	가정동	284-381	대	108.0	
392	가정동	284-389	대	201.0	
393	가정동	284-390	대	202.0	
394	가정동	284-391	대	80.0	
395	가정동	284-392	대	99.0	
396	가정동	284-395	대	165.0	
397	가정동	284-396	대	98.0	
398	가정동	284-397	대	120.0	
399	가정동	284-399	대	18.0	
400	가정동	284-412	대	165.0	
401	가정동	284-417	대	264.0	
402	가정동	284-418	전	30.0	
403	가정동	284-422	대	350.0	
404	가정동	284-424	대	144.0	

종전토지 지번별조서

□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1단계

연번	소재지	토지내역			비고
		지번	지목	면적(㎡)	
405	가정동	284-425	도	55.0	
406	가정동	284-426	도	4.0	
407	가정동	284-427	도	2.0	
408	가정동	284-428	도	38.0	
409	가정동	284-429	도	54.0	
410	가정동	284-430	도	39.0	
411	가정동	284-433	도	14.0	
412	가정동	284-434	대	57.0	
413	가정동	284-435	대	55.0	
414	가정동	284-442	대	44.0	
415	가정동	284-443	대	37.0	
416	가정동	284-444	대	93.0	
417	가정동	284-445	대	34.0	
418	가정동	284-446	대	84.0	
419	가정동	284-447	대	24.0	
420	가정동	284-448	대	29.0	
421	가정동	284-449	대	28.0	
422	가정동	284-450	대	19.0	
423	가정동	284-451	대	32.0	
424	가정동	284-452	대	30.0	
425	가정동	284-453	대	15.0	
426	가정동	284-454	대	11.0	
427	가정동	284-455	대	86.0	
428	가정동	284-457	대	34.0	
429	가정동	284-470	대	23.0	
430	가정동	284-473	대	49.0	
431	가정동	284-474	도	35.0	

종전토지 지번별조서

□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1단계

연번	소재지	토지내역			비고
		지번	지목	면적(㎡)	
432	가정동	284-479	도	14.0	
433	가정동	284-484	도	19.0	
434	가정동	284-485	도	18.0	
435	가정동	284-486	대	253.0	
436	가정동	284-491	도	10.0	
437	가정동	284-493	도	18.0	
438	가정동	284-494	도	36.0	
439	가정동	284-497	대	290.0	
440	가정동	284-498	대	91.0	
441	가정동	284-499	대	104.0	
442	가정동	284-500	대	2.0	
443	가정동	284-501	대	404.0	
444	가정동	284-502	대	7.0	
445	가정동	284-503	대	36.0	
446	가정동	284-504	대	54.0	
447	가정동	284-505	대	598.0	
448	가정동	284-506	대	66.0	
449	가정동	284-507	대	24.0	
450	가정동	284-508	대	187.0	
451	가정동	284-509	대	34.0	
452	가정동	284-510	대	1.0	
453	가정동	284-511	대	273.0	
454	가정동	284-512	대	200.0	
455	가정동	284-519	도	6,272.0	
456	가정동	284-520	도	49.0	
457	가정동	284-521	도	61.0	
458	가정동	284-522	도	57.0	

종전토지 지번별조서

□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1단계

연번	소재지	토지내역			비고
		지번	지목	면적(㎡)	
459	가정동	284-523	도	32.0	
460	가정동	284-524	도	28.0	
461	가정동	284-525	도	12.0	
462	가정동	284-526	도	1.0	
463	가정동	284-527	대	45.0	
464	가정동	284-528	대	44.0	
465	가정동	284-529	대	134.0	
466	가정동	284-530	대	27.0	
467	가정동	284-531	대	86.0	
468	가정동	284-532	대	102.0	
469	가정동	284-533	대	18.0	
470	가정동	284-534	도	89.0	
471	가정동	284-535	대	14.0	
472	가정동	284-536	대	97.0	
473	가정동	284-537	도	27.0	
474	가정동	284-538	대	2.0	
475	가정동	284-539	도	43.0	
476	가정동	284-540	대	115.0	
477	가정동	284-541	대	96.0	
478	가정동	284-542	대	51.0	
479	가정동	284-543	대	11.0	
480	가정동	284-544	도	86.0	
481	가정동	284-545	대	190.0	
482	가정동	284-546	대	89.0	
483	가정동	284-547	대	44.0	
484	가정동	284-548	대	132.0	
485	가정동	284-549	도	53.0	

종전토지 지번별조서

□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1단계

연번	소재지	토지내역			비고
		지번	지목	면적(㎡)	
486	가정동	284-550	대	2.0	
487	가정동	284-551	도	38.0	
488	가정동	284-552	대	120.0	
489	가정동	284-553	대	97.0	
490	가정동	284-554	대	69.0	
491	가정동	284-555	대	4.0	
492	가정동	284-556	대	155.0	
493	가정동	284-557	대	29.0	
494	가정동	284-559	대	4,666.0	
495	가정동	284-560	대	336.0	
496	가정동	284-561	대	97.0	
497	가정동	284-562	대	3.0	
498	가정동	284-564	대	88.0	
499	가정동	284-565	대	55.0	
500	가정동	284-566	대	69.0	
501	가정동	284-567	대	4.0	
502	가정동	284-568	대	73.0	
503	가정동	284-569	대	63.0	
504	가정동	284-570	대	23.0	
505	가정동	284-571	대	36.0	
506	가정동	284-572	임	221.0	
507	가정동	284-573	임	5.0	
508	가정동	284-574	대	5.0	
509	가정동	284-575	대	223.0	
510	가정동	284-576	도	9.0	
511	가정동	284-577	대	56.0	
512	가정동	285-8	도	7.0	

종전토지 지번별조서

□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1단계

연번	소재지	토지내역			비고
		지번	지목	면적(㎡)	
513	가정동	285-9	답	1.0	
514	가정동	285-10	대	1.0	
515	가정동	286-1	대	263.0	
516	가정동	286-2	전	315.0	
517	가정동	286-6	대	22.0	
518	가정동	286-8	전	86.0	
519	가정동	287	전	236.0	
520	가정동	288-1	대	494.0	
521	가정동	288-3	전	350.0	
522	가정동	288-6	도	104.0	
523	가정동	288-8	도	88.0	
524	가정동	288-15	도	494.0	
525	가정동	288-16	주	1,105.0	
526	가정동	288-17	전	6.0	
527	가정동	288-18	대	16.0	
528	가정동	288-19	잡	8.0	
529	가정동	288-20	잡	59.0	
530	가정동	288-21	잡	77.0	
531	가정동	289-8	임	7.0	
532	가정동	289-9	대	25.0	
533	가정동	290-88	종	39.0	
534	가정동	290-89	대	185.0	
535	가정동	290-90	대	7.0	
536	가정동	290-91	대	1,119.0	
537	가정동	290-92	대	94.0	
538	가정동	290-93	대	55.0	
539	가정동	290-94	대	280.0	

종전토지 지번별조서

□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1단계

연번	소재지	토지내역			비고
		지번	지목	면적(㎡)	
540	가정동	290-95	대	221.0	
541	가정동	290-96	대	99.0	
542	가정동	290-97	대	334.0	
543	가정동	290-98	대	37.0	
544	가정동	290-99	도	1.0	
545	가정동	290-100	임	3.0	
546	가정동	294-17	대	136.0	
547	가정동	294-18	대	136.0	
548	가정동	294-22	도	38.0	
549	가정동	294-23	대	271.0	
550	가정동	294-24	대	170.0	
551	가정동	294-39	대	300.0	
552	가정동	294-40	대	388.0	
553	가정동	294-63	대	189.0	
554	가정동	294-64	도	244.0	
555	가정동	294-65	대	116.0	
556	가정동	294-66	도	15.0	
557	가정동	294-67	대	115.0	
558	가정동	294-68	대	127.0	
559	가정동	294-69	대	16.0	
560	가정동	294-70	대	114.0	
561	가정동	294-71	대	73.0	
562	가정동	294-72	대	43.0	
563	가정동	294-73	대	42.0	
564	가정동	294-74	대	65.0	
565	가정동	294-75	대	9.0	
566	가정동	294-76	대	78.0	

종전토지 지번별조서

□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1단계

연번	소재지	토지내역			비고
		지번	지목	면적(㎡)	
567	가정동	294-77	대	96.0	
568	가정동	294-78	대	112.0	
569	가정동	294-79	대	398.0	
570	가정동	294-80	잡	36.0	
571	가정동	294-81	잡	9.0	
572	가정동	294-82	임	1.0	
573	가정동	294-83	임	89.0	
574	가정동	299-30	전	1.0	
575	가정동	299-31	전	9.0	
576	가정동	299-32	전	2.0	
577	가정동	441-17	구	244.0	
578	가정동	441-21	구	31.0	
579	가정동	441-22	구	4.0	
580	가정동	441-23	구	4.0	
581	가정동	441-29	구	95.0	
582	가정동	441-46	구	71.0	
583	가정동	441-47	구	7.0	
584	가정동	441-48	구	38.0	
585	가정동	441-49	구	9.0	
586	가정동	441-50	구	1.0	
587	가정동	441-51	구	4.0	
588	가정동	441-52	구	389.0	
589	가정동	441-53	구	73.0	
590	가정동	441-56	구	53.0	
591	가정동	441-57	구	388.0	
592	가정동	441-58	구	403.0	
593	가정동	442-1	도	150.0	

종전토지 지번별조서

□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1단계

연번	소재지	토지내역			비고
		지번	지목	면적(㎡)	
594	가정동	443-7	구	152.0	
595	가정동	443-8	구	168.0	
596	가정동	443-9	구	591.0	
597	가정동	443-10	대	59.0	
598	가정동	443-11	대	10.0	
599	가정동	444-7	도	68.0	
600	가정동	444-8	도	167.0	
601	가정동	444-9	도	374.0	
602	가정동	444-10	도	145.0	
603	가정동	446-2	도	203.0	
604	가정동	446-7	도	127.0	
605	가정동	446-8	도	65.0	
606	가정동	447-1	도	258.0	
607	가정동	458-3	도	41.0	
608	가정동	472-6	대	874.8	
609	가정동	472-7	대	269.0	
610	가정동	472-8	대	210.7	
611	가정동	472-9	대	530.1	
612	가정동	472-10	대	363.4	
613	가정동	472-11	대	263.5	
614	가정동	472-14	대	551.7	
615	가정동	472-16	도	68.6	
616	가정동	472-17	대	282.8	
617	가정동	472-24	대	210.8	
618	가정동	472-25	대	276.1	
619	가정동	472-26	도	58.1	
620	가정동	472-27	대	275.9	

종전토지 지번별조서

□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1단계

연번	소재지	토지내역			비고
		지번	지목	면적(㎡)	
621	가정동	472-30	대	263.3	
622	가정동	472-31	대	133.1	
623	가정동	472-32	도	58.9	
624	가정동	472-33	대	133.1	
625	가정동	472-35	대	25.1	
626	가정동	472-36	대	329.8	
627	가정동	472-37	대	167.3	
628	가정동	472-38	대	612.8	
629	가정동	472-39	대	179.2	
630	가정동	472-40	대	181.5	
631	가정동	472-41	대	438.2	
632	가정동	472-42	대	35.7	
633	가정동	472-43	대	183.2	
634	가정동	472-44	대	183.3	
635	가정동	472-45	대	183.5	
636	가정동	472-46	대	183.6	
637	가정동	472-47	대	183.8	
638	가정동	472-48	대	161.7	
639	가정동	472-49	대	322.5	
640	가정동	472-50	대	167.7	
641	가정동	473-8	대	1,894.3	
642	가정동	473-9	주	264.4	
643	가정동	473-10	대	601.6	
644	가정동	473-13	대	128.4	
645	가정동	473-14	대	367.2	
646	가정동	473-15	대	158.9	
647	가정동	473-17	대	155.3	

종전토지 지번별조서

□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1단계

연번	소재지	토지내역			비고
		지번	지목	면적(㎡)	
648	가정동	473-20	주	277.8	
649	가정동	473-21	주	264.3	
650	가정동	473-22	대	601.6	
651	가정동	473-24	대	253.4	
652	가정동	473-25	대	450.9	
653	가정동	473-26	대	295.4	
654	가정동	473-27	대	147.2	
655	가정동	473-28	대	93.6	
656	가정동	473-29	대	172.2	
657	가정동	473-30	대	842.0	
658	가정동	473-31	대	270.5	
659	가정동	473-32	도	87.2	
660	가정동	473-33	대	93.8	
661	가정동	473-34	대	295.5	
662	가정동	473-35	대	313.3	
663	가정동	476-1	대	329.4	
664	가정동	476-3	대	114.5	
665	가정동	476-10	대	150.8	
666	가정동	476-11	대	142.4	
667	가정동	476-12	도	35.0	
668	가정동	476-13	대	150.9	
669	가정동	476-14	대	142.4	
670	가정동	476-15	대	142.3	
671	가정동	476-16	대	136.8	
672	가정동	476-17	대	125.9	
673	가정동	476-19	대	160.7	
674	가정동	476-20	도	71.1	

종전토지 지번별조서

□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1단계

연번	소재지	토지내역			비고
		지번	지목	면적(㎡)	
675	가정동	476-21	대	158.8	
676	가정동	476-22	대	158.9	
677	가정동	476-24	대	157.5	
678	가정동	476-26	대	160.3	
679	가정동	476-27	대	143.7	
680	가정동	476-28	대	132.3	
681	가정동	476-29	도	76.8	
682	가정동	476-30	대	148.8	
683	가정동	476-31	도	36.2	
684	가정동	476-32	대	165.6	
685	가정동	476-33	대	156.1	
686	가정동	476-36	주	541.3	
687	가정동	476-37	대	98.7	
688	가정동	476-38	대	162.6	
689	가정동	476-39	대	214.6	
690	가정동	476-40	대	240.1	
691	가정동	476-41	대	453.6	
692	가정동	476-42	대	122.3	
693	가정동	476-43	대	78.3	
694	가정동	476-44	대	78.8	
695	가정동	476-45	대	159.5	
696	가정동	476-46	대	99.3	
697	가정동	476-47	대	192.7	
698	가정동	477	대	1,227.5	
699	가정동	477-1	대	665.3	
700	가정동	477-2	대	189.1	
701	가정동	477-3	대	318.5	

종전토지 지번별조서

□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1단계

연번	소재지	토지내역			비고
		지번	지목	면적(㎡)	
702	가정동	477-4	대	234.4	
703	가정동	477-6	대	187.1	
704	가정동	477-7	대	689.8	
705	가정동	477-8	대	138.9	
706	가정동	477-9	대	130.2	
707	가정동	477-10	도	54.8	
708	가정동	477-11	대	189.4	
709	가정동	477-12	대	189.5	
710	가정동	477-13	도	54.8	
711	가정동	477-14	대	189.6	
712	가정동	477-15	대	318.7	
713	가정동	477-16	대	152.2	
714	가정동	477-17	대	153.6	
715	가정동	477-18	대	184.0	
716	가정동	477-19	도	65.5	
717	가정동	477-21	대	132.1	
718	가정동	477-22	대	150.4	
719	가정동	477-23	도	8.0	
720	가정동	477-24	대	152.2	
721	가정동	477-25	대	187.2	
722	가정동	477-26	대	230.0	
723	가정동	477-27	대	193.5	
724	가정동	477-28	대	232.8	
725	가정동	477-29	대	263.9	
726	가정동	477-30	도	69.6	
727	가정동	477-31	대	274.9	
728	가정동	478	대	947.1	

종전토지 지번별조서

□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1단계

연번	소재지	토지내역			비고
		지번	지목	면적(㎡)	
729	가정동	478-1	대	351.8	
730	가정동	478-4	대	211.5	
731	가정동	478-5	대	141.0	
732	가정동	478-6	대	182.8	
733	가정동	478-7	대	167.4	
734	가정동	478-9	대	110.3	
735	가정동	478-10	대	71.2	
736	가정동	478-11	대	162.8	
737	가정동	478-12	대	193.2	
738	가정동	478-13	대	139.0	
739	가정동	478-14	대	165.3	
740	가정동	478-15	대	127.4	
741	가정동	478-16	대	173.0	
742	가정동	478-17	대	247.0	
743	가정동	478-25	대	138.9	
744	가정동	478-26	대	147.3	
745	가정동	478-27	대	140.5	
746	가정동	478-28	대	145.3	
747	가정동	478-29	대	129.2	
748	가정동	478-30	대	83.3	
749	가정동	478-33	대	5.5	
750	가정동	478-35	대	318.8	
751	가정동	478-36	대	203.7	
752	가정동	478-37	도	456.0	
753	가정동	478-38	대	209.3	
754	가정동	478-39	대	249.8	
755	가정동	478-40	대	138.5	

종전토지 지번별조서

□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1단계

연번	소재지	토지내역			비고
		지번	지목	면적(㎡)	
756	가정동	478-41	대	175.9	
757	가정동	478-42	대	243.7	
758	가정동	478-43	대	313.2	
759	가정동	478-44	대	209.2	
760	가정동	479	대	139.7	
761	가정동	479-1	대	381.1	
762	가정동	479-2	대	175.2	
763	가정동	479-3	대	175.0	
764	가정동	479-4	대	182.8	
765	가정동	479-7	대	156.8	
766	가정동	479-8	대	172.6	
767	가정동	479-10	도	50.9	
768	가정동	479-11	대	156.6	
769	가정동	479-14	대	140.9	
770	가정동	479-15	대	141.0	
771	가정동	479-16	대	311.2	
772	가정동	479-17	대	132.3	
773	가정동	479-18	대	150.4	
774	가정동	479-19	대	150.2	
775	가정동	479-20	대	135.8	
776	가정동	479-21	도	41.1	
777	가정동	479-22	대	136.0	
778	가정동	479-23	대	1,535.7	
779	가정동	479-24	종	944.2	
780	가정동	479-25	대	141.8	
781	가정동	479-26	대	132.5	
782	가정동	480	대	991.6	

종전토지 지번별조서

□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1단계

연번	소재지	토지내역			비고
		지번	지목	면적(㎡)	
783	가정동	480-2	창	763.7	
784	가정동	480-3	대	431.1	
785	가정동	480-4	대	153.4	
786	가정동	480-5	대	221.1	
787	가정동	480-6	대	254.5	
788	가정동	480-7	대	475.0	
789	가정동	480-8	대	120.0	
790	가정동	480-9	대	120.0	
791	가정동	480-10	대	131.0	
792	가정동	480-11	도	102.1	
793	가정동	480-12	대	121.4	
794	가정동	480-13	대	117.0	
795	가정동	480-14	대	116.9	
796	가정동	480-15	대	127.5	
797	가정동	480-16	대	166.1	
798	가정동	480-17	대	191.9	
799	가정동	480-18	대	223.1	
800	가정동	480-19	대	1,309.1	
801	가정동	481	대	330.6	
802	가정동	481-6	대	158.5	
803	가정동	481-7	도	37.4	
804	가정동	481-8	대	158.6	
805	가정동	481-9	대	158.6	
806	가정동	481-10	대	158.6	
807	가정동	481-11	대	138.9	
808	가정동	481-12	대	504.7	
809	가정동	481-13	대	191.7	

종전토지 지번별조서

□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1단계

연번	소재지	토지내역			비고
		지번	지목	면적(㎡)	
810	가정동	481-14	대	138.9	
811	가정동	481-15	대	191.7	
812	가정동	481-16	대	563.5	
813	가정동	481-18	대	330.6	
814	가정동	481-19	대	1,016.2	
815	가정동	481-20	대	612.5	
816	가정동	481-21	대	563.7	
817	가정동	481-22	대	433.9	
818	가정동	481-23	대	538.1	
819	가정동	488-5	도	41.5	
820	가정동	488-6	대	173.1	
821	가정동	488-23	대	160.0	
822	가정동	488-24	대	105.9	
823	가정동	488-25	대	110.8	
824	가정동	488-26	대	69.4	
825	가정동	489-12	대	121.8	
826	가정동	489-19	대	151.7	
827	가정동	489-20	대	151.5	
828	가정동	489-22	대	149.3	
829	가정동	489-23	대	151.4	
830	가정동	489-24	대	145.2	
831	가정동	489-32	대	96.6	
832	가정동	489-33	도	95.7	
833	가정동	489-34	도	76.7	
834	가정동	489-35	대	126.4	
835	가정동	489-36	대	92.1	
836	가정동	489-37	대	0.1	

종전토지 지번별조서

□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1단계

연번	소재지	토지내역			비고
		지번	지목	면적(㎡)	
837	가정동	489-38	대	10.5	
838	가정동	489-39	대	55.4	
839	가정동	490	대	153.8	
840	가정동	490-1	대	133.0	
841	가정동	490-3	대	143.0	
842	가정동	490-4	대	147.7	
843	가정동	490-8	대	171.2	
844	가정동	490-12	대	277.8	
845	가정동	490-13	대	207.3	
846	가정동	490-14	대	564.4	
847	가정동	490-15	대	125.7	
848	가정동	490-17	대	152.4	
849	가정동	490-18	대	296.4	
850	가정동	490-19	대	142.5	
851	가정동	490-24	도	60.0	
852	가정동	490-25	대	64.6	
853	가정동	490-26	대	17.8	
854	가정동	490-27	대	373.0	
855	가정동	490-28	대	183.6	
856	가정동	490-29	대	294.2	
857	가정동	490-30	대	168.3	
858	가정동	490-31	도	33.4	
859	가정동	490-32	대	49.3	
860	가정동	490-33	도	40.8	
861	가정동	490-34	대	293.9	
862	가정동	490-35	대	293.9	
863	가정동	491-2	대	220.5	

종전토지 지번별조서

□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1단계

연번	소재지	토지내역			비고
		지번	지목	면적(㎡)	
864	가정동	491-3	대	104.0	
865	가정동	491-4	대	104.0	
866	가정동	491-5	대	269.7	
867	가정동	491-6	대	2,256.1	
868	가정동	491-7	대	2,133.3	
869	가정동	492-4	도	58.3	
870	가정동	492-5	대	172.2	
871	가정동	492-6	대	182.0	
872	가정동	492-7	대	185.2	
873	가정동	492-8	대	1,884.4	
874	가정동	492-10	대	136.2	
875	가정동	492-11	대	123.9	
876	가정동	492-12	대	140.1	
877	가정동	492-13	대	162.0	
878	가정동	492-14	대	139.8	
879	가정동	492-15	대	136.4	
880	가정동	492-16	대	129.6	
881	가정동	492-17	도	47.0	
882	가정동	492-18	대	1,134.2	
883	가정동	492-19	대	632.2	
884	가정동	492-20	대	168.6	
885	가정동	492-21	대	178.7	
886	가정동	493-6	대	131.6	
887	가정동	493-7	대	132.7	
888	가정동	493-8	대	132.7	
889	가정동	493-9	대	132.7	
890	가정동	493-10	대	131.6	

종전토지 지번별조서

□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1단계

연번	소재지	토지내역			비고
		지번	지목	면적(㎡)	
891	가정동	493-11	대	131.7	
892	가정동	493-12	대	140.3	
893	가정동	493-13	대	132.5	
894	가정동	493-14	대	132.4	
895	가정동	493-15	도	226.4	
896	가정동	493-20	도	80.0	
897	가정동	493-21	대	316.1	
898	가정동	493-22	대	388.8	
899	가정동	493-23	대	627.8	
900	가정동	493-24	대	489.0	
901	가정동	493-25	대	358.9	
902	가정동	493-26	대	440.7	
903	가정동	493-27	대	635.5	
904	가정동	493-28	대	128.7	
905	가정동	493-29	대	258.5	
906	가정동	493-30	대	248.9	
907	가정동	530	대	163.7	
908	가정동	530-1	대	440.7	
909	가정동	530-2	대	118.9	
910	가정동	530-3	대	209.9	
911	가정동	530-5	대	252.8	
912	가정동	530-7	대	737.3	
913	가정동	530-8	대	118.9	
914	가정동	530-9	대	133.0	
915	가정동	530-10	도	75.3	
916	가정동	530-11	대	119.0	
917	가정동	530-12	대	118.8	

종전토지 지번별조서

□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1단계

연번	소재지	토지내역			비고
		지번	지목	면적(㎡)	
918	가정동	530-13	대	133.1	
919	가정동	530-14	대	133.0	
920	가정동	530-15	대	118.7	
921	가정동	530-16	대	118.9	
922	가정동	530-17	도	75.2	
923	가정동	530-18	대	118.7	
924	가정동	530-19	대	118.8	
925	가정동	530-20	대	133.1	
926	가정동	530-21	대	169.5	
927	가정동	530-22	대	170.1	
928	가정동	530-23	대	178.1	
929	가정동	530-24	도	71.3	
930	가정동	530-25	대	185.8	
931	가정동	530-26	대	176.4	
932	가정동	530-27	대	170.8	
933	가정동	530-28	대	195.1	
934	가정동	530-29	대	207.7	
935	가정동	530-30	대	100.2	
936	가정동	530-31	대	160.9	
937	가정동	530-34	대	172.1	
938	가정동	530-36	대	2,196.1	
939	가정동	530-37	대	284.5	
940	가정동	530-38	대	384.3	
941	가정동	531-3	대	239.8	
942	가정동	531-13	대	276.2	
943	가정동	531-14	대	329.7	
944	가정동	531-16	대	297.3	

종전토지 지번별조서

□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1단계

연번	소재지	토지내역			비고
		지번	지목	면적(㎡)	
945	가정동	531-17	대	178.7	
946	가정동	531-18	도	90.6	
947	가정동	531-19	대	35.0	
948	가정동	531-20	대	232.3	
949	가정동	531-21	대	1,585.3	
950	가정동	531-22	대	41.3	
951	가정동	531-23	대	241.7	
952	가정동	532-2	대	371.6	
953	가정동	532-3	대	128.7	
954	가정동	532-4	대	183.5	
955	가정동	532-5	대	190.6	
956	가정동	532-6	대	198.0	
957	가정동	532-12	대	160.5	
958	가정동	532-13	대	161.5	
959	가정동	532-14	도	60.2	
960	가정동	532-15	대	128.6	
961	가정동	532-16	도	76.3	
962	가정동	532-17	대	128.6	
963	가정동	532-18	대	128.6	
964	가정동	532-19	대	128.7	
965	가정동	532-20	대	128.6	
966	가정동	532-21	도	76.3	
967	가정동	532-22	대	128.6	
968	가정동	532-23	대	128.6	
969	가정동	532-24	대	135.9	
970	가정동	532-25	대	142.2	
971	가정동	532-26	대	162.8	

종전토지 지번별조서

□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1단계

연번	소재지	토지내역			비고
		지번	지목	면적(㎡)	
972	가정동	532-27	대	182.4	
973	가정동	532-28	대	159.7	
974	가정동	532-29	대	192.4	
975	가정동	532-30	대	186.9	
976	가정동	532-31	대	371.4	
977	가정동	532-34	대	511.8	
978	가정동	532-35	대	16.2	
979	가정동	532-36	대	478.3	
980	가정동	532-37	대	287.6	
981	가정동	533-2	대	181.9	
982	가정동	533-3	도	57.3	
983	가정동	533-4	대	140.9	
984	가정동	533-5	대	140.5	
985	가정동	533-6	대	148.7	
986	가정동	533-7	대	164.6	
987	가정동	533-8	대	140.9	
988	가정동	533-9	대	416.5	
989	가정동	533-12	대	141.0	
990	가정동	533-13	도	222.8	
991	가정동	533-14	대	140.9	
992	가정동	533-15	대	193.8	
993	가정동	533-16	대	140.8	
994	가정동	533-17	대	140.8	
995	가정동	533-18	대	157.6	
996	가정동	533-19	대	156.6	
997	가정동	533-20	대	140.9	
998	가정동	533-21	대	140.9	

종전토지 지번별조서

□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1단계

연번	소재지	토지내역			비고
		지번	지목	면적(㎡)	
999	가정동	533-22	대	134.8	
1000	가정동	533-23	대	184.2	
1001	가정동	533-24	대	184.3	
1002	가정동	533-25	대	185.7	
1003	가정동	533-26	도	230.9	
1004	가정동	533-27	대	183.4	
1005	가정동	533-28	대	182.3	
1006	가정동	533-29	대	182.2	
1007	가정동	533-30	대	179.9	
1008	가정동	533-31	대	409.3	
1009	가정동	533-32	대	2,267.7	
1010	가정동	534-2	대	362.8	
1011	가정동	534-7	대	208.1	
1012	가정동	534-8	대	213.4	
1013	가정동	534-14	대	350.3	
1014	가정동	534-20	대	208.1	
1015	가정동	534-21	대	199.2	
1016	가정동	534-31	대	220.8	
1017	가정동	534-32	대	221.0	
1018	가정동	534-34	대	352.7	
1019	가정동	534-35	대	484.8	
1020	가정동	534-36	대	41.6	
1021	가정동	534-37	대	707.4	
1022	가정동	534-38	대	6.2	
1023	가정동	534-39	대	278.2	
1024	가정동	534-40	대	109.8	
1025	가정동	534-41	대	102.8	

종전토지 지번별조서

□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1단계

연번	소재지	토지내역			비고
		지번	지목	면적(㎡)	
1026	가정동	534-42	대	362.9	
1027	가정동	534-43	대	4.0	
1028	가정동	534-44	대	107.8	
1029	가정동	534-45	대	132.8	
1030	가정동	534-46	대	9.7	
1031	가정동	534-47	주	48.4	
1032	가정동	535-4	대	143.6	
1033	가정동	535-5	대	161.8	
1034	가정동	535-6	대	199.7	
1035	가정동	535-7	대	139.2	
1036	가정동	535-8	대	140.4	
1037	가정동	535-9	대	166.1	
1038	가정동	535-10	대	149.3	
1039	가정동	535-11	대	140.0	
1040	가정동	535-12	도	49.6	
1041	가정동	535-13	대	154.0	
1042	가정동	535-15	대	130.3	
1043	가정동	535-16	대	129.9	
1044	가정동	535-17	도	70.8	
1045	가정동	535-18	대	125.4	
1046	가정동	535-19	대	110.0	
1047	가정동	535-20	대	122.2	
1048	가정동	535-21	대	110.6	
1049	가정동	535-22	대	123.6	
1050	가정동	535-26	대	116.1	
1051	가정동	535-27	대	116.1	
1052	가정동	535-28	도	70.6	

종전토지 지번별조서

□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1단계

연번	소재지	토지내역			비고
		지번	지목	면적(㎡)	
1053	가정동	535-29	대	139.1	
1054	가정동	535-30	대	139.1	
1055	가정동	535-31	대	139.1	
1056	가정동	535-32	도	104.5	
1057	가정동	535-33	대	147.0	
1058	가정동	535-34	대	140.9	
1059	가정동	535-35	대	160.1	
1060	가정동	535-36	대	133.1	
1061	가정동	535-37	대	142.8	
1062	가정동	535-38	도	50.1	
1063	가정동	535-39	대	221.2	
1064	가정동	535-40	대	151.2	
1065	가정동	535-41	대	131.4	
1066	가정동	535-42	대	152.7	
1067	가정동	535-43	대	393.5	
1068	가정동	535-44	대	90.8	
1069	가정동	535-45	대	1,099.2	
1070	가정동	535-46	대	241.4	
1071	가정동	535-47	대	4,807.9	
1072	가정동	535-48	대	133.4	
1073	가정동	535-49	대	75.1	
1074	가정동	535-50	도	25.7	
1075	가정동	535-51	대	82.2	
1076	가정동	536-62	대	407.7	
1077	가정동	537	대	1,323.5	
1078	가정동	537-22	대	1,386.4	
1079	가정동	537-24	대	11,634.0	

종전토지 지번별조서

□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1단계

연번	소재지	토지내역			비고
		지번	지목	면적(㎡)	
1080	가정동	537-25	대	422.8	
1081	가정동	537-26	대	3,456.0	
1082	가정동	538	대	452.5	
1083	가정동	538-1	대	126.9	
1084	가정동	538-6	대	130.4	
1085	가정동	538-7	대	1,165.4	
1086	가정동	538-8	대	304.9	
1087	가정동	538-20	도	42.1	
1088	가정동	538-21	대	115.3	
1089	가정동	538-22	도	44.2	
1090	가정동	538-23	대	194.9	
1091	가정동	538-24	대	126.8	
1092	가정동	538-26	대	188.2	
1093	가정동	538-27	대	144.3	
1094	가정동	538-28	대	126.9	
1095	가정동	538-29	도	41.3	
1096	가정동	538-30	대	126.8	
1097	가정동	538-31	대	164.4	
1098	가정동	538-32	대	153.4	
1099	가정동	538-34	대	2.6	
1100	가정동	538-35	대	2.6	
1101	가정동	538-36	대	71.3	
1102	가정동	538-37	대	25.1	
1103	가정동	538-38	대	308.4	
1104	가정동	539	대	1,479.0	
1105	가정동	539-1	대	396.7	
1106	가정동	539-2	대	1,257.4	

종전토지 지번별조서

□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1단계

연번	소재지	토지내역			비고
		지번	지목	면적(㎡)	
1107	가정동	539-3	대	931.2	
1108	가정동	539-7	대	661.2	
1109	가정동	539-8	대	133.8	
1110	가정동	539-9	대	133.8	
1111	가정동	539-10	대	133.7	
1112	가정동	539-11	대	281.6	
1113	가정동	539-12	대	130.5	
1114	가정동	539-15	대	913.7	
1115	가정동	539-16	대	483.8	
1116	가정동	539-17	대	889.9	
1117	가정동	540-11	대	327.3	
1118	가정동	540-12	대	544.0	
1119	가정동	540-14	대	828.7	
1120	가정동	540-22	대	539.7	
1121	가정동	540-23	대	548.3	
1122	가정동	540-25	대	774.0	
1123	가정동	540-26	대	152.5	
1124	가정동	540-33	대	4.8	
1125	가정동	540-34	대	85.0	
1126	가정동	540-35	대	127.5	
1127	가정동	540-36	대	196.0	
1128	가정동	540-37	대	1,254.8	
1129	가정동	540-38	대	235.1	
1130	가정동	540-39	대	107.4	
1131	가정동	540-40	대	228.4	
1132	가정동	540-41	대	332.1	
1133	가정동	540-42	대	231.7	

종전토지 지번별조서

□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1단계

연번	소재지	토지내역			비고
		지번	지목	면적(㎡)	
1134	가정동	540-43	대	466.5	
1135	가정동	540-44	대	1.4	
1136	가정동	540-45	대	110.7	
1137	가정동	540-46	대	18.2	
1138	가정동	540-47	도	36.7	
1139	가정동	540-48	도	41.9	
1140	가정동	541-2	대	764.8	
1141	가정동	541-3	대	478.9	
1142	가정동	541-4	대	1,005.5	
1143	가정동	541-8	대	374.2	
1144	가정동	541-9	대	373.8	
1145	가정동	541-10	대	374.2	
1146	가정동	541-11	대	917.6	
1147	가정동	541-12	대	442.0	
1148	가정동	541-13	대	323.0	
1149	가정동	541-14	대	511.3	
1150	가정동	541-15	대	167.1	
1151	가정동	541-16	대	369.6	
1152	가정동	541-17	도	249.4	
1153	가정동	541-18	대	303.9	
1154	가정동	542	대	306.1	
1155	가정동	542-1	대	5,725.1	
1156	가정동	542-2	대	1,296.1	
1157	가정동	542-3	대	1,402.6	
1158	가정동	542-5	대	1,333.2	
1159	가정동	542-6	대	312.4	
1160	가정동	542-7	도	107.0	

종전토지 지번별조서

□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1단계

연번	소재지	토지내역			비고
		지번	지목	면적(㎡)	
1161	가정동	542-8	대	161.9	
1162	가정동	542-9	대	163.9	
1163	가정동	542-10	대	414.9	
1164	가정동	542-11	도	2.0	
1165	가정동	542-12	도	2.0	
1166	가정동	543-6	대	147.1	
1167	가정동	543-7	대	233.7	
1168	가정동	543-8	대	142.8	
1169	가정동	543-9	대	237.8	
1170	가정동	543-10	대	118.8	
1171	가정동	543-16	장	130.1	
1172	가정동	543-17	장	133.8	
1173	가정동	543-18	장	137.5	
1174	가정동	543-19	장	137.5	
1175	가정동	543-20	대	126.1	
1176	가정동	543-21	도	70.3	
1177	가정동	543-22	장	126.0	
1178	가정동	543-23	장	136.5	
1179	가정동	543-24	도	76.4	
1180	가정동	543-25	장	126.0	
1181	가정동	543-26	장	200.5	
1182	가정동	543-27	장	154.9	
1183	가정동	543-28	장	142.9	
1184	가정동	543-29	장	143.1	
1185	가정동	543-30	대	125.2	
1186	가정동	543-40	대	425.7	
1187	가정동	543-41	대	425.8	

종전토지 지번별조서

□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1단계

연번	소재지	토지내역			비고
		지번	지목	면적(㎡)	
1188	가정동	543-42	도	100.2	
1189	가정동	543-51	대	1,548.3	
1190	가정동	543-52	도	75.1	
1191	가정동	543-53	대	110.9	
1192	가정동	543-54	대	2.6	
1193	가정동	543-55	대	39.5	
1194	가정동	543-56	대	294.8	
1195	가정동	543-57	대	18.9	
1196	가정동	543-58	대	457.0	
1197	가정동	570-1	도	526.0	
1198	가정동	570-2	도	314.9	
1199	가정동	570-3	도	1,185.7	
1200	가정동	571-5	도	11,691.3	
1201	가정동	571-6	도	5,479.9	
1202	가정동	573-3	도	4,106.9	
1203	가정동	574-4	도	23.9	
1204	가정동	574-5	도	4.6	
1205	가정동	576-4	도	1,458.0	
1206	가정동	576-5	도	272.2	
1207	가정동	577-4	도	1,539.7	
1208	가정동	582-6	도	5,167.9	
1209	가정동	582-7	도	21.5	
1210	가정동	583-3	도	189.9	
1211	가정동	584-2	도	824.2	
1212	가정동	584-3	도	488.4	
1213	가정동	584-4	도	222.5	
1214	가정동	585-3	도	3,088.6	

종전토지 지번별조서

□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1단계

연번	소재지	토지내역			비고
		지번	지목	면적(㎡)	
1215	가정동	585-4	도	8,464.7	
1216	가정동	산19-13	임	10.0	
1217	가정동	산19-14	임	26.0	
1218	가정동	산19-15	임	5.0	
1219	가정동	산21-54	임	912.0	
1220	가정동	산21-55	도	11.0	
1221	가정동	산21-56	도	8.0	
1222	가정동	산22-36	임	3,049.0	
1223	가정동	산22-63	임	58.0	
1224	가정동	산22-64	임	45.0	
1225	가정동	산22-65	임	104.0	
1226	가정동	산22-66	임	223.0	
1227	가정동	산22-67	임	223.0	
1228	가정동	산22-68	임	132.0	
1229	가정동	산22-69	임	8.0	
1230	가정동	산23-4	도	431.0	
1231	가정동	산24-3	임	25.0	
1232	가정동	산25-7	임	377.0	
1233	가정동	산78-9	도	641.0	
1234	가정동	산78-10	임	205.0	
1235	가정동	산83-15	임	6.0	
1236	가정동	산83-16	도	35.0	
1237	가정동	산84-31	임	150.0	
1238	가정동	산163-3	도	407.0	
1239	가정동	산168-17	구	359.0	

확정토지 지번별조서

□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1단계

연번	소재지	토지내역			비고
		지번	지목	면적(㎡)	
합계		44필지		340,593.2	
1	가정동	694	대	1,502.5	
2	가정동	695	주	1,366.4	
3	가정동	696	대	4,194.9	
4	가정동	696-1	대	14,438.3	
5	가정동	696-2	대	10,553.4	
6	가정동	696-3	대	444.2	
7	가정동	697	대	2,020.8	
8	가정동	697-1	대	2,161.4	
9	가정동	698	대	1,605.9	
10	가정동	698-1	대	1,612.2	
11	가정동	699	대	4,344.1	
12	가정동	699-1	대	2,124.2	
13	가정동	699-2	대	2,824.0	
14	가정동	699-3	대	1,863.3	
15	가정동	699-4	대	1,692.8	
16	가정동	699-5	대	5,240.7	
17	가정동	700	대	35,202.7	
18	가정동	700-1	대	34,978.6	
19	가정동	700-2	도	175.5	
20	가정동	701	대	23,033.2	
21	가정동	701-1	대	1,906.9	
22	가정동	701-2	대	899.4	
23	가정동	702	대	964.5	
24	가정동	702-1	대	765.1	
25	가정동	703	대	41,733.6	
26	가정동	704	종	811.1	
27	가정동	705	대	1,895.8	
28	가정동	706	대	750.0	
29	가정동	706-1	대	743.8	
30	가정동	706-2	대	2,532.1	
31	가정동	706-3	대	1,213.6	
32	가정동	706-4	대	1,202.3	
33	가정동	707	대	1,194.6	
34	가정동	707-1	대	1,196.0	
35	가정동	707-2	대	1,193.3	
36	가정동	707-3	차	2,087.3	
37	가정동	708	대	31,263.7	
38	가정동	708-1	도	119.4	
39	가정동	709	대	29,705.3	
40	가정동	709-1	대	22,916.7	
41	가정동	709-2	도	132.3	
42	가정동	709-3	도	193.5	
43	가정동	710	대	43,542.9	
44	가정동	710-1	도	250.9	